

# 전근대 수원 자료집(1)

조선왕조실록(국역·원문)

2015. 3. 6

## 일러두기

### 1. 수록 지역

행정 구역상 현재의 수원은 역사 전통과 유리된 구획이기 때문에, 본 자료집에서는 수원의 역사 자료를 집성하기 위하여 ‘수원 문화권’ 개념을 설정하여 현 행정 구역상 화성, 오산, 남양 지역까지 포함하였다.

### 2. 수록 범위

본 자료집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비스하는 국역 『조선왕조실록』의 검색결과를 토대로 『태조실록』부터 『순종실록』 까지를 포괄한 것이다.

### 3. 수록 방식

- (1) 기사를 내용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다시 분류 안에서는 시간순서로 배열하였다.
- (2) 기사에 대하여 2줄 이내로 요약문을 달아 기사의 요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주요 어휘와 구절에 밑줄을 긋고 굵게 표시하였다.
- (4) ‘수원 문화권’ 과 관련 없는 내용은 생략한 뒤 ‘(…)’ 표시하였다.
- (5) 『광해군일기』의 경우는 중초본과 정초본이 있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 기사의 출처를 표기한 부분에 이를 명기하였다.

### 4. 분류 방식

수집된 자료는 기왕의 연대기 자료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수원 문화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 ○ 항목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세부내역
1	정치	왕실	국왕   종사   행행(능행·은행·강무)   의식   산릉·천릉
		행정	중앙행정   지방행정   인사(선발, 임면, 관리)
		사법	재판   행형   치안   정변·민란   파면
		군사	군정   중앙군   지방군   특수군   금화(禁火)   군역   병참(兵站)   통신(通信)[봉수]   관방   전쟁.
		인물	수원인, 수원부사(유사)

2	경제	재정	재정일반   전세   공물(貢物)   역(役)   진상   잡세   창고   국용(國用)   군자   상공(上供)   전매(專賣)
		상업	상업일반   상인   시장   상품   무역(貿易)
		교통	육운   수운   마정(목장)   역참   역원
		농수산업	○양전   경영형태   토지매매   권농   농사 ○농업기술   수리   개간   농작 ○임업   목축   양잠   면직   과수원예   특용작물 ○어업   염업
		광공업	○광산   채광   제련 ○관청수공   사영수공   농촌수공   장인   수공업품
		건설	건축   토목   보수
3	사회	가족	가족   친족   가산   성명   호구   호적
		신분	양반   중인   상민   신랑역천   천인   신분변동
		향촌	취락   지방자치   사회조직   장지(葬地)
		의식주	○관복   상복   예복   장신구 ○주부식   주류   기호식품   기명제물 ○가옥   가구   택지   주거
		윤리·풍속	강상   사회기강 예속   풍속   연회   구휼(진휼)
4	문화	사상	유학   불교   교육(서원·향교·과거)   토속신앙
		과학	자연재해(가뭄·홍수)   의학   약학   보건   수레
		지리·경관	산천   여정   역사지리
		예술	음악   미술   문학   서예
5	화성	성문	長安門, 八達門, 蒼龍門, 華西門, 華虹門
		시설	西將臺, 東將臺, 東北角樓(=訪花隨柳亭) 西南角樓(=華陽樓), 東北鋪樓(=角巾臺)
		행궁	○新豐樓(鎮南樓), 左翊門, 中陽門(重鎗門), 奉壽堂(壯南軒)○洛南軒[藏春閣], 得中亭[得閒門], 老來堂[難老門, 歌風門]○長樂堂, 景龍館[3판문 至樂門], 福內堂[동행각 維福門, 서별당의 九如門, 외행각 북쪽 求福門], 維與宅[조명 隱若軒, 拱晨樓, 附舍門. / 向春門(서), 延暉門·維與門(북), 嘉漁門·慶華門(남), 賓曦門(동)] 未老閑亭(일명六面亭). ○于華館(八達館), 講武堂, 華講館(동헌), 祝釐堂(내아) 臥護軒, 內鋪舍[미복원], 分奉常寺 ○華寧殿, 壯勇營(壯勇衛) 禦牧軒(영조글씨), 拱樓屢
		원행	○穩穩舍(과천) 萬安橋(안양), 彌勒峴(지지대고개, =遲遲峴, =沙斤峴), 遲遲臺, 槐木亭橋, 만석거, 芰荷洞, 大有坪, 觀吉野 ○梅橋(조명 梅山橋), 上柳川, 萬和峴, 建章洞, 眞木亭(橋), 下柳川, 皇橋, 甕峰, 大皇橋, 迢瞻峴, 安寧里, 迢觀橋, 만년제
		제언	祝萬堤(서호), 萬年堤, 萬石渠, 坤申堤 杵池(=方下池, 남곡면) 南池, 北池

## 목 차

### I. 수원(水原)

1. 정치 .....	1
(1) 왕실 .....	1
(2) 행정 .....	218
(3) 사법 .....	400
(4) 군사 .....	540
(5) 인물 .....	730

## I. 수원(水原)

### 1. 정치

#### (1) 왕실

##### 정치/왕실

태종의 행차가 수원 장족역 남교에 머물다

어가(御駕)가 수원(水原) 장족역(長足驛) 남교(南郊)에 머물렀다.

○辛卯朔/駕次水原長足驛南郊.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 1일(신묘)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태종이 수원 북평(北坪)을 지나 이천과 천녕의 동로로 환궁하도록 명하다

명하여 승전색(承傳色) 노희봉(盧希鳳)을 순금사에 가두게 하였는데, 7일 만에 그를 석방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수원(水原) 북교(北郊)에서 부평(富平) 동교(東郊)를 경유하여 돌아가고자 숙소(宿所)를 이미 정하였었다. 경기 관찰사 권완(權緩)이 이를 듣고 공돈(供頓)을 이미 갖추었었다. 이날 동쪽으로 이천(利川)·천녕(川寧)에서 유람하고 돌아가고자 하여 조영무(趙英茂)가 호종(扈從)하므로 권완이 조영무에게 청하여, “만약 대가(大駕)가 동유(東遊)하여 오면 공돈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곡식이 들에 펼쳐는데, 아직 수확도 못하였으니 어찌합니까?” 하였다. 조영무도 이를 옹기 여겨 노희봉과 상의하고 틈을 타서 아뢰어 서로(西路)를 경유하여 환궁하기를 청하고자 하였으나, 노희봉이 미처 아뢰기도 전에 총제(摠制) 권희달(權希達)이 갑자기 아뢰니, 임금이 말하였다. “지난 26일에 수원(水原)의 북평(北坪)에서 유숙하도록 내가 이미 명하였으나, 그 뒤로는 내 아직 그 동쪽으로 갈 것과 서쪽으로 갈 것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만약 의논이 있다면 반드시 권완이 이를 싫어하여 정부에 알렸을 것이다.” 노희봉을 불러 물었더니, 노희봉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므로, 임금이 그가 정직하지 않음을 노하여 가두게 하고, 또 권완을 불러 꾸짖고는 드디어 동로(東路)로 해서 환궁하도록 명하였다.

○丁未/命囚承傳色盧希鳳于巡禁司，凡七日而釋之．初，上欲由水原北郊，經富平東郊而還．既定宿所，京畿觀察使權緩聞之，供頓已具，是日欲東遊利川·川寧而還，趙英茂從行．緩請英茂曰：“若大駕東遊，則不特供頓之難辦，禾穀布野，未及收穫，奈何？”英茂然之，與希鳳議，欲乘間啓達，請由西路而還．希鳳未及啓，摠制權希達遽以聞，上曰：“去二十六日，水原北坪宿次，予已定之，其後則予未定其東西，今若有議，必權緩厭之，告于政府也．”召問希鳳，希鳳以不知對，上怒其不直囚之，又召緩讓之，遂命由東路而還．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9월 25일(정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태종이 수원부 오산에 머물다

수원부(水原府) 오산(烏山)에 머물렀다.

○癸未/次水原府烏山.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2월 20일(계미) 1번째기사>

정치/왕실

상왕이 수원 등지에 가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상왕(上王)이 수원(水原) 등지에 가서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경기 경력(京畿經歷) 박안신(朴安臣)에게 명하여 상왕의 거가를 따르게 하였다.

○上王幸水原等處，觀放鷹，命京畿經歷朴安臣隨上王駕。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5일(계유) 3번째기사>

정치/왕실

상왕과 태종이 수원 등지로 사냥하러 가려 하였다

상왕이 임금과 함께 장차 수원(水原)에서 사냥하려고 이미 마전포(麻田浦)를 건너갔는데, 비가 내려서 낙천정으로 돌아왔다.

○戊午/上王與上將畋于水原等處，已渡麻田浦，以雨還樂天亭。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28일(무오) 1번째기사>

정치/왕실

세종이 수원 지역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다

수원(水原) 지경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였다. 용인 현감 정면(鄭冕)이 맞이해 보았다. 진위(振威) 전평에서 차소를 정하니, 수원 부사 조극관(趙克寬)·진위 현감 정송(鄭悚) 등이 맞이해 보았다.

○己卯/觀放鷹于水原之境，龍仁縣監鄭冕迎謁。次于振威前平，水原府使趙克寬·振威縣監鄭悚等迎謁。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6일(기묘) 1번째기사>

정치/왕실

세종이 수원부 오산원과 낙생역을 지나다

대가가 수원부 오산원(烏山院) 들에 이르니, 부사 조극관(趙克寬)이 와서 보았다. 광주 낙생역(樂生驛) 앞 들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목사 어중연(魚仲淵)·환관 조안효(趙安孝)가 와서 보았다.

○乙巳/駕至水原府烏山院平，府使趙克寬來謁。次于廣州樂生驛前平，牧使魚仲淵·判官趙安孝來謁。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4월 22일(을사) 1번째기사>

정치/왕실

세종이 경기도 광주와 수원 등지로 강무하러 가다

임금이 왕세자와 종친(宗親)·부마(駙馬)·의정부·대간(臺諫) 각 1명씩을 거느리고 경기도 광주(廣州)·수원(水原) 등처로 강무(講武)하러 가니, 많은 신하들이 흥인문(興仁門) 밖에서 지송(祇送)하였다.

○戊申/上率王世子及宗親·駙馬·議政府·臺諫各一員，講武于京畿·廣州·水原等處，群臣祇送于興仁門外。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 10월 10일(무신) 1번째기사>

정치/왕실

세종이 용인에서 사냥하고 수원 황교(黃橋) 들에서 유숙하다.

용인(龍仁)의 들에서 사냥하니, 현령 장아(張莪)가 경상(境償)에 마중 나와 배알하고, 어가(御駕)가 수원(水原)에 이르니, 부사(府使) 조극관(趙克寬)이 경상에 마중 나와 배알하였다. 수원부(水原府) 황교(黃橋)의 들에서 유숙하였다.

○己酉/獵于龍仁之平，縣令張莪迎謁境上．駕至水原，府使趙克寬迎謁境上，次于水原府黃橋之原．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 10월 11일(기유) 1번째기사>

정치/왕실

세종이 수원부 동교(東郊)에서 사냥하다가 진위현 치암(鷗巖) 들에 이르다

수원부 동쪽 들에서 사냥하다가 마침내 진위현(振威縣) 치암(鷗巖) 들에 이르니, 현감(縣監) 우전(禹傳)이 경상에 마중 나와 배알하였다.

○庚戌/獵于水原府東郊，遂至于振威縣鷗巖之原，縣監禹傳迎謁境上．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 10월 12일(경술) 1번째기사>

정치/왕실

세종이 수원부 북교(北郊)에서 사냥하다가 과천현을 거쳐 금천현(衿川縣) 들에 이르다

수원부 북쪽 들에서 사냥하다가 마침내 과천현(果川縣)에 이르니, 지현사(知縣事) 이계주(李季疇)가 경상에 마중 나와 배알하고, 금천현(衿川縣)의 들에서 유숙하니, 현감 김호(金浩)가 경상에 마중 나와 배알하였다.

○辛亥/獵于水原府北郊，遂至于果川縣，知縣事李季疇迎謁境上．次于衿川縣之原，縣監金浩迎謁境上．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 10월 13일(신해) 1번째기사>

정치/왕실

양녕대군에게 유밀과(油蜜果)를 접대한 과천과 수원의 수령을 징계하다

장령 이겸지(李謙之)가 아뢰기를, “양녕 대군이 매사냥으로 인하여 과천(果川)과 수원(水原)에 이르니, 두 고을의 수령(守令)들은 대체(大體)는 돌아보지도 않고 유밀과(油蜜果)를 성대히 준비했으며, 혹은 창기(娼妓)로 하여금 풍악을 연주하게 하여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유밀과(油蜜果)는 이미 금령(禁令)이 있는데, 법을 받들어 행하는 관리로서 국법(國法)을 감히 범하였사오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수령이 종친(宗親)을 보고 만약 접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죄가 없겠는가. 지금 두 고을의 수령들은 종친을 보고 술자리를 베풀어 위로했으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대들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壬寅/掌令李謙之啓：“讓寧大君因放鷹到果川·水原兩邑，守令不顧大體，盛設油蜜果，或使娼妓奏樂以慰之．油蜜果，已有禁令，以奉法之吏，敢(于) [干] 邦憲，不可不懲．” 上曰：“守令見宗親，若不饋之，是豈無罪？今二邑守令見宗親，設酌以慰之，有何罪焉？爾等勿言．”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0월 15일(임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장령 정이한이 양녕대군을 과천과 수원에서 유숙하게 만든 김성을 처벌할 것을 아뢰다

장령 정이한(鄭而漢)이 아뢰기를, “양녕(讓寧)이 처음부터 과천(果川)과 수원(水原)에서 유숙하고자 하였다면 반드시 계달(啓達)하고 갔을 것인데, 처음부터 계달(啓達)하지 않았으니, 과천과 수원에 유숙한 것은 양녕의 본뜻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겸종인(僉從人)인 전(前) 사정(前司正) 김성(金成)이 양녕을 인도한 것이므로, 김성을 국문(鞫問)하여 죄를 다스리면, 뒷사람이 경계할 줄을 알게 되고 양녕도 또한 스스로 깨우쳐 살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그대들의 말을 듣지 않은 까닭으로 대답하지 않은 것이다.” 하다. 이한(而漢)이 다시 아뢰기를, “양녕이 각 고을에서 유숙하는데, 수령(守令)들에게 법을 어기면서 지대(支待)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이 사람이 인도한 바이오니, 지금 추핵(推覈)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람이 다투어 생겨날까 염려됩니다. 또 수원 부사(水原府使) 안기(安起)는 ‘주악(奏樂)은 양녕이 명령한 것이다.’ 하나, 어찌 주악이 실제 양녕이 명령한 것일 줄 알겠습니까. 원컨대, 김성(金成)을 국문(鞫問)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십시오.” 하니, 말하기를, “존장(尊長)의 일을 이와 같이 할 수가 없다.” 하였다.

○掌令鄭而漢啓：“讓寧初欲宿於果川·水原，則必啓達而行。初不啓達，則宿於果川·水原，非讓寧本意，此必僉從人前司正金成導之也。鞫金成治罪，則庶可使後人知戒，而讓寧亦自警省。” 上曰：“予已不聽爾等之言，故是用不答耳。” 而漢更啓曰：“讓寧寓宿各官，以致守令違法支待者，正由此人所導，今不推覈，恐如此之人爭附效之。且水原府使安起云：‘以奏樂爲讓寧所命。’安知奏樂實出於讓寧也？願鞫金成，以覈其實。” 上曰：“尊長之事，不可如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1442) 임술 / 명 정통(正統) 7년 10월 22일(기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사헌부에서 과천과 수원으로 양녕대군을 인도한 김성의 처벌을 상소하다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기를, “(…)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의 죄악은 이를 말한 다면 말이 길어집니다. (…) 과천(果川)과 수원(水原) 두 고을에 마음대로 출입하여 유숙(留宿)하기도 하여, 기전(畿甸)의 피폐한 고을에서 조석(朝夕)의 봉양(奉養)과 연향(宴享)의 비용을 보통의 다섯 갑절이나 듣게 합니다. 제(禔)는 무안한 얼굴로 부끄러움이 없이 창기(娼妓)로 풍악을 치게 하고, 가동(家童)으로 적(笛)을 불게하며, 반인(伴人) 김성(金成)을 상객(上客)으로 삼아, 계상(階上)에 앉게 하여 서로 더불어 술을 마시고 즐거이 놀며 방종(放縱)하여 마음대로 하고, 또 그와 더불어 들판에 말을 달려서 길짐승을 사냥하고 날짐승을 사냥하며, 주현(州縣)에 횡행하여 마음대로 행동하니, 그 주현(州縣)의 수령(守令)들은 대체(大體)를 생각하지 않고 바람을 따라 쓰러지듯이 접대하는 데 분주하여, 오히려 혹시 뒤질까 두려워하니, (…) 지금 이 김성(金成)은 불어서 반당(伴尙)이 되어 사직(司直)이라 일컫고, 그 뜻을 맞추어 그로 하여금 더욱 불의(不義)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 최영순(崔永淳)과 안기(安起)는 법을 받들어 행하는 관리이니, 비록 족친(族親)이라도 교통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미 태종(太宗)의 유훈(遺訓)이 있었는데도, 그 뜻을 받들어 맞추어 유밀과(油蜜果)를 성대히 베풀고 여러가지의 진미(珍味)를 갖추어 전설하고, 안기(安起)는 관기(官妓)로 하여금 큰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게 하며, 매사냥을 할 때와 서울에 돌아오는 날까지도 또한 비용을 소비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였습니다. 최영순과 안기는 신자(臣子)로써 이미 태종(太宗)의 훈계를 어겼으며, 법을 받들어 행하는 관리로써 감히 국법(國法)을 어겼으니, 그 죄가 이보다 심함이 없으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 하니, 임금이 윤택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김성은 매를 부리는 사람[鷹師]이니 대군(大君)이 부르면 김성이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비록 대군을 따르더라도 어찌 인도하여 그른 짓을 하게 하였겠는가. 대군이 과천(果川)과 수원(水原)에서 유숙하는데, 두 고을에서 접대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니, 비록 그들을 추국(推鞠)하더라도 어찌 대군을 접대한 것으로써 죄를 줄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정이한(鄭而漢)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남을 인도하여 그른 짓을 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소인(小人)으로부터 시작한 것인데, 대군이 과천(果川)과 수원(水原)에 들어간 것은 실로 김성이 인도한 일입니다. 칭하옵건대, 김성의 죄를 다스린다면 대군도 또한 스스로 반성할 것입니다. 최영순과 안기는 국법(國法)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司憲府上疏曰：(…) 褻之罪惡，言之長也．(…) 於果川·水原兩官，恣行出入，或至留宿．以畿甸弊邑，朝夕之奉·宴享之費，倍蓰尋常，褻也靦面無愧，使娼妓動樂，家童吹笛，以伴人金成爲上客而使坐階上，相與飲酒娛樂，放縱自恣，又與之馳聘原野，從獸從禽，橫行州縣，惟意所適．其州縣守令不念大體，隨風而靡，供億奔走，猶恐或後．(…) 今此金成附爲伴尙，稱爲司直，逢迎旨意，使之益陷於不義耳．且崔永淳·安起，奉法之吏也．雖族親不得交通，已有太宗之遺訓，承望風旨，盛設油蜜之果，備陳諸般之味．安起則使官妓鼓瑟唱歌，至於放鷹之時·還京之日，亦且糜費以慰悅之．永淳·安起以臣子，既違聖訓，以奉法之吏而敢違邦憲，其罪莫甚，不可不懲．(…) 上不允曰：“金成，鷹師也．大君招之則成豈敢不從？雖從大君，豈導爲非？大君寓宿果川·水原，而兩官供億，未爲不可．雖使推鞠，豈以供饋大君抵罪乎？”而漢啓曰：“自古導人爲非者，必自小人矣．大君之入果川·水原，實是金成導之也．請治金成之罪，則大君亦自省矣．永淳·安起不畏邦憲，亦不可不懲．” 不允．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0월 26일(계축)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사간원에서 양녕 대군이 과천과 수원에서 매사냥한 것을 탄핵하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양녕 대군이(讓寧大君) 과천(果川)과 수원(水原)에서 매사냥을 하여 법에 어긋난 일을 함부로 하였으니, 마땅히 추핵(推覈)해야 되겠으므로, 사헌부에서 아뢴 바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司諫院啓：“讓寧大君放鷹于果川·水原，恣縱不法之事，宜當推覈，憲府所啓，不可不從．” 不允．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1월 1일(정사)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의정부와 육조에서 가뭄인 가운데 수원, 금천, 과천에 비가 와서 술을 진상하게 하다

비가 왔다. 의정부와 육조(六曹)에서 아뢰기를, “근일에 비록 가뭄 것 같아오나, 금천(衿川)·과천(果川)·수원(水原) 등 같은 곳에는 약간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의 비에도 넉넉히 벼가 소생될 만하오니, 앞드려 바라옵건대, 염려하심을 조금 놓으시고 약주를 드옵시도록 허락하옵소서.” 하고, 인하여 향온(香醞) 10병을 올렸다. (…)

○己卯/雨．議政府六曹啓：“近日雖若旱暵，若衿川·果川·水原等處，稍有雨澤，昨夜之雨，亦足以蘇禾稼．伏望小弛聖慮，許進藥酒．” 仍獻香醞十瓶．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6월 18일(기묘) 1번째기사>

정치/왕실

경기관찰사가 수원부사를 보내 전문을 올려 세조의 즉위를 하례하다.

(…)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안승효(安崇孝)가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계평(趙季砮)을 보내어 전문(箋文)을 올려 임금의 즉위를 하례(賀禮)하였다. (…)

○(…) 京畿觀察使安崇孝遣水原府使趙季砮，進箋賀即位. (…)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윤6월 13일(정사) 4번째기사>

정치/왕실

난신들의 전지를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다

(…) 유응부(兪應孚)의 포천(抱川) 전지, 아가지(阿加之)의 김포(金浦) 전지는 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塏)·심신(沈愼)·송석동(宋石同)의 충주(忠州) 전지, 최득지(崔得池)의 수원(水原)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과천(果川) 전지, 조청로(趙淸老)의 양천(陽川) 전지는 좌참찬(左參贊) 황수신(黃守身)에게 내려 주고, (…)이전(李璵)과 임진성(任進誠)의 수원(水原) 전지는 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師) 윤사분(尹士盼)에게 내려 주고, 박쟁(朴疇)의 수원(水原) 전지는 상호군(上護軍) 조득림(趙得琳)에게 내려 주고, (…)만약 가사(家舍)가 있는 곳에는 아울러 가재(家財)도 내려 주었다.

(…) 兪應孚抱川田·阿加之金浦田，賜右贊成申叔舟；李塏·沈愼·宋石同忠州田·崔得池水原田·朴仲林果川田·趙淸老陽川田，賜左參贊黃守身；(…) 璵·任進誠水原田，賜前僉知中樞院事尹士盼，朴疇水原田，賜上護軍趙得琳 (…)若有家舍處，并家財賜之.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3일(병술) 4번째기사>

정치/왕실

왕세자빈의 상장에서 염빈은 빈의 표숙인 수원부사 민효열에게 주관하게 하다

좌찬성 황수신(黃守身)·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참판(參判) 조효문(曹孝門)이 승지(承旨)와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유년 현덕빈(顯德嬪)의 상장(喪葬)의 여러 가지 일은 원경 왕후(元敬王后)보다는 내리고 정소 공주(貞昭公主)보다는 1등(等)을 더하였는데, 이제 왕세자빈의 상장은 한결같이 이 예(禮)에 의하여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수원부사(水原府使) 민효열(閔孝悅)로 하여금 염빈(斂殯)하는 여러 가지 일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민효열은 빈의 표숙(表叔)이었다.

○左贊成黃守身·禮曹判書洪允成·參判曹孝門與承旨等議啓：“辛酉年顯德嬪喪葬諸事，降於元敬王后，加於貞昭公主一等，今王世子嬪喪葬一依此禮.” 從之. (…)水原府使閔孝悅主斂殯諸事，孝悅，嬪表叔也.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6일(임신) 2번째기사>

정치/왕실

정인지가 수원부에 가면 잔치를 베풀도록 경기관찰사에게 명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계전(李季專)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이제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가 수원부(水原府)에 가거든,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라.” 하였다.

○承政院奉旨馳書于京畿觀察使李季專曰：“今去河東君鄭麟趾，於水原府設宴慰之.”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 3월 4일(갑자) 4번째기사>

**정치/왕실**

**세조가 수원의 두원평(斗院平)에서 머물다**

거가(車駕)가 수원(水原)의 두원평(斗院平)에서 머물렀다.

○庚午/駕次于水原斗院平.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 3월 10일(경오) 1번째기사>

**정치/왕실**

**경기관찰사에게 명하여 직접 수원부에서 밀성군 이침에게 잔치를 베풀도록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안철손(安哲孫)에게 치서(馳書)하기를,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목욕하기 전에 한 차례, 목욕한 뒤에 한 차례를 모두 친히 가서 베풀어 위로하고, 또 어욕통(御浴桶)의 사용을 허락하게 하라.” 하고, 또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계전(李季專)에게 치서하기를,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이 올라올 때, 친히 수원부(水原府)에 가서 한 차례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게 하라.” 하였다.

○承政院奉旨馳書于忠淸道觀察使安哲孫曰：“密城君琛，浴前一度，浴後一度，皆親到慰宴。且許用御浴桶。”又馳書于京畿觀察使李季專曰：“密城君琛上來時，親到水原府，一度慰宴。”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 3월 17일(정축) 2번째기사>

**정치/왕실**

**공혜왕후를 발인할 때 비바람이 심하여 수원부사가 유수 등에게 술을 주자고 건의하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김양경(金良暉)이 와서 아뢰기를, “공혜 왕후(恭惠王后)의 채궁(梓宮)이 발인(發引)하던 날에 비바람이 몹시 사나웠으므로, 신이 환자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갑작스런 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술을 가지고 갔는데,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사원(金嗣源)이 신에게 말하기를, ‘유수(柳洙)·유서(柳澈)·구문신(具文信) 등이 충훈부(忠勳府)의 막차(幕次)에 있으니, 술을 주자.’ 하기에, 신이 허락하였습니다. (…)

○京畿觀察使金良暉來啓曰：“當恭惠王后梓宮發引之日，風雨甚惡，臣慮有得病者，齋酒而行，以爲倉卒之備，水原府使金嗣源語臣曰：‘柳洙·柳澈·具文信等，在忠勳府幕，請遣以酒’，臣許之。(…)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0일(계해) 2번째기사>

**정치/왕실**

**국장 때 도차사원을 맡았던 수원부사에게 호피를 하사하다**

국장(國葬) 때의 (…)도차사원(都差使員)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사원(金嗣源)에게 호피(虎皮) 1장을, 별감역(別監役) 이인우(李仁佑) 등 6인에게 각각 면포(綿布) 2필과 정포(正布) 1필을 내리고, 또 세 도감(都監)의 녹사(錄事)와 빈전(殯殿)·산릉(山陵) 두 도감의 서리(書吏)에게 별사(別仕)<sup>1)</sup>를 주었다.

○賜國葬時(…) 都差使員水原府使金嗣源，虎皮一張，別監役李仁佑等六人，各綿布二匹·正布

1) 나라에서 공로가 있는 하급 관료나 군인들에게 주던 2일 이상의 사도(仕倒:근무 일수). 이들은 근무 일수가 차면 거관(去官)하였기 때문임.

一匹, 又三都監錄事及殯殿·山陵兩都監書吏, 給別仕.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0일(계유) 4번째기사>

### 정치/왕실

친경 의례 때 경기도의 현령들은 광주·파주목사 및 수원부사 등을 시위하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하는 의례(儀禮)의 옛 제도를 참고(參考)하니, 이리하였습니다.(…)”

1. 기전(畿甸)의 여러 현령(縣令)은 상복(常服)을 입고, 경소(耕所)의 배위(陪位)로 나아가서 서는데, 위의 여러 현령은 부근의 대관(大官)인 광주 목사(廣州牧使)·파주 목사(坡州牧使)와 수원 부사(水原府使)를 시위(侍衛)한다. (…)”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 一, 畿甸諸縣令服常服, 赴耕所陪位而立, 右諸縣令以附近大官廣州·坡州牧使·水原府使侍衛. (…)” 從之.

<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4일(갑자) 9번째기사>

### 정치/왕실

중종반정의 거사에 수원부사 장정(張珽)이 참여하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박원중(朴元宗)·부사용(副司勇) 성희안(成希顔) 【일찍이 이조 참판으로 있다가 갑자기 강등되었다.】·이조 판서 유순정(柳順汀) 등이 주동이 되어 건의(建議)하고서, 군자 부정(軍資副正) 신윤무(辛允武)·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 박영문(朴永文)·수원 부사(水原府使) 장정(張珽)·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홍경주(洪景舟)와 거사하기를 밀약(密約)하였다. (…)

○戊寅朔/知中樞府事朴元宗·副司勇成希顔 【曾以吏曹參判, 驟降】·吏曹判書柳順汀等, 首謀建議, 乃與軍資副正辛允武·軍器寺僉正朴永文·水原府使張珽·司僕寺僉正洪景舟密約舉事.(…)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일(무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정국공신과 위사공신을 위한 대궐잔치에 수원부사 최언호를 참석하게 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오는 19일에 정국 공신(靖國功臣)과 위사 공신(衛社功臣)들을 대궐 뜰에서 공궤(供饋)하도록 명하였는데, 공신으로서 서울 근처의 수령이 된 자들도 또한 와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변이 위에서 나타나고 민생은 아래에서 곤궁에 시달리고 있으니, 모든 연음(燕飲)의 일은 마땅히 정지해야 됩니다. 하물며 농사일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각 고을 수령들이 환곡(還穀) 대여에 바쁜 때이겠습니까. 공신의 공궤는 급급하게 행할 필요가 없으니 정지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중삭연(仲朔宴)<sup>2)</sup>을 오래도록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사옹원(司饗院)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공궤하도록 했을 뿐이다. 서울 근처의 수령으로서 공신에 참록(參錄)된 자는 최언호(崔彦浩)인데, 수원(水原)에 【부사(府使)이다.】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와서 참석하게 한 것이다.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2) 음력 2월·5월·8월·11월 등 중월(仲月)에 공신(功臣)을 위해 베푸는 잔치.

○壬子/諫院啓曰：“來十九日，靖國衛社功臣等，命饋于闕庭，而功臣之爲近京守令者，亦令來參。今者，天變現於上，民生困於下，凡干燕飲之事，固當停廢。況春務方開，各官守令，分糶亦急？功臣供饋，不必汲汲行之，請命停之。” 答曰：“仲朔宴，久不行之，故只令司饗院，略設供饋耳。近京守令參錄功臣者，崔彥浩在水原，【府使也。】故使之來參矣。不允。”

<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2월 17일(임자)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천릉할 때 준비를 소홀히 한 수원부사 윤돈인을 의금부에 하옥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일국의 대사는 천릉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이 없습니다. 대여(大輿)가 지나는 나루에 미리 선창(船檣)을 설치하고, 직책을 맡은 관원은 바빠 서둘러야 할 것인데, 발인 날이 임박하였는데도 전혀 설치하지 않았을 뿐더러 나타나지도 않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로서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하였으니 심상하게 치죄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도 역시 항상 점검하여 소홀한 일이 없어야 할 것인데도 미리 규찰하지 못하여 잘못된 바가 많았으니 조사하여 그를 치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해조(該曹)가 이미 지나는 나루의 책임을 맡았으니 그렇다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일을 제때에 맞추어 조치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여 대사를 전도케 하였으니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큼니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윤돈인(尹敦仁)은 의금부에 하옥하시고, 경기 감사(京畿監司) 심수경(沈守慶)은 파직시키고, 공조 당상과 색낭청(色郎廳)은 조사하여 치죄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諫院啓曰：“一國大事，莫重於遷陵。大輿過涉，預設船檣。分授之官，所當遑遑奔走之不暇，而迫在發引之日，專不排設，身又不現，略無動念，臣子所不忍。不可尋常治之。監司者，亦當常川檢舉，使無疎虞之患，而不能前期糾察，所失亦大。不可只察而治之。該曹既掌過涉之任，則凡有不及整齊之事，所當趁時措置，而使大事顛倒，失職甚矣。請水原府使尹敦仁，命下義禁府，京圻監司沈守慶罷職，工曹堂上·色郎廳，察而治之。” 答曰：“竝如啓。”

<명종실록 28권, 명종 17년 8월 22일(갑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왕세자가 수원부에 머무르다

왕세자가 저녁에 수원부(水原府)에서 머물렀다.

○庚子/王世子夕次水原府。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11월 20일(경자)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왕세자가 수원부에 머무르다

왕세자가 저녁에 수원부(水原府)에 머물렀다.

○戊辰/王世子夕次水原府。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23일(무진)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중국 사신이 수원에서 목어야 한다고 하여 전별연을 파하였다

상이 승례문(崇禮門) 밖 남지(南池)가에 나아가 심 부사(沈副使)에게 전별연(餞別宴)을 베풀었다. (...) 사신이 말하기를,

“행장에게 이러한 생각이 없지 않고 청정 역시 이러한 뜻이 있어 몰래 서로 도모하는데, 병영(兵營)을 태운 사실도 사람들의 말이 청정의 짓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생각이 있었고, 상서(尙書)가 일찍이 밀서를 저에게 보냈는데 역시 이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도모하겠습니다. 호남(湖南)에 재주있는 사람이 있는데 꼭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고, 또 사신이 말하기를, **“날이 늦었습니다. 수원(水原)에서 묵어야겠는데 잔치를 파했으면 합니다.”** 하였다. 상이 친히 술 한 잔을 권한 뒤에 읍(揖)하고 이별했다.

○上幸崇禮門外南池畔，錢 [餞] 宴沈副使。 (...) 使曰：“行長不無此意，清正亦有此意，陰爲相圖。燒營之事，人言清正之事矣。俺亦有此意思，而尙書曾以密書遺俺，亦此意也。俺下去當圖之。湖南有才人，切欲帶去耳。” 使曰：“日已晚矣。當宿水原，幸免宴。” 上親行一爵以送之，作揖而別。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8일(기사)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선조의 6째 왕자 순화군(順和君)을 수원에 정배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순화군 이보를 노변(路邊)의 읍에 정배해야 하는데, 경기·황해도·충청도 중 어느 도가 마땅하겠습니까? 또 노변의 읍이 모두 탕패하여 요미(料米)를 주며 생활하게 하는 일 또한 어려울 것 같으니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수원(水原) 같은 곳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회계하기를, **“수원은 노변이며 또 조금 실한 것 같으니 이곳으로 정배함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부표(付標)하여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壬戌/義禁府啓曰：“順和君珪，當定配路邊之邑，而京畿·黃海·忠清等道中，何道爲便？且路邊之邑，皆是蕩敗，給料生活之事，亦似艱苦，何以爲之？敢稟。” 傳曰：“如水原 [等] 處，爲之如何？” 回啓曰：“水原，路邊而亦似稍完，此處定配宜當，故改付標以啓。” 傳曰：“知道。”

<선조실록 127권, 선조 33년 7월 21일(임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수원에 정배 중인 순화군의 작폐로 인해 부사 최산립을 추국하다

비망기로 일렀다. **“순화군(順和君)을 수원(水原)에 정배한 것은 그곳이 서울에서 가깝고 길도 곧아 그가 폐단을 일으키는 일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점 때문이었다.** 이번에 마침 물건을 하사할 일이 있어 사람을 보내 살펴 보게 하였더니, 그가 폐단을 일으키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형장(刑杖)을 늘어놓고서 하인들에게 멋대로 형벌을 가해 향리(鄕吏) 두 사람이 현재 형장을 받아 곧 죽게 될 형편이라고 하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 고을의 수령은 그가 멋대로 형장의 도구를 가져가는 것을 엄중히 단속하지 않아 무고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의 잔인한 학대를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갖 폐단을 일으킨 실상을 감사에게 보고하여 위에 아뢰도록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순화군이 내려간 지 며칠 후에 상중(喪中)에 있는 순화군에게 쟁과 답을 가지고 가 납공(納供)하기까지 하였으니, 그의 법을 무시하는 패악한 짓과 아양을 부리는 간사한 태도는 극도에 이른 것이다. 부사(府使) 최산립(崔山立)은 나래하여 추국하도록 하라. 그리고 폐단을 부린 일에 대해 데리고 있는 종이 날날이

알고 있을 것이니, 중도 또한 잡아올려 치죄하도록 하라. 최산립은 과출(罷黜)시키고 대간이나 시종의 관원 중에서 강명(剛明)하고 법을 잘 지키는 자를 특별히 가려 보내도록 하라.”

○備忘記曰：“順和君之定配于水原，以其近京而路直，其所作弊之事，可得而易聞也。今者適以賜物事，遣人廉問，則其所作弊非一，而列置刑杖，擅刑下人，鄉吏二人，方受刑將死。極爲駭愕。以守土之官，非但不爲嚴束，刑杖之具，恣其取去，致令無辜之民，受其殘虐，而凡作弊之狀，不爲報于監司，轉聞于上，至於下去數日之後，喪人處，乃以雉鷄納供，其蔑法悖妄，要媚無狀極矣。府使崔山立拿來推鞫。且作弊之事，陪奴無不知之，奴子亦爲拿來治罪。崔山立罷黜，就臺諫侍從官中，另擇剛正守法之人。差遣。”

<선조실록 130권, 선조 33년 10월 8일(무인)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부사 최산립이 순화군의 작폐를 첩보하다

비망기로 일렀다. “수원 부사 최산립(崔山立)이 순화군(順和君)이 폐단을 일으킨 일과 형추(刑推)한 사람들을 감사에게 낱낱이 첩보하였다고 하니, 그 첩보를 들이도록 금부에 말하라.”

○壬午/備忘記，“水原府使崔山立，將順和君作弊事及刑推人，監司處，一一牒報云。其牒報取來以入事，言于禁府。”

<선조실록 130권, 선조 33년 10월 12일(임오)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부에 정배된 순화군의 행패가 심하여 수원부가 폐읍이 될 지경이다.

헌부가 아뢰기를, “순화군(順和君) 이보는 【상의 네째 아들이다.】 심성(心性)을 잃어 이미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  
【이때 수원부(水原府)의 사람들은 순화군의 광포함을 두려워하여 모두 투입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가 하루라도 죽음에서 면하기를 바랐으므로 부사가 동헌(東軒)에 좌기(坐起)하여도 급사(給事) 소동(小童) 몇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그 후에는 해가 더욱 심하여 부사마저 먼 시골로 피해가니 마을이 텅 비어 장차 폐읍(廢邑)이 될 지경이었다. 순화군이 일찍이 임해군(臨海君)에게 ‘나는 비록 경망하여 사람을 구타하지만 형이 남의 전택(田宅)이나 장획(臧獲)을 빼앗는 것보다는 낫다.’ 하였는데, 사람들도 이 말만은 그렇다고 여겼다. 대개 임해는 백성의 재물을 무리하게 마구 빼앗았으니 그 악독함이 더욱 가혹하였다.】 (…)

○乙丑/憲府啓曰：“順和君玆，【上之第四子也.】喪失心性，已爲難化之人。(…) 【時，水原府中人，畏順和之狂虐，無不投入，冀一日免死，府使坐堂，給事小童數人而已。其後害益甚，府使避伏于遠村，邑里蕭然，將爲棄邑矣。順和君嘗謂臨海君曰：“吾雖輕妄(歐) [毆] 打人，不若兄之奪人田宅臧獲。”云。人亦以爲信然。蓋臨海，輒以非道，橫掠民財，其毒爲尤酷焉。】 (…)

<선조실록 131권, 선조 33년 11월 25일(을축)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순화군의 폐단이 심하여 고을사람들이 달아나 피한다는 수원부사의 치계

경기 관찰사 남이신(南以信)이 치계(馳啓)하였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첩정(牒呈) 안에

‘금부 도사(禁府都事)가 담장을 쌓을 때 순화군(順和君)이 도검거(都檢擧) 이정인(李廷仁)을 잡아다가 손수 형신(刑訊)하였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보(追報) 안에는 ‘금부 도사가 담장을 다 쌓고 궁문(宮門)을 잠근 뒤에 순화군이 친히 문을 열고 나오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 피하였고, 수령의 하인들이 당한 침탈도 이루 형언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京畿觀察使南以信馳啓曰：“水原府使牒呈內，禁府都事築墻之際，都檢擧李廷仁，順和君捉入，手自刑訊云．追報內，禁府都事，垣墻畢築，宮門鎖鑰後，順和君親自開門，邑內之民，盡爲奔避，守令下人之被侵，有不可形言云云．”

<선조실록 132권, 선조 33년 12월 14일(계미) 4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순화군이 수원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다

판돈녕부사(判敦寧府使) 송찬(宋贊)이 상차(上劄)하였다. 그 대략에, “(…) 당우(唐虞) 시대에도 단주(丹朱)와 상균(商均)의 편파적인 기질과 사욕(私慾)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으나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후세에 와서 다른 말들이 없었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엄히 방지하여 백성을 병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성찰하소서.” 하였는데, 【당시 순화군(順和君)이 수원(水原)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여러 왕자들이 남의 노비를 빼앗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차차 속에 그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이다.】 (…)

○判敦寧府事宋贊上劄．其略曰：今者，特賜米太兼鹽·綿布·聯紬，而乾豬·乾魚，亦非一種．(…) 唐·虞雖不能變化朱·均氣拘私蔽之深，而不使朱·均至於病民，故後世無間焉．想必防閑嚴密，不得病民也．伏惟省察．【時，不獨順和君，貽害於水原之民，諸王子奪人臧獲，作弊多端，故劄中及之．】 (…)

<선조실록 133권, 선조 34년 1월 3일(임인) 1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순화군에게 미움을 사고 화를 풀어주지 못한 수원부사를 파직하라는 경기관찰사의 계문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남이신(南以信)이 치계하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권경우(權慶佑)의 첩정(牒呈)에 순화군(順和君)이 화를 낸 사실들을 많이 말했는데, 그 중에는, 왕자(王子)가 긴 칼을 차고 말 타고는 칼을 뽑아 기둥을 치면서 말하기를, ‘부사(府使) 몸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는다더냐.’ 하였고, 또 이달 1일에 망궐례(望闕禮)를 행하고 곧바로 궁문(宮門)으로 갔는데 궁 안의 방자(房子)가 도장이 찍힌 봉지(封紙)를 가져왔기에 펴보았더니 먹으로 머리통 하나를 그려놓고는 그 곁에는 ‘부사 권경우의 잘리운 머리통이다.’ 하고 쓰여져 있어 너무나 황공하고 어지러움을 느꼈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왕자의 성격이 비록 정상이 아니어서 혹시 그러한 말들을 하였다고는 하더라도 그가 당초 부임하던 날 즉시 왕자에게 나아가 뵈지 않고서 출관(出官)부터 먼저 했다가 드디어 왕자의 미움을 산 것이었고, 또 그 후로도 손을 써서 화를 풀어주지는 못하고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본부(本府)에 발도 들여놓지 못합니다. 명령을 내리고 백성 다스리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방치해두고 있으니,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관(官)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를 빨리 파직시켜 내쫓고 다시 강명(剛明)한 대간·시종 중에서 골라 보내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이조에 계하하였다.

○京畿觀察使南以信馳啓曰：“**水原府使**權慶佑牒呈內，多稱順和君發怒之事，而其中有曰：‘王子長劍已佩，騎馬已駕，拔劍擊柱曰：「府使之身，其不出血乎？」」又稱：‘本月初一日，行望闕禮，即往宮門，宮中房子，以踏印封紙來投，開見，則以墨畫頭顱一顆，書其傍曰：「府使權慶佑斬頭也。」不勝惶恐眩亂。’云。以此觀之，王子雖曰性度殊常，或有如此等語，當初赴任之日，不爲晉謁，先行出官，遂致見忤，厥後又不得周旋解怒，至於恇怍失措，不得接迹於本府，凡干出令治民之事，置諸無可奈何。如此之人，不可一日在官。斯速罷黜，以剛明臺侍之人，擇遣事。”啓下吏曹。

<선조실록 133권, 선조 34년 1월 8일(정미) 3번째기사>

### 정치/왕실

경기관찰사가 수원부 아전의 문장에 의거하여 순화군의 비행을 치계하다

경기 관찰사 남이신(南以信)이 치계하기를,

“이 달 18일에 도착한 수원부(水原府) 아전의 문장(文狀)에 ‘순화군(順和君)이 채물(菜物)이 좋지 않다고 하며 원두(園頭)를 관리하는 노(奴) 임동(林同)의 숙모를 수문(水門)을 부수고 나와 손수 잡아 들여다 20여 차례 형문하였는데 직접 결장(決杖)하였다.’ 하고, 28일에 이어 도착한 문장에는 ‘읍내에 사는 김영수(金永水)가 궁에 상직(上直)하러 나갔을 때 수문으로 잡아 들여다 20여 차례 형문하였는데 직접 결장하고, 그가 입고 있던 의복을 전부 불태웠다.’ 하였으며, 오늘 도착한 문장에는 ‘쇠고기와 생선 등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자(庫子)인 노 어리손(於里孫)의 가옥을 이달 28일 2경에 순화군이 직접 밖으로 나와 불을 질러 전소시켰으며, 이달 27일 초혼에는 일용하는 촉병(燭柄)을 올리는 일로 나간 화공(畫工) 정업수(鄭業水)를 수문으로 잡아 들여다 40여 차례 형문하였는데 손수 결장하였다.’ 하였습니다. 궁문을 봉하여 폐쇄한 뒤로 즉시 담장을 헐고 나와 여염에 출입하므로 앞으로 온 고을이 전부 비어 봄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의금부에 계하하였다.

○京畿觀察使南以信，馳啓曰：“本月十八日到付，**水原府**吏文狀曰：‘順和君，菜物不好稱云，園頭干奴林同叔母，水門毀出，親自捉入，刑問二十餘度，手自決杖。’云。二十八日追到文狀內，‘邑內居金永水，以宮上直進去時，自水門捉入，刑問二十餘度，手自決杖，其所着衣服，盡爲衝火’云。當日到付文狀內，‘牛肉生鮮等，不爲進排稱云，庫子奴於里孫家舍，今月二十八日二更，順和君，親自出來，衝火盡燒。今月二十七日初昏，以日用燭柄進排事進去，畫工鄭業水，自水門捉入，刑問四十餘度，手自決杖。’云。宮門封閉之後，毀牆卽出，出入閭閻，前日舉邑一空。春耕將廢，極爲可慮事。”啓下義禁府。

<선조실록 134권, 선조 34년 2월 1일(경오) 3번째기사>

### 정치/왕실

경기관찰사 남이신이 수원부사 박이장의 정문에 의거하여 순화군의 비행을 치계하다

경기 관찰사 남이신(南以信)이 【사람됨이 거칠고 경박하여 일찍이 해서(海西) 관찰사로 있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비난이 많이 있었다.】 치계하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박이장(朴而章)의 정문(正門)에 ‘이달 9일 순화군(順和君)이 약주(藥酒)를 가지고 간 원금(元金)을 수문(水門)으로 잡아들여 무수히 구타하였고, 12일에는 약주를 가지고 간 비(婢) 주질재(注叱介)를 수문으로 잡아들여 옷을 전부 벗겨 알몸으로 결

박하고 날이 썰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며, 18일에는 읍내에 사는 군사 장석을시(張石乙屎)가 그의 집에 역질(疫疾)이 들어 역신(疫神)을 쫓고 있을 때 장석을시와 맹인 윤휘(允化)의 아내 맹무녀(盲巫女) 등을 잡아가 수문으로 끌어들여 순화군이 직접 결박하고 한 차례 형문(刑問)한 뒤에 밤새도록 매어두었다. 그리고 맹녀(盲女)의 위아래 이빨 각 1개, 장석을시의 위아래 이빨 9개를 작은 쇠못치로 때려 깨고 또 집게로 잡아 빼 유휘가 얼굴에 낭자하였으며 피가 목구멍에 차 숨을 쉬지 못하였다. 무녀는 궁 안에서 즉시 치사하였고 장석을시는 이튿날 수문으로 끌어내 왔는데 목숨이 위급하여 곧 죽을 상황이었다.’ 하였습니

다.  
순화군의 행동이 이처럼 전일보다 한층 더 참혹하므로 부내(府內) 모든 사람이 전부 놀라 일시에 흩어지고 봄갈이가 한창 시급한데도 농사지를 생각을 하지 않으며, 부사 박이장은 그의 노여움을 범할까 두려워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니, 본부의 일이 매우 염려스럽습니

다.”  
하였는데, 의금부에 계하하였다.

○京畿觀察使南以信【爲人麤浮，曾按海西，多有不稱之譏.】馳啓曰：“**水原府使**朴而章呈內，‘今月初九日，順和君，藥酒持去人元金，自水門捉入，無數亂打，十二日，藥酒持去婢注叱介，自水門捉入，盡脫衣服，赤身結縛，終夜不解云. 十八日，邑內居軍士張石乙屎，其家疫疾送神時，張石乙屎及盲人允化妻·盲巫女等，捉去，自水門曳入，順和君，親自結縛，刑問一次，終夜結置，盲女則上下齒各一箇·張石乙屎，則上下齒九箇，以小鐵椎，親自撞碎，又以鈴子拔取，流血滿面，不通呼吸，巫女在宮內，即時致死，張石乙屎，則翌日自水門曳出，命在咽喉，朝夕必死云云.’ 順和君舉措，如是慘酷，倍於前日，府內大小之人，莫不驚駭，一時盡散，春耕方急，無意東作. 府使朴而章，自觸怒鋒，亦不得接迹，本府之事，極爲可慮事.” 啓下義禁府.  
<선조실록 134권, 선조 34년 2월 23일(임진)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에 안치된 순화군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사헌부에서 정죄를 건의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 전에는 순화군 이보에 대해 상심하여 실성(失性)했다고 했으나, **전부터 살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원(水原)에 안치된 뒤에도 연속 두 사람을 죽였는데** 대간이 즉시 논계하지 않은 것은 어찌 다른 이유가 있어서이겠습니까. 아마도 곤장을 맞고 상해를 입어 오랜 뒤에 죽은 것을 가지고 거론한다면, 자애스러운 전하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므로 숨기고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이 울분에 차 있는데, 이번에 살해할 때는 손수 칼질을 하여 극히 잔혹하였으므로 보고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참혹하게 여겼으니, 어찌다 저지른 과오나 우연히 살인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

○司憲府啓曰：“(…) 前順和君玠，雖曰：“喪心失性，而自前殺人，非一非二，及乎水原出去之後，又連殺二人，而臺諫不卽論啓者，豈有他哉？或以因杖致傷，日久乃殞，舉以論之，有以傷殿下慈愛之心也. 隱忍不發，公論已鬱. 今此戕殺，手自刃之，極其殘酷，見聞驚慘. 非邂逅過誤，偶然殺死之比也. (…)”

<선조실록 134권, 선조 34년 2월 28일(정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순화군이 수원에서 서울에 들어오다.**

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금부 도사(禁府都事)를 통하여 듣건대, 순화군(順和君)이 수원(水原)에서 어젯밤 이미 들어왔는데, 들어가 있을 집은 해사(該司)에서 지난 번 이미 수축했다고 합니다. 이밖에 공급에 관계된 일 등은 아직 조치하지 못했고 단지 소비(小婢)하나만 데리고 뇌폐(牢閉)안으로 들어갔고 그 외에는 접제(接濟)하는 형상이 없어 매우 고단해 보였다고 합니다. (...)”

○丙午/政院啓曰：“臣等，因禁府都事，伏聞順和君，自水原，昨夕已爲入來，而入接之家，則該司頃已修築矣，此外凡干供給等事，未有措處，只帶小婢一人，入于牢閉之中，外無接濟之形，所見極爲孤單云. (...)”

<선조실록 137권, 선조 34년 5월 9일(병오)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순화군을 수원에 안치했다가 서울로 이배하다

(...) 사신은 논한다. 순화군은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궁인(宮人)을 겁탈하였으니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이다. 대간(臺諫)이 율(律)에 따라 죄를 정할 것을 아뢰었으나 상이 사죄(死罪)를 감하여 수원(水原)에 안치했고, 얼마 후 서울 가까스로 이배(移配)하였으니, 이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이다. (...)

○(...) 【史臣曰：“順和君，居倚廬，憫于宮人，是難赦之罪。臺官以依律定罪啓之，上，減死安置于水原，中移於近京之地，愛子之心也. (...)”】

<선조실록 151권, 선조 35년 6월 11일(신축)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선조의 산릉지에 대한 논의로 수원은 거리가 멀고 민호를 옮겨야 하는 폐단이 있다는 내용 인산(因山)을 수원부(水原府)로 개복(改卜)하였다. 첨지(僉知) 최철건(崔鐵堅)이 상소하여 건원릉(健元陵)의 곁은 선왕(先王)의 유명(遺命)에 관계된 곳이므로 개복해서는 안 된다는 정상에 대해 극언(極言)하니, 왕이 해조(該曹)에 명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한 다음 시행하려고 명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 이항복은 말하기를 ‘(...) 신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주야로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수원부에다 자리를 점지하였고 상사(相士)들이 서로 경하하면서 완벽하여 하자가 없다고 하니, 이는 불행한 가운데 큰 다행인 것입니다. 처음 정한 곳을 버린 것은 과연 불행한 것이었는데 이제 또 개복한다면 다시 불행한 의논이 있게 되는 것이 전보다 더욱 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논이 분분하여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느 때 장사지낼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신은 이번에는 결단코 개복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 하였 습니다.

심희수는 말하기를 ‘(...) 풍수가(風水家)의 이야기는 본디 성현(聖賢)의 도(道)가 아닌 것인데 지금 이 술법은 요망하고 허탄한 가운데 유별나게 더 요망하고 허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내용에 불길하다는 말이 있으니, 누가 감히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보장하겠으며 군부(君父)의 산릉(山陵)을 정하는 즈음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서 질언(質言)하겠습니까. 최철건의 말이 충직한데 어제 삼가 수원은 너무 멀고 일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하교를 받들었으니, 아랫사람들의 마음에 있어 누군들 탄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허다한 술사(術士)들이 아름답다고 칭도하는 것이 여기에 있으니, 끝내 확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뒤에 다시 『구룡집』 같은 단편적인 초집(抄集)이 나와서 다시 수원의 산릉 자리를 저지 동요시

키게 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철건의 의논이 십분 사리에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는 감히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면서 시일을 지연시키는 의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이산해·한응인·이덕형은 병을 앓고 있어 수의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산릉에 대해 의정(議定)할 때 수상(首相)이 병 때문에 와서 참여하지 못했으니, 이 도형(圖形)과 술관들이 의계(議啓)한 내용을 영상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다시 헌의(獻議)하게 하라. 나의 뜻에 의거하여 말한다면, 수원에 새로 접지한 자리는 비록 제일 좋은 자리라고는 하지만 도리(道里)가 먼 것 같을 뿐만이 아니라 산성(山城)을 헐어서 철거하고 민호(民戶)를 옮겨 내보내야 하니, 폐단이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건원릉 안의 제5강이나 임영 대군(臨瀛大君)의 묘산(墓山) 가운데서 택정(擇定)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하였다. ○改卜因山于水原府. 兪知崔鐵堅上疏, 極言“健元陵旁係, 先王遺命之地, 不可改卜”之狀, 王命該曹議大臣施行. 禮曹啓曰: “(…) 李恒福以爲: ‘(…) 臣念及此, 日夜憂懼, 今幸而得於水原, 相土交賀, 皆曰十全, 此不幸中之大幸也. 初棄果是不幸, 今若又改, 則恐更有不幸之論, 尤有大於前者. 紛紛不定, 則何時可葬? 故臣以爲, 今則決不可改也. (…)’ 沈喜壽以爲: ‘(…) 風水家說, 本非聖賢之道, 而今此之法, 妖誕中之別樣妖誕也. 然既有其言之不吉, 誰敢保其必不然, 而攘臂質言於君父山陵之際乎? 崔鐵堅辭極忠懇. 昨日伏承水原太遠·事多不便之教, 其在下情, 孰不嘆服? 而許多術士同辭稱美者只在於此, 終不得不定焉. 深恐此後復有片段抄集如『龜龍』者出, 再行沮撓於水原地山也. 雖知鐵堅之論十分有理, 到此地頭, 不敢爲彷徨彼此, 致延時日之議也. 伏惟上裁.’ 李山海·韓應寅·李德馨病不收議.” 答曰: “山陵議定之時, 首相病不來參, 將此圖形及術官議啓之辭, 送于領相處, 使之更爲獻議. 以予意言之, 則水原新卜之山, 雖曰最好, 而非但道理似遠, 山城之撤毀·民戶之移出, 弊亦不貲. 健元陵內第五崗與臨瀛大君墓山中, 擇定用之如何?”

<광해군일기 2권, 광해군 즉위년 3월 29일(병진)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 선조의 산릉은 건원릉 5강과 수원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

<예조가 아뢰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니, 이산해(李山海)·심희수(沈喜壽)의 논의는 ‘임영 대군(臨瀛大君)의 묘산(墓山)은 풍수설(風水說)에는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면세가 좁아 사대부의 장지(葬地)로는 가능하나 능침(陵寢)으로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듣건대, 대행 대왕께서 한강(漢江) 너머는 쓰고 싶지 않다는 분부가 있었다 하니, 이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구룡집(龜龍集)』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 전조 4릉의 길흉이 우연히 맞았느니 안 맞았느니 하는 것을 미묘하고 황당하여 알기 어려운 불경(不經)한 것으로 돌려버린다면, 진실로 성상의 마음속에서 단정해야 할 것이니, 제5강(岡)을 쓰는 데 있어 무슨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이항복의 논의는 ‘『예경(禮經)』에 「살아서 사람에게 유익한 자는 죽어서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군자들은 대개 경작하지 못하는 땅을 골라서 장사를 지내려 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대행 대왕의 덕택은 사방에서 모르는 자가 없으니, 지금 하늘에 계신 영령도 절대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으리라고 신은 알고 있습니다. 성상의 생각도 또한 이와 같으시니, 신은 받들어 따르기에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원(水原)이 좋다고 하는 것은, 신이 일을 많이 겪어 보았는데 처음은 2강(岡)을, 재차는 5강을 버리는 데 고민하

였으니 오늘 버려두고 쓰지 않으면 심지어는 화복을 이유로 여러 의논을 일으켜 상의 마음을 혼드는 일이 반드시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고, 또 일을 시작한 지 절반도 못되어 중도에서 다시 저지하여 큰일을 어지럽게 만들까 깊이 염려해서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득이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큰 계책을 정하심은 오로지 성상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임영의 묘산은 적합치 않다는 말들이 이미 동일하니 더 의의(擬議)하기 어렵습니다. **마땅히 고려하여 버리거나 취하거나 할 곳은 수원과 5강뿐입니다.**” >

<하니, 의논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禮曹啓曰: “議于大臣, 則李山海·沈喜壽議: ‘臨瀛墓山, 雖未知風水如何, 而人皆言面勢局促, 宜於士大夫之葬, 而不合於陵寢之用. 且嘗聞大行大王有不欲渡漢之教, 此亦不容不遵. 今若擺脫『龜籠集』之說, 而以先朝四陵已往休咎偶合偶不合者, 爲微眇難知荒茫不經之歸, 則固當斷自聖衷. 仍用第(五岡) [五崗], 有何可疑?’ 李恒福議: ‘『經』曰: 「生有益於人者, 死不害於人.」 故君子欲擇不耕不食之地而葬焉者, 蓋以此也. 恭惟大行大王德澤有益於人者, 四方無不知, 今焉在天之靈, 斷不欲害於人者, 臣決知其必然. 聖慮所及, 又復如此, 臣當將順不暇, 而猶且以**水原**爲吉者, 臣更事既多, 初苦二崗之貶, 再悶五崗之棄, 深念今日棄而不用, 則異日橫議至以禍福招衆議而搖上心者, 難保其必無, 而又恐執役未半, 中復沮撓, 致亂大事也. 故乃爲此不得已之說矣.’ 今日大計之定, 專在聖志. 臨瀛墓山貶辭既同, 固難擬議, 所當執而去就者, **水原**與五崗耳.” 答曰: “依議.” )

<광해군일기 3권, 광해군 즉위년 4월 1일(정사) 3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 기자현이 정종주를 사주하여 수원 객사의 뒷산을 길지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신의 주장

우의정 심희수(沈喜壽), 당흥 부원군(唐興府院君) 홍진(洪進), 예조 판서 박홍로(朴弘老)가 아뢰기를,

“산릉의 천광(穿壙)이 흠점이 없고 흙의 품질이 매우 아름답다는 뜻은 중사와 승지가 이미 계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척수(尺數)에 맞추어 파놓고 보니 더욱 토맥(土脈)이 희고 깨끗하여 마치 비계를 잘라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습기가 없는 데다 또 거친 모래도 섞여 있지 않으며, 간혹 흰 흙덩어리가 뭉친 곳이 있었는데 손을 대면 부서져 좋은 밀가루 같았으니, 자못 방서(方書)에서 이른바 좋은 분(粉)을 바른 섬세하고 반들반들한 살결이란 것입니다. 사면의 벽을 깎아 세워 놓자 오색이 찬란하여 비단 병풍을 두른 듯하였는데 술사(術士)들이 서로 일찍이 보지 못한 바라고 치하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일로는 이보다 큰일이 없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행스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감히 들어와 복명합니다.”

하니, 알겠으며 더욱 슬픔이 끝이 없다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지난번 의인 왕후(懿仁王后)의 상사를 당하여 산릉을 포천(抱川) 땅으로 정해 산릉의 일이 절반쯤 지났는데, 자헌(自獻)이 박자우(朴子羽)를 협박하여 상소토록 하여 유릉(裕陵)으로 옮겨 쓰게 했다. 그 심사는 대개 인군의 사랑을 굳게 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를 원망하여 살을 십고자 한 지 오래였다. 그런데 이제는 민생들이 복록이 없어 토목의 역사를 하고 난 뒤 또 나라의 상사를 만났는데, 자헌은 일의 옳고 그름과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을 헤아리지 않은 채 처음에는 장지(葬地)가 할아버지와 가깝다는 말을 주창하여 선왕께서 맨 처음 정했던 제 2강을 쓰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정종주(鄭宗周)를 사주하여 이른바 『구룡별집(龜龍別集)』을 만들어 내어 목릉(穆陵)으로 정한 큰 계책을 동요시키고자 하여 수원 객사의 뒷산을 길지라고 하니, 온 나라 인심이 분개할 뿐 아니**

라 수많은 주민들도 일시에 통곡하였다. 다행히도 최철건(崔鐵堅)의 소장을 받아들이고, 여러 대신들의 의논을 따라 산릉을 끝내는 목릉으로 정하였지만, <자헌의 죄를 이루 다 벌줄 수 있겠는가.>

○右議政沈喜壽·唐興府院君洪進·禮曹判書朴弘老啓曰：“山陵穿壙無欠·土品甚美之意，中使及承旨想已啓達矣。穿到准尺之後，益見脈理白淨，有若截肪。既無水氣，又無羶沙之相雜，間或有白塊凝聚處，而觸手零散，狀似真麪，殆方書所謂芳粉細膩者也。隔壁削立，五色燦爛，如圍綵屏，術士交賀以曾所未見。今日之事，無大於此，群情莫不慰幸。敢來復命。” 答曰：“知道。尤用罔極。” 史臣曰：“祖妣懿仁王后之喪，山陵定於抱川，功用過半，自獻脅迫朴子羽，使之上疏，移用於裕陵。其心蓋出於固寵，而民之欲食其肉久矣。今者民生無祿，土木之餘，又值國恤，自獻不計事之是非·民之休戚，初倡葬近祖父之說，不得用先王初定第二崗，又嗾鄭宗周，創出所謂『龜龍別集』，欲搖大計於穆陵，以水原客舍後山爲吉地。非但舉國民心憤惋，數萬居民一時痛哭。幸而納崔鐵堅之疏，從諸大臣之議，山陵卒定於穆陵。（自獻之罪，可勝誅哉？”）

<광해군일기 3권, 광해군 즉위년 4월 22일(무인) 8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영정에 직접 제사지낼 때 대신이 참여해야 하니 잠시 영정을 수원부에 모셔두다**

전교하였다. “영정에 친히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거동할 때 대신이 없이는 할 수 없으니, 서둘러 승지를 파견하여 영돈녕부사와 우의정에게 간곡히 타일러서 출사하도록 하라. 만약 끝내 출사하지 않는다면 우선 영정을 수원부(水原府)에 모셔두고 대신이 출사하기를 기다렸다가 모셔올 일로 하유할 뜻을 정원은 살펴서 하라.”

○傳曰：“影幀親祭舉動，不可無大臣而爲之，急遣承旨，敦諭領敦寧·右相，使之出仕。若終不出仕，則姑爲奉留于水原府，待大臣出仕後奉來事，下諭之意，政院察爲。”

<광해군일기 121권, 광해군 9년 11월 26일(정해) 6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선전관에게 하유하여 잠시 영정을 수원부에 모셔두고 다시 하유할 때까지 기다리라**

전교하기를, “영정(影幀)을 우선 수원부에 모셔두고서 다시 하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셔올 일로 서둘러 선전관을 보내 하유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다음달 초순 이전에 날을 다시 받도록 하라고 하유하라.” 하였다.

○傳曰：“影幀姑爲奉留于水原府，待更爲下諭，奉來事，急遣宣傳官下諭。” 仍傳曰：“來月初旬前改擇日，下諭。”

<광해군일기 121권, 광해군 9년 11월 27일(무자) 9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영정을 수원부에 모셔두고 수원부사와 영송전 참봉에게 잘 지키도록 하라는 전교**

전교하였다. “대신은 아직도 출사할 기약이 없고 새로 임명할 정승의 출사할 시기도 언제 쯤 될지 역시 확정하기가 어려우니, 영정을 우선 수원부에 모셔 두고서 영송전 참봉(永崇殿參奉)과 본부 부사로 하여금 십분 신중을 기하여 수직하도록 하고, 승지와 예조 당상, 중사(中使)는 모두 당분간 올라오도록 하라는 일로 하유하라. 그리고 정월 초순 전으로 다시 택

일해서 모셔올 일을 해조에 말하라.”

○備忘記傳曰：“大臣尙無出仕之期，新卜相臣出仕之期，亦難必其遲速。影幘姑爲奉留于水原府，而令永崇殿參奉與本府府使，十分謹慎直守，承旨·禮曹堂上·中使，並令姑爲上來事，下諭。正月初旬前，改擇日奉移事，言于該曹。”

<광해군일기 121권, 광해군 9년 11월 29일(경인) 4번째기사>(중초본)

정치/왕실

전주에서 모셔온 영정이 수원에 있으니 빨리 완결지어야 한다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합계 사헌부와 사간원이 합계하기를, “근래에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이 날로 해이해져서 퇴보하기만 하고 진전되는 것이 없으므로 식견있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여긴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번에 영정을 모셔오는 일은 실로 온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거조로서 이미 전주(全州)를 떠나 수원(水原)으로 와서 머물고 있으니 서울까지의 거리는 1백 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외에서 맞이하고 제사를 지낼 일에 대하여 날을 여러 번 받았다가 여러 번 물렸습니다. 음식물을 공급하거나 다리를 수리하는 사람들이 남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천리 길에 잇달아 있는데 시기마저 한겨울이다보니 사람과 말이 얼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작은 폐단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수원은 부(府)이므로 관사(官舍)가 협소하고 누추한데다 민가와 인접해 있어서 혹시 한 명의 군사라도 조심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뜻밖의 변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신하와 백성들의 애닦고 다급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영정이 서울을 지날 때 직접 지내는 제사를 가까운 시일에 날을 받아 지내도록 해서 중대한 의식을 완결짓도록 하소서. (...)

○司憲府·司諫院合啓曰：“近來大小國事，日至解弛，有退無進，識者之寒心久矣。今此影幘奉移，實一國莫大之舉，既已離發全州，來駐水原，則去京城不能百里，而郊迎設祭，累卜累退。廚傳供億，修理橋梁者，自南抵西，千里相踵，而時值窮冬，人馬凍餒。此亦小弊，有不足慮，而水原爲府，官舍隘陋，與閭閻相接，脫有一卒之不謹，則意外之變，難保其必無。言念及此，臣民痛迫之意，抑何如也？影幘過京城親祭，請命從近改擇日行之，以完大禮。(...)”

<광해군일기 121권, 광해군 9년 11월 30일(신묘) 4번째기사>(중초본)

정치/왕실

친경(親耕)하는 대례를 행할 때 수원부사를 대신해서 호위에 대해 논의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친경(親耕)하는 대례(大禮)를 행할 때 호위(扈衛)하는 일들을 엄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복병장(伏兵將)·척후장(斥候將)·고훈장(考喧將) 역시 많은 수를 조발(調發)해 써야 하는데, 시임(時任) 무신만으로는 태반이 부족합니다. 경중(京中)·경기·개성부(開城府)·황해·강원·공흥도 등의 당상·당하 가운데 한산(閑散)한 무신들을 모두 기일에 맞춰 올라오게 하고, 수원(水原)·강화(江華) 두 부(府)에 소속된 군병들에게 각자 포장(布帳)을 지니게 한 다음, 겸방어사(兼防禦使)와 부사로 하여금 직접 인솔해 와 호위를 엄하게 할 일을 미리 파발마로 알려야 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수원 부사는 경기 수령으로서 친경할 때 조복(朝服)을 갖추 입고 논두렁 사이에서 있게 될 텐데, 그때 군사를 거느리고 호위하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 대행케 할 것인가 다시 의논해 처리하라.” 하였다.

○戊午三月初七日丙寅，兵曹啓曰：“今此親耕大禮時，扈衛諸事，不可不嚴密矣。各處伏兵

將·斥候將·考喧將，亦當多數調用，而時仕武臣，太半不足。京中·京畿·開城府·黃海·江原·公洪等道堂上·堂下閑散武臣，竝令及期上來，且水原·江華兩府所屬軍兵，各持布帳，令兼防禦使·府使，新親自領來，以嚴扈衛事，預先發馬知委之意，敢啓。”傳曰：“允。水原府使，以京畿守令親耕時，具朝服，立於田畝間，則領兵扈衛，使何人代行乎？更議以處。”

<광해군일기 125권, 광해군 10년 3월 7일(병인)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영정을 수원에 봉안하고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과거를 시행해야 한다는 병조의 계목

<병조의 계목(啓目)에, “지난번 박예남(朴禮男) 등이 ‘수원(水原)의 군병이 영정을 일단 본부(本府)에서 봉안하게 된 이래, 밤낮으로 시위(侍衛)하고 있으니 본부가 이미 영정 봉안 소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한결같이 전주(全州)나 평양(平壤)의 예(例)에 따라 특별히 과거(科擧)를 시행하여 성조(聖祖)를 위안하는 성대한 뜻을 보여야 할 것이다.’ 는 내용으로 상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시행하는 중대한 일은 본조에서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으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구례(舊例)를 참작해서 결정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兵曹啓目: “向前朴禮男等以 ‘水原軍兵一自影幘奉安本府以來，晝夜侍衛，本府既爲影幘奉安之所。則一依全州·平壤例，別設科擧，以示慰安聖祖之盛意’ 事，陳疏。而設科重事，自本曹不敢輕議，請令禮官，參倣舊例定奪何如?” 啓依允.)

<광해군일기 126권, 광해군 10년 4월 17일(병오) 7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영정을 수원에 모셨고 수원 무학(武學)의 상소도 있으니 과거를 시행하라는 내용

예조가 <문서를 덧붙여서> 계목(啓目)을 올리기를, “수원(水原)의 무학(武學) 박예남(朴禮男)이 상소하기를 ‘<병조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영정을 봉안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사람들 모두가 은택이 내려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번에 그가 상소한 것이 외람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다른 도의 예(例)에 따라 간략하게 과거 시험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또한 한때의 은전이라 할 것입니다. 상께서 재결(裁決)하시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르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 문과(文科)도 아울러 대거(對擧)하여 약간 명을 시취(試取)하도록 하라.” 하였다.

○禮曹(粘連)啓目: “水原武學朴禮男上疏: ‘(據兵曹關,) 影幘留住之地，人皆希望恩澤.’ 今此上疏，似爲冒濫，而依他道例，從略設科，以慰群情，亦一時之異數也。上裁施行何如?” 啓: “依允。文科竝略取對擧。”

<광해군일기 126권, 광해군 10년 4월 18일(정미) 16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영정을 수원부에 봉안함에 따른 과거 시행 일정을 논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영정을 수원부(水原府)에 봉안하게 됨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문·무과(文武科)의 과거 시험 일자는 변무(辨誣)와 관련된 증광(增廣)의 별시(別試)와 복시(覆試)를 치른 뒤에 택일해야 하겠습니까. 다만 전주(全州)와 평양(平壤)의 경우 본도(本道) 각읍의 유생 모두를 대상으로 시취(試取)했었으니 이번에도 전례(前例)에 따라 거행해



야 하겠는데, 상께서 재결(裁決)하시어 시행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禮曹啓曰: “今此影幀留住水原府, 文武設科日期, 以辨誣增廣別試·覆試之後, 擇日爲之矣. 但全州·平壤則本道各邑儒生竝取而今亦依右前例舉行, 上裁施行何如?” 啓依所啓施行.)

<광해군일기 126권, 광해군 10년 4월 20일(기유) 5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수원과 서관(西關)의 영정을 서울에 봉안하는 일에 대해 예관이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다 전교하였다. “영정을 오래도록 수원(水原)에 머물러두고 있는데, 서관(西關) 역시 변방의 근심거리가 있으니, 우선 서울에 봉안토록 할 일을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케 하라.”

○傳曰: “影幀久留水原, 西關亦有邊虞, 姑爲奉安于京都事, 令禮官議處.”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2일(기미)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영정을 수원에서 서울로 옮기는 날짜가 결정됨에 따라 과거 시행일을 앞당기다

정원이 아뢰기를, “영정(影幀)을 수원(水原)에서 옮겨 출발시킬 날짜를 7월 24일로 가려 정했는데, 과거를 22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에서 응시할 무사들이 필시 많아 2일 안으로 시험을 끝내기는 형세상 어려울 것이니, 해조로 하여금 과거 시험 날짜를 참작해서 앞당겨 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政院啓曰: “影幀, 水原離發, 以七月二十四日推擇, 而科擧, 以二十二日設行. 京畿武士, 赴擧者必多, 二日之內, 勢難畢試, 令該曹設場之日, 參酌進定. 何如?” 傳曰: “允.”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8일(을축)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개성부의 세조 영정과 수원부의 태조 영정을 먼저 강화로 봉안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양조(兩朝)의 영정(影幀)에 서울 밖에서 친히 제사를 지내는 일에 있어서는 이달 안에 제사를 거행한 후에 강화(江華)로 봉안하여야 하니, 예관에게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니, 예조가 아뢰기를,

“세조(世祖)의 영정은 개성부(開城府)에서부터 풍덕(豐德)을 지나 강화까지 이르는 2식(息)의 거리인데, 서울로 오는 길은 임진강(臨津江)을 건너고 또 양화도(楊花渡)를 건너야 합니다. 태조(太祖)의 영정은 수원(水原)에서 안산(安山)·부평(富平)·통진(通津) 등지를 지나 강화까지 이르는 5식(息)의 거리인데, 서울로 오는 길은 한강을 건너고 또 양화도를 건너야 합니다. 지금 만일 양조의 영정을 서울의 교외에서 맞이할 경우 선대를 생각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주상의 정성에는 유감이 없으나, 두 곳의 길이 모두 멀고 우회하여야 하니, 매우 미안합니다. 우선 먼저 강화도로 옮겨 봉안하였다가 다시 본전(本殿)으로 모실 때를 기다려 교외에서 전송한다면 인정과 예법에 합당할 것 같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강화도의 봉안할 곳을 먼저 수리한 후에 옮겨 봉안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 “兩朝影幀, 郊外親祭, 則今月內行之後, 奉安于江華事, 令禮官議處.” 禮曹啓曰:

“世祖影幀, 自開城府, 由豐德至江華二息程, 京路則渡臨津, 又渡楊花渡. 太祖影幀, 自水原,

由安山·富平·通津等地，至江華五息程，京路則渡漢江，又渡楊花渡矣。今若祇延〔祇迎〕兩朝影幘于郊外，則其於自上追遠報本之誠，固無所憾，而兩地道路，俱枉且遠，極爲未安。姑先奉移于江都，待其還御本殿時，郊外祇送，似合情禮，敢啓。” 傳曰：“依啓。江華奉安處，先爲修理後奉移。”

<광해군일기 139권, 광해군 11년 4월 3일(병진) 6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왕이 인경궁과 경복궁에 친림함에 따라 수원 군사 4백 명을 동원하여 호위하도록 하다**  
전교하였다. “인경궁에 친림할 때, 이른 아침에 먼저 경복궁으로 가서 옛터를 살펴본 뒤에 인경궁으로 가야겠다. 오는 25일에 올라올 도방군(到防軍)은 차지 내관(次知內官)의 말에 따라 경복궁 각처의 임금이 보행할 길의 잡초를 베고 청소를 하고서 대기하게 해야 되겠으나, 도방군이 며칠 내로는 절대로 도착하지 못할 테니 오는 23일부터 인근 지역의 방리군(坊里軍)을 적당수 먼저 징발하여 미리 길을 닦게 하라. 다만 잡초를 제거하고 길을 내어 통행만 하면 되도록 하고,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하라.

**또 두 궁궐을 하룻동안에 거동하게 되니 수원의 군사 4백 명을 올려보내 호위하게 하는 <일을 도감으로 하여금 논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

○傳曰：“仁慶宮親臨時，早朝先臨景福宮，看審舊基後，當移幸仁慶宮。來二十五日上來到防軍，次知內官言〔聽〕〔廳〕，景福宮各處御路，伐草修掃以待。而只以到防軍，數日內，必不及役事，則來二十三日爲始，其近處坊里軍，量先調發，預爲修治。只令伐草通路(以行)，勿令有弊。且兩宮一日內舉動，水原軍士四百名，上送扈衛(事，令該曹議處.)”

<광해군일기 143권, 광해군 11년 8월 21일(신미) 3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왕의 궁궐 친림 때 수원 군사 대신에 훈련도감의 군사로 호위하게 하자는 병조의 건의**  
병조가 아뢰기를, “군사를 징발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만약 교외로 나가 밤을 지새우는 행차가 아니면 전부터 호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두 궁궐에 거동할 때 수원의 군사 4백 명을 올려보내 호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4백 명의 군사는 모두 일반 백성들인데 경기 지방이 큰 흉년을 만난 때에 또 다시 그들을 징발하여 여러 날 왕래하게 할 경우 수확의 시기를 놓쳐 추수의 희망을 거둬 잃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백성들이 제자리에서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아다니는 우환이 생길 것은 따져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수원의 군사를 올려보내도록 한 것을 우선 정지시키고 <지난번 칙서를 맞을 때의 사례에 의거하여> 훈련 도감의 군사를 차출하여 호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兵曹啓曰：“徵兵之舉，係是重大。若非郊外行幸經夜舉動，則自前不爲扈衛，**今此兩宮親幸時，水原軍士四百名，使之上送扈衛矣。** 臣等竊念四百之軍，皆是民也，當此畿甸凶荒，又爲徵發，累日往還，收穫失時，重缺秋成之望，則前頭流散之患，不占可知。**水原軍姑停上送，(依頃日迎勅時例，) 訓練都監軍士除出，扈衛爲當。**” 從之。

<광해군일기 143권, 광해군 11년 8월 22일(임신) 5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개성과 수원에 영정을 봉안함에 따른 과거 시행에서 4명을 선출하였다는 내용**

영승전(永崇殿)과 봉선전(奉先殿)에 있는 두 선조의 영정을 올려오면서 개성부와 수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한림을 보내 시험문제를 가지고 가서 개성부에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이게 하여, 유성증(兪省曾) 등 네 명을 뽑았다.

○以永崇殿·奉先殿二祖影幀上來時，留住于開城府·水原之故，遣翰林齋書題，試士于開城，取兪省曾等四人。

<광해군일기 144권, 광해군 11년 9월 18일(정유) 3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명의 칙은(敕銀)을 맞이하기 위해 국왕이 거둥할 때 수원의 속오군을 동원해야 한다

병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홍명원(洪命元)이 가지고 오는 칙은(敕銀)을 교영(郊迎)하기 위해 거둥하실 때 호위 군병들은 종전처럼 수원(水原) 속오군(束伍軍) 2백명을 동원해야 하니, 각기 포장(布帳)과 군물(軍物)을 가지고 본부의 중군이 통솔할 수 있게 오는 10월 20일까지 서울에 도착하도록 경기 감사와 <우도(右道)> 방어사에게 병부(兵符)와 신표(信標)를 동시에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이첨이 큰 옥사를 자주 일으켜 임금까지 공갈하였는데 임해(臨海)·능창(綾昌)·진릉(晉陵)의 변란에서부터 영창 대군(永昌大君)과 최기(崔沂)의 옥사에 이르기까지 옥사가 일어나지 않은 해가 없었고 그리하여 전후에 죽은 자만도 무려 수천명에 달했다. 왕도 늘 위태위태 두려움을 느끼고는 궁성을 빙 둘러 자위하고 딱다기를 치며 순찰을 돌게 하는 등 마치 큰 적과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했고, 모든 거둥 때마다 경기의 병력을 동원하고 도성의 사대문을 엄히 걸어 잠그고서야 <나가곤 하였다.> 이이첨·유희분·박승중 이 셋이 <다> 심복이 되어 일을 꾸민 자들인데, 역옥은 모두 이이첨이 꾸며낸 것이고 유희분은 매관 옥옥(賣官鬻獄)을 맡았으며 박승중은 궁실을 영건하였다고 한다.】

○兵曹啓曰：“今此洪命元奉來勅銀，郊迎舉動時扈衛，依前例，水原束伍軍兵二百名，各持布帳軍物，本府中軍領率，今十月二十日，京中逢點事，請京畿監司·(右道)防禦使處，兵符標信，一時下送，(何如?)” 從之。【爾瞻屢起大獄，恐喝人主，自臨海·綾昌·晉陵之變，以至永昌大君·崔沂諸獄，無歲不作，前後死者，無慮數千百人。王亦岌岌自畏，環宮城自衛，擊柝巡邏。若對大敵，凡舉動，輒徵兵畿甸，嚴閉都城四大門。(乃出)爾瞻·希奮·承宗三人者，(皆)以肺腑用事，逆獄皆出爾瞻，而賣官鬻獄，起於希奮，營建宮室，自承宗云。】

<광해군일기 157권, 광해군 12년 10월 17일(경신) 6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왕실

종묘 추송 행사에 거둥 때 호위를 위해 수원의 속오군을 징발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9월 29일, 종묘 추송 거둥 때의 호위를 위해 수원의 속오군(束伍軍) 3백 명이 각기 군물과 포장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번 달 27일까지 본부 중군이 그들을 이끌고 올라와 서울에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 감사와 좌방어사(左防禦使)의 처소에 병부(兵符)와 표신(標信)을 한꺼번에 내려보내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兵曹啓曰：“九月二十九日宗廟追崇舉動時扈衛次，水原束伍軍三百名，各持軍物布帳，本月二十七日本府中軍率領京中逢點事，京畿監司及左防禦使處，兵符·標信，一時下送下諭何如?” 傳曰：“允.”)

<광해군일기 169권, 광해군 13년 9월 23일(신유) 2번째기사>(중초본)

정치/왕실

사직 친제 때 호위할 군사를 강화와 수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선발하자는 병조의 건의 <병조가 아뢰기를, “이번 10월 28일의 사직 친제 때 호위할 군사를 징용해야 하는 일로 강화와 수원에서만 누차 뽑아 왔으니 그곳만 힘들다는 원망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중영(中營)에 소속된 3백 명의 군병을 좌영(左營)의 예에 의거하여 돌아가면서 징용하되, 각자 군물(軍物)과 포장(布帳)을 가지고 와서 쓰게 하고 각기 그 장관이 인솔하게 하소서. 차비군(差備軍)은 전례에 의거하여 경기 상번군(上番軍)의 보솔(保率) 가운데 장정 5백 명을 오는 25일에 일제히 올려 보내는 것과 병부 표신을 함께 올려 보내도록 하는 일을 경기 감사에게 하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호위군은 도감의 포수로도 충분한데 매번 거동할 때마다 반드시 경기 지방에서 징병하여 하루의 쓰임을 위하여 한 도(道)를 수고롭혔으니 얼마나 그 폐해가 심한 것인가. 설사 의심스럽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병사를 징집하는 과정에서 혹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니, 배 안에 적국이 있다는 비유를 도리어 들어보지 못하였단 말인가.】

○(兵曹啓曰: “今十月二十八日社稷親祭時, 扈衛軍當爲徵用事, 江華·水原屢次徵來, 不無獨勞之歎. 今番則中營所屬軍兵三百名, 依左營例輪回徵用次, 各持軍物布張/帳, 各其將官率來. 差備軍則依前例以京畿上番軍保, 率中丁壯者五百名, 來二十五日一齊上送之意, 京畿監司處, 兵符標信一時上送事, 下諭何如?” 傳曰: “允.” 【扈衛之軍, 都監砲手亦足矣, 而每有舉動, 必徵兵於畿甸, 一日之用, 爲勞動一道, 何其貽害之甚耶? 設有疑畏之事, 則徵兵之際, 變或難測, 舟中敵國之喻, 顧不聞耶?】)

<광해군일기 170권, 광해군 13년 10월 19일(병술) 2번째기사>(중초본)

정치/왕실

선조의 산릉지에 대한 논의로 수원은 거리가 멀고 민호를 옮겨야 하는 폐단이 있다는 내용 인산(因山)을 수원부(水原府)로 개복(改卜)하였다. 첨지(僉知) 최철견(崔鐵堅)이 상소하여 건원릉(健元陵)의 곁은 선왕(先王)의 유명(遺命)에 관계된 곳이므로 개복해서는 안 된다는 정상에 대해 극언(極言)하니, 왕이 해조(該曹)에 명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한 다음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 이항복은 말하기를 ‘예전에 신이 상부(相府)에 있을 적에 산릉에 대한 의논에 참여하였었고 자주 선왕의 전교를 받들었습니다. 이제 인산(因山)을 복정(卜定)하는 의논을 당하여 생각건대 택조(宅兆)가 이미 정하여졌고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길(吉)한 데 합치된다고 하니, 다시 개복하는 데 대해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제5강(第五崗)으로 옮기는 데 이르러서는 이것이 처음 복정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일이 거의 이루어져 갈 무렵에 중간에 외의(外議)가 일어나 또 제5강도 버리게 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기타 기내(畿內)의 산에 대해서는 경자년에 이미 품제(品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기필코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구하노라면 이의(異議)가 별떼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력(民力)의 낭비가 애석할 뿐만이 아니라 조사(詔使)가 나올 기일이 정해진 다급한 상황입니다. 천자와 제후의 장사는 모두 날짜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제 불행하게도 기일을 넘기면서 장사지내지 못하게 될 경우, 만일 기한이 차지 않아서라고 한

다면 무슨 참혐(僭嫌)이 있을까만, 만일 복지(福地)를 얻지 못해서라고 한다면 이는 천조(天朝)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신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주야로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다행히도 수원부에다 자리를 잡지하였고 상사(相士)들이 서로 경하하면서 완벽하여 하자가 없다고 하니, 이는 불행한 가운데 큰 다행인 것입니다. 처음 정한 곳을 버린 것은 과연 불행한 것이었는데 이제 또 개복한다면 다시 불행한 의논이 있게 되는 것이 전보다 더욱 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논이 분분하여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느 때 장사지낼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신은 이번에는 결단코 개복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대개 산가(山家)의 이야기는 본래 고경(古經)에 의한 것이 아닌데 후세에 그대로 답습하여 감히 기척(棄斥)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선왕께서 드러내어 법제를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조(禮曹)에서는 오로지 오경(五經)과 사서(四書)에 의거 선비를 뽑게 하고 노장(老莊)·양묵(楊墨)·신한(申韓)·석씨(釋氏)의 가르침은 모두 축출하여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성국(星局)에서는 오행(五行)·성요(星曜) 등의 책만 취택하게 하고 모든 풍각(風角)·수부(水符)의 점술은 축출하여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산가(山家)에서는 십구방서(十九方書)만 취택하게 하고 모든 방문(旁門)의 소설(小說)들은 축출하여 시행하지 못하게 한 것이 『대전(大典)』에 환히 기재되어 시행하여 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음설(五音說)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구룡집(龜龍集)』을 보았는데 이는 원래 인본(印本)이 아니고 단지 등초(謄草)한 단간(斷簡)이어서 그것이 참으로 이순풍의 저술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또 감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이것이 진문(眞文)이라고 하더라도 당(唐)나라 때의 방기사(方技士)들은 일행(一行)·원천강(袁天綱)을 추대하여 전거의 연원(淵源)으로 삼았는데 술가(術家)에서는 이를 종주(宗主)로 받들어 지금까지 폐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이순풍의 논설은 모두 묘운(妙運)에서 나온 것으로 애당초 전거할 만한 고경(古經)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술법(術法)이 크게 전하여지지 않았습니니다. 이런 때문에 사관(史官) 송교(宋郊)가 일이 신괴(神怪)한 데 관계된다고 논하고 화타(華陀)의 의법(醫法)과 함께 아울러 정법(正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순풍이 지금 살아 있다면 그의 방술을 그래도 받들어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으나 순풍을 따르는 것도 본래 믿기에 부족한 것인데 더구나 그 글은 또 진문인지도 믿기가 어려운 데야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제 황당 무계한 말을 믿기 어려운 글에서 찾아냈으니, 다시 개복하여 이미 확정된 자리가 삼가 이를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이 분요스럽게 될까 우려됩니다. 신의 우의(愚意)에는 십구방서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모두 그 길을 끊어버려서 잡되게 나아와 대정(大政)을 혼란시키지 못하게 하고 굳게 확정하여 동요하지 않음으로써 큰일을 원만히 끝마치게 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하였습니다.

심희수는 말하기를 ‘(...) 그러나 이미 그 내용에 불길하다는 말이 있으니, 누가 감히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보장하겠으며 군부(君父)의 산릉(山陵)을 정하는 즈음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서 질언(質言)하겠습니까. 최철건의 말이 충직한테 어제 삼가 수원은 너무 멀고 일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하교를 받들었으니, 아랫사람들의 마음에 있어 누군들 탄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허다한 술사(術士)들이 아름답다고 칭도하는 것이 여기에 있으니, 끝내 확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뒤에 다시 『구룡집』 같은 단편적인 초집(抄集)이 나와서 다시 수원의 산릉 자리를 저지 동요시키게 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철건의 의논이 십분 사리에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는 감히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면서 시일을 지연시키는 의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이산해·한응인·이덕형은 병을 앓고 있어 수의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산릉에 대해 의정(議定)할 때 수상(首相)이 병 때문에 와서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 도형(圖形)과 술관들이 의계(議啓)한 내용을 영상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다시 헌의(獻議)하게 하라. 나의 뜻에 의거하여 말한다면, 수원에 새로 접지한 자리는 비록 제일 좋은 자리라고는 하지만 도리(道里)가 먼 것 같을 뿐만이 아니라 산성(山城)을 헐어서 철거하고 민호(民戶)를 옮겨 내보내야 하니, 폐단이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건원릉 안의 제5강이나 임영대군(臨瀛大君)의 묘산(墓山) 가운데서 택정(擇定)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하였다.

○改卜因山于水原府. 僉知崔鐵堅, 上疏極言健元陵旁係先王遺命之地, 不可改卜之狀, 王, 命該曹議大臣施行. 禮曹啓曰: “(…) 李恒福以爲: ‘昔臣備員相府, 得與聞山陵之議, 數奉教於先王矣. 今當議卜因山, 意謂宅兆已定, 群謀協吉, 無復改評矣. 及移就五岡, 則非初卜, 而猶是一山之內. 事垂順成, 何期外議中起, 又棄五岡? 則其他畿內之山, 庚子年間, 已經品題. 其必奔走四求, 異議蜂生, 不惟民力可惜, 詔使之來, 指日可待. 而天子諸侯之葬, 皆有日數, 今若不幸而過期不葬, 如曰日限未滿, 則何有僭嫌, 如曰未得福地, 則此不可使聞於天朝之人. 臣念及此, 日夜憂懼, 今幸而得於水原, 相土交賀, 皆曰十全, 此不幸中之大幸也. 初棄果是不幸, 今若又改, 則恐更有不幸之論, 尤有大於前者. 紛紛不定, 則何時可葬? 故臣以爲今則決不可改. 大概山家之說, 本非古經, 而後世因之, 無敢斥棄, 故我先王, 著爲定制. 於禮曹則專以五經四書取土, 凡老莊·楊墨·申韓·釋氏之教, 盡黜而不行, 於星局, 則取五行·星曜等書, 而凡風角·水符之占, 黜而不行, 於山家, 則取十九方書, 而凡旁門小說, 黜而不行, 昭在『大典』, 行之已久. 今不知五音之說, 又何所據歟. 得見所謂『龜龍集』者, 則元非印本, 只是草謄斷簡, 其眞淳風所著與否, 又不敢信也. 設使眞文唐世方技之士, 推一行·袁天綱淵源有據, 術家宗之, 至今不廢. 獨淳風所論, 皆出妙運, 初無經據, 其術不大傳. 故史官宋郊, 論以爲事涉神怪, 與華陀醫法, 竝稱爲不經. 若使淳風身在, 其術猶可宗而主之, 宗淳風者, 本不足信, 況其書, 又難信乎? 今以無稽之言, 得於難信之書, 則再改已定之地, 竊恐因此, 將不勝其紛然矣. 愚意諸不在十九書之科者, 皆絕其道, 勿使雜進, 以亂大政, 堅定不動, 以畢大事可也.’ 沈喜壽以爲: ‘(…) 然既有其言之不吉, 誰敢保其必不然, 而攘臂質言於君父山陵之際乎? 崔鐵堅辭極忠懇, 昨日伏承水原太遠, 事多不便之教, 其在下情, 孰不歎服? 而許多術士, 同辭稱美者, 只在於此, 終不得定焉. 深恐此後, 復有片段抄集, 如『龜龍』者出, 再行沮撓於水原地山也. 雖知鐵堅之論, 十分有理, 到此地頭, 不敢爲彷徨彼此, 致延時日之議也.’ 李山海·韓應寅·李德馨, 病不收議.” 答曰: “山陵議定之時, 首相病不來參, 將此圖形及議啓之辭, 送于領相處, 使之更爲獻議. 以予意言之, 則水原新卜之山, 雖曰最好, 而非但道理似遠, 山城之撤毀, 民戶之移出, 弊亦不貲. 健元陵內第五岡, 與臨瀛大君墓山中擇定, 用之何如?”

<광해군일기 2권, 광해군 즉위년 3월 29일(병진) 2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왕실

### 기자현이 정종주를 사주하여 수원 객사의 뒷산을 길지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신의 주장

우의정 심희수(沈喜壽), 당흥 부원군(唐興府院君) 홍진(洪進), 예조 판서 박홍로(朴弘老)가 아뢰기를,

“산릉의 천광(穿曠)이 흠점이 없고 흙의 품질이 매우 아름답다는 뜻은 중사와 승지가 이미 계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척수(尺數)에 맞추어 파놓고 보니 더욱 토맥(土脈)이 희고 깨끗하여 마치 비계를 잘라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습기가 없는 데다 또 거친 모래도 섞여 있

지 않으며, 간혹 흰 흙덩어리가 뭉친 곳이 있었는데 손을 대면 부서져 좋은 밀가루 같았으니, 자못 방서(方書)에서 이른바 좋은 분(粉)을 바른 섬세하고 반들반들한 살결이란 것입니다. 사면의 벽을 깎아 세워 놓자 오색이 찬란하여 비단 병풍을 두른 듯하였는데 술사(術士)들이 서로 일찍이 보지 못한 바라고 치하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일로는 이보다 큰일이 없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행스럽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감히 들어와 복명합니다.”

하니, 알겠으며 더욱 슬픔이 끝이 없다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지난번 의인 왕후(懿仁王后)의 상사를 당하여 산릉을 포천(抱川) 땅으로 정해 산릉의 일이 절반쯤 지났는데, 자헌(自獻)이 박자우(朴子羽)를 협박하여 상소토록 하여 유릉(裕陵)으로 옮겨 쓰게 했다. 그 심사는 대개 인군의 사랑을 굳게 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를 원망하여 살을 십고자 한 지 오래였다. 그런데 이제는 민생들이 복록이 없어 토목의 역사를 하고 난 뒤 또 나라의 상사를 만났는데, 자헌은 일의 옳고 그름과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을 헤아리지 않은 채 처음에는 장지(葬地)가 할아버지와 가깝다는 말을 주장하여 선왕께서 맨 처음 정했던 제 2장을 쓰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정종주(鄭宗周)를 사주하여 이른바 『구룡별집(龜龍別集)』을 만들어 내어 목릉(穆陵)으로 정한 큰 계책을 동요시키고자 하여 수원 객사의 뒷산을 길지라고 하니,** 온 나라 인심이 분개할 뿐 아니라 수만의 주민들도 일시에 통곡하였다. 다행히도 최철건(崔鐵堅)의 소장을 받아들이고, 여러 대신들의 의논을 따라 산릉을 끝내는 목릉으로 정하였다.】

○右議政沈喜壽·唐興府院君洪進·禮曹判書朴弘老啓曰：“山陵穿壙無欠，土品甚美之意，中使及承旨，想已啓達矣。穿到准尺之後，益見脈理白淨，有若截肪 既無水氣，又無麤沙之相雜，間或有白塊凝聚處，而觸手零散，狀似眞麪，殆方書所謂芳粉細膩者也。隔壁削立，五色燦爛，如圍彩屏，術士交賀以曾所未見。今日之事，無大於此，群情莫不慰幸。敢來復命。” 答曰：“知道，尤用罔極。”

【(○)史臣曰：“徂茲懿仁王后之喪，山陵定於抱川，功用過半，自獻脅迫朴子羽，使之上疏，移用於裕陵。其心蓋出於固寵，而民之欲食其肉久矣。今者民生無祿，土木之餘，又值國恤，自獻不計事之是非，民之休戚，初唱葬近祖父之說，不得用先王初定第二岡，又嗾鄭宗周，創出所謂『龜龍別集』，欲搖大計於穆陵，以水原客舍後山爲吉地，非但舉國民心憤惋，數萬居民，一時痛哭。幸而納崔鐵堅之疏，從諸大臣之議，山陵卒定於穆陵。”】

<광해군일기 3권, 광해군 즉위년 4월 22일(무인) 7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왕실

### 서양갑이 수원의 병사를 불러들여 역적 모의를 하였다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가서 전(箋)을 드리고 하례하였다. 대사면령을 내렸는데, 그 교서에 이르기를, (...) 서양갑은 본래 서자 출신으로 엉뚱한 생각을 품어 여강(驪江)에 소굴을 두고 병서(兵書)를 학습하더니 도원 결의(桃源結義)를 본받아 망령스럽게 영웅 호걸(英雄豪傑)이라 하였다. 오윤남(吳允男)의 집에 왕래하면서 간계(奸計)를 꾸몄고 김제남(金悌男)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흉서(凶書)를 짝하였다. 심복 같은 무부(武夫)를 많이 구하고 친절한 장관(將官)을 얻으려 하였다. **내외가 상응하여 은밀히 수원(水原)의 병사를 불러들이고 성세가 협조하니 도감(都監)의 군사를 출동시켜서 밤을 틈타 행동하여 역적 모의를 도모하려 하였다.** 이것을 중국에 주달하여 의거(義舉)라 하였으니 간특한 꼴이 여러 역적 중에 으뜸이다.(...)

○世子率百官，進箋陳賀。大赦頒教，其教書曰：

(…) 徐羊甲本以孽産，陰懷異志，作窟驪江，學習兵書，效義桃源，妄稱豪士。往來允男之家，綢繆奸計出入悌男之門，倚刺凶書。多求心腹之武夫，思得親切之將官。內外相應，潛招水原之卒，聲勢可助，兼發都監之軍，托行夜操，欲圖大事。奏聞天朝，是謂義舉，詭匿之狀，諸賊爲最。(…)

<광해군일기 68권, 광해군 5년 7월 15일(신미) 6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왕실

영정에 직접 제사지낼 때 대신이 참여해야 하니 잠시 영정을 수원부에 모셔두다

전교하였다. “영정에 친히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거동할 때 대신이 없이는 할 수 없으니, 서둘러 승지를 파견하여 영돈녕부사와 우의정에게 간곡히 타일러서 출사하도록 하라. 만약 끝내 출사하지 않는다면 우선 영정을 수원부(水原府)에 모셔두고 대신이 출사하기를 기다렸다가 모셔올 일로 하유할 뜻을 정원은 살펴서 하라.”

○傳曰：“影幀親祭舉動，不可無大臣而爲之，急遣承旨，敦諭領敦寧·右相，使之出仕。若終不出仕，則姑爲奉留于水原府，待大臣出仕後奉來事，下諭之意，政院察爲。”

<광해군일기 121권, 광해군 9년 11월 26일(정해) 6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왕실

선전관에게 잠시 영정을 수원부에 모셔두고 다시 하유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다

전교하기를, “영정(影幀)을 우선 수원부에 모셔두고서 다시 하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셔올 일로 서둘러 선전관을 보내 하유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다음달 초순 이전에 날을 다시 받도록 하라고 하유하라.” 하였다.

○傳曰：“影幀姑爲奉留于水原府，待更爲下諭，奉來事，急遣宣傳官下諭。” 仍傳曰：“來月初旬前改擇日，下諭。”

<광해군일기 121권, 광해군 9년 11월 27일(무자) 9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왕실

영정을 수원부에 모셔두고 수원부사와 영승전 참봉에게 잘 지키도록 하라는 전교

전교하였다. “대신은 아직도 출사할 기약이 없고 새로 임명할 정승의 출사할 시기도 언제 쯤 될지 역시 확정하기가 어려우니, 영정을 우선 수원부에 모셔 두고서 영승전 참봉(永崇殿參奉)과 본부 부사로 하여금 십분 신중을 기하여 수직하도록 하고, 승지와 예조 당상, 중사(中使)는 모두 당분간 올라오도록 하라는 일로 하유하라. 그리고 정월 초순 전으로 다시 택일해서 모셔올 일을 해조에 말하라.”

○傳曰：“大臣尙無出仕之期，新卜相臣出仕之期，亦難必其遲速。影幀姑爲奉留于水原府，而令永崇殿參奉與本府府使，十分謹慎直守，承旨·禮曹堂上·中使，竝令姑爲上來事，下諭。正月初旬前，改擇日奉移事，言于該曹。”

<광해군일기 121권, 광해군 9년 11월 29일(경인) 4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왕실

전주에서 모셔온 영정이 수원에 있으니 빨리 완결지어야 한다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합계

사헌부와 사간원이 합계하기를, “근래에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이 날로 헤이해져서 퇴보하기만 하고 진전되는 것이 없으므로 식견있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여긴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



다. 이번에 영정을 모셔오는 일은 실로 온 나라의 더없이 중대한 거조로서 이미 전주(全州)를 떠나 수원(水原)으로 와서 머물고 있으니 서울까지의 거리는 1백 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외에서 맞이하고 제사를 지낼 일에 대하여 날을 여러 번 받았다가 여러 번 물렸습니 다. 음식물을 공급하거나 다리를 수리하는 사람들이 남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천리 길에 잇닿 아 있는데 시기마저 한겨울이다보니 사람과 말이 얼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작은 폐단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수원은 부(府)이므로 관사(官舍)가 협소하고 누추 한데다 민가와 인접해 있어서 혹시 한 명의 군사라도 조심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뜻밖의 변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신하와 백성들의 애닦고 다급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영정이 서울을 지날 때 직접 지내는 제사를 가까운 시일에 날을 받아 지내도록 해서 중대한 의식을 완결 짓도록 하소서. (…)

○司憲府·司諫院合啓曰：“近來大小國事，日至解弛，有退無進，識者之寒心久矣．今此影幀奉移，實一國莫大之舉，既已離發全州，來駐水原，則去京城不能百里，而郊迎設祭，累卜累退．廚傳供億，修理橋梁者，自南抵西，千里相踵，而時值窮冬，人馬凍餒．此亦小弊，有不足慮，而水原爲府，官舍隘陋，與閭閻相接，脫有一卒之不謹，則意外之變，難保其必無．言念及此，臣民痛迫之意，抑何如也？影幀過京城親祭，請命從近改擇日行之，以完大禮．國之安危，在於三公，而百僚之統，亦在於三公，三公之於國家，不可一日不備也．臣等將鼎席不可久曠之意，已盡陳啓，而聖批以徐當處之爲教．當此人心洶懼，國是靡定之日，豈可遲延一刻，以待後日也？請亟命爰立，以濟艱難，以定國是．” 答曰：“令禮官議處．卜相事，已諭．”

<광해군일기 121권, 광해군 9년 11월 30일(신묘) 4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왕실

**친경(親耕)하는 대례를 행할 때 수원부사를 대신해서 호위에 대해 논의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친경(親耕)하는 대례(大禮)를 행할 때 호위(扈衛)하는 일들을 엄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북병장(伏兵將)·척후장(斥候將)·고환장(考喧將)<sup>3)</sup> 역시 많은 수를 조발(調發)해 써야 하는데, 시임(時任) 무신만으로는 태반이 부족합니다. 경중(京中)·경기·개성부(開城府)·황해·강원·공홍도 등의 당상·당하 가운데 한산(閑散)한 무신들을 모두 기일에 맞춰 올라오게 하고, 수원(水原)·강화(江華) 두 부(府)에 소속된 군병들에게 각자 포장(布帳)을 지니게 한 다음, 겸방어사(兼防禦使)와 부사로 하여금 직접 인솔해 와 호위를 엄하게 할 일을 미리 파발마로 알려야 하겠기에 감히 아 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수원 부사는 경기 수령으로서 친경할 때 조복(朝服)을 갖추 입고 논두렁 사이 에 서 있게 될 텐데, 그때 군사를 거느리고 호위하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 대행케 할 것인지 다시 의논해 처리하라.” 하였다.

○丙寅/兵曹啓曰：“今此親耕大禮時，扈衛諸事，不可不嚴密矣．各處伏兵將·斥候將·考喧將，亦當多數調用，而時仕武臣，太半不足．京中·京圻·開城府·黃海·江原·公洪等道，堂上·堂下閑散武臣，竝令及期上來，且水原·江華兩府所屬軍兵，各持布帳，令兼防禦使·府使，親自領來，以嚴扈衛事，預先發馬知委之意，敢啓．” 傳曰：“允，水原府使，以京圻守令，具朝服，立於田畝間，則領兵扈衛，以何人代行乎，更議以處．”

<광해군일기 125권, 광해군 10년 3월 7일(병인) 1번째기사>(정초본)

3) 고환장(考喧將) : 임금의 거동 때 소란을 금지시키는 장수.

### 정치/왕실

영정을 수원에 모셨고 수원 무학(武學)의 상소도 있으니 과거를 시행하라는 내용

예조가 계목(啓目)을 올리기를, “수원(水原)의 무학(武學) 박예남(朴禮男)이 상소하기를 ‘영정을 봉안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사람들 모두가 은택이 내려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번에 그가 상소한 것이 외람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다른 도의 예(例)에 따라 간략하게 과거 시험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또한 한때의 은전이라 할 것입니다. 상께서 재결(裁決)하시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르기를, “아된 대로 윤택한다. 문과(文科)도 아울러 대거(對舉)하여 약간 명을 시취(試取)하도록 하라.” 하였다.

○禮曹啓目: “水原武學朴禮男上疏, 影幀留住之地, 人皆希望恩澤, 今此上疏, 似爲冒濫, 而依他道例, 從略設科, 以慰群情, 亦一時之異數也. 上裁施行何如? 啓: “依允. 文科竝略設對舉.”

<광해일기 126권, 광해군 10년 4월 18일(정미) 13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왕실

수원과 서관(西關)의 영정을 서울에 봉안하는 일에 대해 예관이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다 전교하였다. “영정을 오래도록 수원(水原)에 머물러두고 있는데, 서관(西關) 역시 변방의 근심거리가 있으니, 우선 서울에 봉안토록 할 일을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케 하라.”

○傳曰: “影幀久留水原, 西關, 亦有邊虞, 姑爲奉安于京都事, 令禮官, 議處.”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2일(기미) 2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왕실

영정을 수원에서 서울로 옮기는 날짜가 결정됨에 따라 과거 시행일을 앞당기다

정원이 아뢰기를, “영정(影幀)을 수원(水原)에서 옮겨 출발시킬 날짜를 7월 24일로 가려 정했는데, 과거를 22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에서 응시할 무사들이 필시 많아 2일 안으로 시험을 끝내기는 형세상 어려울 것이니, 해조로 하여금 과거 시험 날짜를 참작해서 앞당겨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乙丑/政院啓曰: “影幀, 水原離發, 以七月二十四日推擇, 而科舉, 以二十二日設行. 京畿武士, 赴學者必多, 二日之內, 勢難畢試, 令該曹, 設場之日, 參酌進定.” 傳曰: “允.”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8일(을축)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왕실

개성부의 세조 영정과 수원부의 태조 영정을 먼저 강화로 봉안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양조(兩朝)의 영정(影幀)에 서울 밖에서 친히 제사를 지내는 일에 있어서는 이달 안에 제사를 거행한 후에 강화(江華)로 봉안하여야 하니, 예관에게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니, 예조가 아뢰기를,

“세조(世祖)의 영정은 개성부(開城府)에서부터 풍덕(豐德)을 지나 강화까지 이르는 2식(息)의 거리인데, 서울로 오는 길은 임진강(臨津江)을 건너고 또 양화도(楊花渡)를 건너야 합니다. 태조(太祖)의 영정은 수원(水原)에서 안산(安山)·부평(富平)·통진(通津) 등지를

지나 강화까지 이르는 5식(息)의 거리인데, 서울로 오는 길은 한강을 건너고 또 양화도를 건너야 합니다. 지금 만일 양조의 영정을 서울의 교외에서 맞이할 경우 선대를 생각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주상의 정성에는 유감이 없으나, 두 곳의 길이 모두 멀고 우회하여야 하니, 매우 미안합니다. 우선 먼저 강화도로 옮겨 봉안하였다가 다시 본전(本殿)으로 모실 때를 기다려 교외에서 전송한다면 인정과 예법에 합당할 것 같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강화도의 봉안할 곳을 먼저 수리한 후에 옮겨 봉안하게 하라.” 하였다.

○傳曰: “兩朝影幀, 郊外親祭, 則今月內行之後, 奉安于江華事, 令禮官議處.” 禮曹啓曰: “世祖影幀, 自開城府, 由豐德至江華, 二息程, 京路, 渡臨津, 又渡楊花渡. 太祖影幀, 自水原, 由安山·富平·通津等地, 至江華五息程, 京路則渡漢江, 又渡楊花渡矣. 今若祇迎兩朝影幀于郊外, 則其於自上追遠報本之誠, 固無所憾, 而兩地道路, 俱枉且遠, 極爲未安. 姑先奉移于江都, 待其還御本殿時, 郊外祇送, 似合情禮, 敢啓.” 傳曰: “依啓. 江華奉安處, 先爲修理後奉移.”

<광해군일기 139권, 광해군 11년 4월 3일(병진) 6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왕실

**왕이 인경궁과 경복궁에 친림함에 따라 수원 군사 4백 명을 동원하여 호위하도록 하다**  
전교하였다. “인경궁에 친림할 때, 이른 아침에 먼저 경복궁으로 가서 옛터를 살펴본 뒤에 인경궁으로 가야겠다. 오는 25일에 올라올 도방군(到防軍)은 차지 내관(次知內官)의 말에 따라 경복궁 각처의 임금이 보행할 길의 잡초를 베고 청소를 하고서 대기하게 해야 되겠으나, 도방군이 며칠 내로는 절대로 도착하지 못할테니 오는 23일부터 인근 지역의 방리군(坊里軍)을 적당수 먼저 징발하여 미리 길을 닦게 하라. 다만 잡초를 제거하고 길을 내어 통행만 하면 되도록 하고,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하라.

**또 두 궁궐을 하룻동안에 거동하게 되니 수원의 군사 4백 명을 올려보내 호위하게 하라.”**

○傳曰: “仁慶宮親臨時, 早朝先臨景福宮, 看審舊基後, 當移幸仁慶宮. 來二十五日上來到防軍, 次知內官言廳, 景福宮各處御路, 伐草修掃以待, 而只以到防軍, 數日內, 必未及役事, 則來二十三日爲始, 其近處坊里軍, 量先調發, 預爲修治. 只令伐草通路, 勿令有弊. 且兩宮一日內舉動, 水原軍士四百名, 上送扈衛.”

<광해군일기 143권, 광해군 11년 8월 21일(신미) 3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왕실

**왕의 궁궐 친림 때 수원 군사 대신에 훈련도감의 군사로 호위하게 하자는 병조의 건의**  
병조가 아뢰기를, “군사를 징발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만약 교외로 나가 밤을 지새우는 행차가 아니면 전부터 호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두 궁궐에 거동할 때 수원의 군사 4백 명을 올려보내 호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4백 명의 군사는 모두 일반 백성들인데 경기 지방이 큰 흉년을 만난 때에 또 다시 그들을 징발하여 여러 날 왕래하게 할 경우 수확의 시기를 놓쳐 추수의 희망을 거둬 잃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백성들이 제자리에서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아다니는 우환이 생길 것은 따져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수원의 군사를 올려보내도록 한 것을 우선 정지시키고 훈련 도감의 군사를 차출하여 호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兵曹啓曰：“徵兵之舉，係是重大。若非郊外行幸經夜舉動，則自前不爲扈衛，今此兩宮親幸時，水原軍士四百名，使之上送扈衛矣。臣等竊念四百之軍，皆是民也，當此畿甸凶荒，又爲徵發，累日往還，收穫失時，重缺秋成之望，則前頭流散之患，不占可知。水原軍姑停上送，訓練都監軍士除出，扈衛爲當。”從之。

<광해군일기 143권, 광해군 11년 8월 22일(임신) 5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왕실

개성과 수원에 영정을 봉안함에 따른 과거 시행에서 4명을 선출하였다는 내용

영승전(永崇殿)과 봉선전(奉先殿)에 있는 두 선조의 영정을 올려오면서 개성부와 수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한림을 보내 시험문제를 가지고 가서 개성부에서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이게 하여, 유성증(兪省曾) 등 네 명을 뽑았다.

○以永崇殿·奉先殿二祖影幀上來時，留住于開城府·水原之故，遣翰林齋書題，試士于開城府，取兪省曾等四人。

<광해군일기 144권, 광해군 11년 9월 18일(정유) 3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왕실

명의 칙은(敕銀)을 맞이하기 위해 국왕이 거동할 때 수원의 속오군을 동원해야 한다

병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홍명원(洪命元)이 가지고 오는 칙은(敕銀)을 교영(郊迎)하기 위해 거동하실 때 호위 군병들은 종전처럼 수원(水原) 속오군(束伍軍) 2백명을 동원해야 하니, 각기 포장(布帳)과 군물(軍物)을 가지고 본부의 중군이 통솔할 수 있게 오는 10월 20일 까지 서울에 도착하도록 경기 감사와 방어사에게 병부(兵符)와 신표(信標)를 동시에 내려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이침이 큰 옥사를 자주 일으켜 임금까지 공갈하였는데 임해(臨海)·능창(綾昌)·진릉(晉陵)의 변란에서부터 영창 대군(永昌大君)과 최기(崔沂)의 옥사에 이르기까지 옥사가 일어나지 않은 해가 없었고 그리하여 진후에 죽은 자만도 무려 수천명에 달했다. 왕도 늘 위태위태 두려움을 느끼고는 궁성을 빙 둘러 자위하고 딱다기를 치며 순찰을 돌게 하는 등 마치 큰 적과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했고, 모든 거동 때마다 경기의 병력을 동원하고 도성의 사대문을 엄히 걸어 잠갔다. 이이침·유희분·박승종 이 셋이 심복이 되어 일을 꾸민 자들인데, 역옥은 모두 이이침이 꾸며낸 것이고 유희분은 매관 옥옥(賣官鬻獄)을 맡았으며 박승종은 궁실을 영건하였다고 한다.】

○兵曹啓曰：“今此洪命元奉來敕銀，郊迎舉動時扈衛，依前例，水原束伍軍兵二百名，各持布帳軍物，本府中軍領率，今十月二十日，京中逢點事，請京畿監司·防禦使處，兵符標信，一時下送。”從之。【爾瞻屢起大獄，恐喝人主，自臨海·綾昌·晉陵之變，以至永昌大君·崔沂諸獄，無歲不作，前後死者，無慮數千百人。王亦岌岌自畏，環宮城自衛，擊柝巡邏。若對大敵，凡舉動，輒徵兵畿甸，嚴閉都城四大門。爾瞻·希奮·承宗三人者，以肺腑用事，逆獄皆出爾瞻，賣官鬻獄，起於希奮，營建宮室，自承宗云。】

<광해군일기 157권, 광해군 12년 10월 17일(경신) 6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왕실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수원부에 도착하였는데 도로가 수렁이었다는 내용

날이 저물 무렵에 과천을 떠나 사근현(沙近峴)에 이르니, 날이 이미 땅거미가 졌다. 돌아보

니 들불이 곳곳에 번져 타는데, 혹 적병이 뒤따라 이르렀는가 여겨 군정(群情)이 의구하였다. 마침 자전의 기후가 편찮아 대가가 한참 멈추어 있는데, 후군(後軍)이 요란하여 저희끼리 외치며 다시 부오(部伍)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군문(軍門)이 전령(傳令)하여 산위에 진치게 하고서야 비로소 조금 진정되었다. 한밤이 될 무렵에 대가가 수원부(水原府)에 이르렀는데, 도로가 수렁인데다가 사람과 말이 굶주려 호종하는 신하들이 반도 넘게 따라 오지 못하였다. 상이 험난한 길을 오느라 기후가 매우 편찮으므로 훈척(勳戚) 두어 사람이 입시하고 대소 관원이 황급하였는데 이윽고 평상을 회복하였다. 부리(府吏)와 향소(鄉所) 등이 흠어져 햇불을 내지 않았고 또 어선(御膳)을 올리지 않았으므로 정원이 군율(軍律)을 쓰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그러나 마침내 주벌하지 못하였다.

○日將夕，始發果川，到沙近峴，日已曛黑，回望野火，處處延燒．或謂賊兵迫至，群情疑懼．會慈殿氣不平，駐駕良久，後軍擾亂，自相號呼，無復部伍．軍門傳令，使之結屯山上，然後始稍定．夜將半，駕次水原府，道路泥濘，人馬饑餒，扈從諸臣，太半有不及者．上跋涉泥露，氣甚不寧，勳戚數人入侍，大小遑遑，俄而復常．府吏及鄉所等潰散，不出炬火，又不進御膳．政院請用軍律，上從之而竟不得捕誅．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9일(계사) 11번째기사>

#### 정치/왕실

인조가 수원부에 머물다

대가가 직산현을 떠나 수원부(水原府)에 머물렀다.

○甲辰/大駕發稷山縣，夕次水原府．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20일(갑진)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인조가 과천현에 머물다

대가가 수원부를 떠나 저녁에 과천현(果川縣)에 머물렀다.

○乙巳/大駕發水原府，夕次果川縣．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21일(을사)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이괄의 난 때 인조가 수원에 머물다

상이 계운궁(啓運宮)의 행장(行狀)을 내려 대제학 김류(金瑬)에게 묘지명(墓誌銘)을 써 올리도록 하였다. 그 지문(誌文)은 다음과 같다.

(…) 갑자년 봄 역적 이괄(李适)이 군대를 이끌고 서울에 육박하여 왔을 때 대가가 남쪽으로 옮겨 수원(水原)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따르는 자들이 모두 두려움에 싸여 뿔뿔히 흩어질 기미를 보이자 주머니를 털어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었고, 대비(大妃)를 극진한 효성과 공경으로 받들고 곡진하게 순종하면서 여전히 부드러운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恭惟我聖上，繼承大統之越四年丙寅正月十四日戊午，啓運宮寢疾，卒于慶德宮之會祥殿，春秋四十九。(…) 甲子春，賊臣适，舉兵薄京邑，車駕南遷，次水原，從者色懼，皆懷潰散，乃罄橐而分之坐，牢其心．奉大妃，極盡孝敬，委曲承順，愉愉如也． (…)

<인조실록 12권, 인조 4년 3월 21일(갑자) 7번째기사>

정치/왕실

예장(禮葬)으로 임금이 행차할 때 수원부 군병을 징발하여 호위하는 것은 폐습이다

수원부(水原府)의 군병을 징발하여 들어와 호위하게 하였는데, 이는 예장 때의 거동을 위한 것으로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 광해(光海) 시대에는 무릇 거동이 있을 때마다 으레 경기의 군병을 징발하여 호위하게 하였으므로 백성이 농사 시기를 잃게 되고 또 오고 가는데 시달렸으므로 식자들이 한탄해 온 지 오래였다. 그런데 성명의 시대에도 그 폐습을 답습하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徵水原府軍兵入衛. 以禮葬時將有舉動也, 此舉, 非古也. 光海時, 凡有舉動, 例徵畿兵以衛, 民失農時, 疲於道路, 識者之歎久矣. 聖明之世, 未免循蹈弊習, 可勝歎哉!

<인조실록 12권, 인조 4년 4월 24일(병신) 2번째기사>

정치/왕실

행행할 때 수원과 남양의 군사에게 호위하게 했으나 이번에는 훈련도감 군사만으로 호위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전일에 행행할 때에는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의 군사들에게 모두 호위하게 하였으니, 이번에 서울로 돌아갈 때에도 역시 그전처럼 징병(徵兵)을 해야 하겠지만, 농사철이 바야흐로 가까워 왔으니 백성들의 일이 염려됩니다. 도감 군병만으로 수가(隨駕)하여 도성으로 돌아가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備局啓曰: “前日行幸時, 水原·南陽之軍, 竝令扈行. 今此回鑾時, 亦當依前徵兵, 而農時方急, 民事可念, 請只令都監軍兵, 隨駕還京.” 從之.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3월 29일(병신) 3번째기사>

정치/왕실

선조의 산릉을 옮길 장소로 수원은 관사와 민호 1천여호를 옮겨야 하므로 불가하다

관상감이 아뢰기를, “신들이 경자년 이후로 인산(因山)할 때의 등록(騰錄)을 가져다 살펴 보면서 여러 술관(術官)들과 상의해 보았더니, 치부(置簿)된 곳이 많긴 하지만 쓸 만한 자리가 없다고들 하기에, 근년에 원소(園所)를 의논하여 정할 때 거론된 곳들을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곳이 고양군(高陽郡) 자리, 교하읍(交河邑)이 들어서 있는 곳, 수원(水原)의 객사 뒤편, 포천(抱川)의 신평(新坪), 양주(楊州)의 와촌(瓦村), 광주(廣州) 임영 대군(臨瀛大君)과 이지방(李之芳)의 두 묘, 고양 김천령(金千齡)의 묘 등 모두 여덟 곳이었는데, 그곳도 모두들 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水原)의 자리가 쓸 만하다고 말하나 철거해야 할 관사(官舍)와 민가(民家)가 무려 1천여 호나 되기 때문에 당시 의논하여 정할 때에 이미 바로 그 사유를 아뢰었으니, 지금 그곳을 가서 본다 하더라도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 광주(廣州)는 일찍이 유릉(裕陵)의 자리를 잡을 때 선조 대왕께서 ‘무엇 때문에 강 건너편에 쓰려고 하는가.’ 하고 분부하셨으니, 지금 가서 본다 해도 그 곳을 쓰기는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수원과 광주는 가서 볼 필요가 없다. 여러 능 가운데 쓸 만한 곳이 있거든 모두 가서 살펴 보도록 하라.” 하였다.

○觀象監啓曰: “臣等取考庚子以後『因山騰錄』, 且與諸術官相議, 則以爲: ‘置簿處雖多, 而

無可用之地.’ 故頃年園所議定時往審，則其最優者，高陽郡基·交河邑居·水原客舍後·抱川新坪·楊州瓦村及廣州之臨瀛大君李之芳兩墓·高陽之金千齡墓，凡八處，而皆以爲不可用。水原之山，則雖云可用，而官舍及民戶應撤去者，多至千餘戶，故其時，已卽陳啓。今雖往見，亦無益矣。且廣州則曾在裕陵定山時，宣祖大王有何爲過江用之之教。今雖看審，用之未安，何以處之?” 答曰：“水原·廣州不必往見。諸陵中如有可用之處，亦皆往審。”

<인조실록 22권, 인조 8년 3월 18일(무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능소를 참배할 때 수원부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호위하다

상이 병조에 하교하였다.

“지난번 능소에 참배하던 날,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 호위하였는데, 모두 소매 폭이 넓으니 그것은 바로 한가로운 자나 입는 옷이다. 어찌 창을 베개 삼아 계엄하는 정신이겠는가. 또한 군중(軍中)의 예에 갑옷 입은 군사는 본래 몸을 굽혀 절하는 예가 없으니, 어가(御駕)가 지날 때 두 손을 마주 잡고 몸을 편 채 꿇어앉아서 단지 경건하게 대기하는 예만을 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능소에 나갈 때에는 이에 의해 거행하라.”

○上下教于兵曹曰：“頃於拜陵之日，水原府使率軍入衛，而皆着闊袖。此是閑者之服，豈枕戈戒嚴之意乎？且軍中之禮，介冑之士本無鞠躬拜禮。駕過之時，使之拱手長跪，只行祇候之禮可矣。前頭陵幸時，依此舉行。”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8월 27일(임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변사기가 수원부사에 그대로 제수되었을 때 이를 반대한 홍무적과 임의백을 서용하자

(…) 후원이 아뢰기를, “이상진(李尙眞)도 신면(申冕)을 논핵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민응형(閔應亨)의 피사(避辭)로 말미암아 외직에 보임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역시 불러다 써야 할 것입니다. 신면이 착한 무리를 모함하려 했던 사실을 그 누군들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응형이 늙어 혼미한 나머지 남의 말만 듣고는 그만 피사 가운데에 ‘자기들끼리 분열되었다.’는 말을 하였으니,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신면의 뜻대로 되었다면 회보나 상진 같은 이는 필시 화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사기(邊士紀)가 수원(水原)에 잉입(仍任)되자 홍무적(洪茂績)과 임의백(任義伯)이 역시 그 일을 논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혹 고변 대간(告變臺諫)이라고까지 일컬었으니, 의백 또한 불러다 써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무적의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듯하다.” 하였다. (…)

○上御書講，講『書傳』『泰誓』。講訖，知經筵李厚源曰：“李回寶爲人，不至端的，而再上疏，敢言自點之罪，如此之人，今可收用。” 上曰：“卿言是矣。” 厚源曰：“李尙眞亦論劾申冕者也。其時因閔應亨之避辭，雖已補外，今則亦可召用也。冕之欲構禍於善類，人孰不知，而閔應亨老昏，只聽人言，乃於避辭中，以自中分裂爲言，不亦異乎？冕若得志，則如回寶·尙眞，必不免禍。至於士紀之仍任水原也，洪茂績·任義伯亦論其事，其時人或謂之告變臺諫，義伯亦可召用也。” 上曰：“洪茂績之言，似出於誠也。” (…)

<효종실록 8권, 효종 3년 1월 21일(갑오) 2번째기사>

정치/왕실

배릉(拜陵)할 때 서울에 남는 군사를 수원 군사 대신에 다른 군영의 군사를 징발하다.

상이 주장에 나아가 『서전』 주관편(周官篇)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특진관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배릉(拜陵) 때 어영군(御營軍)도 어가를 따라가야 합니까. 군사들에게 출입을 분주하게 하여 노고를 익숙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원두표가 아뢰기를,

“유도(留都)하는 군사는 으레 수원(水原)의 군사를 썼으나, 이제는 타영(他營)의 군사를 징발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

○上御書講, 講『書傳』『周官』. 講訖, 特進官元斗杓曰: “拜陵時, 御營軍亦當隨駕乎? 令軍士出入奔走, 以習勞苦可矣.” 上曰: “然.” 斗杓曰: “留都之兵, 例用水原之卒, 今則請徵他營兵.” 上許之. (…)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윤7월 23일(병진) 2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의 호장 집 뒷산이 산릉의 자리로서 최고라는 예조판서 윤강(尹絳)의 주장

예조 판서 윤강, 관상감 제조 이용시가 아뢰기를,

“신들이 이번에 살펴본 곳이 장단(長湍)의 김영렬(金英烈), 교하(交河)의 윤반(尹礪), 광주(廣州)의 정난종(鄭蘭宗), 남양(南陽)의 홍언필(洪彦弼)·홍기영(洪耆英), 광주(廣州)의 이증(李增) 등의 묘산(墓山)과 양재역(良才驛) 뒷산, 한강 북변의 산, 왕십리 해동촌(海東村) 그리고 이충작(李忠綽)의 묘산과 정토(淨土) 근처 등지로서 그 모두를 지관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상론하게 하였으며, 이원진·윤선도도 각기 품평을 가하여 별단으로 써서 올리고, 그 중에서 조금 좋다고 생각되는 네 곳은 그림으로 그려서 올립니다.”

하니, 상이 윤강에게 하교하기를,

“그림으로 올라온 산 네 곳 중에서 제일 쓸 만한 곳부터 차례를 매겨 들어오라.”

하자, 윤강이 답하기를,

“수원의 호장(戶長) 집 뒷산이 용혈(龍穴) 사수(砂水)가 진선 진미하여 그야말로 천재 일우의 곳으로 다른 산과는 단연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반의 묘소 등 네 곳은 결코 크게 쓸 곳이 못되는데, 상의 하교에 따라 여러 지관으로 하여금 차례를 매기라고 하였더니, 교하 윤씨의 산이 가장 낮고 남양이 그 다음이며 광주 정씨의 산이 또 그 다음이고 한강 북변이 네 번째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禮曹判書尹絳·觀象監提調李應著啓以: “臣等今所看審處. 長湍·金英烈·交河尹礪·廣州鄭蘭宗·南陽洪彦弼·洪耆英·廣州李增等墓山及良才驛後山·漢江北邊山. 往十里海東村·李忠綽墓山淨土近處, 竝令地官, 一一詳論, 李元鎮·尹善道亦各評品, 別單書入, 而其中稍優四處, 圖刑以進云.” 上下教于尹絳曰: “四處山圖中合用者, 等第以入.” 尹絳對以: “水原戶長家後山龍穴砂水, 盡善盡美, 此實千載一遇之地, 斷不可比論於他山 尹礪等四處山, 決不合於大用, 而因上教, 使諸地官等第, 則交河尹山最勝, 南陽次之, 廣州鄭山又次之, 漢北山居第四云.”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15일(갑진) 3번째기사>

정치/왕실

효종의 능침으로 홍제동과 수원을 두고 심지원, 송시열 등이 논의하다



상이 양지당에 나아갔는데, 영돈녕부사 이경석, 연양 부원군 이시백,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심지원, 관중추부사 송시열, 예조 판서 윤강, 대사헌 송준길, 우부승지 권대운이 입시하였다. 상이 경석 등을 보자 통곡하였고, 경석 등도 엎드려 흐느끼며 우선 약물을 써서라도 몸을 보호할 것을 아뢰었고, 다른 재상들도 서로 이어 누누이 말들을 하니, 상이 병환이 이미 거의 다 나았다고 답하고, 이어 좌상·예판과 경기 관내의 산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지원이 아뢰기를,

“나라에서 쓸 만한 곳은 멀리는 홍제동이고 가까이는 수원의 산으로, 그 두 곳 밖에는 골라 쓸 곳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돈녕이 선묘(宣廟) 때의 일을 알고 있을 것인데, 그때는 무슨 까닭으로 홍제동을 쓰지 않았던가?”

하자, 경석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을해년 국장 때도 그 곳을 쓰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쓰지 않았는데, 이는 바로 거리가 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제동은 거리가 멀어 불편하니 수원 산을 썼으면 좋겠다.”

하자, 시열이 아뢰기를,

“수원은 국가 관방(關防) 지대로서 선대왕께서 일찍이 마음을 두셨던 곳인데, 하루아침에 헐어버려 군과 민이 살 곳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선대왕의 평상시 뜻이 아니지 않을까 염려이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대왕께서도 홍제동이 길지(吉地)라는 것은 듣고서도 거리가 먼 것이 싫어서 자손들도 거기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는 것이다.”

하니, 시열이 아뢰기를,

“주자(朱子) 산릉론(山陵論)에 의하면, 부양(富陽)의 손씨(孫氏)가 일어난 땅이 나라의 능자리로 적합하다고 하였는데, 송(宋)의 도읍지 임안(臨安)에서 부양까지의 거리가 꽤 멀니다. 이것을 보면 옛 사람들도 길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거리의 원근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 모두는 홍제동이 가장 길지로 쓸 만하다고 하였으나, 윤강만은 혈형(穴形)이 너무 길어 흠이라고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만약 수원 산을 쓰기로 하면 이민(移民)의 대책을 미리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태복시(太僕寺)의 둔전이 수원 경내에 많이 있어 훈련 도감(訓練都監)·총융청(摠戎廳)의 둔전과 바닷가의 제언(堤堰) 쌓을 만한 곳을 모두 백성의 전답과 환급(換給)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자, 시열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만년 장존하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수원은 그 뛰어난 지세로 보아 지금 비록 잠시 폐지가 되더라도 끝내는 관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자(程子)도 오환(五患)을 논하면서 성곽(城郭)이 가장 나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지원이 아뢰기를,

“수원에는 원래 성곽은 없습니다.” 하였다. (…)

○上御養志堂，領敦寧府事李景奭·延陽府院君李時白·領議政鄭太和·左議政沈之源·判中樞府事宋時烈·禮曹判書尹絳·大司憲宋浚吉·右副承旨權大運入侍．上見景奭等慟哭，景奭等亦俯伏飲泣，先陳藥物保護之道，他相相繼縷縷，答以所患既盡差愈，仍與左相禮判，商議圻甸諸山．之源曰：“可合國用之處，遠則弘濟洞，近則水原山，不過擇於斯二者而用之．”上曰：“領敦寧及知宣廟朝事，其時弘濟洞，何故不見用？”景奭對曰：“此乃天定，豈非有待而然？”太和曰：“乙亥國葬時，有欲用之議，而終不用，正坐路遠也．”上曰：“弘濟洞路遠不便，欲用水原山矣．”時烈曰：“水原爲國家關防，先王所嘗留意處也，一朝毀撤，使軍民流離失所，恐非先王平日之意也．”上曰：“先王亦嘗聞弘濟洞之爲吉地，而嫌其路遠，以爲爲子孫者不可用云．”時烈曰：“朱子山陵論以爲：‘富陽，孫氏發迹之地，宜用國陵．’宋都臨安，去富陽頗遠．可見自古擇地，不拘道里之遠近也．”諸臣皆以弘濟洞爲最吉可用，而獨尹絳，以穴形太長爲欠．太和曰：“若用水原山，則移民之策，不可不預講．太僕屯田，多在水原境內，訓練都監摠戎廳屯田及海邊可築堰處，一併換給民田似可．”時烈曰：“自古無萬年國祚．水原形勝，今雖暫廢，終必爲關防．程子論五患，而城郭爲最忌．”之源曰：“水原本無城郭矣．” (…)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16일(을사) 3번째기사>

#### 정치/왕실

효종의 능침으로 홍제동과 수원을 두고 윤강과 심지원 및 송준길과 송시열 등이 논의하다 총호사인 좌의정 심지원, 예조 판서 윤강, 관상감 제조 오준, 산릉 도감 제조 정치화, 호군 이원진 등이 수원 산을 다시 살펴보고 돌아와 서계를 올리고, 아울러 연서(延曙)와 한강 북쪽 그리고 왕십리 등 세 곳의 산도(山圖)를 올리니, 상이 영의정 정태화, 관중추 송시열, 대사헌 송준길, 첨지 윤선도, 호군 이원진을 부르게 하여 양지방에서 인견하였다. 상이 지원에게 묻기를,

“수원 산을 다시 살펴보니 경의 뜻에는 어떻던가?”

하니, 답하기를,

“지형 산세가 매우 훌륭하고 둘러싸인 형세가 흠결이 없어 신의 범안으로도 좋게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곳 산들은 모두 흠결이 있어 나라 장지로 는 맞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원 산에 있어 정혈(正穴)을 지점한 곳이 윤선도와 이원진의 소견이 달라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윤승지·이원진도 각기 소견대로 말해 보라.”

하였다. 【선도(善道)는 일찍이 선대왕의 사부였기 때문에 상이 그의 이름을 바로 부르지는 않은 것이다.】 선도는 원진이 지점한 곳이 협락(峽落)이라고 하고, 원진은 선도가 좋다는 곳은 호사(護砂)라고 하면서 계속 논쟁을 하다가, 선도가 또 아뢰기를,

“사세의 어렵고 쉬운 것과 거리의 멀고 가까움은 그만두고 오직 산의 우열만을 들어 논하기로 하면 홍제동이 당연히 제일이고 수원은 그 다음이지만, 수원도 대지는 대지여서 그 산만 쓰더라도 그보다 다행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홍제동은 지관 무리들만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하는 곳이 아니라 예로부터 대지라고 하는 곳인데, 윤강 혼자서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니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니, 윤강이 아뢰기를,

“신이야 무슨 소견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원진 역시 현무(玄武) 부리[觜]에 해당하는 괴혈(怪穴)이라고 하였습니다. 괴혈치고 나라 장지에 맞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도는 비록 홍제동을 극찬하고 있지만, 신의 생각에는 영릉(英陵)이 지기(地氣)를 다 받은 곳이라면 그곳은 바로 지엽(枝葉) 사이에 맺어진 혈입니다. 선도가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뜻을 신도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지원이 아뢰기를,

**“홍제동과 수원 이외에는 적당한 곳이 전혀 없어 그 둘 중에서 고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원이 가깝기도 하고 또 흉해도 없으니 그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그러면 산릉에 관한 것은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수원도 멀다는 느낌이지만 다른 데 적당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정한 것이다.”**

하고, 이어 뜯어 옮겨야 할 민가와 경작을 못하게 될 전답이 도합 얼마나 되는가를 물었다. 영상이 별지(別紙)로 작성된 것을 올리며 아뢰기를,

“가구 수는 5백여 채이고 전답은 7백여 결(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이 잘 상의하여 민원이 없도록 좋게 처리하라. 그리고 그 고을의 소재지는 어느 곳으로 옮기려는가?”

하자, 지원이 대답하기를,

**“그 고을의 북쪽 고등(高等) 마을로 옮겨야지요.”**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관중추와 대사헌도 각기 소견을 말해 보라.”

하니, 시열이 대답하기를,

“신의 어리석은 소견은 저번에 이미 아뢰었지만, 오늘 일이 아무래도 미안한 데가 있어 부득이 다시 아뢰어야겠습니다. 홍제동은 지금의 지관들만 좋다고 하는 곳이 아니라 옛부터 두고두고 일컬어 오던 곳인데, 어찌하여 윤강의 말만 듣고 버리려는 것입니까? 윤강의 지술(地術)이 전후 어느 지사보다도 나은지 그것은 신이 알 수 없으나, **성상의 뜻이 이미 수원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못 신하들이 모두 그 뜻에 순응하기 위하여 다른 말들이 없는 것입니다.** 성상이 만약 홍제동에다 뜻을 두신다면 여러 신하들도 틀림없이 생각을 같이 하여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고, 준길은 아뢰기를,

“만약 홍제동이 가장 길지임을 안다면 거기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인데, 윤강은 나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하여, 신으로서의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기 때문에 강력하게 따지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수원이 만약 꼭 길지만 된다면야 관방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라도 따질 겨를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에서 열까지 빈틈없는 곳이 아니라면 왜 가장 길지인 홍제동을 두고 꼭 둘째 가는 수원을 쓰려 하십니까? 그뿐 아니라 그 지세로 보아 만세 후에라도 오환(五患)을 면치 못할 염려도 있는 곳이니, 성상께서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니, 지원이 아뢰기를,

“만약 만세 이후를 염려하기로 들면 어느 곳인들 그 환이 없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홍제동 역시 일개 조각산이어서 뒷 염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였고, 태화는 아뢰기를,

“시열이 지적한 ‘뜻에 순응하려고만 한다.’ 는 말이 듣기에 매우 언짢습니다. 신도 처음에는 홍제동이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선대왕께서 영릉(英陵)이 멀다고 하셨다는 하교를 받고서는, 그 밖에 쓸 만한 곳으로는 수원 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소견을 아뢰지 않았던 것인데, 못 논의들이 그러하니 그 참 민망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대왕이 계셨을 때 미리 산릉을 정해두려 하시면서도 홍제동은 너무 멀다고 하셨는데, 자손된 도리로서 그곳은 아마 쓰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였다. 시열이 또, 건원릉(健元陵)이 있는 여러 산등성이 중에도 틀림없이 쓸 만한 곳이 있을 것이라고 누누이 아뢰니, 상이 좌상에게 이르기를,

“그곳 산등성이들을 경이 두루 살펴보지 않았던가?”

하니, 그가 답하기를,

“신이 두루 살펴보았으나 쓸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파하고 나간 뒤에 예조가 내일 본조의 당상관과 산릉 도감·관상감의 제조 등을 수원으로 보내 재혈(裁穴)을 하고 오게 할 것을 청하여, 그대로 따랐다.

○戊申/摠護使左議政沈之源·禮曹判書尹絳·觀象監提調吳竣·山陵都監提調鄭致和·護軍李元鎮等再看水原山, 還奏書啓, 併進延曙·漢江北往十里三處山圖. 上命招領議政鄭太和·判中樞宋時烈·大司憲宋浚吉·僉知尹善道·護軍李元鎮, 引見于養志堂, 上問之源曰: “再審水原山, 於卿意何如.” 對曰: “形勢甚偉, 環抱無缺, 雖臣凡眼, 亦知其好. 三處山, 則皆有所欠, 不合國用矣. 但水原正穴, 尹善道·李元鎮所占處不同, 似難斷定.” 上曰: “尹承旨·李元鎮, 各陳所見可也.” 【善道曾爲先王師傅, 故上不名.】 善道以元鎮所定處爲峽落, 元鎮以善道所譽處爲護砂, 爭論不已, 善道又曰: “無論事勢之難易, 道里之遠近, 只論山之優劣, 則弘濟洞當爲第一, 水原次之, 而水原亦自爲大地, 誠用此山, 幸莫甚矣.” 又曰: “弘濟洞, 非但地官輩同辭稱美, 自古以爲大地, 而尹絳獨以爲有欠, 未可知也. 絳曰: “臣有何所見, 而李元鎮亦以爲: ’玄武觜之怪穴, 安有怪穴, 而可合國用乎?’ 善道雖盛贊弘濟洞, 臣意英陵爲專氣, 則此乃枝葉間結穴. 善道之以爲第一者, 臣亦未曉也.” 之源曰: “弘濟洞·水原外, 絕無可合處, 勢將擇於斯二者也.” 上曰: “水原便近, 且無凶害, 定用可也.” 太和曰: “然則山陵事, 已牢定矣.” 上曰: “水原予猶以爲遠, 而他無可合處, 故定于此爾.” 仍問撤移家戶與廢耕田, 都計幾許. 領相以所書別紙進曰: “家戶五百餘, 而田七百餘結矣.” 上曰: “卿等商議好爲之, 俾無民怨也. 邑居則欲移於何處耶?” 之源對曰: “當遷於本府北高等村矣.” 上又曰: “判中樞·大司憲, 亦各陳所見可也.” 時烈對曰: “臣之愚見, 旣陳於前, 而今日之事, 終有所未安, 不得不更達矣. 弘濟洞非但卽今地官之稱譽, 自古盛稱之地, 何可以尹絳之言, 而棄之? 絳之地術, 勝於前後地師, 臣不敢知, 而 上意既在水原, 故群臣皆將順無異辭. 上意如在弘濟洞, 諸臣詢謀, 亦必爛熳同歸矣.” 浚吉曰: “若知弘濟洞之爲最吉, 則用之便當, 而尹絳之短之, 諸議之稱美, 臣不能的知, 故不得極力爭辨矣.” 時烈曰: “水原若決知爲吉地, 則關防之重, 有不暇言, 而如非十分眞的, 何可舍最吉之弘濟洞, 而必用其次之水原也. 且其地勢, 萬歲之後, 恐不免五患, 願聖明之深思也.” 之源曰: “若以萬世後爲慮, 則安知何處無此患乎? 弘濟洞亦一殘山, 不無後慮矣.” 太和曰: “時烈將順之言, 極爲未安矣. 臣初亦以弘濟洞爲可用, 而及承

先王以英陵爲遠之教，此外可用，只有水原，故臣非不知其難便，而不敢有所陳達矣。群議如此，此爲可悶。” 上曰：“先王臨御之日，欲預定山陵，而以弘濟洞爲太遠，其在子孫之道，恐難用也。” 時烈又以健元陵諸岡中必有可用之處縷陳，上謂左相曰：“卿不遍看諸岡乎？” 對曰：“臣既遍看，而未有合用者矣。” 既罷黜，禮曹請以明日，發送本曹堂上及山陵都監觀象監等提調于水原，裁穴而來，從之。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19일(무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효종의 능침으로 수원이 적당하지 않으나 다른 곳을 더 알아보자는 부호군 이상진의 의견 부호군 이상진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수원 산은 행룡(行龍)이나 바다의 혈이 느릿느릿하고 흐리터분하여 조금도 청수하거나 존귀한 기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局勢)마저 평평하고 낮아 아늑하고 야무진 곳이라고는 없는데, 거기가 어떻게 대장(大葬) 자리가 될 것입니까. 서울에서 백 리 안쪽에도 틀림없이 고를 만한 곳이 있을 것이니 바라건대 날짜를 조금 늦추고 널리 묻고 찾아, 대사에 있어 미진한 염려가 없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상소 내용을 보니 지성에서 나온 말이다. 내 마땅히 유념하리라.” 하였다.

○副護軍李尙眞上疏略曰：水原之山，行龍作穴，懶慢模糊，無一分清秀尊貴之氣勢。且其局勢平低，實無關鎖繁固處，此何足爲大葬之地乎？ 圻甸百里內，亦必有可擇處，請少寬日月之限，廣詢博求，俾大事無未盡之患。

上答以：“疏辭出於至誠，予當留念。”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0일(기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총호사 심지원이 윤선도 및 산릉도감의 관원과 함께 수원에 재혈하러 가다

총호사 심지원이 이상진의 상소에 대하여 유념하겠다는 비답을 내렸다는 이유로 아뢰기를, “신들이 이 상태에서는 감히 재혈을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미 정한 국통 자리인데 한 개인의 망령된 논의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즉시 가서 재혈하라.” 하자, 지원이 이에 윤강·이응시·이원진·윤선도와 산릉 도감의 도청·낭청 등과 함께 다시 수원으로 갔다.

○摠護使沈之源以李尙眞疏，既以留念批下，臣等不敢遽爾裁穴，稟啓，上答以：“已定之國陵，何有於一人之妄議，卽進裁穴可也。” 之源仍與尹絳·李應蕃·李元鎮·尹善道及山陵都監都廳郎廳等，更往水原。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0일(기유) 3번째기사>

#### 정치/왕실

함릉군 이해가 송시열의 의견을 지지하며 효종의 능침으로서 수원을 반대하다

함릉군(咸陵君) 이해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수원은 바로 3도(三道) 도회지로서 분명히 오환(五患)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덕망 있고 준결한 인물이 그 고장에서 나왔다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지난 일들을 증험해 보면 장래도 미루어 알 수 있는 일입

니다.”

하고, 이어 윤강이 지리를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음을 꾸짖고는 홍제동을 극구 찬미한 다음 그 상소문을 내려 대신·유신들과 반복하여 논란할 것을 청했는데, 상이 내용을 알았다고만 답하였다. 상진과 이해는 시열의 눈에 동조하는 자들로서 기한을 늦추어 널리 찾아보자는 상진의 말은 그런대로 핑계라도 된다면, 이해는 곧바로 논란을 주장하고 있으니, 그 한두 유신들이 과연 얼마만큼 훤히 아는 법안(法眼)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여러 지관 들로서는 찬미하는 곳이 홍제동 아니면 수원 두 곳 뿐이었다. 홍제동은 선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쓸 곳이 못된다는 하교가 있었다면, 수원이 비록 만세 이후에 오환이 있을지라도 의관(衣冠)을 간직해둘 곳이 수원 말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시열이 쓸 수 없는 자리임을 한 번 선창하자 조정 전체가 그리로 쏠려 수원을 쓰지 말자는 말이 무슨 청의(淸議)라도 되는 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의 상소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어리석은 짓이라 하겠다.

○庚戌/咸陵君李澥上疏略曰：水原，正當三道之會，實是五患之地。且自古未聞有碩德雋士，出於其地。已往之驗，此焉可推。仍諫尹絳爲不講於相地之術，盛稱弘濟洞，請下此疏，令大臣·儒臣，反復論難，上答以疏辭知道。尙眞與澥，同附時烈之論者，而尙眞緩期廣救之說，猶有可諉，澥則直以論難爲言，未知一二儒臣，果有洞見法眼耶？伊時諸地官之所贊美者，不過弘濟·水原兩山，而弘濟洞先王既有遠不可用之教，則水原雖有萬世後五患之慮，衣冠之藏，捨此何之。而一自時烈倡不可用之議，舉朝靡然，水原勿用，作一淸議，澥之疏，蓋亦出此，可謂癡矣。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1일(경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이시백이 상소하여 효종의 능침으로 수원을 반대하다

연양 부원군 이시백이 연거푸 세 차례나 차자를 올려 수원은 쓸 자리가 못된다고 극구 진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시 번거롭게 말라고 답하였다.

○延陽府院君李時白連上三劄，極陳水原之不可用，答以更勿煩言。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2일(신해) 2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효종의 능침으로 수원에 관한 상소에 대해 품신하고 들어오라고 승지에게 명하다 상이 총호사 이하를 양지당에서 인견하고 수원 산 건을 두고 반복하여 논란하면서 소장이 분분한 것을 매우 민망히 여겼다. 승지 강백년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요즈음 산에 관계된 상소문은 먼저 품신을 하고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는데, 그후 대사간 이정기 등이 논하기를,

“상소문이나 차자를 품신부터 하고 들어오라고 하신 하교가 매우 미안한 것이었는데도 입시 승지로서 끝까지 그에 관한 말 한 마디 없었으니, 이는 유운(惟允)의 도리에 있어 자못 흠결이 있는 일입니다. 그를 추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上引見摠護使以下于養志堂，反復論難水原山事，深以章疏紛紜爲悶，顧謂承旨姜栢年曰：“近來論山疏，先稟以入可也。”其後大司諫李廷夔等論：“以疏劄先稟以入之教甚未安，而入侍承旨，終無一言，殊欠惟允之義，請推考。”上不從。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함릉군 이해가 수원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예조판서 윤강을 비판하다

예조 판서 윤강이 상소하고 사직하였는데 이유는 함릉군(咸陵君) 이해(李澥)로부터 물리침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상소에서 또 이상진·유계·이광재 등으로 하여금 수원 산을 다시 보도록 할 것을 청하고, 혹시 수원보다 더 나은 산을 다른 곳에서 얻는다면 더욱 큰 다행이라고 하였다. 그의 상소가 들어오자 정원에 하교하기를,

“이 상소를 총호사와 논의하여 아뢰라.”

하고는, 이내 윤강에게 유시를 내려 안심하고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하였다.

○禮曹判書尹絳上疏辭職，以見斥於咸陵君李澥也。且請李尙眞·兪榮·李光載更看水原山，或看得他山勝水原，則尤大幸也。疏入，下教政院曰：“此疏議于摠護使以啓。”仍諭絳安心勿待罪。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4번째기사>

### 정치/왕실

#### 전 영중추부사 원두표(元斗杓)가 수원 산을 반대하다

전 영중추부사 원두표가 상소하여, 수원 산은 쓸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극구 말하고 또 윤강이 지술이 부족하다고 배척하였는데, 그 내용이 이해의 상소와 똑같으면서 다만 글자를 조금 바꿔 썼을 뿐이었다. 이에 대하여 답하기를,

“경의 지극한 성의는 가상하나 일은 다시 논의하기 어렵겠다.” 하였다.

○前領中樞府事元斗杓上疏，盛陳水原山之不合用，且斥尹絳地術淺短，其意專與李澥同，而特文字少變而已。答以：“嘉卿至誠，事難更議。”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5번째기사>

### 정치/왕실

#### 효종 능침 선정 문제로 이상진이 수원과 홍제동 이외에 서울 근교의 다른 곳을 소개하다

총호사 심지원이, 이상진·유계·이광재로 하여금 수원 산과 홍제동을 다시 보게 하도록 아뢰어 청하고 또 서울 근교의 다른 산들을 소개하니, 홍제동은 다시 볼 필요도 없다고 답하고 세 사람을 불러 내보내게 하였다.

유계가 소를 올려 사양하기를, “원래 지술에 깜깜한데 일을 맡은 신하가 잘못 듣고 끌어들이는 것이오니,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사양 말고 빨리 가라고 답하였고, 이상진도, 사실 보고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하면서 아뢰기를, “언젠가 지사(地師)에게 들은 말인데 광주(廣州) 원적산(圓寂山)이 용세가 좋다고 하고 현릉(獻陵) 내의 이수동(梨樹洞)이 예로부터 일컫던 자리라고 하오니, 그 두 곳을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摠護使沈之源陳啓：“請令李尙眞·兪榮·李光載，更看水原山及弘濟洞，且薦近京他山。”答以：“弘濟洞不必更看，三人命招出送。”兪榮陳疏辭：“以素昧地術，當事之臣，誤聞謬引，乞賜斥退。”答以：“毋辭速往。”李尙眞亦以實無見得處，曾聞地師言：“廣州圓寂山行龍爲佳，獻陵內梨樹洞，從古見稱。請看此兩處。”從之。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6번째기사>

### 정치/왕실

효종 능침으로 수원을 쓰지 말자는 신하들의 말은 지극한 정성과 슬픔에서 나온 것이다  
 대사헌 송준길이 상소하여 사직하고, 이어 제신들이 수원을 쓰지 말자고 한 것은 모두가 지극한 정성과 몹시 슬픈 뜻에서 나온 것으로 그냥 물리쳐버릴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이상진이 지술에도 꽤 밝을 뿐 아니라 충직하고 질박하여 믿을 만한 인물이니 경기 내의 여러 산을 다시 살펴보게 하여 혹시 흠이 없는 길지를 구하면 그보다 다행이 없고, 만약 구하지 못할 경우 종전 계획대로 해도 안 될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답하였다.

“산릉 문제는 이미 다시 보기로 하였으니 경은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大司憲宋浚吉上疏辭職，仍陳諸臣之請勿用水原，俱出於至誠惻怛之意，不宜遽加揮斥，李尙眞頗解地術，忠朴可信，更審圻內諸山，倘得純吉之地，幸莫大焉。如其不得，則仍循前計，亦無不可。答以：“山陵既令更看，卿其安心勿辭。”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7번째기사>

### 정치/왕실

**효종 능침으로 수원은 쓸 곳이 못된다고 이후원이 상소하다**

완남 부원군 이후원이 상소하여, 수원 산은 쓸 곳이 못된다는 내용의 수천 마디 말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해·원두표의 상소와 똑같은 것이어서 상이 원두표에게 답했던 내용대로 답하였다.

○乙卯/完南府院君李厚源上疏，陳水原山之不可用，累千百言，語意與李漉·元斗杓一樣，上以答元斗杓疏之語，答之。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6일(을묘)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산릉 문제를 위해서라도 수령의 인사문제의 빠른 처리와 수원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 상이 이르기를,

“송시열이 교외에 나가 있는 바람에 빈 수령 자리가 많은데 차출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도목 대정(都目大政)도 제 기간에 치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자못 염려가 된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산릉 대 역사를 앞두고 밖에서 계책을 세워 서로 도와야 할 일이 많으므로, 도목 대정을 지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번에 신이 잠시 그의 체직을 들어주시라고 청했던 것은 사실 그를 예우하여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자는 뜻이었는데, 바깥 논의들이 지금까지 이를 그르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다시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끝까지 출사하지 않는다면 그 아문의 일을 변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고, 이어 수원 산 문제를 놓고 논의한 후 자리를 파하였다.

○(...) 上曰：“宋時烈出在郊外，守令多窠，不得差出，前頭都目大政，亦難趁期，殊可慮也。” 太和曰：“山陵大役，外方多有策應事，大政不可遷延。而前者臣請姑許其遞者，實爲禮待安其心之意，外議至今爲非，誠不敢復有所達。然若終不出仕，則該曹之事，不可無變通也。” 仍與商論水原山事而罷。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6일(을묘)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심지원이 수원의 산역을 잠시 정지할 것을 아뢰다

총호사 심지원이 아뢰기를, “계속되는 여러 대신들 차자로 인해 이상진 역시 다시 다른 산을 보기 위하여 나가 돌아오지 않았으니, 같은 시각에 한쪽에서는 산을 찾고 다른 한쪽에서는 산역(山役)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수원의 산역을 잠시 동안 정지하였다가 도감 제조 이하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본 후 산역을 하도록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꼭 정지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대로 산역을 시작하도록 하라.” 하였다.

○摠護使沈之源啓以: “諸大臣陳筭相繼, 李尙眞亦爲更看他山, 出往未還, 看山起役, 不可並行於一時. 水原山役, 姑令停止, 都監提調以下, 待完定後發送似當.” 下教曰: “何必停止. 仍令始役可也.”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6일(을묘) 4번째기사>

정치/왕실

예조판서 윤강 등이 원적산 등이 쓸 자리가 못된다고 아뢰자 그대로 수원을 쓰라고 답하다  
예조 판서 윤강, 관상감 제조 이용시 등이 산을 보고 돌아와, 원적산이나 광나루[廣津] 위산, 배나무골[梨樹洞] 산 모두가 크게 쓸 자리가 못된다고 아뢰자, 그대로 수원을 쓰라고 답하였다.

○禮曹判書尹絳·觀象監提調李應蕃等看山回來啓, 以元積山·廣津江上山·梨樹洞, 俱不合於大用, 答以水原仍用.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9일(무오) 2번째기사>

정치/왕실

산릉 문제에 대하여 송시열의 반대에도 현종이 수원 말고 달리 논의할 곳이 없다고 하다

상이 양지당에 나아갔다. (...) 시열에게 이르기를,

“이번 산릉 문제에 대해 좌참찬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시열이 아뢰기를,

“막중한 일을 신이 맨 먼저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그후 대신·재신들이 계속 소차를 올려 지금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 신은 참으로 황공합니다. 그러나 만세 후에 5환(五患)이 있으리라는 것은 인사(人事)로 따져 보아 틀림없이 그리될 것입니다. 그 부(府: 수원)에는 언제나 6, 7천의 병마가 주둔해 있고, 지리적 여건도 3남(三南)의 요충 지대에 해당되므로 만약 변란이 있게 되면 틀림없이 싸움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백 호의 민가를 일시에 철거하고 분묘들을 옮기고 생업을 깨트린다면, 그에 따른 원한과 한탄이 국가의 화기를 해칠 것입니다. 신의 생각 같아서는 주자(朱子)가 말했던 대로 시기를 다소 늦추어 다른 산을 널리 찾아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은 자못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었으나 시열이 더욱 극력 간쟁하면서 이어 건원릉(健元陵) 원편 등성이를 여러 지관에게 다시 물어 보라고 청하자, 상이 주서 권두추(權斗樞)를 명하여 빈청에 나아가 대신들에게 말하여, 그 원편 산등성이를 두 능의 용호(龍虎)로 써도 두 능에 방해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 이원진·윤선도와 여러 지관들에게 물어 아뢰게 하라고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심지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건원릉 원편 산등성이가 어떤가에 대하여 예조 판서 윤강, 부호군 이원진 그리고 다른 여러 지관들을 불러 물은 것을 별단(別單)으로 써 올립니다. 그런데 윤선도는 강 밖에

나가 있어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달리 좋은 곳이 없어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수원 말고 달리 논 의할 곳이 없을 것 같다.” 하였다.

○己未/上御養志堂, (….) 謂時烈曰: “今此山陵事, 左參贊以爲何如也?” 時烈曰: “莫重之事, 小臣首發異議, 其後大臣宰臣, 繼陳疏筭, 至今未定, 臣誠惶恐. 然萬世之後, 五患之慮, 揆以人事, 必至之勢也. 本府下, 常有六七千兵馬, 地勢且當三南要衝, 脫有變亂, 必爲戰場. 卽今累百民戶, 一時毀撤, 捐丘墓·破產業, 怨恨愁歎, 足傷和氣. 臣意則莫如依朱子說, 姑寬日月之期, 廣求他山也.” 上意頗不然, 而時烈爭之愈力, 仍請健元陵左一岡, 更問於諸地官, 上命注書權斗樞, 出言於賓廳大臣, 以左一岡爲兩陵龍虎用之, 而無妨害於兩陵與否, 使之問於李元鎮·尹善道及諸地官以啓. 領議政鄭太和·左議政沈之源啓曰: “臣等以健元陵左一岡當否, 招問禮曹判書尹絳·副護軍李元鎮及諸地官, 別單書啓. 尹善道出去江外, 不得問啓矣.” 答曰: “他無善地, 事勢至此, 水原外, 似無他議矣.”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30일(기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산릉 후보지로서 수원보다 나은 산을 찾아보고 수원의 혈도를 다시 살펴보자

예조 판서 윤강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이 본직에 있으면서 산릉 간심(看審)의 일행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신이 사상(私喪)으로 구산(求山)을 해보았기에 그 방면에 약간의 문견이 있는데, 지금 군부의 의관(衣冠)을 간직할 자리에 대해 어찌 감히 잡술(雜術)이라는 혐의 때문에 뒤돌아보고 머뭇거릴 수 있겠습니까. 홍제동 산을 사람들은 다 길지라고 하지만 신의 어리석은 소견에는 미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감히 당초의 소견을 숨기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의 말대로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원에서는 여러 곳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길지가 없었고, 오직 그곳만을 여러 신하들과 지관 무리들이 모두 다 그럴 만하다고 하기에 신은 거기에서 별로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판 소견은 없었고, 다만 산론(山論)에 의거하여 치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대신과 중신들은 신이 홍제동을 혈뜰어 수원으로 귀결되게 했다 하여 그것을 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신을 파 직하여 공의에 답하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는 뜻으로 유시하였다.

연양 부원군 이시백이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이, 건원릉 원편 산등성이를 다시 물어 아뢰라고 하신 하교를 보고 성상께서 대사를 신중히 하시려는 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뒤이어 듣자니 총호사가 물어 아뢰 내용은 쓸 수 없는 곳으로 단정하였다 합니다. 신은 산에 관하여 비록 아는 바는 없으나, 고 상신(相臣) 이항복(李恒福)이 경자년 의인 왕후(懿仁王后) 국장 때에 전후 의계(議啓)한 것들이 모두 그의 문집 속에 있는데, 건원릉의 여러 산등성이에 대하여 그 형세들을 매우 자세히 논하여 놓았습니다. 신이 삼가 그것을 별단으로 적어 올려 성상께서 보시는 데 참고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어 생각건대, 건원릉은 바로 우리 태조 대왕께서 신승(神僧)인 무학(無學)과 골라 잡은 자리이며, 선묘조 때의 술사 이의신(李懿信)·박상의(朴尙毅) 등은 사실 요즈음 풍수설을 안다는 자들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전에 무학이 잡은 자리이고 그 후 의신·상의가 찬미했으니, 거기야말로 쓸 만한 순수한 길지임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오늘의 지사들 말을 듣고 의심할 곳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도 첫째 등성이 둘째 등성이를 놓고 반복하여 논했었지만, 용호(龍虎)를 다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또 가까워서 방해가 된다고 한 적도 없었으니,

오늘 지관들 말은 물론 믿을 것이 못됩니다. 그리고 원편 첫째 등성이 외에 다른 등성이들도 많은데, 원편 첫째 등성이만 보고 다른 등성이들은 보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또 이상진 등 3인이 풍수설에 관하여 아는 것이 있다고 했으니 그들도 수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곳도 보게 해야 할 것인데, 지금 그들에게는 보이지도 의논도 하지 않고 다만 수원 쪽을 주장하는 지관들에게만 물었으니, 그 역시 널리 물어 증지를 모으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 산은 그 혈도(穴道)에 대한 논설이 매우 차이가 나고 있는데, 노숙한 지사에게 들어보았더니 수원은 상파지(傷破地)가 정혈(正穴)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을 정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혈도인데 혈도가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틀림이 있다면 형국이 아무리 좋아도 쓸모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자세하고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깊이 재량하시어 이상진 이하 여러 지관들로 하여금 원편 첫째 등성이부터 다른 여러 등성이까지 다시 보아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시고, 수원의 혈도에 대해서도 다시 상량해 논의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인산(因山)을 정하는 일이 어느 시대라고 없었겠는가. 60년 전 일이라 하여 어찌 다 좋기만 했을 것이며, 오늘의 일이라고 어찌 다 좋지 않기만 할 것인가. 수원 혈도를 다시 살펴 보도록 하겠다.” 하였다.

부호군 이상진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이 산릉에 관하여 망령되어 논하다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성상께서 너그러운 도량으로 감싸주시고 신으로 하여금 서울 근교의 쓸 만한 산을 말하라고 하시니, 신은 걱정스러움과 민망함을 더욱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홍여명(洪汝溟)이라는 자가 어느 재상 집에 와서 수원 산보다 나은 다른 산이 있다고 극력 소개한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신이 끝까지 그를 찾아 불러 보았더니 그의 말 역시 많이 사리에 맞았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가 소년 시절부터 중 희정(熙淨)에게서 그 술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가 들은 바로는 서울 근지에 국장을 할 만한 곳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즉시 여명을 데리고 달려가면서 한편으로 조량(趙亮)을 청하여 대질하였더니, 그 한 군데는 건원릉 안의 서동(西洞)으로서 백호(白虎)가 두 겹을 막혀 있는데다 형세가 소명하고 바르며 기상도 혼후하여 순수하고 아름답기가 동국(東局)의 여러 능들과 막상막하였고, 또 한 군데는 불암산(佛岩山) 밑 화접동(花蝶洞)으로 성봉(星峰)이 우뚝 솟아 있고 쌍유(雙乳)가 혈을 이루고 있어 기세가 청수하고 웅장하여 존귀하기 이룰데 없었는데, 그렇게 절승한 곳은 서울 밖에서도 일찍이 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과천(果川) 땅이었는데 총총했던 관계로 미처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상 세 곳을 예관이 지사를 데리고 가서 살펴보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또 조량의 지술이 능숙하다는 점을 말하고 이간(李衍)은 병으로 늙어지고 있으며 이광재(李光載)는 시골로 내려갔는데, 모두 불러 같이 보게 했으면 매우 다행스럽겠다고 하였다. 이 상소문을 산릉 도감에 내렸는데, 막상 총호사가 나갈 때는 이간·조량은 대동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禮曹判書尹絳上疏, 略曰: 臣忝叨本職, 與於山陵看審之行. 臣於私喪, 因求山略有所聞見, 乃於君父衣冠之藏, 何敢以雜術爲嫌, 而有所顧忌前却乎? 弘濟洞之山, 人皆謂之吉, 而於臣愚見, 竊有所未盡, 故不敢諱其初見, 而非亦以臣言, 爲必可行也. 至於水原, 則遍審諸地, 俱未得吉, 而惟於此地, 諸臣及地官輩, 皆以爲可合, 臣於此別無異同之見, 只據其山論, 而馳啓矣. 今者一二大臣及重臣, 以臣訾毀弘濟洞, 而終歸於水原爲罪案. 請罷臣職, 以謝公議.

上諭以：“勿辭。”延陽府院君李時白上筮，略曰：臣伏見健元陵左一岡，有更爲問啓之教，竊幸聖上慎重大事，繼聞摠護使問啓之辭，定以不可用。臣於山家事，雖無所見，竊見故相臣李恒福，當庚子年懿仁壬后國葬時，前後議啓，具在文集中，健元陵諸岡形勢，論之甚詳。臣謹書諸別單，以備睿覽。仍念健元陵，乃我太祖大王與神僧無學擇卜之地，宣廟朝術士李懿信·朴尙毅等實非今日所謂曉解風術者所可跂望。無學定之於前，懿信·尙毅讚之於後，可知其地之純吉可用，不可以今日地師之言，有疑於其間也明矣。其時一岡·二岡，論之反復，而未曾有傷動龍虎之言，又不以逼近爲妨，今日地官之言，固不足信用。而左一岡之外，他岡尙多，只見左一岡，不見他岡，亦何也？且李尙眞等三人，旣云曉解風水，亦可使看水原及他處，而今乃不使此等人，見而議之，只問於偏主水原之諸地官，亦恐非博詢之道也。且念水原之山，穴道之論，甚有異同，竊聞老於地術者云：“水原傷破之地，乃正穴也。”卜山最以定穴爲主，穴道若有毫釐之差，形局雖好，亦無所用。此又不可不詳慎處也。伏願深加財量着令李尙眞等與諸地官，更看左一岡及諸岡，反覆熟議，而水原穴道，亦令更爲商論。

上答曰：“因山之卜，何代無之。六十年前事，何其盡善，今日之事，何其不盡善乎？水原穴道，更令看審焉。”副護軍李尙眞上疏，略曰：臣妄議山陵，罪在不赦，聖度寬假，令臣薦開近京之山，臣益不勝憂悶，偶聞有洪汝溟者，抵卿相家，力薦他山之勝於水原者，臣竊尋招見之，其言亦多有理。自言少從僧熙淨，學其術而聞其言，以其所聞，近京而合於國用，有三處云。臣卽率汝溟馳往，且請趙澆以質之。其一，健元陵內西洞，而與白虎隔二重，形勢明正，氣象渾厚，其爲粹美，當與東局諸陵，相上下。其一，佛巖山下花蝶洞，星峰聳拔，雙乳成穴，氣勢清雄，尊貴無比，此等絕勝之地，京外所未見也。其一，果川地而勢緣忽急，未及往見。此三處，宜令禮官，率地師往審也。

且言：趙澆術業練熟，李衍實病稽滯，李光載聞已下鄉，召致同看幸甚。”疏下山陵都監，及至摠護使出往時，李衍·趙澆，命勿帶去。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2일(신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좌참찬 송시열이 상차하여 효종의 능침으로 수원을 선정하는 문제점에 대해 논하다

좌참찬 송시열이 상차하여 수원 산 문제를 논했는데, 대체로 이시백의 말 뜻을 부연한 것이었고, 끝에 가서 아뢰기를,

“대행 대왕께서 수원이 7천 병사가 있는 곳이라 하여 다른 읍과는 달리 보살피시면서, ‘국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힘을 얻을 곳이다.’ 고 하셨는데, 지금 그곳 읍과 마을을 철거하고 전답과 민가를 폐기시켜, 그곳 백성들로 하여금 한탄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대행 대왕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오늘 신하들이 길지를 택하여 선왕의 장례를 모신다는 것이 바로 수심과 원한이 쌓인 지역에다 모시는 격이며, 선왕의 체백이 편안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로 선왕의 뜻을 크게 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하들 뜻이, 선왕께서는 지금 상제의 곁에 계시면서 이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을 것이므로 비록 그리하더라도 해가 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죄 중에서도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 신하들로서도 그렇게는 못할 일인데 하물며 전하의 성효로서 어찌 차마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지극한 정성으로 한 말이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 그리고 상소 내용 중 선입견을

주장하지 말라고 한 말은 정원에 분부하여 예조 판서에게 전유하도록 하였다.” 하였다.  
○壬戌/左參贊宋時烈上劄, 論水原山事, 大抵敷衍李時白之語意, 而未云: “大行大王, 以水原爲七千兵甲之所在也, 撫卹異他邑, 以爲緩急得力之地, 今者撤其邑里, 破其田廬, 使之咨嗟恨歎者, 必非大行大王之志.”

且曰: “今日諸臣所以擇吉, 而葬先王者, 乃所以葬之於愁怨之域, 所以求先王體魄之安者, 乃所以大傷先王之志. 苟諸臣之意以爲, 先王在帝左右, 無所顧戀, 雖其如此, 亦無所害云爾, 則是罪之大者. 諸臣尚不可如此, 況殿下之誠孝, 其忍爲此乎?”

上答以: “辭出至誠, 不覺涕泣. 且以其疏中所陳毋主先入之語, 分付政院, 傳諭于禮曹判書.”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3일(임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영돈녕부사 이경석이 차자를 올려 효종 능침을 수원으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하다**

영돈녕부사 이경석이 상차하여 수원 산을 논하면서, 5환(五患)이 있는 자리를 범하고 못 원성이 집결되고 있는 것도 무시한 채 쓰지 않아도 될 곳을 기어이 쓰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한 원려가 아니라고 말하고, 또 아뢰기를,

“하고많은 집들을 철거하고 대중의 뿌리를 뽑아놓는 일은 틀림없이 선대왕이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대체로 송시열의 논의를 주위섬긴 것이었다. 상이 깊이 생각하겠다고 유시하였다.

○領敦寧府事李景奭上劄, 論水原山, 以爲犯五戒之患, 忽衆怨之叢, 必用不必用之地, 非所以爲國家深長慮也. 又曰: “撤許多之廬舍, 壞大衆之根本, 必非先王之所願也.” 大抵掇拾宋時烈之論也. 上諭以當體念焉.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3일(임술) 3번째기사>

### 정치/왕실

**건원릉보다 수원의 국세가 좋다는 윤선도의 상소 내용을 경기감사 오정일이 보고하다**

경기 감사 오정일(吳挺一)이 치계하였다. “삼가 받은 전지와 역마를 윤선도에게 보냈더니, 그가 자기 종의 이름으로 소장을 올려 병이 있음을 알리고, 또 말하기를, ‘건원릉 원편 등성은 그 국세가 수원만 못하다는 것을 일찍이 아뢴바 있고, 불암산은 그게 바로 화산(火山)인데 화산 밑에는 혈이 맺지 않는다고 고방(古方)에도 기록되어 있다. 내가 설사 산을 보러 간 일행과 함께 간다고 하여도 소견이 어두워서 쓸모가 있는지 알기란 만무한 일이니, 아뢰어 주기 바랍니다.’ 고 하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빨리 달려가게 하였습니다.”

○京畿監司吳挺一馳啓: “祇受有旨, 并與駟馬, 送于尹善道在處, 則以其奴名呈狀, 陳病狀, 且言: ‘健元陵左岡局勢之不及水原, 曾已上達, 佛巖山乃是火山, 火山下不結穴, 古方有之. 設令進參, 愚闇之見, 萬無能知其可用之理, 請啓聞云.’ 故更令急急馳往矣.”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4일(계해) 2번째기사>

### 정치/왕실

**효종의 능침에 대한 논의로 새로 발견한 산등성이가 좋다면 수원은 그만두어야 한다**

총호사 심지원이 아뢰기를, “기중윤(奇重胤)이 발견한 산등성이가 반호의(潘好義)가 발견한 곳보다 낫다고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에 지관 무리들과 상의하여 거기에다 재혈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그 좌향(坐向)으로 보아 9월·10월은 구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인과 현궁(玄宮)을 내릴 날짜도 당연히 가장 좋은 날을 택해야 할 것인데, 장례의 기한 또한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시임(時任)·원임(原任)의 대신들과 좌참찬 송시열, 이조판서 송준길 등으로 하여금 모여 논의한 후 여쭙어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즉시 지원 등을 여차에서 인견하고 새로 보았다는 산등성이의 형국에 대하여 물었다.

지원이 아뢰기를, “그곳 형국이 수원보다 낫다고 한데 있어서는 신이 감히 알 수 없으나, 백성을 옳기고 읍을 옳기는 폐단이 없으니 이것이 편리하다고 봅니다.” 하였다. 윤강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새로 본 산등성이가 좋는데 사람들은 수원만 못하다고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전후 본 산 중에서 수원만한 곳이 없는데 5환이 있을 것이라 하여 신에게 죄를 돌리고 있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지원이 아뢰기를, “송시열의 차자 내용에 ‘선왕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을 것이니 비록 이렇게 하더라도 별로 해가 없을 것이다.’ 고 한 말은 신하로서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신이 이미 그러한 죄명을 졌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조정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서둘러 신의 직명을 삭탈하고 백의(白衣) 신분으로 산릉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니, 윤강이 아뢰기를, “당초에 수원의 산을 의정한 사람은 신입니다. 만약 죄를 논하기로 들면 신이 당연히 죄를 받아야 합니다. 총호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신도 이미 못사람의 지척을 당했으니, 종백(宗伯)의 직임을 체차하여 윤선도·이원진처럼 군직(軍職)을 띠고 산을 보는 데 동참하게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모두에게 위로의 뜻으로 달래고 허락하지 않았다.

지원이 이어 여러 대신과 송시열·송준길 등을 불러 서로 논의하여 정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지관 무리들이 해가 있다고 한다면 대신과 유신의 말이 얼마나 힘을 보겠는가?” 하였다.

공조 판서 정치화(鄭致和)도 산릉 제조로 입시하여 새로 본 산등성이가 매우 훌륭하다고 누차 찬미하고, 또 아뢰기를, “만약 해가 있다고 한다면 당초에 왜 재혈을 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이란 익히 논의할수록 좋은 것이니, 지관에게 다시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윤강이 아뢰기를, “새로 본 등성을 쓰기로 이미 정하였으면 수원 산은 그만 두어야겠습니다.” 하였다.(…)

○丙寅/摠護使沈之源啓: “以奇重胤所得之岡, 諸臣多言: ‘頗勝於潘好義所得處, 故與地官輩相議, 裁穴於此, 而但其坐向, 於九月十月, 皆有所忌云.’ 發鞠與下玄宮吉日, 所當極擇, 而葬期亦不可踰限. 請令時任原任諸大臣及左參贊宋時烈·吏曹判書宋浚吉等. 會議稟定.” 上即引見之源等於廬次, 問新岡形局. 之源曰: “苟謂形局勝於水原, 則臣不敢知, 而無移民改邑之弊, 此爲便好矣.” 絳曰: “臣意則以新岡爲好, 而他人則以爲不如水原也.” 且曰: “前後所看山, 無如水原者, 而乃以五患之說, 歸罪臣身, 未知其故也.” 之源曰: “宋時烈筮中, ‘先王無所顧戀, 雖其如此, 亦無所害之語.’ 非臣子所可忍聞. 臣既負此罪名, 何可抗顏朝端. 亟削職名, 使以白衣往看陵役.” 絳曰: “當初議定水原山者臣也. 若論其罪, 臣實當之. 何與於摠護使也? 臣既被衆斥, 乞遞宗伯之任, 使得如尹善道·李元鎮帶軍職, 往參看山, 幸甚.” 上竝慰諭不許. 之源仍請命招諸大臣及宋時烈·宋浚吉等, 相議以定, 上曰: “地官輩若云有害, 則大臣儒臣之言, 胡得焉.” 工曹判書鄭致和以山陵提調, 亦入侍, 累贊新岡之雄偉, 且言: “若云有害, 初豈裁穴?” 上曰: “事不厭熟講, 更問地官可也.” 尹絳曰: “新岡既爲定用之地, 則水原山, 置之可矣.” (…)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7일(병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을 쓰지 말자는 의견에 대해 심지원이 대신과 유신과 논의하자고 현종에게 제안하다  
총호사 심지원 등이 다시 빈청에 모여 이상진 및 여러 지관과 논의한 후 별단(別單)으로 써서 올리니, 상이 답하기를, “큰 일을 하려면 자질구레한 폐단에 구애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그냥 수원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하자,

지원이 또 사실을 들어 아뢰기를, “수원으로 정한 후 흠이 있다는 논의가 분분하였고, 대신·증신들까지도 잇따라 항의하는 상소를 올려 모두 쓸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다시 여러 산을 보았는데, 다행히도 건좌(乾坐)로 된 산등성이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격에 맞는 중 다소의 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풍수설을 아는 사람들이 해는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 산을 쓴다면 불평불만에 쌓인 인심을 위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수원을 쓴다면 못사람들의 마음이 틀림없이 더 격해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 대신과 유신들에게 널리 묻고 논의를 거쳐 정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라 제신들을 부르도록 명하였다. 이에 영의정 정태화, 영중추부사 이경석, 연양 부원군 이시백, 이조 판서 송준길은 빈청에 모였다. 완남 부원군 이후원은 병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좌참찬 송시열은 자기가 올린 소에 대하여 아직 회계가 없었다 하여 불참하였는데, 그가 올린 소는 바로 겸임하고 있던 금오(金吾)의 직을 체차해 줄 것을 청한 것이었다. 이시백·이경석이 연명으로 상차하여 수원 산을 쓰지 말 것을 청하자, 상이 이미 유시했다고 답하였다.

○丁卯/摠護使沈之源等, 更會賓廳, 與李尙眞及諸地官商議, 書別單以入, 上答以: “成大事者, 不拘小弊, 仍用水原宜矣.” 之源又陳啓: “水原定山之後, 疵議紛紜, 至於大臣重臣, 相繼抗章, 皆言其不可用, 故更看諸山, 幸得坐乾之岡, 合格之中, 雖未免有小欠, 曉解風水之人, 既謂之無害, 若用此山, 足慰人心之拂鬱. 仍用水原, 群情必爲之益激. 請博詢諸大臣及儒臣, 商確以定.” 上從之, 命招諸臣. 領議政鄭太和·領府事李景奭·延陽府院君李時白·吏曹判書宋浚吉, 同詣賓廳, 完南府院君李厚源辭以病, 左參贊宋時烈, 辭以所陳之疏, 未及回啓, 並不進, 疏卽兼帶金吾乞遞疏也. 李時白·李景奭聯名上筭: “請勿用水原山.” 上答以已諭.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8일(정묘)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새로 발견한 건좌가 흠이 있기 때문이라고 현종이 말하다

빈청에 모여 논의한 후 아뢰는 내용에, 이경석·이시백은 아뢰기를, “구구한 생각은 차차로 대략 밝혔으므로 삼가 재량하여 취사를 정하시기를 바랄 뿐 달리 아뢰는 말은 없습니다.” 하였고, 영상 정태화는 아뢰기를, “새로 발견한 건좌의 산은 모두가 좋다고 말하고 인사(人事)로 따져보아도 매우 편리하고 온당합니다. 그러한 산을 구했는데 수원에 대해 다시 의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송준길 역시 이러한 뜻으로 아뢰기를, “수원 산이 비록 인사로 보아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만약 달리 적당한 곳이 없다면 물론 그곳을 써야겠지만, 지금은 건원릉 안의 건좌로 된 등성이가 수원보다 훨씬 낫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어찌하여 꼭 더없이 좋은 곳을 두고 기어코 수원을 택한단 말입니까? 이상진·유계·윤강 같은 사람들은 그 방술에 밝다고 평소부터 칭해 온 자들이고 또 그들이 질박 충직하여 믿을 만하다는 것은 성상께서도 통촉하시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그 세 신하의 말을 믿으시고 대사를 결정하

소서.”

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건좌로 된 산은 흠이 없지 않기 때문에 경들의 말이 비록 간곡 하지만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賓廳議啓也, 李景奭·李時白以爲: “區區所懷, 略具筭中, 恭祝財幸外, 更無所達.” 領相鄭太和以爲: “新卜乾坐之岡, 衆口稱美, 參之人事, 亦甚便當. 旣得此山, 何可復議水原?” 宋浚吉亦言: “水原之山, 雖不便於人事, 若使他無可合處, 則固不得不用, 而今則健元陵內乾坐之岡, 衆論以爲大勝於水原, 何必舍十全之地, 而強取水原乎? 如李尙眞·兪榮·尹絳, 素稱曉解方術, 其朴忠可信, 聖明所洞燭. 願殿下信用三臣之言, 以決大事.” 上答以: “乾坐之山, 不無空缺處, 故卿等之言雖懇, 而不得允從矣.”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8일(정묘) 2번째기사>

### 정치/왕실

대간들이 수원을 그대로 쓰라는 명을 취소해달라고 하였으나 현종이 불허하다

대사헌 채유후, 대사간 이정기, 사간 이후, 헌납 강호, 정언 여성제·권상구가 합동으로 아뢰어, 수원 산을 그대로 쓴다고 한 명령을 취소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大司憲蔡裕後·大司諫李廷夔·司諫李坫·獻納姜鎬·正言呂聖齊·權尙矩合啓: “請寢水原山仍用之命,” 不允.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8일(정묘) 3번째기사>

### 정치/왕실

이상진, 윤강, 이후원이 수원을 그대로 쓰라는 명을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현종이 불허하다  
부호군 이상진, 예조 판서 윤강, 완남 부원군 이후원이 서로 이어 소를 올려, 건좌의 산을 높이 찬미하고 수원을 그대로 쓴다는 명령을 거두도록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副護軍李尙眞·禮曹判書尹絳·完南府院君李厚源相繼陳疏, 盛贊乾坐岡, 請寢仍用水原命, 不從.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8일(정묘) 4번째기사>

### 정치/왕실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수원을 그대로 쓰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했으나 현종이 불허하다  
홍문관이 상차하여, 수원 산을 그대로 쓴다는 명령을 환수할 것을 청하니, 상은 그 차사 내에 이른바 성인으로 자처하면서 이기기를 좋아한다고 한 말은 이러한 일에 쓸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심지어 ‘차마 듣지 못할 말을 이미 들었는데 그대들과 감히 무슨 말을 그 사이에서 왈가왈부하겠는가?’ 라고 비답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성인의 말씀이 이렇게 너무 박절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이미 내리신 전지를 다시 거두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戊辰/弘文館上筭, 請還收水原山仍用之命, 上以筭中所謂自聖好勝之語, 非可下於此事, 至以旣受不忍聞之說於爾等, 何敢可否於其間爲批. 政院啓: “以聖人辭氣, 不當如是太迫. 請收回已下之旨.” 不允.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9일(무진)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총호사 심지원이 대간의 논계가 밋은 후 수원을 재혈할 것을 청하다

총호사 심지원이 아뢰기를, “수원에 가 다시 재혈하도록 한 일에 대해 시일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하교를 어제 받았습시다만, 대간의 논계가 밋지 않고 있어 받들어 거행하기 어려움 점이 있었는데, 뒤이어 또 어찌 권도(權道)가 없겠느냐는 하교를 받았습시다. 그러나 몇백 년 전래한 체통과 규례를 무너뜨려 후일 끝없는 폐단을 야기시킬 길을 열 수는 결코 없습시다. 논계가 밋기를 기다렸다가 가서 재혈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잠시동안 형세를 관찰 하라고 답하였다.

○摠護使沈之源啓以：“水原改裁穴事，昨者雖承不可緩緩之教，臺論未停，有難舉行，繼承豈無權道之教，而決不可壞了數百年之禮例，啓後日無窮之弊．請待停啓，進去裁穴．” 上以姑爲觀勢答之．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9일(무진)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이조 판서 송준길이 비기(秘記) 내용 때문에 수원을 반대하였다고 아뢰다

이조 판서 송준길이 청대하고 입시하여, 맨 먼저 옥당의 일에 대해 아뢰기를, “준엄한 전지 아래 옥당 신하들의 기상이 시름에 쌓이고 풀이 죽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화평한 하교를 내리시어 다시 들어와 입직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마땅히 경의 말을 따르리라.” 하였다.

준길이 또 아뢰기를, “건좌의 산은 모든 면이 편리하고 수원 산은 하나하나가 불편하므로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려야 할지 알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신하들이 꼭 수원을 쓰지 말자고 하는 데는 깊은 뜻이 따로 있으나, 그것을 감히 소장이나 차자에 다 번거롭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준길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비기(秘記)에 ‘국가에 일이 있으면 수원에서 변이 일어나 서울과 나라 안이 불안해질 것이다.’ 고 한 말이 있는데, 그 때문에 모두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는 듣지 못했던 말인데 사실이 그렇다면 경들이 뜻이 있어 한 일이구나.” 하였다.

준길이 또 아뢰기를, “송시열이 불안해하는 것은 오로지 흥여하 상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날 선대왕께서 온 나라를 시열에게 맡기고 그의 말이면 듣지 않은 말이 없었으며, 그가 하려는 것이면 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릉 문제로 전후 누차 의견을 개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깔끔한 그의 마음에 개탄스러운 생각이 없지 않아 떠나고 싶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어 자기의 직을 갈고 다시 시열을 제수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수원은 서울 인접의 중진(重鎭)으로서 하루아침에 읍을 옮긴다면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 조정 신료들이 난색을 표하는 자가 많았고 그리하여 산릉을 정하는 논의가 오래도록 결정이 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준길이 유자(儒者)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하여, 마치 화복(禍福)으로 상대에게 충격을 주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는 듯이 하였으므로, 식자들이 비웃었다.

○吏曹判書宋浚吉請對入侍，首陳：“嚴旨之下，玉堂諸臣，氣像愁沮．請下和平之教，俾還入直．” 上曰：“當從卿言．” 浚吉又言：“乾坐之岡，事事便當，水原之山，節節難便，取舍不難．且諸臣之必欲勿用水原，別有深意，而不敢煩於章筭間矣．” 上曰：“何也．” 對曰：“我國秘記，有國家有事，水原變起，畿輔邦內不安之語，以此皆懷憂慮矣．” 上曰：“予所未聞，

然則諸卿之意有在也。” 浚吉又曰：“宋時烈之不安，不專爲洪汝河之疏。往我先王，舉國而委諸時烈，無所言而不聽，無所施而不行矣。今以山陵事，前後屢陳，未蒙採納，想其介潔之心，不無慨然於此，而有去志也。” 仍乞遞職，還授時烈，上不許。 蓋水原，圻輔重鎮，一朝移邑，弊亦不貲，故當時廷臣，多以爲難，而定山之議，久未決也。 浚吉名爲儒者，乃以虛誕無稽之說，有若驚動禍福之者然，識者笑之。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11일(경오) 4번째기사>

### 정치/왕실

#### 현종이 효종의 능침으로 건좌의 산이 수원보다 낫다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다

상이 양지당에 나아갔는데 영돈녕부사 이경석, 영의정 정태화, 연양 부원군 이시백, 좌의정 심지원, 완남 부원군 이후원, 예조 판서 윤강, 부호군 이상진·이원진, 대사성 유계, 좌승지 강백년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산릉 문제를 논의해 정하려 하니 경들은 각기 소견을 말해보라.” 하니, 신하들 모두가, 새로 잡은 건좌의 산이 쓸 만하다고 하였는데, 경석은 더욱 많은 말을 하였다. 또 아뢰기를, “윤선도가 일찍이 원두표를 김(金)·심(沈) 두 적(賊)에다 비유하였습니다. 사람을 몰라보는 그가 어떻게 하늘을 알 것이며 하늘을 모르는데 자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가 무슨 딴 뜻이야 있었겠는가.” 하고, 이어 여러 대신에게 이르기를, “산릉 문제에 대해 의논이 분분하므로 내 감히 독단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거쳐 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대신 이하 제신들 말이 모두 건좌의 산이 수원보다 낫다고 하니 그리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자, 신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하고 아뢰기를, “이야말로 종묘사직과 신민들에 있어서 더없는 다행입니다.” 하였다.

○上御養志堂， 領敦寧府事李景奭· 領議政鄭太和· 延陽府院君李時白· 左議政沈之源· 完南府院君李厚源· 禮曹判書尹絳· 副護軍李尙眞· 李元鎮· 大司成兪榮· 左承旨姜栢年入侍． 上曰：“今欲議定山陵， 卿等各陳所見可也．” 諸臣皆以新得乾坐山爲可用， 而景奭論說尤多．” 且言：“尹善道， 曾比元斗杓於金· 沈兩賊． 彼不知人， 焉知天． 不知天， 焉知地理？” 上曰：“此豈有他意於其間也？” 仍謂諸大臣曰：“山陵之事， 群議紛紜， 予不敢獨斷， 欲會議以定矣． 大臣諸臣皆言， 乾坐山勝於水原， 定用當矣．” 諸臣起拜曰：“此實宗社臣民莫大之幸也．”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11일(경오) 5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수원의 돌이 품질이 우수하지만 산릉을 위해 돌을 멀리 운반하면 백성이 괴롭다

(...)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심지원, 판윤 이완, 병조 판서 정치화, 이조 판서 송준길, 사복 정 이유태가 입시하니, 상이 수원의 돌을 산릉으로 운반하는 문제와 대마도(對馬島)의 환미(換米) 건을 허락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물었다. 대신들이, 수원 돌이 품질은 조금 낫지만 백성들을 괴롭혀 멀리 운반할 것까지는 없다는 것과 왜인들이 요구하는 쌀은 그들의 청대로 다소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니, 따랐다. (...)

○(...) 領議政鄭太和· 左議政沈之源· 判尹李浣· 兵曹判書鄭致和· 吏曹判書宋浚吉· 司僕正李惟泰入侍， 上問水原石運致山陵與對馬島許令換米事． 大臣對以水原石， 品雖稍勝， 不必勞民遠運， 倭人所求米， 從略換給爲當． 從之． (...)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18일(정축)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송시열이 상소하여 산릉 선정에서 수원을 반대하여 정해진 일을 어지럽혔다고 사죄하다  
좌참찬 송시열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 그리고 산릉을 정할 때도 뜻 논의들은 수원(水原)을 일러 천재 일우의 곳이라고 하였는데, 감히 이론을 제기하여 결국 시일을 끝게 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지리(地理)가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나 인정으로 보거나 신도(神道)로 보거나 이번에 정한 곳이 진선 진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 말이 그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심하여 신더러, 터무니없는 말로 이미 정해진 일을 어지럽혔다고 하고 있으니, 신의 죄 더욱 큰 것입니다. (…) 삼가 바라건대 빨리 직명을 알아주시고 돌아가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 해주신 은덕에 흠결이 없도록 하소서.” (…)

○左參贊宋時烈上疏略曰：(…) 且於山陵卜定之日，衆議以水原爲千載一遇之地，而乃敢倡爲異論，竟至遷就。臣雖不知地理之如何，揆於人情，求諸神道，今茲所卜，可謂盡善盡美，人言未已，愈往愈甚，謂臣以無稽之言，亂已定之謀，臣罪尤大。(…) 伏乞亟遞職名，許其歸死，以全終始生成之恩。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12월 5일(신묘) 4번째기사>

### 정치/왕실

연양 부원군 이시백이 능소를 수원으로 정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연양 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이 죽었다. (…) 그러나 시백은 배우지도 못하고 술업도 없으면서 송시열·송준길 등을 추켜세워 심지어 이윤(伊尹)과 부열(傅說),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으로까지 소차에서 칭하였고, 능소를 수원(水原)으로 정하려 할 때에도 그 곳은 안 된다는 쪽으로 강력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시열에게 붙어 그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려는 뜻이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흠으로 여기었다.

○延陽府院君李時白卒。(…) 然時白不學無術，推許宋時烈·宋浚吉等，至以伊·傅·周·召，稱之於疏筭中，水原山陵之議，力主不可用之論，其意蓋在附會時烈，人以此疵之。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5월 2일(병진) 4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온천에 거둥할 때 수원 군사를 나누어 충청도 경계까지 호위하게 하다

영의정 정태화, 우의정 허적과 비국 당상 홍중보(洪重普) 등이 뵈기를 청하자, 상이 회정당(熙政堂)에서 인견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온천에 거둥하시는 일을 이미 정하였으니, 거둥 시의 행사를 미리 정하지 않을 수 없기에 감히 뵈기를 청했습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호위 군병 중 마병은 멀리 갈 수 있으나, 보병의 경우, 훈련 도감의 군병은 한강가에서 교대해 주고, 수원군은 충청도 경계에서 교대해 주면 충청도군이 온양까지 호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연(輦)을 호위하는 포수는 4백 명으로 교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능(陵)에 거둥할 때는 으레 4백 명을 사용하였으니, 이번 행차에는 8백 명을 이용해 어가를 번갈아 호위해야 할 것이다. 또 내 마음은 외방의 군병을 징발하고 싶지 않다.”

하자, 태화 등이 도감군 중에서 건장한 자를 가려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다. (…) 바야흐로

농사철이 닥쳐서 각영에서 병사를 징발할 수 없다고 하여, 수원 군사 6천 명을 두 부대로 나누어 한 부대는 한강 가에서 기다리고 한 부대는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번갈아 호위하게 하였고, 충청의 군사도 병사(兵使)로 하여금 한 군영의 병사만을 징발하여 충청도 경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온양에 도착한 뒤에 형세를 보아 다른 군영의 병사를 다시 징발하게 하였으며, 마병은 도감군과 금군의 군대를 이용하게 하였다. (…)

○領議政鄭太和·右議政許積及備局堂上洪重普等請對, 上引見于熙政堂. 太和曰: “溫泉行幸, 已定舉行之事, 不可不預定, 故敢請對.” 仍奏曰: “扈衛軍兵, 如馬兵, 則可以致遠, 而步軍則以訓練軍兵, 替代於江頭, 水原軍替代於忠清道界, 忠清軍兵, 達于溫陽. 夾輦砲手, 則以四百名, 相替扈衛” 上曰: “陵幸時, 則例用四百名, 而此行, 則當以八百名, 相替扈衛矣. 且予意不欲徵兵於外方.” (…)  
 方農不可徵兵各營, 以水原軍六千, 分爲二部, 一隊則待候江頭, 一隊則待候本府, 相替扈衛, 忠清軍兵, 亦令兵使, 只發一營兵, 待候境上, 而到溫陽, 觀勢更發他營兵, 馬兵則用都監軍及禁軍. (…)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4월 7일(계해) 4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온천에 거동할 때 총융사 구인기가 수원 군병을 나누어 호위하게 하다**

어영 대장 유혁연에게 군사를 이끌고 금군·마병·훈국 포수와 연(輦)을 호위하는 군사를 선도하고, 훈련 대장 이완에게는 그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뒤를 보호하여 강가까지 가서는 뒤에 처졌다가 돌아와 궁성을 호위하라고 명하였다. 총융사 구인기(具仁璽)에게는 수원 군병 5천을 거느리되, 두 부대로 나누어 한 부대는 강의 남쪽에 진을 치고 있다가 뒤를 보호하여 수원까지 가고, 다른 한 부대는 수원에서부터 뒤를 보호하여 충청도 경계까지 가도록 명하였다. 충청 병사 민진익(閔震益), 청주 영장 이간(李旰)에게는 그들의 군사 5천을 이끌고 충청도 경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뒤를 보호하여 온천까지 가라고 명하였다.

○命御營大將柳赫然, 領兵先導禁軍馬兵訓局砲手挾輦, 訓練大將李浣, 率其餘兵, 殿後至江頭, 落後還衛宮城. 命摠戎使具仁璽, 領水原兵五千, 分爲二隊, 一隊則陣於江南殿後, 以至水原, 一隊則自水原殿後, 以至忠清道界. 上命忠清兵使閔震益·清州營將李旰, 領其兵五千, 待候於境上殿後, 以至溫泉.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4월 17일(계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온천으로 거동할 때 한강에서부터 총융사 구인기가 수원군을 이끌고 호위하다**

상이 선소(船所)에 나아가 호위하는 여러 장수들과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들을 앞으로 불러 음식을 하사한 다음, 수행 관원과 군병들은 모두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금군과 연을 호위하는 포수는 배에 타고 좌우로 나뉘어 어선(御船)을 호위하며 건너라고 명하였는데, 승지 장선징이 재가 받았다. 축포를 쏜 다음 상이 배에서 내려 가마에 올랐다. 먼저 출발한 총융사 구인기가 수원군을 이끌고 모래 사장에서 진을 치고 길 한편에서 무릎을 꿇고 알현하고는 뒤를 보호하면서 따라갔다.

○上御船所, 命召侍衛諸將及近侍於前, 須賜御饌, 陪從官及軍兵, 盡令先渡, 命禁軍及挾輦砲手乘船, 分左右挾御船而渡, 承旨張善激啓下船砲, 上, 下船乘駕輦. 前發摠戎使具仁璽, 率水原軍, 陣于沙邊, 跪謁于路左, 仍殿後以行.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4월 17일(계유) 8번째기사>

정치/왕실

현종이 온천으로 거동할 때 사근천 주정소에서 수원 군대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다

상이 인시(寅時)에 과천을 출발하여 광주(廣州) 사근천(沙斤川)의 주정소(晝停所)에서 머물렀다. 상이 막사에 나아가 병조 판서 홍중보와 어영 대장 유혁연을 인견하고는 혁연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어영군이 뒤에 있게 하라. 내가 수원 군대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어제는 조금 떨어진 모래 사장에서 진을 쳐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만일 좌우에 진을 치도록 하여 그 사이를 통과하면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니, 혁연이 아뢰기를, “총융사에게 분부하여, 앞의 들판에 진을 치고 좌우로 나뉘어 기다리다가 어가가 군문에 도착하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꿇어 엎드린 후에 그대로 앞서 가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甲戌/上寅時發果川, 晝停于廣州沙斤川, 上御幕次, 引見兵曹判書洪重善·御營大將柳赫然, 上謂赫然曰: “今日使御營軍居後. 予欲觀水原軍容, 而昨於沙邊, 結陣稍遠, 不得詳見. 若令結陣於左右, 行過其中, 則可以諦觀.” 赫然曰: “分付摠戎使, 使陣於前野, 而左右扎住, 待車駕到門後, 吶喊跪伏, 仍爲前行.” 上曰可.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4월 18일(갑술) 1번째기사>

정치/왕실

총융사 구인가가 수원군을 이끌고 앞의 들판에 진을 치고 길 좌우에 도열하라고 명하다

사시에 상이 사근천(沙斤川)을 출발하였다. 어영군에게는 길 왼편 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다가 뒤를 따르고, 총융사 구인가는 수원군을 이끌고 먼저 떠나 앞의 들판에 진을 치되 길을 끼고 좌우로 나뉘어 서 있다가 상이 천천히 행하여 진영 앞에서 어가를 멈추면 군사들이 군문을 열어 맞아들이고 상이 진(陣) 중에 들어가면 군사들이 일제히 고함치며 꿇어 엎드리고 난 다음 그대로 선두가 되어 가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상이 애초 군사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자 해서였다. 그러나 앞에 가는 의장(儀仗)과 마병이 시끄럽고 무질서하게 치달려 먼지가 가득 일어났으며, 수원군 역시 연습이 안 되어 있어 먼저 일어나는 데 급해 빨리 앞지르려다 흩어져 대오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巳時, 上發沙斤川. 命御營軍結陣于路左山麓爲後, 使摠戎使具仁瑩, 率水原軍, 先行結陣於前野, 夾路扎住. 命禁軍馬兵, 前驅到水原軍門, 分立左右, 上徐行到陣前駐駕, 軍士開門迎入, 上入陣中, 軍士跪謁吶喊, 仍作前隊而行, 蓋上初欲詳觀軍容. 而前驅儀仗及馬兵, 喧雜馳突, 塵埃漲起, 水原軍亦不鍊習, 急於前起, 徑先解去, 不成行伍.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4월 18일(갑술) 2번째기사>

정치/왕실

미시 말에 수원 숙소에 머물다

미시 말에 수원 숙소에 머물렀다.

○未末, 次于水原宿所.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4월 18일(갑술) 3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 행궁에 머물다

상이 수원 행궁에 있었다.

○乙亥/上在水原行宮.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4월 19일(을해) 1번째기사>

정치/왕실

현종이 총융사 구인기와 수원부사에게 군대를 이끌고 먼저 산성의 남쪽에 진을 치게 하다  
사시 말에 상이 수원을 떠났다. 총융사 구인기, 수원 부사 박경지(朴敬祉)에게 명하여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먼저 산성의 남쪽 광활한 곳에 가서 진을 치게 하였다. 어가가 진문에 다  
다르자 군사들이 문을 열고 일제히 고함치며 나팔을 불고 북을 쳤다. 상이 어가를 멈추고  
군대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 인기 등으로 하여금 뒤를 보호하며 따르도록 하였다. 오시 말  
에 진위 숙소에 머물렀다.

○巳末, 上發水原. 命摠戎使具仁壑·水原府使朴敬祉, 領其兵先往, 結陣于山城南廣闊處. 大  
駕到陣門, 軍士開門, 吶喊吹打. 上駐駕觀軍容, 仍令仁壑等, 殿後而行. 午末, 次于振威宿所.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4월 19일(을해) 3번째기사>

정치/왕실

현종이 충청도에 이르자 충청도 병사가 수원 군대보다 낫다고 칭찬하다

충청 병사 민진익(閔震益)과 영장 이간(李旰)이 마병과 보병 5천을 이끌고 충청도 지경에  
진을 치고 있었다. 상이 진문에 이르자 민진익이 대장기를 세우고 군악(軍樂)을 울리며 마  
중나왔다. 상이 어가를 세우고 군대의 모습을 사열하다가 병조 판서 홍중보에게 이르기를,  
“이 군대는 수원의 군대보다 나은 듯하다.”

하고, 이어 진익과 이간 등을 앞으로 불러 하유하기를, “이 군대는 대열이 꽤 정연하고 깃  
발들이 활기에 차 있는데, 그대들이 맡은 일에 근신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였다. 이  
어 말을 하사하라 명하고 그 군사들을 이끌고 뒤 대열에 서도록 하였다.

○忠淸兵使閔震益·營將李旰領馬步兵五千, 結陣于境上. 上到陣門, 閔震益建大將旗幟, 具軍  
樂出迎. 上駐轎觀軍容, 兵曹判書洪重普曰: “此軍似勝於水原軍.” 召震益·旰等於駕前諭之  
曰: “此軍行伍頗整, 旗幟生色, 可見爾等勤於職事.” 竝命賜馬, 仍令將其兵爲後隊.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4월 20일(병자) 5번째기사>

정치/왕실

현종이 온천에 거둥하는데 수원 이남부터 각읍마다 유생 등이 마중나와 절하다

오시 말에 어가가 온천에 도착하였다. 수원 이남부터 어가가 경유하는 각읍마다 유생·부르  
(父老)들이 수십 인이나 백여 인씩 곳곳에서 마중 나와 절하였으며, 온양에 이르자 십 리쯤  
길 양쪽으로 인파의 줄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는데, 상이 가끔 어가를 멈추고 위문하였다.

○午末駕至溫泉. 自水原以南, 車駕所過各邑儒生父老或數十人·或百餘人, 處處迎拜, 及到溫  
陽, 夾路十里許, 連亘不絕, 上時或駐駕勞問.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4월 21일(정축) 3번째기사>

정치/왕실

경기감사가 수원과 진위의 객사에 양방(涼房)을 추가로 지을 것을 청하다

경기 감사가 치계하여, 수원과 진위 두 읍 객사(客舍)에 시원한 방을 추가로 지을 것을 청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京畿監司馳啓，請於水原·振威兩邑，客舍添造涼房，上不許。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4월 24일(경진) 6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온천에서 돌아갈 때 수원 군사를 징발하지 말라고 명하다**

(...) 태화가 아뢰기를,

“어가를 돌릴 때 또 다시 이 도의 군사를 징발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마병을 전대(前隊)로, 보군을 후대로 삼고, 본도의 군사는 징발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매우 지당하십니다. 이대로 분부하셔서 백성들이 알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충청도 감사, 병사에게 분부하도록 하였다. 경역이 아뢰기를,

“수원의 군사도 일체 징발하지 말도록 합니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 太和曰：“回鑾時，又將徵發此道兵乎？” 上曰：“予欲以馬兵爲前隊，步軍爲後隊，而毋發本道兵。” 太和曰：“甚當．請以此分付，使民知之。” 上曰：“分付于忠淸監兵使處。” 慶億曰：“水原軍亦一體勿發乎?” 上曰然．(...)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5월 1일(병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온천에서 돌아올 때 수원 숙소에 머물다**

상이 직산(稷山)을 출발하여 미시(未時)에 수원 숙소에 머물렀다.

○戊戌/上發稷山，未時，次于水原宿所．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5월 13일(무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온천에서 돌아올 때 과천 주정소에 머물다**

상이 수원을 출발하여 과천 주정소(晝停所)에 머물렀다.

○己亥/上發水原，次于果川晝停．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5월 14일(기해)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송시열이 수원에 이르러 칭병하고 소를 올려 사직을 청하다**

우찬성 송시열이 온양에서 뒤쫓아 올라오다가 수원에 이르러 병을 칭탁하고 돌아가면서 소를 올려 사직하고 아뢰었다.(...)

○右贊成宋時烈自溫陽追後上來，行到水原，稱病退歸，陳疏辭職．(...)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5월 27일(임자) 2번째기사>

정치/왕실

대신들을 인견했을 때 현종이 수원의 대문 안에 거처할만한 별당이 있다고 말하다

대신과 비국의 제신을 인견하였다. (...) 우상 허적이 아뢰기를,

“지금 온천(溫泉)에 새로 짓는 어실(御室)에는 자전(慈殿)께서 입어(入御)하셔야 하고 전에 지은 어실에는 상께서 입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실은 서쪽에 있고 백관들의 가가(假家)는 동쪽에 있어서 자전의 어실과 너무 가까우니 이 점이 매우 불편합니다. 도형(圖形)을 내려보내어 내관(內官)으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분부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관(戶判)을 차지(次知)로 삼으라.”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일로(一路)의 관사(官舍) 또한 미리 품정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전이 입어했던 어실에는 뒷날 사객(使客)이 들어가 거처할 수 없으니, 따로 침실을 짓지 않을 수 없다.’ 고 합니다.”

하고, 영상 정태화는 아뢰기를,

“갑자년 인목 왕후(仁穆王后)께서 입어하셨던 어실에 그뒤 사객들이 들어가 거처했었으니, 지금 와서 이 때문에 따로 또 하나의 어실을 지을 것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원(水原)에는 대문(大門) 안에 별당(別堂)이 있으니, 내가 들어가 거처할 수 있다.”

하였다.

○丙戌/引見大臣及備局諸臣. (...) 右相許積曰: “今溫泉新造御室, 則慈殿當入御, 前所造御室, 則自上當入御. 而御室在西, 百官假家在東, 逼近於慈殿御室, 此甚不便. 請圖形下送, 令內官主掌分付.” 上曰: “使戶判次知爲之.” 積曰: “一路官舍, 亦當預先稟定, 或云慈殿所御之室, 則日後使客不得入處, 不可不別作寢室.” 領相鄭太和以爲: “甲子年仁穆王后所御之室, 其後使客入處, 到今不可以此別作一室.” 上曰: “水原則大門內, 有別堂, 予可入處矣.”

<현종실록 11권, 현종 6년 9월 3일(병술) 1번째기사>

정치/왕실

현종이 온천 거동할 때 경기감사와 총융사가 모두 수원에 남아있지 않게 하다

(...) 홍명하가 아뢰기를, “구인기(具仁璽)가 총융사로서 뒤에 쳐졌다가 수원에 남아 있게 되는데 도신(道臣)도 수원에 남아 있으면 수원이 반드시 곡물을 잇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인기로 하여금 도성 안으로 도로 들어가서 도성을 통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사는 남양(南陽)·안성(安城)·양성(陽城) 등의 고을을 왕래하면서 머무르게 하고, 인기는 산성(山城)에 머물면서 산성의 곡식을 가져다 먹게 하여 본부(本府)에 폐해가 없게 하라.” 하였다. (...)

○(...) 命夏曰: “具仁璽以摠戎使落後, 當留於水原, 道臣亦留於水原, 則水原必難支. 宜令仁璽, 還入都中, 節制京圻.” 上曰: “監司則往來留駐於南陽·安城·陽城等邑, 仁璽則留鎮山城, 取食山城穀, 以除本府之弊.” (...)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3월 13일(계사) 2번째기사>

정치/왕실



현종이 온천에 거동할 때 총융사 등에게 수원 군병을 징발하여 한강에서 대기하게 하다 정원이 청하기를, “선전관(宣傳官)에게 표신(標信) 및 밀부(密符)를 주어 보내 총융사 및 경기 감사에게 말하여 수원(水原)의 군병을 징발한 다음 한강 가에서 대기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政院請: “遣宣傳官, 齎標信及密符, 諭摠戎使及京圻監司, 令發水原兵, 待于漢江邊.” 上從之.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3월 21일(신축)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총융사 구인기의 수원 군병을 거느리고 모래밭에서 결진하다

총융사 구인기(具仁壑)가 수원(水原) 군병(軍兵)을 거느리고 모래밭에 결진(結陣)하니, 상이 배에서 내려 진중(陣中)에 들어가서 군용(軍容)을 살핀 다음 명하기를, “자전의 수레가 지나가고 나면 그대로 후대(後隊)가 되라.” 하였다. 상이 먼저 과천(果川)에 도착하였다. 자전의 수레가 이르자 상이 의례(儀禮)에 따라 맞이하였다.

○摠戎使具仁壑, 領水原兵, 結陣于沙渚, 上, 下船入陣中, 觀軍容, 命曰: “待慈駕過, 乃爲後隊.” 上, 先到果川. 慈駕至, 上祇迎如儀.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3월 26일(병오) 4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청호(靑湖) 들녘에 도착하여 수원 군병의 진법을 시험하다

상이 청호(靑湖) 앞의 들녘에 도착하니 수원(水原)의 군병이 결진(結陣)하고서 대기하였다. 상이 군중(軍中)에 들어가 구인기에게 이르기를, “이 기치(旗幟)로 호령(號令)해서 방진(方陣)으로 바꾸어 보라.” 하니, 구인기가 분부대로 하였고, 상이 또 원진(圓陣)으로 만들라고 명하니 다시 분부대로 하였으며, 상이 또 육화진(六花陣)을 만들라고 명하니, 인기(仁壑)가 아뢰기를,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보군(步軍)은 좌·우로 빼내 양방진(兩方陣)을 만들고 마병(馬兵)은 별도로 하나의 진(陣)을 만들라.” 하니, 인기가 분부를 받들어 대열을 헤쳐 진을 만들어 냈다. 상이 기치를 물러나게 하고서 자세히 살펴본 뒤 이르기를, “이 군대는 진법(陣法)이 생소하지가 않으니 근래에 제법 조련(操鍊)을 쌓은 모양이구나.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말하고는, 인기와 중군(中軍) 이중신(李重信)에게 사복마(司僕馬) 각 1필(匹)씩을 내려주도록 명하고 그대로 후대(後隊)가 되도록 명하였다.

○戊申/上到靑湖前野, 水原軍結陣以待. 上入軍中, 謂仁壑曰: “以此旗幟號令, 改作方陣.” 仁壑如教, 上又命爲圓陣, 又如教, 上又命爲文花陣, 仁壑曰: “此則不能也.” 上曰: “步軍則左右札住爲兩方陣, 馬兵別爲一陣.” 仁壑承命, 而擺列成陣. 上辟旗幟, 諦觀之曰: “此軍陣法, 不至生疎, 近頗操鍊耶. 稍勝於上年.” 命賜仁壑·中軍李重信司僕馬各一匹, 仍命爲後隊.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3월 28일(무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온천에 가면서 총융사에게 군병을 거느리고 수원 산성에 주둔하라 명하다

(…) 상이 예진(銳陣)·직진(直陣)·원진(圓陣)을 만들어 두라고 명하고는, 이어 과진(罷陣)하고 전진(前進)하라고 명한 다음, 충융사에게 명하여 군병을 거느리고 낙후(落後)하여 수원(水原)의 산성(山城)에 주둔하도록 하였다. 상이 막차(幕次)를 출발하니 경기 감사 이경억(李慶億)이 경계(境界)에서 배웅하였고, 상이 충청도(忠淸道) 군중(軍中)에 도착하여 병사(兵使) 민진익(閔震益)을 불러서 군병의 형세를 묻고 그 군대를 후대(後隊)가 되도록 명하였다. (…)

○(…) 上命置銳陣·直陣·圓陣，仍命罷陣前進，命摠戎使領兵落後，駐水原山城。上發幕次，京畿監司李慶億，祇送于境上，上到忠淸道軍中，招兵使閔震益，問軍兵形勢，命其軍爲後隊。(…)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3월 29일(기유) 6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부의 속오군 6천명 가운데 노약자 등을 추려내고 2천명으로 감축하여 정예병으로 하라 (…)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 유창(兪瑒)의 상소에 ‘본부의 속오군은 누차 증가시켜서 현재 6천여 명이나 되지만 그중에는 노약자나 도망간 사람, 죽은 사람도 많으니, 만일 수를 줄이고 가려 뽑는다면 정예병(精銳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6천 명 중에 2천 명을 감하여 노약자는 모두 면제해 주고 정예하고 건장한 자만을 뽑아 내도록 하되 마군(馬軍)은 10초(哨)로 한정하고 보군(步軍)은 30초로 한정하여 이후부터는 해마다 자리가 비게 될 경우에만 채우도록 하고, 다시는 한 사람이라도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

○(…) 太和曰：“水原府使兪瑒疏言：‘本府東伍，累次增加，至於六千餘人，而其中老弱逃故亦多，若減數抄擇，則可爲精鍊’云，將若之何？” 上曰：“六千人內，減二千，盡除老弱，抄出精壯，而馬軍，則限十哨，步軍，則限三十哨，而此後，則每年只隨闕充定而已，更無得加一人·減一人。” (…)

<현종실록 13권, 현종 7년 11월 6일(임오)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의 군병을 4천명으로 조정하는 일을 수원부사에게 상세히 물어 결정하자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원의 군대를 4천 명으로 감하여 정하도록 하셨는데, 민유중의 말을 들어보니, 그의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4천 명 중에 또 도망갔거나 죽은 자가 있으면 감한 데다가 또 감할 수 없다.’ 고 하니, 유창(兪瑒)을 불러들여 상세히 물어본 뒤에 품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乙酉/上引見大臣·備局諸臣。領相鄭太和曰：“水原軍減定四千云，而聞閔維重之言，其言誠是。其言曰：‘四千之中，又有逃故，則不可減之又減云’，招致兪瑒詳問後，稟定何如。” 上曰：“可。” (…)

<현종실록 13권, 현종 7년 11월 9일(을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부의 속오군을 충당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 및 수원 부사 유창, 총융사(摠戎使) 구인기(具仁璽)를 인견하였다. (...)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원 부(水原府)의 속오군 원수(元數) 및 각종 군대의 숫자를 부사가 모두 기록하였는데, 속오군 6천여 명 중에 도망갔거나 죽은 자가 1천여 명에 이르며, 각종의 군병도 그런 숫자가 매우 많아서 이미 충당할 길이 없고 또 요역이 겹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유창의 뜻은, 만약 원군(元軍)의 수를 감하고 각종 군병으로 충당할 것을 허락한다면 이로써 정예한 군사를 만들려고 하였는데, 구인기는 이 일을 상당히 어렵게 여깁니다.”

하니, 인기가 아뢰기를, “수원 부의 제군(諸軍)은 모두 명목이 있으므로 험사리 숫자를 감축할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그중에 각 아문의 군관으로서 긴요하지 않은 무리들을 뽑아내어 빠진 액수를 보충하게 하고, 원군(元軍)은 마병(馬兵) 10초(哨)와 보군(步軍) 30초로 숫자를 정하여 단속하라. 또한 수원 백성에 대해서는 각 아문에서 잡역에 충정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乙未/上引見大臣·備局諸臣及水原府使俞瑒·摠戎使具仁璽. (...) 太和曰: “水原東伍元數及諸色軍數, 府使竝皆書錄, 東伍六千餘人內, 逃故亦至千餘, 各邑軍兵, 其數甚多, 既無充定之路, 又多疊役之患. 故瑒之意, 若減除元軍, 許給諸色軍兵, 則欲以此團束精銳之卒, 而具仁璽, 則頗以爲難矣.” 仁璽曰: “水原諸軍, 皆有色目, 不可容易減數也.” 上曰: “然. 其中各衙門軍官不繁之類抄出, 令補闕額, 而元軍, 則以馬兵十哨, 步軍三十哨, 定數團束. 水原民, 則自各衙門, 無得充定雜役.” (...)

<현종실록 13권, 현종 7년 11월 19일(을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을 보고하지 않고 죽인 수원부사에 대해 논하다

(...)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원 사람이, 자기 아들이 구문치(具文治)에게 피살되자, 이일선(李一善)에게 글을 보내어 원수를 갚으려고 모의했다가 발각되어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부사 김시진(金始振)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조정에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죽였다 합니다. 대개 그의 뜻은 뒷날 일이 생기면 잘못을 국가에 돌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먼저 처벌하고 뒤에 아뢰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것이 온당한 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나름대로의 의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

○(...) 太和曰: “水原人, 以其子被殺於具文治, 通書於李一善, 謀欲報怨, 事覺逃竄. 今聞府使金始振, 捕捉其人, 不告於朝, 擅殺之. 蓋其意以爲: ‘日後生事, 不欲歸咎於國家, 有此先斬後啓之舉也.’ 雖未知其穩當, 而亦不無意見也.” 上曰: “然.” (...)

<현종실록 13권, 현종 8년 1월 11일(병술) 4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온천에 거둥할 때 총융사가 수원의 마군을 단속하여 호위하게 하다

(...) 상이 병조 판서 김좌명에게 이르기를, “훈국으로 하여금 온천 거둥시 도감의 포수를 8백 명으로 수효를 정하되 6백 명은 대가를 호위하게 하고 2백 명은 자전을 호위하게 하라.”

하니, 좌명이 아뢰기를, “충청과 경기 양도의 마군(馬軍)도 서로 교대로 호위해야 하는데, 충청도 해미(海美)와 공산(公山)의 두 군영 소속 천여 명 가운데는 노약자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경기는 총용사가 수원의 마군을 단속해서 호위하려고 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충청도는 노약자를 제외하고 정예로운 자 4백 명을 뽑아서 호위하게 하고, 경기는 수원의 군사로 호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丁亥/上受鍼. 上謂右承旨閔點曰: “右相今已發行云, 大臣之行, 事體有別. 其令兩道監司, 依例護送.” 上謂兵判金佐明曰: “其令訓局, 濫行時都監砲手, 以八百名定數, 而六百名, 則護衛於大駕, 二百名, 則護衛於慈殿.” 佐明曰: “忠淸·京畿兩道馬軍, 亦當相遞護衛, 而忠淸道海美·公山兩營所屬千餘名之中, 老弱頗多云. 京畿則摠戎使欲以水原馬軍, 團束護行矣.” 上曰: “其令忠淸道, 除其老弱, 抄其精銳者四百名護衛, 而京畿則以水原軍護衛可也.”

<현종실록 13권, 현종 8년 3월 13일(정해) 1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에 머물다

상이 수원에 머물렀다.

○丙辰/上次水原.

<현종실록 13권, 현종 8년 4월 12일(병진) 1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에 머물다

상이 수원에 머물렀다.

○丙戌/上次水原.

<현종실록 13권, 현종 8년 윤4월 12일(병술) 1번째기사>

정치/왕실

사근천을 점심을 먹고 저녁에 수원에 머물다

상이 과천(果川)을 출발하여 사근천(沙斤川)에서 주정(晝停)을 하고 저녁에 수원(水原)에서 머물렀다.

○癸未/上離果川, 晝停沙斤川, 夕次水原.

<현종실록 15권, 현종 9년 8월 17일(계미) 1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을 출발하여 오시에 진위에 머물다

사시에 수원을 출발하여 오시에 진위(振威) 행궁에 머물렀다.

○甲申/巳時, 自水原動駕, 午時次振威行宮.

<현종실록 15권, 현종 9년 8월 18일(갑신) 1번째기사>

정치/왕실

환궁 절차를 논의하면서 수원 다음의 일정을 상의하다

좌의정 허적과 병조 판서 홍중보를 인견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내일 출발하여 수원에서 묵어야 하는데, 보군(步軍)이 만약 한꺼번에 가면 필시 도착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가중군(假中軍)이 거느리고 오늘 저녁에 먼저 소주정(小晝亭)으로 나아가게 하고, 절반은 어가를 수행하게 하라. 마병 금군(馬兵禁軍)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수원을 지난 뒤에는 숙소를 어디로 정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원에서 묵으면 다음날 서울에 들어갈 수가 있다. 경역마(京驛馬)로 하여금 서빙고(西氷庫)에서 기다리게 하고 유도 군병(留都軍兵)도 강변에 와서 기다리게 하여, 어가를 호종하여 도성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라.” 하였다.

○己亥/引見左議政許積·兵曹判書洪重普. (….) 上曰: “明日回鑾, 當次于水原, 而步軍若一時作行, 則必有未及之患. 分其半, 一半則使假中軍領率, 今夕先詣小晝停, 一半則隨駕. 馬兵禁軍亦如之.” 積曰: “水原以後, 宿所何以定爲?” 上曰: “宿水原, 則翌日可以入京. 令京驛馬, 待於西氷庫, 而亦令留都軍兵, 來待江邊, 以爲扈駕入城之地.” (….)

<현종실록 15권, 현종 9년 9월 3일(기해)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환궁할 때 수원까지의 일정을 지나치게 빠르게 하지 말라는 이조판서 송준길의 진언**

(…) 준길이 아뢰기를,

“들으니 내일 출발하여 수원(水原)에서 묵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원까지의 거리는 5참(站)입니다. 임금의 행차는 빠르게 진행해서는 안 되며, 또 목욕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먼 길을 가게 되면 병을 삼가는 도리에 해로움이 있을 듯합니다.”

하지, 상이 이르기를, “요즈음 세자의 병으로 자전께서 밤낮으로 깊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속히 돌아가서 자전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준길이 아뢰기를, “이것은 자전의 걱정을 위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세자의 병을 염려하시어 속히 돌아가려 하시나, 어찌 자전께서 전하를 염려하시는 것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꼭 수원을 묵어갈 참(站)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진위(振威)에 도착하여 형세를 보아가며 할 것이다.” 하였다.

○(…) 浚吉曰: “聞明日回鑾, 宿次于水原云, 此去水原, 乃五站也. 人君行幸, 不宜疾驅, 且沐浴未久, 遽爾遠行, 則恐有害於慎疾之道矣.” 上曰: “近以世子所患, 慈殿日夜憂慮切, 故欲速還, 以慰慈念耳.” 浚吉曰: “此非所以慰慈懷也. 殿下念世子所患, 雖欲速還, 獨不念慈殿之憂念殿下乎?” 上曰: “非必以水原定爲宿站也. 到振威當觀勢爲之耳.” (….)

<현종실록 15권, 현종 9년 9월 3일(기해)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부와 사근천에서 주정하다**

상이 출발하여 수원부(水原府)와 사근천(沙斤川)에서 주정하고, 저녁에 과천현(果川縣)에서 머물렀다.

○辛丑/上動駕晝停于水原府, 又晝停于沙斤川, 夕次果川縣.

<현종실록 15권, 현종 9년 9월 5일(신축)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지평 김세정이 수원부사 심지명을 파직하라고 청하다**

(…) 또 전주 부윤(全州府尹) 안진(安鎭)을 파직 추고할 일로 연달아 아뢰니, 상이 우선 추고만 하라고 하였다. 또 수원 부사(水原府使) 심지명(沈之溟)을 파직하여 서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청하기를,

“본래 제주와 식견이 없는 데다 나이 또한 늙었으니, 기보(圻輔)의 중요한 지역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계(臺啓)가 거듭 발한 후에 버젓이 하직(下直)하니, 염치없는 모습이 더욱 놀랍습니다.” 하였다.

○(…) 又以全州府尹安縝罷推事連啓，上命姑先推考。又請水原府使沈之溟罷職不敘曰：“本無才識，年紀又暮，圻輔重地，決非所堪。而臺啓重發之後，偃然下直，冒沒廉恥之狀，尤極可駭。” (…)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2월 18일(신사)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정릉 정자각의 봉심, 심지명의 체직, 경기 군병의 충정, 평안도 인재 선발을 논의하다

(…) 허적이 또 아뢰기를, “수원 부사 심지명(沈之溟)이 이번에 또 대론(臺論)을 받았으니, 부임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거동이 임박한 때이니 즉시 체차하여 모든 일을 근색한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계에 이른바 ‘버젓이 기탄하는 것이 없다.’ 는 말은 진실로 터무니없다. 사세가 이러하니 체차하라.” 하였다.

○(…) 積又曰：“水原府使沈之溟，今者又被臺論，勢難赴任。當此舉動臨迫之時，似當趁卽遞改，俾無凡事窘急之患。” 上曰：“臺啓所謂偃然無忌憚，誠極無據。而事勢如此，則遞差。” (…)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2월 19일(임오)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이미 정한대로 수원의 시재어사를 파견하다

(…) 홍중보가 또 전에 품정한 대로 수원의 시재 어사(試才御史)를 차송할 것을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重普又請依前稟定，差送水原試才御史，上從之。

<현종실록 17권, 현종 10년 9월 1일(신묘)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어사 권격을 수원에 보내 무사들을 시재하고 포상하다

어사 권격(權格)을 수원(水原)에 보내 무사들을 유엽전(柳葉箭)·기추(騎菟)·조총(鳥銃)으로 시재(試才)케 하였다. 입격한 장수와 제 부대의 군인들에게는 전일 강도와 남한 산성의 시재에서 내린 상격처럼 미포(米布)와 궁전(弓箭)을 차등있게 지급했다.

○遣御史權格于水原，試才武士，以柳葉箭騎菟鳥銃。其入格將官諸色軍人等，依前日江都·南漢試才賞格，給米布弓箭有差。

<현종실록 17권, 현종 10년 10월 28일(무자) 3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토포사가 도적을 잡은 일이 없으니 파직하고 추고하라

(…) 수항이 아뢰기를,

“전 수원 토포사의 계문(啓聞) 속에, 양성인(陽城人)으로 도적의 초사(招辭)에서 나온 사

람이 셋이라고 하였는데, 본현(本縣)에서는 애당초 붙잡은 사실이 없었고 토포사도 다시 문의한 일이 없었습니다. (…)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해 수령은 추고하고 토포사는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라.” 하였다. (…)

○(…) 壽恒曰：“前水原討捕使啓聞中，陽城人出於賊招者三人，而本縣初無捕捉形止，討捕使亦無更問之事。利川四人，忠州八人，亦出於賊招，搜捕不得。利川府則以其容貌及父名，更問於元賊之意馳報，而討捕使置而不問，啓聞末端，泛以誣援爲結語。至於忠州人，則以初不援引之人，添書爲九名。此不但文書之疎漏，治盜之不爲着實，據此可知。賊人等既已處斷，雖難更覈，討捕使及當該守令，不可不論罪。” 上曰：“當該守令推考，討捕使先罷後推。” (…)

<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3월 3일(계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장응일이 영릉의 석물(石物) 문제와 윤선도가 수원이 길하다고 말한 일을 환기하다**

전 참의 장응일(張應一)이 구언 전지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 아, 필부도 아버지 장사 지내는 데는 오히려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인데, 천승(千乘) 나라의 임금으로 선왕(先王)을 장사지내되 도리어 필부만도 못한단 말입니까? 삼가 들으니 능자리를 정하는 당초에 사부(士夫)로 지술(地術)을 아는 자들은 모두들 ‘수원산이 가장 길하다.’ 고 하였다는데 누가 반드시 영릉(寧陵)에 써야 한다는 의논을 주장하여 우리 전하로 하여금 마침내 영원히 망극한 변을 만나게 하였단 말입니까?

애석합니다. 윤선도(尹善道)의 상소에 산을 논한 것이 매우 자세하였는데 그 상소를 정원에서 불에 태워, 마침내 상께서 보시지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 하문하시면 선도가 올린 상소 속의 뜻을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하께서 영릉이 제왕의 장지가 아니라고 당초에 이미 운운한 설이 있었음을 환히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릉에 꼭 써야 한다는 의논을 주장한 자는 분명히 전하의 가사(家事)를 패하게 하려는 것으로 선왕에 불충함이 큼니다. 길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다시 봉분을 쌓자는 말을 탐전에 진달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말과 같다면 그의 마음씨가 흉참하니 그 죄가 봉심한 신하보다 더합니다. 어찌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전하의 좌우 여러 신하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후일 천릉할 때에 영릉(寧陵) 같은 걱정이 없기를 보장하겠습니까. 재궁(梓宮)을 이봉(移奉)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 대신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니, 삼가 전하께서 친히 신구(新舊)의 두 릉에 거동하시어 반드시 정성스럽고 신실한 효도를 다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너의 상소의 내용을 보니 오장 육부가 끊어지고 찢어지는 듯하여 나도 모르게 통곡하고 흐느낄 뿐이다. 다만 감동(監董)한 사람의 죄범이 무거운 것은 상소의 뜻도 옳기는 하나, 그 외의 기타 사건들은 그 곡절이 각각 다른데 떠도는 소문이 실지와 틀려서 그런 것인가? 수원산에 대한 언급에서 대신에게 맡기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매우 해괴하게 여긴다. 그러니 구언(求言)을 이유로 그런 말까지 수용하지는 않는다.” 하였다.

○壬子/前參議張應一，應旨上疏曰：(…) 噫！匹夫而掩其親，猶且自盡，以千乘之君，而葬先王，反不如匹夫乎？竊聞卜陵之初，士夫之解地術者，咸曰：“水原之山最吉云。”而孰主必用寧陵之議，使我殿下，竟遭終天罔極之變乎？惜乎。尹善道之疏，論山甚備，而焚其疏於政院，終不入於睿覽。今若下問，則可悉善道疏中之意。夫然後，殿下曉然知寧陵非帝王葬地，而當初

已有云云之說矣. 然則主寧陵必用之議者, 明是敗殿下家事, 而大不忠於先王者也. 道路傳聞, 有以改封築之說, 進於榻前者云, 果若此說, 則其用意凶慘, 罪浮於奉審之臣. 豈不寒心哉? 殿下左右大小之臣, 有不可信者, 如此, 安知後日遷陵之際, 保無寧陵前日之患也? 至於梓宮移奉, 尤不可委之於大臣, 伏願殿下, 親臨新舊兩陵, 以盡必誠必信之孝焉.

上答曰: “覽爾疏辭, 五內摧裂, 自不覺痛泣而已. 第監董之人, 罪犯之重, 疏忽亦可, 而其他事件, 曲折各異, 流傳爽實而然耶? 至於水原山一款, 不可委之等說, 予甚駭之. 不以索言而取之也.”

<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6월 14일(임자)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이 경기의 거진(巨鎭)으로 훗날의 걱정 때문에 영릉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사간 신정(申暹)이 아뢰기를, “전 참의 장응일(張應一)의 상소는 장황하게 이랬다저랬다 기탄없이 말을 하였으니 참으로 그 마음이 있는 곳을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불행하여 선릉(先陵)에 변이 있고 오늘에 이르러 천릉하는 일이 있게 되었으며, 전하께서 봉심한 제신들에게 죄를 준 것은 그 일을 중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속이거나 숨기는데 마음을 쓴 정상이 없다는 것을 전하께서 통측하고 계신 바이니, 원정(原情)을 심리하는 날에 용서하신 것이 어찌 전하께서 대신을 상할까 하여 사사로이 처리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대신을 대우하심이 지극하다고 할 만합니다만, 선왕(先王)을 섬기는 도리에 있어서는 어떠한지를 모르겠다.’ 고 한 것은, 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군부(君父)를 헐박하여 대신들에게 죄를 씌우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찌 신하로서 마음을 먹고 입으로 발설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수원을 버리고 영릉에 쓴 데 대하여 당초 산을 논한 신하에게 죄를 돌리려는 뜻에서 심지어 ‘전하의 가정 일을 낭패시킨 것이며 선왕에 대해서는 매우 불충하다.’ 고 말하였으니 신은 여기에 대하여 슬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수원의 산은 처음에 이미 결정했었으나 고 정승 이시백(李時白) 등 여러 사람이, 경기 지방의 거진(巨鎭)이므로 추후에 생겨날 다섯 가지 걱정을 가지고 여러 차례 상소하여 중지하기를 간하였고, 송시열(宋時烈) 또한 이 문제로 헌의를 하여 영릉으로 다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백 등 여러 사람이 과연 모두 전하의 가정 일을 낭패하도록 하고 선왕에 대해 크게 불충한 것이겠습니까? 이는 그 속셈이 다름 아니라 곧, 그때 헌의하였던 여러 신하들이 이젠 다 죽었고 유독 시열만이 생존해 있는데 함해(陷害)하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이미 백골이 된 자에게 있지 않으니, 그 마음 씩씩이가 또한 참혹합니다.(…)

○大司諫申暹上疏曰: 前參議張應一之疏, 張皇闔闢, 下語無忌, 實未曉其心之所在也. 國家不幸, 先陵有變, 至于今日, 有遷陵之舉, 殿下之罪奉審諸臣者, 所以重其事也. 其實無用意欺蔽之狀, 亦殿下之所洞燭, 則原情恕宥, 於審理之日, 豈殿下恐傷大臣而曲爲之地哉? 然則待大臣, 可謂至矣, 事先王之道, 未知何如云者, 嘻嘻! 此何言也? 雖欲脅持君父, 勒罪諸臣, 此豈臣子所可生心而發口者哉? 且以舍水原, 取寧陵, 欲歸罪於當初論山之臣, 至謂敗殿下家事, 而大不忠於先王, 臣於此, 不勝慨然之至. 水原之山, 初既卜定, 而故相臣李時白諸人, 以畿輔巨鎭, 日後五患, 累疏諫止, 而宋時烈亦, 以此獻議, 改卜寧陵. 則時白諸人, 果皆欲敗殿下家事, 而大不忠於先王者哉? 此其計無他, 其時獻議諸臣, 今皆不在, 獨時烈在耳, 所欲陷害者, 必不在於既骨之人, 則其所用意, 吁亦慘矣. (…)

<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6월 17일(을묘)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과 영릉 가운데 대신이 여러 의견을 고려하여 현종이 결정내린 것이다

장령 성호징(成虎徵)이 아뢰기를,

“(….) 일을 담당했던 제신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건대 누군들 능침에 정성을 다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일이 불행하게 되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된 것인데, 응일이 기필코 무함하고 날조하여 단련해서 죄안(罪案)을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의도란 말입니까? 수원산과 영릉을 취사(取舍)할 적에는 훈구로서 충직한 신하들이 모두 지성어린 우국의 말로 인사(人事)와 지술(地術)의 설을 참작하여 헌의(獻議)하였으며 나중에는 또 전하의 성충(聖衷)으로 결단하신 것인데, 응일은 곧 말하기를 ‘영릉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의논을 주장한 자는 분명히 전하의 가사를 낭패하게 하고 선왕에게 불충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 응일을 삭탈 관작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戊午/掌令成虎徵啓曰：“(…) 當事諸臣，原其心，則孰不欲自盡於陵寢？而事有不幸，罪在無情，應一必欲構捏鍛鍊，添其罪案者，抑何意也？當水原寧陵之取舍也，勳舊忠藎之臣，皆以至誠憂國之言，參以人事，術說獻議，終又斷自宸衷，而應一乃曰：‘主寧陵必用之議者，明是敗殿下家事，而不忠於先王。’ (….) 請應一削奪官爵。” 上從之。

<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6월 20일(무오)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장응일이 수원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송시열에게 유시하다

상이 판부사 송시열에게 유시하기를,

“저번 사관(史官)의 회계(回啓)에서 경의 말을 보니, 불안한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세 한 곡절을 모르겠다. 저번에 장응일의 상소는 말 뜻이 조리가 없고 속으로 사람을 죄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수원산에 대한 말에 이르러서는 그 마음이 더욱더 흉참하여 놀랐다. 이에 근시(近侍)를 보내어 나의 뜻을 유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천릉(遷陵)하는 일은 실로 망극한 변이니 어찌 불행한 정도만 되는가. 간사한 사람이 틈을 타서 망극한 말을 만들고 있으니, 성효(誠孝)가 형편이 없어 오늘의 일을 있게 한 것이므로 가슴을 어루만지며 통곡해 울고 있을 따름이다.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빨리 돌리고 속히 올라와서 천릉하는 의례에 대해 주선을 하여 선왕(先王)께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었던 은혜에 보답한다면 지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上諭判府事宋時烈曰：“頃者史官之回，得見卿言，多有不妥之語，而未詳曲折矣。乃者張應一之疏，語意無倫，陰欲陷人。至於水原之說，其用意尤極凶慘，予用驚駭。茲遣近侍，以諭予意。今者遷陵之舉，實是罔極之變，豈但不幸而已哉？奸人乘間，造言罔極，予之誠孝無狀，致有今日，撫心痛泣而已。復何言哉？(….) 亟回遐心，從速上來，周旋於遷陵之禮，其於報先王殊遇之恩，可謂至矣。”

<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6월 24일(임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인선 왕후가 6살 때 수원부사인 계부(季父)의 관아에 갔었다

신시에 인선 왕후를 영릉(寧陵)에다 장사지냈다. 행 판중추부사 김수항이 지문(誌文)을 지어 올렸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인선 왕후께서 (….) 여섯 살이 되자 할머니인 박씨

부인이 데려다 길렀는데, 일찍이 할머니를 따라 수원 부사로 있던 계부(季父)의 관아에 갔다가 가끔 남몰래 부모 생각이 나 눈물을 짓곤 했다. (…)

○丁酉/申時，葬仁宣王后於寧陵。行判中樞府事金壽恒，撰進誌文，其文曰：“仁宣王后(…)六歲，祖母朴夫人，取而鞠之，嘗隨往季父水原府衙，時於暗中，思父母啜泣。祖母覺而問，輒拭淚對以他辭，不使貽其憂，祖母奇愛之。(…)”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6월 4일(정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예조 판서 윤강이 간심한 산 가운데 수원의 산이 제일 좋다고 보고하다**

예조 판서 윤강, 관상감 제조 이응시가 아뢰기를,

“신들이 지금 간심한 바, 남양(南陽)의 옛 고을 터, 장단(長湍)의 김영렬(金英烈), 교하(交河)의 윤반(尹蕃), 광주(廣州)의 정난종(鄭蘭宗)·이증(李增), 남양의 홍언필(洪彦弼)·홍기영(洪耆英) 등의 묘산 및 양재역(良才驛) 뒷산, 한강(漢江)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산, 왕십리 해동촌(往十里海東村) 이충작(李忠綽) 묘산 정토 근처를 모두 지관(地官)으로 하여금 일일이 상론하게 하고 이원진(李元鎭)·윤선도(尹善道) 역시 산자리를 평가하게 하여, 그 중 좀 우수한 네 곳을 그림을 그려서 올립니다.” 하니, 상이 윤강에게 명하여 네 곳 산도형 중 쓰기에 합당한 것을 등차를 매겨서 들이라 하였다.

이에 윤강이 답하기를, “수원(水原) 산은 용혈(龍穴)과 사수(砂水)가 진선 진미하니 이는 실로 천재 일우의 길지로서 결코 다른 산에 비교할 수 없으나, 네 곳의 산은 결코 대용(大用)에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성상의 하교로 인하여 여러 지관으로 하여금 등급을 매기게 하니, 교하 윤씨의 산이 가장 좋고, 남양 홍씨의 산이 다음이고, 광주 정씨의 산이 그 다음이고, 한강 북쪽 산이 네 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하였다.

○禮曹判書尹絳·觀象監提調李應著啓：“以臣等今所看審處南陽古郡基·長湍金英烈·交河尹蕃·廣州鄭蘭宗·李增·南陽洪彦弼·洪耆英等墓山，及良才驛後山·漢江北邊山·往十里海東村李忠綽墓山·淨土近處。竝令地官，一一詳論，李元鎭·尹善道，亦爲評品，其中稍優四處，圖形以進矣。” 上命絳四處山圖中合用者，等第以入，絳對以水原之山，龍·穴·砂·水，盡善盡美。此實千載一遇之地，斷不可比論於他山。四處山決不合於大用，而因上教，使諸地官等第，則交河尹山最勝，南陽洪山次之，廣州鄭山又次之，漢北山居第四云。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15일(갑진) 3번째기사>

#### 정치/왕실

**효종의 능침으로 수원과 홍제동을 두고 대신들과 논의하다**

(…) 상이 원임 대신 이하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경석 등을 보고 통곡하자, 경석 등 또한 부복하고 흐느껴 울면서 옥체를 보호할 방법을 변갈아 진술하였다. 이에 병환이 거의 다 나았다고 답하였다.

심지원·윤강 등이 상의한 바, 기전(畿甸)의 모든 산 가운데 국장으로 쓸 수 있는 적합한 곳은 멀리서 홍제동(弘濟洞), 가까이서 수원의 산 이 두 곳을 선택하는 데 불과할 뿐이었다. 상이 이르기를,

“인조 조의 전후 국장 때 무엇 때문에 홍제동을 쓰지 않았는가?”

하니, 정대화가 아뢰기를,

“을해년 산릉은 이곳에 정하였었는데, 인조께서 길이 멀다고 하시어 쓰지 않았습니다.”

하고, 경석은 아뢰기를,

“이는 곧 하늘이 정한 곳입니다. 이 어찌 임자를 기다려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시열은 아뢰기를,

“수원은 국가의 관문이 되므로 선왕께서 일찍부터 유의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철거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살 곳을 잃게 함은 아마도 선왕의 뜻이 아닐 듯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왕께서도 일찍이 홍제동이 길지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나 그 길이 먼 것을 혐의하였으니 자손으로서 쓸 수 없을 것 같다.”

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주자(朱子)의 산릉론(山陵論)에 ‘부양 손씨(富陽孫氏)가 발적한 땅을 국릉(國陵)으로 쓸 만하다.’ 고 하였는데, 송(宋)나라 수도 임안(臨安)에서 부양까지의 거리는 자못 멍니다. 이로써 자고로 길지를 택하는 데에도 거리의 멀고 가까운 것에 구애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원 대진(水原大鎭)은 경도(京都)와 보거(輔車)가 되어 만약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아침에 명령하면 저녁에 이릅니다. 산릉이 중대한 일이어서 폐단을 말할 수는 없으나 민가 수백 채를 일시에 철거해야 하니 지도(地道)로 말하더라도 편치 못할 것 같습니다. 선조(宣祖)의 산릉을 수원으로 의정하였으나, 광해(光海)가 민가를 많이 철거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었고 충호사 이항복(李恒福)이 이를 지당하다 하여 끝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신하가 모두 홍제동이 가장 좋아 쓸 만하다고 하는데 유독 윤강만이 혈형(穴形)이 너무 긴 것으로 흠을 삼습니다.”

하고, 정태화는 아뢰기를,

“만약 수원의 산을 쓰면 민가를 이전하는 계획을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 경내에 많이 있는 태복(太僕)의 둔전(屯田)과, 훈련 도감 총융청의 둔전 및 해변의 방죽을 쌓을 만한 곳을 모두 민전(民田)으로 환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시열은 아뢰기를,

“예로부터 영원한 국조(國祚)는 없습니다. 수원의 형승이 지금은 비록 잠시 피폐하나 뒷날에는 관방(關防)이 될 것입니다. 정자(程子)가 오환(五患)을 논하는 데 성곽을 가장 꺼리었습니다.”

하니, 지원이 아뢰기를,

“수원은 본래 성곽이 없습니다.”

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군부를 장례함에는 의당 장원한 계획을 두어야 합니다. 어찌 만세(萬歲) 후에 성곽이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겠습니까.” 하였다. (…)

○(…) 上引見原任大臣以下。上見李景奭等痛哭，景奭等亦俯伏飲泣。交陳保護之道，答以所患幾盡差愈。沈之源·尹絳等，商議圻甸諸山可合國用處，遠則弘濟洞，近則水原山。不過擇定於斯二者而已。上曰：“仁祖朝前後國葬，弘濟洞何故不用？”鄭太和曰：“乙亥山陵，議定于此，而仁祖以路遠不用矣。”景奭曰：“此乃天定。豈非有待而然？”宋時烈曰：“水原爲國家關防。先王所嘗留意處也，一朝撤移，使軍民失所，恐非先王之志也。”上曰：“先王亦嘗言，弘濟洞之爲吉地，而嫌其路遠，恐子孫不能用耳。”時烈曰：“朱子山陵論，以爲富陽孫氏發迹之地，宜用國陵。宋都臨安，去富陽頗遠，可見自古擇地，不拘道里之遠近也。水原大鎭，與京都爲輔車。脫有緩急，朝令夕至。山陵爲重，不可言弊，而人家累百，一時毀撤，以地道言之，亦似不寧矣。宣祖山陵，議定於水原，而光海以多毀人家爲難，摠護使李恒福，以爲至當，終不用云。”

諸臣皆以弘濟洞爲最吉可用，而獨尹絳，以穴形太長，短之。太和曰：“若用水原山，則移民之策，不可不預講。大僕屯田，多在水原境內，訓練都監·摠戎廳屯田及海邊可築堰處，一併換給民田似可。”時烈曰：“自古無萬年國祚。水原形勝，今雖暫廢，終必爲關防。程子論五患，而城郭爲最忌，之源曰：“水原本無城郭矣。”時烈曰：“葬君父，宜有長遠之慮。安知萬世後不爲城郭也。”(…)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16일(을사)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총호사 심지원 등이 재차 수원의 산을 간심하고 돌아와 대신들과 논의하다

총호사 심지원, 예조 판서 윤강, 관상감 제조 오준(吳竣), 산릉 도감 제조 정치화, 호군 이원진 등이 재차 수원의 산을 간심하고 돌아와 복명하면서 연서(延曙), 한강 북쪽, 왕십리, 이 세 곳의 산의 지도를 함께 드리니, 상이 영의정 정태화, 판중추 송시열, 대사헌 송준길, 첨지 윤선도 등을 불러 양지당에서 인견하였다.

상이 심지원에게 묻기를, “재차 수원의 산을 간심하니 경의 생각에는 어떠하던가?” 하니, 지원이 아뢰기를,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다시없는 길지라 하고 신과 같은 범안으로도 범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 곳의 산은 모두 흠이 있어 국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원 산의 정혈은 윤선도와 이원진의 지점한 곳이 각각 다르므로 단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이 두 사람은 각각 소견을 진술함이 좋겠다.” 하였다.

이에 선도는 원진이 지정한 곳을 협락(狹落)이 된다고 하고, 원진은 선도가 좋다고 하는 곳을 호사(護砂)가 된다고 하여 논쟁이 그치지 않았다. 선도가 또 아뢰기를, “도로의 원근을 논하지 않고 산의 우열만 논한다면 홍제동이 의당 제일이고 수원이 그 다음입니다. 수원이 홍제동에는 미치지 못하나, 오히려 건원릉(健元陵)의 여러 산등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풍수(風水)가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홍제동은 다른 지관들이 모두 한결같이 칭찬할 뿐 아니라 예로부터 길지라고 하였는데, 윤강 혼자서만 흠을 잡으니 알 수 없습니다.”

하니, 강이 아뢰기를, “신이 무슨 소견이 있겠습니까만, 이원진도 현무(玄武) 부리의 괴혈이라고 하니, 어찌 괴혈이 국용에 적합할 수 있겠습니까. 선도는 비록 홍제동을 극찬하지만, 신의 생각에는, 영릉(英陵)이 전기(專氣)가 된다면 이는 곧 그 지엽간에 맺힌 혈인데, 선도가 제일로 삼는 의도를 신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원이 가깝고 또 홍해가 없으니 그 곳을 쓰기로 결정함이 좋겠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산릉의 일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하였다. 이어 별지에 적은 것을 드리면서 아뢰기를, “가옥 5백여 채를 옮겨야 하고 밭 7백여 결을 목혀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이 상의하여 편리하게 환급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라.” 하고, 또 묻기를,

“읍거(邑居)는 어느 곳으로 옮기려 하는가?” 하니, 지원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본부의 북쪽 고등촌(高等村)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또 아뢰기를, “판중추·대사헌도 각각 소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시열이 아뢰기를, “신의 우매한 소견은 이미 앞서 진달하였거니와, 오늘날의 일이 끝내 온당치 못한 바가 있으므로 다시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제동은 지금의 지관들이 다 함께 찬성할 뿐 아니라 예로부터 극찬을 받던 곳인데, 어찌 윤강의 말로 인해 버리겠습니까. 성상의

뜻이 이미 수원에 있기 때문에 군신들이 모두 그대로 따라 다른 말이 없는 것입니다. 성상의 뜻이 만약 홍제동에 있다면 사람들의 의견이 또한 필시 그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고, 준길은 아뢰기를, “만약 홍제동이 가장 길지임을 안다면 그 곳을 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윤강의 하자과 중의의 칭찬을 신은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극력 쟁변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분명 수원이 길지가 됨을 안다면 관방(關防)의 중대함이야 말할 여지가 없겠으나 십분 완벽하지 않다면 가장 길지인 홍제동을 버리고 그 다음인 수원을 반드시 쓰겠습니다.” 또 그 곳 지세가 만세의 후에는 오환(五患)을 면치 못할까 염려됩니다. 원컨대 성명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시열이 여러 신하가 성상의 뜻을 그대로 따른다고 말하니 신들의 마음은 스스로 편치 못합니다. 신 역시 처음에는 홍제동을 쓸 만하다고 하였으나, 선왕께서 거리가 먼 것을 염려하는 하교가 있었음을 듣고는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밖에 쓸 만한 곳이 수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이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또한 감히 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국초에 무학(無學)이 건원릉의 열두 산등성이가 모두 쓸 수 있다고 하였고, 이항복(李恒福)이 일찍이 이것으로 의논드린 일이 있으니 다시 간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지원에게 이르기를, “경이 여러 산등을 두루 살펴보지 않았는가?” 하였다. 이에 지원이 대답하기를, “신이 이미 두루 보았습니다만, 쓰기에 합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戊申/摠護使沈之源·禮曹判書尹絳·觀象監提調吳竣·山陵都監提調鄭致和·護軍李元鎮等, 再看水原山, 還復命, 竝進延曙·漢江北·往十里三處山圖. 上命招領議政鄭太和·判中樞宋時烈·大司憲宋浚吉·僉知尹善道等, 引見于養志堂. 上問之源曰: “再審水原山, 於卿意何如?” 之源曰: “詢謀僉同, 皆以爲極吉. 如臣凡眼, 亦知其異常. 三處山, 皆有疵病, 不合國用矣. 但水原正穴, 尹善道·李元鎮所占處不同, 似難斷定.” 上曰: “尹·李兩人, 各陳所見可也.” 善道以元鎮所定者, 爲狹落, 元鎮以善道所譽處, 爲護砂, 爭論不已. 善道又曰: “毋論道里遠近, 只論山之優劣, 則弘濟洞當爲第一, 水原次之. 水原雖不及弘濟, 猶勝於健元陵諸崗, 此爲大風水矣.” 又曰: “弘濟洞, 非但諸地官同辭稱之, 自古以爲大地. 而尹絳獨短之, 未可知也.” 絳曰: “臣有何所見? 而李元鎮亦以爲玄武觜之怪穴. 安有怪穴而可合國用乎? 善道雖盛贊弘濟洞, 臣意英陵爲專氣, 則此乃枝葉間結穴. 善道之以爲第一者, 臣亦未曉也.” 上曰: “水原便近, 且無匈害, 定用可也.” 太和曰: “然則山陵事已定矣.” 仍以別紙所書進曰: “家戶五百餘, 當撤移, 田七百餘結, 當陳廢矣.” 上曰: “卿等商議, 換給便宜, 俾無民怨也.” 上又問: “邑居則欲移於何處耶?” 之源對曰: “當遷於本府北高等村矣.” 上又曰: “判中樞·大司憲, 各陳所見可也.” 時烈曰: “臣之愚見, 既陳於前. 而今日事, 終有所未安, 不得不更達矣. 弘濟洞非但即今地官之所共贊, 自古盛稱之地, 何可以尹絳之言而棄之? 上意既在水原, 故群臣皆將順無異辭. 上意如在弘濟洞, 詢謀亦必同歸矣. 浚吉曰: “若知弘濟洞之爲最吉, 則用之便當, 而尹絳之瑕疵, 諸議之稱美, 臣不能的知, 故不得極力爭辨矣.” 時烈曰: “決知水原爲吉地, 則關防之重, 有不暇言, 而如非十分眞的, 何可捨最吉之弘濟洞, 而必用其次之水原也? 且其地勢, 萬世之後, 恐不免五患. 願聖明之深思也.” 太和曰: “時烈以諸臣將順上意爲言, 臣等不自安矣. 臣亦初以弘濟洞爲可用, 及聞先王慮道里爲遠之教, 不敢更請. 此外可用只有水原, 故臣非不知其難便, 而亦不敢有所陳達矣.” 時烈曰: “國初無學, 以健元陵十二崗, 爲皆可用, 李恒福曾以此獻議, 不可不更審也.” 上謂之源曰: “卿不遍看諸崗乎?” 對曰: “臣既遍看, 而未有合用者矣.” (…)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19일(무신) 1번째기사>

정치/왕실

부호군 이상진이 수원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다른 곳을 더 찾아보자고 하다

부호군 이상진(李尙眞)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수원의 산은 그 용세와 혈이 산만하고 모호하여 청수하고 존귀한 기세는 조금도 없습니다. 또 형세가 평범하고 낮아서 맺히고 견고한 곳이 없으니 이런 곳이 어떻게 대장(大葬)의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전(畿甸) 1백 리 이내에 또한 반드시 선택할 만한 곳이 있을 것이니, 시일의 기한을 좀 늘려 널리 수소문해 구하여 대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걱정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상소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것이니 내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副護軍李尙眞上疏略曰: 水原之山, 行龍作穴, 懶慢模糊, 無一分清秀尊貴之氣勢. 且其局勢平低, 實無關鎖緊固處. 此何足爲大葬之地乎? 畿甸百里內, 亦必有可擇處. 請少寬日月之限, 廣詢博求, 俾大事無未盡之患. 上答以疏辭出於至誠, 予當留念.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0일(기유) 2번째기사>

정치/왕실

총호사 심지원 등이 재혈(裁穴)하기 위해 수원으로 가다.

총호사 심지원이 아뢰기를, “이상진의 상소에 대해 유념하겠다는 것으로 비답을 내리니, 신들이 감히 성급히 재혈(裁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미 결정한 국릉을 어찌 한 사람이 망령되어 의논할 수 있겠는가. 즉시 나아가 재혈하라.” 하므로, 지원이 윤강·이응시·이원진·윤선도 및 산릉 도감의 도청·낭청 등과 함께 다시 수원으로 갔다.

○摠護使沈之源, 以李尙眞疏, 旣以留念批下, 臣等不敢遽爾裁穴, 稟啓, 上答以已定之國陵, 何有於一人之妄議, 卽進裁穴可也. 之源仍與尹絳·李應蕃·李元鎮·尹善道及山陵都監都廳·郎廳等, 更往水原.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0일(기유) 3번째기사>

정치/왕실

함릉군 이해가 수원이 국장에 부적합하다고 상소하다

함릉군(咸陵君) 이해(李漉)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지리학을 신은 알지 못하지만, 일찍이 수원에 부임하였을 때에 그 곳의 형세를 익히 보았는데 이를 인사로 미루어 볼 때 결단코 국장에 합당치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수원은 3도의 경계를 접하고 땅은 모두 평야인데 그 읍거(邑居)만이 약간의 잔산 단록(殘山斷麓)이 되어 두어 겹을 들렀을 뿐입니다. 이른바 피해야 하는 5환(患)이라는 것이 이런 곳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국초 이래로 한 사람의 석덕 준사(碩德僑士)도 이곳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오직 무부 궁마(武夫弓馬)의 인재만 나왔을 뿐입니다. 반드시 닥쳐올 환란을 헤아리고 지난날의 징험으로 논할 때 결코 쓸 수 없는 소지가 있습니다. 윤강은 홍제동이 나쁘다고 하며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고 있습니다. 신의 상소를 내려 다시 여러 대신 및 유신으로 하여금 반복해 가며 논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알았다고 답하였다.

삼가 상고하건대, 이해는 훈구(勳舊)로 병을 핑계대고 두문 불출한 지 10년이 거의 되도록

입을 막고 세상 일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에 이르러 소를 올려 산릉을 수원에 쓸 수 없음을 극언하니, 그는 반드시 국가를 위한 원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혹은 그를 공격하여 송시열의 논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한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이해로도 오히려 이와 같은 비난을 받았으니 그 나머지는 말할 게 뭐 있겠는가.

○庚戌/咸陵君李漉上疏, 略曰: 地理之[學], 臣所未曉, 而嘗受任水原, 慣見其形勢, 推以人事, 決知其不合於國葬. 蓋水原當三道之會, 地皆平野, 獨其邑居, 略有殘山斷麓, 環擁數重而已, 所謂五患之可避者, 非指此等地, 而言耶? 且自國初以來, 未聞有碩德雋士, 一出於其地. 只產武夫·弓馬之才. 計其必至之患, 論以已往之驗, 有決不可用者. 尹絳嘗毀弘濟洞, 以所不知爲知. 請下臣章, 更令諸大臣及儒臣, 反覆論難. 上答曰: “知首. 謹按李漉, 以勳舊, 杜門謝病, 已近十年, 絕口不談世事, 而至是陳疏, 力言山陵之不可用於水原. 其必有爲國家深遠慮者. 而或者斥之, 以附托時烈之論. 以漉之無求於世, 猶被此詆, 其他尙何言哉?”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1일(경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연양 부원군 이시백이 수원이 산릉에 합당치 못하다는 내용의 차자를 올린다

연양 부원군 이시백이 차자를 올려 수원이 산릉에 합당치 못함을 극력 개진하여 이르기를,

“사리로 논하면 송시열의 말이 지당하고, 형세로 말하면 이상진과 이해의 상소가 상세합니다. 신이 일찍이 본부에 부임하여 6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선유 및 지관의 말에 모두 초목이 무성한 곳이 좋다고 하였는데, 지금 국릉을 정한 곳은 바로 관아의 뒤입니다. 신이 항상 그 민둥산을 민망히 여겨 나무를 심었으나 끝내 수풀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크게 의심스러운 것이며, 또 청룡, 백호 사이에 계란형의 사각(砂角)이 하나 있으니 이는 지가(地家)들이 가장 꺼리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용이하게 결정하고 여러 신하들의 염려하는 말도 모두 돌아보지 아니하는가 하면 상소까지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를 반복해 생각할 때 초조한 마음에 애가 타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차자를 번거롭게 올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것이 비록 경의 지성에서 나온 것이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무신년에 수원 산을 결정하였다가 민폐로 정지하였는데, 오늘날처럼 분분하게 하자의 시비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국릉을 결정하였으니 다시 번거롭게 말하지 말라.” 하였다.

○辛亥/延陽府院君李時白, 上劄, 極陳水原之不合山陵曰: 論以事理, 則宋時烈之言至矣, 陳其形勢, 則李尙眞·李漉之疏詳矣. 臣曾莅本府, 至於六年之久. 先儒之論, 及地家之說, 皆以草木之茂盛爲美. 而今此所定之地, 乃是衙舍之後. 臣常嫌其濯濯, 種樹而終不成, 此實可疑之大者. 且聞龍虎之間, 有一卵形之砂, 此地家所大忌. 今乃容易決定, 諸臣疑慮之言, 皆莫之恤, 至於疏章勿令捧入. 臣反覆思之, 危厲熏心, 達夜不寐, 涕淚橫流. 茲敢冒死上瀆. 答曰: “此雖出於卿之血誠, 予意有不然者. 戊申定於水原, 以民弊停止, 而未聞如今日之紛紜瑕疵也. 國陵已定, 更勿煩言.”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2일(신해)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총호사 심지원 등이 수원을 재혈하고 돌아와 택일할 것을 계청하다

총호사 심지원 등이 수원으로부터 재혈하고 돌아와 해조로 하여금 택일하게 할 것을 계청하니, 상이 이에 따랐다.

○癸丑/摠護使沈之源等, 自水原裁穴入來啓, 請令該曹擇日, 上從之.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수원 산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것을 고민하다

상이 양지당(養志堂)에서 총호사 이하를 인견하고 수원 산의 일을 논란하면서 상소가 분분한 것으로 몹시 고민하였다. 승지 강백년(姜栢年)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근래에 산릉을 논하여 올린 소는 먼저 품의한 후에 들이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그 후 대사간 이정기 등이 “소차를 먼저 품의한 후에 들이라는 하교는 몹시 온당치 못한 것인데, 입시 승지가 끝내 한 마디 말도 없었으니, 자못 가부를 논하여 상을 보필하는 승지의 임무에 흠이 있는 것입니다.” 고 논하여 추고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上引見摠護使以下于養志堂, 反復論難水原山事, 深以章疏紛紜爲悶. 顧謂承旨姜栢年曰: “近來論山疏, 先稟以入可也.” 其後大司諫李廷夔等, 論以疏筭先稟以入之教, 甚未安, 而入侍承旨, 終無一言, 殊欠惟允之義. 請推考, 上不從.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연양부원군 이시백이 차자를 올려 수원이 흠을 잡는 의논이 많다고 하다

연양 부원군 이시백이 차자를 올려 전의 말을 되풀이하여 홍제동을 쓰지 않을 수 없음을 극론하니, 상이 길이 멀어 쓸 수 없다는 선왕의 뜻으로 하유하였다. 이날 또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수원 산은 흠을 잡는 의논이 많으므로 중의가 걱정스럽게 여깁니다. 불가불 널리 지관을 구하여 각각 기내(畿內)의 쓸 만한 땅을 추천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내 말은 이미 다 했는데 경의 뜻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하유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였다.

○延陽府院君李時白筭申前說, 極論弘濟洞不可不用, 上諭以路遠不可用之先旨. 是日又上筭, 言水原山疵議多端, 群情憂懼, 不可不廣求諸術人, 各薦畿內可用之地. 上答曰: “予言已悉, 而卿意如此, 不知所以爲喻.”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3번째기사>

#### 정치/왕실

예조 판서 윤강이 더 조사하여 수원보다 나은 산을 얻는다면 다행이라고 하였다

예조 판서 윤강이 소를 올려 인척하였는데, 이해에게 공척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또, 이상진(李尙眞)·유계(兪槩)·이광재(李光載)로 하여금 다시 홍제동 및 수원 산을 간심하게 하여 혹시라도 수원보다 나은 다른 산을 얻게 되면 더욱 다행한 일이라는 것으로 청하였다. 소가 들어가자, 정원에 하교하기를, “이 소는 총호사와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고 이어 윤강을 회유하여 안심하고 대죄하지 말라고 하였다.

○禮判尹絳上疏引罪, 以見斥於李漣故也. 且請令李尙眞·兪槩·李光載, 更看弘濟洞及水原山, 或看得他山勝水原, 則尤大幸也. 疏入, 下教政院曰: “此疏議于摠護使以啓, 仍諭絳安心勿待罪.”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5번째기사>



정치/왕실

전 영종추 원두표가 수원 산이 국릉에 불가함을 극언하다

전 영종추 원두표(元斗杓)가 장준(張浚)이 적소에서 상소를 올린 고사를 인용하여 죄를 진 신하라고 자칭하고 상소하여 수원 산이 국릉에 불가하고 홍제동을 버릴 수 없음을 극언하고, 또 윤강의 지술(地術)이 부족함을 공격하였다. 이에 상이 답하였다. “내 실로 경의 지극한 정성을 아나 다시 의논하기 어려운 일이다.”

○前領中樞元斗杓，引張浚在謫上章故事，自稱罪累臣，上疏極言，水原之不合於國陵，弘濟洞之不可捨，且斥尹絳地術之淺短．上答曰：“孤實嘉卿之至誠，事難更議矣．”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6번째기사>

정치/왕실

현종이 수원과 홍제동 외에 왕릉으로 쓸 다른 산을 알아보게 하다

총호사 심지원이 아뢰기를, “윤강의 상소에 의하여, 이상진 등 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수원 산 및 홍제동을 간심하게 하되, 홍제동은 3신(三臣)의 간심을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그 쓰기에 합당함을 알고 있으니, 만약 다른 산을 보아 소득이 있으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홍제동은 다시 간심할 필요가 없으니, 세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서울에서 가까운 다른 산을 추천하게 하라.” 하였다.

유계(兪槩)가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본래 지술을 모르는 사람인데 일을 맡은 신하들이 잘못 듣고 추천하였으니 물리쳐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양하지 말고 빨리 가라.” 하였다. 이상진이 또 아뢰기를, “실로 직접 보아 얻은 것은 없으나, 일찍이 지관의 말을 들으니, 광주(廣州) 원적산(圓寂山)의 용세가 아름답고, 헌릉(獻陵) 내 이수동(梨樹洞)이 예로부터 일컬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곳을 간심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摠護使沈之源請，依尹絳疏辭，令李尙眞等三人，更看水原山及弘濟洞，而弘濟則不待三臣更審，可知其合用，如有他山見得處，則其幸莫甚．上答以弘濟洞不必更看．且令三人，各薦近京他山．兪槩陳疏，辭以素昧地術，當事之臣，誤聞謬引．乞賜斥退．答以母辭速往．李尙眞亦言，實無見得處．曾聞地師言，廣州圓寂山行龍爲佳，獻陵內梨樹洞，從古見稱．請看此兩處．從之．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7번째기사>

정치/왕실

대사헌 송준길이 다른 길지를 얻지 못한다면 수원을 써도 무방하다고 차자를 올리다

대사헌 송준길이 차자를 올려 사직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본래 풍수지리의 학설에 어두워 감히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으나, 신하들이 잇달아 계청하는 것은 모두 지극한 본의에서 나온 것이니, 먼저 배척을 가하여 일체를 끊어 버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신이 평소 아는 바로는 이상진은 자못 그 방면에 밝습니다. 두어 신하와 함께 다시 기내의 여러 산을 간심하게 하여 혹시라도 전혀 흠이 없는 순수한 길지를 얻는다면 무엇이 이보다 더 다행하겠습니까. 만약에 얻지 못한다면 그대로 수원을 쓰는 것 또한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산릉을 이미 다시 간심하게 하였으니, 경은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大司憲宋浚吉，上劄辭職，又曰：臣素昧堪輿家說，不敢明爭顯執於彼此取舍之間，而諸臣之相繼陳請，俱出於至誠惻怛之意，不宜先加揮斥，一切句斷也．臣雅知李尙眞頗解其方．令與數臣者，更審畿內諸山，倘得純吉無疵之地．幸孰大焉？如其不得，則仍用水原，亦無不可．

上答曰：“山陵既令更看，卿其安心勿辭。”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8번째기사>

정치/왕실

이해(李漈)가 신하들이 수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다

이판 송시열이 차자를 올려 사직하고 또 이해의 상소로 인책하며 아뢰기를, “산릉의 의논은 두 차례의 사대(賜對) 때에 구구한 소회를 다 말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울러 안율(按律)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이는 대개 이해가 제신이 수원 산의 합당하지 못한 것을 힘써 쟁집하지 않음을 그르다고 했기 때문이다. 상이 너그러이 비답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吏判宋時烈，上劄辭職，又以李漈疏引答曰：山陵之議，兩蒙賜對，自以爲區區所懷，無有不盡。今被竝按之律，蓋漈以諸臣不能力爭水原山不合爲非故也。上優批不許。(…)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4일(계축) 9번째기사>

정치/왕실

완남 부원군 이후원이 차자를 올려 수원 산을 쓸 수 없음을 진술하다

완남 부원군 이후원이 차자를 올려 수원 산을 쓸 수 없음을 극력 진술하고, 또 아뢰기를, “건원릉은 곧 우리 태조(太祖)가 신승 무학(無學)으로 더불어 친히 고른 땅으로서 대개 명나라의 만세산(萬歲山)과 같이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 지류의 산등성이가 많다고 하니 필시 쓸 만한 땅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헌릉(獻陵) 언덕은 칭찬하는 자는 몹시 많고 흠을 잡는 자는 몇 사람에게 불과합니다. 무릇 산을 정하는 법은 칭찬하는 자가 많고 흠잡는 자가 적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신은 들으니, 한양(漢陽)에 도읍을 정할 때 의논이 분분하여 마치 오늘날 같았는데, 태종 대왕께서 태묘(太廟)에서 동전을 던져 점쳐 이길 일흥(二吉一凶)을 얻고서 드디어 정하였다고 합니다. 도읍과 능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수원은 술사(術士)는 비록 길하다 하나 앞으로의 길흉을 예측할 수 없거니와, 국릉(國陵)의 국내는 곧 이미 징험한 땅입니다. 어찌 편벽되게 지리(地理)의 애매한 말을 믿고 현저히 나타난 인사로 주장을 삼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의 지성은 가상하나 다시 의논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乙卯/完南府院君李厚源上劄，極陳水原山之不可用，又言：健元陵，乃我太祖與神僧無學親卜之地，蓋欲如大明之萬歲山也。餘岡尙多云，未必無可用之地。況獻陵之原，稱譽者甚多，訾議者不過數人。凡定山之法，譽者多而毀者少，則可以用之。臣聞漢陽定都時，論議紛紜，亦如今日，太宗大王擲錢於太廟而卜之，得二吉一凶，遂定焉。都與陵何異？水原則術士雖以爲吉，其爲吉 尙，有難預知。至於國陵之內，則乃是已效已驗之地，其可偏尙地理渺茫之說，不以顯著之人事爲主也哉？上以嘉卿至誠，事難更議，答之。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6일(을묘) 1번째기사>

정치/왕실

총호사 심지원이 수원의 산역을 우선 정지하게 할 것을 청하다

총호사 심지원이 아뢰기를, “여러 대신이 계속 차자를 올리고, 이상진(李尙眞) 또한 다시 다른 산을 간섭하기 위해 나아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수원의 산역은 우선 정지하게 하고, 도감 제조 이하는 완전히 결정한 후에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어찌 정지하겠는가. 그대로 산역을 시작하여야 될 것이다.” 하였다.

○摠護使沈之源啓: “以諸大臣相繼陳筭, 李尙眞亦爲更看他山, 出往未還, 水原山役, 姑令停止, 都監提調以下, 待完定後, 發送似當.” 上答曰: “何必停止? 乃令始役可也.”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6일(을묘) 5번째기사>

## 정치/왕실

### 현종이 수원을 그대로 쓰라고 하다

예조 판서 윤강, 관상감 제조 이응시가 산을 간심하고 돌아와 아뢰기를, “원적산(圓寂山)·광진(廣津) 강 위의 산, 이수동(梨樹洞)이 모두 대용(大用)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대로 수원을 쓰라.” 하였다.

○禮判尹絳·觀象監提調李應著, 看山回來, 啓以圓寂山·廣津江上山梨樹洞, 俱不合於大用. 上答以仍用水原.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29일(무오)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현종이 사세상 수원밖에 다른 의논이 없다고 말하다

(현종이) 또 이르기를, “지금 이 산릉의 일에 대하여 좌참찬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시열이 아뢰기를, “막중한 일을 소신이 맨 처음 이의를 제기하고 그 후 대신·재신이 계속 차자를 올려 지금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보니 신은 실로 황공합니다. 그러나 만세의 후에 오환(五患)의 염려는 인사로 미루어 볼 때 반드시 닥쳐올 형세입니다. 본부(수원부)가 항상 6, 7천의 병마를 보유하고 지세 또한 삼남(三南)의 요충에 위치하여 흑시라도 변란이 있으면 반드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수백 채의 민호를 일시에 철거하여 조상의 분묘를 잃고 가산을 파하게 되므로 그 원한의 탄식 소리가 응당 화기를 상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주자(朱子)의 말에 의하여 우선 시기를 늦추어 널리 다른 산을 구하는 것만 못하다고 봅니다.”

하고, 이어 건원릉의 좌측 산등성이를 다시 여러 지관에게 문의할 것을 청하니, 상이 주서 권두추(權斗樞)를 명하여 빈청에 나가 대신에게 묻게 하여 이르기를, “건원릉 좌측 산등성이가 두 능의 청룡·백호가 되는데 그곳을 쓸 경우 두 능에 해가 없겠느냐고 윤강·이원진·윤선도 및 여러 지관에게 물어 아뢰게 하라.” 하니, 영상·좌상이 아뢰기를, “신들이 윤강·이원진 및 여러 지관을 불러 물어서 별단으로 서계(書啓)합니다. 윤선도는 강외(江外)에 나가 있으므로 물어 아뢰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달리 좋은 땅이 없고 사세가 이에 이르렀으니 수원 밖에 다른 의논이 없을 것 같다.” 하였다.

○(…) 又曰: “今此山陵事, 左參贊以爲如何?” 時烈曰: “莫重之事, 小臣首發異議, 其後大臣·宰臣, 繼陳疏筭, 至今未定, 臣誠惶恐. 然萬世之後, 五患之慮, 揆以人事, 必至之勢也. 本府常有六七千兵馬, 地勢且當三南要衝, 脫有變亂, 必爲戰場. 卽今累百民戶, 一時毀撤, 捐丘墓破產業, 怨恨愁歎, 足傷和氣. 臣意則莫如依朱子說. 姑寬日月之期, 廣求他山也.” 仍請健元陵左一崗, 更問於諸地官. 上命注書權斗樞, 出問於賓廳, 大臣曰: “健元陵左一崗, 爲兩陵龍虎, 用之無害於兩陵耶, 使問於尹絳·李元鎮·尹善道及諸地官以啓.” 領左相啓曰: “臣等招問尹絳·李元鎮及諸地官, 別單書啓. 尹善道出去江外, 不得問啓矣.” 答曰: “他無善地, 事勢至此, 水原外似無他議矣.”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6월 30일(기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예조판서 윤강이 수원을 왕릉으로 결정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사직하다

예조 판서 윤강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이 마침 본직에 있게 되어 산릉(山陵)를 살피는 걸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사상(私喪) 때 묘자리를 찾은 일로 인해 대략 건문이 있게 되었지만, 군부의 의관을 장례함에 어찌 감히 잡술(雜術)로 혐의하여 진퇴를 꺼리겠습니까. 홍제동(弘濟洞)은 사람들이 모두 길하다고 말하나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못내 미진함이 있기 때문에 감히 처음의 견해를 숨기지 않은 것이며, 또 신의 말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원(水原)에 이르러서는, 두루 여러 땅을 살펴보았으나 모두 길한 곳을 얻지 못했는데, 오직 이 땅만을 여러 신하 및 지관(地官)들이 다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이 여기에 대해 다른 견해 없이, 다만 그들이 산을 의논한 것에 근거하여 치계했었습니다. 지금 한두 대신 및 중신들이, 신이 홍제동을 헐뜯어 마침내 수원으로 결정되게 했다고 죄안(罪案)을 삼습니다. 신을 과직하여 공의(公議)에 사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고 유시하였다.

○禮曹判書尹絳上疏, 略曰: 臣適忝本職, 預於山陵看審之行. 臣於私喪, 因求山略有所聞見, 乃於君父衣冠之葬, 何敢以雜術爲嫌, 而有所顧忌前却乎? 弘濟洞, 人皆謂之吉, 而於臣愚見, 竊有所未盡. 故不敢諱其初見, 而亦非以臣言爲必可行也. 至於水原, 則遍審諸地, 俱未得吉, 而惟於此地, 諸臣及地官輩, 皆以爲可合, 臣於此別無異同之見, 只據其山論, 而馳啓矣. 今者一二大臣及重臣, 以臣訾毀弘濟洞, 而終歸於水原爲罪案. 請罷臣職, 以謝公議. 上諭以安心勿辭.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2일(신유)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연양 부원군 이시백이 산릉으로 수원을 반대하는 차자를 올리다

연양 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신이 삼가 건원릉(健元陵) 왼쪽 한 언덕에 대해서 다시 물어서 아뢰라는 하교가 계신 것을 보고, 성상께서 중대한 일을 신중히 하심을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어서 듣건대 총호사(摠護使)가 물어 계달한 내용에 쓸 수 없는 곳으로 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풍수에 비록 소견이 없지만 삼가 고 상신 이항복(李恒福)이 경자년 의인 왕후(懿仁王后)의 국장 때 전후하여 의논한 계사가 모두 문집(文集) 가운데 실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건원릉의 여러 언덕의 형세를 매우 자세히 논하고 있으므로 신이 삼가 별단(別單)에 써서 예람에 대비합니다.

인하여 생각하건대 건원릉은 바로 태조 대왕과 신승(神僧) 무학(無學)이 고른 땅이며, 선조(宣朝) 때 술사 이의신(李懿信)과 박상의(朴尙毅) 등은 실로 오늘날 이른바 풍수에 밝다고 하는 무리에게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전에 무학이 정하였고, 후에는 의신과 상의가 칭찬하였으니, 그 땅이 좋아서 쓸 만함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오늘날 지관의 말 때문에 그 사이에 의심을 둘 수 없음이 확실합니다. 그 때 첫째 언덕과 둘째 언덕을 반복하여 논했는데, 일찍이 용호(龍虎)를 다쳐 놀라게 한다는 말이 없었고 또 너무 가까운 것이 방해된다고 하지도 않았으니, 오늘날 지관의 말은 본디 신용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왼쪽 한 언덕 말고도 다른 언덕이 여전히 많은데 단지 한 언덕만 보고 다른 언덕은 보지 않음은 또 어찌서입니까. 또 이상진(李尙眞) 등 세 사람이 이미 풍수에 밝다고 했으니 역시 수원 및 다른 곳도 살펴보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서 의논하지 않게 하고 단지 일방적으로 수원을 주장하는 여러 지관에게만 물으시니, 널리 묻는 방법이 아닌 듯 싶습니다.

또 생각하건대, 수원의 한 산은 혈도(穴道)에 대한 논의가 차이가 심합니다. 신이 지술(地術)에 노련한 사람이 한 말을 들었는데 수원은 상파(傷破)한 땅이 정혈(正穴)이라고 합니다. 산을 고르는 일은 혈을 고르는 것을 가장 위주로 하니, 혈도가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형국(形局)이 아무리 좋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또한 자세히 알아 두지 않으면 안 될 점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깊이 헤아리시어 이상진(李尙眞) 등과 여러 지관에게 명하여, 다시 왼쪽 한 언덕 및 여러 언덕을 반복해 자세히 의논하게 하고, 수원의 혈도(穴道) 역시 다시 헤아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국장(國葬) 때 산릉을 가리는 것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으랴만 어찌 오늘날처럼 불분명하였겠는가. 60년 전의 일이라고 어찌 모두 좋은 것이겠으며 오늘의 일이라고 어찌 모두 좋지 않은 것이겠는가. 경이 이미 진심에서 우리나라의 정성으로 여러 번 차자를 올리고 또 지술(地術)이 높은 사람을 천거하니, 나의 망극한 회포에 조금은 위안이 된다. 수원의 혈도는 다시 자세히 살피게 하겠다.” 하였다.

○延陽府院君李時白, 上筭略曰: 臣伏見健元陵左一崗, 有更爲問啓之教, 竊幸聖上, 慎重大事. 繼聞摠護使問啓之辭, 定以不可用. 臣於山家事, 雖無所見, 竊見故相臣李恒福, 當庚子年懿仁王后國葬時, 前後議啓, 俱在文集中, 健元陵諸岡形勢, 論之甚詳. 臣謹書諸別單, 以備睿覽. 仍念, 健元陵乃我太祖大王與神僧無學擇卜之地, 宣廟朝術士李懿信·朴尙毅等, 實非今日所謂曉解風水者所可倫比. 無學定之於前, 懿信·尙毅讚之於後, 可知其地之純吉可用, 不可以今日地師之言, 有疑於其間也, 明矣. 其時一崗二崗論之反覆, 而未曾有傷動龍虎之言, 又不以逼近爲妨, 今日地官之言, 固不足信用. 而左一岡之外, 他岡尙多, 只見左一岡, 不見他岡, 亦何也? 且李尙眞等三人, 旣云曉解風水, 亦可使看水原及他處, 而今乃不使此等人, 見而議之, 只問於偏主水原之諸地官, 亦恐非博詢之道也. 且念水原一山, 穴道之論, 甚有同異. 竊聞老於地術者云, 水原傷破之地, 乃正穴也. 卜山最以定穴爲主. 穴道若有毫釐之差, 形局雖好, 亦無所用, 此又不可不詳審處也. 伏願深加財量, 着令李尙眞等, 與諸地官, 更看左一岡及諸岡, 反覆熟議, 而水原穴道, 亦令更爲商論.

上答曰: “因山之卜, 何代無之, 而豈有如今日之茫昧乎? 六十載前事, 何其盡善, 今日之事, 何皆不善乎? 卿旣以血誠累筭, 亦以血誠薦進術高之人, 少慰孤罔極之懷. 水原穴道, 更令看審焉.”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2일(신유) 6번째기사>

## 정치/왕실

부호군 이상진이 수원이외에 서울 근교의 국장에 쓸 만한 곳 세 군데를 아뢰다

부호군(副護軍) 이상진(李尙眞)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이 망령되어 산릉을 논하였으니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성상의 도량으로 너그럽이 용서하시고 신으로 하여금 서울 가까운 곳의 산을 추천해 아뢰도록 하시니, 신은 더욱 근심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홍여명(洪汝溟)이란 자가 경상(卿相)의 집에 가서 수원보다 더 좋은 다른 산을 추천했다는 말을 우연히 듣고 신이 몸소 찾아서 불러 보았는데, 그의 말이 역시 대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어려서부터 승려 희정(熙淨)을 따라다니며 지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듣건대, 그가 아는 바로는 서울 가까운 곳으로 국장(國葬)에 쓸 만한 곳이 세 군데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곧바로 여명을 데리고 달려가면서 또 조량(趙亮)에게 질정(質正)을 청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건원릉(健元陵) 국내의 서쪽 골짜기로 백호(白虎)와 두 겹이

떨어져 있는데, 형세가 단정하며 기상이 혼후(渾厚)하여, 그 빼어남이 동국(東局) 여러 능과 서로 상하가 될 만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불암산(佛巖山) 아래 화접동(花蝶洞)으로 성봉(星峯)이 높이 솟아오르고 쌍유(雙乳)가 혈을 이루어 기세가 웅장해 존귀하기 짝이 없어, 이런 절승지는 경외(京外)에서도 보지 못하던 바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과천(果川) 땅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급해서 미처 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 곳을 마땅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지사(地師)를 거느리고 가서 살피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조량은 술업(術業)이 숙련되고, 이간(李衍)은 실제 병이 나서 지체되었으며, 이광재(李光載)는 듣건대 이미 하향하였다고 하는데, 불러서 함께 보면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또 직책을 띠고서 사사로이 나간 것을 이유로 인책하니, 상이 답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소의 내용은 의논해 처리하겠다.” 하였다.

○副護軍李尙眞上疏, 略曰: 臣妄議山陵, 罪在不赦. 聖度寬假, 令臣薦聞近京之山, 臣益不勝憂悶. 偶聞有洪汝溟者, 抵卿相家, 力薦他山之勝於水原者, 臣窮尋招見之, 其言亦多有理. 自言少從僧熙淨, 學其術, 聞其言, 以其所聞近京而合於國用, 有三處云. 臣卽率汝溟馳往, 且請趙澆以質之. 其一, 健元陵內, 西洞, 而與白虎隔二重. 形勢明正, 氣像渾厚, 其爲粹美, 當與東局諸陵相上下. 其一, 佛巖山下花蝶洞. 星峰聳拔, 雙乳成穴, 氣勢清雄, 尊貴無比. 此等絕勝之地, 京外所未見也. 其一, 果川地而緣時忽急, 未及往見. 此三處, 宜令禮官, 率地師往審也. 且言, 趙澆術業練熟, 李衍實病稽滯, 李光載聞已下鄉, 召致同看, 幸甚.

又以帶職私出引罪. 上答以勿待罪. 疏辭議處焉.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2일(신유) 7번째기사>

## 정치/왕실

### 좌참찬 송시열이 차자를 올려 수원이 쓸 만한 곳이 아니라고 말하다

좌참찬 송시열(宋時烈)이 차자를 올려 관의금을 사직하고, 또 이르기를,

“신이 산릉의 일에 대해 맨 처음 이의를 내기는 했으나 본래 지술에 어두워 이상진(李尙眞)이 분주히 찾아다니는 것만 못하고, 성의의 부족함이 또 이시백(李時白)이 간고해 마지 않음만 못하니, 신의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본조의 지사로는 전에는 무학(無學)이 신승(神僧)이라 일컬어졌고, 후에는 이의신(李懿信)·박상의(朴尙毅)가 그중 가장 드러난 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말한 바가 모두 건원릉이 가장 길지(吉地)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지관 수십 명이 비록 기술을 다하여 찾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지관에게 분명한 하교를 하시어 선입견을 주장하지 말고 자기가 공을 세우려 하지 말도록 하여서, 건원릉 여러 언덕에서 가장 좋은 곳을 가려 신혈(神穴)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마땅하고 신인(神人)에게도 합당할 것입니다.

또 신이 비록 건원릉 언덕이 반드시 쓸 만한지에 대해서는 모르나 수원이 반드시 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오환(五患)의 설이 비록 매우 절박하기는 하나 요컨대 눈앞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아들로써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뜻을 받드는 것이 큰데 참으로 뜻을 받드는 것을 크게 여긴다면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행 대왕께서 지극한 인을 두루 미쳤는데, 사졸(士卒)에 대해서는 특히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7천 명 병갑(兵甲)의 소재지로 삼아서 한(漢)의 양주(涼州)와 비겼는데, 장수와 수령을 차출해 보낼 경우 반드시 선택하기를 지극히 했으며 그 곳 사람들을 무휼(撫恤)하기를 반드시 다른 고장보다 달리 해서, 급할 때 힘을 얻을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을을 철거하고 농토를 파괴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숨 쉬고 탄식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대 행 대왕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뜻이 참으로 편안치 못하다면 비록 지리(地理)를 진선 진미 하게 하더라도 역시 자식으로서 죽은 분을 살아 있을 때처럼 섬기는 도리가 아닌데, 더욱이 풍수 지리설은 불분명하여 참으로 알기 어려운 점이 있는 데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 신하들이 길지를 가려 선왕(先王)을 장례한다는 것이 바로 근심하고 원망하는 지역에 안장하는 것이고, 선왕의 체백(體魄)이 편안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로 선왕의 뜻을 크게 손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 신하들이 ‘선왕(先王)께서 하느님의 좌우에 계시어 그들을 돌보아줌이 없으니 비록 이렇게 하더라도 해될 게 없다.’ 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죄입니다. 여러 신하들도 오히려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더군다나 전하의 효성으로써 차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말이 지성에서 나와 나도 모르게 감동되어 눈물이 나왔다.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등의 말은 즉시 분부하도록 하겠다. 경은 안심하여 사직하지 말고 직 임을 살피라.” 하였다.

○壬戌/左參贊宋時烈上筭, 辭判義禁, 又曰: 臣於山陵事, 首發異議, 而素昧地術, 不能如李尙眞之奔走尋討, 誠意不足, 又不如李時白之懇叩不已, 臣罪萬死. 本朝地師, 前則無學稱以神僧, 後則李懿信·朴尙毅, 其最著者也, 三人所言, 皆以健元陵爲最吉. 則 [今] 日諸地官百十輩, 雖竭其技術而求之, 豈能得其勝此者哉? 伏願明教地官, 毋主先入, 毋欲自功, 俾於健元諸崗, 擇其最優, 以定神穴, 事理得宜, 神人合應矣. 且臣雖未知健元崗之必可用, 而水原之必不可用, 則臣極知之五患之說, 雖甚切迫, 要非目下之事. 唯是子之事親, 養志爲大, 苟以爲大則存沒何異哉? 大行大王, 至仁徧善, 而至於士卒, 則特其甚焉. 故以水原, 爲七千兵甲之所在, 擬之於漢之涼州, 差遣帥倅, 必極其選, 撫恤其人, 必異他邑, 以爲緩急得力之地也. 今者撤其邑里, 破其田產, 使之咨嗟怨歎者, 必非大行大王之志也. 志苟不安, 則雖使地理盡善盡美, 亦非臣子事亡如事存之道. 況地說茫昧, 有難眞知乎? 然則今日諸臣, 所以擇吉而葬先王者, 乃所以葬之於愁怨之域, 而所以求先王體魄之安者, 乃所以大傷先王之志也. 苟諸臣之意, 以爲先王在帝左右, 無所顧戀, 雖其如此, 亦無所害云爾, 則是罪之大者也. 諸臣尙不可如此, 況殿下之誠孝, 其忍爲此乎?

上答以辭出至誠, 不覺感泣. 毋主先入等語, 卽令分付矣. 卿其安心, 勿辭察職.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3일(임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윤선도가 건원릉이 수원보다 못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경기 감사 오정일이 보고하다**

경기 감사 오정일(吳廷一)이 치계하였다. “삼가 유지를 받들어 역마와 함께 윤선도(尹善道)가 있는 곳에 보냈더니, 그의 종 이름으로 정장(呈狀)하여 신병을 진술하는 한편 또 말하기를 ‘건원릉(健元陵) 왼쪽 언덕의 형세가 수원(水原)에 미치지 못함은 일찍이 상달하였 으며 불암산(佛巖山)은 화산(火山)인데 화산 아래는 혈(穴)을 맺지 못한다고 옛부터의 비방에 나와 있습니다. 설령 나아가 참여하더라도 어리석은 견해로 쓸 만한 땅을 알 이치가 만 무하니, 계문해 주기를 청한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급히 달려가도록 하였습니다.”

○京畿監司吳挺一馳啓: “祇受有旨, 并與駟馬送于尹善道在處, 則以其奴名呈狀, 陳病狀, 且言: ‘健元陵左岡, 局勢之不及水原, 曾已上達. 佛巖山乃是火山, 火山下不結穴, 古方有之. 設令進參, 愚暗之見, 萬無能知其可用之理, 請啓聞云.’ 故更令急急馳往矣.”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4일(계해)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심지원이 건원릉과 수원의 장단점을 보고하고 수원의 역사를 중지할 것을 청하다**

예조 판서 윤강 등이 산을 보고 온 뒤 복명하니, 상이 총호사 이하가 서로 회의하여 아뢰라고 명했다. 심지원(沈之源)이 명을 받들고 의논해 건원릉의 두 언덕과 수원의 우열을 아뢰고, 인하여 청하기를, “건원릉 언덕을 다시 살펴보고, 우선 수원의 역사를 정지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甲子/禮曹判書尹絳等, 看山後復命. 上命摠護使以下, 相會議啓. 沈之源承命議啓, 健元陵兩岡及水原優劣, 仍請再審健元岡, 姑寢水原之役. 上從之.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5일(갑자)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총호사 심지원과 윤강이 수원의 풍수에 대해 논의하다**

총호사 심지원이 아뢰기를, “기중윤(奇重胤)이 찾아낸 언덕은 뽀얀 용(龍)이 기복(起伏)하고 혈도(穴道)가 풍후(豐厚)하며, 용호(龍虎)가 겹겹으로 둘러싸여 기세가 웅위(雄偉)한 데다가 또 귀격(貴格)이 있습니다. 다만 안쪽 물 어귀가 엇갈려 잠기지 않고 외당(外堂)을 평평하게 임한 것이 흠입니다. 이상진(李尙眞), 윤선도(尹善道), 이최만(李最晩) 등은 모두 흠으로 여기는데, 윤강(尹絳), 이원진(李元鎭), 기중윤(奇重胤) 등은 해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반호의(潘好義)가 찾아낸 언덕보다는 좋기 때문에 이 혈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만 그 좌향(坐向)이 9월·10월은 모두 꺼리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발인(發引)과 하현궁(下玄宮)은 길일(吉日)을 극진히 가려야 하는데, 장기(葬期) 역시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되니, 시임(時任)과 원임(原任) 여러 대신 및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등으로 하여금 회의하여 품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즉시 지원 등을 여차(廬次)에서 인견하고, 새 언덕의 형세가 수원에 비해 어떠한가를 물었다.

지원이 말하기를, “수원(水原)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신이 감히 알지 못하나 백성과 고을을 옮기는 폐단이 없으니, 이것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하니, 윤강이 말하기를, “신의 생각에는 새 언덕이 좋다고 여겨지는데 다른 사람은 모두 수원만 못하다고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전에 살핀 산 중에는 수원만한 곳이 없었는데, 조정의 의논이 모두 쓸 수 없다고 말하고, 또 오환(五患)의 설(說)을 가지고 산을 살핀 사람에게 죄를 들었습니다. 신은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지원이 아뢰기를, “송시열의 차자 가운데 ‘돌봐 주는 바가 없으면 해될 것이 없다고 여긴다.’ 하는 등의 말은 신하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바입니다. 신이 이미 이런 죄명을 지고서 어찌 감히 조정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빨리 직명(職名)을 삭탈하여 백의(白衣)로 능역(陵役)을 살피게 하소서.”

하니, 윤강이 말하기를, “당초 수원의 산으로 의논해 정한 자는 신이니, 만약 그 죄를 논한다면 신이 실로 감당해야 합니다. 총호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미 중한 배척을 받았으니, 종백(宗伯)의 직임을 체직하시고, 윤선도·이원진과 함께 군직(軍職)을 띤 채 산을 살피는 데 참여하게 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모두 위로하며 타이르고 윤택하지 않았다. 지원이 여러 신하 및 두 유신(儒臣)을 명초(命招)하여 의논해 정하라고 거듭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관들이 만약 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대신들이 비록 먼저 의논하여 정했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겠는가?”

하니, 산릉 제조(山陵提調) 정치화(鄭致和)가 아뢰기를, “신이 비록 풍수에 밝지 못하지만 선릉(先陵) 안에 이러한 혈이 있으니, 지리(地理)와 인사(人事)에 모두 편리하고 좋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비록 아주 좋지는 못하더라도 해가 없다면 쓸 수 있는 것이다.” 하니, 치화가 아뢰기를, “만약 해가 있을 것 같다면 처음에 어찌 혈을 재정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일이란 익히 강구해서 나쁠 것이 없으니, 다시 지관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丙寅/摠護使沈之源啓, 以奇重胤所得之岡, 來龍起伏, 穴道豐厚, 龍虎重重環抱, 氣勢雄偉, 且有貴格. 而第內水口不交鎖, 平臨外堂, 是欠處也. 李尙眞·尹善道·李最晩等, 皆以爲欠, 而尹絳·李元鎮·奇重胤等, 以爲無害. 概勝於潘好義所得之岡, 故就此裁穴, 而但其坐向, 於九十月皆有所忌云. 發引與下玄宮吉日, 所當極擇, 而葬期亦不可踰限. 請令時任·原任諸大臣及宋時烈·宋浚吉等, 會議稟定. 上卽引見之源等於廬次, 問新岡形局, 與水原何如. 之源曰: “若謂之勝於水原, 臣不敢知, 無移民·移邑之弊, 此爲便好矣.” 尹絳曰: “臣意則以新岡爲好, 而他人則皆以爲不如水原矣.” 又曰: “前日所看山, 無如水原者, 而朝議皆曰不可用, 且以五患之說, 歸罪於看山之人, 臣未知其故也.” 之源曰: “宋時烈筮中, 無所顧戀, 亦無所害等語, 非臣子所可忍聞. 臣既負此罪名, 何可抗顏朝端? 乞亟削職名, 使以白衣, 往看陵役.” 絳曰: “當初議定水原山者, 臣也. 若論其罪, 臣實當之. 何與於摠護使也? 既被重斥, 乞遞宗伯之任, 使得與尹善道·李元鎮, 帶軍職往參看山, 幸甚.” 上并慰諭, 不許. 之源申請, 命招諸大臣及兩儒臣議定, 上曰: “地官輩若云有害, 則大臣雖先議定, 其可用耶?” 山陵提調鄭致和曰: “臣雖未曉風水, 先陵內有如此之穴, 地理·人事, 俱極便好矣.” 上曰: “雖未盡善, 若無害則可用矣.” 致和曰: “若云有害, 初豈裁穴?” 上曰: “事不厭熟講, 更問地官, 可也” (…)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7일(병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총호사 심지원, 정태화, 송준길 등이 수원에 대해 아뢰다

총호사 심지원(沈之源) 등이 다시 빈청에 모여 이상진(李尙眞)과 함께 산릉의 일을 의논하여 서계하니, 상이 답하기를, “큰 일을 이루는 자는 작은 폐단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대로 수원을 써야 마땅하다.” 하였다. 지원이 아뢰기를,

“수원에 산을 정한 뒤 혈뜻는 의논이 분분하고, 심지어 대신과 중신까지도 서로 잇달아 글을 올려 모두 쓸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산을 살펴보아 다행히 선릉(先陵) 국내의 건좌(乾坐)에 언덕을 찾았는데, 용세(龍勢)와 형국(形局), 혈도(穴道)와 안대(案對)가 모두 격(格)에 합치되었습니다. 안쪽 물 어귀가 엇갈려 잠기지 않는 것이 조금 흠이기는 하나 풍수에 밝은 사람들이 이미 해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산을 쓴다면 거의 답답해하는 인심을 위로할 수 있으나 수원을 그대로 쓴다면 여론이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널리 여러 대신 및 유신(儒臣)에게 물어 상의해 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여러 신하들을 명초(命招)하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영돈녕 이경석(李景奭), 연양 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 이조 판서 송준길(宋浚吉)은 함께 빈청에 나왔는데 완남 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은 병으로 사양하고, 좌참찬 송시열(宋時烈)은 사직소를

미처 회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울러 나오지 않았다.

태화가 아뢰기를, “수원의 산을 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후의 여러 신하들이 이미 다 말하였으니, 지금 다시 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원릉(健元陵) 안 건좌 언덕의 경우는 지리(地理)를 논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일컫고, 인사(人事)를 참작하더라도 매우 편리하고 합당하며, 비록 전면(前面)을 문제삼는다 하더라도 역시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이런 산을 찾았는데 어찌 다시 수원을 의논하겠습니까.”

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수원의 산이 비록 인사(人事)에 불편하다 하더라도 다른 합당한 곳이 없다면 진실로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좌의 산을 찾았고 중론도 모두 수원보다 크게 좋다고 하는데, 어찌 매우 편리한 땅을 버리고 억지로 수원을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진(李尙眞), 유계(兪槩), 윤강(尹絳)이 평소 방술(方術)에 밝다고 일컬어졌고, 그들의 충박(忠朴)함이 믿을 만하다는 것은 성명께서 통촉하시는 바입니다. 세 신하의 말을 써서 큰일을 결정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건좌의 언덕은 공결(空缺)한 곳이 없지 않으니, 경들의 말이 비록 간절하나 윤택해 따르지 못하겠다.” 하였다.

경석과 시백 등이 연명하여 별도로 차자를 올려 진술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건원릉 안에 길지(吉地)를 얻었으므로 신들은 기쁨을 견디지 못하면서 천지 신령이 묵묵히 돌보아 주어 이런 땅을 얻었으니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령께서도 반드시 선릉에 의탁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가 여러 술사들이 의논한 바를 들어 보아도 모두 가장 길하다고 하니, 이는 큰 명당(明堂)입니다. 웅위한 기상, 주봉(主峯)의 수려함, 용호(龍虎)의 둘러쌈, 조산이 마주하고 있음, 큰 강이 조산을 거슬러 흐름 등등 구구 절절이 법도에 맞다고 하며, 이른바 앞에 물이 흐르고 밖에 들이 펼쳐 있다는 것도 진룡(眞龍)이 크게 서려 있는 규모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자로 삼을 것이 못 된다고 합니다. 어찌 선입견을 주로 해서 반드시 취해서는 안 될 곳을 취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미 나의 뜻을 유지했다.” 하였다.

○丁卯/摠護使沈之源等, 更會賓廳, 與李尙眞商議山陵事, **書啓, 上答以成大事者, 不拘小弊. 仍用水原宜矣.** 之源又陳啓: “**水原定山之後, 疵議紛紜,** 至於大臣·重臣, 相繼抗章, 皆言其不可用. 故更看諸山, 幸得先陵內坐乾之岡, 龍勢·局形·穴首 [道]·案對, 皆合格. 內水口不鎖, 雖似少欠, 曉解風水之人, 既謂之無害. **若用此山, 庶慰人心之拂鬱, 仍用水原, 群情必益激.** 請博詢諸大臣, 及儒臣, 商確以定.” 上從之, 命招諸臣. 領議政鄭太和·領敦寧李景奭·延陽府院君李時白·吏曹判書宋浚吉, 同詣賓廳. 完南府院君李厚源, 辭以病, 左參贊宋時烈, 以辭疏未及回啓, 竝不進. 太和以爲: “**水原山不可用, 前後諸臣, 既已盡言,** 今不必更陳, 健元陵內乾坐之岡, 論其地理, 則衆口稱美, 參之人事, 則萬分便當. 雖以前面爲言者, 亦謂之無害. **既得此山, 何可復議水原?**” 浚吉以爲: “**水原山雖云人事不便, 無他可合之地, 則固不得不用, 而今得乾坐之山, 衆論皆以爲大勝於水原, 何必舍十全便宜之地, 而強取水原也?** 如李尙眞·兪槩·尹絳, 素稱曉解方術, 其忠朴可信, 聖明之所洞燭. 願用三臣之言, 以決大事.” 上答以乾坐之原, 不無空缺處. 卿等之言雖懇, 而不得允從矣. 景奭·時白等, 聯名別陳劄, 略曰: 健元陵內, 卜得吉地, 臣等不任欣幸. 以爲天地神靈默佑, 而得此地. 先王在天之靈, 亦必以托先陵爲喜也. 竊聞諸術人所議, 亦皆以爲: “最吉. 此是大明堂雄偉之氣象. 主峰之秀異, 龍虎之環擁, 朝對之有情, 大江之逆朝, 節節合法. 所謂前水之流, 外野之臨, 亦眞龍大結作之規模, 不可以此爲疵云.” 豈可以先入之說爲主, 而必取於不當取之處乎? 上答以已諭孤意.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8일(정묘) 1번째기사>

정치/왕실

양사가 합계하여 수원의 산을 쓰라는 명을 정지하기를 청하다

양사가 합계하여 수원의 산을 그대로 쓰라는 명을 정지하기를 청했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兩司合啓，請寢水原山仍用之命，上不允。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8일(정묘) 2번째기사>

정치/왕실

예조 판서 윤강과 이후원이 상소하여 수원보다 건원릉이 좋다고 말하다

예조 판서 윤강이 상소하여 건원릉 안의 건좌 언덕이 수원보다 크게 좋다고 진달하고, 완남 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수원 산을 비록 기리는 자가 있지만 역시 하자가 있다는 의논도 없지 않습니다. ‘천재 일우(天載一遇)’란 말은 단지 윤선도(尹善道)에게서만 나온 것인데 어찌 한 사람의 말로써 막중한 일을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호군(副護軍) 이상진(李尙眞) 역시 상소하여 진달하기를, “새로 얻은 산을 버리고 기어이 수원을 쓰는 것은 좋은 구슬을 버리고 돌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禮曹判書尹絳，疏陳，健元陵內乾坐之岡，大勝於水原。完南府院君李厚源上筭略曰：水原山雖有譽者，亦不無疵議。千載一遇之言，只出於尹善道，何可以一人之言，斷定莫重之事乎？副護軍李尙眞，亦疏陳舍新得之山，而必用水原，如棄明珠而取瑊玕。上皆不從。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8일(정묘) 3번째기사>

정치/왕실

대각의 논계 때문에 심지원이 수원에 혈을 잡으라는 명을 받들기 어렵다고 아뢰다

총호사 심지원이 아뢰기를, “수원의 산을 쓰도록 다시 혈을 잡으라는 일로 어제 성교를 받들었으나, 대각의 논계가 바야흐로 굳게 고집하고 있으므로 거행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의 이 역사는 하루가 급하니, 늦추어서는 안 된다. 상례에 구애받지 말고 가서 혈을 잡아야 한다.” 하였다.

지원이 두 번째 아뢰기를, “성상의 염려를 신이 모르는 것은 아니나, 조종에서 대각을 대우하던 체모를 무너뜨려 후일의 무궁한 폐단을 여는 일은, 신이 비록 못났지만 결코 명을 받들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어찌 임시방편이 없겠느냐고 답했다. 지원이 세 번째 아뢰어 굳게 고집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의 말이 이 지경에 이르니, 우선은 형세를 관망하겠다.” 하였다.

○摠護使沈之源 啓曰：“仍用水原，改裁穴事，昨承聖教，而臺論方爭執，不得舉行。” 上曰：“此時此役一日爲急，不可緩緩。勿拘常例，速往裁穴，可也。” 之源再啓曰：“聖慮所及，臣非不知，而壞祖宗待臺閣之體，開日後無窮之弊。臣雖無狀，決難承命。” 上答以豈無權道，之源三啓爭執，上答曰：“卿言至此，姑爲觀勢。”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9일(무진) 2번째기사>

정치/왕실

이조판서 송준길이 산릉으로 수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아뢰다

이조 판서 송준길이 청대하여 입시하고, 우선 진달하기를, “엄한 교지가 내려와서 옥당 여

러 신하들의 기상이 꺾여 있으니, 화평한 전교를 내리시어 다시 입직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경의 말을 따르겠다.” 하였다.

준길이 또 아뢰기를, “건좌의 언덕은 모든 것이 편리하고 마땅하며, 수원의 산은 구구 절절이 편리하지 못하니, 취사의 선택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여러 신하들이 반드시 수원을 쓰지 않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는데, 소장이나 차자로 번거롭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무슨 말이냐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의 비기(秘記)에 ‘나라에 일이 있으면 수원에서 변이 일어나고 기보(畿輔)와 나라 안이 어지럽게 된다.’ 는 말이 있는데, 이 때문에 모두 걱정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듣지 못한 바이다. 그렇다면 여러 경들의 말에 뜻이 있다.” 하였다.

준길이 또 말하기를, “송시열이 불안해하는 것이 오로지 홍여하(洪汝河)의 상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 선왕께서 온 나라를 시열에게 위임하여 그가 하는 말을 들어 주지 않음이 없었고 시행하려는 일을 행해 주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산릉의 일 때문에 전후로 여러 차례 진달하였으나 채택해 받아들이시는 윤희를 입지 못하였는데, 생각건대 그의 간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기에 느껴지는 바가 없지 않아 떠날 뜻을 가진 것일 겁니다.” 하고, 인하여 체직을 하고 시열을 다시 제수하라고 청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庚午/吏曹判書宋浚吉, 請對入侍, 首陳嚴旨之下, 玉堂諸臣氣像愁沮, 請下和平之教, 俾還入直. 上曰: “當從卿言.” 浚吉又言: “乾坐之岡, 事事便當, 水原之山, 節節難便, 取舍不難. 且諸臣之必欲勿用水原, 別有深意, 而不敢煩於章筭間矣.” 上曰: “何也” 對曰: “我國秘記, 有國家有事, 水原變起, 畿輔邦內不安之語. 以此皆懷憂慮矣.” 上曰: “予所未聞, 然則諸卿之意有在也.” 浚吉又曰: “宋時烈之不安, 不專爲洪汝河之疏. 往我先王, 舉國而委諸時烈, 無所言而不聽, 無所施而不行矣. 今以山陵事, 前後屢陳, 未蒙採納, 想其介潔之心, 不無慨然於此, 而有去志也.” 仍乞遞職, 還授時烈, 上不許.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11일(경오)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현종이 이경석과 이시백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의 산릉을 포기하다

상이 대신과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 입대하여 이경석과 이시백 등이 모두 “여러 차례 차자를 진달하면서 망령되이 논의하여 산릉(山陵)의 일이 지금껏 정해지지 못하게 했다.” 는 이유로 인책하자, 상이 이르기를, “지성(至誠)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무어 해될 게 있겠는가. 오늘은 반드시 의논해서 확정해야 하니, 각기 소견을 진달해야 한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새로 얻은 건좌(乾坐)의 산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경석이 또 아뢰기를, “신이 산릉을 논하면서 겸하여 남의 장단점을 논했으니 도리어 매우 미안합니다만, 윤선도는 일찍이 원두표(元斗杓)를 불칙한 말로 모함했는데, 대낮에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것처럼 진달하였으니, 더군다나 잘 알 수 없는 이치를 어찌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선도가 원두표를 논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그 까닭을 알 수 없지만, 이번 산릉의 논의야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비록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알지 못하면서 망령되이 논하였으니, 허물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산릉의 일에 대해서 여러 의논이 분분하여 나 홀로 정할 수 없으므로 회의해 정하고자 한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건좌(乾坐)의 산이 수원(水原)보다 낫다고 말을 하니 정해 써야겠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는 실로 국가의 더없는 큰 다행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원은 지금 비록 쓰지 않더라도 이미 원릉(園陵)의 장부에 편입시켰으니, 혈도(穴道) 근처에 나무를 많이 심고, 또 개간하여 경작하는 것을 금하라. 그리고 관에서 다른 전답을 주어 산맥(山脈)을 해치지 못하게 하라.” 하니, 승지 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집을 철거한 곳 및 돌을 운반하느라 곡식을 손상시킨 곳에 대해서는 역(役)을 건감해 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上引見大臣·諸臣。(…) 既入對, 李景奭·李時白等皆以累度陳筭, 妄有所論, 致令山陵尙今未定, 引罪。上曰: “出於至誠, 有何所害今日則必須商確, 各陳所懷可也。” 諸臣皆以新得乾坐山爲可用。景奭又曰: “臣因論山, 兼論人長短, 還甚未安, 而尹善道曾構元斗杓, 以不測之語。白日下萬目所覩, 如是陳達, 則況茫昧之理, 何以的知乎?” 上曰: “尹善道論元斗杓, 雖未知其故, 今此論山, 豈有他意也?” 景奭曰: “雖非有意, 不知而妄論, 不無其咎矣。” 上曰: “山陵之事, 群議紛紜。予不敢獨斷, 欲會議以定矣。大臣·諸臣, 皆言乾坐山勝於水原, 定用當矣。” 僉曰: “此實國家莫大之幸也。” 上曰: “水原今雖不用, 既入於園陵之籍, 穴道近處, 多種樹木, 且禁耕墾。自官劃給他田, 勿令傷害山脈也。” 承旨姜栢年曰: “家舍撤毀, 及運石傷穀處, 似當有鑿役之舉矣。” 上可之。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11일(경오) 3번째기사>

#### 정치/왕실

**심지원이 수원의 산릉으로 다듬어 놓은 돌을 운반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아뢰다**

상이 대신 및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심지원(沈之源)이 말하기를, “수원(水原)에 이미 다듬어 놓은 돌을 산릉(山陵)으로 운반하려면 백성들의 전답이 많이 상하고 배로 운반하는 것도 불편하여 염려했는데, 영상의 아뢰를 인해 운반하지 말도록 하셨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였는데, 이는 수원의 산에는 이미 돌 다듬는 일을 시작했으므로 이를 옮겨 써야 한다는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이 멈추라고 청한 것이다. (…)

○上, 引見大臣及諸臣。沈之源曰: “水原已鍊之石, 輸致山陵, 恐多損民田, 船運亦難便, 而因領相所啓, 勿令輸致云, 誠爲多幸。” 蓋水原山已施石役, 有移用之議, 故大臣 啓停之。(…)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7월 18일(정축)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산릉으로 수원을 추천한 윤선도의 추고 함사 및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

윤선도의 추고 함사(推考緘辭)에 말하기를, “임금의 의관을 묻는 것은 바로 국가의 장사에 막대한 절차이며 또 종묘에서 혈식(血食)하게 하는 영원한 계책입니다. 만일 진선진미한 곳을 얻지 못하면 어찌 신하로서 전하에게 충성하는 것이겠으며 선왕께 보답하는 정성이겠습니까.

그리하여 넘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곳곳을 살폈으나 전혀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는데, 오직 수원(水原)의 산만은 눈을 들자마자 깜짝 놀라며 상격(上格)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용(龍)의 크기와 풍수(風水)가 영릉(英陵)에 비교해서 조금 못 미쳤지만 참으로 천리에 없는 바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땅이어서, 비록 도선(道銑)과 무학(無學)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말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신의 소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윤강(尹絳), 이원진(李元鎭) 및 여러 지관(地官)들도 하나의 흠도 없다고 칭찬하여 마지않으면서 모두 나라를 위해 서로 축하했으니, 신이 나라를 위해 쓰기를 원한 것은 여러 사람들과 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논이 마구 일어나 유독 신에게만 죄를 돌려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 날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때에 병이 다시 위험해져 정신이 혼미했으므로 상소를 진달하지 못한 채 병조에 정장(呈狀)하여 직명(職名)을 계체(啓遞)해 주기를 청하여 병든 몸을 떠메여 교외로 나갔으니, **이 때는 바로 인산(因山)이 이미 수원으로 정해져 여러 도감(都監)의 역사가 모두 한창일 때였습니다.** 따라서 누가 이의가 다시 생겨 분분하게 되리라고 억측이나 했겠습니까.

7월 3일 밤중에 갑자기 건원릉(健元陵) 서쪽 골짜기와 불암산(佛巖山) 아래 화접동(花蝶洞)을 살핀다는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이 그 때는 병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해 부득이 장계를 갖추어 산릉(山陵)의 일 한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본디 그것이 일반적 규정이 아님을 알았으나, 신은 생각하기를 ‘이루어진 일은 간하지 말아야 하고, 일은 처음 잘 도모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기미가 곧 일어나려 하면 마땅히 일찍이 분변해야 한다.’ 라고 여겼기에 붉은 정성이 복받쳐 반드시 양달하고자 하였으나 피곤하여 일에 미치지 못했고, 일이 또 갑작스러워 상소를 갖추지 못하고 부득이 방백(方伯)에게 언급하면서 보고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대개 일의 기미가 긴급하면 제때에 진달하는 것이 중요하니, 어찌 반드시 전례에 구애되었겠습니까.” 운운하였다. 헌부가 고신(告身)을 빼앗아야 한다고 아뢰니, 상이 이미 파직시켰다는 것으로써 처리하였다. (...) 선도는 문장에 능하고 술수가 많았는데, 이름 역시 성대히 알려져 효종의 잠저(潛邸) 때 사부가 되었다. 후에 과거에 합격하여 대시(臺侍)를 거쳐 여러 차례 주군(州郡)을 맡았었는데, 가는 곳마다 탐장질을 하였다. 그가 성산(星山)을 다스릴 때 대사간 윤지(尹墀)가 논핵한 말 가운데 이르기를 “이름과 실상이 서로 어긋나니 덕(德)을 무너뜨리는 도적이다.” 하였다. 병자란(兵子亂) 때 선도는 왕을 뵈러 간다는 명분으로 바닷길을 통해 강도(江都)로 가면서 관망하다가 중도에서 돌아와 끝내 달려가 문안하지 않았다. 대각의 논계로 인해 옥에 갇혔고 충군(充軍)으로 논죄되었다. 효종(孝宗) 임진년에 이르러 비로소 승지에 발탁되었는데 정언 이만웅(李萬雄)이 “인조(仁祖)의 대상(大喪) 때 3년을 마치도록 달려와 곡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논계하려고 했는데, 선도가 먼저 스스로 효종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만웅은 엄한 교지를 받고 지레 체직되었다. 그런데 효종이 옛날의 사부인 송시열(宋時烈)에 대하여 매우 존경하고 복종하여 대우하는 예가 비할 바 없자, 선도가 마음속으로 불평하였다.

또 일찍이 정개청(鄭介淸)을 존경하고 사모하였는데, 개청은 본디 한미하고 천한 사람으로 어려서 중이 되어 풍수설(風水說)을 배워서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권해서 머리를 기르게 했다. 처음에는 심의겸(沈義謙)을 섬겼고, 또 박순(朴淳)을 만나서 배우기를 원했는데 박순이 가숙(家塾)에 머물게 하고 가르치고 먹이기를 10여 년 동안 친 자체처럼 하였다. 사는 집이 무안(務安)에 있었는데 먹을 것은 가난했으나 학문에 부지런하여 선비들이 칭찬하였으니, 이는 모두 박순이 지도한 것이라고 하였다.

박순이 조정에서 배척을 받자 개청은 연루될까 염려하여 정여립(鄭汝立), 이발(李潑) 등과 서로 사귀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박순과 친하게 되었는가?” 물으니, 답하기를, “그 집에 책이 많기 때문에 젊었을 때 빌려다 보았다.” 하였다. 정여립이 모반하다 죽음을 당할 즈음에 개청이 붙잡혀 국청에 나왔는데, 공초하기를 “일찍이 교정청 낭관으로 있을 때 여립과 동료여서 몇 번 만났기 때문에 얼굴을 알 뿐이다.” 했다. 상이 그 대답을 보고 개청이 적에게 보냈던 몇 통의 편지를 내리고, 한 차례 신장(訊杖)하고 북도(北道)로 유배하였다. 그 후 적의 무리가 또 개청을 데리고 여립의 집으로 가서 풍수를 논하게 하자 국청이 다시 잡아서 국문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미 죽고 없었다. 그 사람의 형편없음이 이러한데도 선도는 유학의 종주로 추송하여 사당을 세워 제사하였다. 조정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사당을 헐

어 버리니, 선도는 상소하며 항변했으므로 더욱 조정의 논의에 배척받게 되었다.

파산되어 있던 중 효종의 산릉(山陵)을 고르게 되자, 선도는 수원(水原) 읍내가 천재 일우의 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원은 경기의 관문으로 후대에 다섯 가지 환란의 근심이 있다는 말이 있는 데다 또 읍내의 동네를 철거해 옮겨야 하는 폐단이 있으며 풍수의 흠으로는 지맥(地脈)이 파괴되어 있고 초목이 무성치 못하여 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해(李滌), 이시백(李時白), 원두표(元斗杓) 등이 일찍이 수원부에 재직했던 자들인데 서로 잇따라 진소하였고, 시백은 더욱 정성을 다하여 간곡하게 말하였다. 심지어 산수 비기(山水秘記)에도 “수원에 장사를 지내면 나라 안이 불안해진다.” 는 말이 있다고까지 했다. 인심이 모두 의구심을 품었으나 상이 선도의 말에 선입견을 가지고 반드시 그대로 수원을 쓰고자 하였는데, 대신과 중신이 떼지어 일어나 힘껏 간쟁한 뒤에야 비로소 청을 들어주었다.

뒤에 봉분에 틈이 생겼는데, 영림 령(靈林令) 익수(翼秀)가 몰래 가서 기록해 가지고 상소하여 말했기 때문에 마침내 능을 옮기게 되었다. 익수는 바로 선도의 가까운 친속으로 역적 정창(挺昌)의 사주를 받아 정(楨), 남(楠)과 서로 화응해 이런 것을 한 것이다. 사화(土禍)가 일어난 것은 본디 일조일석의 까닭에서 나온 것은 아니나 근본을 따져 보면 대개 선도를 나문하라고 아뢰어서 더욱 그의 분노하는 마음을 격발하게 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 뒤에 또 예를 의논하면서 송시열을 포함하기를 “종사(宗社)의 죄인이다.” 라고 했는데, 당쟁을 하는 무리들이 이로 인해 사류를 일망타진하여, 나라가 나라꼴이 되지 못한 것이 5, 6년이나 되었다. 이경석(李景奭)이 산릉을 논하는 상소 가운데서 말하기를 “나라가 망하려면 반드시 일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 한 세상을 미혹시키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어지러워지게 된다.” 했는데, 그 말이 매우 맞다. 선도의 무리가 이에 말하기를 “수원이 매우 길한 땅인데, 당시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한갓 수원이 경기의 중요한 지역이므로 옮기기 어렵다는 것만 알았지 임금의 의관을 만세토록 간직할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아, 이경석·이시백·원두표·이후원·이해·송시열·송준길·이상진 등의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어찌 여러 지관들만 못하였겠는가. 윤강이 또 진소하기를 “여러 지관들이 수원의 산을 칭찬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새 산이 수원보다 배나 나올 뿐만이 아니다.” 고 하였다. 그 소를 상고해 볼 만한데 그들의 말이 이러하니, 진실로 많은 말로 분별할 것도 못 된다.

○尹善道推考緘辭中，有曰：聖主衣冠之藏，乃國家送終莫大之節，而抑亦宗廟血食久遠之計也。如不得盡善盡美之地，則豈臣子忠殿下，而報先王之誠也？是以不計顛仆，隨處看審，而絕無可意之處，唯水原之山，舉目驚倒，明知其上格。 龍大風水，比英陵差不及，而眞千里所無，千載一遇之地。雖使道說·無學後起，不易斯言。不但臣之所見如此，尹絳·李元鎮及諸地官等，無一瑕疵，贊不容口，而莫不爲國相賀。則臣之爲國願用，不過與諸人一般，而異議橫生，乃獨歸罪於臣，欲殺之言，日入於耳。而適於其時，病復危殆，以病昏不能陳疏，呈狀兵曹，請其啓遞職名，而昇疾出郊。此乃因山莫定於水原，諸都監之役，畢舉方張之時，誰能逆臆，異議復生，以致紛紜也？七月初三日夜半，忽聞健元陵西洞佛巖山下花蝶洞看山之役，臣方病不運身，不得已具狀。及山事一款，則固知其非常規，而臣以爲遂事勿諫，事貴謀始，機之將發，辨之宜早。血誠所迫，必欲仰達，而憊不及事，事且卒遽，不能具疏，不得已略及於方伯，而冀其轉聞。蓋事機緊急，則所重在於及時上達，何必屑屑拘礙於俗例也云云？憲府奏以奪告身，上以既已罷職，分揀。(…)善道能文多術數，名聞亦盛，爲孝宗潛邸時師傅。後登第經臺侍，累典州郡，到處貪縱。其爲星山也，大司諫尹墀，論劾之辭，有曰：“名與實背，德之賊也。”丙子之亂，善道名爲勤王，由海路赴江都，觀望中返，終不奔問，因臺啓就獄，論罪充軍。逮孝宗壬辰，始擢拜承

旨. 正言李萬雄以仁祖大喪終三年不赴哭, 將欲論啓, 被善道先自訴, 萬雄被嚴旨徑遞. 然孝宗於舊日師傅, 敬服宋時烈特甚, 恩禮無比, 善道心固不平. 又嘗尊慕鄭介清. 介清本寒賤人, 幼爲僧, 學風水說, 周游覓食, 有士人, 勸令長髮. 初事沈義謙, 又見朴淳願學. 淳留置家塾, 教訓資養, 如親子弟者十餘年. 家居務安, 食貧勤學, 士論稱之, 皆淳爲之導也. 及淳擯於朝, 介清恐爲其連累, 與鄭汝立·李潑等, 相交結. 或問介清, 何以與淳爲舊, 則答以其家多書籍, 故少時聊借觀耳. 及汝立反誅, 介清被拿鞫就供云: “曾爲校正廳郎官, 與汝立同僚, 數三番識面而已.” 上見其對, 下介清與賊書數度, 訊杖一次, 配北道. 其後賊黨, 又引介清往汝立家, 論風水, 鞫廳請更拿鞫則已死矣. 其人無狀如此, 而善道推爲儒宗, 立祠而尊祀之. 朝廷聞之, 毀其祠宇, 善道陳疏抗辨, 益爲朝論所斥. 在罷散中, 逮卜孝宗山陵, 善道以水原邑居, 爲千載一遇之地. 然水原爲京輔關防, 既有後代五患之慮, 又有邑里撤移之弊. 風水之疵病, 地脈之穿破, 草木之不茂, 人材之不出. 如李漈·李時白·元斗杓等, 曾泣本府者, 相繼陳疏, 時白尤竭誠極言. 至於山水秘記, 亦有有事水原, 邦內不安之語, 人心皆懷疑懼. 而上先入善道說, 必欲仍用水原, 大臣重臣, 群起力爭而後, 始得請. 後因陵封有甕, 靈林令翼秀, 潛往記識, 因上疏言之, 遂至遷陵. 翼秀卽善道近屬, 而聽逆臣挺昌之嗾, 與楨·栢相應而爲此舉也. 士禍之作, 固非一朝一夕之故. 而推其原, 則蓋由拿問善道之啓, 益激其忿狠之心也. 厥後又以議禮, 構陷宋時烈, 以爲宗社罪人. 黨人輩因此綱打士類, 國不爲國者, 五六年. 李景奭, 論山陵疏中, 有曰: “國之將亡, 必有害事之人, 誑惑一世, 而馴致乖亂者.” 其言殆驗矣. 善道之黨, 乃謂水原大吉之地, 而當時異議諸人, 徒知水原之爲畿輔重鎮, 難於遷改, 不念聖主萬世衣冠之藏, 噫! 李景奭·李時白·元斗杓·李厚源·李漈·宋時烈·宋浚吉·李尙眞等爲國之誠, 豈下於諸地官? 尹絳則又陳疏, 以諸地官稱譽水原山爲過中, 新山之勝於水原, 不啻一倍爲言, 其疏可考而其爲說若此, 固不足多辨也.

<현종개수실록 1권, 현종 즉위년 8월 30일(무오)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송시열이 수원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여 산릉을 바꾸게 하였다고 자책하다

상이 좌참찬 송시열을 인견하였다. 시열이 돌아가기를 청하니, 상이 간절한 말로 만류하였다. 시열이 감히 다시 물러가기를 청하지 못하고 소장을 진달하여 아뢰기를,

“(…) 그리고 신은, 산릉(山陵)을 복정(卜定)하던 날, 수원(水原)이야말로 천재 일우(千載一遇)의 땅이라고 못 사람들이 의논하였는데도, 그만 감히 앞장 서서 이론을 제기해 결국 옳기게 하였습니다. 신은 지리(地理)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정(人情)으로 헤아려 보거나 신도(神道)로 따져 보면 이번에 복정한 곳이 진선 진미(盡善盡美)한 곳이라고 여겨 지는데, 계속 사람들의 말이 이어지면서 갈수록 심각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

하니, 상이 답하기를,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반절도 채 읽지 않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고 심회(心懷)가 끊어올랐다. 말하고 싶은 뜻이 무궁하다마는 다 갖출 수가 없으니, 개략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을 가지고 유시할까 한다.

부모의 상을 당해 염습(斂襲)할 때 흠이 없게 하고 좋은 장지(葬地)를 택해 영원한 안식처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 모두의 희망일 것이다. 내가 아무리 불민(不敏)하다 하더라도 어찌 무망(誣妄)한 것을 지어내는 사람들보다야 못하겠는가. 합목(合木)에 대한 일도 그렇다. 만약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내가 어찌 경 때문이라고 하여 미진한 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며 지금까지 문제삼지 않았겠는가. 이 일은 정말 미진한 점이 없었



으므로 애통하고 절박하기 그지없었던 나의 심정이 그래도 조금 풀릴 수 있었던 것인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것이 첫번째 이해하기 쉬운 점이다.

수원(水原)이 국릉(國陵)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말한 사람은 경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쓴 능강(陵岡)도 수원에 못지않다. 아무리 망령스럽고 허황된 논의가 사면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말도록 하라. 이것이 두 번째 이해하기 쉬운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은 내 마음에 더욱 미안한 점이 있다. 이 일은 어떤 사람의 말을 막론하고 내가 곧장 물리칠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이해하기 쉬운 점이다. (...) 경은 이렇듯 지극한 뜻을 체득하여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庚寅/上引見左參贊宋時烈. 時烈乞歸, 上勉留懇惻. 時烈不敢復請退, 陳疏曰:

(...) 且臣於山陵卜定之日, 衆議以水原爲千載一遇之地, 而乃敢倡爲異論, 竟至遷就. 臣雖未知地理之如何, 而揆以人情, 求諸神道, 則今茲所卜, 可謂盡善盡美, 而人言未已, 愈往愈深. (...) 上答曰: “省覽疏辭, 未及其半, 胸腸如裂, 心懷鼎沸. 語意無窮, 而不得備盡, 請以其概之易曉者諭也. 父母之喪, 無欠於斂襲之際, 欲得美地爲衣冠之葬者, 人人之心. 孤雖不敏, 豈不如做出誣妄之人乎? 合木之事, 若有未盡, 予豈爲卿而恕視未盡之事, 到今不發哉? 此事誠無所未盡, 予之罔極痛迫之懷, 猶以爲少紓. 豈有如此之理哉? 此其易曉一也. 水原不合於國陵云者, 非卿一人, 今用陵岡, 不下於彼. 雖妄論浮議, 四面而至, 不入於耳可也. 此其易曉二也. 且第三事, 於予心, 尤有所未安焉. 此事勿論人言, 予當直斥. 其易曉三也. (...) 卿其體此至意, 勿辭安心焉.

<현종개수실록 2권, 현종 즉위년 12월 4일(경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현종의 온천 거동에 따른 수원군을 편성하여 호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영의정 정태화, 우의정 허적 및 비국 당상 홍중보 등이 뵈기를 청하니, 상이 희정당에서 인견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온천에 거동할 논의를 이미 결정하였으니 거행할 일을 미리 정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으므로 형 세상 오랫동안 목욕하기 어려울 것이니 보름 전에 출발했으면 한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12일이 좋기는 한데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보름 후에는 17일 역시 좋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보름 전에 좋은 날이 없다면 17일로 결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호위하는 군병 중에 마병(馬兵)은 멀리 갈 수 있겠지만 보병(步兵)의 경우 훈련군은 한강(漢江) 가에서 교대해 주고 수원군은 충청도 접경지에서 교대해주면 충청도군이 온양까지 호위하게 하고 연(輦)을 호위하는 포수의 경우는 4백 명으로 교대하여 호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능에 거동할 때는 으레 4백 명을 동원하였으니, 이번 행차에는 8백 명으로 서로 교대하여 호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외방에서 군병을 징발하고 싶지는 않다.” 하자, 태화 등이 도감군 중에서 건장한 자를 뽑아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다. 각사에서는 한 명씩 수행하되 긴요하지 않은 각사는 수행하지 말도록 하였다. 파발을 세워 궁궐 내의 안부를 전하도록 하고 승지와 내관이 문안하는 것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서울에서 행궁까지는 4일 노정이었는데 일정 잡기를 과천(果川)·수원(水原)·직산(稷山)을 숙소로 정하고, 수원군 6천 명을 두 부대로 나누어서 한 부대는 한강 가에서 기다리고 한 부대는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일이 되면 서로 교체하게 하고, 충청도 군병은 병사로 하여금 한 군영의 병사만 징발하여 접경지에서 기다리게 하고 마병은 도감군 및 금군을 이

용하게 하였다. (…)

○領議政鄭太和·右議政許積及備局堂上洪重普等請對，上御熙政堂引見.太和曰：“溫幸之議已定，舉行之事不可不預定矣.” 上曰：“日氣漸熱，則勢難久浴，欲於望前作行矣.” 積曰：“十二日雖吉，而日期太迫，望後則十七日亦吉云矣.” 上曰：“望前如無吉日，則定以十七日可也.” 太和曰：“扈衛軍兵，如馬兵則可以致遠，而步軍則訓練軍替代於江頭，**水原**軍替代於忠清道界，忠清道軍達于溫陽，挾輦砲手則以四百名，相替扈衛何如?” 上曰：“陵幸則例用四百名，而此行則以八百名相替方足矣.且予意不欲徵兵於外方.” 太和等請擇都監軍壯健者領去.各司唯一員陪從，而不繫各司，勿令從行.立撥以傳內間安否，而罷承旨·內官問安.自京至行宮，以四日程排日，以果川·**水原**·稷山爲宿所，以**水原**軍六千，分爲二隊，一隊進候江頭，一隊留待本府，及期相替，忠清道軍兵，令兵使只發一營兵待候境上，馬兵則用都監軍及禁軍. (…)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4월 7일(계해)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현종이 온천에 거등할 때 수원 군사를 총융사가 지휘하게 하다

상이 침을 맞은 뒤에 병조 판서 홍중보를 인견하였는데, 도제조 허적 등도 입시하였다. 상이 홍중보와 이일상에게 행행하는 데 필요한 의주(儀註)의 절목들을 읽도록 명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수원 군사는 단지 부사로 하여금 거느리고 오게 할 수 없으니 총융사로 하여금 거느리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가서 병부(兵符)를 총융사에게 내려 보내고, 충청도의 군병도 병사에게 병부를 보내어 병부를 서로 대조해 본 후에 징발하도록 하라.” 하였다.

(…) 상이 또 이르기를,

“총융사(摠戎使)가 그때 가서 수원군을 거느리게 되면 필시 장수와 병졸 간에 친숙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미리 보내서 사열하고 교련하게 했다가 그때 맞추어 와서 맞이하게 하고, 그대로 수원에 진을 치고 있다가 환궁할 때에 직산(稷山)으로 마중 나오게 하라.”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행재소(行在所)에 도착한 후에는 외방의 군병은 모두 돌려보낼 것입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영군만으로도 호위할 수 있으니 외방의 군병은 돌려보내도록 하겠다.” 하였다.

○上受鍼，後引見兵曹判書洪重普，都提調許積等亦入侍. 上令重普及李一相，讀行幸儀注節目. 積曰：“**水原軍兵，不可只令府使領來，令摠戎使領來何如?**” 上曰：“臨時下送兵符於摠戎使，忠清道軍兵，亦送符于兵使，使之相驗後徵發.” (…) 上又曰：“**摠戎使若臨時往領水原軍，則必有將卒不習之患，使之先往點閱教鍊，臨時來迎，仍留鎮水原，返駕時來迎稷山.**” 積曰：“到行在後，外方軍兵，皆將放送乎?” 上曰：“御營軍足以環衛，外方軍當放送矣.”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4월 9일(을축)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총융사 구인가가 수원 군병을 둘로 나누어 국왕을 호위하게 하다

어영 대장 유혁연에게 군사를 이끌고 금군·마병·훈국 포수와 연(輦)을 호위하는 군사를 선도하고, 훈련 대장 이완에게는 그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뒤를 보호하여 강가까지 가서는 뒤에 쳐졌다가 돌아와 궁성을 호위하라고 명하였다. 총융사 구인기(具仁璽)에게는 수원 군병 5천을 거느리되, 두 부대로 나누어 한 부대는 강의 남쪽에 진을 치고 있다가 뒤를 보호하여 수원까지 가고, 다른 한 부대는 수원에서부터 뒤를 보호하여 충청도 경계에까지 가도

특 명하였다. 충청 병사 민진익(閔震益), 청주 영장 이간(李旰)에게는 그들의 군사 5천을 이끌고 충청도 경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뒤를 보호하여 온양까지 가라고 명하였다.

○命御營大將柳赫然，領兵先導禁軍·馬兵·訓局砲手·挾輦，訓練大將李浣率餘兵殿後，至江頭落後，還衛宮城。命摠戎使具仁〈壑〉，領水原兵五千，分爲二隊，一隊陣江南殿後，以至水原，一隊自水原殿後，以至忠清道界。 上命忠清兵使閔震益·清州營將李〈旰〉，領其兵五千，待候境上殿後以至溫陽。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4월 17일(계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사근천에서 수원 군대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다

상이 인시에 과천을 출발하여 광주(廣州) 사근천(沙斤川)의 주정소(晝停所)에서 머물렀다. 상이 막사에 나아가 병조 판서 홍중보와 어영 대장 유혁연을 인견하고, 상이 혁연에게 이르기를,

“내가 수원 군대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어제는 조금 떨어진 모래 사장에 진을 쳐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만일 좌우에 진을 치도록 하여 그 사이를 통과하면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니, 혁연이 아뢰기를, “총용사에게 분부하여, 앞의 들판에 진을 치고 좌우로 나누어 기다리다가 어가가 군문에 도착하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꿰어 엎드리게 한 후에 그대로 앞을 지나 가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甲戌/寅時，上發果川，晝停于廣州沙斤川。上御幕次，引見兵曹判書洪重普·御營大將柳赫然，上謂赫然曰：“予欲觀水原軍容，而昨於沙邊，結陣稍遠，不得詳見。 若令結陣於左右，行過其中，則可以諦觀。” 赫然曰：“分付摠戎使，陣於前野，而左右札住，待車駕到門後，吶喊跪伏，仍爲前行。” 上曰：“可。”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4월 18일(갑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총용사 구인기가 수원군병을 통솔하였으나 연습이 안되어 대오를 갖추지 못하다

사시에 상이 사근천(沙斤川)을 출발하였다. 어영군에게는 뒤를 따르고, 총용사 구인기는 수원군을 이끌고 먼저 떠나 앞의 들판에 진을 치되 길을 끼고 좌우로 나누어 머무르도록 명하였다. 금군 마병에게는 선봉이 되어 수원군 진지에 이르러 좌우로 나누어 서 있다가 상이 천천히 행하여 진영 앞에서 어가를 멈추면 군사들이 군문을 열어 맞아들이고 상이 진(陣) 중에 들어가면 군사들이 일제히 고함치며 꿰어 엎드리고 난 다음 그대로 선두가 되어 가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상이 애초 군사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자 해서였다. 그러나 앞에 가는 의장(儀仗)과 마병이 시끄럽고 무질서하게 치달려 먼지가 가득 일어났으며, 수원군 역시 연습이 안 되어 있어 앞지르기에만 급급하다보니 대오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巳時，上發沙斤川。命御營軍殿後，使摠戎使具仁壑，率水原軍先行結陣於前野，夾路札住。命禁軍·馬兵，前驅到水原軍陣所，左右擺立，上徐行到陣前駐駕，軍士開門迎入，上入陣中，軍士跪謁吶喊，仍作前隊而行，蓋上初欲詳觀軍容。而前驅·馬兵·喧雜馳突，塵埃漲起，水原軍亦不練習，急於前行，不成行伍。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4월 18일(갑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수원 숙소에 머물르다

미시에 수원 숙소에 머물렀다.

○未時，次于水原宿所.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4월 18일(갑술) 3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수원 행궁에서 병조 판서 등을 인견하고 진을 칠 곳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수원 행궁에 있었다. 병조 판서 홍중보, 어영 대장 유혁연, 총융사 구인기를 인견하고 상이 묻기를, “앞으로 가다가 어느 곳에 진을 칠 만한가?” 하니, 중보가 아뢰기를, “여기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산성(山城)이 있고 산성을 지나면 평야가 나오는데 도로가 조금 넓기는 합나다마는 좌우에 모두 백성의 전답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로 하여금 길에 열을 지어 서게 하되, 곡식을 밟지 않게 하라.” 하였다. (…)

○乙亥/上在水原行宮. 引見兵曹判書洪重普·御營大將柳赫然·摠戎使具仁壑, 問曰: “前路何處, 可以結陣耶?” 重普曰: “此去十里許, 有山城, 過山城後, 有平野, 道路稍廣, 左右皆有民田.” 上曰: “使之列立於道, 勿踐禾稼.” (…)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4월 19일(을해)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수원을 출발하여 산성의 광활한 곳에 진을 치게 하다

사시에 상이 수원을 떠났다. 총융사 구인기, 수원 부사 박경지에게 명하여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먼저 산성의 남쪽 광활한 곳에 가서 진을 치게 하였다. 어가가 진문에 다다르자 군사들이 문을 열고 일제히 고함치며 나팔을 불고 북을 쳤다. 상이 어가를 멈추고 군대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 인기 등으로 하여금 뒤를 보호하며 따르도록 하였다. 오시 말에 진위 숙소에 머물렀다.

○巳時, 上發水原. 命摠戎使具仁壑·水原府使朴敬祉, 領其兵先往, 結陣于山城南廣闊處. 大駕到陣門, 軍士開門吶喊吹打. 上駐駕觀軍容, 仍令仁壑等, 殿後而行. 午末, 次于振威宿所.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4월 19일(을해) 2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소사(素沙) 다리에서 충청 군대의 사열을 보고 수원 군대보다 낫다고 칭찬하다

상이 막사를 떠나 소사(素沙) 다리 근처에 이르러서, 금군·선전관 등으로 하여금 다리 위에서 말을 타고 달려 보게 하고는 어가를 멈추고 지켜보았다. 충청 병사 민진익(閔震益)과 영장 이간(李旰)이 마병과 보병 5천을 이끌고 충청도 접경지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상이 진문에 이르자 민진익이 대장기를 세우고 군악(軍樂)을 울리며 마중 나왔다.

상이 어가를 세우고 군대의 모습을 사열하다가 병조 판서 홍중보에게 이르기를, “이 군대는 수원의 군대보다 나은 듯하다.” 하고, 이어 진익과 이간 등을 앞으로 불러 하유하기를, “이 군대는 대열이 꽤 정연하고 깃발들이 활기에 차 있는데, 그대들이 맡은 일에 근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였다. 이어 말을 하사하라 명하고 그 군사들을 이끌고 뒷 대열에 서도록 하였다.

○上發幕次, 至素沙橋邊, 使禁軍·宣傳官等, 馳馬橋上, 駐駕以觀之. 忠清兵使閔震益·營將李旰, 領馬·步兵五千, 結陣于境上. 上到陣門, 震益建大將旗幟, 具軍樂出迎. 上駐駕觀軍容,

謂兵曹判書洪重普曰：“此軍似勝於水原軍。” 召震益·旰於駕前諭之曰：“此軍行伍頗整，旗幟生色，可見爾等勤於職事。” 竝命賜馬，仍令將其兵作後隊。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4월 20일(병자) 3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의 행차에 수원부터 각읍의 유생 및 부로들이 나와 절하다**

오시에 어가가 온천에 도착하였다. 수원 이남부터 어가가 경유하는 각읍마다 유생·부로(父老)들이 수십 인 혹은 백여 인씩 곳곳에서 마중 나와 절하였으며, 온양에 이르자 십 리쯤 길 양쪽으로 인파의 줄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는데, 상이 가끔 어가를 멈추고 위문하였다.

○午時，駕至溫泉。自水原以南，車駕所過，儒生·父老，或數十人或百餘人，處處迎拜，及到溫陽，夾路十里許，連亘不絕，上時駐駕勞問。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4월 21일(정축) 3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온천에서 서울로 돌아갈 때 수원의 군사를 징발하지 말라고 하다**

상이 온천 행궁에 있었다. 영의정 정태화, 형조 판서 김좌명, 대사간 이경억 등을 인견하였다. (...) 태화가 아뢰기를, “돌아갈 때 또다시 이 도의 군사를 징발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마병을 전대(前隊)로, 보군을 후대로 삼고, 본도 및 수원의 군사는 징발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니, 태화가 매우 지당하다고 하였다. (...)

○朔日丙戌/上在溫泉行宮。引見領議政鄭太和·刑曹判書金佐明·大司諫李慶億等。(...) 太和曰：“回鑾時，亦將徵發本道軍兵乎？” 上曰：“予欲以馬兵爲前隊，步軍爲後隊，而毋發本道及水原軍。太和曰：“甚當。” (...)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5월 1일(병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수원 숙소에 머무르다**

상이 직산을 출발하여 미시(未時)에 수원 숙소에 머물렀다.

○戊戌/上發稷山，晝停于振威。未時，次于水原宿所。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5월 13일(무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수원을 출발해 과천에 머무르다**

상이 수원을 출발하여 과천 주정소에 머물렀다.

○己亥/上發水原，次于果川晝停。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5월 14일(기해)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온천에 거둥할 때 총융사는 산성에, 경기감사는 남양 등지에 머물게 하다**

상이 침을 맞은 뒤에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 홍명하가 아뢰기를, “구인기가 총융사로서 뒤에 처졌다가 수원에 남아 있게 되는데 도신도 수원에 남아 있으면 수원이 반드시 곡물을 잇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인기로 하여금 도성 안으로 도로

들어가서 경기를 통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사는 남양(南陽)·안성(安城)·양성(陽城) 등의 고을을 왕래하면서 머무르게 하고, 인기는 산성에 머물면서 산성의 곡식을 가져다 먹게 하여 본부(本府)에 폐해가 없게 하라.” 하였다. (…)

○上受鍼後，引見大臣及備局諸臣 (…)  
命夏曰：“具仁壑以摠戎使落後，當留於水原，道臣亦留於水原，則水原必難支。宜令仁壑還入都中，節制京畿。”  
上曰：“監司則往來留駐於南陽·安城·陽城等邑，仁壑則留鎮山城，取食山城穀，以除本府之弊。” (…)

<현종개수실록 14권, 현종 7년 3월 13일(계사) 2번째기사>

정치/왕실

현종이 수원에 머무르다

미시에 수원의 숙소에 머물렀는데 자전의 수레가 뒤따라 도착하였다.

○未時，次水原宿所，慈駕隨至。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3월 27일(정미) 2번째기사>

정치/왕실

현종이 청호(靑湖)에서 수원의 군대를 사열하다

진시에 어가가 수원을 떠나 청호(靑湖)의 앞 들에 도착하였는데 수원의 군대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상이 군중에 들어가 구인기에게 명하여 다시 방진(方陣)과 원진(圓陣)을 치게 한 다음, 상이 기치를 치우게 하고는 보면서 이르기를, “이 군대의 진법은 그리 생소하지 않아 지난해보다 상당히 낫다.” 하고, 구인기와 중군 이중신에게 사복의 말 한 필씩을 주라고 명하였다.

○戊申/辰時，大駕發水原，到靑湖前野，水原軍結陣以待。上入軍中，命具仁壑改布方陣·圓陣，上辟旗幟觀之曰：“此軍陣法，不至生疎，頗勝於上年矣。”  
命賜具仁壑及中軍李重信，司僕馬各一匹。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3월 28일(무신) 1번째기사>

정치/왕실

현종이 충융사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수원 산성에 남아있으라고 명하다

상이 소여(小輿)를 타고 길가의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니 승지(承旨)·사관(史官)·옥당(玉堂) 및 시위의 장사(將士)들이 모두 걸어서 따라갔다. 상이 신전(信箭)으로써 금군 별장(禁軍別將) 정영(鄭諫)·이동현(李東顯), 마병 별장(馬兵別將) 민승(閔昇)을 불러 삼군으로 하여금 각자 진을 치고 있다가 포 쏘는 소리를 들은 다음 합하여 하나의 진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또 진을 해체하여 길에 죽 열지어 서 있도록 하였는데, 포를 쏘고 기를 세 번이나 내렸으나 빨리 진을 해체하지 못하자 상이 금고(金鼓)를 쳐서 지휘하라고 하였다. (…)  
유혁연이 진을 다 치고 나자, 상이 진을 해체하고 전진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충융사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뒤에 남아 있게 하고는 수원 산성에 머물렀다.

○上御小輿，登路邊高阜，承旨·史官·玉堂及侍衛將士皆步從。上命發信箭，招禁軍別將鄭諫·李東顯·馬兵別將閔昇，使三軍各自爲陣，聞砲聲然後，合爲一陣。又令解陣，列立于道上，放砲偃旗三次，而未能猝解，上命以金鼓號令。(…)  
赫然布陣勢訖，上命罷陣前進。使摠戎使領

兵落後，駐水原山城.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3월 29일(기유) 5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수원에 머무르다

상이 직산을 떠나 저녁에 수원에서 머물렀다.

○戊寅/上發稷山，夕次于水原.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4월 28일(무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종이 수원을 떠나다

상이 수원을 떠나 저녁에 과천에서 머물렀다.

○己卯/上發水原，夕次于果川.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4월 29일(기묘)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의 속오군의 정원에서 누락된 인원은 잡역 군관 등에서 보충하라고 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총융사(摠戎使) 구인기와 수원 부사 유창도 입시하였다. (...)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 유창이 본부의 속오군 원수(元數) 및 각종 군대의 숫자를 기록해 가지고 왔는데 속오군 6천여 명 중에 도망갔거나 죽은 자가 거의 1천여 명에 이르며, 각종의 군병도 그런 숫자가 매우 많아서 이미 충당할 길이 없고 또 요역이 겹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유창의 뜻은, 원군(元軍)의 수를 감하고 각종 군병으로 충당할 것을 허락한다면 이로써 정예한 군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구인기는 이 일을 상당히 어렵게 여깁니다.” 하니, 인기가 아뢰기를, “수원부의 제군(諸軍)은 모두 명목이 있으므로 지금 쉽사리 숫자를 감축할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수원의 원 군사는 이미 마병 10초(哨)와 보군 30초로 인원수를 정하였으니, 수원의 호구로 편입된 백성들에 대해서는 각 아문에서 보충해 넣지 말고 긴요하지 않은 잡역 군관의 유들을 뽑아내어 빈 인원을 보충하라.” 하였다. (...)

○乙未/上御熙政堂，引見大臣及備局諸臣．摠戎使具仁壑·水原府使俞瑒亦入侍．(...) 太和曰：“水原府使俞瑒，錄本府束伍元數及諸色軍兵之數以來，而束伍六千餘人內，逃故幾至千餘，各色軍兵，其數甚多，而既無充定之路，又多疊役之患．故瑒之意，欲得減除元軍，許給諸色軍兵，以爲團束精銳之地，而具仁壑則頗以爲難矣．” 仁壑曰：“水原諸軍皆有色目，今不可容易減數也．” 上曰：“水原元軍，既以馬兵十哨·步軍三十哨定額矣，民之編戶於水原者，各衙門無得充定，雜役軍官不緊之類，竝抄出以補闕額．”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1월 19일(을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 사람이 구문치에게 피살되자 수원부사가 마음대로 죽인 일에 대해 논하다

상이 침을 맞고 나서 영의정 정태화와 좌의정 홍명하를 인견하였다. (...)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원 사람이, 자기 아들이 구문치(具文治)에게 피살되자, 이일선(李一善)에게 글을 보내

어 원수를 갚으려고 모의했다가 발각되어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부사 김 시진(金始振)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조정에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죽였다 합니다. 대개 그의 뜻은 뒷날 일이 생기면 잘못을 국가에 돌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먼저 처참하고 뒤에 아뢰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것이 온당한 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나름대로의 의견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

○上受鍼，引見領議政鄭太和·左議政洪命夏．(…)太和曰：“水原人，以其子被殺於具文治，通書於李一善，謀欲報怨，事覺逃竄．今聞府使金始振，捕捉其人，不告於朝，擅殺之．蓋其意以爲，日後生事，不欲歸咎於國家，有此先斬後啓之舉也．雖未知其穩當，而亦不無意見也．”上曰：“然．”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8년 1월 11일(병술)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현종이 온천에 거동할 때 경기도는 수원의 군사로 호위하게 하다

상이 침을 맞은 다음 병조 판서 김좌명을 인견하였다. 상이 우승지 민점(閔點)에게 이르기를,

“우상이 지금 이미 떠났다고 하는데 대신의 행차는 일의 체모가 특별하다. 두 도의 감사로 하여금 관례대로 호송하게 하라.” 하였다.

상이 김좌명에게 이르기를, “이번 온천 거동시 도감의 포수를 8백 명으로 수효를 정하되, 6백 명은 어가를 호위하게 하고 2백 명은 자전을 호위하게 하라.” 하니, 좌명이 아뢰기를, “충청과 경기 두 도의 마군(馬軍)도 교대로 호위해야 하는데, 충청도 해미(海美)와 공산(公山)의 두 군영 소속 천여 명 가운데는 노약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경기는 총용사가 수원의 마군을 단속해서 호위하려고 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충청도는 노약자를 제외하고 정예로운 자 4백 명을 뽑아서 호위하게 하고, 경기는 수원의 군사로 호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丁亥/上受鍼，引見兵曹判書金佐明．上謂右承旨閔點曰：“右相今已發行云，大臣之行，事體有別．其令兩道監司，依例護送．”上謂佐明曰：“今此溫泉舉動時，都監砲手，以八百名定數，而六百名則護衛於大駕，二百名則護衛於慈殿．”佐明曰：“忠清·京畿兩道馬軍，亦當相遞護衛，而忠清道海美·公山兩營所屬軍千餘名之中，老弱頗多云．京畿則摠戎使，欲以水原軍團束護行矣．”上曰：“其令忠清道除其老弱，抄其精銳者四百名護衛，而京畿則以水原軍護衛可也．”

<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3월 13일(정해)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현종이 수원에 머물다

#### 상이 수원에서 머물렀다.

○丙辰/上次水原．

<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4월 12일(병진)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현종이 수원에 머물다.

#### 상이 수원에 머물렀다.



○丙戌/上次水原.

<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윤4월 12일(병술) 1번째기사>

정치/왕실

현종이 온천으로 가면서 수원에 머물 때 허적을 인견하다

행 지중추 허적이 어가가 수원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에 와서 알현하자, 상이 장전(帳殿)에서 인견하였다. (…)

○行知中樞許積來謁于水原路次, 上引見于帳殿. (…)

<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윤4월 12일(병술) 3번째기사>

정치/왕실

현종이 저녁에 수원부에 머물다

상이 과천(果川)을 출발하여 사근천(沙斤川)에서 주정(晝停)을 하고 저녁에 수원부(水原府)에서 머물렀다.

○癸未/上自果川動駕, 晝停于沙斤川, 夕次水原府.

<현종개수실록 19권, 현종 9년 8월 17일(계미) 1번째기사>

정치/왕실

현종이 사시에 수원을 출발하다

사시에 수원을 출발하여 진위현(振威縣)에 머물렀다.

○甲申/巳時, 自水原動駕, 次振威縣.

<현종개수실록 19권, 현종 9년 8월 18일(갑신) 1번째기사>

정치/왕실

세자의 병환으로 서둘러 환궁할 때 수원에서 묵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좌의정 허적과 병조 판서 홍중보를 인견하였다. 허적이 나아가 아뢰기를, “세자의 병환이 더욱 심해져서 서둘러 돌아가시게 되니, 아랫사람들의 근심되는 마음을 어찌 이루 다 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일 출발하여 수원에서 묵어야 하는데, 보군(步軍)이 만약 한꺼번에 가면 필시 도착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가중군(假中軍)이 거느리고 오늘 저녁에 먼저 소주정(小晝亭)으로 나아가게 하고, 절반은 어가를 수행하게 하라. 마병 금군(馬兵禁軍)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수원을 지난 뒤에는 숙소를 어디로 정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원에서 묵으면 다음날 서울에 들어갈 수가 있다. 경역마(京驛馬)로 하여금 서빙고(西氷庫)에서 기다리게 하고 유도 군병(留都軍兵)도 강변에 와서 기다리게 하여, 어가를 호종하여 도성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라.” 하였다. (…)

○己亥/引見左議政許積·兵曹判書洪重普. 積進曰: “世子患候彌留, 回鑾甚急, 群下之憂悶, 何可盡達?” 上曰: “明日回鑾, 當次于水原, 而步軍若一時作行, 則必有未及之患. 分其半, 一半則使假中軍領率, 今夕先詣小晝亭, 一半則隨駕, 馬兵禁軍亦如之.” 積曰: “水原以後宿所, 何以定之?” 上曰: “宿水原, 則翌日可以入京. 令京馬驛, 待於西氷庫, 而亦令留都軍兵, 來待江邊, 以爲扈駕入城之地.” (…)

<현종개수실록 19권, 현종 9년 9월 3일(기해)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서둘러 환궁하여 수원에 묵는다는 것에 대해 이조 판서 송준길이 간언하다

이조 판서 송준길(宋浚吉)이 또 상소하여 해직을 빈 후에 산관(散官)으로 들어와 사례하고 물러갔다. 상이 너그러이 비답하고 사관을 보내어 속히 불러오게 하였는데, 사관이 천안 부근에서 만나 전유하였다. 얼마 후에 송준길이 행궁에 나왔는데, 진선 이상(李翔)도 왔다. (….) 준길이 아뢰기를,

“들으니, 내일 출발하여 수원(水原)에서 묵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원까지의 거리는 5참(站)입니다. 임금의 행차는 빠르게 진행해서는 안되며, 또 목욕을 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먼 길을 가게 되면 병을 삼가는 도리에 해로움이 있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즈음 세자의 병으로 자전께서 밤낮으로 깊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속히 돌아가서 자전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준길이 아뢰기를, “이 것은 자전의 걱정을 위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세자의 병을 염려하여 속히 돌아가려 하시나, 어찌 자전께서 전하를 염려하시는 것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꼭 수원을 묵어갈 참(站)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진위(振威)에 도착하여 형세를 보아가며 할 것이다.” 하였다. (….)

○吏曹判書宋浚吉又上疏乞解職，後以散官入謝而退。上優批，遣史官促召，史官遇於天安境上，傳諭。俄而，浚吉來詣行宮，進善李翔亦至。(….) 浚吉曰：“聞明日回鑾，宿次于水原云，此去水原，乃五站也。人君行幸，不宜疾驅，且沐浴未久，遽爾遠行，則恐有害於慎疾之道矣。”上曰：“近以世子所患，慈殿日夜憂慮，故切欲速還，以慰慈念耳。”浚吉曰：“此非所以慰慈懷也。殿下念世子所患，雖欲速還，獨不念慈殿之憂念殿下乎？”上曰：“非必以水原定爲宿站也。到振威，當觀勢爲之耳。”(….)

<현종개수실록 19권, 현종 9년 9월 3일(기해)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현종이 수원부에서 주정하다

상이 다시 출발하여 수원부(水原府)에서 주정하였다. 또 사근천(沙斤川)에서 주정하였으며 저녁에 과천현(果川縣)에서 머물렀다.

○辛丑/上動駕，晝停于水原府。又晝停于沙斤川，夕次果川縣。

<현종개수실록 19권, 현종 9년 9월 5일(신축)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행차를 앞두고 수원 부사 심지명이 거둬 대간의 탄핵을 받아 체차되다

상이 회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소대하고, 『심경』과 『강목』을 강하였다. (….) 허적이 또 아뢰기를, “수원 부사 심지명(沈之溟)이 이번에 또 대론(臺論)을 입었으니, 부임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거둬가 임박한 때에는 즉시 체차하여 모든 일에 군색한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계에 이른바 ‘버젓이 기탄하는 것이 없다.’ 는 말은 진실로 터무니없다. 그러나 사세가 이러하니 체차하라.” 하였다. (….)

○壬午/上御熙政堂召對，講『心經』·『綱目』。(….) 積又曰：“水原府使沈之溟，今者又被臺論，勢難赴任。當此舉動臨迫之時，似當趁卽遞改，俾無凡事窘急之患。”上曰：“臺啓所謂儼然無忌憚，誠極無據。而事勢如此，則遞差。”

<현종개수실록 20권, 현종 10년 2월 19일(임오)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홍중보의 품정대로 수원에 시재어사를 파견하다

상이 양심합(養心閣)에 나가니, 약방(藥房)이 들어와 상의 기후를 진찰했다. (...) 병조 판서 홍중보가 이전에 품정한 대로 수원에 시재 어사(試才御史)를 뽑아 보내자고 청하니, 상이 따랐다.

○朔日辛卯/上御養心閣，藥房入診上候. (...) 兵曹判書洪重普，請依前稟定，差送水原試才御史，上從之.

<현종개수실록 21권, 현종 10년 9월 1일(신묘)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숙경 공주의 병이 위독하여 수원부사 원만리를 불러 구완하게 하다

숙경 공주(淑敬公主)의 병이 위독해지자 상이 수원 부사 원만리(元萬里)를 급히 불러 병을 구완하게 하였다. 만리는 곧 공주의 시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淑敬公主病篤，上命急召水原府使元萬里救病. 萬里即公主之舅也. 故有是命.

<현종개수실록 23권, 현종 12년 1월 9일(신유) 3번째기사>

#### 정치/왕실

천릉에 대해 김수홍이 수원도 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자 현종이 필요가 없다고 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우의정 김수홍과 예조 판서 조형을 인견하였는데, 수어사 이완이 또한 청대하여 입시하였다. 수홍이 아뢰기를, “예판·관상감 제조 및 도감 당상 1인이 지금 떠나 여러 산들을 살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령 건원릉(健元陵)·헌릉(獻陵)·광릉(光陵)·영릉(英陵) 및 양주(楊州) 화접동(花蝶洞) 등은 모두 살펴볼 대상 중에 들어 있는데, 수원(水原) 읍내 역시 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수원을 쓰지 않았던 것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 지금도 가 볼 필요가 없다.” 하였다. (...) 상이 수홍 등에게 이르기를, “지관(地官)의 말을 듣건대 금년에 능을 옮기면 좋다고 한다. 모든 일을 미리 요리해 두지 않으면 안 되니, 내재궁(內梓宮)을 예비하고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上御熙政堂，引見右議政金壽興·禮曹判書趙珩，守禦使李浣·亦請對入侍. 壽興曰：“禮判·觀象監提調及都監堂上一人，今當出去，看審諸山. 如健元陵·獻陵·光陵·英陵及楊州花蝶洞，皆在看審中，而水原邑內，亦當往看否?” 上曰：“當初不用水原，非謂有瑕疵也，今亦不須往看也.” (...) 上謂壽興等曰：“聞地官之言，以今年遷陵爲吉云. 凡事不可不預爲料理，內梓宮預備以待.”

<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4년 5월 15일(갑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장응일이 상소하여 수원 산릉을 반대하여 결국 천릉하게 한 신하를 비판하다

전 참의 장응일(張應一)이 유지(有旨)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 아, 필부가 어버이를 장사지낼 때에도 자기 정성을 다하는 법인데, 천승(千乘)의 임금으로서 선왕을 장사지내면서 오히려 필부보다도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삼가 듣건대, 당초 능을 살펴 정하던 날 지술

(地術)을 아는 사부들 모두가 말하기를 ‘수원(水原)에 있는 산이 가장 길지(吉地)이다.’  
고 했었는데, 누가 영릉을 꼭 써야 한다는 의논을 주도하여 전하로 하여금 이렇듯 이 세상에 다시 없을 망극한 변을 맞게 했다 말입니까. 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산에 대한 이야기를 갖추어 진달하였는데도 불태워진 채 정원이 끝내 전하께서 보시도록 봉입(捧入)하지 않았던 것은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만약 하문해 보신다면 선도의 상소에 나오는 뜻을 모두 아실 수 있을텐데, 대저 그런 뒤에야 전하께서 영릉은 제왕의 장지(葬地)가 못된다는 것과 당초에 벌써 운운(云云)하는 설이 있었다는 것을 환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영릉을 꼭 써야 한다는 의논을 주도한 자야말로 전하의 집안 일을 망치고 선왕에게 크게 불충한 짓을 했다는 것이 분명한데, 임금의 옷을 입고 임금의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차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대가 올린 소의 내용을 보고 그저 나의 효성이 형편없음을 한탄하였는데 오장이 찢어 발겨지는 듯 나도 모르게 비통한 울음만 나올 뿐이었다. 다만 감독한 사람들의 죄가 중하다는 상소의 내용은 그래도 괜찮다마는, 기타 사건들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곡절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소문이 전파되어 그런 것인가? 그리고 수원과 관련된 한 조목 및 대신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매우 아름답지 못한 일로서 내가 대단히 놀랍게 여기는 바이다.” 하였다.

○壬子/前參議張應一應旨上疏曰：(…)噫! 匹夫而掩其親，猶且自盡，以千乘之君，而葬先王，反不如匹夫乎? 竊聞，當初卜陵之日，士夫之鮮地術者咸曰：“水原之山，最爲吉地.”云，而孰主必用寧陵之議，使殿下遭此終天罔極之變乎? 惜乎! 尹善道之疏，備陳山說而見焚，政院終不入於睿覽. 今若下問，則可悉善道疏中之意. 夫然後，殿下曉然知寧陵非帝王葬地，而當初已有云云之說矣. 然則主寧陵必用之議者，明是敗殿下家事，而大不忠於先王者也. 衣君食君，是可忍耶? (…)上答曰：“覽爾疏辭，只恨誠孝無狀，五內摧裂，自不覺痛泣而已. 第監董之人罪犯之重，疏意亦可，而其他事件，曲折各異，流傳爽實而然耶? 至於水原一款及不可委之等說，殊甚不美，予深駭之.”

<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4년 6월 14일(임자) 1번째기사>

## 정치/왕실

**대사간 신정이 상소하여 장응일을 비판하고 수원으로 선정하지 않았던 일을 변호하다**

대사간 신정이 상소하기를,

“삼가 듣건대, 전 참의 장응일(張應一)이 상소하면서 장황한 말로 교묘하게 농락하고 거리낌없는 표현을 구사했다 하는데 정말 그가 마음 속으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국가가 불행하게도 선릉(先陵)에 변고가 생겨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능을 옮기는 일까지 있게 되었는데, 전하께서 봉심했던 신하들을 죄준 것은 그 일을 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사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속이려 한 정상은 없었다는 것을 전하께서도 통촉하고 계시고 보면, 심리하던 날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해 준 것이 어찌 전하께서 대신을 다치게 할까봐 염려하시어 곡진히 보살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하께서 대신을 대우하신 것은 지극하다 하겠지만 성왕을 섬기는 도리에 있어서는 어떨지 모르겠다.’ 고 한 이 말은 아,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군상(君上)을 위협하여 여러 신하들을 죄주도록 압박지르고 싶다 하더라도 이 어찌 신자(臣子)된 사람이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내고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수원(水原)을 버리고 영릉(寧陵)을 취한 것과 관련하여 그 죄를 당초 논하며 아뢰었던 신하에게 돌리면서 ‘전하의 집안 일을 망치고 선왕에게 크게 불충한 짓을 한 것이다.’ 고까지 하였는데, 신은 이에 대해 지극히 분개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수원의 산으로 처음에 이미 복정(卜定)했었는데, 고(故) 상신(相臣) 이시백(李時白) 등 여러 사람이 ‘수원은 기보(畿輔)의 거진(巨鎭)인 만큼 뒷날 다섯 가지 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는 내용으로 누차 상소해 중지할 것을 간하였고 판부사 송시열(宋時烈) 역시 이런 내용으로 의논드려 영릉으로 다시 고쳐 복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백 등 여러 사람이 과연 모두들 전하의 집안 일을 망치고 선왕에 대해 크게 불충한 짓을 하려 했던 자들이란 말입니까. 그가 이런 계책을 쓴 의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의논드렸던 신하들은 지금 모두 생존해 있지 않고 오직 시열만 남아 있을 뿐인데, 함정에 빠뜨려 해치려는 대상 인물이 필시 이미 백골이 된 사람들은 아닐 것이고 보면 그가 의도하는 바가 아, 또한 참혹하다 하겠습니다. (…)

○大司諫申最上疏曰：伏聞，前參議張應一疏中之辭，張皇闔關，下語無忌，實未曉其心之所在也．國家不幸，先陵有變，至于今日，有遷陵之舉．殿下之罪奉審諸臣者，所以重其事也．其實無用意欺蔽之狀，亦殿下之所洞燭，則原情恕有於審理之日，豈殿下恐傷大臣，而曲爲之地哉？然則謂殿下待大臣則至矣，而事先王之道，未知如何者，噫嘻！此何言也？雖欲脅持君上，勒罪諸臣，此豈臣子所可生於心，而發於口者哉？且以捨水原而取寧陵，歸罪於當初論奏之臣，至謂敗殿下家事，而大不忠於先王，臣於此不勝慨然之至．水原之山初既卜定，而故相臣李時白諸人，以畿輔巨鎭，日後五患，累疏諫止，而判府事宋時烈亦以此獻議，改卜寧陵，則時白諸人，果皆欲敗殿下家事，而大不忠於先王者哉？此其計無他，其時獻議諸臣，今皆不在，獨時烈在耳．所欲陷害者，必不在於既骨之人，則其所用意，吁亦慘矣．(…)

<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4년 6월 19일(정사) 3번째기사>

## 정치/왕실

**총호사 김수홍 등이 장응일의 상소를 비판하고 당초 수원을 반대한 인물들을 거론하다**

상이 총호사 김수홍 및 도감 당상을 인견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응일의 소에 서명한 것을 보면 노인의 필적같지가 않았다.” 하니, 수홍이 아뢰기를, “삼사(三司)의 신하들이 모두 이 일에 대해 소장을 올려 진달하였는데, 성상께서 보시고도 아직 다 살피지 못하신 듯합니다. 응일이 소에서 윤선도의 일을 인용한 의도는 전적으로 판부사 송시열(宋時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보건대, 당초 수원(水原)을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이시백(李時白)·이후원(李厚源)·이해(李懈) 등 여러 신하의 의논에서 나온 것이었고, 송시열도 진달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시열 혼자서 주장한 것이 아니었으며, 영릉(寧陵)을 써야 한다고 말한 것도 시열이 창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민간에 전파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모두 시열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응일이 그와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야말로 교묘하게 해 보려다가 거꾸로 졸렬하게 된 격이라 하겠다. 소위 ‘전하의 집안 일을 망치는 자이다.’ 라고 한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 하였다. (…)

○上引見總護使金壽興及都監堂上.(…) 上曰：“應一疏中着署，不似老人筆迹矣.” 壽興曰：“三司之臣，皆以茲事陳章，而恐聖鑑猶有所未悉也．應一疏中所引尹善道事，其意專在於判府事宋時烈．概當初謂水原不當用者，出於李時白·李厚源·李懈諸臣之議，而時烈亦有所達，非

時烈之所獨主張也。謂寧陵可用者，亦非時烈所倡，而閭巷傳說，皆以爲時烈主之，故應一之言如此矣。” 上曰：“此可謂欲巧而反拙，其所謂敗殿下家事者，尤不成說話矣。” (…)

<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4년 6월 20일(무오)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현종이 수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송시열에게 전유하다

상이 동부승지 이규령을 보내 판부사 송시열에게 전유하였다.

“지난번 사관(史官)이 돌아와 올린 경의 말을 보건대 불안해하는 뜻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곡절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저번에 장응일(張應一)이 소를 올려 두서없는 말로 암암리에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였는데, 심지어 수원(水原)의 설까지 꼬집어낸 것은 그의 의도가 더욱 흉참하기 그지없는 것이어서 내가 경악하였으므로 이에 근시(近侍)를 보내 나의 뜻을 유시한다.

이번에 능을 옮기게 된 일이야말로 망극한 변고이니 어찌 불행한 것으로만 그치겠는가. 그런데 간인(奸人)이 그 틈을 타고 끝없이 말을 날조해내고 있는데, 이는 나의 성효(誠孝)가 형편없어 오늘과 같은 일을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가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릴 따름이다. 그러나 상하를 이간질하고 나라를 망칠 꾀를 낸 것 같은 것은 전의 역사에서 그런 일을 보지만 해도 두려워지는 일로서 더욱 놀랍기 그지없다.

아, 흉인(凶人)이 꾀를 쓰는 것이 아무리 간교하다고는 해도 이 일의 경우는 결코 근사하지도 않은 것이니 경이 불안하게 느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속히 멀리 하려는 마음을 돌려 빠른 시간 안에 올라와서 능을 옮기는 예를 주선토록 하라. 그러면 선왕이 특별히 대우해 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지극하다고 할 것이다.”

○上遣同副承旨李奎齡，傳諭于判府事宋時烈曰：“頃者史官之回，得見卿言，多有不安之意，而未詳曲折矣。乃者張應一之疏，語意無倫，陰欲陷人，至於水原之說，其用意尤極凶慘，予用驚駭，茲遣近侍，以諭予意。今者遷陵之舉，實是罔極之變，豈但不幸而已哉？奸人乘間，造言罔極，予之誠孝無狀，致有今日，撫心痛泣而已，復何言哉？至若離亂上下，敗人國家之計，考之前史，亦可怵然，尤極驚心。噫！凶人用謀，雖曰奸巧，至於此事，萬不近似，於卿有何不安之理？亟回遐心，從速上來，周旋於遷陵之禮，其於報先王殊遇之恩，可謂至矣。”

<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4년 6월 24일(임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수원에 있는 송시열이 능지 찬술을 사양하다

영부사(領府事) 송시열(宋時烈)이 수원(水原)에 있으면서 상소(上疏)하여 능지(陵誌)를 찬술하라는 명을 사양하니, 답하기를, “고(孤)가 어린 나이로, 하늘에 죄를 지어 이 망극(罔極)한 슬픔을 당하니, 스스로 통곡할 따름이다. 이제 경(卿)의 상소를 보고 내가 매우 놀랐다. 경은 선조(先朝)의 권우(眷遇)를 생각하여 속히 올라와서 지어 올리라.” 하였다.

○領府事宋時烈在水原，上疏辭撰誌之命，答曰：“孤以冲年，獲罪于天，遭此罔極之痛，只自慟哭。今觀卿疏，予甚愕然。卿念先朝之眷遇，從速上來製進。”

<숙종실록 1권, 숙종 즉위년 9월 2일(계해)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곽세건의 상소로 송시열이 필마로 수원으로 돌아가다

임금이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치화(鄭致和)·좌의정(左議政) 김수항(金壽恒)·도승지(都承旨) 김석주(金錫胄)를 인견(引見)하였다.

(…) 허적이 아뢰기를,

**“엄히 국문하라는 의논은 진실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신(諸臣)이 이로부터 마음이 편안치 못하며, 송시열은 필마(匹馬)로 수원(水原)으로 돌아갔으나, 경상(景狀)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처음 정치하시는 데는 청명(淸明)하기가 명경 지수(明鏡止水)와 같아야 하니, 만약 일호(一毫)라도 의심이 있다면 이는 크게 근심할 만한 것입니다.” 하였다. (…)

○上引見領議政許積·領中樞鄭致和·左議政金壽恒·都承旨金錫胄. (…)  
積曰: “嚴鞫之論, 誠爲不可. 而諸臣自此不安, 時烈匹馬歸水原, 景象不佳矣. 殿下始初淸明, 當如明鏡止水, 若有一毫疑心, 則大可憂也.” (…)

<숙종실록 1권, 숙종 즉위년 9월 27일(무자)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효종의 영릉이 수원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경기(京畿) 진사(進士) 성호석(成虎錫) 등이 소(疏)를 올려 송시열(宋時烈)의 석방(釋放)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때마침 영릉(寧陵)에 석변(石變)이 있었는데, 이는 허적이 가만히 영림령(靈林令) 익수(翼秀)를 영릉에 보내어 능 위에 몰래 들어가서 엿보게 한 뒤에 상소(上疏)하여 말한 것이다. 익수는 도리에 어긋나고 허망하여 견줄 데가 없는 자이므로, 정(楨) 등이 이익을 주어 유혹한 것이다. **그의 계책[計]으로는 윤선도(尹善道)가 영릉의 자리를 처음에 수원(水原)으로 정하기를 주장하였으나, 그때에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 등이 수원은 좋지 못하다고 반대하였으며, 그리고 영릉의 역사를 감독하는 자가 모두 서인들이었기에 수원으로 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허적(許積)이 연판(連板)이 오랫동안 흙 속에 파묻혀 있었으니, 반드시 틈이 벌어졌을 것이라 여겨 능(陵)을 열어 보고서 이 일로 서인들의 죄를 성토(聲討)하여 일망 타진(一網打盡)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장응일(張應一)과 조위봉(趙威鳳) 등이 서로 응하여 소장(疏章)을 올리었다. 이에 영릉을 시급히 여주(驪州)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그 때에 선왕(先王)께서는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으나, 이 일로 인하여 놀라고 염려하여 밤새도록 밖에 계셨기 때문에 마침내 병환이 더하였었다. 영릉을 열어보니 황당(皇堂)은 아무 탈이 없었고 재궁은 변함이 없었으니, 그 일을 말아보았던 여러 신하들이 한편으로 슬프고 한편으로 기뻐하지 아니한 자가 없었다. 그러나 저 일을 꾸민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이 변하였다. 그때에 광(壙) 안에 한 줄기의 이상한 기운이 구름과 안개와 같이 뭉쳐서 돌아다니다가 한참 지난 뒤에야 흩어졌다. 이를 보는 자들이 모두 놀라고 감탄하였으며, 영릉의 역사를 맡은 인부들까지도 모두 말하기를, ‘영림령(靈林令)은 죽어야 한다.’ 고 하였다. (…)

○京畿進士成虎錫等上疏, 請釋宋時烈, 上不納.(…)  
會, 寧陵有石變, 密遣靈林令翼秀, 潛入陵上窺視, 投疏言之. 翼秀悖妄無倫, 楨等陷之以利也. 其計以爲, 善道初主用水原, 時烈·浚吉等言不可, 而寧陵董役者, 又皆西人. 且意梓宮連板, 久在土中, 必有罅隙, 欲啓陵而以此聲罪網打. 張應一·趙威鳳等相應上章, 於是, 急遷寧陵于驪州. 時, 先王久寢疾, 因此驚慮, 達夜露處, 遂致增重. 及啓陵, 皇堂無故, 梓宮不變, 執事諸臣, 無不悲喜, 而一邊人相顧失色. 壙內有一團異氣, 如雲霧盤旋, 移時而散, 見者皆驚歎. 至於役夫皆曰: “靈林令可殺.” (…)

<숙종실록 3권, 숙종 1년 4월 10일(무술) 7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의 진사 이진식이 남천한, 이우정, 목창명을 죽여서 효종의 혼령을 위로하라고 청하다 (…)  
지난 겨울에 수원(水原)의 진사(進士) 이진식(李震楨)이 소를 올려서 남천한(南天漢)·이우정(李宇鼎)·목창명(睦昌明) 등 3인의 머리를 베어서 하늘에 계시는 효종의 혼령(魂靈)을 위로하기를 청하였으나, 승정원(承政院)에서 도로 내 주었다. 그 소(疏)는 당(唐)나라 대종(代宗) 때에 순모(郇模)가 임금께 올렸던 30자를 모방하여 한 글자마다 한 가지 일을 말하였고, 격(格)·과(破)·부(扶)·연(延) 4자로 말을 만들었으니, 격은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음이요, 과는 봉당(朋黨)을 깨뜨림이요, 부는 사류(士類)들을 붙들어 줌이요, 연은 나라의 명맥(命脈)을 연장함이었다. 그는 뒤에 갑자년의 과거에 합격하여 사관(四館)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한배주(韓配周)가 백부(伯父)를 원수같이 여긴 죄를 가지고 한배주 별 주기를 창의(倡議)하였다가 그의 당파들에게 원한과 미움을 사서 불우(不遇)하게 죽었다. (…)

○(…) 前冬水原進士李震楨上疏, 請斬南天漢·李宇鼎·睦昌明等三人頭, 以慰孝廟在天之靈, 政院亦還出給. 其疏擬唐代宗時, 郇模獻三十字, 一字論一事, 以格·破·扶·延四字爲說. 格, 格君心也; 破, 破朋黨也; 扶, 扶士類也; 延, 延國脈也. 後登甲子科, 入四館, 以韓配周仇視伯父之罪, 倡議罰之, 爲其黨怨嫉, 坎坷而死. (…)

<숙종실록 3권, 숙종 1년 4월 26일(갑인)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이유태이 갑인예송 때 자신은 전의에, 송시열은 수원에 있으면서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다  
 이유태(李惟泰)가 상소하기를, “(…) 그러나 <복제에 대한> 국금(國禁)을 거듭 엄명하신 뒤에는 신과 송시열(宋時烈)간에 복제에 관해서 왕복한 말이 이미 없었고, 송시열이 신에게 건 편지를 보내 나무랐다는 사실도 또한 없었으니, 이른바 대신(大臣)의 말이란 것이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었드려 갑인년 무렵의 일을 생각해 보건대 도신징(都愼徵)의 상소에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천추(千秋) 후에 전하께서는 적손(嫡孫) 노릇을 못하신단 말씀입니까?’ 라는 말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들으니 재상들도 이러한 말들을 하는 자가 있는데, 그 본의가 대개 ‘신 등이 효묘(孝廟)를 적자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함이라 하니, 말이 매우 흉악하고 음험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전의(全義)의 비암사(飛庵寺)에 있고 송시열이 마침 수원(水原)의 만의사(萬義寺)에 있을 때 서로 편지를 내왕하면서 말하기를, ‘송(宋)나라 영종(英宗)은 방계(旁系)에서 들어가 대통(大統)을 이었는데, 정자(程子)가 또한 적자(嫡子)라고 했으니, 하물며 효묘(孝廟)께서는 차적(次嫡)으로서 승격되어 적자가 되었으니 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송시열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李惟泰上疏曰：(…) 及其邦禁申嚴之後, 臣與宋時烈既無服制往復之說, 時烈與臣又無長書詆斥之事, 所謂大臣之言, 皆誤達也. 仍伏念, 甲寅年間竊聞, 都愼徵上疏有大王大妃千秋之後, 殿下將不以適孫自處乎之語, 又聞宰臣亦有爲此說者, 其意, 蓋謂臣等不以孝廟爲適子也. 語極凶險, 故臣在全義飛庵寺, 宋時烈適在水原萬義寺時, 相與往復曰： “宋英宗以旁支入承大統, 程子亦謂之適子. 況孝廟以次適, 陞爲適, 而可謂非適子乎?” 宋時烈亦以爲然矣.(…)

<숙종실록 9권, 숙종 6년 5월 12일(경자)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영릉을 수원에 치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은 송시열만이 아니었다



(…) 김수흥이 아뢰기를,

“이 일은 스스로 전후 사정이 있습니다. 영릉(寧陵)의 석물(石物)에 여러 차례 틈이 벌여졌으므로 해마다 석회를 발랐었는데, 여러 아랫사람들이 진실로 우려하였습니다. 영림령(靈林令) 이익수(李翼秀)가 상소한 뒤에 일종의 의논이 있기를 ‘천릉(遷陵)한 뒤에 마땅히 송시열이 먼저 중죄(重罪)를 받아야 한다.’ 고 하였는데, 대개 효종(孝宗)의 대상(大喪) 때에 수원(水原)에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논이 있었으나, 여러 사람의 의논은 수원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가 많았으니, 그것은 수원이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이라 형세가 불편하고 또 후일에 다섯 가지 걱정거리[五患]가 없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처음에 송시열의 의논이 아니었으며, 함릉 부원군(咸陵府院君) 이해(李漉)·연양 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 두 사람이 힘써 이러한 의논을 주장하였고 송시열이 언급한 것도 있었는데, 천릉(遷陵)의 의논이 있게 되자, 그 죄를 송시열에게 온통 뒤집어 씌우면서 말하기를, ‘이러한 땅에 쓰자고 권한 사람은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허적(許積)이 송시열을 죄주자고 청하였던 것은 대개 소종래(所從來)가 있었습니다.” 하고, 김수항이 아뢰기를, “수원에 쓸 수 없다고 한 자는 비단 이해·이시백뿐만 아니었기 때문에 상신(相臣) 이경석(李景奭)·이후원(李厚源)·원두표(元斗杓) 등 여러 사람도 또한 모두 힘써 간쟁(諫爭)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

○(…) 壽興曰：“此事自有源委，寧陵石物，屢有罅隙，年年塗灰，群下固已憂慮矣。靈林令翼秀上疏之後，一種議論有曰：‘遷陵之後，宋時烈當先被重罪。’ 蓋孝廟大喪時，有宜用水原之議，而群議多以水原爲不合，以其爲畿輔重鎭，形勢不便，而且不無日後五患之慮故也。此亦初非時烈之議也。咸陵府院君李漉·延陽府院君李時白二人，力主是論，而時烈有所言及矣。逮有遷陵之議，而全歸其罪於時烈以爲，勸用此地之人，當受其罪。上年積之請罪時烈者，蓋有所從來矣。” 壽恒曰：“以水原爲不可用者，非特李漉·李時白而已，故相臣李景奭·李厚源·元斗杓諸人，亦皆力爭矣。” (…)

<숙종실록 10권, 숙종 6년 8월 3일(기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에서 무사(武士)를 시험하도록 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수원(水原)에서 광주(廣州)의 예(例)에 의하여 무사(武士)를 시험하도록 하였다. (…)

○己未/御朝講. 上特命水原依廣州例，試武士. (…)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5월 12일(기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송시열이 수원으로 가서 치사(致仕)하는 소를 올리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남용익(南龍翼)이 명을 받들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송시열(宋時烈)에게 가서 개유하였다. 임금이 또다시 수찰(手札)을 내리니 내용이 매우 간곡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은 끝내 부름에 응하지 않고 수원(水原)으로 가 곧장 치사(致仕)를 원하는 소를 올렸다. (…)

○禮曹判書南龍翼承命，往諭于領府事宋時烈。上又再下手札，辭意懇懇。時烈終不應召，轉往水原，仍上疏乞致仕。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10월 20일(계사) 2번째기사>

정치/왕실

영부사 송시열이 수원에서 한강 주변에 도착하여 상소하다

영부사(領府事) 송시열(宋時烈)이 수원(水原)에서 강교(江郊)에 도착하여, 소(疏)를 올려 돌아갈 것을 아뢰었다. 임금이 그 소를 보고 깜짝 놀라서, 우악(優渥)한 내용의 비답(批答)을 내려 머무르기를 청하였다. 승지(承旨) 조지겸(趙持謙)을 보내어 송시열에게 가서 달래도록 하였으나, 그는 명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여주(驪州)로 떠났다. 영릉(寧陵) 근처로 가서 영릉을 우러러보며 머물러 있으려고 한 생각에서였다. 임금이 다시 수찰(手札)을 내려, 조지겸에게 명하여 거둬 달래어서 기필코 함께 오도록 하였다.

○領府事宋時烈自水原進抵江郊，陳疏告歸。上覽之驚愕，優批勉留，遣承旨趙持謙往諭。時烈不爲應命，仍向驪州，欲就寧陵近處，以爲瞻望淹留之計。上又下手札，命持謙申諭，必與偕來。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11월 20일(계해) 3번째기사>

정치/왕실

숙종이 수원에서 충청도로 내려가는 송시열에게 음식을 보내라고 명하다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이 인조조(仁祖朝) 시종(侍從)의 은례(恩例)의 식물(食物)을 굳이 사양하고, 곧 수원(水原)으로부터 남쪽으로 돌아가니, 임금이 공홍도(公洪道)에 명하여 식물을 실어 보내게 하고, 또 승지(承旨)를 보내어 달려가서 돈유(敦諭)케 하였다.

○奉朝賀宋時烈固辭仁祖朝侍從恩例食物，仍自水原南歸，上命公洪道，輸送食物，且遣承旨，馳往敦諭。

<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 12월 20일(신해) 2번째기사>

정치/왕실

숙종이 이봉징의 상소에 따라 수원 등 8고을에 급제(給災)하라고 결제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 임금이 이어서 권대운에게 묻기를, “우상(右相)이 차자(筭子)를 올려 영남(嶺南)에 전재(田災)를 주기를 청하고 또 호남(湖南)에는 신역(身役)을 감면하여 줄 것을 말하였는데, 경(卿)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매, 권대운이 말하기를, “올해에 밭이 재해(災害)를 입은 것은 삼남(三南)이 대개 같은데, 영남에만 허락하는 것은 매우 고르지 못합니다. 죄다 허락하려면 걸리는 일이 많고, 호남의 벼금가는 고을이 또한 일곱 고을뿐이 아니므로 구별할 수 없으니, 이것은 매우 난처합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이 말하기를, “전부터 재실(災實)은 3등으로만 나누었는데, 중간에 혹 4등으로 나누었으나 이것은 이미 옛 제도에 어그러지거니와, 올해에는 영남에서 5등으로까지 나누었으므로 혜택은 적고 손해는 많으니, 감사(監司)가 한 일은 매우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뒤에는 각도에 신칙(申飭)하여 재실의 분등(分等)은 3등을 넘지 않게 하라.” 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오시복(吳始復)이 말하기를, “지난번 이봉징(李鳳徵)의 소(疏)로 말미암아 수원(水原) 등 여덟 고을에 급제(給災)를 줄 것을 본조(本曹)에 계하(啓下)하셨으므로, 해당 고을의 수령(守令)을 시켜 친히 살펴서 구별하여 성책(成冊)하여 올려보내게 할 뜻으로 복계(覆啓)하였습니다. 성책이 이미 왔는데 재결(災結)을 도합한 수는 6백 90여 결(結)입니다. 성상께서 백성을 돌보시는 도리로서는 은혜를 베푸는 거조(舉措)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급제(給災)하라고 명하였다. (...)

○引見大臣備局諸宰。(…)上仍問大運等曰：“右相陳筭請給嶺南田災，又言湖南鋤役，於卿等意何如也？”大運曰：“今年旱田被災，三南大抵同然。獨許嶺南，殊甚不均。若欲盡許，則事多掣肘。而湖南次邑，亦非特七邑而已，不可異同，此甚難處也。”左議政陸來善曰：“自前災實，只分三等。而中間或分爲四等，此已非古制。今年嶺南，至分五等，爲惠則少，所損則多。監司所爲，殊極不當。”上曰：“此後則申飭諸道，災實分等，毋過三等。”戶曹判書吳始復曰：“頃因李鳳徵疏，水原等八邑給災事，啓下本曹。故以令該邑守令，親審區別，成冊上送之意，覆啓矣。成冊已到，而災結都數六百九十餘結。在聖上恤民之道，似當有施惠之舉。”上命特爲給災。字鼎曰：“冬序已深，尙不下雪，誠極悶慮。請於初八日，遣重臣設行祈雪祭於宗廟·社稷及北郊。”上可之。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 12월 3일(기미)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숙종이 노량(露梁)의 장단(將壇)에서 수원 군병을 사열하다

임금이 선릉(宣陵)에 나아가 의식대로 전알(展謁)하는 예(禮)를 거행하고, 이어 정릉(靖陵)도 전알하였으며, 회가(回駕)할 적에 노량(露梁)의 장단(將壇)으로 나아가 수원(水原)의 군병(軍兵)을 친열(親閱)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시골 군사들은 조련(操鍊)이 대체로 생소하여 대부분 모양을 이루지 못하는데, 유독 수원은 그렇지 아니하여 정예(精銳)하다고 이를 만하다.” 하였다. 대신 목내선(睦來善)과 민암(閔黯) 등이 다같이 정예하게 훈련되었다고 칭찬하고, 또 아뢰기를, “병자년에 남한 산성(南漢山城)에서 거가(車駕)를 호위(扈衛)한 공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근시(近侍)를 보내어 시재(試才)하도록 명하여서, 급제(及第)를 주기도 하고 상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총융사(摠戎使) 장희재(張希載)에게는 특별히 내구마(內廐馬) 1필을 내려주었다.

○丁酉/上詣宣陵，行展謁禮如儀，仍謁靖陵，及回轡，御露梁將壇閱水原軍兵。上曰：“鄉軍操鍊，大抵生疎，多不成樣，而獨水原不然。雖謂之精銳，可矣。大臣睦來善·閔黯等，俱稱其精鍊，且以爲丙子扈駕南漢之功，不可無激勸之舉。上遂命遣近侍試才，或賜第或頒賞，特賜摠戎使張希載內廐馬一匹。”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8월 20일(정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숙종이 저녁에 수원 행궁에서 유숙하다

진시(辰時)에 대가(大駕)가 과천(果川)을 떠나 광주(廣州) 사근천(沙斤川)에서 주정(晝停)하고 저녁에 수원 행궁(水原行宮)에서 유숙하였다.

○己未/辰時，大駕發果川，晝停於廣州沙斤川，夕宿水原行宮。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3월 4일(기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숙종이 수원에서 출발하였다.

사시(巳時)에 대가(大駕)가 수원(水原)을 떠나 미시(未時)에 진위 행궁(振威行宮)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庚申/巳時，大駕發水原，未時到振威行宮留宿。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3월 5일(경신) 1번째기사>

정치/왕실

우의정 이이명이 송시열 무덤에 유제할 것을 건의하다

우의정(右議政) 이이명(李頤命)이 차자(筓子)를 올리기를,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의 무덤이 수원(水原) 땅에 있는데, 이제 대가(大駕)가 이곳을 지나니, 근시(近侍)를 보내어 특별히 유제(諭祭)를 내림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右議政李頤命上筓言：“文正公宋時烈之墓，在於水原地，今者駕經此地，宜遣近侍，特賜諭祭.” (…)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3월 5일(경신) 3번째기사>

정치/왕실

숙종이 수원 행궁에서 유숙하다

미시(未時)에 대가(大駕)가 진위(振威)를 떠나 저녁에 수원 행궁(水原行宮)에서 유숙(留宿)하였다.

○朔乙酉/未時，大駕發振威，夕宿水原行宮.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4월 1일(을유) 1번째기사>

정치/왕실

숙종이 수원을 떠나다

진시(辰時)에 대가(大駕)가 수원(水原)을 떠나 사근천(沙斤川)에서 주정(晝停)하고 저녁에 과천 행궁(果川行宮)에서 유숙하였다.

○辰時，大駕發水原，晝停于沙斤川，夕宿果川行宮.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4월 2일(병술) 2번째기사>

정치/왕실

장희빈의 천장지를 수원의 청호촌(靑好村)과 광주의 진해촌 중에서 진해촌으로 정하다

장씨(張氏)의 천장지(遷葬地)를 광주(廣州) 진해촌(眞海村)으로 정하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함일해(咸一海)가 상서(上書)하여 인장리(仁章里)의 묘지(墓地)는 불길(不吉)하다고 논하고, 여러 사람의 의논 또한 결점이 많다고 여겼으나, 임금이 이미 천장(遷葬)하도록 명하였다. 예조 참의(禮曹參議)가 지사(地師)로 이름이 드러난 자 10여 인을 거느리고 길지(吉地)를 기내(畿內)에서 두루 구한 것이 1년이나 되었는데, 처음으로 수원(水原)의 청호촌(靑好村)과 광주(廣州)의 진해촌(眞海村) 두 곳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수원은 비방과 칭찬이 여러 갈래로 많았으므로, 마침내 여러 지사(地師)의 산(山)에 대한 평론(評論)을 갖추어 아뢰자, 임금이 진해촌으로 정하도록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초상(初喪) 때의 예에 의거하여 예장(禮葬)을 행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命定張氏遷葬於廣州眞海村.始，咸一海上書論仁章里墓地不吉，諸議亦多疵之，上既命遷葬.禮曹參議率地師著名者十餘人，遍求吉地於畿內者，且一年，始得水原靑好村·廣州眞海村兩處，而水原毀譽多端，遂以諸地師山論具奏，上命定用眞海村.禮曹請依初喪時例，行禮葬，上可之.

<숙종실록 62권, 숙종 44년 12월 23일(병인) 2번째기사>

정치/왕실

대사간 조관빈이 수원에 있을 때 중로에서 말을 전하여 직접 박찬신이 처리하게 하다

임금이 상신(相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 이어 승정원으로 하여금 대찬(代撰)케 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별유(別諭)하였다. 좌의정 이견명(李健命)이 말하기를,

“충청 수사(忠淸水使) 박찬신(朴贊新)이 조정에 하직한 뒤에 대사간(大司諫) 조관빈(趙觀彬)이 수원(水原)의 임소(任所)에 있으면서 중로(中路)에서 말을 전하여 그로 하여금 제일을 제가 처리하도록 했으니, 그가 소계(疏啓)하지도 않으면서 사사로이 스스로 분부(分付)한 것은 경망함을 면치 못합니다. 또 근래에 수령이나 곤임(關任)을 제수할 때에 대관(臺官)들이 이따금 경저리(京邸吏)를 불러다가 부임치 못하게 한 것이 문득 잘못된 준례(準例)가 되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신칙하여 이런 폐단이 없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上引見相臣及備局諸宰. (...) 仍令政院, 代撰, 別諭諸臣. 左議政李健命曰: “忠淸水使朴贊新, 辭朝之後, 大司諫趙觀彬, 在水原任所, 送言中路, 使之自處. 其不爲疏啓, 而私自分付, 未免忙遽. 且近來守令·關任之除也, 臺官往往招致邸吏, 使勿赴任者, 便成謬例. 請自今申飭, 俾無此弊.” 上從之. (...)

<경중실록 4권, 경종 1년 윤6월 10일(기사)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이항복이 백성을 애호하는 취지에서 수원을 선조의 산릉으로 삼지 않았다

산릉(山陵)을 중량포(中梁浦)에 정하였다. (...) 김일경(金一鏡)이 말하기를,

“비록 사대부(士大夫)의 집안이라 하더라도 천편(遷窆)한 장소에다가 그 아버지를 장사지내려고 하지는 않는데, 더구나 국릉(國陵)이겠습니까? 모든 신하들은 중량포를 주장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물기를, “용인·교하·왕십리는 어떠한가?”

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용인·교하의 객사(客舍) 뒤는 지사(地師)들이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조(宣祖)의 산릉을 수원(水原) 읍내(邑內)에 정하려고 하였을 적에 신의 고조부(高祖父) 문충공(文忠公) 이항복(李恒福)이, ‘그것은 선왕조(先王朝)에서 백성을 애호하는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여 마침내 쓰지 아니하였으니, 돌이켜 보건대, 전하께서 마땅히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이광좌와 도감의 여러 당상에게 명하여 다시 중량포를 살펴보게 하였는데, 모두 아름답다고 하였다. 그래서 대비(大妃)에게 아뢰어 마침내 중량포로 결정하고, 이광좌에게 명하여 다시 가서 재혈(裁穴)하게 하였다. (...)

○卜山陵于中梁浦. (...) 一鏡曰: “雖士夫之家, 亦不欲於遷窆之壙, 葬其親. 況國陵乎? 諸臣皆主中梁浦.” 上問龍仁·交河·王十里何如? 光佐曰: “龍仁·交河客舍後, 地師輩多譽之. 然宣廟山陵, 欲卜於水原邑內, 臣高祖文忠公恒福以爲: ‘非先朝恤民之意’, 遂不用. 顧不爲殿下之所當法耶?” 上是其言, 命光佐及都監諸堂上, 更審中梁浦, 咸以爲美. 於是, 稟于大妃, 遂以中梁浦爲定, 命光佐, 更往裁穴. (...)

<영조실록 1권, 영조 즉위년 9월 16일(병진)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오명항이 무신난에 공이 있는 수원부사 송진명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고 아뢰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 오명항이 말하기를,

“지난번 변란을 당하여 비국 당상(備局堂上) 이태좌(李台佐)·서명균(徐命均)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숙(直宿)하며 기밀(機密)을 협찬(協贊)하였고, 낭청(郎廳) 신사언(申思彦)은 문서를 전담하였으며, 이희하(李喜夏)·신광덕(申光德)은 번갈아 입직(入直)하였고, 서리(書吏) 세 사람도 잇달아 직숙하며 노고를 다하였다 하니, 두 중신(重臣)은 혹 가자(加資)하고 신사언·이희하·신광덕은 승서(陞敘)하며, 서리 세 사람은 서제(書題)로 승전(承傳)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본디 전례가 없다. 중신에게 이 때문에 가자하는 것은 이미 예대(禮待)하는 도리가 아니다. 남한(南漢)과 수원(水原)에 출정(出征)한 재신(宰臣)에게 말[馬]을 면급(面給)하였을 뿐이니, 이보다 더하지 않아야 할 듯하다. 이 또한 말을 면급하라. 그 나머지는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오명항이 말하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송진명(宋眞明)은 변란이 일어난 처음에 임기(臨機)하여 조치한 공로가 적지 않으니, 특별히 상주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부터 그 사람이 상명(詳明)한 줄아니, 전조(銓曹)에서 탁용(擢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

○上引見大臣·備局堂上 (...) 命恒曰: “頃當變亂, 備局堂上李台佐·徐命均, 終始直宿, 協贊機密, 郎廳申思彦專掌文書, 李喜夏·申光德, 輪回入直, 書吏三人, 亦連爲直宿效勞云. 兩重臣或加資, 申思彦·李壽夏·申光德陞敘, 書吏三人書題承傳, 恐宜矣.” 上曰: “此事本無前例. 重臣之以此加資, 既非禮待之道, 南漢及水原出征宰臣, 只面給馬, 則似不當有加. 此亦面給馬. 其餘依施.” 命恒曰: “水原府使宋眞明, 變亂之初, 臨機設施, 功勞不賞, 似當特爲施賞.” 上曰: “予嘗知其人之詳明, 自銓曹擢用可也.” (...)

<영조실록 18권, 영조 4년 7월 25일(갑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영조가 수원 군사의 위용이 꺾어진 것을 보고 앞뒤 수원부사를 추고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여주(驪州) 영릉(寧陵)에 행행하였다. 광나루에 이르렀을 적에 도감(都監)이 순찰하다가 깃대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고는 단지 초관(哨官)만 잡아오니, 하교(下教)하여 죄주지 말게 하였다. 호위(護衛)하는 수원(水原) 군사들의 군용(軍容)이 꺾어진 것을 보고는 한탄하기를, “선조(先朝)에는 일찍이 수원 군사를 훈련원(訓練院) 군사와 다름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도리어 이러하니, 무슨 까닭인가? 수원이 이러하니 여타의 고을도 알만하다. 전후의 부사(府使)들을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甲子/上幸驪州 寧陵. 到廣津, 都監巡視旗竿折, 只拿其哨官, 下教而不罪之. 見水原軍扈衛者, 軍容疲弊, 歎曰: “先朝嘗以水原軍, 與訓局無異, 今反如此, 何也? 水原若此, 他邑可知. 前後府使, 推考.”

<영조실록 25권, 영조 6년 2월 25일(갑자)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영조가 수원부사 이형좌 등에게 교하의 국장(國葬) 자리를 다시 조사하라고 명하다

총호사(摠護使) 홍치중(洪致中) 등이 여러 능(陵)의 방혈(旁穴)과 교하(交河)의 읍치(邑治)를 간심(看審)하고, 돌아와 복명하니, 임금이 불러 보았다. 지관(地官)들이 모두 말하기를,

“교하(交河)는 산세(山勢)의 배포(排布)가 국장(國葬)의 자리에 합당합니다.” 하고, 도감당상(都監堂上) 조원명(趙遠命)과 윤유(尹游) 등 역시 극구 칭찬하였다. 임금이 명하기를, **“공조 판서 권이진(權以鎭)·수원 부사(水原府使) 이형좌(李衡佐)가 함께 가서 다시 살펴라.”** 하였는데, 권이진과 이형좌가 범안(凡眼)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었다.

○摠護使洪致中等看審諸陵旁穴·交河邑治還，復命，上召見之。相地者咸以爲：“交河龍勢允合。”國葬都監堂上趙遠命·尹游等亦亟稱之。**上命與工曹判書權以鎭·水原府使李衡佐，偕往再審。**” 以以鎭·衡佐稍異，凡眼故也。

<영조실록 29권, 영조 7년 5월 8일(경오) 2번째기사>

## 정치/왕실

민진원이 효종의 산릉으로 수원을 포기했듯이 교하에 산릉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상소하다

판부사 민진원(閔鎭遠)이 현도(縣道)를 거쳐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 어제 삼가 들건대 신혈(神穴)을 이미 교하(交河) 읍치(邑治) 뒤에다 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땅의 길흉은 신이 비록 알지 못하나 여러 사람이 이미 많은 칭찬을 하니 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신이 일찍이 들건대 기해년 **효묘(孝廟)의 대상(大喪) 때에 새 능을 수원(水原) 읍치(邑治)에다 정하고 공역(工役)을 이미 시작하였는데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데는 양지(養志)하는 것이 큰 것이니 참으로 양지하는 것을 큰 것으로 여긴다면 어찌 살아 있을 때와 죽었을 때가 다르겠습니까?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지극한 인(仁)이 널리 퍼져 은혜를 입지 않은 사물이 없었으니, **수원의 7천 갑병(甲兵)도 사랑을 받는 데 들어 있었습니까.** 이제 그 읍리(邑里)를 철거하고 그들의 전려(田廬)를 파괴해 한숨짓고 탄식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대행 대왕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길지를 가리어 선왕(先王)의 장례를 모심에 있어 바로 근심하고 원망하는 지역에 장례를 모시고 선왕의 체백(體魄)이 편안하기를 바라니, 이는 바로 선왕의 뜻을 크게 해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 현종(顯宗)께서 감오(感悟)하시어 즉시 역사를 거두셨습니다. 선정신의 충애(忠愛)하는 정성과 현종의 전환(轉環)하는 도량을 지금까지도 칭도(稱道)하는 것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하는 작은 현이어서 이미 7천 명의 갑병이 없으니 수원에 비교하면 경중은 다르나 읍리를 철거(撤去)하고 그 전산(田産)을 파괴하여 한숨짓고 한탄하는 자가 반드시 수백 명에 이를 것이니 또한 어찌 선왕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던 뜻을 상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선정신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 반드시 현종(顯宗)의 효성을 전하게 바랐을 것이며, 전하게서도 어찌 현종의 일로 스스로 면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역시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후릉의 방혈을 끝내 쓸 수가 없다면 오늘날 새 능 자리는 옛 영릉(寧陵)보다 나은 곳이 없을 듯합니다.” (…)

○判府事閔鎭遠縣道上疏，略曰：(…) 昨伏聞神穴，已定於交河邑治之後。此地吉凶，臣雖未知，諸人既多譽之，則可知爲吉地。然第臣曾聞，**己亥孝廟大喪時，新陵定於水原邑治，功役已始**，而先正臣宋時烈上筮曰：“子之事親，養志爲大，苟以爲大，則存沒何異哉？大行大王至仁徧普，無物不在，**所愛水原七千甲兵之所在也**。今者撤其邑里，破其田廬，使之咨嗟恨歎者，必非大行大王之志也。今所以擇吉，而葬先王者，乃所以葬之於愁怨之域，而所以求先王體魄之安者，乃所以大傷先王之志也。” 筮入，顯廟大感悟，卽命撤役。先正忠愛之誠，顯廟轉環之量，于今稱道之不衰。**今交河，小縣也，既無七千甲兵，則比諸水原，輕重有別，而撤其邑里，破其田産，咨嗟恨歎者，必至屢百人，則亦豈不有傷於先王愛民之志乎？**使先正，生於今日，則必將以顯廟之孝，望於殿下，殿下亦豈不以顯廟之事，自勉乎？抑臣愚見，厚陵旁穴，終以爲不可用，

則今日新陵之下，恐無愈於舊寧陵。(…)

<영조실록 29권, 영조 7년 5월 18일(경진) 4번째기사>

정치/왕실

송진명이 무신난에 공을 세운 수원 교졸에게 포상하자고 주청하다

임금이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송진명(宋眞明)이 말하기를, “무신년 난에 신이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있을 때 교졸(校卒)로서 충성을 바쳐 용감히 싸운 자들을 신이 제대로 포양(褒揚)하지 못함으로 인해 더러 민멸(泯滅)되기도 하였습니다. 가령 이기(李機) 같은 자는 정탐(偵探)을 잘하여 안성(安城)·죽산(竹山)에서의 승전(勝戰)은 이기의 공로에 연유된 것인데, 끝내 그의 공로에 보상한 것이라고는 마첩(馬帖) 하나를 얻었을 뿐입니다. 전연 충절(忠節)을 권장하는 것이 못되니, 마땅히 이기에게 한 변방의 벼슬자리를 주어서 다른 사람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대정(大政)에 수용(收用)할 것을 명하였다.

○癸巳/上御朝講。(…) 同知經筵事宋眞明言：“在戊申亂臣守水原，校卒之效忠敵愾者，緣臣不能褒揚，或致泯滅。如李機者，善於偵探，安·竹之捷，由機之功，畢竟所酬功者，得一馬帖而已。殊非所以勸忠者，宜授機一障，以聳他人也。” 上命於大政收用。

<영조실록 30권, 영조 7년 8월 3일(계사) 1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부사를 무신 가운데 장수로 의망되는 자에게 제수하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수원은 기보(畿輔)의 큰 진(鎭)이어서 지난해에 외도감(外都監)을 두라고 하교하였으나, 일찍이 무신년에 듣건대, 허술하여 기병(騎兵)이 새끼줄로 굴레를 하고 있다 하였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편안함에 익숙해진 것이 풍습을 이루어 군무(軍務)를 내버린 것이다. 더군다나 근년 이래로는 연달아 문음(文蔭)이 병을 치료하며 한가히 지내는 곳이 되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근본을 튼튼히 하는 뜻에서 이처럼 해서는 안되니, 이번 거동 후에 무신 가운데서 장수(將帥)의 망(望)에 드나드는 사람을 의망(擬望)하여 갖추어 군제(軍制)가 수거(修擧)되기 전에는 체직시키지 말라.” 하였다. (…)

○敎曰：“水原以畿輔雄鎮，昔年有外都監之敎，而曾於戊申聞之，其涉踈虞，而騎兵以藁索爲勒云。此無他狃安成風，拋棄軍務。而況近年以來，連爲文蔭養閑之所，可勝寒心。其在繫苞桑之義，不可若是，今番動駕後，以武臣中出入將望者備擬，軍制修擧前勿遞。” (…)

<영조실록 72권, 영조 26년 8월 26일(병신) 2번째기사>

정치/왕실

영조가 은행길에 수원부에서 시를 짓고 글씨를 써서 어목헌에 걸게 하다

대가(大駕)가 수원부에 머물렀다. 칠언 절구 한 수(首)를 지어 내리고, 또 ‘계석행(繼昔幸)’이란 세 자를 친히 써서 새겨 어목헌(禦牧軒)에 걸도록 명하였다.

○壬子/大駕次于水原府。製下七絕一首，又親書繼昔幸三字，命刻揭于禦牧軒。

<영조실록 72권, 영조 26년 9월 13일(임자) 1번째기사>

정치/왕실



영조가 수원 군병의 뛰어난 위용을 보고 수원부사와 교련관에게 포상하다

수원 부사 윤흡(尹滄)에게 말을 하사하였다. 임금이 부(府) 안으로 들어가 윤흡에게 마군(馬軍)·보군(步軍)을 거느리고 기고(旗鼓)로 영접하라고 명하였는데, 윤흡이 군사를 거느리고 찰주(札住)·언기(偃旗)·납함(呐喊)을 잘하고 기치(旗幟)가 선명하고 기계(器械)가 정예(精銳)하였으며, 군용(軍容)이 익숙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웅부(雄府)·대진(大鎭)이란 이름이 헛되지 않다. 선조(先祖)에서 일찍이 외도감(外都監)이라고 일컬었는데, 이제 보니 과연 그렇다.” 하였다. 임금이 공북루(拱北樓)에 올라 또 윤흡에게 군례(軍禮)를 행하기를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씩씩하구나.” 하고, 이어서 이 말을 하사한 것이다. 또 명하기를, “본부의 교련관(教鍊官)을 변장(邊將)에 제수하라.” 하고, 또 윤흡에게 명하여 오늘 영접한 군교(軍校)를 초계(抄啓)하게 하여 부교리 정홍순(鄭弘淳)으로 하여금 시재(試才)하게 하였다.

○賜水原府使尹滄馬.上入府內, 命滄領率馬·步軍旗鼓迎接, 滄領兵札住·偃旗, 吶喊, 旗幟鮮明, 器械精銳, 軍容閑熟.上曰: “雄府大鎭之名不虛矣.先朝嘗稱之以外都監, 今見之, 果然耳.” 上御拱北樓, 又命滄行軍禮.上曰: “矍鑠哉?” 仍有是賜.又命本府教鍊官, 邊將除授, 又命滄, 抄啓今日迎接之軍校, 使副校理鄭弘淳試才.

<영조실록 72권, 영조 26년 9월 13일(임자) 4번째기사>

#### 정치/왕실

왕세자가 수원에서 유숙하다

왕세자가 수원(水原)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王世子到水原止宿.

<영조실록 96권, 영조 36년 7월 19일(신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영조가 수원부사 등을 소견하다

임금이 기백(畿伯) 및 광주(廣州)·수원(水原)·과천(果川)·양천(陽川)의 수령을 소견하였다.

○上召見畿伯及廣州·水原·果川·陽川守宰.

<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윤5월 4일(병인) 3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 마군(馬軍)의 일로 경기감사와 총융사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행행하여 금군(禁軍)·훈국(訓局)·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기사(騎士)에게 편곤(鞭棍)을 시예(試藝)하였는데, 왕세손이 시좌(侍坐)하였다. 편곤에서 여섯 번을 맞힌 홍기창(洪起昌)·최중태(崔重泰)에게 가자하기를 명하였다. 이동백(李東白)에게 적량 첨사(赤梁僉使)를 제수하였다. 기백(畿伯)과 총융사(摠戎使)를 잡아들이라 명하여, 수원 마군의 일로써 엄히 신칙하고 나출(拿出)하였다. 환궁할 때에 김포(金浦) 백성 가운데 범필(犯蹕)한 자가 있어, 응교 서명선(徐命善) 등이 청대하여 고원 도사(考喧都事)의 정배(定配)를 청하고, 협련장(挾輦將)은 군율(軍律)에 의해 시행하기를 청하며, 범필한 사람은 형을 가하여 멀리 정배하기를 청하니, 모두 윤택하였다.

○己卯/上幸慕華館， 禁軍訓局禁御營騎士鞭棍試藝， 王世孫侍坐。鞭棍六中人洪起昌·崔重泰， 命加資。李東白赤梁僉使除授。命拿入畿伯摠戎使， 以水原馬軍事， 嚴飭拿出。還宮時金浦民有犯蹕者， 應教徐命善等請對， 考喧都事請定配， 挾輦將請依軍律施行， 犯蹕人加刑遠配， 竝允之。  
<영조실록 108권, 영조 43년 5월 16일(기묘)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 부사 심이지에게 숙마를 주라고 명하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심이지(沈頤之)에게 숙마(熟馬)를 주도록 명하였는데, 어사의 아뢰는 바에 따른 것이었다.

○命給水原府使沈頤之熟馬， 因御史所奏也。

<영조실록 125권, 영조 51년 10월 27일(신축)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제주 송덕상이 수원에 살고 있다고 아뢰다

제주 송덕상(宋德相)이 도성에 들어와 숙배 사은(肅拜謝恩)하였는데, 희정당에서 소견하였다.

(...)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수원(水原)에 살고 있는가?” 하니, 송덕상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선정에 대해 몇 세손이며, 직파(直派)인가?” 하니, 송덕상이 답하기를, “4대손인데 신은 지파(支派)입니다.” 하였다. (...)

○戊辰/祭酒宋德相入城肅謝。 召見于熙政堂。 (...) 上曰: “卿居在水原乎?” 德相曰: “然矣。” 上曰: “卿於先正， 爲幾世孫， 而爲直派乎? 德相曰: “四代孫。 而臣則爲支派矣。” (...)

<정조실록 6권, 정조 2년 12월 12일(무진)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정조가 수원을 반룡농주의 형국이라 극찬하고 조심태를 수원부사로 삼다

영우원(永祐園)을 천장(遷葬)할 것을 결정하였다. 상이 원침(園寢)의 형국이 열고 좁다고 여겨 즉위 초부터 이장할 뜻을 가졌으나, 너무 신중한 나머지 세월만 끌어온 지가 여러 해 되었다. (...) 전에 봉표(封標)해 두었던 곳으로 문의(文義) 양성산(兩星山) 해좌(亥坐)의 언덕은 예전부터 좋다고 운운하는 자리이지만 조산(祖山)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이 흠이어서 답답하게 막힌 기색을 면하지 못하였고 지질과 물이며 용세(龍勢)도 결코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 장단(長湍) 백학산(白鶴山) 아래의 세 곳은 국세(局勢)가 혹은 협소하기도 하고 혹은 힘이 없고 느슨하기도 하다. 광릉(光陵) 좌우 산등성이 중의 한 곳은 바로 달마동(達摩洞)으로서 문의의 자리와 함께 찬양되는 곳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가운데 한 곳은 바로 절터이니, 신당(神堂)의 앞이나 불사(佛寺)의 뒤나 폐가(廢家) 또는 고묘(古廟)에 묘를 쓰는 것은 옛사람들이 꺼린 바이다. 용인(龍仁)의 좋다고 운운하는 곳도 역시 그러하다. 이밖에 헌릉(獻陵) 국내의 이수동(梨樹洞)과 후릉(厚陵) 국내의 두 곳, 강릉(康陵) 백호(白虎) 쪽, 가평(加平)의 여러 곳들도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오직 수원(水原) 읍내에 봉표해 둔 세 곳 중에서 관가(官家) 뒤에 있는 한 곳만이 전인(前人)들의 명확하고 적실한 증언이 많았을 뿐더러 옥룡자(玉龍子)가 이른바 반룡 농주(盤龍弄珠)의 형국이다. 그리고 연운·산운·본인의 명운이 꼭 들어맞지 않음이 없으니, 내

가 하늘의 뜻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이름이다. 나라 안에 능이나 원(園)으로 쓰기 위해 봉표해 둔 것 중에서 세 곳이 가장 길지(吉地)라는 설이 예로부터 있어 왔는데, 한 곳은 홍제동(弘濟洞)으로 바로 지금의 영릉(寧陵)이 그것이고, 한 곳은 건원릉(健元陵) 오른쪽 등성으로 바로 지금의 원릉(元陵)이 그것이고, 한 곳은 수원읍(水原邑)에 있는 것이 그것이다.

수원의 뒷자리에 대한 논의는 기해년 『영릉의궤(寧陵儀軌)』에 실려 있는 윤강(尹絳)·유계(兪槩)·윤선도(尹善道) 등 여러 사람과 홍여박(洪汝博)·반호의(潘好義) 등 술사(術士)들의 말에서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말로 말하면 윤강의 장계(狀啓)와 윤선도의 문집 중에 실려 있는 산릉의(山陵議) 및 여총호사서(與摠護使書)보다 자세한 것이 없다. 내가 수원에 뜻을 둔 것이 이미 오래여서 널리 상고하고 자세히 살핀 것이 몇 년인지 모른다. 옥룡자의 평(評)이 그 속에 실려 있는데, 그의 말에 ‘반룡 농주의 형국이다. 참으로 복룡 대지(福龍大地)로서 용(龍)이나 혈(穴)이나 지질이나 물이 더없이 좋고 아름다우니 참으로 천리에 다시 없는 자리이고 천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자리이다.’ 하였으니, 이곳이야말로 주자(朱子)가 이른바 종묘 혈식 구원(宗廟血食久遠)의 계책이란 것이다.

대체로 그 형국으로 말하면 비록 범인의 안목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유두(乳頭) 아래 평탄한 곳에 재혈(裁穴)하고 작은 언덕을 안대(案對)해서 좌향(坐向)을 놓으면 바로 이른바 구슬을 안대한다는 것이다. 구슬을 안대하려면 두 봉우리 사이 빈 곳으로 안(案)이 가는데, 이것이 또 이른바 구슬을 안대하면 빈 곳으로 향(向)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금(分金)도 이렇게 재혈하고 이렇게 좌향을 놓고 이렇게 안대할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의 뜻은 이미 수원으로 결정하였다. 지금 경 등을 대하여 속에 쌓아 두었던 말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 음으로 돕고神明(神明)이 묵묵히 도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관중추부사 김익(金燧)이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분부를 들으니 신도 어슴푸레하게나마 알겠습니다. 옥룡자는 바로 도선(道詵)의 호인데 그의 논평이 이와 같다면 이곳을 버리고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명하여 수원산론(水原山論)을 읽게 하니, 연신(筵臣) 모두가 아뢰기를,

“옛사람의 논한 바가 이미 이와 같은데 지금에 와서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해년에 봉표해 둔 곳이 바로 이른바 유두(乳頭)로서, 아래쪽의 낮은 곳에 비하면 너무 올라오고 드러나는 혐의가 없지 않으니, 오직 달무리처럼 둥그렇게 평탄한 곳이 바로 진정한 복룡 길지(福龍吉地)이다. 길일(吉日)이 머지않았으니 오늘날의 급선무로는 그 고장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다음으로 고을을 옮길 계획을 의논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나는 인정이 편안한 뒤에야 지리(地理)도 길해진다고 생각한다. 백성을 옮기는 일에 관해서는 내가 이미 여러모로 계획을 세워 각각 살 곳을 정해 안주하게 하였거니와, 왕명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무마하는 책임을 맡은 나의 신하는 감사와 지방관이 바로 그들이다.”

하고, 이어 경기 관찰사 조정진(趙鼎鎭)과 수원 부사 김노영(金魯永)을 내직(內職)으로 옮기고, 서유방(徐有防)을 경기 관찰사로, 조심태(趙心泰)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그리고 상이 이르기를,

“천장해 모시는 일은 사체가 막중하므로, 본원(本園)의 제사 의식도 태묘(太廟)에 버금가는 것으로 대부(大夫)의 예를 사용해서 제사할 것이니 총호사(摠護使)를 차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때에는 삼공(三公)을 의당 갖추어야 할 것이다. 총호사의 임무는 으레 영의정

이 관장하는 것이니, 좌상과 우상은 복상(卜相)한 뒤에 가서 봉심(奉審)하라.” 하였다.

○乙未/定永祐園遷奉之禮. 上以園寢形局淺狹, 自御極初, 有移奉之意, 而鄭重荏苒, 且有年. (….) 自來封標之處, 文義兩星山亥坐之原, 則自古云云, 而離祖終欠太近, 不免有苑弗之氣, 砂水龍勢, 決難議到. 長湍白鶴山下三處, 則局勢或狹小, 或微緩, 光陵左右岡中一處即達摩洞, 與文義齊稱之地, 而俱未合意. 其中一處即寺基, 神前佛後, 廢屋古廟, 古人之所忌, 龍仁云云處亦然. 外此獻陵局內梨樹洞, 厚陵局內二處, 康陵白虎邊, 加平諸處, 無一合意處. **唯水原邑內封標三處, 官家後一處, 多前人明的之證, 況玉龍子所謂盤龍弄珠之形局.** 且年運·山運·本命運, 無不吻合, 予所謂天意者此也. 國中陵園封標中, 三處最吉之說, 自古有之, 一則弘濟洞, 即今寧陵是也, 一則健元陵右岡, 即今元陵是也, **一則水原邑也. 水原山地之論, 觀於己亥『寧陵儀軌』, 如尹絳·兪榮·尹善道諸人及洪汝博·潘好義等術士之言, 可以知之.** 其始末則莫詳於尹絳狀啓·尹善道文集中, 『山陵議』與摠護使書, 而予於水原留意已久, 博考而詳察, 不知爲幾年. 玉龍子所評, 詳載其中, 其言以爲: ‘盤龍弄珠之形, 真是福龍大地, 而龍穴砂水, 盡善盡美, 誠千里所無, 千載一遇之地.’ 此正朱子所謂: ‘宗廟血食久遠之計也.’ 概其形局, 雖凡眼可辨, 穴星則乳頭下坦處, 而坐向則案對小阜, 是謂對珠, 而欲對珠, 則兩峰間空處, 此又所謂對珠, 則向空者也. 且分金則以此穴以此坐以此案亦當決之, **予意已定水原.** 今對卿等, 喻以蘊中之說, 此非天意之所陰鷲, 神明之所默佑乎?” 判中樞府事金煜曰: “今承聖教, 臣亦悅然. 玉龍子即道誥之號, 所論如此, 捨此何求乎?” **上命承旨, 讀『水原山論』.** 筵臣兪曰: “古人所論既如此, 到今豈有他說乎?” 上曰: “己亥封標處, 即所謂乳頭也. 比諸稍低處, 則不無登露之嫌, 惟坦處圓暈處, 是真正福龍吉地也. 吉日不遠, 目下急先務, 最宜安按本土之民, 次議移邑之計. 予則曰: ‘人情安然後, 地理亦吉. 民人遷徙, 則予已有多般經紀, 俾各奠安, 而任予宣布撫摩之責者, 道伯及地方官是也.’ 仍命京畿觀察使趙鼎鎮·**水原府使金魯永內移,** 以徐有防爲京畿觀察使, **趙心泰爲水原府使.** 上曰: “遷奉之舉, 事體莫重. 本園祭儀, 皆以亞於太廟, 祭以大夫之禮用之, 摠護使當差出. 此時三公宜備, 而摠護之任, 自是領相例管, 左右相卜相後, 進去奉審.”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7월 11일(을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으로 영우원을 천장하는 일을 담당할 신하들에게 전교하다

**수원의 뒯자리를 살피는 여러 신하들에게 전교하였다.** “뒯자리를 살핀 뒤에 승지가 대신과 더불어 지방의 부로(父老)들을 불러 모아 놓고서 어제의 연교(筵教)대로 먼저 안심하고 생업(生業)을 즐기라는 뜻으로 되풀이해 타이르고, 이사한 민호(民戶)라 하더라도 조정에서 의당 따로 구휼하는 도리가 있을 것이니 이 내용도 자세히 일러 주라.”

○丙申/**敎水原看山諸臣**曰: “山地看審後, 承旨與大臣, 招集地方父老, 依昨日筵教, 先以安心樂生之意, 申申曉諭. 雖於移徙民戶, 自朝家當有別般軫恤之道. 此意申諭.”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7월 12일(병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영의정 김익 등이 수원외 치표한 곳의 형국을 아뢰다

영의정 김익 등이 【영의정 김익, 좌의정 이성원, 우의정 채제공, 관상감 제조 김중수, 선공감 제조 서유린, 예조 판서 이재간, 도감 제조 이재간·정민시·이문원.】 **수원의 치표(置標)한 곳을 살펴보고서 아뢰었다.**

“지사(地師)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극히 길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 화산(花山)이 왼쪽으로 돌아 건방(乾方)으로 떨어져서 주봉(主峯)이 되고 건방의 주산(主山)이 해방(亥方)으로 내려오다가 계방(癸方)으로 돌고 다시 축방(丑方)으로 뻗어오다가 간방(艮方)으로 바뀌면서 입수(入首)하였다. 앞에 쌍봉(雙峯)이 있는데 두 봉우리 사이가 공(空)이 되고, 안에 작은 돈(墩)이 있는데 그 형상이 마치 구슬 같다. 계좌 정향(癸坐丁向)으로 안장(安葬)하면 그 구슬은 턱밑의 구슬이라 할 수 있고 공은 빈 곳을 안대하는 공이라 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건방에서 득수(得水)하고 왼쪽으로 을방에서 득수하며 또 신방(申方)의 물이 오방(午方)에서 파(破)하니, 수법(水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청룡 네 겹과 백호 네 겹이 에워싸 국세(局勢)가 만들어졌는데, 혈(穴)이 맺힌 곳이 마치 자리를 간 것처럼 평평잡하니 혈 자리가 분명하다. 뻗어온 용의 기세가 7백 리를 내려왔는데 용을 보호는 물이 모두 뒤에 모였으며, 현무(玄武)로 입수(入首)하였으니 천지와 함께 영원할 수 있는 더없는 대지(大地)라고 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丁酉/領議政金煜等【領議政金煜·左議政李性源·右議政蔡濟恭·觀象監提調金鍾秀·繕工監提調徐有隣·禮曹判書李在簡·都監提調李在簡·鄭民始·李文源】以水原置標處看審啓言：“地師皆曰：‘極吉極吉，千全萬全。花山左轉，乾峰作主，乾山下亥轉癸來丑換，艮入首而前有雙峰，兩間爲空，內有小墩，其形如珠。癸坐丁向，則珠可謂領下之珠，空可謂對空之空，右得乾水，左得乙水，又有申水破於午方，水法無一小差。青龍四重，白虎四重，拱抱作局，結穴之處，帶褥帶茵，穴暈宛然。來龍之勢，歷七百里，護龍之水，皆聚於後，而玄武入首，可謂與天地同悠久，無上大地。’云。”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7월 13일(정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영우원을 천장하기 위해 수원의 경계 및 군사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뗏자리를 살피고 온 여러 신하들을 불러 보고 한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이르기를,  
“지금 대신의 장계를 보니 내 마음이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이런 큰 일을 당하여 어찌 마음을 너그럽게 먹고 슬픔을 억제하는 것을 주로 삼아 힘쓰고자 하지 않겠는가마는 종전에 가슴에 맺혔던 것이 나도 모르게 아무 때나 드러난다.”

하고, 이어 소견을 물으니, 김익이 아뢰기를,

“위로 주봉(主峯)에서부터 아래로 혈(穴) 자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윗쪽에 있는 혈 자리의 약간 높은 곳에 앉아 국세와 청룡 백호를 둘러보니, 국세가 평탄하고 반듯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청룡 백호가 에워싸지 않은 것이 아니나, 평탄하고 반듯한 속이 너무 넓고 크다는 느낌이 없지 않고, 에워싼 속 역시 견고하게 결속된 형세가 약간 모자랐으며, 안계(眼界) 역시 조밀하고 번잡한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평탄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둘러보니 국세가 평온하고 청룡 백호가 긴밀하며 또 혈 좌우를 매미가 날개를 양쪽으로 펼친 듯한 형국이 있으며, 안계도 매우 조용했습니다. 시야 속에 작은 돈(墩)이 혈 자리와 직선으로 대치해 있는데, 이곳이 본래부터 칭송되어오는 서린 용[盤龍]의 형상이고, 이 돈을 서린 용이 희롱하는 구슬[弄珠]이라고 한 말이 신의 범안(凡眼)으로 보아도 정확한 논평인 것 같았습니다. 대안(對案)으로 말하면 두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데 만약 봉우리로 향을 놓아 안산(案山)으로 삼으면 두 봉우리의 기세를 다 끌어들일 수 없을 것 같고, 두 봉우리 사이의 빈 곳으로 향을 놓으면 두 봉우리의 기운이 합쳐 하나의 안(案)이 되니, 예로부터 이른바 구슬을 안대해 빈 곳으로 향을 놓는다[對珠向空]는 말이 이런 뜻에서인 듯합

니다. 세 지사(地師)의 말이 이미 모두 계좌 정향(癸坐丁向)으로 통일되었으니 바뀔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원을 비록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밤낮으로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 헤아린 바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경 등의 말을 내가 헤아린 바와 비교하면 더 보탬은 있고 줄임은 없다고 하겠다.”

하였다. 김익이 아뢰기를,

“원소를 이제 이미 결정하였으니, 읍치(邑治) 옮기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원이 비록 기내(畿內)에서 약간 충실한 고을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나라의 역사를 당했는데 다시 무슨 힘이 있어 고을을 옮길 수 있겠는가. 옮겨야 할 민가(民家)가 얼마나 되는가?”

하자, 김익이 아뢰기를,

“2백여 호는 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큰 일에 경비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미 평소부터 품고 있던 생각이니, 이 밖에 무엇을 조처해 주선할 것이 있겠는가. 균역청의 사목(事目)이 본래 엄중한 것은 오로지 백성들의 부역을 막으려는 선대왕의 성덕에서 나온 것이고, 이번에 경비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것도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균역청의 돈 10만 냥을 수원에 떼어주어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고, 서울과 지방의 도감은 10만 냥을 금위영과 어영청에서 가져다 쓰면 좋겠다.”

하였다. 김익이 아뢰기를,

“창고의 재물이 임금의 재물이 아님이 없는데, 이런 큰 일을 당하여 무엇 때문에 영문(營門)의 유고(留庫)에 구애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전의 연석(筵席)에서 이미 천하에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어버이에게 박하게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것은 대개 어버이 장례에는 진실로 자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쓰지 않음이 없는 도리에까지 미룬 것이니, 진실로 백성의 힘을 수고롭히거나 경비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면 지극히 아름답게 하여 마지막 일에 정성을 조금 이나마 펴보고 싶다.

병신년에 원(園)으로 봉할 때 영릉(永陵)의 옛 제도를 따랐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고사(故事)를 준용(遵用)하였다. 대체로 옛 능에 석물(石物)을 새로 세우는 것과 비기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미 옮겨 모시기로 하였으니 정성을 다해 규례대로 하고자 한다. 그러니 도감으로 하여금 자세히 알게 하라. 석재(石材)는 피꼬리봉 및 산성(山城) 밖에 떠내기에 적당한 곳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석재의 품질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양(南陽)·강화(江華) 등지의 석재라야 난간석(欄杆石)과 병풍석(屏風石)의 용도에 합당하니 떠내어 운반해 오는 노력은 따질 겨를이 없다. 나의 정리(情理)는 오직 자주 봉심해 정성을 펴는 데 있을 뿐이니, 여염집들을 다 옮긴 뒤에는 어가(御駕)를 수행하는 백관(百官)들이 한데서 거처하게 될 것을 염려해야 한다. 보존할 만한 관청은 철거하지 말아서 여러 신하들이 들어가서 거처하는 곳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민시가 아뢰기를,

“원소를 완전히 봉안한 뒤에는 독성 산성(禿城山城)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

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산성의 산 꼭대기가 혈(穴) 위에서 바라보면 지극히 가까운 것 같지만 서로의 거리가 10리나 멀리 떨어져 있다. 밥짓는 연기나 닭·개의 소리가 원래 묘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니, 병기(兵器)를 간직해 두는 따위도 이해를 논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산소를 매만져 다듬는 방법은 그 산의 형세를 그대로 따를 뿐이니, 보토(補土)를 고대(高大)하게 하는 것을 나는 옳지 않게 생각한다. 더구나 이 뒷자리의 혈체(穴體)는 유두(乳頭) 밑에 웅덩이가 파여 있어 음양이 서로 붙어 있는 데 그 신묘함이 있으니 흙을 파낼 때 유두를 파지 말라. 혈 앞의 남은 기운이 생동해 구르고 있는데 만약 지나치게 흙을 보충하면 천연으로 이루어진 정교함을 잃기 쉬우니 원형 그대로 떠를 입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장릉(章陵)을 천장해 모실 적에 성내(城內)를 경유하도록 길을 냈으니 이번에도 이 전례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비단 조조(朝祖)의 절차가 중대할 뿐 아니라 자궁(慈宮)의 망극하신 심정이 다시 어떠하시겠는가. 천장해 모실 때에는 몸소 가서 보시겠다고 매양 말씀하시므로 현재 마음을 너그러이 먹고 슬픔을 억제하시도록 청하고 있는 참인데 만약 상여(喪輿)가 성내로 지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경우 장차 무슨 말로 위로드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러자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가 이에 미치셨으니 마땅히 성외(城外)로 길을 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환윤 김문순(金文淳)에게 이르기를,

“내가 즉위한 이후로 한 번도 백성들에게 혜택을 입힌 일이 없는데, 더구나 본원에 관계된 일로 백성들을 수고롭게했는가. 백성을 수고롭게하고 싫어하지 않는 나의 뜻을 경들도 반드시 알 것이다. 상여군이 되는 것이 비록 방민(坊民)들이 응당 행하는 부역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군정(軍丁)을 고용하고자 하니 민역(民役)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모두 줄이도록 하라. 경이 돈체사가 되었으니 나의 뜻을 깊이 헤아리라.”

하니, 연석에 참여한 모든 신하가 아뢰기를,

“국전(國典)에도 없는 바이고 체모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上召見看山諸臣，於呂良久曰：“才見大臣狀啓，予心一愴一幸。當此大事，豈不欲務主寬抑，而從前結轡之懷，不覺隨處輒發矣。”仍問所見。燧曰：“上自主峰，下審穴處，而先坐上穴稍高處，環覽局勢與龍虎，則局勢非不平正，龍虎非不拱抱，而平正之中，不無闊大之意。拱抱之中，差欠繁束之勢，眼界亦似稠闊。及其下坐於所謂坦處，則局勢蘊藉，龍虎緊密，又有穴左右，蟬翼分開之形，眼界十分從容。望中小墩，與穴處直相待，對此地素稱盤龍之形，而此墩爲盤龍之弄珠，以臣凡眼，亦似的確之論。至於對案，兩峰雙立，若使向峰作案，則似不得盡攬兩峰之勢，就兩峰之間，空處作向，則兩峰之氣，合作一案，自古所謂對珠向空之說，似以此意。坐癸向丁，三地師之言，已皆歸一，似無移易之慮矣。”上曰：“水原雖未目覩，夙宵想像，自有意內商量。今以卿等之言，比諸所料，可謂有增無損。”燧曰：“園所今已完定，邑治移設，不容少緩。”上曰：“水原雖曰畿內稍實之邑，既當國役，更有何力，可以遷邑乎？民家之當遷爲幾何？”燧曰：“似爲二百餘戶矣。”上曰：“今番大事，不煩經費，已有素定，外此有何措辦乎？均廳事目，本自嚴重，先朝聖德，專出防民役之意，而今此不煩經費者，亦爲民也。以均廳錢十萬兩，劃給水原，使經紀凡事，京外都監，以十萬兩，假令取用於禁御兩營好矣。”燧曰：“未有府庫財，非其財則當此大事，何拘於營門留庫乎？”上曰：“日昨筵中，已有不以天下，儉其親之說，蓋以固所自盡之心。推以靡不用極之道，苟非勞民力煩經費者，務欲極盡其美，少伸終

事之誠. 丙申封園時, 不但永陵仍舊制, 卽仰遵故事, 而大抵舊陵石物之新設, 雖不敢擬議, 今既遷奉, 欲盡誠如禮. 使都監知悉, 石材則鶯峰及山城外, 聞有可合浮出者, 而石品若不合, 則南陽·江華等處石材, 方合於欄干石屏風石之用, 至於浮出運來之勞, 有不暇計矣. 予之情理, 只在頻頻展誠, 而閭閻既移之後, 則隨駕百官之露處, 在所當念. 可存之公廡, 不必撤去, 以爲諸臣入接處好矣.” 民始曰: “園所完奉之後, 禿城山城不當仍置矣.” 上曰: “山城蠻頭, 自穴上望見, 雖似至近, 而相距既十里之遠. 烟火之氣·鷄犬之聲, 元無關涉, 至如兵器藏置, 似無利害之可論矣. 治山之道, 順其勢而已, 補土之必務高大, 予以爲如何. 況此山地穴體, 乳下開窩, 妙在陰陽相傳, 開土之際, 乳頭勿爲穿鑿. 穴脣餘氣, 宛轉生動, 若過爲補土, 則易失天成之巧, 因本形被莎好矣. 章陵遷奉時, 由城內作路, 今當用此例, 而非但朝祖節次之重大, 慈宮罔極之懷, 每以躬駕於遷奉時爲教, 而方請寬抑. 若值輶行之過城內, 將以何辭仰慰乎?” 僉曰: “聖教及此, 當以城外作路矣.” 上謂判尹金文淳曰: “臨御以後, 無一惠澤之及民, 況於關係本園事, 不欲勞民, 卿等亦必知之. 輿士軍雖係坊民應行之役, 今番欲雇用軍丁, 凡係民役, 一竝除減卿爲頓遞使, 須體予意.” 筵臣僉曰: “國典所無, 體貌不當然.” 上不許.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7월 13일(정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정민시와 서유방이 화산의 형세와 수원 행차 노선에 대해 논하다

대신·도감 당상·판윤·경기 감사를 불러 보았다. 상이 정민시(鄭民始)에게 이르기를, “구슬의 형체는 맑고 밝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 나무를 심으면 그늘에 가리기 쉬우니 마주 대한 구슬에 단지 떠만을 입히는 것이 좋겠다.”

하니, 민시가 아뢰기를,

“구슬 위에 예전부터 소나무 너댓 그루가 있는데 이것은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보건대 정릉(定陵)·화릉(和陵)의 청룡(靑龍) 끝에 모래가 몽친 곳도 구슬 형상 같았는데 그 위에 소나무가 빙 둘러 뻗뻗하게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수원 신읍(新邑)을 이미 팔달산 밑으로 정했으니, 앞으로 원소로 거동하실 때 지나시는 길의 차례가 대궐 문에서 과천(果川)까지가 30리이고, 과천에서 수원 신읍까지가 40리이고, 신읍에서 원소까지가 20리입니다. 주정(晝停)과 숙소(宿所)는 본래 정한 곳이 있으니, 미륵당(彌勒堂)에는 창사(倉舍)만을 세워 검암참(黔巖站)의 예와 같이 임시 머무시는 곳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좋다고 하였다.

○召見大臣·都監堂上·判尹·畿伯. 上謂鄭民始曰: “珠之形體, 以澄澈明朗爲貴. 種樹則易致陰翳, 對珠之上, 只被莎爲好.” 民始曰: “珠上舊有松四五株, 此則不必祛之. 臣曾見定·和陵, 靑龍砂端融結處, 亦如珠形, 上有松樹, 圓密成林矣.” 徐有防曰: “水原新邑, 既定於八達山下, 此後園所幸行時, 輦路次第, 自關門至果川三十里, 自果川至水原新邑四十里, 自新邑距園所二十里. 晝停宿所, 自有元定處, 彌勒堂則只建倉舍, 以爲臨時駐蹕之所, 如黔巖站例似好矣.” 可之.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7월 15일(기해)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행행할 때 수원 등의 숙소에서 사용할 그릇을 궁궐에서 보내라고 명하다

경기 관찰사 서유방(徐有防)을 소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과천·수원의 숙소에서 소용



되는 그릇을 안에서 내려줄 것이니, 해읍에 그대로 보관하여 영구히 쓸 수 있게 하라. 금번의 행행에는, 비록 솔 하나라도 민간에서 가져다 씌으로써 폐단을 끼치고 싶지 않다. 원소(園所)에서 소용되는 그릇은 외도감(外都監)에 분부하여 만들어서 진배토록 하였는데, 원관(園官)이 주관하여 길이 본원의 제향 때 사용하는 그릇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辛未/召見京畿觀察使徐有防. 上曰: “果川·水原宿所所用器皿, 當內下, 該邑仍爲藏置, 以爲永久之用. 今番行幸, 雖一釜一錡, 不欲取用於民間, 使之貽弊. 至於園所所用之器皿, 分付外都監, 造成進排, 而園官主管, 永作本園祭享時所用之器.”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8월 18일(신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천원도감 제조가 수원부의 잔디가 모화관의 잔디에 못지않다고 아뢰다

천원 도감의 제조 윤숙(尹塾)이 아뢰기를, “모화관(慕華館)의 잔디[莎]를 떠내는 지역이 매우 좁아서 금번 원역(園役)에 필요한 수량대로 떠내기가 어렵습니다. 건원릉(健元陵)은 능 위에만 북녘의 잔디[北莎]를 썼고 병풍석(屏風石) 이하에는 다른 곳의 잔디를 전부 썼습니다. 지금 이 수원부(水原府)의 잔디를 모화관의 잔디에 비교해 볼 때 그다지 우열이 없습니다. 신은 삼가 생각건대, 대성인(大聖人)이 세운 법은 마땅히 만세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니, 재가하였다.

○遷園都監提調尹塾奏曰: 慕華館浮莎處, 地方甚狹, 今當園役, 決難如數浮出. 健元陵陵上, 只用北莎, 屏風石以下, 全用他莎. 今此水原府莎草, 比諸慕華館, 別無優劣. 臣竊以爲, 大聖人立法, 當令爲萬世美範矣.” 可之.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9월 7일(경인)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정조가 영우원에 전배하여 행행에 따른 경비와 호위 문제에 대해 논하다

영우원에 전배하였다. 재실에 나아가 대신과 제신들을 소견하였다. 좌의정 이재협이 아뢰기를,

“계원(啓園)한 후 한 차례 전배하시자 성후(聖候)가 대번에 더치셨는데, 느닷없이 명령을 내려 의위(儀衛)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오늘의 거동은 실로 성인의 지나친 거조라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달에 들어서는 이제야 비로소 진성(展省)을 하였으니, 이 어찌 정리상 참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어제 『원행정례(園幸定例)』에 관한 일로 주사(籌司)에 하교를 하였다만, 거동의 큰 폐해는, 하나는 외방 고을의 공판(供辦)이고, 하나는 군병(軍兵)을 마련하는 것이고, 하나는 나무를 건너가는 것이다.

기내(畿內)의 고을들이 모두 쇠잔한 실정인데 원근에서 운반하느라고 민읍이 모두 시달리게 된다. 비록 저치미(儲置米)를 회감(會減)해주는 예가 있기는 해도 유명 무실할 따름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로 양읍(兩邑)의 민력이 아무리 넉넉치 못하다 하더라도, 만약 다른 방식으로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잘못된 규례를 고친다면, 과천(果川)·수원(水原)이 충분히 감당할 것이다.

도감(都監) 이외 양영(兩營)이 돌아가면서 어가를 수행하는 것은, 비록 정해진 규식이 있기는 하나 또한 폐단이 많으니, 이제 만약 군제(軍制)를 헤아려 정밀하고 간략히 뽑아, 도감

의 선상(先廂)은 그 초수(哨數)를 줄이고, 후상(後廂) 군병은 양영(兩營)의 군총(軍摠) 중  
에서 상황에 따라 서로 바꾸어 연습(沿邑)에 이송케함으로써 평상시에 단속하는 군대로 만  
들되, 혹은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모두 거느리게 하기도 하고 혹은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하여금 거느리도록 한다면, 어가를 호위하는 방책이 양영과 향군(鄉軍)만 못할 것이 없을  
듯하다. 더구나 전에 온천에 거둥할 때 호서 병사(湖西兵使)가 후상 대장이 되었으니, 경기  
에서 이에 비추어 거행하는 것도 안 될 게 없을 것이다.

선창을 부교(浮橋)로 대신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만전을 보장할 수 있다. 선창은 소용되는  
배가 많게는 1천 척 가까이 되는데 부교의 경우는 백 척도 되지 않으니, 이것만 하더라도  
폐해를 줄이는 셈인데, 더구나 또 완고하고 견실하기가 육지나 다름없으니, 영구히 준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생각건대, 이 이후로 부교에 드는 경비는 경강(京江)에 전적으로 떠  
맡기되, 배의 경우는 별도로 작대(作隊)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기에 맞춰  
역(役)에 응하도록 하고, 조정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깊이 강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익을  
입고 힘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외방 기읍(畿邑)의 세곡  
(稅穀)을 경강의 제선(諸船)에 나눠주어 마치 도감선(都監船)에 운세(運稅)를 원정(元定)하  
듯이 한다면, 강가의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을 듯하고, 뱃사람들 역시 기꺼  
이 나설 듯하다. 이밖에 소소한 폐단에 대해서는, 밖으로는 기영(畿營)이, 안으로는 각사  
(各司)가 일체 절약하고 간략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오랫동안 시행하면서 폐단을 없  
애하고자 하면 거의 될 수 있을 듯하다. 일찍이 듣건대, 세조조(世祖朝) 때 어가를 수행하는  
신하들은 각자 밥을 싸가지고 가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좌승지만 혼자서 밥을 지어 먹자 잡  
아다 곤장을 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오늘날의 사대부들은 일찍부터 고량 진미에 물들어서  
비록 한결같이 밥을 싸가는 법을 따를 수는 없겠으나, 정말로 만약 절약하는 데에 마음을  
둔다면 어찌 이익되는 바가 없겠는가. 단지 음식의 경비 뿐만 아니라, 마부들에 대해서까지  
도 마땅히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辛丑/展拜永祐園. 御齋室, 召見大臣·諸臣. 左議政李在協曰: “啓園後一番展拜, 聖候輒  
添, 至於倉卒頒令, 儀衛未備. 竊謂今日動駕, 實聖人之過舉也.” 上曰: “今月內今始展誠,  
是豈情理之堪忍處乎? 昨日以『園幸定例』事, 教於壽司. 行幸鉅弊, 一則外邑供辦也, 一則軍兵  
磨鍊也, 一則津路過涉也. 畿內諸邑, 無非殘薄, 而遠近轉輸, 民邑俱困. 雖有儲置會減之例,  
有名而無實. 予意則沿路兩邑之力, 雖曰不敷, 若加別般省冗費減謬例之政, 則果川·水原, 足  
以擔當. 都監外兩營之輪回隨駕, 雖有定式, 亦多弊端. 今若商量軍制, 精抄簡取, 都監先廂,  
減其哨數, 後廂軍兵則就兩營軍摠中, 推移互換, 移送沿邑, 以爲常時團束之軍, 或使畿伯都領,  
或使水原倅領付, 則扈駕之方, 似無不及於兩營鄉軍. 況在前溫幸時, 湖西兵使爲後廂大將. 京  
畿之照此舉行, 亦無不可. 至於船艙之代以浮橋, 可保萬全. 船艙則所入船隻, 多或近千, 浮橋  
則不滿百隻, 此已省弊. 況且完固堅實, 無異陸地, 可以永久遵行, 而但念此後浮橋所入, 專責  
京江, 船隻則別立作隊之制, 使之趁期應役, 深究沾漑之資, 使之蒙利效力爲好. 予意則外方畿  
邑稅穀, 分授京江諸船, 有若都監船之元定運稅者, 則江民似無稱冤之端, 船漢亦有樂赴之望.  
外此小小弊瘼, 外而畿營, 內而各司, 一切以省減簡約爲主, 行之悠久, 期於無弊, 庶乎其可也.  
曾聞世祖朝, 有扈駕諸臣各裹飯之令, 而左承旨獨爲炊飯, 至於拿棍. 今日士夫, 夙習膏粱, 雖  
未必一依裹飯之法, 果欲存心於節損, 則豈無所益乎? 非徒飲食之費, 至於騶率, 亦宜有一定之  
制限矣.”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9월 18일(신축) 1번째기사>

정치/왕실

사도세자의 영여가 수원에 도착하다

영여가 과천으로부터 출발하여 수원(水原)의 신읍(新邑)에 있는 막차(幕次)에 이르러 주정전(晝停奠)을 지낸 다음, 다시 출발하여 원소의 정자각에 도착하였다. 재궁(梓宮)을 받들어 찬궁 안의 탑(榻) 위에 안치하였는데 진설(陳設)은 처음과 똑같이 하였으며 설전(設奠)은 정해진 의식대로 하였다. 석상식(夕上食)·포곡(哺哭)·석전(夕奠)을 겸하여 지냈다.

○戊午/靈輿自果川進發，到水原新邑幕次。行晝停奠，進發，至園所丁字閣。奉梓宮，安于橫宮內榻上，陳設如初，設奠如儀。兼行夕上食·哺哭·夕奠。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6일(무오) 1번째기사>

정치/왕실

정조가 사도세자가 은행할 때 주정했던 터를 찾아보고 저녁에 수원부에 머무르다

대가(大駕)가 과천현(果川縣)에서 주정(晝停)하고 사근현(沙斤峴)을 넘어 경진년 온천에 행하였을 때 주정을 하였던 옛 터를 찾았다. 주민들 가운데 그때에 행차를 구경했던 사람들에게는 쌀을 지급하도록 경기 관찰사에게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 “옛날 경모궁(景慕宮)의 행차가 이곳을 지날 때 예교(睿教)하시기를 ‘대가(大駕)의 주정소(晝停所)가 저쪽 언덕에 있으니, 어떻게 나의 주정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겠는가.’ 하시고는, 이곳에다 옮겨 설치하도록 하셨다. 이 일은 내가 직접 들은 것인데 이제 이곳에 왔으니 나의 심회를 억제하기 어렵구나. 이후로는 지방관으로 하여금 대충 수리를 하도록 하라.”

하였다. 저녁에 수원부(水原府)에 머물렀다.

○大駕晝停于果川縣，踰沙斤峴，訪庚辰溫幸時晝停遺址。居民之曾經仰瞻者，命畿伯給米。上曰：“昔年駕過此地也，睿教若曰：‘大駕晝停所在彼岸，豈可復設小朝晝停乎?’仍令移設於此。此事，予所得聆。今臨此地，予懷難抑。此後則使地方官，略加修築。”夕次于水原府。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6일(무오) 2번째기사>

정치/왕실

사도세자를 수원 화산에 천장한 일과 은행할 때 수원의 일화를 정리하다

(…) “현릉원(顯隆園)은 수원부(水原府) 화산(花山)에 있는데 계좌 정향(癸坐丁向)입니다. 기유년 가을에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 옛 원(園)은 체제상 결함이 많다고 건의하면서 고쳐 쓰자고 청해서, 드디어 화산에다 자리를 잡았는데, 점을 친 사람의 말이, 그 곳은 서려있는 용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형상이라고 하였으며, 대소 관원이 따르고 일반 백성들도 동조하였습니다. 이에 이해 겨울 10월 기미일에 이장(移葬)하고 원의 이름을 ‘현릉’이라고 고쳤습니다. 아, 불효한 이 아들이, 천지에 사무치는 원한을 안고 지금껏 멍하고 구차스럽고 모질게 목석마냥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소자에게 중사를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그 뜻에 보답할 수 있게 되기를 지극한 심정으로 비나니, 아, 하늘이시여.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늘이 들어주는 것인데, 이 소자는 감히 기필코 이렇게 해야만 소자가 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천하 후세에 뉘뉘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7월에 온천에 행차하였다가 8월에 환궁하였다. 행록을 살펴보면, 이때에 세자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으므로 영묘께서 온천에 가서 목욕하라고 명하였다. 행차가 강가에 이르니 물이 불어나서

뱃길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날이 저문 후에야 비로소 건넜다. 배 위에서 궁관 이수봉(李壽鳳) 등과 함께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는 설(說)을 강론하였다. **그 이튿날 수원부(水原府)에 이르렀다.** 부의 소재지 북쪽에 **화산(花山)**이 있었는데, 바로 기해년에 영릉(寧陵)을 표지해 둔 곳이었다. 거기에 올라가서 두루 둘러보고 좋은 곳이라고 감탄을 한참 하다가 처소에 돌아왔다. **산성에서 무예를 열병하였다.** 행차가 지나는 길가에서, 부로들이 에워싸고 막아서서 다투어 바라보면, 번번이 행차를 멈추고 길고를 물어보고는 조세와 부역을 감해주라고 명하였으므로, 일로가 크게 기뻐하였다. 어느 호위 군사의 말이 달아나 콩밭에 들어가서 마구 짓밟고 뜯어먹었는데, 지방관을 불러 밭주인에게 값을 후하게 갚아주라고 하였으며, 호위 군사의 죄를 다스렸다. 고을 안의 나이 많은 자들을 돌봐주었으며, 시골에 파묻혀 있는 선비들을 간곡히 불렀다. 온천에 도착하여서는 날마다 강론하는 자리를 열었는데, 역대 임금들이 온천에 갔을 때에 옥당의 관원을 소대하던 옛 일을 따르던 것이었다. 절구시(絶句詩) 1수를 내리어 궁관에게 화답하라고 지시하였다.(…)

○(…)遷園都監陳素儀仗·各色燭籠，如發鞞儀。(…)御製誌文曰 **顯隆園在水原府之花山癸坐丁向**。己酉秋，錦城尉朴明源建言舊園體制多疵類，請改厝，**遂卜于花山。卜云盤龍弄珠之象**。卿士從，庶民從，乃移葬于是年冬十月己未，改上園號曰顯隆。嗚呼！小子不肖，抱徹天極地之冤，不死至于今，冥然苟然頑然如土石者，且有待於錫胤而托重，得遂誕報之大願至祝。天乎天乎！人欲天從，小子敢於此，取必焉。夫然後，小子之生，始可永有辭於天下後世也耶？(…)七月，幸溫泉，八月還宮。”按『行錄』曰：“時，小朝久有寢疾，英廟命浴溫井。駕到江頭，水漲，船路不固，至晚始渡。在船上，與宮官李壽鳳等，講君舟民水之說。翌日，**至水原府。府治之北，有花山，即己亥寧陵置標地也。**登臨周覽，嘆賞良久，還次山城，閱武技。輦路所過，父老擁遮爭瞻，輒住駕，詢疾苦，命減征徭，一路大悅。有一衛士馬，逸入菽田，蹂且吃，招地方官，厚償田主，治衛士。存恤邑中高年，敦召遺逸之士。及到溫泉，逐日開講筵，遵列朝溫幸時，召對玉堂官故事也。下絶句一篇，命宮官和之。(…)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7일(기미) 4번째기사>

## 정치/왕실

### 현궁을 내려놓을 때 정조의 격기가 심해졌고 다음날 수원을 출발한다고 명하다

관원을 파견하여 후토(后土) 귀신에게 사례하고, 정자각(丁字閣)에 돌아와 우제(虞祭)를 지냈다. 상이 비로소 친히 헌작을 하였는데, 이는 전(奠)을 바꾸기 때문이었다. 대축(大祝)이 지방 상자를 받들어 담장 동쪽에 묻었다. 상이, 재궁(梓宮)이 상여에 오를 때부터 가슴을 치며 슬피 운 나머지, 격기(膈氣)가 치밀어 올랐는데, 현궁(玄宮)을 내려놓은 뒤에 이르러서는 격기가 더욱 심하게 치밀어 오르므로 좌우의 신하들이 겨드랑이를 부축하고 겨우 배례를 행하였다. 여러 신하들의 주달하는 말이 있었는데도, 가슴이 막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부축하여 소차에 돌아왔으며, 우제의 예식을 마친 다음 재실로 돌아왔다. 하교하기를,

“대례를 이미 잘 마치었으니, 이제는 자궁을 들어가 뵈는 것을 한 시각도 지체할 수 없다. **내일 아침 일찍 수원의 신읍(新邑)을 출발하여, 과천의 숙소에서 주정(晝停)을 하고 모래 환궁하겠다.**” 하였다. 이날 밤에 상은 다시 원상(園上)에 나아가 친히 공사를 살피었다.

○遣官謝后土，還虞于丁字閣。上始親獻，以易奠也。大祝奉紙榜箱，瘞于曲墻東邊。上自梓宮陞輦時，叩擗哀號，膈氣衝亘，**及至下玄宮後，氣益凜綴**，左右挾腋，僅行拜禮。諸臣有奏達，而臆塞不能答。諸臣等扶護，還小次。虞祭禮畢，還齋室，教曰：“大禮，今已克襄。此時入觀

慈宮，不可一時遲留。明日，早發水原新邑，晝停果川宿所，再明日還宮。”是夜，上再詣園上，親審工役。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7일(기미) 5번째기사>

#### 정치/왕실

##### 원소에 나가 공사를 감독하고 수원향교에서 유생들에게 학문을 권면하다

날이 채 밝기 전에 상이 재차 원소에 나아가 공사를 감독하였다. 수도각(隧道閣)의 판위(版位)에 나아가, 원소를 하직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재실에 돌아와 평소의 용복(戎服)을 갖추 입고 출발하였다. 수원의 향교 앞에 이르자, 유생 10여 명이 맞이하므로, 불러 만나보고 학문에 힘쓰라고 권하였으며, 이어 수원의 행궁에 들어갔다. 경기 감사와 수원 부사에게 명하여, 부로(父老)·교속(校屬)들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도록 하고는, 호조 판서 서유린(徐有隣)에게 명하여 위로하고 돌봐주게 하였다. 저녁에 과천 행궁에서 묵었으며, 백성들에게 선유하였다.

○庚申/天未明，上再詣園上董役。詣隧道閣版位行辭園禮，還齋室，具平戎服進發。至水原鄉校前，儒生十餘人祇迎，召見勸學，仍入水原行宮。命畿伯·本府使，率父老·校屬來待，命戶判徐有隣，勞問存恤。夕次于果川行宮，宣諭民人。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8일(경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수원 등 세 읍의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윤음을 유지하다

수원 등 세 읍의 백성들에게 유지하기를,

“이 고을의 화산(花山)은 원래부터 영기(靈氣)가 모인 곳으로서, 그 형상은 서린 용(龍)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고, 그 땅은 천리를 가다가 한 번이나 만날까말까 한 곳이어서, 원침(園寢)으로 의논하여 정하고 드디어 천봉하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따라서 이 고을은 바로 나의 조상이 묻혀 있는 고을이고, 너희들은 이 고을의 백성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마치 한 식구처럼 여기면서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하고 산업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생활에 안주하고 생업을 즐기는 방도를 알게 해주어야,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나의 생각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전할 지역으로 정한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끼친 수고 또한 크다고 여긴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몸은 대궐에 있을 때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세 고을 소재지에 이르러 경영한 것을 두루 둘러보건대, 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거리가 질서 정연하여 엄연히 하나의 큰 도회를 이루었으니,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또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여느 행차 때에도 오히려 은택을 베푸는 법인데, 하물며 이 고장의 이 백성들에게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원소 부근의 면리(面里) 및 이사한 백성들에게는 10년 동안 급복(給復)하고 새 환자(還子)를 탕감하며, 수보미(需保米)도 수량을 나누어 탕감하고 그 나머지는 돈으로 대신 받아들이도록 허락하라. 그리고 모든 면리(面里)에 1년 동안 급복하고, 오래된 환곡(還穀) 가운데 가장 오래된 3년 조는 탕감하고, 수보미(需保米)도 수량을 나누어 탕감하도록 하라. 부로 가운데 온천의 행차를 재차 맞이한 자와, 조관(朝官)으로서 나이가 70 이상인 자와, 서인 가운데 나이가 80 이상인 자에게는 가자토록 하고, 경내의 유생(儒生)과 무사(武士)들에 대해서는 내년 봄 전성(展省)하는 행차를 기다려 설과(設科)하여 시취(試取)하고자 하며, 교속(校屬)으로서 오래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직을 제수하거나 조천(調遷)시키고 도목 정

사 때마다 주의하도록 허락한다.

금번의 이 명이 어찌 다만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겠는가. 너희들은 나의 무마하는 고심과 지성을 알고, 힘과 마음을 합쳐 함께 원(園)을 보호하면서 영원토록 변치 말지어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수원의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풀라는 윤음을 방금 내렸다. 그런데 이 고을은 전에 경모궁께서 온천으로 행차하였을 때 숙소로 삼았던 곳이고, 금번에 영구 행차가 지날 때에도 묵은 곳이다. 나는 또 이 고을에 이르러 부모들을 불러 옛 사적을 묻고 그 대답을 듣고부터 더욱 서글픔을 누르지 못하였다. 더구나 행차가 머물렀을 때 베풀었던 혜택에 대하여 고을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말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감히 경모궁의 뜻과 일을 만분의 일이라도 이어나가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과천현의 부로 가운데 온천 행차와 영구 행렬을 바라본 자들로서 조관(朝官)은 나이 70세 이상, 일반인은 80세 이상인 자에게 모두 가자하고, 예전의 환곡 가운데 가장 오래된 2년 조에 한하여 탕감하고, 수보미(需保米)는 수량을 나누어 탕감하거나 수량을 나누어 대봉(代捧)하며, 두 해 동안 행차가 지나간 길가의 민호들에 대해서는, 1년간 급복(給復)하도록 하라.

광주(廣州)는 수원과 과천 사이에 끼여 있고, 사천(沙川) 역참이 영여(靈輦)가 머물렀던 곳이니, 어떻게 이 곳만 홀로 빠지게 할 수 있겠는가. 부의 행차가 통과한 연로 면에 대해서는, 묵은 환곡 1년 분을 탕감해 주고, 사천창(沙川倉) 근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분의 요역(徭役)을 면제하라.”

하고, 하교하기를,

“큰 예식을 치른 후에 혜택을 널리 베풀기에 힘을 쓰는 이 한 가지 일은 첫째도 선왕(先王)의 뜻을 이어나가는 것이고, 둘째도 선왕의 뜻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세 읍의 백성들에게도 오히려 혜택을 베풀었는데, 하물며 도하(都下)의 공인(貢人)과 시인(市人)들에게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시를 받아 원소(園所)에서 대령했다가 공물을 바친 공납인들에 대해서는 전부터 남아있는 것 가운데 3천 석(石)에 한하여 탕감을 해 주되, 대령한 공납인들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탕감을 해 주도록 하라. 대여(大輦)와 견여(肩輦)를 앞뒤에서 끄는 군사들과 각전(各塵)의 시민들에게는 요역을 20일에 한하여 면제해 주고, 각 차비(差備) 시민들에 대해서는 10일에 한하여 면제해 주고 반인(泮人)들의 현방(懸房) 숙전은 10일에 한하여 면제해 줌으로써, 조정이 소중히 여기는 뜻을 보여 주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관리영(管理營)과 진무영(鎭撫營)의 장교(將校)·군졸(軍卒)들 중에 금번에 영악전(靈輦殿)과 숙소참(宿所站)에 편 장막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해당 수신(守臣)으로 하여금 사방(射放)을 시험보이고, 그 명중한 수효를 뒤에 기록하여 장문(狀聞)토록 하라.” 하였다.

○癸亥/諭水原等三邑民人曰：“是府花山，鍾靈有自，其象則盤龍弄珠，其地則千里一逢，議定園寢，遂舉遷奉之禮，是府，卽予松楸之鄉，爾等，是鄉之民也。予之視爾等，如視家人，裕其食足其產，俾知安生樂業之方，庶可以盡予責寬予思。矧自卜移之初，貽勞於爾等者，亦云鉅矣。每一念至，廈氈何安？行到新治，周覽營始，屋閭櫛比，阡陌綺錯，儼然成一大都會，爾等之積費勤苦，亦足推想。尋常蹕路，猶施恩澤，況是鄉是民乎？園所附近面里及徙居民人，給復十年，新還上蕩減，需保米亦許分數蕩減，餘捧代錢。通一邑面里，給復一年，舊還餉最久三年條蕩減，

需保米亦許分數蕩減. 父老之再瞻溫幸羽旄者, 朝官年七十以上, 士庶年八十以上人, 加資. 境內儒·武, 俟來春展省之行, 欲設科試取. 校屬之久勤除遷, 亦許每都政注擬. 今茲之命, 豈但爲爾等? 爾等知予撫摩之苦心至誠, 一乃心力, 共護園寢, 永世毋替.” 又教曰: “水原民人施惠, 纔有綸音, 而是縣, 昔於溫幸爲宿所, 今於靑路, 爲宿所. 予又臨是縣, 招問古蹟於父老, 聞來益不禁愴慟. 況駐蹕時恩澤, 邑人至今傳誦, 予烏敢不仰述志事之萬一? 果川縣父老之瞻望溫幸靑行者, 朝官年七十以上, 士庶年八十以上, 竝加資. 舊還最久條, 限二年蕩減, 需保米分數蕩減, 分數代捧, 兩年輦路民戶給復一年. 廣州, 介在水·果間, 沙川站爲停輦所, 豈可使之獨漏? 府輦路面, 舊還一年條蕩減, 沙川倉底居民當年徭役除減.” 教曰: “克襄之後, 惟摹摹於廣惠一事, 一則仰述, 二則仰述. 三邑民人, 猶且施惠, 況都下貢市人乎? 園所待令進排各貢人舊遺在, 限三千石蕩減, 待令貢人, 從優蕩減. 大輦·肩輦前後引軍·各塵市民徭役, 限二十日蠲減, 各差備市民, 限十日蠲減, 泮人懸房贖, 限十日蠲減, 以示朝家爲所重之意.” 教曰: “管理營·鎮撫營校卒等, 今番靈幄殿·宿所站布帳領來人, 令該守臣, 試射放, 以其得中數交, 後錄狀聞.”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11일(계해)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새 원소의 지방관인 수원부사 조심태에게 가자하다

천원 도감과 원소 도감의 당상, 낭청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하였다. (...) 옛 원소(園所)의 지방관인 양주 목사 임시철(林著喆), 숙소의 지방관인 과천 현감 윤행임(尹行任), 연도의 지방관인 광주 부윤 민태혁(閔台赫), 새 원소의 지방관인 수원 부사 조심태(趙心泰)에게는 가자하였다. (...)

○乙丑/遷園園所兩都監堂郎以下施賞有差. (...) 舊園所地方官楊州牧使林著喆·宿所地方官果川縣監尹行任·沿道地方官廣州府尹閔台赫·新園所地方官水原府使趙心泰加資. (...)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13일(을축)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현릉원 원행을 하고 수원에서 과거를 설행한다는 하교

하교하였다. “천봉(遷奉)을 한 뒤에 처음으로 신정(新正)을 맞게 되니, 어린애나 다름없는 그리움이 더욱 깊어진다. 19일에 출궁(出宮)하여 생신(生辰)에 맞춰 현릉원(顯陵園)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다가 수원(水原)의 새 고을에 머무는 날에 수원 등 세 읍(邑)의 유생과 무사들에게 과거를 설행하여 시취(試取)하겠다. 이로부터 해마다 빠짐없이 원행(園幸)을 할 것이다. 갖가지 폐단을 덜어주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강구하여 정한 규정이 있으니, 그대로 거행하여 털끝만큼이라도 폐단을 끼치지 않도록 경외(京外)에 신칙하라.”

○教曰: “遷奉之後, 初當新正, 孺慕深. 十九日出宮, 趁誕辰, 詣園所行祭, 還次水原新邑日, 水原等三邑儒武, 當設科試取. 自此每歲園幸, 豈可或闕? 諸般省弊之端, 已有講定之定例, 依此舉行, 俾無一毫貽弊事, 申飭京外.”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1월 1일(임오)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거동할 때 수원과 과천에서 준비하던 음식물 공급을 모두 폐지하라고 명하다

하교하였다. “풍덕(豐德)에 있는 제릉(齊陵)과 후릉(厚陵), 여주(驪州)에 있는 영릉(英陵)

과 영릉(寧陵)에 행행(幸行)할 때와 온천에 행행할 때, 연로(沿路)의 각 고을에서 으레 아침 저녁의 찬공(饌供)과 주물상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조(先朝)께서 여주에 행행하였을 때와 경오년에 온천에 행행하였을 때로부터 모두 없애도록 명하고, 서울에서 적당히 날라다가 거행하였었다. 더구나 본원(本園)에 거동할 때에는 매사에 폐단을 모두 줄이려고 하는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금번의 거동 때부터 수원·과천 두 고을에서 준비해 오던 음식물 공급은 전부 다 없앨 것이며, 혹시라도 이를 위배(違背)하는 경우에는, 지방관과 도백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본부(本府)는 새로 창설한 고을이어서 모든 것이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으니, 비록 선비를 시험보이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남한 산성(南漢山城)이나 송도(松都)의 규례를 적용하겠는가.

경신년의 행행 때 풍덕 부사가 과외(科外)로 공급한 일로 처분이 지엄하였다. 이것 또한 선대의 뜻을 계승하는 일단(一端)이다. 더더구나 어공(御供)조차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 신하들에게 사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점을 묘당으로 하여금 엄히 신칙하고 해당 도백 및 부사에게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乙酉/教曰：“如豐德齊·厚陵，驪州英·寧陵幸行及溫幸沿路各邑，例有朝夕饌供·晝物等措備。自先朝驪州幸行時，庚午溫幸時，皆命除之，自京從便輸置舉行。況本園舉動，每事皆欲省弊者乎？自今番舉動，水原·果川兩邑待令饌供，一竝除之。一或違越，地方官及道伯，難免其責。本府以新創之地，凡百姑未就緒，雖試士日，豈用南城·松都之例乎？庚申幸行時，以豐德府使之科外供饋，處分至嚴，此亦仰述之一端。且況御供猶勿措備，至於諸臣私饋，尤豈可學論？令廟堂嚴飭，行會該道伯及府使處。”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1월 4일(을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정조가 수원부에 머무르다

어가(御駕)가 수원부(水原府)에 머물렀다.

○己未/駕次水原府.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8일(기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의 동헌, 내사, 사정의 이름을 짓고 현판을 쓰다

수원(水原)의 동헌(東軒)을 장남헌(壯南軒)이라 이름짓고, 내사(內舍)를 복내당(福內堂)이라고 이름지었으며, 사정(射亭)은 득중정(得中亭)이라고 이름지었는데, 모두 임금의 글씨로 현판(懸板)을 썼다.

○名水原東軒曰壯南軒，內舍曰福內堂，射亭曰得中亭，皆御筆.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9일(경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운주당에 이르러 산성의 부로들을 위로하다

어가(御駕)가 독성 산성(禿城山城)에 나아가 장대(將臺)에 올라갔다. 운주당(運籌堂)에 이르러 산성의 부로(父老)들을 불러 위로하기를, “그대들 중에는 나이 많은 노인이 많으니 경진년에 어가가 머물렀을 때 구경한 사람이 있겠구나.” 하니, 부로들이 아뢰기를, “경진



년에 온천에 행차할 때 어가가 윤주당에 머물러 숙소(宿所)로 삼았는데, 신들은 거의 다 의장(儀仗)들을 반갑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때의 일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는가?” 하니, 부로들이 일제히 아뢰기를, “어가가 머무른 날에 친히 백성들의 고충을 물어보고 창고의 곡식을 풀어 내려주었으며, 진남루(鎭南樓)에 올라 과녁을 쏘아 연거푸 4발을 맞추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내가 31년 만에 이 산성에 올라 이 집에 앉아서 백성들을 불러 예전 일을 묻노라니, 슬픈 감회를 누를 수 없다. 딸 안에 들어온 부모(父老) 가운데 온천 행차 때 은전(恩典)을 입은 사람은, 승려이건 속인(俗人)이건 간에 나이를 따지지 말고 특별히 한 자금(資級)씩 올려주고, 성 안의 민가에는 매 호(戶)마다 쌀 한 섬씩을 주어, 이날의 감회가 갖든 뜻을 표시하라.”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득중정(得中亭)에 들러 각신(閣臣)·장신(將臣)들과 더불어 과녁을 쏘았다. 상이 다섯 발을 쏘아 네 발을 맞히고는,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오늘 활을 쏜 것이 마침 경진년의 옛 일과 똑같으니, 마땅히 뜻을 보이는 일이 있어야 하겠다.” 하고, 지방관 조심태(趙心泰)에게 금갑(金甲) 한 벌을 내려주었다.

○辛酉/駕詣禿城山城，臨將臺，至運籌堂，召慰山城父老曰：“爾等多耆耄，其有庚辰駐駕時瞻望者乎？”父老等奏曰：“庚辰年溫幸時，駕次運籌堂爲宿所，臣等舉皆欣瞻羽旄矣。”上曰：“伊時事，汝能記乎？”父老等齊奏曰：“駐駕日，親問疾苦，發倉穀以賜之，臨鎭南樓射帳，連獲四矢。”上曰：“今予於三十一年之後，臨此城坐此堂，召見民人，問故事，不覺愴感。入庭父老，溫幸時蒙恩典者，不拘僧俗、年齒，特加一資，城內民戶，戶給斛米，以示是日寓感之意。”還次得中亭，與閣臣、將臣射帳，上五發四中。謂左右曰：“今日射，適符庚辰故事，當有示意。”賜地方官趙心泰金甲一具。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10일(신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 부사 조심태에게 공로를 치하하며 윤선도의 후손들을 보살피게 하다

수원 부사 조심태(趙心泰)에게 전교하기를, “경은 수원부의 새 고을을 설치한 공로가 있으므로 경의 집안 사람이면 이사하였거나 서울에 살거나를 막론하고 이미 모두 본 고을의 과시에 참가하도록 하였는데 더구나 윤씨(尹氏)의 경우이겠는가. 더더구나 해남(海南)은 수원과의 거리가 끝없이 멀지만 요즘 시권(試券)에 이름이 등록된 것을 보니 윤지운(尹持運)·윤지섬(尹持暹)·윤지홍(尹持弘)·윤지익(尹持翼)·윤지식(尹持軾)·윤지상(尹持常)·윤지민(尹持敏) 등의 성명이 있는데, 이 밖의 권솔들로서 등록에 들어 있지 않은 자도 또한 필시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천리 길을 이사해오느라 자리잡고 살 경황이 없을 것은 미루어 알 만하다. 식목조(植木條)로 따로 등록한 돈 1천 냥을 특별히 떼어주니 경이 직접 관리하여 혹은 집을 사주기도 하고 물건을 사주기도 하여 곧 준비한 집들이 마을을 이루게 하라. 그리고 열흘마다 보이는 시험과 앞으로 다가오는 과거시험에는 비록 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조상의 직계 후손임이 분명하면 모두 시험에 응시를 허락하겠다는 것을 알리라. 이 전교를 한 통 베껴서 주인집에 주라.” 하였다.

○敎水原府使趙心泰曰：“卿於本府新治，有制置之功，卿家之人，無論移接與京住，既許通同觀光於本邑科試。況尹氏乎？又況海南距隋城，何等絕遠，而以近日錄名以試券者觀之，有尹持運·尹持暹·尹持弘·尹持翼·尹持軾·尹持常·尹持敏等姓名。外此率眷之不入於錄名者，亦必有之。然則千里搬運，不違奠居，可以推知。植木條別錄錢一千兩，特爲劃給，卿其親執董察，

或買給家舍，或購給物力，使卽比屋成村，而旬題與來頭科試，雖非挈眷者，明是乃祖之直孫，則竝許赴試事，知悉。此傳教一通，贍給主家。”

<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 12월 8일(갑인)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행차 길의 공사를 군교에만 맡겨 민폐를 유발한 광주부윤을 파직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행차가 통과하는 경기 고을 길의 수리 공사를 비변사 낭관을 보내 조사해보니 그 진도가 **수원**이 제일이고 과천이 다음이었는데, 가을부터 시작하여 지금 전부 끝났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는 가을부터 지금까지 아예 착수도 하지 않았고 여섯 곳이나 되는 교량 역시 내버려 두었으며 쌓인 눈을 하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전최(殿最)의 문건이 결재된 후에야 부윤이 비로소 내려가 하룻밤을 자고 즉시 돌아오면서 부의 군교를 머물러두어 6개 면의 민정(民丁)을 동원시켰습니다. 이에 부의 군교들은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곤장을 마구 사용하므로 동원된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날씨가 따뜻할 때에는 무엇 때문에 잠만 자고 돌아보지 않다가 이처럼 얼어붙은 추운 때에 백성들에게 이 고생을 시키는가. 품값은 한푼의 돈이나 한알의 쌀을 막론하고 애당초 얻어볼 수 없다.’ 고 합니다. 행차길의 수리에 대하여 전후 신칙한 것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럼에도 해당 부에서는 애초부터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었으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민정을 동원하여 부릴 때에도 추위에 손을 부는 괴로움만 있었지, 입에 풀칠할 도움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동원시키고 공사를 감독하는 일이 얼마나 긴중한 것인데 자신이 직접 단속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군교들에게만 맡깁니까.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나라의 은혜를 저버린 죄를 그대로 덮어둔 채 논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부윤 홍성연(洪聖淵)을 파직하고 그 죄상은 유사로 하여금 엄중하게 처벌하게 하기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備邊司啓言：“畿邑所經輦路修治之役，發遣備郎摘奸，則**水原爲最，果川次之**，而自秋經始，今皆了畢。至於廣州，自秋至今，初無着手，橋梁六處，亦皆拋置，積雪無一掃開矣。日前殿最啓下之後，府尹始爲下來，一宿卽還，而留置府校，調發六面民丁。府校輩少不如意，則笞杖狼藉，役民等皆偶語曰：‘日暄之時，緣何事甘眠不省，當此凍寒，使民罹此苦也？雇價則毋論分錢粒米，初不得見’云。輦路修治，前後飭教何如，而該府之初不動念，已極可駭。至於役民之際，只有呵凍之苦，了無餬口之助。若其調發董役，何等繁重，而不思親檢，付諸校輩，其失職孤負之罪，不可置而不論。該府尹洪聖淵罷黜，其罪狀，令攸司從重勘處。” 允之。

<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 12월 21일(정묘)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정조가 수원부에 머무르다

**어가가 수원부에 머물렀다.** 어가가 막 승례문을 나왔을 때 비와 눈이 뒤섞여 내리니, 상이 군병들의 옷이 젖는 것을 불쌍히 여겨 관왕묘(關王廟)에 가서 잠시 머무르며 여러 군사들에게 깃발을 길가에 놓고 제각기 비를 피하도록 명하였다.

○辛卯/**駕次水原府**。方駕出崇禮門也，雨雪交下，上悶軍兵霑濕，詣關王廟，少駐，命諸軍豎旗路傍，使各避雨。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6일(신묘)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부 내에 집을 지은 유생과 무사를 시험보여 직부전시하게 하다

돌아와 수원부에 머무르면서 수원부 내에 집을 지은 유생과 무사를 시험 보여 수석을 차지한 유생 임희존(任希存)과 무사 이동술(李東述)은 모두 곧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還次水原府，試府治築室儒武，居首儒生任希存，武士李東述，竝直赴殿試。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7일(임진) 3번째기사>

#### 정치/왕실

**단종 복호를 주장한 신규의 집이 수원에 있다 하여 그 후손을 장릉참봉에 제수하다**

상이 노량(鷺梁)을 지나가는데 사육신의 묘와 사충사(四忠祠) 및 고 충신 박태보(朴泰輔)의 서원이 모두 길가에 있었다. 상이 감회가 일어나 직접 글을 지어 근신(近臣)을 보내 제사를 지냈다. 고 현감 신규(申奎)란 사람이 숙종 24년 무인년에 상소하여 단종(端宗)의 위호(位號)를 회복할 것을 요청한 일이 있는데, 상이 이 때에 이르러 신규의 집이 수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대시(臺侍)를 증직하려 하였다가 어떤 사람이 신규가 이미 승지에 증직되었다고 하자, 그 후손을 등용하여 장릉 참봉(莊陵參奉)에 제수하였다.

○上過鷺梁，六臣墓·四忠祠及故忠臣朴泰輔書院，皆在路傍。上興感親製文，遣近臣致祭。故縣監申奎者，肅宗戊寅上疏，請復端宗位號。至是，上問奎家在水原，特贈臺侍，有言奎已贈承旨，乃錄其後孫，授莊陵參奉。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7일(임진) 7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부의 유생에게도 떡을 주고 과거시험을 보게 하다**

승지를 보내 태학의 유생들에게 떡을 내리고 이어 어제(御題)를 내려 여러 유생들에게 응제(應製)하도록 하였다. 부(賦)에서 수석을 차지한 권황(權煬)과 송(頌)에서 수석을 차지한 김희화(金熙華)는 곧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상이 경연관에게 이르기를, “『시경』에 ‘많은 훌륭한 선비들 덕에 문왕께서 편안하리.[濟濟多士 文王以寧]’ 라 하였다. 태학은 곧 어진 선비들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의 원기이다. 사흘동안 술잔치를 베풀어 준 것은 옛날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역대 조정의 경우로 말하더라도 큰 길거리의 백성들에게 음식을 내려 은혜가 부녀자들에까지 미친 일은 지금까지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유생에게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꿀을 나누어 준 것도 한때의 특별한 은전이었으나 그것이 규례가 되어 나중에는 유자를 나누어 주었고 또 황대구(黃大口)를 나누어 준 일도 있었다. 그 뒤에는 감제(柑製)의 전례에 따라 과거 시험을 보인 예도 있었는데, 이제 어찌 떡만 나눠 주고 말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숙종조 때 어필로 등급을 써서 급제시킨 고사를 본떠 장원 시험지에 어필로 등급을 썼다. 수원부의 유생에게도 성균관의 유생들과 똑같이 떡을 나눠 주고 과거 시험을 보였는데, 송(頌)에서 수석을 차지한 권의(權倚)와 부(賦)에서 수석을 차지한 심휘진(沈徽鎭)을 급제시키고 활쏘기 시험에서 합격한 무사(武士) 임창옥(林昌玉) 등은 곧장 전시에 응시하게 하였다.

○遣承旨，頒糕太學儒生，仍下御題，命諸生應製。賦居首權煬·頌居首金熙華，直赴殿試。上謂筵臣曰：“『詩』云：‘濟濟多士，文王以寧。’太學，卽賢士所關，而且是國家元氣也。賜酺三日，古亦有例。雖以列聖朝言之，通衢賜饌，惠及婦孺，至于今，傳以爲美事。在民庶猶然，

況諸生乎? 頒柑, 卽一時特恩, 而仍以爲憲, 其後有頒柚子, 又有頒黃大口後, 依柑製例試取之例. 今豈可只令頒糕乎?” 仍倣肅廟朝御筆書等賜第故事, 壯元試券, 御筆書等. 水原府儒生頒糕試取, 一視泮儒. 取頌居首權倚·賦居首沈徽鎮賜第, 試射入格武士林昌玉等, 直赴殿試.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6월 18일(신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장령 최창국이 수원의 치악산의 벌채를 금지하고 호적만 읍긴 집안을 신칙하라고 상소하다 장령 최창국(崔昌國)이 상소하기를,

“(…)수원의 치악산(鷓岳山)은 바로 현릉원(顯隆園)의 산맥이 나오는 주산(主山)으로 현릉원과의 거리가 10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봉우리와 골짜기에 나무가 없는 민둥산으로 나무의 벌채를 금하고 보호하는 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둘러 원대한 계획을 생각하시어 미진한 한탄이 없도록 하소서.

새 읍안에 백성을 모집해 들어와 살게 한 것은 대체로 촌락을 크게 만들어 원릉(園陵)을 수호하자는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와서 사는 선비들에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역시 그들이 기꺼이 옮겨와 민가가 즐비하게 하려고 한 까닭에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온 집안이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태반이 집은 그대로 두고 호적만 읍긴 것이니, 단지 옮겨산다는 이름만 있을 뿐 이사한 실속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거듭 신칙하여 실효가 있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 두 번째 문제는 네 말이 매우 훌륭하다. 세 번째 수원 새 읍의 선비들 가구에 관한 문제는 네 말을 경기 감사로 하여금 해당 수령에게 알리도록 하겠다. (…)” 하였다.

○掌令崔昌國上疏曰: (…)水原鷓岳山, 卽顯隆園發脈主山, 相距不滿十里, 而峰壑濯濯, 不入於禁養之中. 願亟軫深遠之圖, 俾無欠缺之歎焉. 新邑內募民入居者, 蓋出於村落殷盛, 守護園寢之計. 士人之來居者, 許令赴舉, 亦欲其樂赴, 閭井櫛比故也, 而率未能盡室搬移, 太半是置庄舍入籍而止. 有移居之名, 而無移居之實, 從今申飭, 俾有實效. (…)

批曰: “(…) 第二件事, 爾言甚好矣. 第三件水原新邑儒戶事, 爾言令畿伯, 知委該倅. (…)”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8월 15일(정사)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정조가 수원부 행궁에 머물며 강무당에 나아가 활을 쏘다

수원부(水原府) 행궁(行宮)에 머물렀다. 강무당(講武堂)에 나아가 활로 과녁을 쏘았는데 한 차례에 두 개의 화살이 맞았고 중포(中布)에는 한 차례에 세 개의 화살이 맞았다. 무장과 병조 판서에게 명하여 각각 한 차례씩 쏘라고 하였다.

○次水原府行宮. 詣講武堂, 射貫革一巡, 獲二矢, 中布一巡, 獲三矢. 命武將及兵判, 各射一巡.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24일(갑오)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어목헌을 지키는 사람을 두라고 규장각에 명하다.

규장각에 명하여 경기 감사와 수원 부사에게 하유하여 어진(御眞)을 봉안한 어목헌(禦牧軒)에 수호하는 사람을 두고 요포(料布)를 지급하라고 하였다.

○命內閣，下諭于畿伯及水原府使，置禦牧軒御眞奉安處守護人，給料布。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3월 25일(갑오)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부의 시사(試射)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시상하게 하다

수원부(水原府) 시사(試射)에 입격한 사람들에게 가자(加資)하고 사제(賜第)하며 차등을 두어 상을 주라고 명하였다.

○命水原府試射入格人等加資賜第，施賞有差。

<정조실록 35권, 정조 16년 5월 22일(기미) 8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부에 현릉원 주변 백성, 수호군, 원역 등에게 신역 면제 등의 혜택을 주라고 명하다

수원부(水原府)에 명하여, 현릉원(顯隆園) 밖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고 길을 닦고 눈 치우는 일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수호군들에게는 1년 지공에 드는 비용에 준하는 값을 지급해 주고, 원역(員役) 이하에게 준 전답은 감히 바꾸지 말도록 하였다.

○甲寅/飭水原府，顯隆園外居民，免其身役，專當治道掃雪之役，守護軍等準給一年支供之需，員役以下所授田，毋敢換易。

<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 11월 19일(갑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정조가 직접 수원 유생의 응제 시권에 점수를 매다

친히 수원 유생들의 응제 시권(應製詩券)에 점수를 매겼다. 유학(幼學) 이석조(李奭祚)가 나이 80으로 삼상(三上)의 등급에 오르자, 상이 장원으로 뽑고 전교하기를,

“오늘 시권에 점수를 매기고서 이름을 뜯어 보았더니 바로 나이 80의 늙은 유학 이석조였다. 그래서 그를 장원으로 뽑았으니 내년 봄 행행 때에는 진시(殿試)에 입격한 규례에 따라 대(臺) 위에 따로 앉아서 지어 올리게 하고 맨 먼저 회시에 바로 응시하게 하라.” 하였다.

○丁丑/親考水原儒生應製試券。幼學李奭祚年八十，居三上等，上擢爲壯元。教曰：“今日考券拆名後見之，卽八十老儒幼學李奭祚也。置之魁等，來春幸行時，依殿試入格例，臺上別坐製進，先爲直赴會試。”

<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 12월 13일(정축)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정조가 현릉원에 참배하기 위해 수원 행궁에 이르다

상이 현릉원을 비러 가는 길에 관왕묘(關王廟)에 들렀다. 과천(果川)에서 주정(晝停)하였다. 인덕원(仁德院) 들녘을 지나다 길가의 부로(父老)들을 불러서 위로하며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저녁에는 수원 행궁에 머물렀다.

○丙午/上將謁顯隆園，歷臨關王廟，晝停于果川。過仁德院坪，召路傍父老，勞問詢瘼，夕次水原行宮。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2일(병오)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릉원에 나아가 작헌례를 하고 수원 행궁에 머무르다  
현릉원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고 돌아와 수원 행궁에 머물렀다.

○丁未/詣顯隆園，行酌獻禮，還次水原行宮。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3일(정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정조가 수원 행궁에서 환궁하다

거가가 수원 행궁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과천에서 주정하고 저녁에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상언(上言)한 문건 39가지를 관하하였다.

○戊申/駕自水原行宮還發，晝停于果川，夕還昌德宮。判下上言三十九度。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4일(무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릉원에 참배하기 위해 과천 행궁에서 유숙하다

현릉원에 참배하기 위하여 이날 신시에 대궐을 출발하였다. 지나는 길에 관왕묘(關王廟)를  
들러 망해정(望海亭)에서 조금 머물렀다가 과천(果川)의 행궁(行宮)에 당도하였는데 날이  
아직 저물지 않았다. 전교하였다.

“본현(本縣)에서 유숙하여 앉아서 첫닭이 울기를 기다려 떠나려고 하는데, 백성들에 관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이런 해를 만났으니 당연히 경축하는 뜻을 보  
여주어야 할 것이다. 목은 환곡의 1년 몫을 탕감하여 주도록 하라.”

○庚子/將拜顯隆園，是日申時出宮，歷臨關王廟，至望海亭少駐。抵果川行宮，日未暮矣。教  
曰：“宿次本縣，坐待鷄鳴欲前進，而一念耿耿於民事。況逢此年，當有示意。舊糶一年條蕩  
減。”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12일(경자)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정조가 사천행궁에서 잠시 쉬고 수원행궁에 도착하였다

첫닭이 울자 어가가 과천의 행궁을 떠나 사천(沙川) 행궁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가 수원 행  
궁에 도착하였는데 날이 아직 밝지 않았다.

○辛丑/鷄初鳴，駕發果川行宮。至沙川行宮小憩，抵水原行宮，天未曉矣。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13일(신축)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현릉원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다

어가가 현릉원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였다. 향(香)을 피우려 할 적에 상이 간장이 끊어질  
듯 흐느껴 울었다. 겨우 의식을 마치고 이어 원(園)에 가서 봉심하였는데, 상이 더욱 오열  
하며 눈물을 줄줄 흘리자 곁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울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영의정  
홍낙성과 영종추부사 채제공이 나와 아뢰기를, “지금 바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때입  
니다. 신들이 등으로 엮어야겠습니다.” 하고는, 그대로 보여(步輿)를 내오자 상이 이를 물  
리치고 곁에 모신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원에서 내려와서야 비로소 보여를 타고 재전(齋  
殿)으로 돌아왔다.

대신·각신과 약원이 의관을 거느리고 들어와 진맥을 하고 소합원(蘇合元)을 드렸다. 낙성이 아뢰기를, “재전은 조섭하는 데에 불편하니 행궁으로 돌아가 지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곳에서 하룻밤 자면서 사모하는 정성을 조금이나마 펴려고 하니 경들은 다시 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점심 때가 지나서 상이 편여(便輿)를 타고 구역 안의 여러 산기슭과 새로 정한 화소(火巢)를 두루 살펴보고 옛 향교의 터에 올라 각신 정민시 등에게 이르기를, “이곳의 지형이 매우 아름답다.” 하고, 훈련 대장 조심태에게 이르기를, “오늘 여러 산기슭을 살펴보면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나가며 두루 다 돌아보았는데, 새로 심은 나무들이 거의 모두 울창하게 자랐다. 지금부터는 다시 나무를 심느라 큰 힘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였다. 날이 저물어 재전으로 돌아와서는 예방 승지 이면응(李冕膺)과 대축(大祝) 어용겸(魚用謙)에게 가자하라고 명하였다.

○駕詣顯隆園，行酌獻禮。將上香，上摧咽掩抑，僅成禮。遂詣園奉審，上益嗚咽，玉淚汎瀾，左右皆泣，不知所爲。領議政洪樂性、領中樞府事蔡濟恭進曰：“此存亡之秋也。臣等當背負矣。”仍進步輿，上却之，爲左右所扶下園，乃進輿，還詣齋殿。大臣閣臣及藥院，率醫官入診，進蘇合元。樂性曰：“齋殿不便於調攝，伏願還御行宮。”上曰：“留此一宿，少伸瞻依之忱。卿等勿復言。”日過午，上以便輿，遍審局內諸麓及新定火巢，登舊鄉校基，謂閣臣鄭民始等曰：“此地形局甚佳矣。”謂訓將趙心泰曰：“今日看審諸麓，由左以右，無處不到，而新種樹木，幾皆鬱密。從此更不以植木大費力矣。”日暮還御齋殿，命禮房承旨李冕膺、大祝魚用謙加資。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13일(신축)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 행궁에서 유생과 무사를 시취하여 직부전시하게 하다

수원 행궁으로 돌아와서 본부의 유생과 무사를 시취(試取)하였다. 부(賦)의 제술에서 수석을 차지한 민영조(閔榮祖)와 무예에서 수석을 차지한 송복동(宋福同)을 모두 전시에 곧장 응시하게 하였다.

○壬寅/還次水原行宮，試取本府儒武。賦居首閔榮祖·武居首宋福同，竝直赴殿試。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14일(임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예조 판서 민중현이 현릉원에 행차할 때 문무과 정시의 거행을 건의하다

예조 판서 민중현이 아뢰기를, “내년 봄 현릉원에 행차하실 적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 과거를 베풀 것 등의 절목을 품정해야 하겠습니다. 경술년에 문무과 정시를 설행하고 그날로 방방(放榜)을 하였으니, 이번에도 이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술년에는 수원·광주·과천 세 고을에 원래 살고 있던 유생들에게 시험볼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금천(衿川) 유생들에게도 일체로 응시를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禮曹判書閔鍾顯啓言：“明春園幸時，依定例設科等節，當爲稟定，而庚戌年設文武科庭試，卽日放榜，今番亦依此舉行乎?” 允之。又啓言：“庚戌年則水原·廣州·果川三邑原居儒生許赴，而今番則衿川儒生亦當一體許赴乎?” 允之。

<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 12월 19일(임신) 4번째기사>

정치/왕실

혜경궁을 모시고 화성에서 연회를 베풀 날짜를 잡으라고 명하다

상이 장차 혜경궁(惠慶宮)을 모시고 화성(華城)으로 가려고 하면서 연회를 베풀 날짜를 잡으라고 명하였다.

○上將奉惠慶宮詣華城，命進饌日字涓吉。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2월 1일(계축) 4번째기사>

정치/왕실

화성에서 연회를 베풀 때의 음악과 음식 대접, 각종 물력의 조달 등에 대해 명하다

화성(華城)에서 연회를 베풀 때에 협률랑(協律郎)의 역할은 계라 선전관(啓螺宣傳官)이 대행하고, 음악 연주는 장용영(壯勇營)의 군악(軍樂)을 대신 쓰라고 명하고, 금원(禁園)에 행할 때에 제신(諸臣)에 대한 음식 대접과 군병들에 대한 식사를 공급하면서 규례에 지나치지 않게 하라고 신칙하였다. 이어 노자(路資)는 정리소에서 내주고, 반열에 참여하는 내외의 손님 및 행차를 따르는 궁인(宮人)·여자 악공(樂工) 등의 옷감·말 값[馬賁]·노자와 군병에게 먹이는 데에 드는 물력(物力)도 정리소에서 내주도록 명하였다.

○命華城進饌時，協律郎以啓螺宣傳官代行，鼓樂以壯勇營軍樂代用，申禁園幸時諸臣飯供·軍兵饌具之過式者。仍命盤纏自整理所頒給，參班內外賓及隨駕宮人·女伶等衣資·馬賁·盤纏·軍兵犒饋物力，亦令整理所頒給。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2월 1일(계축) 6번째기사>

정치/왕실

화성의 연회에 노인과 사민에게 줄 술과 쌀을 유수가 마련하도록 명하다

화성에서 연회를 베푸는 날 본부(本府)의 노인에게 줄 술과 사민(四民)에게 나누어 줄 쌀을 미리 유수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고 정리소로 보고토록 명하였다.

○命華城進饌日，本府老人饋酒·四民給米，預令留守，修報整理所。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2월 1일(계축) 7번째기사>

정치/왕실

화성의 궁중 연회 의식을 예행 연습토록 우의정 채제공에게 명하다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명하여 정리소(整理所)의 당상과 함께 화성(華城)에 가서 궁중 연회의 의식을 예행 연습토록 하였다. 이때에 채제공이 화성의 성곽 공사를 총괄하여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도 살필 겸 가 보도록 명한 것이었다.

○庚申/命右議政蔡濟恭與整理堂上，詣華城，肄進饌儀。時，濟恭摠理華城城役，故有兼察往視之命。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2월 8일(경신) 1번째기사>

정치/왕실

화성의 연회에 기로소와 외방의 대신들도 참여토록 명하다

화성부(華城府)에서 자궁(慈宮)을 위해 연회를 베풀 때 기로소(耆老所)의 대신들도 모두 먼저 나아와 반열에 참여토록 하고 외방에 있는 대신들도 구례(舊例)에 따라 돈유(敦諭)하여



부르라고 명하였다.

○癸亥/命華城府慈宮進饌時，耆老大臣竝令先詣參班，在外大臣依舊例敦召。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2월 11일(계해)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화성 행궁에서 진행될 자궁을 위한 연회와 양로연 계획을 하교하다

하교하였다. “9일에 자궁(慈宮)을 모시고 현릉원(顯隆園)에 나아가서 참배드린 다음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에 가서 자궁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이어 양로연(養老宴)을 행할 것이다. 상이 성묘(聖廟)에 가서 선성(先聖)을 참배한 다음 돌아오는 길에 행궁에 들러 과거 시험을 통해 인재를 뽑고, 다음날 장대(將臺)에 올라 직접 성조(城操)와 야조(夜操)를 본 다음 장사(將士)를 먹일 것이며, 16일에 환궁할 예정이다. 정리소(整理所)로 하여금 잘 알아 두도록 하라.”

○敎曰：“初九日陪慈宮，詣顯隆園展謁，至華城行宮，進饌于慈宮，仍行養老宴。上詣聖廟，拜于先聖，還至行宮，設科取人，翌日登將臺，親閱城操夜操，犒餉將士，當於十六日還宮，令整理所知悉。”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윤2월 1일(계미)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봉수당에 나아가 혜경궁을 위해 연회를 베풀다

봉수당(奉壽堂)에 나아가 혜경궁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하루 전에 상침(尙寢)이 소속 인원을 이끌고서, 자궁(慈宮)의 자리를 행궁(行宮)의 내전(內殿) 북쪽 벽에 남쪽으로 향하게 설치하고, 인안(印案)을 자리 동쪽에 설치하고 향안(香案) 두 개를 앞 기둥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자궁의 자리 동쪽에 어좌(御座)를 설치하고, 섬돌 위에 북쪽을 향하게 배위(拜位)를 설치하고, 내전 안쪽 한중앙에 북쪽을 향해서 옥위(褥位)를 설치하였다.

전찬(典贊)이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시위(侍位)를 앞 기둥의 발[簾] 안쪽에 북쪽을 위로 해서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고, 배위(拜位)를 내전의 앞쪽 오른편과 왼편에 설치하고, 외위(外位)를 뜰 중앙에 설치하였는데 모두 북쪽을 향하고 서로 대칭되게 하였다. 또 의빈(儀賓)과 척신(戚臣)의 시위(侍位)를 앞 기둥의 발 바깥쪽 좌우에 설치하였는데 북쪽을 위로 해서 서로 마주보게 하였으며, 배위(拜位)를 내전의 앞쪽 좌우에 설치하면서 북쪽을 위로 하고 서로 대칭되게 하였다.

전의(典儀)가 모시고 따라온 백관들에게 음식상을 차려 줄 자리를 중앙문(中陽門) 밖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였는데 북쪽을 위로 하고 서로 마주보게 하였으며, 배위(拜位)를 길의 서쪽에 북쪽을 향해 서로 대칭되도록 설치하였다. 그리고 인의(引儀)가 의빈과 척신의 외위(外位)를 중앙문 밖에 설치하고, 모시고 따라 온 백관의 외위를 좌익문(左翊門) 밖에 설치하였다.

이날에 이르러 여관(女官)이 사찬(司贊)·전빈(典賓)·여관의 자리를 받을 드리운 안쪽에 설치하였는데 전찬은 남쪽으로 조금 뒤에 있게 하였다. 여집사(女執事)가 좌통찬(左通贊)·우통찬(右通贊) 및 치사(致詞)를 대신 읽을 여집사의 자리를 섬돌 사이에 설치하고 찬창(贊唱)의 자리는 그 남쪽으로 조금 뒤에 설치하였는데 동쪽과 서쪽으로 나눈 뒤 모두 북쪽을 위로 삼게 하였다.

또 악장(樂章)을 선창(先唱)하고 후창(後唱)하는 여악공(女樂工)의 자리를 발의 바깥쪽으로 북쪽을 향하게 설치하고, 여집사 및 정재(呈才) 담당 여악공의 자리를 동쪽과 서쪽 모서리의 섬돌 부근에 설치하였는데, 여집사는 좌우로 나뉘어 북쪽을 위로 해서 서로 마주보게 하였고 여악공은 북쪽을 향하게 하면서 서로 대칭되게 하였으며 박자를 맞추는 여악공은 또 그 앞쪽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여집사와 여악공의 외위(外位)를 뜰 한복판에 장막으로 막아 설치하고, 악공의 자리를 장막 밖에 설치하였다.

여관이 자궁의 술그릇 탁자를 앞 기둥의 발을 드리운 안쪽에서 남쪽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상의 술그릇 탁자를 자궁의 술그릇 탁자의 동쪽 앞에 설치하고, 명부(命婦) 및 의빈(儀賓)·척신(戚臣)의 술그릇 탁자를 시위(侍位) 남쪽에 설치하였다.

또 꽃을 바칠 때 올려놓는 탁자를 발 안의 동쪽에 설치하고, 휘건함(揮巾函)을 올려놓은 탁자를 그 다음에 설치하고, 꽃을 흩뿌리는 소반을 올려놓은 탁자를 발 바깥의 서쪽에 설치하고, 꽃병을 올려놓은 탁자를 섬돌 위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고, 치사(致詞)를 올려놓은 상을 임금의 배위(拜位) 오른쪽에 설치하였다.

때가 되자 정리소의 대신 이하가 융복(戎服)을 갖추어 입고 제위(諸衛)를 독촉하여 내전의 문 바깥쪽 뜰에 벌여 세웠으며, 내전의 뜰 왼쪽과 오른쪽에 의장(儀仗)을 설치하였다. 산선(緘扇)·청개(靑蓋)·홍개(紅蓋)·정절(旌節)·봉선(鳳扇)·작선(雀扇)을 각각 두 개씩 앞 기둥의 발 바깥쪽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였다.

행사 시작 3각(刻) 전에 여관·여집사·여악공 등이 각기 복장을 갖추고 외위(外位)로 나가 있다가 조금 뒤에 각각 자기 자리로 나아갔다. 정리사(整理使)가 뜰 한복판의 장막 바깥쪽에 악대(樂隊)를 벌여 세웠다. 의빈·척신·수행한 백관들은 융복 차림으로, 유생들은 청금(靑衿) 복장으로 각각 외위에 나아갔다.

행사 시작 2각 전에 내명부와 외명부가 각기 예복을 갖추어 입고 외위로 나아갔다. 인의(引儀)가 수행한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가 배위(拜位)로 나아가게 하였다.

행사 시작 1각 전에 여관 등이 모두 내함(內閣)으로 나아갔다. 여관이 무릎을 꿇고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조금 뒤에 또 무릎을 꿇고서 ‘바깥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자궁이 예복 차림으로 나오자 여관이 앞으로 인도하였다. 악대가 여민락 령(輿民樂令)을 연주하였는데, 자리에 오른 다음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르자 연주를 그쳤다.

여집사가 내함(內閣)에 가서 무릎을 꿇고서 ‘대기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인도하여 배위(拜位)로 나아가게 했다. 여관이 ‘재배(再拜)’ 라고 말하자 악대가 낙양춘곡(洛陽春曲)을 연주하였다. 여관이 ‘국궁(鞠躬)’ ‘재배’ ‘흥(興)’ ‘평신(平身)’ 이라고 외치는 데에 따라 내명부와 외명부가 몸을 굽히고 두 번 절을 하고 일어나고 몸을 펴니 음악이 멎었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인도하여 각각 시위(侍位)로 나아가게 하였다.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을 인도하고 들어가 배위(拜位)로 나아가게 하였다. 여집사가 무릎을 꿇고서 ‘바깥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상이 융복(戎服) 차림으로 나오자 악대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다. 여집사가 앞에서 인도하여 배위(拜位)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게 하니 연주를 그쳤다. 악대가 낙양춘곡을 연주하였다. 상이 몸을 굽혔다가 절을 두 번 하고 일어나서 몸을 펴자 음악이 그쳤다. 상이 무릎을 꿇었다. 여관이 휘건(揮巾)을 올리라고 외치니 정리사가 장막 밖으로 가서 휘건을 바쳤다. 악대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다. 내시가 휘건을 전해 받아 여관에게 주었는데 여관이 전해 받아 자궁의 자리 앞에 올리니 음악이 그쳤다.

음식상을 올릴 때에 악대가 여민락 만(與民樂慢)을 연주하고 음식상을 다 올리자 연주를 그쳤다. 꽃을 올릴 때에 악대가 여민락 령(與民樂令)을 연주하고 다 올리자 연주를 멈췄다. 상이 엮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폈다. 여악공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와 발 바깥쪽 한복판에 멈춘 뒤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북쪽을 향해 서서 어제(御製)인 장락장(長樂章)을 불렀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성대한 연회는 태평 시대에나 있는 법, 오늘날 태평 시대의 기상이 넘쳐 흐르도다. 그 기상을 묻노니 어떤 것인가. 노인성(老人星)이 중천에 떠 밝게 빛나네. 봄철 장락궁(長樂宮)에 노인들 모여들고, 화봉인(華封人) 5809 처럼 축하하러 부인들 참석했네. 긴긴 봄날 장락궁에서 술잔 올리며, 세 차례나 축원을 올리웁니다. 자손에게 끼쳐주신 어머니 은혜, 그 무엇이 이보다 높으오리까. 복록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며 찬란하게 빛나웁니다. 함지(咸池)의 북소리에 운문(雲門)의 거문고, 신선주(神仙酒) 따라 올리면서 해마다 축원하오리다.” 하였다.

여집사가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까지 이르자 여관이 이어 인도해서 자궁의 술그릇을 놓은 남쪽까지 가 북쪽을 향해 서게 하니 악대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다. 여관이 술을 따른 뒤 무릎을 꿇고서 상에게 바치니 상이 술잔을 받아 자궁의 자리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술잔을 여관에게 주었다. 여관이 술잔을 넘겨받아 자리 앞에 놓았다. 상이 엮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펴니 연주를 그쳤다.

여관이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 이르니 여집사가 앞장서서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간 뒤 북쪽을 향해 서게 하였다. 상이 무릎을 꿇으니 여집사가 상의 배위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꿇어앉은 뒤 치사(致詞)를 대신 읽었는데, 그 내용에,

“국왕 모(某)는 삼가 건륭(乾隆) 60년 윤2월 13일의 경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효강 자희정선 휘목 혜빈(孝康慈禧貞宣徽穆惠嬪) 저하(邸下)께서는 우리 왕실의 아름다운 덕을 계승하시어 장수하는 복을 받으셨으니 복록은 자손에게 흘러 넘치고 경사로움이 어머니에게 미쳤습니다. 삼가 축하하는 자리에 모시고서 경건히 술잔을 따라 올리오니 어머니의 연세를 아는 이 기쁜 날 칭송하는 소리 높이높이 울려 퍼집니다.

아, 즐거운 이 잔칫날 만물이 모두 다 은혜를 입고, 화창한 봄날 맞이하여 하늘의 도우심에 보답합니다. 어머니는 더욱 오래 사시어 크나큰 복록 받을 것이며 태평 시대는 끝없이 이어져 가리이다. 경하하는 마음 누를 길 없어 삼가 만세를 기원하는 술잔을 올립니다.”

하였다. 【예문관 제학 이병정(李秉鼎)이 지어 올렸다.】

상이 엮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펴자 여집사가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까지 이르렀다. 여관이 이어 인도하여 전각 안의 욕위(褥位)로 나아갔다. 상이 무릎을 꿇었다. 여관이 자궁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분부를 내리소서.’ 하고 엮드렸다가 일어나서 서쪽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이에 분부를 내리기를 ‘전하와 경사를 함께 하겠다.’ 하고 자궁이 술잔을 드니 악대가 여민락의 천세만세곡(千歲萬歲曲)을 연주하였다. 여관이 나아가서 빈 술잔을 받아 자궁의 술그릇 탁자 위에 다시 놓자 음악이 그쳤다.

상이 엮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펴니 여관이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까지 이르렀다. 여집사가 앞장서서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이르렀다. 상이 무릎을 꿇었다. 여집사가 외치기를 ‘세 번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하니, 상이 세 번 머리를 조아렸다. 또 외치기를 ‘천세(千歲)를 불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손을 마주 잡고 이마 위에 올리며 ‘천세’ 라고 하였다. 또 외치기를 ‘천세를 불러야 합니다.’ 하니, ‘천세’ 라고 하였다. 또 외치기를 ‘거듭 천세를 불러야 합니다.’ 하니, ‘천천세’ 라고 하였다. 천세를 부를 때마다 명부

(命婦)와 여관(女官) 이하가 모두 선 자리에서 일제히 소리쳐 호응하고 악대가 낙양춘곡(洛陽春曲)을 연주하였다. 상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펴니 연주가 그쳤다.

여집사가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까지 이르렀다. 여관이 그 뒤를 이어 인도하여 내전 안 옥위(褥位)로 가서 서쪽을 향해 서게 하였다. 여집사가 의빈(儀賓)과 척신(戚臣)들을 나누어 인도해서 각각 자기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다. 상이 무릎을 꿇자 정리사(整理使)가 수건을 바쳤다. 악대가 여민락 령(與民樂令)을 연주하였다. 수건을 바치고 나니 연주가 그쳤다.

음식상을 차례로 올리니 악대가 여민락 령을 연주하였다. 음식상을 다 올리자 연주를 그쳤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의 음식상을 차리고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의 음식상을 차렸다. 여관과 여집사와 산화(散花)를 담당하는 자들이 백관에게 술과 음식을 차리고 꽃을 뿌렸다. 백관이 자리에서 나와 술을 다 마신 다음에 네 번 절을 하였다. 인의(引儀)가 수행한 백관을 인도하여 나왔다.

자궁에게 탕(湯)을 올렸는데, 전해 받아 올리는 절차는 음식상을 올릴 때의 의례와 동일하였다. 악대가 여민락 만(與民樂慢)을 연주하다가 탕을 다 올리자 연주를 그쳤다. 첫번째 술잔을 올릴 때 ‘선도(仙桃)를 바친다[獻仙桃]’는 정재(呈才)를 연희(演戲)하고 악대가 여민락의 환환곡(桓桓曲)을 연주하였다.

여관이 상을 인도하여 자궁의 술 탁자 앞으로 나아갔다. 여관이 장수를 축원하는 술을 따른 뒤 무릎을 꿇고 상에게 올리니 상이 술잔을 받아 자궁의 자리 앞으로 나아갔다. 여관이 외치기를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였다. 상이 무릎을 꿇고 술잔을 여관에게 주니 여관이 건네받아 자궁의 자리 앞에 올렸다. 자궁이 술잔을 들어 다 마신 다음에 술잔을 여관에게 주었다.

여관이 무릎을 꿇고 술잔을 받은 다음에 상의 술 탁자 앞으로 가서 술잔에 술을 따라 자궁에게 바쳤다. 자궁이 술잔을 받아 여관에게 주니 여관이 무릎을 꿇고 술잔을 받은 다음 상에게 올렸다. 상이 무릎꿇고 술잔을 받아 다 마신 다음 잔을 잡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술 탁자 앞에까지 오니 여관이 무릎을 꿇고 술잔을 받았다.

상이 자리로 돌아가 술잔을 돌리게 하였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에게 술잔을 돌리고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에게 술잔을 돌렸다. 상에게 탕을 올렸는데 건네받은 절차는 위에서의 의례와 같았다. 여관과 여집사가 분담하여 내명부·외명부 및 의빈·척신에게 탕을 공급했다. 정재(呈才)의 연희가 끝나면서 연주가 멎었다.

두번째 잔을 올릴 때 ‘금척(金尺)’이라는 정재와 ‘하늘의 밝은 명을 받고 황제의 은혜를 입었다[受明命荷皇恩]’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여민락의 청평악(淸平樂)을 연주하였다.

여관이 명부(命婦)를 인도하여 자궁의 술 탁자 남쪽으로 가서 북쪽을 향해 서게 하였다. 여관이 장수를 축원하는 술을 술잔에 따라 명부에게 주었다. 명부가 술잔을 받아 자궁의 자리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술잔을 여관에게 주었다. 여관이 건네받아 자궁의 자리 앞에 올리니 명부가 자리에 엎드렸다. 자궁이 술잔을 든 뒤 여관이 빈 술잔을 받아 명부에게 주니 명부가 술잔을 받아 자궁의 술 탁자 위에 다시 놓았다. 여관이 명부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세번째 잔부터 일곱번째 잔까지는 명부와 의빈·척신 중에서 자궁의 유지(有旨)를 받든 사람들이 차례로 술잔을 올렸는데, 그 절차는 위에서의 의례와 같았다. 의빈과 척신은 자궁에게 잔을 올린 다음에 상의 술 탁자로 가서 술을 따라 상에게 올렸는데, 상이 술잔을 들어 마신 다음 술잔을 주면 다시 술잔을 받아 술 탁자 위에 놓고 물러갔다.】 탕을 올리고 술잔을 돌리는 절차는 첫번째 잔을 올렸을 때의 의례와 같았다. 정재가 끝나면

서 음악도 멈췄다.

세번째 술잔을 올릴 때 ‘포구락(抛毬樂)’이라는 정재(呈才)와 ‘무고(舞鼓)’라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여민락(與民樂)의 오운개서조곡(五雲開瑞朝曲)을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멈췄다.

네번째 술잔을 올릴 때 ‘아박(牙拍)’이라는 정재와 ‘향발(響鉢)’이라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천세만세곡(千歲萬歲曲)을 향악(鄉樂)과 당악(唐樂)으로 번갈아가며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멈췄다.

다섯번째 술잔을 올릴 때 ‘학무(鶴舞)’라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여민락의 유황곡(惟皇曲)을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그쳤다.

여섯번째 술잔을 올릴 때 ‘연화대(蓮花臺)’라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여민락의 환환곡(桓桓曲)을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그쳤다.

일곱번째 술잔을 올릴 때에 ‘수명을 연장한다[壽延長].’는 정재를 연희하고, 악대가 여민락의 하운봉곡(夏雲峰曲)을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그쳤다.

처용무(處容舞)를 추자 악대가 정음악(井邑樂)과 여민락을 향악(鄉樂)과 당악(唐樂)으로 번갈아 연주하였다. 첨수무(尖袖舞)를 추자 악대가 낙양춘곡(洛陽春曲)을 연주하였다. 정재가 끝나자 연주도 그쳤다.

여악공(女樂工) 두 사람이 나와 발[簾] 밖의 한복판에 이르러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서 북쪽을 향해 선 다음 상이 지은 관화장(觀華章)을 불렀는데, 그 내용에,

“자궁의 덕 순일함이며, 대지(大地)와 같아 표현하기 어려워라. 말없이 은혜 널리 베푸심이며, 태평 시대 열리게 도와주셨도다. 온갖 복록이 모여들이며, 마치 강물처럼 흘러 넘치도다. 자손들 갈수록 번창함이며, 해마다 경사가 이어지도다. 북두성마냥 밝으심이며, 숭산(嵩山)처럼 높고 높도다. 보책(寶冊)에 상서(祥瑞)를 기록함이며, 봄날 잔치 열어 술을 따르도다. 아, 자궁의 덕 아름다워라, 이번에 회갑을 맞으셨도다. 화창한 이 시절 완상(玩賞)함이며, 만물이 어울려 화락하도다. 새로 지은 고을에서 기쁨을 누림이며, 집집마다 노랫소리 울려 퍼지네. 떠 오르는 저 해와 달처럼 천년토록 만년토록 오래 사소서.”

하였다. 여악공이 노래를 마치고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여관이 자궁의 앞에 나아가고 또 상의 앞에 나아가서 상을 치웠다. 악대가 여민락 만(與民樂慢)을 연주하였다. 여관 및 여집사가 명부 및 의빈·척신의 상을 치웠다. 음악 연주가 그쳤다.

여관이 ‘일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외쳤다. 여관이 상을 인도하여 발 밖에까지 이르자 여집사가 앞장서서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이르렀다.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을 인도해 내려와 배위로 나아가게 하였다. 악대가 낙양춘곡을 연주하였다. 상이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니 연주가 그쳤다. 여집사가 상을 인도하여 나가니 악대가 여민락령(與民樂令)을 연주하였다. 함문(閤門) 안에 이르니 연주를 그쳤다.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을 나누어 인도해서 나갔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나누어 인도해서 도로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니 악대가 낙양춘곡을 연주하였다. 내명부와 외명부가 몸을 굽혀 두 번 절을 하고 몸을 펴니 연주를 멈췄다. 여관이 자궁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식이 끝났다고 아뢰었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나누어 인도해서 나갔다. 자궁이 자리에서 내려오자 악대가 여민락령을 연주하고, 다시 함문 안에 이르자 연주를 멈췄다. 상이 직접 연희를 베푸는 의절(儀節)을 정하였는데 모두 7칙(則)으로 되어 있었다.

○乙未/御奉壽堂，進饌于惠慶宮。前一日，尙寢帥其屬，設慈宮座於行宮內殿北壁南向，印案於

座東，香案二於前楹左右。設御座於慈宮座東，拜位於階上北向，褥位於殿內當中北向。典贊設內外命婦侍位於前楹簾內，北上相向，拜位於殿前左右，外位於庭中，俱北向相對。又設儀賓、戚臣侍位於前楹簾外左右，北上相向，拜位於殿前左右，北上相對。典儀設陪從百官宣饌位於中陽門外，東西，北上相向，拜位於道之東西，北向相對。引儀設儀賓、戚臣外位於中陽門外，陪從百官外位於左翊門外。至是日，女官設司贊、典賓、女官位於簾內，典贊在其南稍後。女執事設左右通贊及代致詞女執事位於階間，贊唱在其南稍後分東西，俱北上。又設女伶先後唱樂章位於簾外北向，女執事及呈才女伶位於東西偏階，女執事分左右，北上相向，女伶北向相對執拍，女伶又在其前，女執事、女伶外位於庭中隔帳，工人位於帳外。女官設慈宮壽酒亭於前楹簾內近南，御酒亭於壽酒亭之前在東，命婦及儀賓、戚臣酒卓於侍位之南。又設進花盤卓於簾內在東，揮巾函卓次之，散花盤卓於簾外在西，花樽卓於階上東西，致詞案於御拜位之右。時至，整理大臣以下具戎服督諸衛，陳列於殿門外庭，儀仗於殿庭左右，繖扇、青蓋、紅蓋、旌節、鳳扇、雀扇各二於前楹簾外東西。前三刻，女官、女執事、女伶等各服其服，就外位，少頃各就位。整理使陳鼓樂於庭中帳外，儀賓、戚臣、陪從百官以戎服，儒生以青衿服，各就外位。前二刻，內外命婦各具禮服，就外位。引儀分引陪從，從百官入就拜位。前一刻，女官等俱詣內閣。女官跪，贊內嚴，少頃又跪，贊外備。慈宮具禮服，女官前導，樂作《與民樂令》，既陞座，鑪煙升，樂止。女執事詣內閣跪，啓中嚴。女官引內外命婦，入就拜位。女官曰再拜，樂作《洛陽春曲》。女官唱鞠躬、再拜、興、平身，內外命婦鞠躬、再拜、興、平身，樂止。女官引內外命婦，各就侍位。女執事引儀賓、戚臣，入就拜位。女執事跪，啓外辦。上具戎服出，樂作《與民樂令》。女執事前導，詣拜位北向立，樂止。樂作《洛陽春曲》，上鞠躬、再拜、興、平身，樂止。上跪。女官唱進揮巾，整理使詣帳外進巾。樂作《與民樂令》，內侍傳捧授女官，女官傳捧進于慈宮座前，樂止。進饌案，樂作《與民樂慢》，進訖樂止。進花，樂作《與民樂令》，進訖，樂止。上俯伏、興、平身，女伶二人進止簾外當中，分東西北向立，唱《御製長樂章》曰：

嘉會屬昇平，昇平今有象。厥象問如何？老人中天朗。含飴駐我長樂春，祝聖徠女華封人。春長長樂酌斗，華祝至三。壽母翼子詒孫，功何嵬穰穰？福祿光輝。咸池鼓，雲門琴，玉璣瓊液年年斟。

女執事導上至簾外，女官承引至壽酒亭南，北向立。樂作《與民樂令》，女官酌酒，跪進于上，上受爵詣慈宮座前，跪以爵授女官，女官傳捧置于座前，上俯伏、興、平身，樂止。女官導上至簾外，女執事前導，詣拜位北向立。上跪，女執事進上拜位前，北向跪，代致詞曰：

國王諱恭遇乾隆六十年閏二月十三日。孝康慈禧貞宣徽穆惠嬪邸下，嗣京室徽，膺海屋壽，福流文孫，慶邁魯母。恭陪于華，敬斟以斗，喜深知年，頌騰如阜。於樂斯讌，萬品咸囿，迎春之和，答天之祐。萱暉彌永，萸祿誕受，太平萬億，無疆悠久。不勝慶忭之至，謹上千千歲壽。【藝文提學李秉鼎製進。】

上俯伏、興、平身，女執事導上，至簾外，女官承引就殿內褥位，上跪。女官進慈宮座前跪曰：“宣旨。”俯伏、興、西向跪。宣旨曰：“與殿下同慶，”慈宮舉爵，樂作《與民樂》《千歲萬歲曲》，女官進受虛爵，復於壽酒亭，樂止。上俯伏、興、平身，女官導上至簾外，女執事前導至拜位。上跪，女執事唱三叩頭，上三叩頭。唱山呼，上拱手加額曰千歲，唱山呼，曰千歲，唱再山呼，曰千歲。凡呼千歲，命婦及女官以下，皆於立位齊聲應之。樂作《洛陽春曲》，上俯伏、興、再拜、興、平身，樂止。女執事導上至簾外，女官承引就殿內褥位西向立，女執事分引儀賓、戚臣各就位。上跪，整理使進巾，樂作《與民樂令》，進訖，樂止。次進饌案，樂作《與民樂令》，進訖，樂止。女官設內外命婦饌卓，女執事設儀賓、戚臣饌卓。女官、女執事、散花執事者宣酒饌，散花于百官，百官離位飲訖四拜，引儀引陪從百官出。進湯于慈宮，傳捧如進饌

案儀. 樂作《與民樂慢》，進訖，樂止. 第一爵，奏《獻仙桃》呈才，樂作《與民樂》《桓桓曲》，女官導上詣壽酒亭，女官酌壽酒，跪進于上，上受爵，詣慈宮座前. 女官唱跪，上跪以爵授女官，女官傳捧，進于慈宮座前，慈宮舉酌進訖，以爵授女官. 女官跪受爵，詣上酒亭，以盞酌酒，進于慈宮，慈宮受盞授女官，女官跪受盞進于上，上跪受盞，舉飲訖，仍執盞，俯伏、興、平身，至酒亭，女官跪受盞，上還就座. 行酒，女官行內外命婦酒，女執事行儀賓、戚臣酒. 進湯于上，傳捧如上儀. 女官、女執事分供湯于內外命婦及儀賓、戚臣，呈才訖，樂止. 第二爵，奏《金尺》呈才、受明命荷皇恩呈才，樂作《與民樂》《清平樂》，女官引進命婦，詣壽酒亭南，北向立. 女官以爵酌壽酒，授命婦，命婦授爵，詣慈宮座前跪，以爵授女官，女官傳捧，進于慈宮座前，命婦俯伏. 慈宮舉爵，女官受虛爵，以授命婦，命婦受爵，復於壽酒亭，女官引命婦還復位. 【第三爵至七爵，命婦及儀賓、戚臣中，稟承慈旨，以次進爵如上儀. 儀賓、戚臣則進爵于慈宮，次詣酒亭，酌酒進于上，上舉爵飲訖授之，還捧復于酒亭而退.】進湯行酒，如第一爵儀. 呈才訖，樂止. 第三爵，奏《拋毬樂》呈才、《舞鼓》呈才，樂作《與民樂》《五雲開瑞朝曲》，呈才訖，樂止. 第四爵，奏《牙拍》呈才、《響鈸》呈才，樂作鄉唐交奏《千歲萬歲曲》，呈才訖，樂止. 第五爵，奏《鶴舞》呈才，樂作《與民樂》《惟皇曲》，呈才訖，樂止. 第六爵，奏《蓮花臺》呈才，樂作《與民樂》《桓桓曲》，呈才訖，樂止. 第七爵，奏《壽延長》呈才，樂作《與民樂》《夏雲峯曲》，呈才訖，樂止. 處容舞進，樂作鄉唐交奏《井邑樂》《與民樂》，尖袖舞進，奏《洛陽春曲》，呈才訖，樂止. 女伶二人進至簾外當中，分東西北向立，唱御製《觀華章》曰：

慈德之純，厚載難名. 默運弘慈，佑啓太平. 百祿是適，其至如川. 子孫振振，吉慶年年. 如斗之邵，如嵩之高. 瑤冊紀瑞，春酒燕毛. 於休慈德，撫茲花甲. 時觀于華，物采匪匱. 樂此新邑，謠頌戶墉. 維萬維億，日月恒升.

唱訖，降復位. 女官進慈宮前，又進上前撤案. 樂作《與民樂慢》，女官及女執事撤命婦及儀賓、戚臣卓，樂止. 女官唱可起，女官導上出至簾外，女執事前導，至拜位. 女執事引儀賓、戚臣，降就拜位，樂作《洛陽春曲》，上鞠躬、再拜、興、平身，樂止. 女執事導上出，樂作《與民樂令》，至閣內，樂止. 女執事分引儀賓、戚臣出，女官分引內外命婦，還就拜位，樂作《洛陽春曲》，內外命婦鞠躬、再拜、興、平身，樂止. 女官進當慈宮座前，跪白禮畢，女官分引內外命婦出. 慈宮降座，樂作《與民樂令》，還至閣內，樂止. 上親定進饌儀，凡七則.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3일(을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7언 4운의 율시를 내리면서 화답시를 지어 올리라고 명하다

상이 칠언(七言) 4운(韻)의 율시(律詩)를 지어 내리면서 신하들에게 화답하는 시를 지어서 올리라고 명하였다.

○下御製七言四韻律，命諸臣賡進。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3일(을미)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연회의 반열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비단 등을 주고 수원부 성 내외에 급복을 명하다

연회를 베풀 때 반열에 참여한 노인으로서 70세 이상이 되는 자 및 61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각각 비단 1필(匹)씩을 하사하는 동시에 누런 명주를 주어 구장(鳩杖)에 매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 현릉원(顯隆園) 밑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2년 동안 더 급복(給復)해 주고 수원부

(水原府) 성 내외에 사는 백성들에게 1년 동안 더 급복해 주도록 하였다. 하교하기를,

“장락당(長樂堂)에서 술잔을 받들어 올리고 낙남헌(洛南軒)에서 술자리를 베풀면서 경건히 북두성 자루에 술을 붓고 남산(南山)처럼 장수하시기를 축원하였다. 이튿날에는 또 노인들을 섬돌과 뜰 사이에 불러 모아 자궁의 덕에 흠뻑 배부르게 하였으니 오늘 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아래에서 이미 화봉인(華封人)의 축하를 올렸으니 위에서 어찌 홍범구주(洪範九疇)에 입각한 선물을 아낄 수 있겠는가.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이하 나이 70세 이상인 노인들과 61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각각 비단 1필씩을 하사하는 동시에 누런 명주를 주어 구장(鳩杖)에 맬 수 있도록 하고, 본부(本府)에서 연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각각 한 등급씩 가자해 주도록 하라.

한 고조(漢高祖)는 풍패(豐沛)에 대해서, 그리고 광무제(光武帝)는 남양(南陽)에 대해서 각각 탕목읍(湯沐邑)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부역을 면제시켜 주었었는데, 이 일이 국사(國史)에 기록되어 아름다운 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더구나 이 화성(華城) 지역은 임금의 행차하여 머물렀던 곳인데다 선조의 묘소가 있는 곳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우리 자궁을 모시고 올 적에 길 양쪽으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처럼 둘러섰었고 임금의 행차를 보는 기쁨과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려는 정성을 안고서 곳곳마다 노래가 거리에 흘러 넘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감회를 이야기하였으니, 만약 지금과 같은 때에 특별히 혜택을 베풀어주지 않는다면 장차 무슨 방법으로 이 지역의 부로와 자제들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 줄 수 있겠는가. 앞서 이미 급복(給復)해 준 이외에 현릉원 밑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2년을 더 급복해 주도록 하고 성 안팎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도 1년을 더 급복해 주도록 하라.

그런데 남의 노인에게까지 은혜가 미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네 가지보다 먼저 행해야 하는 일로서 이것이 바로 선왕(先王)께서 확대 적용하여 은혜를 베풀던 인정(仁政)이었다고 하겠다. 이번의 일을 보건대 시기로 말하면 자궁께서 회갑이 되시는 해이고 절기로 말하면 따듯한 봄철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때로서 자궁께서 건강하실 뿐더러 성대한 예식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므로 산천 역시 영광을 입고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에 자궁의 마음을 우러러 체득하여 크나큰 은혜를 대대적으로 베풀어서 노인들을 일단 은혜롭게 대접한 뒤에 문관의 시험과 무관들의 훈련을 또한 사열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저 누더기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유독 같이 즐기고 기뻐하는 가운데에서 소외된다면 어찌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받들어 행하는 뜻이 될 수 있겠는가. 내일 신평루(新豐樓)에 가서 사민(四民)에게 쌀을 나누어 주어 백성들을 구제하는 동시에 거리가 조금 먼 마을에는 승선(承宣)을 나누어 보내 창고를 열어서 먹여주도록 할 것이다. 지금 이때에 죽을 먹이고 전대를 채워줌으로써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격양가(擊壤歌)를 부르게 하는 것은 털끝만큼이라도 모두가 자궁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니, 백성이 아무리 식견이 없고 무지하다 하더라도 어찌 기쁜 마음으로 서로들 이야기하며 크나큰 은혜에 감격해 자궁의 덕을 칭송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술을 따르며 오래 사시기를 축원하는 것이 또한 나의 오늘 심정과 같지 않겠는가.

이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건대 인정(仁政)이란 은혜를 넓혀가는 데에 있을 따름이니, 맹자(孟子)가 말한 바 ‘이 마음을 들어 저쪽에 가해준다.’ 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하겠다.

그러니 이제 화성 한 고을에 시행한 것을 7도(道)와 양도(兩都)에 넓혀서 시행해야 하리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다. 만약 이번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화성 한 고을에만 미치고 팔



도(八道)와 양도에는 미치지 않게 되거나 금년 1년만 이렇게 행하고 천년 만년토록 행해지지 않게 한다면, 이것을 어찌 넓혀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정리소(整理所)를 설치한 예가 옛날에 언제 있더라도 했던가. 이는 참으로 번거로운 폐단을 없애면서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경상 비용을 축내지 않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위로는 대내(大內)의 음식물 공급에서부터 중간으로는 수행한 관원들의 노자와 아래로는 군마(軍馬)와 여도(輿徒)의 식량·사료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리소에서 마련해 내도록 한 것이니, 그래서 10만 폐미의 돈을 특별히 내려주어 그런대로 충당하게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만한 액수를 가지고 이만한 일을 치뤄내자면 오히려 부족하지나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제 행차를 서울로 돌리려 하는 시점에서 수형(水衡)에 아직 남은 것이 있게 되었다. 이를 대농(大農)에 귀속시켜 몇 달치의 비용으로 쓰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전국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데에 쓰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 액수대로 곡물을 마련하여 ‘을묘년 정리곡(整理穀)’이라 명명하고, 3백 주현(州縣)에 나누어 유치(留置)시킨 다음 매년 이자를 취해 늘려나갈 경우 거의 수만 포(包)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것으로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자궁이 베푸는 은혜를 입게 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저축하여 영구히 전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이 곡물을 가지고 농사짓고 수확하여 공사(公私) 간에 모두 풍요롭게 쓰게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은혜를 넓혀 시행하는 뜻이 얼마나 크게 되겠는가. 아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그 뜻을 따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그 뜻을 따르는 것으로는 은혜를 널리 베푸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아, 그대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신하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알아서 잘 알아듣고 삼가 이 일을 준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命進饌時參班老人，七十以上及六十一歲人，各賜帛一匹，仍予黃紬繫鳩杖。園底居民，加二年給復，府城內外，加一年給復。教曰：“奉觴長樂之堂，置酒洛南之軒，敬斟北斗，拜獻南山。翌又來爾群老于階于庭，飽以慈德，今夕以永。下既進華封之祝，上豈惜箕疇之錫乎？老人領議政洪樂性以下，年七十以上及六十一歲人，各賜帛一匹，仍予黃紬，以佐鳩杖之繫，本府與宴者，各加一資。漢高之於豐沛，光武之於南陽，猶以湯沐邑特賜之復，國史書之，傳以爲美事。矧茲華城之爲地，鑾蹕之所駐臨，珠丘之所奉安？陪我慈宮而至，夾路觀者，堵牆如也，瞻旄之喜，就日之誠，處處衢謠，萬口同辭。若在于今，不別施惠澤，將何以大慰是地父老子弟？前此已給復外，園底居民特加二年，城內外居民加一年。及人之老，先此四者，先王推恩之仁政也。今行以其時，則流虹回甲之年，陽春布惠之序，慈候康寧，縟儀順成，榮光所被，山川增輝。於是乎仰體慈心，誕敷洪恩，耆老已惠養矣，文武亦試閱矣。惟彼衣鶉形鵠者，獨阻於同樂均歡之中，則豈所以對揚天休之意？明日御新豐樓，頒米于四民賑民，分命承宣，就道里稍遠坊曲，發廩以饋之。此時之饘斯橐斯，脫填壑而爲擊壤，秋毫皆慈宮之賜。民雖不識不知，豈不欣欣然相告，含洪恩而頌慈德？南山北斗之祝，亦如予今日之心乎？因此而思之，仁政在乎推之而已。孟子所謂舉斯心，加諸彼者是爾。今以華城一府，推之七道兩都，又可知矣。今茲施惠，只及於華城一府，而不及於八道兩都，只行於今年一年，而不行於千年萬年，是豈曰推之云乎？整理所之設，古豈有哉？誠欲祛煩而省弊，錙銖不藉於經用，上焉而內廚供給，中焉而從班盤纏，下焉而軍馬輿徒之糧芻芣豆，皆令整理辦出，此所以十萬緡錢之另行拮据者也。以若數爻，較若策應，猶慮夫不足，而鑾輿將旋，水衡有贏。與其歸之大農，爲數月之用，曷若覃施諸路？稱此數作爲穀物，名之曰乙卯整理穀，分置三百州縣，計年取剩，衍而至幾萬萬包，俾邦內黎庶，咸被慈覆，藏之無盡，傳之悠久。又以是穀，耕之種之，收之獲之，以公以私，如京如坻，則推之義，大矣哉！愛親莫尚於順志，順志莫尚於廣恩。咨爾有司之臣，知予至意，明聽恪遵。”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윤2월 13일(을미)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사민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기민에게 죽을 먹여주다

신풍루(新豐樓)에 거둥하여 사민(四民)에게 쌀을 나눠주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먹여주었다. 【수원부의 사민 5백 39구(口)에게 미곡 1백 98석(石) 10두(斗)를 주고, 진휼(賑恤) 대상인 백성 4천 8백 13구에게 미곡 1백 69석 9두(斗) 7승(升)과 소금 12석 12두 9승 9합(合)과 죽을 쑤 미곡 9석 9두 2승과 미역 9백 25립(立)과 간장 1석 12두 7승 4합을 주었다】

○丙申/御新豐樓，賜四民米·饋飢民粥。【水原府四民五百三十九口，米一百九十八石十斗，賑民四千八百十三口，米一百六十九石九斗七升·鹽十二石十二斗九升九合·粥米九石九斗二升·甘藷九百二十五立·良醬一石十二斗七升四合】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4일(병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낙남헌에 거둥하여 양로연을 베풀다

낙남헌(洛南軒)에 거둥하여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다.

하루 전날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행궁(行宮) 정전(正殿)의 북쪽 벽에 남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정리소(整理所)에서 악대(樂隊)를 앞뜰의 남쪽 가까운 곳에 북쪽을 향하여 진열해 놓고, 선전관이 깃발드는 자리를 서쪽 섬돌 위 동쪽 가까운 곳에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본 고을에서 노인들의 좌석을 낙남헌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였다.

행사 당일에 상이 낙남헌으로 가서 자리에 오르자 선전관이 깃발을 들었다. 그러자 악대가 여민락 령(與民樂令)을 연주하고 향로에 연기가 피어오르자 연주를 그쳤다. 근시(近侍)와 일을 집행하는 관원들이 먼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행차를 따라온 노인인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등 15인과 일반 서민인 노인 3백 74인이 차례로 뜰에 들어왔다. 찬의(贊儀)가 ‘국궁(鞠躬)’ ‘재배(再拜)’를 외쳤다. ‘흥(興)’ ‘평신(平身)’에 이르렀을 때 노인들이 지팡이를 놓고 몸을 굽혔는데 이때 악대가 낙양춘곡(洛陽春曲)을 연주하였다. 노인들이 절할 때 일좌(一坐)가 두 번 절하였는데 일어나 몸을 펴자 연주가 그쳤다.

인의(引儀)가 전(殿)에 올라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해서 동쪽과 서쪽 섬돌로 올라와 들어오려 할 즈음에 상이 이르기를,

“나도 노인들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좌탑(座榻)을 악차(輿次)의 앞에 설치함으로써 나이 많은 이를 높이는 뜻을 보여 주도록 하였다.

홍낙성·채제공(蔡濟恭)·김이소(金履素)·이명식(李命植)·이민보(李敏輔)·심이지(沈頤之)·이조원(李祖源)·서유신(徐有臣)·조운형(曹允亨)이 차례차례 지팡이를 짚고 전각으로 올라왔다. 통례(通禮)가 무릎을 꿇고 상에게 아뢰면서 노인들을 위해 일어나라고 청하였다. 상이 탑(榻) 위에서 일어섰다가 도로 자리에 올라 앉았다. 그리고 누런 명주 수건을 나누어 주어 노인들의 지팡이 손잡이에 매게 하고 각각 비단 1필씩을 하사하였다.

악사(樂師) 2인이 동쪽과 서쪽 섬돌로 올라와 기둥 밖까지 와서 멈춘 뒤 북쪽을 향해 서서 화일곡(化日曲)을 불렀는데, 그 내용에,

“길고 긴 봄날, 지팡이 짚고 늙은이들 천천히 오네. 조정에서 뽑혀 온 신하도 있고 시골에서 온 노인도 섞여 있구나. 노인들 헝클어진 누런 머리칼, 임금이 웃으며 바라보시네. 그대들 어찌 알랴, 자궁이 내려주신 은택인 것을.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의 자궁, 어느새 회갑을 맞이하셨네. 그 교화 두루두루 펼쳐졌나니, 집마다 나이 많은 늙은이일세. 임금님 어버이 뜻을 받들어 조상의 묘소를 찾아 왔어라. 성대한 연회 차려 드리니, 한 고을 온통 그 은혜 입었도다. 노인들 실컷 먹고 취하여 절하며 나뵈대로 정성 바치네. 바치는 그 정성 무엇이던가, 부디 오래 사시도록 비는 것일세.” 하였다. 【우의정 채제공이 지었다.】

상이 거문고와 비파의 연주를 명하니, 악공과 가인(歌人)이 섬돌에 올라와서 먼저 천보(天保)를 연주한 다음에 관저(關雉)와 녹명(鹿鳴)을 연주하였다. 정리사(整理使)가 수건과 술그릇을 올리니 악대가 여민락 령(與民樂令)을 연주하고 울리기를 마치자 연주를 그쳤다. 음식을 올리니 악대가 여민락 만(與民樂慢)을 연주하고 일을 진행하는 자들이 노인들의 음식을 차리자 연주를 그쳤다. 악대가 여민락 령을 연주하니 일을 진행하는 자들이 노인들에게 꽃을 뿌렸으며 그 일이 끝나자 연주도 그쳤다. 상이 이르기를,

“백발 노인들이 자리에 가득하고 검버섯 돋은 이들이 뜰을 온통 채웠으니, 이날 이 저녁이야말로 노인들 세상이라 하겠다. 어제 모두에게 꽃을 꽃아주기는 하였다마는 오늘 반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꽃을 하나씩 더 꽃아줌으로써 보통이 아닌 성대한 모임임을 알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정리사가 첫번째 잔을 올리려 하자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이와 같은 경사스러운 모임을 맞이하여 선물을 주시는 은혜가 신들에게까지 미쳤으므로 구구하나마 오래 사시기를 축원하고 싶은 마음이 배나 더 절실해집니다. 술잔을 따라 올리며 축하드리는 의리를 따라서 만세를 불렀던 예(禮)를 본받고 싶습니다.”

하니, 상이 좋다고 하였다. 흥낙성이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게 늙은이들 중에서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오래 사시기를 축원하며 올리는 술잔을 신이 가장 먼저 바쳐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매우 좋다. 경이 맨 먼저 하고 그 다음은 우상 그 다음은 영돈녕, 그 다음은 판부사 이하 3중신(重臣)이 각각 한 잔씩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흥낙성이 잔을 올리며 만세를 부르니 악대가 낙빈악(樂賓樂)의 녹명(鹿鳴)·천보곡(天保曲)을 연주하였다. 상이 일어나서 잔을 받았다. 채제공이 두번째 잔을 올리며 만세를 부르니 악대가 낙빈악의 관저(關雉)·작소(鵲巢)를 연주하였다. 김이소가 세번째 잔을 올리며 만세를 부르니 악대가 낙빈악의 남유가어(南有嘉魚), 남산유대곡(南山有臺曲)을 연주하였다. 이명식과 이민보와 심이지가 차례로 잔을 올리며 만세를 부르니 악대가 향악(鄉樂)과 당악(唐樂)을 번갈아 연주하였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오늘의 성대한 행사는 천 년을 가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태평성대에 늙은이들이 오래 산다는 말을 옛 글에서나 보다가 지금 다행히 직접 보게 되었으니, 기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수하게끔 변화된 것도 자궁의 덕에 말미암은 것이고 노인들이 배불리 먹고 취하게 된 것도 우리 자궁께서 내려주신 것이니, 오늘 노인들이 술잔을 올리며 오래 살기를 축원하는 것 모두를 자궁의 덕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어 상이 직접 지은 시(詩) 한 편을 써서 내려 흥낙성에게 낙남헌(洛南軒)에 게시하도록 하고 연회에 참석한 신하들에게 화답하는 시를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음식을 사받은 노인들이 모두 일어나 춤을 추며 만세를 불렀다. 노인들의 음식 상을 치우라고 명하

였다. 이에 남은 음식들을 각기 싸가지고 나갔다가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오니 악대가 낙양춘곡(洛陽春曲)을 연주하였다. 노인들이 절을 하자 일좌(一坐)가 재배를 하였으며 일어나 몸을 펴기를 처음 했던대로 하자 연주를 멈췄다. 통례(通禮)가 무릎을 꿇고서 의식이 끝났음을 아뢰었다.

○御洛南軒，行養老宴。前一日，掖庭署設御座於行宮正殿北壁南向，整理所陳鼓樂於前庭近南北向，設宣傳官舉旗位於西階上近東西向，本官設群老次於洛南軒東西。至是，上詣洛南軒陞座，宣傳官舉旗，樂作《與民樂令》，爐烟升，樂止。近侍及執事官先行四拜，隨駕老人領議政洪樂性等十五人、士庶老人三百七十四人以次入庭。贊儀唱鞠躬、再拜，至興、平身，群老釋杖鞠躬，樂作《洛陽春曲》，拜，一坐再拜，至興、平身，樂止。引儀分引群老應陞殿者，由東西階陞，將入，上曰：“予當爲群老興。”設座榻於幄次之前，以示尊年之意。洪樂性、蔡濟恭、金履素、李命植、李敏輔、沈頤之、李祖源、徐有臣、曹允亨以次扶杖陞殿。通禮跪，啓請爲群老興，上興立於榻上，還陞座。分頒黃紬巾，使群老繫杖頭，各賜帛一段。樂師二人陞自東西階，進止楹外，北向立，唱《化日曲》曰：

化日遲遲，鳩杖徐徐。或抽朝籍，或從村閭。黃髮鬢髻，天笑以視。汝等豈知？寔慈宮賜。慈宮荷天，周甲載屆。用敷厥庶，戶者家艾。王庸順志，奉省珠丘。既進寶饌，惠咸一州。群老醉飽，拜稽獻芹。獻芹伊何？北斗南山。【右議政蔡濟恭撰。】

上命奏琴瑟，工歌登階，先奏《天保》，次奏《關雎》、《鹿鳴》。整理使進巾酒器，樂作《與民樂令》，進訖，樂止。進膳，樂作《與民樂慢》，執事者，設群老饌，樂止。樂作《與民樂令》，執事者，散群老花訖，樂止。上曰：“脛眉皓首，濟濟登筵，黃耇台背，于于盈庭。此日此夕，眞箇壽域。昨日雖皆簪花，今日參班者，宜添一花，以識不常有之盛會也。”整理使將進第一爵，樂作，濟恭曰：“當此慶會錫類之恩，至於及臣等區區之忱，倍切崗陵之祝，願遵稱兕之義，以效山呼之禮矣，”上可之。樂性曰：“臣忝居群老之首，南山、北斗之卮，臣當先進矣。”上曰：“卿言儘好。卿其先之，其次右相，其次領敦，其次判府事，以下三重臣，各進一爵，可也。”樂性進爵山呼，樂作《樂賓樂》《鹿鳴》、《天保曲》，上興受爵。濟恭進第二爵山呼，樂作《樂賓樂》《關雎》、《鵲巢》。履素進第三爵山呼，樂作《樂賓樂》《南有嘉魚》、《南山有臺曲》。命植、敏輔、頤之以次進爵山呼，樂作鄉唐交奏，濟恭曰：“今日盛舉，千載所稀。春臺壽域，古聞其語，今幸親見，不勝懼忭矣。”上曰：“壽考之化，由於慈德。群老醉飽，亦我慈宮之賜也。今日群老之稱觴上壽，皆歸之慈宮也。”仍書下御製詩一篇，命樂性書揭于洛南軒，命與筵諸臣廣進。賜饌，群老皆起舞，呼千歲。命撤群老饌，各收裹膳餘而出，俱復拜位。樂作《洛陽春曲》，群老拜，一坐再至興、平身如初，樂止。通禮跪禮畢。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4일(병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옹성·장안문·방화수류정·용연 등을 두루 관람하다

상이 옹성(甕城)을 두루 관람하고 장안문(長安門) 누각에 올라갔다가 도로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으로 가서 용연(龍淵)을 굽어본 뒤에 도로 낙남헌 길을 따라 안으로 돌아왔다.

○上周覽甕城，上長安門樓，還詣訪花隨柳亭，俯覽龍淵，還從洛南軒還內。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4일(병신)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득중정에서 활을 쏘고 매화포를 관람하다

상이 득중정(得中亭)에서 활을 쏘고 매화포(埋火砲)를 관람하였다.

○御射于得中亭，觀埋火砲。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4일(병신) 4번째기사>

### 정치/왕실

#### 혜경궁을 모시고 행차를 서울로 돌리다

상이 혜경궁(惠慶宮)을 모시고 행차를 서울로 돌렸다. 사근(肆覲) 행궁에서 잠시 머물러 점심 수라를 들고 밤에 시흥(始興) 행궁에서 유숙하였다.

○丁酉/上陪惠慶宮回鑾，晝停于肆覲行宮，夕次始興行宮。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5일(정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행차가 시흥을 지날 때 부모를 불러 백성의 고통을 물어보다

상이 혜경궁을 모시고 용양(龍驤) 봉저정(鳳翥亭)에서 잠시 머물러 점심 수라를 들고 환궁하였다. 행차가 시흥을 지날 때 부모(父老)를 불러 보고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하교하기를, “그냥 보통으로 행차가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풀 방도를 생각해 주기 마련이다. 그런데 더구나 오늘의 경우는 자궁의 행차를 모시고서 재차 시흥 행궁에서 묵기까지 하였고 돌아가는 길이 모두 편안하기만 한데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경사스럽고 다행스럽게만 느껴지는 나의 마음으로 볼 때 백성들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시흥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요역(徭役)을 견감해 주고 폐단을 제거해 줌으로써 자궁의 은혜를 펼쳐 보여주는 동시에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 더구나 행차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건대 그저 행차의 위의(威儀)를 구경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은혜를 입고자 기대하는 심정들이라 할 것이다. 그들이 이미 행차를 바라보았고 나 역시 그들을 불러 물어보게 된만큼 정말 고질적인 병폐와 제거해야 할 폐단이 있다면 숨김없이 모두 진술토록 하라.” 하고, 이어 지난해 추수 때 상환 기한을 연기시켜 주었던 환곡(還穀)을 일체 탕감해 주라고 명하였다.

○戊戌/上陪惠慶宮，晝停于龍驤鳳翥亭，還宮。駕過始興，召見父老詢瘼。教曰：“尋常駕過之地，必思施惠之方，況於今日陪奉慈駕，再度經宿於始興行宮，回鑾萬安，以予慶幸之心，何惜於民？爲始興民，必欲蠲其徭役，祛其弊瘼，以布慈恩，以副民望。況群民望幸之心，非徒欣瞻羽旄也，冀有沾溉也。爾既望幸，予既俯詢，如有切痼之瘼、可祛之弊，悉陳無隱。”仍命前秋還穀之停退者，一併蕩滅。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6일(무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을묘원행에 공이 있는 수원부사 등 신하들에게 시상 시상하라고 전교하다

하교하였다. “(...) 총리(摠理)한 대신 의정부 우의정 채제공(蔡濟恭)과 술을 따라 올린 대신 의정부 영의정 홍낙성(洪樂性)과 광은 부위(光恩副尉) 김기성(金箕性)에게 각각 구마(廐馬) 1필(匹)을 면급(面給)하라. 정리소 당상인 행 사직(行司直) 심이지(沈頤之)와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과 호조 판서 이시수(李時秀)와 행 부사직 서유대(徐有大)·서용보(徐龍輔)·윤행임(尹行恁)에게 각각 숙마(熟馬) 1필을 면급하라. 음식상을 담당한 당상인 경기

감사 서유방과 호조 판서 이시수와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와 행 부사직 서유대, 그리고 수건을 올린 당상인 행 부사직 서용보와 꽃을 올린 당상인 행 부사직 윤행임, 그리고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 심이지 등에게는 모두 반숙마(半熟馬) 1필을 사급(賜給)하라.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차등있게 시상하라.”

○敎曰: “(…) 摠理大臣議政府右議政蔡濟恭·進酌大臣議政府領議政洪樂性·光恩副尉金箕性各廐馬一匹面給. 整理堂上行司直沈頤之·京畿監司徐有防·戶曹判書李時秀·行副司直徐有大·徐龍輔·尹行恁各熟馬一匹面給. 饌卓檢學堂上京畿監司徐有防·戶曹判書李時秀·水原留守趙心泰·行副司直徐有大·進巾堂上行副司直徐龍輔·進花堂上行副司直尹行恁·掌樂提調沈頤之皆半熟馬一匹賜給, 其餘施賞有差.”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6일(무술) 4번째기사>

### 정치/왕실

#### 자궁의 탄신일에 진홀할 일로 하교하다

하교하였다. “경사스러운 탄신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경축하는 정성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데, 이 경사를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더구나 화성(華城) 백성들에게 이미 행했었으니 서울에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18일 자궁께 음식상을 차려 올리는 예식을 마친 뒤에 홍화문(弘化門)에 가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미곡을 나누어 주어야 하겠다. 이번에 뽑힌 민호 가운데 가장 빈한한 가호를, 선혜청 도제거(宣惠廳都提舉)와 삼공(三公)이 각방(各坊)의 존위(尊位)를 엄히 신칙하여 진홀청에 뽑아 보고하게 한 다음, 진홀청 당상관 및 경조윤(京兆尹)이 데리고 와서 명령을 기다리도록 하라.”

○甲午/敎曰: “慶辰在邇, 欲示祝慶之忱, 豈有過於同慶乎? 況已施於華城民人者, 豈可不爲於京中乎? 十八日慈宮進饌禮成後, 臨弘化門, 賜米飢民. 今番抄戶中, 最貧殘之戶, 宣惠廳都提舉·三公, 嚴飭各坊尊位, 抄報賑廳, 令賑堂及京兆尹, 率領待令.”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6월 15일(갑오)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명정전에 거동하여 치사와 전문과 표리를 전하고, 내전에 가서 예를 행하다

명정전에 거동하여 치사(致辭)와 전문(箋文)과 표리(表裏)를 친히 전해주고, 내전(內殿)에 가서 직접 올리는 예(禮)를 행한 뒤 자궁(慈宮)에게 음식상을 차려 올렸다.

하루 전에 상침(尙寢)이 내전에 자리를 설치하였다. 자궁의 자리는 남쪽을 향해 설치하고, 대전(大殿)의 자리는 자궁 자리의 동쪽에 서쪽을 향해 설치하고, 중궁전(中宮殿)의 자리는 자궁 자리의 서쪽에 동쪽을 향해서 설치하였다.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시위(侍位)는 자궁 자리의 남쪽에 서쪽 가까이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하고, 또 의빈(儀賓)과 척신(戚臣)의 시위는 앞 기둥의 발[簾] 바깥에 좌우로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여 서로 향하게 하였다.

이날 상침이 대전의 배위(拜位)를 내전 동쪽 뜰 섬돌 위에다 동쪽 가까이 북쪽을 향해서 설치하고, 중궁전의 배위를 내전 서쪽 뜰 섬돌 위에다 서쪽 가까이 북쪽을 향해서 설치하였다. 그리고 의빈과 척신의 배위를 대전의 판위(版位) 뒤에 설치하고, 내명부와 외명부의 배위를 중궁전의 판위 뒤에 설치하였다. 또 내명부·외명부 및 의빈·척신의 외위(外位)를 동쪽과 서쪽 뜰 가운데에 설치하고, 사찬(司贊)과 전빈(典賓)의 자리를 발 안에 설치하고, 전

언(典言)과 전찬(典贊)의 자리는 남쪽으로 약간 물려서 설치하고, 찬창(贊唱)과 여집사(女執事)의 자리는 내전 아래 동쪽 섬돌 위에도 서쪽 가까이 북쪽을 향해서 설치하였다.

상식(尙食)이 수주정(壽酒亭) 둘을 마루 안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고, 또 주정(酒亭) 둘을 기둥 밖에 설치하고, 명부 및 의빈·척신의 주탁(酒卓)을 섬돌 위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였다. 내명부와 외명부가 각각 예복(禮服)을 갖추고 결채 밖에 집결하였다.

2각(刻) 전에 전빈(典賓)이 명부(命婦) 및 내빈(內賓)을 인도하여 외위(外位)로 가고, 여집사(女執事)가 의빈(儀賓)과 척신(戚臣)을 인도해 들어와 외위로 나아갔다.

1각전에 중궁전(中宮殿)이 적의(翟衣) 차림에 머리 장식을 하고 상궁(尙宮)이 앞서 인도하는 가운데 나와 소차(小次)에 들어갔다. 상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여집사가 인도하는 가운데 나와 소차에 들어갔다. 자궁(慈宮)이 적의 차림에 머리 장식을 하고 상궁이 앞서 인도하는 가운데 나와 자리에 올랐다.

전빈(典賓)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인도하고,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을 인도하고 각각 들어와 배위(拜位)로 나아갔다. 상궁이 인도하는 가운데 중궁전이 소차에서 나와 배위로 나아간 뒤 북쪽을 향해 섰다. 여집사가 인도하는 가운데 전하가 소차에서 나와 배위에 간 뒤 북쪽을 향해 섰다. 여집사와 사찬(司贊)과 찬창(贊唱)의 인도에 따라 상이 재배(再拜)한 뒤 무릎을 꿇고 중궁전이 재배한 뒤 무릎을 꿇었으며 상식(尙食)이 수건과 음식상을 올리기를 기다렸다가 일어났다.

여집사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북쪽을 향해 서서 상이 지은 노래의(老萊衣) 악장(樂章)을 불렀는데, 그 내용에,

“노래자(老萊子) 색동옷 입게 됐으니 만년토록 이 경사 빛이 나리라. 날이 밝았다고 시간을 알려움에 원량(元良)과 함께 전당(殿堂)에 올랐도다. 오늘은 자궁께서 회갑을 맞으신 날 만백성이 장수를 축원하누나. 맛있는 술 잔에 철철 넘치고 선도(仙桃) 복숭아 안주로 올렸다네. 한잔 한잔 또 한잔 자궁께 드리나니, 한잔에 1만 년씩 3만 년을 사소서.”

하였다. 다 부르고나서 여집사가 대전(大殿)을 인도하여 기둥 밖까지 이르자 여관(女官)이 이를 받아 인도하여 내전(內殿) 동쪽의 수주정(壽酒亭)으로 가 북쪽을 향해 서게 하였다. 상식(尙食)이 수주(壽酒)의 첫째 잔을 따른 뒤 무릎을 꿇고서 상에게 올렸다. 상이 그 잔을 받고서 자궁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상식에게 주니 상식이 이를 전해 받아 자리 앞에 놓았다. 상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나가서 기둥 밖에 이른 뒤 이어 배위(拜位)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여집사가 자리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서 무릎꿇고 앉아 치사(致詞)를 대신 읽었는데, 그 내용에,

“궁궐에 흘러 넘치는 축복, 회갑날 술잔을 가득 올립니다. 선대(先代)의 덕 이어받아 어머님 장수 누리시고, 융성한 보살핌 덕분으로 자손들 번창하옵니다. 여러 빈객들과 만세주(萬歲酒) 절하고 바치면서 삼가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였다. 다 읽고나서 여집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기둥 밖까지 이르자 여관이 이어받아 인도하여 자궁의 자리 앞까지 가서 무릎을 꿇게 하였다. 상의(尙儀)가 무릎을 꿇고서 분부를 내릴 것을 아뢰었다. 이어 서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서 자궁의 분부를 전하였는데 “전하와 함께 경사를 같이 하겠다.” 하였다. 자궁이 술잔을 들자 상식(尙食)이 나아가 빈 잔을 받은 뒤 주정(酒亭)에 다시 놓았다. 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상궁의 인도로 중궁전이 내전 서쪽의 수주정(壽酒亭)에 가서 북쪽을 향해 섰다. 상식이 수주(壽酒)의 둘째 잔을 따른 뒤 무릎을 꿇고 바치니 중궁전이 잔을 받아 자궁의 자리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상식에게 주었다. 상식이 이를 전해 받아 자리 앞에 놓자 중궁전이 엎드

렀다가 일어난 다음 배위(拜位)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전언(典言)이 자리 앞으로 나가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치사(致詞)를 대신 읽었다. 다 읽고나자 상궁의 인도로 중궁전이 자리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상의(尙儀)가 무릎을 꿇고 분부를 내릴 것을 아뢰었다. 여집사가 섬들에 임하여 서쪽을 향해 선 뒤 분부를 전하였는데 “왕비와 함께 경사를 같이 하겠다.” 하였다. 자궁이 술잔을 드니 상식이 나아가 빈 잔을 받아서 주정(酒亭)에 다시 놓았다. 중궁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상이 세 번 머리를 조아리고 세 번 만세를 부른 뒤 두 번 절하였는데, 중궁전과 내명부·외명부·의빈·척신들 모두가 함께 하였다. 여집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기둥 밖에 이르자 여관이 이어받아 인도하여 발[簾] 안으로 가서 서쪽을 향해 앉게 하였다. 상궁이 중궁전을 인도하여 발 안으로 가서 동쪽을 향해 앉게 하였다. 상식이 수건과 음식상을 올리고 술잔을 올렸다.

여관(女官)이 명부(命婦)의 반수(班首)를 인도하여 수주정 동쪽으로 가서 북쪽을 향해 서게 하였다. 상식(尙食)이 수주의 셋째 잔을 채워 명부의 반수에게 주었다. 명부의 반수가 잔을 받아 자궁의 자리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상식에게 주니 상식이 전달받아 자리 앞에 놓았다. 명부의 반수가 나가 배위(拜位)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전언(典言)이 자리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치사를 대신 읽었다. 상의(尙儀)가 자리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서 분부를 내릴 것을 청한 뒤 섬들에 임하여 서쪽을 향해 서서 분부를 전했는데 “명부의 잔을 고맙게 들겠다.” 하였다. 자궁이 술잔을 들자 상식(尙食)이 나아가 빈 잔을 받아서 주정(酒亭)에 다시 놓았다. 명부의 반수가 일어나니 전빈(典賓)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가게 하였다.

여집사가 의빈(儀賓)과 척신(戚臣)의 반수(班首)를 인도하여 수주정 동쪽으로 가서 북쪽을 향해 서게 하였다. 여관이 수주의 넷째 잔을 채운 뒤 의빈과 척신의 반수에게 주었다. 의빈과 척신의 반수가 잔을 받은 뒤 자궁의 자리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여관에게 주니, 여관이 이를 전달받아 자리 앞에 놓았다. 의빈과 척신의 반수가 나가 배위(拜位)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여집사가 자리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꿇어앉은 뒤 치사(致詞)를 대신 읽었다. 상의가 자리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서 분부를 내릴 것을 청하였다. 여집사가 섬들에 임하여 서쪽을 향해 서서 분부를 전하였는데 “경들의 잔을 고맙게 들겠다.” 하였다. 자궁이 잔을 들자 상궁이 나아가 빈 잔을 받아서 주정에 다시 놓았다.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의 반수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였다. 여관이 내명부와 외명부에게 찬탁(饌卓)을 각각 내오고 여집사가 의빈과 척신에게 주탁(酒卓)을 각각 내왔다.

여집사가 섬들 위에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서서 상이 지은 만년장(萬年章)을 불렀는데, 그 내용에,

“삼만 년에 또 억만 년, 해마다 이 날이 오면 이 자리 펼쳐지리. 첫째 소원 우리 국가 반석(磐石) 위에 놓이기를, 둘째 소원 우리 자손 훌륭한게 번성하길. 정겨운 이야기에 흥겨운 잔치, 빈객들 구름처럼 와서 모였네. 태평시대 술잔들 흘러 넘치고 소리없는 음악소리 은은 하도다. 자궁의 덕 천심(天心)에 합치되니 우리 자손들 많은 복 받으리라.”

하였다. 다 부르고나자 상식(尙食)이 각전(各殿)의 자리 앞으로 가서 상을 치웠으며, 전선(典膳)은 내명부와 외명부의 탁자를 치우고 여집사는 의빈과 척신의 탁자를 치웠다. 전찬(典贊)이 일어나도 좋다고 외치니, 전빈(典賓)이 내명부와 외명부를 인도하고 여집사는 의빈과 척신을 인도하여 내려가 각각 배위(拜位)에 나아가게 하였다. 상궁이 인도하는 가운데 전하가 배위에 나아가고, 상궁이 인도하는 가운데 중궁전이 배위에 나아갔다. 상이 재배(再



拜)하고 중궁전이 재배하였다. 예식이 끝나자 여집사의 인도로 전하가 나가고 상궁의 인도로 중궁전이 나갔다. 여관 및 여집사가 내명부·외명부 및 의빈·척신을 인도하고 나갔다. 술잔을 올리고 음식을 올릴 때마다 모두 음악을 연주하였는데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교대로 연주하였다. 술잔을 올리며 예를 행할 때에 원자(元子)가 발 안으로 나아가 술잔을 올렸으며, 배위(拜位)에 따라가서 재배(再拜)하였는데, 배위는 상의 관위(版位) 뒤쪽 조금 남쪽에 있었다. 원자가 절하고 무릎꿇고 만세부르는 것 모두가 의젓하게 절도에 맞았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의 이 경사야말로 천 년을 가도 만나기 어려운 기막힌 기회이다. 기뻐하면서 경축하고 싶은 나의 심정으로야 하의(賀儀)나 연례(宴禮)를 거행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나 겸허하게 억제하시는 자궁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히 행사를 크게 거행하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 의빈과 척신을 초청하여 간단하게 술자리를 마련하고 오래 사시기를 축원하는 정성을 함께 펼치기로 한 것이었다. 경들은 모쪼록 각자 마음껏 취하고 배불리 먹으면서 오늘 맞은 나의 경사를 빛내도록 하라. 오늘 음식상을 마련한 것은 보기 드문 경사라 할 것이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빈객들은 취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지 말 것이며 각자 남은 음식들을 싸 가지고 돌아가 집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라.”

하고, 외정(外庭)의 신하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도록 명하였다. 2품(品) 이상 및 삼사(三司)는 명정전(明政殿) 동쪽 곁채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시종(侍從)인 당상관과 당하관은 명정전 북쪽 곁채에서 대접하고, 문신 당상관과 당하관으로서 시임(時任)과 전임(前任)들 모두에게는 광정문(光政門) 안에서 대접하고, 당상관 이하의 문관·음관(蔭官)·무관 및 잡직(雜職)으로서 을묘년에 출생한 자들에게는 영청문(永淸門) 안에서 대접하고, 무신 중 변어(邊禦) 이하 및 당상관과 당하관으로서 시임과 전임들 모두에게는 명정문 바깥 길 북쪽에서 대접하고, 잡직으로 시임과 전임들에게는 금청교(禁淸橋) 가에서 대접하고, 각신(閣臣)·승지·사관은 연희당(延禧堂) 문 밖에서 대접하면서 초계 문신(抄啓文臣)도 그 자리에 끼게 하고, 가승지(假承旨)는 교태문(交泰門) 밖에서 대접하고, 전문(箋文)을 올린 유생(儒生)에 대해서는 대사성으로 하여금 명륜당(明倫堂) 앞 뜰에서 감독하여 먹이게 하고, 장용영(壯勇營)의 장관(將官)·원역(員役)·침약(鍼藥)·화사(畫師)·궁인(弓人)·시인(矢人)·호위 별장(扈衛別將)·국 별장(局別將)·금군장(禁軍將)·화성 장교(華城將校)·각 군문(軍門)의 장관·친경전(親耕田) 노인·금군(禁軍)과 국 출신(局出身)으로서 어가(御駕)의 앞과 뒤를 호위하는 군관·문을 지키는 갑사(甲士)·한려위(漢旅衛)와 충익위(忠翊衛)와 충찬위(忠贊衛)와 충장위(忠壯衛)의 유청 군관(有廳軍官)·무예청(武藝廳)의 각문을 입직(入直)하는 파총(把總)·초관(哨官)·군졸 등에 대해서는 각기 책임자가 인솔하고 궐내에서 나눠 먹이게 하고, 각사(各司)의 이예(吏隸)에 대해서는 장용영에서 각각 떡을 먹이게 하였다.

○丁酉/御明政殿，親傳致詞·箋文·表裏，詣內殿，行親上禮，進饌于慈宮。前一日，尙寢設位于內殿，慈宮座南向，大殿座於慈宮座之東西向，中宮殿座於慈宮座之西東向，內外命婦侍位於慈宮座南近西，俱北向，又設儀賓·戚臣侍位於前楹簾外左右，北上相向。是日，尙寢設大殿拜位於殿東庭階上，近東北向，中宮殿拜位於殿西庭階上，近西北向，儀賓·戚臣拜位於大殿板位之後，內外命婦拜位於中宮殿板位之後。又設內外命婦及儀賓·戚臣外位於東西庭中，司贊·典賓位於簾內，典言·典贊在南差退，贊唱·女執事位於殿下東階上近西北向。尙食設壽酒亭二於堂內東西，又設酒亭二於楹外，設命婦及儀賓·戚臣酒卓於階上東西內外。命婦各具禮服，集到廂外。前二刻，典賓引命婦及內賓就外位，女執事引儀賓·戚臣入就外位。前一刻，中宮殿具翟衣加首飾，尙宮前導以出，人小次。上具翼善冠袞龍袍，女執事前導以出，入小次。慈宮具翟衣

加首飾，尙宮前導以出陞座。典賓引內外命婦，女執事引儀賓·戚臣，各入就拜位。尙宮導中宮殿出次，詣拜位北向立，女執事導殿下出次，詣拜位北向立。女執事·司贊·贊唱，上再拜跪，中宮殿再拜跪，俟尙食進揮巾饌案而興。女執事分東西，北向立，唱『御製老萊衣章』曰：“我有老萊衣，萬年慶韶光。鷄人報曉籌，上堂偕元良。是日回瑞甲，滿國齊祝崗。調味瓊液融，佐肴蟠桃園。一酌一酌復一酌，一酌萬年三萬年。”唱訖，女執事導大殿至楹外，女官承引詣殿東壽酒亭，北向立。尙食酌壽酒第一爵，跪進于上，上受爵，詣慈宮座前，跪授尙食，尙食傳捧置于座前。上俯伏興，出至楹外，仍詣拜位跪，女執事進座前，北向跪，代致詞曰：“華宮餘祝，花甲深樽。歡承壽母，功隆貽孫。同我嘉賓，拜獻千千，謹上千千歲壽。”讀訖，女執事導殿下至楹外，女官承引就慈宮座前跪。尙儀跪，白宣旨，仍西向跪，宣旨曰：“與殿下同慶”慈宮舉爵，尙食進受虛爵，復於酒亭，上還復位。尙宮導中宮殿，詣殿西壽酒亭，北向立，尙食酌壽酒第二爵，跪進中宮殿，受爵詣慈宮座前，跪授尙食，尙食傳捧置于座前，中宮殿俯伏興，仍就拜位跪。典言進座前北向跪，代致詞讀訖，尙宮導中宮殿，詣慈宮座前跪，尙儀跪白宣旨，女執事臨階西向立，宣旨曰：“與王妃同慶。”慈宮舉爵，尙食進受虛爵，復於酒亭，中宮殿還復位。上三叩頭三呼嵩再拜，中宮殿·內外命婦·儀賓·戚臣皆同。女執事導殿下至楹外，女官承引就簾內西向坐，尙宮導中宮殿，就簾內東向坐，尙食進揮巾饌案，進酒盃。女官引命婦，班首詣壽酒亭東北向立，尙食酌壽酒第三爵，授命婦班首，命婦班首受爵，詣慈宮座前，跪授尙食，尙食傳捧置于座前，命婦班首出就拜位跪，典言進座前跪，代致詞。尙儀進座前跪白宣旨，臨階西向立，宣旨曰：“敬舉命婦之觴。”慈宮舉觴，尙食進受虛爵，復於酒亭，命婦班首興，典賓引內外命婦各就位。女執事引儀賓·戚臣班首，詣壽酒亭東北向立，女官酌壽酒第四爵，授儀賓·戚臣班首，儀賓·戚臣班首受爵，詣慈宮座前，跪授女官，女官傳捧置于座前，儀賓·戚臣班首出就拜位跪，女執事進座前北向跪，代致詞。尙儀進座前跪白宣旨，女執事臨階西向立，宣旨曰：“敬舉卿等之觴。”慈宮舉酌，尙宮進受虛爵，復於酒亭，女執事引儀賓·戚臣班首就坐。女官各進內外命婦饌卓，女執事各供儀賓·戚臣卓于酒。女執事分立於階上東西，唱『御製萬年章』曰：“三萬年又億萬年，年年此日長此筵。一願宗國如磐石，再願子孫如軒文。情話仍燕喜，衆賓來如雲。灑灑太和釀，秩秩無聲樂。慈德享天心，子孫受多福。”唱訖，尙食分詣各殿座前撤案，典膳撤內外命婦卓，女執事撤儀賓·戚臣卓。典贊唱可起，典賓引內外命婦，女執事引儀賓·戚臣，降各就拜位。尙宮導殿下就拜位，尙宮導中宮殿就拜位。上再拜，中宮殿再拜。禮畢，女執事導殿下出，尙宮導中宮殿出，女官及女執事引內外命婦·儀賓·戚臣出。每進爵進饌，皆用樂鄉·唐交奏，進爵行禮時，元子進詣簾內，進爵隨詣拜位再拜，拜位在版位之後稍南，拜跪呼嵩，儼然中節。上曰：“是日是慶，卽千載難逢之盛會也。惟予飾喜稱慶之心，賀儀宴禮，何所不舉，而慈心謙抑，順志爲大，故不敢爲張大之舉，而邀我賓戚，略設盃酌，以爲共伸祝華之誠。卿等須各醉飽，以賁予今日之慶。今日宣饌，稀有之慶也，與宴諸賓，不醉無歸，而各裹餘饌，歸遺家人可也。”命宣饌于外庭諸臣。二品以上及三司，饋于明政殿東廊，侍從堂上堂下饋于明政殿北廊，文臣堂上堂下時任前銜饋于光政門內，堂上以下文蔭武及雜職乙卯生人饋于永清門內，武臣邊禦以下及堂上堂下時任前銜饋于明政門外道北，雜職時任前銜饋于禁清橋邊，閣臣·承史則宣饌於延禧堂門外，而抄啓文臣亦與焉。假承旨則宣饌於交泰門外，進箋儒生令大司成，監饋于明倫堂前庭。壯勇營將官·員役·鍼藥·畫師·弓人·矢人·扈衛別將·局別將·禁軍將·華城將校·各軍門將官及親耕老人·禁軍·局出身·駕前駕後扈衛軍官·把門甲士·漢旅·忠翊·忠贊·忠壯衛有廳軍官·武藝廳各門入直把摠·哨官·軍卒，各其將領分饋闕內。各司吏隸，自壯勇營各饋餅。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6월 18일(정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향음주례를 강습시키고 중외에 은혜로운 정사를 베풀도록 명하다

향음주례(鄉飲酒禮)를 강습시키고 중외(中外)에 은혜로운 정사를 베풀도록 명하였다. 하고하기를, “세월이 계속 흘러 회갑을 맞는 것이야말로 보기 드문 큰 경사이다. 아버지의 연세가 여기에 이르게 되면 이를 경축하며 기쁨을 표시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로서는 정말 당연한 것이다. 정중하게 음식을 대접하며 술을 따라 올리는 것은 서인(庶人)들이 하는 일이고, 잔치를 베풀고 자리를 마련하여 여러 아저씨와 외삼촌들을 초청하는 것은 경대부(卿大夫)들이 하는 일이고, 정사로 베풀어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은 임금의 하는 일이다.

나 소자(小子)는 황천(皇天)과 조종(祖宗)의 보살핌을 받아 국조(國朝)에 처음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새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6, 7개월 동안 어느 달이고 기쁘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어느 날이고 축하하지 않는 때가 없었다. 옥에 새기고 금으로 엮은 것은 자궁(慈宮)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으며, 남산을 바라보며 만세를 부른 것은 자궁께서 오래 사시기를 기원하기 위함이었으며, 창고에서 엄청난 곡식을 꺼내 섬과 육지의 백성들에게 두루 나누어 준 것은 자궁의 은혜를 널리 베풀기 위함이었으며, 노인들과 사민(四民)에게 취하도록 마시고 배불리 먹게 한 것은 자궁의 은덕을 표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하늘과 같이 무궁하게 되기를 바라는 나의 입장에서는 늘 날이 부족하다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자궁의 탄신일을 맞은 때에 어찌 풍성하게 차려 성대하게 즐기는 일을 꺼릴 여지가 있겠는가. 그런데 선조(先朝) 정묘년에는 인원 성모(仁元聖母)에게 승락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 자궁에게 허락을 얻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축하하는 의절(儀節)도 갖추지 못하고 음악도 제대로 연주하지 못한 채 그저 내외의 빈객과 척신들과 함께 조그마한 음식상을 공손히 올리면서 노래의(老萊衣) 악장(樂章)을 노래부르고 만년장(萬年章)에 맞추어 술잔을 올리게 되었다. 이 모두가 또한 즐거움을 끝까지 다하지 않고 여운을 남겨 두시려는 자궁의 지극한 뜻을 우러러 받든 것이다.

그러나 장황하게 일을 벌이지 않고 널리 베푸는 정사조차 오늘날 행하지 않아서야 말이 되겠는가. 이에 반열에 참여한 신공(臣工)과 전문(箋文)을 올린 장보(章甫)로부터 아래로 군병과 하인들에 이르기까지 이날의 술을 마시고 이날의 즐거움을 알게 하였다. 그리고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으로서 61세가 되어 내정(內庭)에 들어온 자들에게 대략 우상(虞庠)에서 노인을 대접했던 뜻을 붙여 각각 음식상을 별도로 차려주었다. 그런데 내 생각에 경사(京師)의 빈한한 선비와 곤궁한 백성들도 소외당한 상태에서 배불리 먹기를 바라고 있으리라 여겨지니 내가 문에 나가서 미곡을 하사해야 하겠다.

남해(南陔)와 백화(白華) 등 시편(詩篇)은 바로 효자가 아버이를 사랑하는 내용으로 지어진 것인데, 향인(鄉人)이 술을 마실 때에 꼭 이 음악을 연주했던 것은 대개 효도를 권장하고 널리 사랑하는 뜻을 취한 것이었다. 그런데 향인이 술을 마실 때의 예가 없어지면서 백성들의 풍속이 점점 투박해져 주려(州閭)와 교상(膠庠) 사이에서 보고 느끼며 둔후하게 되는 기풍이 까마득히 사라지고 말았다. 내가 삼대(三代)의 정치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좌하는 신하들을 책망하겠는가. 그러나 하늘이 내려준 양심으로 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멀거나 가깝거나 변함이 없을진대 어찌 어지럽게 된 풍속을 순박하게 되돌릴 방도가 없어야 하겠는가. 현주(玄酒)는 담담하지만 묘한 이치가 그 속에 들어 있고 대악(大樂)은 성기지만 정성(正聲)과 합치가 된다. 옛사람이 말한 바 ‘하루라도 예(禮)를 행하면 사방이

감화를 받아 변화된다.’ 고 한 것이 꼭 여기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외(京外)의 목민관으로 하여금 이를 강습하여 다시 밝히게 할 것이며 거듭 경계하는 말도 마땅히 반복해 보여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죄명(罪名)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써서 들이게 하되, 도류(徒流)의 처벌을 받은 자 중에서도 석방해주는 데에 합당한 자가 있거든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토록 하라. 포함(逋欠)한 것을 탕감해 주고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는 일을 초봄에 실시했었다마는, 내가 바야흐로 경축하며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이때에 어찌 중복된다고 꺼리겠는가. 서울에서는 공인(貢人)의 구유재(舊遺在) 2천 석과 저자 거리의 백성에게 부과된 요역과 반인(泮人)의 속전(贖錢)을 10일 기한으로 탕척(蕩滌)해 주도록 하고, **외방에서는 화성(華城)·기전(畿甸)·삼남(三南)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정퇴(停退)해 준 신공(身貢)과 보미(保米)·보포(保布)·보전(保錢)을 일체 탕감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나머지 4도(道)와 양도(兩都)는 오래된 환곡(還穀) 중 최근 1년의 조목을 대신 감해 주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공의 아름다운 덕을 드날리는 일이고 자공의 장수를 기원하는 일이고 자공의 은혜를 널리 베푸는 일이고 자공의 은덕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였다.

○命講鄉飲酒禮，下惠政于中外．教曰：“日月歲重回甲子，稀有之大慶也．親年之躋乎此，飾歡賁喜，子職固然．洗腆用酒，庶人之事也；肆筵設席，速諸父·諸舅，卿大夫之事也；施于有政，與百姓同樂，后王之事也．予小子荷皇天祖宗之佑，值國朝肇逢之會．粵自歲首，至于今六七箇月，何月非蹈舞之日，何日非頌祝之時？鏤玉編金，揚慈徽也；觀華呼嵩，祈慈壽也．千箱萬庾，穀遍島陸，廣慈惠也；群老四民，人得醉飽，表慈德也．然予齊天無疆之願，恒懷惟日不足之心．矧於誕彌之辰，何豐享豫大之暇顧，而先朝丁卯之未得於仁元聖母者，今難得之於慈宮，賀未備儀，樂不具奏，只與外內賓戚，恭進小饌．歌『老萊之章』，稱『萬年』之觴，此亦出於仰體慈宮留有餘未盡之至意，而事不涉於張皇，政有屬於普博者，其可不行之於今日乎？爰自參班之臣工·拜箋之章甫，下逮軍兵·隸徒，而使之飲此日之酒，知此日之樂．文·蔭·武六十一歲人入庭者，略寓虞庠養老之義，別設各卓．予念京師貧士窮民向隅望哺，予其臨門賜米．『南陔』·『白華』即孝子愛親之作，而鄉人飲酒，必用此樂，蓋取諸勸之孝，而廣其愛也．鄉飲之禮廢而民俗漸渝，州閭·膠庠之邈然觀感篤厚之風．予不能爲三代治，何責乎承佐之臣，而天降彝衷，無古今遐邇，其豈無反瀉回淳之道乎？玄酒之淡而自有妙理，大樂之希而所積正聲，古人所謂一日禮行，四方風動者，未必不在於茲矣．其令京外長民之官，講習修明其申誠之辭，續當頒示．有罪名者，令吏·兵曹書入，徒·流中可合疏放者，亦依點下施行．滌逋蠲役，春初有之，予方欲飾歡賁喜，何憚煩複？京則貢人舊遺在二千石，市民徭役·泮人贖錢，限十日蕩滌．外則華城·畿甸·三南昨年停退之身貢·保米·布·錢，一竝蕩滅．其餘四道·兩都則以舊還最近一年條代滅．此乃揚慈徽也，祈慈壽也，廣慈惠也，表慈德也．”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6월 18일(정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수원유수 조심태가 수원 부근 3읍의 협수장 전취와 외영 장교의 근태를 건의하다

경기 관찰사 김문순(金文淳),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 서유린(徐有隣),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 조심태(趙心泰)를 불러 만나 보았다. 심태가 아뢰기를,

“본성(本城) 부근의 3개 고을 수령이 동·서·남쪽 성의 협수장(協守將)으로서 그 고을이 본성의 속읍(屬邑)으로 정해졌고 병부(兵符)의 우척(右隻)도 본부에 있는 이상 12월에 그들의 전취(殿最)를 행하는 것이 사체(事體)를 높이고 군율을 엄중히 하는 의리에 비추어 볼

때 온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내영(內營)에서 장교(將校) 전원을 대상으로 근무 태도를 살펴 포폄(褒貶)하고 있는만큼 외영(外營)에서도 차이를 둘 수가 없으니, 금년 겨울철부터 근무 태도를 평가한 단자(單子)를 똑같이 작성해 아뢰게 하소서.” 하니, 윤희하였다. (…)

○召見京畿觀察使金文淳·廣州府留守徐有隣·水原府留守趙心泰. 心泰啓言: “本城附近三邑守令, 以東西南城協守將, 定以屬邑, 兵符右隻, 亦在本府, 則臘月殿最, 恐合尊事體重師律之義, 而內營將校, 摠有勤慢褒貶之例, 則外營不可異同. 請今年冬等爲始, 勤慢單子, 一體修啓,” 允之. (…)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 11월 17일(갑자)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승지에게 오언 율시 1편을 내리고 환궁하다

환궁하였다. 행궁에서 출발하여 지지대(遲遲臺)에 나아가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지난 번 내가 갈 때에는 빨리 갔었는데, 이번 내가 올 때에는 발걸음이 더디기만 하니 그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하겠는가.” 하고는, 인하여 오언 율시 1편을 내리고,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하여 올리게 했다. 그 시에,

혼정 신성의 그리움 다할 길 없어

### 오늘 또 화성에 와 보니

곳은 비는 침원에 부슬부슬 내리고

이 마음은 재전을 끝없이 배회하누나

어찌하여 사흘 밤을 잤던고

아버님 영정을 모셨기 때문일세

더디고 더딘 걸음에 고개 들어 바라보니

오운이 저 멀리서 일어나누나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경진년 온천(溫泉)에 행행하실 때 군복(軍服)을 입으셨다는 것이 의주(儀註)에 실려 있고 모사(模寫)한 초본 하나도 역시 그 때의 복색(服色)인데, 매양 미처 옮겨 모사하지 못해 【영정(影幀)의 초본 색이 바래서 감히 옮겨 모사하지 못한 것이다】 마음에 간절하였다. 기유년 이후로는 원행(園幸) 때에 반드시 군복을 입은 것은 대개 추술(追述)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辛未/還宮. 自行宮進發, 御遲遲臺, 上顧謂承旨曰: “昔我往矣, 載馳載驅, 今我來思, 行道遲遲, 有誰會予心乎?” 仍下五言律詩一篇, 命諸臣賡進. 詩曰: “晨昏不盡慕, 此日又華城. 震霖寢園雨, 徘徊齋殿情. 若爲三夜宿, 猶有七分成. 矯首遲遲路, 梧雲望裏生.” 又教曰: “庚辰溫幸, 御軍服, 在於儀註, 模寫一本, 亦以其時服色, 而每以未及移摸, 【影幀草本色渝, 不敢移摸】 耿耿于中. 己酉以後, 園幸必用軍服, 蓋出於追述之意也.”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1월 24일(신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채제공 등 화성에 성을 쌓는 데에 공로 있는 자들에 대해 시상하다

화성(華城)에 성을 쌓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총리 대신인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대호피(大虎皮) 한 벌을 내리고,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에게 정헌(正憲) 대부(正憲大夫)를 가자하였으며, 도청(都廳) 이유경(李儒敬)에게 갑옷 한 벌을

내렸다. 아울러 작년 봄에 미리 상을 주었던 자를 제외하고, 공장들까지도 모두 차등있게 상을 내렸다.

○施華城城役賞典. 摠理大臣右議政蔡濟恭大虎皮一令, 水原留守趙心泰加正憲, 都廳李儒敬甲冑一令. 并於昨春先施以下, 至工匠等, 竝頒賞有差.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1796) 9월 10일(임자)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정조가 수원 화성을 순행하고 행궁에 돌아오다

상이 성을 순행하였다. 화양루(華陽樓) 북쪽에서 시작하여 화서루(華西樓)를 지나 공심돈(空心墩)에 이르러 각신(閣臣)과 승지에게 이르기를,

“공심돈은 우리 동국(東國)의 성제(城制)에서는 처음 있는 것이다. 여러 신하들은 마음껏 구경하라.”

하였다. 장안문(長安門)을 지나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에 이르러 조그만 과녁을 설치하고 임금이 화살 삼순(三巡)을 쏘아 삼시(三矢)를 맞힌 뒤 각신(閣臣)과 장신(將臣)에게 짝지어 활을 쏘라고 명하였다.

상이 정자 아래에서 백성들이 짝 둘러서서 구경하는 것을 보고 수원부 유수 조심태(趙心泰)에게 명하여 그중에 활을 잘 쏘는 자를 뽑아서 활쏘기를 시험하게 한 다음 1등을 한 1인에게 바로 전시(殿試)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풍악을 내려서 보내었다. 여러 신하들에게 술을 내리고 임금이 칠언 소시(七言小詩)를 지은 뒤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광주 유수(廣州留守) 서유린(徐有隣)에게 이르기를,

“고 정승 유성룡(柳成龍)이 말하기를, ‘훈련 도감에서 경기 지방에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훈국의 군사 1만 명 중 5천 명은 서울에서 조련하고 5천 명은 둔전에 나가 경작하게 하여 군대와 농사가 서로 의지하는 의의를 살려야 한다.’ 고 하였는데, 그 취지가 매우 좋았으나 중지되어 실행되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애석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장용영(壯勇營)에 대하여 이 제도를 대략 모방해 경기의 고을에 향군(鄉軍)을 설치하여 일영 오사(一營五司)의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대개 서로 빙 둘러싸고 수레바퀴와 덧방이 서로 도와주는 것과 같이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던 것이다. 원소(園所)에 행차할 때 본부(本府)의 5개 초군(哨軍)만으로 돌아가며 어가를 따르게 할 경우 항오(行伍)가 단약(單弱)하고 군용(軍容)이 미비하다. 그래서 수어청의 출진(出鎭)하는 군제를 바로잡아 고칠 때 여정(餘丁) 8백여 명이 남기에 연(輦)이 지나가는 광주(廣州)·시흥·과천 및 화성의 속읍(屬邑)인 용인(龍仁)·안산(安山) 등지의 길에 6개 초(哨)를 설치하였다가 어가가 지나갈 때 징발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어청의 소관으로 선혜청에 떼어 놔둔 쌀 1천 석과 돈 3천 냥을 본영(本營)에 갈라 주어 상번(上番)하는 군인의 급료에 쓰게 하고, 이어서 향군이 있는 각 고을에 둔전을 설치하여 그 세입(稅入)으로 군인들이 왕래할 때의 양식과 의복의 비용으로 삼으려 하였다. 먼저 산 토지에서의 소출이 군수(軍需)로 들어가는 비용에 맞먹는가?”

하니, 유린이 대답하기를,

“광주 둔전의 수입은 부족할 염려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더 사들여야만 수입과 쓰임이 비로소 같게 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영(本營)에 향군(鄉軍)을 설치한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최초에 양근(楊根)·가평(加平)·지평(砥平)에 먼저 2개의 초(哨)를 내었는데, 이는 둔전이 군인들의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군대와 농사가 서로 의지할 수 있다. 파주(坡州)에 또 1개의 초를 내었는데 양근 등 세 고을의 예를 적용하려 하였으나 토지가 너무 적고 군인들도 각처에 흩어져 있어서 가까이 있는 자는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자는 스스로 지을 수 없다. 이것은 벌써 세 고을의 예와는 좀 달라진 것이다. 그 뒤 또 양주(楊州)에 1개의 초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모든 일은 대뜸 세력이 있는 백성들에게 동요되고 만다. 양주에는 서울의 사대부 토지가 많아서 사들이기로 결정하여 값을 치르기도 전에 반드시 먼저 소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부득이 우선 늦추면서 차츰 시작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경기 감영의 무조(賃租)할 것 중에서 약간의 돈을 떼어내어 경기 고을의 환모(還耗)를 바꾸어서 1개 초군(哨軍)을 먹일 방도로 삼았다. 그 뒤 고양(高陽)에 또 1개의 초를 두고 충융청의 법외(法外)의 보군(保軍)을 참작해 감한 뒤 거두어들이신 신전(身錢)의 여분으로 먹일 방도를 삼았으며, 그 뒤 또 수원에 5개의 초를 설치하고 3만 냥의 공화(公貨)를 나누어주어 해도(該道)의 좁쌀 1만 석을 사들여서 모곡을 취하여 먹이도록 하였다.

대체로 양주·고양·수원의 군대를 먹이는 데에 쓰이는 군수(軍需)의 조달 방법은 그 명분이 나의 본래의 뜻이 아닐 뿐 아니라, 또한 최초에 양근 등의 고을에 설치하였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바로잡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공사간(公私間)의 용도를 모곡으로 시작하는 것은 크게 좋지 않은 방법이다. 쥐나 새가 축낸 모곡을 관장(官長)이 주관하는 것도 이미 매우 구차한 일인데 하물며 나라이겠는가. 이것을 한번 바로잡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동장대(東將臺)에 나아가 대에 올랐다.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성제(城制)가 고루(固陋)하여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본래부터 치첩(雉堞)의 제도가 없었다. 그런데 정승 김종서(金宗瑞)가 쌓은 종성(鍾城)의 성제가 유일하게 중국의 제도를 대충 모방하였는데, 그 형상이 규형(圭形) 같고 안이 상당히 넓고 위는 처마를 엮은 듯하여 내려다보기에 편리하다. 그러나 이 역시 치첩의 제도만은 못하다. 대개 옛날의 성 제도는 치첩으로 첫째를 삼았을 것인데, 우리 나라의 성은 전체가 둥글어서 모서리가 없다. 그래서 성 위에 담벼락처럼 죽 둘러서서 지켜야만 비로소 적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새로 쌓은 성은 처음으로 치첩의 제도를 도입하여 거리를 계산하고 따로 모서리를 만들어 성 전체를 싸안았으므로, 매 치첩에 두서너 사람만 세우더라도 좌우를 살피기에 편리하여 적의 동태를 엿보기 쉽고, 밑에서 쳐다보면 도리어 치첩을 지키는 사람의 수를 분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제야 우리 나라도 성의 제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초루(譙樓)나 돈대(墩臺) 등속은 가끔 엉뚱한 모양만 낸 것 같아서 실용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유수(留守)와 도청(都廳) 이유경(李儒敬)이 다투어 논란하던 것으로 결국 도청의 주장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지만 나의 본뜻은 아니다.” 하였다.

각건대(角巾臺) 앞길을 거쳐서 창룡문(蒼龍門)의 곡성(曲城) 밖으로 나가 남수문(南水門)의 초돈(譙墩) 윗길을 지나 팔달문(八達門)에 이르러서 문루(門樓)에 올라 쉬고는 서장대(西將臺)에 이르러 대 뒷쪽의 소랑(小廊)에 들어서 신하들에게 식사를 베풀었다.

밤에는 장대(將臺)에 올라 연거(演炬)를 관람하였다. 선전관이 꿇어 엎드려서 아뢰고 나서 신포(信炮) 세 발을 터뜨리고 햇불 세 개를 붙여서 올리자 대 위에서 네 개의 햇불을 올리면서 모든 성가퀴에서 일제히 햇불을 올렸다. 호포(號炮)를 한 방 터뜨리고 천아성(天鵝聲)

을 불고는 횃불을 점호하며 납함(呐喊)하기를 세 차례 하였다. 그리고는 지금(止金)으로 일호(一號)를 장(掌)하고 이호를 장한 뒤 연거가 끝났다.

행궁에 돌아와서 하교하기를,

“화성 서장대에서 오늘 밤 훈련은 생략하고 연거(演炬)별로 호령만 실시하였지만 응접(應接)함이 격식에 맞고 구율(穀率)에 차착(差錯)이 없었다. 더구나 이들은 모두 이 성의 정군(丁軍)으로 단속이 잘 된 입방군(入防軍)과는 더욱 다르다. 그런데도 이처럼 잘 익숙히 훈련되었으니, 장수에 책임자를 얻은 효과를 보게 되어 매우 가상하나 이것은 오히려 여사(餘事)이다. 그리고 조련이 있기 전에 새 성을 두루 둘러보았는데 공로가 크고 많다. 어찌 말을 달려 전쟁한 공로에 뒤지겠는가. 화성 유수 조심태(趙心泰)에게 특별히 전지와 백성을 떼어준다. 성첩이 완성되었으므로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집집마다 부유하게 하고 사람마다 화락하게 하는 것[戶戶富實 人人和樂]’의 여덟 글자이다. 잘살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묘당의 여러 신하들과 강구하여 마련하는 중이다. 그리고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또한 사람을 화락하게 하는 한 방법이니, 성 안팎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당년의 군향곡(軍餉穀)과 환곡(還穀)에 대한 모곡(耗穀)을 특별히 면제해 주어 그들의 기대하는 마음에 부응토록 하라.” 하였다.

○上巡城。自華陽樓北，巡歷華西樓，至空心墩，謂閣臣承旨曰：“空心墩，卽我東城制之初有者。諸臣可縱觀之。” 歷長安門至訪花隨柳亭，設小的，御射三巡，獲三矢，命閣臣將臣耦射。上，見亭下民庶環擁瞻旒，命水原府留守趙心泰，選其能射者試射，取居魁一人，許赴殿試，賜樂出送。宣醮于諸臣，御製七言小詩，命諸臣賡進。謂廣州留守徐有隣曰：“故相柳成龍謂：‘訓練都監，宜開屯於京畿地方，而訓局軍萬名中五千名，在京操鍊，五千名赴屯耕作，以爲兵農相寓之義。’其意甚好，而寢不行，誠可惜也。予於壯勇營，略倣此規，設置鄉軍於畿邑，爲一營五司之制，蓋出於環連拱抱輔車相須之意也。園幸時，只以本府五哨軍，輪回隨駕，則行伍單弱，軍容未備。守禦廳出鎮軍制釐正時，有餘丁八百餘名，故設六哨於輦路所經廣州·始興·果川及華城屬邑龍仁·安山等地，駕過時使之徵發陪扈。仍以守廳所管惠廳除留米一千石，錢二千兩，劃屬本營，以爲上番軍支放之需，仍設置屯田於鄉軍所在之各邑，以其稅入，爲其軍來往時糧饌及服色之費矣。先買土地，所出果與軍需容入，相當乎？”有隣曰：“廣州屯田所(需)〔收〕，有不足之慮，如干加買，然後所收與容入，始可相當矣。”上曰：“本營鄉軍之設施，意義有在。最初楊根·加平·砥平，先出二哨，而此則屯田在於渠輩門前，故足爲兵農相寓。坡州又出一哨，欲用楊根等三邑之例，則土地甚少，且軍人散在各處，近者雖自治田，遠者不能自作。此則已稍異於三邑之例矣。其後又置楊州一哨。而我國凡事，輒爲大民所撓。楊州則多有京華士夫之土地，決買給價之前，必先紛撓，不得已姑徐之，以爲漸次經始之計。而就畿營賃租條中，劃出若干錢，賃取畿邑還耗，以爲一哨軍接濟之道。其後又置高陽一哨，以摠戎廳法外保軍量減後，所收之身錢餘者，爲接濟之道，其後又置水原五哨，劃給三萬兩公貨，賃取該道小米萬石取耗，而使之接濟。大抵楊州·高陽·水原軍接濟之需，其名色非但非予之本意，亦不及於最初楊根等邑設施之規，容俟來頭，不可不釐正。而凡公私需用之必着手於耗穀者，大非好道理。雀鼠之耗，官長之主管，已極苟且，況朝家乎？此不可不一番釐正矣。”詣東將臺，御臺。上，謂諸臣曰：“我國城制固陋，勿論京外，元無雉堞之制。獨故相金宗瑞所築鍾城城制，略倣華制，其形如圭，內頗空闊，上如加簷，便於頰視。而猶不如雉之爲制。蓋古之城制，當以雉堞爲第一，而我國之城，則全體周圓，無模稜。故塚塚堞堞，環立守之，然後始可禦賊。而今此新城，創爲雉制，計以步數，別成廉角，環包體城，每雉雖立數三人，便於左右望，而易以覘賊，自下視之，亦不分守堞人之多少。今而後，我國始可曰有城制。但譙樓墩臺之屬，往往有近於奇巧，不適實



用. 此則留守與都廳李儒敬爭難, 畢境都廳之說得行, 非予之本意也.” 由角巾臺前路, 出蒼龍門曲城外, 歷南水門譙墩上路, 至八達門, 御門樓暫憩, 至西將臺, 御臺後小廊, 宣飯于諸臣. 夜御將臺, 觀演炬. 宣傳官跪啓稟, 放信炮三聲, 舉起火三枝, 臺上燃四炬, 各塚一時燃炬. 舉號炮一聲, 吹天鵝聲, 點炬吶喊, 共三次. 止金掌一號, 掌二號演炬畢. 還行宮, 教曰: “華城西將臺, 今日夜操, 爲其省略, 只行演炬別號令, 而應接若式, 穀率不差. 況此類皆是城丁軍, 尤異於入防軍. 團束其能如是, 鍊熟可見, 將得其人之效, 雖甚可嘉, 猶屬餘事. 且於操前, 遍觀新城, 勞多功鉅. 豈讓汗馬? 華城留守趙心泰, 特賜田民. 城堞既完, 目今第一義, 卽戶戶富實, 人人和樂八箇字. 富之之術, 方與廟堂諸臣講磨. 而蠲惠之方, 亦屬人和中一事, 城內外居民, 當年餉與還, 特竝除耗, 以副渠輩望幸之情.”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1월 29일(경오)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안산 행궁을 출발하여 현릉원에서 작헌례를 행하고 수원 행궁에서 머물다

하교하기를, “정안 옹주(貞安翁主)와 정정 옹주(貞正翁主)는 모두 장릉(章陵)의 동기(同氣)인데, 정안 옹주는 금양위(錦陽尉)와, 정정 옹주는 진안위(晉安尉)와 함장하였다. 본릉(本陵)을 참배하고 또 이곳을 지나가는 일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내시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승평 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瑬)는 인조 대왕을 옹립한 공과 경국제세(經國濟世)의 계책으로 성대히 증흥의 명신이 되었다. 듣건대 그 묘소가 이 고을에 있다 하니,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자신이 폐부(肺腑)와 같은 지친(至親)의 처지에 있으면서 성조(聖祖)의 즉위 초 청명(淸明)한 치화(治化)를 주밀히 도와 걸출하게 국가의 주석(柱石)이 되었으니, 서평 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과 회산 부부인(檜山府夫人) 황씨(黃氏)의 묘소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우리나라에 본디 현명한 국구(國舅)가 많으나, 문장과 공업(功業)의 성대함으로는 신풍 부원군(新豐府院君)만한 이가 없다. 승릉(崇陵) 어필(御筆) 신도비(神道碑)의 성대한 유적을 추모하니 배나 슬픈 생각이 든다. 고 부원군 장유(張維)와 영가 부부인(永嘉府夫人) 김씨(金氏)의 묘소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그리고 고 판서 장선징(張善徵)에게도 똑같이 치유(致侑)하도록 하라.”

하였다. 안산 행궁에서 출발하면서 사관(史官)을 보내어 우의정 이병모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비록 국가의 체통으로 처분하였으나, 경의 본정은 고심(苦心)에서 나온 것이기에 전지(傳旨)를 특령으로 환수(還收)한다. 이제 바야흐로 원소(園所)로 나아가니, 경은 들어와서 반열에 참여하라.”

하였다. 어가가 수원(水原) 관문 밖 5리 지점에 이르러 길가의 부모(父老)를 불러 고통을 물어보니, 모두 목은 환곡이 폐해가 된다고 말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명하여 위유(慰諭)하게 하기를,

“조정에서 알아서 선처할 것이니 각각 믿고서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라.”

하였다. 낮에 수원 구포(鷗浦)에서 쉬면서 친히 지은 제문(祭文)을 내리며 이르기를,

“용백사(龍柏祠)는 곧 제갈 무후(諸葛武侯)와 호 문정(胡文定)을 주향(主享)하여 배식(配

食)하는 곳인데, 충간공(忠簡公) 윤계(尹槩)가 이곳에서 살신성인(殺身成仁)했기 때문에 종향(從享)하고 있다. 시대는 달라도 의리는 똑같아 사람으로 하여금 감회를 자아내게 한다. 지방관은 【용백사는 남양(南陽) 지방에 있는데 구포(鷗浦)와 접경하고 있다.】 이미 승지를 지냈으니, 이 제문을 가지고 가서 읽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고 영의정 홍언필(洪彦弼)은 본디 사류(士類)로서 한 세상의 명신이 되었고, 그 아들 영의정 홍섭(洪暹)은 정직한 도와 아담한 인망으로 또 정승의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그 대부인(大夫人)이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였으므로 ‘공손히 정경 대부인의 복록을 생각하니, 천상은 알기 어렵거니와 인간 세상에선 듣지 못했네. 순일(純一)한 덕으로 삼종지도(三從之道) 행했는데 그 모두 영상 자리 올랐고, 94살 향수하니 수성(壽星) 또한 높도다.’ 라는 시구가 시인의 가영(歌詠)에 들어가기까지 하여 오늘날까지 전승(傳誦)되고 있다. 두 대신의 묘소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아담한 지조는 오늘날 흔히 얻기가 쉽지 않다. 고 좌의정 이복원(李福源)의 묘소에 그 아들 내각 직제학(內閣直提學) 이만수(李晩秀)를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내시를 보내어 신빈(愼嬪)의 묘소에 치제하도록 하였다. 어가(牙)가 수원 신음천(新音川)에 이르러 잠시 쉬고 화소(火巢)의 경계를 경유하여 옛 서문로(西門路)를 따라 현릉원(顯陵園)에 이르러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도승지 조진관(趙鎭寬)이 향로를 받들어야 하는데 오지 않자 집례(執禮) 이기양(李基讓)을 동부승지로 특별히 제수하여 향로를 받들게 하고 원상(園上)에 나아가서 봉심(奉審)하였다. 소차(小次)에 나아가서 각신(閣臣)·승지·사관(史官)에게 밥을 내렸다. 저녁에 수원 행궁에 머물렀다.

○癸丑/教曰: “貞安翁主·貞正翁主, 俱是章陵同氣, 貞安與錦陽, 貞正與晉安同岡. 展謁本陵, 又過此地, 事若不偶. 遣內侍致祭.” 又教曰: “昇平府院君金瑬, 攀附之功, 經濟之策, 蔚然爲中興名臣. 聞其墓在是邑云, 遣承旨致祭. 身居肺腑之親, 密贊聖祖一初清明之化, 傑然爲國柱石, 西平府院君韓浚謙·檜山府夫人黃氏墓, 遣承旨致祭. 我朝固多賢國舅, 而文章功業之盛, 未有如新豐. 追惟崇陵御筆神道之盛蹟, 一倍愴想. 故府院君張維·永嘉府夫人金氏墓, 遣承旨致祭. 故判書張善激, 一體侑之.” 自安山行宮進發, 遣史官, 諭右議政李秉模曰: “雖以國體處分, 卿之本情, 出於苦心, 傳旨特令還收. 今方進詣園所, 卿其入來參班.” 駕到官門外五里, 召路傍父老, 詢問疾苦, 皆言舊還爲弊. 上, 命承旨慰諭曰: “朝家自當善處, 其各恃而安業.” 晝停于水原鷗浦, 下親撰祭文曰: “龍柏祠, 卽諸葛武侯·胡文定主亨配食之所, 而忠簡公尹槩, 以成仁之地, 從與享之. 異代一義, 令人激感. 地方官【龍柏祠在南陽地, 與鷗浦接界.】既經承旨, 持此祭文, 宣讀行祭.” 又教曰: “故領議政洪彦弼, 自是士類, 爲世名臣, 其子領議政洪暹, 以直道雅望, 又躋台司. 而其大夫人尙康旺, ‘恭惟貞敬大夫人, 天上難知世未聞. 一德從三上台峻, 百年除六壽星尊’ 之句, 至入詩人之詠, 尙今傳誦. 兩大臣墓, 遣承旨致祭. 雅操今日未易多得. 故左議政李福源墓, 遣其子內閣直提學李晩秀致祭.” 又命遣內侍致祭于愼嬪墓. 駕到水原新音川少憩, 由火巢界, 取古西門路, 至顯陵園, 行酌獻禮. 都承旨趙鎭寬, 當奉爐而未至, 特除執禮李基讓同副承旨, 奉爐, 詣園上奉審. 出御小次, 宣飯于閣臣·承·史. 夕次水原行宮.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7일(계축)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화성의 득중정(得中亭)에서 남양·김포·안산 등의 구환(舊還)을 면제 등을 지시하다

득중정(得中亭)에 나아가 작은 표적을 설치하고 왕이 다섯 차례 쏘았는데 화살 8발이 맞았다. 여러 장신(將臣)에게 편을 갈라서 활을 쏘도록 명하였다. 상이 경기 관찰사 이재학(李在學)에게 이르기를,

“행차가 지나온 고을 가운데 김포는 구환(舊還)을 탕감하였고, 안산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천과 부평의 제읍(諸邑)은 어떻게 혜택을 베풀어야 하겠는가?”

하였다. 승지 이익운(李益運)이 아뢰기를,

“남양 부사의 말을 들으니, 민정(民情)이 모두 구환의 감면을 원하나, 외람되이 감히 아뢰지 못한다 합니다.”

하고, 장용 내사(壯勇內使)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근래 외읍의 환곡은 분부를 받들어 정퇴(停退)한 것도 있고 그대로 수납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혼동하여 구환이라 일컫고 있는 등 너무도 뒤죽박죽입니다. 감면하는 절차를 차라리 간략하게 할지언정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환곡에서 모곡(耗穀)을 받는 것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온다. 백성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너무 많은데, 어찌 구환의 감면을 아끼겠는가.”

하고, 하교하기를,

“이번에 장릉(章陵) 참배를 인하여 다행히 한 해 안에 재차 원침(園寢)을 배알(拜謁)하게 되었는데, 경유한 길이 과천·시흥·김포·부평·인천·안산·광주·남양·수원 등 모두 10개 고을이다. 우리 백성의 혜택을 바라는 마음을 생각하건대 어찌 한갓 의장(儀仗)의 성대함을 바라보게 할 수야 있겠는가.

김포는 처음 역참에서 목을 때 선조(先朝) 갑인년 이후로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이미 특별히 혜택을 베풀었고, 양천도 감면하는 조치가 있어서 구환(舊還) 중 가장 오래된 연조(年條)의 것을 탕감하였다. 부평·안산의 구환은 가장 오래된 1년 조를 탕감하고, 당년의 환곡(還穀)에 대한 모곡을 특별히 면제하라. 인천·남양은 비록 행차가 지나가기만 한 고을이나 처음으로 의장을 본 곳이다. 지나간 곳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구환으로서 문서에 실려 있는 것은, 원근을 논하지 말고 지방관이 백성을 모아 놓고 효유한 뒤에 문권(文券)을 불태우라. 시흥·과천·광주만 유독 누락시킬 수는 없다. 하물며 처음 지나간 곳인데 또한 어찌 달리 하겠는가. 출궁(出宮)과 환궁(還宮) 때 행차가 지나간 곳의 백성이 지고 있는 구환은 또한 그 문권을 불태우도록 하라. 구포(鷗浦) 역시 처음 지나간 곳인데 기유년 이후로 백성들의 편중된 노고가 많았다. 구환은 문권을 불태우고 환모(還耗)는 탕척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뜻을 보이도록 하라. 행차가 지나간 지방의 벼가 혹 짓밟힌 곳이 있으면 해당 도로 하여 금 곡식 소출(所出)의 수량만을 환산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유생은 제술(製述)에 응시하고 장교와 군졸은 활 쏘기를 시험 보게 하되 지난해 하교한 대로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

○御得中亭，設小的，御射五巡，獲八矢。命諸將臣耦射。上，謂京畿觀察使李在學曰：“輦過邑金浦，則蕩滅舊還，安山亦當如之。而仁·富諸邑，當如何施惠？”承旨李益運曰：“聞南陽府使言，民情舉願蠲滅舊還，而猥不敢奏云矣。”壯勇內使鄭民始曰：“近來外邑還穀，有奉旨停退者，有仍未捧者，而混稱舊還，淆亂甚矣。蠲滅之節寧略，不可濫。”上曰：“還穀取耗，皆出於民。取於民，亦已多矣，何靳於舊還蠲滅乎？”教曰：“今因章陵展拜，幸於一歲中，再謁園寢，而路出果川·始興·金浦·富平·仁川·安山·廣州·南陽·水原，凡爲十邑。以吾民望幸之心，豈容使之徒瞻羽旄？金浦初當宿站，於先朝甲寅之後，已拔例施惠，陽川亦有蠲惠之

舉，而舊還最久年條蕩滅。富平·安山舊還最久一年條蕩滅，當年還耗特除。仁川·南陽，雖曰輦過邑，卽初見羽旄之地也。所過處民人所負舊還之載於還簿者，無論遠近，令地方官，聚會民人，曉諭後燒券。始興·果川·廣州，不可獨漏。況有初過之處，亦豈異同？出還宮時，輦路民人之所負舊還，亦令燒券。鷗浦亦初過之地，而已西以後，民人等自多偏勞。舊還則焚券，還耗則蕩滌，以示特加軫念之意。輦路地方禾穀，或有踐踏處，令該道折給所出之數。儒生應製，校卒試射，依昨年下教學行。”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8월 18일(갑인)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정조가 수원에서 유생과 장졸에게 시험보이고 시상하다

수원(水原) 등 10개 읍의 유생(儒生)이 응제한 시문을 상이 직접 살펴보고 점수를 매겨 차등있게 시상하였다. 상이 화성(華城)으로부터 돌아와서 시(詩)·부(賦)·논(論)·명(銘)·송(頌)·찬(贊)의 제목 30통을 내리고, 행차가 지나간 고을의 수령에게 명하여 그 제목을 가지고 가서 시취(試取)하게 하되, 한 고을마다 3통씩 제목을 내걸고서 시권(詩券)을 거두어 올리게 하였다. 이때에 와서 친히 성적을 고사(考査)하여 등차를 매겼는데 각 문체(文體)에서 수석을 차지한 자 가운데 생원·진사는 대과(大科)의 회시(會試)에 응시하도록 허락하고 유학은 감시(監試)의 회시에 응시하도록 허락하였으며, 나머지 사람에게는 『어정오륜행실(御定五倫行實)』·『사기영선(史記英選)』·『육주약선(陸奏約選)』·『규장전운(奎章全韻)』 등의 책을 하사하였다. 또 수원 유수·광주 유수(廣州留守) 및 남양(南陽) 등 8개 고을의 수령에게 명하여 장교와 군졸에게 활쏘기와 포쏘기를 시험보여 4발을 명중시킨 사람은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하게 하고 3발 이상 명중시킨 사람은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하게 하고 나머지는 미곡을 하사하게 하였다.

○御考水原等十邑儒生應製，施賞有差。上，還自華城，下詩·賦·論·銘·頌·贊題三十道，命輦路邑守令，賫往試取，每一邑揭題三道，收券以進。至是親考第次，各體居首者，生進許赴大科會試，幼學許赴監試會試，餘賜『御定五倫行實』·『史記英選』·『陸奏約選』·『奎章全韻』等書。又命水原·廣州留守及南陽等八邑守令，試校卒射放，四中直赴殿試，三中以上直赴會試，餘賜米斗。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9월 12일(무인)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예조 판서 조상진을 화성의 교궁에 보내 석채를 행하게 하다

예조 판서 조상진(趙尙鎭)을 화성의 교궁(校宮)에 보내어 석채(釋菜)를 행하게 하였다. 대체로 이날 밤이 마침 석채를 행할 때였으므로,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

○遣禮曹判書趙尙鎭，行釋菜于華城校宮。蓋是夜，適值釋菜，有是命。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 2월 1일(을미)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좌의정 이병모 등을 훈련원에서 소견하다

좌의정 이병모(李秉模)와 2품 이상의 경재(卿宰) 및 옥당과 양사의 제대(諸臺), 그리고 화성부 유수(華城府留守) 서유린(徐有隣)과 경기 관찰사 이재학(李在學)을 훈련원에서 소견(召見)하였는데, 청대(請對)하였기 때문이다.

○召見左議政李秉模， 卿宰二品以上及玉堂·兩司諸臺， **華城**府留守徐有隣·京畿觀察使李在學于訓練院， 請對也。

<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1798) 9월 8일(무진) 6번째기사>

## 정치/왕실

### 재전에서 차대를 행하다

재전(齋殿)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상이 일렀다.

“오늘 차대를 꼭 재전에서까지 할 것은 없겠으나 이날 이 장소에서 경들을 소견(召見)한 것은 대체로 깊은 뜻이 있어서이다. 내가 즉위한 초원(初元) 조참(朝參) 때에, 쓸데없는 군병을 없애고 백성의 생활을 여유있게 해 주겠다는 뜻을 고해 알려주도록 했었는데, 임어(臨御)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아래에까지 미치게 해 준 일이 별로 없어 내가 보기에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시 무종(有始無終)의 탄식을 해 왔었다.

그러다가 근래 화성(華城)의 군제(軍制)를 변동시키는 기회에 장횡거(張橫渠)의 이른바 ‘정전(井田)은 먼저 한쪽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는 뜻을 슬쩍 취하여 5읍(邑)을 이속(移屬)시키면서 특별히 부역을 견감하는 정사를 행하였다. 이는 대체로 본부(本府)를 설치한 것이 전적으로 소중히 해야 할 대상을 위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 만큼 이를 감싸 보호할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모두 써야 할 것인데 그 보장책으로는 인화(人和)를 도모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겠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납포군(納布軍) 5백 명·속오군(束伍軍) 5백여 명·여정군(餘丁軍) 2백여 명의 액수(額數)를 모두 감하고, 아별무사(兒別武士)를 또 1천여 명쯤 견감 해 주고, 6두(斗)와 4두를 내는 역(役)에서 각각 1두씩 감해 줄 경우, 두(斗)와 액수를 감해 주는 양을 합산하면 거의 1만여 석(石)을 초과한다. 저 1천여 군민(軍民)들이 실제로 견감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인화가 어디에 있겠는가. 첫째도 소중히 여겨야 할 바를 위해서요 둘째도 소중히 여겨야 할 바를 위해서인데 말하지 않는 가운데 자연히 감통(感通)되는 이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초기(草記)의 절목(節目)도 금중(禁中)에서 계하(啓下)하지 않고 꼭 이곳에서 하려고 한 것인데, 이는 대체로 내가 감히 스스로 지난날의 미의(微意)를 돌리지 못하겠기 때문이었다. 옛적에 한 명제(漢明帝)가 능(陵)에 올라 회계(會計)하는 관리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선유(先儒)가 이를 비난했었다. 그러나 재전(齋殿)의 경우는 그 비중으로 볼 때 태묘(太廟)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옛날 선조(先朝) 때에도 육상궁(毓祥宮)에서 가끔 강연(講筵)을 설행(設行)하기도 했었으니, 지금 이렇듯 이곳에서 빈대(賓對)를 행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는 일은 아닌 것이다.”

○次對于齋殿。上曰：“今日次對，不必於齋殿爲之，而此日此地之召見卿等，蓋有深意。予於御極之初元朝參，以汰冗兵裕民食之意，有所播告，而臨御二十餘年，別無實惠之下究者，自視歇然，實有有始無終之歎。近因華城軍制之變通，竊取張橫渠‘井田先自一方始’之義，移屬五邑，特行蠲役之政。大抵本府設施，專出於爲所重，其所拱護之道，必欲靡不用極，而保障莫先於人和。今此納布軍五百名，束伍軍五百餘名，餘丁軍二百餘名，竝爲減額，兒別武士蠲減之數，又爲千餘名，六斗四斗之役，各減一斗，而減斗減額之數合而計之，則殆過邁餘石矣。惟彼千餘軍民，得蒙蠲減之實惠，舉皆歡欣而悅豫，則其爲人和，孰大於是？一則爲所重，二則爲所重，而不言之中，自有感通之理。故今此草記節目之不於禁中啓下，而必於此地者，蓋予不敢自有歸昔日之微意也。昔漢明帝，嘗上陵，召會計吏，先儒有非之者。而齋殿所重，稍別於太廟，

故在昔先朝，亦於毓祥宮時設講筵，今此賓對之行於此地者，亦不爲無據矣。”

<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1798) 10월 19일(기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자궁의 건강함에 대해 신하들과 함께 기뻐하다

차대(次對)하였다. 좌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그저께 자궁께 음식상을 올리는 예식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마음을 봉양하는 것과 음식 잔치로 봉양하는 것이 모두 극진히 갖추어졌습니다. 자궁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전하의 효성이 더욱 빛나시니 신하와 백성들의 경사스러움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축하는 나의 마음으로서야 어찌 정성과 예법을 극진히 하고 싶지 않겠는가마는, 자궁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잔치를 차려 올려야 한다는 마음보다 항상 앞섰기 때문에 자궁의 겸양의 덕을 본받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항상 ‘부모가 나 이드신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다.’ 는 말을 반드시 하는데, 나는 두려운 마음이 기쁜 마음보다 항상 많다.

을묘년에 수원에서 음식상을 올릴 때로부터 정리소(整理所)를 설치하고 거행하였다. 그래서 을묘년 이후로는 생신날을 만날 때마다 유사에게 시키지 않고 이 정리소에서 마련해 준비하여, 자궁의 장수를 축원하는 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지난해의 규례에 따라 음식상을 올린 것이다. 자궁은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시력과 정신은 내가 따르지 못할 정도이다. 평소에 경서나 역사책에 나오는 구절 및 고사에 대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간혹 자궁께 물어보는 일이 많이 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도 한밤중까지 책을 읽으시고 또 등잔불 아래에서 1백여 장이나 되는 책자를 손수 쓰셨다. 정력이 이처럼 점점 왕성해지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로서 내가 마음속으로 기쁘고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바이다. 지금 경들을 접견하였으므로 이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였다.

○己酉/次對. 左議政李秉模曰: “再昨進饌之禮順成, 志物之養克備. 慈候益康, 聖孝采光, 臣民慶幸, 曷有其極?” 上曰: “以予祝慶之心, 豈不欲盡誠盡禮, 而惟其順志之念, 每先於飾喜之心, 故不得不仰體謙挹之德. 人之恒言, 必曰喜懼云, 而予心則懼邊, 常多於喜邊矣. 自乙卯華城進饌時, 設置整理所舉行. 乙卯以後每當慶辰, 不煩有司, 亦自本所辦備, 少伸予小子祝岡之心. 故今番亦依昨年例進饌矣. 惟是慈候, 一樣康旺, 至於眼力與精神, 則殆非予所能仰逮. 常時如經史中句語及故事, 予所未能盡知者, 間多有仰質之事. 如近日劇暑, 閱覽冊子, 至夜不輟, 又燈下手書百餘張冊子. 猗歟精力之如是漸勝, 卽予方寸中私竊喜幸者. 今見卿等, 說此喜幸之心矣.”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1799) 6월 22일(기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춘당대에 나아가 시취 및 추등시사를 실시하다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서충대(瑞慈臺) 시사(試射)와 화성(華城) 속읍의 무사들에 대한 시취(試取) 및 장용영(壯勇營) 추등시사(秋等試射)를 실시하였다.

○癸丑/御(春御臺) [春塘臺], 行瑞慈臺試射, 華城屬邑武士試取及壯勇營秋等試射.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1799) 8월 27일(계축)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약원의 제신을 접견한 뒤 진찰을 받고 처방을 의논하도록 하다

약원(藥院) 제신을 불러 접견하였다. 도제조 이시수가 안부를 묻자, 상이 이르기를, “잡아당기는 통증은 조금 나은 듯하다.” 하고, 화성 유수(華城留守)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수라는 이미 드셨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라를 어찌 챙겨먹을 수 있겠는가. 겨우 쌀미음을 조금 마셨을 뿐이다.” 하고, 이병정(李秉鼎)이 아뢰기를, “봉해 올린 장고(胖膏)는 드셨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과 같은 입맛으로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하고, 유린이 아뢰기를, “지금은 성상의 병환이 상당히 차도가 있으니 수라와 장고 등속을 연이어 드신다면 그 효과가 더 빠를 듯합니다.” 하였다.

시수가 아뢰기를, “조용히 조리하시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오래 앉아계시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의관들에게 진찰해 보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피재길(皮載吉)에게 지방 의관 김한주(金漢柱)·백동규(白東圭)와 함께 들어와 진찰해 보도록 하라.” 하였다.

재길 등이 진찰한 뒤에 상이 이르기를, “참쌀밥을 붙인 뒤에 고름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나 끓었는가?” 하니, 한주가 아뢰기를, “지금은 폭 끓었다고 봅니다.” 하고, 동규는 아뢰기를, “고름은 많이 나왔으나 아직도 폭 끓지는 않았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여러 의관과 마루 밖으로 나가 앉아 앞으로 쓸 처방을 자세히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癸酉/召見藥院諸臣. 都提調李時秀問候, 上曰: “牽疼則似小勝矣.” 華城留守徐有隣曰: “已進御水刺乎?” 上曰: “水刺豈能進御乎? 僅進飯米飲小許矣.” 李秉鼎曰: “胖膏之封入者, 亦爲進御乎?” 上曰: “以今口味, 亦何以進御乎?” 有隣曰: “今則聖候快有差復之效, 水刺與胖膏之屬, 連爲進御, 則其效似尤速矣.” 時秀曰: “靜攝中稍久起坐似難. 醫官輩使之診視何如?” 上曰: “令皮載吉, 與方外醫官金漢柱·白東圭同入診視.” 載吉等診察, 上曰: “齏米飯傅貼後, 膿出頗多, 今則膿意方至何境耶?” 漢柱曰: “今則可謂爛膿矣.” 東圭曰: “膿出雖多, 而尙未爛膿矣.” 上曰: “卿等與諸醫官, 出坐楹外, 詳議繼用之方.”

<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1800) 6월 22일(계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약원 제신들이 팔물탕을 올리겠다고 아뢰다

약원 제신을 불러 접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들어온 자는 누구인가.” 하니, 시수가 아뢰기를, “신들은 약원의 세 제조입니다.”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각신도 들어왔는가?” 하니, 시수가 아뢰기를, “좌의정·화성 유수·경기 감사·예조 판서 등은 나중에 들어올 것입니다.” 하였다. (…)

○召見藥院諸臣. 上曰: “入來者誰也?” 時秀曰: “臣等卽藥院三提調也.” 上, 又曰: “閣臣入來乎?” 時秀曰: “左議政·華城留守·京畿監司·禮曹判書追後入來矣.” (…)

<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1800) 6월 26일(정축) 4번째기사>

## 정치/왕실

### 김재찬이 제출한 정조의 비문(碑文)

숭정(崇禎) 기원 이후 1백 25년인 임신년 9월 22일에 탄생하시고, 기묘년에 왕세손(王世孫)에 책봉되고, 을미년에 정무를 대리 집행하고, 병신년에 즉위하여 경신년 6월 28일 승하하

시고, 그해 11월 6일에 화성(華城)의 현릉원(顯隆園) 동쪽 들짜 산등성이 해좌(亥坐)로 된 자리에다 장사지냈는데, 재위 기간은 24년이고 수한은 49세이시다. 【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재찬(金載贊)이 제술한 것이다】

○碑文. 崇禎紀元後一百二十五年壬申九月二十二日誕生, 己卯冊封王世孫, 乙未聽政, 丙申卽位, 庚申六月二十八日昇遐, 十一月初六日, 葬于華城顯隆園東第二岡亥坐之原, 在位二十四年, 壽四十九. 【行上護軍金載贊製】

<정조실록 정조 대왕 비문(碑文)>

### 정치/왕실

정조의 지문(誌文)으로 현릉원 천릉, 화성 축성·노래당·미로한정의 고사를 언급한 우리 정종 문성 무열 성인 장효 대왕이 왕위에 계신 지 13년 되던 해인 기유년에 현릉원(顯隆園)을 수원부(水原府) 화산(花山)으로 옮겨 모시고 그 원의 재전(齋殿)에다 어진(御眞)을 걸어두고는 거기에 혼정 신성의 뜻을 담은 다음 그 읍에다 성을 크게 쌓고 또 호위의 뜻으로 갖가지 형상을 세웠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배알할 때마다 눈물을 쏟으며 차마 일어나지 못하였다. (...) 평상시 언제나 남면(南面)의 자리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왕위를 신작을 벗어 던지듯이 버리고 싶어하는 개연한 생각을 가졌었으며 조정에서 누차에 걸쳐 휘칭(徽稱)을 올릴 것을 청했으나 그것도 끝내 허락지 않았다. 그리고 수원성 수축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남모르는 은미한 뜻이 있어서였기 때문에 그곳의 당(堂)은 이름하여 노래(老來)라고 하고 정자는 미로한(耄老閑)이라고 이름했던 것인데 하늘이 결국 몇 해 좀더 계시도록 수한을 주지 않아 천고 제왕(帝王)들이 일찍이 하지 못했던 훌륭한 업적이 당세에 실현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었던 것이다. (...)

○誌文. 我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 在宥十有三年己酉, 遷顯隆園于水原府之花山, 揭御眞于園之齋殿, 以寓晨昏之義, 大城厥邑, 以拱衛象設. 歲一謁, 輒涕泣不能起. (...) 居常無樂乎南面, 慨然有脫屣千乘之想, 朝廷請加徽稱者屢, 終不許. 築華之役, 蓋有微意存焉, 故堂曰老來, 亭曰耄老閑, 而卒不能假我數年, 俾千古帝王所未有之盛節, 不得見於當世則天也. (...)

정조 대왕 묘지문[墓誌文]

### 정치/왕실

#### 정조의 행장

(...) 왕은 울면서 하교하기를, “산리(山理)가 있는지 없는지 그야 내가 어떻게 잘라 말할 수 있겠는가. 선유(先儒)들도 저기가 좋겠다 여기가 좋겠다라고 한 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역시 그러한 이치가 없다고 할 수도 없겠으나 그러나 그 술인(術人)들 말만 믿고 경솔하게 영역(瑩域)을 옮긴다는 것은 필부·서인으로서도 그래서 안 될 일인데 더구나 국가의 지극히 중대한 일이겠는가. 다만 나에 있어서는 너무나 원통한 한이 수십 년을 두고 지금까지도 밤낮 마음에 맺혀 있어 부모의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 흙이 피부에 닿는다는[土親膚]이 세 글자만 생각하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싶은 것이다. 도위가 상소문 내에다 5개 조항을 열거했는데 그것은 도위 일개인의 말이 아닌 것이다. 지금 내 뜻이 먼저 정해져 있는데 다행히도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니 옮겨 모시는 일을 서둘러야겠다. 그런데 옮겨 모시자면 수원의 화산만한 곳이 없다. 신해년의 의궤(儀軌)가 있고 옛분들의 문자에도 이미 정론이 있으니 이제야 숙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수원 그 한 곳을 하늘이 아끼고 땅이 숨겨 오늘까지 기다려주었으니 그것이 어디 사람 힘으로 될 일인가.”



하여, 제신들이 같은 목소리로 칭하하였다. 이에 대신과 예관 그리고 서운관·장작감의 제신들을 명하여 우선 영우원 봉심부터 하게 했는데 여러 사람들 의견이 도위의 상소 내용과 꼭 들어맞았고 **또 새로 지정한 수원 땅도 봉심하게 했는데 모두가 하늘이 만들어둔 길지라고 하여 이에 화산의 계좌(癸坐) 바다에다 원침을 정하고 계축년 영릉(寧陵) 천장 때와 신해년에 장릉(長陵) 천장 때의 의례를 참고 모방하여 행하기로 하였다.** 원침을 정한 후에는 또 상설(象設) 일을 계획하도록 하면서 총호사(摠護使)에게 하교하기를,

“물자를 절약하기 위해 자기 어버이에게까지 절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성인의 교훈일진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여 되도록 최고로 아름답게 꾸며보고 싶다.”

하고, 병풍석(屏風石)과 와침(瓦簷) 그리고 상석(裳石)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하교하기를,

“내가 원침 상설에 있어 무엇이든지 최고를 쓰려고 한 것은 광릉(光陵)의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성조(聖祖)의 수교(受敎)도 있는데 만약 이 뒤의 사왕(嗣王)이 오늘의 이것을 보고서 혹시라도 제도에 벗어나는 일을 다시 한다면 그것은 나의 본의(本意)가 아니다.” 하였다.

8월 병진일에 구원(舊園)을 배알하고 원침을 열 공사를 계획했으며 경신일에는 신원(新園)의 원호를 ‘현릉(顯隆)’ 이라고 정하였다. **그리고 수원의 부치(府治)를 팔달산(八達山) 아래로 이전했는데 신원(新園)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행궁(行宮)을 설치했으며 과천(果川)·시흥(始興)에다도 모두 행궁 설치를 하고 사근평(肆覲坪)에는 창사(倉舍)를, 안양참(安養站)에는 발사(撥舍)를, 노량(鷺梁)에다는 진정(鎭亭)을 각각 두어 원침 배알 때 연로(輦路)가 머물 곳을 마련하였다.

임술일 구원에 가 작헌례(酌獻禮)를 올린 다음 원침을 열게 된 사유를 고하고 을축일에 원침을 열었는데 왕은 그때 면복(緇服)을 입고 수도각(隧道閣)에 있으면서 너무 슬퍼 몸을 가누지 못하고 가슴이 치밀어올라 곡도 제대로 못하다가 제신들이 강력하게 청한 뒤에야 비로소 수레를 돌렸다. 어떤 의논하는 자가 본생 부모에게는 예(禮)로 보아 면복이 없는 것이라고 하자, 왕이 듣고는 울면서 이르기를,

“내가 옛날 최마(衰麻)를 입어보지 못했기에 지금 추복(追服)한다는 뜻으로 이 원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보려는 것이니 예로 본들 무슨 큰 잘못이라.” 하였다.

10월 갑인일 구원에 가 현궁(玄宮)을 꺼내고 길흥 간의 의장(儀仗)이 펼쳐진 가운데 찬궁(欝宮)에다 빈소를 꾸몄는데 현궁의 체백을 모시고 나올 때 왕은 허겁지겁 울부짖으면서 걸어서 영순(靈輶) 뒤를 따랐고 빈소가 차려진 뒤에는 앞드려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새벽까지도 곡성이 멈추질 않았다. 그리하여 성상의 체후가 갈수록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발인 행사 등 모든 일과 신원 역사 등을 지시하는 데는 조금도 빈틈이 없었다. 그날 왕이 울면서 제신들에게 이르기를,

“옛 광중에 그렇게까지 갖가지 재해가 있었는데도 차마 28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현궁을 거기에다 모셔두었으니 나의 불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부터나 그 하늘에 사무치는 원통함이 다소라도 풀리려는지. 이제 제사 모시는 절차와 원침 주변에 갖출 것을 다 갖추어서라도 그것으로나마 작은 정성을 표해야겠다.”

하면서, 말 따라 눈물이 계속 흘렀던 것이다. 그리고 빈소가 차려진 후 각종 제사와 아침·낮·밤의 궤전(饋奠)에 있어서도 그를 모두 친히 행하고 제물 올리는 일만 대행시켰는데 대체로 양암(亮陰) 의식을 취한 것이고 또 우제(虞祭)가 아니면 목욕하지 않는다는 예(禮)의 뜻도 따른 것이었다.

정사일에 상여가 떠나면서 독진(蠶津)으로 강을 건넜는데 그전에는 으레 용주(龍舟)를 써왔으나 그때 처음으로 부교(浮橋)를 이용하였다. 왕이 처음에는 발인 뒤를 따를 계획이었으나 자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강어귀까지만 왔다가 환궁하였고 이튿날 새벽에야 뒤쫓아 출발하여 수원부(水原府)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때 상여는 이미 신원에 도착해 있었다.

기미일 신원에다 현궁을 내리고 그날 밤 원침 주변의 공역(工役) 과정을 친히 살펴본 다음 날이 밝아서 어가를 돌려 과천에서 저녁을 나고 그 이튿날 환궁했는데 빈소를 열었을 때부터 현궁을 내릴 때까지는 하늘이 맑고 겨울 날씨가 봄 같다가 대가가 돌아오자마자 큰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몹시 추워져 마치 하늘이 도운 것 같았다.

왕이 친히 지문(誌文)을 쓰고 제신들에게 하교하기를,

“지문이란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것인데 차마 쓰지 못할 것을 쓰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도 말을 했다. 그 이유는 양궁(兩宮)의 사랑과 효성을 밝히고 그리하여 이 소자(小子)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를 유궁(幽宮)에 간직하여 백세 후의 참고가 되게 하리라.” 하였다. 그리고 내탕전(內帑錢) 십만 폐미를 내려 수원의 치소(治所)를 옮기고 집 짓고 하는 데 쓰도록 했으며, 이어 수원 백성들에게 유시하기를,

“이 화산은 그전부터 영기가 모여진 곳으로서 원침을 정하기로 결의하고 드디어 옮겨 모시는 일을 마쳤으니 이 고을은 바로 나의 묘가 있는 고을이며 너희들은 바로 이 고을 백성들이다. 나는 앞으로 너희들을 내 식구처럼 여기고 먹을 것도 넉넉하게 하고 가산도 풍족하게 해주어 너희들로 하여금 생활의 안정을 누리고 생업을 즐기도록 하여 내가 할 책임을 다하고 내 마음도 여유있게 가지리라. 보통 행차하는 연로가에도 은택이 베풀어지는 것인데 하물며 이 고을 이 백성들이겠느냐. 원침 부근의 면리(面里)와 그곳에서 옮겨간 백성들은 앞으로 십년 동안 복호(復戶)하고, 읍 전체의 면리는 일년 동안 복호할 것이며, 온천 행행의 행차를 두 번씩이나 본 부모(父老)들은 조관(朝官)인 경우 70세 이상, 사서인은 80세 이상이면 가자(加資)하고, 수원 관내의 유자와 무인에 대하여는 내년 봄 전성(展省) 때 과거시험을 보일 예정이니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을 무마하려고 하는 이 충심과 지성을 이해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원침을 잘 보호하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처음에 왕이 원침 옮겨 모시는 일을 하려면서 내사(內司) 관원을 강화도로 보내 인(禰)을 불러들여 남 모르게 성 안에까지 들어왔었는데 조정 신료들은 까맣게 모르는 사실이었다. 이윽고 자전(慈殿)이 누차에 걸쳐 언교(諺教)를 내려 제신들을 책망했으므로 대신 이하가 청대를 했는데 만나는 것을 불허하였고 문을 밀치고 들어갔어도 접견을 하지 않았다. 자전은 중사(中使)에게 명하여 인을 그 배소로 다시 압송하도록 하였으며 여러 대신들이 금부의 당상관과 포도 대장으로 하여금 자전이 시킨 대로 받들어 거행하도록 했는데 왕은 그 즉시 수레를 챙기라 하여 돈화문(敦化門) 밖까지 이르렀다. 이에 제신들은 죽기를 작정하고 수레를 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수레가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부득이 대내로 돌아왔다. 그해부터는 해마다 한 차례씩 제신들은 아무도 모르게 인을 서울로 불러들이기도 하고 뜻밖에 대가가 친히 가서 그를 만나보기도 하면서 별영(別營)·태창(太倉)·남영(南營)·북영(北營) 등 여러 곳을 행행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일체 비밀에 부치고 군대를 시켜 호위했기 때문에 문을 밀치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 뜰에 가서 간하려 해도 전달이 되지 않았다. 왕은 원래 도량이 넓고 선(善)이라면 금방 따랐지만 유독 그 일에 있어서만은 일체 권도를 썼던 것이다. 그리고 늘 제신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두고 이른바 주공(周公)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공의 심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 마음도 이해를 할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제신들이 인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자가 있으면 왕은 곧 화를 내고 꾸짖었으며 대성(臺

省)에다 금방(禁榜)을 걸어두고 그 문제라면 말을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하교하기를, “말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어찌 치세(治世)의 일이겠는가. 나도 마지못해 하는 일이다. 시간을 두고 조정 분위기가 다소 안정이 되면 그때는 하나도 숨길 것 없이 문호를 활짝 열 것이니 그동안은 억지로 쟁집하지 말라.” 하였다.

양녕 대군(讓寧大君) 사당에 사액(賜額)을 내려 지덕(至德)이라고 하고, 효령 대군(孝寧大君)에게는 사제(賜祭)를 하였다. 왕은 언제나 국가 초기의 우수했던 일족들을 생각하여 진안 대군(鎭安大君) 무덤 앞에도 비를 세우고, 의안 대군(宜安大君) 묘에도 수호하는 사람을 두었으며, 단종(端宗) 때의 다섯 종신(宗臣)에게는 단(壇)을 쌓고 제사까지 지냈다.

14년 봄에 왕이 병석에 누워 한 달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원상회복이 되었는데 이때 제신들이 경하할 것을 청하자, 하교하기를, “뜻밖의 재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했다가 병이 들어 어버이에게 걱정을 끼쳐드렸으니 자신을 나무라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감히 무슨 하례를 받을 것인가.” 하였다. (…)

**현통원을 배알하고 수원부(水原府)를 화성(華城)이라 이름했으며,** 부사(府使)를 승격시켜 유수 겸 장용 외사(留守兼壯勇外使)라고 하고, 판관(判官)을 두어 보좌하게 하였다. 장용영(壯勇營)의 병방(兵房)을 장용사(壯勇使)로 고치고, 문첩(文牒)에는 대장(大將)이라는 칭호를 써 마치 어영사(御營使)를 칭하여 어영 대장(御營大將)이라고 하듯 했으며, 또 도제조를 두어 마치 경리영(經理營) 도제조를 삼공(三公)이 으레 겸임하듯 하는 식으로 했다. 그리고 호위 대장(扈衛大將)도 같은 청(廳)으로 소속시켜서 내영 외영 제도를 비로소 완비하였다.

3월에 숙선 옹주(淑善翁主)가 태어났다. 내원(內苑)에서 꽃구경을 하면서 시임·원임의 각신(閣臣)과 각신의 자제들 그리고 승지·사관 등을 불러 39명 수를 채웠는데, 그것은 그해가 계축년이고 그달이 모춘(暮春)이었기 때문에 난정(蘭亭)의 계모임을 모방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신들을 명해 내원의 볼 만한 곳을 마음껏 구경하게 하고 이어 술과 음식을 내려 각기 흐르는 물가에 와 마시고 율게 했다가 밤이 되어서야 파했는데 그를 두고, 태평성대의 성대한 일이었다고 한때 전승하였었다.

그때는 경사가 거듭 겹치고 조야(朝野)가 안정된 시기였다. 왕은 화기를 불러들이고 국가 운명을 장구히 하자면 백성들의 답답증을 풀어주고 막혀있는 것을 터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에 양전(兩銓)에 명령을 내려 일대 회탕(恢蕩) 정책을 펴도록 하고 혹은 중비(中批)를 내리기도 하였으므로 가끔은 몇 10년씩 묵혀 있다가 비로소 갓을 털고 일어선 자도 있었다.

가을에 빈연(賓筵)에 나아가 대신 이하 제신들에게 하교하기를,

“내 그 아무해 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차마 말 못할 것들이기에 감히 말하지도 않지마는 금등(金騰) 한 가지 일만은 경들에게 말 한마디 해두고 싶었는데 너무 슬프고 원통해서 아직 말을 꺼내지 못했다. 선왕께서 언젠가 휘령전(徽寧殿)에 납시어 사관(史官)도 물리치고 어서(御書)로 된 문자 하나를 신위(神位) 밑 요 속에다 넣어두셨는데 병신년에 문녀(文女)의 죄악상을 세상에 알릴 때 비로소 꺼내보았었다. 경들도 한번 보라.”

하고는, 금등 등본(騰本) 두 구절을 꺼내보였는데, 영조가 경모궁(景慕宮)의 죽음을 뒤늦게 슬퍼하여 쓴 어제였었다. 이에 왕도 울었고 제신들도 다 눈물을 흘렸다.

원릉(元陵)을 배알하고 그 지역 내의 여러 능들도 두루 배알했다.

겨울에 대신 이하 제신들이 자전(慈殿)과 자궁(慈宮) 그리고 경모궁에 대해 유양(揄揚)의 예를 거행할 것을 청하고 또 왕에게도 존호 올릴 것을 청하자, 자궁께 여쭙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비답을 내리고 그 말미에 이르기를,

“내게도 존호를 올리겠다고 하니 경들이 임방(林放)만 못할 줄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존호 올리는 제도가 비록 삼대(三代) 이후에 비롯된 제도이나 그동안 명철한 임금들이 모두 그 일을 행하고 그 제도를 더 다듬고 손질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위로 하늘의 사랑에 보답하고 아래로 못 백성들 뜻을 따라 태평성대의 아름다운 현상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방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전장(典章)이 있어 나도 일찍이 선왕께 정성을 다해 빌고 간청하자 그 겸손하신 선왕께서도 애써 당신 뜻을 굽히고 따라주신 일이 있었다. 나라고 어찌 감히 유별나게 많은 사람들 뜻을 어기고 물리치기야 하겠는가마는 내 말을 듣고도 내 뜻을 거스른다면 그는 결코 인인(仁人) 군자(君子)가 차마 할 일이 못 되는 것이다. 예(禮)가 원래 인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의리에 의하여 예가 제재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숭봉(崇奉)은 내가 말하는 숭봉과는 다르다. 내 감히 최고의 의리를 부질없이 경전(經傳)에 그냥 기록되어 있게만 해서 앞으로 천년 이후에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있다면 나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체득하여 나로 하여금 내 초지(初志)를 이루게 하리라. 나의 초지라면 오직 ‘장순(將順)’ 그 두 글자뿐이다.”

하였다. (...)

**겨울에는 화성(華城)의 성 쌓던 일을 정지시켰다.** 계축년부터 쌓기 시작하여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와서 6도에 기근이 들자 왕은 누차 공사를 정지시키려 했으나 제신들 주장은, 성 쌓는 일이 재정을 축내는 일도 아니고 백성을 병들게 만드는 일도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하교하기를,

“성을 쌓는 것도 소중함을 위해서이며 정지시키는 것도 역시 소중함을 위해서인 것이다. 지금 삼남과 경기 지역이 가을을 맞고서도 밭고 의지할 곳 없는 신세가 되었고 서북 지방 역시 어려운 실정이어서 자전과 자궁에 올리던 것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성 쌓는 일이 아무리 중하다지만 같은 중한 것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법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정지하면서 저것은 정지를 안 할 것인가. 한 나라의 재화(財貨)는 일정한 양이 있어서 농사지을 백성들의 해를 이어갈 양식 아니면 기민을 먹일 호구할 거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들 농사와 기민 먹이는 일 다 놔두고 우리 성 쌓는 일에만 중사하라.’ 한다면 그것이 사리에 닿을 일인가.

혹자는 말하기를, 흉년에 토목 공사를 하면 오히려 주휙(賑恤)까지 겸하는 일이 된다고 하면서 주자(朱子)가 남강(南康)에서 했던 일과 범희문(范希文)이 절서(浙西)에서 한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개 군이나 일개 진(鎭)에서 시행할 정책일 뿐이지 나야 한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나라 전체의 백성이 모두 내 적자(赤子)들인데 그 수많은 부황난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도 장사도 말고 오직 성 하나 쌓는 곳에 붙어서 일하고 먹으라고 한다면 살린대야 몇 사람이나 살리겠는가. 지금 해야 할 일로서는 모든 정신을 구황 정책 그 한 일에만 집중시켜야 한다.”

하고, **이어 화성부에 윤음을 내려 그 역사를 정지하게 하였다가 을묘년에 가서야 성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각 지방에 큰 기근이 들고 삼남(三南)은 더했는데 왕은 각신과 승지들을 나누어 보내 위로의 윤음을 내리고 배에다 곡식을 싣고 가 탐라(耽羅) 백성들을 먹이게 하였다. 왕은 탐라가 먼 바다 속에 있는 땅이라 하여 더욱 먼 곳을 회유하는 생각으로 흉년 소식만 들으면 언제나 다른 지방에 우선해서 진휼하였고 배가 갈 때는 반드시 제문(祭文)을 친히 지어 해신(海神)에 제사하도록 하였다.

『주서백선(朱書百選)』이 만들어졌다. 왕이 주자서(朱子書)를 가장 좋아하여 『어류(語類)』

와 『대전(大全)』에서 뽑아 『선통(選統)』·『회영(會英)』·『회선(會選)』 등의 책을 만들고 또 서독(書牘)에서 뽑아 묶어 『백선(百選)』을 만들어 활자로 간행하였다.

19년 봄에 정순 대비·경모궁·혜경궁에 존호를 더 올리고 즉위 20년의 하례를 받았다. 문관은 시종(侍從) 이상, 무관은 곤수(關帥) 이상, 음관은 준직(準職)이상으로 나이 61세인 사람에게는 모두 1급씩 가자(加資)했는데 그해의 은총을 나누기 위한 뜻인 동시에 작상(爵賞)이 너무 함부로 내려지는 것도 고려해서였다. 자전·자궁을 모시고 경모궁에 예를 행하면서 곤전(坤殿)도 함께 참여했는데 그날이 바로 장헌 세자의 환갑이었기 때문이다. 윤2월에는 자궁을 모시고 화성(華城)에 행행하여 현릉원을 배알한 다음 돌아오는 길에 화성에 들러 성 내의 군사 훈련과 야간 훈련을 사열하고 봉수당(奉壽堂)에 나아가 자궁께 찬(饌)을 올리면서 칠작례(七爵禮)를 행하고 이어 신평루(新豐樓)로 옮겨 본부(本府)의 사민(四民)에게는 쌀을 내리고 기민들에겐 죽을 내렸다. 그리고 낙남헌(洛南軒)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는데 못 노인들이 잔을 올려 수를 빌었다. 그리고 원(園) 밑에 사는 백성들은 복호 2년, 화성 백성들은 복호 1년씩을 명하였다. 능원(陵園) 행행 때면 탁지부 신하가 정리사(整理使)가 되는 것이 옛날부터의 조례였는데 그 해부터는 원에 행행 때 안팎으로 정리사를 두어 모든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하고 정리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곡식을 사서 3백 주현(州縣)에다 나누어 보관해 두고 이름하여 정리곡(整理穀)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거나 나누어주는 데는 일정한 규정이 있었으며 그것으로 또 제주도의 진흙할 물자로 보태기도 하여 사랑의 은총이 미치는 범위를 넓히기도 하였다. 화성의 성묘(聖廟)를 배알하고 교궁(校宮)에다 경서(經書)와 노비를 하사하였다.

정동준(鄭東浚)의 관직을 삭탈하였다. 동준이 시종관으로 있던 시절부터 상의 후한 사랑을 받아 벼슬이 이경(貳卿)에까지 이르렀는데 왕명을 사칭하고 성상을 속이면서 그의 마음과 하는 짓이 괴상 망측하였다. 그리하여 언자(言者)가, 그의 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청했었는데 동준은 그후 곧 자살하고 말았다. 그런데 조참(朝參) 때 그의 고신(告身)을 거두어 불태워버리라고 명하고 이어 일대 출척(黜陟)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어필로 된 성적비(聖蹟碑)를 정주(定州)의 달천(獐川)에다 세웠는데 태조(太祖)가 개선한 자리이고 선묘(宣廟)가 주필(駐蹕)했던 곳이다.

선희궁(宣禧宮)을 배알하고 세심대(洗心臺)에 나아가 제신들에게 술을 내렸다. 왕이 이르기를, “해마다 이때면 내가 꼭 이 대에 오는 것은 여가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경모궁(景慕宮)을 처음 세울 때 정했던 자리이기 때문이다. 옛 을묘년 나라 경사 때 고 중신 박문수(朴文秀)가 여러 경재(卿宰)들과 필운대(弼雲臺)에 모여 기쁨과 축의를 표했었는데 그때 영성군(靈城君)의 시가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는 운대가 바로 이곳이다. 금년 역시 천재에 만나기 어려운 기회이니 경들도 전인(前人)들이 했던 것처럼 이 태평 연월을 한번 빛나게 장식해보게나.” 하였다.(…)

현릉원을 배알했다. 화성(華城)의 성가퀴·망루 등을 두루 둘러보고 제신들에게 이르기를, “효묘(孝廟)가 후원에다 척뇌당(滌惱堂)을 지어두고 내구마(內廐馬)를 타고서 중관(中官)에게 고삐를 잡히고 날마다 그 당에 가셨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힘든 일을 익히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말을 타고 힘든 것을 연습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법(家法)인 것이다. 나도 금원(禁苑)에서 군무 관계로 전좌(殿座)하게 되었을 때면 반드시 말을 타는데 그는 열성조 고사(故事)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비록 온종일 말을 달려도 피로한 줄을 모르는 것이다.”

하였다. (…)

22년 봄에 현릉원을 배알하고 화성부(華城府)에 목으면서 이르기를, “원침(園寢)을 모신 지 지금까지 10년이 되도록 아직 이 부와 이곳 백성들에게 혜택이 미친 적이 없었으니 그것이 어찌 내 본의이겠는가. 성지(城池)가 아무리 든든하다 해도 어찌 못 백성들 마음이 성이 되어주는 것만 하겠는가. 백성들 마음부터 든든해야 일심으로 가꾸고 보호할 것이다. 을묘년 정리곡(整理穀)을 각도에다 분산 배치한 것은 그것이 비록 사랑과 은혜를 널리 베풀자는 뜻이었으나 3백 개의 주군(州郡)을 상대로 주고 걷고 하는 과정에서 어찌 폐단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름이 정리곡이라면 모곡은 더 받지 않아야 그 제도를 둔 본의에 맞는 것이니 그 정리곡을 모두 화성부에 소속시키고 모든 본부로부터 받는 곡(穀)에 대하여는 모곡 징수를 영원히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여름에 하교하기를, “벌레가 벼와 원침의 나무들을 해치고 있다면 그를 잡아 없애지 않아서야 될 일인가. 주관(周官)의 서씨(庶氏)·전씨(剪氏)도 그 때문에 두었던 직(職)이었다. 구덩이를 파고 불에 태워 물어버리는 것은 당(唐)의 요숭(姚崇)이 처음으로 했는데 그후 역대로 그렇게 시행해서 그것이 성헌(成憲)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근자에 원침의 나무들을 벌레가 해치고 있어 나무를 심었던 10개 읍을 시켜 잡아 없애라고는 하였으나 그 벌레라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生物)이기 때문에 늘지대로 몰아내버리는 것이 불에 태워 죽이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리하면 생물을 살리는 덕도 그 속에 있는 것 아닌가. 듣기로는 벌레가 날아 바다로 들어가서 어하(魚蝦)로 변했다고 복파(伏波)가 무릉(武陵)을 다스릴 때의 생생한 증험이 아직도 전해오고 있지 않은가. 그 벌레들을 잡아 구포(鵑浦) 어귀에다 던져 버리라.” 하였다.

경외의 사형수들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제신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소결(疏決)할 때에 전례대로 정전에 임어하지 않은 까닭은 내 마음에 저으기 말못할 슬픔이 있어서이다. 천하 만사가 모두 내 마음으로 남을 헤아리는 것인데 심도(沁都) 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을 도려내는 듯하여 정전에 앉아 유배보내는 무리들을 놓고 가부를 평론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당상들만 해조에 모여서 사형수의 안(案)만을 여쭙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그때 가뭄이 너무 심해 모를 제때에 내지 못했으므로 각도에다 다른 곡물을 대신 심도록 권장하였다.

가을에는 경릉(敬陵)·창릉(昌陵)을 배알하고 그 구역 내에 있는 여러 능도 배알했다.

장용 외영(壯勇外營)에 오위(五衛) 제도를 창설했다. 국조의 군제(軍制)가 처음에는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두었다가 삼군부가 오위(五衛)로 바뀌면서 부(部)와 통(統)을 정하고 군대를 선출하는 법을 만들었으며, 민(民)과 병(兵)을 통합하여 군대를 농민에 붙이는 제도를 두었다. 그러다가 그후 군문(軍門)을 설치하고 영사(營司)를 두면서 위(衛) 제도는 폐지되었다. 화성(華城)은 원래 경기 관내의 중진(重鎭)이기에 마병·보병의 군대 편제가 그 규모에 있어 훈련 도감과 비슷했었는데 계축년에 영(營)으로 승격된 후로는 국초에 함경도 마군(馬軍)을 친군위(親軍衛)라고 했던 것처럼 친군위 3백 명을 두고 보군(步軍) 26개 초(哨)를 두었다가 뒤이어 용인(龍仁) 등 5개 읍의 속오군(東伍軍) 중에서 정예하고 건장한 자를 뽑아 12개 초를 더 둬으로써 규모를 일영 오사(一營五司)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본부 및 본부에 소속된 읍의 민병들을 뽑아 서로 번갈아가면서 성을 지키게 하는 제도도 새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사(司)·초(哨)의 명칭을 바꿔 위(衛)·부(部)로 하고 1개 영을 5개 위로, 5개 위는 25개 부로 편성하여 내외 영군(營軍)이 총 5천 명으로 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절목을 비변사가 만들어 올리자, 왕은 여러 무장(武將)들에게 이르기를, “화성

이 군대 편제에 있어 다른 곳보다 먼저 옛날의 부·위 제도를 채택했는데 그도 의리와 관계가 있는 일이다.” 하였다. (…)

○行狀.(…) 予於御極以後，務極節省，一年用餘，別儲一庫，名曰保民庫，以備水旱之用，前後賑資，亦賴此耳。” 拜顯隆園，號水原府爲華城，陞府使爲留守兼壯勇外使，置判官以佐之。改壯勇營兵房爲壯勇使，文牒稱大將，如御營使之稱御營大將，置都提調，如經理營都提調三公例兼。而扈衛大將合廳屬之，內外營之制始備。(…) 『人瑞錄』成。王，以是年大慶，既稱賀于殿宮，大覃恩中外，乃召耆臣六卿以上，指授義例，編次京外蒙恩老人之數，作爲一書，名曰『人瑞錄』，印布壽傳。冬，停華城城役。自癸丑始築，工幾完，至是，六道告歉，王屢欲停役，諸臣言工役之不傷財不病民。教曰：“城役爲所重也，停役亦爲所重也。顧今三南畿甸，方秋顛連，西北亦奏艱食，殿宮獻御，猶且停免，則城役雖重，自有層節，豈可此停而役不停哉？一國財貨，只有此數，非耕民嗣歲之糧，則卽賑民糊口之資，今日‘捨汝耕賑，從我城役，’是豈理也哉？或曰，歉年興作，可兼調恤，以朱子南康故事，范希文浙西已跡爲說，而此特一郡一鎮之政，予君臨一國，一國之民，皆吾赤子，不能使百億萬頷顛之類，不農不商，仰食於一城之役，則所活者幾何？爲今之道，莫如聚會精神於荒政一事。” 仍下綸音于華城府，停其役，至乙卯，城始成。諸路大饑，三南尤甚，分遣閣臣承旨，賚綸音慰諭，船粟往哺耽羅之民。王，以耽羅處絕海，尤勤柔遠之念，每聞饑荒，軫恤先於諸道，泛舟之役，必親製文祭海神。『朱書百選』成。王最喜朱子書，選『語類』·『大全』，爲『選統』·『會英』·『會選』諸書，復取書牘約之爲『百選』，活字印行。十九年春，加上尊號于貞純大妃·景慕宮·惠慶宮，受卽阼二十年賀。命文侍從以上，武闔帥以上，蔭準職以上六十一歲人，并加一資，蓋推是年之恩，而又恐爵賞之太濫也。陪慈殿·慈宮，行禮于景慕宮，坤殿同詣，是日，卽莊獻世子周甲誕辰也。閏二月，陪慈宮，幸華城，展拜顯隆園，還御華城，閱城操夜操，御奉壽堂，進饌于慈宮，行七爵禮，御新豐樓，賜本府四民米，饋饑民粥。御洛南軒，行養老宴，群老進爵獻壽。仍命園底居民，復二年，華城居民，復一年。舊例陵園幸行，度支之臣爲整理使，而自是歲園幸，置內外整理使，辦理諸務，以整理餘錢作穀，分置三百州縣，名曰整理穀。斂散如式，又補耽羅賑資，以廣慈恩。謁華城聖廟，賜經書臧獲于校宮。奪鄭東浚官爵。東浚自簪筆，厚被上卷，官至貳卿，而矯旨誣聖，情跡叵測。(…) 周覽華城城堞樓櫓，謂諸臣曰：“孝廟作滌惱堂於後苑，御內廐馬，使中官執鞚，日臨是堂，實出習勞之聖意，蓋跨馬習勞，卽我家法也。予亦於禁苑，以戎事殿座，必騎馬者，追列聖故事。雖終日馳驅，不覺其勞也。” 夏四月，元子與師傅·諭善，行相見禮。王，召見師傅·諭善，教曰：“今日行禮，皇天祖宗之默佑也。就傳之節，自有體貌，予雖未見其拜揖之儀，初聞講讀之聲，予心嘉悅。卿等其善輔導也。” 自是，元子講學之暇，每命侍坐，華盛之服，膏腴之味，勿令近口體。嘗語筵臣曰：“予自少讀書，必有課程，而近爲元子，益增三餘之工矣。” 教曰：“記昔先朝，惟農是重，耕耘之節，夙駕親省，每在城南之野，至今父老，攀聖蹟而頌聖德，臺其地而名之曰省耕。予屢陪鑿蹕，尚今記有。” 仍命閣臣，書臺號刻石以表之，又命各築一臺於東西兩郊。王，嘗遇三皇及列聖諱辰，輒御素膳，語賓筵諸臣曰：“近古以上，公坐會飯，不食牛肉，國忌齋戒，朝臣皆蔬食兩日。先朝初年猶如此，惟大享之太牢，進宴之大膳，始用牛肉，卽古人無故不殺牛之義。而今則此法蕩然，各宮房皆有所屬牛肆云，執法之有司，先自宮房而嚴加操切，豈有冒濫犯禁之弊乎？” 秋拜章陵，詢本郡父老疾苦，復一年，甲寅，瞻旄者年七八十人，各加一資。仍歷幸愍懷墓，拜顯隆園。○] 二十二年春，拜顯隆園，次華城府，曰：“陪奉園寢，今爲十年，尚無惠澤之及於是府是民者，此豈本意也？城池雖完，終不若衆心之成城？民心固然後，拱護可專。乙卯整理穀之分置各道，雖出廣慈惠之意，三百州郡斂散之際，安得無弊？名以整理穀，則不復取耗者，設置之本意也，仍以整理穀屬之華城府，凡本府之穀，永除其耗。” 夏，教

曰：“蟲損嘉禾樹，安得不捕而除之？周官庶氏·剪氏之職，爲是設耳。掘坑焚瘞，始於唐時姚崇，歷代因之，遂爲成憲。近者園寢桑梓，有蟲損之害，使植木十邑捕除，而是蟲卽蠢動之生物，驅而放菹，勝於烈而焚之。宜令曰生之德，竝行於其間？嘗聞蟲入海，化爲魚蝦，伏波之治武陵，明驗尙傳？其令投之鷗浦海口。”疏決京外死獄，語諸臣曰：“予於疏決，不如例臨殿者，予心竊有隱忍畫傷者。天下萬事，莫不有絜矩之義，念及沁都，予心如割，以何心臨殿評論可否於流放之類乎。此所以只令諸堂，會直該曹，只稟死囚之案者也。”時久旱，移秧愆期，飭諸道代播之政。秋，拜敬陵·昌陵，歷拜局內諸陵。創壯勇外營，五衛之制。國朝軍制始創義興三軍府，三軍變爲五衛，定部統而作選井之法，摠民兵而成寓農之規。逮夫設軍門置營司，而衛法廢。華城，素稱畿輔重鎮，而馬步軍制，略倣訓局，癸丑陞營之後，依國初永安道馬軍稱親軍衛之例，置親軍衛三百人，置步軍二十六哨，仍抄龍仁等五邑東伍之精壯者，增置十二哨，成一營五司。又以本府及屬邑民兵，創爲守城之制，互相分隸。遂改司哨之名，而定衛部之法，以一營分五衛，五衛摠二十五部，內外營軍，摠爲五千。備邊司成節目以進，語諸武將曰：“華城軍制，先復衛部之舊制，是亦義理所關也。”『五經百篇』成。取『易』·『書』·『詩』·『春秋』·『禮記』九十九篇，置『庸』·『學』於『禮記』中，以朱子章句序，附其下，以倣『孟子』卷末附明道墓表之義，劂剛印行。(…)設行宮於陪京，以壯拱護之地，妥御眞於齋殿，以替定省之儀。每歲拜園，駐蹕遲遲之臺，瞻望夷猶，不忍旋駕，卽夫子遲遲去父母國之義也。庚申春幸，有御詩曰：‘明發華城回首遠，遲遲臺上又遲遲，嗚呼詩成而鑿蹕不復臨矣。至若含哀茹痛，無樂爲君，在有二紀，群臣不敢陳揚微之請，堂曰老來，樓曰新豐，聖人微意，非臣等之所忍言，而莫非聖孝之攸推也。(…)

<정조실록 정조 대왕 행장(行狀)>

## 정치/왕실

### 천릉 비문(遷陵碑文)

정종 문성 무열 성인 장효 대왕(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은 승정(崇禎) 기원 후 125년인 임신년 9월 22일 탄생하였다. 기묘년에 왕세손(王世孫)에 책봉되었고 을미년부터 대리 청정하다가 병신년에 즉위하였으며 경신년 6월 28일에 승하하여 11월 6일에 화성(華城) 현릉원(顯隆園) 동편 들짜 산등성이 해좌(亥坐) 언덕에 장사했다. 24년간 재위하고 수한은 49세였으며 신사년 9월 13일 다시 원의 바른편 기슭 자좌(子坐) 언덕으로 옮겨 모셨다. 비(妃)는 예경 자수 효의 왕후(睿敬慈粹孝懿王后) 김씨(金氏)인데 승정 기원 후 126년 계유년 12월 13일 탄생하고, 임오년에 세손빈(世孫嬪)에 책봉되었다가 병신년에 왕비로 책봉되고 경신년에 금상(今上)이 위를 이어받자王大妃(王大妃)가 되었다. 신사년 3월 9일 승하하여 9월 13일 건릉(健陵)에 부장(祔葬)하고 봉분을 함께하였다. 천수는 69세를 누렸다. 【좌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제술하였다】

○遷陵碑文.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 崇禎紀元後一百二十五年壬申九月二十二日誕生. 己卯冊封王世孫, 乙未聽政, 丙申卽位, 庚申六月二十八日昇遐, 十一月初六日, 葬于華城顯隆園東第二岡亥坐之原. 在位二十四年, 壽四十九, 辛巳九月十三日, 遷奉于園之右麓子坐之原. 妃睿敬慈粹孝懿王后金氏, 崇禎紀元後一百二十六年癸酉十二月十三日誕生, 壬午冊封世孫嬪, 丙申冊封王妃, 庚申今上嗣位, 尊爲王大妃. 辛巳三月初九日昇遐, 九月十三日, 祔葬于健陵而同封. 壽六十九. 【左議政南公轍製】

<정조실록 정조 대왕 천릉 비문(遷陵碑文)>



정치/왕실

천릉 지문(遷陵誌文)

아, 우리 열고(烈考) 정종 대왕을 화성 현릉원 산기슭에다 장례 모시고 이름하여 건릉(健陵)이라고 했는데 식견 있는 나라사람들 모두가, 그곳은 지대가 낮고 평이하여 성인을 오래 모셔둘 곳이 못 된다고 우려를 하였다. 그로부터 22년 후인 신사년 3월 9일 기미일에 우리 효의 왕후(孝懿王后)가 홍서하여 선릉(先陵) 부근에다 자리를 정하려고 했는데 이때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조순(金祖淳)이 상소하여 현재 능 모셔진 곳의 우려점에 대해 소상히 말하고 이어 길토(吉土)를 골라 1만 년 영구책을 세울 것을 청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비답하기를,

“대행 대비(大行大妃)께서도 평소 그 점을 크게 걱정하시고 소자(小子)에게 누차 하교를 하셨는데 지금 경의 상소를 보니 더욱 목이 메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다.”

하고, 즉시 대신(大臣) 경재(卿宰)를 불러 정의(廷議)를 하게 했던 바 아무 이의없이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리하여 대신과 예관(禮官) 및 일을 맡아 관리할 신하를 명하여 널리 자리를 찾아보게 하고 또 이어 두번 세번 복안(覆按)도 하게 한 끝에 현릉원 바른편 산등성이 자좌(子坐) 언덕을 찾아냈는데 아주 길지였다. 거기에 능천광을 내고 동혈(同穴)로 모시게 만든 다음 선왕을 옮겨 장례하고 왕후를 부장했으며 능호(陵號)는 종진 그대로였는데 그때가 바로 그해 9월 13일 경신일이였다.

이에 온 국민 모두가 또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서로 축하하기를,

“먼저 능 자리는 참으로 염려가 많은 곳이었고 선왕의 뜻은 꼭 화성에 있었고 했는데 이제 두쪽 다 유감없이 잘되었다.” 했다.

처음 선왕 13년 기유년 영우원(永祐園)을 수원부(水原府) 화산(花山)으로 옮기고 원호를 현릉(顯隆)으로 바꾼 다음 화성(華城)을 크게 쌓아 모든 시설들을 호위하게 하고 또 원의 재전(齋殿)에다는 어진(御眞)을 걸어 혼정신성의 뜻을 나타냈으며 해마다 전알(展謁)하면서 애모(哀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리고 19년 을묘년에는 자궁(慈宮)을 모시고 원 배알을 하고는 화궁(華宮)으로 돌아와 술잔을 올려 수를 빌면서 하교하기를,

“일찍 아버지를 여윈 나로서 이곳에서 이 예를 거행하고 나니 지극한 소원이 대강 풀린 셈이다.”

하기도 했었다. 언제나 원을 배알하고 대가가 돌아올 때면 지지대(遲遲臺)에 행차를 멈추고 시간을 끌며 돌아보느라 차마 훌쩍 떠나지를 못했으며, 화궁의 당(堂)을 노래당(老來堂)이라 이름하고 누(樓)는 신평루(新豐樓)라고 했는데 그것은 은미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면(南面)도 다 싫고 천승(千乘)도 신발 하나 벗듯이 할 심경이었으면서 유독 화성만을 그렇게도 못잊어했었으니 그는 바로 맹자(孟子)가 이른바, 대효(大孝)는 죽을 때까지 부모를 사모한다고 했던 그것인 것이다.

지금 또다시 원을 옮기려는데 천광 자리가 있는 곳이 내내 또 화성이었으니 이는 하늘이 또 우리 선왕에 대해 큰 느낌을 받고 여기에다 유택을 준 것이며 한편 우리 전하의 효성도 선왕을 닮아 우리 열고(烈考)와 문모(文母)를 영원히 편안하게 모시도록 한 것이리라. 아, 이 얼마나 잘된 일인가. (...)

○遷陵誌文. 嗚呼! 我烈考正宗大王, 既大葬于華城顯隆園之東麓, 是曰健陵, 國人之有識慮者, 皆竊憂其地淺夷, 非聖人安久之藏. 後二十二年辛巳三月九日己未, 我孝懿王后薨, 將筮兆于先陵, 領敦寧府事臣金祖淳, 上疏極言陵地可憂狀, 請精擇吉土爲萬年之圖. 我殿下涕泣下批曰: “大行大妃, 平日以是大憂, 屢下教於小子, 今見卿疏, 益不勝摧咽悶悚.” 卽召大臣卿宰廷議

之，議僉同無貳。遂命大臣禮官及敦匠之臣，廣行相視，又使再三覆按，乃得顯隆園之右坐子之岡，爲尤吉治。方中爲同穴之制，緬奉先王，而后祔焉，陵仍舊號，實是年九月十三日庚申也。於是國人又皆太息相慶曰：“誠舊陵之爲憂，而華固先王之志，今而後兩無憾矣。”始先王十三年己酉，遷永祐園于水原府之花山，更號顯隆，大築華城，以拱衛象設，揭御眞于園之齋殿，以寓晨昏之義，歲輒展謁，哀慕不自勝。(…)

<정조실록 정조 대왕 천릉 지문(遷陵誌文)>

## 정치/왕실

### 수원부사 이만수가 정조의 사업을 추모하다

차대(次對)하였다. (…)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만수(李晩秀)는 말하기를,

“선대왕의 대의리(大義理)는 흠양하기를 일월(日月)같이 하고 믿기를 사시(四時)같이 하였는데 오늘 수천언에 달하는 자교(慈教)가 더없이 근간(歎懇)하시어 선왕의 성덕(聖德)을 천명하고 선왕의 지사(志事)를 발휘하여 남긴 것이 없습니다. 5월 그믐날의 연교(筵教)에 이르러서는 곧 의리를 분석(剖析)하여 미속(迷俗)을 효유(曉諭)하기 위한 지인(至仁)하고 지성(至誠)하신 성의(聖意)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의 사단(事端)은 소신(小臣)이 정섭(靜攝) 중에 계신 성의(聖意)에 염려를 끼쳐드린 데 연유된 것이어서, 지금 추념(追念)하니, 가슴이 무너지고 황공스러워 진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

○丙寅/次對. (…) 水原留守李晩秀曰: “先大王大義理, 仰之如日月, 信之如四時, 今日累千言慈教, 勤歎懇懇, 所以闡明先王之聖德, 發揮先王之志事, 靡有餘蘊. 至於五晦筵教, 寔出於剖析大義, 曉諭迷俗之至仁至誠. 而其時事端, 則由於小臣靜攝之中, 仰貽聖慮, 至今追惟, 抑塞惶隕, 不知所達矣.” (…)

<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 12월 18일(병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등극 반교문

등극(登極) 반교문(頒教文)에 이르기를,

“오직 하늘이 우리 나라에 재앙을 내려 갑자기 거창한 상사(喪事)를 당하게 되었다. 이제 나이 어린 몸으로서 새로 천명(天命)을 받아 마지못해 여정(輿情)의 부탁을 따르기는 하였으나 미칠 수 없는 이 울부짖는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크게 생각건대 국조(國朝)에서 통서(統緒)를 전하여 온 것이 아! 훈화(勳華)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융성하였으므로 성자(聖子)와 신손(神孫)이 계승함은 은(殷)나라에서 현성(賢聖)한 임금이 6, 7명이나 나왔던 것보다도 뛰어났으며 조종(祖宗)의 공덕은 주(周)나라가 이어간 복조(福祚) 억만년의 기반이었다. 삼가 생각하건대,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자(聖姿)로서 하늘이 처음으로 내어준 희운(熙運)을 받으시어 준덕(峻德)이 상제(上帝)에 합치되어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이 한결같았으며 지극한 효성이 일찍부터 선왕(先王)의 마음을 미답게 하여 서정(庶政)을 대신하여 청리(聽理)하였다. 전궁(殿宮)을 충심으로 봉양함이 갖추어 지극했으므로 아침저녁으로 기뻐하심이 애연히 넘쳐 흘렀으며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봄제사와 가을 제사를 반드시 직접 하신지라 우양(雨暘)이 순조로움을 이루게 되었다. 은인(銀印)을 매양 연로(輦路)에 앞세웠던 것은 영고(寧考)에게서 전수(傳受)한 모유(謨猷)를 봉행하기 위한 것이고 금등(金藤)을 빈연(賓筵)에서 크게 선포한 것은 양조(兩朝)의 자애롭고 효성스러운 덕을 천명(闡明)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덕(道德)은 공자(孔子)·주자(朱子)의 통서를

접하여 곧바로 발현되지 않았던 성명(性命)의 깊은 뜻을 천명하였으며 학문(學問)은 강해(江海)처럼 넓어 예로부터의 제왕(帝王) 가운데 가장 성대하였다. 귀주(龜壽)를 내려 황극(皇極)을 세운 것은 이에 50년 동안 다스린 굉규(宏規)를 따른 것이며 인경(麟經)을 내걸고 인심을 안정시킨 것은 천만세(千萬世) 전해갈 대법(大法)을 밝힌 것이었다. 위대하도다! 이기(二紀) 동안 빛나게 임어하였고 참으로 백왕(百王) 가운데 우뚝히 뛰어났도다. 겸덕(謙德)은 누차 휘칭(徽稱)을 거절하였으니 천승(千乘)임금의 지위를 즐거워하지 않으심이요, 윤음(綸音)은 언제나 고전(古典)에 합치한지라 삼대(三代)의 정치를 능히 만회하셨도다. 유도(儒道)를 숭상하여 사설(邪說)을 물리치니 선비들의 추향(趨向)이 올바르게 되었고, 향례(鄉禮)를 반포하여 풍속을 계도(啓導)하시니 농정(農政)을 우선으로 삼았다. 상방(尙方)에서 세 번이나 세탁한 옷을 올린 것은 하후(夏后)의 검소한 의복을 본받은 것이었고 어주(禦廚)를 감손시킨 것은 주왕(周王)이 백성에게 인정(仁政)을 베푼 것을 본받은 것이었다. 공업(功業)이 우뚝하여 이름하기 어려우니 충어(虫魚)도 함육(涵育)의 은택을 받았으며, 문장(文章)이 찬란하여 칭술(稱述)할 만하니 초목(草木)도 소회(昭回)의 광채를 받았도다. 화성(華城)에 있는 <장헌 세자(莊獻世子)의> 원묘(園墓)를 천장(遷葬)하는 의식(儀式)에 이르러서는 바다처럼 깊은 성인(聖人)의 효심을 더욱 드러냈도다. 산을 감싸고 있는 소나무·잣나무는 절로 무성하여 백성들은 천장이 있는지도 몰랐으며 해마다 난로(鑿輅)의 행행이 기일(期日)에 맞추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보고서 감동하였다. 나 소자(小子)가 금년 봄 칠장복(七章服)의 예(禮)를 받고 촌성(寸誠)은 만년토록 기쁘게 해 드릴 것을 기약했었다. 자손을 돕기 위한 모유(謨猷)는 바야흐로 일에 따라 가르침을 받들고 있었는데, 하찮은 이 몸은 복이 박한 탓으로 갑자기 종천(終天)의 슬픔을 당하였다. 허둥지둥 찾아서 헤매었고 외로이 상중(喪中)에 있게 되었다. 아! 군생(群生)들은 복록(福祿)이 없어 갑자기 옥궤(玉几)의 부음을 듣게 되었으며, 소자(小子)는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연유로 규폐(珪幣)를 올리고 기도(祈禱)한 것이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주형(珠衡)을 영원히 뵈 수 없게 되었으니 아픈 마음은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부녀(婦女)와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는가만 울부짖는 소리가 천둥 같고 흐르는 눈물이 빗줄기 같도다. 내가 많은 어려운 일을 감내하지 못할까 걱정한다면 아! 하늘이 어찌하여 차마 이런 일을 내린단 말인가? 더구나 대위(大位)를 공경히 받드니 이 지극한 아픔을 억제하기 어려우니 어찌하겠는가? 흠덩이를 베고 거적을 깔고 있는 날을 당하여 어찌 차마 승위(承位)하라는 이 말을 듣는단 말인가? 그러나 즉위(卽位)하여 보인(寶印)을 받는 의식(儀式)은 본래 우리 나라의 법제(法制)인지라 삼종(三宗)의 큰 책임을 우러러 생각하고 경건히 장추(長秋)의 휘음(徽音)을 따라서 이에 경신년 7월 초4일에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하였노라. 철의(綴衣)를 돌아보니 두렵고도 슬픈 마음 그지없으며 보의(黼意)를 부담하게 되니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니 어떻게 태연히 곤룡포(袞龍袍)를 몸에 더할 수 있으며, 당저(當宁)에 자리하는 예(禮)를 비록 따르기는 하였으나 반열(班列)에서 머리 조아리는 신하들을 어떻게 차마 대하겠는가? 아! 이 간대(艱大)한 서업(緒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런지 자그마한 이 어린 나이에 이루어 나아갈 방법을 모르겠도다. 이 십행(十行)의 윤음(綸音)을 파고(播告)하여 이에 사면(赦免)의 이장(彝章)을 미루어 베푸노니 이는 오직 국가의 상전(常典)인지라 만민(萬民)과 함께 유신(維新)에 참여하는 것을 가상히 여김이라. 이달 초4일 매상(昧爽) 이전까지의 잡범(雜犯) 사죄(私罪) 이하는 모두 사유(赦宥)하여 면제토록 하라. 아! 나를 어루만져 기른 영인(寧人)에 대해 그 누구인들 친히 해준 것을 친히 여기고 어질게 대우해 준 것을 즐겁게 여기고 이롭게 해준 것을 이롭게 여기는 생각이 없겠는가? 내가 처음 즉

위하여 만백성을 차별없이 사랑하는 아름다움을 서서 기대하기 때문에 이에 교시(敎示)하느니 의당 알고 있었야 한다.”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홍양호(洪良浩)가 지었다】

[○] 登極頒敎文：若曰，惟昊天降割我家，奄罹巨創。今冲人，新服厥命，勉循輿情付托，何堪叫叩莫逮。洪惟國朝垂統，猗歟助華比隆，聖繼神承，邁殷后六七之作，祖功宗德，繇周祚億萬之基。恭惟大行大王，以天縱之聖姿，膺首出之熙運，峻德克配於上帝，對越一心，至孝夙孚於先王，代聽庶政。殿宮之忠養備至，藹晨昏之承歡，廟·社之禴·嘗必親，致雨暘之順軌。銀印每先於輦路，奉寧考傳授之謨，『金滕』誕宣於賓筵，闡兩朝慈孝之德。道德接孔·朱之統，直自性命之奧，闡未發焉，問學若江海之涵，從古帝王以來，斯爲盛矣。錫『龜疇』而建皇極，遙追五十年宏規，揭『麟』經而靖人心，昭垂千萬世大法。大哉！光御二紀，允矣高出百王。謙德屢却於徽稱，無樂千乘之位，綸音動合於古典，克挽三代之治。崇儒道而斥邪，土趨克正，頒鄉禮而牖俗，農政爲先。尙方進三澣之衣，法夏后之非服，御廚減八路之貢，體周王之仁民。功業巍乎難名，蟲魚囿涵育之澤，文章煥焉可述，草木被昭回之光。至若華城遷園之儀，尤著聖人準海之孝。環山之松·柏自茂，民不知遷，每歲之鑿輅如期，人皆觀感。予小子今春受七章之禮，寸誠期萬年之歡。翼子謨詒，方荷遇物之誨，眇躬祚薄，奄遭終天之恫。皇皇乎如求，熒熒然在疚。唉！群生之無祿，遽承玉几之音，由小子之不天，莫賴(圭)[珪]幣之禱。珠衡永闕，痛地坼而天崩，婦孺何知，紛雷號而雨泣。憫予不堪多難，嗟！天胡寧忍斯？矧大位之恭承，奈至痛之難抑。當枕塊處苦之日，胡聞此言？然踐阼受寶之儀，自有我制，仰念三宗之不責，敬遵長秋之徽音，乃於庚申七月初四日，卽位于仁政門。眷綴衣而怛焉痛心，負黼屨而泫然流涕。見墻之慕益切，何安龍袞之加身，位寧之禮雖遵，忍對鳩班之稽首？嗟乎！艱大之業，曷其有堪？藐茲幼冲之齡，罔知攸濟。庸數十行之播告，爰推肆赦之彝章，是惟有國之常典，嘉與庶品而維新。自本月初四日昧爽以前，雜犯死罪以下，咸宥除之。於戲！救我寧人，孰無親賢樂利之思？在予初服，佇期與物同仁之休，故茲敎示，想宜知悉。【提學洪良浩製】

<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1800) 7월 4일(갑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국장 도감에서 올린 건릉 정자각의 상량문

국장 도감(國葬都監)에서 건릉(健陵) 정자각(丁字閣)의 상량문(上樑文)을 올렸는데, 이르기(….) 훈도(薰陶)하는 은택이 바야흐로 온 나라에 흠뻑 젖게 되었는데 모두가 슬퍼함은 갑자기 하늘에 사무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령(寶齡)이 중년(中年)도 못되었는데 저 푸른 하늘은 어찌하여 차마 이런 일을 내린단 말입니까? 지리(至理)는 뒷일에서 증험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성인(大聖人)은 반드시 좋은 자리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성(華城)의 거북점에 합치된 산등성이를 돌아보니 지난 봄 난가(鑿駕)가 머물렀을 때 접쳐 두었던 곳이었습다. 아버지의 원침(園寢)과 가까우니 마치 아침 저녁 달빛 아래 노니는 것 같고 산천(山川)을 끌어 당기는 것 같은 체세(體勢)는 하늘이 만들어 냈음을 믿게 합니다. 어로(御路)가 곧바로 소나무·잣나무 사이로 연결되어 있어 정신과 기맥(氣脉)이 서로 관통되고 있으며 유지(遺志)는 오래도록 분유(粉榆)에 부치려 하였으므로 부로(父老)와 부유(婦孺)들이 아직도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위제(衛制)가 방금 신읍(新邑)에서 이루어졌으니 임금 노릇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은 그 충심을 누가 알겠으며, 보정(寶幀)을 행궁(行宮)으로 옮겨 봉안(奉安)하였으니 한가롭게 늙어가지 않았다는 생각을 혹은 위로하게 되겠습니다. 해원(亥原)의 역사(役事)를 시작함을 당하여 먼저 정자각(丁字閣)을 짓게 되었습니다. 만년토록 전해갈 능자리는 이미 최상의 길지(吉地)를 택정하였으며 사계절 제사를 올림에 있어

서는 가장 편안히 모시도록 도모할 것을 중시하였습니다. 강만(崗巒)이 감싸 보호한 형세를 돌아보아 규경(圭景)의 위치를 측정하였으며 고금의 화려하고 검소한 법도를 헤아려 전에 저축한 내탕금(內帑金)을 내려 주었습니다. 재목(材木)을 육지나 바다로 운반하여 오는 번거로움이 없었으니,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제도(制度)는 원묘(原廟)의 뜻을 모방했으니 예법이란 진실로 그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 신(神)이 비밀스럽게 아끼던 아름다운 기지는 진실로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살피던 효성과 합치하였습니다. 잣나무 기둥, 소나무 서까래 아름다운 장식이 영롱(玲瓏)하게 빛나고 바람에 나부끼는 구름 깃발은 신리(神理)의 기뻐하심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이장(移葬)하던 해를 생각하여 보니 마치 어제의 일만 같은데 이에 한침(漢寢)의 의식을 만들어 설행(設行)하게 되니 차마 영구히 잇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아름다운 송문(頌文)을 지어 긴 대들보를 들어 올리는 것을 돕겠습니다. (...)

○國葬都監，進健陵丁字閣上樑文．伏以帝鄉之眞遊渺邈，籲天無階，珠丘之瑞氣鬱蔥，不日成閣．(...)薰畧方被於率土，普痛遽纏於窮天．寶齡未及於中身，彼蒼者胡寧忍此？至理可徵於後事，大聖人必得其藏．顧茲華城叶龜之岡，卜自往春駐鑾之日．密邇園寢，悅晨昏於月遊，控引山川，信體勢之天作．御路直連於松柏，精神氣脈之相貫通，遺志久寓於粉楡，父老婦孺之尚傳說．衛制纔成於新邑，孰認無樂君之衷，寶幀移奉於行宮，倘慰未老閒之念．當玄原之肇役，先丁閣之載營．萬年兆塋，已占上吉之地，四時芬苾，最重皮虔之圖．瞻崗巒拱護之形，測圭景於位置，酌古今華儉之度，捐昔日之帑儲．材不煩陸海之輸，事非偶爾，制則放原廟之義，禮固宜然．於乎！神慳鬼秘之佳基，允叶日瞻月覲之孝思．柏楹松桷，映珠砂而玲瓏，風馭雲旗，想神理之悅豫．回思移灤封之歲，宛若隔晨，爰設奉漢寢之儀，忍忘沒世？恭陳善頌，助舉修樑．兒郎偉拋樑東，光教峰含曉旭紅．黃道赫然如立教，容光必照發群蒙．兒郎偉拋樑西，崗禽噦噦崗梧低．(...)

<순조실록 1권, 즉위년(1800) 9월 2일(신사) 2번째기사>

#### 정치/왕실

빈청에서 정종의 화성부 영전의 전호를 화령전으로 의논해 정하다

빈청(賓廳)에서 정종 대왕의 화성부(華城府) 영전(影殿)의 전호를 화령전(華寧殿)으로 의논하여 정하고 계하(啓下)하였다.

○賓廳，議定正宗大王華城府影殿殿號，以華寧啓下．

<순조실록 2권, 1년(1801) 1월 6일(계미) 4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유수 이만수가 화령전의 제도 및 건릉의 봉심 규례에 대해 상소하다

수원 유수 이만수(李晩秀)가 아뢰기를,

“생각하건대,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 배움을 입고 낮은 궁실(宮室)에 거처하여 검소함을 보이신 성덕은 백왕(百王)보다 탁월하셨습니다. 화령전(華寧殿)은 진신들이 달놀이하며 즐기는 곳인데, 무릇 용마루·기둥·섬돌·지도리 등에 관계된 제도를 한결같이 견고하고 소박함을 위주로 함으로써 옛날의 성덕을 본받았으니, 전내(殿內)의 배설(排設)도 당가(唐家)를 설치하지 않고 앞에 합자(閣子)를 설치하되, 한결같이 주합루(宙合樓)의 예에 의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건릉(健陵)에 봄, 가을로 봉심(奉審)하는 것 또한 현릉원(顯隆園)의 예에 의거하여 수신(守臣)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편의(便宜)할 것이

므로, 감히 진달(陳達)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水原留守李晩秀啓言: “惟我先大王菲衣·卑宮·昭儉之德, 卓越百王. 華寧殿, 乃是衣冠月游之地, 凡係棟楹陸危之制, 一以堅固朴素爲主, 以體昔日之德, 殿內排設, 不設唐家, 前設閣子, 一依宙合樓例似好. 健陵春秋奉審, 亦依顯隆園例, 令守臣舉行, 實合便宜, 故敢達矣.” 從之.

<순조실록 2권, 순조 1년 2월 10일(병진) 2번째기사>

#### 정치/왕실

화성 유여택의 어진 표제를 정하다

화성(華城) 유여택(維與宅)의 어진(御眞) 표제(標題)를, ‘정종 문성 무열 성인 장효 대왕의 춘추 40세 때 어진(御眞)으로 즉위한 지 15년 되는 신해년 가을에 그렸다.[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 春秋四十歲 眞 卽阡十五年辛亥秋 圖寫]’ 는 28자의 표제를 받들었다. 【서사관(書寫官)은 화성 유수(華城留守) 이만수(李晩秀)이다】

○華城維與宅御眞標題, 以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春秋四十歲眞卽阡十五年辛亥秋圖寫’ 二十八字, 奉題. 【書寫官華城留守李晩秀】

<순조실록 2권, 순조 1년(1801) 2월 30일(병자) 3번째기사>

#### 정치/왕실

차대하다. 대왕 대비가 신료들과 사학 죄인 정배, 광주 유수 선발 등에 관해 논의하다

차대(次對)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지난날 차대하였을 때 이미 하교한 적이 있었는데, 죄인들을 흠어서 정배(定配)하는 일을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지체하고 있는 것인가?”

하였는데, 형조 판서 조진관(趙鎭寬)이 말하기를,

“죄인을 구처(區處)할 도리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연히 적체되고 있습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흠어서 정배하는 일을 난만(爛漫)하게 상확(商確)한 것은 오로지 뒷날의 폐단을 깊이 염려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서둘러 결정해서 오랫동안 체수(滯囚)하는 일이 없게 해야 옳을 것이다.”

하자, 영의정 심환지(沈煥之)가 말하기를,

“자교(慈教) 가운데 먼 훗날을 염려하시는 깊은 생각은 신이 흠양하여 찬탄하고 있습니다 마는, 흠어서 정배한 후 구처(區處)하는 방도는 한 번 정탈(定奪)한 후에야 거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도 가운데 서북(西北)은 본래 사학(邪學)이 없지만 또 풍습이 순박하면서도 고집이 세어서 만일 오염되면, 또한 현혹된 생각을 깨우치기 어려울 것이니, 이곳에는 편배(編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6도는, 큰 고을에는 혹 3, 4인을 보내고 작은 고을에는 혹 2, 3인을 보내되, 그 도신(道臣)과 고을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항상 조관(照管)을 더하여 개과 천선(改過遷善)했는지의 여부를 깊이 살펴서 묘당(廟堂)이나 추조(秋曹)에 논보(論報)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에 의거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환지가 말하기를, “광주 유수가 과만(瓜滿)이 되어 체임(遞任)되었으니, 이제 의논하여 천거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삼보(三輔) 가운데 광주(廣州)가 경성(京城)에서 가장 가까워서 옛부터 조정에서 의중(倚重)해 오던 곳인데, 근래에 크고 작은 직무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버려둔 채 관방(關防)의 보장(保障)을 하나도 경리(經理)한 적이 없었으니, 진실로 한심하게 여길 만합니다. 경재(卿宰) 가운데 적합한 사람이 없지 않으나, 만약 중망(重望)이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원임 상신(原任相臣)이 또한 나가서 안찰(按察)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개 경성과 거리가 수십 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외직(外職)에 나가는 것으로 논할 수 없고, 묘모(廟謨)는 유수가 본래 스스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더구나 추함(樞銜)을 그대로 띠고 있기 때문에 명관(命官)·위관(委官) 같은 직임(職任)도 또한 전과 같이 봉행할 수 있으니, 실제로는 내직(內職)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 영부사에게 화성 유수(華城留守)를 특교(特敎)로 차송(差送)한 예에 의거하여 잠시 안찰하게 하여 나가서는 정돈하고 보수(保守)하며 들어와서는 묘당의 직무를 다스리게 한다면, 안에서나 밖에서 진실로 모두 편의(便宜)할 것입니다. 마침 우견(愚見)이 있어서 우러러 진달하니, 청컨대, 연신(筵臣)들에게 하문하소서.”

하였는데, 좌의정 이시수(李時秀)는 말하기를, “보장(保障)의 땅은 인화(人和)를 귀중하게 여겨야 하므로 만약 원임 상신으로 하여금 나아가 안찰하게 한다면, 반드시 중망을 지닌 사람을 얻는 도리에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서용보(徐龍輔)는 말하기를, “서울에서 가까운 형승(形勝)의 땅으로서 완급(緩急)에 믿을 수 있는 곳은 남한 산성(南漢山城)보다 나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수상(首相)이 주달(奏達)한 것은 오로지 보장(保章)을 더욱 중대하게 여겨 인심을 붙들어 매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유수는 본래 내직이니 구애되는 단서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수원 유수 이만수(李晩秀), 예조 판서 한용귀(韓用龜), 지돈녕 김조순(金祖淳), 형조 판서 조진관(趙鎭寬), 우참찬 서매수(徐邁修)는 모두 말하기를, “대신이 주달한 것은 이미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신 등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고, 호조 판서 이서구(李書九)는 말하기를, “대신에게 유수의 직임을 띠게 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매우 중대하고, 또 관방(官方)에 관계되므로, 신은 하나를 가리켜 감히 우러러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이조 판서 윤행임(尹行恁)은 말하기를, “화성(華城)을 유수영(留守營)으로 승격시켰을 때 반드시 특지(特旨)로써 대신이 맡아볼 일을 정식(定式)으로 삼았었습니다. 남한 산성은 보장의 중요함이 화성에 못지 않으니, 상신의 분사(分司)에 대해서는 전조(銓曹)에서 감히 양청(仰請)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행 호군 남공철(南公轍)은 말하기를, “사체(事體)가 화성의 제도(制度)를 정할 때와는 다른데 대신이 이미 중망을 지닌 사람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니, 신도 또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방(官方)은 갑자기 변개(變改)하기 어려운 것이니, 전에 천망(薦望)했던 예에 의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辛亥/次對. 大王大妃敎曰: “向日次對, 既有下敎, 而罪人散配, 何如是遷延耶?” 刑曹判書趙鎭寬曰: “罪人區處之道, 姑未決定, 故自然積滯矣.” 大王大妃敎曰: “散配之多費商確, 專出於深念後弊之意, 而趁卽決定, 俾無許久滯囚可也.” 領議政沈煥之曰: “慈敎中深念遠慮, 臣實欽仰贊歎, 而散配後區處之道, 一番定奪後, 可以舉行矣. 各道中西北, 則本無邪學, 且風習木強, 萬一染汚, 亦難曉惑, 此處不可編配. 其外六道, 大邑或送三四人, 小邑或送二三人, 使其道臣邑倅, 常加照管, 改過與否, 探察論報於廟堂或秋曹, 恐好矣.” 上曰: “依此爲之.” 煥之曰: “廣州留守報瓜蒙遞, 今當議薦矣. 三輔之中, 廣州最近於京城, 自昔朝家之所倚重, 而近因小大恬嬉, 許久拋置, 關防保障, 無一經理, 誠可謂寒心. 卿宰中非無可合之人, 而如欲

得重，則原任相臣，亦可以出按。蓋本府距京城，不過數十里，不足以出外論，廟謨則留守本自參聞，況樞銜自在，則如命官·委官之任，亦可如前奉行，實與內職無異。今若以領府事，依華城留守因特教差送之例，暫爲按節，出則整頓保蓋，入則平章廟務，於內於外，允合便宜。適有愚見仰達矣，請下詢于筵臣。”左議政李時秀曰：“保障之地，人和爲貴，若使原任相臣出按，則必當有助於得重之道矣。”右議政徐龍輔曰：“近京形勝之地，緩急可恃，無如南漢。而今此首相所奏，專出增重保障，維繫人心之意。且留守，本是內職，似無礙掣之端矣。”水原留守李晚秀·禮曹判書韓用龜·知敦寧金祖淳·刑曹判書趙鎮寬·右參贊徐邁修俱以爲：“大臣所奏，既出重保障之意，臣等亦無別見矣。”戶曹判書李書九曰：“大臣居留，事體甚重，且關官方，臣不敢指一仰對矣。”吏曹判書尹行恉曰：“華城陞留時，大臣須特旨事定式矣。南漢保障之重，不讓於華城，而相臣分司，有非銓臣所敢仰請者矣。”行護軍南公轍曰：“事體與華城定制時有異，而大臣既以得重爲言，臣亦別無他見矣。”上曰：“官方猝難變改，姑爲依前薦望。”

<순조실록 2권, 순조 1년(1801) 4월 5일(신해)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수원유수 이만수가 은언군 이인과 흥낙임의 처벌을 요청하다

(…) 수원 유수 이만수(李晚秀)는 말하기를, “두 역적의 하늘에 사무친 죄에 대해 신 등은 맹세코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지 않고자 하였으니, 지금은 한적과 양립(兩立)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대신이 이미 우러러 주달하였으니 이제 만약 소굴(巢窟)을 소제(掃除)하면서 마치 풀을 베면서 뿌리를 뽑듯이 한다면, 경과(慶科)를 방방할 때에 또한 경사를 빛내는 도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조 때에는 공제(公除) 이전에 국청을 베푼 일도 있었으니, 이 처분은 방방하는 날에 대해 조금도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하니, (…)

○(…) 水原留守李晚秀曰：“兩賊通天之罪，臣等誓不共戴於一天，而今則漢賊不兩立之時也。大臣既已仰奏，今若掃除窩窟，如芟草除根，則慶科放榜時，亦可爲飾慶之道。先朝有公除前設鞫之舉，此事處分，少無礙於放榜日也。” (…)

<순조실록 2권, 순조 1년 4월 25일(신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선왕이 어정한 사부의 수권을 간인하여 반포하다

선조(先朝)가 어정(御定)한 사부(四部)의 수권(手圈)을 간인(刊印)하여 반포하였다. 선조가 만기(萬機)의 여가에 일찍이 경(經)·사(史)·자(子)·집(集) 사부(四部)의 글을 취하여 친히 붓과 종이를 잡고 초록(抄錄)한 절목(節目)에 비점(批點)을 찍어서 한 책을 합하여 이루니, 무릇 25편으로서 삼례(三禮)에 관한 것이 3편이고, 사기(史記)와 양한서(兩漢書)가 3편이고, 주자(周子)·두 정자(程子)·장자(張子)·주자(朱子)에 관한 것이 9편이고, 육선공(陸宣公)에 관한 것이 1편이고, 당송 팔대가(唐宋八大家)에 관한 것이 7편이었는데, 이에 이르러 내각(內閣)에서 간인하게 하여 주합루(宙合樓)·화령전(華寧殿)·다섯 곳의 사고(史庫)·내각·홍문관(弘文館)·화성 행궁(華城行宮)에 나누어 보관하도록 명하고, 이어서 대신(大臣)·각신(閣臣)에게 나누어 주며 감인(監印)한 각신 이하에게는 시상(施賞)하도록 하였다.

○癸巳/印頒先朝御定四部手圈。先朝萬幾之暇，嘗取經·史·子·集四部書，親御鉛槧，批圈抄節，合成一書，凡二十五編，三禮三編，『史記』·兩『漢書』三編，周子·兩程子·張子·朱子九編，陸宣公一編，唐·宋八家七編。至是命內閣刊印，分藏于宙合樓·華寧殿·五處史庫·內



閣·弘文館·華城行宮，仍頒賜大臣·閣臣，監印閣臣以下施賞.

<순조실록 3권, 순조 1년(1801) 7월 19일(계사)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유수가 능원에 씨앗을 뿌려 심었다고 아뢰다

수원 유수(水原留守)가 능원(陵園)에 씨앗을 뿌리어 심은 것으로써 아뢰니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乙酉/水原留守，以陵園播植啓，施賞有差.

<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3월 15일(을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화령전의 필수 절목을 개정을 내각에 명하다

내각(內閣)에 명하여 화령전(華寧殿)에 응당 행해야 할 절목(節目)을 개정(改定)하게 하였다. 수원유수(水原留守) 조대윤(曹大允)이 ‘창시(創始)하던 초기에 조례(條例)가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니, 삼가 영희전(永禧殿)·장녕전(長寧殿)의 의식(儀式)을 상고하여 원본(原本) 가운데서 번문(繁文)을 줄이고 조건(條件)을 첨가해 넣어 상식(常式)으로 만드소서.’ 라고 아뢰었기 때문이다.

○癸亥/命內閣，改定華寧殿應行節目。以水原留守曹允大啓言，‘創始之初，條例未備，謹攷永禧殿·長寧殿儀式。就原本中，節略繁文，添入條件，著爲常式’ 故也.

<순조실록 6권, 순조 4년 6월 6일(계해)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화성의 을묘년 양로연에 참여했던 노인에게 본부에서 쌀과 고기를 내려 주라 명하다

화성(華城)의 을묘년 양로연(養老宴)에 참연(參宴)했던 노인에게 본부(本府)에서 쌀과 고기를 내려 주라 명하였는데, 아흔 이상이 9명, 여든 이상이 2명, 일흔 이상이 99명이었다.

○命華城乙卯養老宴參宴老人，自本府米肉賜給，九十以上九人，八十以上二人，七十以上九十九人也.

<순조실록 6권, 순조 4년(1804) 8월 30일(병술) 4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유수 김문순이 건릉에 나무를 심었다고 아뢰다

수원유수(水原留守) 김문순(金文淳)이 건릉(健陵)에 나무를 심었다고 아뢰자, 차등을 두어 상을 베풀었다.

○辛卯/水原留守金文淳，以健陵植木啓，施賞有差.

<순조실록 6권, 순조 4년 11월 6일(신묘)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이시수 등이 건릉의 탈이 난 사초를 개수하는 역사를 끝내고 복명하다

관부사 이시수(李時秀), 관상 선공 제조(觀象繕工提調) 조진관(趙鎭寬), 예조 참판 한용탁(韓用鐸)을 소견(召見)하였다. 이에 앞서 2월에 화성 유수(華城留守)가 건릉(健陵)의 능 위 사초(沙草)에 탈이 났다는 것으로 아뢰었기 때문에 대신과 호조·예조의 당상을 보내어 봉

심(奉審)하게 하였고 4월에 개수(改修)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시수 등이 역사(役事)를 끝내고 복명(復命)하였다.

이시수가 말하기를, “이번 사초에 탈이 난 것은 대개 뿌리가 내리기 전에 물을 부린 것이 혹 지나치게 되었던 탓으로 해동(解凍)할 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때문에 사의를 헤아려 편리한 대로 폭우와 띄약별을 방지하게 하였습니다. 능 위와 정자각(丁字閣)에 갖가지 탈이 생기는 것은 실로 지나치게 신중히 하여 즉시 수개하지 않은 것에 연유된 것이므로 작은 일이 크게 되어버리고 따라서 공역(工役)이 호대(浩大)하게 되어 도리어 번독스러운 데 관계 되게 됩니다. 옛날 선조(先朝) 때에 이런 폐단을 우려하여 잔단 탈이 난 것은 번거롭게 보고하지 말고 편의에 따라 수개하는 일로 기록하여 성식(成式)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실로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수한다면 반드시 탈이 커지지 않게 될 것이니, 다시 신명(申明)하여 계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壬戌/召見判府事李時秀·觀象繕工提調趙鎮寬·禮曹參判韓用鐸. 先是二月, 華城留守, 以健陵陵上莎草有頤啓, 遣大臣·戶·禮堂奉審, 定以四月修改, 至是時秀等畢役復命也. 時秀啓曰: “今番莎草有頤, 蓋因着根之前灑水, 或過解凍之際, 以致頤下. 故使之量宜隨便, 以防暴霖烈陽. 而陵上丁字閣各樣生頤, 實由於慎重之過, 不即修補, 自小成大, 工役浩大, 反涉瀆糞. 昔在先朝, 爲慮此弊, 小小有頤, 勿爲慎報, 從便修改事, 著爲成式. 苟能恪遵, 必不張大, 請更申明提飭.” 從之.

<순조실록 7권, 순조 5년(1805) 4월 9일(임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선조가 덕흥대원군의 사우에 작헌례 하고 수원판관 이희를 승서하였다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사우(祠宇)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판돈녕 이언식(李彦植)과 수원 판관(水原判官) 이희(李熾)를 소견(召見)하였다.(…) 수원 판관 이희는 승서(陞敍)하도록 하라.” 하였다.

○詣德興大院君祠宇, 行酌獻禮, 召見判敦寧李彦植·水原判官李熾. (…)水原判官李熾陞敍.”

<순조실록 10권, 순조 7년 10월 22일(경인)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수원 중군이 성첩과 군기를 수보했다고 상을 청하였으니 수원유수를 추고하다

(…) 어영 대장(御營大將) 이득제(李得濟)가 아뢰기를,

“근래에 조진(躁進)이 버릇이 되어 전혀 염치가 없습니다. 수원 중군(水原中軍) 이문철(李文喆)은 당초 차임되기를 도모하여 이미 말이 많았고, 재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또 성첩(城堞)과 군기(軍器)를 수보(修補)한 일로 상을 청하였습니다. 비록 실적(實蹟)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습디만, 전후의 거조(舉措)가 모두 애안(礙眼)에 관계되니, 따로 처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여러 장신(將臣)에게 물었다. 총융사(摠戎使) 이요헌(李堯憲)은 말하기를,

“사면(事面)의 구차함과 여론의 비울(沸鬱)함이 진실로 어장(御將)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하고 금위 대장(禁衛大將) 이해우(李海愚)는 말하기를,

“문(文)·무(武)는 비록 다르지만, 염치는 한가지입니다. 일찍이 곤수(閫帥)를 지낸 사람

이 잡기(雜伎)로 상을 청함은 사면이 지극히 구차한 데 관계됩니다.”

하자, 임금이 대신에게 물었다. 좌의정 이시수가 말하기를,

“군기와 성첩의 수보는 본래 직분에 당연한 일입니다. 잔읍(殘邑)의 직위가 낮은 사람이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 바친 경우는 영곤(營關)에서 상을 청하는 법이니, 대개 격려 권장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병곤(兵關)을 거친 무변(武弁)이 이것을 가지고 상을 논함은 진실로 지극히 애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장신들이 우러러 진달한 바는 진실로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보했다’고 했는데 죄를 준다면 사면에 관계됨이 있고, 상을 청한 잘못은 유수(留守)에게 있습니다. 근래에 상을 청함이 아주 외람됨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강화 유수(江華留守) 윤서동(尹序東)이 친비(親裨)가 사람을 살렸다 하여 등문(登聞)하고 상을 청한 것은 더욱 살피지 아니한 데 관계됩니다. 청컨대 두도(都)의 유수를 모두 추고(推考)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원래의 장계(狀啓)는 시행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御營大將李得濟啓言: “近來躁進成習, 全沒廉恥. **水原**中軍李文喆, 當初圖差, 已多辭說, 莅任未久, 又以城堞·軍器修補請賞. 雖未知實蹟之如何, 前後舉措, 俱涉礙眼, 不可無別般處分矣.” 上詢諸將臣. 摠戎使李堯憲曰: “事面之苟且·物情之怫鬱, 誠如御將所奏矣.” 禁衛大將李海愚曰: “文·武雖異, 廉隅則同. 曾經闕帥之雜岐請賞, 事面涉苟且矣.” 上詢大臣. 左議政李時秀曰: “軍器·城堞修補, 自是職分內事. 而殘邑職卑之人, 殫誠效勞, 則自營關請賞, 蓋爲激勸. 而曾經兵關之武弁, 以此論賞, 誠極礙眼, 諸將臣仰奏, 固無怪也. 而既曰‘修補’而罪之, 有關事面, 請賞之失, 在於留守. 近來請賞, 未免太濫, 而其中江華留守尹序東, 以親裨活人, 登聞請賞, 尤涉不審. 請兩都留守, 竝推考. 原狀啓勿施.” 從之.

<순조실록 10권, 순조 7년 11월 5일(임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화성 지지대의 비각이 이루어지다

**화성(華城)** 지지대(遲遲臺)의 비각(碑閣)이 이루어졌으므로, 감동관(監董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甲午/**華城**遲遲臺碑閣成, 監董官以下, 施賞有差.

<순조실록 11권, 순조 8년(1808) 2월 28일(갑오)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수원유수 등이 혜경궁에게 치사·전문·표리를 올리다

경춘전(景春殿)에 나아가 혜경궁(惠慶宮)에게 치사(致詞)·전문(箋文)·표리(表裏)를 올렸다. (…)

【(…) 가의 대부(嘉義大夫) 경기 관찰사 겸 병마 수군 절도사(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 순찰사(巡察使) 김재창(金在昌) 등도 치사(致詞)하였다. 공우(恭遇) 이하 전(箋)을 올리고 함(函)을 올리고 선지(宣旨)하는 의식(儀式)은 위와 같다. (…)]

○壬午/詣景春殿, 進惠慶宮致詞·箋文·表裏.(…) 【(…) 嘉義大夫京畿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水原府留守**, 開城府留守, 江華府留守, 廣州府留守, 巡察使金在昌等. 恭遇以下, 進箋·進函·宣旨儀, 并上同. (…)]

<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1월 22일(임오) 1번째기사>

## 정치/왕실

경기·양호·화성의 백성에게 내린 윤음의 내용

경기(京畿)·양호(兩湖)·화성(華城)의 백성들에게 윤음(綸音)을 내리기를,

“이르노라. 아! 그대 경기·호남·호서와 화성의 백성들은 나 일인(一人)의 고명(誥命)을 분명히 들으라. 나 소자(小子)는 부덕하고 과매(寡昧)한 자질로 외람되어 대위(大位)를 이어받아 임어(臨御)한 지 9년이 되었는데, 그간 단 하나의 물사(物事)에도 은택을 보인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대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괴로움을 면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이는 실로 우리 조종(祖宗)의 은택이 민생에 흡족하게 배여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황천(皇天)이 우리 동방을 돌보아 주시어 9년 동안 농사가 잇따라 풍년이 들었다. 그리하여 내가 모든 도의 연분(年分)에 대한 장문(狀聞)이 있을 때마다 매번 속으로 중얼거리기를, ‘나의 불민(不敏)함으로 덕이 전왕(前王)만도 못하고 정성은 위로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늘의 복을 내리는 것이 성대하였고, 은택이 아래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는데도 백성들의 심복하여 존숭함이 정성스러웠으니, 이것이 어찌 나 소자(小子)가 마땅히 두렵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비와 바람이 순조로운 것은 얻기 어려운 성대한 일이지만, 나의 마음의 걱정스러움은 실로 수재(水災)나 한재(旱災)가 닥쳤을 때와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내릴 기색이 짙은 채 햇볕만 쨍쨍 내려쬐인단 말인가? 규벽(圭璧)을 올려 교야(郊野)와 종묘에다 누차 기우제를 지내어 늦여름에 우택(雨澤)을 얻기는 하였으나, 저 경기·호남·호서·화성에는 신령의 감응이 끝내 인색하여 모낼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렸으므로 연분(年分)이 드디어 흉년으로 결판이 나고 말았다. 대저 금년의 한재는 비록 각도(各道)가 같지 않은 점이 있었으나, 한마디로 결론지어 말하면 흉황(凶荒)이라고 할 수 있다. 곡식이 조금 잘 여문 해서(海西)에 이르러서도 근래 홍수의 재앙 때문에 또한 흉년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렸으니, 불쌍하고 딱한 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 한 지아비가 제 살 곳을 얻지 못하면 옛날의 현명한 임금들은 오히려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는데, 더구나 이렇게 몇 만 명의 생령(生靈)들이 기근을 면치 못하여 떠돌게 되었는데야 말할 것이 뭐 있겠는가? 내가 부덕한 탓으로 하늘의 노여움을 초래하여 죄없는 백성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으니, 이로부터 주야로 두려워서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잠자리에 들어도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밤새도록 촛불을 밝히고 연일 고요히 생각하여 보니,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나라에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으며 곡식은 백성의 목숨인데 백성이 곡식이 없으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는가? 옛날 우리 선조(先朝) 갑인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렸으나 오늘날처럼 더욱 급박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다친 사람 보살피듯 하고 갓난아기 보호하듯 하는 정사를 딱하게 여기는 지극히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여 백성을 구휼하는 대정(大政)이 팔도(八道)의 역조 창생들에게 넘쳐흘렀으니, 우리 해동(海東)에서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는 신민(臣民)들 그 누가 감격하여 보답하려 하면서 잊지 못하는 생각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는가? 아! 대성인(大聖人)께서 백성을 위하시는 성념(聖念)이 지극하고도 극진하였다. 금년은 본도(本道)의 흉황이 갑인년보다 더욱 극심하게 생겼으니, 진실로 백성에게 이로우미 있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을 아낄 것이 있겠는가? 더구나 이는 계술(繼述)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인데 말할 것이 뭐 있겠는가? 이에 내탕전(內帑錢) 2만 냥(兩), 호초(胡椒) 1천 두(斗), 단목(丹木) 5

천 근(斤)을 내놓겠으니, 호남에는 돈 1만 냥, 호초 4백 두, 단목 2천 근을, 호서에는 돈 5천 냥, 호초 3백 두, 단목 1천 근을, 경기에는 돈 3천 냥, 호초 2백 두, 단목 1천 근을, **화성**에는 돈 2천 냥, 호초 1백 두, 단목 1천 근을 나누어 주라. 호남에서 진상하는 가미(價米)를 정퇴(停退)시키는데 삼등(三等)의 읍은 물론이고 제류(除留)시켜 하송하며, 호서에서 진상하는 가미는 흉년이 더욱 심한 읍에 대해서 또한 제류시켜 하송하도록 하라. 그대들은 내가 부덕하다는 것을 탓하지 말고 구중 궁궐이 멀다고 여기지 말고서 각기 자신의 마음을 극진히 하고 각기 자신의 힘을 끝까지 다하여 경솔히 향정(鄉井)을 떠나지 말며, 서로 선동하여 원망과 수심에 잠기는 일이 없이 친척과 이웃이 서로 면계(勉戒)하고 서로 구조(救助)하여 생활을 안정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몸에 괴로운 것이 있으면 수재(守宰)에게 말하고 도신(道臣)에게 의논하며, 도신과 수재 역시 마땅히 힘을 다하여 구제하게 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대들로 하여금 죽어서 구렁에 나뒹구는 환란이 없게 할 것이니, 그대들은 각기 굳게 믿고서 내년의 풍년을 기다리도록 하라. 상천(上天)은 지극히 어질고 인자하니 또한 어찌 우리에게 내년에는 많은 곡식을 수확하는 풍년을 내리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나의 심복(心服)에서 우려난 고명(誥命)을 분명히 잘 들으라. 이로부터 생각하건대, 도둑이 발생하는 환란이 이런 때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니, 도백(道伯)은 이런 뜻을 알고서 영장(營將)과 각 고을에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토포(討捕)하는 책무를 극진히 하여 감히 헤이한 마음을 지니는 일이 없게 하고 감히 평민(平民)을 침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조가(朝家)에서 또한 어찌 특별히 엄찰(廉察)하는 방도가 없겠는가? 이 또한 흉황이 들었을 적에 백성을 위하는 한가지 방도인 것이니, 아울러 알기 바란다.” 하였다.

○壬午/下綸音于京畿·兩湖·**華城**民人. 若曰: 嗟爾京畿·湖南·湖西暨**華城**民人, 明聽予一人誥. 惟予小子, 以否德寡昧, 叨承大位, 臨御九載, 無一物示澤, 無一事示恩. 而惟爾等猶免顛連之苦者, 此何故也? 實是我祖宗德澤, 浹洽於民生者也. 是故皇天眷顧我東方, 九年之間, 穡事連登. 予當諸道年分之狀聞也, 每語于中曰, ‘以予不敏, 德昧前王, 誠未能上格天心, 而天之降福穰穰, 澤未能下感民情, 而民之愛戴眷眷, 豈非予小子所當慙惕自愧之事哉?’ 兩順風調, 此是難得之盛事, 而予心憂懼, 實無異於水旱爲災之時. 奈之何自春徂夏, 雨意漠然, 杲杲日出? 圭璧屢學於郊廟, 雨澤雖得於晚夏, 惟彼京畿·湖南·湖西·**華城**, 靈應終慳, 秧節已過, 年遂判歉. 夫今年旱災, 雖有各道之不同, 而蔽一言曰歉荒. 而至於稍登之海西, 近因雨水之災, 又無異於荒歲, 哀彼小民, 何以賴生? 嗚呼! 一夫不得其所, 古昔明辟, 猶嘗恥之, 況此幾萬生靈, 不免饑饉而流離乎? 由予否德, 致天之怒, 無辜之民, 其將盡劉, 自是以來, 夙夜恐懼, 食而忘其味, 寢而不成寐. 明燭達夜, 連日靜思, 民者國之本也, 國而無民, 何以爲國, 食者民之命也, 民而無食, 何以爲命? 昔我先朝甲寅, 歲歉民困, 不至於今日之尤急. 而如傷若保之政, 惻怛至懇, 恤民大政, 洋溢於八域兆衆, 凡我海東戴天臣民, 孰不感激欲報, 有不忘之思? 猗歟! 大聖人爲民聖念, 至矣盡矣. 今年本道, 將甚於甲寅, 苟利於民, 予何所惜? 況又繼述之大者乎? 茲發內帑錢二萬兩, 胡椒一千斗, 丹木五千斤, 湖南錢一萬兩·胡椒四百斗·丹木二千斤, 湖西錢五千兩·胡椒三百斗·丹木一千斤, 京畿錢三千兩·胡椒二百斗·丹木一千斤, **華城**錢二千兩·胡椒一百斗·丹木一千斤. 湖南進上停退價米, 無論三等邑, 除留下送. 湖西進上價米, 尤甚邑, 亦令除留下送. 爾等勿以否德爲咎, 勿以九重爲遠, 各盡其心, 各盡其力, 無輕離鄉井, 無胥動愁怨, 親戚隣里, 互相勉戒, 互相救助, 以安其居. 有苦於身者, 言于守宰, 議于道臣, 道臣·守宰, 亦當殫心拯濟, 必不使爾等, 有顛墜之患, 爾等其各信之, 以俟來歲之豐登. 上天至仁, 亦豈不貽我來年多稔多黍乎? 爾等明聽我心腹之誥. 因此思之, 竊發之患, 多出於此時, 道伯知此意, 申飭營將及列邑, 俾盡討捕之責, 無敢懈怠其心, 無敢侵害平民. 朝家亦豈無別般廉察之

道乎? 此亦荒年爲民之一道, 竝須知之.

<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1809) 11월 26일(임오) 1번째기사>

### 정치/왕실

건릉과 현릉원에 나아가 전알하고 친제를 지낸 다음 화성부 유생의 시험을 보이다

건릉(健陵)과 현릉원(顯隆園)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친히 제사를 지낸 다음 다시 화성부(華城府)로 돌아와 명륜당(明倫堂)에서 본부의 유생을 시험보였다. 수석을 차지한 김철원(金喆遠)·이석주(李錫周)를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장남헌(壯南軒)에 나아가 본부 및 각영(各營)에서 어가를 수행한 군병(軍兵)들에게 기예의 시험을 보이고, 저녁에는 서장대(西將臺)에 나아가 야조(夜操)를 실시하였다.

○辛亥/詣健陵·顯隆園, 展謁親祭, 還詣華城府, 御明倫堂, 試本府儒生. 居首金喆遠·李錫周, 竝直赴殿試. 御壯南軒, 試本府及各營隨駕軍兵技藝, 夕御西將臺, 行夜操.

<순조실록 13권, 순조 10년(1810) 8월 29일(신해)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인정전에 대한 진하로 수원 판관 정의를 승서하다

인정전에서 진하를 거행하고 교문을 반포하였는데, (...) 약방 도제조 한용귀(韓用龜)에게 안구마를 면급하고, 제조 김이양(金履陽)에게 승정 대부(崇政大夫)을 가자하였으며, 부제조 한치응(韓致應)에게 자헌 대부(資憲大夫)을 가자하고, 별입직(別入直) 지돈녕부사 김재창(金在昌)에게 정헌 대부(正憲大夫)을 가자하였으며, 수원 판관 정의(鄭澣) 등을 승서(陞敍)하였다.

○癸丑/行陳賀于仁政殿, 頒教文: (...) 藥房都提調韓用龜鞍具馬面給, 提調金履陽加崇政, 副提調韓致應加資憲, 別入直知敦寧府事金在昌加正憲, 水原判官鄭澣等陞敍.

<순조실록 18권, 순조 15년 10월 2일(계축)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 판관 정의 등을 종척 집사로 차하하다

영명위(永明尉) 홍현주(洪顯周)·지돈녕 김재창(金在昌)·과천 현감 김재삼(金在三)·수원 판관 정의(鄭澣)와 사과(司果) 홍낙수(洪樂受)·홍낙선(洪樂宣)·홍철영(洪徹榮)과 고양 군수 홍세주(洪世周)를 종척(宗戚) 집사로 차하(差下)하였다.

○以永明尉洪顯周, 知敦寧金在昌, 果川縣監金在三, 水原判官鄭澣, 司果洪樂受·洪樂宣·洪徹榮, 高陽郡守洪世周, 宗戚執事差下.

<순조실록 18권, 순조 15년 12월 15일(을축) 8번째기사>

### 정치/왕실

김재찬이 원소를 사도 세자의 묘에 합부하는 예로 시행할 것을 청하다

시임 및 원임 대신과 각신을 불러 보았다. 영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기를, “선조(先朝)의 어제(御製)를 삼가 상고하여 보니, 기유년에 영우원(永祐園)을 옮길 때의 허좌(虛左)의 제도로 쓴 것이 성교(聖敎)에 분명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원소(園所)는 현릉원(顯隆園)에 합부(合祔)하는 예로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은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사체(事體)가 막중하므로 품정(稟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화성 유수(華城留守)가 원소 도감 당상(園所都監堂上)을 겸하는 것은 경신년의 선례가 있습니다. 유수 서영보(徐榮輔)를 도감 당상에 가차(加差)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오늘을 당하여 선조의 출천(出天)한 성효(聖孝)를 추모하니, 망극한 마음을 더욱 금할 수 없구나. 지금 이 내하(內下) 은전(銀錢) 3만 냥은 곧 옛날 성효로써 갑자년에 쓰기 위하여 저장하여 두었던 것이니, 이 은전을 오늘의 대사(大事)에 쓰게 됨은 실로 다 펴지 못했던 성심(聖心)을 새롭게 밝히는 일이다. 총융사에게 자세히 알리라.” 하였다.

○召見時原任大臣閣臣，領議政金載瓚啓言：“敬考先朝御製己酉遷園時用虛左之制，昭載聖教。今番園所，以顯隆園合祔之禮定行，無容更議，而事體莫重，不可不稟定。”從之。又啓言：“華城留守兼園所都監堂上，既有庚申已例矣。留守徐榮輔，都監堂上加差。”從之。仍教曰：“當今日追慕我先朝出天之聖孝，尤不勝罔極之心。今此內下銀三萬兩，卽昔年聖孝爲甲子年需用儲置者也，以此銀，用於今日大事，實爲闡述未伸之聖心，令摠護使知悉。”

<순조실록 18권, 순조 15년(1815) 12월 18일(무진) 4번째기사>

#### 정치/왕실

**혜경궁 지문으로 정조가 수원 현릉원으로 천장한 일과 을묘년 연회를 베푼 사실을 기록함**

혜경궁 지문(誌文)에 이르기를, “(...) 이듬해 병자년 3월 3일에 장헌(莊獻)의 현릉원(顯隆園)에 합봉하였는데, 예(禮)에 따른 것이다. 원(園)의 옛 이름은 영우(永祐)였는데, 양주(楊州)의 배봉산(拜峯山)에 있었다. 정조 기유년에 묘소의 자리가 좋지 않다고 하여 수원부(水原府) 화산(花山)의 계좌(癸坐)에 이장하고 나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능묘(陵墓)를 뒤에 부장(祔葬)할 때에 대부분 같은 자리에 봉분(封墳)만 따로 만드는데 이 원(園)의 공역(工役)이 한창 벌어졌을 적에 선왕께서 그 왼쪽을 비워 합분(合墳)의 제도로 만들고 이르시기를, ‘나의 사정은 남과 다르다.’ 고 하시었다. 이때에 이르러 그 제도에 따라 역사(役事)를 하였으니, 아! 슬프다. (...) 선왕 19년(1795) 을묘(乙卯)에 장헌(莊獻)과 빈(嬪)의 회갑이 돌아오매 휘목(徽穆)이란 존호를 더 올렸다. 2월에 선왕께서 자궁(慈宮)을 모시고 현릉원(顯隆園)에 나아가 선침(仙寢)을 배알(拜謁)하고 돌아오는 길에 수원부(水原府)에 들러 행궁(行宮)에서 큰 연회를 베풀었다. (...)

○惠慶宮誌文：(...) 明年丙子三月初三日，祔于莊獻之顯隆園，禮也。園舊號永祐，在楊州治之拜峯山。寧考己酉，以風水不叶吉，移奉于水原府花山癸坐之岡，改今號陵墓。追祔多同兆而異封，是園之法方中也，寧考命虛其左，爲合墳之制曰，‘予之情事異於人也。’至是因其制以相役，嗚呼！慟哉！(...) 十九年乙卯，以莊獻及嬪寶甲載回，加上號徽穆。二月寧考奉慈駕，詣顯隆園，祇謁仙寢，還至水原府，行大宴禮于行宮。(...)

<순조실록 19권, 순조 16년 1월 21일(신축)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 유수 서영보가 상소하여 세자의 보필을 주장하다**

수원 유수 서영보(徐榮輔)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한번 병에 걸리자 석 달을 끌어 점점 깊숙이 파고들어갔습니다. 말은 바 유수의 임무가 신의 오랜 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폐기되었으니, 삼가 바라건대 빨리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신이 오락가락 목숨이 끊어져가면서도 걱정하고 사랑하는 일편의 정성이 있어서 감

히 다음과 같이 곁들여 진달합니다. 생각하건대 지금 끝없는 만사 중에 원량(元良)을 보필하고 인도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신양(新陽)이 비로소 돌아와 〈원량의〉 작았던 옷[尺衣]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이때가 바로 공부에 힘써서 날마다 새롭게 할 때입니다. 심한 일폭(十寒一曝)을 사람들이 혹간 걱정하기도 하였는데, 옛날 선왕들께서 바르게 길러 성인(聖人)을 만드는 방법이 『보부전(保傅傳)』 한 편(篇)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자(程子)가 이른바, ‘어진 사대부를 접할 때가 많고 내시와 시녀들을 접할 때가 적게 한다.’ 는 말은, 바로 덕을 진취하는 요결(要訣)입니다. 성상께서는 깊이 유의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요청한 바는 그대로 시행하겠다. 끝에 덧붙여 진달한 바는 절실하므로,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丁巳/水原留守徐榮輔疏略曰：臣一疾三朔，轉入膏肓。所帶居留之任，緣臣淹病，許久曠官，伏乞亟命遞改。臣於奄奄垂死之中，猶有一(段) [段] 憂愛之忱，敢此附陳。念今悠悠萬事，莫先於輔導元良。伏況新陽載回，尺衣漸長，時敏日新，此正其時。十寒一曝，人或爲憂，古昔先王養正作聖之方，詳載於『保傅傳』一篇。而程子所謂 ‘按賢士大夫時多，接宦官宮妾時少’，卽進德之要訣也。惟聖上，深留聖意。批曰：“所請依施。尾附所陳切實，當留意矣。”

<순조실록 19권, 순조 16년 11월 12일(정사)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산릉에 대하여 의논하다

시임 대신·원임 대신과 산릉을 살펴 볼 관상감 제조 이하를 여차에서 불러 보았다. 관상감 제조 김조순(金祖淳)이 말하기를, “신 등이 이번에 가서 살펴본 가운데 장릉(長陵)의 재실(齋室) 뒤터와 수원의 옛날 향교 터 두 곳은 풍수가의 여러 의논이 대부분 좋다고 하였습니 다만 다시 살펴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甲申/召見時原任大臣及山陵看審觀象監提調以下于廬次，觀象監提調金祖淳曰：“臣等今行所看審中，長陵齋室後基及華城舊舊鄉校基兩處，地師諸議，多以爲吉，更審然後，始可以次定矣。”

<순조실록 23권, 순조 21년(1821) 4월 4일(갑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산릉에 대하여 의논하다

공제(公除)하였다. 관상감 제조 김조순(金祖淳), 예조 판서 김노경(金魯敬), 산릉 도감 당상 이상황(李相瓚)을 여차에서 불러 보았다. 김조순이 말하기를, “신 등이 다시 수원의 옛날 향교 터에 가서 나무를 베고 자세히 살펴보니, 풍수가의 여러 의논이 모두 좋다 하였고, 비록 신 등의 보통 안목으로 말하더라도 지리는 진실로 알 수가 없지만 산세(山勢)가 밝고 아름다우며 국면(局面)이 멀리 특 되어 있으니 참으로 좋다고 말할 만합니다. 또, 기유년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장할 때에 이 곳을 이미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원지(園誌)에 기재되어 있고, 일찍이 원관(園官)을 지낸 이의 말도 선왕조 때부터 말했었다고 하니,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이 함께 가서 재차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庚寅/公除。召見觀象監提調金祖淳，禮曹判書金魯敬，山陵都監堂上李相瓚于廬次。祖淳曰：“臣等更詣華城舊舊鄉校基，斫木後詳審，則地師諸議，皆以爲吉，雖以臣等凡眼言之，地理固未能知，而山勢明媚，局面平遠，眞可謂安吉。且己酉遷奉時，此處已有云云，載在園誌，曾經



園官之言，亦以爲自先朝時稱道云，時原任大臣，當齊進再看審矣。”

<순조실록 23권, 순조 21년(1821) 4월 10일(경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건릉 이장을 수원 옛날 향교로 정하다

**건릉을 이장할 곳을 수원 옛날 향교 터로 정하라고 명하였다.** 이날 산릉을 살펴본 대신 이하 천릉 도감 당상을 여차에서 불러 보고 또, 상지관(相地官)인 사과(司果) 남양진(南陽進)·김경인(金景寅)·최상일(崔相一), 사용(司勇) 신희(申熙), 교수 방경국(方慶國)에게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상지관은 차례대로 주달하라.” 하니, 남 양진이 말하기를, “교하(交河)의 장릉(長陵) 재실(齋室) 뒤는 내려오는 산맥이 길고 멀며 곱고 아름다우며, 자리[穴處]가 안온(安穩)하고 명당(明堂)으로 넓고, 평평하니, 이는 지리서(地理書) 가운데 귀격(貴格)으로 치는 것입니다. **수원**의 옛날 향교 터는 산맥의 형세가 웅장하고 존엄한 가운데 또 아름답고 곱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장풍향양(藏風向陽)하여 혈성(穴星)이 십분 뚜렷하며 수구(水口)가 막히고 조회하는 산과 안산(案山)이 모여들었는데 수풀 사이에 아름다운 기운이 가득차 있음을 볼 수 있으니 이는 최상의 길지입니다. 이 두 곳을 가지고 논하면 **수원**이 교하보다 더 낫습니다.”

하고, 김경인·최상일·신희 등의 아뢰 바도 같았다. 판부사(判府事) 한용귀가 말하기를, “신 등이 이번에 교하의 장릉 재실 뒤와 **수원**의 옛날 향교 터를 모두 살펴보았는데, 산세의 웅장함과 혈성의 풍후함과 좌우 산맥의 모여듬과 안산의 수려함은 두곳이 똑같은데 매우 좋은 땅인 듯합니다. 또 상지관의 말을 듣건대, 역시 똑같이 찬미하면서 ‘만약 **수원**을 교하에 비교하면 매우 귀하고 매우 길한 품격은 매우 차등이 난다.’ 고 하였습니다. 이 만 년의 무궁한 터를 원침(園寢)의 가까운 안에서 얻었으니 지난해에 선침(先寢)을 가까이 하시려는 성상의 뜻에 진실로 부합된 것으로서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하고, 판부사 김사목은 말하기를,

**“수원의 옛날 향교 터는 풍수가들의 말뿐만 아니라 살펴 본 여러 신하들이 너나없이 찬미하였습니다.”** 하고, 총호사 남공철은 말하기를, “교하의 장릉 재실 뒤의 터는 웅장 수려하고, **수원** 옛날의 향교 터는 안온 풍후 하니 모두 대단히 길한 자리라고 할 만합니다. 여러 대신과 여러 당상관의 소견도 이의가 없고 상지관 등도 극구 칭찬하면서 모두 최상의 길지라고 하였습니다. 이장하겠다는 명이 있을 때부터 신 등이 매양 서로 대하여 이에 대해 논하기를, ‘**수원**에서 만약 길지를 얻지 못할 경우 그만이지만 만일 길지가 있을 경우 진실로 신도(神道)와 인정에 합치한다.’ 고 하면서 더욱 이를 밤낮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히 좋은 자리를 **수원** 안에서 얻었으니, 너무나도 기쁘고 다행한 일입니다.”

하고, 관상감 제조 김조순은 말하기를,

“신이 교하에 두 번 나가고 **수원**에 세번 나갔는데, 여러 풍수가들이 모두 찬미하고 서로 어긋나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비록 보통 안목으로 말하더라도 모두 최상의 좋은 자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진실로 감히 피차의 고하(高下)를 따져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만 **수원**이 교하보다 못하다는 것은 정말 논할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길지라면 천리와 인정에 부합되는 데에 따라 어느 곳을 취하거나 버려야 할지 저절로 쉽게 결정될 것입니다. 오직 성상께서 결정하시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천릉 도감 당상 김이양은 말하기를, “신은 여러 풍수가들의 말을 들어보니 모두 **수원**을 최상의 길지라고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신들의 아뢰 바도 천리와 인정

을 참작한 것이니 오직 성상께서 단정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고, 산릉 도감 당상 이상황은 말하기를, “이번에 두 곳을 살펴 본 상지관들의 논의가 모두 지극히 좋고 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에 있어서는 원침의 국내(局內)에 이같은 최상의 길지를 만났으니, 천리와 인정으로 참작하건대 진실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고, 예조 판서 김노경은 말하기를, “신이 연전에 원관(園官)으로 있을 때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원지(園志)를 상고해 보니 역시 성상의 말씀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택한 산등성이가 과연 서로 부합되었으니, 자못 천지가 묵묵히 도운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들의 말이 매우 옳다. 더군다나 상지관이 모두 대단히 길하여 교하보다 낫다고 하니, 다시 다른 의논이 있겠는가? 옛날 향교 터로 결정하겠다.” 하였다. 총호사 남공철이 아뢰기를, “삼가 등록을 상고해 보니, 기유년에 원(園)을 옮길 때 재실(梓室)을 바꾸지 않았습시다만 여러모로 극진하게 한다는 뜻에서 미리 준비하여 대령해 놓았습니다. 이미 기유년의 전례가 있으니, 장생전(長生殿)에 분부하여 기일 전에 비감(裨匣)을 만들게 하고, 재궁(梓宮)도 기유년의 사례에 의하여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준비하여 대령해 놓으라는 뜻으로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命健陵遷奉, 定于**華城**舊舊鄉校基. 是日, 召見山陵看審大臣以下, 遷陵都監堂上于廬次, 又命相地官司果南陽進·金景寅·崔相一, 司勇申熙, 教授方慶國, 使之入侍. 上曰: “相地官以次奏達也.” 陽進曰: “交河·長陵齋室後, 則來龍長遠妍美, 穴處安穩, 明堂寬平, 此地家書中貴格也. 水原舊舊鄉校基, 則龍勢雄偉, 尊嚴之中, 又爲端麗. 兼之以藏風向陽, 穴星十分眞的, 水口關鎖, 朝對拱揖, 林木之間, 可見佳氣之蔥鬱, 此是無上吉地. 而以兩處論之, 水原有勝於交河矣.” 景寅·相一·熙等所奏, 亦同. 判府事韓用龜曰: “臣等今番交河·長陵齋室後及**華城**舊舊鄉校基, 竝看審, 而山勢之雄偉, 穴星之豐厚, 龍虎之拱挹, 案對之明麗, 兩處同然, 似是極吉之地. 而且聞相地官之言, 亦皆一辭贊美, 而 ‘若以**華城**較彼交河, 則品格之極貴極吉, 不啻隔等’ 云. 得此萬年無疆之基於園寢密邇之內, 允叶, 昔年密邇先寢之聖意, 誠非偶然矣.” 判府事金思穆曰: “水原舊舊鄉校基, 則不但地師之言, 看審諸臣, 莫不贊美矣.” 摠護使南公轍曰: “交河·長陵齋室後基, 雄渾秀麗, **華城**舊舊鄉校基, 安穩豐厚, 俱可謂大吉之地. 諸大臣及諸堂之見, 皆無異辭, 相地官等極口贊揚, 皆以爲無上吉地矣. 自有遷奉之成命, 臣等每相對論, 此以爲 ‘**華城**, 如不得吉地則已, 如有吉地, 則允叶於神理人情.’ 尤以此日夜企望. 得此大吉之地於**華城**之內, 萬萬喜幸矣.” 觀象監提調金祖淳曰: “臣再進交河, 三詣**華城**矣, 諸地師竝皆讚美, 無參差之論. 而雖以凡眼言之, 俱知爲上吉之地, 誠不敢以彼此高下, 質言仰對, 而**華城**如或不及於交河, 則固無可論. 等是吉地, 則天理人情之所符, 取捨自可易定矣. 惟在自上裁斷焉.” 遷陵都監堂上金履陽曰: “臣竊聞諸地師輩, 皆以**華城**爲無上吉地, 一辭同然. 諸大臣所奏, 又參之以天理人事, 惟望睿志之斷定焉.” 山陵都監堂上李相璜曰: “今番兩處看審, 相地諸人之論, 皆以爲極吉無欠. 以至於**華城**則園寢局內, 遇此無上吉地, 參之以天理人事, 實非偶然矣.” 禮曹判書金魯敬曰: “臣於年前, 待罪園官時, 有仰承於昔日者, 今番考見園志, 亦載聖教. 而叶吉之岡, 今果相符, 殆若天地之默相者然矣.” 上曰: “卿等之言, 旣甚允當. 況諸相地官, 皆謂其大吉, 而勝於交河, 則更有他〔議〕乎? 以舊舊鄉校基完定.” 摠護使南公轍啓言: “謹稽謄錄, 則己酉遷園時, 不爲改梓室, 而以靡不用極之意, 預爲備待矣. 既有己酉已例, 分付長生殿, 使之先期治裨匣, 梓宮, 亦依己酉年例, 毋論入用與否, 使之備待之意, 分付.” 從之.

<순조실록 23권, 순조 21년(1821) 4월 21일(신축) 2번째기사>

## 정치/왕실

### 효의 왕후의 천릉 지문

천릉 지문(遷陵誌文)에 이르기를, “아! 우리 열고(烈考) 정종 대왕을 그전에 화성(華城) 현릉원(顯隆園)의 동쪽 산기슭에다 장례를 치루었는데, 이를 건릉(健陵)으로 칭하였다. 그러나 유식한 사람들은 모두 그곳의 지세가 낮아 성인(聖人)을 오래 안장할 곳이 아니라고 우려하였다. 그후 22년 신사년 3월 9일 기미(己未)에 우리 효의 왕후가 승하하시자, 선왕의 능으로 장례를 모시려고 하였다. 이때 영돈녕부사 김조순(金祖淳)이 상소하여, 그 능의 자리가 우려스러운 상황에 관해 극구 말하면서 다시 길지를 택하여 만년의 계책을 도모할 것을 청하자, 우리 전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답하기를, ‘대행 대비께서 평소 이 일를 크게 우려하시어 소자에게 누차 하교하셨는데, 지금 경의 상소를 보니 더욱 기운이 꺾이고 목이 메여 송구함을 견딜 수 없다.’ 하시고, 즉시 대신과 경재(卿宰)를 불러 조정에서 의논하게 하였다. 그 의논이 모두 동일하여 엇갈리지 않자, 대신과 예관(禮官) 및 공역(工役)을 동독하는 신하에게 명하여 널리 장지를 보게 하고 또 재삼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에 현릉원의 우측 자좌(子坐) 산등성이의 더욱 길한 곳을 얻어서 네모로 된 광중(曠中)에 동혈(同穴)의 제도로 마련하여 선왕을 모시고 효의 왕후를 합장한 다음, 능호는 옛 능호 그대로 두었는데, 이 해 9월 13일 경신(庚申)이었다. 이에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크게 감탄하며 서로 축하하기를, ‘구릉(舊陵)은 진실로 우려되고 화성(華城)은 본래 선왕의 뜻이었으니, 지금 부터는 두 분이 아무 여한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애당초 선왕 13년 기유년에 수원부(水原府)의 화산(花山)으로 영우원(永祐園)을 옮긴 다음, 원호(園號)를 현릉으로 고치고 또 화성(華城)을 크게 축조하여 상설(象設)을 감싸게 하였다. 그리고 초상화[御眞]를 현릉원의 재전(齋殿)에 걸어 놓고 조석으로 문안드리는 뜻을 표하였으며, 새해마다 배알(拜謁)하면서 애도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19년 을묘년에 자궁(慈宮)을 모시고 현릉원에 가 배알하고 나서 화성궁(華城宮)으로 돌아와 술잔을 올려 축수하면서 하교하기를, ‘외로운 내가 이 예(禮)를 이곳에서 행하니, 지극한 소원을 조금 풀었다.’ 라고 하였다. 현릉원을 참배하고 돌아올 때마다 지지대(遲遲臺)에서 수레를 멈추고 현릉원을 돌아보면서 머뭇거리고 차마 그 곳을 떠나지 못하였으며, 화성궁의 당(堂)을 노래(老來)로, 누(樓)를 신풍(新豐)으로 명명하였으니, 대체로 은미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왕위가 즐겁지 않아 천승(千乘)을 헌신발처럼 버리고 화성을 이처럼 권고하였으니, 이는 『맹자(孟子)』에 이른바 ‘큰 효자는 종신토록 사모한다.’는 것이다. 지금 다시 능소에 나아가 화성(華城)에다 모시었으니, 이는 또 하늘이 우리 선왕에게 크게 감동하여 이곳에 유택(幽宅)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 전하의 지극한 효성이 영원히 우리 열고(烈考)와 문모(文母)를 편안하게 한 것이다. 아! 훌륭하다. 전하께서 신 심상규(沈象奎)가 선왕을 섬긴데다가 또 지금 사관으로 있다고 하여 현궁(玄宮)의 지문(誌文)을 제출하라고 명하셨는데, 참으로 황공하여 감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건대 우리 선왕의 훌륭한 덕과 지극한 선행(善行)은 온 나라에 넘쳐 사책(史策)에 그 사실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리고 영원히 세상에 칭송될 것이므로 지식(誌石)에 기록할 것이 없으며, 천지(天地) 같이 위대하고 일월(日月) 같이 밝은 빛을 신처럼 지식이 얇고 좁은 사람이 그려낼 수 없다고 여기었다. 그러나 『예기(禮記)』를 상고해 보면 공자(孔子)의 상(喪)에 공서적(公西赤)이 그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기록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는 알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니, 그 중요성이 실로 글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삼가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遷陵誌文曰：嗚呼！我烈考正宗大王，既大葬于華城顯隆園之東麓，是曰健陵。國人之有識慮者，皆竊憂其地淺夷，非聖人安久之藏。後二十二年辛巳三月九日己未，我孝懿王后薨，將筮兆于先陵。領敦寧府事臣金祖淳，上疏極言，陵地可憂狀，請精擇吉土，爲萬年之圖，我殿下，涕泣下批曰，‘大行大妃，平日以是大憂，屢下教於小子，今見卿疏，益不勝摧咽悶悚。’即召大臣卿宰，廷議之。金議僉同無貳，遂命大臣禮官及敦匠之臣，廣行相視，又使再三覆按。乃得顯隆園之右坐子之岡，爲尤吉，治方中爲同穴之制，緬奉先王，而后祔焉，陵仍舊號，實是年九月十三日庚申也。於是，國人又皆太息相慶曰，‘誠舊陵之爲憂，而華固先王之志，今而後，兩無憾矣。’始先王十三年己酉，遷永祐園于水原府之花山，更號顯隆，大築華城，以拱衛象設。揭御眞于園之齋殿，以寓晨昏之義，歲輒展謁，哀慕不自勝。十九年乙卯，奉慈宮，謁于園，還御華宮，進爵上壽。教曰，‘以予孤露，行是禮於是地，至願粗伸矣。’每拜園駕還，駐蹕遲遲之臺，回瞻夷猶，不忍發去，命華宮之堂曰老來，樓曰新豐，蓋有微意存焉。無樂乎南面，殆將脫屣千乘，而獨拳拳于華者如此，是則『孟子』所謂‘大孝終身慕者也。’今者復臨灤水之朝，而及窳以度，又在於華，是又天之所以大感于我先王，而此與之宅也，亦惟我殿下類孝之至，永綏我烈考文母也。於戲！其盛矣。殿下，以臣象奎，獲事先王，又今備官太史，命爲玄宮之誌，誠惶恐不敢當。竊伏以爲我先王盛德至善，冒濫區宇，史不勝書。(…)

<순조실록 24권, 순조 21년(1821) 8월 7일(갑신) 4번째기사>

## 정치/왕실

### 남공철의 지은 효의 왕후의 천릉 표석 음기

천릉 표석 음기(遷陵表石陰記)에 이르기를, “정종문성무열성인장효대왕(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은 승정 기원후(崇禎紀元後) 1백 25년인 임신년 9월 22일에 탄생하였고, 기묘년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으며, 을미년에 정사를 맡기고, 병신년에 즉위하였다. 경신년 6월 28일 승하하였고, 그해 11월 6일에 화성(華城) 현릉원(顯隆園) 동쪽에 있는 두번째 산등성이 해좌원(亥坐原)에 장사지냈다. 왕위에 24년 동안 있었고, 수는 49세였다. 그후 신사년 9월 13일에 현릉원 우측 산기슭 자좌원(子坐原)으로 이장하였다. 비(妃) 예경 자수 효의 왕후(睿敬慈粹孝懿王后) 김씨(金氏)는 승정 기원후 1백 26년인 계유년 12월 13일에 탄생하고, 임오년에 세손빈(世孫嬪)으로 책봉되었으며, 병신년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경신년에 금상(今上)이 즉위하여 왕대비로 높였으며, 신사년 3월 9일에 승하하였고, 이 해 9월 13일에 건릉(健陵)에 합장하여 동봉(同封)하였으니, 수는 69세였다.” 하였다. 【좌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지었다】

[○] 『遷陵表石陰記』曰：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崇禎紀元後一百二十五年壬申九月二十二日誕生，己卯冊封王世孫，乙未聽政丙申卽位。庚申六月二十八日昇遐，十一月初六日葬于華城顯隆園東第二岡亥坐之原。在位二十四年，壽四十九。辛巳九月十三日，遷奉于園之右麓子坐之原。妃睿敬慈粹孝懿王后金氏，崇禎紀元後一百二十六年癸酉十二月十三日誕生，壬午冊封世孫嬪，丙申，冊封王妃。庚申，今上嗣位，尊爲王大妃，辛巳三月初九日昇遐，九月十三日，祔葬于健陵，而同封，壽六十九。【左議政南公轍製】

<순조실록 24권, 순조 21년(1821) 8월 7일(갑신) 5번째기사>

## 정치/왕실

### 선대왕의 장례 문제에 관해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선대왕의 영구(靈柩)를 다시 드러내니, 망극한 애통이 더욱 새롭다. 광중(擴

中)의 재궁(梓宮)을 드러낸 다음날 화성(華城) 행궁의 숙소에 갔다가, 그 다음날 구릉(舊陵)의 빈전(嬪殿)에 나아가 예를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행궁으로 돌아왔다가 9일에 환궁하여 발인(發靚)을 할 것이니, 해방(該房)은 이를 잘 알도록 하라. 도로와 교량을 응당 보수할 것이고, 어가를 수행하는 군병은 서울에서 거동하는 예에 의하여 마련할 것이며, 화성부(華城府)의 전배(前排)와 선상(先廂)에서 대령(待令)하는 자는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辛丑/教曰: “先大王玄和復出, 罔極之慟, 益復如新. 出玄宮翌日, 當詣華城行宮宿所, 明日詣舊陵嬪殿行禮. 仍還行宮, 初九日還宮, 當奉辭靚行, 該房以此知悉. 道路橋梁, 自當修治, 隨駕軍兵, 依京舉動例磨鍊, 華城府前排及先廂待令者, 置之.”

<순조실록 24권, 순조 21년(1821) 8월 24일(신축)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관부사 김재찬 등이 연명으로 화성에 거동하지 말도록 차자를 올린다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관부사 김재찬(金載瓚), 영의정 한용귀(韓用龜), 관부사 김사목(金思穆), 좌의정 남공철(南公轍), 우의정 임한호(林漢浩)이다】 등이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돌림병이 매우 치성하니, 화성에 거동하는 명을 취소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질병은 목전에 미리 염려한 것이며 정리(情理)는 사람의 자으로서 그 만들 수 없는 일인데, 어찌 형적이 없는 일로 당연히 행해야 할 예를 폐지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지금 날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 그때 가면 자연히 <돌림병이> 그칠 것이다. 어찌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경 등은 그렇게 양해하라.”

하였다. 이때 정원에서 상의하여 아뢰고 약방(藥房)에서도 구두로 아뢰어 모두 그 명을 취소하라고 간청하였으나, 모두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비답을 내렸다.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들이 대면을 청하여 거동의 명을 취소하라고 아뢰자, 하교하기를,

“경 등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니, 힘써 따르도록 하겠다.” 하였다.

○癸卯/時原任大臣【判府事金載瓚, 領議政韓用龜, 判府事金思穆, 左議政南公轍, 右議政林漢浩】聯筭言: “輪診遍熾, 請寢華城幸行之命.” 批曰: “疾病, 目下之預慮也, 情理, 人子之所不能已, 豈可以未形之事, 廢當然之禮乎? 況今餘日尙多, 其時則自當寢息, 何必過慮? 卿等其諒之.” 政院議啓, 藥房口啓, 俱請寢成命, 竝以勿煩賜批. 時原任大臣求對陳達, 乞寢動駕之命, 教曰: “卿等之言如是懇切, 當勉從矣.”

<순조실록 24권, 순조 21년(1821) 8월 26일(계묘)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수원유수 김시근이 대왕과 왕후의 재궁을 광중에 봉안에 참여하다

대왕과 왕후 두 분의 재궁을 광중(壙中)에 봉안하였다. 【(…) 친릉 도감 제조 좌참찬 김이양(金履陽), 수원 유수 김시근(金蓍根), 병조 판서 김치응(金致應) 및 국장 도감 제조 호조 판서 박윤수(朴崙壽), 상호군 이조원(李肇源), 한성 판윤 정만석(鄭晩錫)은 그의 관속을 거느리고 보삽(黼罽)과 불삽(黻罽)을 재궁 양 곁에 세운 후 윤여(輪輿) 및 녹로(輶轡)를 철거하였다. 산릉 도감 제조 수원 유수 김시근, 공조 판서 정상우(鄭尙愚), 대호군 이상환(李相璜) 및 장생전 제조 영의정 한용귀, 호조 판서 박윤수, 공조 판서 정상우, 예조 판서 이존수(李存秀)는 그의 관속을 거느리고 외재궁(外梓宮) 바로 밑 모퉁이에 있는 판자를 들어 합해 놓았다. (…)]

○庚申/下大王王后兩玄宮。【(…) 遷陵都監提調左參贊金履陽, 水原留守金〈著〉根, 兵曹判書韓致應, 及國葬都監提調戶曹判書朴崙壽, 上護軍李肇源, 漢城判尹鄭晚錫, 率其屬以黼鬣獻饗, 樹於梓宮兩旁, 撤去輪輿及輓轡. 山陵都監提調水原留守金〈著〉根, 工曹判書鄭尙愚, 大護軍李相璜, 及長生殿提調領議政韓用龜, 戶曹判書朴崙壽, 工曹判書鄭尙愚, 禮曹判書李存秀, 率其屬取外梓宮正下隅板合之. (…)]

<순조실록 24권, 순조 21년 9월 13일(경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관상감 제조를 불러 보다

관상감 제조 이하를 불러 보았다. 제조 김조순(金祖淳)이 아뢰기를, “신 등이 화성(華城)의 옛 향교(鄕校) 터로 가서 살펴보니, 좌향(坐向)이 맞지 않았고, 돌아서 용인(龍仁)·광주(廣州) 등지로 가서 회릉(禧陵)의 옛 자리를 살펴보니, 형국의 형세가 둘러쌓는데 지사(地師)들이 모두 마음에 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배봉(拜峰)에 가서 살펴보고 그곳에서 공덕리(孔德里)로 갔는데, 모두 매우 좋다고 하였습니다. 경유한 여러 곳의 형국과 용세(龍勢)는 이미 별단에 개진하였습디만, 대체로 배봉진(拜峰鎭)과 공덕리의 지형은 모두 매우 좋았으나, 배봉진은 민가의 수효가 많지 않았고 공덕리는 민가가 1천여 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사의 논의가 배봉진으로 일치되었습니다.” 하였다.

○召見觀象監提調以下. 提調金祖淳奏曰: “臣等向華城, 往舊鄕校基看審, 則坐向不合, 轉向龍仁·廣州等地, 看審禧陵舊基, 則局勢回抱, 地師皆云合意. 因往拜峰看審, 自其處轉向孔德里, 而皆云恰好矣. 所經諸處局形龍勢, 雖已陳於別單, 而蓋拜峯鎭孔德里地形, 俱極好, 拜峰鎭, 民戶數不多, 孔德里則民戶爲千有餘家. 而諸地師議論, 歸一於拜峯鎭矣.”

<순조실록 26권, 순조 23년(1823) 1월 15일(을유)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건릉과 현릉원에서 친제 등을 하다

건릉(健陵)과 현릉원(顯隆園)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친제(親祭)하였는데, 왕세자가 아헌례를 행하였다. 화령전(華寧殿)에 돌아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는데, 왕세자는 아헌례를 행하였다. 제조 김유근(金迪根)에게 승정(崇政)을 가자(加資)하고, 그 나머지는 시상하였다. 화성의 유생과 무사들을 명일에 시취(試取)하라고 하령하였다.

○癸巳/詣健陵·顯隆園展謁親祭, 王世子行亞獻禮, 還詣華寧殿, 行酌獻禮, 王世子行亞獻禮. 提調金迪根加崇政, 其餘施賞. 命華城儒生武士, 明日試取.

<순조실록 30권, 순조 28년(1828) 2월 23일(계사)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화성 성 안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 등에게 쌀과 고기를 하사하다

화성 성 안에 사는 사서(士庶)들 중에 나이 70세 이상된 사람과, 사서인 중에 39세 【경술생(庚戌生)인 임금과 같은 나이】 된 사람 40명에게 각각 쌀과 고기[米肉]를 주라고 하령하였다.

○甲午/令華城城內士庶年七十以上人, 士庶中年三十九四十人, 各賜米肉.

<순조실록 30권, 순조 28년(1828) 2월 24일(갑오)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순조 대왕 행장(行狀)으로 정조를 수원 현릉원 동쪽에 안장했다는 내용

행장(行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월 갑신일(甲申日)에 정종 대왕(正宗大王)을 건릉(健陵)에 장사지냈는데 이 곳은 수원(水原)의 구치(舊治)에 있는 화산(花山)으로 곧 현릉원(顯陵園) 동쪽 제이강(第二岡)이다. 도감(都監)에서 쓰이는 모든 재용(財用)은 내탕(內帑)의 저축에서 지출하였으며, 신릉(新陵)의 향탄 위전(香炭位田)은 장용영(壯勇營)의 둔토(屯土)를 옮겨 획급(劃給)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모두 민력(民力)을 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

○行狀：(…) 十一月甲申，葬正宗大王于健陵，在水原舊治花山，卽顯陵園東第二岡也。 凡都監所需財用，竝出內儲，新陵香炭位田，命以壯勇營屯土移畫，皆所以紓民力也。(…)

순조 대왕 행장(行狀)

### 정치/왕실

헌종이 수원 부사 서유구를 소견하다

회정당에서 권강하였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서유구(徐有渠)를 소견하였는데, 사폐(辭陞)하기 때문이었다.

○庚戌/勸講于熙政堂，召見水原留守徐有渠，辭陞也。

<헌종실록 3권, 헌종 2년 1월 26일(경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상호도감에 참여한 수원유수 김좌근 등에게 가좌하다

상호 도감 도제조(上號都監都提調)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주었다. 제조(提調) 공조 판서 박영원(朴永元)·병조 판서 서좌보(徐左輔)·호조 판서 조두순(趙斗淳), 도청(都廳) 사복정(司僕正) 김병기(金炳冀)·부사과(副司果) 정익조(鄭翊朝), 대왕 대비전 옥책문 제술관(大王大妃殿玉冊文製述官) 예조 판서 김흥근(金興根), 옥보 전문 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좌근(金左根), 악장문 제술관(樂章文製述官) 좌참찬(左參贊) 이약우(李若愚), 왕대비전 옥책문 제술관(王大妃殿玉冊文製述官) 공조 판서 박영원(朴永元)을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上號都監都提調以下，施賞有差，提調工曹判書朴永元，兵曹判書徐左輔，戶曹判書趙斗淳，都廳司僕正金炳冀，副司果鄭翊朝，大王大妃殿玉冊文製述官禮曹判書金興根，玉寶篆文書寫官水原留守金左根，樂章文製述官左參贊李若愚，王大妃殿玉冊文製述官工曹判書朴永元，竝加資。

<헌종실록 15권, 헌종 14년 3월 21일(을미)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삼조보감의 찬집과 봉서 및 진서에 참여한 수원유수 이약우 등에게 가자하다

『삼조보감(三朝寶鑑)』을 태묘(太廟)에 친히 올리기 위하여 봉서(奉書)·진서(進書)할 때와 찬집(纂輯)할 때에 총재(摠裁)한 대신(大臣)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주었다. 찬집 당상(纂輯堂上) 판돈녕(判敦寧) 김난순(金蘭淳)·예조 판서 박영원(朴永元)·수원 유수(水原留守) 이약우(李若愚)·청녕군(淸寧君) 김동건(金東健)·광주 유수(廣州留守) 조두순(趙斗淳)·대호군(大護軍) 서기순(徐箕淳), 도청 낭청(道廳郎廳) 교리(校理) 조연창(趙然昌), 교

정 낭청(校正郎廳) 사성(司成) 박승휘(朴承輝)· 부교리(副校理) 심승택(沈承澤), 감인 당상(監印堂上) 공조 참관 김정집(金鼎集)· 호군(護軍) 윤치수(尹致秀)를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三朝寶鑑』親上太廟奉書進書時，及纂輯摠裁大臣以下，施賞有差，纂輯堂上判敦寧金蘭淳，禮曹判書朴永元，水原留守李若愚，淸寧君金東健，廣州留守趙斗淳，大護軍徐箕淳，都廳郎廳校理趙然昌，校正郎廳司成朴承輝，副校理沈承澤，監印堂上工曹參判金鼎集，護軍尹致秀，並加資。

<헌종실록 15권, 헌종 14년 10월 10일(경술)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 궐리사의 낡은 공자 영정을 관동이나 호서의 것으로 옮겨 봉안하게 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병준(趙秉駿)이 장계(狀啓)하기를,

“궐리사(闕里祠)의 영정(影幀)이 해가 오래되어 바래고 해졌습니다. 강릉(江陵)· 제천(堤川)에 봉안된 두 본(本)을 장차 본사(本祠)로 옮겨 봉안해야 하는데 사체가 신중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계품(啓稟)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고장 땅에다 부자(夫子)의 영정을 걸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정종 대왕(正宗大王)께서 천성(千聖)을 접하여 백왕(百王)의 으뜸이 된 정의(精義)의 대체(大諦)이시다. 이밖에 조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사로이 스스로 봉안하는 것은 설만(褻慢)한 것이다. 이제 이 초본(縮本)이 오래되어 낡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다시 모사(摸寫)하지는 못할 듯하니, 관동(關東)과 호서(湖西)에 봉안된 것을 옮겨 봉안함이 사체로 헤아려 마땅할 듯하다. 각기 그 고을 수령(守令)이 격식에 의하여 그 고을 경계(境界)에 배진(陪進)하고, 궐리사(闕里祠)에 옮겨 봉안하는 날 유수가 달려가 봉심(奉審)하며, 구본(舊本)은 궤(櫃)에 보관하는 편리 여부를 자세히 살펴 거행한 후 계문하라. 이 일을 인해 생각건대 근래 각 고을에서 서원(書院)을 법(法) 이외에 사사로이 세우니, 마땅히 한 번 신명(申明)해야 한다. 선현(先賢)의 영정을 무단히 만들어 내거나, 무단히 사우(祠宇)를 세우는 것이 비록 덕(德)을 사모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법 이외의 일을 하는 것은 덕을 사모함이 아니다. 더군다나 향리(鄉里)에서 엿보면서 소란스런 폐단을 빚어 내는 것이 마침내 습속(習俗)이 날로 변하는 근심이 되는 것이겠는가? 이번 신칙(申飭)한 후에 혹시라도 들려오는 바가 있으면 주장(主張)한 사자(士子) 이외에 살피지 못한 도신(道臣)과 수령(守令) 역시 엄히 처리하겠으니 이 전교로써 하나하나 효유하라.” 하였다.

○己卯/水原留守趙秉駿狀啓以爲，“闕里祠影幀，年久渝(弊) [弊] . 江陵·堤川所奉二本，將移奉于本祠，而事體慎重，令廟堂啓稟.” 教曰：“是府是地之揭虔夫子影幀，卽我正宗大王接千聖冠百王之精義大諦也. 外此而不有朝令，私自奉安，是慢也褻也. 今此縮本，年久告渝，重摸之尙懼不得，而關東湖西所奉之移奉，揆以事體，誠爲得宜. 各其邑守令，按式陪進於各其境上，闕里移奉之日，留守馳詣奉審舊本，櫃藏便否，詳審舉行後啓聞. 因此思之，近來列邑書院之法外私建，宜有一番申明. 而先賢影幀之無端撰出，無端建祠者，雖曰慕德之舉，而法外之舉，非所以慕德也，況鄉里睚眦閹擾之(弊) [弊] 適足爲俗習日渝之憂乎? 今此提飭之後，如或有所入聞，則主張士子之外，不察之道臣守令，亦當嚴處，以此傳教，一一曉諭.”

<철종실록 3권, 철종 2년 8월 25일(기묘) 1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 유수 조병준이 공자의 영정을 봉안하는 길일을 정하였음을 아뢰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병준(趙秉駿)이 장계하기를,

“제천현(堤川縣)에 봉안(奉安)된 부자(夫子)의 성상(聖像) 1본과 강릉부(江陵府)에 봉안된 성상 1본을 임시로 궐리사(闕里祠)에 봉안한 후 봉안하는 길일(吉日)을 이달 22일 신시(申時)로 가려 정했으며, 본사(本祠) 구본(舊本)을 궐(櫃)에 넣어 보관하는 길일은 같은 달 같은 날 진시(辰時)로 가려 정했습니다. 궐에 넣어 봉안할 때의 고유제(告由祭) 향(香)과 축문(祝文)을 해조로 하여금 예(例)에 의하여 마련해 기일에 미쳐 하송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戊午/水原留守趙秉駿狀啓以爲, “堤川縣所奉夫子聖像一本, 江陵府所奉聖像一本, 權奉于闕里祠後, 奉安吉日, 以今月二十二日申時推擇, 本祠舊本櫃藏吉日, 以同月同日辰時, 推擇櫃藏及奉安時告由祭香祝, 令該曹, 照例磨鍊, 請乃期下送.”

<철종실록 3권, 철종 2년 9월 6일(무오) 1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 궐리사에 강릉본 공자 영정을 봉안하게 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병준(趙秉駿)이 장계하기를, “신이 궐리사(闕里祠)에 달려가 본사(本祠)의 자손 및 본부(本府)의 유생(儒生)과 함께 봉심(奉審)했더니, 강릉본(江陵本)이 완본(完本)이 되고 제천본(堤川本)은 이따끔 바래고 상해서 모두 강릉본을 봉안해야 한다고 하니, 상재(上裁)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단지 강릉에서 가져온 완본을 봉안하라는 일로 회유(回諭)한다.” 하였다.

○壬申/水原留守趙秉駿狀啓以爲: “臣馳詣闕里祠, 與本祠子孫及本府儒生, 同爲奉審, 則江陵本爲完本, 堤川本, 間間渝傷, 皆以爲江陵本, 當爲展奉, 請上裁.” 教曰: “只以江陵奉來完本展奉事, 回諭.”

<철종실록 3권, 철종 2년 9월 20일(임신) 1번째기사>

정치/왕실

약원의 입진과 차대를 행하다

희정당(熙政堂)에서 약원(藥院)의 입진(入診)과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수원(水原)·광주(廣州)의 유수(留守)는 혹 원임 대신(原任大臣)으로 차견(差遣)하라고 명하였으니, 영의정(領議政) 김좌근(金左根)의 주청(奏請)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甲子/藥院入診及次對于熙政堂. 命水原·廣州留守, 或以原任大臣差遣, 因領議政金左根所奏也.

<철종실록 6권, 철종 5년 3월 25일(갑자) 1번째기사>

정치/왕실

경내의 유생과 무사로 하여금 응제와 시예에 응시할 것을 명하다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에 나아가 경숙(經宿)하였다. 하교하기를, “경내(境內)의 유생(儒生)과 무사(武士)는 마땅히 응제(應製)와 시예(試藝)에 응시해야 된다. 유생은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이 유수(留守)와 함께 내일 교궁(校宮)에 같이 가서 시취(試取)하여 오도록 하

고, 무사는 환궁(還宮)한 뒤에 시예(試藝)하여 장문(狀聞)하도록 하라.” 하였다.

○庚申/詣華城行宮經宿教曰：“境內儒武，當應製試藝矣．儒生則弘文提學，與留守，明日偕往校宮，試取以來，武士則還宮後試藝以聞．”

<철종실록 7권, 철종 6년(1855) 2월 27일(경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회혼이 지난 전 부사 홍석모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하사하다

전 부사(府使) 홍석모(洪錫謨)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제급(題給)하게 하였는데, 화성(華城)에서의 내연(內宴)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회졸(回僞)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었다.

○給前府使洪錫謨衣資食物，以入參華城內宴之人，回僞已過也．

<철종실록 7권, 철종 6년(1855) 3월 5일(정묘) 4번째기사>

### 정치/왕실

#### 경복궁 영건에 공이 있는 수원유수 이경하 등에게 가자하다

경복궁(景福宮)으로 이어(移御)하였다.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왕대비전(王大妃殿)·대비전(大妃殿)·중궁전(中宮殿)도 함께 이어하였다. 전교하기를,

“법궁(法宮)을 영건(營建)한 지 겨우 40달가량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벌써 이어하게 되었다. 300년 동안 미처 하지 못하던 일을 이렇게 완공하였으니, 그 기쁘고 다행한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아직도 공사를 끝내지 못한 곳이 있으니 영건 도감(營建都監)을 철폐(撤罷)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비롯하여 여러 장수들과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과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이 몇 해 동안 날마다 수고하였는데 어찌 성의를 보이는 조치가 없겠는가? 표창하는 은전은 별단을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 겸 호조 판서(兼戶曹判書) 김병국(金炳國)의 아들·사위·아우·조카 중에서 나이와 임기를 헤아리지 말고 교관(敎官)의 자리를 만들어 조용(調用)하고, 훈련대장(訓練大將) 신현(申愼),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경하(李景夏), 금위대장(禁衛大將) 이주철(李周喆), 통제사(統制使) 이현직(李顯稷), 진무사(鎭撫使) 이용희(李容熙), 우변포도대장 이원희(李元熙), 좌변포도대장 이종승(李鍾承)에게 모두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

初二日．移御于景福宮．大王大妃殿．王大妃殿．大妃殿．中宮殿，同爲移御．教曰：“法宮營建，甫四十朔頃，而今已移御矣．三百年未遑之事，有此告成，曷勝喜幸？猶有工役之未及畢處，則都監不必撤罷．而戶判．諸將臣．左右捕將之幾多年逐日勤勞，何可無示意之舉乎？酬賞之典，不必遲待別單．兼戶曹判書金炳國，子壻弟姪中，勿拘年紀瓜近，敎官作窠調用．訓練大將申愼·水原留守李景夏·禁衛大將李周喆·統制使李顯稷·鎭撫使李容熙·右捕將李元熙·左捕將李鍾承，竝加資．” (…)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7월 2일(정축)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부대부인이 화성에 행차하여 원임 대교 조경호에게 문안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부대부인(副大夫人)이 화성(華城)에 행차하였으니, 원임 대교(原任待敎) 조경호(趙慶鎬)에게 먼저 문후하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教曰：“府大夫人行次于華城矣．原任待敎趙慶鎬，先爲問候以來．”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1870) 3월 11일(정축) 2번째기사>

## 정치/왕실

**대원군의 부대부인이 행차할 때 수원 유수 이재원이 배행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이번에 대원군(大院君)의 부대부인(府大夫人)이 온양(溫陽)과 덕산(德山)으로 행차(行次)할 때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재원(李載元)이 배행(陪行) 하라.” 하였다.

敎曰: “今番大院君府大夫人溫陽·德山行次時, 水原留守李載元陪行.”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 8월 9일(계묘) 3번째기사>

## 정치/왕실

**『오례편고』의 도표를 개정하게 하다**

진강(進講)을 마쳤다. 하교하기를, “『오례편고도식(五禮便考圖式)』이 이제야 비로소 초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단지 상고해보기 위한 것이다.”

하고, 이어 책자 5권을 내려주라고 명하였다. 강관(講官) 김세균(金世均)이 무릎을 꿇고 받았다. 하교하기를, “이것은 『오례의(五禮儀)』, 『속오례의(續五禮儀)』, 『오례편고(五禮便考)』 등 여러 책들 속의 것을 참고한 것이다. 그리고 또 옛날 도식(圖式)한 책이 내시부에 보관되어 있는데 전적으로 그 책을 본따서 그린 것이다. 그런데 도설(圖說) 부분은 글 뜻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 많고 또 내전(內殿)의 복색(服色)은 외전(外殿)과 달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언문(諺文)으로 써놓은 곳이 있다.”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도설 가운데 언문으로 쓴 것은 아마도 부득이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옛날 도식은 세월이 오래되어서 좀이 먹었기 때문에 고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군복(軍服)에 대한 도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묘조(正廟朝) 이전에 그린 것인 듯하다.”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효묘조(孝廟朝)에 가교(駕橋)를 탈 때의 복색을 정하였는데, 하교하기를, ‘일찍이 『대명회전(大明會典)』을 보니 무사(武士)의 옷소매는 팔이 겨우 들어갈 정도였는데, 그것은 군복이란 가볍고 날렵한 쪽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철릭 [帖裏] 과 사립(絲笠)은 동작에 구속을 준다.’ 라고 하고는 이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布) 차림은 남여를 탈 때나 교자를 탈 때나 구분을 두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군복에 이르러서는 정묘조에 화성(華城)으로 행행할 때에 입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녕전(華寧殿)에 모신 어진(御眞)의 옷차림은 바로 군복 차림입니다. 그 후 헌종조(憲宗朝) 병오년(1846) 이전까지는 단지 화성으로 행행할 때에만 군복 차림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김세균이 아뢰기를, “일찍이 듣건대, 능으로 행차할 때의 복색을 화성에 행차할 때의 전례대로 하라는 명이 있으면 으레 군복 차림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내전의 관제(冠制)는 틀림없이 명나라의 제도일 것이다.”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머리 장식을 하는 데에서 화려한 장식을 한 것은 친영(親迎)할 때에 쓴 것이다.”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화려한 장식을 한 제도는 이번에 처음 보는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큰 다리 [大髻] 와 둥근 다리 [圍髻] 두 가지 장식은 모사(模寫)하기 어려워서 그 이름만 도서(圖書)에 기록하였는데, 대체로 외전(外殿)의 익선관(翼善冠)과 같다. 만일 원삼(圓衫)을 갖추어 입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장식을 하여야 한다. 당고의(唐古衣)는 내전이 문안을 올리거나 진전(眞殿)에 참배할 때에 입는다.” 하였다.

김세균이 아뢰기를, “상의원(尙衣院)의 문적(文蹟)에는 두수(頭鬚)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도식(圖式)에 포함시켰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아마도 예복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머리 장식에는 명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과 지금 부르는 명칭이 서로 다른 듯하며, 옛날 도식에는 간혹 채색을 넣기도 하였다.” 하였다. 김세균이 아뢰기를, “이 책을 판각한다면 채색을 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내(大內)에 별도로 비치할 책은 옛 규례대로 채색을 넣어 고증하는 데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옛날 제도에서 흉배(胸背)의 둥근 용 그림은, 임금인 경우에는 용의 발톱이 5개, 세자는 발톱이 4개, 세손은 발톱이 3개로 된 것을 사용하였다.”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과연 그렇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망룡의(蟒龍衣)의 소매는 요즘의 작은 두루마기 모양처럼 좁은데, 다만 소매의 가운데가 좀 넓게 되었다. 그 전에 효종께서 입으셨던 한 벌이 진전(眞殿) 이안청(移安廳)에 보관되어 있다.” 하니, 김세균이 아뢰기를, “이것은 명나라에서 하사한 것이며 지금까지 보관되어 오는 것입니다.” 하였다.

二十九日. 進講訖, 教曰: “『五禮便攷圖式』, 今纔出草, 第爲考閱也.” 仍命下冊子五卷. 講官金世均跪受. 教曰: “此是『五禮儀』·『續五禮儀』·『五禮便攷』諸冊中參考者. 而又有古圖式一本, 藏在內府, 摹畫一依此本. 圖說, 多有文意未暢處, 且內殿服色, 異於外殿, 有難詳言. 故不得不有以俗稱書之者矣.” 世均曰: “圖說中書以俗稱, 恐不得不然矣.” 教曰: “古圖年久蠹傷, 難爲考證. 而第無軍服之圖, 似是正廟朝以前所圖者也.” 世均曰: “孝廟朝定御駕轎時服色, 教曰: ‘曾見『大明會典』, 武士衣袖, 僅容其臂, 所以戎服取輕捷也. 我國帖裏·絲笠, 拘束動作, 仍命翼善冠·袞龍袍, 無分於輿·轎.’ 至於軍服, 正廟朝華城幸行時所御, 故華寧殿御眞所御, 乃軍服矣. 其後憲宗朝丙午以前, 只以華城幸行時, 用軍服矣.” 世均曰: “曾伏聞陵幸時服色, 以華幸例有命, 則例用軍服矣.” 教曰: “內殿冠制, 必是大明之制也.” 世均曰: “似然矣.” 教曰: “首飾中廣飾, 則親迎時用之矣.” 世均曰: “廣飾之制, 今始奉見矣.” 教曰: “大髷·圍髷兩飾, 難便於模寫, 只錄其名於圖序, 而蓋如外殿之翼善冠. 若具圓衫則必加是飾也. 唐古衣, 內殿問安及眞殿參拜時用之矣.” 世均曰: “尙衣院文蹟, 有頭鬚之制, 或入於圖式乎?” 教曰: “似非法服. 且首飾多有稱號, 則似是古今異稱者矣, 而古圖則或以彩施之矣.” 世均曰: “此本當鈔梓, 則難以施彩. 而自內別置本, 則依古規設彩, 以備考證, 恐好矣.” 教曰: “古制胸襟圓龍, 御用五爪, 世子用四爪, 世孫用三爪矣.” 世均曰: “誠然矣.” 教曰: “蟒龍衣袖狹, 如近日小周衣樣. 但袖之中間稍廣. 而曾有孝廟所御一件, 奉置眞殿, 移安廳矣.” 世均曰: “此是皇明所賜而至今奉藏矣.”

<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1873) 8월 29일(을사)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강화유수가 제주의 공마 20마리를 수원부에서 획송해줄 것을 요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강화 유수(江華留守) 조병식(趙秉式)의 보고를 보니, ‘본영(本營)에 있는 말들은 모두 둔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올가을에 제주(濟州)의 공마(貢馬) 20마리를 수원부(水原府)에서 직접 획송(劃送)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강화도(江華島)는 유사시에 대한 대비가 다른 곳에 비해 특별히 중요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수량을 정해서 획송하도록 태복시(太僕寺)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보장(保障)의 지역이니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식년(式年)에는 10필(匹), 보통 해에는 5필씩 획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

議政府啓: “卽見江華留守趙秉式所報, 則‘本營所存馬匹, 皆駑駘不堪用, 今秋濟州貢馬限二

十四, 自水原府直爲劃送’爲辭矣. 沁都陰雨之備, 比他迥別, 依報辭, 準數劃送事, 分付太僕寺何如?” 教曰: “保障之地, 另加顧念. 式年十四, 恒年五匹式劃送.” (…)

<고종실록 12권, 고종 12년 8월 6일(경오)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수원 유수 김병지 등을 종척집사로 차하하다

(…) 또 전교하기를,

“영평군(永平君) 이경응(李景應),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 상호군(上護軍) 김병주(金炳澁), 광주 유수(廣州留守) 이재원(李載元), 행 이조 판서(行吏曹判書) 박제인(朴齊寅),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병지(金炳地), 지돈녕부사(知敦寧府使) 김수현(金壽鉉), 지종정경(知宗正卿) 이재면(李載冕), 행 호군(行護軍) 홍승억(洪承億)·박제관(朴齊寬)·한응국(韓應國), 부호군(副護軍) 이재금(李載兢), 병조 참의(兵曹參議) 이재순(李載純), 곡산 부사(谷山府使) 이재완(李載完), 부호군(副護軍) 윤용구(尹用求)·김덕균(金德均)·이승순(李承純), 민희식(閔義軾),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석진(金奭鎭), 동부승지(同副承旨) 김흥균(金興均), 정주 목사(定州牧使) 조신희(趙臣熙), 서천 군수(舒川郡守) 한응필(韓應弼), 전 군수(前郡守) 이순익(李淳翼), 화순 현감(和順縣監) 김윤현(金胤鉉), 광흥 영(廣興令) 이승위(李承緯), 전 영(前令) 이승기(李承紀), 전 판관(前判官) 이헌기(李憲夔), 돈녕부 참봉(敦寧府參奉) 남세우(南世祐), 전(前) 참봉(參奉) 홍난섭(洪蘭燮), 진사(進士) 이응재(李應宰), 유학(幼學) 김승균(金昇均)·이인직(李寅植)·이재관(李載寬)·이완직(李完植)·남승우(南承祐)·민용국(閔容國)을 모두 종척집사(宗戚執事)로 차하하라.” 하였다.

(…) 又教曰: “總護使, 領敦寧金炳學爲之; 守陵官, 完平君李昇應差下.” 又教曰: “永平君李景應·完平君李昇應·南寧尉尹宜善·錦陵尉朴泳孝·上護軍金炳澁·廣州留守李載元·行吏曹判書朴齊寅·水原留守金炳地·知敦寧金壽鉉·知宗正卿李載冕·行護軍洪承億·朴齊寬·韓應國·副護軍李載兢·兵曹參議李載純·谷山府使李載完·副護軍尹用求·金德均·李承純·閔義軾·左副承旨金奭鎭·同副承旨金興均·定州牧使趙臣熙·舒川郡守韓應弼·前郡守李純翼·和順縣監金胤鉉·廣興令李承緯·前令李承紀·前判官李憲夔·敦寧參奉南世祐·前參奉洪蘭燮·進士李應宰·幼學金昇均·李寅植·李載寬·李完植·南承祐·閔容國, 竝宗戚執事. 差下.”

<고종실록 15권, 고종 15년 5월 12일(신유) 6번째기사>

## 정치/왕실

### 김세균이 함경도의 선비들이 불평이 있으니 제과 급제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다

전 함경 감사(前咸鏡監司) 김세균(金世均)을 소견(召見)하였다. 김세균이 아뢰기를, (…)

“본도(本道)는 나라의 근분이 되는 지역으로서 500년간 인재를 배양하고 양성하여 경학(經學)과 행실을 갖춘 선비들이 종종 있으며 과문(科文)의 공부와 같은 것도 역시 불 만한 자가 많습시다.

오직 제과(諸科)의 급제 정원수가 가장 적어서 공도회(公都會)에서 남북관(南北關)이 모두 시(詩)와 부(賦)에서 각각 1인, 강(講)에서 1인씩밖에 뽑지 않습니다. 수원(水原), 개성(開城), 광주(廣州)는 비록 일개 주(州)인데도 각각 8인씩 뽑는데 일대 성(省)으로서 이처럼

**뽑는 인원수가 적으니 많은 선비들이 불평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겨울부터는 남북관의 공도회때 시와 부에서 각각 1인씩 더 뽑아서 조정에서 돌봐주는 뜻을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하였다. (…)

召見前咸鏡監司金世均. 世均曰: (…) 又曰: “本道, 國家根本之地, 五百年培養作成, 往往有經學謹飭之士. 至於功令之業, 亦彬彬可觀焉. 而惟諸科取額最少, 公都會南北關, 俱是詩·賦各一人·講一人而已. 水原·開城·廣州, 雖一州各取八人, 而以一省之大, 若是數少, 宜其多士之齋菴. 今冬爲始, 南北關公都會, 詩·賦各加一人, 以示朝家眷念之意, 恐好. 令廟堂稟處何如?” 允之. (…)

<고종실록 16권, 고종 16년 2월 28일(임인) 3번째기사>

### 정치/왕실

**강화도의 유생 공도회의 합격 인원을 수원 등 삼도(三都)처럼 8인으로 늘려달라고 청하다**

대신,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경리사 당상(經理事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 김병국이 아뢰기를, “방금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재원(李載元)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부(本府)의 유생 공도회(公都會)의 해액(解額)은 4인에 불과하나 수원(水原)·광주(廣州)·개성(開城)은 각각 8인이나 되어 삼도(三都)에 비해 이처럼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온 경내가 억울하게 여기니 삼도의 8인 액수의 예대로 시행할 것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에 대한 모든 조치는 본디 삼도보다 못하지 않은데, 공도회에서 뽑은 액수가 삼도에 비해 유달리 적은 것은 실로 억울하다는 한탄이 있으니, 올가을부터 특별히 8인 액수로 시취(試取)하도록 정식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하였다.

二十七日. 引見大臣·政府·經理堂上. (…) 炳國曰: “卽見江華留守李載元狀啓, 則本府儒生公都會解額, 不過四人, 水原·廣州·開城則各至八人, 而比諸三都, 若是懸殊, 闔境齋菴. 依三都八額例施行事, 請令廟堂稟處矣. 本府之凡百制置, 固不讓於三都, 則都會取額之較三都偏少者, 實有抑菴之歎. 自今秋爲始, 特以八額試取事, 著式施行何如?” 允之.

<고종실록 18권, 고종 18년 9월 27일(병진) 1번째기사>

### 정치/왕실

**건릉 기진제의 헌관으로 수원 유수를 임명하라고 명하다**

건릉(健陵)의 기진제(忌辰祭)의 헌관(獻官)으로 수원 유수(水原留守)를 채워 차임하라고 명하였다. 이조(吏曹)에서 관하(判下)한 정식으로 인해 계청(啓請)하였기 때문이다.

初八日. 命健陵忌辰祭獻官, 以水原留守填差. 因吏曹有判下定式啓請也.

<고종실록 28권, 고종 28년 3월 8일(임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의 능원의 사례처럼 각릉의 개수는 각 지방관이 거행하도록 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 정범조가 아뢰기를,

“각릉(各陵)을 개수하는 일은 이제부터 경기 감영(京畿監營)에서 각 지방관으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을 듯 합니다. 호조에서 거행하는 것이 비록 법전(法典)이기는 하지만, 수시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역사(役事)가 방대하게 되고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또한 변통하자는 논의가 있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수원(水原)의 능원은 본영(本營)에서 개수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장 완전하니, 이것은 모두 정묘조(正廟朝)의 효성의 소치이다. 전주(全州)에 있는 경기전(慶基殿)과 조경묘(肇慶廟)도 다 감영(監營)에서 역사를 감독하는가?”

하였다. 정범조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수원의 예대로 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이니 역시 예조 판서와 서로 의논하여 잘 처리하라.” 하였다.

初七日。次對。(…) 範朝曰：“各陵修改之節，從今自畿營，令各地方官舉行，似爲便好矣。戶曹舉行，雖是法典，而不得隨時隨改，故每致役事之浩大，又多用下之過濫。此亦有變通之論久矣。” 教曰：“水原陵·園，自本營爲之，故至今最完。此皆正廟朝誠孝所致也。全州慶基殿·肇慶廟，亦皆自監營董役乎?” 範朝曰：“然矣。” 教曰：“依水原例爲之，甚好。亦與禮判相議，善爲措處也。”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2월 7일(경신)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수원사람 91세의 황기상이 근정전에서 베푼 양로연에 참여하여 동궁에게 장수를 축원하다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양로연(養老宴) 외연(外宴)을 행하였다. (…) 이어 사알(司諫)에게 기로소 당상을 부축하여 먼저 물러가라고 명하고, 또 사알에게 90세 이상 되는 사람을 인도하여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니, 사알이 황기상(黃基常) 한 사람을 인도하여 앞으로 나아왔다. 하교하기를,

“나이는 몇이며 어느 곳에 사는가?”

하니, 황기상이 아뢰기를,

“신은 수원(水原)에 사는데 나이는 91세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것은 노인을 위로하는 연회다. 그대는 성대한 의식을 보고 베풀어주는 음식을 받았는가?”

하니, 황기상이 아뢰기를,

“특별히 훌륭한 은덕을 입어 한껏 취하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였다. 사알에게 명하기를,

“자식이 만약 따라 들어왔으면 그의 아버지를 부축하게 하라.”

하니, 황기상의 아들 황종성(黃鍾成)이 앞으로 나아와서 그 부친을 부축하였다. 하교하기를,

“노인 황기상을 오늘 정사에서 도사(都事)로 비의(備擬)하여 들이고 가자(加資)하도록 하비(下批)하라.”

하였다. 황기상이 아뢰기를,

“신의 장수(長壽)를 성상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더욱 귀한 일이다. 황노인의 장수를 동궁에게 올려 축원하게 하라.”

하였다. 황기상이 동궁에게 헌수하였다.

二十日。御勤政殿，行養老外宴。(…) 仍命司諫，扶諸耆堂先退，又命司諫，引九十以上人，使

之進前. 司謁引黃基常一人進前. 教曰: “年幾何, 居何地乎?” 基常曰: “臣居在水原, 而年今九十一歲矣.” 教曰: “此慰耆耄之謙也. 爾能瞻盛儀而受宣饌乎?” 基常曰: “特蒙盛德, 善爲醉飽矣.” 命司謁曰: “乃子若隨入, 則使之扶挾其爺.” 基常之子鍾成進前, 扶其父. 教曰: “耆老人黃基常, 今日政, 都事擬入, 加資下批.” 基常曰: “以臣之壽, 願上于聖上矣.” 上曰: “此尤貴矣. 將爾黃耄壽, 進祈于東宮也.” 基常獻壽東宮.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3월 20일(임인) 1번째기사>

#### 정치/왕실

##### 고종이 새로 임명한 수원관관 등을 인견하고 훈계하다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가 새로 임명한 지방관(地方官)인 (...) 수원 판관(水原判官) 정교(鄭喬) (...)을 특별히 인견(引見)하고 흉년과 병란(兵亂)을 겪은 지방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하여 간절히 훈계하였다.

大君主陛下께서 新任地方官 (...) 水原判官鄭喬 (...)을 特別히 引見하시고 歉荒과 兵亂을 經한 地方에 人民의 疾苦를 爲하사 懇切히 戒訓하시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5월 8일(무인) 3번째기사>

#### 정치/왕실

##### 수원의 건릉과 현릉원 등의 경내에 백성의 무덤이 있다

조경단(肇慶壇)을 봉심(奉審)한 재신 이재곤(李載崐)과 의정(議政)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풍덕(豐德)의 제릉(齊陵)과 후릉(厚陵), 여주(驪州)의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수원(水原)의 건릉(健陵)과 현릉원(顯隆園) 자내(字內)에도 혹 백성들의 무덤이 있다. 비록 잡초나 잡목일지라도 어찌 사사로이 차지하거나 함부로 베어내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재곤이 아뢰기를, “관리를 두어 금지하고 보호한다면 사사로이 차지하는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

十一日. 召見肇慶壇奉審宰臣李載崐及議政以下.(...) 上曰: “豐德齊·厚陵, 驪州英·寧陵, 水原健陵·顯隆園字內, 亦或有民塚. 而雖雜草雜木, 豈可使之私占犯斫乎?” 載崐曰: “設官禁護, 必無私占之弊矣.” (...)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7월 11일(양력) 1번째기사>

#### 정치/왕실

궁내부 관제 중 증치에 관한 안건에서 수원 화녕전의 제조와 영, 위장의 예겸을 규정하다 포달(布達) 제68호, <궁내부 관제 중 증치에 관한 안건 [宮內府官制中增置件]> 을 【조경묘(肇慶廟), 경기전(慶基殿) 제조(提調) 1인을 전라북도 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가 예겸하고, 위장(衛將) 1인은 전주 진위대 대대장(全州鎭衛隊大隊長)이 예겸하며, 화녕전(華寧殿) 제조(提調) 1인은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가 예겸하고, 영(令) 1인은 수원 군수(水原郡守)가 예겸하며, 위장 1인은 수원(水原) 진위대 대대장이 예겸한다.】 반포(頒布)하였다.

二十三日. 布達第六十八號, 宮內府官制中增置【肇慶廟·慶基殿提調一人, 全羅北道觀察使例兼; 衛將一人, 全州鎭衛隊大隊長例兼; 華寧殿提調一人, 京畿觀察使例兼; 令一人, 水原郡守例兼; 衛將一人, 水原鎭衛隊大隊長例兼.】件, 頒布.

<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11월 23일(양력) 1번째기사>



정치/왕실

황태자가 대안문 안에서 수원진위대의 조련을 행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각실(各室)의 영정(影幀)을 이안(移安)하는 데에 따른 고유 별다례(告由別茶禮)를 행하였다. 황태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이어 대안문(大安門)안에 나아가 강화진위대(江華鎭衛隊)와 수원진위대(水原鎭衛隊)의 조련을 행하였다.

二十六日. 詣眞殿, 行各室影幀移安告由別茶禮. 皇太子隨詣, 行禮. 仍御大安門內, 行江華·水原鎭衛隊演操.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6월 26일(양력) 1번째기사>

정치/왕실

고종이 강화진위대와 수원진위대의 장수와 군사에게 시상하다

순초(巡哨)를 위해 불러 올린 강화진위대(江華鎭衛隊)와 수원진위대(水原鎭衛隊)의 장수와 군사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고 중대장 홍순명(洪淳明)에게 가자(加資)하였다.

二十七日. 招上巡哨江華·水原鎭衛隊將卒, 施賞有差. 中隊長洪淳明, 加資.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6월 27일(양력) 1번째기사>

정치/왕실

봉심한 각신 신성균을 소견하다

봉심(奉審)한 각신(閣臣) 신성균(申性均)을 소견(召見)하였다. 용릉(隆陵), 건릉(健陵), 화녕전(華寧殿)을 봉심한 뒤에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신성균이 아뢰기를, “이번에 용릉(隆陵) 재관(齋官)의 긴급한 사정을 들으면 정조 황제(正祖皇帝)가 관천고(筦千庫)를 특별히 설치한 것은 본릉(本陵)의 비용을 위한 것이었는데, 내장원(內藏院)에 이속(移屬)된 후로는 본 능의 각종 비용을 전혀 마련할 길이 없어서 수복(守僕)이나 원역(員役)들이 장차 흩어져 버릴 지경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향사(享祀) 때에 송구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리라는 뜻으로 누누이 간절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유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천고는 화성부(華城府)에 소속된 것이 아닌가?” 하니, 신성균이 아뢰기를, “능을 부(府)에다 소속시키고 보고하는 대로 비용을 주라는 것이 역시 유교(遺敎)라고 하였으나, 그 사이 화성이 변경되어 바뀌고 그 후 장례원(掌禮院)에 넘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다시 관찰부(觀察府)에 넘어갔다가 연전에는 또 칙교(勅敎)로 인하여 영영 본 능에 넘겨져서 『제사지내는 일을』 거행하라 하였습시다. 지금은 내장원(內藏院)에 소속되었다고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궁내부 대신(內部大臣)이 내장원(內藏院)과 더불어 자세히 의논하여 조처하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라.” 하였다.

二十六日. 召見奉審閣臣申性均. 隆陵·健陵·華寧殿奉審後, 復命也. 性均奏曰: “今番聞隆陵齋官緊急事情, 則‘正祖皇帝, 特設筦千庫, 爲其本陵需用. 而自移屬內藏院後, 本陵各項應用, 全沒計策, 守僕員·役輩, 將至渙散之境. 來頭享祀時, 舉行難免惶悚’之意, 屢屢懇言, 故緣由敢達矣.” 上曰: “筦千庫, 非華城府所屬耶?” 性均曰: “爲陵付府, 隨告施用, 亦是遺敎云. 而間因華城變改後, 入付掌禮院, 未幾, 旋付觀察府. 年前, 又因飭敎, 永付本陵, 以爲舉行矣. 今則屬於內藏院云矣.” 上曰: “然則宮內大臣與內藏院, 爛商措處之意, 分付可也.”

<고종실록 42권, 고종 39년(1902) 6월 26일(양력)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황후가 수원 권업 모범장에 갔다가 덕수궁에 문안할 것을 명하다

황후(皇后)가 오는 6월 초하룻날에 수원 권업 모범장(水原勸業模範場)에 행림(幸臨)하였다  
가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문안하겠다는 휘지(徽旨)를 내렸다.

二十二日. 皇后下徽旨, 來六月一日, 幸臨水原勸業模範場. 還御時當詣德壽宮問候矣.

<순종실록 3권, 순종 2년 5월 22일(양력) 1번째기사>

#### 정치/왕실

황후가 수원 권업 모범장에 가서 명령을 내려 양잠을 장려하다

【음력 기유년(1909) 4월 14일】

황후가 수원(水原) 권업 모범장(勸業模範場)을 돌아보고 나서 휘지(徽旨)를 내리기를,

“양잠(養蠶)은 우리나라 풍토에 가장 적합하여 유망한 산업이라는 것을 일찍이 들었다. 백성들의 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궁중에서 직접 누에치기를 시험하고 있으며, 이번 에 다시 명부(命婦)들을 데리고 이곳 잠실(蠶室)을 친히 살피는데 누에치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이 일이 온 나라 백성들의 산업에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믿게 되었다. 오직 우리 백성들은 일치(一致)한 노력으로 누에치기를 발달시키고 특히 부녀자들은 여기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을 절실히 바라마지 않는다. 이 명령을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이 온 나라에 선포하여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게 하기를 기대하노라.” 하였다.

一日. 【陰曆己酉四月十四日】 皇后幸臨于水原勸業模範場. 巡覽後下徽旨曰: “養蠶은 我國風土에 最適호야 有望호는 業으로 夙聞호고 民産을 勸獎키 爲호야 本年으로 自호야 宮中에 親蠶을 試호고 今復命婦를 率호야 此地蠶室에 臨視호미 飼育諸法에 漸進호를 欣喜호며 斯業이 全國民産에 重要됨을 益信호노니 惟我人民은 一致호는 力으로 蠶業을 發達케호고 特히 婦女子된 者는 此에 益加盡力케호를 切望不已호. 此旨를 農商工部大臣이 全國에 傳佈호야 良效가 必有케호를 期待호노라.”

<순종실록 3권, 순종 2년 6월 1일(양력)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총독부 수원 권업모범장장의 농학박사, 기사, 고용원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총독부(總督府) 수원(水原) 권업모범 장장(勸業模範場長) 농학박사 혼다 코스케 [本田幸介], 기사(技師) 농학박사 도요나가 마리 [豊永眞里] 에게 각각 은으로 만든 화병 1개(箇), 고원(雇員) 스즈키 사부로 [鈴木三郎] 에게 50원(圓)을 하사하였다. 【작년부터 경북궁(景福宮) 내에 있는 식물 분원(植物分苑) 설계와 식물 재배 및 직원 선발에 수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二日. 賜總督府水原勸業模範場長農學博士本田幸介·技師農學博士豊永眞里, 各銀製花瓶一箇; 雇員鈴木三郎, 金五十圓. 【以昨年以來景福宮內所在植物分苑, 設計栽培及職員選擇, 多有勤勞也】

<순종실록부록 2권, 순종 4년 5월 2일(양력) 1번째기사>

정치/왕실

와타나베와 가토에게 총독부 산림과장이 용건릉의 업무를 시찰할 때 입회하게 하다  
당직(當職) 촉탁 와타나베 다메키치 [渡邊爲吉] 와 속(屬) 가토 헤이지 [加藤兵次] 를 수원(水原) 용건릉(隆健陵)에 보내어 총독부 산림과장(總督府山林課長)이 능의 업무를 시찰할 때 입회하게 하였다.

十八日. 遣當職囑託渡邊爲吉・屬加藤兵次於水原隆健陵，總督府山林課長陵務視察時，使之立會.

<순종실록부록 2권, 순종 4년 8월 18일(양력) 1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 권업모범장장 등에게 상금과 세찬을 하사하다

총독부 비서관(總督府祕書官) 구와바라 하지시 [桑原八司] , 인사국장(人事局長) 고쿠분 쇼타로 [國分象太郎] , 회계국장(會計局長) 고다마 히데오 [兒玉秀雄] , 수원(水原) 권업 모범장장(勸業模範場長) 혼다 코스케 [本田幸介] , 통신 기사(通信技師) 오카모토 게이지로 [岡本桂次郎] , 수원 농림학교(農林學校) 교유(教諭) 우에키 슈칸 [植木秀幹] 등에게 차등 있게 상금을 주고 세찬(歲饌)을 하사하였다.

賜總督府祕書官桑原八司・人事局長國分象太郎・會計局長兒玉秀雄・水原勸業模範場長本田幸介・通信技師岡本桂次郎・水原農林學校教諭植木秀幹等賞金有差. 歲饌也.

<순종실록부록 2권, 순종 4년 12월 18일(양력) 2번째기사>

정치/왕실

윤덕영을 수원역에 보내어 총독 데라우치가 귀임하는 것을 맞이하다

찬시(贊侍) 자작(子爵) 윤덕영(尹德榮)을 수원역(水原驛)에 보내고, 덕수궁(德壽宮)에서도 찬시 남작(男爵) 김춘희(金春熙)를 보내어 총독(總督)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 [寺內正毅] 가 귀임(歸任)하는 것을 맞이하였다.

二日. 遣贊侍子爵尹德榮於水原驛，德壽宮亦遣贊侍男爵金春熙，迎總督伯爵寺內正毅歸任.

<순종실록부록 3권, 순종 5년 10월 2일(양력) 1번째기사>

정치/왕실

수원군의 화산을 용릉과 건릉 재실에 임업사무소를 두어 관리하게 하다

수원군(水原郡) 화산(花山) 삼림(森林)의 면적이 광활하여 짐무상 많은 장애가 있어 용릉(隆陵)과 건릉(健陵)의 재실(齋室) 일부 가운데 임업사무소(林業事務所)를 두어 편리하게 관리 보호하도록 하였다.

水原郡花山森林面積廣闊，執務上多有障礙，隆健陵齋室一部中，置林業事務所，俾便管守.

<순종실록부록 3권, 순종 5년 10월 19일(양력) 2번째기사>

정치/왕실

현백운과 이병무 등을 보내어 귀임하는 총독 데라우치를 마중하다

이왕직 사무관(李王職事務官) 현백운(玄百運)을 부산역(釜山驛)에 보내고, 자작(子爵) 이병무(李秉武)를 수원역(水原驛)에 보내고, 덕수궁(德壽宮)에서는 사무관(事務官) 이항구(李恒九)를 수원역에 보내어, 총독(總督)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 [寺內正毅] 의 귀임(歸

任)을 맞이하게 하였다.

遣本職事務官玄百運于釜山驛，附武官子爵李秉武于水原驛，德壽宮遣事務官李恒九于水原驛迎總督伯爵寺內正毅歸任。

<순종실록부록 4권, 순종 6년 4월 18일(양력) 4번째기사>

#### 정치/왕실

곤도 시로스케를 수원군에 보내어 용릉과 건릉의 부속건물의 공사를 조사하게 하다

사무관(事務官) 곤도 시로스케 [權藤四郎介] 를 수원군(水原郡)에 보내어 용릉(隆陵), 건릉(健陵) 부속 건물 수리처 및 가교 공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遣事務官權藤四郎介于水原郡，隆陵·健陵附屬建物修理處及架橋工事，調查。

<순종실록부록 5권, 순종 7년 5월 13일(양력) 3번째기사>

#### 정치/왕실

윤덕영과 한상학을 보내어 총독 테라우치의 노고를 위로하다

찬시(贊侍) 자작(子爵) 윤덕영(尹德榮)을 수원역(水原驛)에 보내어 총독(總督) 백작(伯爵) 테라우치 마사타케 [寺內正毅] 의 노고를 위문하였다.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사무관(事務官) 한상학(韓相鶴)을 영등포역(永登浦驛)에 보내어 노고를 위문하였다.

七日．命遣贊侍子爵尹德榮于水原驛，總督伯爵寺內正毅歸任時勞問．太王殿下遣事務官韓相鶴于永登浦勞問。

<순종실록부록 5권, 순종 7년 6월 7일(양력) 1번째기사>

#### 정치/왕실

고 판서 민영익을 수원에 반장하다

고(故) 판서(判書) 민영익(閔泳翊)을 수원(水原) 땅에 반장(返葬)하였다. 양궁(兩宮)에서 각각 특별히 제수금(祭需金) 500원을 내렸다.

故判書閔泳翊，返葬於水原地．兩宮各特賜祭需金五百圓。

<순종실록부록 5권, 순종 7년 6월 29일(양력) 2번째기사>

#### 정치/왕실

순종이 수원군에 있는 세 면의 소학교에 돈을 하사하다

용릉(隆陵)과 건릉(健陵)에 행차할 때 공로가 있는 인원 및 진헌자(進獻者)를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수원군(水原郡) 【수원(水原), 태장(台章), 안녕(安寧)이다.】 의 3면(面) 및 각면(各面) 소학교(小學校)에 돈을 각각 105원씩 내렸다.

五日．隆陵·健陵行啓時有勞人員及進獻者，施賞有差．水原郡【水原·台章·安寧】三面及各面小學校，下賜金各一百五圓。

<순종실록부록 5권, 순종 7년 12월 5일(양력) 1번째기사>

#### 정치/왕실

순종이 농학 박사 혼다 코스케의 동상 건립을 위해 수원 모범장에 돈을 하사하다

특히 수원 모범장(水原模範場)에 일금 300원을 하사하였다. 농학 박사(農學博士) 혼다 코스케 [本田幸介] 의 동상(銅像) 건립 때문이었다.

十二日. 特賜金三百圓于水原模範場. 以農學博士本田幸介銅像建設也.  
<순종실록부록 15권, 순종 17년 8월 12일(양력) 1번째기사>

## (2) 행정

### 정치/행정

#### 수원을 양광도의 계수관에 소속시키다

각도의 계수관(界首官)을 정했는데, 경상도는 계림(鷄林: 경주)·안동(安東)·상주(尙州)·진주(晉州)·김해(金海)·경산(京山: 성주)이고, 전라도는 완산(完山: 전주)·나주(羅州)·광주(光州)이며, 양광도는 광주(廣州)·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수원(水原)이며, 교주 강릉도(交州江陵道)는 원주(原州)·회양(淮陽)·춘주(春州)·강릉(江陵)·삼척(三陟)이며, 서해도(西海道)는 황주(黃州)·해주(海州)이며, 경기좌도(京畿左道)는 한양(漢陽)·철원(鐵原)이며, 우도(右道)는 연안(延安)·부평(富平)이다.

○定各道界首官: 慶尙道, 鷄林·安東·尙州·晉州·金海·京山; 全羅道, 完山·羅州·光州; 楊廣道, 廣州·忠州·淸州·公州·水原; 交州·江陵道, 原州·淮陽·春州·江陵·三陟; 西海道, 黃州·海州; 京畿左道, 漢陽·鐵原; 右道, 延安·富平.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1393) 11월 12일(계축) 4번째기사>

### 정치/행정

#### 장천군 이종무를 남양·수원 등처 조전 절제사로 임명하다

면성군(沔城君) 한규(韓珪)로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 동서강(東西江) 등처의 조전 절제사(助戰節制使)를 삼고, 한평군(漢平君) 조연(趙涓)으로 부평(富平)·안산(安山) 등처 조전 절제사를, 장천군(長川君) 이종무(李從茂)로 남양(南陽)·수원(水原) 등처 조전 절제사를, 마성군(麻城君) 서익(徐益)으로 풍해도 조전 절제사(豐海道助戰節制使)를, 상호군(上護軍) 곽승우(郭承祐)로 풍해도 조전 첨절제사(助戰僉節制使)를 삼았다. 풍해도 도관찰사(豐海道都觀察使)가 잘못 보고하기를 왜선(倭船) 14척이 도내(道內) 바다 가운데에 이르러 형적이 나타났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조금 뒤에 변보(邊報)가 다시 이르렀는데, 풍해도에 형적이 나타난 선척(船隻)은 왜구(倭寇)가 아니고 본국(本國)의 선척(船隻)이 표류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조연과 서익 등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였다.

○戊辰/以沔城君韓珪爲開城留後司東·西江等處助戰節制使, 漢平君趙涓爲富平·安山等處助戰節制使, 長川君李從茂南陽·水原等處助戰節制使, 麻城君徐益豐海道助戰節制使, 上護軍郭承祐豐海道助戰僉節制使. 以豐海道都觀察使錯報倭船十四隻, 至道內, 海中形見也. 既而, 邊報再至, 豐海道形見船隻, 非倭寇, 乃本國船隻漂散者, 乃命趙涓·徐益等還.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0일(무진)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경성에서 수원에 이르는 길이 멀고 험하니 과천현을 다시 설치하다

다시 과천 현감(果川縣監)을 설치하였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지난번에 과천(果川)을 금천(衿川)에 병합하였으나, 경성(京城)에서 수원(水原)에 이르기까지 사객(使客)을 영송(迎送)하는 데 길이 멀고 험하니, 과천(果川)을 다시 두도록 청합니다. 금천(衿川)을 양천(陽川)에 합하여 금양현(衿陽縣)으로 하고, 김포(金浦)는 부평(富平)에 붙이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 김한로(金漢老)의 농장(農庄)이 과천(果川)에 있었는데, 김한로가 근신(近臣)에게 부탁하여 계달(啓達)하도록 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느날 들어가서 조계(朝啓)에 참여하였다가 드디어 스스로 진달(陳達)하니, 임

금이 웃으면서 허락하였다.

○甲子/復置果川縣監. 戶曹啓: “頃者以果川併於衿川, 自京城至水原, 使客迎送遙阻. 請復果川, 以衿川合於陽川爲衿陽縣; 金浦隸於富平.” 從之. 判右軍都總制府事金漢老農庄在果川, 漢老囑近臣, 請達而未得. 一日入參朝啓, 遂自陳達, 上笑而許之.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윤9월 24일(갑자)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예조가 아된대로 수원도호부 등 2품 이상 수령과 목관이 전을 올리도록 명하다**

**2품 이상 수령과 목관(牧官)이 전(箋)을 올리도록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각도 동지(冬至) 하전(賀箋)의 예를 보건대, **수원 도호부(水原都護府)·김해 도호부(金海都護府)는 전(箋)을 올리는데, 다른 도호부는 그렇지 않고**, 영해진 병마사(寧海鎭兵馬使)·삭주 병마사(朔州兵馬使)는 전을 올리는데 경성 병마사(鏡城兵馬使)는 그렇지 않고, 목관(牧官)은 모두 다 전을 올리는데 함주목(咸州牧)은 전을 올리지 못하니, 실로 미편합니다.” 하니, 이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甲子朔/命二品以上守令及牧官進箋. 禮曹啓曰: “看詳各道冬至賀箋例, 水原·金海都護府進箋, 他都護府不然; 寧海鎭朔州兵馬使進箋, 而鏡城兵馬使不然; 牧官竝皆進箋, 而咸州牧不得進箋, 實爲未便.” 乃有是命.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2월 1일(갑자)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부사 박강생 등이 안양사에서 전별하다가 금천현감이 소주 때문에 죽었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박강생(朴剛生), 봉례랑(奉禮郎) 윤돈(尹惇)을 파직(罷職)하였다.** 이 앞서 윤돈이 과천 현감(果川縣監)에서 교대되어 서울로 돌아올 때, 박강생과 금천 현감(衿川縣監) 김문(金汶) 등이 윤돈을 안양사(安養寺)에서 전별(餞別)하였더니, 김문이 소주(燒酒)에 상(傷)하여 갑자기 죽었다. 이때에 이르러 일이 발각되어 헌부(憲府)에서 죄를 청하니, 임금이, “술을 권하는 것은 본시 사람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고, 인관(隣官)을 전별함도 또한 상사(常事)인 것이다.” 하고, 명하여 다른 일은 제외하고 파직하게 하였다.

○己未/罷水原府使朴剛生·奉禮郎尹惇職. 先是, 惇自果川縣監見代還京, 剛生及衿川縣監金汶等餞惇于安養寺, 汶傷燒酒暴死. 至是事覺, 憲府請罪, 上曰: “勸酒本非欲致人於死, 而隣官餞別, 亦常事也.” 命除他事罷職.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5월 4일(기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부사 박강생이 연정(蓮亭)에서 감찰 정여와 원옥을 맞이하여 술자리를 벌였다.**

감찰(監察) 정여(鄭旅)·원옥(元郁)을 파직(罷職)하였다. **처음에 정여와 원옥이 행대(行臺)로서 수원(水原)에서 회합했는데, 부사(府使) 박강생(朴剛生)이 정여와 원옥을 연정(蓮亭)으로 맞이하여,** 염소를 잡고 술자리를 마련하고 활시위를 벌여 놓고 과녁을 세우고는 기생(妓生)을 불러 가무(歌舞)하면서 명중(命中)하는 것으로써 재능을 겨루었더니, 이때에 이르러 이 일이 발각되어 헌사(憲司)에서 죄주기를 청하였다. 그 글은 대략 이러하였다. “정여와 원옥은 수령(守令)의 비법(非法)을 규찰하는 직임을 띠고서 농사철을 당해 금주(禁酒)하는 때에, 먼저 자신이 금령을 범해 가면서 도리어 수령과 더불어 음주(飲酒)하고 가무(歌

舞)하여 감히 비법을 행하였으니 특히 행대(行臺)의 뜻을 잃었습니다. 박강생은 지난번에도 이웃 고을 수령(守令)과 경내(境內)를 벗어나 안양사(安養寺)에서 취회(聚會)하여 소주(燒酒)를 강권하다가 김문(金汶)을 죽게 하였는데 아직도 개선하지 못하고, 이제는 또 교지(教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감(臺監)과 더불어 술 마시며 활 쏘기를 하였으니, 그 행위는 부당하기 막심합니다.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명하여, “정여·원옥은 파직시키고, 박강생은 이미 죄를 받았으니 논하지 않음이 옳다.” 고 하였다.

○罷臺監鄭旅·元郁職。初，旅與郁以行臺，會于水原，府使朴剛生邀旅·郁于蓮亭，烹羔置酒，張弓設的，召妓歌舞，命中爭能。至是事覺，憲司請罪，略曰：“旅·郁以糾察守令非法之任，當農月禁酒之時，先自犯令，反與守令飲酒歌舞，敢行非法，殊失行臺之義。剛生其在曩時，與隣官守令越境聚會安養寺，強勸燒酒，致死金汶，尚且不悛，而今又不遵教旨，乃與臺監飲射，其爲不當莫甚，請依律論罪。”命罷旅·郁職，剛生已曾受罪，宜勿論。

<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윤5월 22일(정축)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손실(損實)이 맞지 않아 수원 부사 허반석을 파직시키다

남양 부사(南陽府使) 박기(朴耆)·수원 부사(水原府使) 허반석(許盤石)을 파직하였다. 경차관(敬差官)이 손(損)·실(實)이 맞지 않는다고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선공감정(繕工監正) 유순도(庾順道)가 지안성군사(知安城郡事)로 있을 때에 또한 손·실이 맞지 않았으므로 아울러 파직하였다.

○罷南陽府使朴耆·水原府使許盤石職，以敬差官啓損實不中也。繕工監正庾順道爲知安城郡事時，亦不中損實，故併罷之。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2월 9일(경인) 4번째기사>

### 정치/행정

#### 이중배를 판수원도호부사로 삼다

(…) 이중배(李仲培)는 판수원도호부사(判水原都護府事)로 삼고, 또 오익생(吳益生)은 상호군(上護軍), 김윤(金潤)은 대호군(大護軍), 송호생(宋虎生)은 군기 부정(軍器副正)을 삼으니, 그 공에 상을 준 것이었다.

○(…) 李仲培判水原都護府事。又以吳益生爲上護軍，金潤大護軍，宋虎生軍器副正，賞其功也。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5월 18일(임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경기감사가 수원의 송장, 부산과 청호역 등을 진위현에 소속시키자고 청하다

경기 감사가 장계하기를, “진위현(振威縣)은 땅이 비좁고 백성이 적은 쇠잔(衰殘)한 고을인데, 한길 옆이어서 그 폐가 매우 많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 관내의 송장(松莊) 87호(戶), 부산(釜山)과 청호역(菁好驛)을 아울러서 59호, 용인현(龍仁縣)·의신현(義信縣) 6호를 떼어서 진위에 붙이기를 청합니다.”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서 같이 의논하고, 장계대로 시행하도록 청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京畿監司啓：“振威縣地窄民少，路傍殘邑，其弊甚多。請其最近水原任內松莊八十七戶，釜山·菁好驛并五十九戶，龍仁·義信六戶，割屬振威。”議政府·六曹同議，請如啓施行，從之。



<세종실록 24권, 세종 6년 4월 21일(병인)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 부사 이숙치가 사조하다

수원 부사 이숙치(李叔時)가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하여 말하기를, “근년에 홍수와 한재가 겹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는 대헌(臺獻)을 지내어 나의 뜻을 더욱 잘 알 것이니 마음을 써서 무휼(撫恤)하라.” 하였다.

○水原府使李叔時辭, 上引見曰: “近年水旱相仍, 不可不慮. 爾曾經臺憲, 尤知予意, 其存心撫民.”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0월 24일(무인) 4번째기사>

#### 정치/행정

##### 윤보로가 일찍이 수원부사였을 당시 관물 남용하여 아첨하다

성엄(成揜)으로 평안도 도관찰사를 삼고, 정연(鄭淵)으로 형조 참판을 삼고, 이춘생(李春生)으로 중군 총제를 삼고, 윤보로(尹普老)로 인순부 윤(仁順府尹)을 삼았다. 보로는 본래 대대로 벼슬하던 집의 후예로서, 부호(富豪)인데도 재산 모으기에 급급하여 못하는 일이 없었으며, 일찍이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어 관물(官物)을 남용하면서 권문세가에 아첨하였으며, 또 경내(境內)의 구질포(仇叱浦)에 수납한 관세미(官稅米)가 과중하여, 다시 두량(斗量)한 결과 잉여량이 많았는데도, 선가미(船價米)까지 아울러 거두어서 배에 가득히 싣고 서울로 수송하면서, 그 받는 자에게 일러 보내기를, “서울의 높고 귀한 분들이 미곡을 청구하는 사람이 많았으니, 네가 강에 도착하면 사람이 반드시 와서 받아 갈 것이다.” 하였다. 강에 도착하니 과연 수레와 소를 가지고 와서 받는 자가 있으므로 계속 추적하여 따라가 본즉, 보로와 그의 아들·사위 집의 종들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자못 많았다고 한다.

○以成揜爲平安道觀察使, 鄭淵刑曹參判, 李春生中軍總制, 尹普老仁順府尹. 普老, 本世家之後豪富者也, 而孜孜營產, 靡所不至. 嘗爲水原府使, 濫費官物, 媚事權勢, 且於境內仇叱浦官, 收稅米過重, 改量之米多贏餘. 并收船價米, 滿船輸京, 囑其受者曰: “京中尊貴, 多請米者. 汝到江, 則人必來受.” 及到江, 果有持車牛受者連續. 迹之則普老及子壻家奴也. 類此之事頗多.

<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 12월 27일(기해)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경기감사가 수원이 토지와 인구가 많아 송사가 빈번하니 다시 판관두기를 청하다

경기 감사가 아뢰기를, “수원부는 토지가 넓고 인물의 많음이 다른 고을의 갑절이나 되어, 민간의 여러 가지 송사(訟事)가 지극히 많고 번잡하오니, 청하건대, 다시 판관을 두어서 민간의 폐를 구제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조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京畿監司啓: “水原府土地之廣·人物之多, 倍於他官, 民間雜訟, 至爲浩繁. 請復置判官, 以救民弊.” 下吏曹.

<세종실록 53권, 13년 9월 30일(신묘) 4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부 판관을 다시 두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부 판관을 다시 두는 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상정소에 의논하니, 제조 맹사성은 말하기를, ‘더 설치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고, 허조는 말하기를, ‘만약 판관을 더 설치한다면 관원 한 사람의 아록(衙祿)이 반드시 더 들 것이며, 이웃 고을 진위(振威) 같은 데는 민호가 매우 적어서 장차 자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수원 관내의 영신을 떼어 내려고 했으나 되지 않고 도리어 청호역리(菁好驛里)를 얻었는데, 또 과객(過客)을 접대하는 폐해가 첨가되었으므로 이후로 진위는 더욱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지나치게 많은 민호를 떼어서 진위로 옮겨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황희는 말하기를, ‘수원의 사무가 번잡한 것은 옛날도 지금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판관을 혁파한 것은 나라를 세운 이후로 거의 40년이나 되었는데도, 능히 서무를 처리하여 기한을 어긴 책망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다시 설치하여 한갓 늑막만 허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릇 제도를 세워 곧 폐지했다가, 곧 회복하여 일정한 제도가 없으면,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이는 뜻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오니, 원컨대, 조종의 성현에 의거하여 회복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수원(水原)은 속현이 상당히 많아서 땅이 크고, 백성이 많으니, 한 사람이 능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어찌 유독 수원에만 치우쳐서 후하게 하고, 땅이 협착한 옆 고을에는 박하게 하여, 가난한 고을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부유한 고을은 더욱 부유하게 만들겠습니까. 반드시 그 백성이 많아서 사무가 번잡한 폐단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부근의 땅으로써 좁고 작은 옆 고을에 떼어 붙이는 것도 또한 옳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수원이> 감사의 본영이므로 더욱 부유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옆 고을도 이미 오랑캐의 땅이 아니고 또한 한 도 안의 하루 길의 노정에 있을 뿐입니다. 신이 지난 해에 강원 감사로 봉직했을 때에, 춘천의 해안과 회양의 문등·방산·서화를 그 부근의 협소한 양구·인제 등 현에서 떼어 붙여서, 도리(道里)의 멀고 가까운 것과 사무의 번잡하고 간략한 것이 거의 적중하게 되었으므로 백성들이 이를 편하게 여겼습니다.” 하니, 호조에 내리어 황희와 허조 등의 의논을 경기 감사에게 이문하여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은 점을 조사해서 아뢰도록 하였다.

○吏曹啓: “今以水原府判官復立便否, 議于詳定所, 提調孟思誠等以爲: ‘加設爲便.’ 許稠以爲: ‘若加設判官, 則官員一位衙祿, 必加隣官. 若振威民戶甚少, 將不能自立, 曩者欲割水原任內永新而不得, 反得菁好驛里, 又添過客支持之弊, 自後振威, 尤不能支. 宜割過多民戶, 移給振威.’ 黃喜以爲: ‘水原事務之繁, 古猶今也, 其革判官. 自開國以後, 殆將四十年, 而能辦庶務, 未見失其期會之責, 何必復置, 徒費廩祿? 凡立制度, 隨罷隨復, 無有定制, 則有乖示信之義. 乞依祖宗成憲, 勿復可也. 或者曰: 「水原屬縣頗多, 地大民衆, 非一人所能治.」 然國家何獨偏厚於水原, 而薄於狹窄傍郡, 貧益貧·富益富哉? 如不得已, 必欲救其民衆事繁之弊, 宜以附近割屬於編小傍郡, 亦可也. 若曰監司本營, 不可不富益, 則傍郡既非胡·越, 亦在一道一日之程耳. 臣昔年承乏江原監司, 以春川之亥安·淮陽之文登·方山·瑞華, 割屬於附近狹小楊口·麟蹄等縣, 道里遠近·事務繁簡, 庶乎適中而民便之.’ ” 下戶曹, 以喜·稠等議, 移文京畿監司, 訪問便否以啓.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5일(병인) 4번째기사>

## 정치/행정

경기 수원부의 속현 영신을 진위에 이속하다

경기 수원부의 속현(屬縣) 영신(永新)을 진위(振威)에 이속(移屬)하였다. 이보다 앞서 수원부 관관을 다시 설치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혹은 말하기를, “이렇게 한다면 관직이 증설되고 아록(衙祿)이 증가될 것이니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웃 고을 진위는 호수가 대단히 적어 자립(自立)할 수 없으므로 전자에 수원 관내의 영신(永新)을 떼어 주자는 청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청호 역리(菁好驛里)를 얻어 과객(過客)을 접대하는 폐단만 증가하여, 이로부터 더욱 지탱할 수 없게 되었으니 수원의 민호(民戶)를 떼어서 진위로 붙이게 하소서.” 하고, 혹은, “수원의 사무가 이제 와서 복잡할 것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같으며, 관관을 없앤 지 거의 40년이 되었으나 모든 사무를 잘 처리하여 기한을 놓친 일이 없었는데, 하필 관관을 다시 두어 국고만 소비하렵니까. 제도를 세우는 데 금방 없었다가 금방 다시 세워 일정한 제도가 없으면 신의를 보일 수 없는 것이니 회복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며, 혹은, “수원은 속현(屬縣)이 많고, 땅이 크고 백성이 많아서 한 사람이 능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어찌 홀로 수원만 후하게 하고, 결의 고을을 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수원의 백성이 많고 일의 번거로운 폐단을 구제하려면, 속현(屬縣)을 떼어서 땅이 작은 결의 고을에 붙이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감사의 본영(本營)이기 때문에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면 결의 고을은 호월(胡越)이란 말입니까.” 하였다. 임금이 호조로 하여금 본도(本道)에 이문(移文)하여 가부를 탐문하게 하였더니, 감사가 회보하기를, “영신은 진위와의 거리가 10리이고, 수원과는 60리이며, 또 큰 내가 가로막혀, 비가 와서 물이 많으면 건너지 못하여, 부역과 환곡을 기한에 미치지 못하여 폐가 적지 아니하며, 진위는 호수가 심히 적고 사객(使客)이 많아서 자립할 수 없으니, 영신을 떼어서 진위에 붙이고, 수원 관은 혁파한 후에도 별로 폐되는 일이 없으니 회복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 하여,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이때 수원 사람이 그 땅이 깎이는 것을 싫어하여, 본도에 투장(投狀)하여 이속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자, 또 장고(狀告)하기를, “영신 서면(西面) 세 마을은 다른 속현과 더불어 개 어금니처럼 지형이 들쭉날쭉한데, 이제 이것을 분변하지 아니하고 모두 진위로 붙이면, 후일에 나오고 들어간 땅을 개정하는 소송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한길[大路] 동쪽 여섯 마을은 진위에 붙이고, 한길 서쪽 세 마을은 그대로 본읍에 붙이게 하소서.” 하므로, 감사가 그 말에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의정부와 육조에서 같이 논의하기를, “개 어금니처럼 서로 나오고 들어간 논의는 거행할 수 없는 것이며, 죄 없는 영신을 두 고을에 나누어 붙이는 것은 불가하다.” 고 하여, 마침내 영신을 모두 진위로 붙인 것이었다.

○割京畿水原府屬縣永新, 移屬振威. 先是, 議復水原府判官, 或曰: “如此則加設官職, 又增衙祿, 不宜復立, 唯旁邑振威, 民戶甚少, 將不能自立. 曩者請割水原任內永新而不得, 反得菁好驛里, 添受過客支應之弊, 自此尤不能支, 宜割水原民戶, 移屬振威.” 或曰: “水原事務, 匪今方劇, 古猶今也. 自革判官殆四十年, 而能辦庶務, 未見失期會之責, 何必復置判官, 徒費廩祿? 凡立制度, 隨罷隨復, 無有定制, 則有乖於示信之義, 勿復可也.” 或曰: “水原屬縣, 多地大民衆, 非一人所能治, 國家何獨厚於水原, 而薄於旁邑乎? 如欲救水原民衆事繁之弊, 宜割屬縣, 移屬於地小旁邑可也. 若曰監司本營, 不可不富厚, 則旁邑亦豈胡·越乎?” 上乃令戶曹移本道, 訪問便否, 監司回報: “永新距振威十里, 距水原六十里. 且隔大川, 若值雨水, 不得過涉, 徭賦貸糶, 或不及期, 弊亦不少. 振威民戶甚少, 使客煩多, 將不能自存, 宜割永新, 移屬振威. 若水原判官, 則革罷之後, 別無弊事, 勿復爲便.” 從之. 時水原之人 惡其見割, 投狀本道, 請勿移割而不得, 又狀告曰: “永新西面三里, 與他屬縣犬牙相入, 今不分辨, 而盡屬

振威，則後日犬牙改正之訟不絕。請以大路東六里，割屬振威，其大路西三里，仍屬本邑。” 監司請從其言，政府六曹同議曰：“犬牙相入之論，既不得舉行，則無罪永新，分屬兩邑，不可也。” 遂以永新，盡屬振威。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23일(갑진) 5번째기사>

#### 정치/행정

##### 충청도 죽산현을 수원부에 소속시키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경기의 철원(鐵原)은 강원도에 옮겨 소속시키고, 그 관할 내의 영평(永平)·연천(漣川)·삭녕(朔寧)은 양주(楊州)에 옮겨 소속시키고, 임강(臨江)·마전(麻田)·장단(長湍)과 양주(楊州) 관할 내의 교하(交河)·임진(臨津)·고양(高陽) 등 고을은 원평부(原平府)에 옮겨 소속시키고, 충청도의 죽산현(竹山縣)은 경기의 수원부(水原府)에 옮겨 소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吏曹啓: “京畿鐵原移屬江原道, 其領內永平·漣川·朔寧移屬楊州, 臨江·麻田·長湍及楊州領內交河·臨津·高陽等官, 移屬原平府; 忠淸道竹山縣, 移屬京畿水原府.” 從之.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 12월 17일(갑인)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경기도 청호역은 다시 수원에 붙이다

경기도 청호역(菁好驛)은 도로 수원에 붙이고, 또 분행(分行) 좌찬(佐贊) 두 역은 더욱 쇠잔[凋殘]함이 심하므로 노비를 더 주었다.

○京畿菁好驛, 還屬水原, 又以分行·佐贊兩驛彫殘尤甚, 加給奴婢.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15일(기해)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세종이 수원 부사 황유를 인견하고, 흉년 구제, 징납, 권과 등을 당부하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황유(黃柔)가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직무는 백성을 무마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다. 대저 환상법(還上法)은 예전 제왕(帝王)의 도(道)에 모방한 것인데, 이미 백성에게 흠어 주고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실로 부끄러우나, 한번 주고 거둬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흉년을 구제하겠는가. 다만 징납(徵納)할 때에 지나치게 편달(鞭撻)하여 각박(刻迫)하게 하면, 백성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목을 매어 죽는 자가 있기에 이를 것이니, 특별히 수령이 구처(區處)하기에 있을 뿐이다. 또 권과(勸課)의 방법도 모름지기 그 인력(人力)을 다하게 할 것이다. 내가 후원(後園)에다 한 묘(畝)의 밭을 갈고서 인력을 다하게 하였더니, 비록 가뭄을 만나고 소출되는 곡식도 풍년과 다를 것이 없었다. 너는 가서 힘쓸지어다.” 하니, 유가 아뢰기를, “소신이 일찍이 두어 고을을 지냈사와 경농(耕農)의 일을 익히 보았사온데, 만약 차례를 따라서 이르고 늦은 곡식을 갈고 심으면, 김매는 것이 순서가 있어서 농사가 착실할 것이옵니다.” 하매, 임금이, “너의 말이 옳도다.” 하였다.

○水原府使黃柔辭, 上引見曰: “守令之職, 撫民爲先. 夫還上之法, 擬於古先帝王之道, 既散施於民而還收斂焉, 實有愧矣. 然一與之而不收斂焉, 將何以救荒? 但徵納之際, 過於鞭撻而刻迫, 則民不堪其苦, 至有縊死者, 特在守令之區處耳. 且勸課之道, 須當盡其人力. 予於後園, 耕一畝之田, 使盡人力, 雖值旱暵, 所出之穀, 無異於豐年. 汝往懋哉!” 柔啓曰: “小臣曾守

數郡，熟視耕農之事。早晚之穀，若從次第耕種，則耘耔有序，而農事實矣。” 上曰：“汝之言然。”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17일(기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 도호부사 안기 등이 사조하다

수원 도호부사(水原都護府使) 안기(安起)·지김제군수(知金堤郡守) 신한(辛漢)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학교를 일으키며, 요역(徭役)을 고르게 하고 부세(賦稅)를 적게 받는 것이 수령으로서 마땅히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니, 너희들이 가서 힘쓰라.” 하였다.

○水原都護府使安起·知金堤郡守辛漢辭，引見曰：“勸農桑興學校，平徭薄賦，守令之所當先務也。爾等往懋哉!”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2월 9일(무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우정언 이휘가 양녕을 후대한 수원과 과천의 수령을 폄직할 것을 건의하다

우정언(右正言) 이휘(李徽)가 아뢰기를, “수령(守令)을 포폄(褒貶)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인데, 지금 수원(水原)·과천(果川) 두 고을의 수령(守令)은 고적(考績)이 하등(下等)에 있는데도 대체(代遞)를 당하지 않으니, 이와 같이 되면 장차 수령들은 권징(勸懲)될 바가 없게 되고, 감사(監司)의 전최(殿最)도 또한 소용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주(人主)의 허론(虛論)하는 일을 어찌하여 다시 아뢰는가. 내가 일찍이 감사(監司)를 핵문(覈問)하고자 했으나 되지 않으므로, 지금 두 고을의 수령을 폄직(貶職)하게 하니, 심한 사람은 ‘누가 양녕(讓寧)의 일로 인정하지 않겠는가.’ 고 한다.” 하였다. 이휘가 다시 아뢰기를, “수령의 임무는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정적(政績)이 <수령이 하여야 할> 칠사(七事)에 한가지라도 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감사가 이를 폄직(貶職)하는데, 다행히 지금 양녕(讓寧)을 접대한 일이 마침 전최(殿最)할 때를 당했으니, 어찌 폄직(貶職)된 것이 정적(政績)의 실수에서 나오지 않았는가를 알겠습니까. 마땅히 감사의 포폄(褒貶)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고을의 수령은 일찍이 상등(上等)에 연달아 있었던 사람이니, 이로써 관찰한다면 그 사람의 현부(賢否)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폄직을 당한 것은 양녕(讓寧)의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대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右正言李徽啓：“守令褒貶，是國家重事，今水原·果川兩邑守令考居下，而不見代。如是則將恐守令無所勸懲，而監司殿最，亦爲無用矣。” 上曰：“人主虛論之事，何以更啓？予曾欲覈監司而不果，今貶兩邑守令，甚者孰不以爲讓寧之事乎？” 徽更啓曰：“守令之任，所係非輕，政績一有不合於七事，則監司貶之。幸今讓寧支(對) [待] 之事，適當殿最之時耳，安知見貶不出於政績之失乎？宜從監司褒貶。” 上曰：“兩邑守令，曾已連居上等者也。以此觀之則其人賢否，可知矣，今見貶，非讓寧之事而何？爾勿復言。”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8일(갑오)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우헌납 윤사윤이 양녕을 후대한 수원 부사와 과천 현감의 폄직을 건의하다

우헌납(右獻納) 윤사운(尹士昫)이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와 과천 현감(果川縣監)은 감사(監司)의 전최(殿最)에 모두 하등(下等)에 있는데도 특별히 체직(遞職)하지 말기를 명하셨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포핍(褒貶)은 대사(大事)이오니, 원하옵건대, 감사의 전최에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사람의 폄직(貶職)은 비록 어린아이라도 모두 양녕(讓寧)을 후대(厚待)한 까닭인 줄 알고 있다.” 고 하면서, 마침내 듣지 아니하였다.

○辛丑/右獻納尹士昫啓: “水原府使·果川縣監, 於監司殿最, 俱居下等, 特命勿遞. 臣等以爲褒貶, 大事也, 乞從監司殿最.” 上曰: “二人之貶, 雖童稚之人, 皆知厚待讓寧之故也.” 遂不聽.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5일(신축)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지평 이영건이 수원 부사 안기와 과천 현감 최영순을 파출할 것을 건의하다

지평(持平) 이영건(李永肩)이 아뢰기를, “서울과 지방의 관원이 승진시키고 폄출(貶黜)하는 것은 한결같이 감사(監司)와 제조(提調)의 포핍(褒貶)에 따르게 되는 것인데, 지금 수원 부사(水原府使) 안기(安起)와 과천 현감(果川縣監) 최영순(崔永淳)을 파출(罷黜)하지 아니하오니, 신 등은 법이 폐지되어 폐단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 조서강(趙瑞康)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내 뜻을 아니 남김 없이 다 말하라” 하였다. 조서강이 영건(永肩)에게 이르기를, “이조에서 과면하기를 청하였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원(水原)과 과천(果川)은 수령(守令)이 부임(赴任)한 이후로 고적(考績)이 매양 상등(上等)에 있었는데도, 지금 하등(下等)에 있는 것은 곧 양녕(讓寧)의 일 때문이다. 신하가 종친(宗親)을 보고 후(厚)하게 위로하는 것은 예절이며, 또 양녕은 다른 종친(宗親)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를 접대하고는 즉시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였으니, 어찌 죄가 있겠는가.” 하니, 이조에서 다시 아뢰기를, “수령(守令)의 일은 한 가지가 아니오니, 어찌 다른 일의 실착(失錯)으로 하등(下等)에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경(卿) 등이 <의사를> 굽혀서 교언(巧言)을 하여 기어이 청(請)을 얻으려는 것이고, 인군(人君)에게 대답하는 말은 아닌 것이다. 어찌 매양 상등(上等)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곧 하등(下等)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또한 인군(人君)이 환하게 알고 있으면서 신하의 말한 바에 빠지게 된다면 어찌 국가를 유지하겠는가. 거의 육기(六期)나 있었고 또 공적(功績)도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양녕(讓寧)의 일로써 폄출(貶黜)되었다면 어찌 인정(人情)과 천리(天理)에 합하겠는가.” 하니, 영건(永肩)이 다시 아뢰기를, “포핍(褒貶)의 법(法)은 당세(當世)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를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사운데, 장차 출척(黜陟)의 법(法)이 이로부터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지금 명하시어 체차(遞差)시켰다가 후일에 들어 쓴다면, 신 등은 생각하옵기를 법도 폐지되지 않고 은혜도 또한 행해질 것이라 여기옵나이다.” 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持平李永肩啓: “京外官陞黜, 一從監司提調褒貶, 今不罷黜水原府使安起·果川縣監崔永淳, 臣等恐法廢而弊生矣.” 上謂都承旨趙瑞康曰: “爾知予意, 盡說無遺.” 瑞康謂永肩曰: “吏曹請罷之.” 上曰: “水原·果川, 自赴任以後, 考每居上, 而今之居下, 乃讓寧事也. 人臣見宗親厚慰之, 禮也. 且讓寧非他宗親之比, 故既饋之, 卽報于監司, 何有罪焉?” 吏曹更啓曰: “守令之事非一, 焉知非他事之失錯而居下乎?” 上曰: “是卿等曲爲巧言, 期於得請, 非所與

對人君之言也。焉有每居上而一朝即爲居下乎？且人君灼知而陷於人臣之所言，何以維持國家乎？幾於六期，且有功績，一朝以讓寧之事貶黜，則豈合於人情天理乎？”永肩更啓：“褒貶之法，非始於當世，自古迄今，行之已久，將恐黜陟之法從此毀矣。今命遞差後乃舉用，則臣等謂法不廢而恩亦行矣。”不允。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7일(계묘)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의 구영(舊營)을 광주로 옮긴 것은 감사의 겸임을 중히 여긴 것이다

이 앞서 경주(慶州) 인민들이 본부(本府)를 예전 그대로 감사(監司)의 본영(本營)을 삼을 것을 청하므로, 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영의정 황희(黃喜)·좌찬성 박종우(朴從愚)·좌참찬 정분(鄭芬)이 말하기를, “삼가 선정(先正) 익재(益齋)의 『난고(亂藁)』를 상고하면 이르기를, ‘동남의 주군(州郡)으로는 경주(慶州)가 크고 상주(尙州)가 다음이 된다.’ 하였으나, 사명(使命)을 받든 자가 반드시 먼저 상주(尙州)로 길을 떠나서 뒤에 경주(慶州)에 이르기 때문에, 풍화(風化)의 유행하는 것이 상주를 경유하여 남쪽으로 내려갔고, 경주(慶州)를 거쳐서 북쪽으로 온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평안도의 평양(平壤), 전라도의 전주(全州), 강원도의 원주(原州), 황해도의 해주(海州) 등 본영(本營)이 모두 서울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京畿)가 이미 수원(水原)의 수백년 구영(舊營)을 혁파하고 광주(廣州)로 옮긴 것은 감사(監司)의 겸임을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경상 감사가 상주목(尙州牧)을 겸하면서 겸관(兼官)을 버리고 예전 영(營)에 그대로 있다면 이름과 실상이 서로 어그러질 뿐 아니라, 풍화의 행하는 것이 남쪽으로 말미암아 북으로 오는 것이니, 호령을 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지체되고 늦어질 것 같고, 한 도에 두 영(營)이 있는 것도 또한 체통(體統)의 뜻이 아니옵니다.” 하고, 좌의정 하연(河演)·우의정 황보인(皇甫仁)·우참찬 정갑손(鄭甲孫)은 말하기를, “지금 경주(慶州) 인리(人吏)가 가지고 있는 문적을 상고하면 전조(前朝)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경주로 본영(本營)을 삼았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고, 또 다른 도의 유수부(留守府), 전주(全州)·평양(平壤)·함흥(咸興) 등 관(官) 같은 것은 모두 본영(本營)이 되는데, 유독 경주(慶州)만 생민의 이해에 관계되는 것이 없이 갑자기 오래된 본영의 호(號)를 깎는다면 미편할 듯하옵니다. 요전에 경주가 본영이 되었을 때에도 상주(尙州)로 유영(留營)을 삼아 진상(進上)과 여러가지 공사(公事)를 모두 상주에서 행하였으니, 두 주(州)를 아울러 본영(本營)으로 일컬으소서.” 하니, 임금이 연(演) 등의 의논에 따랐다.

○先是，慶州人民以本府仍舊爲監司本營，下政府議之。領議政黃喜·左贊成朴從愚·左參贊鄭芬曰：“謹按先正『益齋亂藁』云：‘東南州郡，慶爲大，尙次之。然而奉使命者，必先就道于尙，而後至慶，故風化之流行，由尙而南，未嘗由慶而北也。’若平安之平壤·全羅之全州·江原之原州·黃海之海州等本營，皆於近京，竊謂以此意也。今京畿既罷水原數百年舊營而移於廣州者，所以重監司之兼任也。慶尙監司兼牧尙州而捨兼官仍舊營，非惟名實相違，風化之行，由南而北，發號施令，似有滯緩，一道兩營，亦非體統之意。”左議政河演·右議政皇甫仁·右參贊鄭甲孫曰：“今考慶州人吏所持文籍，自前朝至今，以慶州爲本營，其來已久。且他道留守府如全州·平壤·咸興等官，皆爲本營，獨於慶州，未有關係生民利害，而遽削久遠本營之號，似爲未便。前此慶州爲本營時，亦以尙州爲留營，進上及雜凡公事，皆行於尙州，二州竝稱本營。”上從演等議。

<세종실록 120권, 세종 30년 4월 5일(경신) 5번째기사>

## 정치/행정

### 예겸과 사마순이 북경으로 돌아가니 수양 대군 이유로 하여금 모화관에서 전송케 하다

예겸(倪謙)과 사마순(司馬恂)이 북경으로 돌아가니, 수양 대군(首陽大君) 이유(李瑋)가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慕華館)에서 전송하였다. (...) 대군이 이 일로써 들어와 아뢰니, 임금의 몹시 놀라서 예조 참판 이변(李邊)과 도승지 이사철(李思哲)에게 명하여, 벽제역(碧蹄驛)까지 쫓아가서 사신에게 고하기를, “이제 두 대인(大人)의 말을 듣고 황공하여 어찌할 줄 모르겠소. 내 옛날에는 비록 요동 지휘(遼東指揮)·천호(千戶)라 할지라도 칙서를 가지고 오면 반드시 친히 영접하여 예절을 다했는데, 하물며 두 대인이 조서를 받들고 왔는데 감히 세자로 하여금 병을 칭탁하고 나가지 않게 하겠소. 이같이 하면 이는 하늘을 속이는 것이고 황제를 속이는 것이며, 또한 두 대인을 속이는 것이니, 내 비록 덕이 없을지라도 이미 임금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감히 이 같은 간사한 일을 차마 하겠소. 원컨대, 대인은 두목(頭目) 한 사람을 보내서 세자의 종처를 보게 하면 가히 알 것이거니와, 만일에 보내지 아니하면 일생에 추한(追恨)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대인은 가엾게 여기기를 바라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당초에 의심되는 데가 있어서 말한 것인데,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이미 자세하게 말하였고, 또 두 공(公)의 말을 들으니, 의심이 이미 풀어졌으니 두목을 보내 무엇하겠소. 우리들이 말이 많아서 전하로 하여금 걱정하시게 하였소.” 하였다. 변(邊) 등이 처음 벽제(碧蹄)에 이르니, 경기 감사 박중림(朴仲林)과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예손(李禮孫)이 술 마시기를 청하니, 변(邊)이 제지하면서 말하기를, “상교(上敎)가 심히 급하시와 그 신하들을 기다리심이 반드시 조급하실 터인데 어찌 술 마실 때인가.” 하고, 군이 사양하였는데, 예손(禮孫)이 다시 청하니, 변(邊)이 성내며 말하기를, “너는 참으로 사람의 신하된 예절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하고, 드디어 달음질하여 사철(思哲)과 돌아와 복명(復命)하니, 밤중이 되었는데 임금이 과연 자지 않고 기다렸다. 변(邊)의 성질이 굳세고 곧아서 비록 편협한 데가 있으나, 의롭지 않은 일은 털끝만치도 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

○乙丑/倪謙·司馬恂還京師，首陽大君瑋率百官送于慕華館。(...)大君以此入啓，上驚動，命禮曹參判李邊·都承旨李思哲，追往碧蹄驛，告使臣曰：“今聞兩大人之言，惶恐失措。予於昔日，雖遼東指揮千戶齋勅到國，必親接盡禮，況兩大人奉詔來，敢使世子稱病不出乎！如此則是欺天欺皇帝，又欺兩大人耳。予雖寡德，既得人君之名，何敢忍爲如此姦詐之事乎！願大人遣一頭目，見世子腫處，可以知矣。若不送之，一生追恨，可勝言哉！願大人矜憐。”使臣曰：“當初有所疑，故言之。首陽君已詳言之，今又聞兩公之言，疑已解矣，何必遣頭目乎！吾等多言，故使殿下動心。”邊等初至碧蹄，京畿監司朴仲林·水原府使李禮孫請行酒，邊止之曰：“上敎甚急，其待臣等必忙，是豈行酒之時乎！”固辭，禮孫更請，邊怒曰：“汝誠不知人臣之禮者也。”遂趣思哲還復命，夜已半矣。上果不寐待之，邊性剛勁，雖有偏狹，然不義之事，不屑爲之，人以此多之。(...)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윤1월 20일(을축)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육조와 대간에서 감사가 목사를 겸임하는 것의 편부를 논의하다

육조(六曹)와 대간(臺諫)에서 감사(監司)가 목사(牧使)를 겸임하는 것[兼牧]이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것을 의논하니, (...) 우찬성(右贊成) 정분(鄭玢)·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



이 의논하기를, “(…) 또 판관(判官)과 목사(牧使)가 모두 인정(人情)을 끊어서 없애고 지대(支待)를 중지하여 없애는데 어찌 감사의 폐단만이 홀로 심하겠습니까? 다만 감사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달려 있는데, 30개월(箇月)의 임기로 가족을 데리고 부임(赴任)하는 법을 시비(是非)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말하기를, ‘본영(本營)이 거의 모두가 땅이 넓고 일이 번잡하니, 판관(判官) 한 몸으로 홀로 다스리기가 어렵다.’ 한다면 수원(水原)·성주(星州)·김해(金海)·밀양(密陽)·남원(南原)과 같이 모두 일이 번잡한 땅에서도 또한 1원(員)을 두어도 오히려 이를 다스릴 수가 없는데, 본영(本營)만이 홀로 1원(員)으로 하여금 이를 다스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대저 조종(祖宗)의 만든 법은 진실로 이해(利害)가 두드러지게 다른 일이 없다면 의리상 각별히 존중하여 영세토록 전하고 바꾸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법을 세운 지 겨우 3년이 안되어 별로 큰 폐단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가볍게 고치는 것은 진실로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그대로 두고 후일(後日)을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六曹·臺諫，議監司兼牧使否．(…) 右贊成鄭某·左參贊鄭甲孫議：“(…) 且判官·牧使，豈皆絕無人情，頓除支待，而監司之弊，獨有甚焉乎？只在監司賢否，非是三十箇月挈家赴任之法，生此弊也．若曰：‘本營率皆地廣事繁，判官一身，難以獨治’，則如水原·星州·金海·密陽·南原，皆是煩劇之地，亦置一員，猶可治之，不應本營獨不可使一員治之也．(…) 大抵祖宗成憲，苟無利害懸絕之事，則義當恪遵，傳之永世，而勿替也．此法之立，纔未三年，別無巨弊，今遽輕改，誠爲未便．” 上曰：“姑置之，以待後日，更議．”

<문종실록 5권, 문종 즉위년 12월 29일(기해) 7번째기사>

## 정치/행정

김맹헌이 수원부사로서 계모의 상을 당했는데 물의가 어질다고 하다

(…) 또 김길통(金吉通)과 김맹헌(金孟獻)을 집의(執義)에 의망(擬望)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김길통은 일찍이 사인(舍人)을 지냈는데 사림(士林)이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김맹헌은 일찍이 이조 정랑(吏曹正郎)과 이조 좌랑(吏曹佐郎)과 장령(掌令)을 지냈고, 수원부사(水原府使)로서 계모(繼母)의 상(喪)을 입었으나 지금은 복(服)이 끝났는데 물의(物議)<sup>4)</sup>가 그를 어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김맹헌에게 낙점(落點)을 하였다. (…)

○(…) 又以金吉通·金孟獻擬執義，仍啓曰：“吉通曾經舍人，士林稱其可人，孟獻曾經吏曹正·佐郎及掌令，以水原府使，服繼母喪，今乃服闋，物議賢之．” 上下點于孟獻，(…)

<문종실록 10권, 문종 1년 10월 27일(임진)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정인지가 공기를 수원 교수관으로 임명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청하다

정사를 보고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정인지(鄭麟趾)가 아뢰기를,

“남부(南部)의 교수관(教授官) 공기(孔頴)가 학술(學術)이 있어 사표(師表)에 적당합니다. 전일에 연풍 현감(延豐縣監)으로 임명하니,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겸무한 정갑손(鄭甲孫)이 사유(師儒)<sup>5)</sup>로서 책임자가 되기 어렵다 하여 남부(南部)의 교수관(教授官)으로 고쳐 임

4) 여러 사람의 논의(論議).

5) 남에게 사표(師表)가 될 만한 유자(儒者).

명했는데, 지금 과오(過誤)가 없는데도 수원(水原)의 교수관(教授官)으로 임명하니, 청컨대 서울 안에 머물게 하여 훈회(訓誨)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기(孔頎)가 진실로 학술(學術)이 있는가?”

하니, 정인지가 아뢰기를,

“제배(儕輩)<sup>6)</sup>가 모두 일컫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경(卿)의 말을 따르겠다.” 하였다. (…)

○戊寅/視事, 御經筵. 鄭麟趾啓曰: “南部教授官孔頎, 有學術, 宜於師表. 前者除延豐縣監, 兼判吏曹鄭甲孫, 以師儒難其人, 改除南部教授官, 今未有過誤, 而除水原教授官, 請留京中, 以資訓誨.” 上曰: “頎誠有學術乎?” 麟趾曰: “儕輩皆稱之.” 上曰: “當從卿言.” (…)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4일(무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남부학당 유생이 수원 교관에 제수된 공기를 남부학당에 다시 제수토록 청하다**

남부 학당(南部學堂) 유생(儒生) 이숙창(李淑昌)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 지금 우리 전하(殿下)께서 선왕(先王)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왕(先王)의 사업을 잘 이어가서 무릇 사표(師表)를 임명할 적에는 더욱 신중히 하여 반드시 경의(經義)에 밝고 행실이 수정(修整)된 선비를 가려서 그 직책을 임명하였으니, 그 배양(培養)하고 작성(作成)하는 공효(功效)는 비록 당·우(唐虞)의 성대(盛大)일지라도 이보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전 주부(注簿) 공기(孔頎)는 학술(學術)을 정밀히 연구하고 명망(名望)이 더욱 무거워졌으니 진실로 많은 선비들이 마땅히 모범할 만한 존재입니다. 경오년 겨울에 연풍 현감(延豐縣監)에 임명되었으나, 조정에서 학술(學術)이 있다는 이유로써 고쳐 교관(教官)으로 제수하였는데, 지금 수원 교관으로 제수(除授)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외학(外學)이 국학(國學)에 비교하면 경중(輕重)의 다름이 없을 수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본직(本職)으로도 제수(除授)시켜 신(臣) 등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경직(京職)으로 제수(除授)하도록 하였다.

○南部學堂生李淑昌等上言曰: “(…) 今我殿下, 善繼善述, 凡任師表, 尤爲慎重, 必擇經明行修之士, 以授其職, 其所以培養作成之功, 雖唐虞之盛, 蔑以加矣. 前注簿孔頎, 學術精斫, 聞望益重, 誠多士之所當取則也. 庚午冬拜延豐縣監, 朝廷以有學術, 改除教官, 今除水原教官. 伏念以外學比國學, 不無輕重之殊, 伏望還除本職, 以遂臣等之願, 不勝幸甚.” 命除京職.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20일(갑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경기도 수원의 양야곳이 목장을 남양 부사가 감목관을 겸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경기도 수원(水原)의 양야곳이 [陽也串] 목장(牧場)이 남양(南陽)에 가까우니, 청컨대 이제부터 남양 부사(南陽府使)로 하여금 감목관(監牧官)을 겸하게 하소서.” (…)

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據兵曹呈啓: “京畿水原陽也串牧場, 近於南陽, 請自今令南陽府使兼監牧官.” (…)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 5월 23일(정묘) 2번째기사>

6) 나이·신분(身分)이 서로 비슷한 사람.

## 정치/행정

### 경기의 양주도 좌익에 수원, 남양, 안산, 과천을 소속시키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각도(各道) 연해(沿海)의 요해지(要害地)에는 진(鎭)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두어 그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주현(州縣)에는 아직 진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구적(寇賊)이 발생하여 변진(邊鎭)이 감히 이를 막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마구 들어와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밟는 것처럼 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내지(內地)에도 적당히 요량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근방(近方)의 여러 고을을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에 분속시키도록 하소서. 그 익(翼)을 나눌 여러 고을과 절목(節目)은 뒤에 갖추어 기록하였습니다.

1. 경기(京畿)의 광주도(廣州道)는 그 중익(中翼)을 광주(廣州)·이천(利川)·양근(楊根)·양지(陽智)로 하고, 좌익(左翼)은 여흥(驪興)·천녕(川寧)·지평(砥平)·음죽(陰竹)으로 하며, 우익(右翼)은 안성(安城)·진위(振威)·양성(陽城)·용인(龍仁)·죽산(竹山)으로 합니다. 다음 양주도(楊州道)는 그 중익을 양주(楊州)·원평(原平)·포천(抱川)·적성(積城)·가평(加平)으로 하고, 좌익은 삭녕(朔寧)·마전(麻田)·영평(永平)·연천(漣川)으로 하고, 우익은 풍덕(豐德)·장단(長湍)·임진(臨津)·임강(臨江)으로 합니다. 다음 부평도(富平道)는 그 중익을 부평(富平)·인천(仁川)·양천(陽川)·금천(衿川)·고양(高陽)으로 하고, **좌익은 수원(水原)·남양(南陽)·안산(安山)·과천(果川)으로 하며**, 우익은 김포(金浦)·교하(交河)·통진독진(通津獨鎭)·교동(喬桐)·강화(江華)·개성부(開城府)로 합니다. (…)

○兵曹啓: “諸道沿海要害之處, 皆設鎭置將以固戍禦, 腹裏州縣未嘗設鎭, 若寇賊竊發, 邊鎭莫敢(枝)[抵][梧][拑], 則必將闌入如蹈無人之境, 不可不慮. 請於內地量置巨鎭, 以旁近諸邑, 分屬爲中左右翼. 其分翼諸邑及節目具錄于後. 一. 京畿廣州道, 中翼廣州·利川·楊根·陽智, 左翼驪興·川寧·砥平·陰竹, 右翼安城·振威·陽城·龍仁·竹山. 楊州道, 中翼楊州·原平·抱川·積城·加平, 左翼朔寧·麻田·永平·漣川, 右翼豐德·長湍·臨津·臨江. 富平道, 中翼富平·仁川·陽川·衿川·高陽, 左翼水原·南陽·安山·果川, 右翼金浦·交河·通津獨鎭·喬桐·江華·開城府.(…)”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1일(계미) 4번째기사>

## 정치/행정

###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상소하여 수원에 판관(判官)과 진(鎭)의 설치를 주장하다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상소(上疏)하기를,

(…) 1. **제주(諸州)의 판관(判官)입니다. 대개 관(官)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큰 주(州)는 부서(簿書)가 구름처럼 쌓이고 사객(使客)이 떼를 지어 모이니 수령 한 몸으로는 어느 겨를에 농사를 권장하며, 어느 틈에 송사를 청리(聽理)하겠습니까? 의창(義倉)이 염산(斂散)을 호활(豪猾)한 이에게 위임하여 백성의 해(害)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빌건대 경기(京畿)는 수원(水原)·양주(楊州)에**, 경상도는 선산(善山)·성주(星州)·김해(金海)·밀양(密陽)에, 전라도는 광주(光州)·남원(南原) **등의 고을에 특별히 판관(判官)을 두게 하소서.**(…)

또 부평부(富平府)는 비록 옛 안남(安南) 땅이라 하더라도 오늘에 있어서는 실제 관계되는 것이 없는데, 원평부(原平府)는 임진(臨津)의 험한 곳에 웅거하고, 또 교하(交河)를 제후하

고 풍덕(豐德)을 끝음으로써 왜구(倭寇)를 해구(海口)에서 액수(扼守)할 만합니다. 수원부(水原府)는 본시 관찰사(觀察使)의 관사를 둔 땅이며, 전조(前朝)에 홍적(紅賊)이 남하(南下)할 때에는 여기를 경유하여 사통 오달(四通五達)할 땅이니, 빌건대 전조의 좌보(左輔)·우보(右輔)의 예(例)에 따라 양주(楊州)를 후보(後輔)로 삼고, 수원(水原)을 전보(前輔)로 삼고, 광주(廣州)를 좌보(左輔)로 삼고, 원평(原平)을 우보(右輔)로 삼으면, 전후 좌우에 모두 거진(巨鎭)이 있으되 동남의 2진(二鎭)은 강외(江外)에 있고, 서북의 2진은 강내(江內)에 있어, 남북의 형세가 고르고 경사(京師)가 더욱 장대(壯大)할 것입니다.(…)

1. 제도(諸道)에 진(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개 신이 그옥이 생각하건대, 방금 진(鎭)을 설치하였으나, 또 마땅히 설치할 곳이 여덟이고, 마땅히 감할 곳이 하나이며, 합병하여 1진(鎭)으로 할 곳이 둘이고, 스스로 1진이 될 곳이 하나입니다. 평안도 자성(慈城) 같은 곳은 여연(閔延)·무창(茂昌)·우예(虞芮)의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이 되니, 마땅히 스스로 1진이 될 만한 곳입니다. 대저 제도(諸道)의 주군(州郡)에 모두 익·진(翼鎭)을 설치하였는데, 이미 요긴한 군(郡)이 아니면 각각 자체가 하나의 진으로 될 필요가 없으며, 황해도 장연(長淵)·풍천(豐川)·강령(康翎)과 웅진(甕津)은 마땅히 각각 합병하여 1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경기(京畿) 부평부(富平府)는 반드시 진(鎭)을 설치할 곳이 아니며, 평안도 희천(熙川)에 이르러서는 적유령(狄踰嶺)이 웅거(雄據)하고, 박천(博川)은 대강(大江)이 있으며, 삼등(三登)은 평양(平壤)의 동북로(東北路)의 요해(要害)이며, 함길도(咸吉道) 회령(會寧), 동창(童倉)의 구거(舊居)와 황해도 서흥(瑞興)은 절령(岬嶺)에 웅거하고, 경기 수원(水原)은 남로(南路)의 요충(要衝)이며, 원평(原平)은 임진(臨津)에 의지하고, 경상도 울산(蔚山)은 왜선(倭船)이 이르러 정박하는 곳이며, 또 왜인(倭人)이 거류(居留)하고 있으니, 모두 마땅히 진(鎭)을 설치할 곳입니다. (…)

一，諸州判官。蓋張官置吏，本以爲民也。今大州簿書雲委，使客全集，守令以一身何暇勸農事，何暇聽詞訟？義倉斂散，委之豪猾，斯民之害不可勝言。乞於京圻水原·楊州·慶尙道善山·星州·金海·密陽·全羅道光州·南原等州，特設判官。(…) 且富平府，雖古安南之地，在今日實無所係，原平府據臨津之險，又可以提交河挈豐德，而扼倭寇於海口也。水原府本觀察置司之地，前朝紅賊之南下，必由乎此，而四通五達之地也。乞依前朝左右輔例，以楊州爲後輔，水原爲前輔，廣州爲左輔，原平爲右輔，則前後左右皆有巨鎭，而東南二鎭在江外，西北二鎭在江內，南北之勢均，而京師益壯矣。(…) 一，諸道置鎭。蓋臣竊料，方今置鎭，又當置者八·當減者一·可併爲一鎭者二·可自爲一鎭者。一如平安道慈城，爲閔延·茂昌·虞芮賊路之衝，當自爲一鎭者也。大抵諸道州郡，皆設翼鎭，既非要郡，則不必各自爲一鎭，黃海道長淵與豐川·康翎與瓮津，當各併爲一鎭者也。且京畿富平府，不必置鎭處也，至於平安道熙川據狄踰嶺，博川有大江，三登則平壤東北路要害，咸吉道會寧童倉舊居，黃海道瑞興據岬嶺，京畿水原南路要衝，原平據臨津，慶尙道蔚山，倭船到泊之處，且有留居倭人，皆當置鎭者也。(…)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8일(정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영풍군 이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수원 부사를 파직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계평(趙季砮)이 이진(李璵)의 처소에 출입하는 잡인(雜人)을 금하지 않았다니, 파직시켜라.” 하였다.

○傳旨吏曹曰：“水原府使趙季砮，不禁璵處出入雜人，其罷職。”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7월 28일(을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양야콧이 목장을 수원부사가 겸관하도록 하다.

병조(兵曹)에서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남양 부사(南陽府使)는 이미 경내(境內)의 목장(牧場) 여섯 곳을 관할하는데, 지금 또 수원(水原) 양야콧이[陽也串]의 목장을 겸하니, 수원부(水原府)에서 양야콧이는 다른 읍의 소관(所管)이라 하여 건조(乾草)를 베는 등의 일을 반드시 주의하여 검찰(檢察)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수원 부사에게 겸하여 관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庚寅/兵曹據司僕寺提調狀啓: “南陽府使已管境內牧場六處, 而今又兼水原陽也串牧場, 水原府以陽也串他邑所管, 如刈芟草等事, 必不用意檢察. 請以水原府使兼管.” 從之.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2월 18일(경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부사 강노가 경기와 충청도의 군적부사가 되었다.

서원군(西原君) 한계미(韓繼美)를 평안·황해·강원도 군적사(平安黃海江原道軍籍使)로 삼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정식(鄭軾)을 경상·전라도군적사(慶尙全羅道軍籍使)로 삼고, 수원 부사(水原府使) 강로(姜老)를 경기·충청도 군적 부사(京畿忠淸道軍籍副使)로 삼았는데, 강노가 수원에 있으면서, 수차 임금의 부름을 받아 군적(軍籍)을 의논하는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부사(副使)로 삼았다.

○以西原君韓繼美爲平安·黃海·江原道軍籍使, 知中樞院事鄭軾 慶尙·全羅道軍籍使, 水原府使姜老·京畿·忠淸道軍籍副使. 老在水原, 數被召與議軍籍, 故爲副使焉.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8일(무오)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양성지가 경기도 수원 등은 한성부에 예속하고 전최만 이조가 주관하게 하자고 하다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가 군국 편의(軍國便宜) 10조(條)를 올렸는데, 이르기를,

(…) 1. 신이 명(明)나라의 관제(官制)를 보건대, 남직례(南直隸) 진강(鎭江) 등 14부(府) 15주(州)와 북직례(北直隸) 순천(順天) 등 8부(府) 18주(州)는 모두 포정사(布政司)에 예속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고황제(高皇帝)의 깊은 생각입니다. 본조(本朝) 8도(道)에서 경상도(慶尙道)의 안동(安東)·진주(晉州), 전라도(全羅道)의 남원(南原)·광주(光州), 충청도(忠淸道)의 공주(公州)·홍주(洪州), 경기(京畿)의 파주(坡州)·수원(水原), 강원도(江原道)의 춘천(春川)·양양(襄陽), 황해도(黃海道)의 연안(延安)·평산(平山), 함길도(咸吉道)의 영흥(永興)·북청(北靑)·경원(慶源), 평안도(平安道)의 의주(義州)·정주(定州)·성천(成川) 등 군은 직접 한성부(漢城府)에 예속시키어 그 문이(文移) 등의 일은 모두 예전대로 하고, 다만 전최(殿最) 하여서 포핍(褒貶)하는 것은 이조(吏曹)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소서. (…)

○大司憲梁誠之上軍國便宜十條. (…) 一, 臣觀大明官制, 南直隸·鎭江等十四府十五州, 北直隸·順天等八府一十八州, 俱不隸布政司, 此高皇帝深慮也. 本朝八道, 慶尙道安東·晉州, 全羅道南原·光州, 忠淸道公州·洪州, 京畿坡州·水原, 江原道春川·襄陽, 黃海道延安·平山, 咸吉道永興·北靑·慶源, 平安道義州·定州·成川等郡, 直隸漢城府, 其文移等事, 皆仍其舊, 但褒貶殿最, 令吏曹主之.(…)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1월 15일(기미) 3번째기사>

### 정치/행정

관제를 다시 정하면서 수원 등에 판관을 두다.

(…) 때에 관제(官制)를 다시 정하였다. (…) 성주(星州)·광주(光州)·수원(水原)·남원(南原)에도 각각 판관 하나씩을 두었다. (…)

(…) 時，更定官制．(…) 星州·光州·水原·南原，各置判官一．(…)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1월 15일(무오) 1번째기사>

### 정치/행정

대사간 정팔 등이 차자를 올려 조운명을 수원 판관에 제수한 이조 관리를 논핵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정팔(鄭佶) 등이 차자(筭子)를 올려 아뢰기를,

“빙고 별좌(氷庫別坐) 조운명(趙云明)이 지금 수원 판관(水原判官)에 제배(除拜)되었는데, 신 등이 살피건대, 무릇 별좌는 개월(個月)이 만료되면 곧 천직(遷職)됨이 비록 상례(常例)라고 하겠으나, 근래에는 빈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5, 60삭(朔)이나 3, 40삭에 이르러서도 천진(遷轉)되지 못한 자가 많으니, 어찌 그 가운데 수원 판관이 될 만한 인물이 없겠습니까? 조운명(趙云明)은 별다른 재능과 뚜렷한 업적도 없이 겨우 1년이 넘었는데, 이조(吏曹)에서 곧 판관을 제수한 것은 그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 분명합니다. 외람되고 공정하지 못함이 막심하니, 원컨대 곧 바르게 고치고 아울러 이조의 관리를 탄핵하여 외람된 길을 막도록 하소서. 또 『대전(大典)』에는 사죄(私罪)를 범한 자는 2년이 경과해야 서용한다고 하였는데, 조득림(趙得琳)은 파면된 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서용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악한 무리들에게 장차 무엇으로 징계할 것입니까? 즉시 성명(成命)을 거두어 들어서 후인(後人)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이조(吏曹)의 관리는 문책함이 마땅하고, 조득림(趙得琳)은 그 죄가 서용 못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하였다.

○司諫院大司諫鄭佶等上筭子曰：氷庫別坐趙云明，今拜水原判官，臣等竊念，凡別坐箇滿卽遷，雖是例事，然近因窠闕不足，或至五六十朔三四十朔而不得遷轉者多，豈無其中可爲水原判官者乎？云明別無才能顯效，而纔過周年，吏曹卽除判官，其聽請托明矣．猥濫不公莫甚，乞卽改正，竝劾吏曹官吏，以杜猥濫之門．且『大典』犯私罪，經二年乃敘，趙得琳見罷未幾，今許敘用，爲惡之輩，將何所懲？亟收成命，以戒後來．傳曰：“吏曹官吏，則當問之，趙得琳，其罪不至於不敘也．”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8일(정묘) 3번째기사>

### 정치/행정

대사간 정팔이 수원판관에 제수된 조운명의 임명이 불가하다고 아뢰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이 끝나자, 대사간(大司諫) (…) 정팔(鄭佶)이 또 아뢰기를,

“빙고 별좌(氷庫別坐) 조운명(趙云明)이 겨우 개월(箇月)이 만료되자 곧 수원 판관(水原判官)에 제수되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개월이 찬 별좌가 많고 동반·서반의 관원 중 개월이 만료되어 응당 판관을 제수해야 할 자도 또한 적지 않으니, 만약 개월이 만료된 순서대로 제수하면 먼저 제수되어야 할 자는 반드시 조운명(趙云明)이 아닌데도 지금 먼저 제수

하였으니, 이조(吏曹)에서 조운명의 청탁을 들어주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이미 이조(吏曹)를 불러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별좌로서 개월이 만료된 자는 거의 30명이나 되지만, 단지 그들은 모두 실직(實職)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오직 조운명(趙云明)만이 이미 실직을 거쳤기 때문에 제수하였습니다.’ 고 하였다. 만약 사람의 기품이 상당(相當)하다면, 비록 먼저 임용한다고 해서 지나칠 것이 되지는 않으니, 어찌 이조가 그의 청탁을 들어주었다고 하겠느냐?”

하니 정괄(鄭恬)이 다시 아뢰기를,

“조운명(趙云明)이 전에 신창(新昌) 수령으로 있을 때 두 번이나 중등(中等)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를 체임(遞任)함이 마땅한데 특별히 별좌(別坐)로 강수(降授)되었으니, 그 사람의 재능이 상당(相當)하지 않았음을 이로써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고쳐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己巳/御經筵. 講訖, 大司諫(…) 恬又啓曰: “冰庫別坐趙云明纔滿箇月, 卽除水原判官. 臣謂箇滿別坐, 不爲不多, 東·西班牙箇滿應授判官者, 亦不少, 若以箇滿次第而除授, 則應先除授者, 必非云明, 而今乃先授, 吏曹聽云明之請, 明矣.” 上曰: “昨已召吏曹, 問其所由, 答云: ‘別坐箇滿者幾三十, 但俱未行實職, (雖) [唯] 云明已經實職, 故除授.’ 若人器相當, 則雖先用之, 未爲過也, 安有吏曹聽其請哉?” 恬更啓曰: “云明向宰新昌, 再居中等, 故當其遞也, 降授別坐, 其非人器相當, 從可知也. 請改差.” 不聽.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0일(기사) 1번째기사>

## 정치/행정

**대사간 정괄 등이 이조에서 조운명을 수원 판관에 천거한 것은 불가하다고 아뢰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정괄(鄭恬) 등이 차자(筭子)를 올려 아뢰기를,

“별좌(別坐)는 모두 녹봉(祿俸)이 없이 종사(從仕)하므로, 개월이 만료된 것이 오래되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 천전(遷轉)함이 지극히 공정하고 마땅합니다. 지금 별좌로서 개월이 만료된 자가 혹 5, 60삭(朔)이 되어도 천전(遷轉)되지 못하니, 침울(沈鬱)함을 펴지 못하고 날로 공론(公論)만 바라고 있습니다. **조운명은 별다른 재능(才能)도 없고 개월 수도 적은데 수원 판관으로 제수를 하니, 공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으니, 하문(下問)하셨을 때 이조(吏曹)에서 마땅히 수복(首服)하고 대죄(待罪)할 겨를을 만들지 않고, 이에 말을 꾸며서 아뢰기를, ‘별좌로 개월이 만료될 자가 비록 많으나, 혹은 이미 4품을 거쳤거나 혹은 수령에 적합하지 아니한데, 유독 조운명(趙云明)만은 기품이 상당합니다.’ 고 하였으므로, 이 말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비록 이미 4품을 거친 자에게 판관을 제수하더라도 무엇이 법에 해로울 것이 있으며, **별좌로서 개월이 만료된 자가 30여 명이나 되는데 어찌 한 사람도 수원 판관이 될 만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비록 별좌에는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원 판관이 별좌의 거관(去官)을 위한 곳이라면 오히려 가한데,** 동반·서반 중에 쓸 만한 선비가 또한 많으니, 반드시 그들을 제수하여야 합니다. 조운명은 이조(吏曹)와 관계 있음이 명확한데, 항차 조운명은 전에 신창 현감(新昌縣監)으로 임명되어서도 근무 성적이 두 번이나 중등(中等)으로 평가받아 강등되어서 별좌에 제수되었으니, 그 인물이 상당하지 못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司諫院大司諫鄭恬等上筭子曰：別坐皆無祿從仕，以箇滿久近，遷轉至公至當。今別坐箇滿者，或至五·六十朔，不得遷轉，沈鬱莫伸，日望公論。趙云明別無才能，朔數亦少，而除水原判官，公論安在？其聽請托，明白無疑，下問之時，吏曹當首服，待罪之不暇，而乃飾辭以啓曰：“別坐箇滿者雖多，或曾經四品，或不合守令，獨云明人器相當”，此言尤爲不可雖曾經四品，而授判官，何害於法，別坐箇滿三十餘人，豈無一人可爲水原判官者乎？雖於別坐無人，若水原判官爲別坐去官之地，則猶之可也，東·西班牙中，可用之士亦多，而必授之。云明此其綢繆之明驗，況云明前任新昌縣監，以二中，降授別坐，其非人器相當，亦可知矣。(…)不聽。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10일(기사)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도호부사 김사원 등은 체임할 때 준직하라고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수원 도호부사(水原都護府使) 김사원(金嗣源)·남양 도호부사(南陽都護府使) 민효남(閔孝男)·부평 도호부사(富平都護府使) 김원윤(金元潤)·강화 도호부사(江華都護府使) 신윤중(申允宗)은 체임(遞任)할 때에 준직(准職)(…) 하라.”

하였으니, 진휼사(賑恤使) 한명회(韓明澮)의 계달로써 이 명을 내린 것이다.

○傳旨吏曹曰：“水原都護府使金嗣源·南陽都護府使閔孝男·富平都護府使金元潤·江華都護府使申允宗，遞任時準職.(…)”以賑恤使韓明澮之啓，有是命。

<성종실록 34권, 성종 4년 9월 26일(갑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도둑을 잡는 것은 수령의 직분이니 수원부사에게 가자하라는 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서장(李恕長) 등이 차자(筭子)를 올리기를,

“지금 경기와 평안도의 수령(守令) 중에 강도(強盜)를 잡은 자가 있으므로, 형조(刑曹)에서 『대전(大典)』 이전의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논상(論賞)을 계청(啓請)하였습니다. 대저 수령이 도둑을 잡는 것은 직분의 일인데, 어찌 함부로 작상(爵賞)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작상은 임금이 세상을 면려(勉勵)하고 둔한 것을 연마하는 제구이므로 오직 현능(賢能)이라야 주는 것이니, 도둑을 잡은 작은 일에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자궁(資窮)한 수령이 매우 많은데, 도둑을 잡았다 하여 으레 다 가계(加階)하겠습니까? 세조조(世祖朝)에 있어서 최제남(崔悌男)이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어 도둑을 많이 잡았으므로 특별히 가자(加資)하였으나, 간원(諫院)이 논박(論駁)하니, 곧 명하여 도로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분반(分半)아야 할 일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成命)을 빨리 거두어 요행을 바라는 길을 끊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헤아려서 시행하겠다.” 하였다.

○司憲府大司憲李恕長等上筭子曰：今京畿·平安道守令有捕強盜者，刑曹據『大典』前受敎，啓請論賞。夫守令捕盜，乃職分事也，豈可濫行爵賞乎？爵賞乃人主礪世磨鈍之器，惟其賢能而授之，不可行之於捕盜小事也。今守令資窮者甚多，以捕盜而例皆加階乎？在世祖朝，崔悌男爲水原府使，多捕盜特加階，諫院駁之，卽命收之。此實可法，伏望亟收成命，以杜僥倖之路。

傳曰：“予當商量施行。”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23일(병자) 4번째기사>

### 정치/행정



부모가 수원에 살고 있는 평안도 조전 절제사 박양신 등에게 상을 내리다

평안도 조전 절제사(平安道助戰節制使) 박양신(朴良信)·박성손(朴星孫)·박사형(朴思亨)·김계종(金繼宗)에게 각각 초피 오자(貂皮襖子) 1벌씩을, 군관(軍官)들에게 각각 이엄(耳掩) 1벌씩을 하사(下賜)하고, 전지(傳旨)하기를, “박양신의 부모(父母)는 수원(水原)에서 살고, 박사형의 부친은 상주(尙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때때로 먹을 것을 주게 하고, 만일 질병(疾病)이 있거든 의약(醫藥)을 주어 치료하게 하라.” 하였다.

○賜平安道助戰節制使朴良信·朴星孫·朴思亨·金繼宗貂皮襖子各一領，軍官等耳掩各一，傳曰：“良信父母居水原，思亨父居尙州，其令觀察使時致食物，如有疾病，給醫藥救療。”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4일(병술) 6번째기사>

### 정치/행정

장령 안처령이 공죄로 조율된 수원 부사 남칭을 다시 임직된 것은 부당하다고 논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장령(掌令) 안처량(安處良)이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남칭(南僞)은 의금부(義禁府)에서 공죄(公罪)로 조율(照律)하였는데 도로 임직(任職)시켰으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깨나 쌀가루는 관가(官家)에서 쓰는 바라 하더라도, 서장지(書狀紙) 또한 관가에서 쓸 것이 되겠습니까? 의금부에서 인공擅科<sup>7)</sup>의 율(律)로 조준(照準)하지 않고 불응위(不應爲)<sup>8)</sup>의 율로 조준한 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국문(鞫問)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의금부에 물겠다.” 하였다.

○己酉/受常參，視事。掌令安處良啓曰：“水原府使南僞，義禁府以公罪照律，今還任，甚未便。借曰菑子·米淸爲官家所需，書狀紙亦爲官家所用乎？禁府不以因公擅科斂律照之，乃以不應爲照之，必有情由，請鞫之。” 上曰：“予當問于禁府。”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2일(기유)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지평 안선이 공죄로 조율된 수원부사 남칭을 관직에 제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 안선이 또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남칭(南僞)은 의금부(義禁府)에서 공죄(公罪)로 조율(照律)하였는데 도로 벼슬하게 하셨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입기(入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해는 백성에게 미쳤으며, 더구나 서장지(書狀紙)는 관가(官家)에서 쓰는 것이 아닌데, 수령(守令)의 통례(通例)라 하여 견책(譴責)하지 않으면, 수령이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 잘 살피지 못하였다. 다시 생각하니, 의금부의 조율이 그르다. 이제 소사(所司)의 말이 과연 옳으니, 내가 마땅히 헤아려 보겠다.” 하였다.

○辛亥/御經筵。講訖，(...) 璿又啓曰：“水原府使南僞，禁府以公罪照律，令還官未便。雖曰

7) 관리가 상사(上司)의 명문(明文)에 의하지 않고서 마음대로 재물을 거둔 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의 한 조목.

8) 당연히 해서는 안될 일. 비록 법(法) 조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윤리·도덕상으로 볼 때 해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

不入己，弊及於民，況書狀紙，非官家所用，若以守令通例而不譴責，則守令何所懲乎？” 上曰：“予初不詳察，更思之，禁府照律誤矣。今所司之言果是，予當商量之。”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4일(신해)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사간 이숙문이 수원부사 남칭 등의 관직 제수가 부당하다고 논하다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이숙문(李淑文)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상벌(賞罰)은 인주(人主)가 어세(馭世)하는 대권(大權)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실로 혹 마땅함을 잃으면 권징(勸懲)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자에 수원 부사(水原府使) 남칭(南僞)·안산 군수(安山郡守) 김수말(金守末)·통진 현감(通津縣監) 유조(柳眺)는 모두 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써 파직되었습니다. 최숙정(崔淑精)은 크고 작은 곡(斛)을 사용하여 제멋대로 거두어 들고 나누어 주고 하였으니, 그 죄가 큰데도 전하께서 그 사람만은 죄주지 않으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신 등은 벌(罰)하심에 그 마땅함을 잃은 것으로 생각되니,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시고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司諫院司諫李淑文等上箚子曰：賞罰，人主馭世之大權，不可不慎，苟或失當，無所勸懲。日者水原府使南僞·安山郡守金守末·通津縣監柳眺皆以不法罷。崔淑精用大小斛，任情斂散，其罪大矣，而殿下獨不之罪何歟？臣等以為罰失其當也，伏望亟收成命，依律科罪。不聽。

<성종실록 100권, 성종 10년 1월 14일(신미)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각 관사에 국상 중에 수고한 수원부사 및 판관 등을 서용하다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순보(金舜輔)·판관(判官) 정숙지(鄭淑墀)(…)은 벼슬을 올리도록 하라. (…)

○傳旨吏·兵曹：(…) 水原府使金舜輔·判官鄭淑墀(…)敍用。(…)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4일(갑진)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안우건을 수원부사로 삼다

(…) 안우건(安友騫)을 통정 대부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 安友騫通政水原府使 (…)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27일(병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양찬을 수원도호부사로 삼다

(…) 양찬(梁贊)을 통정 대부 행 수원 도호부사(行水原都護府使)(…)로 삼았다.

○(…) 梁贊通政行水原都護府使。(…)

<성종실록 195권, 성종 17년 9월 6일(무신)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도승지 이세우가 수원 부사 양찬의 목사 부적임을 아뢰다

도승지(都承旨) 이세우(李世佑)가 아뢰기를,

“양주 목사(楊州牧使) 안상계(安桑雞)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양찬(梁瓚)과 바꾸어 차임(差任)하도록 명하셨는데, 신이 생각하건대, 양주는 땅이 넓고 백성이 많은데 전 목사 이윤손(李尹孫)이 늙어서 일을 다스리지 못하였고 양찬도 수령의 재목이 아닙니다. 신은 아마도 양주의 백성들이 마침내 회복되지 못할까 합니다. 수원은 판관(判官)이 있으므로 양찬도 관(官)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이다. 양찬의 실수한 것이 어떤 일인가?”

하자, 이세우가 아뢰기를,

“양찬의 실수한 바는 신이 듣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사람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양찬이 과연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면, 아무리 판관이 있더라도 어찌 임명할 수 있겠는가? 바로 들은 바를 진술하라.”

하니, 이세우가 아뢰기를,

“신이 대부도(大部島)에서 돌아올 때에 길에서 들으니, 사람들이 모두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가 대부도에 갔다가 수원을 경유하였는데, 어찌 들은 바가 없이 이 말이 있겠는가?”

하니, 이세우가 아뢰기를,

“신이 만약 들은 바를 기억한다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임금 앞에서 일을 아뢰려고 하는데 어찌 자세히 묻지 아니하겠는가? 사실대로 대답하라.”

하니, 이세우가 얼굴빛이 변하고 두려워하면서 앞의 말과 같이 대답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곧 홍문관원(弘文館員)을 보내어 양찬의 정치 득실(政治得失)을 사찰(伺察)하여 아뢰라.” 하였다.

○都承旨李世佑啓曰：“楊州牧使安桑雞，命與水原府使梁瓚換差。臣意楊州土廣民稠，前牧使李尹孫老不治事，瓚又非守令才，臣恐楊州之民，終不復蘇矣。水原則有判官，瓚亦可以守官矣。”傳曰：“必有所聞，瓚所失何事耶？”世佑啓曰：“瓚之所失，臣未之聞，何能指摘？但其爲人不合臨民，故啓之耳。”傳曰：“瓚果不合臨民之職，雖有判官，何可任乎？直陳所聞。”世佑曰：“臣歸大部島時，聞諸道路人，皆謂不善治矣。”傳曰：“爾往大部島經由水原府，豈無所聞而有是言乎？”世佑曰：“臣若記所聞，則豈敢諱之？”傳曰：“君前欲啓事，豈不詳問？其以實對。”世佑變色惶懼，對如前。傳于承政院曰：“卽遣弘文館員，伺察梁瓚政治得失以啓。”

<성종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26일(을축)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지평 윤파가 수원부사 양찬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이세우의 직무 태만을 논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윤파(尹坡)가 와서 아뢰기를,

“(…) 또 대부도(大部島)는 다만 사흘 노정(路程)밖에 안되는데, 도승지(都承旨) 이세우

(李世佑)가 가서 살펴볼 때에 돌아가서 수원부(水原府)에 이르러 머물면서 자고 놀고 하느라고 6일을 경과하고서야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이미 마땅하지 못하는데, 요즈음 양찬(梁贊)의 불법(不法)한 일을 하문(下問)할 때에 사실을 숨기고 바로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자못 신자(臣子)의 도리가 없습니다.”

하니, (...) 이세우가 아뢰기를,

“신은 정성근(鄭誠謹)과 사귄 정이 매우 두터운데, 사명을 받들고 대마도(對馬島)로 들어갈 때에 신이 말로 작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처음 생각으로는 길에서 말로 작별을 하려고 하여 초2일에 남양(南陽)에 갔고 이튿날 대부도에 갔다가 그 이튿날 남양으로 돌아왔는데, 날이 아직 저물지 아니하였습니다. 수원은 남양에서 거리가 30리 길이며 또 한강(漢江)의 직로(直路)이기 때문에 정성근을 만나 보려는 마음에 국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서 이날 수원에 이르렀는데, 정성근이 이미 광주(廣州)로 향하였으니 형편이 필시 서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하루를 머물렀던 것입니다. 신에게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전에는 그 문 앞으로 세 번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아니한 이가 있었다. 명(命)을 받들고 가는 데에는 진실로 마땅히 빨리 돌아와야 할 것인데, 길이 아무리 매우 가깝다 하더라도 남을 찾아갈 수 있겠는가? 양찬(梁贊)의 일은 내가 두 번이나 물었는데도 그대가 어찌 하여 바로 아뢰지 아니하는가? 대죄(待罪)하라.” 하였다. (...)

○司憲府持平尹坡來啓曰：“(…)且大部島只三日之程，而都承旨李世佑往審時，枉到水原府留宿遊衍，經六日乃還，已爲不當矣。近日梁贊不法事下問時，匿情不以直啓，殊無臣子之義。”

(…)世佑啓曰：“臣與鄭誠謹交情不淺，奉命歸于對馬島，臣未得話別，臣初心欲於路上話別。初二日往南陽，翌日往大部島，翌日還到南陽，則日未暮，水原距南陽纔三十里，又是漢江直路，故，欲見誠謹，不料國法。是日到水原，則誠謹已向廣州，勢必相違，故留一日，臣實有罪。”傳曰：“古有三過其門而不入者，奉命而行，固當速還。道雖甚邇，其可枉行乎？梁贊事，予再問之，爾何不直啓歟？其待罪。” (...)

<성종실록 204권, 성종 18년 6월 9일(정축)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부사 양찬의 과실을 눈감아준 이세우를 파직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이세우(李世佑)가 남양(南陽) 대부도(大部島)를 살펴본 뒤에 길을 돌아 수원부(水原府)에 가서 머물며 부사(府使) 양찬(梁贊)의 용렬(庸劣)한 과실을 눈으로 보고서도 두세 번 하문(下問)할 때에는 길에서 전해 들었다고 대답하여 천총(天聰)을 속인 죄는 율(律)이 ‘대제상서 사불이실(對制上書詐不以實)’에 해당하니, 장(杖) 1백 대와 도(徒) 3년으로 하고, 『대전(大典)』에 의하여 고신(告身)을 모두 빼앗아야 합니다.”

하였는데, 어서(御書)로 파직(罷職)만 하라고 하였다.

○庚辰/司憲府啓：“李世佑，南陽大部島看審後，枉道經宿水原府，目覩府使梁贊庸劣過失，而再三下問時，以路次傳聞，欺罔天聰罪，律該對制上書詐不以實者，杖一百·徒三年。依『大典』盡奪告身。”御書：“只罷職。”

<성종실록 204권, 성종 18년 6월 12일(경진)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장령 정지가 수원 판관에서 파출된 정숙지가 정3품에 초수된 것을 논하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정지(鄭摯)가 와서 아뢰기를,

“엿드려 춘궁 도감(春宮都監)의 논상(論賞)을 한 비목(批目)을 보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저 춘궁(春宮)은 창경궁(昌慶宮)의 남은 재목으로써 지은 것이고 역사도 7개월이나 걸려서 끝났으며, 또 맡은 일을 조심하지 아니하여 졸도(卒徒)들을 압상(壓傷)케 하였으므로, 죄가 있는데도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중상(重賞)을 더했습니다. 경임(慶緝)은 부정(副正)으로 진주 목사(晉州牧使)를 제수한 것만으로도 족(足)할 것인데 다시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승진시켰고, 정숙지(鄭叔擥)는 수원 판관(水原判官)으로 파출(罷黜)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정3품(正三品)의 직(職)을 초수(超授)하였으니, 관작(官爵)이 지나치게 남용되었으므로 개정(改正)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壬寅/司憲府掌令鄭摯來啓曰：“伏觀春宮都監論賞批目，不勝驚駭。夫春宮以昌慶宮餘材構之，而役至七月乃訖；且不謹職事，壓傷卒徒，有罪不治而反加重賞。慶緝以副正，授晉州牧使足矣，而復陞通政；鄭叔擥以水原判官，罷黜未幾而超授正三品之職。官爵太濫，不可不改正。” 不聽。(…)

<성종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5일(임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대사간이 수리한 공이 있다고 수원판관 정숙지를 초수한 것이 지나치다고 아뢰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승(李德崇) 등이 차자(筭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작상(爵賞)이란 것은 임금의 세상 사람을 권장시키고 둔(鈍)한 자를 연마(鍊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은 마땅히 더할 곳에 주어야만 사람들이 권장되는 것입니다. (…)정숙지(鄭叔擥)는 처음에 수원 판관(水原判官)에서 죄를 짓고 파직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리(修理)한 공으로써 차례를 뛰어넘어 관직에 제수되었습니다. 죄가 있어 파직된 사람은 전직(前秩)에 제수되는 것만도 만족한 것인데, 수년(數年) 동안에 종5품(從五品)의 관직으로서 정3품(正三品)의 벼슬에 올랐으니, 작상(爵賞)의 지나침이 하나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司諫院大司諫李德崇等上筭子，略曰：爵賞者，人主所以礪世磨鈍也，是故賞加於所當加，然後人勸。(…)叔擥初以水原判官得罪見罷，未幾，以修理之功，越次授職。有罪罷職之人，得除前秩足矣，數年之間，以從五品之職，陞正三品之官，爵賞之濫，一至此極。(…)

<성종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7일(갑진)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양사가 수원 판관에서 파출된 정숙지를 초수함이 부당하다고 아뢰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승경(金升卿) 등과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김심(金諶) 등이 상소(上疏)하였는데, 그 대략에,

“작상(爵賞)이란 천하(天下)의 공기(公器)이므로, 위(位)를 ‘천위(天位)’라 이르고, 작(爵)을 ‘천작(天爵)’이라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주(人主)의 작상은 반드시 어진 일이 있는 연후에 이를 명하고 공(功)이 있는 연후에 이를 더하는 것이니, 조정에 요행으로 얻은 벼슬이 없어야 사람은 분수에 편안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춘궁(春宮)의 거사는 곧 작은 역사입니다. 창경궁(昌慶宮)을 경영할 때에 마침 흉년을 만나 잠시 이 궁의 일

을 정지했었는데, 그 재목(材木)과 와석(瓦石)은 곧 창경궁에 모아 두었던 나머지이고, 창경궁의 공사가 끝난 다음 위로는 제조(提調)에서부터 아래로는 천공(賤工)에 이르기까지 높은 벼슬과 두터운 상으로 그 공로에 보답했던 것입니다. 그 때의 제조였던 김겸광(金謙光)에게는 정헌 대부(正憲大夫)를 더하였고, 낭청(郎廳)이었던 경임(慶縉)과 윤숙(尹倣)은 모두 정랑(正郎)으로 부정(副正)에 초승(超陞)되었으며, 정숙지(鄭叔墀)는 수원 판관(水原判官)에서 파출(罷黜)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전설사 수(典設司守)로 뛰어넘어 제수되었습니다. 가령 춘궁도 당시에 이루어졌었다면, 제조와 낭청이 창경궁의 논상(論賞) 밖에 춘궁의 공로를 따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물며 창경궁은 전하께서 삼전(三殿)을 위하여 세운 것이고, 춘궁은 세자(世子)를 위하여 경영한 것이니, 전(殿)의 존비(尊卑)가 판이하고 공(功)의 경중(輕重)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찌 이러한 은전(恩典)이 중첩될 수 있겠습니까? (…)"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司憲府大司憲金升卿等·司諫院司諫金諶等上疏. 略曰: 爵賞, 天下之公器, 位曰天位, 爵曰天爵. 故人主之爵賞, 必賢然後命之, 功然後加之, 朝無倖爵, 人知安分. 春宮之舉, 乃小役也. 當經營昌慶之時, 適值年荒, 姑停此宮, 其材木瓦石, 卽昌慶宮鳩集之餘. 昌慶告訖, 上自提調下至賤工, 隆爵厚賞以酬其勞. 其時提調金謙光加正憲; 郎廳慶縉·尹倣俱以正郎, 超陞副正; 叔墀水原判官罷黜未幾, 躡授典設司守. 假如春宮亦成於當時, 則提調郎廳昌慶論賞之外, 別報春宮之功乎? 況昌慶, 殿下爲三殿建也, 春宮爲世子營也. 殿之尊卑有截, 功之輕重有間, 何爲而有此恩數之疊乎? (…)  
不聽. (…)

<성종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10일(정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지평 유인홍이 하한문이 수원 부사에 맞지 않음을 아뢰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유인홍(柳仁洪)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하한문(河漢文)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는데, 수원(水原)은 지역이 크고 사람이 많아 사송(詞訟)이 호번(浩繁)합니다. 하한문(河漢文)은 성품이 본래 용렬(庸劣)하니, 어찌 선치(善治)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현능(賢能)한 이를 가려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乙丑/司憲府持平柳仁洪來啓曰: “今以河漢文爲水原府使, 水原, 地大人衆, 詞訟浩繁, 漢文, 性本庸劣, 安能善治? 請擇遣賢能.” 從之.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8일(을축)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이혁이 수원 판관에 합당한가를 의논하다

이혁(李赫)이 수원 판관(水原判官)에 합당한가 않은가를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이혁(李赫)의 일은 헌부(憲府)에서 아뢴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무반(武班)을 내지(內地)의 수령(守令)으로 삼은 것은 오늘부터가 아니며, 유독 이혁(李赫)만이 아니니, 개차(改差)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신(臣)이 이혁(李赫)의 사람 됨됨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용개(申用漑)의 아뢴 바

가 마땅한 것 같습니다.”

하고, 한치형(韓致亨)은 의논하기를,

“비록 무재(武才)가 있더라도 이미 내지(丙地)의 수령(守令)을 제수하였으면, 개차(改差)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고양 군수(高陽郡守)를 무재(武才)로써 천거하여 창성(昌城)으로 옮겼으나 특이한 성과가 별무(別無)하였습니다. 이혁(李赫)의 사람됨을 신이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들건대 전조(銓曹)에서 수원(水原)은 거읍(鉅邑)이고 또 심히 조폐(凋弊)하다 하여, 이혁(李赫)을 뽑아 써서 소복(蘇復)하기를 기약하고 이미 제수하였으니, 아직은 취직(就職)하도록 하고, 기필코 변방(邊方)에 쓰려고 하면 한철동(韓哲同)의 예(例)를 따라서 이차(移差)함도 또한 무방(無妨)하겠습니다.”

하고, 유지(柳淸)는 의논하기를,

“대개 사람을 쓰는 것은 각각 알맞게 해야 합니다. 신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만약 무인(武人)이라면 어찌 수원(水原)에 합당하겠습니까? 헌부(憲府)의 아뢰 바에 따르소서.”

하고, 윤효손(尹孝孫)은 의논하기를,

“이혁(李赫)을 이미 판관(判官)으로 삼았으니, 변방(邊方)에 빈 데가 있어서 달리 무재(武才)로 쓸 만한 자가 없으면, 임시(臨時)로 이차(移差)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노사신(盧思愼)의 헌의를 따르고, 이어서 대간(臺諫)에게 유시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천하가 평안하면 재상에게 주의(注意)하고 천하가 위태하면 장수에게 주의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국가(國家)가 승평(昇平)하면 문무(文武)를 병용(并用)함이 마땅한데, 어찌 문신(文臣)은 오래 내지(內地)에 있고, 무신(武臣)은 오래 변방(邊方)을 지키게 함이 옳겠는가? 문신(文臣)이라도 무재(武才)가 있는 자는 변방을 맡길 수 있고, 무신(武臣)도 또한 내지를 맡길 수 있으니, 그 백성을 다스리기를 어떻게 하는가를 볼 뿐이다. 이혁(李赫)의 사람됨을 내가 일찍이 알고 있다. 그러나 변방(邊方)에 일이 있어서 이혁의 위인(爲人)이 있고 없는 데에 관계가 되면, 비록 내지(內地)에 있더라도 또한 이차(移差)하여 보냄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議李赫水原判官當否. 尹弼商議: “李赫事, 憲府所啓似當.” 盧思愼議: “以武班, 爲內地守令者, 非自今日, 非獨李赫, 不須改差.” 尹壕議: “臣不識李赫之爲人, 然用漑所啓似當.” 韓致亨議: “雖有武才, 已授內地守令, 不須改也.” 鄭文炯議: “以高陽郡守, 舉武才移昌城, 別無異效. 李赫之爲人, 臣不詳知, 但聞, 銓曹以水原鉅邑, 且甚凋敝, 擇用李赫, 期於蘇復, 業已除授, 姑令就職, 必欲用之邊方, 依韓哲同例移差, 亦無妨.” 柳淸議: “大概用人, 各適其當, 臣未知其人, 然若武人, 則豈合水原? 依憲府所啓.” 尹孝孫議: “李赫已爲判官, 邊方有闕, 而無他武才可用者, 臨時移差, 未晚.” 從思愼議. 仍諭臺諫曰: “古人云: ‘天下安, 注意相, 天下危, 注意將.’ 國家昇平, 則文武當并用矣, 豈可使文臣長在內地, 武臣長守邊方乎? 文臣而有武(寸) [才] 者, 可任於邊方, 武臣亦可任於內地, 以觀其臨民之何如耳. 赫之爲人, 予嘗知之, 然或邊方有事, 而赫之爲人, 關於有無, 則雖在內地, 亦可移遣矣.”

<성종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8일(갑오)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안우건과의 관계로 김진석이 함께 오지 않은 것에 대해 벼슬을 바꾸어 임명하다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지평 김진석이 어찌 함께 오지 않았느냐?”

하매, 김율(金律) 등이 아뢰기를,

“당초에 안우건을 의계(議啓)할 적에, 진석이 ‘내가 수원 판관(水原判官)이었을 때 우건이 부사(府使)이었다.’ 하며 어렵게 여겼고, 또 신 등이 동의(同議)한 의도는 중점이 가선(嘉善)에 있는데, 진석은 병조가 소임이 중하다는 것으로 앞세웠으니, 신 등의 본의가 아니옵니다. 어제 계한 바는 다만 유제(柳睟)·김장손(金長孫)의 일에만 미쳤사오며, 우건의 일은 사간원에서 크게 본부의 뜻을 잃었기 때문에 신 등이 함께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이어서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미 개정(改正)을 윤허하시고 곧 도로 제수하심은 신의가 아니오며, 즉위하신 처음에 사적으로 외적을 총애하시어 갑자기 승직시키심은 공도(公道)가 아니며, 그것이 불가한 줄을 아시면서 오히려 개정하지 않으심은 간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의 우건을 등용하심으로써 세 가지 실책이 있습니다.”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진석을 환차(換差)하라.” 하였다.

○傳于司憲府曰：“持平金晉錫，何不俱來？” 金律等啓：“當初，議啓友謇之時，晉錫乃曰：‘予爲水原判官時，友謇爲府使，難之。’ 且臣等同議之意，重在嘉善。晉錫，兵曹任重爲先，非臣等本意。昨日所啓，只及柳睟·金長孫，而友謇之事，因諫院大失本府之意，臣等，不與俱來耳。” 臺諫仍啓：“殿下既許改正，旋即還授，非信也；卽位之初，私寵外戚，驟陞右職，非公道也；知其不可，猶不改正，非從諫也。用一友謇，有此三失。” 傳于承政院曰：“晉錫，換差。”

<연산군일기 4권, 연산군 1년 4월 28일(신사) 4번째기사>

## 정치/행정

전 수원부사 이균이 제용감 정에 적합하다고 논의하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동청례(童淸禮)의 일은 과연 사헌부의 아뢰 바와 같습니다. 안진생(安晉生)은 문과(文科) 출신으로서 나이 또한 늙지 않았으니 강직(剛直)한 기풍(氣風)은 비록 적다 하더라도 수령의 직책을 어찌 감내하지 못하오리까. 채숙저(蔡叔渚)의 사람됨은 신은 알지 못하옵니다.”

하고, 신승선(愼承善)은 의논드리기를,

“동청례(童淸禮)는 비록 호인(胡人)이지만 향화(向化) 한 지가 몇 해가 되었으니 우리 나라 사람과 무엇이 다르리까. 다만 금병(禁兵)을 총령(總領)하는 일만은 옳지 못합니다. 송여해(宋汝諧)는 범죄가 가볍지 않으니 현직(顯職)에 서용(敍用)할 수 없으며, 안진생(安晉生)은 과연 나약한 사람이며, 채숙저(蔡叔渚)도 또한 경력이 없으니 아마 임무를 감내하지 못할 듯하오며, 이균(李鈞)은 일찍이 수원 부사가 되어 이민(吏民)들이 사랑하고 사모하였으니 지금 제용감 정(濟用監正)을 임명한들 무엇이 불가하오리까.”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드리기를,

“동청례(童淸禮)는 다른 종족(種族)이니 대간(臺諫)이 아뢰 바가 과연 옳으며, 송여해(宋汝諧)는 일찍이 헌납(獻納)을 지냈고 우연히 죄를 범하였으니 지금 도사(都事)로 삼는 것이 함부로 임명하는 일은 아닌 듯하오며, 안진생(安晉生)은 비록 잔약(殘弱)하지만 출신(出身)



이 문과(文科)이고 평해(平海)는 궁벽한 고을이니 그 임무를 감내할 것이오며, 채숙저(蔡叔渚)는 내력이 없으므로 어진지 여부는 신도 알 수 없어 감히 억측하여 의논할 수 없사오며, 이균(李鈞)은 수원 부사로 있는 지 6년만에 자못 치적(治績)이 있었으니 지금 제용감 정으로 임명하는 일은, 신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은 의논드리기를,

“동청례는 선왕(先王) 때에 무과(武科)의 초시(初試)·중시(重試)에 합격했으며, 또한 그 외조가 종성인(宗姓人)입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전일에 위장(衛將) 등 관직을 제수할 만하다고 의계(議啓)한 것입니다. 송여해(宋汝諧)의 일은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니며 또한 6년을 지나 여러 번 사유(赦宥)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중추부 도사(中樞府都事) 역시 현직(顯職)이 아닙니다. 이균(李鈞)은 부정(副正)으로서 정(正)에 승진되는 것은 관례이며, 안진생(安晉生)은 신이 그 사람됨을 자세히 알지 못하오며, 채숙저(蔡叔渚)는 내력이 과연 알으니 대간(臺諫)의 아뢰 바가 타당한 듯하옵니다.” 하니, 성준(成俊) 등의 의논을 좇았다.

○尹弼商議：“童清禮之事，果如憲府所啓。安晉生文科出身，年且不老。其於骨鯁之風雖少，守令之職，何不堪之有？叔渚之爲人，臣則不知。” 慎承善議：“童清禮雖是胡人，向化有年，與我國人物何異？但摠領禁兵不可。宋汝諧罪犯匪輕，不可顯敘。安晉生果罷軟，蔡叔渚亦無來歷，恐未堪任。李鈞曾宰水原，吏民愛慕。今授濟用正，有何不可？” 鄭文炯議：“清禮異類，臺諫所啓果是。宋汝諧曾經獻納，偶爾犯罪，今爲都事，恐非濫授也。安晉生雖殘弱，出身文科，平海僻邑，可堪其任。蔡叔渚無來歷，賢否臣未知之，未敢臆議。李鈞水原府使六年，頗有治效。今授濟用正，臣以爲晚也。” 韓致亨·成俊·李克均議：“童清禮先王朝中武科初·重試，且其外祖宗姓人也。故臣等於前日，以可授衛將等職議啓。宋汝諧事，非身犯之罪，且經六年，累蒙赦宥，樞府都事，亦非顯職。李鈞以副正陞正例也。且安晉生臣未詳其爲人。蔡叔渚來歷果淺，臺諫所啓似當。” 從俊等議。”

<연산군일기 38권, 연산군 6년 7월 10일(임술) 4번째기사>

## 정치/행정

경기 관찰사에게 수원부 용성 부곡에 수령이 필요한지를 아뢰게 하다

밤 2경에 전교하기를, “수원부(水原府)의 용성 부곡(龍城部曲)이, 토지의 광협(廣狹)과 민정(民丁)의 다소가 수령을 두어야 하겠는지 여부를, 경기 관찰사에게 명하여 상고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이것은 흥청의 족친으로서 용성에 사는 자가 그 현(縣)을 회복하여 자기가 현감이 되려고 하여서, 이런 전교가 있었다.

○二更傳曰：“水原府龍城部曲，土地廣狹，民丁多少，置守令當否，令京畿觀察使，考審以啓。” 有興清之族，居龍城者，欲復其縣，自爲縣監，故有是傳。

<연산군일기 60권, 연산군 11년 12월 27일(정축) 5번째기사>

## 정치/행정

유순이 감사가 순행할 때 광주나 수원의 판관이 물선을 봉진할 것을 제안하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경기의 물선(物膳)은, 감사(監司)가 출순(出巡)한 때에는 역승(驛丞)·도승(渡丞)이 감장(監掌)하여 봉진(封進)하니, 사체(事體)가 미안합니다. 광주(廣州)·수원(水原)의 판관(判官) 중에서 1원(員)이 와서 일을 보살피서 봉진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고, 신준(申浚)·김감(金勘)·정미수(鄭眉壽)의 헌의(獻議)도 거의 같았고, 김수동(金

壽童)·노공필(盧公弼)·성희안(成希顔)·민효증(閔孝曾)은 전례대로 함이 온편하다고 아뢰었고, 유순정(柳順汀)은 의논드리기를,

“유빈(柳濱)이 아뢴 바와 같이 군직(軍職) 및 별좌(別坐) 중에서 가려서 겸도사(兼都事)로 삼아, 관찰사가 순행(巡行)할 때에는 영고(營庫)에서 일을 보살피 봉진하게 하고, 관찰사가 낭관(郎官)의 예(例)에 따라서 포폄(褒貶)함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고, 박건(朴楗)은 의논드리기를,

“겸 도사는 조종(祖宗) 때부터 없던 일입니다. 차사원(差使員)을 항정(恒定)하여 같지 않으므로 폐해를 짓는 자가 있으니, 서로 갈아서 차정(差定)하면 폐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제 의논한 바를 보건대, 전례대로 하기를 청하는 사람이 많으며, 또 조종조에서 도승으로 하여금 감봉(監封)하게 한 지 이미 오래이니, 많은 편을 따라서 전례대로 함이 옳을 것이다. 그 분수에 넘치는 일은 관찰사가 규찰(糾察)하라.” 하였다.

○柳洵議: “京畿物膳, 監司出巡時, 驛·渡丞, 監掌封進, 事體未安. 廣州·水原判官中, 一員來仕封進何如?” 申浚·金勘·鄭眉壽議亦略同, 金壽童·盧公弼·成希顔·閔孝曾議: “仍舊爲便.” 柳順汀議: “如柳濱所啓, 軍職及別坐中擇爲兼都事, 觀察使巡行時, 則仕營庫封進, 觀察使依郎官例, 褒貶便當.” 朴楗議: “兼都事自祖宗所無之事. 差使員恒定不遞, 故作弊者有之, 相遞差定, 則弊可祛矣.” 傳曰: “今觀所議, 請仍舊者多, 且自祖宗朝, 令渡丞監封已久, 從多仍舊可也. 其汎濫事, 觀察使糾之.”

<중종실록 6권, 중종 3년 7월 2일(무술) 4번째기사>

## 정치/행정

### 사헌부가 수원판관 이양필 등을 도태할 인원으로 서계하다

(…) 헌부(憲府)가 도태하여야 할 인원을 서계(書啓)하기를,

“사의(司議) 경연(慶緣)·사평(司評) 유응대(柳應臺)·한성 판윤(漢城判尹) 정광좌(鄭光佐)·겸참군(兼參軍) 이사겸(李思謙)·형조 좌랑 오세창(吳世昌)·의금부 경력(禁義府經歷) 남적윤(南嫡胤)은 송사 다스리는 데 합당치 않으며, 김형보(金荊寶)·정삼산(丁三山)·박운(朴韻)·강기수(姜期壽)는 관직에 있으면서 조심하지 않으며, 박항(朴恒)·민정(閔精)·박수경(朴守經)·최칭(崔僞)·채연(蔡年)·김환(金渙)은 게을러 일을 보지 않으며, 임결(任傑)·정승효(鄭承孝)·한종근(韓宗根)은 조관에 합당치 않으니, 모두 파면해야 합니다.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 우楫(禹楫)은 농사일 맡아 하기에 합당치 않으며, 수원 판관(水原判官) 이양필(李良弼)은 탐독(貪瀆)하기 이틀데 없고, 제천 현감(堤川縣監) 오예손(吳禮孫)은 용렬함이 너무 심하며, 창원 부사(昌原府使) 김세희(金世熙)는 백성 다스리기에 합당치 않으니, 모두 직을 가소서.” 하였다.

○(…) 憲府書啓, “沙汰人員, 司議慶緣·司評柳應臺·漢城判尹鄭光佐·兼參軍李思謙·刑曹佐郎吳世昌·義禁府經歷南嫡胤, 治訟不合, 金荊寶·丁三山·朴韻·姜期壽, 居官不謹, 朴恒·閔精·朴守經·崔僞·蔡年·金渙, 懶不治事, 任傑·鄭承孝·韓宗根, 朝官不合, 皆可罷也. 奉常寺僉正禹楫, 不合於典農, 水原判官李良弼, 貪瀆無狀, 堤川縣監吳禮孫, 殘劣莫甚, 昌原府使金世熙, 治民不合, 請竝遞.” (…)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4일(계묘) 4번째기사>

정치/행정

사헌부가 도태할 인원을 아뢰지 서울에서 가까운 수원 판관만 갈라고 전교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 또 이양필 등의 체직(遞職)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김형보 등은 모두 송서(送西) 하도록 하라. 수령은 영송(迎送)하는 폐가 있으니, 서울에 가까운 수원 판관만 갈라. 나머지는 다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臺諫啓前事. (...) 又請遞李良弼等職. 傳曰: “金荊寶等, 皆可送西. 守令迎送有弊, 其只遞近京水原判官. 餘皆不允.”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5일(갑진) 3번째기사>

정치/행정

간원이 체직할 관직을 아뢰자 포천현감을 수원판관의 사례대로 체직하라 전교하다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전설사 수(典設司守) 박수경(朴守經)·봉상시 부정(奉常寺副正) 장충보(張忠輔)·제용감 부정(濟用監副正) 성희철(成希哲)은 병으로 일을 못하고, 조지서 별제(造紙署別提) 채연(蔡年)·동부 주부(東部主簿) 강이공(姜利恭)·평창 군수(平昌郡守) 박원장(朴元長)·제천 현감(堤川縣監) 오예손(吳禮孫)·포천 현감(抱川縣監) 임유(任瀏)는 잔약 용렬하여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며, 풍저창 직장(豐儲倉直長) 강기수(姜期壽)·서부 참봉(西部參奉) 조희보(趙希普)는 몸가짐을 근신하지 않으니, 모두 속히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충보·성희철·박수경 등이 병으로 일을 보지 못하면, 한관(閑官)을 제수하고, 채연·강이공·강기수·조희보 등은 송서(送西)하여 서용하라. 포천은 서울에서 멀지 않으니 수원 판관의 준례에 의하여 갈고, 제천·평창 등 고을은,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영송(迎送)의 폐가 있으니 갈 수가 없다.” 하였다.

○乙巳/諫院啓曰: “典設司守朴守經·奉常寺副正張忠輔·濟用監副正成希哲, 則病不治事, 造紙署別提蔡年·東部主簿姜利恭·平昌郡守朴元長·堤川縣監吳禮孫·抱川縣監任瀏, 則孱劣不堪任, 豐儲倉直長姜期壽·西部參奉趙希普, 則持身不謹, 請竝速遞.” 傳曰: “張忠輔·成希哲·朴守經等, 病不治事, 則可授閑官, 蔡年·姜利恭·姜期壽·趙希普等, 送西敍用. 抱川則距京未遠, 依水原判官例遞之. 堤川·平昌等官, 今當農月, 迎送有弊, 不可遞矣.”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6일(을사) 1번째기사>

정치/행정

윤시영을 수원 판관으로 삼다

홍숙(洪淑)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남곤을 병조 참판으로, 윤시영(尹時英)을 수원 판관으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윤시영이 갈려 올 때, 기명(器皿)·자리 등을 가져오고 다른 물건도 그와 비등하니, 관청 안이 도둑을 맞은 것 같았다.

○以洪淑爲司憲府大司憲, 南袞爲兵曹參判, 尹時英爲水原判官. 【史臣曰: “時英遞來時, 器皿鋪陳等物, 皆取來, 餘物稱是. 官中如被盜然.”】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4월 27일(병오) 4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판관 이양필 등을 파직하다

명하여, 창원 부사(昌原府使) 김세희(金世熙)·평창 군수(平昌郡守) 박장원(朴長元)·수원 판관(水原判官) 이양필(李良弼)·포천 현감(抱川縣監) 임유(任瀏)·제천 현감 오예손(吳禮

孫)을 파직하였다. 백성 다스림에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도태해야 한다는 논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命罷昌原府使金世熙·平昌郡守朴長元·水原判官李良弼·抱川縣監任瀏，堤川縣監吳禮孫。以治民不合，被汰故也。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일(경술) 7번째기사>

### 정치/행정

**시강관 김안로는 박담손이 수원판관일 때 대관의 추고로 파직되었다고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 시강관 김안로(金安老)는 아뢰기를,

“(…) 폐조(廢朝) 때 이극균(李克均)과 성준(成俊)이 정승으로 있으면서 바른말 하는 자를 싫어하니 그때 대간이 한 마디 말이 없었으므로, 홍문관이 논핵하여 대간을 모두 체직하였습니다. 이 때 박은(朴閔)이 홍문관 관원이었는데, 이극균과 성준이 **‘박은의 아비 박담손(朴聘孫)이 수원 판관(水原判官)이 되었을 때 대관(臺官)의 추고(推考)로 파직되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필코 박은을 중상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며, 이것이 빌미가 되어 사류들을 모조리 죽이는 화가 빚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사대당한 사람들의 원망하는 말을 대신·시중이 끝이 듣고 어전에 주달하여 상으로 하여금 대간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하고, 검토관(檢討官) 공서린(孔瑞麟)도 같은 뜻으로 아뢰었으나, 상이 비답하지 않았다.

○辛巳/御朝講. (...) 侍講官金安老曰: “近來少被臺諫論劾, 則輒懷怨望, 唱言曰: ‘(…) 廢朝時, 李克均·成俊爲政丞, 厭苦言者, 而其時臺諫無一言, 弘文館論劾盡遞. 朴閔時爲弘文館官員, 克均·成俊言曰: ‘朴閔之父聘孫, 爲水原判官, 臺官推考而罷之.’ 此必朴閔中傷而然也, 以此馴致殄殲士類之禍. 今此沙汰人怨望之語, 大臣·侍從信聽, 以達上前, 使上有疑臺諫之心, 甚非美事” 檢討官孔瑞麟, 亦啓之以此, 上不答.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3일(신사) 1번째기사>

### 정치/행정

**병조 판서 정광필이 수원 등의 고을에 하서할 것을 청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정광필(鄭光弼)이 정원(政院)에 와 사람을 물리치고 비밀히 아뢰어, 인천(仁川) 도독을 잡는 일에 정은부(鄭殷富) 등 7인으로 대장을 삼을 것과 **광주(廣州)·수원(水原)·부평(富平)·안산(安山)·과천(果川)·금천(衿川) 등 고을에 하서(下書)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兵曹判書鄭光弼來政院, 屏人秘啓: “仁川盜賊探捕事, 請以鄭殷富等七人爲大將. 又請下書于廣州·水原·富平·安山·果川·衿川等官.” 從之.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 4월 18일(임진) 2번째기사>

### 정치/행정

**대간이 수원 향사에서 시관이 피봉을 직접 떼는 등 과거법의 잘못과 부정을 말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논하고, 또 아뢰기를,

“근자에는 과거법이 엄격하지 못하여, 관시(館試) 때에 어떤 유생(儒生)이 일찍이 정시(庭試)에 장원하여 7분(分)을 얻었는데, 친구가 대작(代作)한 것이었습니다. 한성부(漢城府)에서 낸 의제(義題)는 체제가 완전하지 못하였으며, **수원(水原) 향시(鄉試)에서는 시관이 연**

사흘 동안 풍악을 울리며 술을 마신 데다가 피봉(皮封)을 떼는 일은 원래 봉미관(封彌官)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시관이 직접 떼어 허술한 일이 많았으며, 강원도 향시에서는 그 도의 거자(擧子)들이 빈공(賓貢)으로 온 사람들을 막자 시관이 금지하였는데, 그 거자들이 과장(科場) 밖으로 몰려나가 돌[石塊]을 마구 던져서 시관이 방 안으로 피해 들어가니, 다시 문을 밀고 도로 과장 안으로 들어가 제술(製述)하였으며, 충청도 거자들도 입문관(入門官)을 구타하였으며, 경기 시관은 섬들에 나와 거자들이 짓는 글을 보고 있는데, 거자들이 방(榜)을 내걸기도 전에 먼저 누가 지은 것이 합격할 줄을 알았으며, 서울의 무과(武科) 시험은 화살 수를 또한 감하고 시행하였으니, 그 공정하지 못함이 심합니다. 근자에 과장(科場)의 허술함이 한 군데만이 아니니, 과방(罷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과방하는 일은 대신들에게 의논하겠다.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臺諫論前事，又啓曰：“近者科擧之法不嚴，館試有一儒，曾庭試居首，得七分者，爲其友代作，漢城府出義題，體格不完，水原鄉試試官，連三日動樂飲酒，其割皮封，自有封彌官，而試官親割，事多虛疎，江原道鄉試，其道擧子，防其賓貢來赴者，試官禁止，其擧子等，闖出場外，亂投石塊，試官避入房中，復排門，還入場中而製述，忠清道擧子，亦毆入門官，京畿試官臨階，見擧子所製之文，爲擧子者，未出榜之前，先知某作入格，京中武科矢數，亦減施行，其不公甚矣，近者場屋虛疎，非一處，請罷榜，(…)” 傳曰：“罷榜事，當議于大臣，餘不允。”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9월 26일(정유) 4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헌부에서 수원 등의 시관을 추고하였으니 파방해야 한다고 간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장단(長湍)·수원(水原)의 시관(試官)은, 이미 추고(推考)하여 사실이 적실하니, 속히 파방(罷榜)해야 합니다. 외방(外方)의 과거(科擧) 보이는 법이 엄격하지 못하여 자주 이런 폐단을 내니, 어사(御史)를 보내어 시취(試取)하면 반드시 공정할 것입니다. 또 무과(武科)를 획수(畫數)로 뽑음은 불가하니, 바라건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액수(額數)대로 뽑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과방(罷榜)하는 일은 마땅히 상량(商量)하여 다시 말하겠다.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臺諫啓前事，憲府又啓曰：“長湍·水原試官，已推的實，當速罷榜也，外方科擧之法不嚴，屢致此弊，若遣御史而試取，則必公正矣，且武科取以畫數不可，請依『大典』，取以額數。” 傳曰：“罷榜事，當商量更言之，餘不允。”

<중종실록 17권, 중종 7년 10월 14일(갑인) 5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헌부에서 김해 부사 이성언과 수원 부사 문근의 교체의 개정을 청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김해 부사(金海府使) 이성언(李誠彦)과 수원 부사(水原府使) 문근(文瑾)을 서로 바꾸었는데, 당초에 이성언을 김해로 보낼 적에 ‘대간(臺諫)과 홍문관(弘文館)이 무재(武才) 있는 사람을 가려서 차임(差任)하자고 하기 때문에 성언이 장령(掌令)으로서 차견(差遣)에 의망(擬望)되었다.’ 고 분부하셨으니, 이는 김해를 중히 여기신 것인데 이제는 가까운 도(道)로 서로 바꾸었으니, 당초의 뜻과는 반대됩니다. 입법(立法)이 미덥지 못하므로 우리 나라는

오래 쓰는 법이 없으니, 성언과 문근을 바꾸지 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언의 어미가 상언(上言)하였기 때문에 가까운 도(道)로 바꾸라는 것을 이미 판부(判付)하도록 하였으나, 오늘 정사(政事)에 문근이 수원 부사가 되었으니, 전례에 따라 바꾼 것이다. 나머지도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臺諫啓前事. 憲府又啓曰: “金海府使李誠彥·水原府使文瑾相換. 其初遣誠彥于金海也, 教以臺諫·弘文館有武才人擇差, 故誠彥以掌令擬遣, 此重金海也. 今乃以近道相換, 其與初意反矣. 立法不信, 故我國無久用之法. 誠彥·文瑾請勿換.” 傳曰: “誠彥之母上言, 故近道相換事, 已令判付, 而今日政, 文瑾爲水原, 依例相換矣. 餘亦不允.”

<중종실록 17권, 중종 7년 11월 11일(신사) 3번째기사>

### 정치/행정

대간이 수원부사 이순언이 이천군수로 있을 때 전렵으로 민폐를 끼쳤으니 체차를 청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감찰(監察) 최인수(崔仁壽)가 전에 나주 판관(羅州判官)이 되어 탐오(貪污)를 자행하고 장사치의 일을 하는가 하면, 그 관기(官妓)를 간통하였으니, 그대로 사판(仕版)에 둘 수 없다.’ 는 것을 아뢰었고, 헌부(憲府)가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순언(李純彦)이 전에 이천 군수(利川郡守)가 되어 전렵(田獵)을 즐겨 백성이 피해를 입었으니 체직하기를 청한다.’ 는 것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臺諫啓前事. 又啓: “監察崔仁壽, 前爲羅州判官, 恣行貪污, 忍爲商賈之事, 且通其官之妓, 不可置仕版.” 憲府啓: “水原府使李純彦, 前守利川, 好田獵百姓受弊, 請遞.” 皆不允.

<중종실록 18권, 중종 8년 3월 16일(을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이성언을 수원부사로 삼다

박열(朴說)을 예조 판서로, 조계상(曹繼商)을 창녕군(昌寧君)으로, 이성언(李誠彦)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以朴說爲禮曹判書, 曹繼商爲昌寧君, 李誠彦爲水原府使. (…)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6월 28일(계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헌부가 장흠을 수원판관으로 구임하면 변방의 일을 모르게 된다고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단천(端川)이 비록 북도(北道)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지(內地)이기 때문에 무력(武力)을 쓸만한 곳이 아닙니다. 새로 차임(差任)한 군수(郡守) 이몽린(李夢麟)은 무재(武才)가 있어 쓸만한 사람이니 모름지기 체력이 건장할 때에 변방(邊方)에 써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 6년이 지난다면 기력이 반드시 쇠하여질 것입니다. 장흠(張屹)은 무재만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文字)도 압니다. 만약 수원 판관(水原判官)에 구임(久任)시킨다면 전혀 변방의 일을 모르게 될 것이고 또 부임(赴任)하고 나서 변방으로 체환(遞換)시킨다면 도리어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집의(執義) 어득강(魚得江)은 전에도 병이 있어 오지 못하였으니, 지금 비록 올라오더라도 집의는 한관(閑官)이 아닌데 만약 다시 병이 나게 되면 한갓 폐단만을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모두 체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였

다.

○憲府啓曰：“端川雖北道，實是內地，非用武之地。新差郡守李夢麟有武才可用之人，須於膂力方壯之時，用之於邊方。今若過六期，則氣力必衰。張屹非但有武才，亦解文字，若久任水原判官，則全不知邊事。既赴之後，遞換邊地，反爲有弊。執義魚得江前亦有病不來。今雖上來，執義非閑官，若復有病，則徒有弊而已，請竝遞。” 傳曰：“皆如啓。”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3일(임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헌부가 수원부사였던 풍저창 수 김석현을 체차하라고 간하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풍저창 수(豐儲倉守) 김석현(金錫賢)은 전에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있다가 논박받아 갈린 지 오래지 않고,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 허연(許衍)은 장리(贓吏)의 아들이고, 이천 부사(利川府使) 김수경(金壽卿)은 벼슬살이를 삼가지 않았고, 교서관 교리(校書館校理) 이적(李迪)은 육조(六曹)의 낭관(郎官)을 지내지 않았는데 높여 서용(敍用)하는 것이 온편치 못하고, 봉상시 판관(奉常寺判官) 조연(趙演)은 처신이 깨끗하지 않으니 다 가소서.”

하였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

○憲府啓曰：“豐儲倉守金錫賢，前以水原府使，駁遞未久。宗親府典簿許衍，贓吏之子。利川府使金壽卿，居官不謹。校書館校理李迪，未經六曹郎官，而陞敍，未便。奉常判官趙演，持身不潔，請皆遞之。” 皆不允。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11월 29일(을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부사 김창의 파직 문제를 삼공에게 의논하도록 지시하다

전교하기를, “지금 경연(經筵)에서 전한(典翰) 임권(任權)이, 수원 부사 김창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 정부 낭관(政府郎官)을 불러 삼공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매, 삼공이 의논해서 아뢰기를,

“조정의 교화는 으레 기전(畿甸) 지방이 먼저 입어야 하고, 교화의 근본은 실로 조정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김창 한 사람이 잘 교화하지 못해서 이런 극악의 변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원은 큰 고을이요, 김창은 부임(赴任)한 지 오래라서 고을 일을 익히 알고 있는데다가 관사(官事)에 부지런하고 삼가므로 백성들도 편케 여깁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이 온당한 것 같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傳曰：“今於經筵，典翰任權，以水原府使金瑫仍任爲未便云。其招政府郎官，議諸三公。”

三公議啓曰：“朝廷教化，固當先被畿甸，而教化之本，實在於朝廷。豈由於金瑫一人，不能教化而致此極惡之變哉？水原乃大邑，而金瑫赴任已久，慣識邑事。且勤謹官事，民亦便之。臣等之意，仍任爲便。” 傳曰：“知道。”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일(임자)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헌부에서 김창을 수원부사로 유임하는 것은 구차스러우니 체직하기를 청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장흥 부사(長興府使) 장언량(長彦良)은 변방(邊方)에는 쓸 만하지만 내지(內地)의 수령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수원(水原)의 일은 인륜의 큰 변괴이므로 읍호(邑號)를 강등시키는 것은 바로 백성에게 큰 변이라는 것을 보이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김창(金瑒)을 그대로 유임(留任)시킨 것은 구차스럽습니다. 황필(黃瑋)은 본디 덕망(德望)이 없어 사림(士林)의 경시를 받고 있으니 대사성(大司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공조 판서(工曹判書) 한형윤(韓亨允)은 본디 물론이 있었으니 육경(六卿)에 합당치 않습니다. 아울러 체직시키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丁卯/臺諫啓前事. 憲府又啓: “長興府使張彦良, 可用於邊方, 而不合內地守令. 水原之事, 人倫大變, 其降邑號, 乃所以示民以大變之意, 而仍任金瑒苟且. 黃瑋本無物望, 士林輕賤, 不合大司成. 工曹判書韓亨允, 本有物論, 不合六卿, 請竝遞.” 皆不允.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6일(정묘)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중종이 대간의 의견대로 수원(水原)의 일은 윤택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황필·윤희평과 수원(水原)의 일은 아뢴 대로 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臺諫啓前事, 黃瑋·尹熙平·水原事如啓, 餘皆不允.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8월 18일(기사)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水原) 군수 김구의 체차와 부호군 홍계신의 파직, 선농제 거행 등에 관해 헌부가 건의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경기(京畿)의 번극(煩劇)한 고을이며 인물이 많고 지역이 크므로 재간과 명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잘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군수(郡守) 김구(金鉤)는 그 재간이 변지(邊地)에 있어서는 넉넉하거니와, 내지에서 자목(字牧)하는 직임에는 맞지 않으므로 혹시 변지에 사변이 있으면 부득이 옮겨 써야 할 것인데, 이 고을은 요즈음 자주 교체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것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으니 가소서. (…)” 하니, 전교하였다. “(…) 나머지는 다 윤택하지 않는다.”

○臺諫啓前事. 憲府啓: “水原, 畿甸劇郡, 物衆·地大. 若無才望之人, 則難以善治. 郡守金鉤其才幹, 在邊地則優矣, 內地字牧之任則不合. 幸邊地有事, 則不得已移用. 此郡近有數遞之弊, 亦不可不計. 請遞. (…)” 傳曰: “(…) 餘皆不允.”

<중종실록 64권, 중종 24년 1월 9일(병오) 2번째기사>

### 정치/행정

간원에서 수원(水原)군수 때 권귀에게 아부했던 병조 정랑 김면을 체직시키도록 청하다

헌부가 서지(徐祉)의 일을 아뢰니 그대로 윤택하였다. 간원이 아뢰기를,

“병조 정랑 김면(金沔)은 서경(署經) 기한을 세 번이나 넘겼으니 체직시키소서. 【면은 지난 기묘년에는 소학(小學)의 도리를 가탁하여 이름을 낚아 세상을 속였었다. 그러다가 뒤에 소학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자, 지론자(持論者)에게 뇌물을 들고 가서 자신은 소학을 추앙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적에 통곡하면서 해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원(水原)군수(水原郡守)로 있을 적에는 권귀(權貴)들을 잘 섬겼으므로 채무역(蔡無戮)과 허항(許沆)의 집에는 그의 뇌



물이 끊길 때가 없었다. 그가 권세자에게 빌붙는 작태가 대체로 이러하였다.】 (…)”

하니, 전교하였다. “(…) 김면(金沔)의 일에 대해서는 알았다.”

○乙丑/憲府啓徐祉事，依允。諫院啓曰：“兵曹正郎金沔，署經已越三度，請遞。【『沔』，頃在己卯之歲，假托小學之道，釣名欺世。其後斥其小學之事，則奔競持論之處，發明其不爲，或至痛哭揮淚而明之。其爲水原郡守也，善事權貴，若蔡無斃·許沆之家，則賂遺無日不行，其爲趨附權勢之態，大概如此。】 (…)” 傳曰：“(…) 金沔事，知道。”

<중종실록 71권, 중종 26년 6월 12일(을축)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정원에서 경기 감사의 서장에 의거하여 수원 군수 김언의 파직을 청하다

정원이 경기 감사 김희열(金希說)의 서장을 입계(入啓)하기를,

“수원 군수(水原郡守) 김언(金彦)은 고을 사람들이 완악하고 사나우며 함부로 거슬러 그의 영(令)을 따르지 않아 어그러지는 일이 많으므로, 관직에 있기 어려운 형세라 하여 병을 핑계하여 정사(呈辭)하고 직무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도(無道)한 고을 사람들을 이미 이 도(道)의 도사(都事) 이당(李塘)을 시켜 추국(推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변이가 크게 관계되는 일은 예사롭게 추국할 수 없으니, 경관을 보내어 끝까지 추궁하여 엄히 다스려서 습속을 바꾸소서. 김언은 이런 변이의 일을 당하여 엄명하게 진복(鎭服)시키지 못하고 흐릿하고 경솔하게 마음대로 관소(官所)를 떠났으니, 먼저 파직한 뒤에 추국하소서. 또 수원은 경기의 큰 고을이므로 천사가 오는 때를 당하여 그 직무를 오래 버려 둘 수 없으니 빨리 고쳐 차출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수원 사람의 변이에 관한 일은 경관을 보내어 상세히 추국하라. 김언은 진복시키지 못하고 경솔히 스스로 직무를 버려서 관인(官人)의 체모를 심하게 잃었으니, 전지(傳旨)를 받들어 추국하라.”

○政院以京畿監司金希說書狀入啓曰：“水原郡守金彦，以其邑人，頑暴橫逆，不從其令，多有悖戾之事，勢難在官，托病呈辭，棄官還家。其邑人之無道者，已令此道都事李塘推鞠矣。然如此變異，大關之事，不可尋常推訊。請遣京官，根究深治，以革其俗。金彦則遭此變異之事，不能嚴明鎭服，而朦朧輕率，擅離官所。先罷後推。且水原，畿內鉅邑，當此天使之時，不可久廢其職，請速改差。” 傳曰：“水原人變異之事，可遣京官，詳悉推鞠。金彦不能鎭服，輕自棄官，殊失官人之體。其奉傳旨推之。”

<중종실록 83권, 중종 32년 1월 2일(임오)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정백봉이 형조판서로서 뇌물을 받고 수원군의 노비를 채우지 않았다

(…) 사신은 논한다. 과거에 수원군에 노비(奴婢)가 모자라 절의 노비를 뽑아 줄 적에 정백봉이 형조 판서로 있었는데, 수원군에 새로 소속된 노비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므로 그것을 형조에 내려보냈다. 백봉이 뇌물을 받고서 군 노비의 원래 정원은 채우지 않아서는 안 되나 더 줄 필요는 없다 하고는 드디어 그들을 절로 돌려보내자고 아뢰었다. 그래서 물의가 비등하여 오랫동안 그치지 아니하였다.

○(…) 【史臣曰：“初，水原郡奴婢不足，以寺社奴婢抄給。時，百朋爲刑判，右郡新屬奴婢等，申訴其冤事，下刑曹。百朋受賂以爲，郡奴婢元定之數，不爲不充，不宜加給，遂啓還屬寺社。人議騰囂，久而不止。”】

<중종실록 87권, 중종 33년 6월 21일(임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군기시 부정 김언가 수원군수로 있을 때 권귀에 아부하고 일을 돌보지 않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군기시 부정 김언(金澆)은 지난번 수원 군수로 있을 때 오로지 권력자에게 아부만을 하고 관사(官事)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 읍사람들이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중죄를 덮어씌우려고 은밀히 용사(用事)하는 사람【채무택이 그때 대사헌으로 있었다.】에게 부탁하여 고의로 벼슬을 버려서 논란이 나오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죄에 빠뜨렸으니, 몹시 무상(無狀)합니다. 이 사람을 서용한 것만도 큰 은혜인데, 지금 또 승서(陞敍)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개정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戊寅/諫院啓曰: “軍器寺副正金澆, 前爲水原郡守時, 專務事人, 不恤官事, 且常疾邑人不從其令, 欲置重罪, 陰囑用事之人, 【蔡無擇, 時爲大司憲.】故爲棄官, 使發其論, 陷人非辜, 至爲無狀. 收敍已足, 今又陞敍未便, 請改正.” 傳曰: “如啓.”

<중종실록 90권, 중종 34년 5월 11일(무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유생 최덕홍이 수원의 명칭을 다시 승격시켜 줄 것을 건의하다

이조(吏曹)가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생원(生員) 최덕홍(崔德洪) 등이 상소(上疏)를 올린 일은 이미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수원의 명칭을 낮춘 지 이미 10여 년이 되어【병술년에 이 고을 사람 중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자가 있어 부(府)를 낮추어 군(郡)으로 하였다.】물론(物論)이 모두, 이제 마땅히 다시 승격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조정과 함께 의논하여 낮춘 것을 이제 본조가 독단으로 처리하기가 미안하니, 조정과 의논하여 처리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나도 대신들과 의논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대악(大惡)이 있었던 곳을 징계하고자 하여 명칭을 낮추었던 것이니, 이제 비록 물정이 이렇더라도 고칠 수 없다. 해사(該司)에 내린 것은 방계(防啓)하도록 함이었다.”

○丁酉/吏曹啓曰: “水原生員崔德洪等上疏, 曾已啓下. 水原降號, 今已十餘年, 【丙戌年, 郡人有子殺父者, 降府爲郡.】物論皆以爲, 今當復陞, 然當初與朝廷議降, 今自曹獨處未安. 請與朝廷議處.” 傳曰: “予亦非不知收議大臣也. 大抵大惡所在處, 欲其有所懲戒, 故降號. 今雖物情如此, 不可改也. 下該司者, 欲其防啓也.”

<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 9월 3일(정유)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성균관 사성 김백순이 수원군수로 있으면서 잘못된 일이 많으니 파직하라

헌부가 아뢰기를,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김백순(金伯醇)은 전에 수원 군수(水原郡守)로 있을 때 잘못된 일이 많았고, 또 체직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3품으로 승급시키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개정하소서.

장원(掌苑) 신수경은 오만하게 법사(法司)를 업신여겼으니 매우 해괴하고 경악스럽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우선 먼저 파직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憲府啓曰：“成均館司成金伯醇，前爲水原郡守時，多有所失，且經遞未久，遽陞三品，至爲未便，請改正。掌苑申秀溼，驕亢不有法司，甚爲駭愕。姑先罷職，請勿留難。” 答曰：“皆如啓。”

<중종실록 92권, 중종 34년 10월 14일(무인) 4번째기사>

### 정치/행정

#### 사헌부에서 수원군수에 제수된 성군의 체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 수원(水原)은 경기에서는 큰 고을이요 지역도 넓고 사람과 물산이 많기 때문에 예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일컬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군수(郡守)가 된 자는 반드시 명망이 있어야만이 진복(鎭服)시킬 수가 있는데, 군수 성군(成謹)은 남행(南行)으로서 별로 진복시킬 수 있는 재능이 없습니다. 체직시키고 명망이 있는 문관(文官)을 가려쳐 차임하소서. (…)” 하니, 답하였다. “수원은 사람과 물산이 많고 지역이 넓다는 말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군이 남행이기는 하지만 이미 수령을 역임했었으니 개차할 것 없다. (…)”

○憲府啓曰：“(…) 水原，畿甸巨邑，地大物衆，古稱難治。爲守者，須有名望，可以鎭服。郡守成謹，以南行，別無鎭服之才，請遞.(…)” 答曰：“水原物衆地大之言，果然。成謹雖南行，已經守令，不須改也. (…)”

<중종실록 93권, 중종 35년 5월 19일(경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사헌부가 수원군수 성군을 체차하길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 수원은 인물도 많고 지역도 넓어서 본디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일컬어진 곳이므로 명망이 있는 문신이 아니면 진복(鎭服)시킬 수 없습니다. 군수 성군(成謹)은 명망이 없어서 진복시킬 수가 없을 것이니, 체직시키고 가려서 제수하소서. (…)” 하니, 답하였다. “(…) 성군 등은, 수령에 제수할 만한 사람이 모자라니 체직할 필요가 없다. (…)”

○憲府啓曰：“(…) 水原，物衆地大，素稱難治，非有名望文臣，不能鎭服。郡守成謹，無名望，不能鎭服，請遞擇差. (…)” 答曰：“(…) 成謹等，大抵守令可爲之人乏矣，不須遞也. (…)”

<중종실록 93권, 중종 35년 5월 24일(을묘)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경기 수원 등 15개 고을이 실농이 매우 심하다고 아뢰다

(…) 양연(梁淵)이 아뢰기를, “신이 진휼(賑恤)하는 책임을 맡았으나 조치한 일이 없습니다. 시행해야 할 절목(節目)은 이미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굶주린 많은 백성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6도【경기·충청·황해·강원·전라·경상.】가 극심한 흉작인데 그 중에서도 경상도가 더욱 심하여 구제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도는 본래 전라도와는 달리 곡식이 적은데다 상·하(上下)의 도에 실농한 곳이 매우 많아 조정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 지방도 한강 이남의 15개 이

상의 고을 【과천(果川)·이천(利川)·안산(安山)·인천(仁川)·양성(陽城)·음죽(陰竹)·안성(安城)·광주(廣州)·수원(水原)·용인(龍仁)·양지(陽智)·진위(振威)·남양(南陽)·여주(驪州)·부평(富平).】 이 경상도처럼 실농이 매우 심하고 충청도가 그 다음입니다.  
(…)

○ (…)  
知事梁淵曰：“臣任賑恤之責，措置之事，計無所爲。可行節目，已啓下矣，然不可以此賑救許多飢民。今年六道，【京畿·忠清·黃海·江原·全羅·慶尙.】凶荒已極，其中慶尙道尤甚，賑救最難。此道穀本不多，非全羅道之比，上下道失農處甚多。朝廷不另加措置，則救活難矣。京畿漢江以南十五餘官，【果川·利川·安山·仁川·陽城·陰竹·安城·廣州·水原·龍仁·陽智·竹山·振威·南陽·驪州·富平.】失農尤甚，與慶尙道無異也，忠清道其次也。  
(…)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1월 29일(신해) 1번째기사>

### 정치/행정

**간원이 수원의 읍호 강등의 부당함을 아뢰니 조정에게 의논하게 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아비를 살해한 일로 읍호를 바꾸거나 강등시키는 것을 경전(經傳)과 법전(法典)에 상고하여 보아도 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조항은 꼭 창설할 것이 못됩니다. 왕도의 정치는, 선을 권장함은 반드시 대대로 미치게 하고 악을 벌줌은 그 자신에만 한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과가 저택을 하여 일찍이 살던 곳까지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은 엄하게 제거하고 끝까지 다스려서, 천지간에 용납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 매우 깊고 절실하니, 또 무엇을 더하겠습니까?

수원(水原)의 읍호를 강등한 후에 효경(梟獍)의 무리가 연이어 나오니 한갓되이 정령(政令)만 번거로울 뿐이고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는 보탬이 없는 것임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이 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품 이상의 고을에는 행할 수 있지만 그 이하의 고을에는 장애가 있고 서울에는 이러한 변이 있더라도 호칭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법의 적용이 일정하지 못하고 편벽되어 시행되지 못하는 곳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성왕(聖王)의 제도이겠습니까? (…)

하니, 답하였다.

“그 논의가 각기 다르다. 강등하고 바꾸는 일을 시종과 대간이 아울러 아뢰므로 대신과 의논하였더니 대신의 뜻도 그러하므로 이미 승전을 받들게 하였는데, 이번에 아뢴 뜻이 매우 합당하다. 경전과 법전을 상고하는 일은 그때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다. 홍문관의 해당 관원으로 하여금 상고하게 한 후에 널리 조정의 의논을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라.”

○己丑/諫院啓曰：“以殺父之故，改號·降號，考之於經，稽之於法，皆無所取，如此新立之科，不須創設。王者之政，勸善必延于世，罰惡只誅其身。彼破家瀆宅，併與所嘗居而盡滅之者，痛絕極治，不容天地之意，至深至切，又何加乎？水原降號之後，梟獍之類，接踵而出，則徒爲政令之煩，無補於治化，益可知矣。此法假令施之，行於五品以上之邑，有礙以下之邑，京都又有此變，而亦未改號。用法不一，有偏廢不起之處，是豈聖王之制?(…)” 答曰：“其所議論各異。降改之事，侍從·臺官竝啓，而議于大臣，大臣亦以爲然，故已令奉承傳矣，今此啓意至當。稽考經法之事，其時不及計矣。令弘文館該官，稽考而後，廣收廷議，而爲之可也。”

<중종실록 100권, 중종 38년 4월 15일(기축)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주장에서 민세량이 수원 등 고을의 읍호 강등과 회복 문제에 대해 아뢰다

주장에 나아갔다. 시강관 민세량(閔世良)이 아뢰기를,

“읍호를 강등시키는 것은 큰 변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읍호를 회복하는 것은 한때의 폐단으로 인한 것이니, 강등시킨다면 모두 강등시켜야 하고 회복시킨다면 모두 회복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백천(白川)·영광(靈光)·수원(水原)·남해(南海) 같은 곳은 모두 예대로 회복하지 않고, 오늘날의 논의하는 이는 이미 오래된 일은 반드시 거론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원주의 변은 신축년에 발생했고 남해의 변은 경자년에 발생했으니 그 사이가 겨우 일년 사이인데, 원주의 읍호는 회복하고 남해는 회복하지 아니한다 함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강등시키고 않는 것은, 같은 사건인데도 법의 적용이 다르니 옳지 않다. 그 햇수가 원근(遠近)을 계산하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니,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해야겠다.”

○甲午/御晝講. 侍講官閔世良曰: “降號, 爲其大變之出也; 復號, 因其一時之弊也. 降之則皆降, 復之則皆復, 可也. 如白川·靈光·水原·南海, 則皆不復舊, 而今之議者以爲, 已久之事, 不必舉論. 原州之變, 出於辛丑, 南海之變, 出於庚子, 其間纔隔一年, 而復原州之號, 而不復南海, 至爲不當.” 上曰: “降與不降, 事同而法異, 果不可也. 計其年之久近, 未便. 當與大臣議定.”

<중종실록 100권, 중종 38년 4월 20일(갑오)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의정부가 수원의 대역 죄인으로 인한 읍호 처리 문제를 아뢰다

정부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 대역(大逆)을 저지른 자가 살던 곳의 읍호(邑號)를 낮추는 것은 근년부터 비롯한 것이지 고례(古例)가 아닙니다. 요즈음 악역(惡逆)을 저지른 자가 많기 때문에 읍호를 모두 낮출 수 없는 노릇이라 드디어 이미 낮춘 곳을 복구하자는 의논이 있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농사가 한창이었으므로, 읍호를 낮춘 각 고을의 수령을 일체 체차하면, 이민(吏民)들이 새 수령과 옛 수령을 맞이하고 보내느라 지쳐서 농사에 크게 방해될 것이기에 우선 멈추었던 것입니다. 수원(水原)은 땅이 크고 백성이 많아서 직무가 다른 고을보다 훨씬 많으므로 한 명의 관원이 혼자 다스릴 수 없는 곳입니다. 일이 잘못되는 것이 많아서 백성이 적잖이 피해를 받는 것은 과연 말한 자 **【최보한(崔輔漢).】**가 아뢰는 것과 같으니, 이제 같아서 옛 읍호를 회복하게 하고 부사(府使)와 판관(判官)을 아울러 차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머지 읍호를 낮춘 각 고을도 위의 예에 따라 각각 그 수령을 체차(遞差)할 때에 폐단이 없도록 읍호를 높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대신이 아뢰기를, “재상(災傷)을 착오나게 한 수령 등을 치죄하는 법이 국법에 실려 있는데 이렇게 아뢰는 것은 지극히 미안합니다마는, 수원의 백성들이 길을 막거나 본부(本府)의 뜰을 메우고는 머무르기를 바라서 진소(陳訴)하기를 ‘우리 태수(太守)가 다스린 업적은 근고에 없던 것인데 이제 파직당하게 되었으니 마음이 답답하기가 한이 없다.’ 합니다. 이것은 신들이 듣고 본 일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였다.

“재상을 착오나게 한 다른 수령들은 이미 파직시켰는데, 이 사람만을 그대로 맡겨둔다면, 죄는 같은데 벌이 달라서 뒤폐단이 있을 듯하다. 그러므로 다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겠거니

와, 요즈음에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른 폐단이 있으니, 또한 온편하지 못하다. 그 밖의 의논한 일은 다 윤택한다.”

○甲子/政府議啓曰：“(…) 大逆所居，降其邑號，始自近年，非古也。比因惡逆多出，所在邑號，勢不可盡降，遂有並其已降處復舊之議。第以其時民事方殷，降號各邑守令，一切遞差，則吏民等疲於新舊迎送，大妨農務，故姑停之。水原地大民衆，職務浩繁，倍萬他官，固非一員所能獨理。事多闕遺，民多受弊，果如言者【崔輔漢.】所啓，今當遞易，陞復舊號，府使·判官，并令差出爲當。他餘降號各邑，亦依右例，各其守宰遞差時無弊，陞號何如？(…) 凡災傷踏驗時，委官書員等，多用奸術，以致災傷失實，稅入不敷。丁玉亨·鄭士龍等所啓，詳悉摘奸，災傷都目與田稅案憑準之語，似或可行。但災傷失實者治罪之法，『大典』及踏驗事目，詳盡無餘，今不須別立新條。” 政府與該曹同議啓曰：“馬雖馴熟，如在喧擾之中，鮮不驚駭。謹按『五禮儀』註，世子侍衛在玄武隊之後，所謂玄武隊，卽百官前行也。自今，依禮文隨駕何如？” 大臣啓曰：“災傷差錯守令等治罪之法，載在國典，而如是啓達，至爲未安。但水原人民等，或於街路，或於本府，遮道滿庭，陳訴願留云：‘吾太守政跡，近古所無，今當見罷，私悶何限？’ 此臣等聞見之事，故敢啓。” 答曰：“他犯災傷守令已罷，此獨因任，則罪同罰異，恐有後弊，故皆不取實。近有罪同罰異之弊，亦爲未便。其他議事，皆允。”

<중종실록 101권, 중종 38년 9월 23일(갑자)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최언호를 수원도호부사로 삼았다.

최언호(崔彦浩)를 수원 도호부사로 삼았다.

○(…) 崔彦浩爲水原都護府使.

<명종실록 9권, 명종 4년 10월 2일(무술) 6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헌부가 수원 부사 최언호에 대한 3품의 관작이 부당함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 최언호는 벼슬길에 오른 지 5년 만에 갑자기 3품에 올랐으니 관작(官爵)이 너무나 외람됩니다. 더구나 공신은 마찬가지인데 안세우(安世遇)는 공신 가운데 서울에 있는 자가 적다는 이유로 곧바로 체직할 것을 계청하고, 최언호는 갑자기 부사(府使)로 승진시키는 등 한 달 사이에 의논이 일정하지 않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언호를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언호는 공신들 가운데 공이 더욱 크다. 관작이 너무 빨리 승진된 것 같으나 결코 고칠 수 없다.”

○憲府啓曰：“水原府使崔彦浩，筮仕五年，遽陞三品，官爵猥濫。況功臣一也，而於安世遇，則以功臣在京者乏少，啓請(經) [徑] 遞，於崔彦浩，則濫陞府使，旬月之間，議論無常，尤爲未便。請彦浩改正。” 答曰：“彦浩，功臣之中，其功爲大。官爵雖似驟陞，決不可改之。”

<명종실록 9권, 명종 4년 10월 3일(기해)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조사수가 수원부사로 있을 때 청렴하지 못하다는 평판이 있었다

(…) 조사수(趙士秀)를 동지성군관사로, 임보신(任輔臣)을 홍문관 교리로, 이희손(李希孫)을 통정 대부 경원 부사(慶源府使)로 삼았다. 【이희손은 종실(宗室)의 아들이다. 문과에 합

격하였는데 김안로(金安老)의 아들 기(祺)와 동년(同年)이었다. 그로 인해 김안로에 붙어 한림·병랑(兵郎)·정언을 역임했는데, 안로가 몰락하자 공론에 용납되지 못하였다. 수원 부사로 있을 때에도 청렴하지 못하다는 평판이 있었는데, 한 재상이 극력 천거하여 장령이 되었다. 구수담(具壽聃)이 죄를 입은 후에 이무강에게 붙어 수담의 죄를 마구 엮어대자 당시 사람들이 미원(薇垣)에서는 이무강이요, 상대(霜臺)에서는 희손이라 했으니, 이는 그 심술이 서로 같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경원 부사가 되니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겼다.】

○(…) 趙士秀爲同知成均館事，任輔臣爲弘文館校理，李希孫爲通政大夫慶源府使。【希孫，宗室之子也。中文科，與金安老之子祺同年。仍附於安老，得爲翰林·兵郎及正言，安老敗後，不容於公論。爲水原府使時，頗有不廉之稱，有一宰相，力薦爲掌令。具壽聃被罪之後，附會李無彊，凡羅織壽聃，無所不至，時人謂之薇垣之無彊，霜臺之希孫。蓋其心術，有相同也。至是爲慶源府使，人皆鄙之。】

<명종실록 12권, 명종 6년 11월 2일(병술) 6번째기사>

### 정치/행정

신여종이 수원부사로 있을 때 윤원형 하인의 행패를 방관하였다

(…) 신여종(申汝棕) 【경솔하고 용렬하여 자못 취할 바가 없다. 전번에 수원 부사로 있을 때 윤원형의 하인이 그 주인의 세력을 믿고는 심지어 옥을 부수고 들어가 죄수를 살해하기까지 하였으나 신여종이 그 하인을 마치 윤원형처럼 무서워하여 한마디 금지시키는 말도 없었으니, 그 위인됨을 여기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심통원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강원도 방백이 되기를 운동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다 그의 엄치 없음을 비웃었다.】 을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 申汝棕 【輕淺暗劣，殊無可取。前爲水原府使時，尹元衡之奴，恃其主勢，至於排獄殺囚，而汝棕畏其奴如畏元衡，曾無一言禁之。其爲人此亦可見矣。且捧沈通源之簡，求爲江原方伯，人皆笑其無恥。】 爲同知中樞府事。

<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 2월 15일(정축)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신여종이 수원부사로 있을 때 윤원형 종의 행패를 방관하였다

(…) 신여종(申汝棕) 【성질이 나약(懦弱)하여 관직에 있으면서 아전들을 잘 제어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일찍이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을 적에 백성들이 그가 자애(慈愛)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전들의 피해를 감당하지 못했었다. 수원부에 윤원형의 사나운 종이 있었는데, 신여종이 데려다 당(堂)에 오르게 하고 선비를 대하는 예로 대우하자, 그 종이 스스로 위세를 나타내며 더욱 흉악하고 패려한 짓을 하였다. 심지어는 감옥(監獄) 문을 밀치고 들어가 죄수를 살해하는데도, 아무 대책없이 두려워하고만 있었으므로 시론이 용렬하게 여겼다. 자신이 수령의 반열에 끼이게 된 것도 심통원에게 청탁하여 벼슬을 구한 것이니, 다른 것은 또 무엇을 논하겠는가.】 (….)을 동지중추부사로, 한홍제(韓弘濟)를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 申汝棕 【性懦弱，仕官不能制吏。故曾爲水原府使時，民雖知有慈心，而不勝吏緣之害。府有尹元衡悍奴，汝棕引以陞堂，遇以士禮，其奴自見威勢，益肆兇悖。至於排獄殺囚，而拱手畏縮，大爲時論所劣。身在宰列，捧簡於沈通源，而求官。他又何論?】 (….)爲同知中樞府事，

韓弘濟爲慶尙右道水軍節度使.

<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 4월 28일(기축) 2번째기사>

정치/행정

진휼을 잘한 수원부사 등에게 향표리를 하사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올봄에 진휼(賑恤)을 잘한 수령으로서 (…) 수원 부사(水原府使) 강옥(姜昱), 【사람됨이 비루하고 고집불통이었으며, 또 청렴치 못하다는 비방을 받았다.】 (…)에게 각각 향표리(鄉表裏) 한 벌씩을 하사하라.” 【진휼사(賑恤使) 홍섬(洪暹)이 일찍이 그 종사관(從事官)의 말을 인하여 서계(書啓)했었다.】

○乙亥/傳曰: “今春善爲賑恤守令, (…)水原府使姜昱 【爲人麤鄙, 固滯不通. 且有不廉之諺焉.】 (…)各賜鄉表裏一襲. 【賑恤使洪暹, 曾因其從事官之言, 而書啓焉.】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6월 16일(을해) 1번째기사>

정치/행정

민시중을 수원부사로 삼다

이날 정사가 있었다. (…)민시중(閔時中)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是日有政. (…)閔時中爲水原府使. (…)

<선조실록 9권, 선조 8년 1월 11일(신해) 2번째기사>

정치/행정

구황을 잘 한 수원부사 홍가신을 포상하다

경기도 구급 경차관(救急敬差官) 정숙남(鄭淑男)이 서장을 올리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홍가신(洪可臣)은 구황 성적이 도내의 제일이니 포장(褒獎)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입계하니, 표리(表裏) 한 벌을 지급하라고 전교하였다.

○京畿救急敬差官鄭淑男書狀: “(…)水原府使洪可臣, 救荒之政, 爲道內第一, 褒獎事”, 入啓, 傳曰: “表裏一襲, 賜給.”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6월 6일(무오) 2번째기사>

정치/행정

홍계남을 수원 판관에 제수하다

홍계남(洪季男)을 수원 판관(水原判官)에 제수하였다. 【계남은 경성(京城)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창기였다. 이때 안성(安城)에서 군사를 모아 왜적을 막아 싸웠는데 용맹이 군중에서 제일 뛰어났고 왜적도 많이 살해하여 적들이 그라고 하면 꺼렸다. 그리하여 호서(湖西)가 그를 힘입어 보전되었다.】

○戊辰/以洪季男爲水原判官. 【季男京城人, 其母娼也. 時在安城, 聚兵遏賊, 勇冠軍中, 多殺倭賊, 賊憚之. 湖西賴以保全.】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1일(무진) 1번째기사>

정치/행정

비변사가 홍계남을 물력이 풍부한 수원 판관에 제수하라고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창곡(倉穀)과 군민(軍民)이 제일 넉넉하고도 많아 경성의 울타리가 되어 왔으며, 적도들이 여러 차례 들어갔으나 물력(物力)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모름지기 용맹이 뛰어난 사람을 가려 지키게 하고 양주 목사 고언백과 기각(倚角)의 형세를 이루게 한다면 회복의 공을 책임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홍계남(洪季男)은 적을 만날 때마다 사살하여 명성이 크게 떨쳤으니 계남을 판관(判官)에 제수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庚午/備邊司啓曰：“水原倉穀軍民，最優且多，爲京城藩蔽，賊徒屢入，而物力不減。須得驍勇著名之人以守之，與楊州牧使高彥伯倚角，可責恢復之效。洪季男遇賊輒殺，名聲大振，請季男爲判官。” 上從之。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3일(경오)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조경(趙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 조경(趙敬)을 수원 부사에 제수하였다.

○有政. (...) 趙敬爲水原府使.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1일(무인) 7번째기사>

### 정치/행정

전라병사 선거이가 수원에 주둔하고 있다

헌부가 아뢰기를,

“충청 병사 이욱(李沃)은 재능과 지혜가 모자라 시기에 임하여 그르친 일이 많아 도내 군민(軍民)이 실망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적의 침범이 있게 되면 결단코 방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홍주 목사(洪州牧使) 이충(李聰)은 본디 오활한 서생인데 나이 또한 연로하여 연해의 주진(主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두 체직을 명하소서. 또 양호의 병마를畿內)에 징발, 도착시켜 경강(京江) 등지에 포진하면서 성세(聲勢)를 떨치면 적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 연해 고을의 양도(糧道)가 이를 힘입어 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행주(幸州)에서 승첩한 뒤에 도성에 육박하기는 시간 문제였는데, 각진의 여러 군대는 이때에 단 일보라도 함부로 물러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율이 진을 옮긴 것은 이미 온당하지 못한 일이거나, 전라 병사 선거이(宜居怡)는 물러나 수원에 주둔하고 충청도 순찰사 허욱(許頊) 역시 도체찰사 유성룡(柳成龍)의 지휘로 군사를 이끌고 귀환했습니다. 중국군이 만약 이 소식을 듣는다면 필시 의심을 더할 것이고 비록 군사를 전진시킨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성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패에 관계된 바가 매우 엄려스러우니 물러간 여러 군대를 도로 전진하게 해서 경성의 수복을 도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태의 형편에 의하거나 혹은 주장(主將)의 명령에 의하여 이미 진을 옮겼는데 이곳에서 독촉하여 나아가 진치도록 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닌 듯하다. 이러한 시기에 체직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하였다.

○癸丑/憲府啓曰：“忠淸兵使李沃，力智短淺，多有臨機失誤之事，積失一道軍民之望，脫有侵犯，決難防守。洪州牧使李聰，本以迂闊書生，年且衰邁，不合沿海主鎭。請并命遞差。且兩湖兵馬，調到畿內，列陣京江，以張聲勢，賊不敢恣意衝突。非但沿海畿邑餉道，賴以得通，幸州勝捷之後，進薄都城，指日以待，各陣諸軍，不宜此時敢退一步。權慄移陣，已爲未穩，而全羅兵使宜居怡，退屯水原，忠淸巡察使許頊，亦以都體察使柳成龍指揮，引兵還歸。天兵若聞此報，

必益疑沮之心，雖或進兵，亦無聲援可繼，成敗所關，極爲可慮，退去諸軍，還使進陣，以圖收復京城。” 上曰：“或因事形勢，或因主將之令，已爲移陣，自此處督令進陣，似未爲得。此時遞差，未當。”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8일(계축)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사간원이 새 수원부사 이정난 등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경기의 열읍(列邑) 가운데에서 수원(水原)만이 조금 온전하여 온갖 조도(調度)를 여기에서 장만하는데, 새 부사(府使) 이정난(李廷鸞)은 명성도 별로 없고 나 이도 노쇠하여 백성을 무마하고 극무(劇務)를 처리하는 임무를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 갈아 차출하고 각별히 가려서 보내도록 명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수원 부사는 아뢴 대로 하라. (…)” 하였다.

○乙未/司諫院啓曰：“畿甸列邑中，水原獨爲稍完，凡百調度，取辦於此。新府使李廷鸞，別無聲稱，年且衰耗，撫摩治劇之任，不可付諸此人。請命遞差，各別擇遣。 (…)” 答曰：“水原府使，依啓。 (…)”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11월 15일(을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이순빈을 수원판관에 제수하다

이비(吏批)가 (…)이순빈(李舜賓)을 수원 판관(水原判官)으로 삼았다.

○吏批 (…)李舜賓爲水原判官.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5일(갑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사헌부에서 지체하면 늦게 수원에 도착한 대호군 유대진의 파직을 건의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대호군(大護軍) 유대진(俞大進)은 전에 유 총병이 머물기를 청할 일로 명을 받들고 내려갔는데 비록 밤낮으로 달려가지는 않더라도 만약 곧장 갔더라면 남원(南原) 주둔처에 도착하여 머물기를 청하는 뜻을 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사(拜辭)하고 떠난 후에 길을 돌아 처자를 만나기도 하여 떠난 지 사흘 만에 겨우 수원(水原)에 도착하였고, 또한 형을 찾기도 하고 누이를 방문하기도 하며 호서(湖西) 열읍(列邑)에서 술에 취하기도 하는 등 태만히 하여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 하니, 상이 따랐다.

○司憲府啓曰：“大護軍俞大進，頃以劉總兵請留事，承命下去。雖不星夜奔馳，若直道而行，則可以及於南原所駐之處，以陳請留之意，而拜辭之後，或見妻子於枉路之地，發程三日，僅到水原。或尋其兄，或訪其妹，醉困於湖西列邑，慢不直行。 (…)” 上從之。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3일(무인)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사간원이 수원에서 공봉을 독촉하며 행패를 부린 토포사 박명현의 파직을 건의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상께서 여러 고을이 피폐한 점을 염려하시어 사절(使節)에 대한 지공(支供)을 줄이도록 하여 살아남은 백성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입혀지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포사(討捕使) 박명현(朴名賢)은 수원에 당도하여 공봉(供奉)을 독촉하면서 조금이라

도 뜻에 맞지 않으면 곤장을 낭자히 쳤으며 심지어는 사람을 뽀족한 돌 위에 세우고 삼우장(三隅杖)을 가지고 발뒤꿈치를 부서지도록 때려 잔혹한 짓을 극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도적을 추적하여 체포하지 못하자 각 고을의 도장(都將)을 잡아들여 강제로 고발하게 하고 문득 중장을 가하였습니다. 거느린 하리들이 인연하여 작폐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司諫院啓曰：“自上軫念列邑凋弊，減革使命支供，使子遺民物，期霑一分之惠，而討捕使朴名賢，行到水原，責辦供奉，少不如意，捶楚狼藉，至立人尖石上，以三隅杖，搗碎足踝，極其殘酷。且不跟捕獮賊，捉致各里都將，強令發告，輒加重杖。所率下吏，因緣作弊，不可勝言。請命先罷後推。” 答曰：“徐當發落。”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21일(병신) 4번째기사>

### 정치/행정

#### 사헌부가 수원에서 행패를 부린 토포사 박명현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광주(廣州)·이천(利川)·양근(陽根)·죽산(竹山)에 토적(土賊)이 성하여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므로 조정에서 토포사(討捕使)를 특별히 보내서 초멸하게 하였는데, 박명현(朴名賢)은 명을 받은 후에 엉뚱한 지역인 수원(水原)에 가 있으면서 끝까지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후의 장계에는 모두 적들이 다 흩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만 열읍(列邑)의 도장(都將)들에게 줌도둑을 포고(捕告)하게 해서 갑자기 중형(重刑)을 가하여 책임이나 모면하려고 하니, 흉포한 적은 잡히지 않고 백성에게 해만 미칩니다. 게다가 공역(供億)을 책출(責出)하여 형장(刑杖)을 남용하니 폐를 끼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특별히 보낸 뜻이 과연 이와 같은 것입니까? 박명현을 파직하여 그 죄를 징계하소서. 그리고 변응성(邊應星)으로 하여금 수령을 감독하여 거느리고 다방면으로 계책을 마련하여 남김없이 멸하도록 하되 전처럼 느슨하게 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司憲府啓曰：“廣·利·陽·竹之間，土賊熾盛，恣行殺掠，朝廷特遣討捕使，使之勦滅，而朴名賢承命之後，退坐於水原枉路之地，無意窮捕，前後狀啓，皆以賊盡潰散爲言。但使列邑都將，捕告草竊，遽加重刑，以爲塞責之地，獮賊未捕，而害及平民。加以責辦供億，濫用刑杖，貽弊不少。朝廷特遣之意，果如是乎？請朴名賢罷職，以懲其罪，令邊應星，督率守令，多般設策，殄滅無遺，毋得如前玩(揭) [愒]。” 上從之。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26일(신축)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중사 이봉정 등을 독성(禿城)의 진영에 보내 시재하다

중사(中使) 이봉정(李奉貞)과 주서(注書) 이덕온(李德溫)을 보내어 독성진(禿城陳)【수원 동쪽 10리에 있다.】에서 시재(試才)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독성(禿城)이 아무리 작지만 이 역시 하나의 군영이니 왕명을 받들어 군사를 위로하고 겸하여 시재까지 하여 상벌을 시행하는 것은 그 소임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사(中使)를 시켜서 군영에 임하여 무안(撫按)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당 나라가 중관(中官)으로 감군사(監軍使)를 삼던 일과 무엇이 다른가. 그 뒤에 평안도 도순찰사(平安道都巡察使) 이원익(李元翼)에게 명하여 도내의 조련(操鍊)하는 군졸을 모두 모아서 기성(箕城)에게 대대적인 사열을 할 적에도 봉정(奉貞)을 보내어 사열하여 포장(褒獎)하고 시재해서 상벌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는 통정(通政)의 관작을 제수하게 하기까지

하였다. 아무리 성명(成命)을 받들고 갔다 하지만 왕명을 받드는 데 어찌 그리도 책임자가 없어 유독 봉정만을 뽑아 쓴단 말인가.

○遣中使李奉貞·注書李德溫，試才于禿城陣。【在水原東十里。】

【史臣曰：“禿城雖小，是亦一軍也。奉王命而勞軍，兼且試才而賞罰之，其任固重矣。今乃使中使，臨軍而按撫之。此與唐之監軍，容何異？厥後命平安道都巡察使李元翼，聚一道操鍊之卒，而大閱於箕城，又遣奉貞，視師褒獎，試才賞罰，至有授爵通政者。雖曰奉成命以去，王命之奉，豈無其人，而奚獨取於奉貞哉？”】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17일(신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헌부가 사도시에 바칠 쌀을 착복한 수원 부사 김영남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 공물(貢物)을 방납(防納)하는 폐단이 평시보다도 심하니 백성의 고통은 이것이 첫째입니다. 수령(守令)으로서는 오랜 폐단을 힘껏 고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입혀야 할 것인데,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영남(金穎南)은 사도시(司樂寺)에 바칠 햅쌀 30말을 사사로이 그의 친지에게 주어서 방납하게 하고 그 값으로 민간에서 거두어 모은 쌀이 40섬에 이릅니다. 김영남은 벼슬이 높은 문관으로서 부정하게 사정(私情)을 따르고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아서 겨우 살아 남은 백성이 많이 여위게 하였으므로 그 잘못이 심하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司憲府啓曰：“(…) 貢物防納之弊，甚於平時，民生之倒懸，此其一也。爲守令者，所當痛革宿弊，俾蒙一分之惠，而水原府使金穎男，司(導)〔樂〕寺所納粳米三十斗，私與其所親，使之防納，其價米收合於民間者，至於四十石之多。穎男，以秩高文官，曲循私情，不恤民瘼，以致子遺之多瘠，其無謂甚矣。請命罷職。” 上從之。

<선조실록 75권, 선조 29년 5월 8일(갑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정언 정각이 수원 부사 최진의 파직을 청하다

정언(正言) 정각(鄭殼)이 와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기보(畿輔)의 문호(門戶)로서 남로(南路)의 요충이니 조치하고 접응(接應)하는 일이 다른 고을에 비하여 가장 중요한 곳인데, 부사 최진(崔鎭)은 중병에 걸려 좌아(坐衙)하지 못하여 갖가지 기무를 일체 폐하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괜찮은 고을이 장차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벼슬에 둘 수 없으니 파직하도록 명하고 그의 후임자를 십분 가려서 차임하소서. (…)”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辛卯/正言鄭殼來啓曰：“水原，以畿輔門戶，爲南路要衝，其措置接應之事，視他邑最重，而府使崔鎭，身有重病，不能坐衙，凡百機務，全然曠廢，使稍完之邑，將爲棄地。如此之人，不可一日在官。請命罷職，其代，十分擇差。(…)” 傳曰：“并依啓。”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6일(신묘) 1번째기사>

## 정치/행정

경기등 사도도체찰사 유성룡이 수원 일대를 순심할 계획이다

경기등 사도 도체찰사(京畿等四道都體察使) 유성룡이 경기의 고을을 순찰하는 일로 배사(拜辭)하니, 상이 인견을 명하였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이르기를,

“경이 순심(巡審)을 가는데 순심하고는 즉시 돌아오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순심을 한 후에 머물면서 할 일이 있으면 머물고자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부사(副使)도 있으니 즉시 올라와야 한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南漢山城)에 기민(畿民)들이 들어가고자 하므로 방비하면서 농사도 짓고 성도 지키게 하려 합니다. 여강(驪江)이상의 강탄(江灘)을 순심한 다음, 죽산(竹山)·양성(楊城)·안성(安城) 등처 및 수원(水原)·강화(江華)까지 갔다가 돌아올 계획입니다.” 하였다.

(…)

○京畿等四道都體察使領議政柳成龍巡審畿邑事拜辭，上命引見。上御別殿謂曰：“卿巡審，巡後卽還來乎？成龍曰：“巡審後，有可留而有爲事，則欲留之耳。”上曰：“然則亦有副使，可卽上來。”成龍曰：“南漢山城，畿民欲入，故欲爲防備，且耕且守。驪江以上江灘巡審後，竹山·(楊城)[陽城]·安城等處及水原·江華而還來伏計爾。”(…)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9일(경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이시언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이시언(李時彦)을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제수하였다.

○(…) 李時彦爲水原府使(…).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23일(계미) 4번째기사>

#### 정치/행정

##### 정엽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이날의 정사(政事)에서 (…) 정엽(鄭曄)을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제수하였다.

○戊子/是日政，(…) 鄭曄爲水原府使。(…)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28일(무자)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간원이 헌납 최천건의 귀경과 권춘란 등의 출사, 예조 좌랑 심열의 추고를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황정욱의 일은 전에도 아뢰었습니다. 헌납 최천건(崔天健)이 현재 수원(水原)의 자기 집에 있으니,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 하유하고 출사하게 하고 추고하는 일을 아뢴 대로 하라. (…)” 하였다.

○司諫院啓曰：“黃廷彧事前啓。獻納崔天健，今在水原地本家，請斯速上來事下諭。(…)” 答曰：“不須更論。下諭出仕，推考依啓。(…)”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5일(을미) 5번째기사>

#### 정치/행정

##### 사간원이 수원 판관 조발의 파직을 건의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수원 판관 조발(趙撥)은, 처음에 독성(禿城)의 수장(守將)으로 판관

을 겸직토록 한 것은 단지 수원부의 폐를 없앨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도입한 후에 혼미하여 직무를 살피지 못하고 하리(下吏)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아전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간악한 방법으로 온갖 작폐를 자행하여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니 파직하소서. (…)"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司諫院啓曰：“水原判官趙撥，初以禿城守將，兼爲判官者，只爲本府除弊也，到任之後，昏不察職，委諸下吏，吏緣爲奸，貽弊多端，民不堪支．請罷職．(…)” 上曰：“依啓.”

<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9일(무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전 수원부사 조발에게 수성의 임무를 계속하게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전 부사(府使) 조발(趙撥)은 독성(禿城)을 처음 조치할 때부터 그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였고, 전일 본부 판관(判官)이 체차된 뒤에도 그대로 수성장(守城將)이 되어 조방장(助防將)의 직임을 겸대하였으므로 그 전말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군심(軍心)도 그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사에서 체차되었지만 그전처럼 수성장을 삼아 조방장의 직임을 겸대시켜 마음을 기울여 성을 지킬 기구를 조치토록 함이 온편할 듯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備邊司啓曰：“水原前府使趙撥，自禿城措置之初，專掌其事，前日本府判官遞差之後，仍爲守城將，兼察助防將之任，詳知首末，軍心又附．今雖遞府使，依前仍爲守城將，兼察助防將之任，專意措置守城之具，似爲便當，故敢啓.” 傳曰：“依啓.”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19일(을해)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판관 등에 대해 제때에 서경이 안되어 부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기감사의 장계

사헌부가 아뢰기를, “삼가 경기 감사 유희서(柳熙緒)의 【고(故) 상신(相臣) 유전(柳典)의 아들로써 아버지의 음덕으로 재상의 반열에 뛰어올랐을 뿐 기타는 볼 만한 점이 없다.】 장계를 보니 ‘여주(驪州)·양주(楊州)·양근(楊根)·안산(安山)·통진(通津)·양성(陽城)의 수령과 수원 판관(水原判官)·평구 찰방(平丘察訪)이 제때에 서경(署經)을 하지 않아 한 달이 지나도 부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혹은 본디 서경을 하지 않아도 될 관원이거나 또는 여러 차례 사람을 바꾼 뒤에야 새 수령이 가까스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서경을 마친 사람이면서도 서경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기도 한다.’ 하여, 앞으로 서경을 없애자는 계청까지 하였습니다. 서경은 중대한 법이므로 저번에 언관(言官)의 계청에 의하여 조정도 감히 요동하지 못하였으니, 번신(藩臣)이 감히 요청할 일이 아닙니다. 그를 추고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 하였다.

○司憲府啓曰：“伏見京畿監司柳熙緒【故相典之子也．藉父餘烈，遽至宰列，其餘則無足觀焉.】狀啓，以驪州·楊州·楊根·安山·通津·陽城守令及水原判官·平丘察訪，謂趁未署經，逾月未赴云．或元非應署之官，或累次換易，新倅纔出，或是畢署之人，而妄諉之於未署之故，至有今後除署經之請．署經，乃金石之典．頃因言官之啓，朝廷亦不敢撓，非藩臣所可濫請．請命推考．(…)” 答曰：“依啓．(…)”

<선조실록 109권, 선조 32년 2월 9일(기미)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간원이 중국 장수에게 송문(頌文)을 지어 바친 수원 부사 조정건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중국 장수에게 정문(呈文)하는 것은 사실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정건(趙廷堅)은 미관 말직의 수령으로 감히 스스로 송문(頌文)을 지어 진 도독(陳都督)이 떠날 때 바쳤으니, 그것만으로도 극히 외람스런 일인데 게다가 조어에 있어서도 당치 않은 용어가 많았습니다. 그가 사체를 모르고 경솔하게 행동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진 도독이 올라올 때 수령과 사민(士民)들이 바친 송문에 다른 장수가 듣기 싫어할 말이 많이 있었는데도 접반사 남복흥(南復興)은 막아 물리치지 못하고 글을 올리도록 방치하여 후일에 원망을 야기하고 걱정을 끼칠 수 있는 단서를 만들게 하였으니, 극히 놀랍습니다. 추고를 명하소서. (…)”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건은 파직까지 한다면 진 도독이 그 소식을 들을 것이므로 온당치 않으니 추고하고,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司諫院啓曰：“天將前呈文，固非人人所可爲之事，而水原府使趙廷堅，以微末守令，乃敢自撰頌文，呈于陳都督之行，已極猥濫，而且於措語之間，多有不當之詞。其不識事體，浮誕妄作，不可不懲。請命罷職。陳都督上來時，守令·士民等所獻頌文，多有他將惡聞之語，而接件使南復興，不能沮却，任其投呈。他日惹怨貽患之端，未必不由於此，極爲駭愕。請命推考。(…)”  
上曰：“趙廷堅至於罷職，則陳都督聞之，不爲穩當。推考。餘依啓。”

<선조실록 110권, 선조 32년 3월 23일(임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선조가 최천건이 사고가 있어 수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비호하다

지평 윤홍(尹弘)이 와서 전에 아뢴 행 사직(行司直) 최천건(崔天健)을 파직시킬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최천건은 수원(水原)을 거쳐서 고성(高城)으로 가려다가 사고(事故)가 생겨 수원에 돌아와 있을 수도 없지 않으니, 모두 해될 것이 없다. 무슨 비밀스럽고 속이는 일이 있겠는가. 논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윤희하지 않는다.”

○持平尹弘來啓曰：“行司直崔天健罷職事，前啓。” 答曰：“崔天健，或欲歷過水原，因往高城之計，不無有故，而歸在水原之慮，皆不妨，有何詭秘欺瞞？不必論之事，不允。”

<선조실록 121권, 선조 33년 1월 11일(병진) 7번째기사>

#### 정치/행정

문홍도를 수원 부사로 삼다

문홍도(文弘道)를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以文弘道爲水原府使.

<선조실록 130권, 선조 33년 10월 10일(경진) 9번째기사>

#### 정치/행정

권경우를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권경우(權慶祐)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頌文)權慶祐爲水原府使.

<선조실록 130권, 선조 33년 10월 19일(기축) 7번째기사>

정치/행정

박이장과 유석증을 각각 수원부사와 수원판관에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박이장(朴而章)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유석증(兪昔曾)을 수원 판관으로(…) 삼았다.

○有政. (…)朴而章爲水原府使, (…)兪昔曾爲水原判官.(…)

<선조실록 133권, 선조 34년 1월 13일(임자) 7번째기사>

정치/행정

사헌부가 수원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를 들어 수원부사와 판관을 가려 뽑자고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기전(畿甸)의 큰 고을로서 밖으로는 양호(兩湖)를 막고 안으로 서울을 보호하니 실로 한 도(道)의 큰 도회(都會)인 동시에 적을 막는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조정에서 방어의 중진(重鎭)을 설치하고 본부(本府)의 부사가 겸임토록 하려 한 그 의도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은 시종일관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시행할 즈음에 만약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위임한다면 국가의 보장(保障)으로 삼으려던 계획이 오히려 공허하게 되고 말 것이니, 너무도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최원(崔遠)의 위인은 본래부터 이렇다 할 실력도 없는데 나이마저 노쇠하니,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모로 적응하는 일을 이런 용렬한 사람의 손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유사(有司)로 하여금 문무(文武)를 따지지 말고 직위에도 구애받지 말고서 관용과 위맹을 겸비하고 지용(智勇)이 갖추어진 자를 신중히 가려 뽑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곳[수원]의 판관(判官)도 대시(臺侍)의 경력이 있고 청명(淸名)이 드러난 자를 신중히 가려 차견(差遣)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憲府啓曰: “(…)水原以畿甸巨邑, 外控兩湖, 內衛京師, 實一道大都會關防之地. 朝廷欲設防禦重鎭, 以本府府使兼之, 其意實非偶然. 第念凡事, 當慎終于始. 施措之際, 若不得人以寄之, 則國家保障之計, 反歸於虛. 豈不重可惜哉? 崔遠爲人, 本無可稱之實, 而年亦衰耗, 凡創始策應之事, 不可付諸此庸手. 請令有司, 勿論文武, 勿拘職秩, 以寬猛兼濟, 智勇俱全者, 十分慎簡, 而其判官亦以出入臺侍淸名素著之人, 極擇差遣.” 答曰: “依啓.”

<선조실록 141권, 선조 34년 9월 14일(무신) 2번째기사>

정치/행정

김거병을 수원부사 겸 경기방어사에 제수하다

(…)김거병(金去病)을 수원 부사 겸 경기 방어사로 삼았다. (…)

○(…)金去病爲水原府使兼京畿防禦使.(…)

<선조실록 141권, 선조 34년 9월 18일(임자) 4번째기사>

정치/행정

이순신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이순신(李純信)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

○李純信爲水原府使.(…)

<선조실록 141권, 선조 34년 9월 28일(임술) 3번째기사>



정치/행정

사헌부가 수원 부사 이순신의 체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순신(李純信)은 탐욕스럽고 방종하여 여러 번 중한 논박을 받았으니 평범한 고을의 수령도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신설한 거진(巨鎭)이야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제목(除目)이 한 번 내려지자 놀라지 않는 이가 없으니, 속히 체직시키소서. 대저 조정에서 곤수(關帥)를 둔 것은 경사(京師)를 방어하기 위한 계책으로 범연한 일이 아닙니다. 신들이 최원(崔遠)과 김거병(金去病)을 체직시키기를 청한 것은 조정에서 일을 시작할 때에 적임자를 골라 맡기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의(注擬)에서는 갈수록 더욱 품격이 낮은 사람으로 하였으니, 당당한 성조(聖朝)에 어찌 방어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유사로 하여금 상규(常規)에 구애되지 말고 심본 신중히 간택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戊辰/憲府啓曰: “水原府使李純信, 貪縱無忌, 屢被重駁. 尋常守令, 尚不可堪. 況新設(臣) [巨] 鎭乎? 除目一下, 物情莫不駭異. 請亟命遞. 大抵朝廷創設關帥, 以爲保障京師之計, 實非偶然. 臣等之請遞崔遠·金去病者, 欲使朝家作事之初, 必得其人以畀之, 而今此注擬, 愈遠而愈卑. 堂堂聖朝, 豈無一防禦可當之人乎? 請令有司, 勿拘常規, 十分慎簡.” 答曰: “依啓.”

<선조실록 142권, 선조 34년 10월 4일(무진) 1번째기사>

정치/행정

성윤문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성윤문(成允文)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

○(…) 成允文爲水原府使. (…)

<선조실록 142권, 선조 34년 10월 5일(기사) 2번째기사>

정치/행정

간원이 방어사의 임무를 부여한 수원부사와 판관의 역할분담에 대해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수원을 부(府)로 승격시킨 것은 기진(畿甸)의 보장(保障)을 삼기 위해 서인 것입니다. 방어사를 신설하여 병무(兵務)를 관장시킴에 있어 체면이 존중되지 않으면 열읍(列邑)을 호령하여 신설된 법규를 관리(辦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사에게 방어사를 겸하게 하였는데 방어사의 명칭은 띠었으나 일개 수령일 뿐이어서 체면이 중하지 못하므로 일을 성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부(本府)는 난리를 겪은 이후 탕패가 이미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을 무마하고 안정시키는 것을 모두 장신(將臣)에게만 책임지울 수는 없으니 문신(文臣)인 판관(判官)을 가려서 차견하려는 것은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방어사에게 부사를 겸하게 함으로써 방어의 책임을 중하게 하고, 판관은 영변(寧邊)·경성(鏡城)의 예에 따라 오로지 백성 다스리는 일만 책임지게 하소서. (…)”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乙亥/諫院啓曰: “水原爲府, 乃畿輔保障. 新設防禦使, 以管兵務, 體面若不尊重, 則將無以號令列邑, 辦釐新設之規. 今以府使, 兼防禦使, 雖帶防禦之號, 卽一守令耳. 體面不重, 事難就緒. 且本府經亂以後, 蕩敗已極, 撫摩安集, 不可兼責於將臣. 擇遣文臣判官, 其意有在. 請

令備邊司更議，以防禦使兼府使，以重防禦之任，而判官，則依寧邊·鏡城例，專責治民。(…)  
答曰：“依啓.”

<선조실록 142권, 선조 34년 10월 11일(을해)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이덕형이 명망있는 사람을 배양하지 못해 수원부사를 임명하지 못하다고 하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경상 등 도 도체찰사인 판중추부사 이덕형을 인견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에 은미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인심이 좋지 않다고 여겨서인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호서는 인심이 영악하고 호남의 광주·나주 등은 호령이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국법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한 뒤에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무장(武將)을 배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궤과(闕窾)가 나면 임명된 자가 으레 앞 사람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충청도의 전 병사 구사직(具思稷)은 위인이 완만하여 국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계를 올려 과직시켰는데 대신 임명된 **【신 병사 권준(權俊).】** 사람은 또 사직보다도 못합니다. **지난 번신이 조보(朝報)를 보니 수원의 부사도 제대로 임명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미리 명망 있는 사람을 배양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지난 날 조정에서 불차탁용(不次擢用)으로 선임하여 썼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등의 일에 대해 으레 일시에 갑자기 추천하기 때문에 실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로 하여금 도내의 실적이 있는 무관을 가려서 친거하게 하되 만일 잘못 친거하면 아울러 연좌시키게 하는 것이 이보다 나은 듯합니다.” 하였다. (…)

○上御別殿，引見慶尙等道都體察使判中樞府事李德馨。(…) 上曰：“卿言似有微意。謂人心不好乎？” 德馨曰：“湖西則人心穢惡，湖南光·羅等，號令不行，必使人畏法，然後凡事可爲也。武將，國家不爲培養，故窾闕一出，則差除者。例不及前人。忠淸前兵使具思稷，爲人弛緩，不爲國事，故狀啓罷黜，而其代**【新兵使權俊也.】**又出思稷下.頃者臣見朝報，水原一府使，亦不能差除。皆由不預養望之所致也。朝廷頃選，不次擢用矣，但我國如此等事，例以一時卒辦應薦，多有無實。若令監司，使選道內有事蹟武弁，如誤薦則竝坐，似勝於此矣。” (…)

<선조실록 142권, 선조 34년 10월 19일(계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탕패가 심하니 조사가 돌아간 뒤에 수원방어사를 부임하게 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 **수원부(水原府)는 근년 이래 탕패가 더욱 심하여 관가의 모든 일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벽제참(碧蹄站)의 관우(館宇)와 기구(器具)를 홀로 담당하고 있어 한 중국 사신 때문에 온 고을의 백성을 동원하여 황황히 분주하게 하여도 오히려 미처 준비(措備)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방어사(防禦使)가 부임한다 하더라도 형세가 조취(調聚)하여 조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문을 새로 설치할 즈음에는 폐해가 백성에게 많이 미치는 것이니, 우선 조사(詔使)가 돌아간 뒤에 부임하게 하소서.** 관부(官府)를 개설하는 것의 편부에 대해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의처(議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 나머지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丁卯/諫院啓曰：“(…) **水原爲府，近年以來，蕩敗尤甚，官家凡事，不成模樣，**今又碧蹄站館宇器具獨當。一天使，舉一邑之民，遑遑奔走，猶恐不及措備。 **防禦使雖赴任，勢不能調聚操鍊，且新設衙門之際，弊多及民。姑待詔使回還後赴任，**開局便否，令備邊司，更爲議處。” 答

曰: “(…) 餘依啓.”

<선조실록 144권, 선조 34년 12월 4일(정묘) 1번째기사>

정치/행정

사헌부가 전 수원 판관 심즙에게 준기불서를 적용하길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 조사(詔使)의 행차가 기전(畿甸)에 박두하면 수령들로서는 정성껏 직책을 수행하여 시종 게을리 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전 여주 목사(驪州牧師) 강찬(姜燦)과 전 수원 판관(水原判官) 심즙(沈緝)은 신병을 핑계로 임시하여 관직을 버리고, 서울 근처에 이르러서는 친구들과 기탄없이 술을 마셨는가 하면 마음대로 도성을 출입하면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중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미 파직된 상태여서 지금 죄를 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준기불서(準期不敘)의 법을 거듭 밝혀서 일에 임해 교묘하게 모면하려는 습관을 징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박읍(薄邑)을 싫어하여 공공연히 규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법전에 따를 것을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도록 하소서. (…)”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甲申/憲府啓曰: “(…) 詔使之行, 迫近畿甸, 爲守令者, 所當恪勤供職, 終始不怠, 而前驪州牧使姜燦·前水原判官沈緝, 托稱身病, 臨時棄官, 及入洛下, 或追隨朋儕, 縱酒無忌, 或任意出入, 略無所憚. 如此之人, 不可不重治, 而既罷其職, 今難加罪. 請命申明準期之法, 以懲臨事巧免之習, 自今以後, 厭其殘薄, 顯然窺避者, 一依法典, 捧承傳施行. (…)” 答曰: “依啓.”

<선조실록 148권, 선조 35년 3월 22일(갑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이순민을 수원 판관에 제수하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 이순민(李舜民)을 수원 판관으로 삼았다. (…)

○己丑/有政. (…) 以李舜民爲水原判官.(…)

<선조실록 148권, 선조 35년 3월 27일(기축) 1번째기사>

정치/행정

윤민일을 수원 판관에 제수하다

(…) 윤민일(尹民逸)을 수원 판관으로 삼았다.

○(…) 以尹民逸爲水原判官.(…)

<선조실록 149권, 선조 35년 4월 1일(임진) 4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판관 윤민일의 파직을 건의하다

(…) 수원 판관(水原判官) 윤민일(尹民逸) 【위인이 온화하나 이간(吏幹)은 모자란다. 】 등이 상관을 능멸하였다고 하니 보고 듣기에 해괴한 일입니다. (…) 민일은 정사를 하리(下吏)들에게 맡겼으므로 백성이 그 폐단을 받게 되어 관아의 일이 날로 허술하여 집니다. 모두 파직 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水原判官尹民逸 【爲人溫雅. 而短於吏幹.】凌蔑上官, 見聞駭愕. (….) 民逸, 則政委下吏, 民受其弊, 官事日就虛疎. 請竝命罷職. 答曰依啓.

<선조실록 157권, 선조 35년 12월 6일(계사)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에 사는 최천건의 집이 화적의 침범을 받다

(…) 유영경(柳永慶)이 아뢰기를,

“세도(世道)가 날로 글러가고 인심이 점점 험악해지며 연운(年運)이 좋지 않으므로 외구(外寇)가 없더라도 토적(土賊)이 크게 성합니다. 평시에는 외방(外方)에서도 사대부(士大夫)의 집은 감히 침해하지 못하였는데 근래는 조사(朝士)가 피살되기까지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피살되었는가?” 하자, 영경이 이르기를, “진 안동 부사(安東府使) 황극중(黃克中)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느 곳에 살고 있었는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대흥(大興)에서 살았다 합니다. 수원(水原)에 있는 최천건(崔天健)의 집도 화적(火賊)이 침범하였다고 하는데, 가을·겨울 사이에는 도적떼가 많아질 것입니다. 충청도 내포(內浦)는 인심이 나쁘니, 그곳의 수령은 각별히 가려서 보내야 마땅하겠습니다. 살길이 있으면 도둑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 永慶曰: “世道日非, 人心漸惡, 年運不好, 雖無外寇, 土賊大熾. 平時則雖在外方, 士大夫家, 莫敢侵害, 近來, 朝士至有被殺, 極爲驚怪.” 上曰: “何人被殺乎?” 永慶曰: “前安東府使黃克中也.” 上曰: “在何地乎?” 永慶曰: “寓居大興地云. 水原崔天健家, 火賊亦犯云. 秋冬之間, 必多嘯聚之徒. 忠清內浦, 人心頗惡, 其地守令, 各別擇遣宜當. 如有生理, 必不爲盜.” (…)

<선조실록 165권, 선조 36년 8월 10일(계사)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간원이 수원에 방어사 대신 부사를 둘 것을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사람이 많고 땅이 넓어서 경기의 근본이 되는 곳이므로 전부터 부사(府使)·판관(判官)을 둔 데에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난 후로 독성(禿城) 때문에 방어사(防禦使)를 두어 부사의 직임을 겸하게 하였는데, 일에 방해가 있을 뿐더러 민폐도 많습니다. 이제 방어사 변응성(邊應星)이 임기가 차서 체직될 것인데 그 대임을 뽑지 말고 신중을 기하여 재능과 명망이 있고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특별히 가려 부사에 제수하여 독성을 아울러 살피게 하소서. 또 거기에 소속된 하번(下番) 군사는 도로 서울에 올라와 전례대로 숙위(宿衛)하게 하면 일이 매우 편리하겠으니, 묘당(廟堂)을 시켜 빨리 조치하게 하소서.” 하니, 윤희한다고 답하였다.

○諫院啓曰: “水原, 物衆地大, 乃畿甸根本之地. 自前有府使·判官者, 其意有在. 亂後以禿城之故, 設立防禦使, 兼爲府使之任, 非但事有防礙, 民弊亦多. 今者防禦使邊應星, 瓜滿當遞. 勿出其代, 別擇有才望勤幹之人, 爲府使, 兼察禿城, 且所屬除番軍士, 還爲上京, 依前宿衛, 事甚便益. 請令廟堂, 斯速處置.” 答曰: “允.”

<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8월 28일(병오) 6번째기사>

정치/행정

이광악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이광악(李光岳)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

○(…) 李光岳爲水原府使. (…)

<선조실록 178권, 선조 37년 9월 6일(계축) 7번째기사>

정치/행정

경기 암행 어사 심집이 암행 결과로 수원부사의 치적이 으뜸이라고 보고하다

경기 암행 어사 심집(沈誥)이 아뢰었다. “(…)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경준(李慶濬)은 치적이 온 도내에서 으뜸이고 장단 부사(長湍府使) 김덕함(金德誠)은 청고(淸苦)한 소신을 지켰으므로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사랑하였습니다. (…)

이들은 이미 체직된 수령이므로 추론(追論)할 것은 없으나 민간에게 사랑과 은혜를 끼친 일은 물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상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京畿暗行御史沈誥啓曰：“(…) 水原府使李慶濬, 治冠一道; 長湍府使金德誠, 淸苦自守, 吏畏民愛.(…) 此則已遞之守, 令不必追論, 而其流惠遺愛於民間者, 有不可沒焉. 故不容不達矣.”

<선조실록 197권, 선조 39년 3월 1일(기사) 3번째기사>

정치/행정

이순신을 다시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이순신(李純信)을 【탐욕스럽고 외람된 사람이다. 지난번 탄핵을 받은지 얼마 안되는데 또 수원부사(水原府使)에 제수되었으니 수원 백성들이 무슨 죄인가.】 수원부사로 삼았다. (…)

○(…) 李純信【貪濫人也. 頃纔被劾, 又爲府使, 水原之民, 奚罪焉?】爲水原府使.(…)

<선조실록 200권, 선조 39년 6월 29일(병인) 10번째기사>

정치/행정

이기빈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이기빈(李箕賓)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

○(…) 李箕賓爲水原府使.(…)

<선조실록 206권, 선조 39년 12월 25일(기미) 2번째기사>

정치/행정

성윤문을 수원부사 겸 방어사에 제수하다

(…) 성윤문(成允文)【탐욕스럽고 잔인하고 사나워서 가는 곳마다 이민(吏民)과 장졸들이 모두 원망하여 흩어졌다. 일찍이 제주 목사(濟州牧使)가 되어서는 군졸을 혹사하였는데 분김에 혹독한 형벌로 수십 명을 죽였다. 그 잔인함이 이와 같았으므로 물론이 분노하였다.】을 수원 부사 겸 방어사로 삼았다. (…)

○(…) 成允文【貪殘鷙悍, 所至, 吏民·將士皆懷怨散. 嘗牧濟州, 虐使軍卒, 乘忿酷刑, 殺數十人, 其殘忍如是, 物議憤之.】爲水原府使兼防禦使. (…)

<선조실록 210권, 선조 40년 4월 8일(경자)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이수일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이수일(李守一)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

○(...) 李守一爲水原府使.(...)

<선조실록 212권, 선조 40년 6월 22일(계축)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변양걸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조정(趙挺)을 형조 참판으로, <이수일(李守一)을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변양걸(邊良傑)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戊申五月初六日辛卯有政. 以趙挺爲刑曹參判, (李守一爲濟州牧使, 邊良傑爲水原府使.)

<광해군일기 4권, 광해군 즉위년 5월 6일(신묘)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 비변사에서 수원 부사는 이조에서 의망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령과 변장 가운데 조금이라도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를 이조에서 매번 본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천거하게 하였는데, 이미 이에 대해 편리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아뢰었습니다. 본사 또한 어떻게 본국 밖에서 특별히 나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인물을 가려 천거하는 것은 바로 이조의 일이니, 이조는 스스로 인재를 널리 구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이번의 수원 부사는 이조로 하여금 가려 의망하게 하여 임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근례에 의거하여 본조에서 천거하라.”> <하였다.>

○(備邊司啓曰: “守令·邊將之稍涉繁重者, 銓曹每令本司議薦, 已將未便之意, 累次啓之矣. 本司亦豈能於局外辦得別樣人乎? 銓薦人物, 是銓曹之事, 銓曹自當旁求慎簡. 今此水原府使, 令吏曹擇擬差出爲當. 敢啓.” 傳曰: “依近例, 自本曹擇薦.”)

<광해군일기 5권, 광해군 즉위년 6월 25일(경진)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 사헌부가 수원부사 조경을 탄핵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 <수원(水原)은 경기의 거읍으로서 지면이 넓고 인구가 조밀하여 본래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일컬어져 왔는데, 부사 조경(趙敬)은 교사하고 탐욕스러운데다 전혀 관아에 나와 앉아 있지를 않아서, 백성들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 <나머지 여타 사안들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司憲府啓曰: “(...) (水原, 畿輔巨邑, 地廣人稠, 素稱難治. 府使趙敬巧詐貪濫, 專不坐衙, 民不見面. 請命罷職.)” 答曰: “(...) (他餘事, 依啓.)”

<광해군일기 7권, 광해군 즉위년 8월 6일(경신) 3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의정부가 역적 집에서 몰수한 수원 등의 제언 등을 내려달라고 아뢰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본부 아문의 면모는 여느 각사와 다르니 토지와 노복의 원수는 더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종 때부터 모든 역적의 노비와 전답 등의 물자를 반드시 여느 각사보다 더 넉넉히 주어 온 것도 그 의도가 있어서였던 것으로, 지금 사환하는 노비는 모두 그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난리를 겪은 뒤에 다 흩어져 없어지고 열에 한둘도 남아 있지 않아 모양이 말이 아니니, 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에 역적의 집에서 몰수한 노비들 및 수원(水原)·용안(龍岸)·당진(唐津)의 제언(堤堰)과 부안(扶安)의 제언·어살(魚箭) 등을 예전의 선례에 따라 각별히 넉넉히 내려주는 일을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戊申八月十五日己巳議政府啓曰：“本府衙門體面與各司不同，而典僕元數不多。故自祖宗朝，凡逆賊奴婢·田畝之物，優數賜給，必先於他司，意有所在。至今使喚之奴婢，皆其後裔，而亂後散亡，十無一二，不成貌樣，極爲可慮。今此逆家沒官奴婢等及水原·龍安·唐津堤堰·扶安堤堰·魚箭等處，請依古例各別從優賜給(事，捧承傳施行).” 傳曰：“依啓.”

<광해군일기 7권, 광해군 즉위년 8월 15일(기사)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수원의 중요성을 들어 수원 부사 정항의 파직을 사간원에서 요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생산되는 물품이 많고 땅이 넓어 기전(畿甸)의 근본이 되는 지역으로 옛날의 삼보(三輔)와 같아 본래 다스리기 어렵다고 일컬어졌으니, 결단코 무부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반드시 문관을 가려서 임명했던 것은 그 의도한 바가 있어서입니다.> 근래에는 방어사(防禦使)를 겸하기 때문에 잇따라 무관을 파견하여 웅대하고 부유했던 고을을 점차로 탕패(蕩敗)되게 하였습니다. 부사 정항(鄭沆)은 도입한 뒤 오로지 <수응(酬應)하여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일삼았고 또 번거로운 직무를 처리하는 재능이 없어> 폐단을 끼침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관고(官庫)는 텅텅 비어 앞으로 버려진 땅이 되어 버릴 형편이니 때맞추어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문관으로서 명망과 국량이 있는 자를 가려서 보낸다면, 그 지역의 풍성한 물력(物力)을 가지고 폐단에서 회복시키고 쇠잔한 데서 소생시키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몇 년 걸리지 않아 완전히 부유했던 지역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조정이 부사에게 방어사를 겸하게 한 것은 산성(山城)에 대한 한 가지 일 때문으로 뒷날 급한 때를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관 가운데 이 임무를 감당할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무관으로 그것을 겸하게 한 뒤에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사> 정항을 파직하도록 명하고 그 대신 문관을 극도로 정밀하게 가려 임명하여 보낼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요즈음의 조처를 관찰하건대 무관이 임명을 받은 곳에 모두 문관으로 바꾸어 보내니, 아마도 문관·무관을 아울러 기용하는 의미가 아닌 듯하다. 평소에 그 부귀를 함께하지 않고서 변란에 임하여 그들에게 말에 먼저 오르게 한다면 그것이 옳겠는가.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가려 임명하는 것은 할 수 없다.” 하였다.

○司諫院啓曰：水原物衆地大，爲畿甸根本之地，有如古之三輔，素稱難治，決不可付諸武夫之手。(自平時必以文官擇差者，其意有在。而)近來以兼防禦使之故，連遣武弁，使雄富之邑，漸就蕩敗。而府使鄭沆到任之後，專以(酬應悅人爲事，且無剴繁之才,)貽弊日滋，官庫空虛，將不免爲棄地，不可不及時變通。誠以文官有名望幹局者擇送，則以其地物力之盛，有何難於起弊蘇

殘? (而不數年, 足以爲完全殷富之處矣.) 朝廷以府使兼防禦使者, 爲山城一事, 欲備異日緩急矣. 然文官之中, 豈無能堪是任者乎? (不須以武官兼之而後乃可爲矣. 府使) 請鄭沆請命罷職, 其代以文官極擇差送(事, 令廟堂議處.)” 答曰: “第觀近日舉措, 武官受任之地, 皆以文官換送, 恐非文武並用之意也. 平居不與之同其富貴, 而臨亂使之躍馬先登, 其可乎哉? 水原府使文官擇差, 不可爲也.”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6일(계미)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 김거병에게 수원 부사를 제수하는 것에 대해 이조에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경기 수사 김거병(金去病)에 대하여 지난날 어사의 서계에서 청렴 근신하며 절개를 지킨다는 것으로 칭찬하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잊은 적이 없다. 김거병의 직질을 승진시켜 수원 부사로 임명하고 방어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고무시키고 권면하는 바탕을 삼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조에 물어보도록 하라.>”

○己酉十一月初七日甲申傳曰: “京畿水使金去病, 前日御史書啓, 稱之以清謹自持, 予未嘗忘其人也. 金去病陞秩, 水原府使除授, 仍兼防禦使, 以爲聳動激勸之地(如何? 問于吏曹.)”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7일(갑신)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 대사간 박이장 등이 수원부사를 문관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다

대사간 박이장(朴而章), 사간 윤양(尹讓), 헌납 오익(吳翊), 정언 윤중삼(尹重三)이 아뢰기를,

“대간은 인주의 이목 역할을 해야 하니 진실로 국가에 보탬이 있는 경우이면 일에 따라 논열하여 천총(天聰)을 돌이키도록 기약하는 것이 바로 그 직분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윤희를 받지 못할 경우 간혹 정계(停啓)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대간이 바야흐로 논계하고 있는 때에 정상께서 그것을 정계하도록 기대하면서 전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가려 뽑아 보내는 일은 실제로 중앙과 지방의 공통된 논의에서 나온 것으로 신들 한두 명의 사사로운 견해가 아닙니다. 신들이 바야흐로 논계하는 즈음에 갑자기 무장(武將)을 임명하도록 이름을 거론하여 해조에 회부하였으며, <정원이 계품(啓稟)한 때에 이르러서도 정계한 뒤에 해조에 물으라고 전교하셨으니, 이는 아마도 언관(言官)을 소중히 여기는 도리가 아니며 또한 뒷날의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들이 <모두 보잘것없는 자질로> 언관의 지위에 대죄(待罪)하고 있는데 말이 신임을 받지 못하였으니, <간관의 풍채를 추락시킴이 반드시 신들을 말미암지 않았다고 못할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의 직임을> 체임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가 우연하게 생각이 미쳐 해조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원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정원으로 하여금 정계하거든 물으라고 하였다. 이는 진실로 대간의 뜻을 소중히 여긴 데서 나온 것이니, 아마도 회피할 만한 내용이 아닌 듯하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

○大司諫朴而章·司諫尹讓·獻納吳翊·正言尹重三啓曰: “臺諫爲人主耳目, 苟有裨益於國家者, 則隨事諭/論列, 期回天聰, 乃其職也. 而至於終未蒙允, 或爲停啓者, 出於不得已也. 豈有



臺諫方爲論啓之時，自上期待其停啓而傳教乎？水原府使擇送文官之事，實出於中外公共之論，非臣等一二人之私見也。 臣等方論啓之際，遽以武將除授學名下司；(及其政院啓稟之時，亦以停啓後問之爲教。此恐非重言官之道，而亦不無後弊也。)臣等(俱以無狀，)待罪言地，言未見信，(墜落諫官風采，未必不由於臣等，)不可晏然仍冒。請命遞(臣等之)職。” 答曰：“予偶然念及，欲問于該曹，而政院爲言，故使之姑亭下問。而此實出於重臺諫之意，恐非可避之辭也。勿辭。”  
【退待(物論).】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8일(을유) 3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사헌부가 피폐하고 주민들이 흩어지니 수원부사를 문관으로 보내라는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대사간 이하가 함께 인협하고 물러났습니다. 수원은 바로 도성의 울타리입니다. 근래에 무신을 잇따라 임명해서 보낸 것을 인하여 고을은 피폐하고 주민들이 흩어져 장차 버려두는 땅이 될 상황입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흉년을 만나 수습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니 이런 때에 이르러 문관을 가려 보내어 회복하도록 기약하는 것이야말로 조야(朝野)의 공동된 논의인데, 간원의 계사는 대체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간관이 한창 논계하고 있는 즈음에 갑자기 무장을 임명하는 데 대하여 하문을 하셨으며, <논계가 정지되기도 전에 또 정계한 뒤 물어 보라는 하교가 있었으니,> 이것이 간원이 마음속으로 불안해 하면서 피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당초의 논계는 국사(國事)를 염려하여 언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 데 불과한 것일 뿐이며, 지금의 피험 또한 단지 언관의 체모를 붙들어 세우려는 것일 뿐이니, 별로 실수한 바가 없습니다. <대사간 박이장(朴而章), 사간 윤양(尹讓), 헌납 오익(吳翊), 정언 윤중삼(尹重三)을>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司憲府啓曰：“大司諫以下，竝引嫌而退。水原乃國之藩蔽，近因武臣連往，邑弊民散，將爲棄地。況今值大無，益難收拾，及此時擇送文官，期於蘇復者，乃朝野公共之論，諫院之啓辭，蓋以此也。諫官時方論啓之際，遽下武將除授之間，(論啓未停之前，又有停啓後問之教，)此諫院之所以不安於心而不得不避者也。禮/初之論啓，不過憂念國事，欲盡言責而已；今之避嫌，亦只欲扶植言官體貌而已，別無所失。請(大司諫朴而章·司諫尹讓·獻納吳翊·正言尹重三，)竝命出仕。” 答曰：“依啓。”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9일(병술) 3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임명할 것에 대해 사간원에서 요청하다**

사간원이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임명하여 보낼 일을 연계하니, 답하기를, “무변(武弁) 가운데 어찌 적합한 인재가 없겠는가. 나의 견해가 이와 같으므로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司諫院連啓 水原府使文官差送事。答曰：“武弁中豈無其人乎？予見如此，不允。”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9일(병술) 6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수원 부사의 문관 임명에 대해 사간원에서 연계하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임명하여 보낼 것을 주청하니, 답하기를, “경기 방어사를 설치한 것은 선조(先朝)에서부터인데 무장을 임명하여 본부를 겸임하여 다스리게

한 것은 또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하필이면 다시 고쳐야 하겠는가. 오직 적합한 사람을 얻는 것을 힘써야 한다. 문관과 무관을 달리 보아서는 안 되니 번거롭게 고집하지 말라.” 하였다.

○司諫院連啓水原府使請以文官差送. 答曰: “京圻防禦使之設, 自在先朝, 而差以武將, 兼治本府, 意亦有在. 何必更改? 唯以得人爲務, 不須以文武異觀, 勿爲煩執.”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10일(정해)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 수원 부사의 문관 임명에 대한 사간원의 연계에 답하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임명하여 보낼 것을 주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己酉十一月十一日戊子(司諫院連啓水原府使請以文官差遣, 不允.)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11일(무자)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 수원 부사의 문관 임명에 대해 사간원에서 연계하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임명하여 보내도록 주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司諫院連啓水原府使請以文官差送, 不允.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12일(기축)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 수원 부사의 문관 임명을 사간원에서 연계하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임명하여 보낼 것을 주청하니, 나의 뜻을 이미 유사하였으니 번거롭게 고집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司諫院連啓水原府使請以文官差送. 答曰: “予意已諭, 勿爲煩執.”)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13일(경인)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 수원 부사의 문관 임명에 대해 사간원이 연계하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임명하여 보낼 것을 주청하니, 답하기를, “선조(先朝)에서 독성(禿城)에다 진(鎭)을 설치하고 인해서 방어사를 배치한 것은 계획이 범연했던 것이 아니다. 문관을 방어사로 삼는 것은 옛날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 문관이나 무관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얻어 그에게 맡기는 것이 불가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번거롭게 논의하지 말라.” 하였다.

○己酉十一月十六日癸巳司諫院連啓, 水原府使, 請以文官差送. 答曰: “先朝設鎭於禿城, 仍置防禦使, 計非偶然. 以文官爲防禦使, 古無其例. 就文武中得人而畀之, 未爲不可, 勿須煩論.”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16일(계사)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사간원에서 수원부사를 문관으로 선발하길 요청하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가려 뽑아 보내도록 주청하였다(…)〉

○(司諫院連啓, 水原府使, 請以文官擇送. (…))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17일(갑오) 2번째기사>(중초본)

정치/행정

수원 부사 김거병 등의 체직을 사헌부에서 요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수원(水原) 고을의 입지 조건은 양호(兩湖)를 제어하면서 생산물이 많고 지역이 넓으니, 실로 기전(畿甸)의 근본이 되는 곳입니다. 근래에 방어사의 임무 때문에 잇따라 무신을 파견하여 조치가 적합함을 잃고 공사(公私)가 텅비어 생민들의 피폐함이 이미 구제할 수 없는 데 이르렀습니다. 지난날 간원이 온 나라의 공통된 논의를 인하여 반드시 문관을 임명하여 보내어 변통하려고 했던 것도 대체로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간하기를 열흘 동안 하였으나 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물정이 민망해 하며 답답하게 여김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께서 특별히 김거병(金去病)을 차임하여 내려보내고 또 그의 자급(資級)을 더해주셨습니다. 김거병은 앞서 수사가 되었을 적에 별다른 실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 어사가 백성들의 장계로 인하여 포계(褒啓)하기는 하였지만, 그 포계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이미 공론(公論)에서 드러났으니, 사실이 아닌 포계를 인하여 큰 고을에다 옮겨 임명하는 것은 불가하며 더구나 까닭없이 또 그의 자급을 더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물정이 놀랍게 여기지 않음이 없으니 체개(遞改)하도록 명하고, 그 대신 묘당으로 하여금 각별히 가려 뽑아 보내도록 〈빨리 의논하여 조처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나의 이번 일은 김거병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고, 실로 옛사람이 준마(駿馬)의 뼈를 사들인 뜻을 본받은 것이니, 번거롭게 논의하지 말라. 그리고 박엽이 성을 쌓고 군량을 저축한 것과 한여숙이 수적을 조처하여 잡은 것에 이르러서는 당연히 포상해야 할 바이며, 한 자급을 더해준 것은 외람된 일이 아니다.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거병은 앞서 경기 수사가 되었을 적에 별다른 실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고 모람되며 윗사람 잘 섬기는 것을 일로 삼았고, 박엽이 성을 쌓고 군량을 저축한 것은 모두 백성을 속여 이익을 취해서 하였으며, 한여숙이 수적(水賊)을 포획한 것 또한 표류하다 군박(窘迫)하게 된 기회를 틈탄 것이니, 무슨 취할 만하다거나 포상할 만한 실상이 있겠는가. 〈대간이 된 자는 당연히 그 실상을 밝혀 극력 간하여, 한편으로는 작상이 외람됨을 징계하고 한편으로는 요행을 바라는 문을 막도록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불가하다는 뜻을 대략 말하기를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하였으며, 마침내는 세 차례 아뢰고서 정지하는 데 이르렀다. 아, 김거병·박엽과 같은 무리조차 직접 배척하여 미움을 당하려고 아니하는데, 어찌 군상의 과실을 바로잡기를 바라겠는가.〉

○己酉十一月二十二日己亥司憲府啓曰：“水原爲邑，控制兩湖，物衆地大，實畿甸根本之地。近以防禦使之故，連遣武臣，施措失宜，公私赤立，生民之弊，已至於不可救。頃日諫院因一國公共之論，必以文官差遣，欲爲變通者，蓋出於不得已也。爭之浹旬，而未得蒙命，物情之悶鬱極矣。今者自上特以金去病差下，又加其資。去病前爲水使時，別無實績，其時御史，雖因民人等狀褒啓，而其褒啓之不實，已發於公論，不可因不實之褒啓而移授巨邑，況無故又加其資乎？物情莫不驚駭。請命遞改，其代令廟堂各別擇遣，(速爲議處何如?) (…)” 答曰：“予之此舉，非私於去病，實法古人市駿骨之意也，勿爲煩論。至於朴燁之築城峙糧·韓汝淑之措捕水賊，在

所當褒，一資之加，非有濫也。不允。” 史臣曰：“金去病前爲京畿水使時，非但別無實績，唯以貪濫善事爲務；朴燁之築城峙糧，皆罔民征利之爲也；韓汝淑之捕獲水賊，亦乘其漂到窘迫之機也，有何可取·可褒之實乎？（爲臺諫者，所當明其實狀而力爭之，一以懲爵賞之濫，一以杜僥倖之門，可也。今乃略言其不可之意，有若出於不得已之舉，終至於三啓而停之。噫！如金去病·朴燁之輩，亦不欲直斥而見忤焉，尙何望糾匡君上之過舉乎？）”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22일(기해)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수원부사 등의 일에 대해 사헌부에서 연계하다

사헌부가 수원 부사를 같고, 평산 부사 박엽(朴燁)과 용강 현령 한여숙(韓汝淑)을 아울러 개정하도록 명할 일로 연계하니, 이미 유지하였으니 윤택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司憲府連啓, 水原府事/使遞改, 平山府使朴燁·龍岡縣令韓汝淑, 竝命改正事. 答曰: “已諭, 不允.”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23일(경자)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수원부사 등의 일에 대해 사헌부에서 연계하다

사헌부가 연계하여, 수원 부사를 같고, 평산 부사 박엽과 용강 현령 한여숙을 아울러 개정하도록 명하기를 청하니, 윤택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己酉十一月二十四日辛丑司憲府連啓, 請水原府使遞改; 平山府使朴燁·龍岡縣令韓汝淑, 竝命改正. 答曰: “不允.”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24일(신축)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수원 부사에 적합한 사람을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 천거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수원 부사에 적합한 사람을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천거하게 하라.”

○傳曰: “水原府使可合人, 令備邊司議薦.”

<광해군일기 41권, 광해군 3년 5월 16일(을묘) 4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비변사에서 수원에 방어사를 두지 말 것을 청하니 우선 그대로 두라고 전교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에 적합한 사람을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천거토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자년간에 선왕께서 경기 병사(京畿兵使)를 설치하고자 하시어 의논이 비변사에 내려졌는데, 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대부분 ‘경기는 물력(物力)이 잔박(殘薄)하며 사환(使喚)과 공돈(供頓)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니, 만일 부득이하다면 우선은 방어사를 두어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살피게 한 뒤, 불편할 경우 즉시 없애고, 만약 편리하다면 수사(水使)를 줄이고 화도 첨사(花島僉使)를 다시 설치하되 수사의 아랫사람을 수원(水原)으로 옮기고 이어 병사(兵使)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하였습니다. 이를 계품하여 방어사를 두었는데, 그 의도는 대체로 방어사가 불편하다면 없애고 만약 편리하여 없애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병사를 다시 설치하는 문제를 의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본부는 서울과 가까이 위치하여 여러모로 침탈을 받고, 관고(官庫)가 점차 바닥이 나고 체역(遞易)이 빈번하니 방어사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이 혹은 ‘부사는 치적이 훌륭한 문관을 골라 보내고, 독성 중군(禿城中軍)은 당상 무관을 한껏 엄밀히 가려서 보내어 산성(山城)의 군사 조련의 일을 구관(句管)하게 하면 진실로 적절하다. 만약 느닷없이 방어사를 없애는 것이 꺼림칙하다면, 구사직(具思稷)이 나이가 지긋한 무재(武宰)로 청렴하고 신중하여 적합할 듯하다. 그러나 문관을 가려 보내는 것만은 못하고, 방어사는 서울에 있는 무관을 칭호(稱號)하며 대령하게 하더라도 안 될 것이 뭐 있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방어사는 우선 근래의 규정에 따라 그대로 두고, 구사직을 차송하라. 그의 적합한 무장도 아울러 의논하여 천거하라.” 하였다.

○辛亥五月二十二日辛酉備邊司啓曰：“有旨，水原府使可合人，令備邊司議薦事，傳教矣。往在庚子年間，先王欲置京畿兵使，議下備邊司，群議多以為：‘京畿物力殘薄，使喚·供頓出處無由。如不得已則姑置防禦使，觀其建置便否，不便則即罷之，若便則減水使，復花渡僉使，移水使下人於水原，仍置兵使爲當。’以此啓稟，而置防禦使，其意蓋防禦使不便則罷之，不罷則當議復兵使者也。本府密邇京輦，被侵多端，官庫漸耗，遞易頻繁，防禦使之置，果何益哉？議者或以爲：‘府使則以善治文官差遣，禿城中軍，以堂上武官極擇差送，句管山城鍊兵之事，則允爲便當。若以狃革防禦使爲重也，則具思稷年久武宰，清慎似可合。而然不若差遣文官之爲勝，防禦使則以在京武官稱號待命，亦何不可？’云。”傳曰：“防禦使姑仍近規，差送具思稷外，他可合武將，竝議薦。”

<광해군일기 41권, 광해군 3년 5월 22일(신유)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비변사에서 수원부에 문관을 골라 보낼 것을 청하니 구사직을 차송하라고 전교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기보(畿輔)의 중요 지역인 수원부(水原府)가 나날이 조폐(凋弊)되고 있으니, 만약 예전처럼 무장을 보내게 되면, 아무리 그가 재국(才局)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결코 진압하여 수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다들 ‘불가불 문관을 가려 보내어 그전 잘못을 고쳐야 한다.’ 고 합니다. 지난날에 탄핵을 입은 방어사들이 어찌 모두다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자리에 있다가 중론(重論)에 걸렸겠습니까. 본사의 뜻은 아무래도 문관을 골라 보내는 것이 좋다고 여기기에, 감히 이를 거둬 여쭙니다. 무장을 굳이 추가로 천거하자면, 이수일(李守一)이 전에 부사를 지낸 경력이 있고, 그밖에 다른 사람은 오래도록 지탱해내지 못할 듯하므로, 부득이 우선 재택(裁擇)하시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방어사에 구사직을 차송하라.” 하였다.

○辛亥五月二十三日壬戌備邊司啓曰：“水原一府，以畿輔重地，日就凋弊，若仍遣武將，則雖是才局超衆者，決難鎮壓收拾。群議皆以為：‘不可不擇遣文官，以改前轍。’向來被彈之防禦使，豈盡尸職而罹重論哉？本司之意，終始擇遣文官爲便，敢此申稟。姑欲以武將加薦，則李守一曾經府使，而此外他人，恐未堪久爲支撐，不得已姑備裁擇。”傳曰：“防禦使以具思稷差送。”

<광해군일기 41권, 광해군 3년 5월 23일(임술) 1번째기사>(중초본)

정치/행정

구사직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구사직(具思稷)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以具思稷爲水原府使.(…)

<광해군일기 41권, 광해군 3년 5월 28일(정묘) 3번째기사>(중초본)

정치/행정

사헌부에서 수원 부사로 구사직을 파직하고 문관을 제수하길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 수원 부사 구사직(具思稷)은 늙고 병이 중할 뿐 아니라 복잡한 일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도입한 뒤, 스스로 보전하기 어려움을 알고 모든 관청 일을 수습할 생각이 없으니, 경기(京畿)를 방어하는 중요한 곳이 날로 형편없이 되어갑니다. 만약 지금 변통하지 않고 그대로 무부의 손에 맡겨둔다면, 방어한다는 헛된 명분은 될지 모르나, 끝내 보장하는 실효는 없을 것이므로 반드시 땅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구사직을 파직하고 대신 문관으로 성적(聲績)이 아주 뚜렷한 자를 잘 가려서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가려 보내는 일은 천천히 조치하겠다. <다른 것들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司憲府啓: “(…) 水原府使具思稷, 非但年老病重, 不合治劇. 到任之後, 自知難保, 凡百官事, 無意收拾, 使畿防重地, 日就無形. 若不及今變通, 徒委於武夫之手, 則雖有防禦之虛名, 終無保障之實效, 必至於棄地而後已. 具思稷, 請命罷職, 其代以文官中, 聲績最著者, 十分擇遣. (…)” 答曰: “(…) 水原府使, 文官擇遣事, 徐當發落. (他餘事依啓.)”

<광해군일기 46권, 광해군 3년 10월 18일(갑신) 3번째기사>(중초본)

정치/행정

이조에서 문관 가운데 장재가 있는 자를 뽑아 수원 부사를 제수할 것을 청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문관 당상(文官堂上) 가운데 장재(將才)가 있는 자를 차출하여 보내서 방어사(防禦使)의 일을 겸임하게 하도록 정원에 분부하였습니다. 수원은 원래 방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역인데다가 겸방어사는 감히 해조가 의례적으로 차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인재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망 천거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吏曹啓曰: “水原府使, 以文官堂上中, 有將才者差送, 兼防禦使事, 政院分付矣. 水原元係防禦重地, 況兼防禦使, 非該曹所敢例差. 可合之人, 令備邊司擬薦何如?” 傳曰: “允.”

<광해군일기 47권, 광해군 3년 11월 5일(경자) 3번째기사>(중초본)

정치/행정

강홍립을 차출하여 수원 부사로 제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비(吏批)의 계사에 수원 부사(水原府使)와 인동 부사(仁同府使)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천(議薦)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사의 시임 대신(時任大臣)이 모두 유고(有故)하여 시급히 의논하여 처리해야 할 모든 일들을 미처 회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을 이미 계지(啓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원 부사와 인동 부사를 의천하는 일은 대신에게서 마감할 수가 없어서 <형편상 하기가 어려우니> 이조로 하여금 잘 뽑

아서 차출하게 하고, 방어사(防禦使)를 겸임하게 하는 한 조항은 대신이 출사한 다음에 본사가 의계(議啓)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수원 부사는 강홍립(姜弘立)을 차출하여 보내서 방어사의 임무를 겸임하게 하라.” 하였다.

○備邊司啓曰：“(吏批啓辭, 水原府使·仁同府使, 當令備邊司議薦矣.) 本司時任大臣, 竝皆有故, 凡時急議處之事, 未及回啓矣.(之意, 已經啓知.) 今此水原府使·仁同府使, 議薦之事, 不得磨勘於大臣.(勢難爲之.) 請令吏曹極擇差出, 而兼防禦使一款, 則待大臣出仕後, 自本司議啓爲便. 敢啓.” 傳曰：“允. 水原府使, 以姜弘立差遣, 使兼防禦使之任.”

<광해군일기 47권, 광해군 3년 11월 16일(신해)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내년 봄 수원 등지에 어사를 파견하여 무재(武才)를 시열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강화(江華)·수원(水原)·죽산(竹山)·용진(龍津) 등지에 내년 봄을 기다려 어사를 나누어 파견하여 무재(武才)를 시열(試閱)하게 하라.”

○傳曰：“江華·水原·竹山·龍津等處, 待明春, 分遣御史, 試閱武才.”

<광해군일기 61권, 광해군 4년 12월 8일(정유) 3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이충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도목정이 있었다. (...) 이충(李冲)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有都目政. (...) 李冲爲水原府使.(...))

<광해군일기 80권, 광해군 6년 7월 3일(계축) 15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수원부사는 비가 갠 뒤에 숙배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수원 부사는 비가 개기를 기다려 숙배하라.> (...)”

○甲寅七月十八日戊辰傳曰：“(水原府使李冲待晴肅拜.)(...)”

<광해군일기 80권, 광해군 6년 7월 18일(무진)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송석경·박홍도·윤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윤중삼(尹重三)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 尹重三(爲)水原府使.(...)

<광해군일기 86권, 광해군 7년 1월 20일(정묘)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수원 등의 사례에 따라 성주를 강동할 수도 있다는 심희수의 의견

이조가 아뢰기를, “성주(星州)를 합속시키는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해 보니, (...) 영돈녕 심희수는 의논드리기를 ‘큰 고을을 작은 현에 소속시킨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듯하고, 주나 부를 강동하여 현감을 삼은 것은 평소의 안동·수원이나 근일의 충원·서원 등의 예가 있으니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반드시 본주를 영원히 혁파하여 다른 읍에 붙이시려면

좀 큰 지역인 대구에 붙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적으로 작은 읍 하나에 소속시킨다면 토양이 편중되어 걸맞지 않은 점이 있고 남북이 괴리되어 다투는 불편한 근심이 있습니다. 신은 사실 흥미하여 처치할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께서 재량하소서.’ 하였습니다. (…)” 하니, 영상과 우상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

○吏曹啓曰：“星州合屬事，議于大臣，(…) 沈領敦寧沈喜壽議：‘以大邑屬於小縣，似無前例，州府降爲縣監，如平時安東·水原，近日忠原·西原等例，未爲不可。若必永革本州，以附他邑，則附之於大丘稍巨之地，未知如何。若全屬於一小邑，則土壤有偏重不稱之分，南北有乖，爭不便之患。臣實昏耗，未能的知處置之宜。伏惟上裁。’ (…)” 傳曰：“依領·相右相議施行。”

<광해군일기 98권, 광해군 7년 12월 4일(병오)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권진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권진(權縉)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 權縉爲水原府使. (…)

<광해군일기 102권, 광해군 8년 4월 30일(기사)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수원 부사 권진에게 자헌대부를 가자하다

전교하였다. “수원 부사 권진(權縉)을 지금 자헌 대부로 차서를 건너뛰어서 가자하라.”

○傳曰：“水原府使權縉，今超資憲.”

<광해군일기 102권, 8년 4월 30일(기사) 3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해유가 끝나지 않아도 수원부사 권진이 함경감사로 부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함경도 감사 권진(權縉)이 수원부(水原府)에서 지금 이미 올라왔습니  
다. 만약 해유(解由)가 완전히 나오기를 기다려서 부임한다면 날짜가 점차 지체될 것이니,  
북쪽 변경의 일이 염려됩니다. 그러니 권진은 비록 해유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속히 부임하  
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마땅히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면대해 유지하여 보내겠다. 사은(謝  
恩) 역시 멀지 않았으니, 다음달 사이에 천천히 내려보내라. 그리고 권진이 내려가기 전에  
북쪽 변경의 방비와 구황(救荒) 등에 관한 일을 본사에서 상세하게 의논하여 품정한 다음  
지시해서 보내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권진의 사람됨은 천성이 흉악한데 아부를 잘해 충애를 받아서 여러 차례 청  
반(淸班)을 역임하였다. 수원부의 방어사가 되었을 때에는 처사가 망령스러웠으며, 백성들  
을 학대하여 마구 재물을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권채(權綵) 역시 남포 현감(藍  
浦縣監)으로 있으면서 탐욕스럽고 잔학하게 굴면서 마구 거두어들임이 끝이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분묘가 파헤쳐 지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 권진으로서는 마땅히  
동생을 꾸짖어 개과천선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아 행실을 고쳤어야 한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핑계로 죄없는 사람 5, 6명을 마구 죽였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들  
그의 잔혹함에 대해 통분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북문(北門)의 중요한 지역을 이 사람에게



내맡겼다. 더구나 이 때를 당해서는 남북(南北) 두 도에 기근이 겹쳐서 유망하는 자가 서로 잇달았으므로 잘 보살피 주지 않으면 보존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런 폭리(暴吏)를 만났으니, 불쌍하게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이로부터 다 죽게 생겼다. 이에 관방(關防)의 요치가 장차 텅비게 되었으니,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

○備邊司啓曰：“咸鏡(道)監司權縉，自水原今已上來。若待解由完出後赴任，則時日漸遲，北門之事，委屬可慮。權縉雖未解由，速令赴任宜當。”傳曰：“予當待差病，面諭以送。謝恩亦不久，來月間徐爲下送。且權縉未下去前，北邊防備·救荒等事，自本司詳議稟定，指授以送。”史臣曰：“縉之爲人，賦性兇惡，阿諛見寵，累歷清班。爲水原府防禦使時，處事狂妄，殘虐百姓，徵斂無藝。且其弟綵，亦以藍浦縣倅，貪殘剝割，無所不至，以致其父塚掘破燒屍。如縉者，所當責弟改過·反躬自飭。而托以復父之讎，擅殺無辜之人，至於五六。其爲殘酷，人莫不痛惋，而北門重地，遽委此人。況當此時，南北兩道，饑饉荐臻，流亡相繼，若非字撫，難以保存。逢此暴吏，予遺殘氓，從此盡之矣。關防鎖鑰，將至空虛，可勝歎哉！”

<광해군일기 117권, 광해군 9년 7월 26일(무자) 4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수연에 참여할 일로 수원 부사를 부를 때 표신을 내려 보내게 하다

<전교하였다. “수원 부사를 수연(壽宴)에 참여할 일로 불러올 때에 표신(標信)을 내려보낼 것을 살펴서 하라.” >

○(傳曰：“水原府使，壽宴入參事招來時，標信下送事，察爲.”)

<광해군일기 120권, 광해군 9년 10월 8일(기해) 3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사헌부에서 수원 부사 최응허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요즘 들어 나라에 공의(公議)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수원 부사 최응허(崔應虛)는 본래 비루한 인간으로서 부자가 되려고 급급한 나머지 본부(本府)의 지역에서 널리 전장(田庄)을 점유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투어 모여들어 하나의 큰 취락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여 남의 노비를 빼앗아 관아 속에 많이 모아놓고는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것인 양 꾸미면서 법사(法司)에 정장(呈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아 안에서 최근 규방(閨房)의 변고가 있었는 데도 제대로 잘 처리하지를 못해 나라에 말이 자자합니다. 영원히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소서.(…)”

하니, 서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司憲府啓曰：“近來國無公議，人無廉恥。水原府使崔應虛，本以鄙瑣之人，急於圖富，廣占田庄於本府地，人皆爭集，成一大村。猶爲不足，奪人藏獲，多聚衙中，有若祖上傳得之物，至於呈狀於法司。不特此也。衙中近有帷薄之變，而不能善處，國言藉藉。請命永不敘用。(…)”

答曰：“徐當發落。”

<광해군일기 128권, 광해군 10년 5월 25일(임자) 5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경기 감사의 서목에 수원 부사 최응허를 폄출하는 일로 대죄한다고 하다

<경기 감사의 서목(書目)에, “수원 부사(水原府使) 최응허(崔應虛)는 폄출(貶黜)해야 마땅할 듯한데 바야흐로 다시 조사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처치하기 전이라서 신이 감히 앞

질러 펴출시키지 못하겠기에 황공한 심정으로 대죄(待罪)합니다.” 하였는데, 이를 입계하였다.)

○(京畿監司書目: “水原府使崔應虛, 似當居貶, 而方有更查之命, 未及處置之前, 臣不敢徑先貶黜, 惶恐待罪事, 入啓.”)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15일(임신) 5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 수원에서 별시를 거행하기로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금년에 시행해야 할 과거가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변무(辨誣) 회시(會試), 관복(冠服)과 추숭(追崇)을 합해 실시하는 별시(別試), 식년(式年) 제과(諸科)의 초시(初試)와 회시, 수원(水原)의 별시 등을 모두 차례로 거행해야 하는데, 지금 전교하신 데 따라 또 하나의 과거를 실시해야 하고 보면 과거가 더욱 빈번하게 되어 1년 안에 모두 실시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번에 널리 무사를 뽑는 과거야말로 서쪽 변방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7월 안으로 역마를 띄워 행이(行移)하고, 문과(文科)의 규정은 정시의 예에 의거하여 마련하는 것이 마땅할 듯싶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문과는 정시의 예에 따라 약간만 뽑고 무과는 널리 뽑을 일로 다시 의논해 처리하라.” 하였다.

○戊午六月十六日癸酉禮曹啓曰: “傳教矣. 今年應行科擧甚多. 前頭有辨誣會試, 冠服追崇合爲別試, 式年諸科初試·會試, 水原別試, 皆當次第舉行, 而今因傳教, 又設一科, 則科擧尤爲頻數, 一年之內, 決不能盡行矣. 但今此廣取武士之擧, 實爲西邊防戍而設, 則七月內, 發馬行移, 文科規矩, 則依庭試例爲之, 似當.” 傳曰: “依啓. 文科依庭試例略取, 而武科, 廣取事更議以處.”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16일(계유)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 비변사에서 수원의 독성 등은 꼭 지켜야 할 곳으로 포함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비망기로〉 각도의 병사를 나누어 들여보내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강도(江都)야말로 보장(保障)으로 삼을 지역이고 남한 산성(南漢山城)과 파주 산성(坡州山城) 등도 꼭 지켜야 할 곳이니 군사를 나누어 들여보내 지키도록 하신 성상의 분부가 참으로 지당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삼각 산성(三角山城)의 경우는 그 형세가 어떠한지 공역(功役)은 얼마나 들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반드시 일을 아는 사람을 파견하여 성터를 살펴보고 그 지형을 그려오게 해서 과연 지킬 만한 곳인지를 안 다음에야 어느 지역 어느 고을의 병사를 어느 곳에 나누어 지키게 할 것인지를 상의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水原)의 독성(禿城)과 파주(坡州)의 임진(臨津)도 꼭 지켜야 할 곳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해처로서 파수해야 할 곳이 무려 5, 6곳이나 되는 셈인데, 군병과 기계를 나누어 보내는 것도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량을 조달하는 문제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으니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곡식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인데 따로 규정을 만들어 다방면으로 곡식을 모집한다면 약간의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상 무신에게 임무를 나누어 부여하는 일 역시 성상의 분부대로 따라야 할 것이니, 광주 목사(廣州牧使)를 우선 가려 보내도록 하소서. 〈그런데 양주(楊州)의 경우는 간심(看審)하

기를 기다리고 나서 처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備邊司啓曰：“備忘記，各道兵，分爲入守事，傳有教矣。江都乃保障之處，南漢·坡州等山城，亦必守之地，分兵入守之事，聖教，誠爲允當。但三角山城則未知其形勢之如何，功役之多少，必發遣解事之人，看審其基址，圖畫其地形以來，知其可守然後，某處某邑之兵，分守某地之事，可以商議以處。水原之禿城·坡州之臨津，亦當在必守之地。要害把守之所，多至五六處，非但軍兵·機械分派之極難，至於糧餉一事，百計無策，誠爲可慮。得粟之策，爲今日之急務，別立科條，多般募粟，不無一分之助。堂上武臣分界之事，亦依聖教，請廣州牧使爲先擇送。(楊州待看審後處置，何如?)” 傳曰：“允。”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19일(병자) 1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 병조가 전국적인 무과 시행에서 수원 등의 정시와 같이 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 양서의 공사 노비와 백도(白徒)들이 과연 하늘을 능가할 듯한 이적들의 기세를 막을 수 있겠는가. 비록 무사를 시험보아 뽑더라도 즉시 군대의 정원으로 충당한다면 어찌 감소하는 일이 있겠는가. 10만 명은 뽑지 못한다 하더라도 2, 3만 명은 뽑지 않을 수 없으니, 속히 규정을 품신하여 정하고 각도에서 널리 뽑으라.” > 서둘러 규정을 품정하여 각도에서 많은 인재를 뽑도록 하는 일로 판하하였습니다. 각도의 무사들에게 과거를 보여 널리 뽑으면서 규정을 세밀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합격자가 분명 많을 것이니, 작년에 있었던 정시(庭試)의 별시에서 적용한 규정을 준용하여 육냥전(六兩箭) 두 개를 가지고 80보의 거리에서 쏘는 것과 말을 타고 쏘아 일차에 두 번 적중한 자 이상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육냥전 두 개를 모두 합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며, 두 개의 화살 중 한 개를 적중한 자만 합격시키더라도 널리 인재를 취하려 한 본래의 뜻에 부합될 듯하니, 이런 정도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시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인재를 뽑는 것이어서 일의 체모가 수원과 개성에서 보이는 정시와 다름이 없으니, 당상관 중에서 시종관을 지낸 경력에 명망이 있는 인물을 각도에서 한 명씩 차출하여 가승지의 직함을 부여하여 내려보내 시험의 체면을 중하게 하소서. 그리고 시험을 보여 뽑은 뒤에 서울로 오게 하여 다시 전시(殿試)를 보여 석차를 정하도록 하소서. 몇만 명에 달할 무과출신의 홍패(紅牌)를 만들 종이를 해조에서 마련할 길이 없으니 각도에서 인원수에 맞추어 관아에서 준비하여 염색해 두었다가 일시에 상납하게 한 뒤 내용을 써 넣어 나누어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己未十月十五日甲子兵曹啓曰：“(...) 兩西公私賤白徒，其果能遏滔天之賊乎？雖或取人，卽爲充定軍額，則有何減耗之事乎？十萬雖不得取之二三萬不可不取，急急稟定規矩，廣取於各道事，判下，而各道武士設科廣取，規矩不狹，參榜者必多，遵倣上年庭試別試規矩，六兩二矢八十步，騎射一次二中以上磨鍊，而六兩二矢俱入格，似或不易，二矢中一矢入格者竝取，似合於廣取本意，依此磨鍊何如？此科係是別樣取人，事體與水原·開城府庭試無異，堂上官中曾經侍從有名望人，各道各一員擇差，各道京試官假承旨結銜下送，以重體面。試取後各其舉人來赴京師，更爲殿試，以定坐次。累萬出身紅牌紙，自該曹辦出無路，令各其道准其入格名數紅牌紙，官備入染，一時來納書填安室，頒給宜當。(...)” 從之。

<광해군일기 145권, 광해군 11년 10월 15일(갑자)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행정

의정부가 역적의 집에서 몰수한 수원의 제언 등을 선례대로 넉넉히 내려줄 것을 요청하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본부 아문의 면모는 여느 각사와 다르니 토지와 노복의 원수는 더 많  
 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종 때부터 모든 역적의 노비와 전답 등의 물자를 반드시 여느 각사  
 보다 더 넉넉히 주어 온 것도 그 의도가 있어서였던 것으로, 지금 사환하는 노비는 모두 그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난리를 겪은 뒤에 다 흩어져 없어지고 열에 한둘도 남아 있지 않아  
 모양이 말이 아니니, 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에 역적의 집에서 몰수한 노비들 및 수원  
 (水原)·용안(龍岸)·당진(唐津)의 제언(堤堰)과 부안(扶安)의 제언·어살(魚箭) 등을 예전  
 의 선례에 따라 각별히 넉넉히 내려주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己巳/議政府啓曰: “本府衙門體面, 與各司不同, 而典僕元數不多, 故自祖宗朝, 凡逆賊奴婢  
 田畝之物, 優數賜給, 必先於他司, 意有所在. 至今使喚之奴婢, 皆其後裔, 而亂後散亡, 十無  
 一二, 不成貌樣, 極爲可慮. 今此逆家沒官奴婢等及水原·龍安·唐津堤堰, 扶安堤堰·魚箭等  
 處, 請依古例, 各別從優賜給.” 傳曰: “依啓.”

<광해군일기 7권, 광해군 즉위년 8월 15일(기사)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수원부사 정항의 파직을 사간원에서 요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생산되는 물품이 많고 땅이 넓어 기전(畿甸)의 근본이  
 되는 지역으로 옛날의 삼보(三輔)와 같아 본래 다스리기 어렵다고 일컬어졌으니, 결단코 무  
 부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근래에는 방어사(防禦使)를 겸하기 때문에 잇따라 무관을  
 파견하여 웅대하고 부유했던 고을을 점차로 탕패(蕩敗)되게 하였습니다. 부사 정항(鄭沆)은  
 도입한 뒤 오로지 폐단을 끼침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관고(官庫)는 텅텅 비어 앞으로  
 버려진 땅이 되어 버릴 형편이니 때맞추어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로 문관으로서  
 명망과 국량이 있는 자를 가려서 보낸다면, 그 지역의 풍성한 물력(物力)을 가지고 폐단에서  
 회복시키고 쇠잔한 데서 소생시키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조정이 부사에게 방어  
 사를 겸하게 한 것은 산성(山城)에 대한 한 가지 일 때문으로 뒷날 급한 때를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관 가운데 이 임무를 감당할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정항을 파직  
 하도록 명하고 그 대신 문관을 극도로 정밀하게 가려 임명하여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요즈음의 조처를 관찰하건대 무관이 임명을 받은 곳에 모두 문관으로 바꾸어 보내니, 아  
 마도 문관·무관을 아울러 기용하는 의미가 아닌 듯하다. 평소에 그 부귀를 함께하지 않고  
 서 변란에 임하여 그들에게 말에 먼저 오르게 한다면 그것이 옳겠는가. 수원 부사를 문관으  
 로 가려 임명하는 것은 할 수 없다.” 하였다.

○癸未/司諫院啓曰: “水原, 物衆地大, 爲畿甸根本之地, 有如古之三輔, 素稱難治, 決不可付  
 諸武夫之手. 近來以兼防禦使之故, 連遣武弁, 使雄富之邑, 漸就蕩敗. 而府使鄭沆, 到任之後,  
 專以貽弊日滋, 官庫空虛, 將不免爲棄地, 不可不及時變通. 誠以文官有名望幹局者擇送, 則以  
 其地物力之盛, 有何難於起弊蘇殘? 朝廷以府使兼防禦使者, 爲山城一事, 欲備異日緩急矣. 然  
 文官之中, 豈無能堪是任者乎? 鄭沆請命罷職, 其代以文官, 極擇差送.” 答曰: “第觀近日舉  
 措, 武官受任之地, 皆以文官換送, 恐非文武并用之意也. 平居不與之同其富貴, 而臨亂使之躍  
 馬先登, 其可乎哉? 水原府使, 文官擇差, 不可爲也.”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6일(계미)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 김거병에게 수원 부사를 제수하는 것에 대해 이조에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경기 수사 김거병(金去病)에 대하여 지난날 어사의 서계에서 청렴 근신하며 절개를 지킨다는 것으로 칭찬하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잊은 적이 없다. 김거병의 직질을 승진시켜 수원 부사로 임명하고 방어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고무시키고 권면하는 바탕을 삼게 하소서.”

○甲申/傳曰：“京畿水使金去病，前日御史書啓，稱之以清謹自持，予未嘗忘其人也。金去病陞秩，水原府使除授，仍兼防禦使，以爲聳動激勸之地。”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7일(갑신)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 대사간 박이장 등이 수원부사를 문관으로 선발할 것을 요청하다

대사간 박이장(朴而章), 사간 윤양(尹讓), 헌납 오익(吳翊), 정언 윤중삼(尹重三)이 아뢰기를,

“대간은 인주의 이목 역할을 해야 하니 진실로 국가에 보탬이 있는 경우이면 일에 따라 논열하여 천총(天聰)을 돌이키도록 기약하는 것이 바로 그 직분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윤희를 받지 못할 경우 간혹 정계(停啓)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대간이 바야흐로 논계하고 있는 때에 성상께서 그것을 정계하도록 기대하면서 전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가려 뽑아 보내는 일은 실제로 중앙과 지방의 공통된 논의에서 나온 것으로 신들 한두 명의 사사로운 견해가 아닙니다. 신들이 바야흐로 논계하는 즈음에 갑자기 무장(武將)을 임명하도록 이름을 거론하여 해조에 회부하였으며, 신들이 언관의 지위에 대죄(待罪)하고 있는데 말이 신임을 받지 못하였으니, 뻔뻔스럽게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체임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가 우연하게 생각이 미쳐 해조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원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정원으로 하여금 정계하거든 물으라고 하였다. 이는 진실로 대간의 뜻을 소중히 여긴 데서 나온 것이니, 아마도 회피할 만한 내용이 아닌 듯하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물러가 기다렸다.

○大司諫朴而章·司諫尹讓·獻納吳翊·正言尹重三啓曰：“臺諫爲人主耳目，苟有裨益於國家者，則隨事論列，期回天聰，乃其職也。而至於終未蒙允，或爲停啓者，出於不得已也。豈有臺諫，方爲論啓之時，自上期待其停啓而傳教乎？水原府使擇送文官之事，實出於中外公共之論，非臣等一二人之私見也。臣等方論啓之際，遽以武將除授，舉名下司。臣等待罪言地，言未見信，不可晏然仍冒，請命遞職。” 答曰：“予偶然念及，欲問于該曹，而政院爲言，故使之姑(亭) [停] 下問。此實出於重臺諫之意，恐非可避之辭也。勿辭。” 退待。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8일(을유) 3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 사헌부에서 수원부사를 문관으로 뽑아 보내기를 요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대사간 이하가 함께 인협하고 물러났습니다. 수원은 바로 도성의 율타리입니다. 근래에 무신을 잇따라 임명해서 보낸 것을 인하여 고을은 피폐하고 주민들을 흩어져 장차 버려두는 땅이 될 상황입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흉년을 만나 수습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니 이런 때에 이르러 문관을 가려 보내어 회복하도록 기약하는 것이야말로 조야

(朝野)의 공통된 논의인데, 간원의 계사는 대체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간관이 한창 논쟁하고 있는 즈음에 갑자기 무장을 임명하는 데 대하여 하문을 하셨으며, 이것이 간원이 마음속으로 불안해하면서 피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당초의 논쟁은 국사(國事)를 염려하여 언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 데 불과한 것일 뿐이며, 지금의 피험 또한 단지 언관의 체모를 붙들어 세우려는 것일 뿐이니, 별로 실수한 바가 없습니다.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司憲府啓曰：“大司諫以下，并引嫌而退。水原，乃國之藩蔽，近因武臣連往，邑弊民散，將爲棄地。況今值大無，益難收拾，及此時擇送文官期於蘇復者，乃朝野公共之論，諫院之啓辭，蓋以此也。諫官時方論啓之際，遽下武將除授之間，此諫院之所以不安於心，而不得不避者也。初之論啓，不過憂念國事欲盡言責而已，今之避嫌，亦只欲扶植言官體貌而已，別無所失。請竝命出仕。” 答曰：“依啓。”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9일(병술) 3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사간원이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다

사간원이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임명하여 보낼 일을 연계하니, 답하기를, “무변(武弁) 가운데 어찌 적합한 인재가 없겠는가. 나의 견해가 이와 같으므로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司諫院連啓請水原府使文官差送事，答曰：“武弁中，豈無其人乎？予見如此，不允。”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9일(병술) 4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사간원이 수원 부사의 문관 임명을 주청하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임명하여 보낼 것을 주청하니, 답하기를, “경기 방어사를 설치한 것은 선조(先朝)에서부터인데 무장을 임명하여 본부를 겸임하여 다스리게 한 것은 또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하필이면 다시 고쳐야 하겠는가. 오직 적합한 사람을 얻는 것을 힘써야 한다. 문관과 무관을 달리 보아서는 안 되니 번거롭게 고집하지 말라.” 하였다.

○司諫院連啓水原府使請以文官差送，答曰：“京畿防禦使之設，自在先朝，而差以武將，兼治本府，意亦有在。何必更改？唯以得人爲務。不須以文武異觀，勿爲煩執。”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10일(정해) 2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사간원이 수원 부사의 문관 임명을 주청하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임명하여 보내도록 주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司諫院連啓水原府使請以文官差送，不允。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12일(기축) 2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사간원이 수원 부사의 문관 임명을 주청하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임명하여 보낼 것을 주청하니, 답하기를, “선조(先朝)에서 독성(禿城)에다 진(鎭)을 설치하고 인해서 방어사를 배치한 것은 계획이 범연했던 것이 아니다. 문관을 방어사로 삼는 것은 옛날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 문관이나 무관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얻어 그에게 맡기는 것이 불가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번거롭게 논의하지 말라.” 하였다.

○癸巳/司諫院連啓水原府使請以文官差送, 答曰: “先朝設鎭於禿城, 仍置防禦使, 計非偶然. 以文官爲防禦使, 古無其例. 就文武中得人而畀之, 未爲不可, 不須煩論.”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16일(계사)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사헌부가 수원부사를 체직할 것을 아뢰다

사헌부가 수원 부사를 갈고, 평산 부사 박엽(朴燁)과 용강 현령 한여숙(韓汝淑)을 아울러 개정하도록 명할 일로 연계하니, 이미 유시하였으니 윤택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司憲府連啓水原府使遞改, 平山府使朴燁·龍岡縣令韓汝淑竝命改正事, 答曰: “已諭. 不允.”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23일(경자) 2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사헌부에서 수원부사의 교체를 주청하다

사헌부가 연계하여, 수원 부사를 갈고, 평산 부사 박엽과 용강 현령 한여숙을 아울러 개정하도록 명하기를 청하니, 윤택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辛丑/司憲府連啓請水原府使遞改, 平山府使朴燁·龍岡縣令韓汝淑竝命改正, 答曰: “不允.”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24일(신축)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사간원에서 수원 부사 문희성은 탐욕스럽고 무능하다 하여 파직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문희성(文希聖)은 평소의 이력이 없는데도 외람스레 본직에 제수되었고, 오직 제 뱃속을 불리는 일에 정신이 팔려 관고(官庫)를 형편없이 판탕시켰으며, 군정(軍丁)을 뽑을 때에 있어서도 마구잡이로 선발하는 폐해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체를 알지 못하여 어리석고 패려긋으며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단 하루라도 고을에 재직시킬 수 없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본부는 기보(畿輔)의 중요한 지역으로서 누차 비인(匪人)을 겪어 장차 버린 고을이 되어가고 있으니, 그 대신 청렴·근신하고 성적(聲績)이 있는 사람을 각별히 골라서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근일의 논계가 무장(武將)을 대상으로 한 적이 많은데, 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처럼 아뢰니, 일단 추고하라.” 하였다.

○司諫院啓曰: “水原府使文希聖, 素無履歷, 濫授本職, 唯以肥己爲事, 使官庫板蕩無形, 至於抄軍之際, 亦多泛濫之弊. 加以不識事體, 愚悖無忌.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本府以畿輔重地, 屢經匪人, 將爲棄邑, 其代以請謹有聲績人, 各別擇遣.” 答曰: “近日論啓, 多在武將, 予未知何故. 然如是啓之, 姑爲推考.”

<광해군일기 41권, 광해군 3년 5월 12일(신해) 2번째기사>(정초본)

정치/행정

사간원이 연계하여 수원부사 문희성을 파직시키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문희성을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근래에 수원(水原)이 하나의 함정이 되고 있다. 무부(武夫)로서 이 지역에 부임한 자들이 다들 낭패를 당하니 나는 괴이한 생각이 든다. 문희성은 체차하라.” 하였다.

○乙卯/司諫院連啓, 請罷文希聖, 答曰: “近來水原, 爲一窞. 武夫赴此地者, 無不見敗, 予竊怪之. 文希聖遞差.”

<광해군일기 41권, 광해군 3년 5월 16일(을묘) 1번째기사>(정초본)

정치/행정

수원 부사에 적합한 사람을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 천거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수원 부사에 적합한 사람을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천거하게 하라.”

○傳曰: “水原府使可合人, 令備邊司議薦.”

<광해군일기 41권, 광해군 3년 5월 16일(을묘) 2번째기사>(정초본)

정치/행정

비변사에서 수원부에 문관을 골라 보낼 것을 청하자 구사직을 차송하라고 전교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기보(畿輔)의 중요 지역인 수원부(水原府)가 나날이 조폐(凋弊)되고 있으니, 만약 예전처럼 무장을 보내게 되면, 아무리 그가 재국(才局)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결코 진압하여 수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다들 ‘불가불 문관을 가려 보내어 그전 잘못을 고쳐야 한다.’ 고 합니다. 지난날에 탄핵을 입은 방어사들이 어찌 모두다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자리에 있다가 중론(重論)에 걸렸겠습니까. 본사의 뜻은 아무래도 문관을 골라 보내는 것이 좋다고 여기기에, 감히 이를 거둬 여쭙니다. 무장을 굳이 추가로 천거하자면, 이수일(李守一)이 전에 부사를 지낸 경력이 있고, 그밖에 다른 사람은 오래도록 지탱해내지 못할 듯하므로, 부득이 우선 재택(裁擇)하시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방어사에 구사직을 차송하라.” 하였다.

○壬戌/備邊司啓曰: “水原一府, 以畿輔重地, 日就凋弊, 若仍遣武將, 則雖是才局超衆者, 決難鎮壓收拾. 群議皆以爲: ‘不可不擇遣文官, 以改前轍’. 向來被彈之防禦使, 豈盡尸職而罹重論哉? 本司之意, 終始擇遣文官爲便, 敢此申稟. 姑欲以武將加薦, 則李守一曾經府使, 而此外他人, 恐未堪久爲支撐, 不得已姑備裁擇.” 傳曰: “防禦使, 以具思稷差送.”

<광해군일기 41권, 광해군 3년 5월 23일(임술) 1번째기사>(정초본)

정치/행정

구사직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구사직(具思稷)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以具思稷爲水原府使.(…)

<광해군일기 41권, 광해군 3년 5월 28일(정묘) 3번째기사>(정초본)

정치/행정

사헌부에서 수원 부사 구사직 등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 수원 부사 구사직(具思稷)은 늙고 병이 중할 뿐 아니라 복잡한 일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도입한 뒤, 스스로 보전하기 어려움을 알고 모든 관청 일을 수습할 생각이 없으니, 경기(京畿)를 방어하는 중요한 곳이 날로 형편없이 되어갑니다. 만약 지금 변통하지 않고 그대로 무부의 손에 맡겨둔다면, 방어한다는 헛된 명분은 될지 모르나, 끝내 보장하는 실효는 없을 것이므로 반드시 땅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구사직을 파직하고 대신 문관으로 성적(聲績)이 아주 뚜렷한 자를 잘 가려서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 수원 부사를 문관으로 가려 보내는 일은 천천히 조치하겠다.” 하였다.

○司憲府啓: “(…) 水原府使具思稷, 非但年老病重, 不合治劇, 到任之後, 自知難保, 凡百官事, 無意收拾, 使畿防重地, 日就無形. 若不及今變通, 徒委於武夫之手, 則雖有防禦之虛名, 終無保障之實效, 必至於棄地而後已. 具思稷請命罷職, 其代以文官中聲績最著者, 十分擇遣.”

答曰: “(…) 水原府使文官擇遣事, 徐當發落.”

<광해군일기 46권, 광해군 3년 10월 18일(갑신) 2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이조에서 비변사로 하여금 수원 부사를 의망·천거케 할 것을 청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문관 당상(文官堂上) 가운데 장재(將才)가 있는 자를 차출하여 보내서 방어사(防禦使)의 일을 겸임하게 하도록 정원에 분부하였습니다. 수원은 원래 방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역인데다가 겸방어사는 감히 해조가 의례적으로 차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인재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망 천거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진교하였다.

○吏曹啓曰: “水原府使, 以文官堂上中, 有將才者, 差送兼防禦使事, 政院分付矣. 水原元係防禦重地, 況兼防禦使, 非該曹所敢例差. 可合之人, 令備邊司擬薦何如?” 傳曰: “允.”

<광해군일기 47권, 광해군 3년 11월 5일(경자) 2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비변사에서 수원부사의 의망·천거를 이조에 맡길 것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본사의 시임 대신(時任大臣)이 모두 유고(有故)하여 시급히 의논하여 처리해야 할 모든 일들을 미처 회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원 부사와 인동 부사를 의천하는 일은 대신에게서 마감할 수가 없어서 이조로 하여금 잘 뽑아서 차출하게 하고, 방어사(防禦使)를 겸임하게 하는 한 조항은 대신이 출사한 다음에 본사가 의계(議啓)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습니다.”

하니 진교하기를, “윤희한다. 수원 부사는 강홍립(姜弘立)을 차출하여 보내서 방어사의 임무를 겸임하게 하라.” 하였다.

○備邊司啓曰: “本司時任大臣, 竝皆有故, 凡時急議處之事, 未及回啓矣. 今此水原府使·仁同府使議薦之事, 不得磨勘於大臣. 請令吏曹, 極擇差出, 而兼防禦使一款, 則待大臣出仕後, 自本司議啓爲便. 敢啓.” 傳曰: “允. 水原府使, 以姜弘立差遣, 使兼防禦使之任.”

<광해군일기 47권, 광해군 3년 11월 16일(신해) 2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내년 봄 수원 등지에 어사를 파견하여 무재(武才)를 시열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강화(江華)·수원(水原)·죽산(竹山)·용진(龍津) 등지에 내년 봄을 기다려  
어사를 나누어 파견하여 무재(武才)를 시열(試閱)하게 하라.”

○傳曰：“江華·水原·竹山·龍津等處，待明春，分遣御史，試閱武才.”

<광해군일기 61권, 광해군 4년 12월 8일(정유) 2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송석경·박홍도·윤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윤중삼(尹重三)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 尹重三水原府使.(…)

<광해군일기 86권, 광해군 7년 1월 20일(정묘)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고을 강등 여부를 영의정·우의정과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성주(星州)를 합속시키는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해 보니, (…)영돈녕 심희수는 의논드리기를 ‘큰 고을을 작은 현에 소속시킨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듯하고, 주나 부를 강등하여 현감을 삼은 것은 평소의 안동·수원이나 근일의 충원·서원 등의 예가 있으니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반드시 본주를 영원히 혁파하여 다른 읍에 붙이시려면 좀 큰 지역인 대구에 붙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적으로 작은 읍 하나에 소속시킨다면 토양이 편중되어 걸맞지 않은 점이 있고 남북이 괴리되어 다투는 불편한 근심이 있습니다. 신은 사실 혼미하여 처치할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께서 재량하소서.’ 하였고, (…)’ 하였습니다. 이번에 좌의정 정인홍이 탐전에서 아뢰는 말도 호칭을 바꾸어 현으로 강등시키고 고령(高靈)에 소속시키지 말자는 뜻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그 사이에서 감히 의논드리지 못하겠으니, 상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영상과 우상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

○吏曹啓曰：“(…) 領敦寧沈喜壽議：‘以大邑屬於小縣，似無前例，州府降爲縣監，如平時安東·水原，近日忠原·西原等例，未爲不可．若必永革本州，以附他邑，則附之於大丘稍巨之地，未知如何．若全屬於一小邑，則土壤有偏重不稱之分，南北有乖，爭不便之患．臣實昏耗，未能的知處置之宜．伏惟上裁.’ (…)左議政鄭仁弘榻前進啓之說，又不出於改號降縣，不使屬於高靈之意．自知不敢容議於其間，上裁施行何如?” 傳曰：“依領·右相議施行.”

<광해군일기 98권, 광해군 7년 12월 4일(병오) 2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한급·남근·윤영현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권진에게 가자할 것을 명하다

(…) 권진(權縉)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전교하였다. “수원 부사 권진(權縉)을 지금 자헌 대부로 차서를 건너뛰어서 가자하라.”

○(…) 權縉爲水原府使.(…)

○傳曰：“水原府使權縉，今超資憲.”

<광해군일기 102권, 광해군 8년 4월 30일(기사) 2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해유가 끝나지 않아도 수원부사 권진이 함경감사로 부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함경도 감사 권진(權縉)이 수원부(水原府)에서 지금 이미 올라왔습니다. 만약 해유(解由)가 완전히 나오기를 기다려서 부임한다면 날짜가 짐차 지체될 것이니, 북쪽 변경의 일이 염려됩니다.” 그러나 권진은 비록 해유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속히 부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마땅히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면대해 유시하여 보내겠다. 사은(謝恩) 역시 멀지 않았으니, 다음달 사이에 천천히 내려보내라. 그리고 권진이 내려가기 전에 북쪽 변경의 방비와 구황(救荒) 등에 관한 일을 본사에서 상세하게 의논하여 품정한 다음 지시해서 보내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권진의 사람됨은 천성이 흉악한데 아부를 잘해 총애를 받아서 여러 차례 청반(淸班)을 역임하였다. 수원부의 방어사가 되었을 때에는 처사가 망령스러웠으며, 백성들을 확대하여 마구 재물을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권채(權綵) 역시 남포 현감(藍浦縣監)으로 있으면서 탐욕스럽고 잔학하게 굴면서 마구 거두어들임이 끝이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분묘가 파헤쳐 지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권진으로서는 마땅히 동생을 꾸짖어 개과천선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아 행실을 고쳤어야 한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핑계로 죄없는 사람 5, 6명을 마구 죽였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들 그의 잔혹함에 대해 통분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북문(北門)의 중요한 지역을 이 사람에게 내맡겼다. 더구나 이 때를 당해서는 남북(南北) 두 도에 기근이 겹쳐서 유망하는 자가 서로 잇달았으므로 잘 보살펴 주지 않으면 보존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런 폭리(暴吏)를 만났으니, 불쌍하게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이로부터 다 죽게 생겼다. 이에 관방(關防)의 요처가 장차 텅비게 되었으니,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

○備邊司啓曰：“咸鏡監司權縉，自水原今已上來。若待解由完出後赴任，則時日漸遲，北門之事，委屬可慮。權縉雖未解由，速令赴任宜當。” 傳曰：“予當待差病，面諭以送。謝恩亦不久，來月間徐爲下送。且權縉未下去前，北邊防備救荒等事，自本司詳議稟定，指授以送。”

【史臣曰：“縉之爲人，賦性兇惡，阿諛見寵，累歷淸班，爲水原府防禦使，時處事狂妄，殘虐百姓，徵斂無藝。且其弟綵，亦以藍浦縣倅，貪殘剝割，無所不至，以致其父塚掘破屍屍。如縉者，所當責弟改過，反躬自飭，而托以復父之讎，擅殺無辜之人，至於五六。其爲殘酷，人莫不痛惋，而北門重地，遽委此人。況當此時，南北兩道，饑饉荐臻，流亡相繼，若非字撫，難以保存。逢此暴吏，予遺殘氓，從此盡之矣。關防鎖鑰，將至空虛，可勝歎哉？”】

<광해군일기 117권, 광해군 9년 7월 26일(무자) 4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예조에서 영정을 봉안한 수원에 과거를 시행하는 일로 아뢰다

예조가 계목(啓目)을 올리기를, “수원(水原)의 무학(武學) 박예남(朴禮男)이 상소하기를 ‘영정을 봉안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사람들 모두가 은택이 내려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번에 그가 상소한 것이 외람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다른 도의 예(例)에 따라 간략하게 과거 시험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또한 한때의 은전이라 할 것입니다. 상께서 재결(裁決)하시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르기를, “아뢴 대로 윤택한다. 문과(文科)도 아울러 대거(對舉)하여 약간 명을 시취(試取)하도록 하라.” 하였다.

○禮曹啓曰：“水原武學朴禮男上疏，影幀留住之地，人皆希望恩澤，今此上疏，似爲冒濫，而依他道例，從略設科，以慰群情，亦一時之異數也。上裁施行何如？啓：“依允。文科竝略設對舉。”

<광해일기 126권, 광해군 10년 4월 18일(정미) 13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사간원에서 수원 부사 최응허를 사판에서 삭제하기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수원 부사 최응허는 본래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간인데 본직을 제수받자 오로지 자기 살찌울 일만 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욕심을 부리며 백성의 전토(田土)를 탈취하고 백성을 모집하여 경작시키고는 그 집안으로 운반해 들이는가 하면 초군(哨軍)을 많이 동원하여 이웃 경계에 제방을 쌓고는 자기의 소유로 하고 있으므로 온 경내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천창(賤娼)을 많이 데려와 음란한 짓을 일삼고 있는데 그 투기(妬忌)로 말미암아 조카에게 칼질까지 하였으므로 물정이 모두 놀라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사판에서 삭제해 버리라고 명하소서.” 하니, 서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司諫院啓曰：“水原府使崔應虛，本以貪鄙殘忍之人，及授本職，專事肥己。奪取民田，日益無厭，募民耕作，輸入其家，多發哨軍，築堰鄰境，以爲自己之物，闔境嗷嗷，如在水火之中。且多畜賤娼，淫亂是尙，因其妬忌，手刃猶子，物情莫不駭憤。請命削去仕版。” 答曰：“徐當發落。”

<광해군일기 128권, 광해군 10년 5월 25일(임자) 5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정원에서 수원 부사 최응허를 폄출하는 일로 경기 감사를 추고하기를 청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선왕의 법은 지극히 엄하고 중하니 그대로 준수해야지 휘어서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봄과 여름철 경기 지방 수령들에 대해 포폄(褒貶)하고 등제(等第)할 때 감사가 수원 부사(水原府使)의 이름 아래에 등제한 것을 써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2백 년 동안 준수해 온 법이 오늘날 비로소 폐지되고 말았으니 뒷날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등제하는 것과 사핵(查覈)하는 것은 본래 상관이 없습니다. 등제했으면 사실대로 기록하고 사핵했으면 그것도 사실대로 써넣으면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변신(藩臣)의 입장에서 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법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히 전에 없던 폐단을 만들었으니 유희량(柳希亮)을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방금 다시 조사해 아뢰라고 명하였다. 그렇다면 아직 조사해 처치하기 전이라서 등제를 하지 않은 것인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추고하지 말고 속히 조사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壬申/政院啓曰：“先王之法，至嚴至重，所當遵守，不可有所撓改也。今春夏，京圻褒貶等第，監司於水原府使名下，不書等第。二百年遵守之法，始廢於今日，後日之弊，有不可勝言。且等第查覈，本不干涉。等第則以實書之，查覈則亦以實書之，此藩臣守法之常道也。而敢爲無前之弊，請柳希亮推考。” 傳曰：“卽命更爲覈啓，則未覈處前，不爲等第，何妨？勿爲推考，速令覈啓。”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15일(임신)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 예조에서 수원 별시 등의 과거 시행의 방안을 건의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금년에 시행해야 할 과거가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변무(辨誣) 회시(會試), 관복(冠服)과 추숭(追崇)을 합해 실시하는 별시(別試), 식년(式年) 제과(諸科)의 초시(初試)와 회시, 수원(水原)의 별시 등을 모두 차례로 거행해야 하는데, 지금 전교하신 데 따라 또 하나의 과거를 실시해야 하고 보면 과거가 더욱 빈번하게 되어 1년 안에 모두 실시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번에 널리 무사를 뽑는 과거야말로 서쪽 변방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7월 안으로 역마를 띄워 행이(行移)하고, 문과(文科)의 규정은 정시의 예에 의거하여 마련하는 것이 마땅할 듯싶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문과는 정시의 예에 따라 약간만 뽑고 무과는 널리 뽑을 일로 다시 의논해 처리하라.” 하였다.

○癸酉/禮曹啓曰: “今年應行科擧, 甚多. 前頭有辨誣會試, 冠服追崇合爲別試, 式年諸科初試·會試, 水原別試, 皆當次第舉行, 而今因傳教, 又設一科, 則科擧, 尤爲頻數, 一年之內, 決不能盡行矣. 但今此廣取武士之擧, 實爲西邊防戍而設, 則七月內, 發馬行移, 文科規矩, 則依庭試例爲之, 似當.” 傳曰: “依啓.” 文科依庭試例略取, 而武科, 廣取事更議以處.”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16일(계유)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 비변사에서 수원의 독성 등을 꼭 지켜야 할 곳으로 포함시키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각도의 병사를 나누어 들여보내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강도(江都)야말로 보장(保障)으로 삼을 지역이고 남한 산성(南漢山城)과 파주 산성(坡州山城) 등도 꼭 지켜야 할 곳이니 군사를 나누어 들여보내 지키도록 하신 성상의 분부가 참으로 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삼각 산성(三角山城)의 경우는 그 형세가 어떠한지 공역(功役)은 얼마나 들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반드시 일을 아는 사람을 파견하여 성터를 살펴보고 그 지형을 그려오게 해서 과연 지킬 만한 곳인지 안 다음에야 어느 지역 어느 고을의 병사를 어느 곳에 나누어 지키게 할 것인지를 상의해 조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水原)의 독성(禿城)과 파주(坡州)의 임진(臨津)도 꼭 지켜야 할 곳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해처로서 파수해야 할 곳이 무려 5, 6곳이나 되는 셈인데, 군병과 기계를 나누어 보내는 것도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량을 조달하는 문제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으니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곡식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인데 따로 규정을 만들어 다방면으로 곡식을 모집한다면 약간의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상 무신에게 임무를 나누어 부여하는 일 역시 성상의 분부대로 따라야 할 것이니, 광주 목사(廣州牧使)를 우선 가려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備邊司啓曰: “各道兵, 分爲入守事, 有教矣. 江都, 乃保障之處, 南漢·坡州等山城, 亦必守之地, 分兵入守之事, 聖教, 誠爲允當. 但三角山城, 則未知其形勢之如何, 功役之多少, 必發遣解事之人, 看審其基址, 圖畫其地形以來, 知其可守然後, 某處某邑之兵, 分守某地之事, 可以商議以處. 水原之禿城·坡州之臨津, 亦當在必守之地. 要害把守之所, 多至五六處, 非但軍兵·機械分派之極難, 至於糧餉一事, 百計無策, 誠爲可慮. 得粟之策, 爲今日之急務, 別立科條, 多般募粟, 不無一分之助. 堂上武臣分界之事, 亦依聖教, 請廣州牧使爲先擇送.” 傳曰: “允.”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19일(병자) 1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수원 진사 박수준이 상소하여 수원 부사 박자흥의 유임을 건의하다

수원(水原)에 사는 진사 박수준(朴壽俊) 등이 상소하였는데, 부사 박자흥(朴自興)은 군사와 백성을 아끼고 보살폈는데 임기가 다 되었으니 1년만 더 유임시켜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辛亥/水原居進士朴壽俊等上疏, 府使朴自興愛恤軍民, 瓜期將迫, 願留一年.

<광해군일기 159권, 광해군 12년 12월 8일(신해)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행정

인조가 이흥립을 수원 부사로 제수하고 인견하다

상이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흥립(李興立)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비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본부는 중요한 곳인 만큼 경에게 맡겨야 한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랐다마는 지금 떠나보내게 되니 참으로 섭섭하다. 수원은 물산이 풍부하고 지역이 광대한데, 군사의 수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하니 흥립이 아뢰기를, “출신(出身)이 6백여 명, 삼수병(三手兵)이 모두 2천 수백여 명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지금 합당한 장수를 얻었으니, 근심할 것이 없다.” 하였다.

○上引見水原府使李興立, 謂曰: “備局屢啓, 以爲本府重地, 不可不屬卿, 故從之. 今當出去, 良用悵缺. 水原物衆地大, 軍額, 未知, 幾何?” 興立曰: “出身六百餘名, 三手兵, 并二千數百餘名.” 上曰: “今得其將, 可以無憂矣.”

<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11월 6일(임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이경직을 수원 부사로 삼다

이경직(李景稷)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以李景稷爲水原府使.(…)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15일(기해) 13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헌부가 수원의 장관을 심문한 뒤 훈적에서 삭제하길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  
헌부가 아뢰기를, (…)  
“죄인 이경립(李景立)은 군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적에게 붙은 정상이 명백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미처 처형하기 전에 지레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의 간사한 계책은 그의 머리를 보존하고 훈명(勳名)을 보존하려는 것이었으니, 이른바 ‘죽어도 남은 죄가 있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적에서 삭제하십시오.” 하니, 답하기를, “수원(水原)의 장관(將官)을 추문한 뒤에 훈적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

○憲府啓曰: (…)  
又啓曰: “罪人李景立, 非特失律, 附賊之狀, 明白無疑. 未及正刑, 徑自殞斃, 其爲奸計, 蓋欲全其首領而保其勳名, 所謂死有餘罪者, 此之謂也. 請削勳籍.” 答曰:

“水原將官推問後, 削勳可矣.” (…)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28일(임자) 2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의 기고관과 형리의 공초가 명백하니 이경립 등의 안을 속히 거행할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죄인 이경립(李景立)·박효립(朴孝立) 등을 훈적(勳籍)에서 삭제하는 일에 대해 신들이 저번에 이미 논열하여, 사문(查問)한 뒤에 처치하라고 윤허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수원(水原)의 기고관(旗鼓官)·형리(刑吏)가 공초한 것과 도원수 장만(張晩)의 장계한 것이 모두 명백하여 다시 의심스러운 것이 없으니, 안율(按律) 등의 일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빨리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박효립이 적과 서로 통하였다면 반드시 성문을 열고 도피했을 리가 없다. 그 정상을 보면 매우 억울한 듯하니 번거로이 논하지 말라. 이경립은 훈적에서 삭제하라.” 하였다.

○憲府啓曰：“(…) 又啓曰：“罪人李景立·朴孝立等削勳事，臣等頃已論列，而以查問後處置允下矣。今則水原旗鼓官·刑吏所供及都元帥張晩狀啓，皆已明白，更無可疑。按律等事，請令該司，急速舉行。” 答曰：“朴孝立與賊相通，則必無開門逃避之理。觀其情迹，似極冤枉矣，勿爲煩論。李景立，削勳。”

<인조실록 5권, 인조 2년 3월 4일(무오) 3번째기사>

정치/행정

이시백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이시백(李時白)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 李時白爲水原府使.

<인조실록 6권, 인조 2년 8월 24일(병오) 4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 등지에서 과장을 열 때 승지가 내려갔다

정원이 아뢰기를, “지금 영흥부(永興府)에 과장(科場)을 열려고 하는데, 지난번 수원·전주·강릉에다 과장을 열었을 때는 승지가 내려갔었고, 평양에다 열었을 때는 옥당(玉堂)의 관원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시험을 보일 시기가 머잖았는데, 이번에는 어느 관원을 내려 보내야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평양에서 했던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辛未/政院啓曰：“今將設科於永興府，而前者水原·全州·江陵科，則承旨下去，平壤科則玉堂官員下去。今試士之期不遠，何官下去乎?” 答曰：“依平壤例爲之。”

<인조실록 20권, 인조 7년 1월 15일(신미) 1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부의 장관을 대상으로 재주를 시험하다

수원부(水原府)의 장관(將官)을 대상으로 시재(試才)하여 최만득(崔晩得) 등 24인을 입격(入格)시키고 우등자는 직급을 올려 주고 나머지는 활과 말을 차등 있게 내렸다.

○丙辰/水原府將官，試才入格崔晩得等二十四人，優等者增秩，餘賜弓馬有差.

<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8월 4일(병진) 1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 부사 장신을 평안 감사로 삼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장신(張紳)을 평안 감사로 삼았는데, 장신이 소장을 올려 사퇴하니 상이 허락하고 이어 전의 직임을 제수하였다.

○庚子/以水原府使張紳爲平安監司. 紳上疏辭, 上許之, 命仍授前任.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9월 24일(경자)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사헌부가 수원 부사 장신의 파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하가 명을 받으면 임무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데, 수원 부사 장신(張紳)은 근래 서문(西門)의 중임을 받고 소를 올려 면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비록 상례라고는 하지만 모자의 사사로운 정으로 임금에게 아뢰어 반드시 체임되기를 원했으니 극히 외람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해조에서는 외람된 상소를 꼭진히 좇아 심지어 어미를 돌보기에 불편하다는 등의 말로써 태연히 회계(回啓)하였으니, 이조의 당상과 낭청을 엄중하게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 장신은 추고하라.” 하였다.

○辛亥/憲府啓曰: “人臣受命, 所當不辭夷險, 而水原府使張紳, 頃受西門重寄, 陳疏祈免. 雖曰常例, 至以母子私情, 冒瀆天聽, 必欲得遞, 猥濫極矣. 請命罷職. 該曹曲循猥濫之疏, 至以不便將母等語, 偃然回啓. 請吏曹堂上·郎廳從重推考. (…)” 答曰: “姜大進必無不廉之理. 宋錫夢赴任未久, 竝勿煩論. 張紳推考.”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10월 6일(신해)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 부사 장신이 임기 만료로 체직될 예정이었으나 군민의 요청으로 유임시키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장신(張紳)이 임기가 만료되어 체직될 예정이었는데, 본부의 군민(軍民)이 글을 올려 유임시키기를 원하므로 관찰사가 이를 보고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癸卯/水原府使張紳, 瓜滿當遞, 本府軍民上書願留, 觀察使以聞, 上許之.

<인조실록 25권, 인조 9년 8월 2일(계묘)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특명으로 유백증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유백증(兪伯曾)을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특명으로 제수하였다. 이는 그의 말이 대신을 침범하였기 때문이다.

○(…) 特除兪伯曾爲水原府使. 以語侵大臣故也.

<인조실록 31권, 인조 13년 3월 4일(갑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부에서는 호마다 병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연긴다

대사간 이식이 상소하기를, (…) 삼가 듣건대, 수원부(水原府)는 호(戶)마다 대오에 편입하여 여리(閭里)에서는 병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합니다. 그런데도 수원의 군병(軍兵) 중에 아직도 도망하는 자가 있는 것은 온 나라 백성을 모두 병사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관서(關西) 지방이 교생(校生)을 모두 모아 대오에 편입시키고 ‘교생군’ 이라고 호칭하자 민중이 싫어하지 않은 것은 명분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양반은 천 명, 백 명 가운데 병사가 된 자는 한두 명도 없고, 민정은 수십 명 중에 병사



가 된 자는 한두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병사가 된 자들은 스스로 무기를 갖추고 조련과 정수(征戍)의 고통이 항시 따르니, 어찌 원망하고 도망할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甲寅/大司諫李植上疏曰：(…) 竊聞水原一府，逐戶編伍，閭里間以不爲兵爲恥。然而水原軍兵，尚有逃亡者，以非盡一國爲兵故也。頃者，關西盡括校生編伍。卽以校生號其軍，則衆亦不厭者，以名分不降故也。今者兩班千百，而爲兵者一二；民丁數十，而爲兵者僅一二。彼爲兵者，自備器械，常從操鍊·征戍之苦，何爲其不怨咨，思散亡乎？(…)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9월 13일(갑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정창연이 수원에서 피난 중인데 그 아들 정광경이 도승지를 사임하다

도승지 정광경(鄭廣敬)이 수원(水原)이 공격당하였음을 듣고, 그의 아버지 정창연(鄭昌衍)이 현재 수원에서 피난 중인데 생사를 모른다는 것으로 마침내 상소하여 체직되었다. 이경직(李景稷)을 그 후임으로 삼았다.

○都承旨鄭廣敬聞水原被兵，以其父昌衍方避亂于水原，不知死生，遂陳疏而遞，以李景稷代之。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6일(병오) 4번째기사>

#### 정치/행정

박황·정태화·김여옥·이극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정태화(鄭太和)를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鄭太和爲水原府使.(…)

<인조실록 38권, 인조 17년 5월 28일(갑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부사를 정태화에서 심기주로 교체하다

수원 부사 정태화가 병으로 갈리니 심기주(沈器周)로 대신하다.(…)

○水原府使鄭太和病遞，以沈器周代之.(…)

<인조실록 38권, 인조 17년 5월 28일(갑신) 4번째기사>

#### 정치/행정

정홍명을 수원부사에서 함양군수로 삼다

(…) 수원 부사(水原府使) 정홍명(鄭弘溟)을 함양 군수(咸陽郡守)로 삼았다. 홍명은 정축년 이후로 벼슬살이를 좋아하지 않아 외직을 강력히 구하였기 때문에 조정이 허락하였다. (…)

○(…) 水原府使鄭弘溟爲咸陽郡守。弘溟自丁丑以後，不樂仕宦，求外甚力，故朝廷許之。(…)

<인조실록 44권, 인조 21년 12월 25일(을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구인기를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구인기(具仁璽)를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具仁璽爲水原府使.(…)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7월 19일(무진) 2번째기사>

정치/행정

사헌부가 수원 부사 변사기의 잉임이 부당하다고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헌부가 【대사헌 홍무적, 집의 심로, 장령 임의백.】 아뢰기를, “수원 부사 변사기는 본래 먼 변방의 미미한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힘과 마음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데 도리어 본직을 깔보고 태연히 늙은 재상으로 자처하면서 병으로 사직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미 매우 통분하고 놀라운데, 잉임된 뒤에는 더욱 스스로 교만하여 완전히 직무를 폐하였습니다. 한 도의 방백이 된 자는 반드시 보고 들은 바가 있어 하등의 고과에 두었을 것인데, 어찌 조정에서 방백을 들어 탄핵하고 사기를 잉임시킬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감사의 직임은 체면이 지극히 중합니다. 지금 한 수령을 하등의 고과에 두었다는 것으로 갑자기 파척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또한 어찌 방백을 설치하여 포폄하는 임무를 맡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근래 떠도는 의논으로 인해 진정시키는 계책을 삼고자 하여 이런 놀랍고 기이한 거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기가 총애받는 정승에게 자취를 의탁하여 추악한 태도를 끌고루 다해 나랏사람들이 모두 그를 열자(孽子)라고 일컫습니다. 수원에 제수된 뒤로 소를 잡고 술을 빚어 날마다 장관(將官)들과 서로 마주 앉아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며 장사들의 마음을 사니, 보는 사람치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게 된 까닭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천재와 시변이 끝이 없어 임금과 신하 상하가 겨를없이 근심하고 있는데, 사기는 무식한 무부로 서울 가까운 병사를 주관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는 것이 또 이와 같으니, 식자들이 근심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 경기 감사 김광옥은 도신(道臣)으로서의 체통과 전례를 깊이 체득한 사람으로 별로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청컨대 변사기를 파출하고, 김광옥을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 憲府【大司憲洪茂績·執義沈膺·掌令任義伯】啓曰：“水原府使邊士紀，本一遐方微末人也。所當竭力盡心，以報國恩，而乃反輕視本職，偃然以老宰自處，至於以病辭職，已極痛駭。及其仍任之後，益自驕慢，專廢職務，爲一道方伯者，必有所聞見，而置諸下考，豈料朝廷至於舉劾方伯，而仍任士紀乎？監司之任，體面極重，今以一守令之置下考，遽至罷斥，則又何必設置方伯，委以褒貶之任乎？此必因近來浮議，而欲爲鎮定之計，有此駭異之舉也。士紀托跡倖相，備盡醜態，國人皆稱其孽子。自授水原，屠牛釀酒，日與將官，相對宴飲，以結將士之心，見之者莫不爲怪，此所以致人言也。況方今天災時變，罔有紀極，君臣上下，遑遑憂悶，而士紀以無識武夫，處於近京重兵之地，其所作爲，又如此，識者之憂，固其勢也。 (...) 京畿監司金光煜，深得道臣體例，別無所失。請罷黜邊士紀，還收金光煜罷職之命。” 上不從。

<효종실록 5권, 효종 1년 12월 30일(무인) 2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 부사 윤창구가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내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윤창구(尹昌壽)가 사조(辭朝)하니, 면유(面諭)하여 내보냈다.

○水原府使尹昌壽辭朝，面諭以遣之。

<효종실록 6권, 효종 2년 1월 11일(기축) 4번째기사>

정치/행정

전 수원부사 변사기를 특별히 회령부사에 제수하다

도목정(都目政)을 하였다. (...) 전 수원 부사(水原府使) 변사기(邊士紀)를 특별히 제수하여 회령 부사(會寧府使)로 삼았다.

○己酉/爲都目政.(...) 特除前水原府使邊士紀爲會寧府使.

<효종실록 6권, 효종 2년 2월 2일(기유) 1번째기사>

#### 정치/행정

홍중보를 수원 부사로 삼다

(...) 홍중보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 洪重普爲水原府使.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2월 16일(기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부사 홍중보가 사조하니 면대하여 유시하고 보내다

수원 부사 홍중보(洪重普)와 양주 목사(楊州牧使) 원두추(元斗樞)가 사조하였다. 면대하여 유시하고 보냈다.

○水原府使洪重普·楊州牧使元斗樞辭朝, 面諭以遣之.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2월 24일(정묘)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영의정 정태화가 수원의 아버지 묘소에 성묘를 청하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휴가를 얻어 수원(水原)에 있는 아버지 묘소를 성묘하게 해 줄 것을 청하니, 말[馬]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본도로 하여금 식물(食物)을 넉넉히 주도록 하였다.

○甲午/領議政鄭太和請暇省父於水原, 命給馬, 令本道優賜食物.

<효종실록 8권, 효종 3년 1월 21일(갑오)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신준을 수원부사로 삼다

(...) 신준(申竣)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 申竣爲水原府使.

<효종실록 9권, 효종 3년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총융사 김응해를 보내 경기 고을의 병기를 점검시켰는데 수원이 최고이다

총융사(摠戎使) 김응해(金應海)를 보내 경기 여러 고을의 군사와 병기들을 점검했는데, 수원(水原)이 도내에서 최고였다. 부사 유희연(柳赫然)에게 내구마(內廐馬)를 하사하라 명하였다.

○辛酉/遣摠戎使金應海, 點閱京畿列邑軍兵·器械, 水原府爲一道最. 府使柳赫然命賜廐馬.

<효종실록 13권, 효종 5년 12월 5일(신유)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부사 유희연을 특별히 승지에 제수하다

(…) 특별히 유혁연(柳赫然)을 승지로 제수하였다. 혁연은 무인 형(珩)의 손자요. 효걸(孝傑)의 아들인데,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어 병사들의 훈련과 병기의 수리를 잘 하였는데 상이 유능하다고 여겨 특별히 이 직에 제수한 것이다.

○(…) 特除柳赫然爲承旨. 赫然, 武人珩之孫, 孝傑之子, 爲水原府使, 鍊士卒·修器械, 上以爲能, 特授是職.

<효종실록 13권, 효종 5년 12월 19일(을해)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부사 김수인이 사조하여 인견하고 면유하다

평안 감사 심택(沈澤), 수원 부사 김수인(金壽仁)이 사조(辭朝)하니, 모두 소견(召見)하여 면유(面諭)하였다. 소환(小宦)에게 명하여 강궁을 가져오게 하여 특별히 김수인에게 내리고 이르기를, “너는 팔의 힘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데, 당겨 보라.”

하매, 김수인이 황송해서 한껏 당기지 못하니, 상이 빙그레 웃고 이어서 갑주(甲冑)와 궁전(弓箭)을 내렸다.

○平安監司沈澤·水原府使金壽仁辭朝, 並召見, 而面諭, 命小宦取強弓, 特賜壽仁曰: “聞爾膂力絕人, 試挽之.” 壽仁惶怯, 彎不盡數, 上微哂, 仍賜甲冑弓箭.

<효종실록 14권, 효종 6년 1월 4일(기축)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부사 이태연이 사조(辭朝)하다

황해 감사 이홍연(李弘淵), 수원 부사 이태연(李泰淵)이 사조(辭朝)하니, 상이 직접 만나 효유하여 보냈다.

○黃海監司李弘淵·水原府使李泰淵辭朝, 面諭以遣之.

<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1월 9일(임자) 4번째기사>

#### 정치/행정

임의백을 수원 부사로 삼다

임의백(任義伯)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以任義伯爲水原府使.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4월 13일(정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부사 강유에게 가자하다

전주 판관(全州判官) 권상구(權尙矩)와 수원 부사(水原府使) 강유(姜瑜)가 대상(大尙)을 붙잡았다고 하여 모두 가자(加資)되었다.

○全州判官權尙矩·水原府使姜瑜俱以大尙捕捉, 加資.

<현종실록 4권, 현종 2년 11월 9일(을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오정원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오정원(吳挺垣)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 吳挺垣爲水原府使.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 1월 8일(임오) 1번째기사>

정치/행정

양전에 불성실한 수원 수령 등을 추고하다

경기좌도 균전사(京畿左道均田使) 민정중(閔鼎重)이 매우 심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수령으로 금천 현감(衿川縣監) 유익삼(柳益三)·광주 부윤(廣州府尹) 김수흥(金壽興)·용인 현령(龍仁縣令) 유탁연(柳卓然)·진위 현령(振威縣令) 송단(宋搏)·과천 현감(果川縣監) 심억(沈億) 및 양근(楊根) 겸임 지평 현감(砥平縣監) 이인석(李仁碩) 등 6읍(邑)의 수령을 초계(抄啓)하고, 우도 균전사 김시진(金始振)은 양주 목사(楊州牧使) 정박(鄭樸)·장단 부사(長湍府使) 이시정(李時挺) 및 부평(富平)과 통진(通津)의 수령을 초계하였는데, 상이 일렀다.

“양근·과천·양주 3읍의 수령을 잡아들여 죄상을 신문하라. 금천·광주·용인·장단 등 4읍의 수령은 본청(本廳)에 잡아들여 경중에 따라 결장(決杖)한 뒤 정직하게 조사 업무를 행하게 하라. 수원·진위의 수령은 우선 추고하라.”(…)

○左道均田使閔鼎重以尤甚不舉職守衿川縣監柳益三·廣州府尹金壽興·龍仁縣令柳卓然·振威縣令宋搏·果川縣監沈億及楊根兼任砥平縣監李仁碩六邑抄啓, 右道均田使金始振以楊州牧使鄭樸·長湍府使李時挺及富平·通津抄啓. 上曰: “楊根·果川·楊州三邑守令, 姑先拿問其罪狀. 衿川·廣州·龍仁·長湍等四邑守令, 拿致本廳, 從輕重決杖後, 使之查正. 水原·振威, 則姑先推考.”(…)

<현종실록 6권, 현종 4년 2월 22일(신유) 2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 부사 홍처후를 파면하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홍처후(洪處厚)가 파면되었다. 이에 앞서 수원에서 사노(私奴)가 사족(士族) 배귀현(裴貴玄)의 집에 있는 누이를 겁탈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귀현이 본부(本府)에 정장(呈狀)하였는데, 부사 홍처후가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탓으로 정범(正犯)이 도망치게 하고 말았다. 이를 간원이 논계하여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른 것이었다.

○壬午/水原府使洪處厚罷免. 初水原有私奴, 劫奪士族裴貴玄在室之妹. 貴玄呈狀本府, 則府使洪處厚不聽理, 以致正犯逃失. 諫院論啓請罷, 上從之.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9월 18일(임오) 1번째기사>

정치/행정

장령 김익렴이 중진인 수원의 군정을 점열하도록 어사 파견을 건의하다

양사(兩司)가 청대(請對)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 장령 김익렴(金益廉)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이야말로 경기의 중진(重鎭)입니다. 그래서 선조(先朝) 때에도 중요시하였는데, 근래 그곳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혹 군정(軍政)을 포기하기까지 하고 있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점열(點閱)토록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壬戌/兩司請對, 上引見. (…) 掌令金益廉曰: “水原卽圻輔重鎭也. 先朝所嘗倚重, 而近來受任者, 或至於拋棄軍政, 豈不寒心哉? 宜發遣御史點閱.” 上從之. (…)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0월 28일(임술) 1번째기사>

### 정치/행정

**현종이 수원부사로 군사를 통솔하는 무인을 차출해야 한다고 말하다**

상이 회정당에서 침을 맞았다. 끝난 후 약방 도제조 이하가 뵈기를 청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우상 허적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산물이 많고 땅이 큰데다 군병의 수도 8천 인이나 되므로 다스리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근래에 강경하고 명철하며 재주를 갖춘 김시진(金始振)과 같은 자가 많지 않으므로 앞서 김시진으로 제수하려고 한 것인데, 어제 있었던 정사에서는 승지로 옮겨 제수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무관을 택하여 보내고자 한다. 백성을 다스리기는 실로 어렵겠지만, 군사를 통솔하는 것 또한 중하니 간혹 무인을 차출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戊辰/上受鍼於熙政堂. 既罷藥房都提調以下請對, 上引見. 右相許積曰: “水原物衆地大, 軍兵之數, 且八千人, 其爲邑, 治之甚難. 近來剛明有才如金始振者不多, 故頃以始振擬拜, 而昨日政, 移拜承旨矣.” 上曰: “予意欲以武弁擇送. 治民固難, 而將兵亦重, 間差武人可也.”

<현종실록 9권, 현종 5년 10월 10일(무진)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지평 신후재가 암행의 결과로 전 수원부사 이정기를 비판하다**

지평 신후재가 인피하기를, “신이 지난번 암행 감찰의 명을 받았습니다. 전 수원 부사 이정기(李廷夔)는 못 다스린다는 소문이 몹시 자자했습니다. 접경 지역에 집을 짓는데 부민이 가서 부역한 일은 이구동성으로 퍼졌으니 결코 범연히 듣고 가벼이 믿는 것에 비길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지난해 7월 사이에 조성했다고 하므로 신은 그 설로써 서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정기가 수원에 부임한 것은 10월에 있었다 하니, 7월에 조성했다는 것은 곧 우둔한 백성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 말입니다. 신이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이 착오가 있었으니, 어찌 편안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퇴대하였다. 간원이 처치하여 체직시켰다.

○丙寅/持平申厚載引避曰: “臣頃承廉問之命. 水原前府使李廷夔不治之聲, 不勝藉藉. 至於造家接境之地, 府民往役之事, 衆口一談, 斷非泛聽輕信之比. 而人或言以上年七月間造成, 臣以其說書啓矣. 今聞廷夔赴任水原, 在於十月七(月) [日] 造成, 乃是愚民不記日月之言, 而臣既不覺察, 有此差誤. 何可晏然.” 遂退待, 諫院處置遞之.

<현종실록 9권, 현종 5년 12월 9일(병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경기감사가 수원 등 방어사나 영장을 겸임한 수령이 도적을 소탕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이때 경기 지방에 잇따라 흉년이 들어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10여 명이나 혹 7, 8명씩 모여 숨어있으면서 재물과 곡식을 약탈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마음놓고 살지 못하였다. 이에 감사 김수홍이 장계하기를,

“본도의 도적에 대한 걱정이 이와 같은데 토포사(討捕使)가 치우친 곳에 처해 있어 형세상 급하여 체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원(水原)·장단(長湍)·양주(楊州)·죽산(竹山)·과주(坡州)·통진(通津)·남양(南陽)과 같은 곳의 고을원은 혹 방어사를 겸임하거나 영장(營將)을 겸임합니다. 지금부터 정식을 만들어 방어사나 영장을 겸임한 수령으로 하여금 책략을 세워

모조리 철폐하게 하되, 토포사가 총괄해 살피면서 신칙하게 한다면, 일이 착실해질 것입니  
다. 묘당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장계대로 시행하  
되, 감사로 하여금 일에 따라 지휘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是時畿甸，連值歲荒，盜賊處處竊發，或十餘人·或七八人，屯聚隱見，奪掠財穀，村閭之間，皆不得安接。監司金壽興狀啓：“以爲本道賊患如此，而討捕使處在一隅，勢難禁捕。如水原·長湍·楊州·竹山·坡州·通津·南陽，或兼防禦使·或兼營將。自今更爲定式，使兼防禦使營將等守令，設機勦捕，而討捕使總察申飭，則事可着實。請令廟堂指揮。”備局回啓：“請依狀啓施行，而亦令監司隨事指揮。”從之。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2월 2일(기미) 6번째기사>

#### 정치/행정

대사간 이경억 등이 수원의 중요성을 들어 수원부사 이두진의 체차를 청하다

대사간 이경억 등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서울 가까운 중한 지역이어서 참으로 어루만  
져 주고 다독거릴 수 있는 재주를 겸비하여 군민(軍民)들의 바람에 흡족한 자가 아니면 진  
압하여 복종케 하기 어렵습니다. 부사(府使) 이두진(李斗鎭)은 역임한 곳이 많지 않은데 갑  
자기 중한 지역을 맡기므로, 제목(除目)이 내리자 물의가 시끄럽습니다.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윤택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아뢰자, 이에 따랐다.

○大司諫李慶億等啓曰：“水原爲畿輔重地，苟非才兼牧御，望愜軍民者，難可鎮服。 府使李斗鎭歷試未多，驟膺重寄，除目之下，物議譁然。請遞差。”上不允。累啓乃從。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3월 12일(무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박경지를 수원 부사에 제수하다

(…) 박경지(朴敬祉)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 朴敬祉爲水原府使。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3월 23일(기유) 5번째기사>

#### 정치/행정

구문치를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구문치(具文治)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 具文治爲水原府使。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8월 23일(병자) 1번째기사>

#### 정치/행정

박정을 수원 부사로 삼다

박정(朴挺)을 발탁하여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박정은 일찍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일을 잘 다스린다는 것으로 이름이 났기 때문에 대신들이 의논하여 천거하였고 초배(超拜)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쇠하고 또 재지(才智)가 없어서 부임한 뒤에 정사를 하리(下吏)  
들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관사(官事)가 날로 폐기되어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였다.

○擢朴挺爲水原府使。挺曾以治劇著名，故大臣議薦，至被超拜。而但年衰，且無才諳，赴任之後，政委下吏，官事日廢，民皆怨之。

<현종실록 11권, 현종 6년 11월 21일(계묘)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승정원이 수원이 중요한 곳이므로 수원부사를 속히 뽑을 것을 청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수원은 중요한 진지이므로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는데 부사 유창이 현재 옥에 갇혀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쳐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 대임자를 뽑으라고 명하였다.

○甲辰/政院啓曰: “水原重鎮也, 不可久曠, 而府使俞瑒方在囚繫中, 請令廟堂稟處.” 上命出其代.

<현종실록 13권, 현종 7년 11월 28일(갑진) 1번째기사>

#### 정치/행정

김시진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김시진(金始振)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 金始振爲水原府使.(…)

<현종실록 13권, 현종 7년 11월 28일(갑진)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심지명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심지명(沈之溟)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 沈之溟爲水原府使.(…)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1월 23일(정사) 5번째기사>

#### 정치/행정

장령 이규진이 수원 부사 심지명의 체직을 청하다

장령 이규진(李奎鎭)이 탑전에서 수원 부사 심지명(沈之溟)을 체직하라고 청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掌令李奎鎭於榻前, 請遞水原府使沈之溟, 上不從.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2월 3일(병인) 3번째기사>

#### 정치/행정

김좌명·조복양·김만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민시중(閔蓍重)을 초배하여 수원 부사로 삼았다.(…)

○(…) 閔蓍重超拜水原府使.(…)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2월 23일(병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원만리를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원만리(元萬里)를 등급을 뛰어 수원 부사에 제수하였다.

○(…) 元萬里超拜水原府使.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4월 30일(임진) 2번째기사>



정치/행정

이상진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이상진(李尙眞)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

○(…) 李尙眞爲水原府使. (…)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1월 20일(임신) 2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익훈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김익훈(金益勳)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비국이 천거한 사람을 쓴 것이다.

○乙酉/以金奐爲正言, 擢洪處大爲平安監司, 金益勳爲水原府使, 用備局薦也.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10월 7일(을유) 1번째기사>

정치/행정

대사헌 등이 김익훈을 수원부사로 제수한 것을 개정하라고 아뢰다

대사헌 장선징(張善澂), 장령 윤계(尹堦)가 김덕원·오시복·유하익 등이 서찰로 축탁한 죄를 한결같이 인조(仁祖) 때의 법에 따라 처리하기를 청하였는데, 다섯 번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평안 감사 홍처대(洪處大)는 본디 번잡하고 어려운 일을 처리할 만한 훌륭한 그릇이 아닌데 발탁하여 중대한 변방의 직책을 맡겼으니, 너무나 터무니 없습니다. 개정하소서. 수원은 경기의 중요한 곳이어서 전부터 극진히 가려서 차출하였으니 우연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부사 김익훈(金益勳)은 음관(蔭官)으로 발신하여 별로 특이한 성적이 없는데 갑자기 중임에 발탁되었으므로 여론이 쾌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니 개정하소서.” 하였다. 홍처대는 세 번 아뢰자 같았고 김익훈은 네 번 아뢰어서야 개정하였다. (…)

○大司憲張善澂·掌令尹堦請治金德遠·吳始復·兪夏益等書札請囑之罪, 一依仁祖朝成憲科斷, 五啓, 上不從. 又論: “平安監司洪處大本非剗割盤錯之利器, 擢畀重藩, 太涉無端. 請改正. 水原乃畿輔重地, 自前極擇差遣, 意非偶然. 府使金益勳發身蔭路, 別無異績, 而遽擢重任, 物情未快. 請改正.” 處大三啓而遞, 益勳四啓而改正. (…)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10월 16일(갑오) 2번째기사>

정치/행정

성후설을 수원부에 제수하다

(…) 성후설(成後髙)을 수원 부사로 삼고, 남용익(南龍翼)을 발탁하여 형조 판서에 제수하였는데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

○以姜栢年爲大司憲, 朴贊爲正言, 成後髙爲水原府使, 南龍翼擢拜刑曹判書, 特除也.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10월 23일(신축) 2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익훈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김익훈(金益勳)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癸卯/以李敏叙爲大司成, 金益勳爲水原府使.

<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2월 3일(계묘) 1번째기사>

정치/행정

임의백을 수원 부사로 삼다

임의백(任義伯)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以任義伯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2권, 현종 1년 4월 13일(정유) 2번째기사>

정치/행정

강유를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강유(姜瑜)를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 姜瑜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 11월 13일(갑자) 1번째기사>

정치/행정

오정원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오정원(吳挺垣)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吳挺垣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6권, 현종 3년 1월 8일(임오) 2번째기사>

정치/행정

홍처후를 수원 부사로 삼다

(…) 홍처후(洪處厚)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洪處厚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8권, 현종 4년 6월 12일(무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이정기를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이정기(李廷夔)를 수원 부사로 삼다.

○(…)李廷夔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9권, 현종 4년 9월 29일(계사) 1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시진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김시진(金始振)을 수원 부사로 제수하였다.(…)

○(…) 金始振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11권, 현종 5년 9월 29일(정사) 1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 수령으로 무신을 보낼 것을 유지하다

상이 또 침을 맞았다. 침을 맞고 나니, 약방 도제조 허적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물산도 많고 땅도 넓으며 군병의 수도 8천 명이나 되므로 적당한 수령을 선출하기가 더욱 어렵

습니다. 김시진(金始振)이 강명(剛明)하고 재능이 있으므로 지난번에 의망하여 제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승지에 바꾸어 제수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뜻은 무신을 선출하여 보내고 싶다.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진실로 어렵지마는 군병을 통솔하는 일도 막중하므로 간혹 무인을 차출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上又受鍼畢，藥房都提調許積曰：“水原物衆地大，軍兵之數，且八千人，擇守尤難．金始振剛明有才，故頃日擬除矣．昨又移拜承旨矣．” 上曰：“予意欲以武弁擇送．治民固難，而將兵亦重，間差武人可也．”

<현종개수실록 11권, 현종 5년 10월 10일(무진)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이수창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이수창(李壽昌)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李壽昌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11권, 현종 5년 10월 12일(경오) 3번째기사>

### 정치/행정

**경기좌도 어사의 서계에 따라 수원부사 이정기가 죄를 받다**

수원 부사 이정기(李廷夔), 이천 부사(利川府使) 이휘조(李徽祚), 양성 현감(陽城縣監) 윤전(尹塹), 죽산 부사(竹山府使) 김익후(金益厚), 안산 현감(安山縣監) 최효건(崔孝騫), 양지 현감(陽智縣監) 이지원(李志遠), 진위 현령(振威縣令) 성희주(成熙胄)는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중에 따라 죄를 받았으며, 안성 군수(安城郡守) 이명담(李命聃), 남양 부사(南陽府使) 정석(鄭皙)은 옷 안감과 걸감을 하사받았는데, 경기 좌도 어사 신후재(申厚載)의 서계 때문이었다.

○水原府使李廷夔·利川府使李徽祚·陽城縣監尹塹·竹山府使金益厚·安山縣監崔孝騫·陽智縣監李志遠·振威縣令成熙胄，以不治，輕重抵罪，安城郡守李命聃·南陽府使鄭皙，賜表裏，以京畿左道御史申厚載書啓也．

<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5년 11월 28일(을묘) 5번째기사>

### 정치/행정

지평 신후재가 백성의 말만 듣고 수원부사 이정기에게 죄줄 것을 청한 것에 대해 인피하다 지평 신후재가 인피하기를, “신이 지난번에 몰래 탐문하라는 명을 받았었는데, 전 수원 부사 이정기(李廷夔)가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소문이 몹시 자자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접경 지역에 집을 지어 부민(府民)들이 가서 부역한 사실을 여러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여 몹시 정녕하였는데, 사람들이 혹 지난해 7월에 집을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그 말에 따라 서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이정기가 부임한 것은 10월이었다고 하니, 7월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서 한 말입니다. 신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서 이런 착오가 있게 하였으니, 체차하소서.” 하였는데, 처치하여 체차하였다.

○持平申厚載引避曰：“臣頃承廉問之命，水原前府使李廷夔不治之聲，不勝藉藉．至於造家接壤之地，府民往役之事，衆口一談，不翅丁寧，而人或言以上年七月間造成．臣以其說書啓矣．

今聞廷夔赴任，在於十月，七月造成，乃是愚民不記日月之言。而臣既不覺察，有此錯誤，請遞。” [處] 置遞。

<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5년 12월 9일(병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이두진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이두진(李斗鎭)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

○(…) 李斗鎭爲水原府使. (…)

<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6년 3월 10일(병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이 중요성을 들어 수원 부사 이두진을 체차하다

대사간 이경억 등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서울에 가까운 요충지여서 참으로 다독거려 줄 만한 재주를 겸비하고 군민(軍民)들을 흡족하게 해줄 만한 인망을 가진 자가 아니면 진압하여 복종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부사 이두진(李斗鎭)은 역임한 곳이 많지 않은데 갑자기 중한 지역을 맡기므로, 제목(除目)이 내리자 물의가 시끄럽습니다.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아뢰자 이에 따랐다.

○大司諫李慶億等啓曰：“水原爲畿輔重地，苟非才兼牧禦，望愜軍民者，難可鎮服. 府使李斗鎭，歷試未多，驟膺重寄，除目之下，物情譁然. 請遞差.” 上不允. 累啓，乃從.

<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6년 3월 12일(무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박경지를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박경지(朴敬祉)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以吳斗寅爲副校理，朴敬祉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6년 3월 26일(임자) 2번째기사>

#### 정치/행정

경기 감사 김수홍이 수원·진위 객사에 시원한 방을 추가로 지을 것을 청하다

경기 감사 김수홍이 치계하여, 수원과 진위 두 읍 객사(客舍)에 시원한 방을 추가로 지을 것을 청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京畿監司金壽興馳啓，請於水原·振威兩邑客館，添造涼房，上不許.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4월 24일(경진) 6번째기사>

#### 정치/행정

우찬성 송시열이 수원에 도착하여 사직소를 올렸으나 불허하다

우찬성 송시열이 온천에서부터 뒤따라 올라오다가 수원에 도착하여 병을 핑계로 돌아가면서 소를 올려 사직하고,(…)

○右贊成宋時烈，自溫陽追後上來，行到水原，稱病退歸，陳疏辭職，(…)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5월 22일(정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구문치를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구문치(具文治)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 具文治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8월 23일(병자)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헌부에서 구문치를 수원부사로 제수한 것을 비판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기보(畿輔)는 보장(保障)이어서 중임(重任)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곤임(閫任)에 견주어 본다면 진실로 대등한 반열이 아닙니다. 지난번 수원 부사의 천망(薦望)이 있을 적에 삼로(三路)의 절도사를 아울러 의망함으로써 결국 새북(塞北)의 곤수에게 귀착시켰으니 관방(官方)과 정체(政體)를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수원(水原)과 북청(北靑)의 거리는 십수 일의 노정이므로 교체되어 오갈 즈음에 필시 달을 넘기게 될 것이며 서로 맞이하고 보내는 데서 발생하는 폐단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전 남병사(南兵使) 구문치(具文治)는 그대로 전임(前任)에 제수하고 수원 부사는 다시 일이 없는 가합한 사람 가운데서 잘 가려 차송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司憲府啓曰：(…) 又啓曰：“畿輔保障，雖曰重任，比之制閫，固不可等班。而頃日水原府使薦望也，竝擬三路節度，終歸於塞北閫帥，官方·政體，不當如是。且水原之距北靑，至於十數日程，交替往來之際，必致經月，彼此迎送之弊，又不可勝言。請前南兵使具文治，仍授前任，水原府使更以無故人極擇差送。” 上不從。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9월 6일(기축) 3번째기사>

## 정치/행정

박정을 발탁하여 수원 부사로 삼다

박정(朴挺)을 발탁하여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박정은 다스리기 어려운 일을 잘 다스린다는 것으로 이름이 났기 때문에 대신들이 의논하여 천거하였고 초배(超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박정은 실로 재지(才智)가 없고 또 늙어서 부임한 뒤에 정사를 하리(下吏)들에게 위임하였다. 그 얼마 후에 또 경상 감사에 제수되니, 사람들이 외람되어 승진한 것을 기롱하였다.

○癸卯/擢朴挺爲水原府使。挺以治劇稱，大臣議薦，有此超拜。而挺實無才諳，且年衰，赴任之後，政委下吏。其後未久，又拜慶尙監司，人皆譏其驟濫。

<현종개수실록 14권, 현종 6년 11월 21일(계묘)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부사 박정 등을 유임시켰다

(…) 그리고 경기 감사 이경억, 평안 감사 이정영, 수원 부사 박정, 개성 유수 권대운은 모두 유임시켰는데, 북쪽에서 사신이 온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 京畿監司李慶億·平安監司李正英·水原府使朴挺·開城留守權大運，竝仍任，以北使將出來也。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5월 18일(무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유창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유창(兪瑒)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丁丑/以兪瑒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8월 29일(정축) 1번째기사>

정치/행정

정원이 비변사가 수원 부사를 품처하도록 건의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수원은 서울에 가까운 중요한 진지이므로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는데 부사 유창이 현재 옥에 갇혀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 대임자를 뽑으라고 명하였다.

○政院啓曰：“水原，畿輔重鎮，不可久曠，而府使兪瑒，方在囚繫中，請令廟堂稟處。” 上命出其代.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1월 28일(갑진) 2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시진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김시진(金始振)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 金始振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1월 28일(갑진) 3번째기사>

정치/행정

이한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이한(李閑)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

○(…) 李閑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8년 2월 18일(계해) 3번째기사>

정치/행정

승지 심재가 허적이 수원에 뒤미쳐 따라올 것이라고 말하다

승지 심재(沈粹)가 돌아와서 아뢰었다. “행 지중추 허적이 병을 핑계로 나서지 않았으나, 마땅히 수원(水原)에 뒤미쳐 따라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承旨沈粹歸啓，行知中樞許積，辭病不赴，當追及於水原云矣.

<현종개수실록 17권, 현종 8년 윤4월 10일(갑신) 9번째기사>

정치/행정

영상 홍명하가 수원부사도 토포사를 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다

상이 회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경기 안에 좌·우토포사(左右討捕使)가 있는데, 근래에는 연해의 고을에 도적이 치성하여 좌·우토포사가 두루 살피기 어렵습니다. 수원 부사(水原府使)도 토포사를 겸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

○上御熙政堂，引見大臣·備局諸臣．領相洪命夏曰：“畿內有左·右討捕使，而近來沿海郡邑，

盜賊熾發，左·右討捕使有難遍察。水原府使亦兼討捕使宜矣。” 上允之。(…)

<현종개수실록 18권, 현종 8년 11월 1일(신축)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심지명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심지명(沈之溟)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戊午/以金萬重爲副修撰，曹漢英爲京畿監司，沈之溟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20권, 현종 10년 1월 24일(무오)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헌부가 연로한 수원 부사 심지명의 체직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헌부가, 수원 부사 심지명(沈之溟)이 나이가 많고 또 명망도 없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했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憲府以水原府使沈之溟年紀衰暮，且無名稱，請遞，上不從。

<현종개수실록 20권, 현종 10년 1월 25일(기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지평 김세정이 수원부사 심지명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상이 양심함에 나아가 『심경』과 『강목』을 강하였다. 지평 김세정이 답전에서 서필원을 삭출하라고 청했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 또 수원 부사(水原府使) 심지명(沈之溟)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고 청하면서 아뢰기를,

“기보(畿輔)는 중요한 지역이어서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계(臺啓)가 거듭 받은 후에 버젓이 하직하였으니, 염치없는 모습이 더욱 놀랍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은 소를 올려 사면하지 못하는 만큼 그 형세가 하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니, 논핵할 죄가 없다. 비록 노쇠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하지마는 진실로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이가 아무리 젊더라도 불가하며, 만일 합당하다면 늙었다 해서 무슨 손상이 있겠는가. 전일에 체차하라는 논의가 본디 옳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이 비록 체차를 윤허하라고 청하였지만 특별히 부임하게 한 것이다. 지금 어찌 버젓이 하직하였다는 것으로 죄를 줄 수 있겠는가. 지명이 얼마 전에 양주(楊州)를 맡아서 이미 치적이 있었는데 노쇠하였다고 논핵하니, 그 의도를 모르겠다. 사람을 논하는 도리가 어찌 이렇듯이 업신여길 수 있단 말인가.”

하니, 세정이 엄한 분부를 받았다 하여 인피하고 나갔다. (…)

○辛巳/上御養心閣，講『心經』·『綱目』。持平金世鼎於榻前，請削黜徐必遠，上不從。(…) 又請水原府使沈之溟罷職不敘曰：“畿輔重地，決非所堪。而臺啓重發之後，偃然下直，冒沒廉恥之狀，尤極可駭。” 上曰：“守令不得陳疏辭免，則其勢不得不下直，無可論之罪。雖以衰耗爲言，苟非其人，年雖少，固不可也，如其可合，則老亦何傷？前日請遞之論，固已非是，故大臣雖請許遞，而特令赴任。今何可以偃然下直爲罪乎？之溟纔任楊州，既有治績，則論以衰耗，未知其意。論人之道，豈可若是凌轢也？” (…)

<현종개수실록 20권, 현종 10년 2월 18일(신사) 1번째기사>

정치/행정

지평 김세정이 수원부사로서 심지명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다

지평 김세정(金世鼎)이 패초에 나오지 않은 뒤 인피하였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 “수원부사 심지명(沈之溟)은 본래 재주나 식견도 없이 한갓 잘 섬길 줄만 아는 사람으로, 이전부터의 이력이 모두 인망에 차지 못했습니다. 당초 대각의 논계에서 공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조정의 명을 듣고는 관을 털고 즉시 출사하였으니, 신이 논한 바는 그릇이 적당하지 못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실로 염우(廉隅)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명께서 이해하지 못하시고 말씀을 엄하게 하시니, 신은 진실로 민망하여 스스로를 용납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이 앞서서 망언한 잘못이 있고 뒤에는 명을 어긴 죄가 있으니, 신을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근래 잘못을 꾸미며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버릇이 풍조를 이루고 있으니, 진실로 한심한 일이다. 이 일은 애초 조정의 명령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면 혹 그럴 수도 있으나, 조정 명령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수령을 죄주려고 하니, 어찌 놀랍지 않은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

○持平金世鼎牌招不進後，引避，略曰：“水原府使沈之溟，本無才識，徒知善事，從前履歷，俱不厭人望．當初臺啓，公議可見．而一聞朝命，彈冠卽出，臣之所論，不但爲人器之不稱，實爲廉隅之可礪也．聖明不諒，辭旨嚴峻，臣誠惶悶，無地自容．臣旣前有妄言之失，後有違命之罪，請罷臣職．” 答曰：“近日飾非自是之習成風，誠可寒心也．此事初不知朝家命令而爲之，則或可矣，謂之朝命而罪其守令，豈不駭哉？勿辭．” (…)

<현종개수실록 20권, 현종 10년 2월 21일(갑신) 2번째기사>

정치/행정

민시중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민시중(閔蓍重)을 초배하여 수원 부사로 삼았다.(…)

○(…)閔蓍重超拜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20권, 현종 10년 2월 23일(병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원만리를 수원부사에 등급을 넘어 제수하다

(…) 원만리(元萬里)를 등급을 뛰어 수원 부사에 제수하였다.

○(…)元萬里超拜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21권, 현종 10년 4월 30일(임진) 2번째기사>

정치/행정

어사 권격을 수원에 보내 무사들을 시재케 하다

어사 권격(權格)을 수원(水原)에 보내 무사들을 시재(試才)케 하였다. 입격한 장수와 제 부대의 군인들에게는 전일 강도와 남한 산성의 시재에서 내린 상격처럼 미포(米布)와 궁전(弓箭)을 차등 있게 지급했다.

○遣御史權格于水原，試武士．入格將官諸色軍人等，依前日江都·南漢試才賞格，給米布弓箭有差．

<현종개수실록 21권, 현종 10년 10월 27일(정해) 2번째기사>



정치/행정

이상진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이상진(李尙眞)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 李尙眞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23권, 현종 12년 1월 20일(임신) 3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익훈을 수원부사로 삼았다

(…) 김익훈(金益勳)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비국이 천거한 사람을 쓴 것이다.

○(…) 金益勳爲水原府使, 用備局薦也.

<현종개수실록 24권, 현종 12년 10월 7일(을유) 1번째기사>

정치/행정

대사헌이 김익훈을 수원부사로 발탁한 것을 개정하라고 아뢰다

대사헌 장선징, 장령 윤계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수원 부사 김익훈(金益勳)은 음관(蔭官)으로 발신하여 별로 특이한 성적이 없는데 갑자기 중임에 발탁되었으므로 여론이 흠족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직임을 바꾸어 제수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이 퍼졌습니다. 조정의 정사가 이와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정하소서.” 하였다. 네 번 아뢰어 서야 따랐다. (…)

○大司憲張善激·掌令尹堦啓曰：(…) 又啓曰：“水原府使金益勳, 發身蔭路, 別無異績, 而遽擢重任, 物情未厭. 況且遞授之前, 人言已播, 朝家政體, 不宜如是. 請改正.” 四啓而從之. (…)

<현종개수실록 24권, 현종 12년 10월 16일(갑오) 2번째기사>

정치/행정

성후설을 수원부사로 삼다

(…) 성후설(成後髙)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 成後髙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24권, 현종 12년 10월 23일(신축) 2번째기사>

정치/행정

정언 김환 등이 수원 부사 성후설을 체직할 것을 청하다

정언 김환(金奐)·정유악(鄭維岳)이 수원 부사 성후설(成後髙)은 유약한 병통이 있어 나라를 위해 변방을 지킬 재목이 결코 아니라고 하여 체직을 청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正言金奐·鄭維岳以水原府使成後髙病於柔弱, 決非爲國藩衛之才, 請遞, 上不從.

<현종개수실록 25권, 현종 12년 11월 11일(무오) 2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익훈을 수원부사로 삼다

(…) 김익훈을 발탁하여 수원 부사로 삼았다.

○(…) 擢金益勳爲水原府使.

<현종개수실록 26권, 현종 14년 2월 3일(계묘) 1번째기사>

정치/행정

상이 수원 부사 김익훈을 인견하다

상이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익훈(金益勳)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수원은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이다. 전에 군액(軍額)이 6천이던 것을 지금 감하여 5천으로 한 것은 정예화하려고 한 것인데, 이제 만약 숫자도 감소된 상태에서 또 잡스럽게 된다면 전일 숫자가 많았던 것보다 오히려 못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염두에 두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전에 온천에 갈 때 보진대, 수원 후면의 전야(田野)에 농사 작황이 부실한 것이 기읍(畿邑)에서 유난히 심했었다. 조정에서 이제 금방 농사에 힘쓰도록 하는 정사를 신명(申明)하였으니, 수령된 자가 착실히 봉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였다.

○上引見水原府使金益勳而謂之曰: “水原, 畿輔重鎭也. 前者軍額六千, 而今減爲五千者, 欲其精也. 今若小而又雜, 則反不如前日之數多也. 爾其念哉!” 又曰: “前於溫幸時觀之, 水原後野農作之不實, 在畿邑尤甚. 朝家纔申務農之政, 爲守令者, 不可不着實奉行也.”

<현종개수실록 26권, 현종 14년 2월 10일(경술) 3번째기사>

정치/행정

조사석을 수원 부사에 그대로 임명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김만기(金萬基)가 말하기를, “기보(畿輔)의 여러 진(鎭)에 오직 수원(水原)의 군정(軍政)이 가장 잘 정리(整理)되었는데, 어제 정사(政事)에서 부사(府使) 조사석(趙師錫)을 황해 감사(黃海監司)로 이배(移拜)하였습니다. 방백(方伯)의 임무가 진실로 중하지만, 조사석은 바야흐로 신과 더불어 군무(軍務)를 처리[料理]하였는데, 만약 생수(生手)에게 맡기면 어렵습니다.” 하였다. 허적(許積)이 조사석을 수원 부사에 그대로 임명할 것을 청하니, 임금(上)이 이를 윤택(允)하였다. (…)

○甲辰/御晝講. 特進官金萬基曰: “畿輔諸鎭, 惟水原軍政最爲整理, 昨政, 府使趙師錫移拜黃海監司. 方伯之任固重, 而師錫方與臣料理軍務, 若付生手則難矣.” 許積請仍任師錫於水原, 上允之. (…)

<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11월 20일(갑진) 1번째기사>

정치/행정

허적이 조사석을 유임하자고 주장하여 여론이 잘못이라 비판하다

임금이 계복(啓覆)을 친히 행하였다.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신이 황공(惶恐)한 일이 있습니다. 김익훈(金益勳)이 북곤(北關)이 되었을 때에 신이 진실로 같이 의논하였고, 조사석(趙師錫)을 수원(水原)에 그대로 유임(留任)시켰을 때에 신이 또한 조언(助言)하였으며, 이우정(李宇鼎)을 남번(南蕃)에 제수하였을 때에 신이 또 참여하여 계문하였는데, 지금 물의(物議)가 모두 잘못이라고 여깁니다. 신이 이런 잘못됨이 있으니, 매우 불안합니다.” 하자, (…)

○上親行啓覆. 許積曰: “臣有惶恐事. 金益勳之爲北關, 臣實同議; 趙師錫之仍水原, 臣亦助言; 李宇鼎之除南蕃, 臣又與聞, 今物議皆以爲非. 臣有此做錯, 深用不安.” (…)

<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12월 2일(을묘)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이원정이 품계가 높은 재신으로 수원부사를 임명할 것을 주장하다

대사간 이원정(李元禎)이 상소하기를, (….) 또, 당면한 지금에 변통해야 할 계책 10조목을 논했다. 즉,

“1. 훈련원(訓練院) 별대(別隊)와 정초청(精抄廳) 군사 및 각 아문(衙門)의 군관(軍官)과 각영(各營)의 장인(匠人)을 우선 혁파하여, 도고(逃故)·노약(老弱) 대신으로 충당할 것.

1. 각 아문 아병(牙兵)의 일정한 액수(額數)를 첨가하지 못하게 하고, 체찰부(體察府)의 실효(實効)는 없이 허명(虛名)만 있는 것도 혁파할 것.

1. 각 아문의 둔전(屯田)을 지부(地部)에서 세를 거두어 들이되, 일정한 액수를 정하여 각 아문에 윅기어 줄 것.

1. 사복시(司僕寺)가 관장하는 제도(諸島)를 지부(地部)에 돌려주고, 사복시의 수용에 필요한 요포(料布)는 호조에서 마련하여 제급(題給)할 것.

1. 제궁가(諸宮家)와 각 아문(衙門)의 염분(鹽盆) 및 어량(漁梁)을 또한 지부로 돌릴 것.

1. 포목(布木)의 품질은 마땅히 국가의 법대로 준행하여 5승(升)에 35척(尺)의 규정을 적용하되, 혹시라도 각사(各司)에서 퇴짜 맞게 된 것은, 모두들 사헌부로 하여금 점검(點檢)하여 조종(操縱)하는 짓을 방지하게 할 것.

1. 각 고을의 조적(糶糶)은 결(結)에 따라 수량을 정하여 정한 수대로 한 다음에는, 어떤 명목(名目)의 것도 논하지 말고, 불어난 모곡(耗穀)은 모두 포흠(逋欠)에 충당할 것.

1. 서북로(西北路)의 조적도 또한 일체로 수량을 정하되 불어나는 모곡이 백성을 곤궁하게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고, 수량이 차지 못했으면 각년(各年)의 전세(田稅)로 시한(時限)까지 수량을 채우게 할 것.

1. 영남(嶺南)의 온 도(道)에도 양호(兩湖)처럼 경대동법(京大同法)을 시행하여 차이가 없게 할 것.

1. 남한 산성에도 유수(留守)를 두되 일체를 강화(江華)의 예대로 하고, **또 품계(品階)가 높은 재신(宰臣)으로 수원 부사(水原府使)를 차임(差任)하고** 아울러 수어청(守禦廳)·총융청(摠戎廳)과 경아문(京衙門)에도 제수한다면, 평소에는 군민(軍民)의 비용이 절약되고 난을 만나서는 도적이 힘입을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한 것인데, 임금이 우악한 내용으로 비답을 내리고, 묘당으로 하여금 시급히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大司諫李元禎上疏曰：(…) 又言：當今變通之策十條，一則訓練別隊·精抄軍及各衙門軍官·各營匠人，宜先革罷，以充逃故老弱之代；一則各衙門牙兵，一定額數，毋得加添，體府無實效，有虛名，亦宜罷之；一則各衙門屯田，自地部收其稅入，定其常數，移給各衙門；一則司僕寺諸島，歸諸地部，而太僕應用料布，自戶部磨鍊題給；一則罷諸宮家·各衙門之鹽盆·漁梁，亦歸之地部；一則木布之品，宜遵國典，用五升三十五尺之規，而其或見退於各司者，竝令照點於憲府，以防操縱；一則各邑糶糶，隨結定數，準數後則無論某色目，所息耗穀，竝充逋欠；一則西北路糶糶，亦一體定數，俾無息耗困民之弊，而數未准則以各年田稅，依限充數；一則嶺南一道，亦依兩湖，行京大同之法，無有異同；一則設留守於南漢，一如江都例，且**以秩高宰臣，差水原府使**，竝除守禦·摠戎京衙門，則平居而省軍民之費；臨亂而無藉寇之憂。上賜優批，令廟堂速稟處。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5월 19일(갑오) 2번째기사>

정치/행정

홍무적과 임의백이 수원부사 변사기를 탄핵했던 사례에 따라 신익상을 특별히 가자하다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우의정 민정중(閔鼎重)이 청대(請對)하여 인견(引見)할 때 (...) 김수항이 또 아뢰기를, “신익상은 일찍이 계축년에 상소하여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운 이정(李楨)과 이남(李柟)의 일을 말하였습니다. 전일에도 역변 뒤에는 미리 역적의 흉악 패려한 자취를 말한 자가 있으면 특별히 총애를 내려 선견지명(先見之明)을 장려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효묘조(孝廟朝)에도 홍무적(洪茂績)과 임의백(任義伯)이 수원 부사(水原府使) 변사기(邊士紀)를 논핵하여 파직시켰고, 이회보(李回寶)도 또한 김자점(金自點)이 권세를 부릴 때 흉악 패려한 행적을 예언했었는데, 김자점과 변사기가 복주(伏誅)된 뒤에 세 사람이 모두 발탁되 등용하는 은전을 입었다. 신익상의 평안 병사 때의 가자(加資)는 관례에 따른 것이니, 도로 거두고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  
 ○丙午/領議政金壽恒·右議政閔鼎重請對, 引見時, (...) 壽恒又曰: “翼相曾在癸丑上疏言楨·柟事, 言人所難言. 在前逆變之後, 預言逆賊凶悖之迹者, 或特加寵擢, 以獎先見之明.” 上曰: “孝廟朝洪茂績·任義伯論罷水原府使邊士紀; 李回寶亦當自點用事之時, 預言凶悖之跡. 及自點·士紀伏法之後, 三人俱蒙擢用之典. 申翼相平安兵使時加資, 依例還收, 特爲加資.” (...)

<숙종실록 9권, 숙종 6년 5월 18일(병오) 1번째기사>

정치/행정

시재 어사를 수원에 보내 기예를 시험보다  
시재 어사(試才御史)를 수원(水原)에 보내어, 기예를 시험을 보여 합격한 자에게 차등이 있게 상을 주었다.

○遣試才御史于水原, 試藝入格者, 竝論賞有差.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10월 7일(경진) 2번째기사>

정치/행정

사헌부에서 좌윤 이인하가 수원에서 범마했다고 사족을 욱보였으니 파직할 것을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좌윤(左尹) 이인하(李仁夏)가 교만하고 망령되며 조급하고 괴팍하여 작년에 여러 고을을 순조(巡操)할 때에 곤장(棍杖)으로 조사(朝士)를 때렸으니 이미 놀랄 만한 데다가, 수원(水原)에 이르자 범마(犯馬)하였다는 구실로 사자(士子)를 잡아다가, 알몸으로 만들어서 말위에 두고 술통을 그 머리에 뒤집어 씌웠으니, 거조(舉措)가 해이(駭異)하여 보고 듣는 자가 모두 분격하였습니다. 청컨대, 파직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辛亥/憲府啓曰: “左尹李仁夏驕妄躁愎, 上年巡操列邑之時, 棍打朝士, 已是可愕. 而及到水原, 諉以犯馬, 捉致士子, 露身置馬上, 以酒桶倒冒其頭, 舉措駭異, 瞻聽齊憤. 請罷職.” 不允.  
 <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 6월 17일(신해) 1번째기사>

정치/행정

김덕원이 8천의 병마를 거느리는 수원에 김성구를 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다  
 (...) 김성구(金聲久)를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김성구는 사람됨이 용렬하고 어리석어 일

을 알지 못하였다.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제배되니, 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김성구가 능히 이 임무를 할 수 있는가?”

하니, 김성구가 드디어 감히 부임하지 못하고 도로 그 직질(職秩)이 낮추어졌는데, 뒤에 김덕원이 김성구가 실의(失意)에 빠지게 될까 두려워하여 임금에게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8천 병마(兵馬)를 거느리니 진실로 김성구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성구는 정명 온아(精明溫雅)하고 또 문한(文翰)이 있어서 옥당(玉堂)에 들어간 지 10년이 넘었으니, 탁용(擢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받아 들었다.

○(…) 金聲久爲副校理. 聲久爲人庸駿, 不識事, 及除水原府使, 右議政金德遠, 私語人曰: “以聲久而能爲此任乎?” 聲久遂不敢赴官, 還降其秩. 後德遠恐失聲久意, 白上曰: “水原將八千兵馬, 固非聲久可辦. 然聲久精明溫雅, 且有文翰, 入玉堂餘十年, 宜加擢用.” 上納之.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10월 27일(경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부사 이의징을 어영 대장으로 삼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의징(李義徵)을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삼았다.

○以水原府使李義徵爲御營大將.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 2월 25일(정해)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청탁에 따라 사람을 뽑은 어사 심계량은 삭직, 수원부사 조위수는 파직하게 하다

수원(水原)에 시재(試才)하러 나간 어사(御史) 심계량(沈季良)과 부사(府使) 조위수(趙渭叟)가 청탁에 따라 사람을 뽑는 일이 많아 뇌물이 공공연하게 나들게 되므로 사람들의 말이 매우 자자했었다. 사실이 발각되자, 병조(兵曹)에 명하여 문서를 고찰하여 조사하도록 했는데, 서울과 외방(外方) 사람으로서 터무니없이 소속하게 된 자가 절반을 넘었다. 임금이 노하여 심계량은 사명(使命)을 받들고 나가 나쁜 일을 하였다 하여 형리(刑吏)에게 회부하여 삭직(削職)하였고, 조위수는 파직(罷職)하도록 하였다.

○水原試才御史沈季良, 與府使趙渭叟, 多因請托取人, 至於賄賂公行, 人言甚藉. 事覺, 命兵曹按籍查勘, 京外人冒屬者, 過半. 上怒, 以季良爲奉使無狀, 下吏削職. 罷渭叟.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10월 29일(갑진) 4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시재에서 녹명에 책임이 있으니 수원부사 조위수도 잡아올 것을 청하다

당초에 임금이 이미 심계량(沈季良)을 잡아다가 죄를 다스리고 조위수(趙渭叟)를 파직하도록 하였고, 병조(兵曹)에 명하여 시재(試才) 때 외람되게 응시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도태시키도록 했었지만, 그래도 직부(直赴)하여 급제(及第)한 사람이 30명이나 되고 논상(論賞)한 자가 9백 명이나 되도록 많으므로, 승정원에서 간(諫)했으나 이루지 못했었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과거 시험장은 일의 대체가 지극히 엄격하고도 중요한 것이므로, 혹시 삼가지 않아서 하나라도 문란하고 혼잡하게 된 것이 있으면 전체까지 파방(罷榜)하게 되는 것은 곧 시재(試才)의 일을 중히 여기고 국가의 체통을 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원(水原)에서의 시재는 처음부터 군병(軍兵)들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려는 데에서 나온 일인데, 온 방(榜)과 전

체의 판국이 정밀하지도 못하고 엄격하지도 못하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또한 그대로 은전(恩典)을 베풀었으니, 어찌 매우 구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직부(直赴)하고 논상(論賞)하게 하신 명을 모두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재의 주관을 살펴서 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어사(御史)의 죄이지만, 외람되게 녹명(錄名)을 한 책임은 실로 본부(本府)에 있으니, 전(前)부사(府使) 조위수(趙渭叟)도 아울러 잡아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마침내 윤허하지 않았다.

○初上既拿治沈季良，罷趙渭叟。命兵曹查汰試才冒赴人，而直赴及第者，猶至三十人，論賞至於九百人之多。政院爭之不得。憲府啓曰：“試場事體，至嚴且重。或涉不謹，一致濫雜，則併與一榜而罷之，乃所以重試事而嚴國體也。水原試才，初出於慰悅軍兵，而一榜全局，不精不嚴，而猶且仍施恩典，豈非苟簡之甚？請併寢直赴論賞之命。且主試不察，固御史之罪，而冒錄之責，實在本府，請併拿前府使趙渭叟。” 累啓竟不允。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12월 13일(정해)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장령 유집일 등이 조식을 수원부사에 임용하지 말고 파직할 것을 청하다**

장령(掌令) 유집일(兪集一)·지평(持平) 김시걸(金時傑)이 논하기를, “수원(水原)·광주(廣州)는 경기의 중진(重鎭)이므로 전부터 사람을 가려 온 것은 뜻이 있는데, 조식(趙湜)은 어리석고, 허지(許墀)는 경망하므로 다 그대로 그 직임에 둘 수 없으니, 부사(府使) 조식과 부윤(府尹) 허지는 모두 파직(罷職)하소서.” 하니, 임금(上)이 그대로 따랐다.

뒤에 남구만(南九萬)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대신(臺臣)이 조식과 허지를 논한 것은 마치 변이 생길 것을 의심하는 듯합니다. 대저 국가에서 신하를 대우하는 데 미리 의심을 둘 수 없으며, 또 허지는 고을을 잘 다스렸으니, 폐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드디어 두 사람을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掌令兪集一，持平金時傑：“論水原·廣州圻輔重鎭，從前擇人，意有所在。趙湜愚駭，許墀躁妄，俱不可仍畀其任，請府使趙湜，府尹許墀，並罷職。” 上從之。後南九萬白上曰：“臺臣之論湜·墀，有若致疑於生變者。夫國家之待臣子，不容豫置疑心，且墀善治郡，不宜廢。” 上遂命敍兩人。

<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 4월 3일(경오) 6번째기사>

### 정치/행정

**생원 윤징삼 등이 수원 만의촌에 송시열의 사우를 짓기를 청하는 상소를 하다**

생원(生員) 윤징삼(尹徵三) 등이 상소하여 수원(水原)의 만의촌(萬義村)에 송시열(宋時烈)의 사우(祠宇)를 짓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전사(前事)를 뒤늦게나마 후회하시고, 송시열을 불쌍하게 생각하시어 사후(死後)의 영광이 극진하시니, 유감이 더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기사년의 봉장(封章)속에 ‘처음 세자 책봉을 미워했다.’ 는 말이 있으니, 오히려 마음에 꺼림칙함이 있습니다. 처음 원자(元子)를 정호(定號)할 적에 등대(登對)한 여러 신하들이 너무 빠르다고 대답하자 흉인(凶人) 유위한(柳緯漢)이 국본(國本)을 흔든다는 말로 방자하게 상소하여 속마음을 떠보려는 계략을 하자, 송시열은 소인들이 틈을 타서 화를 일으켜 종국(宗國)을 전복할 것을 깊이 염려하여 이에 한 장의 소(疏)를 봉진(封進)한 것입니다. 거기에 인유(引喩)한 바는 특히 송조(宋朝)에서 책봉(冊封)을 천천히 했던 고사(故事)를 끌어다가 증거하여 그 날의 여러

신하들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한 ‘제왕의 큰 행사는 천천히 함이 귀중하다.’ 는 것이 바로 그 본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증한 정자(程子)·주자(朱子) 등 제현(諸賢)의 표장(表章)이나 장횡거(張橫渠)의 몸시 기뻐했다는 일 등은 곧 천리(天理)의 정당함을 밝혀 오늘날 인심이 이동(異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故) 상신(相臣) 정태화(鄭太和)의 ‘원자가 탄생한 때는 바로 국본(國本)이 이미 정해진 때’ 라는 말을 인용한 것은 신민의 바라는 마음이 책봉의 빠르고 늦은 데에 있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이요, 심지어 ‘몸이 나른하고 정신이 흐려진 속에서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뜨고 입에서 환호성이 나왔다.’ 는 말까지 하였으니, 그 뜻이 공정하고 성실하며 의리(義理)가神明(神明)에게 다짐할 만한데도 여러 흉인들이 교묘하게 무함하여 못할 것이 없다가 결국은 ‘장심(將心)’ 이란 율로 다스려 극죄(極罪)로 처단하게 되었으니, 아! 차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소본(疏本)이 아직도 있으니 전하께서 한가하실 적에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천천히 그 본정(本情)을 생각해 보신다면 반드시 신 등이 하나 둘 변명할 것이 없이 확 깨달으시고 시원하게 풀리실 줄로 압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당(祠堂)을 세우려는 청은 본조(本曹)에 명하여 품의(稟議)해서 처리하게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대로(大老)의 심사가 단단(斷斷)하고 탄마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본시 환하게 알고 있다.” 하였다.

○生員尹徵三等上疏，請於水原萬義村，立宋時烈祠宇。 且曰：“殿下所以追悔前事，悼念時烈者，哀榮備至，無復餘憾，而獨於己巳封章中，有疾始冊之說，猶有所不能釋然。始元子定號之時，登對諸臣，對以太遽，則凶人柳緯漢，乃以動搖國本之說，肆然投疏，以爲嘗試之計。時烈深慮宵人之乘釁啓禍，顛覆宗國，於是封進一疏，其所引喻，特援宋朝冊封徐緩故事，以暴伊日諸臣之心。其曰：‘帝王大舉措，貴於于于者，卽其本意也。’ 其所引程·朱諸賢表章橫渠喜甚之事者，乃明天理之正，以證今日人心之無所異同也。且引故相臣鄭太和元子誕生之辰，卽國本已定之說，以明今日臣民之繫望，不在於冊封疾徐之意，而至曰委頓昏憤之中，不覺心扞而口噓，則其志意之公忠，義理之明白，可質於神明，而群凶巧構，無所不至，畢竟律之以將心，斷之以極罪，噫嘻尚忍言哉！今其疏尚在。殿下試於燕閑之間。再賜睿覽，徐究本情，則其必惕然而悟，渙然而釋，有不待臣等一二辨明也。” 上以建祠之請，命該曹稟處，仍教曰：“大老心事，斷斷無他，予固洞知。”

<속중실록 26권, 숙종 20년 윤5월 27일(계사)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좌의정 박세채가 사직을 청하면서 수원사람 이동구 등을 추천하다

좌의정 박세채(朴世采)가 상소하기를, “병든 노모(老母)를 떠나서 있을 수도 없거니와, 또한 조정에 있게 된 지 70여 일 동안에 일어나 다닌 것은 겨우 2순(旬)쯤입니다. 지난번에 말한 ‘질병 때문에 억지로 하기가 어렵고 재주와 능력도 미치지 못한다.’ 고 한 것이 이에 이르러 이미 증험되었습니다. 바라건대, 물러가 초야(草野)에 있도록 명하신다면 또한 마땅히 일에 따라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어 영암(靈巖) 사람 양득중(梁得中)·대구(大丘) 사람 박진인(朴振仁)·해주(海州) 사람 심제(沈梯)·영암 사람 윤규(尹揆)·충주(忠州) 사람 이서(李淑)·나주(羅州) 사람 나두갑(羅斗甲)·남원(南原) 사람 방두천(方斗天)과 최시옹(崔是翁)·고성(高城) 사람 신무(愼懋)·용인(龍仁) 사람 이지로(李之老)·음죽(陰竹) 사람 이후잠(李后潛)·수원(水原) 사람 이동구(李東耆)를 추천하니, 임금이 비답을 내려 만류하고, 이어 추천한 모든 사람을 임

용(任用)하도록 명했다.

○左議政朴世采上疏言：“老母之病，不可違離，且在朝七十餘日，起行者僅二旬耳．前所謂疾病難強，才力不逮，到此已驗，乞命退歸在野，亦當因事獻忠，仍薦靈巖人梁得中，大丘人朴振仁，海州人沈梯，靈巖人尹揆，忠州人李淑，羅州人羅斗甲，南原人房斗天·崔是翁，高城人愼懋，龍仁人李之老，陰竹人李后潛，**水原人李東晝**．” 上賜批勉留，仍命錄用其所薦諸人．

<숙종실록 27권, 숙종 20년 8월 15일(경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비변사에서 수원은 대신의 논의에 따라 부사를 추천한다고 아뢰다**

임금이 친히 정전(正殿)에 나아가 여수(慮囚)하여, 여섯 사람은 율문(律文)대로 처결하고, 한 사람은 부생(傅生)을 의논하게 했다. (...) 총융사(摠戎使) 이기하(李基夏)가 아뢰기를, **“수원(水原)·남양(南陽)·장단(長湍)은 군정(軍政)이 허술하니, 마땅히 무신(武臣)을 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수원은 본래부터 대신의 논의에 따라 추천하지만, 남양과 장단은 마땅히 문관과 무관을 교대로 보내는 것으로 격식을 삼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上親御殿慮囚，六人以律文處之，一人傅生議，(...) 摠戎使李基夏言：“**水原·南陽·長湍，軍政疎闊，宜遣武臣爲守**．” 上命廟堂議之．備局言：“**水原本用大臣議薦，而南陽·長湍，宜以互遣文武爲式**．” 上曰可．

<숙종실록 27권, 숙종 20년 11월 28일(임진)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충청 관찰사 조태구가 수원부사로 있을 때의 죄과로 사직을 청하다**

**충청 관찰사(忠淸觀察使) 조태구(趙泰耆)가 상소(上疏)하여 전에 수원(水原)을 맡고 있을 때 죄과(罪科)를 범한 일로 인협(引嫌)하고 사직(辭職)하니**, 해조(該曹)에 내려 복계(覆啓)하여 마침내 체개(遞改)하였다. 이때 전(前) 감사(監司) 이굉(李宏)이 관직에 있으면서 죽자, 그 소임을 대신할 자들이 대개는 모두 싫어하여 피하였으니, 기강(紀綱)이 해이졌음을 여기에서 또한 볼 만하다.

○壬子/忠淸觀察使趙泰耆上疏，**以前任水原時犯科事，引嫌辭職**，下該曹覆啓，終至遞改．時，前監司李宏在官身死，代其任者，率皆厭避，紀綱之解弛，於此亦可觀矣．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월 24일(임자)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지평 조태억이 김덕기가 수원부사로 있을 때의 비행을 비판하다**

지평(持平) 조태억(趙泰億)이 전개(前啓)를 거듭하였다. 또 아뢰기를, (...) 좌승지(左承旨) 김덕기(金德基)는 여러 차례 고을의 수령(守令)을 맡았었는데, 도처에서 탐욕을 부렸습니다. (...) 그가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있을 때에는 전혀 일을 보지 않고, 오직 수탈(收奪)하는 것만을 힘써 산성(山城)의 이전미(移轉米)를 운반해 올 때와, 각창(各倉)의 환상곡(還上穀)을 나누어 줄 때에는 매 석(石)마다 몇 말씩을 덜어내어 사용(使用)을 삼고, 작은 말로 되어 민호(民戶)에 주었으며, 심지어는 친히 창고 문 밖에 서서 쥐가 먹다가 소모된 곡식을 감독해 쓸어모아 키로 까블러 작석(作石)하여 별도로 두었다가, 끝내는 자기 사복(私



腹)을 채우고 말았으니, 이런 갖가지 탐학스런 정사는 날날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기전(畿甸)을 안렴(按廉)할 때에는 현읍(縣邑)의 뇌물을 받았다는 말까지 자자하였는데, 그래서 가업(家業)이 갑작스레 부해지고 재산이 가득 찼는데도, 길으로는 검약(儉約)함을 보여 그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며, 심지어는 그 노부(老父)의 의식(衣食)까지도 거의 가난한 선비보다도 못하게 하였으니, 그의 무상(無狀)함은 사람 무리에 끼일 수가 없습니다.(…)

○持平趙泰億申前啓. (…)**其爲水原府使也, 專不治事, 惟以剝割爲務, 如山城移轉運來時, 及各倉還上分給之際, 每石除出數斗, 以爲私用, 乃以小斗量給民戶, 甚至親立庫門之外, 監掃鼠耗之穀, 簸而揚之, 作石別置, 竟歸私橐. 其他種種貪虐之政, 有難毛舉. 若其按廉畿甸之時, 受賂縣邑之說, 亦甚狼藉. 家業暴富, 財產充溢, 而外示儉約, 欲爲遮掩, 至使其老父衣食, 殆甚寒土, 其爲無狀, 不可齒諸人類.**(…)

<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6월 17일(을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정언 김상원이 상소하여 김두남을 수원에 의망한 것은 인망이 아니라고 하였다

정언 김상원(金相元)이 상소하였다. (…)**또 논하기를, “절사(節使)의 서장관(書狀官)은 【곧 김두남(金斗南)이다.】 너무나도 신중하게 가린 뜻이 없습니다. 지난해 발탁하여 해반(海蕃)을 제수했고, 바로 이번에는 수원(水原)에 천의(薦擬)했지만 인망(人望)에 맞지 않습니다.”** 하고, (…)

○丙辰/正言金相元上疏. (…)**又言: 節使書狀, 【卽金斗南也.】殊無慎擇之意. 頃年海蕃之擢除, 卽今水原之薦擬, 不協人望.**(…)

<숙종실록 52권, 숙종 38년 8월 5일(병진) 1번째기사>

### 정치/행정

특진관 윤취상이 수원에 어사를 파견하여 시험을 보일 것을 청하다

주강(書講)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윤취상(尹就商)이 수원(水原)에 어사(御史)를 특별히 파견하여 시험보이는 일을 시행해서 군정(軍情)을 위로할 것을 청하니, 임금(上)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하였다. (…)**

○御書講. (…)**特進官尹就商, 請別遣御史於水原, 設行試事, 以慰軍情, 上令廟堂稟處.**(…)

<숙종실록 53권, 숙종 39년 2월 19일(정묘)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정식을 수원 시재 어사로 차출하다

**정식(鄭弼)을 수원 시재 어사(水原試才御史)로 차출하였는데, 장차 무사(武士)를 시취(試取)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以鄭弼差水原試才御史. 將以試武士也.

<숙종실록 57권, 숙종 42년 1월 5일(병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비변사에서 진곡을 위해 첩을 판 수원 부사 이교악의 체임을 청하다

**비국(備局)에서 청하여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교악(李喬岳)을 체임(遞任)하였다. 이때 이교악이 진곡(賑穀)을 모으기 위하여 기패관(旗牌官) 등의 첩(帖)을 파는 것을 허가하였는**

데, 총융사(摠戎使) 김중기(金重器)가, ‘장교(將校)의 액수(額數)가 많아지면, 향오(行伍)가 부실해지고, 또 값을 받고 승보(陞補)하는 것은 전에 금령(禁令)이 있었다.’ 고 말하고, 독촉하여 값을 돌려주고 첩을 거두게 하니, 이교악이 이로 인하여 비국에 신장(申狀)하고 사퇴하여 마지않았다. 비국에서, 무장(武將)은 기율을 중하게 여겨 반드시 그 영을 시행하려 하고, 문리(文吏)는 진대(賑貸)를 중하게 여겨 그 일을 변경하려 하지 않으니, 형세가 서로 용납하기 어렵다.’ 고 아뢰어 체임한 것이다. 그런데 이교악이 또 가선첩(嘉善帖)·절충첩(折衝帖) 50장을 만들어 보내어 본부(本府)로 하여금 팔게 하고, 값을 바친 장교는 값을 돌려주고 마음대로 판첩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庚午/備局請遞水原府使李喬岳. 時, 喬岳爲聚賑穀, 許賣旗牌官等帖, 摠戎使金重器以爲: “將校數多, 則行伍不實, 且以納價陞補, 曾有禁令.” 督使還價收帖, 喬岳因此申狀備局, 控辭不已. 備局以武將重紀律, 必欲行其令, 文吏重賑貸, 不肯變其事, 勢難相容, 啓遞. 喬岳又請成送嘉善·折衝帖五十張, 令本府發賣, 還給納價將校收還擅賣之帖, 上從之.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1월 15일(경오)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이유민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이유민(李裕民)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李裕民爲水原府使.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1월 17일(임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경기도사 이진망과 원협이 있는 수원부사 어유귀를 교체하게 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 민진후가 또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어유귀(魚有龜)가 경기 도사(京畿都事) 이진망(李眞望)과 원협(怨嫌)이 있었는데, 이진망의 사장(辭狀)에 ‘속리(屬吏)에게 쫓겨나게 되었다.’ 라는 말이 있으니, 어유귀는 형세상 부임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어유귀를 교체하게 하고 이진망은 파직하게 하였다.

○藥房入診. (…) 鎮厚又言: “水原府使魚有龜, 與京畿都事李眞望, 有嫌怨, 眞望辭狀中, 有見逐屬吏之語, 有龜勢難赴官.” 上命遞有龜而罷眞望.

<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5월 13일(신유) 4번째기사>

### 정치/행정

#### 김진옥을 수원 부사로 삼다

김상원(金相元)을 승지로 초배(超拜)하고, 김진옥(金鎭玉)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김진옥은 유가(儒家)의 자손으로 재능과 명망이 있었는데, 묘당(廟堂)에서 천거하여 기보(圻輔)의 중진(重鎭)의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명성이 고을을 다스릴 적보다 상당히 떨어졌다. 또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방까지 있었으므로 논하는 자들이 이것을 단점으로 여겼다.

○癸亥/以金相元超拜承旨, 金鎭玉爲水原府使. 【史臣曰: “鎭玉以儒家子, 有才諳名, 廟堂薦授圻輔重鎭, 而聲名頗損於治郡時. 且有不廉之謗, 議者短之.”】

<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5월 15일(계해) 1번째기사>

정치/행정

김덕기를 수원 부사로 삼다

김덕기(金德基)를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김덕기는 탐오(貪汚)하고 까다롭고 자질구레하여 사람들이 동렬(同列)에 끼워주지 않았는데 묘당(廟堂)에서 추천하여 명부(名府)에 임명하였으니, 공론이 놀라고 탄식하였다.”

○戊寅/以金德基爲水原府使. 【史臣曰：“德基貪汚苛瑣，人所不齒，而廟堂尉薦，授以名府，公議駭歎.”】

<숙종보궐정오실록 38권, 숙종 29년 2월 3일(무인) 1번째기사>

정치/행정

이삼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이삼(李森)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李森爲水原府使.

<경종실록 2권, 경종 즉위년 9월 26일(경인) 2번째기사>

정치/행정

장령 임형이 수원부사 이삼의 파직을 청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 당상(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 장령(掌令) 임형(任洞)이 앞서의 계사를 거듭 아뢰고, 또 논하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삼(李森)은 젊고 명망이 가벼우며 또 이력(履歷)이 얕으므로 제수한 후에 곧 논박(論駁)이 나왔는데, 급급히 사조(辭朝)했으니, 더욱 지극히 해괴합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삼은 원래 재능이 많았는데 그 당(黨)에 아부하지 않았으므로, 임형이 탄핵한 것이었다.

○大臣·備局堂上引見。(…)掌令任洞申前啓，又論：“水原府使李森，年少望輕，資歷且淺，除授之後，將有駁論，而汲汲辭朝，尤極可駭。請罷職。”上曰：“勿煩。”森，素多才能，而不附其黨，故洞劾之。

<경종실록 2권, 경종 즉위년 11월 1일(갑자) 2번째기사>

정치/행정

이진유를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이진유(李眞儒)를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

○戊申/(…)李眞儒爲水原府使。(…)

<경종실록 6권, 경종 2년 1월 22일(무신) 1번째기사>

정치/행정

김동필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김동필(金東弼)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 (…)金東弼爲水原府使.

<경종실록 6권, 경종 2년 2월 6일(신유) 2번째기사>

정치/행정

윤순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윤순(尹淳)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

○(…) 尹淳爲水原府使. (…)

<경종실록 15권, 경종 4년 6월 14일(을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이광좌가 수원부사에 임명된 윤순을 사국당상으로 임명해달라고 청하다

(…) 이광좌가 또 말하기를, “실록 당상(實錄堂上)이 중대한 업무를 띠고 있어서 역사(歷史)를 수찬(修纂)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니, 마땅히 당상(堂上) 중에서 문망(文望)이 있고 직무(職務)가 번거롭지 않은 자를 채택하여 그로 하여금 사국(史局)에 임무(任務)를 전임(專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컨대 윤순(尹淳)의 수원 부사(水原府使)를 체직(遞職)하여 사국 당상(史局堂上)으로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니, 또한 그대로 따랐다.

○(…) 光佐又言: “實錄堂上, 以帶重務, 不能專意史事, 宜取堂上中有文望, 職務不煩者, 使專任史局. 請遞尹淳水原府使, 差下史局堂上.” 亦從之.

<경종실록 15권, 경종 4년 8월 11일(신사) 1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시혁을 수원 부사로 삼다

(…) 김시혁(金始煥)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 金始煥爲水原府使.

<경종실록 15권, 경종 4년 8월 15일(을유) 2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여를 수원 부사로 삼다

(…) 김여(金礪)를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 金礪爲水原府使.

<영조실록 5권, 영조 1년 4월 5일(임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조정만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조정만(趙正萬)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 趙正萬爲水原府使.

<영조실록 10권, 영조 2년 9월 12일(신축) 1번째기사>

정치/행정

신노를 수원의 시재어사에 제수하다

(…) 신노(申魯)를 수원(水原)의 시재 어사(試才御史)로 삼았다. (…)

○(…) 申魯爲水原試才御史.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 2월 25일(임오) 2번째기사>

정치/행정

사간원에서 수원부사로 있을 때의 잘못을 들어 충청 감사 김여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에서 【정언 조명택(趙明澤)이다.】 (…) 또 아뢰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 김여(金礪)는 일찍이 수원(水原)에 원이 되었을 적에 사정에 끌리어, 춘분(春分) 이후에 몰래 소교(小橋)로 가권(家眷)을 데려갔었습니다. 그가 사정에 따라 이처럼 범과(犯科)하는 것을 했으니, 이번에 도신(道臣)이 되어서는 또한 어찌 법대로 몸을 가지며 관하(管下)들을 표솔(表率)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김여를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

○諫院【正言趙明澤.】(…) 又啓曰: “忠淸監司金礪, 曾宰水原也, 牽於私情, 春分之後, 潛以小橋挈去家眷. 其循私犯科如此, 則今爲道臣, 亦安能以法自持, 表率管下乎? 請金礪罷職.” 不允.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 윤3월 21일(무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성덕윤을 수원 시재 어사에 제수하다

(…) 성덕윤(成德潤)을 수원 시재 어사(水原試才御史)로 삼았다.(…)

○(…) 成德潤爲水原試才御史.(…)

<영조실록 12권, 영조 3년 8월 22일(을사)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성덕윤을 수원 시재 어사에 제수하다

(…) 성덕윤(成德潤)을 수원 시재 어사(水原試才御史)로 삼았다.(…)

○(…) 成德潤爲水原試才御史.(…)

<영조실록 15권, 영조 4년 1월 11일(임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성덕윤을 수원 시재어사로 보내다

(…) 어사(御史) 성덕윤(成德潤)을 수원(水原)에 보내어 재주를 시험보였다.

○(…) 遣御史成德潤, 試才水原.

<영조실록 15권, 영조 4년 1월 24일(을해)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이광좌가 박찬신을 수원 부사로 삼을 것을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

이광좌(李光佐)가 박찬신(朴贊新)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을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폐(廢)한 장봉익(張鵬翼)을 기용하고자 하니, 이광좌가 술을 먹으면 객기(客氣)를 부리고 도량이 좁은 것을 단점으로 지적하면서 그르칠까 염려스럽다고 하며 임금이 연중(筵中)에 세 번이나 물었지만 모두 막아버렸다.

○李光佐請以朴贊新爲水原府使. 上欲起廢用張鵬翼, 光佐短其使酒量狹, 恐僨大事, 上三問筵中, 皆塞之.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16일(병인) 4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에서 박동추를 따라 임전한 자들을 특별히 시상하도록 하다

수원(水原)의 군대인 2초(哨)에서 박동추(朴東樞)를 따라 전장(戰場)으로 달려갈 것을 자원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시상(施賞)할 것을 명하였다. 감호사(監護使) 윤순(尹淳)의 말을 따른 것이다.

○命水原軍二哨，自願從朴東樞赴戰者，別爲施賞。從監護使尹淳之言也。

<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17일(정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송인명이 수원 등에서 시재한 예에 따라 북한산성 소속의 군졸에게 포상할 것을 청하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 송인명이 말하기를, “변란 때에 조엄(趙儼)이 북한(北漢) 소속 군졸·승도(僧徒)와 함께 성에 올라가 한데에서 지냈으니, 다른 군문(軍門)의 예에 따라 호궐(犒饋)하고 또 송도(松都)·수원(水原)에서 시재(試才)한 예에 따라 중신(重臣)을 보내어 시재하고 상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관(主管)하는 당상(堂上)과 별장(別將)이 함께 시재(試才)하라.” 하였다. (...)

○上御晝講。(...) 寅明曰：“變亂時，趙儼與北漢所屬軍卒·僧徒，乘城暴露，依他軍門例犒饋，亦依松都·水原試才之例，遣重臣試才行賞，恐宜。” 上曰：“主管堂上與別將，眼同試才。” (...)

<영조실록 18권, 영조 4년 7월 22일(신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대사간 이춘제가 수원부사 신광하의 체직을 청하다

대사간(大司諫) 이춘제(李春躋)가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근래에 법강(法綱)이 점차 무너져 온갖 관원이 태만해졌습니다. 신은 마땅히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를 따라 묘사유과(卯仕酉罷)의 법을 신칙하고, 번막(藩幕)의 직임을 정선(精選)하며 감찰(監察)의 관원을 잘 간택하고 은상(恩賞)을 신중히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원 부사(水原府使) 신광하(申光夏)는 지난번 수의(繡衣)의 서계(書啓)에 이미 말하기를, ‘아전이 허복(虛卜)을 받았는데도 살피지 못했고, 향소(鄉所)에서 민전(民錢)을 징수했는데도 금하지 못했다.’ 고 하여 그 논열(論列)한 바가 폄(貶)은 있고 포(褒)는 없었으니, 마땅히 그 직임을 체차(遞差)하여야 합니다. (...)” 하니, 비답하기를, “신광하는 체직하라. (...)” 하였다.

○辛未/大司諫李春躋上疏，略曰：近來法綱漸壞，百隸怠慢。臣謂宜遵倣祖宗故事，飭卯酉之法，擇藩幕之任，揀監察之官，恩賞宜慎也。(...) 水原府使申光夏 向於繡衣書啓，既曰：“吏執虛卜而不能察，鄉徵民錢，而不能禁。” 其所論列，有貶無褒，宜改其職也。(...) 批曰：“申光夏遞其職。 (...)”

<영조실록 29권, 영조 7년 1월 7일(신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유엄을 수원 부사로 삼다

유엄(柳儼)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丁卯/以柳儼爲水原府使。

<영조실록 38권, 영조 10년 6월 23일(정묘) 1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상성을 특별히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김상성(金尙星)을 특별히 발탁하여 수원 부사로 삼았다.

○(…) 特擢金尙星爲水原府使.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 4월 8일(무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이일제를 수원 부사로 삼다

이일제(李日躋)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以李日躋爲水原府使.

<영조실록 41권, 영조 12년 2월 6일(경오) 2번째기사>

정치/행정

정우량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 정우량(鄭羽良)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 鄭羽良爲水原府使.(…)

<영조실록 43권, 영조 13년 2월 6일(갑자) 1번째기사>

정치/행정

심악을 수원부사로 삼다

임금이 우의정 송인명·이조 판서 조현명·참판 정석오·참의 신만을 특별히 불러 전랑의 통색에 관한 일을 묻고, 특별히 제수하여 민통수를 광주 부윤으로, 심악을 수원 부사로 삼고, 수백 마디 말을 하교하여 서로 당습을 하는 잘못을 꾸짖고, 전조(銓曹)와 조정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구습을 빨리 고치게 하였다. (…)

○上特召右議政宋寅明·吏曹判書趙顯命·參判鄭錫五·參議申晩，問銓郎通塞事，特除閔通洙爲廣州府尹，沈악爲水原府使，下教累百言，責互爲黨習之非，命銓曹及在廷臣僚，亟悛舊習。(…)

<영조실록 49권, 영조 15년 7월 21일(을축) 2번째기사>

정치/행정

홍상한을 수원 시재 어사로 삼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을 불러서 복상(卜相)하라고 명하고, 또 가복(加卜)하게 하여 병조 판서 조현명(趙顯命)을 우의정으로 삼았다. 이날 개정(開政)하여 (…)김상적(金尙迪)을 광주 시재 어사(廣州試才御史)로, 홍상한(洪象漢)을 수원 시재 어사로 삼았다.

○丙申/命招左議政金在魯·右議政宋寅明卜相，又命加卜。以兵曹判書趙顯命爲右議政。是日開政，(…)金尙迪爲廣州試才御史，洪象漢爲水原試才御史。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 9월 28일(병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영조가 특별히 심악을 수원부사에 임명하다**

다시 민통수(閔通洙)를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처음에 조현명(趙顯命)이 이조 관서가 되어 심악(沈악)을 천거하여 낭관을 삼으려고 하였는데, 참의 신만(申晩)이 민통수를 천거하여 모두 거취(去就)를 가지고 굳게 다투므로, 임금이 특별히 심악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임명하고, 민통수를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임명하였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명을 정지하고 민통수를 마침내 전랑(銓郎)으로 삼았는데, 뒤에 대정(大政)을 집행하기에 이르러 명을 받들지 않으므로, 임금이 즉시 친히 정사를 행하고 나오도록 부르니, 그제야 나왔었다. (…)

○復以閔通洙爲吏曹佐郎. 初趙顯命判吏曹, 舉沈악欲爲郎官, 而參議申晩舉閔通洙, 皆以去就固爭之, 上特授악水原府使, 通洙廣州府尹. 既而寢其命, 通洙卒得爲銓郎, 及行大政不膺命, 上卽親政, 趣召之, 於是乃赴. (…)

<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 4월 12일(병오) 2번째기사>

**정치/행정**

**홍창한을 수원 부사로 삼다**

박사창(朴師昌)을 의주 부윤으로, 홍창한(洪昌漢)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己丑/以朴師昌爲義州府尹, 洪昌漢爲水原府使.

<영조실록 58권, 영조 19년 9월 10일(기축) 1번째기사>

**정치/행정**

**송수형 · 송명겸 · 홍익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수형(宋秀衡)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以宋秀衡爲水原府使. (…)

<영조실록 66권, 영조 23년 8월 23일(신사) 2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을 조사하는 일 때문에 김상로를 참판에서 체직하다**

(…) 참판 김상로(金尙魯)는 수원(水原)을 조사하는 일 때문에 체직(遞職)을 허락하였으며, 참의 이덕중(李德重)은 패초(牌招)를 어긴 것에 좌죄(坐罪)되어 파직시켰다.

○(…) 參判金尙魯以水原查事許遞, 參議李德重違牌坐罷也.

<영조실록 67권, 영조 24년 1월 5일(경인) 1번째기사>

**정치/행정**

**윤흡을 수원 부사로 삼다**

윤흡(尹滄)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以尹滄爲水原府使.

<영조실록 70권, 영조 25년 8월 5일(신사) 3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 등의 80세 이상의 사서인에게 가자하다**

충청도 사서인(士庶人)으로 80세 이상인 사람에게 가자하고 과천(果川) · 광주(廣州) · 수원



(水原)·진위(振威)·양성(陽城)도 일체로 거행하게 하였는데, 정유년의 예를 쓴 것이었다.

○忠淸道土庶年八十以上加資，果川·廣州·水原·振威·陽城一體舉行，用丁酉前例也。

<영조실록 72권, 영조 26년 9월 13일(임자)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장령 유건이 상서하여 수원부사 장태소의 삭탈 관직을 청하다

장령 유건(柳謩)이 상서(上書)하기를, “(…) 수원 부사(水原府使) 장태소(張泰紹)는 날마다 탐음(耽飲)을 일삼고 큰 곤장으로 위엄을 세우고 지나치게 전세(田稅)를 거두어들여 민원(民怨)이 떴지어 일어나고 있으니, 마땅히 삭탈 관직(削奪官職)해야 합니다. (…)” 하니, 동궁(東宮)이 그대로 따랐다.

○掌令柳謩上書言：(…) 水原府使張泰紹，日事耽飲，大棍作威，濫捧田稅，民怨朋興，宜削其職。(…) 東宮從之。

<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 2월 20일(무자)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서지수를 수원의 시재어사에 제수하다

(…) 신위(申暉)를 광주 시재 어사(廣州試才御史)로, 서지수(徐志修)를 수원 시재 어사(水原試才御史)로 삼았다.

○(…) 申暉爲廣州試才御史，徐志修爲水原試才御史。

<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 3월 21일(무오)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좌의정 이천보가 마음대로 떠난 수원 부사 이의풍의 추고를 건의하다

왕세자(王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소접(召接)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의풍(李義豐)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아전을 잘 단속하므로 감사(監司)가 순도(巡到)할 때에 관리 80여 명이 짐짓 일을 일으키려고 한꺼번에 달아났는데, 이의풍이 이것을 감영(監營)에 알리고 곧 올라왔습니다. 마음대로 떠난 것은 비록 죄가 있으나, 이 때문에 체직시키면 아전들의 원하는 바에 적중하는 것이니, 청컨대 추고(推考)한 뒤에 재촉하여 내려 보내어 잡아서 징계할 수 있게 하소서.” 하니, 하령(下令)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

○王世子召接大臣·備堂。左議政李天輔曰：“水原府使李義豐，善於治民，且能束吏，故監司巡到時，官吏八十餘名，欲故生事，一時逃走，義豐以此報營，仍爲上來。擅離雖有罪，以此遞職，則適中吏輩之願，請推考後催促下送，以爲跟捕懲勸之地。” 令曰：“唯。” (…)

<영조실록 80권, 영조 29년 10월 5일(병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김상복을 수원부사에 제수하다

서명빈(徐命彬)을 광주 유수로, 김상복(金相福)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戊午/以徐命彬爲廣州留守，金相福爲水原府使。(…)

<영조실록 81권, 영조 30년 윤4월 9일(무오) 1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 부사 김선행이 백성들에게 유고향미를 나눠줄 것을 상서하다

수원 부사 김선행(金善行)이 상서하여 백성들의 거꾸로 매달린 듯한 형편과 양식이 떨어져 농사를 폐하게 된 정상을 갖추어 진달하고, 유고향미(留庫餉米)를 얻어 농사 지을 물자로 더 나누어 줄 것을 청하니, 왕세자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水原府使金善行上書，備陳民勢倒懸·糧絕廢農之狀，請得留庫餉米，以爲加分作農之資，王世子令廟堂稟處。

<영조실록 88권, 영조 32년 7월 9일(갑술) 3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상로가 이최중을 수원 부사에 의망했음을 아뢰다

임금이 회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이최중(李最中)은 사람됨이 자상(慈詳)하고 가정에 있어서는 검소하고 질박함을 숭상하였으며, 나라의 일에는 정성과 근면(勤勉)에 힘썼으므로 방금 수원 부사(水原府使)의 수망(首望)에 주의(注擬)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이최중이 꼭 큰 일을 감당할 것인지 알지 못하나 경이 이미 알고서 천거하였고, 또 요(堯)임금의 먼저 능한가 능하지 아니한가를 시험해 보고 취사(取捨)한다는 훈계가 있으니, 내가 이최중에게 우선 능숙한 사람인지를 시험해 보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上御熙政堂，引見大臣備堂．領議政金尙魯曰：“李最中爲人慈詳，居家以儉薄爲尙，事國以誠勤爲務，故方首擬於水原府使矣．” 上曰：“予未知李最中之必能當大事，而卿既知而薦之，且帝堯有試可乃已之訓，予之於李最中，姑先試可，亦無妨．”

<영조실록 94권, 영조 35년 7월 23일(신미) 3번째기사>

정치/행정

홍지해를 수원 부사로 삼다

홍지해(洪趾海)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以洪趾海爲水原府使．

<영조실록 104권, 영조 40년 9월 23일(임신) 2번째기사>

정치/행정

조제태·서명응·이규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제태(趙濟泰)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

○以趙濟泰爲水原府使．(…)

<영조실록 108권, 영조 43년 5월 14일(정축) 2번째기사>

정치/행정

원중회를 수원부사로 삼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 이장오(李章吾)를 훈련 대장으로, 구선복(具善復)을 금위 대장으로, 원중회(元重會)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上引見大臣備堂．(…) 以李章吾爲訓練大將，具善復爲禁衛大將，元重會爲水原府使．

<영조실록 111권, 영조 44년 12월 1일(을묘) 3번째기사>

정치/행정

심이지를 수원 시재 어사에 제수하다

(…) 심이지(沈頤之)를 수원 시재 어사(水原試才御史)로 삼았다.

○(…) 沈頤之爲水原試才御史.

<영조실록 113권, 영조 45년 11월 4일(임오) 3번째기사>

정치/행정

전 수원부사 원중회는 녹봉을 감하고 수원부사 김상묵은 숙마를 내리다

(…) 전 수원 부사(水原府使) 원중회(元重晦)가 아약(兒弱)을 군대에 충정(充定)하였는데, 마야흐로 통수(統帥)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참작하여 4등(等)의 녹봉(祿俸)을 감하도록 명하였으며, 삭녕 군수(朔寧郡守) 이엄(李琰)은 근무지를 비워두었다는 죄로 영문(營門)에서 결장(決杖)하게 하였으며, 수원 부사 김상묵(金尙默)은 분조(分糶)를 잘 하였다하여 특별히 숙마(熟馬) 한 필(匹)을 내려 주도록 하고 이내 팔도(八道)의 추생 어사(抽牲御史) 신칙해 적간(摘奸)하여 장문(狀聞)하게 하였다.

○(…) 前水原府使元重晦，以兒弱充定，而方爲統帥，故特命參酌越俸四等，朔寧郡守李琰，以空官之罪，營門決杖，水原府使金尙默，以善於分糶，特賜熟馬一匹，仍飭八道抽牲，摘奸狀聞.

<영조실록 116권, 영조 47년 4월 7일(정축) 2번째기사>

정치/행정

이득신을 수원 부사로 삼다

승지 이득신(李得臣)을 제수(除授)하여 수원(水原) 부사로 삼았다.(…)

○除承旨李得臣爲水原府使.(…)

<영조실록 120권, 영조 49년 1월 3일(계사) 2번째기사>

정치/행정

이성수를 수원 부사로 삼다

승지 이성수(李性遂)를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以承旨李性遂爲水原府使，擢丁範祖爲承旨.

<영조실록 120권, 영조 49년 4월 30일(무오) 3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상복의 추천으로 조정을 수원 부사로 삼다

조정(趙最)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으니, 김상복(金相福)이 추천한 것이었다.

○以趙最爲水原府使，金相福之薦也.

<영조실록 121권, 영조 49년 7월 5일(임술) 3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부사 서호수에게 말을 하사하다

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서 호남 어사(湖南御史)에게 입시(入侍)하기를 명하고, 연읍(沿邑)

수령 가운데 수원 부사(水原府使) 서호수(徐浩修)가 성적이 가장 으뜸[最]이 되므로 특별히 말[馬]을 하사하였다. (…)

○庚戌/上御集慶堂，命湖南御史入侍，沿邑守令中水原府使徐浩修爲最，特爲錫馬。(…)  
<영조실록 121권, 영조 49년 12월 26일(경술) 1번째기사>

#### 정치/행정

김한노를 수원 부사로 삼다

김한노(金漢老)를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으니, 김한노는 척신(戚臣)으로서 등과(登科)한 지 3년도 채 못되었다.

○朔癸未/以金漢老爲水原府使，漢老戚臣，而登科未三載矣。  
<영조실록 122권, 영조 50년 6월 1일(계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첨지중추부사 정술조가 광주와 수원을 혁파해야 한다고 상소하다

첨지중추부사 정술조(鄭述祚)가 상소하기를, (…)광주(廣州)·수원(水原)은 본래 사체가 중하지만 참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곡(錢穀)을 유사(有司)에게 붙여 흉년을 만나면 백성을 구제하는 자료로 쓰고 풍년을 당하면 병무(兵務)를 넉넉하게 하는 것으로 쓴다면 국가에서 회보(懷保)하는 도리와 미연에 대비하는 계책에 있어 둘 다 제대로 되어 손실이 없게 될 것입니다.(…)

○僉知中樞府事鄭述祚上疏曰：(…) 廣州·水原，本自體重，誠宜革罷之。 以其錢穀，付之有司，值荒年，而爲濟民之資，當稔歲，而爲裕兵之用，則在國家懷保之道，綢繆之計，庶可兩得而無損矣。(…)  
<정조실록 13권, 정조 6년 6월 2일(정묘)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정동준을 수원 부사로 보임하다

이조 참의 정동준(鄭東浚)을 수원 부사로 보임하였는데, 부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壬戌/補吏曹參議鄭東浚水原府使，以違召也。  
<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 1월 17일(임술)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이광운이 출생한 수원부를 현으로 강등시키다

수원부(水原府)를 현(縣)으로 강등시켰는데, 이광운(李匡運)이 출생한 고장이기 때문이었다.

○降水原府爲縣，以匡運胎生邑也。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 1월 29일(무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윤시동이 역적이 살았던 고을의 강등에 대해 대신들의 의논을 청하다

이조 판서 윤시동(尹蓍東)이 아뢰기를, “역적이 나온 땅에 대하여 읍호(邑號)를 강등시키고 수령(守令)을 파직시키는 것은 모두 출생지 고을로써 거행하는데, 금번 수원(水原)의 강

호(降號) 역시 가까운 예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대전통편(大典通編)』의 강상 죄인 연좌조(綱常罪人緣坐條)에는, ‘당시 살고 있는 고을로써 정한다.’ 라고 하였으니, 『대전통편』을 반행(頒行)한 후의 안북(安北)·순천(順天)도 역시 출생한 고을입니다. 한번 품정(稟定)한 후에야 거행하는 데 현혹되지 않을 것이니, 대신(大臣)에게 물으소서.” 하니,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마땅히 『대전통편』에 따라서 거행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吏曹判書尹著東啓言：“逆賊所出之地，降邑號罷守令，皆以胎生邑舉行，今番水原降號，亦依近例，而『大典通編』『綱常罪人緣坐條』以時居邑爲定，『通編』頒行之後，安北·順天，亦是胎生邑。一番稟定，然後可以不眩於舉行，詢大臣。” 領議政金致仁言：“宜從『通編』。” 從之。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 2월 2일(경자) 6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등의 읍을 제외하고 외지의 수령은 문관과 무관을 교대로 제수하다

장령(掌令) 유광천(柳匡天)이 상소하기를,

(…) 신의 생각으로는, 읍과인 영하읍(營下邑)과 무과인 방어사(防禦使)와 문과인 세 부윤(府尹) 및 동래(東萊)·수원(水原)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외지(外地)의 수령은 문·무로 교체(交遞)하고 내지(內地)의 수령은 모두 문·읍·무로 환차(換差)하고, 1백여 무과 가운데에서 10여 과를 덜어 내고 2백여 가까운 읍과 가운데에서 20여 과를 덜어 내어 문과로 정하되 문참하(文參下)인 찰방 15과를 모두 올려서 부직(付職)하는 참상(參上)의 과로 하면 이것이 이른바 조금 변통하는 것인데, 교체하여 크게 변통하는 것은 혹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추이(推移)하여 조금 변통하는 것은 결코 그만둘 수 없을 것입니다. 도사(都事)로 말하면, 예전에 외대(外臺)라 칭하였는데 한 번 재상(災傷)이 폐지된 뒤부터는 문득 용관(冗官)이 되고 점점 문관의 졸직(卒職)이 되었습니다. 선조(先朝) 기사년에 과연 시종을 차출하여 보낼 것을 정식(定式)하였으나, 이때 낭서에 대한 구처(區處)가 없다 하여 대신(大臣)이 연중(筵中)에서 아뢰어 한두 도정(都政)에 행하고는 곧 또 폐지하였습니다. (…)

○掌令柳匡天上疏曰：(…) 臣意，則除却蔭之營下邑·武之防禦使·文之三府尹及東萊·水原，其餘則外地守令，文武交遞，內地守令，一并文蔭武換差，百餘武窠中，除出十餘窠，近二百蔭窠中，除出二十餘窠，定爲文窠，而文參下察訪十五窠，並爲陞付參上之窠，則是所謂少變通也，交遞大變通，雖或未施，推移少變通，斷不可已也。至若都事，古稱外臺，一自災傷革罷之後，便成冗官，謾歸文官之卒職。先朝癸巳，果以侍從差遣事定式矣。時以郎署之無區處，大臣筵白，行之一二都政，旋又廢却。(…)

<정조실록 24권, 정조 11년 12월 20일(계축) 2번째기사>

### 정치/행정

김노영이 수원부사에 유임되다

김재찬(金載瓚)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노영(金魯永)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았다. 노영이 수원 부사에 잉입(仍任)되었기 때문에 정존중(鄭存中)을 대신 제수하였다.

○甲辰/以金載瓚爲司憲府大司憲，金魯永爲司諫院大司諫。魯永，以水原府使仍任，以鄭存中代之。

<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10월 16일(갑진)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영우원의 천장을 위해 수원 읍치를 팔달산으로 옮기고, 광주의 두 면을 수원에 붙이다  
수원 읍소재지를 팔달산(八達山) 밑으로 옮기고 광주(廣州)의 두 면(面)을 떼어 수원에 붙였다. 전교하기를, “본부의 한 지방에 원소(園所)를 쓰기로 정한 뒤에 다수의 민가(民家)가 철거되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근심이 밤낮으로 풀리지 않는다. 대개 민심이 기뻐한 뒤에야 내 마음이 조금 풀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경진년에 머물러 묵으실 적에 백성들을 사랑해 돌보셨던 덕의(德意)를 우러러 본받을 수 있다. 말이 이에 미치고 보니 무엇이 아깝겠는가. 이미 돈 10만 냥을 본부에 떼어 주어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기는 비용에 보태 쓰도록 하였다. 지금 당해 부사의 장계를 보건대 읍터를 팔달산 밑으로 정하였는데 국세(局勢)가 크게 트여 큰 진(鎭)의 터로 합당하나, 그 백성들은 땅이 광주의 일(一)·용(用) 등 두 면과 맞닿았기 때문에 주저하는 뜻이 없지 않다고 하니, 사실 그렇다면 수원으로 떼어 붙이는 것을 어찌 아끼겠는가. 일·용 두 면의 백성들도 산성(山城)과의 거리가 1백여 리나 되기 때문에 모두 수원에 붙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이에 두 면의 군정(軍政)과 적정(糴政) 등의 폐단이 광주 백성들에게 가증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미 헤아린 바가 있다. 감사가 등연(登筵)할 때 마땅히 조처를 내리겠거니와, 수원 백성을 위하고 광주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양쪽 다 좋은 이 계책을 가지고 거듭 밝게 당부하는 바이니, 감사와 수령은 자세히 알고서 백성들을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己亥/移水原邑治于八達山下，劃屬廣州兩面。教曰：“本府地方，定用園所之後，以民舍之撤移多數，爲民憧憧，夙夜不弛。蓋民心懽悅然後，予心不但少弛，亦可以仰體庚辰年駐宿時字恤之德意。興言及此，何事可惜？已以十萬金，劃給本府，俾補移民移粟之費。今見該府使狀本，邑基占定於八達山下，而局勢大開，可合雄鎮，然其民情，以壤地之直接廣州，一·用等兩面，不無越趨之意云。信爾則劃屬水原，豈或靳持乎？一·用兩面之民，以距山城百餘里，必當咸願移屬，而如是之際，兩面軍政糴政等弊瘼，勢將疊責於廣民，此則亦已有商量者。道伯登筵時，當有措處，以爲水民爲廣民之心，將此兩得之策，曉燭申申，道伯守令，體悉曉諭。”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7월 15일(기해)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등 세 읍의 암행 어사 유문양을 소견하다

수원(水原) 등 세 읍의 암행 어사 유문양(柳文養)을 소견하였다.

○召見水原等三邑暗行御史柳文養.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0월 10일(임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문과·무과 별시를 설행하여 수원사람 3인을 뽑다

문과(文科)·무과(武科) 별시(別試)를 설행하였다. 수원(水原) 사람 3인과 과천(果川)·광주(廣州) 사람 각 1인씩을 뽑으라고 명하여, 이덕승(李德升) 등 5인을 뽑았다. 유생(儒生) 신덕우(辛德羽)·김성운(金星運)·조만원(趙萬元) 등이 처음에 수원 사람으로서 합격을 하였으나 호적(戶籍)이 없었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모두 빼내어 충군(充軍)할 것을 청하니, 상이 난처하게 여겼다. 관중추부사 서명선(徐命善) 등이 모두 법은 신용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고, 대사간 홍문영(洪文泳)은 계사(啓辭)를 올려 극력 쟁집하였다. 이에 상이 그들의 이름을 빼버릴 것만을 명하였다.

○壬戌/設文武科別試. 命水原取三人, 果川·廣州各取一人, 取李德升等五人. 儒生辛德羽·金星運·趙萬元等, 始以水原入格而無籍. 左議政蔡濟恭請竝拔去充軍, 上難之. 判中樞府事徐命善等皆言法不可不信, 大司諫洪文泳發啓力爭, 上只命拔去.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11일(임술)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경기 관찰사와 수원 부사에 사민들을 위해 유지하다

경기 관찰사와 수원 부사에게 유지(諭示)하였다. “이번 행차에 본부(本府: 수원부)를 둘러보니, 새 고을의 관사(官舍)는 비록 틀이 잡혔으나 민가(民家)는 아직 두서(頭緒)가 없다. 그 가운데 이른바 약간 지어놓은 집이라는 것은, 땅굴도 아니고 움막도 아니어서 달팽이 껍데기 같기도 하고 계막지 같기도 하다. 지금 짐작에는, 집들이 줄지어 서고 거리가 번창하여 엄연히 서울 근처의 큰 도회지가 되기란, 본래 짧은 시일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만약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여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어 모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마음을 놓고 생각을 늦출 수 있겠는가. 어가를 옮기는 날에 가마를 멈추고 부로들을 불러 물어보았지만 백성들이 어리석어 대답할 바를 몰랐다. 새 고을의 소재지가 옛적 고을보다 낮게 되자면, 오직 조정에서 꾸러나가기에 달려 있으니, 묘당의 신하들은 십분 토의하여 빈대(賓對) 때에 아뢰도록 하라.

사람들을 모아들이려면 우선 생활할 수 있게 꾸려주어야 하고, 생활을 꾸려주자면 우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이 생업에 재미를 붙이게 해줘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의 구획을 정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힘써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반복해서 생각해도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원소(園所)의 국내(局內)·국외(局外)에 토지의 지가(地價)를 너무 바닷하게 정해서 백성들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고 한다. 이것은 지방관이 별도로 조사해내어 여유있게 운영하여, 조금 완전히 모여들고 자리를 잡게 되기를 기다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힘껏 농사를 짓도록 해주는 외에 다시 직접 장사하여 이익을 보게 한다면, 장차 집집마다 면모가 달라지는 성과가 있게 될 것이다. 숙소에 나아가 있으면서 이 일이 잊혀지지 않아서, 이에 또 촛불을 가져오라고 하여 거듭 유지하는 것이니, 지방관은 공경히 받은 후에 부로들을 모아놓고 일일이 깨우치도록 하라.

소민(小民)은 쉽게 다룰 수가 있으므로 이상과 같이 한다면 혹 안정을 시킬 수가 있을 듯하고, 대민(大民)들이 가계[塵]를 받으려는 바람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억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방관에게도 즉시 알려주어서, 본부의 사민(士民)들을 위해 항시 잊지 않고 있는 나의 고심과 지극한 뜻에 부응토록 하라.”

○諭京畿觀察使·水原府使曰: “今幸周覽本府, 新治官廡, 雖成規模, 民家未就頭緒. 其中所謂若爾造舍者, 非窳非卡, 則似蝸殼似蟹匡. 以今所料, 度屋間之櫛比, 街巷之繁庶, 儼然爲畿輔大都會, 固難期以時月. 若不別講另究, 其興勸萃集之方, 予豈可便心而弛思乎? 遷駕之日, 駐驕召問父老, 民之蚩蚩, 不知所對. 新治之勝於舊邑, 惟在朝家措劃, 廟堂之臣, 十分商確, 賓對時敷奏. 大抵欲募入則宜先制產, 欲制產則宜先悅其心樂其生. 太上經界, 其次懋遷, 反覆思惟, 無出於二者. 園所局內外, 新屬土地地價, 過於撙節, 民情不無抑鬱云. 此則地方官別般查出, 優加拮据, 而稍待完聚定居, 又使力作之外, 更售手販之益, 則將有比屋改觀之效. 進住宿次, 餘意憧憧, 茲又呼燭申諭, 地方官祇受後, 聚會父老, 一一曉告. 小民易爲力如右, 則或可安頓, 大民受塵之願, 非可指的, 而驅勒地方官亦卽傳知, 以副予爲本府士民, 惓惓勸勉之苦心至意.”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11일(임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에서 실행된 과거에서 이운행과 윤지눌이 합격하다

차대(次對)가 있었다. 문·무과에 새로 합격한 자들을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이르기를, “지난번에 수원(水原)에서 실행한 과거 시험에서는 이운행(李運行)을 얻었고, 이번의 방방(放榜)에서는 윤지눌(尹持訥)을 얻었는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니, 제공이 아뢰기를, “외간(外間)에서는 물색(物色)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지만, 신은 성상의 마음이 필시 하늘에 감통(感通)된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였다. (…)

○丁丑/次對. 召見文武新恩. 上謂左議政蔡濟恭曰: “向日水原科, 得李運行, 今榜得尹持訥, 事非偶然.” 濟恭曰: “外間有物色之疑, 而臣則曰上之呼吸, 必能感通於天, 而有不容人力者矣.” 上曰: “鄭翼憲祭文, 變彼曲儒之句, 卿果見之乎? 伊時南溪年纔二十有餘, 豈能深知堪輿之理, 而別立己見, 力詆他議者, 誠爲未妥. 故予於翼憲祭文, 如是言之.” (…)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26일(정축)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읍 부근의 유생과 무사들을 시험보이고 시취하는 규정을 정하다

수원읍(水原邑) 부근에 사는 유생(儒生)과 무사(武士)들을 시험보이고, 이어 시취(試取)하는 규정을 정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번에 시취(試取)를 하는 일은 인재를 권장하고 육성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며, 아울러 새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자 해서였다. 그런데 이 유생들의 시권(試券)을 살펴보니, 38장(張)에 불과하고 재주 또한 한껏 월등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이후로 공부를 함에 있어 모쪼록 별달리 전심 전력을 해야만 크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점을 알도록 하라.

무사들로 말하면, 수원은 평소 무술을 숭상하는 고을로 일컬어져 왔는데, 이번에 합격한 수가 또한 그다지 많지 못하다. 어찌 새로 이사하여 사느라고 무예를 미처 익힐 겨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지방관은 각별히 권과(勸課)를 하라.

다음번의 시취(試取) 때부터 시작하여 원소(園所)의 동구(洞口) 근처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으면 다같이 응시하도록 허락하되, 이에 대해서는 모름지기 특별한 하교를 내린 다음에 응시하도록 허락하라. 유생이건 무사이건 막론하고 매월 그달 안에 새로 이주하는 사람의 거주지·성명·나이·부조(父祖)의 직함(職啣) 및 명가(名家)인지, 반벌(班閥)인지, 또는 중인(中人)·서인(庶人)·공천(公賤)·사천(私賤) 출신인지 등 내력(來歷)과 근파(根派)를 자세히 적어 책을 만들어 매번 그 다음달에 입계(入啓)하라. 새로 이사하여 사는 사람들을 무마하는 정사는 전적으로 지방관에게 위임하였으니 너희들은 안심하고 공부하여 성취(成就)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라.” 하였다.

○試水原邑底儒·武, 仍定試取之式. 教曰: “今番試取之舉, 出於勸獎作成之意, 而兼欲知新接之多寡. 觀此儒生試券, 不過三十八張, 而才亦未見十分超等. 向後做業, 必須別般專心, 可以大闡, 爾等知悉. 至於武士等, 素稱弓馬之鄉, 而入格之數, 亦不甚夥然. 豈新接之故, 未暇肄藝而然乎? 地方官各別勸課. 後次試取爲始, 園所洞口近處, 如有能射人, 一體許赴, 此則須下別般特教, 然後許赴. 無論儒與武, 每月次, 以當朔內新接人之居住·姓名·年歲·父祖職銜·名家班閥·中庶·公私賤等, 來歷根派懸註, 錄置成冊, 每翌月初入啓. 新接人撫摩之政,



專委地方官，爾等安心肄習，俾有成就之効.”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3월 10일(경인) 4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간 최환이 전라 감사로 윤시동을 임명한 것을 재고해 달라는 상소를 내다

사간 최환(崔煥)이 상소하기를, “윤시동(尹蓍東)을 전라 감사로 특별히 제수하라는 명은 또한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더구나 지금 원수를 진 달이 닥쳐와서 원통한 마음이 더욱 새로운 때에 어찌 이런 사람에게 몸소 감사 깃발을 날리면서 양양자득한 태도로 수원의 앞길을 지나게 할 수 있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윤시동을 전라 감사로 새로 제수하는 명을 특별히 취소하소서.” 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壬辰/司諫崔煥上疏曰：尹蓍東湖藩特除之命，又何爲耶？(...) 況今讎月奄迫，痛冤愈新，尤豈可使此等之人，身擁節旄，行過水原前路，揚揚爲自得之態耶？伏願聖明，特寢蓍東湖藩新除之命。不報。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5월 12일(임진)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관을 수원부에 보내 새 고을 유생들에게 글짓기 시험을 보게 하다

사관(史官)을 수원부(水原府)에 보내 새 고을 유생들에게 글짓기 시험을 보였다. ‘상황이 와서 놀았다[上皇來遊]’ 라는 제목을 냈는데, 상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

○遣史官于水原府，試新邑儒生，以上皇來遊，爲題，上謂左右曰：“予有微意矣.”

<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 8월 11일(기미) 4번째기사>

#### 정치/행정

암행 어사 조진택을 수원에 보내어 민정을 살피게 하다

암행 어사 정동관(鄭東觀)을 과천(果川)·금천(衿川)·수원(水原)·광주(廣州) 등 길을 닦는 여러 고을에 보내어, 민간의 폐단과 고통을 살피게 하였고, 조진택(趙鎭宅)을 수원에 보내 새 고을의 민정을 살피게 하였다.

○遣暗行御史鄭東觀于果川·衿川·水原·廣州等治道諸邑，察閭里弊瘼，趙鎭宅于水原，訪新邑民情。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5일(경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에 갔던 암행 어사 조진택이 이목동과 천천리를 일용면에 속하게 하자고 제안하다

수원(水原)에 갔던 암행 어사 조진택(趙鎭宅)이 돌아와 수원(水原)에서 시행해야 할 일에 대해 아뢰고, 아올러 아뢰기를, “일용면(一用面)이 광주부(廣州府)에 속해 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부와의 거리가 멀어서 세금을 내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수원의 형석면(荊石面)으로 이사하여 피한 자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수원부로 옮겨 속하게 했으나 잔폐하여 지탱하기 어려우니, 이제 이목동(梨木洞)과 천천리(泉川里) 두 마을을 함께 일용면에 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좌의정 채제공에게 물었다. 제공이 아뢰기를, “합병하면 형석면에 불리할 테니, 그대로 두소서.” 하니, 따랐다.

○水原暗行御史趙鎭宅，還奏水原便宜事，仍奏曰：“一用面在廣州時，其民以距府遠，納稅不便，徙避於水原之荊石面者多。今雖移屬，凋殘不可支，今以梨木洞·泉川里兩里，并屬一用爲便。”上問左議政蔡濟恭。濟恭以合并則不利於荊石，請置之，從之。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20일(을미) 3번째기사>

#### 정치/행정

부수찬 김희순이 수원부의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들의 비리 척결을 상소하다

부수찬 김희순(金羲淳)이 상소하기를, “수원부(水原府)의 새 고을인 수성(隋城)에서 과거를 시행하여 선비를 시험보인 것은 실로 우리 성상(聖上)께서 많은 선비들로 하여금 자기가 사는 곳을 편히 여기게 하려는 지극한 뜻에서였습니다. 선비로서 이 고을에 사는 자는 진실로 마땅히 은혜에 감격하여 집을 짓고 생업에 전념하여 성상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래 듣건대, 선비의 풍습이 좋지 못하여 임시로 가서 머물러 있다가 과거가 지나면 즉시 돌아가는 무리들이 많이 있고, 집을 짓는다고 칭탁하고는 빌리거나 임차하여 있으며 가족을 데리고 온다 핑계하고는 잠시 갔다가 잠시 머문다 하니, 성실하지 못하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이처럼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와 지방관으로 하여금 각별히 조사해 적발하도록 하여 허실(虛實)이 서로 섞이는 폐단이 없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수원(水原)에 새로 유생(儒生)들을 초치하여 살게 하는 일에 과연 이런 문제가 있구나. 어찌 선비들에게 이러한 풍습이 있단 말인가. 제생(諸生)들에게 매우 큰 수치라고 여긴다. 경기 감사와 해부(該府)로 하여금 들어와선 안 되는데 들어온 자는 빼버리고 와서 살고 있는 성실치 못한 무리들은 권하고 타일러 돌려보내게 하라.” 하였다.

○庚寅/副修撰金義淳上疏曰：隋城新邑，設科試士，此實我 聖上教多士莫厥居之至意也。爲士子而居是邑者，固當感激恩造，築室奠業以答萬一。而近聞士習不淑，多有臨時往留，過科卽還之類，稱以築室，而或借或賞，誘之摯眷，而乍往乍留，事之不誠，莫甚於此。臣謂如此不誠之人，令道臣及地方官，各別查拔，俾無虛實相蒙之弊。批曰：“水原新接儒生事，果有是也。寧有如許士習乎？甚爲諸生恥之。令畿伯及該府，不當入而入者，拔去來接，不誠之類，勸飭還送。”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20일(경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특지로 수원 부사 김사목을 이조 판서로, 여주 목사 이경무를 수원 부사로 삼다

중비(中批)로 수원 부사 김사목(金思穆)을 이조 판서로, 여주 목사 이경무(李敬懋)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中批，水原府使金思穆爲吏曹判書，驪州牧使李敬懋爲水原府使。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1월 25일(을미) 3번째기사>

수원부를 화성으로 바꾸고 부사를 유수로 승격시키다.

수원부(水原府)의 호칭을 화성(華城)으로 바꾸고 어필(御筆)로 현판을 써서 장남헌(壯南軒)에 걸었다. 부사(府使)를 유수(留守)로 승격시켜 장용 외사(壯勇外使)와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하게 하고, 판관(判官) 한 사람을 두어 보좌하게 하였다. 장용영 병방(壯勇營兵房)을 고쳐 장용사(壯勇使)라 하고, 도제거(都提舉)를 두어 호위 대장(扈衛大將)의 관

청을 합해서 그를 소속시켰다. 전교하였다.

“왕위에 오른 이후로 재용을 많이 저축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왔다. 그런데 다행히 황천에 계신 조종(祖宗)의 말없는 도움을 입어 용이 서리고 범이 웅크린 듯한 좋은 자리를 잡아 영원토록 천억만년 끝없는 큰 운세를 정하였으니, 이 땅의 소중함은 실로 주(周)나라의 풍(豊)이나 한(漢)나라의 패(沛)와 같이 융성할 것이다. 오직 이 곳을 잘 수호할 방도를 더욱 애써 치밀하게 하여 체모가 존엄하고 체도가 엄숙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 소자(小子)의 정리로나 예법으로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비유하자면 마치 종묘의 예절을 두고 먼저 백관(百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소중함에 관계되는 것이 이와 같다.

이곳 수원부는 〈현릉원〉 자리를 마련한 뒤로부터 관방(關防)이 더욱 중하여졌다. 아름다운 이 자연의 요해처에 달마다 꺼내 볼 〈사도 세자의〉 의관(衣冠)들을 길이 봉안하리라. 미리 행궁을 세워 먼저 우러르고 의지하는 생각을 붙였고, 영정을 그려 걸어서 혼정 신성의 정성을 대신하니, 어린애처럼 어버이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에 북받쳐 올라 절제할 줄을 모르겠다. 매년 3백 일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손뎀아 기다리고 바라던 것이 오로지 예를 행하는 하룻동안에 있었기에, 이미 배알을 마치고 환궁하는 길에 수원부의 경계가 다하는 고갯마루에 거가를 멈추고 우러러 바라보며 머뭇거리노라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더디어지곤 하였다. 그래서 번번이 수신(守臣)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여 정성을 다해 수호하라는 뜻으로 거듭거듭 당부했었다. 그러나 그의 직책은 한 고을의 원이요 그의 품계를 물어보면 3품직의 자리이다. 책임자를 얻어 그 일을 맡기는 것이야 벼슬의 높낮이에 관계될 것이 아니겠지만, 조정의 거조란 지위가 높지 아니하면 위엄이 서지 못하는 것이다. 관방에 대해서는 우선 제쳐두고라도 나의 행궁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임무를 어찌 3품의 고을 원에게 맡겨둘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모든 일은 옛날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남한 산성은 단지 방위하는 성의 역할만이 있을 뿐인데도 대신이 사(使)가 되고 유수는 문반의 경재(卿宰)로만 오로지 차임하면서도 방위의 일을 위해서는 무장(武將)이 남한 산성에 통의(通擬)되었다. 그런데 더구나 이 곳 이 수원부의 소중함이겠는가.

지금부터는 수원 부사를 유수로 승격시키어 장용 외사(壯勇外使)와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하게 하고 오직 대신이나 무장으로 특지를 받아 〈유수에 임명하고〉 또 판관(判官)을 두어 보좌하게 하라. 장용영을 설치한 지는 여러 해가 되었으나 장용영 장수의 칭호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은 외사(外使)가 나오기를 기다린 때문이다. 장용영 병방(壯勇營兵房)을 장용사(壯勇使)라 하고 장용영의 문서들에는 대장이라고 호칭하기를 마치 어영사(御營使)를 어영 대장이라 호칭하는 것처럼 하며, 도제거(都提舉)를 두어 그 법식을 갖추되 역시 경리영(經理營)의 도제거를 삼공이 예겸하는 것처럼 하고 호위 대장의 관칭을 합해서 그를 소속시키라. 그리고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의 군수 물자와 군사들의 식량을 마련하고 조처하는 것에는 모두 경비에 의존하지 않게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재용을 저축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 까닭이다.

나는 자나깨나 한 마음이 선대를 사모하는 데에 있다. 백성을 보호하는 것도 비록 길은 다른 것 같으나 거기에 쓰여지는 마음은 마찬가지로다. 이 백성은 곧 선왕의 백성이다. 그러니 지금 이 백성들을 감싸 보호하려면 의당 먼저 폐단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큰 폐단은 군영(軍營)이 많은 것을 덜을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설날 조참(朝參) 때에 네 가지 항목을 들어 하유하였는데, 네 가지 항목 중에서 군(軍)과 민(民)이 그 두 자리를 차지하였고 그 말을 한 것은 앞으로 행하고자 함에서였다. 선왕이 드나드셨던 문에 임하고 선왕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능히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비록 부덕하지만 욕스럽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으로 하여금 이 전교를 길이 새겨 보고 은미한 뜻을 자세히 헤아려서, 내가 이 일을 경영하여 우리 후인들을 계도해서 우리 국운이 억만년토록 영원하기를 비는 본의를 알게 하라.”

○改號水原府爲華城，御筆揭額于壯南軒。陞府使爲留守，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置判官一員佐之。改壯勇營兵房爲壯勇使，置都提舉，以扈衛大將合廳屬之。教曰：“御極以後，峙藏儲用，爲所重也。幸荷皇天祖宗之默佑，而龍盤虎踞之宅兆，永奠千億萬年無疆大曆數，是地之所重，實與周之豐·漢之沛，竝盛而齊隆。惟其拱護之方，愈勤而愈密，使體貌尊嚴，制度肅度，卽予小子情文之所當然，譬若宗廟之禮，先言百官之美，其有關於所重者，如是矣。是地水原府，自卜園寢，關防增重。美哉！天作之襟帶，長奉月出之衣冠。預建行宮，先寓瞻依之思，摸揭圖像，用替定省之誠，而孺慕結轡，迷不知節。每歲三百日，無日不屈指而企企者，實在於禮行一日，而既展省將還駕，駕住府界峴上，瞻望躊躇，不自覺其吾行之遲遲，輒召(至) [致] 守臣於前，申之以恪謹拱護之義。顧其職則一邑倅也，問其品則三品窠也。得其人任其職，固不係於爵位，而朝廷舉措，不重則不威。關防，姑置之，爲予整理行宮諸務之任，豈可委諸三品邑倅也？然凡事莫若述古。南城，只管保障，而大臣爲使，居留專差文宰，而爲保障，則武臣通擬於南城，況是地是府之所重乎！自今水原府使，陞爲留守，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惟大臣·武將須特旨，又置判官以佐之。壯勇之設營有年，將臣之稱號未定者，以待外使之出也。壯勇營兵房，爲壯勇使，而營中文牒，以大將稱之，如御營使之稱御營大將，置都提舉，備其式，亦如經理營都提舉之三公例兼，而扈衛大將合廳屬之。若內外營軍需·兵食辦備措處，皆不藉於經費。此所以爲所重峙藏儲用者也。予之寤寐一心，在於慕先，而保民雖似殊岐，其用一致。斯民也，先王之民也。今欲懷保小民，宜先蘇弊，弊之大者，莫過於軍營之多。是以，予於初元朝參也，舉諭四目，四目之中，惟軍與民居其二。言之將欲行之，臨先王所御之門，踐先王所御之位，而徒言而不能副其言，予雖否德，汗不爲此。使中外熟看此教，諦究微旨，知予經之營之，啓佑我後人祈永萬億年之本意。”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 1월 12일(병오)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부 유수를 정경 이상에서, 판관은 5품 음관으로 차임하게 하다

명하여 수원부 유수를 정경 이상으로 의망해 차임하고, 판관은 5품 음관(蔭官)으로 의망해 차임하되, 유수는 기백(畿伯)이 예겸하고, 장용영 도제거는 현재 호위 대장을 겸대한 대신 한 사람만을 추천해 올리는 것을 법으로 정하게 하였다.

○命水原府留守，以正卿以上差擬，判官以五品蔭官差擬，畿伯例兼留守，壯勇營都提舉，以時帶扈衛大將之大臣，單付著爲式。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2일(병오) 4번째기사>

### 정치/행정

특별히 채제공을 수원유수에 제수하다

특별히 판중추부사 채제공을 수원부 유수로, 전 수원 부사 이경무(李敬懋)를 형조 판서로 삼았다.(…)

○特拜判中樞府事蔡濟恭爲水原府留守，以前水原府使李敬懋爲刑曹判書.(…)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2일(병오) 5번째기사>

정치/행정

화성부 유생을 시험보매 윤지승에게 급제를 내리다

화성부 고을의 유생들을 직접 시험보여 우등한 윤지승(尹持昇)에게 급제를 내리고, 무사들은 우수와 훈련 대장과 어영 대장에게 시취하도록 명하여 김진희(金鎭禧) 등 2명에게 급제를 내렸다.

○臨試華城府邑底儒生，賜優等尹持昇及第，武士則命留守及訓御兩將試取，賜金鎭禧等二人及第.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 1월 13일(정미) 2번째기사>

정치/행정

비변사에서 안산군을 합병하여 수원에 이속할 것을 건의하여 그대로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의 지역이 광활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영읍(營邑)을 설치한 뒤로 모든 조치가 전과 크게 달라졌으니, 근방의 소속된 고을들을 합병시켜 보충시키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군(安山郡)을 합병하여 수원에 이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備邊司啓言：“水原幅員，非不廣闊，而營邑設施之後，凡百措置，與前大異，傍近屬邑，宜有合併添補之道. 請以安山郡合併，移屬於水原.” 從之.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3일(정미) 4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부에 승보시를 보게 하다

수원부에 명하여 승보시(陞補試)를 보이되 온 고을을 통틀어 응시하도록 허락하고, 강경(講經)은 송도(松都)의 예에 따라 제술(製述)에 때넘기며, 무장이 유수가 되었을 때에는 시험을 치르지 말고 문반(文班)의 유수 때를 기다려서 합설(合設)할 것이며, 만일 대비과(大比科) 보일 때를 당하면 별도로 품지하도록 하였다. 유수 채제공의 품지를 인해서 이 명이 내려진 것이다.

○命水原府陞補，通一邑許赴. 講經則依松都例，移付製述，武將爲留守時，勿爲試取，待文留守合設，若值大比之期，別爲稟旨. 因留守蔡濟恭稟旨有是命.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3월 10일(계묘) 2번째기사>

정치/행정

영의정 채제공에게 화성부에서의 임무 수행을 치하하고 곧 올라올 것을 하유하다

영의정 채제공에게 하유하였다. “금구(金甌)에 점쳐진 사람은 모두 3백 3인이었으나 영의정에 오른 사람은 경까지 합해서 대략 1백여 인이다. 대체로 재상이란 막중한 직임인데, 그중에도 영의정은 더욱 막중하다. 그 적임자를 중난하게 여겨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한 때가 있음은 예전부터 이미 그러했었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은 인재 얻기 어려움이 예전보다 갑절이나 더한데 내가 어떻게 자세히 살피고 또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경에게 뜻을 기울여온 지 여러 해이다. 그러면서도 화성(華城)은 바로 선침(仙寢)을 받들어 모신 지방이며 부(府)로 승격된 초기이기에 원로를 얻어 그의 성망(聲望)을 빌어 그 곳을 격상시키려는 생각에서 부득불 번거롭게 경을 한번 내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경이 직임을 맡은 이

후로 큰 강령을 정돈하고 곁으로 자잘한 일들에까지도 밤낮으로 힘을 다하니, 도리어 경을 위해 염려스러운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러던 차에 경이 올린 축성 방략(築城方略)을 보니 늙은 재상의 정신을 쓴 것이 더욱 마음에 감동되었다. 백리를 갈 때에는 90리가 반이라고 말하지 않던가. 이것은 바로 시작이 반이라는 것이다. 이미 이같이 경영하여 시작하였으니, 이루어내는 공은 오직 감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 어찌 몸으로 노력하는 일까지 거둬 수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경에게 영의정을 제수하고 이에 사관을 보내어 속히 돌아오기를 권면하노니 경은 모름지기 당일로 길을 나서도록 하라.”

○諭領議政蔡濟恭曰：“枚卜於金甌，凡三百有三人，躋上相者，并計卿約爲百餘。大抵輔相，重任也，而上相爲尤重焉。難其人，不備其位，自古在昔已然矣。矧今才難有倍於古昔，予安得不審且愼也？予於卿注意者有年，而華城，卽仙寢所奉地方也。陞府之初，思得元老借重，不得不煩卿一出。卿自受任以來，整(賴)〔頓〕宏綱，傍及細務，孜孜日夜，還切爲之念念。際見卿所上築城方略，益感老相之費精。莫曰行百里者半九十里。此正始之者，半也。既如是經始，則成之之功，惟在幹董之勤慢，又豈必重勞於筋力間事也？授卿以上相之任，茲遣簪筆之臣，勉以遄歸，卿須卽日登途。”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 5월 25일(병진)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이명식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이명식(李命植)을 수원부 유수로 삼고, 이어서 명하여 죽은 중신 조관빈(趙觀彬)이 보국 대부(輔國大夫)에 지중추로 강화 유수에 제배된 뒤에도 지중추의 직함을 그대로 지냈던 전례에 따라 지중추의 직함을 겸대하게 하였는데, 이는 병조의 계청을 따른 것이다. 명식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이 김복인(金復仁)의 상소로부터 탄핵을 받았는데, 그 말이 지극히 패러극고 참혹하였으니 신하된 자로서 이런 말을 한 마디라도 듣고서야 어떻게 하루인들 세상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 그런데 이번의 새로 내린 벼슬은 주구(珠丘)를 가까이서 모시고 행궁을 보호해야 하니 사체와 도리에 있어 어찌 혹시라도 머뭇거리며 사퇴하려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구구한 신의 의리로서는 옛날에 가졌던 생각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체직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 부(府)의 이 직임을 나는 마치 고굉(股肱)이나 주액(肘腋)처럼 여기고 있다. 경은 다섯 도(道)의 관찰사를 지냈고 세 번 관방(關防)을 맡아서 공적이 함께 벼슬하는 사람들 중에 성대히 드러났었다. 내가 경에게 이 부의 직임을 임명한 데에는 또한 깊이 생각한 것이 있었다. 설사 경에게 머뭇거릴 의리는 있다 할 지라도 가서 일하는 것만은 사양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곳 화성에 유수를 둔 데에서는 모름지기 그 제정하여 둔 뜻을 보아야 할 것이니, 그것은 바로 선침을 수호하기 위해서이고 행궁을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경도 초봄의 행행 때에 내린 윤음(綸音)을 보았을 것이다. 이 부의 이 직임이 어찌 혹시라도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헤아릴 수 있는 자리이겠는가. 경은 바로 일어나 사은 숙배하라.” 하였다.

○以李命植爲水原府留守，仍命用故重臣趙觀彬，以輔國知中樞，除拜江華留守，仍帶樞銜之例兼。帶樞銜，從兵曹啓請也。命植上疏曰：臣之所被金復仁之疏，其言至悖至僭，爲人臣子，聞此一字，何可一日自立於世，(...)今此新除，依近珠丘，拱護行宮，事體道理，豈或復爲逡巡辭避之圖，而區區私義，株守難改。伏望亟賜遞罷。批曰：“是府是任，予之視之，如視股肱，如視肘腋。卿是五道建節，三掌關防，而績庸茂著於同朝之人也。予所取卿於是府是任，蓋亦深量

者存. 藉令卿有逡巡之義, 往役不可辭巽. 矧茲華城居留, 須看制置之意, 爲守護仙寢也, 爲整蠲行宮也. 卿亦必見春初幸行時綸音. 是府是任, 寧或有商量計度於可出不可出耶? 卿其卽起肅謝.”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5월 25일(병진) 4번째기사>

## 정치/행정

### 하직 인사를 한 수원 유수 이명식을 불러 보다

수원 유수 이명식을 불러 보았다. 하직 인사를 드린 때문이었다.

○丁巳/召見水原留守李命植. 辭陞也.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5월 26일(정사)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영의정 채제공이 사도 세자 일을 거론하며 상소하자 되돌려 보내다

(…) 제공이 상이 즉위하던 병신년에 사도 세자를 추승(推崇)하자는 논의를 제창하였다가 김수현(金壽賢)의 옥사에 말이 관련되어 거의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홍국영(洪國榮)의 비호를 힘입어 죄를 면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비로소 공의에 용납되기 어려운 것을 알고서 숨을 죽이고 감히 다시 말을 꺼내지 않았으나, 그가 흉악한 피를 가슴에 품고 국시(國是)를 뒤바꾸려는 책략은 진정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임자년 여름에 영남의 패거리들을 불러모아 만인소(萬人疏)를 꾸며내서 장차 군부를 협박 제어하는 피로 삼으려고 하였었다. 그러나 상이 연석에 임어하여 분명하게 하유해서 전형(典刑)을 밝게 보이자, 제공이 크게 두려워하여 다시 여러 대신들과 연명 상소를 올려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맹세의 말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급기야 특별 전지로 화성 유수가 되었고, 또 이어 수상으로 부름을 받자, 상의 마음을 넘보며 기세를 돋구어 목은 감정들을 일으켜서 전혀 기탄 없이 붓을 휘둘러 자기 속마음을 토로한 것이다. 상이 그의 상소문을 보고는 진노하여 사관을 보내 되돌려 주게 하고, 또 비답하기를,

“경의 상소에서 ‘구구하게 가진 생각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리 운운’ 하였다. 그런데 첫째의 일은 바로 차마 들을 수 없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말이었다. 지난 해 이달 22일의 구교(口敎)를 내릴 적에 눈물 섞인 먹물에 붓을 적시고 통곡을 삼키며 입으로 부르다가 한참 동안 숨이 막혔다가 겨우 소생했던 일을 경은 앞자리에 있으면서 목격했었다. 대저 그때 한번 하유한 것은 본의를 밝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한 다음에야 천하 만세에 길이 할 말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한번도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요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인데,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 일을 오늘날 다시 제기할 수 있겠는가. 정도 그 뒤로는 감히 다시 꺼내지 않았던 것은 곧 몰랐던 것을 알고 깨닫지 못했던 바를 깨달아 나의 마음을 경의 마음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

○(…) 濟恭當丙申初載, 倡爲追崇之論, 辭連金壽賢之獄, 幾陷大辟, 賴洪國榮營護得免. 始知公議難容, 帖息不敢復言, 而其包藏凶圖, 謀幻國是, 則固未嘗一日忘也. 壬子夏, 號召嶺南徒黨, 粧出萬人疏, 將以爲脅制君父之計, 而上臨筵洞諭, 明示典刑, 則濟恭大恐, 復與諸大臣, 聯章引罪, 至發誓言. 及其以特旨, 居留華城, 既又以首相召, 則覬覦增氣, 挑發宿藏, 肆筆逞臆, 無復忌憚. 上覽疏震怒, 遣史官封還, 且賜之批曰: “卿疏曰: ‘區區秉執, 卽此兩箇義理’ 云云, 第一件, 卽不忍聞不忍言之言也. 去年是月二十二日之口敎, 和淚而泚筆, 吞聲而口呼, 結塞移時, 僅能獲蘇, 卿在前席而目覩. 大抵伊時一諭, 非欲明示本意, 如是然後, 可以永

有辭於天下萬世. 一之猶不堪爲, 而爲不忍爲而爲, 以予之頑, 其可更提於今日乎? 卿自其後, 亦不敢更提者, 以知所未知, 覺所未覺, 而以予心爲卿心也.(…)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 5월 28일(기미) 5번째기사>

#### 정치/행정

##### 영의정 채제공과 좌의정 김종수가 수원에서 만났다

차대하였다. (…)<채>제공이 그래도 계속 가슴을 치므로, 상이 이르기를, “아침 연석에서 좌상의 말에 ‘그러한 처지에서 염치를 무릅쓰고 벼슬길에 나온 자에게는 징계와 토죄를 시급하게 해야 한다.’ 고 하였다. 허다하게 늘어놓은 말들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으나, 올 봄에 좌상이 경과 수원에서 서로 만났을 때, 지난 겨울 선비들이 상소한 일을 가지고 경에게 질문하자, 경이 대답하기를 ‘지난 겨울 합계한 내용 중에 글귀 하나를 지워 없앤 것이 참으로 원통하였다. 그래서 수차(袖筭)의 일이 있었던 것이니 그것은 과연 밭뺨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다.’ 고 했다가에 나는 듣고서 놀라움을 감당하지 못했다. 어떻게 대관이 대관을 대해서 선뜻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과연 좌상과 이러한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인가?” (…)

○辛酉/次對. (…)許多臚列之辭, 不可殫記, 而今春左相與卿, 相對於水原也, 以昨冬搢紳疏事, 質問於卿, 則卿答曰: ‘昨冬合啓中一句抹下者, 實爲冤痛, 故袖筭之舉, 果出拔足之計’云, 聞來不勝駭然. 焉有大官對大官, 輒爲此等之言乎? 以此果酬酢於左相乎?’ (…)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5월 30일(신유)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 유수 이명식이 공도회의 개정을 청하니 윤허하다

수원 유수 이명식(李命植)이 아뢰기를, “본부[수원부]의 공도회(公都會)는 아직 정해진 제도가 없으므로 온 경내(境內) 사람들에게 모두 응시하도록 허락하고 나면 먼 데 사람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오가야 하는 점이 염려됩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봄날의 온화한 때나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일 때에 연일 삼장(三場)을 열어 초택(初擇)을 하고 다시 날을 가려 복시(覆試)를 보여서 뽑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과장에는 혼자서 고시관이 될 수 없다는 규례가 있으니 의당 본부의 판관을 대독관으로 삼아야겠으나, 음관을 참시관(參試官)으로 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 과거 시험 날짜가 정해진 뒤에 경기 감영에 공문을 띄워 문반 출신의 수령이나 혹은 찰방 중에서 뽑아 보내어 함께 시험보이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辛巳/水原留守李命植啓言: “本府公都會, 尙未有定制. 一境之人, 旣許盡赴, 則遠面之裹糧往來可念. 臣意以春之溫和, 秋之涼生時, 連日設三場. 初擇, 更爲涓日, 覆試試取似宜. 有科場無獨爲考試之例, 當以本府判官, 爲對讀, 而蔭官參試, 事係稀有. 請科試定日之後, 行移畿營, 以文守令或察訪中差送同試.” 允之.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6월 20일(신사)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우의정 김이소가 수원 유수 이명식이 정승의 직임에 합당하다고 하다

우의정 김이소를 불러 보았다. 상이 이르기를, “나라에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정승을 두는 일이다. 그런데 근래에 삼공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묘당의 책략이 오랫동안 비었었다.



지금 정승을 뽑으려고 하는데, 인재를 추천하는 일로 임금을 섬기는 것이 대신의 직책이니, 경은 반드시 유의해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니, 이소가 아뢰기를, “좌참찬 정민시가 자급이나 이력이 이 직임에 적합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漢) 광무제(光武帝)가 공신(功臣)으로 삼공을 삼지 않은 것은 참으로 후세에 본받을 만한 일이니, 경은 다른 사람을 말해보도록 하라.” 하니, 이소가 아뢰기를, “수원 유수 이명식의 자급과 이력과 지별과 명망이 또 이 직임에 합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수의 막중한 임무는 정승직에 비하여 못하지 않으므로 가벼이 체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대저 재상은 당연히 글을 읽은 사람으로 등용해야 한다. 지금 함경 감사가 어떻겠는가?” 하니, 이소가 아뢰기를, “경륜이나 학식이 실로 보좌의 직임에 합당합니다.” 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나의 정승을 결정하였다.” 하였다.

○癸未/召見右議政金履素. 上謂曰: “有國所重, 置相是已. 邇來鼎席不備, 廟謨久曠. 今將枚卜, 以人事君, 大臣之職, 卿必有留意者矣.” 履素曰: “左參贊鄭民始, 資歷可合是任.” 上曰: “漢光武之不用功臣爲三公, 眞後世可法之事. 卿須更陳.” 履素曰: “水原留守李命植, 資歷地望, 亦合此任.” 上曰: “居留重任, 無減相職, 有難輕遞矣. 大抵宰相, 須用讀書人. 北伯如何?” 履素曰: “經術學識, 實合輔佐之任.” 上曰: “吾之相定矣.”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6월 22일(계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도호부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유형원에게 이조 참판 성균관 채주를 더 증직하다**

증 집의 유형원(柳馨遠)에게 이조 참판 성균관 채주를 더 증직하였다. 전교하기를, “고 처사 증 집의 겸 진선 유형원은 그가 지은 『반계수록보유(礪溪隨錄補遺)』에서 말하기를 ‘수원 도호부(水原都護府)는 광주(廣州)의 아래 지역인 일용면(一用面) 등지를 떼어 보태고 읍치(邑治)를 평야로 옮기면 내를 끼고 지세를 따라 읍성(邑城)을 쌓을 수 있다.’ 하고, ‘읍치의 규모와 평야가 매우 훌륭하여 참으로 큰 번진(藩鎭)의 기상이 있는 지역으로서 안팎으로 만호(萬戶)를 수용할 수 있다.’ 고 거듭 주장하였다. 또 말하기를 ‘성을 쌓는 부역은 향군(鄉軍)이 번을 드는 대신으로 내는 재물로 충당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대체로 그 사람은 실용성있는 학문으로 국가의 경제에 관한 글을 저술하였으니, 기특하다. 그가 **수원**의 지형을 논하면서는 읍치를 옮기는 데 대한 계획과 성을 쌓는 데 대한 방략을 백년 전 사람으로서 오늘날의 일을 환히 알았고, 면(面)을 합치고 번을 드는 대신으로 돈을 내게 하는 등의 세세한 절목에 있어서도 모두 마치 병부(兵符)를 맞추듯이 착착 들어맞았다. 그의 글을 직접 읽고 그의 말을 직접 썼더라도 대단한 감회가 있다고 할 터인데, 그의 글을 보지 못했는데도 본 것과 같고 그의 말을 듣지 못했는데도 이미 쓰고 있으니, 나에게 있어서는 아침저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전에 그의 후손에 의해서 그에게 추은(推恩)할 적에 호조 참판을 관례대로 증직하려고 하자, 상신(相臣)이 ‘관례로 주는 직함은 도리어 특별히 증직하는 것보다 못하니 이 선비에 게는 시행할 수 없다.’ 고 극력 주장하여 말했었다. 그런데 더구나 그에 대한 감회가 일어난 이때에 어떻게 임금이 내리는 은전을 빠뜨릴 수 있겠는가. 성균관 채주의 직을 가증하고, 그의 사손(嗣孫)을 해조로 하여금 방문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己巳/加贈贈執義柳馨遠吏曹參判成均館祭酒. 教曰: “故處士贈執義兼進善柳馨遠, 其所撰『礪溪隨錄補遺』曰: ‘水原都護府, 以廣州下道之一用等面, 移治於坪野, 臨川因勢, 邑城可築.’ 申之以邑治規模, 坪野大勝, 眞是大藩鎭氣像, 地內外可容萬戶. 又言: ‘築城力役, 當

藉鄉軍停番之需.’ 蓋其人有用之學，著之爲經濟文字，奇哉！其論水原形便也，移治之謨，築城之略，身在百年之前，燭照今日之事，與合面，停番等節目細務，亦皆鑿鑿如符契。見其書，用其言，尙謂之曠感，其書不見而如見，其言未聞而已用，在予可謂朝暮遇。記昔其家後承之推恩也，例贈戶曹佐貳，相臣力言其例贈之銜，反遜於特贈，不可施於此儒。況今興思，豈闕揭厲之典？加贈成均館祭酒，其嗣孫，令該曹訪問以聞。”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12월 10일(기사)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관을 파견하여 수원의 유생에게 제술 시험을 보이다

사관을 파견하여 수원의 유생들에게 제술 시험을 보이고 그들의 시권을 직접 고사하여 수석을 차지한 진사 허간(許謙)을 곧장 전시에 응시하게 하였다.

○遣史官，試取水原儒生製述，親考券。居首進士許謙，直赴殿試。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12월 26일(을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부의 문과에 응시한 81세의 이석조에게 수직하도록 명하다

수원부에서 문과에 곧장 응시하게 된 이석조(李奭祚)는 나이가 81세이므로 당연히 수직(壽職)으로 통정 대부가 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합격자를 발표하기를 기다려서 결재를 받으라고 명하였다.

○水原府文科直赴李奭祚，年八十一。當爲壽職通政，命待唱名下批。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6일(갑오) 4번째기사>

#### 정치/행정

훈련 대장 조심태를 수원부 유수로 삼다

훈련 대장 조심태(趙心泰)를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以訓練大將趙心泰爲水原府留守。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2월 26일(갑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유수 조심태가 수원부의 공도회 시행에 관해 논의하다

수원부 유수 조심태(趙心泰)가 공도회(公都會)를 시행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품지하여 분부해 주기를 청하니, 예조에 명하여 일찍이 유수를 지낸 적이 있는 자에게 물어서 아뢰게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유수를 지낸 적이 있는 자들에게 물으니,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은 ‘무장을 유수로 삼을 경우에는 서울에서 유신 가운데에서 문명(文名)이 있는 자를 파견하여 시취(試取)해야 한다.’ 하였고, 판중추부사 이명식(李命植)은 ‘별도로 서울에서 파견하는 사관을 정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전에 유수를 지낸 정승 가운데 일찍이 규장각의 직책을 거친 자는 영부사이다. 규장각에 명하여 패초하도록 한 뒤 제목을 내어 내려보내도록 하고, 인하여 현임 유수에게 명하여 사흘로 나누어서 시취(試取)한 뒤에 시권을 규장각에 올려 보내게 하고 규장각에서는 미품(微稟)한 뒤에 전언하여 그로 하여금 들어와서 시험지를 조사하게 하라. 시

협에 참가하는 대독관(對讀官)은 초계 문신 가운데에서 승시례(陞試例)에 의하여 시관으로 하여금 두 사람을 정하게 하라.

이 뒤로 유수가 이번과 같은 경우에 있을 때에는 현임 및 원임 규장각 관원과 문임(文任) 가운데에서 예조로 하여금 품지하여 초기해서 한 사람을 차출하여 이번의 예대로 고시(考試)하는 일을 법식으로 정하라. 복시(覆試)에 이르러서는 본 수원부에서 과장을 베푸는 것과는 다르고 또한 경기에 본받을 만한 예가 있을 것이니, 그 사람들을 제수하여 우수한 사람들을 취하여 획수를 계산하여 방을 내도록 하라.” 하였다.

○水原府留守趙心泰以公都會設行事，請令該曹，稟旨分付，命禮曹問于曾經留守以稟。禮曹啓曰：“問于曾經留守，則領中樞府事蔡濟恭以：‘武將爲留守，則自京差遣儒臣中有文名者，試取爲使。’云，判中樞府事李命植以爲：‘別定京試官。’爲言。”教曰：“前留相中曾經閣職者，領府也。令內閣牌招，出題下送，仍令時留守，分三日試取後，試券上送于內閣，內閣微稟後言送，使之入來考券。參試之對讀官，則時任抄啓文臣中，依陞試例，令試官劃出二人。此後留守如今番時，則時原任閣臣及文任中，令禮曹稟旨草記，差出一人，依今番例考試事定式。至於覆試，則異於本府設場，亦有畿甸可做之例除之，取其優等，計劃出榜。”

<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 9월 15일(기해) 3번째기사>

#### 정치/행정

**화성의 연회에서 반열에 참여시킬 자를 규정하여 명하다**

화성부의 연회에 배석할 노인들 가운데 실직(實職)의 경력이 있고 군직(軍職)에 부쳐진 사람과, 행차를 수행하는 대신과 제신(諸臣) 가운데 나이가 70, 80세 및 61세가 된 사람들을 모두 반열에 참여시키라고 명하였다.

○命華城府陪宴老人之曾經實職人付軍銜，隨駕大臣諸臣中，七十八十歲及六十一歲人，並令參班。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2월 12일(갑자)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용인·안산·진위 등 3읍을 화성의 속읍으로 삼다**

용인(龍仁)·안산(安山)·진위(振威) 등 3읍을 화성(華城)의 속읍(屬邑)으로 삼았다. 총리사(摠理使)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본부(本府)는 평소 경기 지방 중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만, 모든 것이 초창기일 뿐더러 당초부터 성원을 받을 만한 의지처가 없어 요새지로 삼는 측면에서 논하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부와 경계를 나란히 하여 땅을 맞대고 있는 곳으로는 바로 용인과 안산이 있고 진위 역시 40리(里)의 거리 안에 있으니 이를 속읍으로 삼아 성을 지키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체(事體)로 보아도 원만해지고 절제(節制)하는 면에서도 편해질텐데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장차 남한산성(南漢山城)과 서로 구원하는 형세를 이루고 서로 도우며 의지하는 관계를 맺게 한다면 엄연히 억만 년토록 무너지지 않을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니 그 계획이 어찌 대단찮은 것이겠습니까. 군제(軍制)를 짐작해서 절충하는 일같은 것은 삼가 성명(成命)을 기다렸다가 차례로 절목(節目)을 만든 뒤 거행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토록 하라. 경이 묘당의 신하들과 함께 절목을 만들고 별단(別單)을 갖추어서 논리적으로 초기(草記)하도록 하라.” 하였다.

○以龍仁·安山·振威三邑爲華城屬邑。總理使蔡濟恭啓言：“本府素稱畿輔重地，而創置屬耳。初無聲援之可恃，論以關防，極爲踈虞。本府之比境接壤者，卽龍仁·安山而振威亦在四十里之內。作爲屬邑，以成守城之規，則事面之團圓，節制之便易，恐不外此，而將與南漢，聲勢相應，輔車相依，儼成億萬年不拔之基，其爲計也，豈淺淺乎？至若軍制之斟酌損益，謹俟成命，次第成節目舉行，恐合事宜。” 教曰：“依狀請施行。卿與廟堂之臣成節目，具別單，論理草記。”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윤2월 7일(기축)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화성의 축성공사를 감독한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다

화성(華城)의 축성 공사를 감독한 신하들에게 상을 내렸다. 총리사(總理使)인 우의정 체제공(蔡濟恭)에게 호피(虎皮)를 하사하고, 감독한 신하로서 당상관인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는 가자(加資)해 주고, 도청(都廳) 이유경(李儒敬)에게는 안에서 갑주(甲冑)를 하사하고, 책응한 도청인 수원 판관(水原判官) 정동협(鄭東協)에게는 준직(準職)을 제수하고, 특별히 감독한 독성 중군(禿城中軍) 김후(金焯)는 곤수로 의망(擬望)케 하고, 부사(府使) 이방운(李邦運) 등에게 차등있게 시상하였다.

○施賞華城城役董工諸臣。總理使右議政蔡濟恭賜虎皮，監董堂上水原留守趙心泰加資，都廳李儒敬內賜甲冑，策應都廳水原判官鄭東協準職除授，別監董禿城中軍金焯閫帥差擬，府使李邦運等施賞有差。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13일(을미) 4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부 성역 총리사 체제공에게 급복과 가자, 미륵현 지지대 등의 일을 유지하다

수원부 성역(城役)을 총리(總理)한 대신 체제공(蔡濟恭)에게 유지하였다. “이번에 화성(華城) 백성들에게 햇수를 늘려 급복(給復)해 주는 것과 노인들에게 가자(加資)하는 교지를 내려주는 일에 대해서는 경이 조정에 돌아오기 전에 유수(留守)와 상의해서 즉시 효유(曉諭)하기도 하고 더러 나눠주기도 하도록 하라. 그리고 현룡원(顯隆園) 아래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성곽 안팎에 사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경이 유수와 함께 가서 전교(傳教)의 본뜻을 하나 하나 효유해 주도록 하라.

매번 현룡원을 참배하고나서 돌아오는 길에 미륵현(彌勒峴)에 당도할 때면 고삐를 멈추고 먼발치에서 바라보면서 오래도록 떠나지 못한 채 나 자신도 모르게 말에서 내려 서성이곤 하였다. 이번 행차에서 미륵현의 윗쪽에 앉은 자리를 빙 둘러 대(臺)처럼 되어 있는 곳을 보고는 지지대(遲遲臺)라고 명명하였다. 이 뒤로는 행행(幸行)하는 노정(路程)에 미륵현 아래에다 지지대라는 세 글자를 첨가해 넣도록 할 일을 본부(本府)와 정리소(整理所)에서 잘 알아서 하도록 하라.”

○諭總理大臣蔡濟恭曰：“今番華城民人，加年給復及老人加資官教，卿於還朝前，與留守相議，卽爲曉諭，或頒給，而園底城內外民人，則卿與留守眼同，以傳教本意，一一曉諭。每於省園之路，還到彌勒峴，停轡遠瞻，久而不能發，自不覺下騎彷徨。今幸見峴上環席地而臺者，命其臺曰遲遲。此後幸行路程彌勒峴之下，添入遲遲臺三字，令本府及整理所知悉。”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윤2월 16일(무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성역을 마치지 못했으므로 수원부 유수 조심태를 유임시키다

수원부 유수 조심태(趙心泰)를 유임시켰다. 영의정 홍낙성이 아뢰기를, “본부는 성역(城役)을 마치지 못했으니, 임기가 찼다 하여 유수를 체직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이에 따른 것이다.

○仍任水原府留守趙心泰. 領議政洪樂性奏言: “本府城役未完, 留守不宜瓜遞.” 從之.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3일(경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비변사가 광주부 설치에 대해 첨가해 올린 절목

비변사가 광주부(廣州府) 설치에 대하여 첨가한 절목(節目)을 올리니, 아울러 법식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절목은 다음과 같다.

“1. 본부(本府)에서 달에 따라 배정한 조항의 부아병(府牙兵)·둔아병(屯牙兵)에게서 거두는 쌀은 모두 1두(斗)에 4전(錢)씩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고, 잡비와 색락(色落) 역시 쌀을 받아들일 때에 법식을 정하여 값을 쳐서 마련해 받아들인다.

1. 본부의 각항 군관(軍官)으로 쌀 6두씩을 바치는 자가 4천 8백여 명인데 모두 감해서 3두씩으로 하고, 영장(領將)·기총장(旗總將) 등 반씩을 감한 자 이외에 각양으로 면제해 주어야 할 자들에 대해서는 그전처럼 면제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정원을 없앤 속오군(束伍軍) 1초(哨) 반 및 마병(馬兵)의 남은 숫자 가운데서 그 허오(虛伍)를 감하고 그 실제 숫자만 취하여 역시 3두씩 받는 군보(軍保)로 만들어 가지고 원래 3두씩을 납부하던 것까지 아울러 융통해서 마련한다면 지출의 부족이 6백 70석이 된다. 그런데 화성(華城)에 이송한 교리(校吏)의 요조(料條) 2백 석, 송창(松倉)에서 운반해 온 모조(耗條) 3백 20석, 원향(原餉)의 모조 1백 20석, 영고(營庫)의 모조 30석으로 마련하여 급대(給代)한다. 화성의 요조(料條)는 화성 부근 고을의 곡부(穀簿) 가운데서 옮겨다가 충급한다.

1. 본부의 군정(軍丁)을 뽑는 정사에 대해서는 다른 도, 다른 읍의 예에 의해서 지방관으로 하여금 친히 거행하게 하고, 장교(將校)를 내보내서 대신 군정을 뽑게 하는 폐단을 일체 혁파한다.

1. 본부의 환향(還餉)을 각 창고에 분급한 것이 총 3만여 석이고 창고에 유치한 것은 1만 2천 석에 불과하니, 분급하고 유치하는 법의(法意)로 보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1만 9천 석으로 정해서 분급하되 매년 연말과 초봄마다 농사의 풍흉(豐凶)과 민호의 고하(高下)를 참작해서 일체 이 숫자 안에서 형편에 맞게 분급하고, 그리 큰 흉년만 아니면 감히 경솔하게 가분(加分)을 청하는 일이 없도록 엄명하게 법식을 정한다. 금년에 받아들인 이전 환곡의 절미(折米) 3천여 석은 의당 유고(留庫)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고, 매년 첨향조(添餉條)는 다소를 막론하고 1년을 한정하여 모두 유고조(留庫條)에 소속시킨다.

1. 본부의 칙고미(勅庫米)는 새로 설치한 창고에 관계된 것이라 이것이 매년 늘어난다면 폐해를 끼칠 단서가 없지 않으니, 이미 발매한 5백 석 이외에 1천 2백 40석을 성향(城餉)에 붙이고, 그 대전(代錢) 4천 9백 60냥을 기영(畿營)으로 수송하여, 이것으로 곡식을 무역해서 곡식이 적은 곳에 유치해 놓고 규례대로 거두고 나누어 주도록 한다. 그러나 칙사를 접대할 때를 당하면 들어가는대로 이문(移文)하여 기영에서 취해 쓴다.

1. 성향(城餉)의 문제점을 비록 바로잡았다고 하더라도 분급하는 즈음에 만약 그릇된 습성을 통렬히 고치지 않으면 그 폐단은 저절로 남아 있게 된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가호마다 살살이 조사해서 규례대로 바로잡되, 혹 응당 들어가야 할 것이 누락되었거나 가호의 명의

를 빌려 부당하게 이중으로 받아간 자가 있으면 모두 『대전통편』의 호적누호허호조(戶籍漏戶虛戶條)에 따라 처벌한다. 그래서 사족(士族)인 경우는 무기한으로 정비하고, 평민은 충군시키며, 공사천(公私賤)은 섬으로 유배하는 율을 시행하되 조관(朝官)이 이를 낱낱이 열거하여 장문(狀聞)하고, 양반집 이하 토호와 간사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예에 의해 조감(照勘)한다.

1. 매년의 첨향조(添餉條) 및 전세조(田稅條)는 많고 적음이 서로 같지 않은데, 그 가운데 혼입되어 거의 구별이 없다. 지금부터는 유고조(留庫條) 아래에 별도로 수효를 기록하여 매년 전세와 첨향이 각각 몇 석씩인지를 알도록 한다.

1. 본부 각 창고의 지용(支用)을 군향(軍餉)으로 꾸어 준 것이 매년 1천 2백여 석이 되는데 속창(稔倉)에서 또 8백여 석을 꾸어 간 것이 있다. 그러니 유고조나 혹은 첨향조 중에서 몇 석을 덜어내어 꾸어 준 숫자를 보상하고 폐단이 생기는 근원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인하여 각 창고로 하여금 당년에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당년에 쓸 것을 쓰게 하여 비록 한 포(包)라도 함부로 속창의 소용으로 유용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 만부득이하게 더 써야 할 일이 있으면 장청하여 구획한다.

1. 본부에서 관서(關西)에 첨가해 주는 군량은 각기 별비조(別備條)에서 모두 매석당 4냥씩을 쳐서 경외(京外)의 교리(校吏)·원역(員役)·공시인(貢市人) 및 한산인(閑散人) 등에게 내어 주었는데, 즉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인하여 받아들일 곳조차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러니 그 연조(年條)를 상고하고 허실을 따져서 빚을 진 사람으로서 경외에 있는 자는 문이(文移)하지 말고 즉시 잡아다가 낱짜를 정해서 독촉하여 받아들일 것이다. 그 가운데 돈으로 받아들일 것은 충융청의 예에 의해서 쌀은 1석에 4냥, 콩은 1석에 2냥씩 값을 쳐서 돈으로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걷이를 기다려서 쌀과 콩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후에는 첨향조를 교리·한산인들에게 출급하는 잘못된 예를 영원히 혁파하고, 침입할 때에는 사유를 갖추어 장문(狀聞)하고 돈으로 나누어 주는 뜻으로 법식을 정하여 시행한다.”

○備邊司進廣州府設置添入節目，並令定式施行。【一，本府排朔條部牙兵·屯牙兵收米，並令以每斗四錢，代錢來納，雜費色落，亦以米捧時，定式折價，磨鍊收捧。一，本府各項軍官納糶六斗者，爲四千八百餘人，並減爲三斗，領將·旗總將減半者外，各樣應免，不許如前除減。今番罷額束伍一哨半及馬兵餘數中，減其虛伍，取其實數，亦作三斗軍保，並與原納三斗者，而通融磨鍊，則支放不足爲六百七十石零。以華城移送校吏料條二百石，松倉移轉耗條三百二十石，原餉耗條一百二十石·營庫耗條三十石，磨鍊給代。華城料條，則華城附近邑穀簿中推移充給。一，本府軍政捧庖之政，依他道·邑例，令地方官親執舉行，出送將校，替行簽定之弊，一切革罷。一，本府還餉各倉分給，統計爲三萬餘石，而留庫則不過爲一萬二千石零，分留法意，不當如是。自定以一萬九千石分給，每於歲末春初，參量年事之豐歉·民戶之高下，一切以此數之內，推移分給，若非大無之年，無敢輕請加分事，嚴明定式。今年所捧舊還折米三千餘石，自當入於留庫中，每年添餉條，毋論多少，限期年並屬留庫條。一，本府勅穀，係是新設之庫，每年滋長，不無貽弊之端。已發賣五百石外，一千二百四十石零，付之城餉，代錢四千九百六十兩輸送畿營，使之質置於穀少處，如例斂散。若當支勅時，隨所入移文，取用於畿營。一，城餉雖釐正，分給之際，若不痛革謬習，則其弊自在。自今爲始，逐戶查櫛，如例釐正，而或有當入而見漏，不當疊受而借戶冒受者，並依『大典通編』戶籍漏戶虛戶條，士族勿限年定配，平民充軍，公私賤烏配之律施行，而朝官枚舉狀聞，班戶以下土豪奸氓，自本府依例照勘。一，每年添餉條及田稅，條多寡不同，而混入其中，殆無區別。自今爲始，留庫條下，別錄數爻，俾知每年田稅添餉之爲幾許石。一，本府各庫支用之以軍餉貸下者，每年一千二百餘石，稔倉又有八百餘石貸去者。就留

庫條或添餉條中，除出幾許石，報償其貸下之數，永塞其生弊之源，仍令各庫捧當年所捧，用當年所用，雖一包母得擅自那移稔倉所用，如有萬不獲已之加用事，狀請區劃。一，本府關西添餉，各於別備條，皆以每石四兩，出給於京外校吏·員役·貢市人及閑散人等處，不即收殺，仍歸於指徵無處，考其年條，查其虛實，負債諸人，散在京外者，勿爲文移，直爲捉來，定日督捧。其中以錢收捧者，依摠廳例，米一石價四兩，黃豆一石價二兩，代錢分給，待秋成以米豆收捧。此後則添餉條出給校吏·閑散之謬例，永爲革罷，添入時具由狀聞，以錢分俵之意定式】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1월 11일(무오)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 유수 조심태가 최명주를 청백리로 추천하다

(…) 얼마 뒤에 육조의 판서 이하가 청백리를 추천하여 올렸는데, 그 인물은, (…) 고 수사 허정(許晶), 고 병사 최명주(崔命柱) **【수원 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추천하였다.】**, (…) 였다. 의정부에서는 결국 추천하지 않았다.

○(…) 已而六曹長以下，進清白吏薦。(…) **【水原留守趙心泰薦.】** (…) 議政府不果薦.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4월 18일(계사)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채제공 등 화성에 성을 쌓는 데에 공로 있는 자들에 대해 시상하다

화성(華城)에 성을 쌓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총리 대신인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대호피(大虎皮) 한 벌을 내리고,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에게 정헌 대부(正憲大夫)를 가자하였으며**, 도청(都廳) 이유경(李儒敬)에게 갑옷 한 벌을 내렸다. 아울러 작년 봄에 미리 상을 주었던 자를 제외하고, 공장들까지도 모두 차등있게 상을 내렸다.

○施華城城役賞典. 摠理大臣右議政蔡濟恭大虎皮一令, **水原留守趙心泰加正憲**, 都廳李儒敬甲冑一令. 并於昨春先施以下, 至工匠等, 並頒賞有差.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9월 10일(임자)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원향 때의 집사관은 화성의 판관 등 조관 중 차출하도록 명하다

**이제부터 원향(園享) 때의 집사관(執事官)은 화성의 판관·중군(中軍)과 영화 찰방(迎華察訪) 및 성 내외의 문·음·무(文蔭武)의 조관(朝官)으로 통틀어 차출하되**, 왕래할 때 노자를 알맞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도록 명하였다.

○命自今園享時執事官, 以華城判官·中軍·迎華察訪及城內外文蔭武朝官, 通融填差, 往來量給盤纏, 著爲式.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1월 30일(신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화성·시흥 등에 어사로 파견한 심상규 등을 만나 범법자의 처리를 명하다

**이보다 앞서 심상규(沈象奎)·여준영(呂駿永)·정만석(鄭晩錫)을 화성·광주·과천·시흥 고을의 어사로 파견하여 행차 때 연로(沿路)의 폐해를 살피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와서 북명하였다. 상이 그들을 불러 보고, 범법한 서예(胥隸)들을 해당 관사에 회부하여 법에 따라

다스리도록 명하였다.

○先是，以沈象奎·呂駿永·鄭晚錫，差華城·廣州·果川·始興邑御史，使廉察幸行時沿路弊瘼，至是復命。上，召見命犯科胥隸等，付攸司科治。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1797) 1월 30일(신미)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서유린을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조심태(趙心泰)를 어영 대장으로, 서유린(徐有隣)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서정수(徐鼎修)를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삼았다.

○以趙心泰爲御營大將，徐有隣爲水原府留守，徐鼎修爲廣州府留守。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7월 19일(병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부 유수 서유린의 말에 따라 시흥과 과천을 수원부에 예속시키다

시흥(始興)과 과천(果川)을 수원부(水原府)에 예속시켰다. 수원부 유수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수원은 안산(安山)·용인(龍仁)·진위(振威)·시흥·과천의 사이에 위치해 있으니, 사면으로 감싸 호위하는 방도로 볼 때 오직 안산·용인·진위만 소속시키고 시흥·과천을 소속시키지 않는 것은 이미 빙 둘러싸서 협수(協守)하는 뜻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총융청(摠戎廳)에 소속된 시흥·과천을 수원을 건너뛰어 남양(南陽)에 예속시키는 것도 불편한 일입니다. 시흥·과천을 수원에 소속시켜 하나는 북성 협수장(北城協守將)으로 삼고 하나는 통구 유명장(通衢遊兵將)으로 삼으소서. 그 군총(軍摠)으로 말하면, 남양은 그대로 총융청에 소속시키되, 본읍(本邑)의 속오군(東伍軍) 10초(哨)와 양천(陽川)의 속오군 1초(哨)을 합하여 11초로 만들고, 또 남양의 장초군(壯抄軍) 1초를 보충하여 과주(坡州)·장단(長湍)과 동일하게 12초를 만들며, 수어청(守禦廳)의 친아병(親牙兵)은 곧 대장이 친히 거느리고 성첩(城堞)에 배치하는 대열에 소속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니, 그러면 그 숫자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만큼 비록 5초를 감하더라도 아직 8초는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내(畿內)의 군정(軍丁)으로 5초(哨)를 더 배정하면 납미군(納米軍)이 또한 불편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장 수효를 감한 이후로 좌우부(左右部)에 소속된 아병(牙兵)이 3초이고 과하(把下)가 20여 명인데, 이들은 5영(五營)의 호위군에 입속(入屬)된 자들이어서 형세상 대오(隊伍)를 비워두기가 어려우니, 삼전도진(三田渡鎭)의 군관(軍官) 2백 50인과 진(鎭)의 아병(牙兵) 2초 중 성첩(城堞)의 배치 군사로 포함되지 않고 신미(身米)만 납입하는 자들을 아병(牙兵)과 과하군(把下軍)으로 나누어 만들어서 좌우부에 소속시키고 미곡 수납은 그대로 본진(本鎭)에 소속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용인과 과천의 친아병(親牙兵)을 일단 감한 상태에서 그 둔전(屯田)만을 둘 수는 없으니 둔전도 옮겨 소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각 둔전에서 수납하는 각 곡식과 8초 아병(牙兵)에게서 수납하는 미곡은, 모두 수어청(守禦廳)에서 매년 본영(本營)에 옮겨 납입하는 돈 중에 이 수량만큼 떼주어 미곡을 돈으로 바꾸는 조목에 의거하여 본영에 납입하게 하면, 대신 지급하는 불편한 사단이 별로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총융청에 소속된 안산·시흥의 장초군(壯抄軍) 2초를 옮겨와 세 영장(營將)의 각색(各色) 표하군(標下軍)이나 치중군(輜重軍)의 임무를 대신하고 있는 자들의 숫자도 일정치 않은데, 경영문(京營門)의 예에 의하여 적당히 조절하면 2백 54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인



원을 옮겨 장초(壯抄) 2초를 만들고 그대로 미곡 3두씩을 거두게 한다면 대신 지급하는 일을 없앨 수 있습니다.

좌부(左部) 장초(壯抄) 13초 중에 1초는 남양(南陽)으로 옮겨 붙이고 2초는 수원으로 옮겨 붙이되, 3영(營)의 표하(標下)에서 덜어내는 것이 2초가 되어야 한다면 좌부가 우부(右部)에 비해 1초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일 각 초 중에서 혹 약간 수효를 줄이거나 혹 군수보(軍需保) 중에서 옮겨 기록하여 13초를 갖추게 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이를 수어청과 총융청 두 영(營)에 분부토록 하소서.

수원이 전에는 용인 등 3개 고을의 협수군(協守軍)을 소속시켜 12초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시흥·과천의 속오군(束伍軍) 5초와 안산·시흥의 장초(壯抄) 2초와 용인 등 3개 고을의 수어청 아병(牙兵) 8초를 소속시켜 함께 27초가 되니, 이는 1영(營) 5사(司)의 군영(軍營)이 되기에 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영(外營)에서 단속하고 마련하여 제도를 정해서 시행토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또 아뢰기를,

“시흥과 과천을 일단 외영(外營)으로 옮겨 소속시킨 이상, 총융청에 있는 병부(兵符)의 왼쪽 패를 정원으로 하여금 거두어들이 외영에 내려주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庚寅/以始興·果川隸水原府。水原府留守徐有隣啓言：“水原處在安山·龍仁·振威·始興·果川之間，則其在四面拱護之道，只屬安山·龍仁·振威，而不屬始興·果川，已非環繞協守之意。摠戎廳屬始興·果川，越水原而隸於南陽，亦涉不便。請以始興·果川，屬之水原，一作北城協守將，一作通衢遊兵將。若其軍摠則南陽仍屬摠廳，而本邑束伍十哨，陽川束伍一哨，合爲十一哨，又以南陽壯抄一哨充補，與坡州·長湍，同爲十二哨，守禦廳親牙兵，卽大將親率，而不爲入屬於城堞排立之列，則多寡別無定數，雖減五哨，尙餘八哨。且見今畿內軍丁，加定五哨，納米軍亦必難便。直爲減數以來，左右部所屬牙兵三哨，把下二十餘名，此則入於五營之衛者，勢難闕伍，以三田渡鎮軍官二百五十人，鎮牙兵二哨之不入於城堞排立，而只納身米者中，分作牙兵把下軍，屬之左右部，收米，則仍屬本鎮。龍仁·果川，親牙兵既已減來，則不可獨置其屯，屯田亦爲移屬。而各屯所收各穀，八哨牙兵收米，並以守禦廳每年移納本營錢中，依此數割給，米穀作錢條，使之來納本營，則別無給代難便之端。摠廳屬安山·始興壯抄二哨移來之代，三營將各色標下輜重軍，多寡不一，依京營門例，量宜存減，則可得二百五十四名。以此移作壯抄二哨，而仍令收米三斗，則可無給代之事。左部壯抄十三哨中，一哨移付南陽，二哨移付水原，而三營標下之除出者，當爲二哨，則左部比右部減一哨。若就各哨中或若干減數，或軍需保中移錄，以備十三哨似好。以此分付守摠兩營。水原前屬龍仁等三邑協守軍，爲十二哨，今屬始興·果川束伍五哨，安山·始興壯抄二哨，龍仁等三邑守廳牙兵八哨，合二十七哨，足爲一營五司之軍。此則請自外營，團束磨鍊，定制施行。”從之。又啓言：“始興·果川，既已移屬外營，摠廳所在兵符左隻，請令政院收取，頒下外營。”從之。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9월 24일(경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서유린의 계청에 따라 수원 판관이 관성장을 예겸토록 하다

수원 판관(水原判官)이 관성장(管城將)을 예겸(例兼)토록 하였는데, 유수 서유린(徐有隣)의 계청을 따른 것이었다.

○丙戌/命水原判官，例兼管城將，從留守徐有隣啓請也。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11월 21일(병술) 1번째기사>

정치/행정

화성부의 무과 출신자를 본부에 유방하도록 하다

명하여 화성부(華城府)의 무과 출신으로서 타지에 부방(赴防)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도(沁都)의 예에 의거하여 본부에서 유방(留防)하도록 하였다.

○己巳/命華城府武科出身赴防者，依沁都例，本府留防。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1798) 5월 6일(기사) 1번째기사>

정치/행정

화성부를 외영으로 승격시키고 인근 다섯 고을의 군정(軍丁)을 소속시키도록 하다

경모궁(景慕宮)을 참배하고 재실(齋室)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장용 대장(壯勇大將)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화성부(華城府)를 외영(外營)으로 승격시킨 뒤에 군제(軍制)에 있어 아직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사초(司哨)에 있어서도 끝내 일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올 봄 원(園)에 행행(幸行)하셨을 때 묘당에서 의논하여 속읍(屬邑)을 배정함으로써 관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만, 만약 과천(果川)·시흥(始興)·용인(龍仁)·안산(安山)·진위(振威)의 다섯 고을을 두 외영에 소속되게만 해 준다면 그런 이름을 빌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섯 고을에 있는 군정(軍丁)들은 서울의 각영(各營)이나 각사(各司)에 소속된 자들을 막론하고 일체 외영에 떼어 준 다음에야 절제(節制)할 방도가 생기고 호령도 전일하게 되어 쓸모있는 군사로 예비해 둘 수가 있을 것인데, 더구나 지금 한창 군정을 뽑고 있으니 떼어서 소속시켜 주는 일을 더더욱 조금이라도 완만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 고을에 있는 군정 가운데 가령 훈국(訓局)의 포보(砲保)나 향보(餉保)는 그 비중이 남다르고 또 잔약한 관아나 그 밖의 모처(某處) 역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외사(外使)로 하여금 훈국 및 각 해사(該司)를 왕복하면서 편한 쪽으로 대체해 주도록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甲子/展拜景慕宮，次對于齋室。壯勇大將趙心泰啓言：“華城府陞爲外營之後，軍制尙未就緒，司哨終無定規，故今春園幸時，自廟堂議定屬邑，俾得以管轄，而果川·始興·龍仁·安山·振威五邑，並屬之外營，則不必借其名矣。五邑所在軍丁，無論京各營京各司，一切劃付，然後節制有方，號令專一，可備有用之軍，而況今簽丁方張，其所劃屬，尤不容少緩。五邑所在軍丁中，如訓局砲保餉保，所重自別，且殘司若而處，亦屬軫念，使外使往復訓局及各該司，從便給代，恐合事宜。”從之。

<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1798) 9월 4일(갑자) 1번째기사>

정치/행정

충청도 어사 신현에게 상으로 상현궁 한 장을 지급하다

전교하였다. “화성(華城)의 여러가지 폐단에 대해서 과감히 말하여 매우 근실하니, 그는 어사로서의 체모를 깊이 터득하였다. 이 사람은 초계 문신으로 있을 때부터 나의 본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사의 임무를 받들고 외방에 나가서 먼저 화성의 폐막부터 숨김없이 모두 논하였으니, 어찌 매우 가상히 여길 일이 아니겠는가.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의리를 분명하게 알아서 영읍(營邑)의 폐단을 말하려는 자들이 반드시 화성을 말하게 된다면, 화성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즐거움과 이로움이 있게 되어 장차 녀

넉히 먹고 즐겁게 사는 풍속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어사에게 우선 상을 내려 뒷사람을 권장해야 하겠으니, 어사 신현에게 안에서 상현궁 한 장을 내려 지급하도록 하라.”

○敎曰：“能言華城諸條弊端，甚爲勤，渠深得繡衣之體。此人自在抄啓時，知予本意之所在。以是奉使出外，先自華城弊瘼，竭論不諱，豈不可嘉之甚乎？若使人人，曉得此義，欲言營邑之弊者，必言華城，則華城之民，日有樂利，將見熙皞含哺之俗。此繡衣當先施賞，以勸後人，御史申絢，內下上弦弓一張賜給。”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1799) 5월 9일(병인) 2번째기사>

정치/행정

화성의 부장들에 대한 취재 시험에 앞서 초시를 실시할 것을 명하다

화성(華城)에 딸린 고을의 부장(部將)들에 대한 취재(取才) 시험에 앞서 초시를 실시하고 임금이 직접 나가 다시 시험보이는 것에 대비할 것을 명하였다.

○乙未/命華城屬邑部將試取前期，設初試，以待親臨更試。

<정조실록 52권, 정조 23년(1799) 8월 9일(을미) 1번째기사>

정치/행정

이서구를 화성 구관 당상으로 임명하다

팔도 구관 당상(句管堂上)의 예에 따라 이서구(李書九)를 화성 구관 당상(華城句管堂上)으로 삼을 것을 명하였다.

○己巳/命依八道句管堂上例，以李書九爲華城句管堂上。

<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1800) 윤4월 17일(기사) 1번째기사>

정치/행정

임금의 당부에 따라 360여 일 간의 땅을 개간한 수원 판관 김사희 등을 포상하다

앞서 수원 유수(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에게 하유하기를,

“번갈아 돌아가는 오행(五行) 가운데 토공(土功)이 크고 팔괘의 순서를 매길 때는 감궁(坎宮)이 앞자리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주(周) 문왕(文王)이 기읍(岐邑)을 다스릴 때 토지의 형편과 특성에 따라 조세를 정하는 법을 세웠고 한나라 고제(高帝)는 관중(關中)을 안정시킨 뒤에 조세에 관한 법을 만들었는데, 조정이 화성(華城)을 보는 비중도 주나라의 기읍이나 한나라의 관중과 다를 없으니, 백성의 생활 터전을 중시하는 정사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일만 석의 물이 흐르는 도랑을 성 북쪽에 뚫고 아홉 길 높이의 보를 성 서쪽에 쌓음으로써 관개 용수가 서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 마침내는 온 경내에 미치고 다시 그 경내에서 멀리 팔도에까지 두루 미쳐간다면 그로 인한 이로움이 어찌 넓고 크지 않겠는가.

팔달문(八達門) 밖에서부터 유천(柳川) 이포(泥浦)까지 그 토지가 넓은데도 경작이 미치지 않는 것은 경기 백성들이 농사에 게을러 힘들게 노력하려 하지 않아서이지만 대체로 그 마음과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漢)나라 선비의 말에 ‘능히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그 힘을 다할 수 없고 능히 그 힘을 다하지 못하면 그 공을 이룰 수 없다.’ 고 한 것은 곧 이런 경우를 말한 것이다. 충분히 황무지를 개척할 만한 마음과 힘이 있더라도 재력이 없으면 해낼 수 없고 충분히 땅을 일구어낼 만한 재력이 있더라도 관력(官力)이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 법인데 더구나 높고 메마른 땅은 물을 끌어가기 어렵고 시골백성은 함께 모

여 농사짓는 방법에 어두운 상황이 아닌가. 밭모양이 이미 갖추어져 씨를 부리면 당장 거두어 먹을 땅이라 해도 명을 내걸어 대중에게 고하기를 ‘백성들이 마음대로 경작하여 먹게 하고 고을 관아에서 조세를 거두지 않는다.’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인심으로는 그렇더라도 용기를 내어 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현재 모래먼지만 부영게 날리고 있으니 비록 10년 동안 조세를 면제해 주도록 허락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부름에 응해 나와서 아침에 밭을 갈고 저녁이면 거두어 노적가리가 준비한 아름다운 광경이 있을 것인가. 한나라 때 조과(趙過) 등 여러 사람이 백성을 위해 농사를 장려하면서 농기구와 소를 모두 관가에서 마련해 주었고 수령으로 있는 자가 삼태기며 삽을 들고 밭두둑을 밟고 다님으로써 묵혔던 땅이 옥토가 되고 놀던 사람이 농부가 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함께 더불어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옛법을 본받지 않는다면 어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가.

오늘의 계책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둔전(營屯田)을 인부를 모집해 경작하는 법에 따라, 본부(本府)에서 재력을 들여 땅을 일구고 그 역사가 끝난 뒤에 일정한 면적의 밭을 나누어주어 관용(官用)에도 보태고 백성의 식량을 넉넉하게 해 주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하나는 곡물을 바치면 벼슬을 주는 법에 따라, 며칠갈이의 면적을 개간했는가를 보아서 당나라 때의 공명 고신(空名告身)이나 송나라 때 적공랑(迪功郎) 이하의 품계를 줬던 사례와 같이 각자의 소원대로 향품(鄕品)은 향임(鄕任)을 시키고 교리(校吏)는 빈 벼슬자리를 주되, 한달갈이 면적을 넘어 쌀 백 석을 수확할 만한 경우에는 중추부 직함이나 변방 장수 자리에 그 공로를 따져 임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묵은 땅이 날로 개간이 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수구(水口)가 크고 넓으면 백성이 요족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먼저 수구에 관한 설을 볼 때 도회지나 고을과는 관계가 없으니 풍수에 관한 책에서 찾아보면 분명하다. 만일 성 밖에 산을 만든다면 그 형편이 성 안을 내려다 보기가 쉬울 것이고 물 아래쪽에 제방을 만든다면 물길을 가로막기가 편할 것인데, 앞서의 경우는 성 주변에 초루(譙樓)를 배치하는 뜻에 어긋나고 뒤의 경우는 물이 맑고 깨끗해야 한다는 명당(明堂)의 금기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과거 명사들의 큰 계책을 참고해 보면 평양(平壤)의 성이 설치되었을 때 강 오른쪽에 길게 잇닿은 숲을 길렀고 선산(善山) 고을이 완성되었을 때도 시내 왼쪽에 역시 거대한 숲을 설치하였다. 옛말에 ‘백 가구의 마을과 열 집의 저자라도 반드시 산을 등지고 시냇물을 둘러야 한다.’ 는 것이 곧 그것이다. 우선 금년부터 나무를 심되 버드나무·뽕나무·개암나무·밤나무 등 아무 것이나 가리지 말고 많이 심어 숲을 만들어서 경관이 크게 달라지도록 하는 것이 또한 먼저 조처해야 할 일이다. 부읍(府邑)과 역마을에 집집마다 나무를 심으라고 예전에 여러 번 지시한 적도 있지만, 집안에 나무를 심지 않을 경우 구실을 징수한 것은 곧 주관(周官)에서 정한 법이다. **경은 부디 편할 대로 잘 조처하여 조정이 화성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걱정하는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말 것이며,** 개간하는 문제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널리 채집하여 조리있게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유린(有隣)이 3백 60일 갈이의 면적을 권장해 개간하였다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농업을 중시하는 정사는 개간을 장려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어찌 있겠는가. 본부(本府)는 다른 지방의 본보기가 되는데 3백 60여 일 갈이의 면적을 특별히 유지한 뒤에 개간했다는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다. 우선 그 당사자부터 포상한다는 도리로 볼 때 장려하는 조처가 없을 수 없으니 판관(判官) 김사희(金思羲)에게 내하(內下)한 녹피(鹿皮) 1령(令)을 내려주라. 관가에서 개간한 것 이외에 또 30일 갈이를 사적으로 개간한 자가 있다 하니 더

옥 가상하다. 해조로 하여금 가선(嘉善) 품계인 위장(衛將)을 임명하게 하라.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묘당으로 하여금 각도에 유시하되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서로 힘써 공을 세우게 하고 만일 그 공이 뛰어나 장려하기에 합당한 자가 있을 때는 그 실적을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壬子朔/先是, 諭水原留守徐有隣曰: “五行迭運, 土功爲大, 八卦分序, 坎宮居先. 故周文王治岐而建任土之法, 漢高帝定關而立租賦之制, 朝家之視華城, 有如周之岐, 漢之關, 則元元重本之政, 不可以少緩. 萬石之渠, 開於城北, 九仞之埭, 築於城西, 自西而南, 遂及一境, 自一境而遠, 遍至於八路, 則不言所利之利, 豈不濶乎博哉? 自八達門外, 至柳川·泥淵之間, 厥土廣斥, 耕犁不及者, 畿民懶於農, 不欲昏作, 蓋其心力, 不能及也. 漢儒之言曰: ‘不能盡其心則不能盡其力, 不能盡其力則不能成其功’ 云者, 政謂此也. 雖有心力, 足以闢荒, 而無財力則不能焉, 雖有財力足以墾土, 而無官力則不遂焉, 況高燥之地, 難於引水, 沿野之民, 昧於結耦乎? 雖以田形已具, 布種卽食之土, 揭令而號於衆曰: ‘任民耕食而縣官不收稅.’ 以今人心, 尙不欲勇前. 今者茫然風涉, 雖許以十年免稅, 有誰應募而出, 朝耕暮穫, 有如櫛(如)比之美乎? 自漢之趙過諸人爲民勸耕, 田器農牛, 皆有官備, 爲長吏者, 操畚鍤履畎畝, 而汚萊爲膏沃, 遊手爲農夫, 此所謂可與樂成者也. 事不師古, 曷云食效? 今之爲計, 有二. 一則依營屯募耕之規, 而自本府捐財起墾, 待其告功, 限田分授, 以爲補官用裕民食之資, 一則依入粟拜官之式, 墾土爲幾日耕者, 如唐之空名告身, 宋之由功以下之階, 鄉品之爲鄉任, 校吏之爲任窠, 一循其願, 而若過一朔之耕, 可以收百石者, 樞衙邊將, 計勞填差, 則庶有日關之效矣. 水口虛廣, 民不饒富, 或者云然之說, 蔽一言曰, 不經也匪彝也. 先看水口之論, 不在都邑, 求之堪輿, 而如執左契. 若造山於城外, 勢將俯瞰, 若設堰於水下, 理便橫遮, 由前而失於周遭樓櫓之(而)義, 由後而違於澄清明堂之戒. 以名碩之宏謨參之, 則平壤之城說, 而養長林於江右, 善山之治完, 而置巨藪於溪左. 古語不云乎, ‘百家之聚, 十室之市, 亦必依山帶溪者是也.’ 先從今年, 種以樹木, 無論楊柳桑柘榛栗, 廣植而成林, 俾有蔚然改觀之盛, 亦屬先務. 若府治驛村, 逐戶種樹, 前已屢飭, 而宅不毛則有征, 自是周官成憲. 卿須便宜從事, 毋負朝家爲華民夙夜憧憧之至意, 起墾一款, 博採衆見, 論理登聞.” 有隣以勸關三百六十日耕啓, 教曰: “重農之政, 豈有過於勸關? 本府爲諸路之所取則, 而三百六十餘日耕之起墾於別諭之後者, 極爲可嘉. 其在先從隗始之道, 不可無獎勸之舉, 判官金思義, 內下鹿皮一令賜給. 官耕外, 又有自墾三十日耕者, 尤爲嘉尙. 令該曹, 付嘉善衛將. 將此意令廟堂, 下諭諸道, 視此競相趨功, 如有超異之可合勸獎者, 考其實績狀聞.”

<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1800) 6월 1일(임자)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이만수를 수원부 유수로 삼다

이만수(李晩秀)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以李晩秀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 11월 27일(을사)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유수 이만수가 수원에 분봉상시를 설치하여 제수를 준비하도록 건의하다

(…) 수원 유수 이만수(李晩秀)가 말하기를, “일찍이 선조에서 원소(園所)의 제품(祭品)은 풍덕(豐德)의 제릉(齊陵)과 후릉(厚陵)의 예에 의거하여 분봉상시(分奉常寺)를 설치하고,

본부에서 거행하라는 일을 하교하셨고, 또한 태상시(太常寺)에서 글을 지어 초기(草記)하였으나, 미처 비지(批旨)를 받지 못하였었습니다. 지금은 산릉(山陵)과 영전(影殿)을 모두 본부에서 봉안(奉安)하였는데, 1년 안에 각 제향(祭享)의 제품(祭品)을 서울에서 받들고 간다면, 장마가 드는 여름이나 겨울의 언 길에서 공경함이 부족하여 편하지 못할 염려가 많습니다. 삼가 선조의 하교에 따라 본부에 분봉상시를 설치하여 원침(園寢)·산릉·영전의 제품을 똑같이 진배(進排)하게 하고, 제품·식례(式例)·공가(貢價)를 분속(分屬)하되 절목을 이루어 준행하게 하는 것이 향사(享祀)를 존중하고 유지(遺志)를 이어받는 도리에 진실로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대신들에게 순문하고 그대로 따랐다.

○(…) 水原留守李晩秀曰: “曾在先朝, 以園所祭品, 依豐德齊·厚陵例, 設置分奉常寺, 自本府舉行事下教, 亦自太常, 措辭草記, 而未及承批旨矣. 今則山陵·影殿, 皆奉於本府, 一年內, 各祭享·祭品·自京奉往, 則潦暑·氷程, 多有欠敬難便之慮. 謹遵先朝下教, 設分奉常寺於本府, 園寢·山陵·影殿祭品, 同爲進排, 祭品·式例·貢價分屬, 成節目遵行, 允合於重享祀·述遺志之道矣.” 詢大臣, 從之.

<순조실록 2권, 순조 1년 1월 6일(계미)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서정수를 수원부 유수에 제수하다

서정수(徐鼎修)를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以徐鼎修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3권, 순조 1년 5월 24일(기해) 2번째기사>

#### 정치/행정

한용귀를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이인수(李仁秀)를 총융사(摠戎使)로, 한용귀(韓用龜)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以李仁秀爲摠戎使, 韓用龜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3권, 순조 1년 9월 3일(정축) 4번째기사>

#### 정치/행정

김재찬을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 김재찬(金載瓚)을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 金載瓚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2월 17일(무오)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정대용을 수원부 유수에 제수하다

정대용(鄭大容)을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以鄭大容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3월 6일(병자) 3번째기사>

#### 정치/행정

경기 암행어사가 수원판관 등의 잘못 다스린 정상을 사계하다

경기 암행 어사 김선(金銑)이 서계(書啓)하여 (...) 수원 판관(水原判官) 임병원(林秉遠) 등의 잘못 다스린 정상을 논핵하니, 경중(輕重)을 나누어 감처(勘處)하였다. 어사(御史)는 별단(別單)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써 추고(推考)하였다.

○京畿暗行御史金銑書啓, 論(...) 水原判官林秉遠不治狀, 分輕重勘處. 御史以不納別單, 推考.  
<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6월 3일(임인) 2번째기사>

정치/행정

조윤대를 수원부 유수에 제수하다

조윤대(曹允大)를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己酉/以曹允大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12월 12일(기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이경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이경일(李敬一)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癸酉/以李敬一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6권, 순조 4년 6월 16일(계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부 유수 이경일을 우의정으로 삼다

특지(特旨)로 제수하여 의정부 우참찬 서매수(徐邁修)를 좌의정으로,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 이경일(李敬一)을 우의정으로 삼았다.

○己亥/特旨拜議政府右參贊徐邁修爲左議政, 水原府留守李敬一爲右議政.

<순조실록 6권, 순조 4년 7월 13일(기해) 1번째기사>

정치/행정

김문순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김문순(金文淳)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以金文淳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6권, 순조 4년 7월 14일(경자) 2번째기사>

정치/행정

화성부 경내의 선비·무사에게 시험을 보이고 등급을 나누어 상을 베푼다

화성부(華城府) 경내의 선비·무사에게 시험을 보이고 등급을 나누어 상을 베푼다 명하였다.

○戊子/命試華城府境內儒·武, 分等施賞.

<순조실록 6권, 순조 4년(1804) 9월 2일(무자) 1번째기사>

정치/행정

조진관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조진관(趙鎭寬)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庚子/以趙鎭寬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7권, 순조 5년 12월 21일(경자) 1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 유수 조진관이 사퇴를 청하니 윤험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진관(趙鎭寬)이 상소하여 어머니의 병을 진달하고 해직되어 돌아가 봉양하게 해 줄 것을 바라니, 우악한 비답을 내려 그대로 할 것을 허락하였다.

○水原留守趙鎭寬, 疏陳母病, 乞解符歸養, 優批許施.

<순조실록 10권, 순조 7년 2월 18일(경인) 3번째기사>

정치/행정

홍명호를 수원부 유수로 삼다

홍명호(洪明浩)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以洪明浩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10권, 순조 7년 2월 20일(임진) 4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 유수 홍명호가 체직을 청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홍명호(洪明浩)가 어장(御將)이 중군(中軍) 이문철(李文喆)을 논한 일 때문에 진소(陳疏)하여 인의(引義)하고 체직(遞職)을 바라니, 허락하였다.

○水原留守洪明浩, 以御將論中軍李文喆事, 陳疏引義乞遞, 許之.

<순조실록 10권, 순조 7년 11월 12일(기유) 3번째기사>

정치/행정

이집두를 수원유수에 제수하다

이요헌(李堯憲)을 어영 대장(御營大將)으로, 이집두(李集斗)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以李堯憲爲御營大將, 李集斗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10권, 순조 7년 11월 13일(경술) 3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이익을 수원 유수로 삼다

김이익(金履翼)을 수원부 유수로, 이시원(李始源)을 병조 판서로 삼았다.

○丁巳/以金履翼爲水原府留守, 李始源爲兵曹判書.

<순조실록 11권, 순조 8년 12월 26일(정사) 1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치인이 정후겸을 수원부사에 의의하려 할 때 홍봉한이 반대했다고 홍낙윤이 상소하다

동둔녕(同敦寧) 홍낙윤(洪樂倫)이 상소하였는데, (...) 지난 무자년에 당시의 정승 김치인(金致仁)이 정후겸을 수원 부사(水原府使)에 의의(擬議)하기 위해 신의 아비에게 문의하였



는데, 신의 아버가 말하기를, ‘그는 아직 철이 나지 않은 하나의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삼보(三輔)의 중진(重鎭)인 7천 병마(兵馬)의 책임자로 제수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극력 만류하였습니다. (…)

○丁丑/同敦寧洪樂倫疏. (…) 向在戊子, 時相金致仁, 欲以厚謙擬議水原府使, 問于臣父, 臣父曰, ‘渠是蒙駭一孺子, 何可以三輔重鎭七千兵馬之任授之乎?’ 仍力挽之. (…)

<순조실록 12권, 순조 9년 1월 17일(정축)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박윤수를 수원유수에 제수하다

김계락(金啓洛)을 형조 판서로, 박윤수(朴崙壽)를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以金啓洛爲刑曹判書, 朴崙壽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13권, 순조 10년 12월 25일(을사) 6번째기사>

#### 정치/행정

##### 김이도를 수원부 유수로 삼다

김이도(金履度)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乙卯/以金履度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15권, 순조 12년 2월 12일(을묘)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화성 문과에서 발방당한 신상록의 복과를 명하다

신상록(申相菴)의 복과(復科)를 명하였다. 신상록은 곧 정종 을묘년 윤 2월의 화성 문과(華城文科)에서 발방(拔榜)당한 사람인데, 그 아들의 상언에 따라 대신과 의논하여 회복시킨 것이었다.

○命申相菴復科, 相菴, 卽正宗乙卯閏二月華城文科拔榜人也, 因其子上言, 議大臣復之.

<순조실록 17권, 순조 13년(1813) 2월 22일(경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이익운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이익운(李益運)을 수원부 유수로, 윤서동(尹序東)을 개성부 유수로 삼았다.

○庚辰/以李益運爲水原府留守, 尹序東爲開城府留守.

<순조실록 17권, 순조 13년 3월 13일(경진)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경술년 화성 설과 때 호적이 없어서 발거된 신순의 복과를 명하다

예조에서, ‘용인(龍仁)의 생원 신순(辛淳)이 상언하여 그의 아버 신덕우(辛德羽)의 복과(復科)를 청하였다.’ 고 아뢰었다. 신덕우는 경술년의 화성(華城) 설과(設科) 때에 입격(入格)하여 창명(唱名)했었는데, 호적이 없어서 발거(拔去)당한 자이다. 대신에게 문의하여 복과를 명하였다.

○乙酉/禮曹啓言: “龍仁生員辛淳上言, 請其父德羽復科, 德羽卽, 庚戌華城設科時, 入格唱名, 而以無籍見拔者也.” 問議大臣, 命復科.

<순조실록 17권, 순조 14년(1814) 8월 27일(을유)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과에서 발방된 김성운에게 복과를 명하다

경술년의 수원과(水原科)에서 발방(拔榜)된 사람 김성운(金星運)에게 복과(復科)를 명하였으니, 대신이 동방인(同榜人) 신덕우(辛德雨)는 이미 복과하였으므로 다같이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청했기 때문이었다.

○命庚戌水原科〔拔〕榜人金星運，復科，大臣以同榜人辛德雨，今既復科，宜一體施恩爲請也。  
<순조실록 18권, 순조 15년 2월 20일(병자)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서영보를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서영보(徐榮輔)를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丙寅/以徐榮輔爲水原府留守，金銑爲開城府留守，申鴻周爲三道統制使，李肇源爲吏曹判書，李漉爲右捕盜大將。

<순조실록 18권, 순조 15년 6월 12일(병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경술년 화성 과거에서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발거된 이헌조의 복과를 명하다

이헌조(李憲祚)에게 과거를 회복해 주라고 명하였다. 이헌조는 일찍이 경술년 화성(華城)의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되었는데, 지금 그 아들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대신에게 의논하여 허락하게 한 것이다.

○命李憲祚復科，憲祚曾於庚戌華城科入格，以無籍見拔，今因其子上言，議于大臣而許之。  
<순조실록 19권, 순조 16년(1816) 4월 2일(신해)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임한호를 수원부 유수로 삼다

임한호(林漢浩)를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己未/以林漢浩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19권, 순조 16년 11월 14일(기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화성의 유생과 무사들에게 과거를 설행하여 시험을 보이다

화성(華城)의 유생과 무사들에게 과거를 설행(設行)하여 시험을 보이고, 제술(製述)에 으뜸을 차지한 김약수(金若水)는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으며, 부모(父老)들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었다.

○華城儒武設科試取，製述居首金若水直赴殿試，父老給米。

<순조실록 20권, 순조 17년(1817) 2월 27일(신축) 2번째기사>

#### 정치/행정

한치웅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한치응을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以韓致應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21권, 순조 18년 7월 28일(갑자) 2번째기사>

**정치/행정**

**효자 고 첨지 이찬건 등을 증직하다**

효자인 명천(明川)의 고 첨지 이찬건(李贊建)과, 목천(木川)의 고 군수 김도혁(金道赫)과, 죽산(竹山)의 고 사인(士人) 박인영(朴仁永)과, 열녀인 충원(忠原)의 고 학생(學生) 김복인(金復人)의 처 이씨(李氏)와 신천(信川)의 고 사인 유덕신(柳德新)의 처 정씨(鄭氏)와 배천(白川)의 고 급제(及第) 유광추(柳光樞)의 처 이씨(李氏)에게 모두 정려하고, **효자인 화성(華城)의 고 사인 강덕휘(姜德輝)와**, 온양(溫陽)의 고 학생(學生) 전시술(全始述)과, 신천(信川)의 고 사인 이봉조(李鳳朝)와 함안(咸安)의 고 사인 이경암(李景菴)에게 모두 증직(贈職)하며, 보은(報恩)의 고 학생 김도명(金道明) 및 그 아들 김한봉(金漢鵬)·손자 김성덕(金成德) 삼세(三世)의 효행에 대하여 김도명과 김한봉에게는 모두 정려하고, 김성덕에게는 증직하며, 충신인 순천(順天)의 증 참판(贈參判) 박대복(朴大福)에게 증직을 더하고, 순천(順天)의 절사(節士) 조여관(趙汝寬)에게 증직하라 명하였다. 박대복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을 따라 순절하였고 조여관은 충렬공(忠烈公) 조헌(趙憲)을 따라 순절하였는데, 유생들이 상언하고 본도에서 조사하여 아뢰므로 인하여 예조에서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命孝子明川故僉知李贊建，木川故郡守金道赫，竹山故士人朴仁永，烈女忠原故學生金復人妻李氏，信川故士人柳德新妻鄭氏，白川故及第柳光樞妻李氏，竝旌閭，孝子華城故士人姜德輝，溫陽故學生全始述，信川故士人李鳳朝，咸安故士人李景菴，竝贈職，報恩故學生金道明，及其子漢鵬，孫成德三世孝行，道明·漢鵬，竝旌閭，成德贈職，忠臣順天贈參判朴大福加贈，順天節士趙汝寬贈職。大福，從忠武公李舜臣；汝寬，從忠烈公趙憲殉義。禮曹因儒生上言，本道查啓而請之也。

<순조실록 22권, 순조 19년(1819) 9월 28일(정해) 4번째기사>

**정치/행정**

**이만수를 수원부 유수로 삼다**

**이만수(李晩秀)를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丙戌/以李晩秀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23권, 순조 20년 6월 2일(병술) 1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시근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김시근(金蓍根)을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以金蓍根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23권, 순조 20년 7월 28일(임오) 3번째기사>

**정치/행정**

**능에 참배하고 수원 유수 김시근에게 송정대부를 가자하다**

하교하기를, “능을 참배하고 초상화를 보았다만, 어찌 정성을 폄하고 하겠는가? 사모의 마

음만 더할 뿐이다. 여러 해 동안 성묘하지 못한데다가 금년은 다른 해와 다르니, 뜻을 표시하는 일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능에 친히 제사지낼 때의 아헌관(亞獻官) 이하에게 상을 주고, 수원 유수 김시근(金耆根)에게는 승정 대부를 가자하고, 예방 승지 박종기(朴宗琦)에게는 가선 대부를, 대축(大祝) 정기선(鄭基善), 집례(執禮) 김재원(金在元), 전사관(典祀官) 정조영(鄭祖榮)에게는 모두 통정 대부를 가자하라.” 하였다.

○敎曰：“祇拜仙寢，又瞻睟容，豈曰伸誠？只增孺慕。屢年曠省之餘，今年與他年有異，豈可無表意之舉？陵所親祭時亞獻官以下施賞，水原留守金耆根加崇政，禮房承旨朴宗琦加嘉善，大祝鄭基善，執禮金在元，典祀官鄭祖榮，竝加通政。”

<순조실록 23권, 순조 21년 2월 20일(신축) 3번째기사>

#### 정치/행정

화성 유생의 응제 시험지의 점수를 매기다

화성 유생의 응제(應製) 시험지의 점수를 매기었다. 장원한 김재영(金在榮)에게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癸卯/科次華城儒生應製試券，居首金在榮，直赴殿試。

<순조실록 23권, 순조 21년(1821) 2월 22일(계묘)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이헌기를 수원부 유수로 삼다

이헌기(李憲琦)를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以李憲琦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25권, 순조 22년 6월 1일(계묘)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이희갑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이희갑(李羲甲)을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乙未/以李羲甲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25권, 순조 22년 11월 25일(을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호조판서 심상규가 개성의 구제 방안을 말하면서 수원은 화성의 지방이다라고 말하다

호조 판서 심상규(沈象奎)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일 개성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묘당에서 결정하였는데, 신이 계획을 잘못 세워 일을 해친 부분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풍덕부(豐德府)를 혁파하여 개성에 예속시키는 일에 관한 타당 여부는 신의 조(曹)에서 논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당초부터 그와 같이 하려고 했다면 천천히 여론을 들어보았지 먼저 전결(田結)을 떼어서 주는 일을 계획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으니, 아마도 신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이 어떻게 두려운 생각으로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는 묘당에서 경기의 해안 고을의 전토(田土) 1천 5백 결을 떼어 주었다가 10년 후에 환납하기로 품쳐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의 조에서 정세(正稅)의 전결 이외에는 떼어 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하자고 간쟁하자, 풍덕부를 혁파하여 <개성에> 예속시키고 전세와 <대동미> 두 가지

세까지 싸잡아 영원히 주어버렸으니, 이는 실로 전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주군(州郡)을 나누거나 합하는 일이 더러 있기는 하였으나 국고에 예속된 민결(民結)과 상세(常稅)는 한번도 따로 떼어서 서울의 창고에 납부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땅은 나누더라도 백성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는 다른 사례를 들 것도 없이 바로 송영(松營)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단(長湍)의 송서(松西)와 금천(金川)의 소남(小南)·대남(大南)을 이속(移屬)할 때에 불과 면리(面里)의 조그만한 땅이었지만, 장단에서는 여러 차례 떼려다가 그만두고 80년이 지난 뒤에야 결정이 났으며, 금천에서는 금방 논의하다가 금방 중지되어 1백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시행되었으니, 판적(版籍)에 딸린 백성과 지역은 이처럼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수신(守臣)이 시행 조건을 낱낱이 올리고는 전세와 대동미를 전례대로 상납하다가 근래 4, 5년 사이에 비로소 개성부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는 병진년에 시행한 제도가 아닙니다. 비록 면리(面里)의 보잘것없는 부세라 하더라도 사체를 중시한 논의들이 애석히 여기었는데, 이제는 또 ‘분사(分司)의 경비를 모두 지방(地方)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지방에는 원래 정해진 수량이 있어 이리저리 융통할 길이 없습니다. **광주(廣州)는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지방이고, 강화(江華)는 심도(沁都)의 지방이며, 수원(水原)은 화성(華城)의 지방이고 보면, 송도의 지방은 개성입니다.** 또 같은 분사이지만 특히 더 중한데도 화성은 처음 설치할 때부터 재부(財賦)를 신중히 하여 지방의 세수(稅收)를 전부 이속시키지 않고 호조에 내던 것을 넘겨서 교환하게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도에 개성의 원 지방 이외에 또 한 주(州)를 더 붙여 주고 두 가지 세까지 아울러 소속시켰으니, 지금과 옛날의 묘당 정책이 이토록 크게 다를 수 있느냐고 의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

○壬子/戶曹判書沈象奎疏略曰：近日松營掇(弊) [弊]，廟堂定奪，益以見臣失計害事之處。夫豐德府之罷屬開城，其事當否，非臣曹所可議。而如其自初如此，第可徐聽衆論，不必先計損割，今則不然，其殆由臣而轉成此舉，臣安得不瞿然自訟哉？蓋當初廟堂，以畿海邑土田一千五百結，割給十年後，還納稟處，臣曹以正稅田結，曾無外割之例，執奏寢之，則乃有豐德罷屬之舉，竝與兩稅而永給之，此實古未有也。州郡分合，或時有之，而其民結常稅之總於國賦者，未或捐割，不納于京，有分土無分民，其謂此也。不必他引，卽松營已事。其移屬長湍之松西，金川之小南大南也，不過面里尺寸之地，而於湍 [屢] 割屢寢，八十餘年，而乃定於金，旋議旋格，歷百二十年，始得施行，可以見職方民域，重難於變改如此。其時守臣，條上事宜，稅大同，如例上納，比近四五年間，始許本府取用，有非丙辰施行之制也。雖邱井零星之賦，持體之論，尙竊惜之，今又曰分司經用，皆取資於地方，此固然矣，地方有原定，而未有移易闊狹，廣州爲南漢之地方，江華爲沁都之地方，**水原**爲華城之地方，則松都之地方，開城是已。且同是分司，尤有所重，而華城始設，祇慎財賦，地方之稅，猶不全屬度支所納，但令移換。今於松營開城原地方之外，又附益一州，而竝屬其兩稅，無怪或議。(…)

<순조실록 26권, 순조 23년 8월 16일(임자)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서손의 벼슬길을 터주는 문제에 관해 수원 유수가 현의하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수원 유수 이희갑(李羲甲)은 현의하기를**, ‘그들이 원한을 품어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비나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이는 진실로 상경(常經)에 어긋나는 일로서, 천리와 인정으로 헤아려 볼 때 실로 빨리 고쳐야 하겠습니까. 벼슬길

을 막는 것은 더욱 사람을 쓰는 도리를 잃었습니다. 하늘이 재능을 부여할 때에 어찌 귀천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 풍속은 오로지 문벌만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비록 과거를 보게 하고 길을 터준 뒤에도 여전히 문호를 열어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위로는 재능만 취하여 쓴다는 실상이 없었고 아래로는 재능을 가지고 헛되이 늙는다는 한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이 그 계급(階級)을 두고 길을 널리 터주자고 아뢰었는데, 정말 변통의 도리를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적처나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야만 비로소 후사를 세우게 허용한 것은 바로 국전입니다. 이는 따로 신척시킬 것도 없이 오직 거듭 밝혀 거행하는데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

○甲戌/備局啓言：(…) 水原留守李義甲以爲，‘一名輩之積抱冤鬱，厥惟久矣。爲人子而不得稱父稱兄，誠是反常之事，揆以天理人情，實合亟令改之。仕路之枳塞，尤失用人之義。天之生才能，豈有貴賤之殊？而我東習俗，專尙地閥，故雖在許赴許通之後，猶不能恢拓收用，而上而無惟才是用之實，下而有抱才空老之歎。大臣之以存其階級，廣其疏通爲奏，誠得通變之宜。(…)  
<순조실록 26권, 순조 23년 9월 9일(갑술) 1번째기사>

#### 정치/행정

김이양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김이양(金履陽)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以金履陽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27권, 순조 24년 10월 1일(경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홍희신을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홍희신(洪羲臣)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서능보(徐能輔)를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삼았다.(…)

○庚午/以洪羲臣爲水原府留守，徐能輔爲廣州府留守。(…)

<순조실록 27권, 순조 25년 6월 14일(경오) 1번째기사>

#### 정치/행정

김상휴를 수원부 유수로 삼다

김상휴(金相休)를 수원부 유수로, 김이교(金履喬)를 한성부 판윤으로 삼았다.

○以金相休爲水原府留守，金履喬爲漢城府判尹.

<순조실록 28권, 순조 26년 4월 15일(병인) 3번째기사>

#### 정치/행정

김유근이 서연에 참여치 않자 외직인 수원부 유수로 삼다

좌부빈객 김유근을 패초(牌招)하여 서연(書筵)에 참여하라고 영을 내려 신척하였는데, 김유근이 소명(召命)을 어기고 나오지 않자, 하령하기를,

“이 중신(重臣)에게 전후로 매우 엄하게 권면하다가 마침내 그의 소청을 꼭진히 들어 준 것은, 우선 그의 애절한 정리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고 보면 그 분의 와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수시로 문안하여 정성을 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결같이 고집하여 움직일 뜻이 없으니, 너무나도 부당하다. 또 지금 주장(晝講)의 영을 내린 뒤에 또 몇

번 엄하게 신칙하였으나, 오후가 되어도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빈객은 다른 임무와 다르고 권강(勸講)은 또 공무를 보는 것이 아닌데, 그대가 서연(書筵)에 출입하는 것마저 아울러 의리대로 처신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어찌 말이 되는가? 군신(君臣)의 큰 윤리는 예의상 벗어날 수 없는데 지친(至親)의 사정(私情)으로 인하여 이러한 큰 윤리를 폐기하려고까지 하니, 이는 고금을 통하여 들어보지 못한 바이다. 기강으로 볼 때 한결같이 양해할 수만은 없으므로, 좌부빈객 김유근을 수원부 유수의 외직에 임명하니, 당일로 내려가도록 하라.” 하였다.

○令飭左副賓客金迪根牌招，進參書筵。迪根違召不膺，令曰：“此重臣之前後敦勉，不啻申嚴，而畢竟曲循，卽欲姑慰其悲切之情。則其在分義道理，惟當隨時承候，以伸忱誠。而一直固執，無意變動者，已萬萬乖當。且今晝講令下之後，又有幾度嚴飭，而日已晚午，終不入來。賓客異於他任，勸講又非供職，則竝與書筵出入，必欲處義者，是豈成說乎？夫君臣大倫，無所逃於天經地義，而乃因至親之私情，至欲廢此大倫，卽古今之所未聞也。揆以紀綱，不可一向曲諒，左副賓客金迪根，水原府留守補外，使之當日下送。”

<순조실록 29권, 순조 27년 6월 10일(갑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화성 유생인 엄석리·한밀리·조학년 등에게 전시하게 하다

화성 유생으로서 응제(應製)한 사람의 과차(科次)를 정하여, 거수(居首)인 엄석리(嚴錫履)와 지차(之次)인 한밀리(韓宓履)·조학년(趙鶴年)·김기만(金箕晩) 등에게 모두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華城儒生應製科次，居首嚴錫履，之次韓宓履·趙鶴年·金箕晩，竝直赴殿試。

<순조실록 30권, 순조 28년(1828) 2월 25일(을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박주수를 수원부 유수로 삼다

대접하여 박주수(朴周壽)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辛亥/代點，以朴周壽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30권, 순조 28년 3월 12일(신해) 1번째기사>

#### 정치/행정

홍희준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대신 낙점하여 홍희준(洪羲俊)을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代點，以洪羲俊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3월 1일(기축) 2번째기사>

#### 정치/행정

박기수를 수원부 유수로 삼다

박기수(朴綺壽)를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甲辰/以朴綺壽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32권, 순조 31년 2월 21일(갑진) 1번째기사>

정치/행정

서준보를 수원부 유수로 삼다

서준보(徐俊輔)를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丁巳/以徐俊輔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 1월 9일(정사) 1번째기사>

정치/행정

정원용을 수원 유수로 삼다

(…) 정원용(鄭元容)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 以鄭元容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33권, 순조 33년 4월 20일(경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이광문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이광문(李光文)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丙子/以李光文爲水原府留守.(…)

<순조실록 33권, 순조 33년 11월 10일(병자) 1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 유수 조인영이 상소하여 사직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인영(趙寅永)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삼가 대료(大僚)가 아뢴 바를 들건대, 경재(卿宰)가 추고(推考)를 당하여 기어이 체직(遞職)되려 하는 것 때문에 열거해 논한 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정의 체통(體統)을 높이고 뒷날의 폐단을 없게 하는 데 관계가 된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臣)이 요사이 경재로서 추고를 당하고 체직된 사람을 두루 헤아려 본즉, 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만히 삼가 생각하건대, 염치(廉恥)를 지킨다는 것은 나라를 보유하는 네 가지 버리입니다. 신은 이런 사정 때문에 그 일이 이미 지나간 일에 속한다고 둘러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책이 외임(外任)에 있으니, 얼굴을 버젓이 들고 무릅쓰고 부임할 계척으로 삼는다면, 그 염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도리어 조정의 체통이나 후일의 폐단에 관계가 있는 것보다도 심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해당되는 율(律)로 감단(勘斷)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신의 말은 범연히 논한 데서 나온 것인데, 경이 굳이 인책(引責)할 필요가 있는가? 사직하지 말고 즉시 가서 부임하라.” 하였다. 재차 상소하니, 윤허하였다.

○水原留守趙寅永疏略曰：卽伏聞大僚所奏，以卿宰被推，期於遞職，多所論列。至以尊朝體係後弊爲辭。臣歷數近日卿宰，被推而遞職者，則臣實其人。竊伏念廉防者，有國之四維也。臣以此情踪，諉之以事屬既往。職在外任，抗顏爲冒赴之計，則其爲壞廉防，反有甚於朝體，後弊之有關係者。伏乞特勸當律。批曰：“大臣之言，出於泛論，卿何必爲引乎？勿辭，卽爲往赴。”再疏許之。

<헌종실록 2권, 헌종 1년 9월 6일(임진) 2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 유수 권돈인을 재상에 제수하도록 하교하다



하교하기를, “수원 유수(水原留守) 권돈인(權敦仁)을 배상(拜相)토록 하라.” 하였다.

○乙卯/教曰: “水原留守權敦仁拜相.”

<헌종실록 9권, 헌종 8년 11월 11일(을묘)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유생의 응제를 설행하여 심후선을 직부 전시하게 하다

교궁(校宮)에서 수원(水原) 유생(儒生)의 응제(應製)를 설행(設行)하였는데, 부(賦)에 으뜸을 차지한 심후선(沈厚善)을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設水原儒生應製于校宮, 賦居首沈厚善, 直赴殿試.

<헌종실록 10권, 헌종 9년 3월 17일(경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부 경내의 무사를 시취하여, 임관진 등 22인을 직부 전시하게 하다

수원부(水原府) 경내의 무사(武士)를 시취(試取)하였는데, 임관진(林觀鎭) 등 22인에게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水原府境內武士試取, 林觀鎭等二十二人, 直赴殿試.

<헌종실록 13권, 헌종 12년 3월 5일(경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김난순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김난순(金蘭淳)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以金蘭淳爲水原府留守.(…)

<철종실록 1권, 철종 즉위년 7월 12일(정미)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부 유수 김난순 등을 강관(講官)으로 초계하다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 김난순(金蘭淳), 상호군 이약우(李若愚), 예조 판서 서기순(徐箕淳), 호조 판서 김학성(金學性), 병조 판서 윤정현(尹定鉉)을 강관(講官)으로 초계(抄啓)하였다.

○水原府留守金蘭淳, 上護軍李若愚, 禮曹判書徐箕淳, 戶曹判書金學性, 兵曹判書尹定鉉, 講官抄啓.

<철종실록 1권, 철종 즉위년 8월 5일(경오) 5번째기사>

#### 정치/행정

조병준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조병준(趙秉駿)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丁丑/以趙秉駿爲水原府留守.

<철종실록 3권, 철종 2년 4월 21일(정축) 1번째기사>

#### 정치/행정

태묘에 부묘하고 휘정전에 친제할 때 참여한 수원 유수 등에게 가자하다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하고 휘정전(徽定殿)에 친제(親祭)할 때의 부묘 도감(祔廟都監) 및 존숭 도감(尊崇都監)과 진하(陳賀)할 때의 도제조(都提調)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施賞)하고,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병준(趙秉駿), 행 대호군(行大護軍) 이돈영(李敦永), 부묘(祔廟) 및 휘호(徽號)를 올릴 때의 예방 승지(禮房承旨) 조충식(趙忠植), 진하(陳賀) 때 예방 승지 조운승(曹雲承), 대거 승지(對舉承旨) 이의익(李宜翼), 선교관(宣教官) 부수찬(副修撰) 민영위(閔泳緯), 부사과(副司果) 윤행복(尹行福)에게 아울러 가자(加資)하였다.  
○祔太廟及徽定殿親祭祔廟都監尊崇都監，陳賀時都提調以下，施賞有差，(…) 水原留守趙秉駿，行大護軍李敦榮，祔廟及上徽號時禮房承旨趙忠植，陳賀時禮房承旨曹雲承，對舉承旨李宜翼，宣教官副修撰閔泳緯，副司果尹行福，并加資.

<철종실록 3권, 철종 2년 8월 20일(갑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서영순을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서영순(徐英淳)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己亥/以徐英淳爲水原府留守.(…)

<철종실록 3권, 철종 2년 12월 18일(기해)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이학수를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이학수(李鶴秀)를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以李鶴秀爲水原府留守.(…)

<철종실록 5권, 철종 4년 11월 2일(계묘) 2번째기사>

#### 정치/행정

봉조하 김도희를 수원부 유수로 삼다

봉조하(奉朝賀) 김도희(金道喜)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丙子/以奉朝賀金道喜爲水原府留守.

<철종실록 7권, 철종 6년 5월 15일(병자)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사폐한 수원부 유수 김도희를 소견하다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 김도희(金道喜)를 소견하였는데, 사폐(辭陞)한 때문이었다.

○庚子/召見，水原府留守金道喜，辭陞也.

<철종실록 7권, 철종 6년 6월 9일(경자) 1번째기사>

#### 정치/행정

홍재룡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홍재룡(洪在龍)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以洪在龍爲水原府留守.(…)

<철종실록 8권, 철종 7년 5월 16일(임신) 2번째기사>

정치/행정

사폐한 수원부 유수 홍재룡을 소견하다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 홍재룡(洪在龍)을 소견(召見)하였으니, 사폐(辭陞)하였기 때문이었다.

○壬午/召見水原府留守洪在龍, 辭陞也.

<철종실록 8권, 철종 7년 5월 26일(임오) 1번째기사>

정치/행정

김병학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김병학(金炳學)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丙午/以金炳學爲水原府留守.

<철종실록 10권, 철종 9년 1월 30일(병오) 1번째기사>

정치/행정

서유훈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서유훈(徐有薰)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以徐有薰爲水原府留守.

<철종실록 10권, 철종 9년 3월 6일(임오) 2번째기사>

정치/행정

임백경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임백경(任百經)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戊辰/以任百經爲水原府留守.

<철종실록 10권, 철종 9년 12월 27일(무진) 1번째기사>

정치/행정

화성 응제에서 으뜸을 차지한 한용교를 증광 전시에 나아가게 하다

하교하기를, “이번 이 경사스런 때에 한 사람이라도 외면당하여 탄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연전(年前)에 화성(華城)의 응제(應製)에서 으뜸을 차지한 한용교(韓龍敎)에게는 특별히 증광 전시(增廣殿試)에 나아가게 하라. 이태익(李泰翼)에 대한 지난날의 처분(處分)에 이르러서는 사습(士習)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생각건대 경사의 폭을 넓혀 은전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 이동(異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 그도 복과(復科)시키라.” 하였다.

○敎曰: “今此慶會, 不宜有一人向隅之歎. 年前華城應製居首人韓龍敎, 特付增廣殿試. 至若李泰翼向來處分, 所以懲士習也. 第念廣慶覃施, 不必異同, 亦爲復科.”

<철종실록 11권, 철종 10년(1859) 1월 27일(무술) 2번째기사>

정치/행정

남병철을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 남병철(南秉哲)을 수원부 유수로 삼았다.

○(...) 南秉哲爲水原府留守.

<철종실록 11권, 철종 10년 11월 2일(정묘) 1번째기사>

정치/행정

김병교를 수원부 유수로 삼다

김병교(金炳喬)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乙巳/以金炳喬爲水原府留守.

<철종실록 12권, 철종 11년 2월 10일(을사) 1번째기사>

정치/행정

김영근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김영근(金泳根)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癸未/以金泳根爲水原府留守.

<철종실록 13권, 철종 12년 10월 28일(계미) 1번째기사>

정치/행정

강원 감사 남병길과 수원 유수 김영근을 서로 바꾸게 하다

강원 감사 남병길(南秉吉)을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영근(金泳根)과 서로 바꾸도록 명하였다.

○命江原監司南秉吉, 水原留守金泳根, 相換.

<철종실록 15권, 철종 14년 4월 15일(신묘) 2번째기사>

정치/행정

승학과 공도회 시험의 합격자에게 수원과 강화의 회시에 응시하도록 통지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신유년(1861) 이후에 승학(陞學) 시험과 공도회(公都會) 시험을 보인 사람들에게 경과(慶科)의 회시(會試)를 볼 자격을 주도록 허락한 것은 경사를 널리 함께하려는 대왕대비의 특별한 혜택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원(水原)과 강화(江華)에서 미처 시험을 보이지 못한 것은 뒤미처 설행하게 하여 이번 회시에 보내게 하라고 통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辛酉以後, 陞學·公都會之許赴慶科會試, 特出於廣慶之慈衷矣. 水原·江華兩都未及設行者, 使之追設, 付之今番會試事, 請知委.” 允之.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8월 10일(무인) 3번째기사>

정치/행정

이유원을 수원부 유수에 임명하다

이유원(李裕元)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以李裕元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2월 26일(임진) 2번째기사>

정치/행정

조득림을 수원부 유수에 임명하다

조득림(趙得林)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以趙得林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5월 13일(정미) 4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의 전궁과 성벽을 수축할 때 감독한 유수 이하를 시상하다

수원(水原)의 전궁(殿宮)과 성첩(城堞) 수축(修築)시 감독(監董)한 유수(留守)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水原殿宮及城堞修築時監董留守以下, 施賞有差.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10월 25일(병진)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조헌영을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조헌영(趙獻永)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以趙獻永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12월 27일(무오)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진하할 때에 수원 유수 조헌영 등에게 백관가를 직접 주다

진하(陳賀)할 때의 예방 승지(禮房承旨) 홍병수(洪秉壽), 선교관(宣教官) 이종준(李鍾濬), 좌통례(左通禮) 김창수(金昌秀), 우통례(右通禮) 정현덕(鄭顯德)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으며,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규철(李圭徹),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헌영(趙獻永)에게는 백관가(白官加)를 직접 주었다.

陳賀時禮房承旨洪秉壽·宣教官李鍾濬·左通禮金昌秀·右通禮鄭顯德, 竝加資. 兵曹判書李圭徹·水原留守趙獻永, 竝百官加親授.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4월 27일(을묘) 5번째기사>

#### 정치/행정

이경하를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이경하(李景夏)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신관호(申觀浩)를 훈련 대장(訓練大將)으로, 신명순(申命淳)을 총융사(總戎使)로 삼았다.

以李景夏爲水原府留守, 申觀浩爲訓練大將, 申命淳爲總戎使.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10월 24일(기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화성의 도시 답안을 성균관에 보내도록 아뢰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강화(江華) 공도회(公都會)의 시권(試券)을 거두어서 올려 보내게 할 것으로 연석에서 아뢰어 윤희를 받았습니다. 화성(華城)의 도회(都會)를 2년치를 올봄에 합하여 실행하되, 해부(該府)에서 시권을 거두어 성균관(成均館)으로 올려 보내고 성균관으로 하여금 고시(考試)하여 출방(出榜)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형(文衡)을 차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시제(詩題)와 시취(試取)를 대사성(大司成)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신(武臣)이 유수로 있는 세 도(都)에서도 모두

이 규정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하였다.

又啓：“向以江華公都會收券上送事，筵稟蒙允矣。華城都會兩年條合設於今春，自該府收券上送于成均館，使之考試出榜。而文衡未差之時，試題與試取，令泮長主管之意，著爲定式。如值武臣之留後三都，竝依此例舉行何如?” 允之。

<고종실록 4권, 고종 4년(1867) 1월 20일(을해) 4번째기사>

#### 정치/행정

의정부에서 이경하를 수원 유수에 임명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또 아뢰기를, “수원 유수(水原留守)의 임기가 찼다는 장계(狀啓)가 지금 이미 본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원 유수가 이룬 치적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건대, 영건(營建)하는 데 들어가는 재목을 대는 일을 수원부에서 아직 끝내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체차하는 것은 민망스러운 일인 듯합니다. 그러니 수원 유수 이경하(李景夏)를 가을보리가 익을 때까지 더 임명시켜, 그로 하여금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하였다.

初六日。議政府啓：(…) 又啓：“華留箇滿狀，今既報府矣。此守臣之茂績，已多入聞，而且念營建木物之需用，是府者尙有未畢。此時遞易，委屬可悶。水原留守李景夏，限麥秋仍任，俾爲竣事何如?” 允之。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8월 6일(경술)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이재원을 수원부 유수에, 이경하를 판의금부사에 임명하다

이재원(李載元)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以李載元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6권, 고종 6년 2월 7일(기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삼군부가 수원에서 인천으로 방어하러 간 자들을 본읍으로 돌려보낼 것을 아뢰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번선(番船)이 비록 이미 멀리 떠나기는 하였지만 경계 태세를 갑자기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오랫동안 주둔하면서 방어 하는 것은 실로 농사를 망칠 우려가 있습니다. 광주(廣州), 수원(水原)에서 인천(仁川)으로 방어하러 간 자들은 일체 해산시켜서 보내고 본읍(本邑)의 방어를 특별히 단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하였다.

三軍府啓：“番船雖已遠去，戒嚴不可遽解。而此時許久駐防，實有廢農之慮。廣州·水原之往赴仁川者，一體解送，本邑 防守，另加團束何如?” 允之。

<고종실록 6권, 고종 6년 3월 23일(을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군영의 유수가 비었을 때 중군이 대리하여 일을 보도록 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재원(李載元)의 보고를 보니, ‘본부는 서울을 껴안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요충지에 처해있습니다. 만약 유수가 상경할 때를 당하면, 군무(軍務)에 관계된 것은 전적으로 중군(中軍)에게 맡기어 대신 거느리면서

두루 살피게 하는 것이 방편에 부합할 듯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군무에 관계된 것은 어디를 가든 긴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번 수신(守臣)이 공무 때문에 상경할 때마다 잘못되고 적체되는 결과를 면하지 못하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영(營)이 비었을 때에는 중군이 대신 거느리면서 두루 살피는 것이 일의 체모에 매우 부합하니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을 허락하고, 이밖에 광주(廣州)와 개성(開城)의 두 도(都)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로이니, 일체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분부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三軍府啓: “即見水原留守李載元所報, 則 ‘本府, 拱護重地, 處在要衝. 若當留守上京之時, 關係軍務, 專委中軍, 代領周察, 恐合方便’ 爲辭矣. 凡係軍務, 無往不緊且急焉, 而每值守臣之因公上京, 率不免愆滯之歸者, 不可但以疎虞言. 今其空營時, 中軍代領周察, 甚合事體, 依報辭許施. 外此廣州·開城兩都, 亦不宜異同, 一體定式, 請分付.” 允之.

<고종실록 6권, 고종 6년 9월 27일(을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 유수 이재원에게 가자하라고 하다

전교하기를,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재원(李載元)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敎曰: “水原留守李載元, 特爲加資.”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 3월 12일(무인)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 유수 이재원을 임임시키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수원 유수(水原留守)의 임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 수신(守臣)은 부임한 이래로 능(陵)·원(園)·전(殿)의 공해(公廩)를 수선하는 일에 정성을 다 하였으며 비상시에 대비하는 것도 사전에 잘하여 새롭게 일신하였습니다. 포핍(逋欠)은 깨끗이 받아내고 드러나지 않은 백성의 고통에서도 대부분 구휼하여 많은 조치들이 성대하게 기록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인계 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즈음에 지역 내의 대소 백성들과 아전, 장교, 관노(官奴), 사령(使令), 군졸들이 일체히 본부(本府)에 호소하면서 모두들 오래 머물러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훌륭한 치적이 이미 이와 같고, 그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백성의 마음이 또 저와 같으니, 수원 유수 이재원(李載元)에게 특별히 임기를 더 주어 임임(仍任)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華留箇滿在近矣. 此守臣, 莅任以來, 陵園殿廩修繕之役, 誠心克殫, 陰雨桑土, 綢繆之備, 精彩俱新. 逋敷則莫不剔刷, 幽隱則舉皆調恤, 許多施措, 蔚然可記. 而今於臨瓜治簿之際, 境內大小民人及吏校·奴令·軍卒等, 齊訴本府, 咸願久留. 優異之績既如此, 恐失之情又如彼, 水原留守李載元, 特爲加瓜仍任何如?” 允之.

<고종실록 7권, 고종 7년 10월 22일(갑인) 3번째기사>

### 정치/행정

#### 신석희를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 신석희(申錫禧)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 申錫禧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1월 3일(계사) 1번째기사>

#### 정치/행정

민승호를 수원부 유수에 임명하다

민승호(閔升鎬)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十六日. 以閔升鎬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11월 16일(정유)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산실청의 당직을 설 관리 중 수원유수 민승호 등은 따로 당직을 서게 하다

산실청(産室廳)에서 아뢰기를, “세 제조(提調)는 내일부터 규례대로 본원(本院)에서 함께 입직(入直)하고, 승후관(承候官)인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 수원 유수(水原留守) 민승호(閔升鎬), 종정경(宗正卿) 이재면(李載冕), 직부(直赴) 이재궁(李載兢), 사용(司勇) 이재완(李載阮)은 별입직(別入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産室廳啓: “三提調自明日依例竝直本院. 承候官興寅君李最應·水原留守閔升鎬·宗正卿李載冕·直赴李載兢·司勇李載阮, 別入直何如?” 允之.

<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 1월 29일(기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유수 민승호와 병조 판서 민치상을 직임을 서로 바꾸라고 명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민승호(閔升鎬)와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치상(閔致庠)의 직임을 서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初十日. 命水原留守閔升鎬, 兵曹判書閔致庠, 相換.

<고종실록 10권, 고종 10년 9월 10일(을묘)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송근수를 수원부 유수에 임명하다

(…) 송근수(宋近洙)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 宋近洙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11권, 고종 11년 11월 7일(병오) 2번째기사>

#### 정치/행정

박규수를 수원부 유수에 임명하다

박규수(朴珪壽)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以朴珪壽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8월 9일(정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김병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병지(金炳地)를 수원부 유수(水原留守)로 삼았다.(…)

以金炳地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12월 26일(임자) 2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의 기근에 돈을 바친 함평의 이경인을 등용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병지(金炳地)의 보고를 보니, ‘본부에 기근을 진휼(賑恤)할 비용이 부족하여 계속 구제할 방법이 없을 즈음에 함평(咸平)에 사는 유학(幼學) 이경인(李景寅)이 1만 냥(兩)을 바쳤으니 매우 가상하므로 포상하는 은전(恩典)을 입을 수 있게 해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의연금을 내어 보태었으니 그 뜻이 매우 훌륭합니다. 상을 주어 격려하고 권장한 전례가 또한 많으니, 이경인(李景寅)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6품직을 가설하여 등용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即見水原留守金炳地所報, 則 ‘本府賑資艱絀, 莫可接濟之際, 咸平居幼學李景寅, 捐納一萬兩, 極爲嘉尚, 俾蒙褒賞之典.’ 爲辭矣. 出義捐補, 其志甚嘉, 施賞激勸已例且多. 李景寅令該曹六品職加設調用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실록 14권, 고종 14년 4월 16일(신축) 2번째기사>

정치/행정

비변사의 의견대로 수원 유수 김병지를 한 임기를 영입시키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병지(金炳地)를 추가로 한 임기를 영입시켰다. 묘당(廟堂)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

初三日. 水原留守金炳地, 加一瓜仍任. 因廟啓也.

<고종실록 15권, 고종 15년 9월 3일(기유) 1번째기사>

정치/행정

함경 감사 김세균과 수원 유수 김병지의 자리를 바꾸라고 명하다

함경 감사(咸鏡監司) 김세균(金世均)을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병지(金炳地)와 바꾸라고 명하였다.

命咸鏡監司金世均, 水原留守金炳地, 相換.

<고종실록 15권, 고종 15년 12월 15일(경인) 2번째기사>

정치/행정

정기세를 수원부 유수에 임명하다

(...) 정기세(鄭基世)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 鄭基世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16권, 고종 16년 8월 17일(무오) 1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 유수 정기세를 한 임기 동안 영입시킬 것을 윤허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수원 유수(水原留守)가 지금 막 임기가 끝났다는 것을 보고 하였습니다. 3년 동안 다스리는 체제는 더욱 막중해지고 온 경내의 백성들은 모두 안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안히 다스린 지역에는 응당 오래도록 유임시켜서 성과를 올리게 해

야 할 것이니, 수원 유수 정기세(鄭基世)를 다시 한 임기 동안 잉임(仍任)시켜 주소서.” 하니, 윤택하였다.

二十五日. 議政府啓: “華留纔已報瓜矣. 三載之治體益重, 一境之民情咸安. 似此保釐之地, 宜久彌展厥效. 請水原留守鄭基世, 更限一瓜仍任.” 允之.

<고종실록 18권, 고종 18년 6월 25일(을묘) 1번째기사>

#### 정치/행정

민태호를 수원부 유수에 임명하고 찬성을 잉대하라고 명하다

민태호(閔台鎬)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고, 찬성(贊成)을 잉대(仍帶)하라고 명하였다.

以閔台鎬爲水原府留守, 命仍帶贊成.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5월 23일(무신) 3번째기사>

#### 정치/행정

화성 판관 이상응 등을 종척집사에 차정하다

전교하기를, “영평군(永平君) 이경응(李景應),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 판종정경(判宗正卿) 이재면(李載冕), 춘천 부사(春川府使) 이재완(李載完), 지종정경(知宗正卿) 이명응(李明應), 종정경(宗正卿) 이태응(李泰應)·이재순(李載純), 화성 판관(華城判官) 이상응(李商應) (….) 을 모두 종척 집사(宗戚執事)에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十一日. 教曰: “永平君李景應·完平君李昇應·判宗正卿李載冕·春川府使李載完·知宗正卿李明應·宗正卿李泰應·李載純·華城判官李商應 (….) 竝宗戚執事差下.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1882) 6월 11일(을축)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전 수원 유수 정기세를 잉임시키다

전교하기를, “이런 때에 수원 유수(水原留守) 벼슬을 생소한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 전 수원 유수(前水原留守) 정기세(鄭基世)를 잉임(仍任)하라.” 하였다.

教曰: “此時華留, 難付生手, 前水原府留守鄭基世仍任.”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6월 12일(병인) 5번째기사>

#### 정치/행정

민영위를 수원부 유수에 임명하다

민영위(閔泳緯)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三十日. 以閔泳緯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8월 30일(계미) 1번째기사>

#### 정치/행정

김병덕을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김병덕(金炳德)을 수원 유수(水原留守)로, 민영위(閔泳緯)를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김유연(金有淵)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임한수(林翰洙)를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삼았다.

以金炳德爲水原府留守·閔泳緯爲平安道觀察使·金有淵爲戶曹判書·林翰洙爲咸鏡道觀察使.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0월 1일(갑인) 2번째기사>

정치/행정

홍우창을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이병문(李秉文)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정범조(鄭範朝)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홍우창(洪祐昌)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김홍집(金弘集)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았다.

以李秉文爲禮曹判書, 鄭範朝爲判義禁府事, 洪祐昌爲水原府留守, 金弘集爲京畿觀察使.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0월 24일(정축) 4번째기사>

정치/행정

김기석을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김기석(金箕錫)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이교헌(李教獻)을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송계헌(宋啓憲)을 충청도 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以金箕錫爲水原府留守, 李教獻爲左邊捕盜大將, 宋啓憲爲忠淸道水軍節度使.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10월 12일(계미) 2번째기사>

정치/행정

일본 사람들의 한행 이정 약조 부록을 체결하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국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로 이수(里數)에 관한 약조가 체결되었다. <한행 이정 약조 부록(開行程里約條附錄)>

이에 【조선력(朝鮮曆) 계미년(1883) 6월 22일, 일본력(日本曆) 명치(明治) 16년 7월 25일】 체결된 본 조약 제3조에 근거하여 양국 위원(委員)이 회동하여 의정하고 금년에 다시 확충한 이정(里程) 경계를 아래에 열거한다.

인천항(仁川港)

**남쪽 한계 남양(南陽)·수원(水原)·용인(龍仁)·광주(廣州)**

동쪽 한계 경성[서울] 동쪽 중랑포(中浪浦)

서북 한계 파주(坡州)·교하(交河)·통진(通津)·강화(江華)

서남 한계 영종(永宗)·대부(大阜)·소부(小阜)의 각 섬

원산항(元山港)

북쪽 한계 영흥(永興)

서쪽 한계 문천(文川)의 끝지역

남쪽 한계 회양(淮陽)·통천(通川)

부산항(釜山港)

동쪽 한계 남창(南倉)

북쪽 한계 언양(彦陽)

서쪽 한계 창원(昌原)·마산포(馬山浦)·삼랑창(三浪倉)

남쪽 한계 천성도(天城島)

이에 양국이 위임한 대신(大臣)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조선국에서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이정 약조의 부록을 만들어 성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3년 10월 12일

위임대신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홍집(金弘集)

대일본국 명치(明治) 17년 11월 29일

위임대신변리공사(辦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日本人在朝鮮國開行程里約條成. 開行程里約條附錄. 茲據【朝鮮曆癸未年六月二十二日, 日本曆明治十六年七月二十五日】所訂本約第三條, 兩國委員會同議定, 今年再行擴充之里程境界, 開列于左: 仁川口, 南限南陽·水原·龍仁·廣州. 東限京城東中浪浦. 西北限坡州·交河·通津·江華. 西南限永宗·大阜·小阜各島. 元山口, 北限永興. 西限文川終境. 南限淮陽·通川. 釜山口, 東限南倉. 北限彥陽. 西限昌原·馬山浦·三浪倉. 南限天城島. 茲兩國委任大臣, 記名蓋印, 作為朝鮮國開行程里約條附錄, 以昭信守. 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三年十月十二日, 委任大臣督辦交涉通商事務金弘集. 大日本國明治十七年十一月二十九日, 委任大臣辦理公使竹添進一郎.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10월 12일(계미) 3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 유수에게 흠차 방판 북양대신을 맞이하여 행차를 호위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흠차 방판 북양대신(欽差幫辦北洋大臣)이 며칠 안으로 나온다고 한다. 수원 유수(水原留守)는 남양(南陽) 경계로 나가서 기다렸다가 맞이하여 행차를 호위하도록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유지(有旨)로 만들어 내려 보내게 하라.” 하였다. 이어 기기국 총판(機器局總辦) 박정양(朴定陽)을 영접관(迎接官)에 도로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敎曰: “欽差幫辦北洋大臣, 不日出來云. 水原留守出待南陽境上, 迎候護行事, 令政院有旨成送.” 仍命機器局總辦朴定陽, 還差迎按官.”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11월 7일(정미) 2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 유수 김기석을 친군 우영사에 임명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기석(金箕錫)을 친군 우영사(親軍右營使)로 삼았다.

初十日. 以水原留守金箕錫爲親軍右營使.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1월 10일(경술) 1번째기사>

정치/행정

이헌직을 수원부 유수에 임명하다

특별히 이헌직(李憲植)을 발탁하여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十一日. 特擢李憲植爲水原府留守, 以李源命爲藝文館提學.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1월 11일(신해) 1번째기사>

정치/행정

장용영외사를 수원 유수가 겸하는 규례에 따라 친군서영의 영사를 도신에게 겸임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친군 서영(親軍西營)이 이미 설치되었으니 영사(營使)는 수원 유수(水原留守)가 장용영 외사(壯勇營外使)를 겸하는 옛 규례를 본받아 해도(該道)의 도신(道臣)이 예 겸(例兼)하도록 하비(下批)하고, 군사 편제는 일체 경영(京營)의 규례대로 마련하라.” 하였

다. (…)

敎曰：“親軍西營，既已設置矣．營使倣水原留守之兼壯勇外使古規，該道道臣例兼，下批．凡於軍制，一依京營例磨鍊．” (…)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5월 12일(경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의정부에서 수원 유수 이헌직을 한 임기동안 임임시킬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수원 유수(水原留守)가 이제 막 임기가 끝났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수원 유수는 부임한 이후로 마음을 다해 일처리를 잘하여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여놓은 일을 마감하지 못하였고, 겨울철에 일이 또 복잡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체시킨다는 것은 또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니, 수원 유수 이헌직(李憲植)을 한 임기 동안 임임(仍任)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議政府啓：“華留纔報瓜矣．此守臣，莅營之後，殫心施措，自有厥效．而役簿猶未告勩，冬務又值旁午．茲際遞易，亦係可念，水原留守李憲植，限一瓜仍任何如?” 允之．(…)

<고종실록 23권, 고종 23년 11월 4일(계사)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윤자덕을 수원부 유수에 임명하다

이헌직(李憲植)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윤자덕(尹滋惠)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初三日．以李憲植爲全羅道觀察使，尹滋惠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 3월 3일(신묘)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작헌례를 행하고 수원 유수 윤자덕 등을 승자하다

전교하기를, “이 해의 이 날 직접 작헌례(酌獻禮)를 진행하고 보니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헌종(憲宗) 때 일을 한 사람 가운데 문무 시종관(文武侍從官)으로서 나이 61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모두 특별히 한 자금을 하라.” 하였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윤자덕(尹滋惠)과 호군(護軍) 이교창(李教昌)을 승자(陞資)하였다.

敎曰：“是年是日，親行酌獻禮，彌切感慕之懷．憲宗朝逮事人中，文武侍從年六十一歲人，竝特加一資．” 水原留守尹滋惠·護軍李教昌，陞資．

<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 7월 18일(계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김홍집을 수원부 유수에 임명하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윤자덕(尹滋惠)은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二十五日．以判府事金弘集爲水原府留守，尹滋惠爲工曹判書．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3월 25일(경오)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유수 김홍집이 수원부 성안의 소란에 대해 보고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홍집(金弘集)의 장계(狀啓)에, “본 수원부(水原府) 성안에서 수백 명의 무뢰배가 밤을 타서 소란을 일으키고 인가(人家)를 파괴했습니다. 이처럼 전례없는 괴변이 영하(營下)에서 일어났으니 신은 황공하기 그지없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진압하고 체포할 책임은 전적으로 중군(中軍)에게 있는데, 본부(本府)의 중군 윤영규(尹泳奎)는 조정을 하직한 지 오래되었지만 병으로 부임하지 못했으니 우선 파출(罷黜)해야 합니다.

판관(判官)에 대해 말하더라도 사변이 생긴 후에 즉시 소란을 종식시키지 못했으니 사체(事體)로 보아 응당 논파(論罷)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고가 생긴 때에 단 하루라도 관리가 없어서는 안 되니 당분간 죄를 진 채로 거행하는 내용으로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듣기에 극히 놀라운 일이다. 무엇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는지 아직 자세히 모르겠으나 이곳의 중요성은 다른 곳과는 심히 다른데 감히 이렇게 창궐하는 일이 생겼으니 민습(民習)이 무엄하고 거리낌 없는 것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일을 주도한 자를 특별히 탐지하여 잡아다가 엄히 신문하여 죄상을 밝히고 그외에 모여든 자들은 깨우쳐 신칙하고 돌려보내 각자가 안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군을 해당 조에서 구전(口傳)으로 각별히 가려 차출(差出)하여 당일로 내려보내게 하라. 경은 대죄(待罪)하지 말라.” 하였다.

水原留守金弘集狀啓, 以爲: “本府城內無賴輩數百名, 乘夜作孽, 打破人家. 似此無前變怪, 出於營下, 臣不勝惶恐俟勘. 此時彈壓緝捕之責, 專在中軍, 而本府中軍尹泳奎, 辭朝許久, 病不赴任, 爲先罷黜. 雖以判官言之, 事出之後, 不能趁即息鬧, 揆以事體, 固當論罷. 當此有事之時, 不可一日無官, 姑令戴罪舉行, 請令廟堂稟處事.” 教曰: “聞極驚駭, 緣何起鬧, 雖姑未詳, 此地所重, 尤異於他, 而乃敢有此猖獗之舉, 民習之無嚴無憚, 胡至於此? 首倡之漢, 另議捉得, 嚴覈得情, 餘外屯聚者, 曉飭退送, 使之各自安堵. 中軍令該曹口傳各別擇差, 使之當日下送, 卿其勿待罪.”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10월 17일(기축) 5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유수 김홍집이 수원부의 소란에 대해 보고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홍집(金弘集)의 장계(狀啓)에, “본부(本府)의 무뢰배가 소란을 일으킨 일을 사핵(查覈)하여 등문(登聞)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승지 김명기(金命基), 전 군수 윤수영(尹守榮)으로 말하더라도 현장의 격변에 대해 조사하건대 실로 평소에 쌓인 원한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조정에 수치를 끼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 죄상을 의금부(義禁府)에서 나문(拿問)하여 처리하게 하고 아울러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미련하고 완고한 무리가 거리낌 없이 소란을 일으켰으니, 참으로 극히 통탄할 일이다. 지금 이미 자세히 조사하여 경중을 구별하였으니, 또 어찌 품지하여 복계(覆啓)하기를 기다리겠는가? 경은 반드시 상소 내용대로 감단(勘斷)한 후에 등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十四日, 水原留守金弘集狀啓, 以爲: “本府無賴輩作孽事, 查覈登聞. 而第以前承旨金命基·前郡守尹守榮言之, 苟究當場之激變, 實由平日之斂怨, 貽羞朝列, 莫此爲甚. 其罪狀, 令王府

拿問處之事，竝請令廟堂稟處。”教曰：“愚頑之類，無憚作鬧，誠極痛惋。而今既究覈，區別輕重，則又何待稟覆，卿須依跋辭，勘斷後登聞。”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11월 14일(병진)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김홍집이 화성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상소를 올리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외람되게 은혜로운 명을 받들어 화성(華城)을 보호하고 다스린 지 지금 벌써 세 계절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신은 재능과 도량이 본래 못사람들을 진정(鎮定)시키기에 부족하고 정사가 풍속을 교화시키기에 부족합니다. 요즘 나쁜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생겨 이틀 사이에 온 성안이 다 술렁거리 공포에 사로잡히고 죄 없는 사람도 화를 당했으니, 이것을 참으로 고을을 설치한 후로 없었던 하나의 액운입니다. 신이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 교화를 잘 선양하여 소란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으며, 때마침 서울에 있다 보니 또 제때에 탄압하지 못하고 이미 나타났을 때 난리를 그치게 하지 못하였으니, 첫째도 신의 죄이고, 둘째도 신의 죄입니다.

옥안(獄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조정에 보고하여 평의해 정하기를 청한 후에 중요한 죄수가 옥에서 도망쳤으니, 감수(監守)로서 제대로 신칙하지 못하였는데도 아직 형장(刑章)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거듭 성상께 걱정을 끼쳤으니, 이것은 더욱 신의 큰 죄입니다. 일의 실상에 대한 조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어 감히 사사로운 일을 말할 수 없으므로 이제야 비로소 상소를 올려 스스로 탄핵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빨리 벌을 내려 신의 죄를 다스리고, 다시 위세와 명망이 평소에 드러난 사람을 선발하여 부절(符節)을 가지고 진무(鎮撫)하게 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태도를 바꾸어 선을 행하여 다같이 대도(大道)에 이르도록 한다면, 나랏일에 있어서 참으로 매우 다행스럽고 신의 소원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완악한 무리들이 범한 죄를 이제 막 조사하여 법으로 다스렸다. 계도하고 가지런히 하며 탄압하는 것이 당장 급한 일이다. 그런데 사직하는 글이 갑자기 이르니 참으로 또한 뜻밖이다. 이처럼 인책하여 물러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니 더욱 보호하고 다스리는 데 힘써 의지하여 맡긴 뜻에 부응하라. 이것이 내가 크게 바라는 것이다.” 하였다.

十六日. 判府事金弘集疏略: “臣猥奉恩命, 保釐華城, 今已三閱序矣. 顧臣器量素乏於鎮物, 政理未足以化俗. 日者莠民之擾出, 而兩日之間, 滿城波蕩, 風鶴時警, 池魚亦殃, 此誠設邑後所未有之一劫運也. 臣既爲民表率, 不能宣明教化, 而消亂於未萌, 時適在京, 又不能臨機彈壓, 而止亂於已形, 一則臣罪, 二則臣罪. 奏讞之後, 要囚逃獄, 監守失飭, 尙稽刑章, 重貽九重之憂, 此尤臣之大罪也. 覈事旁午, 未敢言私, 今始露章自劾. 伏乞聖慈亟降威罰, 治臣之罪, 更簡威望夙著者, 持節鎮撫, 俾斯民革面從善, 偕底大道, 則在國事誠爲幸甚, 而臣之願畢矣.” 批曰: “頑徒干犯, 纔已行查以法矣. 道齊彈壓, 目下急務, 而巽章忽至, 誠亦意外. 如是爲引, 萬萬過當. 益勉保釐, 庸副倚毗, 是予厚望也.”

<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1889) 11월 16일(무오)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김병시를 수원부 유수에 임명하다

김병시(金炳始)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首)로 삼았다.

初七日. 以金炳始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27권, 고종 27년 10월 7일(계묘)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윤영신을 수원부 유수에 임명하다

윤영신(尹榮信)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首)로 삼았다.

以尹榮信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27권, 고종 27년 10월 24일(경신)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 유수 윤영신이 현릉원 화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인을 조사하여 보고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윤영신(尹榮信)이 올린 장계(狀啓)에, “현릉원(顯隆園)의 화소(火巢)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인들을 명확히 조사하였더니, 번고를 격발시킨 것은 실로 해당 참봉(參奉) 민병성(閔丙星)이 평소에 원망을 샀고 또 함부로 많은 나무를 베어낸 데 있었습니다. 그 죄상을 유사(有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고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水原留守尹榮信狀啓: “顯隆園火巢內作挈罪人等, 明查則激變實由乎該參奉閔丙星, 平日斂怨, 況又濫斫夥多. 其罪狀尙攸司稟處” 事. 教曰: “令廟堂稟處.”

<고종실록 28권, 고종 28년 6월 23일(을묘) 3번째기사>

#### 정치/행정

민영상을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특별히 송세헌(宋世憲)을 발탁하여 공조 판서(工曹判書)삼고, 이경직(李耕植)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조병식(趙秉式)을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한장석(韓章錫)을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이원일(李源逸)을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로, 윤영신(尹榮信)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민영상(閔泳商)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特擢宋世憲爲工曹判書, 以李耕植爲忠淸道觀察使, 趙秉式爲黃海道觀察使, 韓章錫爲京畿觀察使, 李源逸爲咸鏡道觀察使, 尹榮信爲江原道觀察使, 閔泳商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28권, 고종 28년 9월 19일(경진) 2번째기사>

#### 정치/행정

민영규를 수원부 유수에 임명하다

민영규(閔泳奎)를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이경직(李耕植)을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았다.

以閔泳奎爲水原府留守, 李耕植爲京畿觀察使.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3월 22일(갑진) 3번째기사>

#### 정치/행정

조병직을 수원 유수에 제수하다

(...) 조병직(趙秉稷)을 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로 삼았다.(...)



(…)趙秉稷爲水原府留守.(…)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5월 22일(무술) 3번째기사>

정치/행정

김가진에게 수원 유수를 서리하라고 명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병직(趙秉稷)이 수일 내로 사조(辭朝)할 것이기에 그 사이 교섭사무 협판(交涉事務協辦) 김가진(金嘉鎭)이 서리(署理)하라고 명하였다.

命水原留守趙秉稷，不日辭朝，其間，交涉事務協辦金嘉鎭署理.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6월 24일(기사) 4번째기사>

정치/행정

수원유수의 보고에 따라 동학의 두목을 잡은 수원의 집사 엄태영에게 포상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병직(趙秉稷)의 장계(狀啓)를 등보(騰報)한 것을 보니, ‘동학당(東學黨) 괴수를 사로잡아 바친 본영의 집사(執事) 엄태영(嚴泰永)에게 상을 주는 것이 옳겠는지 어떻겠는지를 해당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포위를 뚫고서 비적(匪賊)의 괴수를 사로잡아 바쳤으니, 지극히 가상한 일입니다. 격려하는 의리에서 응당 표창하는 은전이 있어야 하겠으니, 엄태영(嚴泰永)을 좋은 지방의 변장(邊將) 자리를 만들어 차하하여 보내고, 그가 거느린 아병(牙兵:대장의 휘하에 있는 병정)에게는 해당 수신(守臣)으로 하여금 넉넉히 상을 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卽見水原留守趙秉稷狀啓騰報，則 ‘擒納東學魁首之本營執事嚴泰永施賞當否，令該衙門稟處’ 爲辭矣. 冒險突圍，獲納匪魁，極爲嘉尙. 其在激勸之義，合有褒賞之典，嚴泰永善地邊將作窠差送，所率牙兵，令言守臣從厚施賞事，分付何如?” 允之.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1월 11일(계미) 2번째기사>

정치/행정

지방 제도의 개정에 따라 수원군이 인천부에 속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짐(朕)이 우리나라의 유신(維新)을 맞아 실지 혜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자 하니 짐의 말을 명심하여 들을 것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가 편안해지는데 백성을 보존하는 방도는 정사를 하는 관리들에게 달려 있다.

우리 왕조의 지방 제도가 완전히 훌륭한 것이 못되다 보니 주(州), 현(縣)이 일정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관리가 많아서 가혹한 세금을 거듭 거두는 폐해가 백출(百出)하여 위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백성들의 실정이 위에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아! 거문고와 비파가 조화되지 않으면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 만큼 정사하는 도리는 때에 따라서 알맞게 제정해야 한다. 이제 감사(監司), 유수(留守) 등 낡은 제도를 없애고 부(府)와 군(郡)의 새 규정을 정하여 폐단의 근원을 막아버림으로써 만백성과 함께 태평한 복을 함께 누리려고 하니 그대들 모든 관리와 백성은 짐의 뜻을 체득하라.”

하였다.

칙령(勅令) 제97호, <감영, 안무영과 유수 폐지에 관한 안건 [監營按撫營竝留守廢止件] > 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칙령 제98호,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 [地方制度改正

件] > 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지방 제도(地方制度)>

### 제1조

전국을 23부(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아래에 열거하는 각 부를 둔다.

한성부(漢城府), 인천부(仁川府), 충주부(忠州府), 홍주부(洪州府), 공주부(公州府), 전주부(全州府), 남원부(南原府), 나주부(羅州府), 제주부(濟州府), 진주부(晉州府), 동래부(東萊府), 대구부(大邱府), 안동부(安東府), 강릉부(江陵府), 춘천부(春川府), 개성부(開城府), 해주부(海州府), 평양부(平壤府), 의주부(義州府), 강계부(江界府), 함흥부(咸興府), 갑산부(甲山府), 경성부(鏡城府)

### 제2조

앞 조항 외에는 종래의 목(牧), 부(府), 군(郡), 현(縣)의 명칭과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명(官名)을 다 없애고 읍(邑)의 명칭을 군(郡)이라고 하며 읍의 장관(長官)의 관명을 군수(郡守)라고 한다.

### 제3조

각 부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한성부(漢城府) 【한성군(漢城郡), 양주군(楊州郡), 광주군(廣州郡), 적성군(積城郡), 포천군(抱川郡), 영평군(永平郡), 가평군(加平郡), 연천군(漣川郡), 고양군(高陽郡), 파주군(坡州郡), 교하군(交河郡)이다.】

인천부(仁川府) 【인천군(仁川郡), 김포군(金浦郡), 부평군(富平郡), 양천군(陽川郡), 시흥군(始興郡), 안산군(安山郡), 과천군(果川郡), 수원군(水原郡), 남양군(南陽郡), 강화군(江華郡), 교동군(喬桐郡), 통진군(通津郡)이다.】

충주부(忠州府) 【충주군(忠州郡), 음성군(陰城郡), 연풍군(延豐郡), 괴산군(槐山郡), 제천군(堤川郡), 청풍군(淸風郡), 영춘군(永春郡), 단양군(丹陽郡), 진천군(鎭川郡), 청안군(淸安郡), 여주군(驪州郡), 용인군(龍仁郡), 죽산군(竹山郡), 음죽군(陰竹郡), 이천군(利川郡), 양지군(陽智郡), 원주군(原州郡), 정선군(旌善郡), 평창군(平昌郡), 영월군(寧越郡)이다.】

홍주부(洪州府) 【홍주군(洪州郡), 결성군(結城郡), 덕산군(德山郡), 한산군(韓山郡), 서천군(舒川郡), 비인군(庇仁郡), 남포군(藍浦郡), 보령군(保寧郡), 임천군(林川郡), 홍산군(鴻山郡), 서산군(瑞山郡), 해미군(海美郡), 당진군(唐津郡), 면천군(沔川郡), 태안군(泰安郡), 대흥군(大興郡), 청양군(淸陽郡), 예산군(禮山郡), 신창군(新昌郡), 온양군(溫陽郡), 아산군(牙山郡), 정산군(定山郡)】

공주부(公州府) 【공주군(公州郡), 연기군(燕岐郡), 은진군(恩津郡), 연산군(連山郡), 석성군(石城郡), 부여군(扶餘郡), 노성군(魯城郡), 옥천군(沃川郡), 문의군(文義郡), 회덕군(懷德郡), 진잠군(鎭岑郡), 평택군(平澤郡), 보은군(報恩郡), 회인군(懷仁郡), 영동군(永同郡), 청산군(靑山郡), 황간군(黃岡郡), 청주군(淸州郡), 전의군(全義郡), 목천군(木川郡), 천안군(天安郡), 직산군(稷山郡), 안성군(安城郡), 진위군(振威郡), 양성군(陽城郡), 진산군(珍山郡), 금산군(鎭山郡)이다.】

전주부(全州府) 【전주군(全州郡), 여산군(礪山郡), 고산군(高山郡), 임피군(臨陂郡), 함열군(咸悅郡), 옥구군(沃溝郡), 용안군(龍安郡), 익산군(益山郡), 부안군(扶安郡), 만경군(萬頃郡), 김제군(金堤郡), 금구군(金溝郡), 고부군(古阜郡), 흥덕군(興德郡), 정읍군(井邑

군), 태인군(泰仁郡), 장성군(長城郡), 고창군(高敞郡), 무장군(茂長郡), 영광군(靈光郡)이다.】

남원부(南原府)【남원군(南原郡), 구례군(求禮郡), 운봉군(雲峯郡), 곡성군(谷城郡), 순천군(順天郡), 광양군(光陽郡), 임실군(任實郡), 장수군(長水郡), 진안군(鎭安郡), 담양군(潭陽郡), 순창군(淳昌郡), 옥과군(玉果郡), 창평군(昌平郡), 용담군(龍潭郡), 무주군(茂朱郡)이다.】

나주부(羅州府)【나주군(羅州郡), 해남군(海南郡), 진도군(珍島郡), 강진군(康津郡), 장흥군(長興郡), 흥양군(興陽郡), 보성군(寶城郡), 영암군(靈巖郡), 무안군(務安郡), 함평군(咸平郡), 능주군(綾州郡), 화순군(和順郡), 동복군(同福郡), 광주군(光州郡), 남평군(南平郡), 낙안군(樂安郡)이다.】

제주부(濟州府)【제주군(濟州郡), 대정군(大靜郡), 정의군(旌義郡)이다.】

진주부【진주군(晉州郡), 고성군(固城郡), 진해군(鎭海郡), 사천군(泗川郡), 곤양군(昆陽郡), 남해군(南海郡), 단성군(丹城郡), 산청군(山淸郡), 하동군(河東郡), 거창군(居昌郡), 안의군(安義郡), 함양군(咸陽郡), 함천군(陝川郡), 초계군(草溪郡), 삼가군(三嘉郡), 의령군(宜寧郡), 칠원군(漆原郡), 함안군(咸安郡), 창원군(昌原郡), 웅천군(熊川郡), 김해군(金海郡)이다.】

동래부(東萊府)【동래군(東萊郡), 양산군(梁山郡), 기장군(機張郡), 울산군(蔚山郡), 언양군(彦陽郡), 경주군(慶州郡), 영일군(迎日郡), 장기군(長鬐郡), 흥해군(興海郡), 거제군(巨濟郡)이다.】

대구부(大邱府)【대구군(大邱郡), 경산군(慶山郡), 칠곡군(漆谷郡), 인동군(仁同郡), 성주군(星州郡), 지례군(知禮郡), 고령군(高靈郡), 선산군(善山郡), 개령군(開寧郡), 김산군(金山郡), 의성군(義城郡), 의흥군(義興郡), 군위군(軍威郡), 비안군(比安郡), 밀양군(密陽郡), 청도군(淸道郡), 영천군(永川郡), 자인군(慈仁郡), 신녕군(新寧郡), 하양군(河陽郡), 창녕군(昌寧郡), 영산군(靈山郡), 현풍군(玄風郡)이다.】

안동부(安東府)【안동군(安東郡), 청송군(靑松郡), 진보군(眞寶郡), 영양군(英陽郡), 영덕군(靈德郡), 영해군(寧海郡), 청하군(淸河郡), 영천군(榮川郡), 예안군(禮安郡), 봉화군(奉化郡), 순흥군(順興郡), 풍기군(豐基郡), 함창군(咸昌郡), 용궁군(龍宮郡), 예천군(醴泉郡), 상주군(尙州郡)이다.】

강릉부(江陵府)【강릉군(江陵郡), 울진군(蔚珍郡), 평해군(平海郡), 삼척군(三陟郡), 고성군(高城郡), 간성군(杆城郡), 통천군(通川郡), 흡곡군(歙谷郡), 양양군(襄陽郡)이다.】

춘천부(春川府)【춘천군(春川郡), 양구군(楊口郡), 홍천군(洪川郡), 인제군(麟蹄郡), 횡성군(橫城郡), 철원군(鐵原郡), 평강군(平康郡), 김화군(金化郡), 낭천군(狼川郡), 회양군(淮陽郡), 금성군(金城郡), 양근군(楊根郡), 지평군(砥平郡)이다.】

개성부(開城府)【개성군(開城郡), 풍덕군(豐德郡), 삭녕군(朔寧郡), 마전군(麻田郡), 장단군(長湍郡), 이천군(伊川郡), 안협군(安峽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김천군(金川郡), 수안군(遂安郡), 곡산군(谷山郡), 신계군(新溪郡)이다.】

해주부(海州府)【해주군(海州郡), 연안군(延安郡), 배천군(白川郡), 웅진군(瓮津郡), 강령군(康翎郡), 장연군(長淵郡), 송화군(松禾郡), 풍천군(豐川郡), 안악군(安岳郡), 장연군(長連郡), 은율군(殷栗郡), 재령군(載寧郡), 신천군(信川郡), 문화군(文化郡), 서흥군(瑞興郡), 봉산군(鳳山郡)이다.】

평양부(平壤府)【평양군(平壤郡), 안주군(安州郡), 숙천군(肅川郡), 순안군(順安郡), 용강

군(龍岡郡), 영유군(永柔郡), 증산군(甌山郡), 함종군(咸從郡), 삼화군(三和郡), 자산군(慈山郡), 강서군(江西郡), 덕천군(德川郡), 영원군(寧遠郡), 희천군(熙川郡), 맹산군(孟山郡), 영변군(寧邊郡), 운산군(雲山郡), 순천군(順天郡), 개천군(价川郡), 은산군(殷山郡), 성천군(成川郡), 양덕군(陽德郡), 삼등군(三登郡), 강동군(江東郡), 상원군(祥原郡), 중화군(中和郡), 황주군(黃州郡)이다.】

의주부(義州府)【의주군(義州郡), 창성군(昌城郡), 벽동군(碧潼郡), 삭주군(朔州郡), 용천군(龍川郡), 철산군(鐵山郡), 선천군(宣川郡), 광산군(郭山郡), 정주군(定州郡), 가산군(嘉山郡), 박천군(博川郡), 태천군(泰川郡), 구성군(龜城郡)이다.】

강계부(江界府)【강계군(江界郡), 후창군(厚昌郡), 자성군(慈城郡), 초산군(楚山郡), 위원군(渭原郡), 장진군(長津郡)이다.】

함흥부(咸興府)【함흥군(咸興郡), 정평군(定平郡), 영흥군(永興郡), 고원군(高原郡), 문천군(文川郡), 덕원군(德原郡), 안변군(安邊郡), 단천군(端川郡), 이원군(利原郡), 북청군(北靑郡), 홍원군(洪原郡)이다.】

갑산부(甲山府)【갑산군(甲山郡), 삼수군(三水郡)이다.】

경성부(鏡城府)【경성군(鏡城郡), 부령군(富寧郡), 길주군(吉州郡), 명천군(明川郡), 경원군(慶源郡), 경흥군(慶興郡),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 회령군(會寧郡), 무산군(茂山郡)이다.】

#### 제4조

각부 관청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한성부【한성】, 인천부【인천 제물포(濟物浦)】, 충주부【충주】, 홍주부【홍주】, 공주부【공주】, 전주부【전주】, 남원부【남원】, 나주부【나주】, 제주부【제주】, 진주부【진주】, 동래부【동래 부산(釜山)】, 대구부【대구】, 안동부【안동】, 강릉부【강릉】, 춘천부【춘천】, 개성부【개성】, 해주부【해주】, 평양부【평양】, 의주부【의주】, 강계부【강계】, 함흥부【함흥】, 갑산부【갑산】, 경성부【경성】

부칙(附則)

#### 제5조

본 칙령은 개국(開國) 504년 윤(閏)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본 칙령을 시행하는 날에 현임 부윤(府尹),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 서윤(庶尹), 판관(判官), 현령(縣令), 현감(縣監)의 관직에 있는 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본 칙령에 의하여 각기 그 군(郡)의 군수가 된다.

二十六日. 詔曰: “朕이 邦國의 維新함을 當하야 實德을 民에 施코져 하노니 朕言을 明聽하라. 民은 邦의 本이니 本이 固하야사 邦이 寧할지니 民을 保하느 道는 行政官에 在하니라. 本朝의 地方制度가 盡善치 못함으로 州縣이 齊치 못하고 冗員이 多하야 苛稅重斂하느 弊害가 百出하야 上惠가 下究치 못하고 下情이 上達치 못하니 嗚呼라, 琴瑟이 不調하면 更張함을 要하느니 行政하느 道는 時를 因하야 宜를 制함이니 今에 監司·留守等舊制를 廢하고 府와 郡의 新規를 定하야 弊源을 防杜하야 兆民으로더부러 泰平하느 福을 共享코져 하니 汝百執事와 庶民은 朕意를 體하라.” 勅令第九十七號, 監營·按撫營並留守廢止件, 裁可頒布. 勅令第九十八號, 地方制度改正件, 裁可頒布.

地方制度: 第一條, 全國을 分하야 二十三府의 行政區劃으로 하야 左開하느 各府를 置함: 漢城府·仁川府·忠州府·洪州府·公州府·全州府·南原府·羅州府·濟州府·晉州府·東萊

府·大邱府·安東府·江陵府·春川府·開城府·海州府·平壤府·義州府·江界府·咸興府·甲山府·鏡城府。第二條，前條의 外는 從來의 牧·府·郡·縣의 名稱及府尹·牧使·府使·郡守·庶尹·判官·縣令·縣監의 官名을 盡廢하고 邑의 名稱을 郡이라 하며 邑의 長官의 官名을 郡守라 함。第三條，各府의 管轄區域은 左와 如함：漢城府【漢城郡·楊州郡·廣州郡·積城郡·抱川郡·永平郡·加平郡·連川郡·高陽郡·坡州郡·交河郡】。仁川府【仁川郡·金浦郡·富平郡·陽川郡·始興郡·安山郡·果川郡·**水原**郡·南陽郡·江華郡·尙桐郡·通津郡】。忠州府【忠州郡·陰城郡·延豐郡·槐山郡·堤川郡·淸風郡·永春郡·丹陽郡·鎭川郡·淸安郡·驪州郡·龍仁郡·竹山郡·陰竹郡·利川郡·陽智郡·原州郡·旌善郡·平昌郡·寧越郡】。洪州府【洪州郡·結城郡·德山郡·韓山郡·舒川郡·庇仁郡·藍浦郡·保寧郡·林川郡·鴻山郡·瑞山郡·海美郡·唐津郡·沔川郡·泰安郡·大興郡·青陽郡·禮山郡·新昌郡·溫陽郡·牙山郡·定山郡】。公州府【公州郡·燕岐郡·恩津郡·連山郡·石城郡·扶餘郡·魯城郡·沃川郡·文義郡·懷德郡·鎭岑郡·平澤郡·報恩郡·懷仁郡·永同郡·青山郡·黃磎郡·淸州郡·金義郡·木川郡·天安郡·稷山郡·安城郡·振威郡·陽城郡·珍山郡·錦山郡】。全州府【全州郡·礪山郡·高山郡·臨陂郡·咸悅郡·沃溝郡·龍安郡·益山郡·扶安郡·萬頃郡·金堤郡·金溝郡·古阜郡·興德郡·井邑郡·泰仁郡·長城郡·高敞郡·茂長郡·靈光】。南原府【南原郡·求禮郡·雲峰郡·谷城郡·順天郡·光陽郡·任實郡·長水郡·鎭安郡·潭陽郡·淳昌郡·玉果郡·昌平郡·龍潭郡·茂朱郡】。羅州府【羅州郡·海南郡·珍島郡·康津郡·長興郡·興陽郡·寶城郡·靈巖郡·務安郡·咸平郡·綾州郡·和順郡·同福郡·光州郡·南平郡·樂安郡】。濟州府【濟州郡·大靜郡·旌義郡】。晉州府【晉州郡·固城郡·鎭海郡·泗川郡·昆陽郡·南海郡·丹城郡·山淸郡·河東郡·居昌郡·安義郡·咸陽郡·陝川郡·草溪郡·三嘉郡·宜寧郡·漆原郡·咸安郡·昌原郡·熊川郡·金海郡】。東萊府。【東萊郡·梁山郡·機張郡·蔚山郡·彥陽郡·慶州郡·迎日郡·長鬐郡·興海郡·巨濟郡】。大邱府【大邱郡·慶山郡·添谷郡·仁同郡·星州郡·知禮郡·高靈郡·善山郡·開寧郡·金山郡·義城郡·義興郡·軍威郡·比安郡·密陽郡·淸道郡·永川郡·慈仁郡·新寧郡·河陽郡·昌寧郡·靈山郡·玄風郡】。安東府【安東郡·青松郡·眞寶郡·英陽郡·盈德郡·寧海郡·淸河郡·榮川郡·禮安郡·奉化郡·順興郡·豐基郡·咸昌郡·龍宮郡·醴泉郡·尙州郡】。江陵府【江陵郡·蔚珍郡·平海郡·三陟郡·高城郡·杆城郡·通川郡·歙谷郡·襄陽郡】。春川府。【春川郡·楊口郡·洪川郡·麟蹄郡·橫城郡·鐵原郡·平康郡·金化郡·狼川郡·淮陽郡·金城郡·楊根郡·砥平郡】。開城府【開城郡·豐德郡·朔寧郡·麻田郡·長湍郡·伊川郡·安峽郡·兔仁郡·平山郡·金川郡·遂安郡·谷山郡·新溪郡】。海州府【海州郡·延安郡·白川郡·甕津郡·康翎郡·長淵郡·松禾郡·豐川郡·安岳郡·長連郡·殷栗郡·載寧郡·信川郡·文化郡·瑞興郡·鳳山郡】。平壤府【平壤郡·安州郡·肅川郡·順安郡·龍岡郡·永柔郡·甑山郡·咸從郡·三和郡·慈山郡·江西郡·德川郡·寧遠郡·熙川郡·孟山郡·寧邊郡·雲山郡·順川郡·价川郡·殷山郡·成川郡·陽德郡·三登郡·江東郡·祥原郡·中和郡·黃州郡】。義州府【義州郡·昌城郡·碧潼郡·朔州郡·龍川郡·鐵山郡·宣川郡·郭山郡·定州郡·嘉山郡·博川郡·泰川郡·龜城郡】。江界府【江界郡·厚昌郡·慈城郡·楚山郡·渭原郡·長津郡】。咸興府【咸興郡·定平郡·永興郡·高原郡·文川郡·德源郡·安邊郡·端川郡·利原郡·北青郡·洪原郡】。甲山府【甲山郡·三水郡】。鏡城府【鏡城郡·富寧郡·吉州郡·明川郡·慶源郡·慶興郡·穩城郡·鍾城郡·會寧郡·茂山郡】。第四條，各府廳의 位置는 左와 如함：漢城府【漢城】。仁川府【仁川濟物浦】。忠州府【忠州】。洪州府【洪州】。公州府【公州】。全州府【全州】。南原府【南原】。羅州府【羅州】。濟州府【濟州】。晉州府

【晉州】．東萊府【東萊釜山】．大邱府【大邱】．安東府【安東】．江陵府【江陵】．春川府【春川】．開城府【開城】．海州府【海州】．平壤府【平壤】．義州府【義州】．江界府【江界】．咸興府【咸興】．甲山府【甲山】．鏡城府【鏡城】．附則．第五條，本令은 開國五百四年閏五月一日로부터 施行함．第六條，本令施行하는 日에 時任하는 府尹·牧使·府使·郡守·庶尹·判官·縣令·縣監의 官職에 在하는 者는 別로 辭命을 用하지 아니하여도 本令에 依하여 各其郡의 郡의 郡守가 되음．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5월 26일(병신)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 [地方制度官制改正件]> 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 전국의 23개 부(府)를 13개 도(道)로 개정하였는데 수부(首府)의 위치는 경기도(京畿道)

【수원(水原)】， 충청북도(忠淸北道)【충주(忠州)】， 충청남도(忠淸南道)【공주(公州)】， 전라북도(全羅北道)【전주(全州)】， 전라남도(全羅南道)【광주(光州)】， 경상북도(慶尙北道)【대구(大邱)】， 경상남도(慶尙南道)【진주(晉州)】， 황해도(黃海道)【해주(海州)】， 평안남도(平安南道)【평양(平壤)】， 평안북도(平安北道)【정주(定州)】， 강원도(江原道)【춘천(春川)】， 함경남도(咸鏡南道)【함흥(咸興)】， 함경북도(咸鏡北道)【경성(鏡城)】이다.

각도(各道)에는 관찰사(觀察使) 1인(人)， 주사(主事) 6인， 총순(總巡) 2인을 두며 한성(漢城)의 5서(署) 구역에는 특별히 1부(府)를 두는데 부청(府廳)의 위치는 그대로 둔다. 한성부(漢城府)에는 판윤(判尹) 1인， 소윤(少尹) 1인， 주사(主事) 5인을， 광주(廣州)·개성(開城)·강화(江華)·인천(仁川)·동래(東萊)， 덕원(德源)·경흥(慶興)에는 부윤(府尹) 1인을， 제주(濟州)에는 목사(牧使) 1인， 주사 2인을 두었다. 13도에서 관할하는 339개 군(郡)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군수(郡守)는 그대로 두었다.

勅令第三十六號， 地方制度官制改正件， 裁可頒布． 全國二十三府， 以十三道改正， 而首府位置： 京畿道【水原】， 忠淸北道【忠州】， 南道【公州】， 全羅北道【全州】， 南道【光州】， 慶尙北道【大邱】， 南道， 【晉州】 黃海道【海州】， 平安南道【平壤】， 北道【定州】， 江原道【春川】， 咸鏡南道【咸興】， 北道【鏡城】． 各道， 置觀察使一人·主事六人·總巡二人． 漢城五署區域， 特置一府． 府廳位置， 仍舊漢城府， 置判尹一人， 少尹一人， 主事五人． 廣州·開城·江華·仁川·東萊·德源·慶興則置府尹一人， 濟州置牧使一人， 主事二人， 十三道所管三百三十九郡， 以五等分定而郡守仍舊．

<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8월 4일(양력) 4번째기사>

## 정치/행정

### 서상조가 장헌 세자와 정조 대왕의 존호를 올리는 예식을 거행할 것을 청하다

특진관(特進官) 서상조(徐相祖)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아, 우리 장헌 세자(莊獻世子)는 슬기로운 자태가 탁월하고 좋은 이름이 일찍이 드러났습니다. 영조(英祖)를 효성스럽게 섬겨서 순(舜) 임금의 섭정(攝政)했던 것과 같이 큰 공을 세워 도왔고 정조(正祖)를 낳아 계(啓)처럼 어진 아들로 천명을 잇게 하여 명을 받고 정사를 대리한 지 자그마치 14년이나 됩니다.

정조는 하늘이 낸 성인으로서 바다와 같은 효성을 지녔으며 어렵고 큰 왕업을 이어 빛내는

일에 힘을 썼으니, 온 세상을 경륜하는 학문으로 문화를 발전시켰고 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여 만물이 다 함께 혜택을 입었습니다. 임금 자리에 있던 25년 동안 지극한 인과 두터운 은택이 온 세상에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오늘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비궁(闕宮)에 묘악(廟樂)이 연주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여 심지어는 거처하고 식사하는 것도 화려하고 맛있는 것으로 하지 않았으며 임금 노릇을 해도 즐거움이 없다고 하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존호(尊號)도 받지 않으면서 마치 궁한 사람이 갈 곳이 없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러니 정조의 뜻이 어떠하였던가를 우러러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신하된 사람들의 답답하고 원통하고 억울함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아, 추송하는 예식을 아직까지 빠뜨린 것은 국가에서 미처 하지 못한 전례이고 바로 백성들의 끝없는 한입니다. 예나 지금을 상고하고 인정과 예법을 참작해 볼 때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삼가 혜경궁(惠慶宮)께서 지어 내린 책을 살펴보건대, 정조가 이르기를, ‘원자(元子)가 탄생하여 갑자년(1804)이 되면 15살이니 전위(傳位)할 수 있을 것이다. 전위한 후에 나는 자궁(慈宮)을 모시고 화성(華城)으로 옮겨간다면 경모궁(景慕宮)께서 미처 행하지 못하고 있는 전례(典禮)를 펴 방도가 있을 것이다. 나는 영조의 하교를 직접 받았으므로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지극히 원통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의리이다. 오늘 여러 신하들이 나의 의리를 따라서 감히 거론하지 못하는 것도 의리이며, 다른 날 여러 신하들이 새 임금의 의리를 따라 받들어 행하는 것도 역시 의리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히 지은 현용원(顯隆園)의 지문(誌文)에는, ‘만아들을 기다려서 중대한 일을 맡기셨으니, 크게 보답하고자 하는 지극한 바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 슬픔입니다. 경신년(1800)에 정조께서 붕어(崩御)한 뒤로 매우 중요한 전례이나 세상일이 다단하여 신중히 하고 망설이다가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온 나라의 한결같은 심정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이 의리는 천지간에 내놓아도 어긋나지 않고 백대를 기다려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니, 누가 감히 여기에 이의를 달겠습니까? 논의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전날에 하지 못한 것을 지금에서야 청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숙종(肅宗) 때 단종(端宗)의 위호(位號)를 회복한 것도 수백 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임금의 종통(宗統)에 구애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성종(成宗) 때 덕종(德宗)을 추송한 전례가 있으니, 같은 소목(昭穆)이 일세(一世)가 된다는 것은 근거로 삼을만한 예법이 많습니다.

신의 증조부인 문헌공(文獻公) 서유린(徐有隣)은 옛날 정조 때에 오랫동안 임금 가까이 있어서 임금의 속마음을 잘 알았으며, 신의 할아버지인 문정공(文貞公) 서준보(徐俊輔)는 벼슬하지 않았을 때부터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셨기에 벌써 보고들은 것이 많았습니다. 철종(哲宗) 을묘년(1855)에 이르러 나이가 86세였는데 정조의 옛 신하로서 상소하여 정조 대왕에게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하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한평생 고심하고 정성을 기울인 일이라 차마 침묵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비록 윤희를 받지 못하였지만 고령에 의로운 발기를 한 뜻이 어찌 공연한 것이겠습니까?

신은 지위가 높지 못하고 학식도 부족하니, 어떻게 감히 주제넘게 의견을 제기하겠습니까만, 이 전례에 대해서는 신이 참람됨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이렇게 목욕재계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이 소장을 내려 조정에 있는 신하들에게 하문하여 빨리 장현 세자를 왕으로 추송하는 예를 거행하고 계속해서 정조 대왕에게 존호를 추상하는 전례를 거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는 우리 정묘(正廟)께서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감히 말하지 못했던

문제이다. 김이 일찍이 영묘(英廟)의 어서(御書)인 『금등명간편(金騰銘肝篇)』을 삼가 읽었는데, 거기에, ‘누가 금(金)으로 장식한 별장에서 천만 년 살려고 하는가? 나는 망사대(望思臺)를 지은 것도 후회한다.’ 는 내용이 있었으니, 아, 참으로 성인의 절절한 마음은 백대가 지나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구나. 경은 경의 집안사람이 대대로 의리를 지켰다는 이유로 이를 근거로 이런 청을 제시하였으니, 실로 우연치 않은 일이고 김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듯하다. 이것은 더없이 중요하고 신중해야 할 전례인 만큼 지금 수의(收議)할 것이다.” 하였다.

特進官徐相祖疏略：猗我莊獻世子，睿姿卓越，令聞夙彰。孝事英考，贊弘功於舜攝，篤生正宗，綿寶籙於啓賢，受命代理，至于十四年之久矣。正廟以天縱之聖，有準海之孝，承艱大之業·懋緝熙之功，經天緯地之學，奎運載屆，君國子民之德，庶品咸囿。在宥二十五年之間，至仁厚澤，洋溢區宇，到于今於戲不忘矣。嗚呼！每以闕宮之廟樂未稱，至痛在心，至於起居飲食，不御華美，南面無樂爲教，所以不受徽號，若窮無歸。聖意所在，可以仰揣，而爲當日臣子者，抑塞痛冤，當何如哉？噫！追崇之尙闕，乃國家未遑之典也，卽臣民無窮之恨也。稽之古今，參以情禮，焉有是理乎？謹按惠慶宮撰下冊子，有曰：“正廟曰‘元子誕生，若至甲子年，當十五，可以傳位，而傳位後子奉慈宮，移御華城，則景慕宮未行之典，當有獲伸之道矣。子則親承英廟下教，不敢不遵。雖極痛冤，亦一義理也。今日諸臣，從予義理，不敢舉議，亦義理也。他日諸臣，從新王義理奉承行之，亦義理也。’” 且親製顯隆園誌文，有曰：“有待於錫胤而托重，得遂誕報之大願至祝。” 嗚呼！痛矣。庚申天崩之後，典禮至重，世故多端，鄭重越起，式至于今，舉國大同之情，無由洩矣。此義理，建天地而不悖·埃百世而不惑，敦敢異議於其間哉？議者或以爲前日所未行者，今乃陳請爲說，則有不然者。肅廟朝復端宗位號也，在於數百年之後。又或以爲有礙宗統爲說，則有不然者。成廟朝，有追崇德宗之例。同昭穆爲一世，禮多可據矣。臣之曾祖文獻公臣有隣，昔在正廟，久被密邇，稔承精微之聖意，臣之祖文貞公臣俊輔，自布衣，昵侍左右，已多見聞矣。至哲宗乙卯年八十有六，以正廟之舊臣，陳疏請正宗大王追上尊號，此乃平生苦心血誠，不忍泯默者也。伊時雖未蒙允，老年義起，意豈徒然哉？臣位未崇顯識且謏劣，何敢出位建白，而至於此典禮，臣不揆僭越，敢此齋沐呼籲。伏乞下臣此章，詢議于在廷諸僚，亟舉莊獻世子追王之禮，繼行正宗大王尊號之典。云云。

批曰：“此我正廟不忍言不敢言之事也。朕小子嘗伏讀英廟御書『金騰銘肝篇』，有曰：‘孰是金莊千秋？予悔望思之臺。’ 嗚呼！聖意之惻怛，百世興感。而卿以卿家人，世守義理。爰有稽徵，有此建請，事固不偶，而惟朕平日之志，若有待於今日矣。此係莫重莫慎之典禮也，今當收議矣。”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1899) 8월 3일(양력) 2번째기사>

## 정치/행정

기근에 재물을 내어 진휼한 정태엽을 수원군에 조용하라고 명하다

수원군(水原郡)에 전 사과(前司果) 정태엽(鄭台燁), 전 도사(前都事) 염금록(廉今祿)과 무주군(茂朱郡)에 사는 전 오위장(前五衛將) 김병택(金炳澤)을 중추원(中樞院)에서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내부(內部)에서 그들이 재물을 내어 기근에 진휼한 것과 관련한 도(道)와 군(郡)의 보고에 의거하여 표창하기를 청했기 때문이다.

命水原郡前司果鄭台燁·前都事廉今祿·茂朱郡前五衛將金炳澤，令中樞院調用。內部以‘其捐財賑飢，因道郡報告’，而請賞也。

<고종실록 42권, 고종 39년 4월 10일(양력)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전보사관제에서 수원 등이 2등사에 첩입되다

칙령 제2호, <육군 위생원 관제(陸軍衛生院官制) 【육군 군대의 의료 실무를 맡아본다. 의관(議官) 2인, 조호장(調護長) 3인, 조호수(調護手) 8인이다.】 신설 건(新設件)>, 제3호, <전보사 관제(電報司官制) 중 【2등사(二等司)에서 안주(安州)를 빼고 1등사(一等司)에 안주, 은율(殷栗)을 첩입(添入)하며, 2등사에 수원(水原), 광주(光州), 삭주(朔州), 창성(昌城), 벽동(碧潼), 초산(楚山), 위원(渭原)을 첩입한다.】 개정 건>, 제4호, 국내 전보(電報) 규칙을 【생략함】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勅令第二號, 陸軍衛生院官制掌陸軍軍隊之醫務. 置醫官二人·調護長三人·調護手八人. 新設件. 第三號, 電報司官制中二等司에 安州을 刪호고 一等司에 安州·恩津을 添入호고 二等司에 水原·光州·朔州·昌城·碧潼·楚山·渭原을 添入. 改正件. 第四號, 國內電報規則【略】. 竝裁可頒布.

<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 2월 10일(양력) 2번째기사>

## 정치/행정

### 수원 군수 이완용을 봉상사 제조에 임명하다

수원 군수(水原郡守) 이완용(李完鎔)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七日. 水原郡守李完鎔任奉常司提調, 敍勅任官三等.

<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 7월 7일(양력) 1번째기사>

## 정치/행정

### 황후가 권업 모범장 순행시 호위할 수행원을 임명하다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조중응(趙重應), 시종원 경(侍從院卿) 윤덕영(尹德榮), 궁내부 차관(宮內府次官) 고미야 미호마쓰 [小宮三保松], 황후궁 대부(皇后宮大夫) 윤우선(尹寓善), 장례원 예식관(掌禮院禮式官) 고희성(高羲誠), 궁내부 대신 비서관(宮內府大臣祕書官) 다다 칸 [多田桓], 김동완(金東完), 궁내부 사무관(宮內府事務官) 아오야마 센지로 [青山淺治郎], 장례원 예식관 류찬(劉燦), 시종원 전의(侍從院全義) 박종환(朴宗桓), 전膳사 장膳(典膳司掌膳) 안순환(安淳煥), 궁내부 대신 관방사무 촉탁(宮內府大臣官房事務囑託) 사에키 다쓰 [佐伯達] 를 황후가 수원 권업 모범장(水原勸業模範場)으로 행행(幸行)할 때 호종(扈從)하라고 명하였다.

二十五日. 完興君李載冕·內閣總理大臣李完用·宮內府大臣閔丙奭·農商工部大臣趙重應·侍從院卿尹德榮·宮內府次官小宮三保松·皇后宮大夫尹寓善·掌禮院禮式官高羲誠·宮內府大臣祕書官多田桓·金東完·宮內府事務官青山淺治郎·掌禮院禮式官劉燦·侍從院典醫朴宗桓·典膳司掌膳安淳煥·宮內府大臣官房事務囑託佐伯達, 命水原勸業模範場皇后幸行時扈從.

<순종실록 3권, 순종 2년 5월 25일(양력)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군에 목장 개설을 준비하고 시흥, 고양 등의 지역에도 목장지를 미리 정하도록 하다

수원군(水原郡)에 인원을 파견하여 목장 건설을 준비하였다. 또 시흥(始興), 고양(高陽), 양천(楊川) 등 군(郡)의 목장 예정지(豫定地)를 조사(調查)하라고 명하였다.

四日. 命派員于水原郡, 準備牧場開設, 又調查始興·高陽·陽川等郡豫定牧場之地.

<순종실록부록 5권, 순종 7년 9월 4일(양력)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인원을 수원 등지에 파견하여 도자기 고요지를 조사하게 하다**

인원을 보내어 수원(水原), 대전(大田), 아산(牙山), 괴산(槐山), 영동(永同), 밀양(密陽), 김해(金海), 동래(東萊), 양산(梁山), 함천(陝川), 칠곡(漆谷), 달성(達城), 고령(高靈), 청도(淸道), 경주(慶州), 영일(迎日) 등지의 도자기(陶瓷器) 고요지(古窯址)를 조사하도록 명하였다.

十五日. 命派員于水原·太田·牙山·槐山·永同·密陽·金海·東萊·梁山·陝川·漆谷·達城·高靈·淸道·慶州·迎日等地, 調查陶瓷器古窯之址.

<순종실록부록 5권, 순종 7년 9월 15일(양력) 1번째기사>

#### 정치/행정

**수원군 화산이 동물원의 야수를 키우는데 적합한가를 알아보도록 하다**

동물원 기사(動物園技師) 오카다 노부토시 [岡田信利] 를 수원군(水原郡) 화산(花山)에 보내어 해당 동물원의 야수(野獸)를 키우는 데 적합한 땅인가를 알아보도록 명하였다. 이어서 수시로 출장 가도록 하였다.

命派動物園技師岡田信利于水原郡花山, 選擇地段之可合於牧養該園野獸, 仍令隨時出張.

<순종실록부록 5권, 순종 7년 9월 15일(양력) 2번째기사>

#### 정치/행정

**이왕직에게 명하여 경기도 수원군 오목천리에 목마장을 설립하게 하다**

이왕직(李王職)에게 명하여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안룡면(安龍面) 오목천리(梧木川里)에 목마장(牧馬場)을 설립하게 하였다. 【대정(大正) 3년 10월 목장 설립 예정계획(牧場設立豫定計劃)을 세웠다. 같은 해 3월에 지면(地面)을 측량하여 민유지를 사들이고 아울러 국유지를 대부받았다. 목장지 면적 합계 350정보로 같은 해 4월 처음 사무소와 마굿간〔厩舍〕를 건립하고 이 때에 이르러 준공하였다. 처음에 종마 1두와 번식마 4두를 구입하여 대정 5년에 마굿간을 증축하고 빈마(牝馬) 5두를 구입하여 해마다 개량하여 대정 9년에 말 50두를 수용하였다. 첫 해의 경비 4만 7,730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드디어 12만 6,970원에 이르렀다. 후에 소화(昭和) 4년 4월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 권업모범장(權業模範場)인 강원도(江原道) 회양(淮陽)의 난곡목장(蘭谷牧場)을 이전대로 합병하여 이왕직 난곡목장(李王職蘭谷牧場)이라 개칭하였다.】

九日. 命本職設立牧馬場于京畿道水原郡安龍面梧木川里. 【大正三年十月牧場設立豫定計劃. 同年三月, 測量地面, 買受民有地, 並受國有地貸附. 場地面積合計三百五十町步. 同年四月, 始建事務所並厩舍, 至是竣功焉. 初購入種馬一頭·蕃殖馬四頭, 至大正五年, 增築厩舍, 購入牝馬五頭, 逐年, 改良, 至大正九年, 馬匹五十頭收容. 初年經費四萬七千七百三十圓, 每年增加, 遂至十二萬六千九百七十圓. 後至昭和四年四月, 移轉合併于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之江原道淮陽蘭谷牧場, 改稱李王職蘭谷牧場】

<순종실록부록 6권, 순종 8년 11월 9일(양력) 1번째기사>

### (3) 사법

#### 정치/사법

삼성에서 모반에 연루된 왕화 등을 국문코자 하니, 수원부에 가두어 국문토록 하다

대간과 형조에서 글을 같이 올리었다. “신들이 가만히 김가행(金可行)·박중질(朴仲質)과 장님 이흥무(李興茂)의 공사(供辭)를 보니 대체(大體)에 관계되므로, 지난날에 글을 연명(連名)으로 올려 그 정상을 밝히기를 청하였사운데, 전하께서 관대한 은혜를 베푸시어 외방(外方)에 나누어 귀양보내셨으므로, 신 등은 종사(宗社)를 위하여 대단히 상심(傷心)했습니다. 지금은 왕화(王和)·왕거(王据)와 중[僧] 석능(釋能)의 공사(供辭)도 또한 대체(大體)에 관계되어, 이흥무의 공초(供招)와 더불어 사건은 같고 실정은 다른데도, 몰래 반역을 모의했으니, 왕법(王法)에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시어 즉시 대간(臺諫)과 법관(法官)으로 하여금 위의 항목의 사람들을 잡아서 한 곳에서 국문(鞫問)하여 그 죄를 밝게 처단하고, 아울러 당여(黨與)까지 죄를 다스려 화단(禍端)을 막게 하소서. 신 등의 말하는 바는 천만세(千萬世)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한 것이오니,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정신을 두어 깊이 살피소서.” 임금이 대간(臺諫)과 법관(法官)에게 명하여 중질(仲質)·왕화(王和) 등을 잡아 수원부(水原府)에 모아 두고 가서 이들을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臺諫·刑曹同章曰：臣等竊觀金可行·朴仲質·盲人李興茂招辭，關係大體。前者連章，請明其狀，殿下布寬大之恩，分配於外，臣等爲宗社痛心。今者，王和·王据·僧釋能招辭，亦關係大體。與興茂之招，事同情異，而潛謀不軌，王法不赦之罪也。（…）願殿下斷以大義，卽令臺諫·法官，執上項人等，一處鞫問，明正其罪，并治黨與，以杜禍萌。臣等所言，爲千萬世宗社之大計，伏惟殿下留神深省。命臺諫法官，執仲質·王和等，聚于水原府，往鞫之。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6일(병자) 3번째기사>

#### 정치/사법

삼성에서 왕화 등을 수원부에 모아서 대질 심문하게 하였다

대간과 형조에서 장계(狀啓)하였다. “원하옵건대, 왕화(王和)·왕거(王据)·석능(釋能)·이흥무(李興茂)·김가행(金可行)·박중질(朴仲質) 등을 한 곳에서 대질 심문하게 하소서.” 임금이 대간(臺諫)·형조(刑曹)·순군부(巡軍府)에 각기 1원(員)씩을 명하여 양광도 관찰사(楊廣道觀察使)와 함께 수원부(水原府)에 모여서 대질 심문하게 하였다.

○臺諫·刑曹狀啓：“乞將王和·王据·釋能·興茂·可行·仲質等，一處對問。” 上命臺諫·刑曹·巡軍各一員，同楊廣道觀察使，會水原府對問。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1일(신사)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산기 상시 이거이 등을 수원부로 보내 왕화 등을 국문케 하다

산기 상시(散騎常侍) 이거이(李居易)·사헌 중승(司憲中丞) 박신(朴信)·형조 정랑(刑曹正郎) 전시(田時)·순군 지사(巡軍知事) 성보(成溥) 등을 수원부(水原府)에 보내어 왕화(王和)·왕거(王据)·중[僧] 석능(釋能)·김가행(金可行)·박중질(朴仲質)·이흥무(李興茂) 등을 잡아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遣散騎常侍李居易·司憲中丞朴信·刑曹正郎田時·巡軍知事成溥等于水原府，收王和·王

据·僧釋能·金可行·朴仲質·李興茂等，鞫問。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17일(정해)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삼성에서 왕씨의 모반에 연루된 박위 등을 수원에 가서 조사하게 하다

대간과 형조에서 장소(章疏)를 같이 올려 청하였다. “일찍이 듣건대, 대역자(大逆者)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나라의 상전(常典)이오니, 신 등이 장소(章疏)에 연명(連名)하여 청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옵니다. 신 등이 지난번에 장님[盲人] 이흥무(李興茂)의 공초(供招)가 대체(大體)에 관계된 이유로써 장소(章疏)에 연명(連名)하여 아뢰어, 그 무리들을 치죄(治罪)하기를 청하니, 전하께서 즉시 대간(臺諫)과 법관(法官)으로 하여금 수원부(水原府)에 가서 그 죄상(罪狀)을 조사하여 심문하게 하였사오는데, 지금 이흥무와 박중질(朴仲質)의 공초(供招)에 ‘박위(朴葦)가 몰래 시인(廝人: 심부름하는 종)을 보내어 나라의 안위(安危)를 점치게 하고는 왕씨(王氏)를 왕으로 세우려고 도모하여 대역(大逆)을 범하였다.’ 고 하니, 원하옵건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수원부로 잡아 보내어 흥무 등과 더불어 한 곳에서 조사하여 죄상을 밝혀 화(禍)의 발단을 막게 하소서.” 윤희하지 아니하였다.

○乙未/臺諫刑曹同章請曰：嘗聞大逆者不赦，國之常典，臣等所以連章不已者，以此也。臣等頃以盲人興茂之招，關涉大體，連章以聞，請治其黨，殿下卽令臺諫法官至水原府按問其狀。今興茂·仲質招稱：“朴葦潛遣廝人，卜國安危，謀立王氏，以犯大逆。”願令攸司執送水原府，與興茂等一處推明，以杜禍萌。不允。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2월 25일(을미)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전시가 수원에 와서 반역 모의에 대한 염려를 임금께 고하다

전시(田時)가 수원(水原)에서 와서 예궐(詣闕)하여 임금에게 고하였다. “신들이 국문한 김가행·박중질 등의 반역을 모의한 당여(黨與)가 서울 안에 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박위가 나에게 모반(謀叛)하려는 마음이 있음은 오늘날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경오년에 공양왕이 한양(漢陽)으로 옮겨 갔을 적에 정몽주의 말을 곡청(曲聽)하고는 나에게 모반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니, 그렇다면 그가 불측(不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지가 일조일석(一朝一夕)이 아닌데도 오히려 능히 나타내지 못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갑자기 어찌하겠는가? 또 적군(敵軍)과 대진(對陣)하여도 적이 와서 투항(投降)하면 오히려 받아들여 신하로 삼는데, 하물며 박위는 그 재주가 쓸모가 있으니 경솔히 끊을 수가 없음에랴! 혹시 그 일이 사실이라면 그 은총(恩寵)과 이복(利祿)이 그 마음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대우하기를 후하게 한다면 어찌 모반하려는 마음이 있겠는가? 이를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 박위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은 다만 김가행과 박중질이 박위를 빙자하여 난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 것일 뿐이다.”

○田時自水原詣闕，告于上曰：“臣等所鞫可行·仲質等謀逆黨與，在於京中，不可不慮。”上曰：“朴葦之有異心於我，非今日而始然，去庚午年恭讓之遷于漢陽也，曲聽鄭夢周之言，而有異心於我矣。然則其懷不測之心，非一朝一夕，而尙未能發焉，至今日遽何爲哉！且臨敵對陣，而敵有來投，則尙納以爲臣。況葦，其才有用，不可輕絕乎！或其事爲實，則以其寵利未滿其心而然也。待之以厚，則何有異心？知而預待，則葦其如予何！此特可行·仲質等謂葦可憑而爲亂

也.”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3일(임인) 3번째기사>

#### 정치/사법

중승 박신이 수원에서 각 사람의 공사(供辭)를 아뢰다

중승(中丞) 박신(朴信)이 수원(水原)에서 각 사람들의 공사(供辭)를 가지고 와서 아뢰니, 두 시중(侍中)을 불러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왕화·왕거·김가행·박중질·김유의·이흥무 등을 목 베고, 왕우와 박위는 특별히 유사(宥赦)하고, 중 석능(釋能)은 거제도(巨濟島)에 안치시키었다.

○中丞朴信自水原將各人招辭來啓，召兩侍中議之．誅王和·王琚·金可行·朴仲質·金由義·李興茂等；特宥王瑀·朴葦；置僧釋能于巨濟島．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13일(임자)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 기관 능귀 등이 요망한 말을 하므로 처형하다

수원(水原) 기관(記官) 능귀(能貴)와 용구(龍駒: 지금의 용인) 호장(戶長) 희진(希進)이 요망한 말을 만들어, “민간에서 흰 빛깔의 개·말·닭·염소 등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

하였으므로, 모두 참형에 처하여 여러 도에 전해 보이었다.

○水原記官能貴·龍駒戶長希進造妖言：“禁民間犬馬雞羔之色白者．”命皆處斬，傳示諸道．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6일(신축)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윤방경과 하운을 각각 광주와 수원에 안치하다

순군(巡軍)에 명하여 박자안(朴子安)을 베이게 하였다가, 조금 뒤에 도승지 정담(鄭澹)에게 명하여 가서 석방하되, 다만 직첩만 회수하고 장(杖) 1백에 삼척(三陟)으로 귀양보내고, 윤방경(尹邦慶)을 광주(廣州)에, 하운(河崙)을 수원(水原)에 안치(安置)하게 하였다.

○丁酉/命巡軍誅朴子安，尋命都承旨鄭澹往釋之，止收職牒，杖一百，徙于三陟．置邦慶于廣州，河崙于水原．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17일(정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경기좌도 처인현의 겸관인 쌍부현을 혁파하여 도로 수원부에 소속시키다

좌도(左道) 처인(處仁)의 겸관(兼官)인 쌍부현(雙阜縣)을 혁파하여 도로 수원부(水原府)에 붙였다.

○革左道處仁兼官雙阜縣，還屬水原府．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1월 19일(경인) 12번째기사>

#### 정치/사법

병조좌랑 유장을 수원에 유배하다

병조 좌랑(兵曹佐郎) 유장(柳璋)을 수원(水原)에 유배(流配)하고, 참의(參議) 이발(李潑)·좌랑(佐郎) 유면(兪勉)을 파직(罷職)시켰다. 이소을진(李所乙進)이라는 자가 대장(隊長)으

로서 병조 사령(兵曹使令)이 되어 거관(去官)해서 부사정(副司正)이 되었는데, 유장의 집이 소을진의 집과 가까웠다. 집터의 한계[基限]를 다투어 소을진이 유장과 더불어 항형 분쟁(抗衡憤爭)하니, 유장이 본조(本曹)에 고(告)하였다. 이발(李潑)과 유면(俞勉)이 소을진을 불러 장관(長官)을 능멸(陵蔑)한 죄를 수죄(數罪)하고 곧 장(杖)을 때리니, 소을진이 북[鼓]을 쳐서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 내리니, 헌부(憲府)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이소을진(李所乙進)이 비록 병조 사령(兵曹使令)에서 나왔으나 지금 이미 갑사(甲士)가 되었는데, 유장이 사분(私憤)을 가지고 본조(本曹)에 고하여 타상(打傷)케 하였고, 이발과 유면은 동료(同僚)의 사송(私訟)을 믿고 문득 소을진을 때렸으며, 이소을진 또한 하교(下教)를 어기고 월소(越訴)하였으니, 모두 부당(不當)합니다.” 하였다. 이리하여 이 명령이 있는 것이었다. 이소을진도 역시 율(律)에 따라 후래(後來)를 경계하게 하였다.

○乙卯/流兵曹佐郎柳暲于水原. 罷參議李潑·佐郎俞勉職. 有李所乙進者, 以隊長爲兵曹使令, 去官爲副司正. 柳暲家, 與所乙進家近, 爭基限, 所乙進與之抗衡憤爭, 暲告本曹. 潑與勉召所乙進, 數其埋沒長官之罪杖之, 所乙進擊鼓訟冤, 下司憲府. 憲府上言: “李所乙進, 雖出兵曹使令, 今既爲甲士, 暲挾私憤, 告本曹打傷; 李潑·俞勉聽信同僚私訟, 輒將所乙進杖之; 李所乙進亦違教越訴, 俱各不當.” 故有是命. 李所乙進, 亦令照律鑑後.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3월 6일(을묘) 1번째기사>

#### 정치/사법

남성군 홍서를 수원부에 안치하다.

남성군(南城君) 홍서(洪恕)를 수원부(水原府)에 안치(安置)하였다. 홍서가 경사(京師)에 갈 때에 형조 좌랑(刑曹佐郎) 김위민(金爲民)이 서장관(書狀官)이 되었는데, 사사로 소목(蘇木)을 싸 가지고 가다가 행대 감찰(行臺監察) 이유희(李有喜)에게 규찰(糾察)당하고, 타각부(打角夫) 한중로(韓仲老)는 사사로 세포(細布)를 진헌(進獻) 방물(進獻) 櫃(櫃) 속에 감추었다가, 조정(朝廷)에 이르러 내사(內使)가 방물을 점검(點檢)하다가 <감추어 둔 세포를> 보고 힐난(詰難)하니, 홍서 등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홍서가 또 타고 다니던 사삿말[私馬]을 팔아서 채견(綵絹)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때에 이르러 일이 발각되었다. 헌부(憲府)에서 탄핵하니, 임금이 홍서는 공신(功臣)이니 논(論)하지 말라 하고, 그 종관(從官)을 죄주라고 명하였다. (…)

○戊午/置南城君洪恕于水原. 恕之赴京也, 刑曹佐郎金爲民爲書狀官, 私齎蘇木以行, 爲行臺監察李有喜所糾. 打角夫韓仲老私藏細布於進獻方物櫃內, 及至朝廷, 有內使點視方物, 見而詰之, 恕等無以對. 恕又賣所騎私馬, 易綵絹而來. 至是事覺, 憲府劾之, 上以恕功臣勿論, 命罪其從官.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3월 9일(무오)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사헌부 서리에게 욕을 당한 전 사윤 김조를 수원으로 귀양보내다

전 사재감(司宰監) 이진(李震)을 평주(平州)로, 전 사윤(司尹) 김조(金稠)를 수원(水原)으로 귀양보내었다. 이진이 외방(外方)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에, 그 종[奴]을 시켜 황색보[黃色袂]를 가지고 따르게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의 서리(書吏) 김을지(金乙持)가 그것을 보고 빼앗으려 하니, 이진이 듣지 않으므로, 을지(乙持)가 이진의 옷을 붙잡고 서로 힐난(詰難)하였다. 김조가 길에서 만나 이진을 두둔하려고 하다가 또한 을지에게 욕을 당하였다.

김조가 분(忿)을 품고 대원(臺員)을 보고 말하기를, “을지의 무리가 3품(品) 조관(朝官)을 능욕(凌辱)하였으니, 그 죄(罪) 마땅히 형벌을 주어야 한다.” 하였다. 헌부(憲府)에서 탄핵하기를, “이진은 법령을 범하여 황색보를 싸 가지고 다니면서 스스로 굴복하지 않았고, 김조는 자기에게 관계도 없는 일로 대리(臺吏)와 서로 힐난하여 스스로 가볍게 욕을 당했습니다.” 하고, 글을 올려 죄주기를 청하니, 모두 자원(自願)에 의해 부처(付處)하였다. 헌부(憲府)에서 또 을지를 조관(朝官)을 능욕한 죄로써 곤장을 때려 내쫓았다.

○甲申/流前司宰監李震于平州, 前司尹金稠于水原. 震自外入京時, 令其奴帶黃色袱以從. 司憲府書吏金乙持見而欲奪, 震不肯, 乙持執震衣襟相詰. 稠遇諸塗, 欲右震, 亦爲乙持所辱. 稠懷忿, 見臺員曰: “乙持輩埋沒三品朝官, 罪可典刑.” 憲府劾震犯令齎黃色袱不自屈, 稠以不干己事, 與臺吏相詰, 自輕致辱, 上書請罪, 皆自願付處. 憲府又杖乙持, 以凌辱朝官之罪而黜之.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4월 6일(갑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사헌부 장령 이방을 수원에 부처하다

**사헌 장령(司憲掌令) 이방(李倣)을 수원(水原)에 부처(付處)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식목 녹사(式目錄事)를 시켜 장령(掌令) 이방(李倣)을 핵문(劾問)하고 상서하였다. “무릇 대간(臺諫)에서 마땅히 탄핵할 것이 있으면 해당 1원(員)을 제외하고 전체 사(司)를 핵문하지 말라는 것이 이미 나타난 영(令)이 있는데, 지금 이방이 이미 대사헌 박경(朴經)을 탄핵하고, 집의(執義) 권엄(權嚴)·장령(掌令) 김유성(金由性)을 탄핵하였으니, 이미 법을 받드는 뜻에 어긋났고, 또 상소한 지 하루도 못되어, 드디어 스스로 사직하여 공상(供上)하는 각사(各司)로 하여금 대원(臺員)을 청하지 못하게까지 하였으니, 죄가 또한 중합니다.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이방에게 그 사유를 물어 불각(不恪)한 것을 징계하소서.” 임금이 자원 부처(自願付處)를 명하였다. 정부에서 아뢰었다. “이방이 박경(朴經)을 탄핵하는데, 일찍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가 되어 본부(本府)의 의논에 참여하여 판부(判付)가 있기 전에 몽롱(朦朧)하게 계문(啓聞)하였다는 말이 있었으니, 신 등이 이것을 보고 온 부(府)가 스스로 놀랐습니다. 무릇 판부(判付)라고 말하는 것은 소(疏)로 인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소(疏)를 가리킨 것입니까? 또 몽롱이라는 것은 흰 것을 검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 등이 황거정·손홍종의 죄를 의논하였는데, ‘교형(絞刑)에 그칠 것이 아닌 듯합니다.’ 하였으니, 어찌 몽롱하게 계문(啓聞)한 것입니까? 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백관의 장(長)으로써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원컨대, 유사에 내리어 사유를 국문하소서.” 임금이 옳다고 여기어 이방을 순금사 옥에 가두었다. 손홍종·황거정이 임금을 속인 죄가 있는데, 정부(政府)에서 말을 꾸며서 감하도록 청하니, 물의(物議)가 더럽게 여기었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 등에게 일렀다. “이방(李倣)의 말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나, 정부에서 가두기를 청하니, 정부는 내가 공경하고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에는 대신의 청으로 인하여 간관(諫官)을 가둔 일은 없었다. 내가 지금 늙었으니, 세자(世子)가 장차 이를 맡아 해야 할 것인데, 대신의 청으로 인하여 간관(諫官) 가두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 나는 이를 후회한다.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응(李膺)과 의논하고 누설하지는 말라. 만일 대신이 이것을 알면, 형세는 장차 대신이 사직하는 형세가 될 것이다. 대신이 잘못된 줄 알기를 기다려서 마땅히 이방을 용서하겠다.”

○司憲掌令李倣水原付處. 議政府令式目錄事劾問掌令李倣而上書曰: 凡臺諫有所當劾, 除當該



一員外, 毋得闔司劾問, 已有著令. 今倣既劾大司憲朴經, 又劾執義權嚴·掌令金由性, 已違奉法之意, 而又上疏不日, 遂自辭職, 至使供上各司不得請臺, 罪亦重矣. 願令攸司將倣問其事由, 以懲不恪. 上命自願付處. 政府啓曰: 倣劾朴經有曰: “嘗爲知議政府事, 參本府之議, 而未判付前, 嚙嚙啓聞.” 臣等見此, 合府自驚. 凡曰判付者, 因疏也. 此指何疏歟? 且嚙嚙云者, 以白爲黑, 以是爲非之謂也. 向者, 臣等議居正·興宗之罪曰: “不應止於絞也.” 豈是嚙嚙啓聞乎! 臣雖不才, 居百官之長而得聞如是之言乎! 願下攸司, 鞫問事由. 上然之, 下倣巡禁司獄. 興宗·居正, 有欺君之罪, 政府飾辭請減, 物議鄙之. 上謂知申事金汝知等曰: “李倣之言, 固非不是, 而政府請囚. 政府, 予所敬重, 故從之耳, 然前此未嘗有因大臣之請而囚諫官者. 予今老矣, 世子將有此任, 不可示以因大臣之請囚諫官也, 予悔之矣. 其與知議政府事李膺議之, 勿洩. 若大臣知, 則勢將退辭矣. 待大臣知非, 當有倣矣.”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13일(경오)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자원에 따라 이방을 수원에 부처하다

이튿날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이 진언(進言)하였다. “이방이 비록 죄가 있으나, 원컨대, 용서하소서. 신 등이 하지 않은 몽롱한 일을 길게 말하기 때문에 감히 가두기를 청한 것입니다.” 임금이 웃으며, “정승(政丞)이 이방더러 길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우습다.” 하고, 드디어 이방을 수원(水原)에 부처(付處)하게 하였으니, 자원에 따른 것이다.

○翼日, 左政丞成石璘進言曰: “李倣雖有罪, 願宥之. 臣等所不爲嚙嚙之事, 長言之故, 敢請囚耳.” 上笑曰: “政丞謂倣長言, 爲可笑也.” 遂令倣水原付處, 從自願也.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1월 13일(경오)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부사 박강생이 영내의 두곡을 바르게 하다

내자시 윤(內資寺尹) 권상온(權尙溫)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었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권상온이 일찍이 안성(安城)의 수령(守令)이었을 때 두곡(斗斛)을 파서 깎아 내어 깊고 크게 만들어, 백성들에게 무겁게 거두어 사사로이 남에게 주었습니다. 빌건대,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까닭을 안문(安問)하소서.”

이보다 앞서 수원 부사(水原府使) 박강생(朴剛生)이 영내(領內) 각 고을의 두곡(斗斛)을 바르게 교정(校正)하다가, 안성(安城)의 말[斗]이 작다고 하여 그 밑바닥을 파내고 낙인(烙印)을 고쳤었는데, 안성의 아전이 그 말을 가지고 경강(京江) 풍저창(豐儲倉)에 왔었다. 창(倉)의 관원(官員)이 그 말이 크다고 하여 잡아서 호조(戶曹)에 보고하였었다. 이것은 박강생이 간리(奸吏)의 피를 살피지 못하였던 때문이었는데, 처음에 영관(領官)인 수원(水原)의 말을 그 제도보다 지나치게 크게 하여 놓았으나 그 근원을 바로잡지 못한 까닭이었고, 권상온의 죄는 아니었다. 대사헌 박습(朴習) 등이 그 사실을 가리지 못하고, 호방(戶房)의 호장 기관(戶長記官)과 그 양반(兩班)을 지나치게 형벌하여 압슬(壓膝)하기에 이르러, 강제로 추국(推鞠)하여 공사(供辭)를 받아, 권상온의 야관(治官)을 대청(大廳)의 창(窓) 북쪽에 설치하고 야장(冶匠)에게 지시하여 화인(火印)을 위조하여 고의로 말[斗]을 크게 만들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으나, 안성(安城)의 아전[吏]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하여 드디어 거짓으로 자복(自服)하였다. 헌부(憲府)에서 소장(疏狀)을 갖추어 권상온을 친히 국문(鞫問)할 것을 청하니, 권상온이 그 아들 권택(權擇)을 시켜 실봉(實封:소장을 봉(封)함)을 가지

고 신문고(申聞鼓)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게 하였다. “신(臣)이 지난해 9월부터 헌사(憲司)의 규탄(糾彈)을 당하여 한 짓이 없는일을 가지고 추국(推鞠)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호소할 길이 없으니, 사정(事情)이 절박하여 어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자비를 내려서 살펴, 다른 고을에도 공적으로 바로잡도록 특별히 명하여서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풀게 하소서.” 그 조목(條目)이 모두 여덟이었다. 임금이 읽기를 끝나치고 권상온을 의금부에 가두고 여덟 조목(條目)을 추핵(推覈)하라고 명하였다. 형조 참판 이지강(李之剛)·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현맹인(玄孟仁)에게 명하여 박강생·권상온의 옥사(獄事)를 잡치(雜治)하게 하였다.

○癸亥/下內資寺尹權尙溫于義禁府. 司憲府啓: “尙溫曾守安城, 掘削斗斛而深大之, 重斂於民, 私贈於人. 乞收職牒, 按問其故.” 先是, 水原府使朴剛生平校領內各官斗斛, 以安城斗爲小而掘其底, 改烙印. 安城吏將其斗來京江豐儲倉, 倉官以其斗之大, 執報戶曹. 是剛生不察奸吏之謀, 初使領官水原之斗大過其制, 不澄其源故耳, 非尙溫之罪也. 大司憲朴習等不分其實, 戶房·戶長·記官與其兩班過刑, 以至壓膝, 強推取辭, 羅織尙溫設治官廳窓北, 教治匠火印僞造, 故作大斗之罪, 安城之吏不忍其苦, 遂誣伏. 憲府具狀請親問尙溫, 尙溫使其子擇將實封, 擊鼓訴冤曰: “臣自去年九月, 爲憲司所糾, 將無作有推鞠不已, 負屈莫伸, 情迫事切, 罔知所爲. 伏望上慈垂察, 特命公正他官, 以伸冤抑.” 其條凡八. 上覽訖, 命囚尙溫于義禁府, 推覈八條, 命刑曹參判李之剛·左司諫大夫玄孟仁, 雜治剛生·尙溫之獄.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1월 12일(계해)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 부사 조너를 의금부에 보냈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너(趙賚)·전 부사(府使) 허반석(許磐石)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렸으니, 두 사람이 박강생(朴剛生)의 음모에 내통하고, 수원 고을중의 미곡(米穀)의 중기(重記)를 없애 버린 때문이었다.

○庚午/下水原府使趙賚·前府使許磐石于義禁府. 以二人通同朴剛生之謀, 而去水原官中米穀重記故也.

<태종실록 35권, 18년 1월 19일(경오)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의금부에서 죄인을 치죄하는데 수원부사 박강생은 태조 원종공신의 아들이라 직만 파하였다 장윤화(張允和) 등에게 명하여 장형(杖刑)을 차등 있게 속(贖)하게 하였다. 권상온(權尙溫) 등에게는 장형 1백 대를 속(贖)하여 아울러 고신(告身)을 수탈(收奪)하고, 장윤화 등에게는 남의 죄를 실입(失入)한 것에 연좌하고, 권상온은 다만 관고(官庫)의 쌀을 내어 사사로이 향교(鄕校)와 인리(人吏)에게 준 죄에만 연좌되었는데, 의금부(義禁府)에서 조율(照律)하니, 집의(執義) 장윤화는 장(杖) 60대, 장령(掌令) 유빈(柳濱)은 90대, 박안신(朴安臣)은 70대, 지평(持平) 권조(權照)는 60대였으나 아울러 모두 속(贖)을 거두고 고신(告身)을 수탈(收奪)하였다. 내자시 윤(內資寺尹) 권상온·한성 소윤(漢城少尹) 이하(李賀)는 각각 장(杖) 1백 대를 속(贖)하고 모두 직첩(職牒)을 거두었다. 대사헌(大司憲) 박습(朴習)은 원종공신(原從功臣)이라 하여, 지평(持平) 신자근(申自謹)·수원 부사(水原府使) 박강생(朴剛生) 등은 태조(太祖)의 원종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모두 다만 그 직(職)만 파면하였다. 권상온·박강생 등은 모두 망령되게 조사(朝士)와 결탁하기를 좋아하고 권귀(權貴)에 붙좃아

아부하여 세상에 쓰이는 바 되니, 탐욕하고 방종하고 불법(不法)하여 드디어 더럽고 욕된 이름을 얻게 되었다.

○命張允和等贖杖有差，權尙溫等贖杖一百，竝收奪告身。允和等坐(失) [出] 入人罪，尙溫只坐出官庫之米，私給鄉校及人吏。義禁府照律，執義張允和杖六十，掌令柳濱九十，朴安臣七十，持平權照六十，竝皆收贖，收奪告身，內資寺尹權尙溫·漢城少尹李賀，各贖杖一百，皆收職牒。大司憲朴習以原從功臣，持平申自謹·**水原府使**朴剛生等以太祖原從功臣之子，皆只罷其職。尙溫·剛生等皆以妄說結朝士，趨附媚權貴，見用於世，貪縱不法，遂被污辱之名。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9일(경술)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의금부에서 전 수원 부사 박강생 등이 휘의 곡식을 쓴 죄를 청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전 수원 부사(水原府使) 박강생(朴剛生), 조뇌(趙賚)·허반석(許盤石) 등이 휘[斛]의 나머지 곡식을 사사로이 쓴 죄를 청하니,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박강생은 태조의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아들이 되고, 조뇌는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아들이 되고, 허반석은 자기에게 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아울러 면죄하였다. 유순도(庾順道)는 장(杖) 1백대를 속(贖)하고 직첩을 거두는 것은 면제하였으니, 유순도가 안성(安城)의 수령이 되었을 때 전 수령 권상온이 곡초(穀草)를 대납(代納)한 사건을 박습(朴習)에게 망령되게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義禁府請前**水原府使**朴剛生·趙賚·許盤石等私用斛餘之罪，命勿論。剛生爲太祖原從功臣之子，賚爲開國功臣之子，盤石以不入己俱免。庾順道贖杖一百，除收職牒，以順道守安城之時，以前守權尙溫穀草代納事，妄言於朴習也。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9일(경술) 3번째기사>

### 정치/사법

진무 이양을 수원으로 압송하여 자결케 하다

의금부에서 심온과 안수산 등의 죄를 형률에 의거 결정하여 아뢰니, 상왕이 수산의 직첩(職牒)을 거두고 자원(自願)에 따라 예천(醴泉)에 정배하라고 명하고, 또 말하기를, “심온이 비록 중죄(重罪)를 범하였으나, 공비(恭妃)가 이미 주상의 배필이 되어 아들을 많이 둔 경사(慶事)가 있으니, 어찌 다른 사람에 비할 수 있으랴.” 하고, 진무(鎭撫) 이양(李揚)을 명하여, 수원(水原)으로 압송(押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또 가산(家産)을 돌려 주어 장사(葬事)를 지내도록 하였다. 처음에 의금부에서 심온에게 묻기를, “……한 것은 마땅히 상왕을 어떤 처지에 두려고 하였던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이와 같이 억지로 묻는 것은, 나로써 상왕에게 무례(無禮)한 짓을 행하리라고 치는 것이로구나.” 고 하였다. 의금부에서 낭관(郎官)으로 하여금 아뢰기를, “심온이 상왕에게 무례한 짓을 행하고자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상왕이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주상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약(死藥)을 내리고자 하였더니, 지금 이 말을 들으니, 반드시 아니할 수는 없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은 비록 극형에 처하더라도, 그 딸을 폐하고 세우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러할 이치가 없다.” 고 하였다. 후에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들이 수강궁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무례한 짓을 행하고자 한다는 말은, 그의 말과 기색을 본다면, 분격(奮激)한 데서 나온 것이고, 그 실정(實情)은 아니므로, 계본(啓本) 속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고 하였다. 상왕이 주상에게 이르기를, “만약 그렇다면, 마땅히 사약(死藥)

을 내릴 것이고 형(刑)은 더할 수 없다.” 고 하면서 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다.  
 ○義禁府照律濫·壽山等罪以啓，上王命收壽山職牒，從自願配醴泉．又曰：“濫雖犯重罪，恭妃既配主上，有多男之慶，豈可比諸他人？”命鎮撫李揚押送水原，令自盡，又命還給家産，使庀葬事．初，義禁府問濫曰：“云云，當置上王於何地？”答曰：“若如此強問，當以我行無禮於上王．”義禁府使郎官啓：“濫言欲行無禮於上王．”上王深思良久，謂主上曰：“我欲賜死，今聞此言，必不得已也．”又曰：“此人雖處極刑，女子廢立，必無此理．”後義禁府提調等詣壽康宮啓曰：“欲行無禮之言，觀其辭色，發於奮激，非其實情，故於啓本內不錄．”上王謂主上曰：“若然則宜當賜死，不可加刑．”乃賜自盡．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2월 23일(무술)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엄영수의 직첩을 거두고 수원 관노에 소속시키다

선지하기를, “엄영수(嚴永守)의 직첩을 거두어 들이고 수원의 관노(官奴)에 소속하게 하라.”

고 하였다.

○宣旨：“收嚴永守職牒，屬水原官奴．”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7일(신해) 5번째기사>

### 정치/사법

#### 정배된 수원 관속인 엄영수 등에게 휴식처를 주거나 후대하는 것을 금하다

선지(宣旨)하기를, “일찍이 죄를 범하여, 각군에 정배된 내시나 수령들에 대하여, 후자는 그들이 다시 등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휴식처를 정해 주며, 또 후대하는 모양이다. 만약 수원 관속 엄영수(嚴永守)· 해주 충군(海州充軍) 김해(金海)· 금산 충군(錦山充軍) 육영생(陸英生) 들에게 휴식처를 정해 주고 후대하는 일이 발각되는 날에는 마땅히 선지(宣旨)에 복종하지 않은 죄목으로 논하라.” 고 하였다.

○宣旨：“曾犯罪配各官宦者，守令等或意復敘用，定于歇役，且厚待之．其水原官屬嚴永守·海州充軍金海·錦山充軍陸英生等，若定歇役·厚待事覺，則當以宣旨不從論．”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4월 2일(병자)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윤인을 무고한 박자청을 수원으로 귀양보내다

의금부는 강순 등의 죄상을 갖추어 계(啓)하니, 선지하기를, “강순은 곤장 1백 대를 때려 먼 곳으로 귀양보내고, 신보안은 곤장 1백 대를, 정기(鄭其)는 곤장 80대를 때리고, 박자청은 수원으로 귀양보내고, 박신은 파직하라.” 고 하였다. 처음 박자청이 성조(成造)하는 일을 전부 관장하였는데, 수강궁을 경영할 때는 윤인이 대행하게 되자, 강순은 윤인의 능한 점을 시기하여 드디어 재목과 철물 등을 도용한 사실을 들어 소장을 꾸며서 박자청과 신보안 등에게 보여, 진실로 그렇게 한 것처럼 믿게 하고 또 강순이 정기(鄭其)에게 보이니, 정기 역시 허물을 윤인에게 돌리므로, 윤인은 장차 자기를 모함할까 두려워하여 사실을 아뢰었다. 그래서 의금부에 회부되자, 윤인은 문부(文簿)가 갖추어 있고, 강순의 소장은 다 무고(誣告)에 불과하므로, 드디어 죄에 처하였다. 박자청은 한미(寒微)한 집안인데, 태조 대왕을 잡자 때부터 섬긴 관계로 원종 공신(元從功臣)이 되어 드디어 현관(顯官)에 승진하였

었다. 상왕조(上王朝)에 미쳐 무릇 토목 공사가 있으면, 반드시 박자청을 시켜 감독하게 하니, 자청은 속성(速成)을 목표로 하여, 밤낮 없이 계속하므로, 부역하는 자들이 괴롭게 여기는 동시에 구조 역시 견고하지 못한 것이 많았다. 게다가 천성이 너무 강하고 사나워 제 말만 세우니, 부하 관원들이 다 미워하였다.

○義禁府具康順等罪以啓，宣旨：“康順贖杖一百流遠地，辛保安贖杖一百，鄭其贖杖八十，放朴子青于水原，罷朴信之職。”初，子青掌營作事，及營壽康宮，尹麟代之，康順忌其能，乃疏麟盜用材鐵等物事，示子青·保安等以爲信然。順又以示鄭其，其亦咎麟，麟懼其將陷己以聞。及下義禁府，麟文簿具存，順所訴皆誣，遂抵罪。子青門地寒微，事太祖于潛邸，得爲元從功臣，遂至達官。及上王朝，有土木之役，則必命子青監督，子青欲速成，以夜繼日，丁夫苦之，而所構亦多不堅牢，性復剛愎自用，下官皆惡之。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4월 17일(신묘) 6번째기사>

### 정치/사법

#### 상왕이 박자청을 수원에 방치하였다가 소환하라고 하다

임금이 수강궁에 나가서 문안하였다. (...) 상왕이 말하기를, “(...) 박자청(朴子靑)은 본디 무지한지라, 족히 말할 것도 없으니, 다만 유사의 청하는 대로 따라 수원에 방치하였다가 소환할 것이며, 장윤화(張允和)는 실상 무죄하니, 어찌 이로써 기밀에 붙일 말을 누설하였다고 하겠는가. 내가 소환하여 쓰려고 한다.” 하였다.

○上詣壽康宮問安。(...) 上王曰：“(...) 朴子靑本無知，不足數也。但從有司之請，放于水原，宜召還之。張允和實無罪，豈可以此，爲漏洩機密之言乎？予欲召還用之。”

<세종실록 4권, 세종 1년 5월 9일(계축)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김훈이 수원관기 벽단단을 사랑한 불충한 죄로 이종무 등을 연좌하다

이종무·이적·서성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삼성(三省)에 명하여 함께 그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김훈(金訓)은 이적의 누이의 남편으로서, 비록 문과로 출신(出身) 하였으나, 본성이 무예를 좋아하여, 능히 사나운 짐승을 쏘아 잡으므로, 문·무에 재주가 있다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하는 짓은 삼가지 않는 일이 많고, 또 여색을 좋아하였다. 수원 관기 벽단단(碧團團)을 사랑하여, 가만히 서울에 데리고 왔는데, 인덕궁(仁德宮) 궁인 소매향(小梅香)은 벽단단의 숙모이다. 훈이 그 인연으로 남모르게 인덕궁을 만나 보고, 인덕궁은 훈에게 활과 화살 및 입던 옷을 주었다. 적의 아버지 전 대제학 이행(李行)은 본디 <세상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던 사람이라, 자못 그 정상을 알고 집안에 화가 될까봐 두려워하여, 적을 시켜 조정에 고발하였다. (...)

○下李從茂·李迹·徐省于義禁府，命三省雜治之。金訓乃迹姊夫，雖由文科出身，性好武事，能射猛獸，自負有文武才，所爲多不謹。又好女色，愛水原官妓碧團團，密携至京。仁德宮宮人小梅香，碧團團之叔母也。訓夤緣得潛謁仁德宮，仁德宮賜訓以弓矢及所御衣。迹父前大提學行素畏謹，頗知其狀，恐爲家禍，使迹告于朝，(...)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1월 1일(신축) 4번째기사>

### 정치/사법

#### 송존자가 수원기생 우화향과 간통하다

형조에서 계하여 명화 강도(明火強盜) 김영시(金永時)와 장수(長守)를 목베었으니, 평안도 중화군(中和郡)의 도적이었다. 본 상전을 모살(謀殺)한 중 김질동(金叱同)과 구망(仇望)을 목베었으니, 제주 진무(濟州鎭撫) 함인덕(咸仁德)의 집종이었다. 아내를 모살(謀殺)한 중 송존자(宋存者)를 목베었다. 처음에 존자가 수원의 기생 우화향(藕花香)과 간통하였었는데, 그 아내 효도(孝道)가 서울 집에 있는데 옷이라든가 장식품이 꽤 화려하였으므로 빼앗아 우화향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어찌할 계책이 없으므로 하인과 말을 보내어 아내를 속여 말하기를, “상전 댁에서 근일에 굶을 하려고 하니 불가불 와야 할 것이라.” 고 하므로, 아내가 이를 믿고서 화려하게 차리고 상전의 집으로 가는데, 존자가 길에서 마중하여 사람 없는 곳에서 옷과 장식품을 다 빼앗고 목을 졸라서 구렁에다 버렸는데,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났다. 그 일이 발각되어 존자가 베임을 당한 것이었다.

○刑曹啓斬明火強盜金永時·長守，平安道中和郡賊也。斬謀殺本主奴金叱同仇望，濟州鎭撫咸仁德家奴也。斬謀殺妻奴宋存者。初，存者私水原女妓藕花香，其妻孝道在京家，衣粧稍麗，欲奪而贈藕花香，計無由。一日，送僕馬給妻曰：“主家近設神祀，不可不來。”妻信之，盛服赴主家，存者邀於路無人處，盡奪衣粧，絞而棄之壑，俄而妻復蘇，事覺，存者伏誅。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18일(경신) 5번째기사>

## 정치/사법

### 이군생이 귀양지 수원을 벗어남에 권시가 징계를 청하다

지평 권시가 올렸던 봉장(封章)을 가져 오라고 하여 보니, 그 글에 말하기를, “신 등이 그 옥이 생각하옵건대, 순평군 이군생(李群生)과 원윤 이의생(李義生)은 이원생(李元生)과 더불어 함께 불충 불효의 죄를 범하였사운데, 전하께옵서 특별히 관대한 법전을 따라서 그 고신(告身)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다만 안치(安置)하게 하옵시므로, 대간이 여러 번 소를 올려 청하였사오나 끝내 허락하옵심을 얻지 못하였사옵고, 본부에서 이군생과 의생에게 그의 가고 싶은 곳을 물으니, 이군생은 전라도 금구(金溝)라 말하고, 의생은 황해도 재령(載寧)이라 말하옵기로 곧 원하는 대로 중외(中外)에 공문을 보냈삽더니, 이제 듣자온즉 이군생은 수원에 있고, 의생은 원평(原平) 시골 집에 있으면서 그 받들어 이바지하는 품이 전과 같다 하오니, 어찌 뜻과 마음을 곤고하게 하여 개과천선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나이까. 또 듣자오니 이군생은 아내의 병으로 인하여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 하오니, 이미 큰 죄를 범하고서도 특별히 하늘의 은혜를 입었거늘, 밖에 나가 있는 지 단지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서울로 돌아온다는 것은 역시 죄악을 징계하는 도리가 아니오니, 앞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즉시로 이군생에게 명령하시어 금구에 나가 있게 하시고, 또 의생을 재령으로 옮기어 개과천선하도록 하옵시어, 뒷사람에게 경계하게 하옵시면 매우 다행하겠나이다.” 하였으나,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命進持平權僖所上封章，其文曰：臣等竊謂，順平君群生·元尹義生與元生同犯不忠不孝之罪，殿下特從寬典，不奪告身，只令安置，臺諫上疏累請，終不蒙允。本府於群生·義生等，問其願去處，群生則曰全羅道金溝，義生則曰黃海道載寧，卽從其願，移文中外。今聞群生在水原，義生在原平田舍，供具如昔，安有困苦志慮，改過遷善之心乎？又聞群生因妻之病，還于京家。旣犯大罪，特蒙天恩，只居于外，曾不閱月，得還京師，亦非所以懲惡之道也。伏望殿下，卽命群生出居金溝，又移義生於載寧，以期遷善，以戒後來，不勝幸甚。不允。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3일(임신) 3번째기사>

정치/사법

양녀를 낙태하여 죽게 한 수원의 종 부개를 교형에 처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수원(水原)에 사는 본궁(本宮)의 종 부개(夫介)는 사사로운 울분으로 양녀(良女)인 양의가(良衣加)를 결박해서 낙태(落胎)하여 죽게 했으니, 율이 교형(絞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刑曹啓: “水原住本宮奴夫介, 以私憤縛良女良衣加, 墮胎致死, 律應絞.” 從之.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2월 3일(임술) 6번째기사>

정치/사법

아비를 때리고 욕한 수원의 사노 막산을 참형에 처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괴산(槐山)의 죄수로 사람을 때려 죽인 승(僧) 신철(信哲)은 형률이 교형(絞刑)에 해당하고, 수원(水原)의 죄수로 제 아버지를 때리고 욕한 사노(私奴) 막산(莫山)은 법으로 참형(斬刑)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刑曹啓: “槐山囚毆殺人僧信哲, 律該絞. 水原囚毆罵父私奴莫山, 律該斬.” 從之.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2월 14일(계유) 6번째기사>

정치/사법

죽은 전서 강유의 처 선씨의 수원부 초둔 선납사건을 논의하다

작고한 전서(典書) 강유(姜濡)의 아내 선(宣)씨가 수원부(水原府)에서 공납하는 풍저창(豐儲倉) 초둔(草菴)을 대신 납부하고, 그 대가(代價)를 받으려고 좌대언(左代言) 김종서(金宗瑞)에게 청하여 수원 부사 윤처성(尹處誠)에게 서신을 통하였고, 처성이 진성(陳省)을 내어 준 바 있었는데, 그 사실이 발각되어 사헌부에서 탄핵해 아뢰기를, “은밀히 남의 무후(無後)한 부녀자에게 후의를 베푸는 것은 이미 금하는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서가 남몰래 내통하고 글로 청하였으니, 이는 실로 전하를 가까이 모시는 신하로서 법을 받들어 행하는 뜻이 없는 것이오니, 율문에 비추어 그 죄를 결단케 하옵시기를 청하오며, 처성은 은밀히 그 4촌 대모(大母)인 선씨와 약속하고 겉으로는 권요(權要)에 있는 사람의 청에 따라서 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성을 내어 줌으로써 민폐(民弊)를 끼치게 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율문에 의하여 장(杖) 1백에 처하고, 선씨도 역시 함께 율문에 의하여 처벌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金)이 말하기를, “초둔 값이 얼마나 되는가.”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정흠지(鄭欽之)가 대답하기를, “면포(綿布) 한 끝[一端]으로 3번(番)과 바꾸는데, 지금 수원 초둔의 값은 1번을 쌀 9두(斗)로 계산합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그 값이 갑절이나 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다. 전에도 비록 명문화한 법령은 있었으니, 대소(大小)의 사가(私家)에서 각 관아의 공물(貢物)을 공공연하게 선납(先納)하고는 그 값을 민간에게 거두어도 사림(士林)들이 일찍이 허물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서도 역시 인정상 친족 부녀의 소청을 좇았던 것인데, 그 법을 명백히 밝힘에 이르러서 종서가 잘못된 것을 알고 뉘우치면서 즉시 가노(家奴)를 보내서 그 편지를 도로 찾아왔고, 그 글에 이르기를, ‘만약 공의(公義)를 해친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하였으니, 마땅히 그 죄는 면해야 하며, 선씨는 공신(功臣)의 후예이니 거론하지 말 것이며, 처성은 2등을 감하여 장(杖) 80에 처하라.” 하였다. 정흠지가 또 종서의 죄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고, 곧 직사에 나오라고 명하였다.

○故典書姜濡妻宣氏, 欲代納水原府所貢豐儲倉草菴, 受其價, 請左代言金宗瑞, 通書于府使尹

處誠, 處誠給陳省, 事覺. 憲府劾啓: “陰厚無後之婦, 已有禁令. 宗瑞潛通請書, 固無近臣奉法之意, 請按律科罪. 處誠密與四寸大母宣氏約外從權要之請, 給與陳省, 以貽民弊, 請依律杖一百. 宣氏, 亦并照律.” 上曰: “草苴之直幾許?” 大司憲鄭欽之對曰: “縣布一端, 易三番. 今水原草苴, 計直一番米九斗.” 上曰: “其直倍數, 故爭之也. 前此雖有著令, 然大小之家, 以各官貢物, 公然先納, 收價於民, 士林曾不爲咎, 故宗瑞亦以人情, 從族婦之請, 及申明其法, 宗瑞知非悔過, 卽送家奴, 還收其書. 且其書云: ‘若害於義, 不必強爲.’ 宜免其罪. 宣氏, 功臣之後, 勿論. 處誠減二等杖八十.” 欽之又請宗瑞罪, 不允, 尋命就職.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월 24일(기축) 10번째기사>

### 정치/사법

#### 장령 정이한이 양녕대군을 과도하게 접대한 과천과 수원의 수령을 탄핵하다

장령(掌令) 정이한(鄭而漢)이 아뢰기를, (...) 이한(而漢)이 또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김성(金成)을 탄핵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희를 받지 못했는데, 신 등이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니, 김성이 양녕(讓寧)을 달래어 각 고을에 유숙하게 하여, 수령(守令)들에게 법을 어기면서 접대하게 하였으니, 만약 추핵(推劾)하지 않으면 뒷사람이 징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과천(果川)·수원(水原)의 수령(守令)이 연회를 베풀고 풍악을 연주하였으며, 경상(境上)에서 전송까지 하였고, 또 노차(路次)에 지용(支用)되는 도구를 주었으니, 그것이 법을 범한 것이 되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또 윤희하지 아니하였다.

○辛亥/掌令鄭而漢啓: (...) 而漢又啓曰: “臣前日請劾金成, 未蒙俞允. 臣等反復思之, 金成說讓寧, 寓宿各邑, 以致守令違法供億. 若不推劾, 則後人無所懲矣. 果川·水原守令設宴奏樂, 以至餞于境上. 且贈路次支用之具, 其爲犯法, 不可不懲.” 又不允.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0월 24일(신해)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지평 이영건이 양녕을 접대한 과천 수원의 수령을 처벌할 것을 아뢰다

지평(持平) 이영건(李永肩)이 아뢰기를, “양녕(讓寧)의 매사냥하는 행차에 과천(果川)·수원(水原)의 두 고을 수령(守令)들이 법을 어기면서 그를 접대하였사오니,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다만 제 몸도 두려워할 줄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뒷세상 사람들도 또한 감계(鑑戒)할 바가 없겠습니다.”

하니,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조(金鈔)가 답하였기를, “교지(教旨)가 있으니 이후로는 이 일을 아뢰지 말라.” 고 하였다.

○壬戌/持平李永肩啓: “讓寧放鷹之行, 果川·水原兩官守令, 違法供饋, 宜治其罪, 以警其餘. 苟不治罪不惟, 己不知懼, 後人亦無所鑑矣.” 左副承旨金鈔答以: “有旨, 今後勿啓此事.”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1월 6일(임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포물이나 들개를 착복한 수원부사 이흥상의 비리

(...) 이흥상(李興商)이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는데, 매년 흉년이 들어서 민간에 곡식이 귀하기 때문에 환상미(還上米)를 바치는 자가 포물(布物)로 대납(代納)하였다. 흥상(興



商)이 모두 다 억지로 그 값을 깎아서 서울 집으로 보내었으며, 또 일찍이 들깨[荏子] 20여 두(斗)를 포대(布袋)에 담아서 아전에 주었다. 아전이 보낼 곳을 청(請)하니, 대답하기를, “서울 집으로 싸 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에게 주면, 우리 아이가 처리할 것을 알 것이다.” 하였다

○(…) 李興商爲水原府使, 年比不登, 民間穀貴, 糶米者多以布物代納, 興商悉皆抑折其價, 送于京家. 又嘗盛荏子二十餘斗於布袋, 屬諸吏, 吏請其所送處, 答曰: “其齋去京家, 付吾兒, 吾兒知其所處.”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4월 15일(임자)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왕비의 승하에도 수원 등의 관기를 간통한 동학정 이기를 평안도 희천군에 안치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동학정(東鶴正) 기(頤)가 왕비(王妃)의 승하(升遐)하신 것을 듣고도 조금도 슬퍼하는 모양이 없이 주군(州郡)에 횡행하여, 임천(林川)·공주(公州)·수원(水原)의 관기(官妓)를 간통하여 슬픔을 잊고 욕심대로 하였으니, 죄가 장(杖) 60에 도(徒) 1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도형(徒刑)과 장형(杖刑)은 그만두게 하고 평안도 희천군(熙川郡)에 안치(安置)하였다.

○義禁府啓: “東鶴正頤聞王妃升遐, 略無感容, 橫行州郡, 奸林川·公州·水原官妓, 忘哀縱慾, 罪該杖六十徒一年.” 命除徒杖, 安置于平安道熙川郡.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4일(신미) 5번째기사>

#### 정치/사법

##### 형벌을 남용했던 수원 부사 윤처공을 파면시키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윤처공(尹處恭)은 일찍이 평양 소윤(平壤少尹)이 되었을 때 형벌을 남용(濫用)하여 여섯 사람이나 죽였으니, 남에게 잔인(殘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임명되었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한 일의 자취를 상고하여 이를 처리하겠다.” 하더니, 마침내 이를 파면시켰다.

○司憲府啓: “尹處恭嘗爲平壤少尹, 濫刑殺六人, 殘忍人者也. 今除水原府使, 甚爲不可.” 上曰: “予將考所行之跡以處之.” 竟罷之.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8월 1일(병신)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의 죄수 강도 이옥 등 8인을 참수하다

형조(刑曹)에서 상신하기를, “경기(京畿) 수원(水原)의 죄수 강도 이옥(李玉) 등 8인을 율(律)에 의하여 참형(斬刑)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刑曹申: “京畿水原囚強盜李玉等八人, 依律斬.” 從之.

<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 3월 14일(기해)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 등에 숨어있는 김종서의 아들 김승벽 등을 잡아오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안막동(安莫同)의 공초(供招)의 해당 절목에, ‘관노에 영

속(永屬)한 박금(朴金)·영기(永己)·군생(軍生) 등이 모두 이용(李瑬)을 따라 강화(江華)로 갔다.’ 하니, 청컨대 백호(百戶)를 보내어 잡아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학생 이계동(李季同)의 공초(供招)의 해당 절목에, ‘김종서(金宗瑞)의 아들 김승벽(金承璧)이 수원(水原) 관할 안의 광덕(廣德) 윤덕산(尹德山)의 집과 전의(全義) 이노(李老)의 집과 공주(公州)의 농장(農庄) 등지에 숨어 있다.’ 하니, 또한 백호를 보내어 엄습하여 체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義禁府啓曰: “安莫同供招節該: ‘官奴永屬朴金·永己·軍生等, 皆隨瑬往江華.’ 請遣百戶拿來.” 從之. 又啓曰: “學生李季同供招節該: ‘金宗瑞子承璧, 匿於水原任內·廣德尹德山戶·全義李老戶及公州農莊等處.’ 亦遣百戶掩捕.” 從之.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0월 16일(기해) 6번째기사>

### 정치/사법

경기 안산·수원 등지에 왜구가 왔다고 거짓말이 떠돌다

경기 안산(安山)·수원(水原)·광주(廣州)·금천(衿川) 등지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왜구(倭寇)가 와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니 화(禍)가 이미 급박하다.’ 하므로, 도내로 전파하여 서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인민이 두려워하여 가족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서 마을이 모두 비었다가 여러 날이 지나서 그치었다. 감사(監司) 홍심(洪深)이 거짓말을 한 자 약간 명을 가두고 보고하니, <임금이> 곧 정부(政府)에 의논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농삿달을 당하여 사람을 보내어 추문(推問)하여 소요(騷擾)에 이르는 것은 불가하니, 그 도(道)의 도사(都事)로 하여금 순행하여 추국(推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辛亥朔/京圻安山·水原·廣州·衿川等處, 有人訛言曰: “倭寇至, 殺掠人物, 禍已迫矣.” 轉相喧囂, 人民恐懼, 挈家登山, 閭閻一空, 數日而止. 監司洪深囚訛言者若干人以聞. 卽議于政府, 政府啓曰: “今當農月, 不可遣人推問, 以致騷擾. 令其道都事, 巡行推鞠.” 從之.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5월 1일(신해)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 향리 복내가 도망해 있던 조귀동을 잡아 고하니 상을 주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향리(鄉吏) 복내(卜來)가 도망해 있는 조번(趙蕃)의 아들 조귀동(趙貴同)을 잡아서 고(告)하였으니, 청컨대, 면포(綿布) 50필(匹)을 상(賞)으로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義禁府啓: “水原鄉吏卜來捕告在逃趙蕃子貴同, 請賞綿布五十四.” 從之.

<단종실록 12권, 단종 2년 8월 16일(을미)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의금부에 명하여 정종을 수원으로 이배하다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정종(鄭宗)을 수원(水原)으로 이배(移配)하였다. 종친(宗親)·부마(駙馬)·대간(臺諫)들이 여러 차례 청하였기 때문이다.

○乙卯/命義禁府移配鄭宗于水原. 以宗親·駙馬·臺諫屢請也.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12일(을묘) 1번째기사>

정치/사법

수원에 부처한 이전과 그의 노비에게 식량 등을 공급하도록 명하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수원(水原)에 부처(付處)한 이전(李璩)과 아울러 노비(奴婢) 5구(口)에게 매월 양료(糧料)·주육(酒肉)·찬구(饌具)를 지급하라.” 하였다.

○諭京畿觀察使曰：“水原付處璩及奴婢并五口，月給糧料·酒肉·饌具.”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8월 26일(기사) 3번째기사>

정치/사법

수원 임내인 용성사람 김오을망이 조원 등의 난언을 고하다

경기 수원(京畿水原) 임내(任內)인 용성(龍城) 사람 김오을망(金吾乙亡)이 와서 고(告)하기를,

“안성(安城) 사람 조원(趙援)·조복성(趙復誠)·조복평(趙復平)·김윤중(金允中)·황계손(黃季孫) 등이 난언(亂言)하였습니다.” 하니, 의금부 지사(義禁府知事) 신후갑(愼後甲)에게 명하여 군사 10인을 거느리고 가서 황계손 등을 잡아오게 하였다.

○京畿水原任內龍城人金吾乙亡來告：“安城人趙援·趙復誠·復平·金允中·黃季孫等亂言.” 命義禁府知事愼後甲，率軍士十人，拿季孫等以來.

<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7월 20일(신사) 3번째기사>

정치/사법

의금부에 수원 임내인 용성 선군 김오을망 등의 성방을 명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수원(水原) 임내(任內)인 용성(龍城)의 선군(船軍) 김오을망(金吾乙亡)과 비안(比安)의 학생(學生) 이맹덕(李孟德)과 진천(鎭川)의 선군(船軍) 박성(朴成) 등 모두 고(告)한 자를 석방하여 보내라.” 하였다.

○傳旨義禁府曰：“水原任內龍城船軍金吾乙亡·比安學生李孟德·鎭川船軍朴成等，并告者放遣.”

<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8월 30일(신유) 3번째기사>

정치/사법

난언을 한 수원 사람 별시위 김효생을 추국하게 하다

수원(水原) 사람 별시위(別侍衛) 김효생(金孝生)이 난언(亂言)을 하니,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추국(推鞠)하게 하였다.

○水原人別侍衛金孝生亂言，下義禁府推鞠.

<세조실록 13권, 세조 4년 8월 21일(병자) 2번째기사>

정치/사법

수원 도호부사 최제남이 강도를 잡아서 한 계급을 올려주다

처음에 강도(強盜) 정선(丁善)이 도망하였으므로, 이를 잡아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3계급을 뛰어 올려 관직을 상주겠다고 모집(募集)하였더니, 이때에 와서 수원 도호부사(水原都護府使) 최제남(崔悌男)이 그를 잡았으므로, 3계급을 뛰어 올려 상주도록 하였다. 사간원

(司諫院)에서 아뢰기를, “관직을 상준다는 영(令)은 범인(凡人)을 가리켰을 뿐이니, 수령(守令)으로서 그 지경(地境) 안의 도적을 잡은 것은 논공행상(論功行賞)할 것이 못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조(吏曹)에 명하여 다만 한 계급만 올려 주도록 하였다.

○甲寅/初, 强盜丁善逃, 募有捕告者超三資賞職. 至是, 水原都護府事〔都護府使〕崔悌男捕之, 賞超三資. 司諫院啓: “賞職之令, 指凡人耳. 以守令捕境內之盜, 不足論賞.” 命吏曹只加一資.

<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 10월 6일(갑인)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김질이 수원진장 최제남 등을 국문하기를 청하다

대장(大將) 김질(金鎭)이 여러 진(鎭)군사가 군목(軍目)과 맞지 않는다 하여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황효원(黃孝源)·광주진장(廣州鎭將) 유지(庾智)·수원진장(水原鎭將) 최제남(崔悌男)을 국문(鞫問)하기를 청하니, 명하여 황효원은 용서하고 유지·최제남은 의금부(義禁府)에 내리게 하였는데, 조금 뒤에 이를 용서하였다.

○大將金鎭以諸鎭軍士與軍目不準, 請鞫京畿觀察使黃孝源·廣州鎭將庾智·水原鎭將崔悌男, 命宥孝源, 下智·悌男于義禁府, 尋赦之.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6일(무신) 4번째기사>

## 정치/사법

### 의모(義母)와 간통한 중 종혜를 수원부에서 다시 심문하여 치죄하게 하다

중 종혜(宗惠)가 그 의모(義母)와 간통하다가 일이 발각되었는데, 수원부(水原府)에 관계되어 옥사(獄事)가 이루어졌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하여 마땅히 법(法)에 의거하여 죄를 주기로 하였으나, 우참찬(右參贊) 김국광(金國光)이 홀로 말하기를, “마땅히 잡아 와서 다시 신문(訊問)한 다음에 죄를 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김국광의 의논에 따랐다.

○僧宗惠烝其義母, 事覺, 係水原府, 獄成. 議政府議以爲, 當依法科罪, 右參贊金國光獨曰: “宜拿來覈訊, 然後定罪.” 上從國光議.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8월 2일(을미)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장원서 별감 김호산 등이 정병의 입번을 대신한 수원 향리 등의 비리를 아뢰다

장원서 별감(掌苑署別監) 김호산(金好山)·장효지(張孝之), 도총부 나장(都摠府羅將) 노인달(盧仁達), 종[奴] 어리대(於里大)·권이(勸伊)·귀동(貴同)·두함(豆含), 형조 서리(刑曹書吏) 윤여(尹呂), 병조(兵曹)의 종[奴] 정만(鄭萬) 등이 밀봉(密封)하여 아뢰기를,

“1. 부장소(部將所)의 가서원(假書員) 13인이 함부로 정병(正兵)을 놓아, 뇌물을 받은 일이고,

1. 백정(白丁) 백주(白珠), 악공(樂工) 모귀동(牟貴同), 보충군(補充軍) 이산(李山), 진무소 서원(鎭撫所書員) 현유(玄有)·김양선(金楊善), 수원 향리(水原鄉吏) 유중현(兪仲玄), 나장(羅將) 박성미(朴成未), 양인(良人) 홍노(洪老)·최유지(崔有之)·윤호산(尹好山)·김휘(金揮)·최중문(崔仲文)·지경(池敬), 사노(私奴) 강산(姜山)·오좌미(吾左末) 등은 스스로 정병(正兵)의 입번(立番)을 대신하고, 부장(部將)들은 이 사람들로써 가서원(假書員)을 삼아 일체의 군무(軍務)를 맡기었으며,

1. 정병(正兵)을 다른 사람으로써 대신하는 자가 심히 많으니,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일일이 점열(點閱)하게 하고, 호패(號牌)의 일을 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도총부(都摠府)로 하여금 부장소(部將所)의 가서원(假書員) 등을 나치(拿致)하게 하였다.

○掌苑署別監金好山·張孝之·都摠府羅將盧仁達·奴於里大·權伊·貴同·豆含·刑曹書吏尹呂·兵曹奴鄭萬等，密封以啓：一，部將所假書員十三人，擅放正兵，受賂事。一，白丁白珠·樂工牟貴同·補充軍李山·鎮撫所書員玄有·金楊善·水原鄉吏俞仲玄·羅將朴成未·良人洪老·崔有之·尹好山·金揮·崔仲文·池敬·私奴姜山·吾左未等，自代正兵立番，部將等以此人等，爲假書員，一委軍務。一，正兵以他人代之者甚多，令大臣一一點閱，視號牌事。上令都摠府，拿致部將所假書員等。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 1월 16일(정축)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경기 관찰사에게 수원 수인 최경지 등을 서울로 압송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를 받들어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계전(李季專)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수원 수인(水原囚人) 최경지(崔敬之), 진위 수인(振威囚人) 최경손(崔敬孫), 용인 수인(龍仁囚人) 최유림(崔有霖), 남양 수인(南陽囚人) 최옥천(崔玉泉)·이무작(李無作), 안산 수인(安山囚人) 북간(北間) 등은 환궁(還宮)을 기다린 뒤에 사람을 임명해서 서울에 압송(押送)하게 하라.” 하고, 또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안철손(安哲孫)에게 치서하기를,

“공주 수인(公州囚人) 백정(白丁) 불단(佛丹) 등 6명은 사람을 임명해서 행재소(行在所)에 압송(押送)하게 하라.” 하였다.

○癸亥/承政院奉旨馳書于京畿觀察使李季專曰：“水原囚人崔敬之·振威囚人崔敬孫·龍仁囚人崔有霖·南陽囚人崔玉泉·李無作·安山囚人北間等，待還宮後，差人押送于京。” 又馳書忠淸道觀察使安哲孫曰：“公州囚人白丁佛丹等六名，差人押送行在所。”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 3월 3일(계해)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조신손에게 수원의 복재·치악 등지의 도적을 수색하게 하다

행 부호군(行副護軍) 조신손(趙信孫)을 보내어, 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 아울러 20인, 장용대(壯勇隊)·과적위(破敵衛) 아울러 20인을 거느리고, 적인(賊人)을 수원(水原)의 복재(北材)·치악(鷓岳) 등지에서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遣行副護軍趙信孫，領別侍衛甲士并二十人·壯勇隊·破敵衛并二十人，搜捕賊人于水原北材·鷓岳等處。

<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 4월 5일(갑오)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인 최경지가 공을 얻어 죄를 면하고자 민발과 홍원로를 무고하다

이보다 앞서 수원(水原) 사람 최경지(崔敬之)가 그 숙모(叔母)를 죽이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공(功)을 얻어서 죄를 면(免)하고자 하여, 민발(閔發)이 홍원로(洪元老)와 사사로이 옥중에서 말한 것 가운데 남이(南怡)와 더불어 모의(謀議)에 참여한 자 같다고 무고(誣告)하니, 임금이 명하여 민발을 뜰에 두고서 이를 국문(鞫問)하였다. 민발이 대답하기

를,

“최경지(崔敬之)는 신과 더불어 오래된 원한이 있고, 또한 신은 형 민서(閔敍)와 불睦(不睦)한 지 이미 오래인데, 결단코 공모(共謀)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다만 목에 항쇄(項鎖)를 하고 하옥(下獄)하지는 말게 하였다. 이어서 하교(下敎)하기를,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 너더러 ‘우직(愚直)하나 순경(順境)과 역경(逆境)에 절개가 한결같다.’ 고 하셨으니, 나는 네가 모의(謀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까닭은 너의 형에게 연좌(緣坐)된 것이다. 지금 놓아 보내고자 하나, 다만 일이 중대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다.” 하니, 민발이 통곡(痛哭)하고 절하면서 사죄하고 나갔다. 또 홍원로를 국문하였으나 추국(推鞠)을 끝내지 못하고 날이 저무니, 임금이 명하여 모두 인정전(仁政殿) 바깥 뜰에 가두었다.

○先是, 水原人 崔敬之殺其叔母, 久繫獄, 欲要功免罪, 誣告閔發與洪元老, 在獄中私語, 似與南怡參謀者. 命置發于庭, 問之發, 對曰: “敬之與臣有舊怨, 且臣與兄叙, 不睦已久, 斷無共謀之理.” 命只鎖項, 勿下獄, 仍敎曰: “大行大王謂汝愚直, 夷險一節. 予知汝不與謀. 然所以囚之者, 汝兄緣坐耳. 今欲放遣, 第以事重不果.” 發痛哭拜謝而出. 又問元老推鞠, 未竟日暮, 命皆囚仁政殿外庭.

<예종실록 2권, 예종 즉위년 11월 1일(정사)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형조에서 모살을 저지른 수원의 죄인 최경지 등을 교형 등에 처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 수원(水原) 죄수인 양녀(良女) 증원(中元)의 삼촌질(三寸姪)인 최경지(崔敬止)·최경손(崔敬孫), 육촌형(六寸兄)인 최유림(崔洵霖), 칠촌질(七寸姪)인 최옥천(崔玉泉)이 증원의 집 중[戶婢] 북간(北間)과 더불어 증원을 모살(謀殺)하였으니, 죄가 율에 최유림은 존장(尊長)이므로 교형(絞刑)에 처하고, 옥천은 시마 비유(總麻卑幼)이므로 참형(斬刑)에 처하며, 최경지·최경손·북간은 기친 비유(期親卑幼)이므로 능지 처사(凌遲處死)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되, 명하여 최경손은 참형(斬刑)에 처하게 하였다.

○刑曹三覆啓: “(…) 水原囚良女中元三寸姪崔敬止·崔敬孫·六寸兄崔洵霖·七寸姪崔玉泉與中元戶婢北間, 謀殺中元罪, 律該洵霖以尊長絞, 玉泉以總麻卑幼斬, 敬止·敬孫·北間竝以期親卑幼凌遲處死.” 從之. 命敬孫處斬.

<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3월 10일(기축) 5번째기사>

#### 정치/사법

##### 사람을 겁박하여 강도죄를 지은 수원의 죄수 조복을 참부대시에 처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죄수[囚] 양인(良人) 조복(曹卜)이 사람을 겁박한 강도죄(強盜罪)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니, 처자(妻子)는 수교(受敎)에 의하여 변읍(邊邑)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키고, 전옥(典獄)의 죄수[囚] 중[奴] 귀동(貴同)·금토이(今吐伊)가 재범(再犯)한 절도죄(竊盜罪)는 《대전(大典)》에 의하여 교대시(絞待時)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刑曹三覆啓: “水原囚良人曹卜劫人強盜罪, 律該斬不待時, 妻子依受敎, 永屬邊邑奴婢; 典獄囚奴貴同·今吐伊再犯竊盜罪, 依《大典》, 絞待時.” 從之.

<성종실록 13권, 성종 2년 12월 19일(병술) 3번째기사>

### 정치/사법

형조에서 돼지를 겁주어 빼앗은 수원의 죄수 조영찬을 참부대시에 처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죄수 백정(白丁) 조영찬(趙永贊)은 진귀생(秦貴生)의 돼지[豕]를 겁탈하여 강도(強盜)하였는데, 죄가 율(律)에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며, 수교(受教)에 의해 처자(妻子)는 변방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刑曹三覆啓: “水原囚白丁趙永贊, 劫秦貴生家強盜, 罪律該斬不待時, 依受教, 妻子永屬邊邑奴婢.” 從之.

<성종실록 30권, 성종 4년 5월 22일(임자) 5번째기사>

### 정치/사법

형조에서 행인을 위협하여 강도질을 한 수원의 죄수를 참부대시에 처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 초계(草溪)의 죄수인 백정 이금(李今)과 안음(安陰)의 죄수인 백정 파토이(破土伊)·유오좌미(劉吾佐未)가 초점(草帖)의 행인(行人)을 위협하여 강도질한 죄와, 수원(水原)의 죄수인 백정 이종만(李終萬)이 행인을 위협하여 강도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에 해당하니 수교(受教)에 의하여 처자(妻子)는 변방(邊方)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하게 하여야 하며, 경주(慶州)의 죄수인 종[奴] 김석삼(金石三)의 절도를 범한 죄는 율(律)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刑曹三覆啓: “(...) 草溪囚白丁李今·安陰囚白丁破土伊·劉吾佐未劫草帖行人強盜罪, 水原囚白丁李終萬劫行人強盜罪, 律該斬不待時, 依受教, 妻子永屬邊邑奴婢, 慶州囚奴金石三犯竊盜罪, 律該絞待時.” 竝從之.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8일(정유) 3번째기사>

### 정치/사법

형조에서 관악산에서 관병과 대적한 수원 죄수 이물재 등을 참부대시에 처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죄수인 백정(白丁) 이물재(李勿才)와 이지리(李之里)가 관악산(冠岳山)에 둔취(屯聚)하여 관병(官兵)과 맞서서 대적(對敵)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며, 전옥(典獄)의 죄수인 종[奴] 승수(升守)가 종[奴] 신생(申生)·장명(長命)·수명(守命)과 더불어 전의감(典醫監)의 면포(綿布)를 도둑질한 죄는, 수교(受教)에 의하여 승수(升守)는 교대시(絞待時)에 처하여야 합니다.” 하니 아울러 그대로 따랐다.

○刑曹三覆啓: “水原囚白丁李勿才·李之里, 屯聚冠岳山, 拒敵官兵罪, 律該斬不待時, 典獄囚奴升守, 與奴申生·長命·守命, 盜典醫監綿布罪, 依受教升守絞待時.” 竝從之.

<성종실록 32권, 성종 4년 7월 26일(을묘) 4번째기사>

### 정치/사법

형조에서 집에 들어가 강도질을 한 수원 죄수 오득부 등을 노비로 영속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 안산(安山)의 죄수 백정 박검동(朴檢

同)·박정(朴貞), 남양(南陽)의 죄수 백정 종남(從南)·조산(趙山), 수원(水原)의 죄수 백정 오득부(吳得夫)·김말동(金末同)·서맹우(徐孟雨)는 진숙량(陳叔良) 집에 들어가 강도질 하였으니, 죄가 율(律)에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는데, 수교(受教)에 의하여 처자(妻子)는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해야 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刑曹三覆啓: “(…) 安山囚白丁朴檢同·朴貞·南陽囚白丁從南·趙山·水原因白丁吳得夫·金末同·徐孟雨, 劫陳叔良家強盜罪, 律該斬不待時, 依受教, 妻子永屬所居邑奴婢.” 皆從之.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22일(기유) 4번째기사>

### 정치/사법

#### 형조에서 강도질을 한 수원의 죄수 조근동 등을 참부대시에 처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죄수 백정 조은동(趙銀同)·소근모지(小斤毛知)는 도피한 검장(檢長)과 함께 무녀(巫女) 장미(將未)의 집을 겁탈하고 강도질을 하였으니, 죄가 율(律)에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 수교(受教)에 의하여 처자(妻子)는 살고 있는 고을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켜야 하며, 검장도 추포(追捕)하여 참해야 합니다. 광주(光州)의 죄수 중[奴] 막송(莫松)은 김삼로(金三老)의 처 단보(丹寶)와 간통하고, 단보와 공모하여 김삼로를 살해하였으니, 죄가 율에 막송은 참형에 단보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刑曹三覆啓: “水原因白丁趙銀同·小斤毛知, 與在逃檢長, 劫巫女將未家強盜罪, 律該斬不待時, 依受教, 妻子永屬所居邑奴婢, 檢長追捕斬. 光州囚奴莫松奸金三老妻丹寶, 同謀殺害三老罪, 律該莫松斬, 丹寶凌遲處死.” 皆從之.

成宗康靖大王實錄卷第三十六終

<성종실록 36권, 성종 4년 11월 29일(병진)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지방과 관청의 노비·서리로 정속한 수원의 허유례 등을 방면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 수원(水原)에 안치(安置)한 허유례(許惟禮)(…)을 방면(放免)하게 하라.” 하였다.

○傳旨義禁府: “放(…)水原安置許惟禮.(…)”

<성종실록 41권, 성종 5년 4월 17일(신미)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대사헌 이서장 등이 금주령인데도 수원부사에게 술을 받은 김양경의 파직을 아뢰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서장(李恕長) 등이 차자(笱子)를 올리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사원(金嗣源)은 술을 많이 장만하여, 장례(葬禮)에 모인 재상에게 주었으므로, 본부(本府)에서 바야흐로 국문(鞫問)하는데, 이제 관찰사(觀察使) 김양경(金良璈)이 아뢰에 따라 국문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신 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양경은 한 방면의 어른인데, 금주령(禁酒令)이 엄한 때를 당하여 먼저 스스로 법을 범하여 재상에게 술을 주었으니, 죄가 워낙 큼니다. 더구나 재궁(梓宮)이 가까운 곳에 계시니, 신하로서는 정히 애통하여 다른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차마 술을 서로 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성은(聖恩)은 너그러우시나 법에 있어서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또 김사원이 추핵(推劾)당한 지 며칠이 되었는데도 김양경은 곧 죄를 자수하지 않고 늦추면서 형세를 보다가, 수원의 서리(胥吏)가



공초(供招)한 말이 자기에게 미쳤음을 듣고 스스로 면할 수 없음을 알고서야 비로소 대죄(待罪)하였으니, 대신(大臣)으로서 스스로 허물을 지는 의리에 어그러집니다. 이런데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뒷사람을 경계하겠습니까?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무리를 지어 술을 마셨다면 워낙 죄가 있겠으나, 비바람이 일던 날에 늙은 재상에게 술을 주었는데 무슨 안될 것이 있겠는가?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였다.

○司憲府大司憲李恕長等上劄子曰: 水原府使金嗣源, 多備酒, 以遺會葬宰相, 本府方鞫之, 今因觀察使金良瓚之啓, 命勿鞫. 臣等以爲, 良瓚一方之表, 當禁酒令嚴之時, 先自犯法, 以酒遺宰相, 罪固大矣. 況在梓宮密邇之地, 臣子正當哀痛不暇, 可忍以酒相饋遺乎? 聖恩雖寬, 在法難恕. 且嗣源之被劾有日, 良瓚不卽首罪, 遷延觀勢, 聞水原吏招辭逮及於己, 自知不免, 方始待罪, 非大臣引咎之義. 此而不治, 何以戒後? 請罷其職. 傳曰: “若群飲則固有罪矣, 風雨之日, 饋酒於老宰相, 有何不可? 其勿言.”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0일(계해) 3번째기사>

### 정치/사법

**대사헌 이서장이 금주법을 어기고 수원의 서리가 공초하자 대죄한 김양경의 죄를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독(講讀)이 끝나고서, 대사헌(大司憲) 이서장(李恕長)이 아뢰기를,

“전번에 재변(災變) 때문에 금주(禁酒)시키고 또 경기(京畿)가 흉년이므로 능소(陵所)의 공돈(供頓)을 다 예빈시(禮賓寺)를 시켜 장만하게 하셨으니, 성상(聖上)께서 재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돌보시는 뜻이 지극하셨는데, 김양경(金良瓚)은 위의 뜻을 본받지 않고 관할하는 고을들을 시켜 술을 많이 장만하게 하여 사사로이 재상에게 주었고, 일이 발각되어 추척(推劾)하게 되어서도 곧 자수하지 않았으니, 그 생각은 하관(下官)이 스스로 그 죄를 받을 것이고 자기에게는 연루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다가 수원(水原)의 서리(胥吏)가 공초한 것을 듣고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야 비로소 대죄(待罪)하였으니, 그 생각이 매우 교활합니다.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금주는 민재(民財)의 소비를 덜고자 하는 것이다. 김양경이 술을 보낸 것이 어찌 민재를 소비한 것이겠는가? 그날은 크게 비바람이 일었으므로 나도 술을 내렸으니, 김양경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지 말라.” 하였다.

○甲子/御經筵. 講訖, 大司憲李恕長啓曰: “頃因災變, 令禁酒, 又以京畿失稔, 陵所供頓, 皆令禮賓寺辦設, 聖上懼災恤民之意至矣, 金良瓚不體上意, 令所管諸邑多備酒, 私遺宰相, 及事覺推劾, 不卽自首, 其意以謂, 下官自當其罪, 必不連累於己, 及聞水原吏供招, 知不得免, 乃始待罪, 其計甚狡. 請治罪.” 上曰: “凡禁酒, 只欲省民費也. 良瓚之送酒, 何費於民? 其日大風雨, 予亦賜酒, 良瓚非有罪也. 其勿言.”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1일(갑자) 1번째기사>

### 정치/사법

**대사헌 이서장 등이 수원 서리가 공초한 뒤 대죄한 김양경을 법으로 다스리라 청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서장(李恕長) 등이 차자(劄子)를 올리기를, “김양경(金良瓚)은 한 도(道)의 기강을 도맡았으므로 무릇 금법[禁程]을 어긴 수령(守令)에 대해서는 그 죄를 살펴서 다스려야 할 것인데, 이제 금주(禁酒)하는 법이 매우 엄한데도 김양경이 먼저 스스로 범하였으니, 아랫사람을 바로잡으려 하더라도 누가 복종하려 하겠습니까? 이보다 앞

서 윤잠(尹岑)·박서창(朴徐昌)이 감사(監司)로 있을 때에 하찮은 물건을 권세가(權勢家)에 뇌물로 보냈으나 일이 발각되자 곧 파직(罷職)하였습니다. 김양경은 죄가 이 두 사람과 같은데 홀로 면하니, 신 등은 조정(朝廷)에서 형벌을 쓰는 것이 여기서부터 알맞지 않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더구나 김양경의 대죄(待罪)는 일이 발각된 당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원의 서리(胥吏)가 공초(供招)한 뒤에 있었으니, 형적은 죄를 승복하였을지라도 뜻은 실로 은혜를 바란 것입니다. 이를 죄주지 않으면 그 간사한 계책이 부러질 수 있으니, 국문(鞫問)하여 법으로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司憲府大司憲李恕長等上筭子曰:金良瓚總一道紀綱, 凡守令之違犯禁程者, 當按治其罪, 今禁酒之法甚峻, 而良瓚先自犯之, 雖欲糾正其下, 孰肯服從乎? 前此尹岑·朴徐昌爲監司, 以微物行賂權勢, 事覺卽罷. 良瓚罪同二人而獨免, 臣等恐朝廷之用罰, 自此而不中矣. 況良瓚之待罪, 不在事發之初, 而在於水原吏供招之後, 迹雖服罪, 情實希恩. 今若不罪, 則其奸計得售, 請鞫問抵法. 不聽.

<성종실록 43권, 성종 5년 6월 11일(갑자) 4번째기사>

#### 정치/사법

형조에서 수원의 죄수 백정 김구경 등이 참부대시에 해당된다고 아뢰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죄수(罪囚) 백정(白丁) 김구경(金仇京)과 용인(龍仁)의 죄수 백정 인수(仁守)가 행인(行人)을 위협하여 강도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刑曹三覆啓: “水原囚白丁金仇京·龍仁囚白丁仁守劫行人強盜罪, 律該斬不待時.” 從之.

<성종실록 53권, 성종 6년 3월 19일(무진) 5번째기사>

#### 정치/사법

행인에게 강도질을 한 수원의 죄수 이효순 등에게 참부대시에 처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수원(水原) 죄수인 학생(學生) 이효순(李孝順), 양인(良人) 김원진(金元進)·박석을동(朴石乙同)·김가질달(金加叱達)이 행인(行人)에게 강도(強盜)한 죄와, 전옥서(典獄署) 죄수 백정(白丁) 이북간(李北間)·이소근동(李小斤同), 사노(私奴) 김인수(金仁壽)가 조만(趙萬)의 집을 겁탈하여 강도질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고, 그 처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사는 고을의 관노비(官奴婢)로 영속(永屬)시킬 것이며, (…)”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刑曹三覆啓: “水原囚學生李孝順·良人金元進·朴石乙同·金加叱達劫殺行路人強盜罪, 典獄囚白丁李北間·李小斤同·私奴金仁壽劫趙萬家強盜罪, 律該斬不待時, 妻子竝依《大典》, 永屬所在官奴婢, (…)” 皆從之.

<성종실록 61권, 성종 6년 11월 2일(정미) 4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에 부처된 맹인 김신지 등 각 지역에 정역 또는 정속된 자들을 놓아주게 하다

형조(刑曹)에 전지하기를, “(…) 수원(水原)에 부처(付處)된 맹인(盲人) 김신지(金愼之)를 놓아 주도록 하라.” 하였다.

○傳旨刑曹, 放(…) 水原付處盲人金愼之.

<성종실록 73권, 성종 7년 11월 24일(갑자) 5번째기사>

### 정치/사법

#### 헌남 강거효가 수원 백성의 전지를 차지한 조득림의 추문을 건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 강거효가 또 아뢰기를, “조득림(趙得琳)이 수원(水原)에 사는 백성의 전지(田地)를 스스로 차지 하였으므로, 전에 김적(金積)을 보내어 추문(推問)하게 하였으나, 김적이 조득림의 청탁을 받고는 《대전(大典)》의 한년법(限年法)으로 결단하였습니다. 백성의 억울한 일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청컨대 다시 법사(法司)를 시켜 분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다시 사람을 보내어 추문하라.” 하였다.

○壬午/御經筵. 居孝又啓曰: “趙得琳自占水原居民田地, 前遣金積推之, 而積聽得琳請囑, 乃以《大典》限年之法斷之. 小民冤抑, 莫此爲甚, 請更令法司分揀.” 上曰: “可更遣人推之.”  
<성종실록 74권, 성종 7년 12월 13일(임오)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조득림에게 전지를 빼앗긴 수원 선군 김계남의 소송을 지연한 경기감사 이덕량을 개차하다  
이 앞서 수원 선군(水原船軍) 김계남(金季男)이, 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이 자기의 전지(田地)를 빼앗아 차지하였다고 소송하여, 사헌부(司憲府)에서 교지(教旨)를 받아 경기 관찰사 이덕량(李德良)으로 하여금 판결하게 하였는데, 4개월이 넘도록 이덕량이 판결한 바가 없었으므로, 사헌부에서 <이덕량을> 추국(推鞠)하기를 계청(啓請)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가 아뢰기를, “지금 민사(民事)가 바야흐로 한창인데, 관찰사 이덕량이 탄핵을 받아 행공(行公)할 수 없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조득림(趙得琳)이 세력을 믿고 남의 전지를 함부로 차지하였는데, 이덕량이 즉시 단결(斷決)하지 않았으니, 속히 개차(改差)하라.” 하였다.

○前此水原船軍金季男訟巴山君趙得琳奪占己田, 司憲府受教, 令京畿觀察使李德良辨之, 踰四朔而德良未有所決, 司憲府啓請推鞠. 至是都承旨玄碩圭啓曰: “今民事方興, 而觀察使李德良見劾, 不得行公, 如之何?” 傳曰: “得琳恃勢, 冒占人田, 而德良不卽斷決, 其亟改差.”  
<성종실록 77권, 성종 8년 윤2월 21일(기미) 5번째기사>

### 정치/사법

#### 안중경이 여자의 시체가 수안향리인지 수원향리인지 분명치 않아 모두 관원을 보내다

승전색(承傳色) 안중경(安仲敬)이 아뢰기를, “신이 일전에 시제(時祭)로 인하여 집에 있었는데, 이웃 동리 사람이 말하기를, ‘당초 삼사에서 동리 사람을 국문할 때에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여자의 시체는 수안(遂安) 향리(鄉吏)의 딸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안과 수원(水原)은 소리가 서로 비슷한데, 분별하여 말하지 않았으므로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곧 조정의 관원을 두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서 추국(推鞠)하여 아뢰라.” 하고, 곧 경기 도사(京畿都事) 윤간(尹侃)을 수원에 보내고,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김춘경(金春卿)을 수안에 보냈다.

○承傳色安仲敬啓曰: “臣昨日因時祭在家, 隣里人曰: ‘當初三司鞠防里人時, 稠人中有曰, 「女屍乃遂安鄉吏女子也.」 但遂安·水原聲相近, 不分別言之, 故未得的知.’ ” 傳曰: “卽分遣朝官于兩邑, 推鞠以啓.” 乃卽遣京畿都事尹侃于水原, 義禁府經歷金春卿于遂安.  
<성종실록 89권, 성종 9년 2월 29일(임술) 3번째기사>

정치/사법

지평 안선을 수원부에 보내 형옥과 불법한 일을 살피게 하다

지평(持平) 안선(安璿)을 경기(京畿) 수원부(水原府)에, 허침(許琛)을 통진현(通津縣)에 보내 형옥(刑獄)과 불법(不法)에 대한 일을 규찰하게 하였다.

○遣持平安璿于京畿 水原府·許琛于通津縣，糾察刑獄及不法事。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5일(임술) 4번째기사>

정치/사법

의금부에 수원 부사 남칭의 죄를 다시 조율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교하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남칭(南僞)이 법한 것을 다시 조율(照律)하여 아뢰라.” 하였다.

○傳于義禁府曰：“水原府使南僞，改照律以啓。”

<성종실록 100권, 성종 10년 1월 6일(계해) 7번째기사>

정치/사법

의금부에서 수원 부사 남칭의 죄를 율에 따라 처벌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남칭(南僞)이 아전의 역사를 면제하여 주고, 함부로 입자(荏子)·지지(紙地)를 거둔 죄는 율(律)이 장(杖) 60대를 속(贖)바치고, 고신(告身)을 한 등급 추탈(追奪)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義禁府啓：“水原府使南僞除人吏之役，濫收荏子·紙地罪，律該杖六十贖·奪告身一等。”從之。

<성종실록 100권, 성종 10년 1월 8일(을축) 4번째기사>

정치/사법

형조에서 남의 옷을 빼앗은 수원 죄수를 참부대시에 처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경기(京畿) 음죽현(陰竹縣)의 죄수인 백정(白丁) 변의존(邊義存)·이영춘(李永春)이 도망한 매읍토(每邑吐) 등과 행인(行人)을 죽이고 의복(衣服)을 약탈(掠奪)한 죄와 수원(水原)의 죄수인 수군(水軍) 전윤생(田允生)이 남의 의복을 겁탈(劫奪)한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되며, 처자(妻子)는 소재(所在)한 관청의 노비(奴婢)로 영속(永屬)시켜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刑曹三覆啓：“京畿陰竹縣囚白丁邊義存·李永春，與在逃每邑吐等，殺行人掠奪衣物罪，水原囚水軍田允生，劫奪人衣服罪，律該斬不待時。妻子永屬所在官奴婢。”從之。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22일(정미) 5번째기사>

정치/사법

형조에서 행인을 때려 죽인 수원 죄수 김석이의 죄를 교대시로 처벌케 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죄수 학생(學生) 김석이(金石伊)가 행인(行人) 김팽로(金彭老)를 때려 죽인 죄는, 율(律)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刑曹三覆啓：“水原囚學生金石伊，毆殺行人金彭老罪，律該絞待時。”並從之。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8일(임오) 6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에 정속된 난신 봉석주의 첩 금이를 방면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여, 수원(水原)에 정속(定屬)된 난신(亂臣) 봉석주(奉石柱)의 첩(妾) 금이(金伊)를 방면(放免)하게 하였다.

○傳旨義禁府，放水原定屬亂臣奉石柱妾金伊。

<성종실록 126권, 성종 12년 2월 28일(임신) 3번째기사>

#### 정치/사법

형조에서 수원 죄수 양인 권산의 죄가 참대시에 해당한다고 아뢰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수원 죄수 양인(良人) 권산(權山)이 양녀(良女) 고리(古里)를 찢러 상처를 입히고 옷을 빼앗은 죄는,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刑曹三覆啓：“水原囚良人權山，刺傷良女古里，偷取衣服罪，律該斬待時。”從之。

<성종실록 135권, 성종 12년 11월 6일(병자) 5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 백성 안자의가 올린 글에 있는 유민을 국문하게 하다

수원(水原)의 백성 안자의(安自義)가 글을 올렸는데, 그 말이 허황되고 바르지 못하였으며, 하면(下面)에는 본 고을의 관노비(官奴婢) 가운데 역역(力役)이 번거롭고 중함으로 인하여 유망(流亡)한 자의 이름을 나란히 썼다. 전교하기를, “이 사람의 말이 모두 실상이 없으나 유민(流民)은 간혹 있을 것이니, 주서(注書) 신건(辛鍵)으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라.” 하였다.

○水原民安自義上書，其言荒誕不經，下面列書本邑官奴婢因力役煩重流亡者名字。傳曰：“此人之語皆無實，流民則或有之，其令注書辛鍵鞫之。”

<성종실록 161권, 성종 14년 12월 5일(갑자)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상참을 받고 형조에서 수원 죄수의 율이 교대시에 해당된다고 아뢰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죄수 사노(私奴) 산이(山伊)와 종[奴] 박정(朴丁) 등이 세 번이나 절도(竊盜)를 범한 죄는 율(律)이 교대시(絞待時)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乙未/受常參，視事。刑曹三覆啓：“水原囚私奴山伊·奴朴丁等三犯竊盜罪，律該絞待時。”從之。(…)

<성종실록 186권, 성종 16년 12월 18일(을미)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 부사 양찬의 불법을 국문하다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이승건(李承健)이 수원 부사(水原府使) 양찬(梁瓚)의 불법(不法)한 일을 지적하여 아뢰니, 사헌부에 명하여 국문하도록 하였다.

○弘文館校理李承健擲水原府使梁瓚不法事以啓。命憲府鞠之。

<성종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27일(병인) 4번째기사>

#### 정치/사법

지평 윤파가 길을 돌아 수원에서 유숙한 이세우의 죄를 율에 의해 과단하도록 청하다

지평(持平) 윤파(尹坡)가 와서 아뢰기를, “이세우(李世佑)는 내신(內臣)으로서 명을 받들고 출입하면서 길을 돌아 수원(水原)에서 유숙(留宿)하였고, 또 양찬(梁瓚)을 친히 보고서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간사하게 꾸며대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두 죄를 범하였으니, 청컨대 율(律)에 의해 과단(科斷)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세우의 죄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논할 수 없다. 그러나 소사(所司)에서 말하니, 직첩(職牒)을 거두도록 하라.” 하였다. 윤파가 다시 법대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持平尹坡來啓曰：“李世佑以內臣，奉命出入，而枉道留宿水原，且親見梁瓚而不以實對，詐飾欺罔。犯此二罪，請依律科斷。”傳曰：“世佑之罪，不可論以欺罔也。然所司言之，其收職牒。”尹坡更請如律治罪，不聽。

<성종실록 204권, 성종 18년 6월 12일(경진)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에서 경숙하면서 들은 바를 사실대로 아뢰지 않은 이세우를 파직하다

(…) 장령(掌令) 정지(鄭摯)도 와서 아뢰기를, “전일에 이세우(李世佑) 및 이조 당상(吏曹堂上) 신준(申浚) 등의 죄가 윤숙과 더불어 죄과(罪科)가 같았는데도, 모두 다 파직을 시켰습니다. 윤숙은 어떤 사람이기에 오로지 놓아두고 다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숙은 이 사람들과 더불어 허물이 다르다. 이세우는 수원(水原)에서 경숙(經宿)하면서 들은 바를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파직케 한 것이고, 대신(臺臣)들이 또 논박하였기 때문에 직첩(職牒)을 거두었던 것이다. 이조 판서 신준(申浚)은 원훈(元勳)의 아들이고 또 친공신(親功臣)이었으며, 참판(參判) 노공필(盧公弼)도 재상(宰相)이기 때문에 다만 파직만 한 것이다. 그러나 이세우의 죄를 이조 당상에 비교한다면 곧 이조는 농권(弄權)을 한 정상이 있는 듯하여 그 죄가 더욱 무거운 것이다. (…)” 하였다. 정지가 반복하여 다시 아뢰었으나, 마침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掌令鄭摯亦來啓曰：“前日李世佑及吏曹堂上申浚等之罪，與尹倣同科，而皆罷職。倣獨何人，專釋不治乎？”傳曰：“尹倣與此人等殊科。李世佑經宿水原，所聞不以實啓，故令罷職。臺臣又駁之，故收職牒。吏曹判書申浚，元勳之子，亦親功臣；參判盧公弼亦宰相，故只罷職。然世佑之罪，比之吏曹堂上，則吏曹似有弄權之狀，其罪尤重。(…)”摯反覆更啓，竟不聽。

<성종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15일(임자)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지평 이중현이 수원 등의 배를 방납한 윤은로 등의 추핵을 건의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이중현(李仲賢)이 와서 아뢰기를, “홍문관(弘文館)에서 아뢰는 방납(防納)의 일은 본부(本府)에서 여러 고을의 경주인(京主人)과 방납을 맡은 사람을 붙잡아다 물어 보니, 충주(忠州)·수원(水原) 등 고을의 배는 윤은로(尹殷老)·윤보(尹甫)가 방

**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본부에서 국문(鞫問)해야 마땅합니다. 온양(溫陽)의 배는 봉보 부인(奉保夫人)의 가노(家奴)가 방납하니, 청컨대 아울러 추핵(推劾)하도록 하소서.”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온양(溫陽)의 관리와 봉보 부인의 가노를 먼저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司憲府持平李仲賢來啓曰：“弘文館所啓防納事，本府拿致諸邑京主人掌納人問之，忠州·水原等官船隻，則尹殷老·尹甫防納也。此則本府當鞫之矣。溫陽船隻，則奉保夫人家奴防納，請并劾之。” 御書曰：

先鞫溫陽吏及奉保家奴。

<성종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27일(기유) 4번째기사>

### 정치/사법

#### 과천 정희의 집에 침입한 강도 40여인을 수원 등에 하서하여 잡도록 하다

포도장(捕盜將) 정유지(鄭有智)가 와서 아뢰기를, “행직 당상(行職堂上) 정희(鄭希)의 집이 과천(果川)에 있는데, 강도(強盜) 40여 인(人)이 돌입(突入)하여 먼저 정희(鄭希)를 쏘고 정희(鄭希)의 금대(金帶)를 빼앗았습니다. 정희(鄭希)가 꾸짖으니 도적[賊]이 칼로 찌르려는 것을 정희(鄭希)의 아내가 철퇴(鐵槌)로 도적을 쳐서 땅에 넘어뜨리자, 도적의 무리가 정희(鄭希)의 아내를 때려 죽였습니다. 청컨대 과천(果川)의 이웃 고을에서 수포(授捕)하게 하소서.”

하니, **금대로 따르고, 양주(楊州)·광주(廣州)·수원(水原)·용인(龍仁)·고양(高陽)·금천(衿川)·과천(果川)에 하서(下書)하여, 힘을 합쳐서 잡도록 하였다.**

○庚戌/捕盜將鄭有智來啓曰：“行職堂上鄭希，家在果川，有強盜四十餘人突入，先射希，奪希金帶，希叱之，賊將刃，希妻以鐵槌擊賊仆地，賊衆毆希妻垂死，請於果川隣邑搜捕。” 從之。下書楊州·廣州·水原·龍仁·高陽·衿川·果川，俾同力捕之。

<성종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25일(경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찬 박은의 아버지 박담손이 수원판관이 되었을 때에 대간이 탄핵하다

(…) 이극균(李克均)이 또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아뢰기를 ‘홍문관이 인물을 탄핵하는 것이 사체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한 것은 그 뜻이 있습니다. 박사(博士) 민원(閔原)의 아버지 민사건(閔師騫)이 충청도 감사가 되었을 때에 전일의 대간이 탄핵했으며, **수찬 박은(朴闡)의 아버지 박담손(朴聃孫)이 수원 판관(水原判官)이 되었을 때에 전일의 대간이 또한 탄핵했습니다.** 민원(閔原) 등은 이 뜻을 상관하지 않고 상소(上疏)를 피하지 않았으니, 비록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혐의를 품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사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어찌 홍문관에서 마땅히 논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곧 아뢰고자 했으나 그 일이 언사에 관계된다고 생각하여 곧 중지했습니다.” 하였다.(…)

○(…) 克均又啓：“臣前日啓云：‘弘文館彈擊人物，似不合事體。’ 云者，其意存焉。博士閔原父師騫爲忠清監司時，前臺諫彈擊；**修撰朴闡父聃孫爲水原判官時，前臺諫亦彈之。** 慳等不顧此意，不避上疏，雖不能的知爲懷嫌而然也，然任言責之人，豈弘文館所當駁擊乎？其時卽欲啓之，以謂事涉言事乃止。” (…)

<연산군일기 41권, 연산군 7년 11월 16일(경인)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홍청악에게 보인을 주지 않은 죄로 수원 판관 등을 수감하다

박천 군수(博川郡守) 이명필(李明弼), 영흥 판관(永興判官) 조옥현(趙玉峴), 길성 현감(吉城縣監) 지한조(池漢祖), 수원 판관(水原判官) 우하손(禹賀孫), 문의 현감(文義縣監) 조계하(曹繼夏) 등을 수감(囚禁)하였는데, 홍청에게 보인(保人)을 주지 않은 죄였다.

○囚博川郡守李明弼·永興判官趙玉峴·吉城縣監池漢祖·水原判官禹賀孫·文義縣令曹繼夏, 不給興清保人罪也.

<연산군일기 62권, 연산군 12년 6월 5일(계축) 5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 판관 등 나인에게 빌붙어 벼슬한 자들을 추치하다

대사헌 반우형(潘佑亨)·집의 김사원(金士元)·장령 김언평(金彦平)과 김지(金祉)가 아뢰기를,

“(…) 가산(嘉山) 군수 김세용(金世庸)·안악(安岳) 군수 서복경(徐福慶)·남원(南原) 판관 윤삼수(尹三壽)·수원(水原) 판관 김숙담(金淑淡)·정주(定州) 목사 김문경(金文卿)·남원 부사 조상(趙祥)·강화(江華) 부사 장준손(張俊孫)·연원도(連原道) 찰방 김세영(金世榮)은 나인에게 빌붙어 이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장길(李長吉)은 의성(義城) 현령으로 아직 품질이 차지 않고서도 특별히 부정(副正)에 올랐습니다. 그 나머지 잡직을 함부로 제수한 자도 자못 많은데, 역시 나인에게 빌붙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추치(推治)하소서. (…) 정승 등이 아뢰기를, “대관(臺官)의 말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大司憲潘佑亨·執義金士元·掌令金彦平·金祉啓曰：“(…) 嘉山郡守金世庸·安岳郡守徐福慶·南原判官尹三壽·水原判官金淑淡·定州牧使金文卿·南原府使趙祥·江華府使張俊孫·連原道察訪林世榮, 攀附內人, 得至於此, 李長吉以義城縣令, 未滿秩, 特陞副正, 其餘雜職濫授者頗多, 亦攀附內人所致, 請竝推治. (…) 政丞等啓曰：“臺官之言甚當.” 傳曰：“依啓.”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4일(경진) 4번째기사>

## 정치/사법

### 사간원에서 수원부사 하한문 등이 연산군 때 잘못이 많다고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하한문(河漢文)은 폐조(廢朝) 때에 잘못된 것이 자못 많고, 주부(主簿) 이계형(李繼亨)은 큰 절조를 이미 그르쳤으므로 동반(東班)에 서임(敍任)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모두 같이 바랍니다. (…)” 하니, 전교하기를, “하한문은 여러 번 수령을 지냈는데 무슨 합당치 못할 것이 있겠는가? 이계형은 주부(主簿)로 길성 현감(吉城縣監)에 제수(除授)되었다가 도로 주부가 되었으니 과할 것이 없다. (…)” 하였다.

○諫院啓曰：“水原府使河漢文, 在廢朝, 所失頗多, 主簿李繼亨, 大節已虧, 不可敍東班, 請皆遞之.” 訓練院掌務官, 稱例物, 徵斂軍士, 貧殘之軍, 不能支當, 至盡賣弓矢, 請推之. 慕華館武科試取時, 矢數不足者, 忌人之才, 掘坎於走馬之場, 以致人馬墜(跌) [跌], 監察及監的官, 不能糾檢, 請推考治罪. 且舉子竝令推覈痛懲.” 傳曰：“河漢文累經守令, 有何不合? 李繼亨以主簿, 除吉城縣監, 而還授主簿, 不爲過矣. 訓練院掌務官及監察·監的官·(舉子) [舉子], 依所啓推之.”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11일(경자) 3번째기사>



정치/사법

내지를 속여 전한 수원 죄수 내수사의 종 석강을 사형에 처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계복(啓覆)을 들었다. (...) 또 수원 죄수 내수사(內需司)의 종 석강(石江)이 내지(內旨)를 속여 전한 일을 삼복(三覆)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매, 안당이 아뢰기를, “내지를 속여 전한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사(公事)대로 하라.” 하였다.

○甲寅/受常參，聽啓覆．(…) 水原囚內需司奴石江詐傳內旨事，三覆．上曰：“何如？安瑒曰：“詐傳內旨，罪當死．” 上曰：“依公事．”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9월 17일(갑인) 1번째기사>

정치/사법

중종이 양인을 천인으로 만든 문관 이효언을 수원역에 정속시키다

사헌부가 문관 이효언(李孝彦)에게 양인을 억눌러 천인으로 만든 율을 적용하여 전가 사변 하도록 아뢰었으나, 상은 공(功)으로 1등(等)을 감하여 수원역(水原驛)에 정속(定屬)시키도록 명하였다. (...)

○可憲府以文官李孝彦，壓良爲賤照律，以全家徙邊以啓，上命功減一等，定屬于水原驛．(…)

<중종실록 35권, 중종 14년 1월 24일(기미) 4번째기사>

정치/사법

이중이 ‘김식이 수원에 처져 있는 것은 두세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아뢰다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수인(囚人)을 국문(鞫問)하였다. (...) 먼저 이중(李中)을 신문하였는데, 이중이 아뢰기를, “김식이 ‘처음 죄를 입었을 때에는 중간에서 한 짓인 줄 미처 몰랐었는데, 각각 분배되어 나갈 때에 상께서 다시 불러 분부하시기를 「너희들이 한 일에는 과격한 것이 지극히 많으니 우선 가도록 하라.」 하셨으므로 비로소 상의 뜻에서 나온 일이 아닌 줄 알았다. 내가 수원(水原)에 처져 있는 까닭은 두세 사람을 제거(除去)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귀양간 자들이 늘 나를 오활(迂闊)하다고 헐뜯으므로 함께 말할 수 없다.’ 하였습시다.” 하니, (...)

○上御思政殿，鞫囚人．(…) 先訊李中，中曰：“金湜云：‘初被罪之時，猶未知中間所爲，及各分配出去時，自上更召而教曰：「汝輩所爲，極多過激，姑可失也。」始知不出於上也．余之落後在水原者，欲除二三人計也．同時被竄者，常時皆詆吾以迂闊，故不得與言耳．’ ” (…)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4월 30일(정해) 3번째기사>

정치/사법

관상감 판관 송사련 등의 역적 모의 고변에 안처점이 수원에 머무른 정황이 있었다

관상감 판관(觀象監判官) 송사련(宋祀連)·학생(學生) 정상(鄭瑄)이 고변(告變)하자, 정원이 입계(入啓)하니, 전교하기를, “자세히 물어보아 아뢰라.” 하매, (...)

3~4일을 머물다 들어온 뒤에 처점은 수원(水原)의 농가로 가고 신은 송사련·안처근과 연안(延安) 농가로 돌아가 타작(打作)을 마치고서 송사련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튿날 처근과 범산 굴사(梵山窟寺)에 가서 담화하는 동안에, 처근이 신에게 말하기를 ‘무당이 「조광조(趙光祖)의 귀신이 홍경주(洪景舟)를 잡아가고, 홍순복(洪舜福)의 귀신이 이빈(李蘋)의 종

을 잡아가 이빈의 종이 죽었다。」고 했고, 청혼(請魂)할 때 무당이 「홍순복이 나를 잡아간 것은 내 명이 짧아서가 아니다. 이제는 장차 우리 상전(上典)을 잡아간다니, 상전이 꿈에 상인(喪人)을 보게 되면 상전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이빈이 그뒤 꿈에 상인을 보고 조금 있다가 병을 얻어 죽었으니, 나이 젊은 사람의 귀신은 영험이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뒤 세 사람이 서울로 와 신이 처점을 보러 가니, 처점이 수원에서 이미 서울에 와 있었습니**  
**다.** 처점이 《송감(宋鑑)》에 악비(岳飛)의 이름이 있는 데를 편놓고 말하기를 ‘악비가 진희(秦檜)에게 살해되었는데, 옛적부터 군자가 소인에게 살해되었었다.’ 했고, 신이 대영공(大令公)의 일을 입계(入啓)하지 않았는 지에 대해 물으니, 처점이 ‘27일에 이미 그대로 운허되었고 나는 28일에 서울로 들어왔다.’ 하며 신을 만류하여 저녁밥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저녁을 먹고 송사련의 집에 가서 처점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

○觀象監判官宋祀連·學生鄭瑞上變告, 政院入啓, 傳曰: “其詳問以啓.” (…)  
留三·四日入來後, 處謙歸水原農所, 臣與宋祀連·安處謹歸延安·白川農所, 畢打作, 就宋祀連家. 翌日, 與處謹往梵山窟寺, 談話間, 處謹謂臣曰: ‘巫云: 「趙光祖之鬼, 捉洪景舟而去, 洪舜福之鬼, 捉李蘋奴子而去, 李蘋之奴死矣.」 聽魂時巫云: 「洪舜福捉我而去, 非吾命短也. 今將捉吾上典云, 上典夢見喪者, 則上典必死矣.」 李蘋, 其後夢見喪者, 俄而得病而死. 年少者之鬼, 有驗.」 云. 其後, 三人到京, 臣往見處謙, 處謙自水原已到京矣. 處謙披《宋鑑》 岳飛名付處, 乃曰: ‘岳飛爲秦檜所殺. 自古, 君子爲小人所害.’ 已而臣問云: ‘大令公事不啓乎?’ 處謙曰: ‘二十七日已依允, 余二十八日入京矣.’ 留臣饋夕食.(…)

<중종실록 43권, 중종 16년 10월 11일(기축)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김수담이 지응차사원으로 수원 등지에 가서 이빈을 만나지 않았다는 상소

의금부(義禁府)에 갇힌 김수담(金粹潭)이 상소(上疏)하였다. 대략, “엎드려 생각하건대, 이빈(李蘋)이 죽을 때에 신은 인천(仁川)의 임소(任所)에 있었는데, 신의 처조모(妻祖母)인 박안성(朴安性)의 아내가 서울에서 죽었으므로 처부(妻父) 박수륜(朴守綸)은 먼저 올라가고 신은 신사년 7월 14일에 인천에서 안산(安山) 관아로 가서 처모(妻母)를 호행하여 15일에 서울에 닿았습니다. 이것은 증좌(證左)가 안산 고을의 이민(吏民)에 있으니, 추열(推閱)하면 역력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처조모는 신사년 7월 13일에 죽었고, 이빈이 죽은 날은 빙열(憑閱)하면 밝혀내기가 어렵지 않을 것인데, **그때 한두 달은 신이 중국 사신이 나주(羅州)에 갔었을 때 지응 차사원(支應差使員)으로 수원(水原)에도 가고 충청도 지경에도 가느라고 이빈과 서로 만난 때가 없었습니다.** 유운(柳雲)은 평생에 조금도 면식(面識)이 없는데, 어떻게 성수(星宿)에 대하여 말하고 허망한 말을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생각도 미칠 수 없는 일입니다. (…)”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빙열하고 추고하도록 주서(注書)를 보내어 의금부에 가서 말하게 하라.” 하였다.

○義禁府囚人金粹潭上疏, 略曰: 伏以, 李蘋死時, 臣在仁川任所. 臣妻祖母朴安性, 妻在京身死, 妻父朴守綸則先上來, 臣於辛巳七月十四日, 自仁川往安山衙內, 妻母護行, 十五日到京. 此則證在安山一邑吏民, 推閱則歷歷可知. 妻祖母則辛巳年七月十三日身死, 李蘋身死日憑閱, 則發明不難. 其時一二朔, 則臣以天使往還羅州時, 以支應差使員, 或往水原·或往忠清境上, 無李蘋相見之時. 柳雲平生無半面之(議) [識], 何言星宿而妄言乎? 此則情所未到處也. (…)  
傳曰: “憑閱推考事, 遣注書, 往義禁府言之.”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9월 3일(경오)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부사 남효순을 올문대로 파직하다

(…) 전교하기를, “결실을 재해로 하거나 재해를 결실로 한 것은 파직하는 것이 가하고, 분수를 잘못 책정한 것과 등급을 잘못 매긴 것은 공죄로 조율(照律)하는 것이 가하다. 수원부사(水原府使) 남효순(南孝純) 같은 건(件)은 올대로 파직하라.” 하였다.

○(…) 傳曰: “以實爲災; 以災爲實者, 罷職可也, 分數差錯與等第失中者, 以公罪照律可也. 如水原府使南孝純, 依律罷職.”

<중종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8일(계묘) 4번째기사>

### 정치/사법

#### 오윤산 사건에서 금이가 내려갈 적에 막송은 수원 동생 집에 있었다는 진술

승지 황사우가 금부에게 와서 아뢰기를, “막송은 이미 승복(承服) 【금이와 간통한 일을 승복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윤산은 ‘딸 금이를 연안(延安)으로 보낼 적에 막송이 따라갔었다.’ 하였고, 관남은 ‘금이가 내려갈 때 행구(行具)를 가지고 하구(河口)까지 가서 전송하고 돌아왔다.’ 【금이가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하고, 막송은 ‘금이가 내려갈 적에 나는 수원(水原)에 있는 동생집에 가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언사(言辭)는 아닙니다만,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윤산을 형문할 적에 아울러 형문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

○癸丑/承旨黃士祐來自禁府啓曰: “莫松則已承服. 【服其奸今伊事.】 但吳閨山則曰: ‘其女今伊送于延安時, 莫松隨歸.’ 云. 觀南則曰: ‘今伊下歸時, 負持行具, 送于河口而還.’ 云. 【今伊乘船而歸故云.】 莫松則曰: ‘今伊下歸時, 往在水原地同生家.’ 云. 此雖不緊言辭, 相爲抵牾, 欲於閨山刑問時并問也.” (…)

<중종실록 65권, 중종 24년 7월 20일(계축)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삼공이 임의로 임소를 버린 수원 군수 김언과 간사한 수원의 아전을 추국하도록 건의하다

삼공(三公)이 아뢰기를, “수원 군수(水原郡守) 김언(金澆)을 지금 조옥(詔獄)에 잡아다가 추국(推鞠)하려는데, 그가 마음대로 임소(任所)를 버리고 떠난 것으로 보면 조옥에서 추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듣건대 수원의 아전(衙前)들이 김언을 싫어하여 반드시 파직되어 떠나게 하려고 횡포와 폐역(悖逆)을 못할 짓 없이 다하고, 천사를 지대(支待)하기 위하여 시기에 미처서 할 일을 전혀 듣지 않기까지 하므로, 장차 변고가 있을까 염려한 까닭에 직무를 버리고 떠났다 합니다. 그 완악하고 사나운 아전들을 경관(京官)을 보내어 추국하라는 명은 이미 내리셨으나 경차관은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 먼저 김언을 조옥에 데려왔습니다. 장신(杖訊)을 받다가 마음대로 직무를 버린 죄를 거짓으로 승복한다면, 완악하고 사나운 무리의 간사한 계책이 이루어질 것이니, 먼저 고을 사람들을 추국하소서. 그런 뒤에 김언을 추문(推問)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전에 한석호(韓碩豪)가 군수였을 때에도 아전들이 간사한 술책을 부려 죽지 않은 죄수를 죽었다고 검시(檢屍)하여 한석호를 옥사(獄事)를 신중하게 다스리지 않은 죄에 빠뜨리려고 피

하였으니, 이 고을의 인심이 완악하고 사나운 것은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이제 고을 사람을 형신(刑訊)하지 않고 먼저 김언을 죄준다면, 원근(遠近)이 그것을 본떠서 수령(守令)인 사람은 장차 손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근래 간사하고 사나운 것이 버릇이 되어 혐의를 품고 독을 머금어 그 윗사람을 무함하는 것은 흔히 다 그러합니다. 수원 아전들의 죄는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우선 김언의 옥사를 늦추고 먼저 고을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였다.

“삼공의 말은 옳다. 그러나 김언은 관직에 있으면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였고, 또 연유를 갖추어 감사에게 신보(申報)하여 간사하고 완악한 죄를 분명히 바꾸지 않고서 도리어 스스로 물러가려고 병을 핑계하여 사직하고 마침내 그 직무를 마음대로 버렸으니, 이는 스스로 완악한 백성들의 술수에 빠져 완악한 버릇을 길러 주기에 넉넉한 것이다. 김언은 변고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스스로 제 집에 물러갔으니 스스로를 보전하는 방도는 얻은 것이나, 국가가 관직을 둔 뜻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김언의 잘못은 작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히 명하여 조옥에서 추국하게 하였다. 이는 김언 자신의 잘못이지 고을 사람에게 관계되지 않는 일이니, 삼공이 먼저 고을 사람들을 추국한 뒤에 김언을 추문해야 한다고 말한 뜻을 나는 모르겠다. 완악한 백성들이 함부로 거스르는 것을 관직에 있는 자가 억제하지 못하고 먼저 자신이 위축되어 직무를 버리고 집에 돌아갔으니, 나라의 체모를 크게 손상한 것이다. 완악한 백성들이 김언이 추국받는다든 것을 듣더라도 저희들이 간사한 술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연히 알 것이다. 추국을 먼저 하고 뒤에 하는 것은 피차에 관계되지 않는다. 수원은 서울에서 멀지 않으니, 경차관이 빨리 이를 수 있다.”

○乙酉/三公啓曰: “水原郡守金馮, 今將逮鞠於詔獄. 以其擅棄任所觀之, 鞠於詔獄宜矣. 但聞水原人吏厭金馮, 必欲致其罷去, 橫暴悖逆, 無所不至. 至於天使支待及期之事, 全不聽從. 恐其將有變, 故棄官而去. 其頑暴人吏等, 發京官往鞠之命已下, 而敬差官尙未發去. 先致金馮於詔獄, 若於杖下, 誣服其擅棄官事之罪, 則頑暴之徒微, 奸計得成矣. 請先鞠邑人, 有可問之端, 然後問金馮似當. 前者韓碩豪爲郡守時, 下吏弄術, 以不死之囚, 詐以爲死, 至於檢屍, 謀陷碩豪於不謹治獄之罪. 此邑人心之頑暴, 其來尙矣. 今刑訊不加於邑人, 而先罪金馮, 則遠近效之, 爲守令者, 將無所措其手矣. 近來奸暴成風, 懷嫌含毒, 誣傾其上, 比比皆然. 水原人吏之罪, 不可不痛治, 姑緩金馮之獄, 而先治邑人何如?” 答曰: “三公之言是矣, 然金馮在官, 不能治之, 而又不具由報監司, 明正奸頑之罪, 反欲自退, 托病辭職, 卒乃擅棄其官, 此自陷於頑民之術, 適足以長其頑風也. 金馮恐其有變, 故自退於家, 其所以自保之道則得矣, 於國家設官之意何如? 金馮所失, 非細故也. 是以別命推鞠於詔獄. 此馮自己之失, 不關邑人之事. 三公所謂先推邑人而後, 問金馮之意, 予不知也. 頑民橫逆, 在官者不能制之, 先自畏縮, 棄官歸家, 虧損國體, 可謂大矣. 頑民雖聞馮之被鞠, 亦自知其不陷吾輩奸術中也. 推之先後, 不關於彼此也. 水原距京城不遠, 敬差官可速到也.”

<중종실록 83권, 중종 32년 1월 5일(을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사헌부가 수원 옥사와 이천의 변을 안사언에게 다스리게 할 것을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인심이 완고하고 사나워서 분수를 넘어 그런 짓 하기를 못하는 짓 없이 다하는데, 관부(官府)의 아전들은 더욱 간사하고 사나워서 제 수령(守令)일지라도 조금만 뜻에 맞지 않으면 곧 해치기를 꾀합니다. 지금 이천 부사(利川府使) 신경광(申景洸)이 화살에 글을 매어 피우(避寓)한 집에 쏘아 놀라게 하고, 곧 또 그 집에 두 번 불을 놓았는

데 신경광은 간신히 몸을 피하였습니다. 경기 안에 이미 수원(水原)의 옥사(獄事)가 있고 또 이천의 변이 있어, 도리어 어그러지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안사언(安士彦)을 수원에 보내어 수원의 옥사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안사언에게 명하여 이어서 이천의 일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丁亥/憲府啓曰：“近來人心頑悍，逾分作非，無所不至，至於官府人吏，尤爲奸暴。雖其主宰，少有不愜，其輒欲謀害。今利川府使申景洸避寓之家，繫書射矢，以恐動之，旋又火其家者二度。景洸僅以身免。畿甸之內，既有水原之獄，又有利川之變。悖逆之事，相繼而作，至爲駭愕。今遣安士彦，往治水原之獄矣。命士彦仍治利川之事何如? (...)” 傳曰：“如啓。”

<중종실록 83권, 중종 32년 1월 7일(정해)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 군수 성근이 잡은 죄인 유재를 사목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수원 군수(水原郡守) 성근(成謹)에게 도둑 유재(有才)를 사로잡은 공으로 상가(賞加)할 일로 전지를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리 지은 강도를 사로잡은 경우가 아니고, 또 그 포고 절목(捕告節目)도 전례를 무시하고 특별히 마련한 뜻은 오로지 재물을 겁탈하고 사람을 끌어가는 도둑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재는 비록 도둑들과 같은 무리라고는 하나 겁탈에 같이 참여한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며, 형신(刑訊)을 받고서도 불복하였으니 쉽게 그를 정범(正犯)이라고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추안(推案)을 조사해 보았더니 거기에도 소루한 점이 있었는데 형조가 선불리 계청(啓請)하여 상가할 것을 논했으니 잘못입니다. 도로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였다.

“근(謹)이 사로잡은 사람이 유재가 아닌데도 유재라고 하였다면 상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유재를 사로잡지 못하기에 절목을 특별히 마련했던 것이고, 비록 그가 승복은 하지 않았지만 재물을 겁탈하고 사람을 끌어간 도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반드시 그 사목(事目)대로 시행한 다음에야 국가의 신의를 잃지 않을 것이다.”

○憲府啓曰：“水原郡守成謹，以賊人有才捕捉(常) [賞] 加事，奉傳旨。此非成黨強盜捕捉之類，且其捕告節目，不拘前例，別爲磨鍊之意，專爲刼奪拘囚賊人者，而有才則雖稱賊人同黨，其同參刼奪之狀，時未現著，方受刑不服，不可遽指爲正犯。且考推案，則亦有疎漏，而刑曹(經) [徑] 自啓請論賞亦非。請還收成命。” 答曰：“謹之所捉者，非有才而以爲有才，則不可賞也。不得捕捉有才，故磨鍊節目。雖不承服，不可謂非刼奪拘囚賊人也。必依事目，然後乃不失信也。”

<중종실록 93권, 중종 35년 9월 2일(경인) 2번째기사>

### 정치/사법

박막동 등이 무리를 지어 수원 등지에서 행인의 소지품을 빼앗다

상참(常參)을 받았다. 조계(朝啓)를 들었다. 전옥서 죄수 사노(私奴) 석류(石榴)와 **【박막동(朴莫同) 등과 무리를 지어 수원(水原) 등지에서 행인의 소지품을 겁탈하였음. 박막동이 체포되어 포도청에 수감되자 뛰어들어 풀어 주고, 군사를 난타(亂打)하였음. 중벌에 따라 참부대시(斬不待時) 할 자임.】** 진천(鎭川) 죄수 사노 문곤(文昆), 청주(淸州) 죄수 내자시노비 임삼(林三), 사노 박손(朴孫)에 대한 일이었다.(...)

○丁未/受常參，聽朝啓。典獄署囚私奴石榴，【與朴莫同等作黨，水原等處行人所持什物刼奪，朴莫同被捉，補盜廳拘留，突入解放，亂打軍士。從重，斬不待時。】鎭川囚私奴文昆，淸州囚內

資寺奴林三·私奴朴孫.(…)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9월 24일(정미) 1번째기사>

정치/사법

대사헌 임백령 등이 수원부사 이약빙의 일을 아뢰다

대사헌 임백령(林百齡), 집의 나세찬(羅世纘), 지평 김천우(金天宇)가 아뢰기를, (…)  
임백령이 다시 아뢰기를, “언론을 맡은 중요한 자리는 조금만 말이 있더라도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뇌물을 받았다는 말은 사류가 퍼뜨린 것인데, 말의 근원이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약빙(李若氷)에게서 나왔다 합니다. 이약빙도 사류이므로 반드시 헛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니, 신들이 탐오(貪汚)의 죄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 감히 뻔뻔스레 벼슬에 있으면서 남에게 비웃음을 받겠습니까.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조종(祖宗) 때에는 조금만 헛된 말이 있더라도 다 추고시켰으므로 이러한 일이 아주 없었는데, 요즘은 헛된 말이 있더라도 듣기만 하고 추고하지 않으므로 대관에게까지도 뇌물을 쓴다는 말로 요동하니, 내일 대신을 명초(命招)하려 한 까닭은 끝까지 추고하려는 것이었다. 그 말의 근원이 이약빙에게서 나왔다면, 이약빙이 어찌 들은 것이 없이 그랬겠는가. 대관의 뜻은 추고하지 말자는 것일지라도, 이것은 추고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곧 이약빙을 잡아 가두게 하고, 삼공(三公)은 우선 명초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大司憲林百齡·執義羅世纘·持平金天宇啓曰：(…) 林百齡再啓曰：“言論重地，雖小有言，不可冒處。此受賂之言，士類傳說，而言根出於水原府使李若氷云。若氷亦士類，必不爲虛言，臣等當受貪汚之罪，安敢靦然在職，取人侮笑乎？請遞臣等之職。” 答曰：“祖宗朝小有虛言，皆令推之，故絕無如此之事。近者雖有虛言，徒聞之而不推，故至於臺官亦以行賂之言動之。明日命招大臣者，欲其窮極推之，其言根出於李若氷，則若氷豈無所聞而然乎？臺官之意，雖欲勿推，此不可不推之事也。勿辭。” 傳于政院曰：“卽令捉囚李若氷，而三公則姑勿命招可也。” (…)

<중종실록 101권, 중종 38년 11월 8일(무신) 2번째기사>

정치/사법

경기감사가 수원 등처에 있는 죄인의 노비와 전답을 나누어줄 것을 청하다

전교하였다. “죄인의 노비(奴婢)와 전답을 공신들로 하여금 스스로 고르게 한 다음 각사(各司)에 나누어 주려고 한다. 다만 아직 그 다소를 몰라 처리하지 못했으니 후일에 다시 상고하여 공사(公事)를 내려 시행하게 하라.” 【경기감사(京畿監司) 김명윤(金明胤)의 서장에 수원(水原)·고양(高陽)·도원(桃源) 등처의 죄인의 노비와 전답을 나누어 줄 것을 청하였다.】

○壬戌/傳曰：“罪人奴婢田畝，令功臣等自擇，然後分給各司矣。但時未知多少，未得區處耳，後日更考，今下公事施行。” 【京畿監司金明胤書狀，水原·高陽·桃源等處，請分給罪人奴婢田畝事.】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1월 3일(임술) 1번째기사>

정치/사법

수원 죄수 이윤창의 처모 백씨의 상언에 대해 허실을 논하게 하다

백씨(白氏)의 상언(上言)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사건의 허실(虛實)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살인의 중대한 일은 수인(讎人)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는다면 원왕(冤枉)이 없지 않을 듯 싶으니, 대신에게 의논해서 아뢰라.” **【백씨는 수원(水原)의 죄수 이윤창(李允昌)의 처모(妻母)이다.** 윤창과 백씨가 지애정(池愛丁)이란 자와의 송사로 인하여 사이가 나뉘었다. 애정에게 금정(金丁)이란 아우가 있었는데 을사년 정월 도적이 밤에 그 집에 불지르고 그를 사살(射殺)하였다. 애정이 도적은 윤창 때문이었다고 관가에 호소했으므로 윤창이 형신(刑訊)을 받았다.】

○以白氏上言【白氏，水原囚李允昌妻母也。允昌及白氏與池愛丁者，因訟構嫌。而愛丁有弟曰金丁，在乙巳正月，有賊夜火其家射殺之。愛丁，以爲賊由允昌，許官刑訊。】下于政院曰：“此中虛實，未可知也。然殺人重事，一聽讎人之言，則恐不無冤枉，議諸大臣以啓。”

<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1월 16일(갑술) 6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 사는 양인 김언방이 어미를 타살하여 삼성 교좌하다

**수원(水原) 사는 양인(良人) 김언방(金彦邦)이 자기 어미를 타살하였는데,** 잡아다가 삼성 교좌(三省交坐)로 추국하여 이런 자는 현륙(顯戮)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라고 명하였다.

○癸亥/水原良人金彦邦打殺其母。命拿推，三省交坐，明示顯戮。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2월 17일(계해) 1번째기사>

### 정치/사법

홍문관이 수원의 김극하가 우상의 아우 노극신에게 뇌물을 주고 권관이 되었다

홍문관이, 내수사(內需司)의 공사(公事)가 공정하지 않고 이비(吏批)·병비(兵批)의 정사가 사정(私情)을 따른 것이라 하여 일제히 모여서 차자(筭子)를 올리기를 청하므로 가서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병조 판서 강사상(姜士尙)은 매우 청렴하고 정직하므로 경솔히 의논하여서는 안 된다.’ 고 하였으나. 모두들 **‘강 판서는 청렴하나 이제 수원(水原)의 김극하(金克蝦)가 우상(右相)의 아우 노극신(盧克愼)에게 뇌물을 주고 우상에게서 서간(書簡)을 받아서 병조 판서에게 보내어 권관(權管)이 되었는데,** 또 뇌물이 많았는데도 직임은 하찮다는 것으로 유감을 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언(公言)하였으니, 이것은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 저녁까지 등불을 밝히면서 교정하여 들었는데, 상이 유념하겠다고 답하였다.

○甲戌/弘文館，以內需司公事不公，吏兵批政事循私，請爲一會，筭子往會。或以兵判姜士尙甚清正，不可輕議。僉曰：“姜判則清矣。今者水原金克蝦賂右相之弟盧克愼，奉簡于右相，送于兵判，以取權管。又以賂多而任少爲憾，颺言稠中，此不可不論。” (….) 至夕明燈，而校正以入。” 答曰：“當留念焉。”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2월 28일(갑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전응정을 잡아올 때 수원에서 군인을 보내지 않아 도주자가 있다고 금부가 보고하다

의금부의 계목에, **“전응정을 잡아올 때에 수원(水原)에서는 압래(押來)할 군인을 정하여 보내지 않았고** 진위(振威)에서는 군인들이 교대를 기다리지도 않고 흩어져 간 탕으로 사건(事干) 임천건(林天健)이 어둠을 타 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고을의 관리를 추고하여 치

죄하소서.”

하니, 계목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임천건은 곧 체포되었다.】

○己亥/義禁府啓日：“全應楨拿來時，水原則押來軍人，不爲定送，振威則軍人不待交代散去，以致事干，林天健乘昏逃走，兩官官吏推考治罪事。” “依允.” 【林天健尋被捕.】

<선조실록 12권, 선조 11년 2월 18일(기해)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사헌부가 수원 부사 우성전의 파직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 우성전(禹性傳)은 노친(老親)이 서울에 있다는 구실로 자주 왕래하면서 공급할 물품을 연속적으로 실어 오는가 하면 주육(酒肉)을 많이 마련하여 손님을 접대하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府啓：“水原府使禹性傳，托以老親在京，頻數往來，供億之物，絡繹馱輸，多設酒肉，應接賓客，請罷職.” 如啓.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2월 9일(계묘) 3번째기사>

#### 정치/사법

백성들이 수원에서 사창을 부수고 관곡을 훔쳐가기까지 하다

(…) 존성이 아뢰기를, “전일 과거에서 뽑혀 전지(戰地)로 나아간 사람들이 중로(中路)에서 남의 재물을 강탈하여 마치 왜적이 지나간 곳 같았으므로 백성들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으며, 수원(水原)에서는 사창(社倉)을 부수고 관곡(官穀)을 훔쳐 가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

○(…) 存性曰：“前日取科赴戰之人，中路奪人釜鼎，若倭賊過處，民不堪其苦，而如水原社倉，至破開倉庫，偷取官穀云.” (…)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6일(무진) 3번째기사>

#### 정치/사법

충청도 도적인 송유진·김천수 등을 친국한 공초의 내용

상이 행궁(行宮)의 편전으로 나아가 죄인을 친국하였다. 제신(諸臣)이 좌정(坐定)하자 대포를 쏘도록 명하고 대신에게 이르기를, (…)아산과 직산의 지경에 천우(天雨)·풍산(風山)·풍석(風石)·만억(萬億)·천석(天石) 등 적중(賊中)에 들어가 나와 함께 행동을 같이한 자들이 있습니다. 수원(水原)의 괴수로서 아산과 직산 사이에 사는 자가 있는데 어떤 이는 이충남(李忠男)이라 하기도 하고 충갑(忠甲)이라고 하기도 하고 충세(忠世)라고 하기도 하는데 양반인 것 같았습니다. 홍우가 충남을 군관처럼 대우하였습니다.” 하였다. (…)

○上御行宮便殿，親鞫罪人. (…)牙山·稷山之境，有天雨·風山·風石·萬億·天石，同入賊中，與我行止相同. 水原之魁首居牙·稷間者，或稱李忠男，或稱忠甲，或稱忠世，似是兩班. 洪瑀待忠男如軍官” 云. (…)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4일(계묘)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송유진의 공초 내용에 원종이 수원과 용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려했다고 하다

적괴 송유진이 궤정으로 들어왔다. (…)원종은 경성을 범할 적에 먼저 수원과 용인의 군사



를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는데, 용인은 그의 어미의 고향이고 수원은 그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직산의 조희성(趙希聖)은 군기의 제조를 감독하였고, 적당(賊黨)은 도훈도(都訓導) 봉유(奉柔), 유학(幼學) 윤훈갑(尹訓甲)·윤계갑(尹戒甲), 충의위(忠義衛) 이삼성(李三省), 수문장(守門將) 배억산(裴億山), 유학 고계남(高季男)·고중남(高仲男)·곽인(郭仁), 내금위(內禁衛) 곽대남(郭大男)이고, 군량을 조달하는 사람은 천안의 별감(別監) 김응신(金應臣)과 청주(淸州)에 사는 조관(朝官) 김충남(金忠男)이고, 홍우(洪瑀)·홍난생(洪蘭生)은 좌우장(左右將)이 되고, 나는 홍근(洪瑾)과 함께 문서 차지(次知)가 되었습니다. 이산겸을 만나보고자 했으나 만날 수가 없었고, 노일개(盧一凱)라는 사람은 만나보았습니다. 승려 일현(一玄)의 말에 의하면 가야산의 적괴는 얼굴이 없고 수염이 없는 문사(文士)라고 하는데, 일도(一道)가 모두 여대로(呂大老)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화가 아니고 거적(巨賊)의 꾀를 받아서입니다. 거적은 산겸인데 밤에 사람을 보내어 결박하였습니다.” 하였다. (…)

○賊魁宋儒眞，入庭將鞫，(…) 元宗欲於犯京時，先以水原·龍仁軍入之。龍仁乃其母鄉，水原乃其所居也。稷山趙希聖，則監造軍器，賊黨則都訓導奉柔·幼學尹訓甲·尹戒甲·忠義李三省·守門將裴億山·幼學高季男·高仲男·郭仁·內禁郭大男軍，糧覓給人，則天安別監金應臣·淸州寓居朝官金忠男，而洪瑀·洪蘭生爲左右將。我與洪瑾文書次知，李山謙則欲見，而未得見。盧一凱稱名人，則見之。僧一玄言，伽倻賊魁，面縛無髯之文士云。一道，皆疑呂大老也。我非自作之孽，爲巨賊所誘。巨賊山謙也。(…)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5일(갑진)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조희일의 공초에 수원에서 아산 가는 길에 회진을 만났다고 하다**

조희일의 초사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수원(水原)에서 아산(牙山)으로 가던 중로에서 회진을 만났는데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김형의 집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趙希逸招辭大概 自水原歸牙山，路見希進，手持一紙書，問其何處得來，答云金瑩家得來。”

<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8일(정미) 7번째기사>

#### 정치/사법

**사헌부가 재주가 모자란 수원 부사 이정란의 파직을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수원부(水原府)는 물자가 많고 땅이 커서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불리우는데 부사(府使) 이정란(李廷鸞)은 재주가 모자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나이 또한 많아 일상적인 첩소(牒訴)도 제때에 판결하지 못하며 정사를 하리(下吏)에게 맡겨 백성이 그 해를 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환자곡(還上穀)도 제때에 나누어 주지 않아 백성이 전답에 씨를 못 뿌려 모두 황무지가 되게 하였으므로 온 경내가 원망하고 떠나는 자가 줄을 잇고 있으니 파직을 명하고 그 후임을 신중히 가려 보내소서. (…)” 하니, 상이 따랐다.

○司憲府啓曰：“水原爲府，物衆地大，號稱難治之邑。府使李廷鸞，才短治劇，年且衰耗，尋常牒訴，趁未剖決，政委下吏，民受其害。各穀還上，亦不及時分給，致令民田闕種，盡爲荒蕪，闔境怨咨，流亡相繼。請命罷職，其代十分擇遣。(…)” 上從之。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4일(신미)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비변사가 유언 비어를 경계하면서 수원 등지의 사례를 들어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래에 유언 비어가 계속 퍼져 서울에 짐을 꾸리고 이사할 계획을 하는 사람이 많다 하여 놀라와하고 있는데, 또 들으니 경기(京畿)·수원(水原)·남양(南陽)·강화(江華) 등처는 더욱 소동이 심하여 혹은 익지 않은 벼를 베고, 혹은 소를 잡아 먹고, 혹은 가산을 털어 말을 사들인다고 하니 만약 제때에 진정시키지 않으면 장차 와해(瓦解)될 형세입니다. 서울은 오부(五部)가 다방면으로 효유하게 하고 외방은 감사(監司)가 수령에게 통지하여 철저히 진정시키게 하되, 만약 허언(虛言)을 조작한 자가 있을 때는 군율을 속인 율(律)로 다스려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備邊司啓曰: “近來訛言屢騰, 京城人多有荷擔·遷徙之計, 已爲駭愕. 仄聞京畿水原·南陽·江華等處, 尤甚騷動, 或刈未熟之禾, 或殺牛宰食, 或傾資買馬云. 若不登時鎮定, 將有瓦解之勢. 京中則令五部, 多般曉諭; 外方則監司知委守令, 十分鎮定, 如有造作虛言者, 治以惑衆之律, 以警其餘.” 答曰: “依啓.”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6일(임오)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비변사가 경기 서도의 토적은 수원판관 등을 장수로 삼아 거병하라고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근래 경기의 여러 고을에 토적(土賊)이 성행하여 사람과 가축을 살해하고 영릉(英陵)의 제물도 빼앗았으니 어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겨울과 봄에 곡식이 귀할 때는 도둑의 환난이 필시 지금보다 심할 것입니다. 각 마을에 백성이 조금 모여 사는 곳에는 가까운 곳의 백성으로 하여금 둔(屯)을 쳐서 같이 살게 하거나 혹은 목책(木柵)을 만들어 각각 활과 창 등 도적을 막을 물건을 설치하고 무재(武才) 있는 사람 1명을 선발해서 한 둔의 장(長)을 삼아 도적 잡는 임무를 주관하게 하며, 제대로 포획하지 못하거나 관에 고하지 않는 자는 죄로써 다스리고 잘 포획하는 자는 포획의 많고 적음에 따라 논상(論賞)합니다. 또 무관 수령으로 검거 차사원(檢舉差使員)을 삼으며 동도(東道)는 포천 현감 양학서(楊鶴瑞)와 삭령 군수 이유직(李惟直)으로 장수를 삼고, 남도(南道)는 여주 목사 김우고(金友皐)와 양지 현감 조덕공(趙德恭)과 경안 찰방(慶安察訪) 민의서(閔義瑞)로 장수를 삼으며, 서도(西道)는 부평 부사 기훈(奇薰)과 수원 판관 이순빈(李舜賓)으로 장수를 삼아 서로 약속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사찰해서 동도와 서도에서 일제히 거병하여 도적의 소굴을 직접 탐색하거나 혹은 귀로에다 복병(伏兵)을 두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민과 아전, 품관(品官) 중에 만약 자원해서 도적을 잡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모집해서 그 공로에 따라 아뢰어 논상하고, 각 장수의 소속 고을에 도적이 일어났는데 포획하지 않는 자는 순찰사가 중벌을 내리게 하며, 그 중에도 더욱 심한 자는 아뢰어서 군율에 의해 처단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경기 감사 유근(柳根)에게 행회(行會)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備邊司啓曰: “近來畿邑諸處, 土賊興行, 殺掠人畜, 英陵祭物, 亦爲所奪. 安有如此駭愕之事乎? 冬春穀貴之時, 則盜賊之患, 必甚於今日. 若於各村人民, 稍集[群]聚, 令近處之民, 使之作屯同居, 或爲木柵, 各設弓槍禦賊之物, 擇有武才者一人, 爲一屯之長, 以主捕賊之任, 不能捕獲, 或不告官者治罪, 能捕者, 從所捕多少論賞. 又以武班守令, 爲檢舉差使員, 東道,

則以抱川縣監楊鶴瑞·朔寧郡守李惟直爲將；南道，則以驪州牧使金友臯·陽智縣監趙德恭·慶安察訪閔義瑞爲將；西道，則富平府使奇薰·水原判官李舜賓爲將，使之相通約束，多般伺察，東西齊舉，或窮探巢穴，或設伏歸路，毋使網漏，民吏·品官中，如有自願捕賊者，皆令招募，從其功勞，啓聞論賞；各將所屬郡邑，盜賊竊發，而不爲捕捉者，巡察使重加決罰；其中尤甚者啓聞，從軍律處斷之意，行會于京畿監司柳根何如？”上從之。

<선조실록 54권, 선조 27년 8월 19일(갑자)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경기감사가 토적의 수괴들을 은밀히 체포하기 위해 수원에서 달려왔다고 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경기 감사 유근(柳根)이 복명(復命)하기 위하여 원(院)에 도착하여 신들을 보고 은밀히 말하기를 ‘이천(利川)의 적(賊)은 현몽(玄夢)이란 자가 괴수(魁首)인데, 용인(龍仁)에 사는 백성 설세창(薛世昌)이라고 하는 자는 백정(白丁)과 산척(山尺) 40여 명을 거느리고 현몽의 지휘를 받아 작적(作賊)한 자이다. 이달 7일 설세창과 조돌손(趙丕孫)을 붙잡아 추문(推問)하니, 서울 동대문 안에 사는 재인(才人) 김의산(金義山)이라고 하는 자가 또 이들의 우두머리로서 거느린 자가 역시 많다고 하였는데, 만일 법연히 치계(馳啓)하면 누설될까 염려되어 수원에서 달려왔다. 적의 공초 내용의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공초가 이러하니 급급히 찾아서 체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신이 외방으로부터 와서 비밀히 아뢰는 일을 포도청에 내리게 될 경우, 본적(本賊)이 과연 있어서 이를 듣고 스스로 의심하여 도피할 위험이 있을까 싶으니 매우 난처하다. 허실간(虛實間)에 정원에서 은밀히 아뢰어 양변(兩邊)의 대장(大將)을 불러서 수색하여 체포하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유근의 말이 역시 치밀하게 처치하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기에 감히 아뢰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저녁에 아뢰는 말을 어찌 이제야 아뢰는가. 계사(啓辭)대로 속히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政院啓曰：“昨夕，京畿監司柳根，爲復命到院，見臣等密言曰：‘利川之賊，玄夢乃其魁，而龍仁居百姓薛世昌稱名人，率白丁·山尺四十餘人，聽玄夢指揮作賊者也。本月初七日，捉得薛世昌及白丁趙石乙孫推問，則京中東大門內居才人金義山稱名人，又是定將者，而所率亦多。若泛然馳啓，則恐致脫漏，以此自水原馳來。賊招虛實，雖不可知，而所供如此，不可不急急尋捕。臣自外來，遽爲秘密啓事，下于捕盜廳，則本賊果有其人，聞之恐或有自疑逃避之患，極爲難處。虛實間，若自政院密啓，招兩邊大將，使之聞見措捕，則恐或便當。’云。柳根所言，亦出於詳密處置之計，敢啓。”傳曰：“昨夕之啓辭，何以今始啓之？依啓辭，斯速施行。”

<선조실록 56권, 선조 27년 10월 9일(계축) 9번째기사>

## 정치/사법

### 전대로의 공초에서 수원 등지에 살았다고 하다

전대로(全大老)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 “신은 청안(淸安)에 살았는데 청주와는 60여 리 떨어져 있으니, 강효남·이성남 등이 체결(締結)하여 왕래하며 소를 잡고 술을 마신 등의 일은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강효남은 처남이기는 하나 이미 의절(義絶)하였습니다. 강효남은 본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아내를 얻어 서울에 살기도 하고 수원에 살기도 하고 청주에 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무상(無狀)한 모역(謀逆)을 하였다 하더라도 의절한 매부와 같이 모의한다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全大老供稱：“臣居清安，距清州六十餘里。姜孝男·李成男等，締結往來，屠牛飲酒等事，萬無聞知之理。姜孝男，雖是妻甥，而已爲義絕。孝男本無定居，或娶妻居京，或居水原，或居清州，雖無狀謀逆，與義絕妹夫同謀，萬萬無理。”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9일(정축) 11번째기사>

### 정치/사법

사노 삼종의 공초 내용으로 수원 황여필의 종이라고 하다

사노(私奴) 삼종(三從)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 “수원 황여필(黃汝弼)의 종으로 연기(燕岐)에 살았는데, 금년 2월 청주 강효남의 집 문밖에 옮겨 살았습니다. 한담·이성남·이경상 등이 강효남의 집에 술을 빚어놓고 세 차례 모여 마신 일은 들어 알고 있으나, 품팔이로 먹고 살아가므로 다른 일은 알지 못합니다.”

○私奴三從供稱：“以水原黃汝弼奴子，居於燕岐。今年二月，移居清州姜孝男家門外。韓淡·李成男·李景祥等，姜孝男家，釀酒三度會飲事，聞知。備食資生，他餘事不得知。”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9일(정축) 14번째기사>

### 정치/사법

홍주 목사 홍가신이 수원부사 당시 공문을 위조한 군졸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언급하다

홍주 목사(洪州牧使) 홍가신(洪可臣)(…)이 상소하였다. (…)신이 앞서 수원(水原)을 맡고 있을 때에 경영(京營)의 군졸 황윤주(黃允宙)란 자가 보미(保米)와 보포(保布)를 받아내려고 하면서 혹시 뜻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방(赴防)에 관한 공문(公文)을 위조하고 인신(印信)을 찍어 그것을 가지고와서 보미와 보포를 독촉하자 이웃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관에 신고했습니다. 율(律)을 고찰해 보면 인신 위조는 사형에 해당되지만 그 실정을 따져 보면 바라는 바가 몇 되 몇 말의 쌀과 몇 자나 장(丈)의 베에 지나지 않는데, 승복(承服)하면 사형을 받게 되고 승복하지 않으면 형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사(大赦)가 있어 사형에 해당되는 잡범(雜犯)들은 모두 은덕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이 자만은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이 항상 안타깝고 측은하게 여겨 왔습니다. 지금 중외(中外)에 간혀 있는 사람으로 죄가 의사(疑似)하여 감결(勘結)하지 못하고 오래 옥중에 간혀 있으면서 신소(伸訴)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찌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옥사를 결단하여 죄수를 돌보는 일은 성인들이 더욱 조심해서 했습니다. 전하께서 오늘 하문하시게 된 것은 이런 흠恤(欽恤)하는 유덕(遺德)에서 나온 것입니까?(…)

○洪州牧使洪可臣(…)上疏。略曰：(…) 臣前守水原時，有京卒黃允宙者，欲徵其保米·布，而慮其或不如意，乃僞作赴戍公文，爲踏印信，來督米布，隣里之人疑而告官。考其律則僞造印信，死罪也，推其情則所望，不過升斗之米，尺丈之布，而承服則死，不服則刑不止。其間屢經大赦，雜犯死罪之人，皆蒙恩宥，而此人獨不見原，臣常悶惻。今中外繫囚者，罪涉疑似，難於勘結，久繫獄中，伸訴無路者，豈可謂無其人哉？決獄恤囚，聖人尤謹。殿下今日之問，其欽恤之遺意乎？(…)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일(정묘)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유희서가 수원 등지의 백성의 호소를 듣고 인부와 쇄마의 폐단을 아뢰다

유희서(柳熙緒)가 아뢰기를, “신이 부여(扶餘)와 임천(林川) 등 고을을 순회하며 대소(大

小) 인민들을 모아 놓고 조정의 덕의(德意)를 선포하며 위구(危懼)하지 말고 각기 생업에 안정하라고 했더니, 모두들 하는 말이 ‘역적의 변이 난 뒤부터 더러는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의 군관(軍官)이라고 하며 역적을 잡는다는 핑계로 촌가(村家)에 돌입하여 남정(男丁)들을 결박하므로 노약자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산골짜기로 숨게 되었고, 집에 있는 잡물(雜物)을 역적의 장물(贓物)이라 하며 있는 대로 모두 거두어 가므로 여리(閭里)가 쓸쓸해지게 되었다. ……」 하였습니다.

일로(一路)의 인부(人夫)와 쇠마(刷馬)의 폐단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청양(靑陽)·평택(平澤)·진위(振威)·수원(水原)의 백성들은 길을 막으며 신에게 호소하기를** ‘은지경 사람들이 농사 일을 전폐하고 관아(官衙) 문앞에 모인지 지금 반 달이 지났는데도 도사(都事)와 선전관(宣傳官)들이 이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인마(人馬)를 책임지우며 멋대로 매질을 하므로, 차라리 도망하여 흩어져 버릴지언정 다시는 지탱하여 감당할 길이 없다. 계달(啓達)하여 만분의 일의 혜택이라도 받게 해주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고 했습니다. (…)”

하니, 전교하기를, “추국청(推鞠廳)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柳熙緒啓曰: “臣巡到扶餘·林川等邑, 聚會大小人民, 宣布朝廷德意, 俾勿危懼, 各安其業云, 則皆言: ‘自逆變之後, 或稱監司·兵·水使軍官, 托以捕賊, 突入村家, 結縛男丁, 老弱皆畏竄山谷, 家有雜物, 謾以賊贓, 盡數收取, 以此閭里蕭然.’ 云云. 如一路人夫·刷馬之弊, 有不可形言, 其中靑陽·平澤·振威·水原之民, 遮道呼訴於臣曰: ‘闔境人民, 專廢農業, 聚會官門, 今過半月, 而都事·宣傳官等不諒此意, 濫責人馬, 恣行鞭扑, 寧爲逃散, 更無支當之路. 咸願啓達, 以蒙萬分之惠’ 云. (…)” 傳曰: “令推鞠廳議啓.”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6일(신묘) 4번째기사>

## 정치/사법

### 헌납 김신국 등이 무능한 수원부사 유영건의 파직을 아뢰다

헌납 김신국(金薰國)이 【대사간 신식(申湜), 사간 한준겸(韓浚謙).】 아뢰기를,

“(…) **수원(水原)은 경기의 큰 고을로 양호(兩湖)의 요충지이자 서울의 보장지(保障地)이고 또 산성을 지키는 일과 군병을 조련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府使) 유영건(柳永健)은 나이 많은 음관(蔭官)으로 외람되어 중임의 자리에 있으면서 직무를 전혀 살피지 않기 때문에 온갖 일이 폐이(廢弛)되었는데 아전들이 이를 인연하여 간계를 부려서 백성의 원망이 자자합니다. 이처럼 위급한 즈음을 당하여서는 결코 이러한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파직시키고 그 대임은 재간이 문무를 겸비한 사람으로 십분 가려서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

○獻納金薰國【大司諫申湜·司諫韓浚謙】啓曰: “(…) 水原以畿甸大邑, 當兩湖要衝之會, 爲京都保障之地, 且有據守山城, 操練軍兵之責, 而府使柳永健, 以年老蔭官, 冒居重地, 專不察職, 百事廢弛, 吏緣爲奸, 民怨滋多. 當此緩急之際, 決不可付諸此人. 請命罷職, 其代, 以才兼文武之人, 十分擇遣.” 答曰: “依啓. (…)”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20일(경진)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에서 머뭇거린 조경 죄상에 대한 영의정 유성룡의 의견을 의금부가 보고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조경(趙敬)·조의(趙誼)·윤담(尹湛)의 공사(公事)로 전교하기를

‘경은 도감 제조(都監提調)이니, 이 사람들의 죄상이 어떠한가를 영의정에게 물어보라.’ 고 하셨기에, 유성룡에게 물어보니 ‘조경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머뭇거린 일은 신도 자세히 알 수 없다. 이제 조경의 자기 초사(招辭)로 보건대 10일 배사하고 떠났는데 14일 사이에도 수원에 있었으니, 여론이 그가 머뭇거린 것을 의심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다만 도원수 권율(權慄)의 절제를 받아 그의 분부를 들었으니 행군의 속도를 자기 마음대로 못한 것 같다. 조의와 윤담 등이 평소에 자기 속셈만 차렸다는 일은 전일에 별로 들은 바가 없고 군사를 뽑아 보낼 적에 너물을 받았다는 일은 바로 내려간 후의 일이므로 들을 수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도원수의 절제가 과연 그러했는가를 서신을 내려 보내 묻도록 하라.” 하였다.

○甲戌/義禁府啓曰：“以趙傲·趙誼·尹湛公事，傳曰：‘卿爲都監提調，此人等罪狀如何，問于領相’ 事傳教矣。問于柳成龍則曰：‘趙傲率軍出去逗遛之事，臣亦未能詳知。今以趙傲自己招辭觀之，則初十日拜辭，而十四日間，猶在水原，物論之疑其逗遛，亦有其由，但既受都元帥權慄節制，而聽其分付，則其行遲速，似不由己。趙誼·尹湛等，平日專務肥己事，前次別無所聞，至於抄軍還送之際，受賂等事，乃是下去後所爲，未得聞知矣。’” 傳曰：“知道。都元帥節制，果如彼乎？下書問之。”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7일(갑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선조가 수원의 길을 택한 조경은 지체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다**

사헌부가 권율과 조경의 일을 연이어 아뢰니, 답하였다. “주사(舟師)를 독촉한 것은 행여 성공할 수 있을까 싶어서이고 서울로 올라온 것은 실로 소명(召命) 때문이며, 술에 빠졌다는 것은 꼭 그러하였는지 모르겠고 몸을 떨치고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진(陣)에 임하여 장수를 바꾸는 일은 옛사람이 경계한 바이고 생쥐로 고양이를 바꾸는 것은 속인(俗人)도 비난하는 법이다. 거센 적이 머리를 내놓는 것도 시간 문제이니 아직 책려(策勵)하면서 중국 군사와 협동하여 큰 공을 거두기를 기다려 보는 것도 아니될 것 없다.

수원(水原)의 길을 택한 것은 우회하여 간 것이 아니고 하루에 30리를 갔는데 어찌 꼭 지체한 것이라고 하겠는가. 50리나 백리를 진군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이다. 상장(上將)도 중도에 흥변을 당하였으니 조경만을 깊이 책망할 것도 아니다. 지체하는 폐단은 경계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대장(大將)을 부당하게 벌하는 것은 군율을 진작시킬 수 있는 일이 못될 뿐더러 형정(刑政)에 관계되는 바도 가볍지 않으니, 이 두 장수의 일은 형편상 따르기 어렵다.”

○司憲府連啓權慄·趙傲事，答曰：“督舟師，慮其或成，抵京師，實因召命，縱酒未必實然，奮身誠難爲計。臨陣易將，古人所戒；以鼠易(柚) [猫]，俗人所譏。鯨鯢授首，應在不日，姑爲策勵，協同天兵，期收大功，恐未爲不可。取路水原，非是迂行，一日一舍，豈必逗遛？五十里·百里之趨，終必有蹶。上將軍半至之凶，則趙傲未可深責。逗遛之習，雖不可不警，而大將非罪陷戮，恐不足以振軍律，而所關於刑政非輕。此兩將之事，勢難從之。”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6일(계사)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선조가 조경이 수원의 길을 택한 것은 우회한 것이 아니니 지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다**

사헌부가 전에 아뢰 권율(權慄)·조경(趙倬)의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주사를 독촉한 것은 행여 성공할 수 있을까 싶어서이고, 서울로 올라온 것은 실로 소명(召命) 때문이며, 술에 빠졌다는 것은 꼭 그러하였는지 모르겠고 몸을 떨치고 일어난 것은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진(陣)에 임하여 장수를 바꾸는 일은 옛사람이 경계한 바이고 생쥐로 고양이로 바꾸는 것은 속인(俗人)도 비난하는 법이다. 거센 적이 머리를 내놓는 것도 시간 문제이니, 아직은 책려(策勵)하면서 명병과 협동하여 큰 공을 거두기를 기다려 보는 것도 아니 될 것 없다. 수원(水原)의 길을 택한 것은 우회하여 간 것이 아니고, 하루에 30리를 갔는데 어찌 꼭 지체한 것이라 하겠는가. 50리나 백리를 진군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이다. 상장(上將)도 중도에 흥변을 당하였으니 조경을 깊이 책망할 것도 아니다. 지체하는 폐단은 경계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대장(大將)을 부당하게 벌하는 것은 군율을 진작시킬 수 있는 일이 못될 뿐더러, 형정(刑政)에 관계되는 바도 가볍지 않으니, 이 두 장수의 일은 형편상 따르기 어렵다.”

○司憲府前啓權慄·趙倬事，答曰：“督舟師，慮其或成；抵京師，因召命也；縱酒，未必實然；奮身，誠難爲計。臨陣易將，古人所戒；以鼠易猫，俗人所譏。鯨鯢授首，應在不日，姑爲策勵，協同天兵，期收大功，恐未爲不可。取路水原，非是迂行，一日一舍，豈必逗遛？五十里百里之趨，終必有蹶。上將半至之凶，則趙倬未可深責。逗遛之習，雖不可不警，而大將非罪陷戮，恐不足以振軍律，所關於刑政非輕。此兩將之事，勢難從之。”

<선조실록 94권, 선조 30년 11월 9일(병신)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지평 경섭이 중국인을 가장하여 행패를 부린 수원에 사는 막동을 체포한 것을 아뢰다**

지평 경섭이 아뢰기를, “이 부총(李副摠)의 표하군(標下軍) 한 사람이 매우 포악하여 여러 사대부 집에 뛰어 들어가 부녀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약탈하기도 하고, 혹은 야간에 습격하여 그 집의 계집종을 겁탈하기도 하는데 한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달자(獐子)를 거느리고 무리지어 난동을 부리는 등 여염에서 난리를 일으키는 폐해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니 진짜 중국인이 아니고 수원(水原) 사는 방자(幫子) 막동(莫同)으로 이 부총의 표하에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의복과 언어를 중국인처럼 가장,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해 감히 손을 못 쓰게 하고 제멋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신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도 원통하여 그가 혼자서 밖에 나가는 것을 살피다가 비밀히 체포하여 수감하였는데 요즘 공고(公故)와 금형(禁刑)의 명으로 인하여 아직 곤장을 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持平慶暹啓曰：“李副摠票下軍兵一人，最爲暴惡，闖入諸處士大夫家裏，恐嚇婦女，掠奪財物，或夜間突至，刼奸其婢子，一有不挾於意，則輒率獐子，作黨亂打，閭閻作亂之弊，人不能堪。久而後諦察，則非眞唐人也，乃水原幫子莫同，隨行李副摠票下之人，衣服·言語，渾作唐人之樣，使人不得辨認，不敢下手，肆其所欲者也。臣等聞之不勝痛甚，伺其獨往外處，密捕囚禁，而近因公故及禁刑，時未及下杖矣。”傳曰：“知道。”

<선조실록 109권, 선조 32년 2월 12일(임술) 5번째기사>

#### 정치/사법

**사간원에서 함격북명사 조경이 정유년에 수원 행군을 지체한 것으로 탄핵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함경 북병사(咸鏡北兵使) 조경(趙倣)은 지난 정유년 가을 적들이 기전(畿甸)을 침입해 올 때 적을 맞아 치라는 명을 받고서도 고의로 행군을 지체시키면서 전진할 뜻이 없어서 성(城)을 나선 지 4일 만에야 비로소 수원(水原)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의 서성대며 관망하면서 자신을 아끼고 나라를 저버린 죄에 대해 백성들이 통분해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군율(軍律)로 논죄해도 실형(失刑)이 이미 심한데 어떻게 다시 곤외(關外)의 중임을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변방의 오랑캐들이 혼란을 일으켜 우리의 병사와 말을 잃어버렸는데이겠습니까. 우리가 책응할 수 있는 기밀은 오로지 곤수(關帥)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과 같이 겁이 많고 느리며 중한 죄를 진 사람이 사기를 분발하고 계책을 결단하여 여러 고을들을 호령할 수 있겠습니까. 제목(除日)이 한번 내려지자 물정이 해괴하게 여기니 합당한 인물이 없다고 핑계대어 일을 그르치는 후회를 남길 수 없습니다. 체차시키소서. (…)

○司諫院啓曰：(…) 咸鏡北兵使趙倣，往在丁酉秋，賊逼畿甸之日，既受迎擊之命，而故遲其行，無意前進，出城四日，始到水原。其逗遛觀望，愛身負國之罪，國人莫不痛惋，而尙保首領，論以軍律，失刑已甚，豈可復授以關外重寄乎？況藩胡構釁，士馬新喪？在我策應之機，專在關帥。以倣恇怯弛緩，而身負重罪之人，其能奮氣決策，號令列邑乎？除日一下，物情駭異，不可諉諸無人，以貽僨事之悔。請命遞差。(…)

<선조실록 111권, 선조 32년 4월 8일(정사)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정언 임수정이 작폐를 부린 수원 독성의 수성장 이여염을 파직시킬 것을 아뢰다

정언 임수정(任守正)이 와서 아뢰기를, “(…) 수원 독성(禿城)의 수성장(守城將) 이여염(李汝恬)은 아병(牙兵)을 찾는다는 핑계로 민간을 수색하고 공공연히 뇌물을 받고 멋대로 도로 풀어줬으며 기타 공무를 빙자하여 작폐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사대부의 첩을 검탈하여 의관(衣冠)에 욕을 끼친 것이 막심하니, 파직하고 서용치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 하였다.

○正言任守正來啓曰：“(…) 水原禿城守城將李汝恬，托稱牙兵，搜括閭民，公然受賂，任意還放，其他憑公作弊之事，難以一二計，且怯奸士夫所畜之妾。貽辱衣冠，莫(比) [此] 爲甚。請命罷職不敘。” 答曰：“依啓. (…)”

<선조실록 112권, 선조 32년 윤4월 19일(정유) 2번째기사>

#### 정치/사법

간원이 영문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 수원 판관으로 윤인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 수원(水原)은 본래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이름이 났는데 더구나 영문(營門)을 새로 건설하고 있으니, 명망과 재간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그 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임 판관 윤인(尹訥)은 출신(出身)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생소하니 분주한 사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체차시키고 명망 있는 문관(文官)을 각별히 가려 보내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丙午/諫院啓曰：“(…) 水原，素稱難治之邑。況新設營門，若非有才望勤幹之人，決不可堪任。新判官尹訥，出身未久，手段生疎，剽煩治劇，決難堪任。請命遞差，以有名望文(館) [官]，各別擇遣。” 答曰：“依啓.”

<선조실록 157권, 선조 35년 12월 19일(병오)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헌부에서 군졸을 침학했던 수원 부사 성윤문을 탄핵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성윤문(成允文)은 성품이 본래 탐욕스럽고 방종하여 전에 관서(關西)에 있을 때 군졸을 침학하였고, 본직에 제수됨에 미쳐 온 부(府)의 정사를 오로지 간리(奸吏)에게 맡겼으며, 거기다가 징렴(徵斂)이 끝이 없어 경내가 시끄러우니 이러한 사람을 하루라도 관(官)에 두어서 백성들에게 거둬 해를 끼치게 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憲府啓曰: “水原府使成允文, 性本貪縱, 前在關西, 侵虐軍卒. 及授本職, 一府之政, 專委奸吏, 加以徵斂無藝, 闔境嗷嗷. 如此之人不可一日在官, 重貽民害, 請命罷職. (…)” 答曰: “依啓.”

<선조실록 212권, 선조 40년 6월 15일(병오)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헌부가 수원 현감 우성전을 논핵하여 파직시키다

헌부가 수원 현감(水原縣監) 우성전(禹性傳)을 논핵하여 파직시켰다. 수원은 본시 큰 고을이었는데 강상(綱常)의 변이 있었으므로 명칭을 현(縣)으로 강등한 것이다. 성전은 시종신이었는데 그를 현감으로 내보낸 것은 그 책임을 중하게 여긴 것이다. 성전은 어렸을 때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는데 역리(易理)에 대한 논설을 잘 하였으므로 현직(顯職)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재주를 믿고 변론을 좋아하여 사류를 능멸하면서 스스로 ‘경제(經濟)를 감당할 만한 재주를 가졌다.’ 고 하였다. 그의 친구 홍훈(洪渾)·성낙(成洛) 등이 모두 추대하여 중히 여겼고 그의 동아리들이 매우 많아 성세를 크게 떨쳤는데, 이발·김우옹(金宇顛) 등이 그의 소위를 증오하여 논핵하려 하였다. 이때 이이는 사류들을 화합시켜 하나로 만들어 서로 정성을 모아 임금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는데 이발 등의 말을 듣고서는 또 다른 구적(仇敵)을 만들까 염려하여 강력히 말렸었다. 그런데 정인홍(鄭仁弘)은 ‘성전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체직시켜야 한다. 그로 하여금 다시 들어와 청현직(淸顯職)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고 하면서, 곧바로 성전이 서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관무를 폐기하였다고 논핵하여 파직시키게 하였다. 이리하여 그의 동료들이 모두 불평하였는데 남북 분당(南北分黨)의 조짐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憲府劾罷水原縣監禹性傳. 初, 水原以巨邑, 有綱常之變, 降名爲縣. 性傳以侍從, 出爲縣監, 重其任也. 性傳少遊李滉之門, 以善論《易》顯. 然負才好辯, 凌駕士類, 自以爲才堪經濟. 其友洪渾·成洛等皆推重之, 其儕流甚多, 聲勢甚張. 李滉·金宇顛等惡其所爲, 欲劾之. 時, 李珥方欲和協士類, 通融爲一, 而相與積誠, 以回天意. 聞滉等言, 恐其別生仇敵, 力止之. 鄭仁弘以爲: “性傳瓜滿當遞, 不可使復入淸顯.” 乃論性傳長在京城, 曠廢官守, 而罷之. 其儕輩皆懷不平, 南北分黨之漸, 自此始兆矣.

<선조수정실록 15권, 선조 14년 2월 1일(을미)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김천일이 수원에 수령으로 갔다가 탐오로 파직되어 나오다

(…) 신은 삼가 생각건대 왕옥(王獄)은 사체가 지극히 중하므로 어떤 평범한 죄인도 반드시 형추(刑推)를 계청(啓請)하는 것이 구례(舊禮)로 되어 있습니다. 신의 아버지가 정말 죽이려

했다면 영경이 어떤 죄목인데 어찌하여 전례에 따라 엄형을 청하여 마음에 달갑게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신리(伸理)하려고 사설(辭說)을 허다히 소비했으며, 또 이미 방사(放赦)된 후에도 다시 대간(臺諫)에 부탁하여 남의 힘을 빌어서 했겠습니까.

언자(言者) 중에 그때의 일은 모두 신의 아비에게서 나왔다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김천일(金千鎰)은 신의 아비와 친구 사이이고, 신의 아우는 또 그의 사위가 됩니다. 천일이 학행으로 세상에 알려져 수원(水原)에 수령으로 나갔다가 탐오(貪汚)하다는 대론(臺論)을 입고서 파직되어 돌아왔는데, 신의 아비는 구할 만한 처지에 있었으면서도 천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대간을 사주하여 성사하기 어려운 일을 지어 낼 수 있었겠습니까.(…)

○(…) 臣伏見, 王獄事體至重, 凡尋常罪人, 必以刑推啓請者, 乃是舊例也. 臣父實欲殺之, 則永慶被何等罪名, 而何不援例請刑, 甘心報復, 而反欲伸理, 多費辭說, 既赦之後, 復囑臺諫, 借人力而爲之乎? 言者有謂: “其時之事, 皆出於臣父.” 此亦不然. 金千鎰與臣父相友, 臣之弟又爲其婿. 千鎰以學行著聞, 出宰水原, 而以貪汚, 被臺論罷歸, 臣父不能救千鎰於可救, 況能指喉臺諫, 做出難成之事乎? 其時兩司所論, 不過直據所聞而言之. (…)

<선조수정실록 28권, 선조 27년 5월 1일(무인) 3번째기사>

#### 정치/사법

**추국청에서 죄인들의 공초에서 수원의 신봉사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아뢰다**

추국청이 아뢰기를, “(…) 막동이 형문을 받은 뒤에 한 공초 내용은 ‘궁자(弓子)·전통(箭筒)·환도(環刀)를 부인(夫人)의 큰집 익랑(翼廊) 마루 밑에 묻었다.’ 했으므로 즉시 금부의 낭청을 보내어 찾아보게 하였으나 또한 찾아낸 것이 없었습니다. 애현이 형문을 받은 뒤에 한 공초 내용은 ‘환도를 말뚝 속에 묻었다.’ 고 했으므로, 즉시 낭청을 보내어 찾게 하였으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끌어들이 춘개(春介)와, 계집종 이대(李代)가 끌어낸 막개(莫介), 세복이 끌어들이 수원(水原)의 신봉사(申奉事)는 별로 긴요하게 관계된 것이 없으니, 일일이 추착(推捉)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범손의 조사에서 현출된 이대 및 전교를 인하여 낭청을 보내어 잡아온 궁인 아무아무와 계집종 정부(貞富)·내론지(內論之)·예숙(禮淑) 등의 공초 내용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조처해야 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였다.(…)

(…) 莫同刑問後招辭: ‘弓子·箭筒·環刀, 夫人大宅翼廊抹樓下埋置.’ 云, 遣郎廳搜覓, 亦無所得. 愛玄刑問後招辭以爲: ‘環刀埋置于馬糞中.’ 云, 遣郎廳搜覓, 而無有矣. 且其所引春介及婢李代所引莫介·世福所引水原申奉事, 別無緊關干涉之事, 似不當一一推捉. 凡孫招辭現出李代及因傳教遣郎廳拿來宮內某某·婢貞富·內論之·禮淑等供辭如此, 何以爲之? 敢稟.” (…)

<광해군일기 1권, 광해군 즉위년 2월 26일(계미)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사법

**사간원이 수원 부사가 선혜청의 쌀을 더 받아들인 것으로 국문을 청하니 따르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수원 부사 김거병(金去病)은 교활하고 범람한 인물인데 선혜청의 추등(秋等) 작미(作米)를 임의대로 더 받아들였으니, 잡아다 국문하도록 명하소서.

안기 찰방(安奇察訪) 구욱(具旭)은 들볶는 것을 일삼아 이졸(吏卒)이 빨빨이 흩어졌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왕이 따랐다.>

○庚戌十月二十八日甲午己亥(司諫院啓: “水原府使金去病驕猾泛濫, 宣惠廳秋等作米, 任意加捧, 請命拿鞫. 安奇察訪具旭以侵漁爲事, 吏卒流散, 請罷職.” 王從之.)

<광해군일기 34권, 광해군 2년 10월 28일(기해)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사법

사간원에서 수원 부사 문희성은 탐욕스럽고 무능하다 하여 파직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문희성(文希聖)은 평소의 이력이 없는데도 외람스레 본직에 제수되었고, 오직 제 뱃속을 불리는 일에 정신이 팔려 관고(官庫)를 형편없이 판탕시켰으며, 군정(軍丁)을 뽑을 때에 있어서도 마구잡이로 선발하는 폐해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체를 알지 못하여 어리석고 패려긋으며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단 하루라도 고을에 재직시킬 수 없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본부는 기보(畿輔)의 중요한 지역으로서 누차 비인(匪人)을 겪어 장차 버린 고을이 되어가고 있으니, 그 대신 청렴·근신하고 성적(聲績)이 있는 사람을 각별히 골라서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근일의 논계가 무장(武將)을 대상으로 한 적이 많은데, 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처럼 아뢰니, 일단 추고하라.” 하였다.

○司諫院啓曰: “水原府使文希聖, 素無履歷, 濫授本職, 唯以肥己爲事, 使官庫板蕩無形, 至於抄軍之際, 亦多泛濫之弊, 加以不識事體, 愚悖無忌. 如此之人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本府以畿輔重地, 屢經匪人, 將爲棄邑, 其代以清謹有聲績人, 各別擇遣.” 答曰: “近日論啓, 多在武將, 予未知何故. 然如是啓之, 姑爲推考.”

<광해군일기 41권, 광해군 3년 5월 12일(신해) 3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사법

사간원에서 수원부사 문희성을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체차시키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문희성을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근래에 수원(水原)이 하나의 함정이 되고 있다. 무부(武夫)로서 이 지역에 부임한 자들이 다들 낭패를 당하니 나는 괴이한 생각이 든다. 문희성은 체차하라.” 하였다.

○司諫院連啓, 請罷文希聖. 答曰: “近來水原爲一窠. 武夫赴此地者無不見敗, 予竊怪之. 文希聖遞差.”

<광해군일기 41권, 광해군 3년 5월 16일(을묘) 3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사법

수원 사람 사록 손탁이 박건갑 등에게 정거한 명을 받들지 못하겠다고 아뢰다

사록(司錄) 손탁(孫倬)이 상소하기를, “박건갑(朴乾甲) 등에게 내린 과거를 못 보게 한 벌을 풀어 준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손탁은 수원(水原) 사람인데 그의 상소 가운데 ‘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정거 문제 때문일 것이고, 신을 죄주는 사람도 정거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말이 몹시 간절하고 곧았다. 이 때문에 죄를 얻어 관작을 삭탈당하고 내쫓기어 불우하게 지내다 죽었다. 】

○司錄孫倬上疏, 大概“朴乾甲等解停未安, 不敢承命矣.” 乾甲·鄭成鋪等上疏, 論斥二賢泮學, 卽新名籍館官, 孫倬從而停舉至【倬, 水原人, 疏中有‘知臣者惟停舉, 罪臣者惟停舉’之語, 辭甚切直. 因此得罪削黜, 轆軻以沒.】

<광해군일기 48권, 광해군 3년 12월 16일(신사) 4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사법

서양갑이 공초에서 수원군사로 대궐을 범하려 하였다는 것은 허황된 것이라고 하다

서양갑(徐羊甲)에게 형신을 가하였는데【모두 4차 형신을 하였는데 압슬과 화형(火刑)을 세 차례 하였다.】, 서양갑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자, 좌우가 속히 형추(刑推)할 것을 청하였다. 서양갑이 형신에 임해서 승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또 박응서(朴應犀)와 대면하고 공초하기를 청하였다. 이어 응서와 대면하고 공초하기를,

“(…) 또 이지효(李止孝)라는 자가 있었는데 본방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역모를 몰랐다면 어떻게 그를 쓰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훈련 도감과 수원(水原)의 군사를 가지고 야간 훈련이라고 핑계대면서 바로 거사하여 대궐을 범하려 하였고, 이밖에 여주(驪州)나 이천(利川)의 군사를 동원한다는 설은 모두가 허황된 것입니다. (…)

○徐羊甲加刑【刑凡四次，壓膝·火刑三次.】，羊甲絕而復甦，左右請速刑推．羊甲臨訊曰：“願承服．”且請與朴應犀面對供辭．仍對應犀供云：“(…)又有李止孝者，與本房相親．此人若不知逆謀，則豈欲用之？且欲以都監·水原軍，托以夜操，仍學事犯闕矣，此外驪·利軍之說，則皆虛矣. (…)

<광해군일기 66권, 광해군 5년 5월 6일(계해) 5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사법

교서에서 서양갑이 수원의 군사를 불러 역적모의를 하였다고 하다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가서 전(箋)을 드리고 하례하였다. 대사면령을 내렸는데, 그 교서에 이르기를, (…)서양갑은 본래 서자 출신으로 엉뚱한 생각을 품어 여강(驪江)에 소굴을 두고 병서(兵書)를 학습하더니 도원 결의(桃源結義)를 본받아 망령스럽게 영웅 호걸(英雄豪傑)이라 하였다. 오윤남(吳允男)의 집에 왕래하면서 간계(奸計)를 꾸몄고 김제남(金悌男)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흉서(凶書)를 짝하였다. 심복 같은 무부(武夫)를 많이 구하고 친절한 장관(將官)을 얻으려 하였다. 내외가 상응하여 은밀히 수원(水原)의 병사를 불러들이고 성세가 협조하니 도감(都監)의 군사를 출동시켜서 밤을 틈타 행동하여 역적 모의를 도모하려 하였다. 이것을 중국에 주달하여 의거(義舉)라 하였으니 간특한 꼴이 여러 역적 중에 으뜸이다.(…)

○世子率百官，進箋陳賀．大赦頒教，其教書曰：(…)徐羊甲本以孽產，陰懷異志，作窟驪江，學習兵書，效義桃源，妄稱豪士．往來允男之家，綢繆奸計；出入悌男之門，倚刺凶書．多求心腹之武夫，思得親切之將官．內外相應，潛招水原之卒，聲勢可助，兼發都監之軍，托行夜操，欲圖大事. 奏聞天朝，是謂義舉，詭匿之狀，諸賊爲最．(…)

<광해군일기 68권, 광해군 5년 7월 15일(신미) 6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사법

박치의를 잡기 위해 수원과 아산에 사람을 보내 체포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경기 감사가 비밀장(秘密狀)을 입계하니, 【양주 박치의의 종적에 관한 일이다.】 왕이 이르기를, “이 문제를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어떻게 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선전관 등을 보낸다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박승중은 아뢰기를, “그러나 사체로 보아 부득이 선전관과 도사 등을 수원(水原)·

아산(牙山) 등처에 보내서 수색하여 체포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 추관이 아뢰기를, “수원은 이미 하유하였으니, 우선 아산에 선전관 등을 먼저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이는 이미 잡아와서 가두어 놓은 죄인과 비교할 성질이 아니니 빠르고 늦은 것을 제한하지 말고 본관과 함께 갈 만한 곳을 수소문하여 기발한 계책을 써서 기어이 체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도사와 선전관 외에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이 없는가?” 하였다. (...)

○京畿監司祕密狀入啓. 【楊州朴致毅蹤迹事也.】 王曰: “斯速議處.” 李德馨以爲: “何以則不失事機而能得捕耶? 若送宣傳官等, 不得如意也.” 朴承宗以爲: “然事體, 不得不送宣傳官·都事等於水原·牙山等處搜捕矣.” (...) 推官以爲: “水原則已以下諭, 牙山爲先發送宣傳官等如何?” 李德馨以爲: “此非如拿來已捉罪人之比, 不限久速, 與本官鉤問可去處, 出奇設策, 期於必捕爲當.” 王曰: “都事·宣傳官外, 無他人可遣者乎?” (...)

<광해군일기 68권, 광해군 5년 7월 23일(기묘) 7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사법

### 죄인 손비 등에게 수원에 갔는지 여부 등을 문초하다

(...) 왕이 이르기를, “박치의의 어미와 아내가 당초에 박치의가 간 곳을 알았는지 손비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손비에게 물어보았더니 ‘당초에 박치의가 어미 및 아내와 같은 곳으로 도망하였으니 간 곳을 알고 있을 듯하다.’ 고 합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수원 외에 갈 만한 곳이 있는지 죄인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죄인에게 물었더니 ‘박치의가 새로 들인 노비가 아산장(牙山場) 주변에 산다. 지난 해 동짓달에 와서 신공(身貢)을 납부하고 갔는데 아마 이 곳으로 간 듯하다.’ 고 합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수원과 아산 등처를 정해놓고 갔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죄인에게 물었더니 ‘아산에 사는 중 한 명과 수원에 사는 중 두 명이 있었는데 희추(希秋)도 수원으로 갔다고 하니, 아마 이 곳으로 갔을 것이다.’ 고 합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형신을 조금 가하여 힐문하라.”

하였는데, 손비가 자복하지 않았다. 왕이 이르기를, “이미 이것뿐이라고 했다면, 정하고 간 곳이 수원과 아산 두 곳이란 말인지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죄인에게 물었더니 ‘수원(水原)으로 가지 않았으면 필시 아산(牙山)으로 갔을 것이다. 결정하고 갔는지의 여부를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그가 간 곳을 알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죄인에게 물었더니, 전에 말한 것과 같았는데 ‘수원에는 노비가 있고 아산에는 희추가 자식을 데리고 내려갔으니, 아마 이 두 곳으로 갔을 것이다.’ 고 합니다.”

하니, 왕이 우선 손비의 형문을 중지하라고 하였다. 【네 번째 형문을 우선 정지한 것이다.】

○(...) 王曰: “朴致毅母及妻, 當初知致毅去處乎? 問于孫非.” 權縉啓曰: “問于孫非則曰: ‘當初朴致毅母及妻, 同處而逃, 似當知其去處矣.’ ” 王曰: “水原外, 有可往處乎? 問于罪

人.” 權縉啓曰：“問于罪人，則‘朴致毅新奴，居牙山場邊．前年至月間，來納身貢而去，疑往此處矣.’” 王曰：“水原·牙山等處，定往與否問之.” 權縉啓曰：“問于罪人，則‘牙山奴一名·水原奴二名在焉．希秋亦云指向水原，疑往此處矣.’” 王曰：“小加刑訊以詰.” 孫非不服. 王曰：“既曰止此而已云，則定往水原·牙山兩處乎，問之.” 權縉啓曰：“問于罪人，則不往水原，則必往牙山．定往與否，何以知之?” 王曰：“知其去處之故，問之.” 權縉啓曰：“問于罪人，則如前所云，而‘水原有奴婢，牙山則希秋率子息下去，疑往此兩處矣.’” 王曰：“姑停孫非刑問.” 【四度姑停.】

<광해군일기 68권, 광해군 5년 7월 23일(기묘) 10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사법

**포악한 적을 체포한 수원 부사 윤중삼에게 가자하다**

전교하였다. “수원 부사 윤중삼(尹重三)은 사납고 포악한 적 김이개(金伊介) 등을 지휘해서 체포하였으니 지극히 가상하다. 전 삼척 부사 김존경(金存敬)은 화약과 병기를 다수 마련하였으니 지극히 가상하다. 아울러 가자하라.”

○傳曰：“水原府使尹重三，獷捍賊人金伊介等，指揮捕捉，至爲可嘉. 前三陟府使金存敬，火藥軍器多數措備，至爲可嘉. 竝加資.”

<광해군일기 102권, 광해군 8년 4월 1일(경자)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사법

**사간원에서 수원 부사 최응허를 사관에서 삭제하기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수원 부사 최응허는 본래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간인데 본직을 제수받자 오로지 자기 살찌울 일만 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욕심을 부리며 백성의 전토(田土)를 탈취하고 백성을 모집하여 경작시키고는 그 집안으로 운반해 들이는가 하면 초군(哨軍)을 많이 동원하여 이웃 경계에 제방을 쌓고는 자기의 소유로 하고 있으므로 온 경내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천창(賤娼)을 많이 데려와 음란한 짓을 일삼고 있는데 그 투기(妬忌)로 말미암아 조카에게 칼질까지 하였으므로 물정이 모두 놀라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사관에서 삭제해 버리라고 명하소서.” 하니, 서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司諫院啓曰：“水原府使崔應虛，本以貪鄙殘忍之人，及授本職，專事肥己. 奪取民田，日益無厭，募民耕作，輸入其家，多發哨軍，築堰隣境，以爲自己之物，闔境嗷嗷，如在水火之中. 且多畜賤娼，淫亂是尙，因其妬忌，手刃猶子，物情莫不駭憤. 請命削去仕版.” 答曰：“徐當發落.”

<광해군일기 128권, 광해군 10년 5월 25일(임자) 6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사법

**정원에서 수원 부사 최응허를 쫓출하는 일로 경기 감사를 추고하기를 청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선왕의 법은 지극히 엄하고 중하니 그대로 준수해야지 휘어서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봄과 여름철 경기 지방 수령들에 대해 포폄(褒貶)하고 등제(等第)할 때 감사가 수원 부사(水原府使)의 이름 아래에 등제한 것을 써넣지 않았습니니다. 그리하여 2백 년 동안 준수해 온 법이 오늘날 비로소 폐지되고 말았으니 뒷날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등제하는 것과 사핵(查覈)하는 것은 본래 상관이 없습니다. 등제했으면 사실대로 기록하고 사핵했으면 그것도 사실대로 써넣으면 되는 것

이니, 이것이 바로 번신(藩臣)의 입장에서 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법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히 전에 없던 폐단을 만들었으니 유희량(柳希亮)을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방금 다시 조사해 아뢰라고 명하였다. 그렇다면 아직 조사해 처치하기 전이라서 등재를 하지 않은 것인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추고하지 말고 속히 조사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政院啓曰：“先王之法，至嚴至重，所當遵守，不可有所撓改也。今春夏，京畿褒貶等第，監司於水原府使名下，不書等第。二百年遵守之法，始廢於今日，後日之弊，有不可勝言。且等第查覈，本不干涉。等第則以實書之，查覈則亦以實書之，此藩臣守法之常道也。而敢爲無前之弊，請柳希亮推考。” 傳曰：“卽命更爲覈啓，則未覈處前，不爲等第何妨？勿爲推考，速令覈啓。”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15일(임신) 6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사법

좌·우포도 대장이 수원의 강상 죄인 사노와 양녀 과부를 법대로 안문하기를 청하다

좌·우포도 대장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에 사는 사노(私奴) 종남(從男)은 대적(大賊)일 뿐만이 아니라 상전의 처인 과부와 몰래 간통한 뒤 데리고 도망갔다 하기에 지극히 놀라웠 습니다. 이에 소위 상전의 처라고 하는 과부 여인을 붙잡아 와서 신문했더니 처음에는 승복 하려 하지 않으며 자칭 춘덕(春德)이라는 이름의 천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문(推問)하여 공초를 받은 결과, 그 아버지는 바로 충의위(忠義衛) 이언용(李彦容)이고 그 조부는 달성령(達城令)이고 외조는 유학(幼學) 송일관(宋逸寬)으로서 과연 양반 여자였는데,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 즈음에 같이 살던 집주인의 삼촌 숙모 집의 종인 종남과 몰래 간통한 뒤 도망가 서소문 밖에 숨어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초에 따라 다시 종남을 추문하였더니 춘덕의 말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강상(綱常)과 관계된 일인 만큼 의금부로 옮겨서 법대로 안문(按問)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戊午六月二十五日壬午左右捕盜大將啓曰：“水原居私奴從男，非徒大賊其上典妻寡婦，潛奸率逃云云，極爲駭愕。所謂其上典妻寡婦女人，捉來訊問，則初不肯服，自稱賤人，名曰春德。更推供稱有曰：‘其父乃忠義衛李彦容，其祖達城令，外祖幼學宋逸寬，果是兩班女子，早年喪夫，寡居之際，同居家翁三寸叔母家奴從男，潛奸逃走，隱匿于西小門外’云云。因其所供，更推從男，則與春德之言，少無異同。事係綱常，請移義禁府，依法按問。何如？” 傳曰：“依啓。”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25일(임오)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사법

추국청에서 죄인들이 수원의 신봉사 등과 무관하니 추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뢰다

추국청이 아뢰기를, “(...) 막동이 형문을 받은 뒤에 한 공초 내용은 ‘궁자(弓子)·전통(箭筒)·환도(環刀)를 부인(夫人)의 큰집 익랑(翼廊) 마루 밑에 묻었다.’ 했으므로 즉시 금부의 낭청을 보내어 찾아보게 하였으나 또한 찾아낸 것이 없었습니다. 애현이 형문을 받은 뒤에 한 공초 내용은 ‘환도를 말뚝 속에 묻었다.’ 고 했으므로, 즉시 낭청을 보내어 찾게 하였으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끌어들이 춘개(春介)와, 계집종 이대(李代)가 끌어낸 막개(莫介), 세복이 끌어들이 수원(水原)의 신봉사(申奉事)는 별로 긴요하게 관계된 것이 없으니, 일일이 추찰(推

捉)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범손의 조사에서 현출된 이대 및 전교를 인하여 낭청을 보내어 잡아온 궁인 아무아무와 계집종 정부(貞富)·내론지(內論之)·예숙(禮淑) 등의 공초 내용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였다.(…)

○癸未/推鞠廳啓曰: “(…)莫同刑問後招辭: ‘弓子·箭筒·環刀, 夫人大宅翼廊抹樓下埋置.’ 云, 遣郎廳搜覓, 亦無所得. 愛玄刑問後招辭以爲: ‘環刀埋置于馬糞中.’ 云, 遣郎廳搜覓而無有矣. 且其所引春介及婢李代所引莫介. 世福所引水原申奉事, 別無緊關干涉之事, 似不當一一推捉. 凡孫招辭, 現出李代, 及因傳教遣郎廳拿來, 宮內某某婢貞富·內論之·禮淑等供辭如此, 何以爲之? 敢稟.” (…)

<광해군일기 1권, 광해군 즉위년 2월 26일(계미)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사법

#### 수원 부사 김거병 등의 체직을 사헌부에서 요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수원(水原) 고을의 입지 조건은 양호(兩湖)를 제어하면서 생산물이 많고 지역이 넓으니, 실로 기전(畿甸)의 근본이 되는 곳입니다. 근래에 방어사의 임무 때문에 잇따라 무신을 파견하여 조치가 적합함을 잃고 공사(公私)가 텅비어 생민들의 피폐함이 이미 구제할 수 없는 데 이르렀습니다. 지난날 간원이 온 나라의 공통된 논의를 인하여 반드시 문관을 임명하여 보내어 변통하려고 했던 것도 대체로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간하기를 열흘 동안 하였으나 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물정이 민망해 하며 답답하게 여김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께서 특별히 김거병(金去病)을 차임하여 내려보내고 또 그의 자급(資級)을 더해주시었습니다. 김거병은 앞서 수사가 되었을 적에 별다른 실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 어사가 백성들의 장계로 인하여 포계(褒啓)하기는 하였지만, 그 포계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이미 공론(公論)에서 드러났으니, 사실이 아닌 포계를 인하여 큰 고을에다 옮겨 임명하는 것은 불가하며 더구나 까닭없이 또 그의 자급을 더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물정이 놀랍게 여기지 않음이 없으니 체개(遞改)하도록 명하고, 그 대신 묘당으로 하여금 각별히 가려 뽑아 보내소서.” (…)

하니, 답하기를, “나의 이번 일은 김거병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고, 실로 옛사람이 준마(駿馬)의 뼈를 사들인 뜻을 본받은 것이니, 번거롭게 논의하지 말라. 그리고 박엽이 성을 쌓고 군량을 저축한 것과 한여숙이 수적을 조치하여 잡은 것에 이르러서는 당연히 포상해야 할 바이며, 한 자급을 더해준 것은 외람된 일이 아니다.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己亥/司憲府啓曰: “水原爲邑, 控制兩湖, 物衆地大, 實畿甸根本之地. 近以防禦使之故, 連遣武臣, 施措失宜, 公私赤立, 生民之弊, 已至於不可救. 頃日諫院, 因一國公共之論, 必以文官差遣, 欲爲變通者, 蓋出於不得已也. 爭之狹甸而未得蒙命, 物情之悶鬱極矣. 今者自上特以金去病差下, 又加其資. 去病前爲水使時, 別無實績, 其時御史, 雖因民人等狀褒啓, 而其褒啓之不實, 已發於公論, 不可因不實之褒啓, 而移授巨邑, 況無故又加其資乎? 物情莫不驚駭, 請命遞改, 其代令廟堂, 各別擇遣. 近日爵賞太濫, 平山府使朴燁, 雖粗完山城措備軍糧, 而人臣職分內所當爲, 不可以此, 遽授堂上重加. 龍岡縣令韓汝淑, 捕獲水賊, 而別無設策措備可紀之功, 亦不可濫授堂上重加. 請竝命改正.” 答曰: “予之此舉, 非私於去病, 實法古人市駿骨之意也, 勿爲煩論. 至於朴燁之築城峙糧, 韓汝淑之措捕水賊, 在所當褒, 一資之加, 非有濫也. 不允.” (…)

<광해군일기 22권, 광해군 1년 11월 22일(기해)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사법

수원 사람 사록 손탁이 박건갑 등에게 정거한 명을 받들지 못하겠다고 아뢰다

사록(司錄) 손탁(孫暲)이 상소하기를, “박건갑(朴乾甲) 등에게 내린 과거를 못 보게 한 벌을 풀어 준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손탁은 수원(水原) 사람인데 그의 상소 가운데 ‘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정거 문제 때문일 것이고, 신을 죄주는 사람도 정거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말이 몹시 간절하고 곧았다. 이 때문에 죄를 얻어 관작을 삭탈당하고 내쫓기어 불우하게 지내다 죽었다.】**

○司錄孫暲上疏，朴乾甲等解停未安，不敢承命。【暲，水原人，疏中有知臣者，惟停舉，罪臣者，惟停舉之語，辭甚切直。因此得罪削黜，轆軻以沒。】

<광해군일기 48권, 광해군 3년 12월 16일(신사) 4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사법

서양갑이 공초하여 수원 군사로 대권을 범하려 했다는 것 등은 허황된 것이라고 하다

서양갑(徐羊甲)에게 형신을 가하였는데 **【모두 4차 형신을 하였는데 압슬과 화형(火刑)을 세 차례 하였다.】**, 서양갑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자, 좌우가 속히 형추(刑推)할 것을 청하였다. 서양갑이 형신에 임해서 승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또 박응서(朴應犀)와 대면하고 공초하기를 청하였다. 이어 응서와 대면하고 공초하기를,

“(…) 또 이지효(李止孝)라는 자가 있었는데 본방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역모를 몰랐다면 어떻게 그를 쓰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훈련 도감과 수원(水原)의 군사를 가지고 야간 훈련이라고 핑계대면서 바로 거사하여 대권을 범하려 하였고, 이밖에 여주(驪州)나 이천(利川)의 군사를 동원한다는 설은 모두가 허황된 것입니다.**(…)

○徐羊甲加刑，【刑凡四次，壓膝·火刑三次。】羊甲絕而復甦，左右請速刑推。羊甲臨訊曰：“願承服。”且請與朴應犀面對供辭。仍對應犀供云：“(…)又有李止男者，本房相親。此人若不知逆謀，則豈欲用之？且欲以都監·水原軍，托以夜操，仍舉事犯闕矣，此外驪·利軍之說，則皆虛矣。(…)

<광해군일기 66권, 광해군 5년 5월 6일(계해) 5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사법

박치의의 종적을 추적하기 위해 수원 등지에 사람을 보내는 일을 의논하다

경기 감사가 비밀장(秘密狀)을 입계하니, **【양주 박치의의 종적에 관한 일이다.】** 왕이 이르기를, “이 문제를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어떻게 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선전관 등을 보낸다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박승중은 아뢰기를, **“그러나 사체로 보아 부득이 선전관과 도사 등을 수원(水原)·아산(牙山) 등처에 보내서 수색하여 체포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  
추관이 아뢰기를, **“수원은 이미 하유하였으니, 우선 아산에 선전관 등을 먼저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이는 이미 잡아와서 가두어 놓은 죄인과 비교할 성질이 아니니 빠르고 늦은 것을 제한하지 말고 본관과 함께 갈 만한 곳을 수소문하여 기발한 계책을 써서 기어이 체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

○京畿監司秘密狀入啓，【楊州朴致毅蹤跡事也。】王曰：“斯速議處。”李德馨以爲：“何以則不失事機而能得捕耶？若送宣傳官等，不得如意也。”朴承宗以爲：“事體，不得不送宣傳官·

都事等於水原·牙山等處搜捕矣。”(…)推官以爲：“水原則已以下諭，牙山爲先發送宣傳官等如何？”李德馨以爲：“此非如拿來已捉罪人之比，不限久速，與本官鉤問可去處，出奇設策，期於必捕爲當。”(…)

<광해군일기 68권, 광해군 5년 7월 23일(기묘) 7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사법

### 박치의가 수원 외 갈만한 곳이 있는지를 손비에게 문초하다

(…) 왕이 이르기를, “박치의의 어머니와 아내가 당초에 박치의가 간 곳을 알았는지 손비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손비에게 물어보았더니 ‘당초에 박치의가 어머니 및 아내와 같은 곳으로 도망하였으니 간 곳을 알고 있을 듯하다.’ 고 합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수원 외에 갈 만한 곳이 있는지 죄인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죄인에게 물었더니 ‘박치의가 새로 들인 노비가 아산장(牙山場) 주변에 산다. 지난 해 동짓달에 와서 신공(身貢)을 납부하고 갔는데 아마 이 곳으로 간 듯하다.’ 고 합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수원과 아산 등처를 정해놓고 갔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죄인에게 물었더니 ‘아산에 사는 중 한 명과 수원에 사는 중 두 명이 있었는데 희추(希秋)도 수원으로 갔다고 하니, 아마 이 곳으로 갔을 것이다.’ 고 합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형신을 조금 가하여 힐문하라.” 하였는데, 손비가 자복하지 않았다. 왕이 이르기를, “이미 이것뿐이라고 했다면, 정하고 간 곳이 수원과 아산 두 곳이란 말인지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죄인에게 물었더니 ‘수원(水原)으로 가지 않았으면 필시 아산(牙山)으로 갔을 것이다. 결정하고 갔는지의 여부를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그가 간 곳을 알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죄인에게 물었더니, 전에 말한 것과 같았는데 ‘수원에는 노비가 있고 아산에는 희추가 자식을 데리고 내려갔으니, 아마 이 두 곳으로 갔을 것이다.’ 고 합니다.” 하니, 왕이 우선 손비의 형문을 중지하라고 하였다. 【네 번째 형문을 우선 정지한 것이다.】

○王曰：“(…)王曰：“朴致毅母及妻，當初知致毅去處乎，問于孫非。”權縉啓曰：“問于孫非則曰：‘當初朴致毅母及妻，同處而逃，似當知其去處矣。’”王曰：“水原外，有可往處乎，問于罪人。”權縉啓曰：“問于罪人，則朴致毅新奴，居牙山場邊。前年至月間，來納身貢而去，疑往此處矣。”王曰：“水原·牙山等處，定往與否問之。”權縉啓曰：“問于罪人，則牙山奴一名·水原奴二名在焉。希秋亦云指向水原，疑往此處矣。”王曰：“小加刑訊以詰。”孫非不服。王曰：“既曰止此而已云，則定往水原·牙山兩處乎，問之。”權縉啓曰：“問于罪人，則不往水原，則必往牙山。定往與否，何以知之？”王曰：“知其去處之故，問之。”權縉啓曰：“問于罪人，則如前所云，而水原有奴婢，牙山則希秋率子息下去，疑往此兩處矣。”王曰：“姑停孫非刑問。”【四度姑停.】

<광해군일기 68권, 광해군 5년 7월 23일(기묘) 10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사법

수원 부사 윤중삼·전 삼척 부사 김존경에게 가자하다

전교하였다. “수원 부사 윤중삼(尹重三)은 사납고 포악한 적 김이개(金伊介) 등을 지휘해서 체포하였으니 지극히 가상하다. 전 삼척 부사 김존경(金存敬)은 화약과 병기를 다수 마련하였으니 지극히 가상하다. 아울러 가자하라.”

○傳曰：“水原府使尹重三，獷捍賊人金伊介等，指揮捕捉，至爲可嘉．前三涉府使金存敬，火藥軍器多數措備，至爲可嘉．并加資．”

<광해군일기 102권, 광해군 8년 4월 1일(경자) 2번째기사>(정초본)

정치/사법

사헌부에서 수원 부사 최응허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요즘 들어 나라에 공의(公議)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수원 부사 최응허(崔應虛)는 본래 비루한 인간으로서 부자가 되려고 급급한 나머지 본부(本府)의 지역에서 널리 전장(田庄)을 점유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투어 모여들어 하나의 큰 취락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여 남의 노비를 빼앗아 관아 속에 많이 모아놓고는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것인 양 꾸미면서 법사(法司)에 정장(呈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아 안에서 최근 규방(閨房)의 변고가 있었던 데도 제대로 잘 처리하지를 못해 나라에 말이 자자합니다. 영원히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소서.(…)” 하니, 서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司憲府啓曰：“近來，國無公議，人無廉恥．水原府使崔應虛，本以鄙瑣之人，急於圖富，廣占田庄於本府地，人皆爭集，成一大村．猶爲不足，奪人藏獲，多聚衙中，有若祖上傳得之物，至於呈狀於法司．不特此也．衙中，近有帷薄之變，而不能善處，國言藉藉．請命永不敘用．(…)” 答曰：“徐當發落．”

<광해군일기 128권, 광해군 10년 5월 25일(임자) 4번째기사>(정초본)

정치/사법

사간원에서 수원 부사 최응허를 사관에서 삭제하기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수원 부사 최응허는 본래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간인데 본직을 제수받자 오로지 자기 살찌울 일만 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욕심을 부리며 백성의 전토(田土)를 탈취하고 백성을 모집하여 경작시키고는 그 집안으로 운반해 들이는가 하면 초군(哨軍)을 많이 동원하여 이웃 경계에 제방을 쌓고는 자기의 소유로 하고 있으므로 온 경내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천창(賤娼)을 많이 데려와 음란한 짓을 일삼고 있는데 그 투기(妬忌)로 말미암아 조카에게 칼질까지 하였으므로 물정이 모두 놀라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사관에서 삭제해 버리라고 명하소서.” 하니, 서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司諫院啓曰：“水原府使崔應虛，本以貪鄙殘忍之人，及授本職，專事肥己．奪取民田，日益無厭，募民耕作，輸入其家，多發哨軍，築堰鄰境，以爲自己之物，闔境嗷嗷，如在水火之中．且多畜賤娼，淫亂是尙，因其妬忌，手刃猶子，物情莫不駭憤．請命削去仕版．” 答曰：“徐當發落．”

<광해군일기 128권, 광해군 10년 5월 25일(임자) 5번째기사>(정초본)

정치/사법

좌·우포도 대장이 수원의 강상 죄인 사노와 양녀 과부를 법대로 안문하기를 청하다

좌·우포도 대장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에 사는 사노(私奴) 종남(從男)은 대적(大賊)일 뿐만이 아니라 상전의 처인 과부와 몰래 간통한 뒤 데리고 도망갔다 하기에 지극히 놀라웠 습니다. 이에 소위 상전의 처라고 하는 과부 여인을 붙잡아 와서 신문했더니 처음에는 승복 하려 하지 않으며 자칭 춘덕(春德)이라는 이름의 천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문 (推問)하여 공초를 받은 결과, 그 아버지는 바로 충의위(忠義衛) 이언용(李彦容)이고 그 조부는 달성령(達城令)이고 외조는 유학(幼學) 송일관(宋逸寬)으로서 과연 양반 여자였는데, 이 른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 즈음에 같이 살던 집주인의 삼촌 숙모 집의 종인 종남과 몰 래 간통한 뒤 도망가 서소문 밖에 숨어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초에 따라 다시 종남을 추문하였더니 춘덕의 말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강상(綱常)과 관계된 일인 만 큼 의금부로 옮겨서 법대로 안문(按問)케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壬午/左右捕盜大將啓曰: “水原私奴從男, 非徒大賊, 其上典妻寡婦, 潛奸率逃云云, 極爲駭愕. 所謂其上典妻寡婦女人, 捉來訊問, 則初不肯服, 自稱賤人, 名曰春德. 更推供稱有曰, 其父, 乃忠義衛李彦容, 其祖達城令, 外祖幼學宋逸寬, 果是兩班女子, 早年喪夫, 寡居之際, 同居家翁三寸叔母家奴從男, 潛奸逃走, 隱匿于西小門外云. 因其所供, 更推從男, 則與春德之言, 少無異同. 事係綱常, 請移義禁府, 依法按問.” 傳曰: “依啓.”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25일(임오)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사법

### 양주 목사와 수원 부사가 군사를 일으켰다가 반정의 소식을 듣고 흩어지다

경기 감사 박자흥(朴自興)이 양주(楊州)로 달려가 목사(牧使) 박안례(朴安禮)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키게 하였는데, 안례는 자흥의 족조(族祖)이다. 무인 신희(申洽)이 그 사실을 고하자, 이서(李曙)는 동성(東城)으로 출진할 것을 청하고 상은 수비를 엄히 할 것을 명하였다.

이윽고 양주의 군사가 반정의 소식을 듣고 모두 무너져 흩어졌다. 이때 조정(趙挺)의 아들 조유도(趙有道)가 수원 부사였는데, 조정이 이귀에게 이르기를,

“자흥 부자가 만약 위협한다면 유도가 군사를 돕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흥이 아직 감사의 직함을 띠고 있다. 둘 다 빨리 체직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여, 이귀가 아뢰니 상이 즉시 명하여 감사를 차출하게 하고 유도는 체직하지 말라 하였다. 이때 유도가 과연 군사를 모았었는데 곧 무너졌다. 안례와 유도를 체포하자, 김류가 상에게 아뢰기를, “수령이 변란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곧 그들의 직분이니 사면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그때 만약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는 자가 있었다면 내 마땅히 중한 상을 내렸을 것이다. 유도와 안례를 모두 불문에 부치고 방면하라. 또 들으니, 의병이 입궁할 때 궐내로부터 대항하여 활을 쏜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뜻이 가상하다. 이를 찾아 포상하도록 하라.” 하였다.

○京畿監司朴自興, 出走楊州, 使牧使朴安禮起軍. 安禮, 自興之族祖也. 武人申洽告其狀, 李曙請出陣東城. 上命嚴飭守備. 俄而, 楊州兵聞反正之報, 皆潰散. 時, 趙挺之子有道爲水原府使, 挺謂李貴曰: “自興父子, 若以威脅之, 則有道不無助兵之事. 且自興尙帶監司之號, 竝宜急速遞之.” 貴以聞, 上卽命差出監司, 而勿遞有道. 有道果聚軍卽潰, 逮繫安禮·有道. 金瑬白上曰: “守令聞變起軍, 乃其職耳. 似當宥之.” 上曰: “此言是也. 其時若有領兵來赴者, 予當重賞. 有道·安禮, 皆勿問放送. 且聞義旅入宮時, 有自內迎射者云, 其志可嘉. 可訪問而賞之.”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14일(갑진) 5번째기사>

### 정치/사법

**윤안형이 공초에서 이우가 수원 천총이 3백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다**

전 교수 문회(文晦), 허통(許通) 이우(李佑), 전 첨사 권진(權珍), 전 참봉 정방열(鄭邦說), 충의(忠義) 윤안형(尹安亨), 허통 한흔(韓訥) 등이 대궐에 나아가 상변(上變)하니, 곧 궐내에서 추국하였다. (...) 윤안형이 공초하기를,

“(…) 신이 곧 상변하려 하였으나 단서를 얻지 못하여 이제까지 참아왔습니다. 새해 들어 준철이 와서 말하기를 ‘어제 이우를 만났는데 일을 같이할 만하다.’ 하고 이어 신의 집에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이우가 강개하여 큰소리로 심정을 토로하니, 준철이 말하기를 ‘그대가 일을 같이하려 한다면 어떠한 계책을 써야 할 것인가?’ 하니, 이우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경성(京城)에서 불러 모은 자가 5백여 인이고 호서에서 온 자가 5백여 인이고 수원(水原)의 천총(千摠) 이승충(李承忠)이 거느리는 자가 3백여 인이고 포천(抱川) 등산(燈山)의 승군(僧軍)으로 정예한 자가 50인이니 이것으로 일으키면 족히 성공할 수 있다.’ 하였습니 다. 주모자가 누구냐고 물으니, 이우가 말하기를 ‘경중에 한 장자(長者)가 있고 외방에 상신(相臣)이 있다.’ 하니, 준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들이 피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였습니 다.(…)

○壬申/前教授文晦·許通李佑·前僉使權珍·前參奉鄭邦說·忠義尹安亨·許通韓訥等, 詣闕上變. 卽推鞠於闕內. (...) 尹安亨供稱: “(…) 臣卽欲上變, 而未得端緒, 隱忍至今歲. 後, 潛哲來言: ‘昨見李佑, 可與同事.’ 仍與會宿於臣家. 佑慷慨大言, 吐露心情. 潛哲曰: ‘君欲與共事, 計將安出?’ 佑曰: ‘吾儕招募京城者五百餘人, 從湖西來五百餘人, 水原千摠李承忠所率三百人, 抱川燈山僧軍精銳者五十人. 以此而起, 足以成功.’ 問主謀者爲誰, 佑曰: ‘京中有一長者, 外方有相臣.’ (…)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1월 17일(임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사헌부가 훈련 대장 신경진이 수원에 후퇴하여 주둔한 일을 탄핵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훈련 대장(訓練大將) 신경진은 금군(禁軍)을 통솔하여 대가의 후방을 막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죽기를 결심하여 싸우지는 못했더라도 충청 병사 이완(李莞)과 협력하여 한강을 파수하고 차단하여 적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어야 할 것인데, 수원(水原)에 후퇴하여 주둔해 있다가 첩보를 올린 뒤에야 전진하였 으니, 겁내어 물러가 움추린 죄가 큼니다. 삭직(削職)하도록 명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憲府啓曰: “訓練大將申景禎統率禁旅, 爲大駕捍後之任, 雖不能背水決死, 亦當與忠淸兵使李莞協力, 把截漢水, 使賊不得渡江, 而退屯水原, 獻捷之後, 始爲前進, 其懼怯退縮之罪大矣. 請命削職.” 不從. (...)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15일(기해) 11번째기사>

### 정치/사법

**사헌부가 수원으로 후퇴했던 훈련 대장 신경진을 탄핵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훈련 대장 신경진(申景禎)은 금군을 거느리고 대가의 후방을 막는 임무

를 맡았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결사적으로 싸우지는 못했더라도 충청 병사 이완(李莞)과 협력하여 한수(漢水)를 지켜 차단하고 동서의 수신(帥臣)에게 격문(檄文)을 전달하여 회복을 꾀했어야 할 터인데 줄곧 후퇴하여 수원까지 가서 첩보가 올려진 뒤에야 비로소 전진하였으니, 그가 겁내어 물러가 움츠린 정상이 뚜렷합니다. 그대로 대장의 직임을 맡길 수 없으니, 관직을 삭탈하도록 명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신경진은 진퇴를 잘못된 죄가 있기는 하나, 지금은 대장을 갈 수 없다. 민성징은 그가 함부로 행한 죄를 면하기 어려우나, 변란에 임하여 처치하는 방도에 있어서 그러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 하였다.

○憲府啓曰: “訓練大將申景禎, 統率禁旅, 爲大駕捍後之任, 雖不能背水決死, 亦當與忠清兵使李莞協力, 把截漢水, 傳檄于東西帥臣, 以圖恢復, 而一向退步, 至於水原獻捷之後, 始爲前進, 其懼怯退縮之狀著矣. 不可仍授大將之任, 請命削職. (…)” 答曰: “申景禎雖有進退失宜之罪, 此時大將, 不可遞易. 閔聖徵難免其妄作之罪, 然臨亂處變之道, 似不可已. (…)”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26일(경술) 4번째기사>

#### 정치/사법

**이경립에 대해서는 수원 장관을 추문한 뒤 훈적에서 삭제하라고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죄인 이경립(李景立)은 군율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적에게 붙은 정상이 명백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미처 처형하기 전에 지레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의 간사한 계책은 그의 머리를 보존하고 훈명(勳名)을 보존하려는 것이었으니, 이른바 ‘죽어도 남은 죄가 있다.’ 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적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수원(水原)의 장관(將官)을 추문한 뒤에 훈적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

○憲府啓曰: (…) 又啓曰: “罪人李景立, 非特失律, 附賊之狀, 明白無疑. 未及正刑, 徑自殞斃, 其爲奸計, 蓋欲全其首領而保其勳名, 所謂死有餘罪者, 此之謂也. 請削勳籍.” 答曰: “水原將官推問後, 削勳可矣.” (…)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28일(임자)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의 기고관과 형리가 공초한 것 등이 명백하니 이경립 등을 훈적에서 삭제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죄인 이경립(李景立)·박효립(朴孝立) 등을 훈적(勳籍)에서 삭제하는 일에 대해 신들이 저번에 이미 논열하여, 사문(查問)한 뒤에 처치하라고 윤험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수원(水原)의 기고관(旗鼓官)·형리(刑吏)가 공초한 것과 도원수 장만(張晩)의 장계한 것이 모두 명백하여 다시 의심스러운 것이 없으니, 안율(按律) 등의 일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빨리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박효립이 적과 서로 통하였다면 반드시 성문을 열고 도피했을 리가 없다. 그 정상을 보면 매우 억울한 듯하니 번거로이 논하지 말라. 이경립은 훈적에서 삭제하라.” 하였다.

○憲府啓曰: (…) 又啓曰: “罪人李景立·朴孝立等削勳事, 臣等頃已論列, 而以查問後處置允下矣. 今則水原旗鼓官·刑吏所供及都元帥張晩狀啓, 皆已明白, 更無可疑. 按律等事, 請令該司, 急速舉行.” 答曰: “朴孝立與賊相通, 則必無開門逃避之理. 觀其情迹, 似極冤枉矣, 勿爲煩論. 李景立, 削勳.”

<인조실록 5권, 인조 2년 3월 4일(무오) 3번째기사>

## 정치/사법

장령 이형원이 대가가 수원 독성에 거동했다는 말을 듣고 곡식을 싣고 길을 떠났다고 하다 장령 이형원(李馨遠)이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고 조운(漕運)을 감독하러 가흥창(可興倉)에 갔었는데, 11일 대가(大駕)가 수원(水原)의 독성(禿城)으로 거동하였다는 말을 듣고 신이 곧 곡식을 내어 배에 싣게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튿날 죽산(竹山)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날 승여(乘輿)가 공주(公州)로 향하였다는 말을 듣고 신이 곧 진천(鎭川)으로 갔습니다. 13일 난여(鑾輿)가 천안(天安)에 멈추었다 하므로 달려갈 적에 길가는 사람에게서 또 대가가 공주로 거동하였다는 말을 듣고 신이 곧 전의(全義)로 가서 14일 오전에 행조(行朝)에 가 복명하였습니다. 신이 출사(出使)한 곳은 먼 길이 아니었으니 밤낮으로 길을 곱잡아 급히 행재소로 갔어야 했는데 도중에 지체하면서 대가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신하로서 국난에 달려가는 의리를 잃었습니다. 풍헌은 중대한 지위인데 어떻게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직을 파면하소서.” 하였는데, 헌부가 출사시킬 것을 계청하였다.(…)

○癸亥/掌令李馨遠啓曰: “臣承命督運, 往可興倉, 十一日, 聞大駕幸水原禿城, 臣卽令卸穀藏舡而登途, 翌日到竹山境, 聞是日乘輿向公州, 臣旋往鎭川, 十三日鑾輿住天安, 馳往之際, 因道路人, 又聞大駕幸公州, 臣卽就全義路, 十四日午前, 赴行朝復命. 臣之出使, 既非遠道, 所當晝夜兼程, 急赴行在, 而路中遲誤, 未得隨駕, 殊失人臣赴難之義. 風憲重地, 何可仍冒? 請罷臣職.” 憲府啓請出仕.(…)

<인조실록 5권, 인조 2년 3월 9일(계해)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사신이 논평하길 권진이 수원의 수령으로 있을 때 백성을 노략질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 권진(權縉)의 죄상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번신(藩臣)이 마음대로 죽였으니, 이는 전에 없던 일입니다. (…)”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출신들을 많이 뽑는 일은 옳지 않은 듯하나 이렇게 아뢰니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라. (…)”

하였다. 여러 번 아뢰자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번신이 귀양가 있는 자를 마음대로 죽인 것은 폐조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다. 권진이 참으로 불궤(不軌)를 꾀하였더라도 본디 엄히 가두고 치계하여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고, 마치 사사로운 원수를 갚듯이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될 일이었다. 반역을 꾀하였다면 반드시 무리가 있을 것인데, 어찌 묻지 않고 본인만을 죽일 수 있겠는가. 대개 권진은 혼조(昏朝)에서 너물로 총애를 받았었으니 그의 더럽고 탐욕스러운 정상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가 수원(水原)의 수령이 되어서는 백성을 노략질하였고, 그의 아우 권채(權綵)도 남포 현감(藍浦縣監)이 되어 노략질이 더욱 심하였으므로, 그의 부모의 무덤을 파내는 치욕을 받기까지 하였다. 권진은 한 사족(士族)을 의심하여 멋대로 한 부(府)의 군사를 풀어 그 집의 자녀와 노비를 수색하여 잡아다가 죄다 죽였으니, 어찌 흉악한 짓을 많이 쌓아서 민성징의 손을 빌어 죽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민성징을 다스리지 않으면 장래의 폐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니, 살인의 율(律)로 논하여도 옳았을 것이다.

○癸酉/憲府啓曰: “(…) 權縉罪狀, 未爲昭著, 而藩臣擅殺, 此前所未有之事. (…)

答曰: “依啓. 多抄出身等事, 似爲不可. 然如是啓之, 令廟堂議處. (…)” 累啓, 乃從. 【史臣曰: 藩臣之擅殺謫客, 曾在廢朝, 亦所未見也. 使縉實謀不軌, 固當嚴囚馳啓, 以待朝命, 不宜擅自

誅殺，有若報私讐者也。旣曰謀逆，則必有徒黨，豈可不問而只誅其身也？蓋縉曾在昏朝，以賄賂取寵，其龕鄙貪饕之狀，已不足言。至於出宰水原，剝割生民，其弟綵又爲藍浦縣監，侵漁益甚，致有掘發其父母塚墓之辱，縉疑一土族，擅發一府之兵，搜捕其家子女奴婢，盡行屠戮，豈非積惡稔兇而假手於聖徵者耶？然不治聖徵，則將來之弊，不可防也。論以殺人之律，亦可也。】  
 <인조실록 5권, 인조 2년 3월 19일(계유) 1번째기사>

**정치/사법**

**간원에서 수원 부사 이경직의 파직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경직(李景稷)은 늘 술에 빠져서 상도(常度)를 잃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어사(防禦使)의 직임을 겸하였으니, 반드시 부신(符信)을 갖추어 보고 부름을 받고서야 비로소 진(鎭)을 떠날 수 있는데, 아버이를 뵈는 핑계로 마음대로 왕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 국법을 업신여기고 망령된 짓을 멋대로 행한 죄가 큼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경직은 웅대한 도량은 없기는 하나 자못 백성을 다스리는 재주가 있으니 가벼이 체직시킬 수 없다. 마음대로 왕래한 일은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諫院啓曰：“水原府使李景稷，沈酒爲事，多失常度。且兼防禦之任，必須合符承召，然後始得離鎭，而託以覲親，任其來往，非止一再。其不有國法，恣行妄作之罪大矣。請罷職。” 答曰：“李景稷雖無雄偉之量，頗有治民之才，不可輕遞。任意往來之事，推考可也。”

<인조실록 6권, 인조 2년 7월 4일(병진) 2번째기사>

**정치/사법**

**박종일의 공초에 따르면 박응성이 수원 천총 등과 군사를 일으키려고 약속했다고 하다**

가선(嘉善) 문희(文晦)가 무가선(武嘉善) 박응성(朴應晟)·권진(權珍) 및 자기 아우 문현(文暉)이 역모를 한다고 고변하였고, 절충(折衝) 박종일(朴宗一)이 경기 감사 권반(權盼)과 박응성·권진 등 13인을 고변했고, 박응성은 뒤미처 와서 공조 참판 정립(鄭昱), 광주 목사 문희성(文希聖), 인천 부사 정호선(丁好善), 전 부사 윤홍(尹弘) 등 17인을 고변하였다. 대신과 금부 당상, 양사의 장관을 명초하여 대궐 뜰에 추국청을 설치하고 그들을 체포하여 추국하게 하였다. (...) 박종일이 공초하기를,

“박응성과 광주(廣州)의 장관(將官) 최정호(崔挺豪)의 집에서 함께 유숙한 적이 있는데, 응성이 처음에는 하늘의 변괴에 대하여 말하더니 이어 역모하는 일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서에게 비밀히 알리니 이서가 거짓 그의 뜻에 따르는 체하면서 자세히 정탐 하라고 하기에 드디어 서로 은밀히 지내면서 그의 모의를 들어보니 ‘경기 감사 권반이 모주(謀主)이고 권진이 간사(幹事)인데 도감 별장(都監別將) 민인전(閔仁佺)과 그의 형 민인길(閔仁佺), 초관(哨官) 이정언(李廷彦)·남궁옥(南宮煜), 수원 천총(水原千總) 문겸질(文兼質) 이하 장관, 전 부사(府使) 윤홍(尹弘)·윤계륜(尹繼倫) 부자, 인천 부사, 파총(把摠) 이현충(李顯忠) 등이 함께 군사를 일으키기로 약속하고 이달 술일(戌日)에 거병(擧兵)하여 대궐을 범하고 인성군(仁城君)을 추대하기로 했다.’ 고 하였습니다.” (...)

○嘉善文晦上變，告武嘉善朴應晟·權珍及其弟文暉有逆謀；折衝朴宗一，告京畿監司權盼及應晟·珍等十三人；朴應晟追至，告工曹參判鄭昱·廣州牧使文希聖·仁川府使丁好善·前府使尹弘等十七人。命招大臣·禁府堂上·兩司長官，設推鞠廳于闕庭，逮捕按問。(...) 朴宗一供稱：“與朴應晟同宿於廣州將官崔挺豪家，應晟初言天變，因及謀逆事。卽密告于李曙，曙使之佯應



而詳探. 遂與相密, 而聞其謀, 則畿伯權盼爲謀主, 權珍爲幹事, 都監別將閔仁侗, 與其兄仁佶, 哨官李廷彦·南宮煜, **水原**千摠文兼質以下將官, 前府使尹宏·繼倫父子, 仁川府使及把摠李顯忠等, 同約起軍, 將以是月戊日, 舉兵犯闕, 推戴仁城君” 云. (…)

<인조실록 10권, 인조 3년 9월 8일(계축)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우찬성 이귀가 수원 군병을 사사로이 비호했다고 비판을 받다

합계(合啓)하기를, “**우찬성 이귀(李貴)**는 국가의 위급한 시기를 당하여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 바칠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적병이 아직 침입하지도 않았는데 감히 달아나 피할 계획을 제창하였습니다. 이시백이 강탄(江灘)을 파수하는 것은 묘당의 좋은 계획인데도 제멋대로 탐전에서 가로막았고, 이시담(李時聃)같이 잔열 무능한 자는 오늘날 있으나마나한 자인데 기복하여 서경(署經)을 면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십지어 수원(水原) 군병을 사사로이 비호하여 비국의 재신을 면전에서 육보였으며**, 합계가 한창 치열하였는데 버젓이 등대하였습니다. 비단 어리석고 망령되어 나라를 그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심을 갖고서 일을 망쳤으니 찬출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우찬성 이귀의 말이 비록 정도에 맞지는 않으나 무릇 진계한 바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대들이 사실과 다른 말을 날조하여 이와 같이 짓밟으니 몹시 괴상한 일이다. 국가의 훈신을 대우하는 도리를 결코 이와 같이 해서 안 되니 조속히 정계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양사가 여러 날을 간쟁하며 고집하니, 상이 단지 추고만 하도록 하였다.

○합啓: “右贊成李貴, 當國家危急之日, 不思報效之計, 賊未深入, 敢倡奔避之謀. 李時白之把守江灘, 廟堂之善策, 而恣意搪塞於榻前. 李時聃之殘劣·無能, 不爲有無於今日, 而請除起復署經, **至於私護水原軍兵, 面辱備局宰臣**. 合啓方張, 偃然登對, 不但愚妄僨國, 亦且挾私壞事, 請命竄黜.” 答曰: “右贊成李貴, 言雖不中, 凡所陳啓, 皆非爲己. 爾等構成情外之說, 如是踐踏, 殊極可怪. 國家待勳臣之道, 決不當如是, 亟停勿煩.” 兩司累日爭執, 上只令推考.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1월 28일(병신) 8번째기사>

## 정치/사법

### 역모에 대해 허적이 수원에 사는 중군이 거사를 약속했다는 등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하다

죽산(竹山)에 사는 김진성(金振聲)·김득성(金得聲)·신서회(申瑞檜)·이두견(李斗堅) 등이 정원에 나아와 상변(上變)하기를, (…)

유학 최산휘(崔山輝)는 상변하기를, “의금부의 서리인 이수향(李秀香)이 은밀히 신에게 말하기를 ‘나라에 큰 변이 발생 했다. 제천(堤川)으로 귀양가 있는 유효립(柳孝立)과 원주(原州)에 사는 정심(鄭沁)·정자(鄭洎)·정린(鄭遴) 등이 함께 모의하여 거사하기로 했는데 인성군(仁城君)도 참여하여 알고 있다’ 고 하기에, 신이 ‘그렇다면 어떤 군대를 쓴다고 하던가?’ 하니, 수향이 ‘훈련 도감의 중군인 이계선(李繼先)이 내응하기로 약속하였고 일선위(一善尉) 김극빈(金克鎭)도 동모했다고 한다.’ 했습니다.”

하니, 상이 대신들과 의금부 당상, 양사의 장관, 좌·우포도 대장을 명초(命招)하여 역당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이때 전 사예(司藝) 허적(許適)이 죽산에 있었는데 허유 등의 반역을 일으킨 사실을 알고서 자기의 조카인 허선(許選)과 조카 사위인 황진(黃縉)을 시켜서 글을 가지고 가서 홍서봉

(洪瑞鳳)·김류(金縵)에게 고하게 하였다. 황진의 아버지 황성원(黃性元)도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떠나가기를 재촉하였다. 이렇게 되자 김진성 등이 일이 누설된 것을 알고 고발한 것이다. 그 뒤 허적이 또 소장을 올리기를,

“신의 오촌 조카인 전 봉사(奉事) 허유는 본디 광패스럽다고들 하고, 허유의 누이동생의 아들인 이우명은 본디 어리석고 망령되다고 일컬어졌는데 허유는 죽산에 살았고 이우명은 용인(龍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경에 우명이 신에게 와서 ‘근래 큰일의 거사를 모의하고 있다.’ 고 하기에, 신이 나무라면서 말하기를 ‘네가 도로에서 떠드는 근거없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닌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그믐께에 이웃에서 허유와 우명이 은밀히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내용이 구구했습니다. 어떤 이는 ‘어디 사는 누구와 어디 사는 누구 등이 함께 거사하기로 상의했다.’ 하였습디만, 그들은 모두 중외(中外)에서 뜻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 모의가 실제로는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수원(水原)에 사는 중군이 거사하기로 약속했는데 지난번 체직당하였기 때문에 일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었다.’**

고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타도(他道)의 병마(兵馬)들도 많이 모여 있다.’ 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대장(大將)들은 황해도에서 오는데 문관인지 무관인지는 불분명하나 품계가 가선 대부인 자가 들어온다.’ 고 하였고, 어떤 이는 ‘훈련 도감의 군사들도 모두 모의에 참여하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마침 수원 부사(水原府使)의 군관인 허함(許諫)이 말미를 받아 집에 와 있었으므로 그의 아들 허신에게 내용을 기록한 종이를 전해 주고 급히 달려가 부사에게 고하게 했습니다.** 부사가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올라가면 3일 어둡기 전에 당도할 수 있고 따라서 먼저 경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竹山人金振聲·金得聲·申瑞檜·李斗堅等, 詣政院, 上變言: (...) 幼學崔山輝上變言: “義禁府書吏李秀香, 密言于臣曰: ‘國有大變. 堤川謫人柳孝立及原州居鄭沁·鄭泊·鄭遜等, 同謀舉事, 仁城君亦預知’ 云. 臣曰: ‘然則當用何兵?’ 秀香曰: ‘訓練中軍李繼先, 約爲內應, 一善尉金克鑽, 亦同謀’ 云矣.” 上命招大臣及義禁府堂上·兩司長官·左右捕盜大將, 分捕逆黨. 時, 前司藝許禎在竹山, 知適等逆狀, 使其姪選及姪壻黃縉, 齎書以告于洪瑞鳳·金縵. 縉之父性元, 亦聞其事, 而趣之行, 振聲等知事泄, 遂發告. 其後許禎又上疏曰: 臣五寸姪前奉事許適, 素稱狂悖, 適之妹之子李友明, 素稱愚妄. 許適居竹山, 友明居龍仁, 而去十月間友明來語臣曰: “近間有謀舉大事者” 云, 臣責之曰: “汝狃聞道路囂囂之說耶? 毋妄言.” 至十二月晦間, 隣里傳言適與友明密語之說, 或云: “某處某人·某處某人等, 與之相議舉事” 云云, 皆京外失意之人, 而其謀實不近似. 或云: “**水原**中軍, 相約舉事, 而頃者見遞, 事不諧.” 或云: “他道兵馬多聚會.” 或云: “大將則自黃海道, 不分文武官, 嘉善者入來.” 或云: “訓練都監軍士, 皆預謀.” (...) 且適會**水原府使**軍官許諫受由在家, 使其子許蓋, 傳給小錄, 急往告于府使, 率兵上京, 皆可及於初三日未暮之前, 足先戒嚴矣. (...)

<인조실록 18권, 인조 6년 1월 3일(을축) 4번째기사>

## 정치/사법

**하영남의 공초에 윤계륜이 수원의 군병을 거느리고 올라오기로 했다고 하다**

이때 적당들이 무기를 지니고 이미 도하에 집결하여 있었으나 마침내 모두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내 병조(內兵曹)에다가 국청을 설치하고 국문하였다. 전 군수 윤계륜(尹繼倫)이 공초(供招)하기를, (...) 하영남(河永男)의 공초는,

“지난해 가을 한유길(韓惟吉) 등 7, 8인이 서로 모의하기를 ‘도감의 중군은 바로 유효립

집안의 가신(家臣)인데 효림이 이미 이 사람과 약속하여 초나흘날 밤 종루가 있는 네거리로 모이기로 했고 윤계륜도 수원의 군병을 거느리고 올라오기로 했는데 경복궁 앞과 신문(新門) 안에다 나누어 진을 치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네 대장을 제거한 뒤 군병을 동원하여 대궐을 범한 다음 인성군을 임금으로 추대한다. 그러나 인성군의 인품이 어질기는 하지만 잔약한 것 같기 때문에 응원이 인성군의 운명을 점술가인 이봉춘(李逢春)에게 추연(推衍)하여 보게 했더니, 봉춘이 「이 운명을 가지고서는 임금이 되기에 합당치 못하다. 임금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래갈 수 없다.」 했다.」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조정(朝廷)에서 호패법(號牌法)과 군적법(軍籍法)을 설치한 이래 민심이 이반되고 있으니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거사해서 먼저 이를 주장한 자를 제거한다면 인심이 절로 안정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고, (…)

사련인(辭連人) 유인(柳訥)·장덕무(張德武)·이경항(李景恒)·정여린(鄭如麟)·윤휘(尹暉)·권여경(權餘慶) 등 27인은 석방하고, 장세철(張世哲)·남응민(南應敏)·김경선(金景善)·조유항(趙有恒)·조유도(趙有道) 등 14인은 유배하고, 정배되었던 정혼(鄭渾)·박자전(朴自全)·정오(鄭梧) 등은 도로 배소로 보냈다. 그리고 거제(巨濟)에 정배되어 있는 죄인 유희량(柳希亮)은 역적 두림의 아버지이고 수원부의 죄인 윤굉(尹宏)은 역적 계륜의 아버지이고 예산(禮山) 고을의 죄인 서탁(徐倬)은 역적 국제(國材)의 아버지인데 이들은 모두 금부 도사를 보내어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옥사가 완결되고 나자 상이 고변인 김진성 등을 방송(放送)하게 하였다. 황진과 허선 또한 국청의 계사(啓辭)에 의거 잡아다가 국문하니 진성 등의 공초와 들어맞았다. 상이 그 공초 내용을 보고 즉시 석방하게 하였다. (…)

○時，賊黨持兵器，已聚都下，遂皆就捕，設推鞠廳于內兵曹以鞠之．前郡守尹繼倫供稱：(…) 永男供稱：“去年秋，韓惟吉等七八人，相與謀議曰：‘都監中軍，乃柳家家臣也．孝立已與此人相約．初四日夜，聚會於鍾樓，尹繼倫亦率水原軍而來，分陣景福宮前及新門內，先去四大將然後，舉兵犯闕，推戴仁城，而但其爲人，仁而似孱．應元曾推仁城之命於卜者李逢春，則逢春曰：「本命，不合爲君，雖得之，不能持久」云．’又言：‘朝廷設爲號牌·軍籍以來，民心渙散．乘此舉事，先除主張者，則人心自定’云矣．”(…) 辭連人柳訥·張德武·李景恒·鄭如麟·尹暉·權餘慶等二十七人放送；張世哲·南應敏·金景善·趙有恒·趙有道等十四人流配；定配人鄭渾·朴自全·鄭梧等還發配所．巨濟定配罪人柳希亮，逆賊斗立之父；水原府囚人尹宏，逆賊繼倫之父；禮山縣囚人徐倬，逆賊國材之父也．竝遣都事處絞．獄既成，上命放送告變人金振聲等，而黃縉·許選，亦以鞠廳啓辭拿問，則與振聲等所招相符．上見其供辭，卽釋之．(…)

<인조실록 18권, 인조 6년 1월 3일(을축) 6번째기사>

#### 정치/사법

허유 등의 역모 때문에 징발했던 수원 군병을 파하여 돌려보내다

김류가 아뢰기를, “전에 징발했던 수원의 군병들을 즉시 파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의당하겠 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金瑬啓曰：“前所徵水原兵，還卽罷遣宜當．” 上從之．

<인조실록 18권, 인조 6년 1월 5일(정묘) 7번째기사>

#### 정치/사법

역변을 듣고 달려 나온 수원 군병을 돌려보내다

어영청이 아뢰기를, “고양(高陽)·과주(坡州)·교하(交河)·수원(水原) 등 근처에 있는 하변(下番) 어영군과 충융청의 아병(牙兵) 등이 역변을 전해 들은 뒤 전령(傳令)이 없었는데도 점차 스스로 나온 사람이 도합 64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들이 역변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정성이 매우 가상하다. 경중을 나누어 논상하라.” 하였다. 도 체찰사가 아뢰기를, “수원 군병들이 연일 노숙하고 있으니 상의 분부대로 파하여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御營廳啓曰：“高陽·坡州·交河·水原等，近處下番御營軍及摠戎廳牙兵等，聞變之後，未有傳令，稍稍自來者，合六十四人。” 上曰：“此輩聞變赴難之誠，殊極可嘉。分輕重論賞。” 都體察使啓曰：“水原軍兵，連日暴露，請依上教罷送。” 上從之。

<인조실록 18권, 인조 6년 1월 7일(기사) 5번째기사>

### 정치/사법

호조가 수원부사 이시백 등이 삼별수미를 수납하지 않아 치죄할 것을 청하다

호조가, 수원 부사 이시백(李時白), 여주 목사 김덕함(金德誠), 남양 부사 이명한(李明漢) 등이 삼별수미(三別收米)를 수납하지 않은 데 대하여 치죄할 것을 청하니, 상이 하교하였다.

“요즈음 나랏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를 어겨가며 명예만 구하는 수령들이 빈번히 있으니, 내 실로 미워하는 바이다. 계사에 의하여 파출(罷黜)해야겠으나, 이러한 농사철에 모두 잡아 버리면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니, 우선 자급을 강등시키라.”

○戶曹請治水原府使李時白·驪州牧使金德誠·南陽府使李明漢等三別收米不收納之罪，上下教曰：“近來，守令之輩，不念國事，違道干譽者，比比有之，予實惡之。所當依啓辭罷黜，然如此農時，竝爲遞易，其害不貲，姑先降資。”

<인조실록 20권, 인조 7년 3월 3일(기미) 4번째기사>

### 정치/사법

비변사가 수원부가 임경업의 아우 등을 잡았다고 아뢰다

비국이 아뢰기를, “수원부(水原府)가 전 만호(萬戶) 맹상현(孟象賢)의 고발에 따라 임경업의 아우 임흥업(林興業)과 그의 처자를 잡아 서울로 압송하였으니, 금부로 하여금 수금하게 하소서. 그리고 흥업은 이미 잡았으니, 그 처자는 방송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경업의 처자와 그 아우 임준업(林俊業) 및 조카 임진무(林振茂)도 이미 잡았으니, 강원(講院)에 이문(移文)하여 저쪽에 알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備局啓曰：“水原府以前萬戶孟象賢之所告，捕得林慶業弟興業及其妻子，押送京師，請令禁府囚禁。且興業既已就捕，請放送其妻子。” 又啓曰：“慶業妻子及弟俊業·姪振茂，亦已就捕，請移文講院，使報知彼中。” 從之。

<인조실록 43권, 인조 20년 11월 20일(병술) 6번째기사>

### 정치/사법

우리나라에서 임경업과 이계의 죄상에 대해 청나라에 올리는 차자문

본국이 청국 예부에 이자하였는데 그 자문은 다음과 같다. “(…) 소방은 불행하게도 뜻하지 않은 근심거리가 사사건건 이와 같아서 도망간 경업을 아직도 잡지 못했고 이계의 처형을 미처 중지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는 모두 사세상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소방의 두려워

하고 고민하는 상황을 상국이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갔던 차관은 즉시 무겁게 문책하여 미처 중지시키지 못한 죄로 다스렸고 경업의 가족을 살살이 수색하여 사로잡았습니다. 경업의 아내는 금년 11월 20일에 충청도 청주(淸州) 지방에서 잡고, 경업의 아우 임준업(林俊業)과 조카 임숙무(林叔茂) 등은 같은 달 16일에 평안도 영원(寧遠) 등지에서 잡고, 임형업(林亨業)은 같은 달 11일에 강원도 원주(原州) 땅에서 잡고, **임흥업(林興業)은 같은 달 20일에 경기 수원(水原)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감옥에 갇힌 자를 우선 엄중히 심문하여 경업이 도망간 곳을 따져 묻느라 각각 두 차례씩 형문(刑問)하고 있을 때 내려온 상국의 분부에 따라 모두 의주 등지로 옮겨 수감하였습니다. 이상 각항의 일을 이미 강원(講院)에 이문하여 간추려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辛酉/本國移咨淸國禮部, 其咨曰: (…)  
小邦不幸, 意外之患節節如此. 慶業在逃, 尙未捕得, 而李娃之刑, 未及還止, 皆緣事勢之固然, 而小邦惶悶之狀, 上國何得以盡燭也? 除將後往差官, 卽行重究, 以懲其未及之罪. 慶業家屬, 窮極搜捕, 慶業妻則本年十一月廿日, 捕得於忠淸道淸州地; 慶業弟俊業及姪叔茂等, 同月十六日, 捕得於平安道寧遠等地; 亨業則同月十一日, 捕得於江原道原州地; 興業則同月二十日, 捕得於京畿水原地. 囚在京獄者, 先加嚴訊, 窮問慶業去處, 各刑問二次之際, 因上國分付, 竝移因義州等地. 各項事意, 已令移文講院, 節續報聞外. (…)

<인조실록 43권, 인조 20년 윤11월 25일(신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황익의 공초에서 수원 군병을 보내 부사를 베어죽이자고 논의했다고 하다

상변(上變)한 사람 황익(黃翼)이 공초하기를, (…)  
22일에 모여서 활쏘기를 하자는 통문(通文)은 곧 동청(同廳)의 군관 김석남(金碩男)이 서명한 것으로서 동일 오후에 전부 모이기로 되어 있고 그 통문을 받은 사람이 차례 차례 서울에 있는 군관에게 전달하게 하였는데, 신들은 다음 사람에게 즉시 전달하지 않고 지금 신의 처소에 놓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이 신에게 말하기를 ‘대궐을 범한 뒤에는 우리에게 붙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군병이 많지 않을까 걱정할 것은 없으나 **수원에 있는 군병은 평소에 정예군으로 불리우니 일이 완료된 날 역사 수십 명을 내보내 부사(府使)를 베어 죽이면 반드시 후환이 없을 것이다.**’ 하고, 정형도 말하기를 ‘일이 완료된 날에 동·서강의 배를 북쪽 기슭으로 수합하여 나룻길을 끊어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또 ‘권역(權臆)이 군병을 거느리고 입성할 때 먼저 역사를 수구문(水口門)으로 보내 적기에 자물쇠를 열게 하기로 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어제 원로(元老)에게 말을 전하여 입직을 바꾸어 들어가게 한 자는 이제 정형에게 들으니 출신(出身) 정호남(鄭好男)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원로(李元老)의 공술도 황익과 같았다.

○上變人黃翼供曰: (…)  
卽同廳軍官金碩男之所署名, 而期以同日午後畢會, 使之遞傳於在京軍官, 臣等不卽傳送, 今方留置臣所矣. 且一元謂臣曰: ‘犯闕之後, 則歸附者必衆, 軍兵不患不多, 而水原之兵素稱精銳, 事定之日, 發遣力士數十名, 誅殺府使, 則必無後患.’ 鄭衡亦曰: ‘事定之日, 收拾東·西江船于北岸, 以斷津路亦可矣. 且權臆領兵入城之時, 先遣力士于水口門, 使之臨時開鎖.’ 云. 昨日傳言于元老, 使之換入者, 今聞于衡, 則乃出身鄭好男云矣.”  
李元老所供, 一如黃翼.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 3월 21일(기유) 2번째기사>

## 정치/사법

권두창의 공초에서 심기주가 수원부사로 있을 때 심기원이 거병을 권하였다고 하다

권두창(權斗昌)이 몸을 숨겨 도망하였다가 이천(利川)에서 사로잡혀서는 스스로 목을 찢러 거의 죽다시피 되었는데 형틀을 채워 서울로 압송하니, 마침내 국문할 것을 명하였다. 두창이 형신을 받은 뒤에 공초하기를,

“(….) 신의 아버지는 기원과 어릴 때부터 형제간이나 다름없이 친근하였으나 그래도 감히 불륜(不軌)의 모의로 서로 내통하지는 않았으며, 신의 경우에는 우선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학문상의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 모의를 숨겼습니다. 일찍이 신과 신의 아버지께 말한 것이라고는 그저 중국과 관계를 트는 대의에 관한 것뿐이었으며 임금을 배반하는 모의는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년 2월에 문형이 ‘만약 일을 빨리 터뜨리지 않으면 큰 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니, 기원이 이 때문에 계획을 정하고 거사 기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와서야 신의 아버지를 불러 말해 주었습니다. 기원은 이시영(李時英)을 심복으로 여겼으나 시영은 마음이 흔들려 그를 따르지 않고 자청하여 충청 병사가 되었습니다. 장차 사조(辭朝)하려고 할 때 기원이 은밀히 남을 시켜 그를 논박하게 하였는데, 누구에게 그 일을 부탁하였는지 모르지만 심석필(沈碩弼)이 이 일을 대강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이지룡(李之龍)·정형(鄭衡)·권익(權億)·이권(李縑)·김즙(金楫)·문형(門亨)·김석남(金碩男)·신형(申訶)·이일원(李一元)·안오륜(安五倫)·김흠(金屹)·양걸(陽傑)·석필(碩弼)·이시영(李時英)·위남(緯男)·자(耜)·권두창(權斗昌) 등은 모두 승복을 받아 정형(正刑)하고, 심기성(沈器成)과 그의 아들 심석반(沈碩槃)은 다 형장을 맞다가 죽어 진심을 실토하지 않았으나 역모의 정상이 분명히 드러나 모두 적몰하고 연좌시켰는데, 석반은 경창군(慶昌君)의 사위라는 이유로 연좌의 율을 적용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기원의 아우 심기주(沈器周)는 일찍이 수원 부사로 있을 때 기원이 그에게 기병(起兵)할 것을 권하니, 기주는 그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등창이 나서 죽었다. 지필(之弼)·김응현(金應鉉)과 필신(必愼)의 형제 및 심천민(沈天民) 등은 형장을 맞다가 죽고 김집(金湑)은 사실을 토로한 뒤 미처 형을 집행하기 전에 옥중에서 죽었으며, 허익(許杙)은 형신을 받은 뒤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자기 배를 찢러 죽고 홍정원(洪澄源)과 유중창(柳重昌)은 몸을 숨겨 도망하였다가 군현(郡縣)이 수색을 철저히 하니 마침내 목을 매어 자살하였는데, 모두 적몰하고 연좌시켰다. 권두형(權斗亨)은 이로 혀를 깨물어 자살하였다.(….)

○權斗昌亡命，捕得於利川，自剄殊死，械送于京，遂命鞫之。斗昌受刑後供稱：“(…) 臣父與器遠，自少親切如弟兄，而猶不敢以不軌之謀相通，至於臣則非但年少，自幼工夫在學問上，故益諱其謀。其所嘗言于臣及臣父者，只是通中國之大義，未嘗及叛上之謀。今年二月，門亨以爲：‘若不速發，大禍必作。’ 器遠以此定計，臨期三日，器遠招臣父言之矣。器遠以李時英爲腹心，而時英持兩端，求爲忠清兵使。將辭朝，器遠圖使駁之，雖不知圖之於何處，而沈碩弼概言此事矣。” 於是，之龍·衡·億·縑·楫·門亨·碩男·訶·一元·五倫·屹·陽傑·碩弼·時英·緯男·耜·斗昌等，並取服正刑，沈器成及其子碩槃，皆死杖下，雖不輸情，而以逆狀昭著，並籍沒緣坐。碩槃以慶昌君女婿，命勿用緣坐之律。器遠之弟器周，曾任水原，器遠勸令起兵，器周知其不可諫，疽發背而死。之弼·應鉉·必愼兄弟及天民等杖斃，金湑輸情後未及行刑，而徑斃獄中，許杙受刑之後，拔所佩刀，刺其腹而斃，洪澄源·柳重昌亡命，郡縣捕之急，遂自縊死，並籍沒緣坐。權斗亨以齒自切其舌而死。以金湑供辭，拿全羅監司朴潢以來，上疑沈東龜以器遠族屬，論劾時英，並下之獄，使禁府窮問士大夫之往來者于器遠之妾，供稱：“沈東龜則只一見

之, 朴漢則當其入藩時, 器遠欲贈路費, 妾以家無所儲辭, 只贈若干銀貨, 前年間三度到門云.”  
命竄朴漢於金海, 沈東龜於長興, 人皆冤之. 兩司請論德仁如法, 上不從, 命安置于濟州, 兩司  
爭之愈力, 遂賜死, 命勿籍沒.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 3월 21일(기유) 6번째기사>

#### 정치/사법

##### 무인 남승원이 고변하길 수원부사 조계원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다

이때 겨울 우리가 여러 차례 일어나 인심이 의구스러워하고 있던 참에 무인(武人) 남승원(南承元)이라는 자가 “양주(楊州) 백성 이언남(李彦男)·봉원길(奉元吉) 등이 모여서 역모를 하였는데, 그 마을에 사는 최장령(崔掌令)이라는 자가 주모자이고,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계원(趙啓遠)도 알고 있다.” 고 무고하였는데, 그의 사람됨을 보건대 흐리멍덩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정원이 그 사실을 입계하면서 의금부에 내려 추문할 것을 청하니, 상이 오히려 의심하면서 하고하기를, “일이 허술한 듯하다. 본원에서 물어 아뢰라.” 하였다. (…)

○時, 冬雷屢作, 人心疑懼. 有武人南承元者誣告: “楊州民李彦男·奉元吉等, 相聚謀逆, 里中崔掌令者爲謀首, 前水原府使趙啓遠, 亦預知之.” 觀其爲人, 愚冥無狀, 不足取信. 政院以其狀入啓, 請下禁府推問, 上猶疑之, 乃下教曰: “事涉歇後, 自本院問啓.” (…)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10월 16일(갑오)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병조 판서 이시백이 적도의 세력에 대해 수원으로 하여금 전라도를 기찰하게 하다

상이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을 명초하여 하문하기를, “적도(賊徒)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시백이 아뢰기를, “(…) 선왕조 이몽학(李夢鶴)의 반란 때에도 초기에는 마치 아이들 장난과 같았는데 오히려 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의 적도들은 포(砲)를 소지한 자가 태반인데, 전주가 웅부(雄府)라고는 하지만 어찌 격파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듣건대 공주(公州)의 초군(哨軍)도 태반이 적도에게 붙었다 하는데, 어찌 너무도 염려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갱생(李更生)이 나주(羅州)를 다스리고 있을 때 어떤 도적이 기치(旗幟) 한 상자를 도적질해 갔는데, 이는 좀도둑의 것이 아닙니다.

또 신의 군관이 올 2월에 신창(新昌)과 덕산(德山)의 경계를 지나다가 밤에 미륵당(彌勒堂) 다리 옆에 도착하였을 때 인마(人馬)의 소리를 듣고 몸을 숨겨 엿보았더니, 적도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진형(陣形)을 갖추고 좌정한 뒤 전령(傳令)을 불러 모으고, 또 그들 무리 중에 점을 잘 치는 자를 시켜 점을 쳐보게 하더랍니다. 이때 점을 친 자가 말하기를 ‘이 주위에서 분명히 두 사람이 엿듣고 있으니, 찾아내 죽이도록 하라.’ 하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앞으로 큰일을 일으킬 것인데, 어찌 이렇듯 소소하게 살륙하는 짓을 행하겠는가.’ 하고 군사를 이끌고 떠났는데, 소리로 보아 죽산(竹山)으로 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있었던 충주(忠州)의 옥사(獄事) 때 공청 병사(公淸兵使)가 사람을 시켜 몰래 엿듣게 하였더니, 적도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경상도와 전라도의 친구들이 어찌해서 구원하러 오지 않을까.’ 하였답니다. 이로써 추측해 본다면 삼남의 적도들이 많이들 결탁한 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기마병을 출동시켜 공주(公州)의 직로(直路) 11개 참(站)에 나누어 파견함으로써 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충주(忠州)의 영장(營將)에게도 앞서 영을 전해 기찰을 강화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기는 양주(楊州)로 하여금 동로(東路)를 기찰토록 하

고, 장단(長湍)으로 하여금 서로(西路)를 기찰토록 하고, 수원(水原)과 죽산(竹山)으로 하여금 전라도와 경상도 두 길을 기찰토록 하는 한편, 각 곳의 관진(關津)에도 모두 망보는 자를 두어 불로 서로 신호하게 하되 남산(南山)은 수원과 신호하고 아차산(峩嵯山)은 양주와 신호하게 하면서 관군을 나누어 배치해서 서로 신호하여 응하게 했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기마병을 급히 출동시켜 보내라. 양남(兩南)의 관진은 모두 기찰토록 하되 서로(西路)는 우선 놔두어라.” 하였다.(…)

○朔丁丑/上命招兵曹判書李時白問曰：“此賊之勢何如？” 時白曰：“(…) 先朝李夢鶴之初反也，有同兒戲，而猶能爲亂。今此賊徒則持砲者居半，全州雖雄府，何能保其不破也？今聞，公州哨軍大半從賊，豈非可虞之甚乎？李更生之爲羅州也，有盜盜旗幟一笥，此非草竊者所爲也。又臣之軍官，於今年二月，行過新昌·德山之境，夜到彌勒堂橋邊，聞有人馬聲，潛伏而窺之，則賊徒排立結陣，坐定後招集傳令，又使其徒能卜者，卜之曰：‘此間必有二人潛聽，盍搜殺之。’ 一人曰：‘將舉大事，何爲行此小小殺戮乎？’ 引軍而去，聲向竹山云。且頃年忠州之獄，公清兵使使人潛聽，則賊徒相語曰：‘慶尙·全羅之友，何不來救？’ 以此推之，三南之賊，盤據多矣。臣意，欲發馬兵，分遣於公州直路十一站，以爲飛報之地，忠州營將處，亦可先期傳令，使之譏察。畿甸則使楊州察東路，長湍察西路，水原·竹山察全·慶二路，各處關津，皆置守望，舉火相應，南山應水原，峩嵯應楊州，分置官軍，使相告應，未知何如。” 上曰：“馬兵宜急發遣。兩南關津，皆可譏察，西路則姑置之。” (…)

<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4월 1일(정축)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영의정 이경여가 수원부사 변사기를 잉임시키라고 청하다

상이 영의정 이경여를 인견하였다. 경여가 아뢰기를, “요즈음 재이가 매우 참혹하여 인심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니, 식자들의 근심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일종의 떠도는 의논이 비록 나라를 근심하는 데서 나왔지만 수원 부사 변사기(邊士紀)는 여러 차례 중요한 직임을 거치면서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또 본직에 제수되어서도 능히 마음을 다했으니, 이는 실로 무장 중에서 급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래 떠도는 의논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못했고, 지난번에는 감사가 갑자기 파출하였습니 다. 신의 소견으로는 그대로 잉임시키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떠도는 의논이란 어떤 말인가?”

하였는데, 경여가 아뢰기를, “사기뿐만이 아닙니다. 근기(近畿)에서 병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이런데 동요되고 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놀라며 이르기를,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경여가 아뢰기를, “광주 부윤 기진흥(奇震興)도 스스로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변사기를 속히 잉임시키도록 하라. 옛날 당 태종(唐太宗)이 이군연(李君羨)을 죽이자 그 뒤에 과연 여주(女主)의 변이 없었던가. 어찌 형체도 없는 일로 스스로 의심하고 꺼리는 마음을 내는가. 이는 실로 어지러움을 부르는 길이다.”

하였다. 경여가 이어 진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진달하고, 또 아뢰기를,

“사기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관직이 이미 극에 달했으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성의를 미루어 그를 후하게 대우하소서.” 하였다.

○上引見領議政李敬輿，敬輿曰：“近日災異孔慘，人心疑懼，識者之憂，無處不到。一種浮議，雖出於憂國，而水原府使邊士紀，累經重任，無不稱職，及授本職，亦能盡心，此實武將中，緩



急得力者，而近因浮議，不安於心，頃者監司率爾罷黜，臣以爲仍任似可矣。”上曰：“所謂浮議，何等言耶？”敬輿曰：“不特士紀也，畿輔主兵之人，亦多動於此云矣。”上驚曰：“果有是事耶？其人爲誰？”敬輿曰：“廣州府尹奇震輿，亦不自安云矣。”上曰：“邊士紀速令仍任。昔唐太宗殺李君羨，其後果無女主之變耶？豈可以無形之事，自生疑忌？此實致亂之道也。”敬輿仍陳鎮定之道，又曰：“士紀乃眞實人也。官位已極，豈有他意？惟望聖上，推誠而厚待之也。”

<효종실록 5권, 효종 1년 윤11월 28일(정미) 3번째기사>

### 정치/사법

**이시백이 수원부사 변사기를 파출한 경기 감사 김광옥을 파직하라고 아뢰니 따르다**

우의정 이시백이 아뢰기를, “수원 부사 변사기(邊士紀)는 병세가 심증하지 않았는데 감사가 파출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의도한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정승이 아뢰어 임임을 청하였고 성상께서도 특별히 감사를 추고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사기를 하등의 고과에 두었으니, 그가 임금의 명을 무시하고 조정을 깔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경기 감사 김광옥(金光煜)을 우선 먼저 파직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특령으로 사기를 임임시켰다.

○右議政李時白啓曰：“水原府使邊士紀，病勢不至深重。監司之罷黜，雖未知其意所在，而相臣陳啓，請仍其任，聖上又命特推監司，而曾未幾時，置諸下考，其不有君命，輕視朝廷之罪，不可不治。請京畿監司金光煜，姑先罷職。”上從之。特令士紀仍任。

<효종실록 5권, 효종 1년 12월 25일(계유)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사헌부가 수원부사 변사기를 파직시키고 김광옥을 파직하라는 명을 거두도록 청하다**

헌부가 연달아 아뢰어 수원 부사 변사기를 파직시키고, 김광옥을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달라고 청하니, 답하였다.

“가령 김광옥이, 조정의 심원한 뜻을 체득하고 변신(藩臣)이 자기 멋대로 방자한 죄를 염두에 두어 조정에 청해서 처치하여 감히 자기 멋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주었다면 사체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발끈 노여움을 품고서 무단히 하등의 고과를 썼으니, 변신의 도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로써 논한다면 곧바로 크게 불경했다는 것으로 논핵하더라도 불가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 감히 대신이 파직을 청한 것을 허물한단 말인가. 또한 너희들이 이기기만을 좋아하는 것이 지극하다고 할 만하다. 외국 사신이 곧 서울에 도착할 것인데, 대신 한 사람을 곤욕스럽게 몰아붙이니 장차 국가를 어느 곳에 두려 하는가. 조정의 어긋남이 이와 같으니 나랏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도 모르게 길이 탄식이 나온다.”

○憲府連啓，請罷水原府使邊士紀，還收金光煜罷職之命，答曰：“若使金光煜，體朝廷深遠之慮，念藩臣專恣之罪，請於朝廷而處之，以示不敢自用之意，則事體可謂得矣。不此之思，忿然舍怒，無端用下考，藩臣之道安在哉？以此言之，則直以大不敬論之，未爲不可也，何敢咎大臣之請罷耶？且爾等之好勝，可謂至矣。客使不日到京，而惟一大臣，困辱而逐之，將置國家於何地耶？朝著之乖戾至此，國事無可爲矣。不覺慨然長歎也。”

<효종실록 5권, 효종 1년 12월 30일(무인) 7번째기사>

## 정치/사법

### 이경여가 역적 수원부사 변사기를 잉입시킨 것을 자책하다

상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친국하였다. (...)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에 수원 부사 변사기(邊士紀)를 잉입시킬 것을 청하였었는데, 지금 사기의 이름이 역적의 입에서 나왔으니, 신은 참으로 황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때 나의 처치는 경보다 심한 점이 있었다. 경은 어찌 심하게 허물을 인책하는가.”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김자점의 문서 가운데에 김수(金燧)가 김정(金鋌)에게 보낸 서찰이 있는데, 거기에 ‘정 첨지(鄭僉知)·이 생원(李生員)이 석방되어 군흥(群兇)들이 낙담하여 간계를 부리지 못한다.’ 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다 국문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乙卯/上御仁政門親鞫. (...) 領中樞府事李敬輿曰: “臣於上年, 請仍邊士紀水原之任. 今者士紀名出賊口, 臣誠惶恐.” 上曰: “其時予之處置, 有過於卿. 卿何引咎之深也?” 領議政鄭太和曰: “自點文書中, 有金燧抵金鋌書云: ‘鄭僉知·李生員蒙放, 群兇落膽, 奸計不售.’ 等語, 此人等請拿問.” 上從之.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2월 12일(을묘)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김세룡의 공초에 변사기가 수원의 군사로 거사하려고 하였다고 하다

상이 인정문에 나아가 친국하였다. (...) 김세룡이 여러 차례 형신을 받고 승복하였는데, 그 공사(供辭)에 말하기를,

“옹주가 금년부터 그의 여종과 함께 모의하여 궁중에서 저주하였습니다. 아버 김식이 모역한 것은 위를 원망하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축년 7월달 밤에 변사기(邊士紀)·안철(安澈)·신면(申冕) 등이 모두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여 서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사기가 당시에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있었으므로 그의 군사를 써서 거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丙辰/上御仁政門親鞫. (...) 世龍累受刑訊乃服, 其供辭曰: “翁主自今年, 與其婢同謀, 咀呪於宮中. 父弑之謀逆, 出於怨上. 己丑七月夜, 邊士紀·安澈·申冕, 偕到父家, 相與謀議, 而士紀時爲水原府使, 故欲以其兵舉事云.”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2월 13일(병진)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김자점이 자기 아들 김식이 수원부사 변사기의 군사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상이 인정문에 나아가 친국하였다. (...) 김자점이 형신을 받고는 승복하였는데, 그 공사에, “제 아들 김식이 역모의 상황에 대해 저에게 말하기를 ‘변사기·안철·기진홍 등이 주관하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말하기를 ‘승선군의 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으니, 되도록 속히 거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니, 식이 말하기를 ‘재상 몇 명을 제거하기만 하면 이 분함을 풀 수 있을 것이다. 군사는 광주 부윤 기진홍과 수원 부사 변사기가 거느린 군사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말하기를 ‘사세를 살펴보고서 사기(師期)를 정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 집 부자가 각각 외방으로 흩어졌으므로 미처 거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

○上御仁政門親鞫. (...) 自點受刑乃服. 其供辭曰: “俺子弑, 果以謀逆之狀, 言於俺曰: ‘邊

士紀·安澈·奇震興等主之.’ 云. 俺曰: ‘以崇善之故, 群疑至此, 不可不從速舉事.’ 鉢曰: ‘若除去若干宰相, 可洩此憤. 軍兵則當用廣州府尹奇震興·水原府使邊士紀之所管.’ 俺曰: ‘須觀事勢, 以定師期.’ 其後一家父子, 各散外方, 故未及舉事云.” (…)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2월 17일(경신)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부사 변사기의 자백하길 김자점이 거사하면 대장을 삼겠다고 했다

상이 인정문에 나아가 친국하였다. (…)  
변사기가 형신을 받고는 즉시 승복하였는데, 그 공사에, “지난해 겨울에 자점이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네가 전남 병사(全南兵使)가 되면 우익을 삼을 수 있겠다.’ 고 하고, 또 말하기를 ‘네가 수원 군사를 거느리고 있고 기진홍이 광주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날짜를 정하여 거사하면 너를 대장으로 삼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효성(李孝性) 형제와 안철이 와서는 ‘승선군을 추대하여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8월에 군사를 일으키기로 약속하였는데 마침 저희들이 모두 외관(外官)이 되었으므로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

○上御仁政門親鞫. (…)  
士紀受刑卽服, 其供辭曰: “上年冬, 自點言於俺曰: ‘吾已至此, 汝若爲全南兵使, 可作羽翼.’ 又曰: ‘汝領水原兵, 震興領廣州兵, 約日舉事, 當以汝爲大將.’ 厥後李孝性兄弟及安澈來言: ‘崇善君可以推戴. 初以八月爲師期, 而適俺等皆爲外官, 故不果.’ 云.” (…)

<효종실록 7권, 효종 2년 12월 18일(신유) 5번째기사>

## 정치/사법

### 청나라에 역적 토벌에 대한 상황을 아뢰다

(…)  
이에 즉시 김자점·조인필 및 자점의 아들인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련(金鍊)과 곡성 현감(谷城縣監) 김식(金弼)과 진사 김정(金鎰), 그리고 그 손자인 낙성위(洛城尉) 김세룡과 진사 김세창(金世昌) 및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인물을 붙잡아 추궁하여 신문하였습니다. 김식은 공초하기를 ‘나의 아들 세룡이 조 소원의 사위가 되데다가 소원 역시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기축년 겨울과 경인년 봄에 수원 방어사 변사기(邊士紀), 광주 방어사 기진홍(奇震興), 전 절도사 안철(安澈), 지사(知事) 이형장(李馨長), 전 현감 이순성(李循性), 전 군수 이효성(李孝性) 등과 대사(大事)를 일으키기로 모의하여 부서(部署)도 이미 정하였는데 대장은 변사기, 책사(策士)는 기진홍이고 금백(金帛)을 뿌려 무리배들을 결집시키는 일은 이형장이 맡았다. 그리하여 약조하기를 「수원과 광주(廣州)의 병력으로 밤을 틈타 곧바로 경성을 침범하고 우리들 부자와 형제는 불러 모집한 무사들을 데리고 안에서 일어나 승선군(崇善君)을 임금으로 추대한다.」 고 하였다. 그런데 날짜까지 정하고서 아직 일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때에 변사기가 파직당하고 기진홍도 체직되었으며 나의 아버지가 멀리 광양으로 유배되었는가 하면 우리 형제도 모두 남쪽 고을로 제수되었으므로 계획이 마음과는 어긋나 지금까지 지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주 변사기와 기진홍 등에게 글을 보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복돋우면서 기회를 기다리도록 하는 동시에 세룡의 처로 하여금 더욱 무고(巫蠱)에 대한 일을 힘쓰도록 하였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흥계는 내가 실제로 담당하였다.’ 하였습니다.(…)

○(…)  
卽將金自點·趙仁弼及自點之子韓山郡守金鍊·谷城縣監金弼·進士金鎰, 其孫洛城尉金世龍·進士金世昌, 一應干連人等究問, 則金弼供稱: “俺子世龍, 旣爲趙昭媛女婿, 昭媛亦有

大志，故曾於己丑冬·庚寅春，與水原防禦使邊士紀·廣州防禦使奇震興·前節度使安澈·知事李馨長·前縣監李循性·前郡守李孝性等，謀舉大事，部署已定，大將則邊士紀，策士則奇震興，散金帛結無賴者，李馨長也。約以水原·廣州兵，乘夜直犯京城，而俺等父子兄弟，以招集之武士，從中而起，推崇善君爲主。卜日未及發，士紀罷官，震興亦遞，俺之父遠謫光陽，俺之兄弟，竝除南邑，計與心違，遲延到今，而頻頻付書於士紀·震興等，勸以毋沮，以待機會，仍令世龍之妻，益做巫蠱之事，終始凶計，擔當是實。”(…)

<효종실록 8권, 효종 3년 3월 4일(을해)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사간원이 전 수원 부사 윤창구와 후임자 홍중보의 추고를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전 부사(府使) 윤창구(尹昌壽)는 전에 수원(水原)에 재직할 때 탐욕스러운 것을 자행하여 관고(官庫)가 바닥났는데, 원곡(元穀) 중에 축낸 숫자가 무려 수백 석에 이르므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여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장오죄(贓汚罪)를 범한 자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후임자는 사실대로 조사하고 보고한 뒤 도신(道臣)이 아뢰어 처리하기를 기다렸어야 마땅한데, 부사 홍중보(洪重普)는 후임자로서 인계받았다는 혐의에 구애된 나머지 흐리멍덩하게 덮어 두었으니, 그 또한 사심(私心) 때문에 공도(公道)를 폐기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윤창구는 잡아다 국문하고, 홍중보는 추고하소서.”

하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諫院啓曰：“前府使尹昌壽，前任水原時，恣意貪污，官庫板蕩，元穀中欠縮之數，至於累百石之多，人言藉藉，尙今未已，此實犯贓之甚者。爲其代者，所當從實查報，以待道臣啓處，而新府使洪重普，拘於交承之嫌，矇然掩置，亦難免以私廢公之罪。請尹昌壽拿鞫，洪重普推考。”

命本道查覈以聞。

### 정치/사법

#### 사헌부가 수원부사 윤창구를 국문할 것을 여러 차례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정배한 죄인 윤창구(尹昌壽)는 전에 수원 부사로 있을 때 관저(官儲)를 도둑질하여 자기집으로 실어 보낸 것이 50짐바리나 되며, 그밖에 장오죄(贓汚罪)를 범한 것도 매우 많습니다. 당초의 문서(文書)가 모두 본부에 있으므로 명백하게 상고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미 형벌을 받은 자로 간주하여 국문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편리한 곳에 있게 합니까. 청컨대 잡아와서 다시 국문하소서.” 하였는데, 누차 아뢰자 따랐다.

○丙申/憲府啓曰：“定配罪人尹昌壽，前任水原府使時，偷取官儲，載送其家者，多至五十駄，其他犯贓，亦甚狼藉。當初文書，俱在本府，明白可考，豈可諉之以既被罪罰，置而不問，任其自在於便近之地哉？請拿來更鞫。” 累啓而從之。

<효종실록 8권, 효종 3년 5월 26일(병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전 수원 부사 윤창구가 관곡을 축내어 여러번 형신을 받고 울산부에 정배당하다

이에 앞서 전 수원 부사(水原府使) 윤창구(尹昌壽)가 관곡(官穀)을 1천 석(石) 가까이 축낸 것을 대신이 논계하였으므로 금부(禁府)에 간혀 여러 번 형신을 받았는데, 대신에게 의논하

라고 명하였다. 대신이 아뢰기를, “창구가 관곡을 함부로 쓰기는 하였으나 흠쳐서 제 것으로 한 자취가 없고 오래도록 옥에 갇혀 누차 형신을 받았으니, 가볍게 벌주는 법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니, 멀리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 이에 울산부(蔚山府)에 정배하였다.

○先是, 前水原府使尹昌壽, 以欠縮官穀近千石, 臺臣論啓, 逮繫禁府, 累被刑訊, 命議于大臣. 大臣以爲: “昌壽雖濫費官穀, 無偷竊入己之跡, 而繫獄已久, 累受刑訊, 宜從惟輕之典.” 命遠竄, 定配于蔚山府.

<효종실록 11권, 효종 4년 윤7월 11일(갑진)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윤선도의 추고 함사에서 수원의 산이 최고였다고 말하다

정언 이동명(李東溟)이, ‘윤선도가 함사(緘辭)에서 장황하게 자기 잘못을 둘러 대면서 심지어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등의 말까지 써가면서 언관(言官)을 무함하였다. 공의란 지엄한 것인데 그가 어떻게 감히 그리도 방자할 수 있느냐.’ 하고 나서, 또 아뢰기를,

“산을 살피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애당초 가지도 않았고, 잡아들여 국문해야 한다는 논의가 터졌을 때도 보통으로 보아넘겨 태연히 꿈쩍도 않으면서, 치사(致仕)한 대부(大夫)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람하게도 성인(聖人)의 지위에 비기고 옛날의 사부(師傅)였음을 제기하였으니, 이는 더욱더 망령되고 외람된 일입니다.”

하고, 이어 그에게 많은 무함을 당했다는 이유로 인혐하였다. 장령 정계주(鄭繼胄), 지평 김우석(金禹錫), 대사헌 조수익(趙壽益)은 모두 송시열이 소장에서 중대한 문제를 경솔하게 정론한 잘못을 인용 지적했다 하여 체직을 청했으며, 사간 홍처윤, 정언 이합, 헌납 김익렴, 대사간 이경역 등도 정론한 잘못과 윤선도에게 배척당한 것이 동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인피하였다. 상이 그들에게 모두 사직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선도의 추고 함사(推考緘辭)를 살펴보건대 그 내용에,

“신이 병으로 서울 근교에 있었는데 서울과는 단숨에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5월 4일 국상 소식을 듣고 성중으로 달려 들어가 성복(成服)한 후 목은 병이 재발하여 즉시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18일 산을 살펴 보라는 명을 듣고는 아픔을 참고 다시 들어와 25일 산을 살피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성왕의 의관(衣冠)을 간직해 두는 것은 바로 국가의 마지막 보내는 막대한 예절인 것이며, 또한 종묘의 영원한 혈식(血食)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선 진미한 곳을 찾지 못한다면 그 어찌 신하로서 전하께 충성을 바치고 선왕의 은덕을 보답하는 정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여러 곳을 찾아보았지만 마음에 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수원의 산은 눈에 번쩍 뜨여 상격(上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용대 풍수(龍大風水)가 영릉(英陵)에 비해 조금 못하지만 진정 천리를 가도 그러한 곳은 없고 천 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비록 도선(道詵)이나 무학(無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여도 다른 말이 없을 곳이었습니다. 이는 신의 소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고, 윤강·이원진 및 다른 여러 지관들도 전혀 하자를 잡지 않고 입이 마르도록 찬사를 연발하며 모두가 나라를 위해 축하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이 나라를 위해 쓰여지기를 바란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바 없는 것인데, 이의(異義)가 뜻 밖에 생겨 모든 죄를 신에게만 돌려 죽이고자 하는 말들이 날마다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신의 병이 다시 위독해진 바람에 정신이 어두워 소장을 올리지 못하고, 병조에다 정장(呈狀)하여 신의 직명을 갈아주시도록 아뢰어 줄 것을 청하고는 병든 몸을 이끌고 교외로 나왔습니다. 이때는 바로 인산을 수원으로 이미 정하고 여러 도감(都監)의 일도 모두 시작

되어 한창 진행되고 있었으니, 그 누가 이의가 다시 생겨 이렇게 시끄러움을 일으킬 줄을 미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7월 3일 한밤중에 건원릉(健元陵)의 서동(西洞)과 불암산(佛巖山) 및 화접동(花蝶洞)을 가 보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이 그때는 병 중이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장계를 갖추어 산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상규(常規)가 아닌 것은 알았지만, 당시 신의 생각에는, ‘일이 이루어져 버리고 나면 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매사는 처음 시작을 잘해야 하며, 무슨 동기가 보일 때는 일찌감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고 여겨, 절박한 심정에서 꼭 아뢰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여 제때에 미치지 못할 것 같고 일마저 급박하여 상소문으로 쓸 수도 없었으므로, 부득이 그 내용을 대략 방백(方伯)에게 언급하여 전달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대체로 긴급을 요하는 일이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질구레하게 꼭 속례(俗例)에 구애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의(義)가 있는 곳에 따라 예(禮)는 때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은 이 일에 있어 지금까지도 신이 충성을 다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 무례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일은 처음에 이상진(李尙眞)이 자기 혈성에 못이겨 상규에 구애받지 않고 사사로이 국릉(國陵) 자리를 보았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신 혼자만 교만 불경한 것이 된단 말입니까?

5일에 또 건원릉 내에서 새로 찾아낸 두 산등성이를 가서 살피라는 특명을 받고는 한밤중에 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날 두 번 세 번 올라가서 세밀하게 살피보고 규례에 따라 산론(山論)을 초기하여 올렸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왔으나 유계(兪槩)만은 오지 않았습니다. 3일에 신이 병으로 가지 못한 것과 5일에 유계가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다르기에 신 혼자만 교만 불경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산을 보는 데 있어서는 처음 보는 것은 가볍고 두 번째 볼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이 병으로 건원릉에 가지 못한 것은 사실 처음 볼 때이고, 병이 조금 나아 건원릉에 간 것은 두 번째 볼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윤강(尹綱) 및 여러 지관들과 함께 가서 살펴 보고 재혈하는 데까지 동참했으니, 이는 끝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 비방을 피하여 교외로 나간 때가 산릉을 이미 수원으로 정한 뒤였는데 산릉도 정하기 전에 이미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고, 신이 병이 나서 가지 못했을 때는 건원릉 서동과 화접동을 처음 볼 때였는데 두 번째 보는 날 태연히 물러가 앉아 있었다고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억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는 데가 있어 끝까지 죄를 범하고 있다.’ 는 죄목으로 법을 적용하려 하니, 이는 너무나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입니다.”

하였다. 사헌부가, 장 팔십도(杖八十度)로 수속(收贖)하고 탈 고신 삼등(奪告身三等)해야 한다고 아뢰니, 상이 이미 파직했다는 이유로 용서하였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선도가 수원 산을 천 년에 한 번이나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고, 윤강(尹絳) · 이원진(李元鎭) · 이최만(李最晩) 및 다른 여러 지관들이 한 사람도 하자를 잡지 않고 입이 마르도록 찬사를 연발하면서 모두 크게 길한 곳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수원이 경기의 중진(重鎭)이어서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만 알고 만세를 두고 성왕의 의관을 간직할 일은 생각지 않았으니, 그들의 불충한 죄를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正言李東溟：“以尹善道緘辭，張皇文飾，至以鍛鍊等語，誣詆言官。公議至嚴，其何敢肆然至此。” 且曰：“看山之命，初既不赴，而拿問之論，視之尋常，偃然不起，竊欲自同於致仕之大夫。僭擬聖人地位，提起師傅舊恩，尤見謬妄猥濫之甚。” 因以既被厚誣引嫌。掌令鄭繼胄·持

平金禹錫·大司憲趙壽益皆以宋時烈疏引，輕停重論之失，請遞，司諫洪處尹·正言李柙·獻納金益廉·大司諫李慶億等，亦以停論之失，及被斥於尹善道，與同僚無異，皆引避。上竝命：“勿辭。”按善道推考緘辭中有曰：“臣病伏郊畿，去京城一息程。五月初四日，聞國恤奔走入城，成服之後，宿疾重發，載還鄉居。十八日，聞有看山之命，力疾還入，二十五日，隨行於看山之役。聖主衣冠之藏，乃國家送終莫大之節，而抑亦宗廟血食久遠之計也。如不得盡善盡美之地，則豈臣子忠殿下，而報先王之誠也。是以不計顛仆，隨處看審，而絕無可意之處。惟**水原**之山，舉目驚倒，明知其上格。龍大風水，比英陵差不及，而真千里所無，千載一遇之地，雖使道誦·無學復起，不易斯言。不但臣之所見如此，尹絳·李元鎮及諸地官等，無一瑕疵，贊不容口，而莫不為國相賀。則臣之為國願用，不過與諸人一般，而異議橫生，乃獨歸罪於臣，欲殺之言，日入於耳。而適於其時，病復危殆，以病昏不能陳疏，呈狀兵曹，請其啓遞職名，而昇疾出郊。此乃因山已定於**水原**，諸都監之役畢舉方張之時，誰能逆臆，異議復生，以致紛紜也。七月初三日夜半，忽聞健元陵西洞佛巖山下花蝶洞看山之役，臣方病不運身，不得已具狀及山事一款。則固知其非常規，而臣以為：‘遂事不諫，事責謀始，機之將發，辨之宜早，’血誠所迫，必欲仰達，而憊不及事，事且卒遽，不能具疏，不得已略及於方伯，而冀其轉聞。蓋事機緊急，則所重在於及時上達，何必屑屑拘礙於俗例也。義之所在，禮有時而變，則臣於此事，至今徒認其盡忠，而不覺其為無禮也。此與李尙眞初謂迫於血誠，不拘常規，私看國陵，其揆一也，豈獨為驕蹇不敬也。初五日，又聞特命，往看健元陵內，新得二岡，夜半馳進陵所。翌日再三登陟，纖悉看審，隨例草呈山論，而其時看山諸人皆來，而獨兪榮不來。初三日臣之病不進，初五日兪榮之不進，有何異同，而獨謂之驕蹇不敬乎？且看山之事，初審輕而再審重。臣之病未進於健元陵，實初審之時也，病間而進於健元陵，實再審之時也，而其時既與尹絳等及諸地官，俱行竝看，乃至同參於裁穴，則不可謂之終不起動也。大概臣之避謗出郊，在於山陵已定**水原**之時，而以爲山陵未定之前，已爲下鄉，臣之疾作不進，實在健元陵西洞花蝶洞初審之時，而以爲再審之日，偃然退坐，則不亦冤乎？至以怙終擬律，則鍛鍊甚矣云云。”憲府奏以杖八十收贖奪告身三等，上以既已罷職分揀。【臣謹按善道以**水原**山為千載一遇之地，尹絳·李元鎮·李最晚及諸地官等，無一瑕疵，贊不容口，皆以為大吉之地，而當時異議諸人，徒知**水原**之為畿輔重鎮，難於遷改，而獨不念聖主萬世衣冠之藏，其不忠之罪，可勝言哉。】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9월 1일(기미)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대사간 남구만이 탐욕스러운 수원부사 이수창의 파직을 청하다

(…) 이때에 이르러 대사간 남구만 등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수원 부사 이수창(李壽昌)은 전후로 부임한 곳마다 다 탐욕 때문에 낭패를 당해 탄핵하는 논의가 대관의 글에 여러번 제기되었는데도 장률(贓律)이 시행되지 않아 추천이 계속되고 있으니, 교활한 장수와 탐오한 관리를 징계시킬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경기 지방의 중진(重鎭)은 더욱 이 사람의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허락하지 않았다.

○(…) 至是大司諫南九萬等啓：(…) 又啓：“**水原府使李壽昌前後莅任，皆以貪墨見敗，舉劾之論，屢發於臺章，而賦律不施，推薦相繼，猾帥汚吏，將無以懲戢。況此圻輔重鎭，尤不可付諸此人之手，請罷職。**” 不許。

<현종실록 9권, 현종 5년 11월 19일(병오) 1번째기사>

## 정치/사법

헌납 이민서가 수원부사 이수창을 현종이 비호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

대사간 남구만, 사간 이정(李程), 헌납 이민서(李敏叙), 정언 이섬(李暹)이 청대하니, 상이 회정당에서 인견하였다. (….) 민서가 아뢰기를, “무관이 벼슬하는 것은 다 뇌물을 돌리는 것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한 글의 먹이 마르기도 전에 비국에서 다시 추천합니다. 수원부사 이수창(李壽昌)은 사람들이 다 ‘큰 탐욕꾼 큰 도적’ 이라고 말하는데 상께서 대관(臺官)의 아뢰를 윤택하지 않으시니, 신은 성상의 의중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무관들만 탐욕스럽다고 말한다면 이는 통하지 않는 논의이다. 근래 대간은 남무(南武)만을 거론하지만, 문관에도 탐욕스러운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인데 이것은 전혀 거론함이 없다. 참으로 그 탐욕한 죄가 실제 있는 걸 안다면 사형을 내려야 될 것인데 대관이 말하지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大司諫南九萬·司諫李程·獻納李敏叙·正言李暹請對, 上引見於熙政堂. (….) 敏叙曰: “武弁之拔身, 皆由於行賂. 彈墨未乾, 又自備局推薦矣. 水原府使李壽昌, 人皆曰巨貪大盜, 而自上不允臺啓, 臣未知聖意之所在也.” 上曰: “若謂之貪饕者, 只武弁, 則此不通之論也. 近來臺諫, 只舉南武, 而論之, 雖在文官, 其所貪饕者, 亦必多矣, 此則全無所舉論. 苟知其實有貪墨之罪, 當施烹阿之典, 而奈臺臣不言何哉.” (…)

<현종실록 9권, 현종 5년 11월 22일(기유) 2번째기사>

#### 정치/사법

경기우도 어사 신후재가 복명하고 수원 부사 이정기 등이 죄를 입다

경기우도 어사 신후재(申厚載)가 복명하였다. 수원 부사 이정기(李廷夔), 이천 부사 이휘조(李徽祚), 양성 현감 윤전(尹塙)은 다 고을을 못 다스린 일로 죄를 입었다.

○京畿右道御史申厚載復命. 水原府使李廷夔·利川府使李徽祚·陽城縣監尹塙皆以不治抵罪.

<현종실록 9권, 현종 5년 11월 28일(을묘) 5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부사 박경지가 현종이 수원을 지나 온천을 지날 때 약과를 봉진하다

정언 이익상(李翊相) 등이 아뢰기를, “강원 감사 이만영(李晩榮)과 수원 부사 박경지(朴敬祉) 역시 다 제멋대로 과례(科例)를 어기고 봉진(封進)하였으니, 적발하여 추궁하는 일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 과직하소서.” 하고, (….) 만영은 체차한 뒤에 추고하고 경지는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이 당시 경상 감사 임의백(任義伯)이 삶은 전복을 내국(內局)에 보냈다가 대간의 탄핵을 받고 이미 체직된 상황이었다. 강원 감사 이만영도 문보(文報)를 보내는 편에 몇 가지 어산물을 보내어 약용(藥用)으로 쓰게 하였고, 대가가 수원을 지날 때에 부사 박경지가 특별히 약과를 만들어 내국에 진봉하자 제조 허적(許積)이 온양으로 가지고 갔었다. 이때에 이르러 대간(臺諫)이 만영 등을 탄핵하자 허적도 상소하여 스스로를 탄핵하였는데, 상이 안심하고 사임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戊午/正言李翊相等啓曰: “江原監司李晩榮·水原府使朴敬祉, 亦皆踰越科例, 擅自封進, 糾劾之舉, 宜無異同. 請竝罷職.” (….) 命遞推晩榮, 而敬祉則推考. 時慶尙監司任義伯, 既以送熟鮓于內局, 被臺劾而遞. 江原監司李晩榮, 亦以文報送數種魚產, 以備藥用, 駕過水原, 府使朴敬祉別造藥果, 進于內局, 提調許積, 齎往溫陽. 至是臺諫劾晩榮等, 積亦上章自劾, 上答以安心勿辭.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6월 3일(무오) 1번째기사>

#### 정치/사법

대사헌 박장원 등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수원부사 박경지를 파직하라고 아뢰다  
(…) 또 아뢰기를, “수원 부사 박경지(朴敬祉)는 부임한 이후로 행정을 부하에게 맡기고 술에 취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으니, 관직을 맡고 있으면서 일을 전혀 돌보지 않았음을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또 작년 전세(田稅)를 금년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봉입(奉入)하기를 청한 본도 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상계서 ‘봉입을 독촉하지 말아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분부를 내리셨는데도, 경지는 통보가 내려지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앞질러 농사철에 굶주린 백성을 독촉하여 받아들였으니, 조정의 구휼하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던 말입니까. 또 배에 실어 서울의 창고로 옮기다가 배의 전복을 초래함으로써 이미 거둔 쌀을 장차 다시 거두게 되었으므로 온 경내에 원망이 자자하다 합니다. 듣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니 박경지를 파직하소서.” 하니, 따랐다.

○(…) 又啓: “水原府使朴敬祉到任之後, 政委下吏, 醒日常少, 居官廢事, 據此可知. 且上年田稅, 今年因本道監司待秋收捧之狀啓, 自上勿督捧紆民力之教, 而敬祉不待回下, 徑先督納於農時阻飢之民, 朝廷軫恤之意, 果安在哉. 及其船運京倉, 以致覆沒, 已徵之米, 又將再徵, 闔境怨咨. 聽聞可駭, 請朴敬祉罷職.” 從之.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8월 10일(계해)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사헌부가 수원과 북청의 위상이 다르니 구문치의 수원부사 제임은 타당하지 않다고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 기보(畿輔)는 보장(保障)이어서 중임(重任)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곤임(關任)에 견주어 본다면 진실로 대등한 반열이 아닙니다. 지난번 수원 부사(水原府使)의 천망(薦望)이 있을 적에 삼로(三路)의 절도사(節度使)를 아울러 의망함으로써 결국 새북(塞北)의 곤수에게 귀착시켰습니다. 관방(官方)과 정체(政體)를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물정이 모두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원(水原)과 북청(北靑)의 거리는 십수일의 노정이 되는데 무변(武弁)으로서 서울에 있으면서 일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어찌 가합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변방의 곤수를 옮겨가면서까지 제수하여 전도스러움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전 남병사(南兵使) 구문치(具文治)는 그대로 전임(前任)에 제수하고 수원 부사는 다시 일이 없는 가합한 사람 가운데서 극진히 가려 차송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司憲府啓曰: (…) 畿輔保障, 雖曰重任, 比之制關, 固不可等班. 而頃日水原府使之薦望也, 竝擬三路節度, 終歸於塞北關帥. 官方政體, 不當如是乖舛, 物情皆以爲訝. 非但此也. 水原之距北靑, 至於十數日之程, 武弁在京無故者, 豈無可合之人. 而何必以邊外關帥, 轉相移授, 以致顛倒之至此也. 請前南兵使具文治仍授前任, 水原府使更以無故可合之人, 極擇差送.” 上不從.

<현종실록 11권, 현종 6년 9월 6일(기축) 3번째기사>

#### 정치/사법

대사헌 이경휘가 전 수원부사가 역관에게 뇌물을 주었으니 파직하길 청하다  
대사헌 이경휘가 아뢰기를, “(…) 전 수원 부사 구문치(具文治)는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도 않고 먼저 접을 먹고 역관의 집으로 달려가 사사로이 뇌물을 주었으니, 참으로 형편없는 짓입니다. 이들을 모두 파직하소서.” 하니, 모두 따랐다. (…)

○大司憲李慶徽啓：“(…) 前水原府使具文治, 不待朝家命令, 先自懼慙, 奔走譯官之家, 私自行賂, 誠涉無謂. 竝請罷職.” 皆從之. (…)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8월 10일(무오)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장령 김정 등이 박경지의 일을 아뢰고, 수원 부사 유창의 국문을 청하다**

장령 김정·이합이, 재신이 뇌물을 요구한 일로 논계하면서 박경지를 잡아다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고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지에게 우선 함문(緘問)한 후에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원 부사 유창은 이미 청탁이 많다는 말을 대신에게 하고서, 탑전에서 하문할 때 미처서는 단지 유연이 어머니를 위하여 반찬거리를 요구했다는 말로 책임만 때워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창이 부임한 뒤에 청탁한 글이 단지 유연 한 사람이었다면 유창이 굳이 대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유연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도 눈치를 보느라고 다 말하려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어찌 임금을 섬김에 있어 숨김이 없어야 하는 의리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혼인과 상제로 청탁하는 일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서 다시 얼버무려 버렸으니, 지척의 연석에서 어찌 감히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잡아다가 국문하여 일일이 사실대로 고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掌令金澄·李栢以宰臣求請事論啓, 請拿朴敬祉, 使之指名現告. 上曰: “敬祉姑先緘問後, 處之可也.” 又啓: “水原府使俞瑒, 既以關節煩多之說, 言於大臣, 及至榻前下問之時, 只以柳寔爲母求饌, 塞責告達. 瑒到任之後, 請托之書, 只寔一人, 則瑒不必言於大臣. 若寔外又有他人, 而有所顧藉, 不肯盡言, 則是豈無隱之義哉. 且既發婚喪求請之說, 而旋復含糊, 筵席咫尺, 安敢乃爾. 請拿問, 使之一一現告.” 上從之.

<현종실록 13권, 현종 7년 11월 21일(정유) 6번째기사>

### 정치/사법

**병조판서 홍중보가 수원부사 유창에게 황계를 부탁한 일로 파직되다**

장령 김정, 지평 이익상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수원 부사 유창이 사대부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하기를 ‘병조 판서 홍중보가 하인을 시켜 편지를 보내 답을 요구하였는데 마침 그때 내가 서울에 가게 되었으므로 짐속에 있는 대여섯 마리를 보내주었다.’ 하였는데, 유창이 심리에 나아간 뒤에 홍중보가 금오(金吾)의 장관으로 규례에 따라 헌의하니 물정이 자못 괴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가 자수한 상소를 읽어보니 ‘약에 쓸 황계(黃鷄)를 시장에서 구하지 못하여 우연히 알리게 되었다.’ 고 애매하게 넘기고는 명백하게 곧바로 진달하지 않아 유창의 말과 큰 차이가 나고 말았으니 임금에게 고하는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관(大官)이 이와 같은데 소관이야 어떻게 책망하겠습니까.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掌令金澄·持平李翊相啓曰: “頃者水原府使俞瑒, 言於士夫多會處曰: ‘兵判洪重普委伴致書, 求得鷄首, 適於其時, 吾方入京, 故以行中所有五六首送副云, 及瑒就理之後, 重普以金吾之長, 依例議讞, 物情頗以爲異矣. 卽見其自首之疏, 則曰: ‘藥用黃鷄, 不得於市, 偶然通

及’，云而僮伺遷就，不爲明白直陳，與瑒之言，未免逕庭，告君之辭，不宜乃爾。大官如此，小官何責。請先罷後推。” 上從之。(…)

<현종실록 13권, 현종 7년 11월 26일(임인) 4번째기사>

#### 정치/사법

##### 중 계습을 수원부에 가두었다가 휴역의 문서를 찾아내어 추국청을 설치하다

대궐 안에다 추국청을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계습(戒習)이라는 종이 상의 운명을 맹인 진승건(陳承建)에게 점치고 또 찾아낸 문서에 부도한 말이 많았다. 처음에는 다른 일로 해서 수원부(水原府)에 갇혔는데, 휴역스러운 문서를 찾아냄으로 인하여 감사가 조정에 아뢰자, 국문하라고 명한 것이다.

○命設推鞠廳于闕內。僧戒習者，以上運命，推卜於盲人陳承建，又得文書，多有不道之說。初以他事，被囚於水原府，因得其兇逆之文，道臣聞于朝，乃命鞠之。

<현종실록 14권, 현종 8년 12월 7일(정축)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사노가 사족의 여인을 겁탈한 사건을 잘못 처리한 수원부사 홍처후가 파직되다

사간 민유중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에서 사노(私奴)가 사족(士族)인 배귀현(裴貴賢)의 누이 동생을 겁탈한 일이 있었는데, 귀현이 본부에서 소장을 올리자 부사(府使) 홍처후(洪處厚)가 핑계를 대면서 남양(南陽)에다 미루고 즉시 청리(聽理)를 하지 않아 정범(正犯)이 도망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홍처후를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소서.” 하니, 따랐다.

○司諫閔維重啓曰：“水原有私奴，劫奪士族裴貴賢在室之妹，貴賢呈狀於本府，則府使洪處厚，推諉於南陽，趁不聽理，以致正犯逃失。請洪處厚先罷後推。” 從之。

<현종개수실록 9권, 현종 4년 9월 18일(임오)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대사간 남구만이 수원부사 이수창의 탐학을 탄핵하다

(…) 대사간 남구만 등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수원 부사 이수창(李壽昌)은 전후로 관직에 있으면서 탐학하다 하여 탄핵하는 논의가 여러 차례 대간의 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장오죄를 시행하지 않고 추천이 잇달아 탐관오리를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경기의 중진(重鎭)인 수원을 더욱더 이러한 사람의 손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허락하지 않았다.

○(…) 大司諫南九萬等啓以：(…) 又啓曰：“水原府使李壽昌前後莅任，皆以貪墨見敗，舉劾之論，屢發臺章。而臧律不施，推薦相繼，猾帥汚吏，將無以懲戢。況此畿輔重鎭，尤不可付諸此人之手，請罷職。” 不許。

<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5년 11월 19일(병오)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이민서가 탐학한 수원부사 이수창의 파직을 청하다

대사간 남구만(南九萬), 사간 이정(李程), 헌납 이민서(李敏紱), 정언 이섬(李暹)이 면대를 청하니, 상이 회정당(熙政堂)에서 인견하였다. (…) 이민서가 아뢰기를, “무인이 발신(發身)하는 것은 모두 뇌물을 통하므로 탄핵장에 먹이 마르기도 전에 또 비국에서 추천하고 있

습니다. 수원 부사 이수창(李壽昌)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두 ‘아주 탐학스런 큰 도둑’ 이라고 하는데도 상께서는 대간의 아뢰를 윤택하지 않으시니, 신은 성상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즈음 탐장(貪贓)으로 논핵받는 자는 모두 무인들이며 명사나 재상은 탐장으로 탄핵받는 자가 없는데, 어찌 무신은 모두 탐학스럽고 문관 중에는 한 명의 장리(贓吏)도 없겠는가.” 하자, 이민서가 아뢰기를, “문관은 참으로 탐학스럽다는 이름을 얻으면 종신토록 폐기되나 무신은 비록 탄핵받더라도 곧바로 서용됩니다. 황헌(黃濼)이나 박형(朴洞) 같은 자도 모두 탐장죄에 대한 형벌을 시행하지 않았으니, 탐리(貪吏)가 어찌 징계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

○大司諫南九萬·司諫李程·獻納李敏叙·正言李暹請對, 上引見於熙政堂. (…)  
敏叙曰: “武弁之發身, 皆由於行賂, 彈墨未乾, 又自備局推薦. 如水原府使李壽昌, 人皆曰: ‘巨貪大盜.’ 而自上不允臺啓, 臣未知聖意之所在也.” 上曰: “近來論以貪贓者, 皆是南武, 而名士·宰相, 無以貪彈劾者, 豈武臣皆貪婪, 而文官無一贓吏耶?” 敏叙曰: “文官, 則苟有貪名者, 猶爲終身廢棄, 而武弁, 則雖被彈劾, 旋即收斂. 如黃濼·朴洞, 皆不行烹阿之典, 貪吏何所懲乎?” (…)

<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5년 11월 22일(기유) 3번째기사>

#### 정치/사법

**경기에 도적이 일어나 수원 등 방어사나 영장을 겸한 수령에게 잡게 하다**

이때 경기 지방에 잇따라 흉년이 들어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나자, 감사 김수홍이 장계하기를,

“토포사가 치우친 곳에 처해 있어 형세상 금하여 체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원(水原)·장단(長湍)·양주(楊州)·죽산(竹山)·파주(坡州)·통진(通津)·남양(南陽)과 같은 고을에서 혹 방어사를 겸임하거나 영장(營將)을 겸임해왔으니 지금부터 정식으로 만들어 방어사나 영장을 겸임한 수령으로 하여금 책략을 세워 모조리 체포하게 하되, 토포사가 총괄해 살피면서 신칙하게 한다면, 일이 짜임새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장계대로 시행하되, 감사로 하여금 일에 따라 지휘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是時, 畿甸連值歲荒, 盜賊處處竊發, 監司金壽興狀啓以爲:

討捕使, 處在一隅, 勢難禁捕. 如水原·長湍·楊州·竹山·坡州·通津·南陽等邑, 或兼防禦使, 或兼營將, 自今更爲定式, 使守令之兼防禦·營將者, 設機勦捕, 而討捕使總察申飭, 則事可着實矣.

備局回啓: “請依狀啓施行, 而亦令監司, 隨事指揮.” 從之.

<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6년 2월 2일(기미) 6번째기사>

#### 정치/사법

**현종이 온천에 가는 길에 수원부사 박경지가 약과를 봉진한 것에 대해 논핵당하다**

상이 회정당에 나아가 죄인을 심리한 다음 40인을 방면하고 3인을 감동하였다. (…)  
간원이 얼마 후에 또 강원 감사 이만영, 수원 부사 박경지도 모두 멋대로 봉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아울러 파직하기를 청하니, 상이 만영은 체직 추고하고, 경지는 추고만 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임의백과 이만영이 바다에서 나는 특산물을 약방(藥房)으로 특별히 보내왔고 어가가

수원을 지나갈 때 경지가 별도로 약과를 만들어 도제조 허적에게 전달하니, 허적이 싸가지고 온양에 갔었다. 이때에 만영이 논핵을 당하자, 허적도 상소하여 자신을 탄핵하니, 상이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上御熙政堂，審理罪人，放四十人，減等三人．(…)諫院尋又，以江原監司李晚榮·水原府使朴敬祉，亦皆擅自封進，竝請罷職，上命遞推晚榮，而推考敬祉．初義伯·晚榮，別送海味於藥房，而駕過水原也，敬祉別造藥果，進于都提調許積，積齎往溫陽．至是，晚榮等被劾，積亦上疏自劾，上答以安心勿辭．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5월 30일(을묘)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 통인이 곤장 맞아 죽은 사건과 관련된 수원부사 이일선과 구문치에 대해 의논하다

청나라 사신이 유황의 건과 도망쳐 돌아온 사람의 건을 조사하기 위해 나온다는 보고가 왔다. 상이 회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불러 보았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지금 사신의 장계를 보니, 유황의 건과 도망쳐 돌아온 사람의 건을 저 나라에서는 기화로 보아 조사 신문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이일선(李一善)이 수원의 통인(通引)을 곤장을 때려 죽인 일로 여러모로 공갈 협박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강구해 정하여 놓았다가 사변에 대처해야 할 것인데, 반복해 생각해 보았으나 적당한 방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우상에게 편지를 보내 물었더니, 우상의 의견은 신과 같지 않았습니다. 신의 뜻은, 당초 도망쳐 돌아온 사람의 일에 대해 조정이 모르는 일이라고 핑계대면 자못 성실이 결여된 일이고 또 그들의 노여움을 더 살 것이니, 도리어 사실대로 말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더니, 우상은 ‘이렇게 하면 모욕하는 말이 점차로 임금에게 미칠 것이니, 끝끝내 숨기고 지방 수령에게 죄를 돌리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조정이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면 정대(正大)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잠시 우상이 출사하기를 기다렸다가 대면해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수원의 통인을 곤장을 때려 죽인 것은 본디 대단한 일이 아닌데, 이일선이 꼭 이 일을 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지난해 겨울에 구문치(具文治)가 수원 부사로 있을 때 어떤 통인이 관안(官案)에 누락한 것이 있기에 잡아들여 이유를 물었더니, 이일선의 일가붙이라고 자칭하면서 거친 말을 많이 하였으므로 구문치가 노한 김에 중하게 곤장을 쳤는데, 그뒤로 병이 나 죽었습니다. 구문치가 한 일이 비록 과격하였지만 통인이 죽은 것도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일선이 이 일을 공갈거리로 삼고 있으니, 어찌 통분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통분할 것은 통인의 아버지가 이일선에게 편지를 보내어 노하도록 충동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가가 수원에 도착했을 때에 종실이 임시 거처하던 집에서 불이 난 변이 있었는데, 곧 이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이 변을 만들어 그의 분을 풀었으니, 그의 죄악이야말로 즉시 참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신이 올 날이 머지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한층 더 확대될까 염려되니, 지금 잠시 참고 있다가 그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려 처리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사신이 왔을 때 강화 풍덕의 사람 중에 쌀을 얻으려고 획책하고 이일선에게 방납(防納)한 자가 있어 일찍이 대간이 계사를 올렸으므로 형조가

지금 조사하여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의 정상은 수원 사람에게 비해 볼 때 경중의 차이가 없지 않으니, 이렇게 대사면하는 날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방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사 이러한 자들이 일시에 같이 일어나 은밀히 저들과 도모한다면 앞으로 우환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원 사람의 일은 잠시 후일을 기다렸다가 처리하도록 하고 풍덕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清使以查問疏黃及走回人事出來，報至。上御熙政堂引見大臣及備局諸臣。領相鄭太和曰：“今見使臣狀啓，則以疏黃及走回人事，彼國視爲奇貨，將有查問之舉，且李一善，以水原通引杖斃事，恐嚇之言，靡所不至云。此等事，當前期講定，以爲待變之地，而反覆思之，未得其宜。臣書問于右相，則右相之意，與臣不同。臣意則走回人當初出來之事，朝廷若托以不知，則殊欠誠實，且慮激怒，反不如直言之爲愈，而右相以爲：‘如此，則侵辱之說，將轉及君上，莫如終始隱諱，歸罪於藩臣。’云矣。”左相洪命夏曰：“朝廷以不知爲言，似不明正矣。”上曰：“姑待右相出仕，面議處之。”上又曰：“水原通引之杖斃，元非大段事，而李一善，必欲以此起鬧，何也？”太和曰：“上年冬間，具文治爲水原府使時，有一通引，落漏於官案，捉入問由，則自稱一善之族，多發悖惡之語，文治乘怒重杖，仍致病死。文治之事，雖曰過激，通引之死，亦非無罪。而一善以此爲恐嚇之地，豈不痛哉？尤可痛者，通引之父，送書於一善，以激其怒。不然則彼惡得而知之？大駕行到水原時，宗室所寓家，有失火之變，卽此人之家也。渠故作此變，以肆其憤，渠之罪惡，卽當斬之。而客行不遠，恐因此轉加一層，今姑隱忍以待其還，似爲便當矣。且前冬客使出來時，江華·豐德之人，有圖得米石及防納於一善者，曾因臺啓，刑曹今當查治。此人等情狀，比之水原人，不無輕重之差，當此大赦之日，不如因此機會而放送也。若使此等人，一時齊起陰圖於彼人，則不無前頭之憂矣。”上曰：“水原人事，姑待後日處之，江華·豐德人，分揀可也。” (…)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5월 18일(무술) 3번째기사>

#### 정치/사법

대사헌 이경휘가 역관에게 뇌물을 준 전 수원 부사 구문치의 파직을 청하다

대사헌 이경휘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전 수원 부사 구문치(具文治)는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겁을 먹고 역관의 집으로 달려가 사사로이 뇌물을 주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을 모두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

○大司憲李慶徽啓曰：(…) 又啓曰：“前水原府使具文治，不待朝家命令，先自慙慙，奔走譯官之家，私自行賂，誠極可駭。請罷職不敘。” 上命先罷後推。又啓曰：“今番查問時，譯官輩，凡有所聞，趁不通報於廟堂，終使國事顛倒。此輩之忘國事而爲彼人之狀，誠極寒心。若不繩以重律，則後弊難防。徐孝男·玄德宇·張炫等三人，請依律科罪。” 上命拿問定罪。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8월 10일(무오)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장령 김정·이합 등이 경연 석상에서 말을 잘못된 수원부사 유창을 문초하도록 하다

장령 김정·이합이, (…) 또 아뢰기를, “수원 부사 유창은 이미 청탁이 많다는 말을 대신에게 해 놓고 탑전에서 하문할 때에는 단지 유연이 어머니를 위하여 반찬거리를 요구했다는 말로 책임만 때웠고, 혼례나 상례 때 물품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꺼냈다가 곧바로 얼버무려

버렸습니다. 상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경연 석상에서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잡아다 문초하여 하나하나 말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掌令金澄·李柙啓, (…) 又啓: “水原府使兪瑒既以關節煩多之說, 言於大臣, 及至榻前下問時, 只以柳寔塞責, 既發婚喪求請之說, 而旋復含糊. 筵席咫尺, 安敢乃爾? 請拿問, 使之一一現告.” 上從之.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1월 22일(무술) 2번째기사>

#### 정치/사법

**병조판서 홍중보가 수원부사 유창에게 닭을 요구하였던 일로 파직을 당하다**

장령 김정 등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수원 부사 유창이 사대부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하기를 ‘병조 판서 홍중보가 하인을 시켜 편지를 보내 닭을 요구하였는데 마침 그때 내가 서울에 가게 되었으므로 짐속에 있는 대여섯 마리를 보내주었다.’ 하였는데, 유창이 심리에 나아간 뒤에 홍중보가 금오(金吾)의 장관으로 규례에 따라 헌의하니 물정이 자못 괴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가 자수한 상소를 읽어보니 명백하게 말하지 않고 모호하게 얼버무려 유창의 말과 큰 차이가 나고 말았으니, 임금에게 고하는 말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대관(大官)이 이와 같은데 소관을 책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癸卯/掌令金澄等啓曰: “頃日水原府使兪瑒, 言於士夫多會處曰: ‘兵判委俸致書, 求得鷄首, 適於其時, 吾方入京, 故以行中所有五六首送之.’ 云, 及瑒就理後, 重普以金吾之長, 依例議讞, 物情頗以爲異. 卽見其自首之疏, 則儻侗遷就, 語不明白, 與瑒所言, 未免逕庭, 告君之辭, 不宜乃爾. 大官如此, 則小官何責? 請先罷後推.” 上從之. (…)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1월 27일(계묘) 1번째기사>

#### 정치/사법

**홍서를 발견한 뒤 수원부에 갇힌 중 계승 등을 국문하여 자복을 받다**

적승(賊僧) 계승과 맹인 진승건을 복주하였다. 계승은 영중추부사 이경석의 외손이며 홍중보(洪重普)의 조카인데 출가하여 중이 되었다고 사칭하면서 경기 지방을 오가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피이기를, ‘내가 너희들의 부역을 면제시켜 줄 수 있다.’ 고 하였는데, 백성들이 자못 믿었다. 그리고 상의 운명을 가지고 맹인인 진승건에게 점쳐 보았는데, 무도한 내용이 많았다. 다른 일로 인해서 수원부에 갇혔는데, 그 홍서(凶書)를 찾아내어 도신이 계문하자, 상이 즉시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계승과 진승건이 모두 자복한 것이다.

○庚辰/賊僧戒習及盲人陳承建等伏誅. 戒習僞稱嶺中樞李景奭之外孫, 洪重普之姪子, 出家爲僧, 往來畿甸, 誑誘愚民曰: “吾能圖免汝等之役.” 民頗信之. 以上運命, 推卜於盲人陳承達, 語多不道. 以他事被囚於水原府, 得其凶書, 道臣啓聞, 上卽命鞫問. 至是, 戒習·承建俱就服.

<현종개수실록 18권, 현종 8년 12월 10일(경진)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좌상 김수항이 전 수원 토포사의 계문에 따라 도적을 잡는 데에 따른 문체점을 아뢰다**

상이 양심함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 수항이 아뢰기를, “전 수원 토포사(水原討捕使)의 계문을 보면 그 중에 적도의 초사(招辭)에 나온 양성(陽城) 사

람이 3명이었는데, 본현(本縣)에서 당초부터 잡아들인 사실이 없었고 토포사 역시 다시 물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천(利川) 사람 4명과 충주(忠州) 사람 8명이 적도의 초사에 나왔는데, 수색해 체포하지 못하자 이천부에서 ‘그들의 용모와 아버의 이름을 원적(元賊)에게 다시 물어보라.’ 는 내용으로 치보(馳報)했는데도 토포사가 그냥 놔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충주의 경우는 처음부터 끌어대지도 않은 사람을 첨가해서 9명이라고 기록하였으니, 도적을 다스리는 일이 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에 의거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적인(賊人)들이 이미 처단되었으니 지금 다시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토포사와 당해 수령은 논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토포사는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고 수령은 추고하라.”

하였다. 지평 임상원(任相元)이 아뢰기를, “도적을 뒤쫓아 체포하고 조사하는 일체의 일은 수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차등을 두어 논죄해서는 안 되니, 당해 수령도 똑같이 파직한 뒤 추고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癸酉/上御養心閣, 引見大臣及備局諸臣. (…)  
壽恒曰: “前水原討捕使啓聞中, 陽城人出於賊招者三名, 而本縣初無捕捉形止, 討捕使亦無更問之事. 利川人四名·忠州人八名, 出於賊招, 搜捕不得. 利川府以容貌·父名, 更問於元賊之意馳報, 而討捕使置而不問, 忠州則以初不援引之人, 添書爲九名, 治盜之不能着實, 據此可知. 賊人等既已處斷, 今難更覈, 而討捕使及當該守令, 鳴可不論罪?” 上曰: “討捕使先罷後推, 守令推考.” 持平任相元曰: “凡有盜賊, 追捕案問, 守令事也. 論罪不宜差等, 請當該守令一體罷推.” 上從之. (…)

<현종개수실록 26권, 현종 14년 3월 3일(계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대사간 신정이 수원을 버리고 영릉을 선택한 일에 대해 변론하다

대사간 신정이 상소하기를, “삼가 듣건대, 전 참의 장응일(張應一)이 상소하면서 장황한 말로 교묘하게 농락하고 거리낌없는 표현을 구사했다 하는데 정말 그가 마음 속으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국가가 불행하게도 선릉(先陵)에 변고가 생겨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능을 옮기는 일까지 있게 되었는데, 전하께서 봉심했던 신하들을 죄준 것은 그 일을 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사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속이려 한 정상은 없었다는 것을 전하께서도 통측하고 계시고 보면, 심리하던 날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해 준 것이 어찌 전하께서 대신을 다치게 할까봐 염려하시어 곡진히 보살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하께서 대신을 대우하신 것은 지극하다 하겠지만 성왕을 섬기는 도리에 있어서는 어쩔지 모르겠다.’ 고 한 이 말은 아,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군상(君上)을 위협하여 여러 신하들을 죄주도록 압박지르고 싶다 하더라도 이 어찌 신자(臣子)된 사람이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내고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수원(水原)을 버리고 영릉(寧陵)을 취한 것과 관련하여 그 죄를 당초 논하며 아뢰었던 신하에게 돌리면서 ‘전하의 집안 일을 망치고 선왕에게 크게 불충한 짓을 한 것이다.’

고까지 하였는데, 신은 이에 대해 지극히 분개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수원의 산으로 처음에 이미 복정(卜定)했었는데, 고(故) 상신(相臣) 이시백(李時白) 등 여러 사람이 ‘수원은 기보(畿輔)의 거진(巨鎭)인 만큼 뒷날 다섯 가지 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는 내용으로 누차 상소해 중지할 것을 간하였고 판부사 송시열(宋時烈) 역시 이런 내용으로 의논드려 영릉으로 다시 고쳐 복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백 등 여러 사람이 과연



모두들 전하의 집안 일을 망치고 선왕에 대해 크게 불충한 짓을 하려 했던 자들이란 말입니까. 그가 이런 계책을 쓴 의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의논드렸던 신하들은 지금 모두 생존해 있지 않고 오직 시열만 남아 있을 뿐인데, 함정에 빠뜨려 해치려는 대상 인물이 필시 이미 백골이 된 사람들은 아닐 것이고 보면 그가 의도하는 바가 아, 또한 참혹하다 하겠습니까.(…)

○大司諫申最上疏曰：伏聞，前參議張應一疏中之辭，張皇闔關，下語無忌，實未曉其心之所在也．國家不幸，先陵有變，至于今日，有遷陵之舉．殿下之罪奉審諸臣者，所以重其事也．其實無用意欺蔽之狀，亦殿下之所洞燭，則原情恕宥於審理之日，豈殿下恐傷大臣，而曲爲之地哉？然則謂殿下待大臣則至矣，而事先王之道，未知如何者，噫嘻！此何言也？雖欲脅持君上，勒罪諸臣，此豈臣子所可生於心，而發於口者哉？且以捨水原而取寧陵，歸罪於當初論奏之臣，至謂敗殿下家事，而大不忠於先王，臣於此不勝慨然之至．水原之山初既卜定，而故相臣李時白諸人，以畿輔巨鎮，日後五患，累疏諫止，而判府事宋時烈亦以此獻議，改卜寧陵，則時白諸人，果皆欲敗殿下家事，而大不忠於先王者哉？此其計無他，其時獻議諸臣，今皆不在，獨時烈在耳．所欲陷害者，必不在於既骨之人，則其所用意，吁亦慘矣．(…)

<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4년 6월 19일(정사) 3번째기사>

## 정치/사법

**장령 성호징이 수원이 아닌 영릉을 선택한 신하를 불충이라고 한 장응일의 파직을 청하다**

장령 성호징(成虎徵)이 아뢰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능침에 틈이 벌어지는 변고가 있게 된 결과 감독하고 봉심한 신하들 모두가 이미 경중에 따라 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응일(張應一)이 유지(有旨)에 응한다는 핑계로 기회를 틈타 소장을 올리면서 능침을 가탁해 장황하게 위협하였는데, 위로는 선왕을 모시는 도리를 극진히 하지 않았다고 군부(君父)를 기롱하였는가 하면, 아래로는 불충하고 불경스러운 죄를 억지로 신하들에게 가하는 등, 그 의도가 음험하고 막된 표현을 마구 구사했으니, 함정에 빠뜨리고 이간시키려는 그의 계책이 아, 또한 참혹하다 하겠습니까.

일을 담당했던 신하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건대 그 누가 능침의 일에 대해 스스로 극진하게 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불행하게 되어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게 된 것인데, 응일이 기필코 죄를 얹어 만들어 연단해서 그 죄안(罪案)을 늘리려고 하였으니,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수원(水原)과 영릉(寧陵) 가운데 취사 선택할 때 충성스럽기 이를 데 없는 훈구지신(勳舊之臣)들이 나라를 염려하는 지극한 정성으로 인사(人事)를 참작하고 지술(地術)의 설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으로 의논을 드렸었고 마침내는 또 전하께서 결단을 내리셨던 것이었는데, 응일은 그만 ‘영릉으로 꼭 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의논을 주도한 자는 전하의 집안 일을 망치고 선왕에게 불충한 자임이 분명하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주(人主)가 위임하고 국가가 의지할 자로서 대신을 제외하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응일이 ‘전하의 좌우에 있는 대소의 신하 가운데에는 믿을 수 없는 자가 있으니, 재궁(梓宮)을 옮겨 모실 때에는 더욱 대신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고 하였으니, 어찌면 이토록까지 그 말이 당치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데도 그냥 놔두면 장차 참조하는 간사한 이야기를 근절시키고 뒷날의 폐단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니, 응일의 관작을 삭탈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戊午/掌令成虎徵啓曰：“國家不幸，陵封有罅隙之變，監董奉審諸臣，皆已輕重受罪．而張應

一誘以應旨，乘間投疏，假托陵寢，張皇脅持，上以不盡於奉先之道，譏刺君父；下以不忠不敬之罪，勒加於諸臣，造意陰險，遣辭無倫，其傾陷離間之計，吁亦慘矣。當事諸臣，原其心則孰不欲自盡於陵寢，而事有不幸，罪在無情。應一必欲構捏鍛鍊，添其罪案者，抑何意耶？當水原·寧陵之取舍也，勳舊忠藎之臣，以至誠憂國之意，酌以人事，參以術說，同辭獻議，終又斷自宸衷。而應一乃曰：‘主寧陵必用之議者，明是敗殿下家事，而不忠於先王者。’人主之所委任，國家之所倚毗者，舍大臣其誰？而應一乃曰：‘殿下左右大小之臣，有不可信者，梓宮遷奉，尤不可委之於大臣。’其言之無理，胡至此極？此而置之，將無以絕讒邪之說，而杜後日之弊。請應一削奪官爵。”上從之。

<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4년 6월 20일(무오)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집의 이유상이 수원 산에 대해 언급한 장응일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다

집의 이유상(李有相)이 상소하기를, “나라의 운세가 불행하여 선왕을 만세토록 모실 유택(幽宅)을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온 나라의 신민들이 함께 가슴 아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라 하겠습니까. 따라서 오직 상하가 합심하고 정성과 예의를 극진히 하여 이 큰 일을 유감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힘써야만 마땅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한 집안이나 한 사람만이 혼자 의견을 내고 개인적으로 근심할 일이겠습니까.

공경(公卿)의 지위에 있는 신하들은 거의 모두가 선조(先朝)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전하에게 보답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봉심(奉審)했을 때에 설령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야 어찌 모두 이익수(李翼秀)나 장응일보다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능을 옮기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계기로 삼은 뒤 온 나라 공경의 신하들을 일체 불경스럽고 불충한 자라고 몰아부치면서 기필코 전하의 조정을 텅 비게 한 뒤에야 그만두려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의 소재가 아, 또한 참혹하다 하겠습니까.

지난해 윤선도(尹善道)가 소장을 올렸을 때 정원의 신하가 전하에게 소를 들이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봉입(捧入)하자 상께서 그 소를 열람하신 뒤에 즉시 불태우라고 명하면서 동시에 엄준한 분부를 내리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응일이 그만 ‘전하께서 열람하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원에서 불태워졌다.’ 고 하였으니, 그 말이 또한 괴이하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원수로 대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한다.’ 고 한 것은 더욱 이치에 어긋난 말입니다. 나라의 임금이 원수로 삼아야 할 대상은 오직 정당한 도리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 이웃 적국일 뿐입니다. 언제 일찍이 나라의 임금이 그 신하를 원수로 대한 적이 있었습니까. 신하에게 죄가 있으면 그 경중에 따라 죄를 주면 그뿐이지, 어떻게 도리상 원수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의 소 가운데 전하로 하여금 신하들을 불신하게 하면서 친히 양릉(兩陵)에 가 모든 일을 직접 행하시도록 한 일이 있었는데, 아, 어찌면 이렇게까지 망극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친상(親喪)에는 물론 스스로 극진히 해야 하지만 동시에 절제함이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하께서는 다만 좌우에 자문을 구하고 전례(典禮)를 널리 상고함은 물론 근력의 한계를 헤아리고 정리와 예문(禮文)이 조화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지당하게 되면서 그 도리를 극진히 행하는 길을 모색해야 마땅할 것인데, 그 자가 어떻게 감히 예를 뛰어넘고 상도(常道)에서 벗어난 말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헤아려 격동시켜 권하면서 군부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 수원(水原)과 관련된 한 조목이나 대신에게 일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봉분을 개축하자고 한 설에 대해 운운(云云)한 말 같은 것들은 음험하고 사특하여 바로 볼 수 없는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하께서 이미 통촉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이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 성상을 직접 공격한 말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신에게 제어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고, 하나는 ‘선왕의 장례를 필부보다도 못하게 치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제어를 받으신 것은 어떤 일이며 필부보다도 못하게 한 것은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신하된 입장에서 차마 입으로 내놓을 수 있단말입니까. 그런데도 장응일이 거침없이 말하면서 다시 거리낌 없었으니, 아아, 이 또한 너무나도 불인(不仁)하다 하겠습니다.(…)

○執義李有相上疏曰：國運不幸，先王萬世之宅，未免有遷奉之舉，此實一國臣民之所共傷憫而憫慮者也。唯當上下協心，盡誠盡禮，克完大事於無憾之地而已，是豈一家·一人之所獨見，而私憂者哉？公卿之臣，舉皆受恩先朝，思欲報之於殿下者也。奉審之際，設有未及詳察之罪，其愛君憂國之心，豈盡出於翼秀·應一之下哉？今乃以遷陵一款作爲陷人之機，一國公卿之臣，一切驅入於不敬不忠之地，必欲空殿下之朝廷而後已，其心所在，吁亦慘矣。頃年尹善道投疏之時，政院之臣措辭捧入，自上覽過之後，卽命焚之，仍下嚴峻之教矣。應一乃以不經睿覽，見焚政院爲言，亦可怪也。且其所謂讎遇不暇者，尤甚悖理。國君之所讎，惟在於隣敵之不以道遇我者耳，曷嘗有國君而讎其臣下者哉？臣下有罪，則隨其輕重而罪之而已，豈有讎遇之道哉？又其疏中，欲令殿下，不信諸臣，親往兩陵，躬執庶事。嗚呼！言之罔極，乃至此耶？親喪固所自盡，而亦不可徑情而直行也。殿下但當咨詢左右，博攷典禮，量筋力之所及，據情文之合宜，求其至當之歸，行之盡其道耳。渠何敢以越禮不經之言，揣度而激勸之，恐動君父乎？若夫水原一款及不可委與改封築云云等語，其爲陰慝，有不可正視者。而業已殿下之所燭，臣不欲更有齟齬。第其中攻聖躬之語，一則曰受制於大臣；一則曰葬先王不如匹夫。臣未知殿下之所以受制者何事，所以不如匹夫者何事，此豈臣子所忍發口，而應一肆然言之，無復憚忌。噫嘻！其亦不仁甚矣。(…)

<현종개수실록 27권, 현종 14년 6월 20일(무오)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사은 겸 진주사 심익현·신정·목임유 등이 역적 토벌에 관하여 청나라에 올린 표문

사은 겸 진주사(射恩兼陳奏使) 심익현(沈益顯)·신정(申景)·목임유(睦林儒) 등이 청(淸)나라에 갔는데, 역적 토벌한 사실을 가지고 가서 아뢰려고 한 것이다. (…) 심익현이 아뢰기를,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행이 왕래할 때에 으레 편지를 서로 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번에 이일선(李一善)이 수원(水原)에 있는 그 족속을 위하여 청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부사(府事) 구문치(具文治)가 그 사람에게 곤장을 때렸더니, 그 뒤에 이일선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는 필시 편지로 통보(通報)한 때문에 그리되었을 것이니, 이번 사행에서는 일체 금지시키도록 하고, 의주 군관(義州軍官)이 그전부터 잘 수색하고 있으니,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하여금 엄하게 금지시키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의주 부윤에게 명하여 일체 금지시키도록 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자는 계문(啓問)하고 죄를 주게 하였다.

○丁卯/謝恩兼陳奏使沈益顯·申景·睦林儒等如淸國。以討逆事實，齎奏而行。(…) 益顯曰：“彼地多有我國被擄人，故使行往來時，例有書札相通事矣。前者李一善爲其族屬在水原者，有干請，其時府使具文治決棍其人矣。其後一善知之，此必是書札通報之致，今行則一切禁斷。而

義州軍官自前善爲搜檢，令義州府尹痛禁似當矣。” 上命義州府尹一切禁斷，現捉者使之啓聞科罪.

<숙종실록 9권, 숙종 6년 6월 10일(정묘)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전 병사 김환 등이 고변하였는데 역모 내용에 대해 수원을 언급하다

전(前) 병사(兵使) 김환(金煥), 출신(出身) 이회, 기패관(旗牌官) 한수만(韓壽萬)이 대궐에 나아와서 상변(上變)하였다. 임금이 삼공(三公) 및 원임 대신(原任大臣),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 양사(兩司)의 장관, 포도 대장(捕盜大將)을 불러오게 하고, 또 양국(兩局) 및 금위영(禁衛營)으로 하여금 궁성을 호위하게 하고는, 빈청(賓廳)에다 상변(上變)한 글을 내어 보였다. 그 상변한 글에는 허새(許璽) 등이 화약(火藥)·화전(火箭)·흰옷 따위의 물건을 준비하여 역적 모의한 증거가 있다고 하며, 아울러 허새가 김환(金煥)의 집에 보낸 편지 두 장과 여러 역적들이 열서(列書)한 종이 및 물건을 갖추어 놓은 문서와 문답한 이야기 및 이를 탐지한 사실을 적은 일기(日記)도 올렸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정창도(丁昌燾)는 풍덕(豐德)에 힘센 장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오게 하였으며, 정창도는 또 허새(許璽)의 말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의 의기와 용기는 참으로 감탄하고 칭송할 만하다.’ 고 하였습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허새가 여러번 이회를 불러 볼 것을 청하고, 이어 나라를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조정에서 노계신(盧繼信)을 쫓아 상변(上變)하게 하니, 앞으로 남인(南人)은 씨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고, 또 팔을 휘두르며 말하기를,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어찌 처부수는 것만 같겠는가? 장사 3백 명으로 하여금 삼공(三公)·육경(六卿)과 비변사 대신들을 찍어 죽이면 나라는 치지 않아도 저절로 깨어지고 만다. 내가 운검차비(雲劍差備)로서 주상을 가까이에서 보니, 덕기(德氣)라고는 조금도 없고 혼암(昏暗)하기 막심하더라.’ 하고, 또 이회와 결의하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화약 5, 6두(斗)를 구해 성 안팎의 여러 창고에 불을 지른 다음 장사들에게 조정의 신하들을 찍어 죽이고 여러 곳에 귀양가 있는 사람들이 의병(義兵)이라 칭하고 일어나면 일은 성공할 수 있다.’ 하였으며, 또 한수만에게는 ‘주상이 무도하여 조정이 어지러우니, 새로 어질고 현명한 이로 바꾸어 즉위(卽位)시키면 나라가 태평할 뿐만 아니라 그대와 나의 공이 클 것이다.’ 하였습니다.

한수만과 이회가 ‘함께 거사를 꾀하는 사람은 누구냐?’ 고 물으니, 허새가 회맹 도목(會盟都目) 석 장을 제가 써서 이를 각각 나누어 가졌는데, 그 도목에 열서(列書)한 사람은 곧 민암(閔黯)·권대운(權大運)·오시복(吳始復)·오정위(吳挺緯)·이덕주(李德周)·이우정(李宇鼎)·김환(金煥)·정창도(丁昌燾)·권대재(權大載)·유하익(俞夏益)·이관징(李觀徵)·이운징(李雲徵)·윤천뢰(尹天賚)·황징(黃徵)·노정(盧錠) 등 16인이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수원(水原)·장단(長湍)·양주(楊州)·광주(廣州) 등지에 가짜 도사(都事)를 보내어 태수(太守)를 잡아들이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둘 것이니 유명현(柳命賢)은 수원(水原)을 맡고, 권수(權脩)는 장단(長湍)을 맡고, 정창도(丁昌燾)는 광주(廣州)를 맡고, 황징(黃徵)은 우선 양주(楊州)를 맡았다가, 거사가 성공한 뒤 훈련 대장으로 옮겨서 임명하는 것이 좋다.’ 고 하고 또 ‘김환을 어영 대장으로 정하였으며, 이어 한수만에게 은 2백 냥을 주며, 이것을 뿌려 장사 및 나장(羅將)의 복장(服裝)과 화약(火藥)·화전(火箭)·백의(白衣)·삼릉장(三稜杖)을 모으는 자금으로 쓰라.’ 고 하였습니다. 또 이회와 함께 가서 김환을 보고 기뻐하며, 즉시 편지를 써서 이회로 하여금 김환의 집에 던져 넣게 하였는데, 그 편지에 이

르기를, ‘나라의 역수(歷數)가 다하려 하니, 조정의 정치가 문란하고 간사한 무리가 권세를 함부로 부려 큰 화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 왕손(王孫)은 죽음을 당하고 어진이들은 주살되며 죄 없는 군자(君子)가 사방으로 귀양가니, 가련한 공자(公子)는 남방의 변방으로 죄를 입어 내몰리었다. 갈상(曷喪)의 탄식이 거리에 퍼지고 살아 있는 무리는 여항(閭巷)에서 분노하고 있다. 이에 장사를 불러 모으고 영웅을 포섭하여 흉악한 무리를 주살하고 명철한 군주를 세우려고 하는데, 계획이 이미 이루어지자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 허새(許璽)가 결안(結案)에서 공술하기를,

“이회와 더불어 한수만(韓壽萬)의 집에 모여 흉모를 주고받았으니, 이것은 역모를 꾸민 시발이며, 또 이회와 함께 한수만의 집에 모여 자신이 도목(都目) 석장을 쓰고 회맹(會盟)이라 일컬으며 삼공(三公)·이조 판서(吏曹判書)·병조 판서(兵曹判書)·양국(兩局)의 대장을 나열해 쓰고, 각 사람의 성명을 그 아래에 기록하여 각각 한 장씩 가졌으며, 또 한수만이 끈 은자(銀子) 2백 냥으로써 힘 센 장사 30명과 흰 옷·삼릉장(三稜杖)·화약(火藥) 1백 50근, 나졸(羅卒)의 의건(衣巾) 4벌, 화전(火箭) 20개를 구하고 그 일 역시 몸소 글로 써서 각각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써서 이회에게 주며 권환의 집에 두 번이나 몰래 던져 넣어서 그 뜻을 시험해 보게 하였으며, 편지 끝에 권환으로 하여금 문앞에 흰 나무를 하나 세우도록 한 것은 서로 뜻이 통하는지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회와 함께 권환의 집에 가서 계획을 세우고 약속하였는데 각기 수필(手筆)로써 문답했으며, 복평(福平)을 추대한다고 한 것은 권환이 복평을 추대하려 하느냐고 묻기에 대답하기를, ‘이 사람을 버리고 누가 있는가?’ 하고는 곧 복평을 칫줄에 쓰고 또 쓰기를 대궐을 범하는 것과 각처에 매복할 병정의 배치와 인원수, 병정에게는 모두 흰옷에 머리에 흰 면수건을 쓰고, 무사(武士)를 시켜 역사(力士)를 거느리고 가서 훈련 대장(訓練大將)과 어영 대장(御營大將)을 제거한 뒤 아무개 아무개로써 대신하도록 하고, 수원(水原)·장단(長湍)·양주(楊州)·광주(廣州) 4진(鎭)의 시임자(時任者)에게는 가짜 금오랑(金五郎)을 보내어 중도에서 제거한 후 아무개 아무개로써 대신하도록 하는 것 등의 계획을 세우고 분담을 정한 것이 다 모주(謀主)의 손에서 나왔음을, 모두 스스로 써서 보였습니다.”

하였고, 허영(許瑛)은 결안에서 공초하기를, “역적 허새가 번들러 가는 길에서 내게 와 나를 보고 말하기를, ‘지금 인심을 헤아릴 수 없다. 혹시 사변이 있게 되면 장차 호종(扈從)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만약 백 명의 군대로 돌진해 들어간다면 군사들은 반드시 패하여 흩어져 달아날 것이다.’ 라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왜 그런 흉악한 말을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니, 허새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겠는가?’ 하였습니다. 그후 허새가 또 와서 전에 하던 말을 다시 하면서 ‘나와 이회가 맹약하여 모의를 이미 정했는데, 너는 신실하여 탄소리하지 않으니, 같이 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다시 말한다.’ 하여, 나는 결국 그의 말을 듣고 허락하였습니다.” 하였다.

○前兵使金煥·出身李회(香+會)·旗牌官韓壽萬詣闕上變. 上命招三公及原任大臣·禁府堂上·兩司長官·捕盜大將. 又使兩局及禁衛營, 扈衛宮城, 出示變書於賓廳, 其變書言: 許璽等備火藥·火箭·白衣等物, 有謀逆之迹. 仍上璽所投換家書二張·諸賊列書紙及物件措備文書·問答說話及譏察日記. 其言概以爲: “丁昌燾聞豐德有力士之說, 使渠致來.” 昌燾又言: “聞璽言, 君之義勇, 誠可歎美.” 又以爲: “璽累度請見, 愈多發怨國之說.” 仍曰: “朝廷引誘盧繼信上變, 南人將無遺矣.” 又奮臂而言曰: “坐而待死, 誰如伐之? 使壯士三百人, 斫殺三公·六卿·備局諸臣, 則國家不攻自破矣. 吾以雲劍差備, 狎見主上, 少無德態, 昏暗莫甚矣.” 又請

倉與之結義. 又曰: “得火藥五六斗, 放火內外諸倉, 仍令壯士, 斫殺朝臣, 諸處被謫人, 稱義兵而起, 則事可成矣.” 又謂壽萬曰: “主上無道, 朝廷紊亂, 更以仁賢易立, 則非但國家太平, 爾我之功大矣.” 壽萬·倉問同事之人誰也? 璽自書會盟都目三張, 各分持之. 其都目中列書者, 卽閔黯·權大運·吳始復·吳挺緯·李德周·李宇鼎·金煥·丁昌燾·權大載·俞夏益·李觀徵·李雲徵·尹天賚·黃徵·盧錠等十六人. 又曰: “水原·長湍·楊·廣等處僞送都事, 捉致太守, 易置他守, 而柳命賢任水原, 權脩任長湍, 丁昌燾任廣州, 黃徵則姑任楊州, 事成後移拜訓將可也.” 又以煥擬之御將, 仍貸壽萬銀二百兩, 以爲散募壯士及羅將巾服·火藥·火箭·白衣·三稜杖之資. 又與倉往見煥而悅之, 卽作書, 使倉投之煥家. (…) 瑛結案招曰: “逆賊許璽出番歷路, 來見言: ‘卽今人心不測, 脫有事變, 將無扈從之人. 若以百名之軍突入, 則軍士必潰走.’ 云. 答曰: ‘何爲此凶言乎? 切勿向人開口.’ 璽曰: ‘吾豈以此言, 向他人發說乎?’ 其後璽又來更發前言曰: ‘吾與李회結約, 謀議已定, 而汝信實不爲雜言, 可與同事, 故如是更言.’ 云, 身果爲聽許.” 云.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10월 21일(갑오)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부사였던 유명견과 그때 군관으로 있던 전익대 등의 공초 내용

어영 대장(御營大將) 김익훈(金益勳)이 승정원(承政院) 아방(兒房)에 나와서 밀계(密啓)하기를, “김환(金煥)이 상변(上變)하기 전에 신에게 찾아와 역적 허새의 역모의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잇달아 초관(哨官) 전익대(全翊戴)가 유명견(柳命堅)과 더불어 왕래하는 의심스러운 상태와, 낙서령(洛西令) 이수운(李秀胤)이 나라를 원망하는 부도(不道)한 말을 이야기하였는데, 유명견의 일이 더욱 의심스러웠으므로 전익대를 잡아 가두어 두었습니다. 지금 닳새가 지났는데도 아직 전익대를 추궁하여 잡아들이는 일이 없으니, 이는 필시 김환(金煥)이, ‘비록 의심스러운 단서는 있지만 역모와는 다른 데가 있다.’ 고 여겨 감히 함께 전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이미 의심스러운 행적이 드러났으니, 덮어 두고 신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국청(鞠廳)에 내려 보내어 함께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마침내 전익대와 유명견을 잡아들이고 이내 김환을 추문(推問)하니, 김환이 공초하여 말하기를,

“전익대가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과거 유명견의 군관이었으므로 정의가 매우 깊었는데, 내가 죄를 입어 파직된 이유로 유명견이 어둠을 틈타 찾아와 위로하는 말을 해 주었다.’ 고 하였습니다. 후에 역적 허새의 흉서(凶書)를 보게 되자 유명견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었으므로 비로소 의심이 나서 전익대를 불러 다시 탐문해 보니, 전익대도 또한 ‘유명견의 말에 수상한 점이 많다.’ 고 대답하였습니다. 지난날 유명견이 국청에서 풀려난 후 가서 보니, 유명견이 말하기를, ‘그대는 병사를 거느리는 장관(將官)이니, 내가 만약 병정을 빌어 쓸 때가 있으면 그대는 마땅히 와야 할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그대가 지금 비록 파직되더라도 어찌 직위를 얻을 때가 없겠는가? 아무쪼록 관대(冠帶)를 미리 준비해 두라’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낙서령은 자칭 남인(南人)으로서 이어 말하기를, ‘강상(江上)에는 죄를 입어 몰려난 재상들이 많으나, 근래 기찰(譏察)이 한창 펼쳐진 이유로 서로 만날 수 없다’ 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기찰한다는 말은 필시 거짓말일 것이니, 정금(鄭錦)이 나왔다고 하는 소란스러운 말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니, 낙서령이 말하기를, ‘정금의 이야기를 왜 헛소문이라 하는가? 정금의 군대가 이미 허사(許沙)에서 모습을 나타내었다.’ 하기에 대답하기를, ‘정

금이 비록 나왔더라도 우리나라의 무기가 정예(精銳)하니 섬멸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니, 낙서령이 말하기를, ‘만약 날랜 배 수십척을 강 어귀에다 바로 대면 주민들은 일시에 무너져 흩어지고 성 안은 모두 달아나 숨어버릴 것이니, 나라 일이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그 후 또 와서 혀를 차고 길게 한숨을 쉬면서 도리에 어긋난 말을 늘어놓기를, ‘임금이 혼미하고 흐려 일 처리를 명백하게 하지 못하니, 한평수(漢平守)의 여종을 역적 이남(李柟)의 여종으로 잘못 알고 내수사(內需司)에 소속시켰다. 또한 오시항(吳始恒)의 사건만 보더라도 임금이 만약 밝게 살폈다면 반드시 그의 애매함을 알았을 것인데, 만약 유배당한 사람이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것을 의심했다면 장차 반드시 원통하게 죽었을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정금(鄭鎬)이 만약 50여 척의 배에 날랜 군사를 태우고 한강(漢江)에 바로 들어와서 영을 내리기를 「나는 백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라」고 하면서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면, 백성들은 음식물을 가지고 나와 영접하면서 함성을 지르며 불을 지를 것이니, 이어 변란을 일으키게 되면 비록 대신과 대장이 있더라도 달아나 숨기가 바쁠 터인데 누가 감히 손발을 놀릴 것인가?’ 하였습니다. 이 말은 모두 바로 어영대장에게 글로 써 바쳤으므로 상변하는 글 속에는 함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전익대(全翊戴)가 공초(供招)하기를,

“정사년 무렵에 유명견이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있을 때의 군관이 되었습니다. 유명견이 노계신(盧繼信)의 옥사로 옥에 갇혔다가 나온 후 찾아가 보니, 유명견이 말하기를, ‘그대는 병사를 거느린 장관인 이유로써 자주 오지 말기를 바란다. 어느 때 긴급히 부를 일이 있을 것이니, 그 때 거느리고 있는 군사와 함께 급히 달려 오라.’ 하였고, 설을 맞기 전에 아버를 뵙고자 충주(忠州)에 간다고 하였더니, 유명견이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은정자(銀頂子)를 내어 주었으므로 지금 받아서 집안에 두었습니다. 그 후 죄를 얻어 파직되어 집으로 돌아가 병석에 누워 있었더니, 유명견이 날이 저문 뒤 와서 문밖으로 불러내어 물기를, ‘그대의 집에 홍단령(紅團領)이 있느냐? 관직을 잃고 얻는 것은 일정하지 않으니, 만약 뜻밖에 벼슬을 얻게 되면 단령(團領)을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우니, 어찌 준비해 두지 않는가?’ 하며 이어 뒷날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유명견(柳命堅)이 공초(供招)하기를, “지난번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더니, 전익대(全翊戴)와 전 편비(偏裨) 이천우(李天祐)가 와서 앉아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절대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다. 너희 같은 무사는 더욱 만날 마음이 없으니 아무쪼록 물러가서 부르지 않는다면 오지 말아라.’ 하였는데, 다시 왔다는 말은 절대로 근거가 없습니다. 수원 부사로 재임시 가지고 있던 전립(戰笠)과 정자(頂子)는 벼슬을 내놓고 돌아온 뒤에, 입자(笠子)는 군관(軍官) 윤승위(尹承渭)가 가져 가고 정자(頂子)는 전익대가 가져간 듯 하다고 하니, 헛수가 오래 되어 상세히 기억할 수 없는데도 이를 빙자하여 말을 지어내니 실로 흉악하고 참혹합니다. 만약 병사를 거느리고 오기를 청할 뜻이 있어 설을 맞기 전에 서울에 머물기로 약속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서 함께 모의해야 할 것인데, 어찌 고향에 돌아가 숨어 있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전익대가 형장(刑杖)을 받은 후 여러 입을 거쳐 말을 보내기를, 한 번 찾아와 문병해 주기를 원한다고 했으므로, 그의 외립됨을 말하고 한번도 사람을 보내어 문병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그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단령(團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문답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하니, 국청(鞠廳)에서 아뢰어 유명견과 전익대의 대질을 청하여 서로간에 변명과 힐문이 오고갔으나, 끝내 하나로 귀착되지 않았다. 또 윤승위(尹承渭)와 이천우(李天祐)를 잡아들여

심문하니, 공초한 내용이 유명건의 말과 다름이 없으므로 곧바로 풀어 주었다. 이때 수윤(秀胤)은 이미 허세의 옥사 때 감옥에 갇히었는데, 전익대의 말로 말미암아 다시 추문하니, 수윤이 공초(供招)하기를,

“정금(鄭錦)의 사건은 도청도설(道聽塗說)에 불과하니, 계책을 헤아려 생각건대 역시 근자의 인심을 말한 것뿐일 것입니다. 오시항(吳始恒)이 형벌을 받고 중도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남에게 무함을 받아 가엾다고 하였습니다. 한평수(漢平守)의 노비(奴婢)에 대한 일은 단지 한평수의 집에서 한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였다. 국정에서는 감히 다 숨길 수 없다는 이유로써 형추(刑推)를 청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그는 이름이 선파(璿派)에 있으니, 외조(外朝)와는 특별히 다른데도 사대부와 결탁하여 임금을 원망하고 부도(不道)한 말을 함부로 하였고, 김환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도 역시 감히 다 숨길 수가 없는데도 끝내 사실을 말하지 않으니, 지극히 흉악하고 간사하다.” 하고, 각별히 엄중하게 심문하라고 명하였다. 수윤(秀胤)은 형추(刑推) 아홉 차례, 압슬형(壓膝刑) 한 차례로 죽고 말았다.

○御營大將金益勳詣政院兒房，密啓曰：“金煥上變前，來見臣，備言賊璽逆節，仍言哨官全翊戴與柳命堅往來可疑之狀及洛西令秀胤怨國不道之語，而命堅事，尤爲可疑，故拘置翊戴矣。今過五日，尙無推捉翊戴之舉，此必煥以爲，雖有疑端，而與謀逆有異，不敢竝爲陳達而然。既有可疑之跡，則不可掩置不問。”上下鞫廳，竝鞫之。遂拿翊戴·命堅，仍推問煥。煥招言：“翊戴曰：‘吾嘗爲命堅軍官，情義甚熟。以吾被罪汰去之故，命堅乘昏委來問慰。’云。及見賊璽凶書，命堅之名在其中，故始爲致疑。”招翊戴，更爲探問，則翊戴亦言：“命堅之言多殊常。向日命堅自鞫廳放出後，往見則命堅曰：‘汝是領兵將官，吾若有借用軍兵之時，則汝宜來到。’云。又謂之曰：‘汝今雖汰去，然豈無得職之時乎？須預備冠帶。’此必有深意。洛西令則自稱南人，仍曰：‘江上多有罪廢諸宰，而近因譏察方張，不能相會。’云。答：‘以譏察之說，必是虛言，無乃如鄭錦出來騷屑之言乎？’洛西令曰：‘鄭錦之說，何謂虛傳？鄭錦兵已見形於許沙矣。’答：‘以鄭錦雖出來，我國兵器精銳，何難勦滅？’洛西令曰：‘若以輕船數十，直到江口，則居民一時潰散，城中盡爲奔竄，國事豈不殆哉？’其後又來見噴舌長歎，發不道之言曰：‘主上昏濁，處事不能明白。漢平守之婢，誤以逆柁之婢，屬入內司。且吳始恒事，上若明察，則必知其曖昧，而若疑被謫之人，不無是事，則將必冤死。’云。又曰：‘鄭錦若以五十餘隻船，載精兵，直到京江，下令曰：『吾當不害人民，汝等不散。』仍發倉分給，則人皆壺醬迎之，鼓噪放火。仍爲作變，則雖有大臣·大將，奢竄之不暇，誰敢措手足乎？’云。此言皆卽書納于御營大將，故不爲竝載於上變書中。”云。翊戴招曰：“丁巳年間，命堅水原府使時，爲軍官矣。命堅以盧繼信獄事就獄，脫出後，往見則命堅言曰：‘汝以領兵將官，不須頻來。某時將有緊急招來之事，其時與所領軍兵，趁卽進來。’云，辭以歲前覲父，往忠州云，則命堅令勿爲下鄉。又出銀頂子給之，故今方受置家中。其後受罪汰去，歸家病臥，命堅昏後來招於門外問曰：‘汝處有紅團領耶？官爵得失無常，若不意得官，則團領猝難辦，何不措置耶？’仍令後日來訪云。”命堅招曰：“頃者脫獄還家，則翊戴及前偏裨李天祐來坐，故言之：‘以今後絕不欲見人，如汝武士則尤不欲見，須退去，不招則勿來。’更來之說，千萬無據。爲水原時所有戰笠頂子，遞來後，笠子則軍官尹承渭持去，頂子則翊戴似爲持去。年久未能詳記，而憑藉做出，實爲凶慘。如有領兵請來之意，歲前留京之約，則當留洛中，與之謀議，寧有歸蟄鄉庄之理乎？翊戴受杖之後，轉轉送言，願得一番臨問，故言其猥濫，一不送人問病。既不往渠家，則團領有無問答之說，萬萬不似。”云。鞫廳啓請命堅與翊戴面質，互相辨詰，終不歸一。又拿問承渭·天祐，招辭與命堅言無異，卽爲放送。時，秀胤已於璽獄時就囚，以翊戴言更推，則秀胤招曰：“鄭錦事，不過



塗聽道說，而料度計策，亦以即今人心言之而已。吳始恒則聞受刑死中路，言其爲人所誣爲可憐，而漢平守奴婢事，只以漢平家所言傳之。”云。鞫廳以不敢全諱，請刑推，上教曰：“渠名添瑿派，殊異外朝，而締結士夫，肆爲怨上不道之言，與煥問答之說，亦不敢全諱，而終不吐實，尤極凶詐。”命各別嚴訊。秀胤刑推九次，壓膝一次，物故。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10월 27일(경자) 4번째기사>

## 정치/사법

### 부교리 이이명이 이괄의 난 때 수원방어사였던 이흥립을 거론하여 훈적에 대해 말하다

부교리(副校理) 이이명(李頤命)이 민정중(閔鼎重)의 차자(筭子)로 인하여 상소하기를, “법(法)을 준수(遵守)하려는 의논은 항상 대각(臺閣)에 있으며, 사정을 하소연하는 말은 매일 묘당(廟堂)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이 대신의 배척을 당하여서는 진실로 감히 스스로 해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어찌 잠자코만 있겠습니까? 적신(賊臣) 이흥립(李興立)은 뒤에 이경립(李景立)으로 이름을 갈았습니다. 그는 폐조(廢朝) 때에 군사를 거느리던 신하로서 인조 반정(仁祖反正) 때에 공(功)이 있었던 자입니다. 갑자년의 난리에 수원 방어사(水原防禦使)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임진(臨津)을 차단하는데 군사가 교전(交戰)도 하기 전에 다 무너지고 흩어지므로 이흥립이 편지를 역적(逆賊) 이괄(李适)에게 보내서 그의 군사를 청하여 들였습니다. 그때의 대관(臺官) 및 대신(大臣)과 중신(重臣)들이 그의 죄를 극론(極論)하여서 반적(叛賊)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자결하자 그를 훈적(勳籍)에서 삭제(削除)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국조(國朝)에서는 본래 훈신(勳臣)을 매우 후(厚)하게 대우하여, 대역죄(大逆罪)가 아니면 훈적에서 삭제한 적이 없으므로 장신(張伸)과 김경징(金慶徵) 같은 이도 그 죄가 죽음에 이르렀지마는 이름은 오히려 훈적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훈적에서 삭제하는 법이 이 역적에게만 행해졌던 것은 특히 계해년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연좌(緣坐)와 적몰(籍沒)의 법을 거행하지 않았던 것뿐이었으나, 지금 세상 사람의 이목(耳目)이 이미 멀어진 후에도 그때 정형(正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자손(子孫)된 자가 의기 양양하게 감히 조정의 반열(班列)에 출입(出入)하게 되었는데도 뒤따라 이를 당연(當然)하다고 일러야 하겠습니까?” (…)

○副校理李頤命，因閔鼎重筭上疏曰：執法之論，常在於臺閣，原情之言，每出於廊廟。臣於大臣之斥，固不敢自明，而亦安得默然？賊臣興立，後變名景立。以廢朝將兵之臣，有功於仁廟反正時者也。甲子之亂，以水原防禦使，領軍遮截臨津，兵未交鋒，盡令潰散，呈書賊适，請入其軍。其時臺官及大臣重臣，極論其罪，至謂叛賊。及其自斃，命削其勳。國朝待勳臣甚厚，非大逆，未嘗削勳，如張紳·金慶徵，罪至於死，猶在勳籍。削勳之典，獨行於此賊，特以癸亥之功，不舉緣坐籍沒之典耳，到今耳目既遠之後，以未及正刑之故，爲其子孫者，乃敢揚揚出入朝班，而又從而謂之當然乎？(…)

<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8월 3일(신묘)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맹시정 등이 수원부에 고발한 것에 따라 경기감사 신완이 박업귀의 흉역을 밀게하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신완(申玩)이 박업귀(朴業貴)의 흉역(凶逆)한 일을 밀게(密啓)하였는데, 임금이 명하여 대신(大臣)과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을 부르고,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보내어 박업귀와 원인(援引)한 사람 맹시정(孟時楨)·맹수성(孟壽星)·맹수인(孟壽仁)·박해(朴諧)·박창시(朴昌始)·박형시(朴亨始) 등을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추문(推問)하여, 박업귀의 흉역(凶逆)한 실상을 캐어내 형률(刑律)에 의하여 처참(處斬)하였다. 박업귀는 사노(寺奴)로서 풍수(風水)를 조금 알았다. 일찍이 상법(相法)을 아는 자를 만나서 그의 가슴 앞에 있는 두 개의 조그만 혹(疣)과 입 안의 검은 보조개와 왼쪽 팔에 빨간 사마귀가 있다 하여, 이상한 용모를 가졌다고 말하니, 박업귀는 이것을 자부(自負)하여 몰래 불륜(不軌)을 생각하고 맹시정 등과 6일간 같이 자며 위협(威脅)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상한 용모를 가졌으니 큰 일을 도모할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도목(都目)에 써내면서 각각 착명(著名)하게 하고는 횡성(橫城) 골짜기로 들어가 서로 아는 사람과 약속하여 늦겨울이나 초봄 사이에 군사를 일으켜 서울을 침범하기로 하였는데 맹시정 등이 수원부(水原府)에 고발하니, 부사(府使)가 전하여 알려져 도신(道臣)이 비밀히 장계(狀啓)했던 것이다. 박업귀는 자복(自服)하여 복주(伏誅)되었고 맹시정 등 6명은 모두 석방되었다.

○辛亥/京畿觀察使申琬, 以朴業貴凶逆事密啓. 上命招大臣及禁府堂上, 發遣都事, 拿業貴及援引人孟時植·孟壽星·孟壽仁·朴諧·朴昌始·朴亨始等來, 設鞫推問, 得業貴凶逆狀, 依律處斬. 業貴, 寺奴也. 粗解風水, 嘗遇解相法者, 以其胸前二小疣及口中黑靨·左臂赤痣, 謂有異表, 業貴以此自負, 陰懷不軌, 與孟時植等, 六日同宿, 威脅曰: “吾有異相, 可圖大事, 書出都目, 各令着名, 往入橫城峽中, 約與相知人, 冬末春初, 舉兵犯京.” 時植等, 告于水原府, 府使轉聞, 道臣密啓, 業貴自服伏法, 時植等六人竝放.

<속중실록 19권, 숙종 14년 10월 12일(신해) 1번째기사>

#### 정치/사법

홍치상의 공사에서 김석연이 수원부사로 있을 때 송변하는 상소를 승정원에 올렸다고 하다 처음 홍치상이 공사(供辭)에 말하기를, “무진년 2월 동평군(東平君)이 짐새[鳩鳥]를 사가지고 왔다는 말을 김석연(金錫衍)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였다. 그때 김석연이 바야흐로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있었는데, 송변(訟辯)하는 상소를 올리기 위해 승정원(承政院)에 왔으나, 승정원에서 물리치면서 말하기를, “군현(郡縣)의 관원이 감히 사사(私事) 때문에 상소할 수 없는 것은 예(例)이다.” 하였다. 김석연이 드디어 격쟁(擊錚)하여 보고되자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불러서 하문(下問)하였다. 김석연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무진년 봄 홍치상이 숙명 공주(淑明公主)의 온천행(溫泉行)을 전송하고 찾아왔다고 말하기를, ‘근일 성상께서 공주(公主)들의 집을 대하는 것이 전일과는 아주 다른데 그대의 집은 어떠한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철따라 사급(賜給)하는 것과 문안하고 사적으로 뵈는 것에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홍치상이 말하기를, ‘동평군(東平君)이 자못 방자한 조짐이 있어 내가 장희재(張希載)와 교결(交結)하여 그를 배척할 계책을 세우고자 하나 나의 말은 무계가 없다. 어장(御將)이 장희재에게 후대하는 빛을 보이면 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다.’ 고 하였는데, 신이 그말의 은밀함을 괴이하게 여겨 드디어 답하기를, ‘그 사람에게 현저한 형적(形跡)이 없는데 갑자기 의심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어장의 의견도 반드시 나와 같을 것이니, 이런 말을 전할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홍치상이 뻔뻔스런 얼굴을 하고 일어나 가버렸으므로 신이 마음속으로 적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즉시 이 이야기를 동평위(東平尉) 정계륜(鄭載崙)·해창위(海昌尉) 오대주(吳泰周)에게 했더니, 두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진실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다.’ 고 하였습니다. 신은 이로부터 홍치상의 용심(用心)이 헤아림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가서 사례(謝禮)하지 않았으며, 홍치상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初, 洪致祥供辭有曰: “戊辰二月, 聞東平君買鳩之說於金錫衍.” 時, 錫衍方任水原府使,

爲訟辨上疏，到政院，政院却之曰：“郡縣之官，不敢以私事上疏，是例也。” 錫衍遂擊錚以聞。上命政院召問。錫衍對曰：“戊辰春，洪致祥稱以送淑明公主溫泉之行而過訪之，仍言近日，上待諸公主家，大異於前日，君家則何如？” 臣曰：“時節賜與問安私覲，少無所異。” 致祥曰：“東平君頗有縱恣之漸，吾欲結歡張希載，以爲疎斥之計，而但吾言輕耳。御將於希載，示厚待之色，則可以取重也。” 臣怪其言之陰秘，遂答之曰：“人無顯著之跡，何可遽疑之乎？且御將之意，必與余相同，此言不必傳之耳。” 致祥靦然起去。臣心竊駭之，卽以此言，言于東平尉鄭載崙·海昌尉吳泰周，則兩人曰：“此人誠不可近也。” 臣自此知致祥用心叵測。仍不往謝，而致祥亦不復至矣。(…)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윤3월 12일(기유) 4번째기사>

### 정치/사법

#### 호조참판 이의징의 건의에 따라 수원의 독성에 봉화대를 설치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  
호조 참판(戶曹參判) 이의징(李義徵)이 말하기를, “봉화(烽火)를 삼가고 척후(斥候)를 멀게 하는 것은 변사(邊事)에 대비하는 장책(長策)인데, 수원(水原)은 경기의 중진(重鎭)인데도 봉수(烽燧)가 허술함을 면하지 못합니다. 양성(陽城)의 괴대 봉수(槐台烽燧)는 수원의 천주 봉수(天柱烽燧)와 서로 응하고 천주 봉수는 남양(南陽)의 염불 봉수(念佛烽燧)와 서로 응하는데, 천주 봉수는 수원에서 거의 50리나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겹겹이 봉우리가 있어서 봉화를 올려 경급(警急)을 알리는 일이 있더라도 볼 수 없고, 반드시 봉군(烽軍)이 와서 알리기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그 급한 일이 있는 것을 아니, 어찌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부(本府)에서 남으로 5리 떨어진 안에 독성 산성(禿城山城)이 있고 그 봉우리가 가장 높는데, 연대(煙臺)를 설치하면 남으로 괴대 봉수에 응하고 서쪽으로 천주 봉수에 맞추어 삼남(三南)에서 경급을 알리는 일이 일각(一刻)에 문득 이르므로, 50리 떨어진 곳에서 천주 봉수의 봉군이 와서 알리는 것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경급을 아는 것보다 훨씬 낫기만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독성에 연대를 더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

○引見大臣備局諸宰. (…)  
戶曹參判李義徵曰: “謹烽火遠斥候, 乃備邊之長策也. 水原畿輔重鎭, 而烽燧未免疎漏. 陽城槐台之烽, 相應於水原天柱之烽. 天柱之烽, 相應於南陽·念佛之烽. 而天柱之距水原, 幾五十里. 其間有重峰層嶂, 設有擧烽報警之事, 無由見之. 必待烽軍來告然後, 始知其有緩急, 豈非可憂之甚乎? 本府南距五里之內, 有禿城山城, 而其峰最高. 若置烟臺, 則南應槐台, 西照天柱, 三南報警之事, 一刻便至, 與其坐待五十里天柱烽軍之來告然後, 始知警急, 不啻相懸矣.” 上命禿城加設烟臺. (…)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 4월 23일(갑신)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접반사 이만원을 체직하여 수원 부사를 유임하도록 하고, 박경후로 대신케 하다

대신들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했다. 접반사(接伴使) 이만원(李萬元)을 체직하여 그전의 수원 부사(水原府使)를 영임(仍任)하도록 하고, 박경후(朴慶後)로 대신했다. 당초에 다섯 칙사(勅使)를 접대하는 소임을 벼슬이 높은 사람들은 모두 싫어하여 기피하기 때문에 변통하여 이만원을 차출(差出)했던 것인데, 이만원이 또한 체직을 도모한 것이다. 박경후는 황해 감사(黃海監司)로서 바야흐로 외방(外方)에 있었는데, 대신이 임금에게 아뢰어 역지로 보낸 것이다. 이때에 조정의 풍습이 볼 만하여, 변방의 원이나 변장(邊將)으

로서 모면하려고 기피하는 사람은 충군(充軍)하는 율(律)로 정죄(定罪)했었는데, 때로는 소란스러움 때문에 변방의 소임을 싫어하여 기피하는 사람이 전후에 잇따르게 되므로, 대간(臺諫)이 법으로 정하기를 계청(啓請)하였다. 또한 무산 현감(茂山縣監) 강필우(姜必遇)가 병을 핑계하고 부임하지 않으므로, 유사(攸司)로 하여금 별다른 죄를 과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癸(丑) [酉] /引見大臣備局諸臣. 遞接伴使李萬元, 仍前任水原府使, 以朴慶後代之. 初五勅償接之任, 位高者皆厭避, 故以萬元變通差出. 萬元又圖遞. 慶後以黃海監司, 方在外, 大臣白上強遣之. 是時朝廷風習, 可見邊倖邊將之謀避者, 定以充軍之律. 時因騷屑, 厭避邊任者, 前後相續. 故臺諫啓請定式, 又以茂山縣監姜必遇稱病不赴, 請令攸司別樣科罪. 上從之.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1월 23일(계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좌의정 목내선이 진위현에서 발생한 도둑을 잡지 못한 수원 토포사의 처벌을 청하다

대신들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들을 인견(引見)했다. 좌의정 목내선(睦來善)이 아뢰기를, “전(前) 영장(營將) 손여의(孫汝義)는 경주(慶州) 사람인데 일찍이 큰 도둑들을 많이 잡아서 상질(賞秩)을 받기까지 했었습니다. 바야흐로 어떤 일 때문에 갇혀 있는 중인데, 듣건대 그 적당(賊黨)들이 독한 마음을 먹고 손여의의 서모(庶母)와 처자(妻子)를 위협하고 해쳤다고 전파되는 말이 낭자한데도, 경주 부윤(慶州府尹) 및 영장(營將)과 병사(兵使)가 즉시 치보(馳報)하지 않았고, 오래 되어서야 첩보(牒報)하면서 평범하게 인명(人命)을 상해(傷害)한 것만 말하여 보고한 것이 분명하지 않았으니, 직책을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여타의 사람들을 가라앉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경기(京畿)의 진위현(振威縣)에도 도둑떼가 횡행하고 있으니, 본현(本縣)의 현령(縣令) 및 수원 토포사(水原討捕使) 또한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서 놀랐다. 드디어 경상 좌병사(慶尙左兵使) 유덕삼(柳德三)·경주 영장(慶州營將) 윤우진(尹遇進)·경주 부윤(慶州府尹) 허경(許穎)을 모두 우선 엄중하게 추고(推考)하되, 마침내 변란을 일으킨 도둑들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잡아다가 추문(推問)하여 정죄(定罪)하고, 수원 토포사(水原討捕使) 조위수(趙渭叟)와 진위 현령(振威縣令) 허승(許埈)의 처벌도 똑같이 하도록 명하였다.

○戊戌/引見大臣備局諸宰. 左議政睦來善奏曰: “前營將孫汝義, 以慶州人, 嘗多捕劇賊, 至蒙賞秩, 方以事在繫. 而聞其賊黨, 含毒怯害汝義庶母妻子, 傳說狼藉, 而慶州府尹營將及兵使, 不卽馳報, 久乃有牒, 而泛言人命致傷, 所報不分明, 其尸職可知. 此而不徵, 無以戢他. 且京畿振威縣, 賊徒恣行, 本縣令及水原討捕使, 亦不可無責.” 上聞而駭之. 遂命慶尙左兵使柳德三, 慶州營將尹遇進, 府尹許穎, 竝姑從重推考, 而終不能譏捕作變之賊, 則拿問定罪. 水原討捕使趙渭叟, 振威縣令許埈, 罰亦如之.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10월 23일(무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김일진이 상소하여 수원에서 설행된 과거에 대해 비판하다

상소한 사람 김일진(金日晉)을 무산부(茂山府)에 귀양보냈다. 김일진은 고부(古阜) 사람인데, 그의 상소에 이르기를, “(...) 또 무릇 과거(科擧)를 보일 적에는 대소(大小)의 문무과(文武科)를 막론하고 내는 글제와 인재 시험을 반드시 십분 신중하게 하여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정직한 도리를 다해서 한 다음에야 사람들의 마음이 복종하게 되고 국가의 체통이 합당해지는 법입니다. 일찍이 고로(故老)들의 말을 들어보건대, 글제 때문에 죄를 입은 사람이 전후에 하나만이 아니었다고 하니, 신중히 해야 하고 소홀하게 해서는 안됨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수백 대(代)의 사적(事迹)과 수천만 권의 서적 속에 글제로 할 만한 것이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만, 올해 일소(一所)의 감시(監試)에서 시제(詩題)로 낸 것에 대해서는 나라 사람들의 말이 자자했으니, 마땅히 파방(罷榜)하자고 해야 할 것인데, 삼공(三公)들도 말을 하지 않고 양사(兩司)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까지도 분하게 여김을 그만두지 않고 있으니, 대중의 공론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미 지난 일이라 하여 놓아 두지 마시고 반드시 파방(罷榜)하신 뒤에라야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水原)에서 과거를 보이게 된 본뜻에 있어서는 대개 군사들의 심정을 위로하고 인재(人才)를 수습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명(使命)을 받은 신하로서는 친히 성상의 분부를 받았으니, 마땅히 공정한 도리를 다하도록 했어야 할 것인데, 일을 끝내기도 전에 사람들의 말이 떠들썩하여 원근(遠近)에 퍼졌습니다. 아! 일을 주관하는 신하가 한 번 삼가지 앎음으로써 국가의 체통을 손상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힘이 이에 이르게 되었으니, 어찌 크게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 하였다.

○癸酉/配投疏人金日晋于茂山府. 日晋古阜人. 其疏有曰: (...) 且凡設科之學, 勿論大小文武, 其所出題試才, 必須十分慎重, 以盡至公至正之道然後, 人心可服, 國體得宜矣. 曾聞故老之言, 以題被罪者, 前後非一, 則可見其可慎而不可忽也. 累百代事迹, 千萬卷子書, 可題者何限? 而今年一所監試詩題之出也. 國言藉藉, 謂宜罷榜而三公不言, 兩司緘口, 人心之憤惋, 至今未已, 公共之論, 其可遏乎? 伏願殿下, 勿以已過而置之. 必爲罷榜而後已, 則人心可定矣. 至於水原設科之意, 蓋出於慰悅軍情, 收拾人才者也. 奉使之臣, 親承聖教, 則所當竭盡公正之道, 而竣事之前, 人言喧騰, 流播遠邇. 噫! 主事之臣, 一有不謹, 其傷損國體, 乖亂人心, 至於如此, 則豈不大可寒心者乎? (...)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11월 28일(계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강화유수 민진후의 복계에 따라 강화에서 바치는 사유환을 수원과 교동에 나누어 배정하다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 강화 유수(江華留守) 민진후(閔鎭厚)가 본 고을에서 바치는 사유환(蛇油丸)을 다른 섬과 서로 돌아가며 바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임금 금이 내국(內局)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는데, 뒤에 복계(覆啓)하여 수원(水原)과 교동(喬桐)에 나누어 배정하였다. (...)

○引見大臣·備局諸臣. (...) 江華留守閔鎭厚, 請本府所納蛇油丸, 與他島輪回相替, 上命內局稟處. 後覆啓, 分定于水原·喬桐. (...)

<숙종실록 34권, 숙종 26년 6월 5일(병인) 2번째기사>

#### 정치/사법

국청 죄인 안세정과 민언량이 대질하는 가운데 수원을 언급하다

국청 죄인(鞫廳罪人) 안세정(安世禎)과 민언량(閔彦良)을 한곳에서 면질(面質)시켰는데, (...) 민언량이 안세정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전후에 일찍이 이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 민장도가 이미 죽었으니, 지금 너와 나와 장희재만 살아 있다. 나는 그해 8월 하순에

타작(打作)하는 일 때문에 수원(水原)의 사창(社倉)으로 나갔다가, 그 길로 아산(牙山)과 신창(新昌) 등지로 갔었으며, 이어서 장인의 임소(任所)에 머무르다가 10월 초에 비로소 돌아왔다.” 하였다.

안세징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 그때 있었지 아니하였더냐? 이야기할 때가 어찌 무진년 가을 경이 아니었던가?”

하니, 민언량이 안세징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때에 자리에 참여하여 앉았던 사람은 오직 장희재만 있을 뿐이다. 장희재가 만약 온다면, 그 허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안세징이 민언량을 향하여 말하기를, “강릉 부사(江陵府使) 여익제(呂翼齊)가 그날 너의 아버지에게 하직(下直)하러 왔었다. 네가 어찌 초록색 옷을 입고 나오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민언량이 말하기를, “너가 혹시 우리 아버지와 내 형과 더불어 서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나는 수원을 거쳐 신창에 갔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있지 않았다.” 하였다. (…)

○鞫廳罪人安世禎與閔彥良一處面質, (…)  
彦良向世禎曰: “吾前後不曾聞如此說矣. 章道已死, 卽今汝及吾·希載生存矣. 吾於其年八月念後, 以打作事, 出去水原社倉, 仍往牙山·新昌等地, 仍留妻父任所, 十月初始還矣.”  
世禎曰: “汝豈於其時不在耶? 說話之時, 豈不在戊辰秋間乎?”  
彦良向世禎曰: “其時參坐人, 獨希載有之. 希載若來, 虛實可知矣.”  
世禎向彦良曰: “江陵府使呂翼齊, 其日爲下直汝父而來. 汝豈不着草綠衣起出乎?”  
彦良曰: “汝或與吾父兄相語耶? 吾則由水原往新昌, 故其時不在矣.” (…)

<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10월 26일(기묘)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지평 조태억이 김덕기가 수원에 있을 때의 부정축재에 대해 탄핵하다

지평 조태억이 전계(前啓)를 거듭하였는데, 그가 낸 새로운 계사는 첨개(添改)한 것이 많았다. (…)  
김덕기(金德基)·한영휘(韓永徽)에 대해서는 아뢰기를, “김덕기는 동래(東萊)에 있을 때 말뚝으로 덩어리를 만들어 일용(日用)의 온돌 덮히는 땀감을 충당하였고, 땀감·곡초(穀草) 등 응당 들일 물건을 돈으로 대납하게 하였으며, 염주(炎州)의 진기한 물건을 날마다 무역해 취했습니다. 그가 수원(水原)에 있을 때에는 제언(堤堰)의 수초(水草)를 백성들에게 배어두게 하고, 그것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축냈다고 말하면서 그 값을 배로 받았으며, 억지로 백성들의 말을 내어 그의 집으로 실어 갔으니, 금천(衿川) 소하리(所下里)의 새로 지은 큰 집은 모두 그가 수원에 있을 때 마련한 것입니다. (…)” 하였다.(…)

○丙戌/持平趙泰億申前啓, (…)  
金德基·韓永徽之啓則曰: “德基在東萊, 以馬屎作甃, 以充日用煖埃之資, 柴·穀草應捧之物, 以錢代捧, 炎洲珍貨, 逐日貿取. 其在水原, 堤堰水草, 使民刈置, 俟其乾枯, 謂有欠縮, 倍徵其價, 勒出民馬, 載去其家. 衿川所下里大庄新舍, 皆其水原時所辦. (…)”

<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6월 18일(병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지평 한배주가 동래 군졸과 성첩의 방비를 광주와 수원의 사례대로 할 것을 건의하다

지평 한배주(韓配周)가 상소하여 일찍이 남쪽 고을을 맡았을 때에 본 민간 병폐의 애절함과 관방(關防)이 허술한 상황을 진달하고, 각도(各道)의 영장(營將)을 혁파하여 선량한 민중을 억울하게 해치고 관름(官廩)을 낭비하는 폐해를 제거하고서, 각기 그 고을의 수재(守宰)가 토포(討捕)를 겸임하게 하는 것을 김해(金海)·온양(溫陽)의 사례대로 하고, 동래(東萊)의

군졸(軍卒)이 각 아문(衙門)의 제색(諸色)에 소속된 사람들을 모두 본부(本府)로 돌려 보내 영솔(領率)하게 하여 성첩(城堞)의 위급을 방비하게 하는 것을 한결같이 광주(廣州)·수원(水原)의 사례대로 하고, 경주(慶州)·안동(安東)이 겸하여 방어하였던 것을 단독의 진(鎭)이 되게 하고, 밀양(密陽)이 또한 방어를 겸하고 있는 것을 모두 비국으로 하여금 의천(議薦)하게 하여 동래·의주(義州)의 사례대로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분부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持平韓配周上疏，陳曾任南邑時所見民瘼愍切，關防疎虞狀，請革罷各道營將，以除枉害良民，浪費官廩之弊；令各其守宰，兼領討捕，如金海·溫陽之例；東萊軍卒之見屬各衙門諸色者，並令歸領本府，俾爲守堞緩急之備，一如廣州·水原之例；慶州·安東，兼以防禦，作爲獨鎭；密陽且兼防禦，皆令備局議薦，如東萊·義州之例，上下廟堂稟處。

<숙종실록 47권, 숙종 35년 3월 18일(기축)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삼신의 출향을 주장한 수원 부사 홍우전의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하라고 명하다 하교하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홍우전(洪禹傳)은 맨 먼저 삼신(三臣)의 출향(黜享)을 논하였으니, 마음 쓴 것이 놀랍다. 파직만 하고 말 수는 없으니,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라.” 하였다.

○教曰：“水原府使洪禹傳，首論三臣黜享，用意駭然。不可罷職而止，削奪官爵，門外黜送。”

<영조실록 12권, 영조 3년 7월 1일(을묘) 13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 부사 송진명이 부임하자 용인 유생의 고변을 듣고 조치를 취하다

이보다 앞서 12일(임술)에 수원 부사(水原府使) 송진명(宋眞明)이 새로 부임하였는데, 용인의 유생(儒生) 정관빈(鄭觀賓)이 급변(急變)을 고하기를, “출신(出身) 안익태(安益泰)가 동네 사람 안박(安鑄)의 말을 전해 이르기를, ‘토적(土賊)이 바야흐로 일어나는데 경외(京外)가 서로 응하고 남북이 합세하여 장차 수원(水原)을 먼저 습격하여 주수(主倅)를 해치고는 그 고을을 점거해 난을 일으키려 한다.’” 하였습시다.”

하니, 송진명이 정관빈을 구속하고 군교(軍校)를 보내 안익태를 붙잡게 하고는 먼저 군관(軍官) 허수(許樹)를 서울로 보내 그의 종제(從弟) 호조 참의(戶曹參議) 송인명(宋寅明)에게 글로 보고하였다. (…)

○先是，壬戌，水原府使宋寅明，新赴任，龍仁儒生鄭觀賓告急變言：“出身安益泰傳里人安鑄言，以爲：‘土賊方起，而京外相應，南北合勢，將先襲水原，害主倅，據邑作亂。’云。”寅明拘觀賓，遣軍校，捕益泰，先送軍官許樹于京，書報其從弟戶曹參議宋寅明。(…)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15일(을축)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부사 송진명이 고변 관련자를 서울로 보내 친국을 진행하다

이때 급서(急書)가 여러 번 올라와 인심이 흉흉하여 두려워하고, 여러 적을 미처 잡지 못하여 조정에서 단서(端緒)를 예측하지 못해 여러 차례 설국(設鞫)하여 먼저 상변한 자를 문초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택하지 않았다. 수원 부사 송진명(宋眞明)이 또 정관빈(鄭觀賓) 및 체포한 안익태(安益泰)를 가도사에게 붙여 서울로 보냈는데, 임금이 역시 곧 국청을

**설치하지 않았다.** 교리(校理) 오광운(吳光運)·수찬(修撰) 홍경보(洪景輔)가 정자(正字) 이종성(李宗城)에게 말하기를, “역적이 일어나는 것은 본래 정한 곳이 없는 것이며, 반드시 모두 상한(常漢)에게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지금 조정의 처분이 이처럼 너그럽게 용납하니 어찌 주액(肘腋)의 변이 없을 것을 알겠는가?”

하였다. 이광좌·조태억이 그 말을 듣고는 드디어 오광운·홍경보·이종성 등과 함께 청대(請對)하여 초혼(初昏)에 회정당에서 입시해 빨리 정국(庭鞠)을 설치하고 궁성(宮城)을 호위하기를 청하고, 또 오광운 등이 수작한 말을 고하니, 임금이 비로소 친국(親鞠)을 허락하고 곧 삼군문(三軍門)에 명하여 호위하게 하였다.

○時，急書屢上，人情洶懼，而諸賊未及就捕，朝廷莫測端緒，屢請設鞠，先問上變者，上不許。**水原府使**朱貞明，又以鄭觀賓及所捕安益泰付假都事送京，上亦不即設鞠。校理吳光運·修撰洪景輔謂正字李宗城曰：“逆賊之起，本無方所，未必盡出常漢。今朝廷處分，雍容暇豫如此，安知無肘腋之變乎？”李光佐·趙泰億聞其言，遂與光運·景輔·宗城等，請對，初昏入侍于熙政堂，請亟設庭鞠，扈衛宮城，且告光運等酬酢之語，上始許親鞠，仍命三軍門扈衛。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15일(을축) 5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의 7천 군사가 있으니 순토사 김중기가 머뭇거리는 것에 대해 추고하다

(…) 교리(校理) 조현명(趙顯命)이 청하기를, “종사관(從事官)으로서 순토사(巡討使) 김중기(金重器)를 따라 죽음으로써 공을 세우게 해 주소서.” 하니, 허락하고 이어 연로(沿路)를 안무(安撫)하라고 명하였다.

김중기가 입대(入對)하여 말하기를, “신이 평시에 군사를 거느린 일이 없었으니, 단기(單騎)로 내려가는 것은 신중한 도리가 아닙니다. 청컨대 장단(長湍)의 군사가 올라오면 거느리고 가겠습니다.” 하니, 오명항이 말하기를, “곽자의(郭子儀)는 13기(騎)로 토번(吐蕃)의 군영에 들어갔고, 주아부(周亞夫)는 행군하면서 군사를 모아 낙양(洛陽)에 이르러 오(吳)·초(楚)의 간담(肝膽)을 서늘하게 했으니, 김중기의 말은 잘못입니다.”

하고, 이광좌는 말하기를, “이런 위난(危難)한 때를 당하여 분발해 몸을 돌아보지 않고 분개하여 즉시 가는 것이 곧 장수의 일입니다. 총융청(摠戎廳)의 표하군(標下軍)이 본래 적지 않고, **수원(水原)으로 출진(出陳)하면 또 7천 명의 군사와 말이 있는데 어찌 군사가 없다고 사피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른바 의논을 정할 때 노(虜)는 이미 강을 건넜다는 것과 같다. 박찬신(朴贊新)을 어제에 내보내지 못하였으니, 오늘날의 군신(君臣)은 참으로 느슨하다고 이를 만하다. 일이 급한데 어느 겨를에 기읍(畿邑)의 군사를 기다리겠는가? 순토사는 오늘 과천(果川)으로 나가 군사를 합쳐 전진해야 옳다.”

하니, 김중기가 또 말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 정자(正字) 이종성(李宗城)이 말하기를, “김중기가 친히 면대하여 명을 받고도 아직껏 머뭇거리고 또 말이 없다고 번거로이 품(稟)하고 있으니, 청컨대 중히 책망하여 경칙(警飭)하소서.” 하니, 임금이 추고(推考)하라 명하였다. (…)

○(…) 校理趙顯命請以從事官，從巡討使金重器，以死自效，許之。仍命安撫沿路。重器入對言：“臣平時無領軍之事，單騎下往，非慎重之道。請待長湍兵上來領去。”吳命恒曰：“郭子儀以十三騎，入吐蕃軍，周亞夫行收兵，至洛陽·吳·楚破膽，重器言非矣。”光佐曰：“當此危難之際，奮不顧身，慨然即行，此將帥事。摠戎廳標下軍，本自不少，出陣**水原**，則亦有七千



兵馬，何可以無軍爲辭乎？” 上曰：“眞所謂議論定時虜已渡江．朴纘新，昨亦不能出送，今日君臣，可謂泄泄．事急奚暇，待畿邑軍乎？巡討使今日出果川，合兵前進可也．重器又辭以無馬．正字李宗城曰：“重器親承面命，當今遲留，且以無馬煩稟，請重責警飭．” 上命推考．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17일(정묘)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정관빈의 공초에 자신이 수원부사에게 가서 고한 것뿐이라고 하다

정관빈(鄭觀賓)을 문초하니, 정관빈이 공술하기를, “이달 12일에 신이 집에 있으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동네 사는 출신(出身) 안익태(安益泰)가 와서 말하기를, ‘이웃에 사는 안박(安鑄)이 저를 불러 토적(土賊)의 기미가 있음을 전해 주고, 또 어떤 사람이 장차 저를 붙잡아 갈 것이라고 하였다.’ 고 하기에 신이 안익태로 하여금 고변(告變)하게 했더니, 안익태가 말하기를, ‘화가 금명간에 있어 미처 상경하여 고변하지 못하겠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신의 생각에 수원이 가장 가깝다고 여겼기 때문에 수원 부사에게 가서 고했더니, 부사가 즉시 토포장(討捕將)으로 하여금 안익태와 신을 붙잡아 오게 해 취초(取招)하여 올려 보낸지라, 전에 공초한 것 이외에 달리 들은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問鄭觀賓，觀賓供：“今月十二日，臣在家讀書，里居出身安益泰來言：‘隣人安鑄招渠傳土賊幾微，且云有人，將捉渠而去。’ 臣令益泰告變，益泰曰：“禍在今明，未及上京告變，奈何？” 臣料水原最近，故往告于水原府使，府使即令討捕將，捉來益泰竝臣，取招上送，前招之外，無他所聞。”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17일(정묘) 5번째기사>

#### 정치/사법

##### 차이황의 공초내용으로 수원 오대에 살며 난이 일어나면 관병에 소속될 것이라고 하다

차이황(車以黃)이란 자가 또 군문(軍門)에 와 고변하니, 임금이 이광좌(李光佐)에게 명하여 문사랑(問事郎)과 함께 비국(備局)에서 국문하게 하였다. 차이황이 공술하기를, “신은 수원 오대(五臺)에 살며 장용(壯勇)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의 종 유골(有骨)은 용감하고 건장하며 각저(角抵)를 잘하는데, 11일 적의 무리가 덮쳐 잡고자 하므로, 신은 산으로 피했다가 그대로 서울로 들어오고, 유골 역시 피란하다가 12일에 적에게 붙잡혔습니다. 적이 말하기를, ‘후군(後軍)이 호남으로부터 많이 오고, 또 수로(水路)로 오는 자도 있으며, 양서(兩西)로부터 호인(胡人) 모양을 하고 오는 자도 있으니,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 하면서 적이 유골로 하여금 호군(犒軍)하는 데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유골은 적의 무리가 3인을 효수(梟首)하여 매다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놀라 도망하였으니, 만약 수원에서 군사를 모은다는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관병(官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車以黃者，又詣軍門告變，上命李光佐，同問事郎，問于備局．以黃供：“臣居水原五臺，以壯勇有聞．臣奴有骨勇健善角抵，十一日，賊黨欲揜捕，臣登山以避，仍以入京，有骨，亦避亂，十二日見捉於賊．賊言：‘後軍多從湖南來，又有從水路來者，從兩西作胡人樣而來者，萬無可慮。’ 賊使有骨，參犒軍．有骨見賊黨梟三人首懸之，心驚而逃．若聞水原聚軍，必在官兵中矣．”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17일(정묘) 7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부사 송진명이 정황을 보고한 데에 따른 대처 내용

수원 부사 송진명(宋眞明)이 치계(馳啓)하기를, “성환 찰방(成歡察訪) 강백(姜栢)이 임소(任所)에서 달려와 고하기를, ‘16일 밤 3경에 어떤 사람이 관문(關文) 한 장을 전해 주면서 모조리 역마(驛馬)로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적도가 돌입하여 역졸들이 모두 두려워 겁을 먹고 투항했기 때문에 단신으로 도망해 나왔는데, 소사교(素沙橋)에 흰 옷을 입은 자 수십 명이 모여 있다가 잡고서 보내 주지 않아 말을 둘러대어 빠져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시신(侍臣)에게 말하기를, “적보(賊報)가 이러한데도 순토사(巡討使)가 아직 진(鎭)에 이르지 못했으니, 아마도 이 노장(老將)이 일을 그르칠 염려가 있을 것 같다.” 하니, 오명항이 말하기를, “임금이 옥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합니다. 신이 스스로 가서 적을 토멸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장병(將兵)의 신하가 멀리 나가서는 안된다.’ 고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 판서는 강개(慷慨)하여 스스로 담당하니, 반드시 능히 헤낼 것이다. 명을 받았으니 즉시 나가도록 하라.” 하고, 이어 사로 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로 차출하고, 박찬신(朴纘新)을 중군(中軍)으로, 박문수(朴文秀)를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고, 김중기(金重器)는 순토사(巡討使)의 칭호를 감해 도순무의 절제(節制)를 받도록 했다.

○水原府使宋眞明馳啓言：成歡察訪姜栢，自任所馳到，告以十六日夜三更，有人傳付一張關文，令盡發驛馬。俄而賊徒突入，驛卒皆惶怯投屬，故單身逃出，素沙橋邊白衣者數十人，屯聚執不送，權辭脫來云。上謂侍臣曰：“賊報如此，而巡討使，尙未至鎭，老將恐有誤事之慮。” 吳命恒曰：“主辱臣死。臣請自往勦滅。” 群議以爲將兵之臣，不可遠出。上曰：“兵判慷慨，自當必能。聞命卽出。” 仍命差四路都巡撫使，朴纘新爲中軍，朴文秀爲從事官，金重器減巡討使號，聽都巡撫節制。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17일(정묘) 9번째기사>

### 정치/사법

김중기 대신 장봉익을 총융사로 삼아 수원으로 출진하게 하다

장봉익(張鵬翼)을 김중기(金重器) 대신 총융사로 삼아 수원(水原)으로 출진하게 하였다. 장봉익이 청하기를, “이덕재(李德載)를 기복(起復)시켜 종사관으로 삼으소서.” 하니, 윤희하였다. 승지 이병태(李秉泰)가 말하기를, “충청 감사(忠淸監司) 권첨(權詹)은 교귀(交龜)하기에 급하여 계책을 세운 바가 없고, 신(新) 감사 서명연(徐命淵)은 아산(牙山)에서 머뭇거리며 즉시 영(營)으로 달려가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홍양(洪陽) 공산(公山)으로 가서 성지(城池)와 기계(器械)가 장차 적의 소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그 죄를 분명하게 바로 잡으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권첨과 서명연은 나문(拿問)하고 이병태로 서명연을 대신하게 하라.”

하였다. 판부사 홍치중이 말하기를, “안무사(按撫使) 권업(權業)은 일찍이 방백(方伯)을 지내어 도내(道內)의 사정에 밝아서 진압하고 위무(慰撫)하는 재능이 이병태보다 낫습니다.” 하자, 다시 권업을 충청도 관찰사로 삼았다.

○以張鵬翼代金重器爲揔戎使，出鎭水原。鵬翼請起復李德載爲從事官，許之。承旨李秉泰言：“忠淸監司權詹急於交龜，無所猷爲，新監司徐命淵遲留牙山，不卽赴營，轉向洪陽 公山，城池·器械，將爲賊有。請明正其罪。” 上命拿問詹·命淵，以秉泰代命淵。判府事洪致中言，

安撫使權聶，曾經方伯，諳道內事情，鎮撫之才，勝於秉泰。改命以權聶爲忠清道觀察使。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22일(임신)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장봉익이 포박한 이배가 수원 해촌에 들어갔다고 하다

총융사(摠戎使) 장봉익(張鵬翼)이 도망한 적의 괴수 이배(李培)를 포박해 보냈다. 이배는 진위(振威)의 진에서 망명한 후로 변복(變服)하고 섬으로 들어가고자 수원(水原) 해촌(海村)에 들어갔다. 총융 천총(摠戎千摠) 오성재(吳盛載) 등이 기찰(譏察)하여 군사를 이끌고 해변으로 향하다가 길에서 이배를 만났는데, 평소 얼굴을 알고 있었으므로 드디어 묶인 것이다.

○摠戎使張鵬翼捕送亡命賊魁李培。培自振威陣亡命之後，變服欲入海島，至水原海村。摠戎千摠吳盛載等爲譏察，領兵向海邊，路遇培，素識面，遂見縛。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26일(병자)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이인좌의 공초 중에 권서봉이 수원에 산다는 내용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임어하여 친국(親鞫)하였다. 이인좌(李麟佐)를 형신(刑訊)하니, 이인좌가 공초하기를, “한세홍(韓世弘)·이유익(李有翼)·이하(李河)·남태적(南泰績)·남태징(南泰徵)·김중기(金重器)가 이 일을 하였고, 임서호(任瑞虎)·조관규(趙觀奎)·임서봉(任瑞鳳)·임서린(任緒麟)·조덕징(趙德徵)·이배(李培)·이만(李晩)·이의형(李義衡)은 이번에 양성(陽城)에 모여 곧바로 청주(淸州)로 달려갔는데, 그때 모인 자 정행민(鄭行旻)·원만주(元萬周)는 양성에 살고, 권서봉(權瑞鳳)은 수원에 살며, 조동규(趙東奎)는 서울 향교동(鄉校洞)에 살았습니다. 권서린(權瑞麟)·권서룡(權瑞龍)·목함경(睦涵敬)은 양성에 살고, 이지경(李之景)은 청주에 살며, 위종사관(僞從事官) 유급(柳伋)은 양성에 사는데 도목(都目)을 가지고 도망하였습니다.(…)

○上御仁政門，親鞫。刑麟佐，麟佐供：“韓世弘·李有翼·李河·南泰績·南泰徵·金重器欲爲此事，任瑞虎·趙觀奎·任瑞鳳·瑞麟·趙德徵·李培·李晩·李義衡，今番會于陽城，直走淸州，其時所會鄭行旻·元萬周居陽城，權瑞鳳居水原，趙東奎居京中鄉校洞。而權瑞麟·瑞龍·睦涵敬居陽城，李之景居淸州，僞從事官柳伋居陽城，持都目而走。(…)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26일(병자) 9번째기사>

### 정치/사법

#### 안익태 공초 여주보다 수원이 가까워 수원부에 고했다는 내용

정국(庭鞫)에서 다시 한순(韓洵)·윤천경(尹天擎)·심유현(沈維賢)·허간(許侃)을 추문(推問)하여 형벌을 한 차례 하니, 모두 공초(供招)가 전과 같았다. 다시 안익태(安益泰)를 추문하여 형벌을 한 차례 하니, 안익태가 공초하기를,

“신이 안박(安鑄)이 있는 곳에서 그 말을 듣고 정관빈(鄭觀賓)에게 말하였더니, 정관빈이 말하기를, ‘자세히 탐문(探問)하여 함께 고변(告變)하자.’ 고 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안박이 있는 곳에 가서 탐문하니, 안박이 말하기를, ‘장차 장용(張鏞)·장전(張鎭)·장성징(張聖澄)·허간·평병(平兵軍官) 안추(安樞)와 함께 반역(叛逆)을 꾀한다.’ 고 하였습니다. 손님이 온다는 것으로써 핑계로 삼아 집으로 돌아와 잠들려고 하는데, 안박이 또 와서

말하기를, ‘그대가 이미 이를 알았으니 어찌 다시 오지 않는가?’ 고 하기에, 신은 다음날 마땅히 다시 가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정관빈의 집에 가서 이를 말하니, 정관빈이 말하기를, ‘그대는 그 문자(文字)를 받아 가지고 오라.’ 고 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안박의 집에 갔더니, 안박이 말하기를, ‘이 계획을 한 지가 이미 다섯 해인데, 그대는 함께 가지 않을 수 없으니, 13일에 마땅히 양성(陽城)의 권서봉(權瑞鳳)의 집이나 혹은 가천(加川)의 최진사(崔進士) 집에 모여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신이 정관빈의 집에 이르러 이를 말하니, 정관빈이 말하기를, ‘조금 전에 안헌장(安獻章)도 또한 와서 말하였는데, 그대의 말과 같았으니, 나와 함께 여주(驪州)의 홍정승(洪政丞) 집으로 가서 이를 고하자.’ 고 하기에, 신은 대답하기를, ‘여주는 길이 멀으니, 수원부(水原府)에 고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하였습니다. 정관빈이 말하기를, ‘13일에 마땅히 함께 가야 한다.’ 고 하기에, 신이 집에 돌아가 가족(家屬)을 처치(處置)한 뒤에 나아갔더니, 정관빈이 먼저 가버렸으므로, 신은 미처 동행(同行)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상(情狀)을 알아 실지대로입니다.” 하였다.

○庭鞫，更推韓洵·尹天擎·沈維賢·許侃，刑一次，皆供如前。更推安益泰，刑一次，益泰供：“臣於安鑄處，問其言，言於鄭觀賓，觀賓言：‘詳探，同爲告變。’ 臣更往鑄處探之，鑄言：‘將與張鏞·張鏞·張聖澄·許侃·平兵軍官安樞謀逆。’ 云。托以客來還家，欲眠，鑄又來言：‘汝既知之，何不更來?’ 臣答以明日當往。厥明往觀賓家，言之，觀賓曰：‘汝受其文字而來。’ 臣更往鑄家，鑄曰：‘爲此謀已五年，汝不可不同去，十三日當會陽城 權瑞鳳家，或加川 崔進士家。’ 云。臣到觀賓家言之，觀賓曰：‘俄者安獻章，亦來言，如汝言，與我同往驪州 洪相家告之。’ 臣答曰：‘驪州遠，告于水原府爲可。’ 觀賓曰：‘十三日當同往。’ 臣歸家處置家屬後進往，則觀賓先行，臣不及同行。知情是實。”

<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1일(신사) 7번째기사>

### 정치/사법

**국청 죄인 이하택의 공초에 전 지평 이일제와 함께 수원부사에게 글을 전하러 했다고 하다**  
 특별히 국청 죄인(鞫廳罪人) 이하택(李夏宅)을 놓아주고, (...) 이하택이 공초에서 일컫기를, “적당(賊黨)에 들어가지 않은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청주에서 사변이 나자, 전(前) 지평(持平) 이일제(李日躋)와 서로 의논하여 글을 만들어 적정(賊情)을 논하여서 사람을 보내어 안성(安城)에 이르렀으니, 수원 부사(水原府使)에게 꼭 전하러 한 것인데, 도적에게 막힌 바 되어 전달되지 못하였으나 그 초고(草藁)가 아직도 있습니다.” 하고, 그가 입고 있는 바지에서 꺼냈다. (...)

○特放鞫廳罪人李夏宅，(...) 夏宅供稱：“有不入賊黨之明證。清州變出，與前持平李日躋，相議作書論賊情，送人至安城，要傳於水原府使，而爲賊所阻，不得達，其草尚在。” 自其衣袴出。(...)

<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7일(정해) 7번째기사>

### 정치/사법

**국청 죄인 이탱이 수원부에서 잡혀 승복하고 주륙당하다**

국청 죄인(鞫廳罪人) 이탱(李槿)을 놓아주었다. 이탱은 국문을 당하였으나 여러번 문초(問招)에 승복(承服)하지 않았으므로 국청에서 그 사실이 아님을 의심하여 방송(放送)을 계청(啓請)한 것이다. 뒤에 수원부(水原府)에서 잡히어 승복하여서 주륙(誅戮)을 당하였다.

○放鞫廳罪人李槿。槿被鞫，屢招不服，鞫廳疑其不實，啓請放送。後被捉於水原府，承服見誅。

<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8일(무자) 1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꺼렸던 전 총용사 김중기를 극변에 안치하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사간원(司諫院)【대사간 송인명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前) 총용사(摠戎使) 김중기(金重器)는 자신이 장신(將臣)이 되어 역변(逆變)의 초기에 능히 분발하여 도적을 치지 못하였습니다. 또 역적의 괴수 이유익(李有翼)과는 매우 가까운 인척(姻戚)으로, 성명(姓名)이 여러 번 국초(鞫招)에 나왔으니, 하루도 서울에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형(死刑)을 감하여 극변(極邊)에 안치(安置)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英祖)이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김중기에게 수원(水原)으로 나가서 지키라고 명하였는데, 김중기는 말이 없다는 핑계로 몽기적거리며 머무르는 형상이 현저히 있었다. 이유익(李有翼)이 망명하자 포교(捕校)가 뒤쫓아 철원(鐵原)의 김중기의 묘사(墓舍)에서 붙잡았으니, 대개 김중기의 아들 김숙(金瀟)이 바로 이유익의 매부(妹夫)이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김중기의 이름이 또 국초(鞫招)에 나왔으므로, 송인명이 나문(拿問)하기를 굳이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자, 먼저 이 계청(啓請)을 하여 서울을 떠나게 만들고 곧 또 나국(拿鞫)하자는 계사(啓辭)를 내었던 것이다.

○憲府申前啓，不允．諫院【大司諫宋寅明.】申前啓，不允．又啓言：“前摠戎使金重器，身爲將臣，逆變之初，不能奮發討賊．且與逆魁有翼，爲切姻，而姓名屢發於鞫招，不可一日置之於京輦．請減死極邊安置．”上從之．先是，命重器，出鎮水原，重器稱無馬，顯有逗遛狀．及有翼亡命，捕校進得於鐵原重器墓舍，蓋以重器子瀟，卽有翼妹夫也．至是，重器名又發鞫招，寅明固請拿問，上不許，寅明遂先爲是啓，使離京輦，旋又發拿鞫之啓．

<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11일(신묘)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김정현 공초에서 모의하는 장소에서 수원으로 도피했다는 내용

정국(庭鞫)에서 김정현(金鼎鉉)에게 신문하니, 김정현이 공초하기를,

“3월12일에 양성(陽城)의 최경우(崔擎宇)가 신의 집에 와서 ‘술이 있어 여러 벗과 마시려고 한다.’ 하면서 그의 집으로 함께 가기를 청하였으므로, 신이 그 집에 갔더니, 낯모르는 사람 몇명이 자리에 있었는데, 최경우와 함께 신의 손을 굳게 잡고 피어 말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좌중(座中)에서 한 사람이 큰 칼을 뽑아 들면서, ‘말이 이미 나왔는데도 이와 같이 발악(發惡)하면 능히 머리를 보전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신의 왼쪽 팔을 찔렀습니다. 신은 두렵고 겁이 나서 몰래 도망해 살아날 계책을 생각하고 이내 ‘나는 마땅히 집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보고 오겠다.’ 고 했더니, 최경우가 즉시 신을 놓아 주었기 때문에, 이내 집으로 돌아와서 수원(水原)으로 도피(逃避)하였다가 충주(忠州)로 옮겨 갔습니다. 김동이(金同伊)는 바로 서삼촌(庶三寸)이고 서제(庶弟)는 아닙니다.” 하였다.

○壬辰/庭鞫，問金鼎鉉，鼎鉉供：三月十二日，陽城 崔擎宇來臣家言：‘有酒盃，與諸友飲.’ 請同往渠家，臣往其家，不知面者數人，在座，與擎宇堅執臣手，誘說不釋．座中一人，拔大刀曰：“言已出而如是發惡，能保首領乎？” 刺臣左臂．臣懼怯，潛思逃生之策，仍言：“吾當還家，更思而來．” 擎宇卽解釋臣，故仍爲還家，逃避於水原地，轉向忠州．同伊，乃孽三寸，非庶弟也．

<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12일(임진) 1번째기사>

### 정치/사법

국청 죄인 안경우는 정관빈과 수원에서 올라오다가 체포되어 석방되다

국청 죄인(鞫廳罪人) 안경우(安慶祐)를 석방하였다. 안경우는 곧 정관빈(鄭觀賓)의 표숙(表叔)인데 정관빈에게 말을 빌려주고 그를 따라 수원(水原)에 갔다가 수원에서 함께 올라 오는 도중 체포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석방되었다.

○放鞫廳罪人安慶祐. 慶祐, 卽鄭觀賓之表叔, 借馬觀賓, 隨往水原, 自水原, 一併上送見囚. 至是, 始放.

<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15일(을미) 7번째기사>

### 정치/사법

안익태가 정관빈과 수원에서 고발할 수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국청 죄인(鞫廳罪人) 안익태(安益泰)를 사형(死刑)을 감면시켜 절도(絶島)에 징배하라고 명하였다. 안익태가 실정을 알았다고 지만(遲晚) 했는데, 임금이 안익태가 정관빈(鄭觀賓)과 함께 수원(水原)에다 고발할 수 없었던 것은 사세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요, 관망(觀望)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작하여 작처한 것이다.

○丙申/命鞫廳罪人安益泰, 減死配絶島. 益泰以知情遲晚, 上以益泰不能偕觀賓, 告水原者, 勢未及也, 非觀望酌處.

<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16일(병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이사로 공초에서 수원으로 보낼 사람에 대해 의논한 내용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가서 친히 국문하였다. 다시 이사로(李師魯)를 한 차례 형문하니, 이사로가 공초(供招)하기를, “(...) 이유익이 신에게 ‘그대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공로를 세운 뒤에야 될 수 있다. 그대는 반드시 이 서간을 가지고 평안 병사(平安兵使)에게 가야 된다.’ 하기에, 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서간을 전했다가 서울로 포박하여 보낸다면 장차 어찌하겠는가?’ 하니, 이유익이 ‘나의 서간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들어 오게 할 것이다.’ 하였는데, 신이 과연 그 서간을 가지고 갔더니 문지기가 저저시켜 들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이유익이 나에게 가기를 권할 적에 ‘한유(韓游)의 삼형제(三兄弟)를 보내도 되는데 한광(韓洸)·한유는 지금 벼슬에 종사(從事)하고 있고 한순(韓洵)은 일을 맡은 것이 있으므로 보낼 수가 없다. 황부(黃溥)의 아들을 보낼 수 있지만 지금 수원(水原)에 가 있고 임환(任環)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하(李河)가 서열(庶孽)이라는 이유로 어렵게 여기고 있다. 민사맹(閔思孟)을 보낼 수 있지만 어영 대장(御營大將)과 친하므로 혹시 누설될까 염려스럽고 홍계일(洪啓一)은 인물이 경망스럽고 항심(恒心)이 없으므로 보낼 수 없다. 구성언(具聖彦)은 술을 취하면 망발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고 도사(都事) 이세우(李世遇)는 늙어서 보낼 수가 없고, 오명시(吳命始)·오언빈(吳彦賓)은 계모(啓謨)가 많으므로 보낼 수 없다. 홍계일이 항상 「민사맹은 보통 일은 모두 시킬 수 있으나 깊은 일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했습니다. 하였다.(...)”

○上御仁政門, 親鞫. 更推李師魯, 刑一次, 師魯供: “(...) 有翼謂臣曰: ‘汝欲入, 必有功勞, 然後可以爲之. 汝須持此簡往傳于平兵.’ 臣曰: ‘傳書于不知之人, 縛送于京, 則將奈

何?’ 有翼曰：‘若持吾書而去，則必當入矣.’ 臣果持去，而阻闔不得入. 當初有翼勸送臣時曰：‘韓游三兄弟可送，而洸·游方從宦，洵則有所授事，不得送. 黃溥之子可，送而方往水原，任環可送，而河以庶孽難之. 閔思孟可送，而親於御將，恐或漏洩，洪啓一，人物輕妄無常，不可送. 具聖彥酒妄，不可送，李都事世遇，年老而不可送，吳命始·彥賓，多謀不可送. 啓一常以爲：「閔思孟則例事皆爲之，而深處不必言.’」云.’ (…)”

<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29일(기유) 7번째기사>

### 정치/사법

#### 이명의를 보낸 서찰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 수원의 진중에서 잡히다

이명위(李明誼)가 물고(物故)되었다. (….) 을사년 이후 이명위는 북변(北邊)으로 귀양가 있었고 권서봉도 또한 근읍(近邑)으로 귀양가 있었다. 그런데 정미년에 이르러 이명위는 호남(湖南)으로 이배(移配)되었고 권서봉도 잇따라 방환(放還)되었다. 권서봉이 돌아올 적에 이명위가 엿보던 기생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머물러 두었는데, 이명위가 연달아 서간으로 서로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그 서찰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 수원(水原)의 진중(陣中)에 잡히게 되었다. 그뒤 도순무(都巡撫)의 군대가 안성(安城)과 죽산(竹山)의 역적을 격파하고 문서(文書)를 수색하던 중 이명위가 권서봉에게 보낸 서간의 봉투와 내용이 나왔다. (….)

○李明誼物故. (….) 蓋乙巳後，明誼謫北邊，瑞鳳亦謫近邑. 及丁未，明誼移配湖南，瑞鳳亦繼放還. 瑞鳳歸時，率來明誼所昞妓，留其家，明誼連以書相通. 書札見捉於水原陣中. 其後都巡撫軍，破安·竹賊，搜文書，有明誼抵瑞鳳書，皮簡. (….)

<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29일(기유) 8번째기사>

### 정치/사법

#### 이사로가 이유익이 수원에 사는 황부의 아들의 집을 몰라 임환을 보내려했다고 하다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친국(親鞫)하였다. (….) 이사로가 말하기를, “(…) 원만주가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군사를 모으므로 네 말이 그러한 것이다.’ 하였고, 이유익이 너를 평안 병사(平安兵使)에게 보내려 한다 하였는데 이하(李河)가 서열(庶孽)은 깔보이기 쉬우므로 안 된다 하니, 이유익이 또 말하기를, ‘황부(黃溥)의 아들을 보낼 만하나 수원(水原)에 있는데 그 집을 모르므로 임환을 보내어 불러오려 한다.’ 하였다.” 하였다. (….)

○上御仁政門，親鞫. (….) 師魯曰：“(…) 萬周曰：‘吾方聚兵，故汝言如此.’ 云矣，有翼云：‘欲送汝，於平兵.’ 而河以爲庶孽，易見輕，故下可云，則有翼又云：‘黃溥之子可送，而在水原，不知其家，欲送任環招來.’ 云矣.” (….)

<영조실록 18권, 영조 4년 5월 1일(신해) 4번째기사>

### 정치/사법

#### 박미귀의 공초

박미귀(朴美龜)를 추문(推問)하였다. 한차례 형신(刑訊)하니, 박미귀가 공초(供招)하기를, “(…) 3월 5일에 심유현이 잡혀 삼례(三禮)에서 잘 때 박사관(朴師寬)이 심유현을 보러 갔다가 돌아와 신에게 말하기를, ‘그대 원[倅]의 일이 곧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그대 원의 일이다. 충청도에서 군사를 일으키면 남태징이 반드시 총융사(摠戎使)로서 수원(水原) 군사를 거느리고 충청도 군사와 합세하여 국도(國都)를 침범할 것이니, 그대들은 좋든 싫든 간

에 어기고 떠날 수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심유현이 잡혀온 뒤에 나머지 일은 박사관·박필현에게 부탁하였고, 박필현이 군사를 일으킨 것은 22일인데, 신은 전주(全州)에 줄곧 있고 박필현의 군중(軍中)에 가지 않았습니다. (…)” 하였다.

○問朴美龜. 刑一次, 美龜供: “(…)三月初五日, 維賢被拿, 宿參禮時, 師寬往見, 維賢還言于臣曰: ‘君倖事, 是吾事, 吾事是君倖事. 忠清道若起兵, 則泰徵必爲摠戎使, 率水原軍, 與忠清兵合勢犯國, 如君輩好不好問, 難以違去.’ 云. 維賢拿來後, 其餘事, 付托於師寬·弼顯, 弼顯起兵在二十二日, 臣長在全州, 不往弼顯軍中.” (…)

<영조실록 18권, 영조 4년 5월 8일(무오)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우의정 이태좌 등이 입시하여 수원의 죄인 엄악발을 변방에 정배하라고 하다

우의정 이태좌(李台佐), 풍원군(豐原君) 조현명(趙顯命), 포장(捕將) 이삼(李森)·이수량(李遂良)이 청대(請對)하여 입시하였는데, 외방(外方)의 군공(軍功)에 대한 단자(單子)를 일일이 진품(陳稟)하여 등급을 나누어 시상(施賞)하였다. 이삼·이수량이 포청(捕廳)의 죄인에 대한 문안(文案)을 진달하니, 임금이 명하여 남원(南原)의 죄인 한익명(韓益命)·김간(金簡)·김귀로(金龜老)·김태동(金泰同)·김익정(金益鼎)·김봉로(金鳳老)·김연단(金鍊丹)·김서기(金瑞基)는 다시 엄히 형장(刑杖)을 가하여 철저히 신문(訊問)하게 하고, 소동철(蘇東轍)은 그대로 가두게 하였으며, 이영징(李永徵)·형재망(邢載望)은 먼 곳으로 귀양 보내게 하고, 소철(蘇撤)은 석방(釋放)하게 하고, 수원(水原)의 죄인 엄악발(嚴惡發)은 사형(死刑)을 감하여 변방(邊方)으로 정배(定配)하였으며, 용인(龍仁)의 죄인 주신휘(周信輝)·김광석(金光石)·임익제(林益齊)는 엄악발과 면질(面質)시킨 뒤에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

○右議政李台佐·豐原君趙顯命·捕將李森·李遂良, 請對入侍, 以外方軍功單子, 一一陳稟, 分等施賞. 森·遂良, 以捕廳罪人文案陳達, 上命南原罪人韓益命·金簡·金龜老·金泰同·金益鼎·金鳳老·金鍊丹·金瑞基, 更爲嚴杖究問, 蘇東轍仍囚, 李永徵·邢載望遠配, 蘇撤放送, 水原罪人嚴惡發, 減死邊配, 龍仁罪人周信輝·金光石·林益齊, 與惡發面質後稟處. (…)

<영조실록 22권, 영조 5년 4월 9일(계미) 4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 진에 잡혀온 이명익이 이하택에게 보낸 서신에 반역의 정상이 보인다

지평(持平) 정익하(鄭益河)가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 신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하택(李夏宅)이 원래 청주 읍(淸州邑)내에 거주하였는데, 이인좌(李麟佐)의 변란 때에 비밀히 왕래한 것은 다만 청주 사람들이 소상히 말할 뿐만 아니라, 비록 수원 진(水原陣)에 잡혀온 이명익(李明諶)이 이하택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이른바 ‘임금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한다.’ 는 말로써 살펴보더라도 그 반역(反逆)의 정상이 날낱이 징험된다.’ 고 하였습니다. (…)” 하였다.

○持平鄭益河上疏, 略曰: (…) 以臣所聞言之, 夏宅本居於淸州邑底, 而麟佐之變, 與之密密往復, 不但淸州人言之甚詳, 雖以水原陣所捉明諶之抵夏宅書, 所謂欲往君所之說觀之, 可知其反狀之節節符驗. (…)

<영조실록 26권, 영조 6년 5월 27일(갑오)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최인 김중기의 공초에 수원으로 가는 것을 머뭇거린 것에 대해 변론하다

본부(本府)에 국청(鞫廳)을 설치하였다. 최인 김중기(金重器)가 공초(供招)하기를, “신이 출정(出征)할 때 장전(帳殿)에 아뢰기를, ‘이제 출정함에 있어 말[馬]을 구(求)한 후에야 갈 수 있는데, 타고 갈 말을 창졸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고 하였으니, 이는 신이 창졸간에 말이 분명하지 못한 탓입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군대의 장비(裝備)를 정제(整齊)할 즈음에 반드시 밤이 깊어지게 될 것이므로 명일에 비록 길을 떠나더라도 수원(水原)은 갈 수 있습니다.’ 하니, 성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안으로 출발하라.’ 하셨으므로 조정을 하직하고 나왔는데, 남대문(南大門)에 당도한즉 문이 이미 닫혔으므로 표신(標信)을 계청(啓請)하는 즈음에 밤은 이미 2경(二更)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두류(逗遛)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유익(李有翼)은 곧 신의 며느리의 남동생이니, 가난할 때에 말 쌀[斗米]을 보내 준 것은 며느리의 체면을 위한 일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익이 비록 모역(謀逆)을 했다 하더라도 인아(姻婭)의 척분(戚分)이 있는 자들이 어찌 이유익을 따라 모두 역적이 될 이치가 있겠습니까? 신의 이름이 역적의 조사에 나온 내력을 논한다면, 이유익이 조덕규(趙德奎)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약 총융사(摠戎使)를 유도(誘導)한다면 반드시 들어올 것이다.’ 하자, 조덕규가 이 말을 조상(趙鎰)에게 전했다는데, ‘반드시 들어온다[必入]’ 는 두 글자는 장차 들어올 것이라는 뜻이니, 그 후에 이미 들어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유익이 망명(亡命)할 때에 말을 사서 준 사람을 포청(捕廳)에서 염탐하여 잡아들여 정배(定配)했으니, 신이 말을 주지 않은 실상은 이에 의거하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의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낼 때에 이유익이 철원 농장(鐵原農庄)에 갔었으므로 망명할 때에 제가 과연 농장에 숨어 있었으니, 어찌 가리켜 보낼 이치가 있겠습니까? 수원 부사(水原府使)를 무변(武弁)으로 차출(差出)할 것을 청한 일은 신이 15년 후에 다시 총융청(摠戎廳)에 들어와 보니 군제(軍制)가 모두 퇴폐(頹廢)해졌으므로, 신이 개연(慨然)히 옛 제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과연 상소 한 장을 진달한 것인데, 묘당(廟堂)에서 문신(文臣)을 차송(差送)할 의논이 있음을 들었으므로 소본(疏本)을 도로 찾아 무변을 차출하도록 청한 말을 뽑아버렸으니, 이 밖에는 다시 진달한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設鞫于本府，罪人金重器供曰：“臣出征時，白于帳殿曰：‘今當出征，須得馬匹而後可矣。所乘之馬，猝難求得。’此臣倉卒之際，語實未瑩之致。臣又曰：‘整齊軍容之際，必致夜深，明日雖登程，可達水原。’自上教以今日內發程，故辭朝出來，行到南大門，門已閉矣，啓請標信之際，已至二更，此豈爲逗遛？有翼，卽臣子婦之同生，而貧寒之時，給以斗米，此不過爲子婦之面。有翼雖爲逆，爲姻婭之間者，豈可從有翼盡爲逆乎？臣名出逆招，有翼謂德奎曰：‘吾若誘摠戎使，必入之。’德奎以此傳于趙鎰，必入二字，是將入之意，後無已入之語。有翼亡命時，買馬以給之人，自捕廳窺捉定配，臣不給馬之狀，據此可知。臣亡子會葬時，有翼往于鐵原農庄，故亡命之時，渠果隱匿，豈有指送之理乎？水原倅請差武弁事，臣十五年後，重入摠戎廳，軍制盡爲墜廢，臣慨然欲復舊制，果陳一疏，而聞廟議有差送文臣之意，故還推疏本，拔去請差武弁之說，此外更無所達。”

<영조실록 26권, 영조 6년 6월 6일(계묘) 2번째기사>

## 정치/사법

김남복이 잡혀올 때 수원에서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지금 먹고자 하느냐고 심문하다

임금이 친히 나가서 죄수를 국문(鞫問)하였다. (...) 임금이 김남복에게 신문하기를, “나라

를 해치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니, 김남복이 말하기를, “남인(南人)들은 벼슬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심단은 지위가 정경(正卿)과 봉조하(奉朝賀)에 이르렀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너희들과 함께 역모를 하겠느냐?” 하였다. 김남복이 굶주려 먹을 음식을 구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도중(途中)에서는 먹지 않더니 지금은 먹고자 하느냐?”

하였다. 대개 김남복이 잡혀 올 때에 수원(水原)에 이르러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나졸(羅卒)들이 민망히 여겨 물으니, 김남복이 말하기를, “이 나라 곡식을 어찌 먹을 수 있느냐?”

하였다. 문사 낭청(問事郎廳) 정언섭(鄭彦燮)이 금부 도사(禁府都事)에게서 이 말을 듣고 대궐에 들어와서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이 곧 결안(結案)이 된다.” 하였다. (…)

○戊午/上親臨鞫囚. (…) 上發問於南復曰: “欲害國家者何意?” 南復曰: “南人不得仕故也.” 上曰: “沈檀位至正卿·奉朝賀, 何所不足, 與若輩, 同爲逆乎?” 南復飢而求食, 上曰: “在道何不食, 今欲食耶?” 蓋南復拿來時, 次水原不食, 羅卒悶而問之, 南復曰: “此邦之粟, 何可食也?” 問郎鄭彦燮聞之於都事, 入達, 上曰: “此言是結案矣.” (…)

<영조실록 26권, 영조 6년 6월 21일(무오)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의주 부윤 조진희가 광주와 수원의 예와 같이 의주를 독진으로 만들자고 청하다**

의주 부윤(義州府尹) 조진희(趙鎭禧)가 사패(辭陞)하니, 임금의 소견(召見)하였다. 조진희가 말하기를, “본부(本府)는 변방의 중요한 지역인데 병졸이 1천 명도 채 안되어 방어가 허술하니, 청컨대 묘당(廟堂)에 문의하여 군액(軍額)을 첨가시켜 광주(廣州)·수원(水原)의 예와 같이 독진(獨鎭)으로 만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품처(稟處)할 것을 명하였다. (…)

○丙戌/義州府尹趙鎭禧辭陞, 上召見之. 鎭禧言: “本府以邊陲重地, 兵不滿千, 控御踈虞, 請詢廟堂, 添增軍額, 設爲獨鎭, 如廣州·水原之例.” 上命稟處. (…)

<영조실록 30권, 영조 7년 7월 25일(병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 교졸을 논상한 재신과 우하형의 남형을 논한 옥당에게 문비를 시행하다**

사헌부【지평 송징계(宋徵啓)이다.】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상벌(賞罰)은 권한이 위에 있으므로 아랫사람이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원(水原) 교졸(校卒)의 상(賞)을 논한 것과 우하형(禹夏亨)의 함부로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사실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재신(宰臣)과 한 옥당(玉堂)이 서로 따라 진청(陳請)하였으니, 매우 외람되고 참람한 일입니다. 마땅히 문비(問備)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나는 부사(府使)로 있을 때 목격하고, 하나는 어사로 갔을 때 염찰(廉察)한 것이다. 사실대로 임금에게 고(告)한 것이니, 무슨 죄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청한 바가 옳으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憲府【持平宋徵啓.】申前啓, 不允. 又啓: “賞罰在上, 非在下所干請者. 而水原校之論賞·禹夏亨之濫殺, 未知事實之如何, 而一宰臣·一玉堂, 相繼陳請, 殊甚猥越. 宜施問備也.” 上

曰：“一則府使時所目擊也，一則繡衣時所廉察也。以實告君，何罪之有？然所請是矣，依啓。”  
<영조실록 30권, 영조 7년 8월 3일(계사) 3번째기사>

#### 정치/사법

역적 황진기의 자식들이 수원에 있다는 말을 수이산에게 들었다는 이례의 공초

임금이 몸소 황재숙(黃再淑) 등을 인정문(仁政門)에서 국문(鞫問)하였다. (...) 이례가 공초하기를, “황재숙이 말하기를, ‘수삼년 후에 역적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 딸을 궐내에 들여보내어 방자 나인을 삼는다면 다가오는 장래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황진기는 무신년 다음해에 그 종의 집에 와서 그 일족(一族)과 서로 모여 이야기하기를, ‘수삼년 후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고 하면서 잇따라 그 처(妻)의 가락지와, 의복을 가지고 개골산(皆骨山)으로 들어갔다는데, 이것은 수이산에게서 들었습니다. 황진기의 자식들이 수원(水原)에 있기 때문에 황진기가 말하기를, ‘2, 3년 후에는 당연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데, 황진기가 지난해에 수원에 왔었다는 것도 이 또한 수리산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였다. (...) 황재징을 신문하니, 황재징이 공초하기를, “신은 연달아 서울에 있다가 작년 8월에 수원 묘하(墓下)로 갔고, 금년 4월에는 재사(齋舍)에 나가 피병(避病)하였으나 이내 여역(癘疫)을 앓다가 조금 나은 지 겨우 보름이 되었습니다. 황진기를 만나 본 일이 있다면 임금의 녹(祿)을 먹으면서 어찌 잡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기석의 말은 천만 맹랑합니다.” 하였다. (...)

○上親鞫黃再淑等於仁政門. (...) 二禮供：“再淑以爲：‘數三年後，欲爲逆賊之事，汝女入送於闕中，爲房子內人，則前頭必有好事矣.’ 鎮紀則戊申翌年，來到其奴家，與其一族會話曰：‘數三年後，必有好事.’ 仍持其妻指環衣領，而入去皆骨山，此則聞於戊伊山. 鎮紀子息輩，在於水原，故鎮紀言：‘二三年後當來.’ 云矣. 鎮紀前年來於水原，此又聞於戊伊山.” (...) 問黃再徵，再徵供：“臣連在京中，昨年八月往水原墓下，今年四月出避齋舍，仍患癘得差，僅一望矣. 鎮紀若有逢見之事，則食君之祿，豈不捕納乎？今此起石之說，千萬孟浪.” (...)

<영조실록 34권, 영조 9년 5월 21일(신축) 4번째기사>

#### 정치/사법

비변사에서 나문(拿問) 때문에 밀부를 바친 수원 부사 김태연을 파직하도록 청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태연(金泰衍)은 전에 나문(拿問) 때문에 이미 밀부(密符)를 바쳤습니다. 이제 대직(帶職)하고 석방되었더라도 다시 밀부를 전수(傳授)하는 것은 전례가 없으므로 오래 직무를 폐기하도록 버려 둘 수 없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乙卯/備邊司啓：“水原府使金泰衍前因拿問，既納密符. 今雖帶職蒙放，又復傳授密符，未有前例，不可一任久曠，請罷職.” 從之.

<영조실록 49권, 영조 15년 7월 11일(을묘)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 쌍부창 조사가 거행되지 않은 일로 경기의 도신을 추고하라고 명하다

경기의 도신(道臣)을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으니, 수원(水原) 쌍부창(雙阜倉)을 조사하는 일을 아직 거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命京畿道臣推考，以水原雙阜倉查事之尙不舉行也。

<영조실록 67권, 영조 24년 1월 3일(무자) 6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의 사장에서 지방관 정휘량을 증상한 의도를 알고 있으니 고집하지 말라고 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조현명이 평안 병사(平安兵使) 구성익(具聖益)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강변(江邊) 각진(各鎭)의 군기(軍器)는 그 군병의 액수(額數)를 계산하여 남겨 두어야 하며, 그 나머지 군병이 없는 기계(器械)는 구적(寇賊)을 도와 주는 자료가 되기에 즉할 뿐이라는 이유로 일체 아울러 읍성(邑城)으로 옮겨다 둘 것을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수원(水原)의 사장(査狀)을 읽으라고 명하고 하교하기를, “임명주(任命周)에 대한 일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재신(宰臣)이 장사지낸 것은 곧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기와 같은 것이니, 뒤숭숭한 세상에 남을 경알시키려는 무리들이 기회를 타고 농간을 부리려 하는 것은 사세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다. 이제 사장을 열람하여 보니, 더욱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계사(啓辭)에서 공교하게 증상한 것은 해당 지방관 정휘량(鄭翬良)이다. 이는 한 번 쏘아서 둘을 맞추려는 의도인 것인데 이미 통찰하였고, 사장이 또 매우 상세하니 재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엄히 계칙하여 다시 고집하면서 버티지 말게 하라.” 하였다.

○上引見大臣·備堂。左議政趙顯命，因平安兵使具聖益狀啓，江邊各鎭軍器，計其兵額留置，而其餘無軍器械，適足爲藉寇之資，請一竝移寘邑城，允之。命讀水原査狀，教曰：“任命周事，可知其心。宰臣用葬，便若烏梨，嘒嘒之世，傾軋之輩，乘機投間，其勢固然。今覽査狀，尤無可疑。其啓中巧僭者，當該地方官鄭翬良也。此一射兩中之意也，業已洞察，査又甚詳，於宰臣何有？嚴飭，勿復撕捱。”

<영조실록 67권, 영조 24년 1월 5일(경인)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암행어사의 회주에 따라 수원부사 송수형을 하옥하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송수형(宋秀衡)을 체포하여 하옥하고, 통진(通津)의 전 부사 이은춘(李殷春)에게 말을 내려 주었는데, 암행어사 권송(權崇)의 회주(回奏)로 이 명이 있게 되었다.

○逮水原府使宋秀衡于獄，錫通津前府使李殷春馬，因暗行御史權崇回奏，有是命。

<영조실록 67권, 영조 24년 4월 22일(을해) 2번째기사>

#### 정치/사법

헌납 김선행에게 명하여 수원의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게 하다

헌납 김선행(金善行)에게 명하여 수원의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수원부를 지날 때 때아닌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었다.

○命獻納金善行審理水原冤獄，上幸過水原府時陰雨乖常，有是命。

<영조실록 72권, 영조 26년 9월 15일(갑인) 4번째기사>

#### 정치/사법

헌납 이홍직이 상서하여 무능한 수원 부사 구수훈 등의 파직을 청하다

헌납 이홍직(李弘稷)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 수원 부사(水原府使) 구수훈(具樹勳)은 사람됨이 어리석고 나이도 또한 쇠모(衰耗)하여 간사한 노비와 교활한 서리(胥吏)가 중간에서 용사(用事)하여 도둑을 다스리는 즈음에 양민(良民)이 피해를 입고 청정(簽丁)을 할 때에는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 신은 세 고을의 수령(守令)들은 모두 파직시켜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왕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獻納李弘稷上書，略曰：(…) 水原府使具樹勳，爲人儻侗年且衰耗，奸婢猾胥居間用事，治盜之際良民受害，簽丁之時賄賂公行。 (…) 臣謂三邑守令，并罷其職。王世子從之。

<영조실록 74권, 영조 27년 12월 9일(신축)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사간 심익성이 전 수원부사 구수훈의 정죄를 청하다

사간 심익성(沈益聖)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기근이 겹쳐 이르러 사망(死亡)한 사람이 거의 반이나 되니, 이를 구제할 방법이 한시가 급한 실정입니다. 양도(兩道)의 조운(漕運)이 기일을 어길수록 만백성들이 물고기처럼 입을 벌리고 먹여주기를 갈망하는 고통이 점점 심하여지니, 양도의 도신(道臣)에게 무겁게 경책(警責)을 가하여 제때에 구제하게 함으로써 북도(北道) 백성들의 목숨을 보존시키게 하소서. 균세법(均稅法)은 대조(大朝)께서 백성을 구휼하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인데 실제적인 혜택이 내려가 닿지 않고 폐단만 겹쳐 발생하고 있으니, 신법(新法)을 빙자하여 정세(正稅) 이외에 마구 거두어 들이는 폐단이 없을 수 없는데 수성(隋城)의 일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수원(水原)의 전 부사(府使) 구수훈(具樹勳)은 의당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해야 합니다. (…)” 하니, 왕세자가 답하기를, “양도의 도신과 구수훈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 하였다.

○司諫沈益聖上書，略曰：飢饉荐臻，死亡殆半，救拯之策，一時爲急。兩道之漕運愆期，萬姓之魚喁轉甚，兩道道臣，從重警責，及時拯濟，俾保北民之命。均稅之法，出於大朝恤民之至意，而實惠未究，弊端層生，不無憑藉新法，橫斂稅外之弊，至於隋城而極矣。水原前府使具樹勳，宜拿問定罪。(…) 王世子答曰：“兩道臣·具樹勳事，依施。元弼揆事，風聞難信。鄭德載事，請配過矣，拿問。”

<영조실록 75권, 영조 28년 2월 19일(신해)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월성위 김한신의 행상에 민폐를 끼치지 않은 수원 부사 등에 말을 하사하라고 하다

임금이 공묵함(恭默閣)에 나아가서 호서 암행 어사(湖西暗行御史) 이경옥(李敬玉)을 소견하였다. 월성위(月城尉)의 행상(行喪) 때에 예산(禮山)의 군정(軍丁) 12명이 우연히 죽게 되었었는데, 그 고을 수령(守令)이 고홀(顧恤)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해당 현감을 나처(拿處)하고, 그 12명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홀전(恤典)을 거행하게 하며, 그 처자(妻子)에게는 1년을 복호(復戶)하고 도사(都事)를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다. 평택과 수원에서는 민폐(民弊)를 끼치지 않았다 하여 특별히 말을 주라고 명하였다.

○癸丑/上御恭默閣，召見湖西暗行御史李敬玉。月城尉行喪時，禮山軍十二名，偶爾致斃，本倅不爲顧恤，故命該縣監拿處，其十二名，令本道恤典舉行，其妻孥特復一年，都事推考。平澤·水原，不貽民弊，特命錫馬。

<영조실록 91권, 영조 34년 3월 27일(계축) 1번째기사>

정치/사법

수원 어사 이석재가 복명하니, 수원 부사 이미를 파직하다

수원 어사 이석재(李碩載)가 복명(復命)하자, 수원 부사 이미(李瀾)를 파직하였다. 그리고 조덕숭(趙德崇)의 처를 수원부의 옥에 가두었는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조덕숭이 죽은 뒤에 그의 처가 더욱 더 사나움을 부려 이웃과 고을에 걱정거리가 되어 왔는데 또 손으로 사람을 죽이자, 대신(臺臣) 이지회가 상소하여 논한 것이다. 그러자 임금이 어사를 보내어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비록 스스로 죽었더라도 검험(檢驗)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사족(士族)이기 때문이었다.

○水原御史李碩載復命 罷府使李瀾職，囚趙德崇妻于府獄，欲使其自盡也。德崇死後，其妻悍惡，甚爲隣里鄉黨患，又手殺人，爲臺臣李之晦所疏論，上遣御史覈之得其實，有是命。仍命雖自斃，勿令檢驗，蓋以士族故也。

<영조실록 104권, 영조 40년 9월 21일(경오) 2번째기사>

정치/사법

수원의 살육 죄인 유덕삼을 귀양 보내라고 명하다

임금이 태묘(太廟)의 삭제(朔祭)에 쓸 향을 승현문(崇賢門) 밖에서 지영(祇迎)하였다. 이어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경현당(景賢堂)에서 인견하였다. 수원(水原)의 살육 죄인(殺獄罪人) 유덕삼(劉德三)을 귀양 보내라고 명하였으니,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의논을 따른 것이었다.

○丙子/上祇迎太廟朔祭香于崇賢門外，仍引見大臣備堂于景賢堂。命配水原殺獄罪人劉德三，從領議政洪鳳漢議也。

<영조실록 105권, 영조 41년 1월 30일(병자) 1번째기사>

정치/사법

왕의 명령에 오지 않은 전 수원 부사 홍지해 등을 충군하게 하다

금오 당상이 수원의 전 부사 홍지해(洪趾海)·이미(李瀾)·이명식(李命植)의 공초를 초하여 입시하니, 홍지해는 나주목(羅州牧)으로, 이미는 진잠현(鎭岑縣)으로, 이명식은 울산부(蔚山府)로 충군(充軍)하라 명하고, 이조 참판 조엄(趙曠)과 참의 홍낙순(洪樂純)은 삭직을 명하였는데, 밤이 깊어 위패(違牌)한 것 때문이었다.

○金吾堂上，持水原前府使洪趾海·李瀾·李命植草供入侍，命趾海羅州牧·瀾鎭岑縣·命植蔚山府充軍，吏曹參判趙曠·參議洪樂純命削職，以夜深違牌也。

<영조실록 108권, 영조 43년 5월 16일(기묘) 2번째기사>

정치/사법

수원부사의 천거를 즉시 거행하지 않았다고 비랑에게 곤장을 친 것은 지나치다는 상소

정언 임관주(任觀周)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언로(言路)는 국가에 있어서 사람에게 이목(耳目)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귀가 듣는 구실을 하지 못하고 눈이 보는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 임금의 뜻이 일단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경우 마치 바람 앞의 풀처럼 일제히 휩쓸릴 것이니, 우뚝하게 송백(松柏)처럼 자립할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상을 주면서 말하게 하더라도 회피할 것인데, 더구나 그렇지

많은 자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혹시 전지(銓地)를 논하면 서로 알력을 부리는 데로 돌리고, 권력 있는 재상들을 논하면 협잡을 부린다고 지목하여서, 영해(嶺海)에서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금고되어 있는 자들이 줄줄이 잇따랐었는데 정상께서 마음을 여시고 뉘우치시어 전후로 말 때문에 죄를 얻은 사람을 모두 풀어주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조정과 재야가 서로 축하하니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풀어주라는 명령만 있었지, 버려두는 것은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십수 년 이래로 전하께서는 묘당 관리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을 언제 본 적이 있었습니까? 한번이라도 문비(問備)를 청하면, 뚜렷이 노기를 드러내어 관원들이 서로 규계하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갖은 방법으로 혈뜬어 반드시 해치려고 합니다. 임금께 글을 올린다는 말이 사전에 누설되면 대관(大官)이나 중재(重宰)들이 너나없이 협박하여 저지합니다. 이려고도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지난번에 수원 부사의 천거를 즉시 거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지어는 비랑(備郎)에게 곤장을 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실로 전에 없었던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번의 차자로 책임을 때우고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나왔으니, 전하께서 대관들을 경시하는 것이 반드시 이에 연유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렇게 가뭄을 근심하실 때에 기우제를 지낼 것은 청하지 않고 먼저 잔치를 베풀자고 청하였으니, 생각을 못함이 심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날 이명훈(李命勳)이 입시했을 적에는 정도에 지나친 하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언관(言官)을 전석에서 면대해 나무라는 것은 본래 아름다운 일이 아닌데, 더구나 전에 없던 책망의 하교까지 있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말씀하실 때에 깊이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

○正言任觀周上疏，略曰：“夫言路之於國家，猶人之有耳目。苟使耳不得司其聽，目不得司其明，則其可爲人乎哉？嗚呼！人主之意，一有所左右，則靡然若風前之草，挺然爲松栢者，幾何人哉？賞之使言，猶且回避，況不然者乎？或論銓地則歸之傾軋，論及權宰則目以挾雜，嶺海籤錮，項背相望，何幸天心開悟，前後以言獲罪之人，一竝疏釋，朝野相慶，風采頓變。然徒有疏釋之命，而廢枳如前。十數年來，殿下曷嘗見刺舉廊廟者乎？一請問備，顯示愠怒，官師相規，視若仇【誰】。百端齟齬，必欲陰中。陳章之說先泄，則大官重宰，莫不恐喝沮戲。如此而國安得不亡乎？(...) 向以**水原薦望之不卽舉行，至有備郎決棍之命，此實無前之過舉也。**一筭塞責，抗顏冒出，殿下之輕視大官，亦未必不由於此也。當此度氈悶旱之時，不請祈雨，先請進宴，可謂不思之甚也。向日李命勳之入侍也，多有過中之教。言官之前席面責，本非美事，況有無前之責教乎？從今以後，凡於辭氣，深留聖意焉。(…)

<영조실록 109권, 영조 43년 6월 9일(신축)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의 전유복 사건에 대해 사형을 감해 정배할 것을 명하다

형조의 당상을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한 고조(漢高祖)의 삼장(三章)에 살인 조목이 맨 처음에 있었으나, 죄인을 세 번 심리하는 법 또한 중요한 것이다. 아! 옛날 당(唐)나라 임금은 심지어 재계를 하고 나서 결정했다고 하였다. **수원(水原)의 전유복(全有卜) 사건을 법으로 따져 보면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 정상을 따져 보면 매우 불쌍하다.** 계복(啓覆)의 뜻은 바로 인정과 법을 참작하여 궁구해 보자는 것인데, 전유복의 아내로 말하자면 그 여자 때문에 그 전 남편의 아들이 피살되었고, 그의 남편 또한 살인죄로 사형당했으니, 이는 한 사람이 남편과 아들을 죽인 것이다.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참작해 정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命秋堂入侍. 教曰: “漢高三章, 殺人爲首, 三覆之法, 其亦重焉. 噫! 昔唐宗至於齋決. 水原全有卜事, 問其律則難貸, 究其情則十分可矜. 啓覆之意, 卽情法參究者, 以有卜之妻言之, 以渠之故, 渠之前夫之子被殺, 其夫又償命, 此以一人殺夫與子也. 特貸一律, 參酌定配.”

<영조실록 109권, 영조 43년 11월 25일(을묘)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에 오래 근무한 자의 이름을 빌려 현임에 제수된 유원첨사 나춘형의 추고를 청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치인이 ‘이번 도목 정사에서 유원 첨사(柔遠僉使) 나춘형(羅春炯)은 타도(他道)의 사람으로 수원(水原)에 오래 근무한 자의 이름을 빌려 현임(見任)에 제수되었는데, 수원부에서 거짓으로 병조에 보고한 것은 해괴하다.’면서 수원부의 부사 이은춘(李殷春)을 파직하고, 나춘형은 그냥 들 수 없으니 고신(告身)을 회수하며, 병조 판서 이경호는 추고하라고 청하니, 모두 윤택하였다.(…)

○戊子/上引見大臣備堂. 領議政金致仁, 以今番都政, 柔遠僉使羅春炯, 以他道人, 借名於水原久勤, 得除見任, 水原府之曠報兵曹可駭, 請該府使李殷春罷職, 羅春炯不可仍置, 收其告身, 兵曹判書李景祐推考, 并允之. (…)

<영조실록 109권, 영조 43년 12월 28일(무자)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에 오랫동안 근무한 타도의 사람을 파직했으니 중간에 농간하자도 죄를 물어야 한다  
장령 홍상직(洪相直)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수원에 오랫동안 근무한 타도의 사람을 본 부사나 해당 전관(銓官)에게 알리어 파직하거나 추고하였다면, 중간에서 힘을 부린 자가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전 판서 조운규(趙雲逵)에게는 파직의 벌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제공(蔡濟恭)의 변명하는 상소는 기세를 세우고 기업을 토하여 오로지 욕하기만 일삼았습니다. ‘복을 던졌다[投杼]’는 말에 있어서도 또한 아랫사람으로서 성명(聖明)께 말씀드릴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자하게 상소에다 써서 매진(媒進)하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그냥 놓아둘 경우 뒷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丙午/掌令洪相直上疏, 略曰: “水原久勤之以他道人, 換報本府使及當該銓官, 或罷或推, 則居間宣力者, 奚獨無罪? 前判書趙雲逵宜施譴罷之典. 蔡濟恭對辨之章, 盛氣咆哮, 專事詬罵. 至於投杼二字, 又非在下者仰陳聖明之下者, 而肆然書之於章牘, 要爲媒進之階. 此而置之, 後弊難防. (…)”

<영조실록 110권, 영조 44년 1월 17일(병오)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지평 김치공이 수원의 장기 근무자를 바꾸어 차출한 수령을 파직시키다

지평 김치공(金致恭)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조정의 형정(刑政)은 관직이 높거나 낮음을 보아 다르게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수원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을 바꾸어 차출하려고 한 것은 이미 연석(筵席)에서 이야기가 되어 본 고을의 수령을 파직시켰습니다. 그런데 전 판서 조운규(趙雲逵)가 이 문제로 소(疏)를 올려 사실을 자백하였으니, 이름을 바꾸어 축탁한 잘못은 책임질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신은 그를 파직하고 서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

○持平金致恭上疏, 略曰: “朝家刑政, 不可以官職之崇卑, 有所異同也. 水原久勤之換人圖差,



既發於筵奏，譴罷本倅。而前判書趙雲達乃以此陳章首實，則換名圖囑之失，自有所歸。臣謂罷職不敘宜矣。”(…)

<영조실록 110권, 영조 44년 1월 17일(병오)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교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올라온 수원 부사 이방수를 파직하다

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방수(李邦綏)가 교귀(交龜)를 기다리지 않고 지레 먼저 올라 왔다는 것으로써 특별히 파직을 명하였는데, 대신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乙卯/上御集慶堂，引見大臣備堂。以水原前府使李邦綏，不待交龜，徑先上來，特命罷職，從大臣之請也。

<영조실록 119권, 영조 48년 11월 24일(을묘)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부사 조정을 체직시키다

대사헌 임희교(任希敎)가 권엄(權嚴)을 절도 안치(絶島安置)할 것을 아뢰어 청하니,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권엄을 잡아들여 형장(刑杖)을 가하고 추자도(楸子島)에 정배(定配)하였다. 조경(趙瓊)을 종성부(鍾城府)에 귀양 보내기를 명하였으니, 대사간(大司諫)으로서 공무(公務)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문이었다. 이조 판서 조엄(趙曠)을 잡아 들여 처음에는 북청(北靑)에 귀양보내기를 명하였다가 문득 정지하고 단지 파직만 하였으며,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정(趙晟)을 체직(遞職)하도록 명하였으니, 그의 형(兄) <조엄> 때문이었다.

○大司憲任希敎啓請權嚴絶島安置，上御建明門，拿入權嚴，刑配楸子島。趙瓊命鍾城府投畀，以大司諫不爲行公也。拿入吏曹判書趙曠，初命竄北靑，旋寢之，只罷其職，命遞水原府使趙晟，以其兄之故也。

<영조실록 121권, 영조 49년 7월 17일(갑술) 4번째기사>

#### 정치/사법

##### 경기 관찰사가 수원의 원유들이 통문을 돌린 사실을 보고하다

경기 관찰사 이형규(李亨逵)가 수원(水原)의 원유(院儒)가 통문(通文)을 돌렸다는 일로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수원의 원유들이 통문을 돌리고 소장을 올려 친구(伸救)하는 거조가 호유(湖儒)들과 다름이 없다고 하니, 이는 마땅히 핵실(覈實)하여 조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제 몇 달 뒤에 비로소 치보(馳報)하는 것이 사리로 논하여 보더라도 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몰랐었다고 핑계댄다면 모른 것도 또한 죄인 것이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정진(趙鼎鎭)은 우선 파출(罷黜)시킨 다음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게 하라. 도신(道臣)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경기 감사 이형규는 월봉(越俸) 1등을 시키라.” 하였다.

○京畿觀察使李亨逵，以水原院儒發通事，馳啓。敎曰：“水原院儒之發通疏救之舉，與湖儒無異云，此則從當覈處，而今於幾月之後，始乃枚報者，論以事理，其可成說乎？藉曰不知，不知亦罪也。水原府使趙鼎鎭，爲先罷黜，仍令該府拿問。按道之臣，難免溺職之責，京畿監司李亨逵，越俸一等。”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10월 11일(경진) 2번째기사>

정치/사법

옥당과 양사에서 수원 통문 사건에 관련된 원유들의 처벌을 청하다

옥당(玉堂)과 양사(兩司)에서 차자를 올려 수원(水原)에서 통문(通文)을 돌린 원유(院儒)를 철저히 핵실하여 엄단(嚴斷)할 것을 청하고 송덕상(宋德相)·송환억(宋煥億)을 잡아다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낼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헤아려 조처하겠다.” 하였다.

○玉堂·兩司上筭, 請水原發通院儒窮覈嚴斷, 德相·煥億拿鞠得情. 批曰: “當量處矣.”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10월 12일(신사) 3번째기사>

정치/사법

호옥의 심핵사가 상경할 때 수원의 통문 사건도 조사하게 하다

경모궁(景慕宮)에 전배(展拜)하였다.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수원부(水原府)의 죄인들을 조사하는 일은 이것이 이미 호옥(湖獄)과 서로 연관이 되니, 심핵사(審覈使)가 올라올 때 본부(本府)에까지 가서 이어 안문(按問)하게 하는 것이 일을 함에 있어 매우 편당(便當)하겠습니다. 심핵사에게 알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癸未/展拜景慕宮, 次對領議政徐命善啓言: “水原府罪人等查事, 既與湖獄相關, 審覈使上來時, 迤到本府, 仍爲按問, 事甚便當. 請知委於審覈使.” 從之.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10월 14일(계미) 1번째기사>

정치/사법

심핵사의 보고를 듣고 수원 옥사의 주범인 장지완과 한일유를 정배하다

하교하기를, “심핵사가 조정으로 돌아왔으므로 이미 사정을 물어보았는데, 수원(水原) 죄인 장지완(張志完)·한일유(韓一裕)가 실상 이 옥사(獄事)의 창귀(僂鬼)이니, 아울러 정배(定配)하라. 그 나머지 죄인은 우선 관전(寬典)을 따라 아울러 방송(放送)하라.” 하였다.

○敎曰: “審覈使還朝, 既問事情, 水原罪人張志完·韓一裕, 實爲此獄僂鬼, 竝定配. 其餘罪人, 姑從寬典, 并放送.”

<정조실록 12권, 정조 5년 11월 2일(경자) 2번째기사>

정치/사법

총융사 이창운을 파직하고 수원 부사 민중현을 처벌할 것을 명하다

차대를 하였다. 영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총융청 마병 도시(馬兵都試)를 수원 부사 민중현(閔鍾顯)의 보고로 인하여 뒤로 물려 시행할 것을 청한 바람에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규식을 정한 초기부터 법을 어기면 군법(軍法)에 관계되니, 청컨대 총융사 이창운(李昌運)을 파직하고 수원 부사를 잡아다 처리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癸巳/次對. 領議政徐命善啓言: “摠戎廳馬兵都試, 因水原府使閔鍾顯之報請退行, 以至稽滯云. 定式之初, 違越令甲, 有關師律, 請摠戎使李昌運罷職, 水原府使拿處.” 從之.

<정조실록 14권, 정조 6년 10월 30일(계사) 1번째기사>

정치/사법

충청도 관찰사 김광목이 수원과 평택 접경지역의 와언으로 소요가 있다고 보고하다

(…) 충청도 관찰사 김광묵(金光默)이 아뢰기를, “이달 14일에 길에서 전하는 말을 듣건대 수원(水原)과 평택(平澤)의 경계가 접한 곳에서 갑자기 와언(訛言)이 있어서 주민들이 소요(騷擾)하여 온양(溫陽)·아산(牙山)·천안(天安)·직산(稷山) 등의 고을에까지 전해진 말이 낭자하였습니다. 신이 진실로 한때의 근거없는 말이므로 놀라거나 의심할 것이 없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농사철을 당해서 민간이 동요하는 것이 또한 매우 민망스러워 한편으로는 부근의 여덟 고을에 공문을 보내 효유(曉諭)하여 진안(鎭安)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믿을 수 있는 심부름꾼을 파견하여 수령의 조치를 채탐(採探)하게 하였더니, 평택 현감(平澤縣監) 이형필(李衡弼)이 갑자기 겁을 내어 이노(吏奴)들로 부대를 만들고 각(角)을 불어 불러들인 일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비록 바람 소리와 학(鶴)의 울음 소리에도 미혹됨이 있게 마련이니 관장(官長)인 자는 마땅히 진중하게 단속하여 진안(鎭安)시킬 방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런 조치를 취하여 더욱 인심을 경동케 하였으니 아주 망령되고 경솔합니다. 청컨대 해당 현감을 파직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해당 수령의 일은 비록 매우 놀라우나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있는 사람을 지레 교체하는 것은 애석하다. 파직하지 말고 먼저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게 하라.” 하였는데, 오래지 않아서 김동철(金東喆)의 변고가 있게 되었다.

○(…) 忠淸道觀察使金光默啓言: “本月十四日, 聞道路所傳, 自水原·平澤接界之地, 忽有訛言, 居民騷動, 至及於溫·牙·天·稷等邑, 傳說狼藉, 臣固知一時浮言, 不足驚疑, 而當此農節, 民間浮動, 亦甚可悶. 一邊發關於附近八邑, 使之曉諭鎭安, 一邊發遣可信耳目, 採探守令之舉措, 平澤縣監李衡弼, 遽生懼恟, 至有吏奴作隊, 吹角令招之舉. 無知愚氓, 雖有風聲鶴唳之惑, 爲官長者, 固當持重彈壓, 思所以鎭安之道. 乃反作此舉措, 益令民心驚動, 極爲妄率. 請該縣監罷職.” 教曰: “該倖事, 雖甚可駭. 聲績人之徑遞可惜. 勿罷, 先令該府拿處.” 未久有東喆之變.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 4월 19일(병진) 4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 민호가 이사할 때이니 특별히 수원부의 죄수들을 석방하다

특별히 수원부의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전교하기를, “수원 민호(民戶)들이 이제 이사할 때를 당하였으니 그들을 염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중한 죄수나 가벼운 죄수를 막론하고 모두 석방하고 고을을 옮길 때까지는 수금(囚禁)하지 말라. 그중에 사형수는 즉시 지방관으로 하여금 죄목을 뽑아 기록해 단자로 감영(監營)에 보고하게 하고, 보고된 뒤에는 감사가 의견을 구체적으로 붙여 장계로 아뢰게 하라. 본 고을 백성으로서 어떤 일로 인해 귀양간 자도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모두 귀양간 곳의 감사로 하여금 놓아 보내게 하라. 그리고 이 뜻을 백성들에게 알아듣도록 일러 주라.” 하였다.

○特放水原府罪囚. 教曰: “水原民戶, 今當搬移, 軫念之舉, 當無所不至. 無論重囚輕囚, 一併放釋, 限移邑勿爲囚禁. 其中死囚, 卽令地方官, 單抄罪目, 報營後具意見狀聞. 本邑民因事被配者, 亦勿論罪之輕重, 並令配所道臣放送. 此意曉諭民間.”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7월 15일(기해)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좌의정 김종수에게 보낸 별유를 수원으로 잘못 전달한 경기 관찰사 박우원을 파직하다

경기 관찰사 박우원(朴祐源)을 파직하였다. 그것은 좌의정 김종수에게 보내는 별유(別諭)를

양주(楊州)로 보냈어야 할 것인데 잘못 수원으로 전달했기 때문이었다.

○庚申/罷京畿觀察使朴祐源職. 以左議政金鍾秀別諭, 當送楊州, 而誤傳水原也.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5월 29일(경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성 성지의 모양을 조잡하게 그려 올린 윤범행의 관직을 삭탈하다

앞으로 수원부에 성을 쌓으려고 팔도에 명하여 성지(城池)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서 바치게 하였는데,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 윤범행(尹範行)이 그려 바친 그림이 매우 조잡하였으므로, 그의 관직을 삭탈하여 잡아다가 추문하게 하고 이우현(李禹鉉)을 대신 임명하였다.

○將城于水原府, 命八道, 圖進城池. 慶尙左道兵馬節度使尹範行所圖進粗甚, 命削其職拿問, 以李禹鉉代之.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7일(을미)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상언한 문건 87통을 결재하다

상언(上言)한 문건 87통을 결재하였다.

○判下上言八十七度.

<정조 39권, 정조 18년 1월 15일(계묘) 2번째기사>

#### 정치/사법

김종수가 내각에 편지를 보내, 유언비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다

대신들이 청대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에 봉조하(奉朝賀) 김종수(金鍾秀)가 내각에 긴 편지 한 통을 보내었는데, 그 편지에 이르기를,

“저는 병으로 누워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근래 양호(兩湖)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심신이 놀라 마치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하된 자로서 어찌 차마 수천 년 동안 없었던 흉언(凶言)을 글에 적어 후세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만약 이 문제를 가지고 한결같이 침묵만 지킨다면 우리 성상께서 받은 무고를 변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후자가 중하고 전자가 가벼운 그런 의리를 인하여 이에 여러 군자들에게 두루 고향니다.

근래 호남에서부터 일종의 흉론이 호서로 전파되어 감히 다섯 가지 조항의 망극한 무고로써 은연중에 이를 감히 말할 수 없는 지위에 돌렸습니다. 즉 ‘첫째, 진(秦)나라처럼 축성(築城)을 한다. 둘째, 한(漢)나라처럼 매관(賣官)을 한다. 셋째, 수(隋)나라처럼 사치(奢侈)를 한다. 넷째, 당(唐)나라처럼 여알(女謁)이 성행한다.’ 는 것이고, 다섯째는 전례(典禮)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봉조하 김모가 이 다섯 가지 일을 가지고 바야흐로 상소를 만들고자 한다.’ 라고 하며 서로 유언 비어를 만들어 거의 집집마다 전파하다시피 하니, 이 어떠한 변고이며 이 어떠한 흉역(凶逆)입니까. 난신 적자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마는 이처럼 심한 경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 흉역스러운 심보는 을사·병진년의 여러 역적 및 최근의 역적 준(浚)과 서로 표리가 됩니다. 이에 생각이 미치면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하고 답이 떨립니다. 제가 죽기 전에 성상에 대한 무고가 분별되지 않는다면 살아서는 나라를 저버린 사람이 되고 죽어서는 눈을 감지 못하는 귀신이 될 것입니다. 이에 감히 피눈물을 흘리며 변명하니, 여러 군자께서도 평소에 듣고 본 바를 가지고 그 밝히지

못한 바를 더욱 밝혀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화성부(華城府)는 곧 선침(仙寢)이 자리잡고 있고 경기의 관방(關防)이 되니 경영하여 성을 쌓고 우물을 파는 것은 실로 우리 성상의 원대한 규모와 계획에서 나온 것으로서, 장정을 고용하여 부역을 시키니 농민들에게는 조금도 방해되지 않고 재물을 저축했다가 분배하여 사용하니 탁지부에는 조금도 손해되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관직을 제수해서 명기(名器)를 아끼는 데 있어서는 성상의 뜻이 못 왕들보다 탁월합니다. 전조의 의망 단자가 들어올 때에는 먼저 반드시 그 사람됨이 어떠하며 이력이 어떠하며 명망이 어떠한지를 아랫사람들에게 물어 신중하게 처리하여 낙점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소함을 숭상하는 법은 곧 우리 열성조의 가법인데 지금 우리 성상께서는 선대의 가르침을 삼가 지키는 데 더욱 뜻을 기울이고 계시니 이는 모든 신하들이 항상 공경하고 감복하는 것입니다. 침실의 여러 기둥에 고운 색채로 칠을 하지 아니하고 휘장에 푸른 색 목면으로 선을 둘렀고 자리는 띠풀로 만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며 어복(御服)은 여러 번 빨아 꿰맨 곳이 혹 터지기도 하였고 평소의 반찬 수도 점점 줄여 맛있는 음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찌 저만이 아는 바이겠습니까. 또한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듣고 본 바입니다.

넷째 조항에서 운운하여 부도한 말을 떠들어대어 없는 것을 있다 하니, 간사하고 흉악한 계모는 오로지 듣는 사람들을 의심케 하고 어지럽히려는 데에 있습니다. 저 네 임금은 과연 어떠한 군주였습니까. 성스러운 덕과 큰 도량을 지닌 우리 성상께서 이 지경에 이를 정도로 무고를 받았으니 맹세코 이 적들과 함께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없으며 다만 살을 씹어 먹고 가죽을 깔고 자고 싶을 뿐입니다.

전례에 관한 일에 이르러서는, 우리 성상이 견지하고 있는 의리가 지극히 정미하고 변란에 대처하는 것이 바름을 얻어 못 신하들이 감히 그 만분의 일이라도 우러러 헤아릴 수가 없으니, 마땅히 받들어 행하여 찬양하기를 마치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듯이 하여야 할 뿐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몇몇한 양심이 있다면 어찌 차마 그 사이에서 시비를 따지거나 가타부타할 수 있겠습니까. 인심과 세도(世道)가 비록 침몰하였다 하더라도 성명의 세상에 예전에 들어 보지 못한 이러한 흉언이 있을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유언 비어를 주장하니 반드시 소굴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즉시 토벌을 청하고자 합니다만, 아직 그 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호남에서 나왔으니 호남의 도신(道臣)은 아마도 끝까지 조사해 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여러 군자들이 이 편지를 밝게 헤아려 그 소굴을 타파할 수 있는 방도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성상에 대한 모함이 쾌히 풀리고 의리가 크게 밝아지도록 한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이날 여러 대신들이 들어와 면대를 청하니, 상이 승지로 하여금 영상에게 전교하게 하기를, “조정이 본래 무사한데 어찌 면대를 청할 것이 있겠는가. 날씨가 이처럼 무더우니 즉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乙巳/諸大臣請對, 不許. 時, 奉朝賀金鍾秀送長書一通于內閣. 其書曰: 鍾秀, 病伏垂死之中, 近聞兩湖傳說, 驚心痛骨, 如不欲生. 爲人臣子者, 豈忍以亘千古所無之匈言, 筆之書傳之世乎? 人若以此, 一直泯默, 則惟我聖躬之誣, 無路伸辨, 故敢因此重彼輕之義, 茲以遍告于諸君子. 近自湖南, 一種凶論, 播傳湖西, 敢以五條罔極之誣, 隱然歸之於不敢言之地. 其一曰, 秦之築城. 其二曰, 漢之賣官. 其三曰, 隋之奢侈. 其四曰, 唐之女謁. 其五, 卽典禮間事, 而又曰: “奉朝賀金某, 以此五件事, 方欲治疏”, 互作蜚語, 殆同家傳而戶喻, 此何等變故也, 此何等凶逆也? 亂臣賊子, 何代無之, 而未有若此之甚者也. 其凶肚逆腸, 與乙·丙諸逆, 近日

浚賊，互相表裏．思之及此，不覺骨顫而膽掉．賤臣未死之前，聖誣莫卞，則生爲負國之人，死作不瞑之鬼．茲敢泣血辨明，幸望諸君子，亦以平日所聞所觀，益明其所不明焉．**華城**一府，卽爲仙寢之拱護，畿輔之關防，則經之營之，築斯鑿斯，實出我聖上宏規遠謨，而雇丁赴役，農民少不相妨，蓄財排用，度支毫無所損．至若擇人除官，慎惜名器，聖意可以卓越百王．凡於銓望擬入之時，必先下詢其爲人之如何，履歷之如何，地望之如何，鄭重難慎，硃筆屢點．又如尙儉之德，卽我列聖朝家法，而今我聖上，尤致意於謹持先訓，此諸臣之所常欽服者也．寢室數椽，不施金碧，帳緣青綿，席用草茵，御服屢澣，而裁縫或綻，常膳漸減，而滋味不具，此豈但賤臣之所知也？抑亦廷臣之所共聞所共觀者也．第四條云云，倡說不道，指無爲有，奸謀匈計，專在於疑亂聽聞．惟彼四君，果是何如主？而以我殿下之聖德大度，受誣至於此極，誓不與此賊，共戴一天，直欲食肉寢皮而已．至若典禮間事，我聖上所執之義理，至精至微，處變得正，有非群下所敢仰度其萬一者，則但當奉行贊揚之如不及而已．若有一分秉彝之心，豈忍有是非可否於其間也哉？人心世道，雖曰陷溺，亦豈料聖明之世，有此前古所未聞之凶言耶？主張訛惑，必有窩窟．雖欲卽地請討，姑未探其根因，而第其言，出自湖南，湖南之伯，庶可有窮覈之方．惟願諸君子，雷照此紙，深思打破窩窟之道，使聖誣得以夬伸，義理得以大明，千萬幸甚．

是日，諸大臣入來請對，上命承旨，傳于領相曰：“朝廷本自無事，何爲請對？日熱如此，卽爲還第．”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1796) 7월 2일(을사)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화성의 수축을 비판한 임장원을 유배시키라는 상소를 올린 정최성이 처벌받은 내용

장령 정최성(鄭最成)이 상소하기를, “신이 전 헌납 임장원(任長源)의 소를 보고 처음에는 당황하였다가 곧바로 놀랍고 통분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인심(人心)과 습속(習俗)을 논한 곳을 보건대, 말에 줄거리가 없고 뜻에 요지가 없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지껄이며 하나도 절실한 말을 한 것이 없었는데, 이런 것은 혹 그의 견식이 정밀하지 못하고 문장 실력이 노련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구태여 심각하게 책망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겠습니까만, **화성(華城)의 한 일은, 아, 도대체 그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상설(象設)을 둘러싸 호위하게 하면서 관방(關防)을 설치해 영구적으로 견고한 금성 탕지(金城湯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상의 은미한 뜻인데 이것이 어찌 다만 성첩(城堞)과 누대의 승경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백성을 귀찮게 하며 일을 시키지도 않았고 아랫사람들의 재물을 축내지도 않았다고 그 자신 역시 이미 말을 했을 정도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가령 진언하는 신하가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의아하게 여겼다면 그것은 혹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한창 건축 중이라고 한다면 이런 흉년을 당하여 우선 정지하기를 청하는 것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완료한 지 3년이나 지났고 또 현재 공사를 벌이는 것도 없는데 옛날 일을 소급하여 거론하면서 장황하게 과례(過禮)했다고 제멋대로 공박을 가하였으니, 이것을 과연 잠규(箴規)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조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는 장차 신읍이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말하려고 하면서 먼저 연로의 분위기가 쓸쓸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그의 의도를 보건대 암암리에 마치 ‘성의 공사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민간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더욱 고달프게 되었다.’ 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말의 맥락으로 볼 때 결론이 무엇인지 정말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오(蒼梧)니 회계(會稽)니 하며 말한 몇 귀절을 보더라도 어떻게 신자(臣子)로서 감히 그런 식으로 배척하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경하고 삼가는 자세가 크게 결여된 만큼 중률(重律)을 적용해야 마땅할 것이니 우선 변방으로 유배보내는 전형(典刑)을 시행하는 일을 단연코 그만둘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봉황이 오지 않으면 새 알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니, 일단 명색이 언관인 이상에는 가능한 한 아끼고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시정(時政) 가운데, 한 번 말해보라고 한 나의 뜻에 맞춰 말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지금 동료 대간이 숨김없이 말한 것을 문제삼아 장황하게 논척(論斥)하다니 그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대는 중하게 추고를 당해야만 하겠다.” 하였다.

○掌令鄭最成上疏曰：“臣於前獻納任長源之疏，始也恟恟而繼之以駭惋。其論人心俗習處，語沒倫脊，意無宗主，胡說亂叫，無一切實之言，此或歸之於見識之不精，文字之未鍊，不必深責，而至於華城一事，噫嘻！此何言也？拱護象設，創設關防，金湯永鞏，此誠聖人之微意，而豈直爲雉堞樓臺之勝哉？況沒不煩民，財無損下，彼既亦能言之矣？設有進言之臣，持疑於經始之初，則容或可也。又若工役不寢，土木方興，則當此歉歲，姑請停止亦固也。而乃於完役三年之後，又無目下興作而追提言之，肆然歸之於張皇過禮之科，此果箴規乎？抑亦譏刺乎？將言新邑之壯麗，而先說沿路之簫索。其意隱若以爲一自城役之肇創，葺屋凋瘵日以益甚者然，語脈歸趣之所在，誠未可曉。至於蒼梧會稽以下數句語，是豈臣子之所敢斥言者乎？大欠敬謹，合置重律，先施屏裔之典，斷不可已也。”批曰：“鳳鳥不至，鳥卵猶惜，以言爲名，則務宜顧護。目下時政之可言而有能稱塞勤求之旨者，何限？而今以僚臺無隱之說，張皇論斥，未知爲可。爾則從重推考。”

<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1798) 9월 1일(신유) 2번째기사>

## 정치/사법

### 속천 부사 임장원을 유배보낼 것을 청한 한치응을 삭직시키다

집의 한치응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올린 임장원(任長源)의 상소는 전편의 내용이 더없이 황당하고도 간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취지는 정신이나 의도가 전적으로 화성(華城)의 공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낸 효자로서 항상 효성이 부족한 듯이 느끼는 심정을 미루어서, 일이 원침(園寢)에 관계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정성껏 다하였습니다. 이번에 화성에 성을 쌓는 것은 바로 성스러운 효성 가운데의 한 가지 일로서, 전하의 조정에 서있는 자치고 그 누가 성스러운 효성이 극도에 이른 것임을 모르겠습니까. 참으로 혹시라도 그 역사를 하는 데 대해 논의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전하의 신하가 아니며, 인륜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장원은 유독 무슨 마음을 가졌기에 이에 대해 입을 놀려 떠들어대고 종이에 가득 늘어놓으면서 심지어는 ‘천하의 장관(壯觀)이다.’ 고까지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과연 그것을 찬미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롱하는 뜻이 담긴 말입니까? 심지어는 ‘지나가는 길이 쓸쓸하다.’ 고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전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면서 여러 차례 헤아려 보아 호조의 정상적인 비용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백성들의 힘을 수고롭히지 않았다는 것은 부녀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올린 상소에서는 마치 백성들이 시달리는 것이 오로지 여기에서 연유한 것인 듯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전하를 헐뜯는 일종의 말은, 모두가 이와 같은 논의가 속이고 과장하여 미혹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오산(蒼梧山)이니 회계산(會稽山)이니 운운한 것은 더더욱 신하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한(漢)나라의 법으로 다스린다면 대불경(大不敬)의 죄를 그가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대간이 글을 올려 배척한 데서 공의(公議)가 모두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승진, 발탁하여 외방 고을에 임명해, 마치 그 일을 격려하는 것인 양 하였습니다. 죄를 진 몸으로 태연스레 관직에 있게 한다는 것은 크게 형벌의 도리를 잃은 것입니다. 숙천 부사 임장원을 우선 체차시키고 섬으로 유배보내는 형벌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을 내리기를, “임장원의 일로 해서 대각에 또다시 일개 정최성(鄭叡成)이 나오게 생겼다. 조정에서 정최성을 몹시 미워하면서 통렬하게 배척하는 것은, 그 뜻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물든 것을 씻어버림으로써 한 세대의 이목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좋아하고 싫어함[好惡]을 분명히 보여 사람들로 하여금 추향(趨向)을 일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재소(齋所)에서 신하들을 접견하면서도 이미 간곡하게 타이르고 부탁하였으니, 귀가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들었을 것이다. 그런즉 감히 알지 못하여서 이런 계(啓)를 올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에 하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였다면, 이것은 정최성에 대한 처벌이 엄하지 못한 관계로 호오(好惡)와 추향에 대해 믿는 것이 돈독치 못하고 택한 것이 정밀하지 못한 것이다.

대개 임장원을 너그럽게 포용해 준 것은 임장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조정의 분위기를 위해서이고 세상의 도리를 위해서인 것이다. 명색이 연관의 자리에 있는 이상 어찌 과감히 말할 수 있는 것과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이 따로 있겠는가. 과감히 말하는 풍조를 조성하고자 하면 먼저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망령되이 말하는 자부터 그 말이 지나치건 미치지 못하건 간에 따질 것 없이 하나같이 마음을 터놓고 받아들임으로써 사람마다 모두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다 털어놓게 하여야만 한다. 그런 뒤에야 오늘날의 잘못된 풍조를 반이나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경연 석상에서 전교할 때에 원침에 석상(石象)을 설치하는 제도를 인용하면서 유지하기를 ‘병풍석(屏風石)은, 근래에는 세우지 않아왔지만 교하(交河)의 장릉(長陵)에 이미 쓴 전례를 참조하여 준용(遵用)해서 아버지의 장사는 검소하게 하지 않는다는 의리를 붙인 것이다. 가령 이에 대해 말하는 자들이 단지 하지 말라는 수교(受教)가 있는 줄만 알고 교하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가 있는 줄은 몰라서 혹시라도 이에 대해 쟁집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불문에 부쳤을 것이다. **그런데 더구나 화성에 성을 수축하는 것이 비록 소중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석상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는 자연 차등이 있기 마련이다.**’ 고까지 하였은즉 임장원이 한 말이 어찌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감히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네가 오늘 낸 계사가 마땅한가, 마땅치 않은가? 또 옳은가, 옳지 않은가? 정최성에 대해서는 이미 세초(歲抄)에서 낙점을 건너 뛰었으니 너만이 어찌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너에 대해서는 삭직의 처벌을 내린다.

임장원에 대해서는 단지 임장원만을 용서하고 정최성에 대해서는 단지 정최성만을 배척할 뿐이다. **일이 화성에 속한 것인 만큼 관계됨이 어떠한가.** 용서하든 배척하든 간에 이미 제기한 것을 또 제기하며 중언 부언하여 일상적인 일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아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러한 도리에 대해 오늘날 조정에 있는 신하들로서 감히 잘 인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일부터는 이러한 계사를 올리지 말 것이며, 연계(連啓)를 비록 바치더라도



받아들이지 말 것을 해당 승지는 잘 알아두도록 하라.” 하였다.

○執義韓致應啓曰：“向來任長源之疏，全篇辭意，譎誑叵測。而要其歸趣，則精神意脈，專在華城一役。惟我聖上，以出天之孝，推不泊之思，事係園寢，靡不用極。惟茲城池之設，卽聖孝中一事，立殿下之庭者，孰不知聖孝之攸極？而苟或有容議於經理之舉，則是非殿下之臣，而無秉彝之心者也。長源抑獨何心，刺口論說，滿紙鋪張，至曰：‘天下之壯觀。’此果贊美之言耶，譏刺之意耶？至於‘沿路蕭索’等語，此何言也？我殿下經紀于茲，積費商度，不煩經用，不勞民力，婦孺之所共知也。而今其疏語，隱映帶說有若生民之困悴，專由於此者。近來一種誣聖之言，皆此等議論，有以譎張而誑惑之也。且蒼梧·會稽云云，尤非臣分之所敢出，繩之以漢法，大不敬之誅，渠安得免乎？向者一臺之疏斥，可見公議之攸同。而格外之陞擢，外邑之特畀，有若激成者然。以渠負犯，偃息在任，大是失刑。請肅川府使任長源爲先遞改，施以島配之典。”批曰：“以任長源事，臺閣又出一箇鄭最成矣。朝家之深惡痛斥於最成者，意在於革謬滌染，以新一世之目，兼欲明示好惡，俾定趨向也。齋所賓對，亦既辛勤敷諭，有耳者孰不聞之。則其敢曰不知而爲此啓乎？萬一知而故爲，是最成之處分不嚴，故好惡與趨向，信之猶不篤，擇之猶不精也。大抵優容於長源者，非爲長源也，卽爲朝象也，爲世道也。官以言名，則豈有敢言不敢言之言乎？欲長敢言之風，先從妄言於不敢言之事者，卽毋論其言之過與不及，一例虛襟開懷，使人人得以竭其所蘊。然後日今弊俗，庶或救得一半分。以是宮筵筵教，至引園寢象設之制而諭之曰：‘屏風石，近所不爲者，而交河長陵已例，照而遵用，以寓不以儉之義焉。假使言者，只知有勿爲之受教，不知有交河之已例，而或有所爭執之舉，尙亦付之勿問。況華城城役，雖有所重，而比象設，亦自有差等云云。’則長源之說，豈足謂敢言於不敢言乎？爾之今日發啓，當乎不當乎？是乎不是乎？最成則已越點於歲抄，爾何敢獨免重勘乎？爾則削職。在長源但容長源，在最成，但斥最成而已。事屬華城，關係何如也？容與斥間，決不可既提復提，重言復言，看作茶飯說話。此箇道理，今日廷臣，敢不諦認乎？自明日，此啓勿爲，連啓雖呈，勿捧事，該房知悉。”  
<정조실록 50권, 정조 22년(1798) 12월 1일(경인) 4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유수 서유린 등이 정치당의 처를 석방하라고 한 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다

봉조하 이명식(李命植)·홍수보(洪秀輔), 수원 유수 서유린(徐有隣) 등과 상호군 윤사국(尹師國), 이조 참의 이익모(李翊模), 안춘군(安春君) 이룡(李龍)이 진소하여 정치당 처를 용서하여 석방하라고 한 명을 도로 거두어주고 대간의 청을 윤택하도록 하라고 청하였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奉朝賀李命植·洪秀輔, 水原留守徐有隣等, 上護軍尹師國·政曹參議李翊模·安春君龍, 陳疏乞收鄭妻宥釋之命, 並不允.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 3월 7일(을축) 4번째기사>

## 정치/사법

충청도 암행 어사 신현이 각 고을의 폐단에 대해 올린 별단

차대하였다. 충청도 암행 어사 신현(申絢)이 복명하였다. 서계를 올려, 평택 현감(平澤縣監) 유상문(柳相文), 아산 현감(牙山縣監) 홍장보(洪章輔), 태안 현감(泰安縣監)李宗海(李宗海), 남포 현감(藍浦縣監) 이황(李潢), 공주 판관(公州判官) 김기응(金箕應), 중군(中軍) 유진엽(柳鎭燁) 등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상을 논하여 차등있게 논죄하였다.

신현이 또 아뢰기를, “충청도 수군 절도사 구명원(具明遠)은 송금(松禁)이 자못 해이하였

습니다.” 하였다. 병조 판서 김문순(金文淳)이 구명원을 무겁게 추고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판부사(判府事) 심환지(沈煥之)의 말을 들으니, 안면도(安眠島)의 온 백성들이 수영(水營)의 침학에 고생을 하고 있으며 소속된 각 섬들까지 모두 그 피해를 입고 있는데 빙자하는 단서는 진상에 쓸 생전복[生鰓]이 가장 심하다고 하였다. 몇년 전부터 전복을 진상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면제하고 줄여주었는데 감히 이 조목에 대해 농간을 부린단 말인가. 진상용 전복을 퇴짜놓는 일로 지난해에는 섬 백성이 비속(裨屬)에게 곤장을 맞고 죽은 자까지 있다고 하였다. 그 곡절에 대해서 묘당이 해당 수사에게 엄하게 공문을 보내 추문하고 사실대로 비변사에 보고하게 한 뒤에 초기(草記)를 올렸다. 올해에는 해당 수사는 전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은 한 개나 반 개라도 봉진하지 말라.

이러한데도 이른바 영속(營屬)이라고 하는 자들이 각 섬 근처에 출몰하면서 예전대로 토색질을 하다가 장차 내려갈 암행 어사에게 적발된다면, 단속하지 못한 해당 수사는 의금부로 잡아다가 조율하여 금고(禁錮)의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와 수사에게 엄하게 신칙하라.

현임 수사의 죄는 예사롭게 파직하고 잡아다가 논죄해 처리해서는 안되겠다. 그로 하여금 속죄할 방도를 강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현이 또 별단을 올리기를, “1. 흉년에 환곡(還穀)을 연기해 주는 것은 참으로 조정에서 은혜를 베푸는 일이지만, 그 실상을 따져보면, 눈앞의 혜택은 매우 적고 뒷날의 폐단은 매우 큼니다. 대개 곡식이 흉년이 들면 어쩔수없이 우선 납부할 날짜를 연기하여 다음해에 곡식이 여물기를 기다리는데, 간사하고 교활한 서리(胥吏)들이 이것을 기회로 농간을 부립니다.

그들은 대부분 식록을 받아먹지 않는 자들로서 항상 백성들의 집에서 꾸어서 먹는데, 그 때문에 분등(分等)하고 연기할 때를 당하면 자기들이 꾸어먹은 집을 부자를 가난한 집으로 만들어서 등급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속들에게는 많이 돌아가고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습니다. 다음해에 조금 풍년이 들어 옛 환곡을 받아들일 때에는 새 문서와 옛 문서를 변조하고 분수(分數)의 많고 적음을 뒤섞어서, 백성들은 모두 바치더라도 서리들은 태연히 그대로 있습니다. 해마다 명목을 바꾸어가며 계속 징수해 내는데도 관아에서는 다 살필 길이 없고 백성들은 다 알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교활하게 한없이 토색질을 하여 백성들에게 끝없는 폐단을 끼치는 것으로는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항상 말하기를, ‘차라리 1분이 탕감되는 것이 낫지 3분을 연기해 주는 것은 원치 않는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매우 억울해 하는 실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면 마침내 가장 오래된 조목은 절로 탕감되고야 마는 것이라면, 쓸모 없는 빈 장부를 남겨두어 아전들의 간사함을 자라나게 하고 백성들에게 폐단이 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곧바로 탕감하여 백성들에게서 손해를 보는 것이 낫습니다. 이 뒤로는 흉년에 받아내기가 아주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는 비록 대략 탕감해주는 하더라도 다시는 연기시키지 않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묘당과 대각에 하문하여 처리하소서.”

하였다. 좌의정 이병모가 복주(覆奏)하기를,

“연기해 주는 일의 폐단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도, 차라리 탕감해주는 것이 낫지 연기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대개 연기해 주는 것의 폐단을 딱하게 여긴 것이지 탕감으로써 연기해 주는 것을 대신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한번 법으로 정해져 버리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두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따랐다.

신현이 또 화성(華城)의 여섯 조항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좌의정 이병모가 복주하기를, “다섯 개의 소속 고을의 친군위(親軍衛)의 장락대(長樂隊)는 혹 즐거이 부임하면서 영광으로 여기는 자도 있고 혹 구습에 젖어 신설 부대로 가기를 꺼리는 자도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한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정한 제도대로 한결같이 따라서 차례대로 번을 서게 하면 결국에는 편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굳이 다른 의논을 받아들일 것은 없습니다. 인원수를 줄이고 비용을 줄인 은혜로운 뜻을 먼저 선포하고 번거롭게 하지도 않고 변경시키지도 않는 실제적인 조치에 대해 다시 진념해야 합니다. 해당 고을의 수령 가데 과천 현감(果川縣監) 김강(金綱)은 잡아다가 처분하고, 안산 현감(安山縣監) 김유(金鏐), 시흥 현령(始興縣令) 윤수익(尹守翼)은 무겁게 추고하소서.

환곡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뇌물을 바치고 면하기를 도모하니 이것은 필시 면임(面任) 무리들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서로 바꾸어 놓고 양쪽을 다 토색질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다른 도나 다른 읍에서도 이와 같이 해서 안 되는데, 더구나 이곳은 임금의 선대 묘소가 있는 고을입니다. 그 폐단 되는 바가 과연 어사의 논계와 같다면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외탕고에서 획정하여 받아들이는 대동미가 1섬이 30말이라는 설은, 어사가 아뢴 바는 곡(斛)으로 담아 받아들이는 양이 바로 30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방아쪼고 운송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거의 이 숫자에 이른다는 것인데, 혹 가까울 듯도 합니다. 지금 변통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한결같이 다른 대동미의 예대로 대동창에서 받아들여 외탕고로 이송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서 시행하소서.

영화동(迎華洞)에 물길을 내는 일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방둑을 설치한 것은 실로 백성들을 위하려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공전(公田)이든 사전(私田)이든 한결같이 균등하게 물을 대라고 거듭 엄하게 신칙하였습니다. 이토록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 걱정스러운 때에는 공전과 사전을 가릴 것없이 씨를 붙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선 감사에게 엄하게 신칙해야 합니다. 서쪽 방둑의 새로 쌓는 곳에 침범해 들어온 백성들의 밭은 복결을 풀어줄[解卜] 때에 모두가 합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우니, 더욱 잘 조사하게 해서 적절히 조치해야 합니다.

가천역(加川驛)을 진위현(振威縣)에 옮겨 붙이는 일은, 참으로 걸리는 문제가 많으니 지금은 우선 그냥 두도록 하소서.

교졸(校卒)과 이민(吏民)들의 습속을 단속하는 일은, 감사와 지방관들이 검소한 기풍으로 솔선하고 소박한 풍속으로 인도하여 세입과 세출이 제대로 된 공을 이룬 뒤에야 비로소 직분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근본을 따져보자면, 이처럼 단속을 잘 하지 못하여 어사의 장계에 거론되기까지 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는 우선 무겁게 추고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따랐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과천(果川)과 시흥(始興)은 혹은 정밀하고 분명하기도 하고 혹은 상세하고 신중하기도 하여, 모두 안산(安山)의 조용함과 비록 숙달됨과 생소함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수령들도 또한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니, 모두 우선은 논핵하지 말아서 장래에 공효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외탕고에서 쌀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폐단은, 이와 같이 개정된 뒤에 과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지, 조세를 받아들일 때와 환자 곡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전에 비해서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땅히 각각 어사를 보내야 하겠다.

서쪽 방둑을 새로 쌓는 일은, 비록 조정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반드시 곳곳마다 아랫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힘쓰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丙寅/次對. 忠清道暗行御史申絢復命. 進書啓, 論平澤縣監柳相文·牙山縣監洪章輔·泰安縣監李宗海·藍浦縣監李潢·公州判官金箕應·中軍柳鎮燁等不治狀, 勘罪有差. 絢又言: “忠清水軍節度使具明遠, 松禁頗弛.” 兵曹判書金文淳, 請重推明遠. 上教曰: “向聞沈判府之言, 安眠一島之民, 困於水營之侵微, 以至所屬諸島, 無不被其害, 而憑藉之端, 進上生鯁, 尤甚云. 年來供鯁, 除減何如, 則敢於此條容奸乎? 以供鯁點退, 昨年至有島民之被棍於裨屬而致斃者. 其委折, 廟堂嚴問該闕, 使之首實報司後草記. 而今年則該闕, 以鯁爲名者, 雖一箇半箇, 勿爲封進. 所謂營屬, 現影於各島近處, 依舊討索, 而摘發於來頭繡行, 則當該不飭之帥臣, 拿致王府, 照律施以禁錮之律. 以此嚴飭道帥臣. 而時帥臣之罪, 不可以尋常罷拿勘處. 使之圖所以贖罪之方.” 絢又進別單曰: “一, 災歲還穀之停退, 實是朝家惠澤, 而夷考其實, 則目前之爲惠甚微, 而日後之爲弊甚大. 大抵年穀不登, 不得不姑爲停退, 以待來歲之登熟, 而奸胥猾吏, 夤緣舞弄. 渠輩之多不受食者, 常借民戶, 故當其分等停退之時, 以其所借之戶, 呼富作貧, 低仰其間. 畢竟多歸於官屬, 而少及於民間. 及夫來歲稍登, 舊還將捧, 則變幻新舊之文簿, 混淆分數之多寡, 民雖盡納, 吏則自如. 年年出秩, 歲歲疊徵, 官無以盡察, 民無以盡知. 其爲資奸猾無厭之求, 貽小民不窮之弊, 莫甚於此. 故民有恒言曰: ‘寧願一分蕩減, 不願三分停退.’ 此可見實情之至冤. 及夫年深而歲久, 畢竟最久條之自歸於蕩減乃已, 則與其留無用之虛券長吏之奸而爲民之弊, 曷若直爲蕩減寧失於民乎. 此後則若當災歲, 其至難捧之類, 雖或從略蕩減, 而更勿停退, 恐合事宜. 請下詢廟臺處之.” 左議政李秉模覆奏曰: “停退之弊, 不一其端, 故古亦有寧蕩減無停退之論. 蓋所以闕停退之弊, 而非謂以蕩減而代停退也. 若爲一定之法, 終有所難, 請置之.” 從之. 絢又論華城六條事宜. 左議政李秉模覆奏曰: “五屬邑親軍衛之長樂隊, 或樂赴爲榮, 或狃舊憚新, 凡民之情, 無怪其如此. 而一遵已定之制, 次第經番, 則畢竟稱便. 今不必更容他議. 若先布減額蠲費之德意, 更軫不煩不撓之實政. 而各該邑倅中, 果川縣監金鋼拿處, 安山縣監金錄, 始興縣令尹守翼重推. 還穀不願受者, 納賂圖免, 此必面任輩, 互換貧富, 兩相誅索之致. 他道他邑, 尙不容若是, 況此豐沛之鄉. 其所爲弊, 果如繡啓, 則固已萬萬可駭. 而至於外帑庫所劃大同米一石三十斗之說, 御史所奏, 非爲斛內直爲三十斗也, 竝與春鑿運輸之費幾至此數云, 似或近之. 不可不及今變通. 一依他大同例, 自大同倉捧上, 移送外帑庫, 以爲定式施行. 迎華洞決渠不均事, 此地設洞, 寔出爲民之聖意, 無論公田私田, 一視均溉, 飭教申嚴. 當此雨澤久闕之時, 公田私田, 尙不區別, 付種係是切急之務. 爲先嚴飭守臣. 西洞新築處, 犯入民田解卜之際, 難保其一稱停, 另加查實, 量宜措處. 加川驛移接振威事, 實多掣礙, 今姑置之. 校卒吏民習俗禁抑事, 守臣與地方官, 先之以儉嗇之風, 牖之以敦樸之俗, 以成歲計之功, 然後始可以不負職. 若論其本, 惟此不能戢束, 至登繡啓, 該守臣, 姑先從重推考.” 從之. 仍教曰: “果川·始興, 則或精明或詳慎, 竝與安山之從容, 雖有鍊達生疎之別, 似此守令, 亦未易得, 竝姑勿論, 以責來效. 而外帑庫米濫捧之弊, 如是釐正後, 果然刮目與否, 捧稅時竝與捧還之比前如何, 當各送繡衣矣. 西洞新築, 雖非朝令, 其能一一無弊, 常所爲念. 必也隨處務從益下事, 分付.”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1799) 5월 9일(병인)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유수 이만수가 사학의 소굴을 소탕해야 한다고 아뢰다

차대하였다. (...) 수원 유수 이만수(李晩秀)는 말하기를, “흥역의 와글을 만약 소탕하지 않는다면, 윤리와 기강은 장차 폐절되고 의리는 거의 없어지는 데 이를 것입니다. 지금 이 사학은 진실로 그 근원을 구명해 보면 와글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지금 와글을 흔쾌

하게 소탕해서 이륜(彝倫)을 밝힌다면 간사한 무리와 요사스러운 당류는 제거하기를 기필하지 않아도 저절로 제거될 것입니다.” 하고, (…)

○丙戌/次對. (…) 水原留守李晚秀曰: “逆窩若不掃蕩, 則倫綱將至斲廢, 義理幾乎湮晦. 今此邪學, 苟究其源, 實由窩窟中出來, 今若夫掃窩窟, 克明彝倫, 則邪類妖黨, 自當不期去而自去矣.” (…)

<순조실록 2권, 순조 1년 3월 10일(병술)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심환지가 광주 유수의 선발을 화성유수를 특교하여 차송한 예에 의거할 것을 청하다

차대(次對)하였다. (…) 심환지가 말하기를, “광주 유수가 과만(瓜滿)이 되어 체임(遞任)되었으니, 이제 의논하여 천거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삼보(三輔) 가운데 광주(廣州)가 경성(京城)에서 가장 가까워서 옛부터 조정에서 의중(椅重)해 오던 곳인데, 근래에 크고 작은 직무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버려둔 채 관방(關防)의 보장(保障)을 하나도 경리(經理)한 적이 없었으니, 진실로 한심하게 여길 만합니다. 경제(卿宰) 가운데 적합한 사람이 없지 않으나, 만약 중망(重望)이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원임 상신(原任相臣)이 또한 나가서 안찰(按察)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개 경성과 거리가 수십 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외직(外職)에 나가는 것으로 논할 수 없고, 묘모(廟謨)는 유수가 본래 스스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 더구나 추함(樞銜)을 그대로 띠고 있기 때문에 명관(命官)·위관(委官) 같은 직임(職任)도 또한 전과 같이 병행할 수 있으니, 실제로는 내직(內職)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 영부사에게 화성 유수(華城留守)를 특교(特敎)로 차송(差送)한 예에 의거하여 잠시 안찰하게 하여 나가서는 정돈하고 보수(保守)하며 들어와서는 묘당의 직무를 다스리게 한다면, 안에서나 밖에서 진실로 모두 편의(便宜)할 것입니다. 마침 우견(愚見)이 있어서 우러러 진달하니, 청컨대, 연신(筵臣)들에게 하문하소서.” 하였는데, 좌의정 이시수(李時秀)는 말하기를,

“보장(保障)의 땅은 인화(人和)를 귀중하게 여겨야 하므로 만약 원임 상신으로 하여금 나아가 안찰하게 한다면, 반드시 중망을 지닌 사람을 얻는 도리에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서용보(徐龍輔)는 말하기를,

“서울에서 가까운 형승(形勝)의 땅으로서 완급(緩急)에 믿을 수 있는 곳은 남한 산성(南漢山城)보다 나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수상(首相)이 주달(奏達)한 것은 오로지 보장(保章)을 더욱 중대하게 여겨 인심을 붙들어 매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유수는 본래 내직이니 구애되는 단서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수원 유수 이만수(李晚秀), 예조 판서 한용귀(韓用龜), 지돈녕 김조순(金祖淳), 형조 판서 조진관(趙鎭寬), 우참찬 서매수(徐邁修)는 모두 말하기를, “대신이 주달한 것은 이미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신 등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고, 호조 판서 이서구(李書九)는 말하기를, “대신에게 유수의 직임을 띠게 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매우 중대하고, 또 관방(官方)에 관계되므로, 신은 하나를 가리켜 감히 우러러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이조 판서 윤행임(尹行愆)은 말하기를, “화성(華城)을 유수영(留守營)으로 승격시켰을 때 반드시 특지(特旨)로써 대신이 맡아볼 일을 정식(定式)으로 삼았었습니다. 남한산성은 보장의 중요함이 화성에 못지않으니, 상신의 분사(分司)에 대해서는 전조(銓曹)에서 감히 양청(仰請)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행 호군 남공철(南公轍)은 말하기를, “사체(事體)가 화성의 제도(制度)를 정할 때와는 다른데 대신이 이미 중망을 지닌 사람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니, 신도 또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방(官方)은 갑자기 변개(變改)하기 어려운 것이니, 전에 천망(薦望)했던 예에 의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辛亥/次對. (….) 煥之曰: “廣州留守報瓜蒙遞, 今當議薦矣. 三輔之中, 廣州最近於京城, 自昔朝家之所倚重, 而近因小大恬嬉, 許久拋置, 關防保障, 無一經理, 誠可謂寒心. 卿宰中非無可合之人, 而如欲得重, 則原任相臣, 亦可以出按. 蓋本府距京城, 不過數十里, 不足以出外論, 廟謨則留守本自參聞, 況樞衡自在, 則如命官·委官之任, 亦可如前奉行, 實與內職無異. 今若以領府事, 依華城留守因特教差送之例, 暫爲按節, 出則整頓保釐, 入則平章廟務, 於內於外, 允合便宜. 適有愚見仰達矣, 請下詢于筵臣.” 左議政李時秀曰: “保障之地, 人和爲貴, 若使原任相臣出按, 則必當有助於得重之道矣.” 右議政徐龍輔曰: “近京形勝之地, 緩急可恃, 無如南漢. 而今此首相所奏, 專出增重保障, 維繫人心之意. 且留守, 本是內職, 似無礙掣之端矣.” 水原留守李晚秀·禮曹判書韓用龜·知敦寧金祖淳·刑曹判書趙鎮寬·右參贊徐邁修俱以爲: “大臣所奏, 既出重保障之意, 臣等亦無別見矣.” 戶曹判書李書九曰: “大臣居留, 事體甚重, 且關官方, 臣不敢指一仰對矣.” 吏曹判書尹行恉曰: “華城陞留時, 大臣須特旨事定式矣. 南漢保障之重, 不讓於華城, 而相臣分司, 有非銓臣所敢仰請者矣.” 行護軍南公轍曰: “事體與華城定制時有異, 而大臣既以得重爲言, 臣亦別無他見矣.” 上曰: “官方猝難變改, 姑爲依前薦望.”

<순조실록 2권, 순조 1년 4월 5일(신해) 1번째기사>

## 정치/사법

**비국에서 명을 받을 의사가 없는 수원 유수 김재찬을 파직할 것을 아뢰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재찬(金載瓚)은 소식(昭晰)이 모두 지극하고 신칙(申飭)하기를 또한 여러 번 하였는데도 한결같이 밖에 있으면서 명을 받을 의사가 없으니 도리로 헤아려 볼 때 몹시 미안합니다.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備局啓言: “水原留守金載瓚, 昭晰備至, 申飭亦屢, 一向在外, 無意應命, 揆以道理, 極爲未安. 請罷職.” 從之.

<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3월 6일(병자) 2번째기사>

## 정치/사법

**형조 판서 조득영이 상소하여 교서 중 자신의 일이 억울함을 변명하다**

형조 판서 조득영(趙得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 지난 병인년 봄에 판부사 신 서용보(徐龍輔)를 다시 좌상에 제수하는 명을 화성(華城)에 어가가 임하신 날에 특별히 내렸는데, 은례(恩禮)의 드문 것이 비록 후거(後車)에 신는 것과 같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때에 역적 김달순(金達淳)의 죄악이 드러나 한참 성토(聲討)하는 중이었으므로, 신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저 대신은 비장한 각오로 앞장서야 할 의리가 다른 사람보다 못지 않을 것으로 여겨 이마에 손을 얹고 어가를 호위하며 올라오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놀라운 말이 들렸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대신의 주견(主見)은 역적 김달순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 라고 말하면서 못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의혹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

○刑曹判書趙得永疏. 略曰: (…)  
 曩在丙寅春, 判府事臣徐龍輔, 復拜左相之命, 特下於華城臨鑾之日, 恩禮曠絕, 雖謂之載之後車, 非過語也. 時值達賊, 罪惡彰著, 聲討方張. 臣自語於心曰, ‘彼大臣沫飲之義, 豈後他人爲之.’ 加額而喜及其陪扈而上來. 一日·二日; 聽聞多駭. 人皆曰, ‘大臣主見, 不以達賊爲罪.’ 衆口相傳, 滋惑倍甚.(…)

<순조실록 13권, 순조 10년(1810) 6월 10일(계사) 6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찬 서능보가 상소하여 중형 서용보를 변명하자 사적을 삭제하겠다고 하다

수찬 서능보(徐能輔)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병인년 봄에 김달순(金達淳)의 역적 행위가 처음으로 탄로났을 때, 신의 중형(從兄)은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반면(反面)의 입대(入對)에서 즉시 엄히 토죄하라고 아뢰었습니다. 그 후에 또 영상 신 이병모(李秉模)와 함께 화성 행궁(華城行宮)의 부름을 받아 전석(前席)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의리를 천명하고 난역(亂逆)을 징계하라는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성상께서는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여깁니다. 그때는 바로 신의 중형이 중복(重卜)에 응하기 전이었습니다. 대저 초야에 물러가 있는 처지로도 앞장서서 역적을 토벌하는 정성을 바쳤는데, 재상의 반열에 오르자 회피하려고 피하였다는 것은 상정(常情)으로 헤아려 보아 어찌 그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그전부터 정세가 실로 다시 정승의 자리에 있기가 어려웠고, 때아닌 이질 설사의 증세로 또다시 숨이 끊어질 듯해서 당시에 목견한 자들이 모두 위태롭게 여겼었습니다. 이 정세에 어찌 명을 듣자마자 즉시 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로써 곧바로 역적의 토벌을 늦추었다는 죄로 되었으니, 세상에 어찌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서구(李書九)의 일에 대해서는 연석(筵席)에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본디 시말(始末)이 있고 같은 말로 대답한 것 또한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으니, 기주(記注)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한번 조사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서구에게 죄가 있고 없음이 신의 중형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자를 끄집어냈다는 것으로 큰 죄안을 엮어 짚으니, 참으로 한번 웃기에도 부족합니다. 옛날 송(宋)나라의 오처후(吳處厚)가 채확(蔡確)이 지은 거개정시(車蓋亭詩)를 가지고 선인 황후(宣仁皇后)를 무방(誣謗)하였다고 하자 범순인(范純仁)·여대방(呂大防) 등이 모두 문자를 들추어낸 것은 성대한 세상에 있을 일이 아니라 하였고, 주부자(朱夫子) 또한 말로써 사람을 죄에 밀어 넣은 것이 원우(元祐) 시대 때 여러 사람들의 실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조득영의 말과 같다면 범순인·여대방의 논의는 모두 이명의(李明誼)와 일관되고, 주자 또한 채확을 두둔한 의논이란 말입니까?

아! 신유년의 한 상소는 본디 신의 중형이 일찍부터 마음 아프게 생각해 온 회한(悔恨)이어서 죽을 때까지 스스로 폐기하기를 달갑게 여긴 것입니다. 그 일의 기미를 생각해 보면, 지극히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지하에 미칠 화가 조석 사이에 임박하였으니, 아들 된 자가 그 아버지가 사후(死後)에 극죄(極罪)를 입게 된 것을 앉아서 본 채 태연히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 또한 정리상 있을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차라리 그 자신이 씻기 어려운 죄루(罪累)에 자처하고 이미 백골이 된 아버지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하루아침에 닥칠 위기의 화를 늦추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니, 이 흔적을 가지고 논한다면 어찌 화복(禍福)을 두려워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천년 이후에도 반드시 그가 당한 일을 슬퍼하고, 그 뜻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성상의 일월(日月) 같은 밝으심으로 ‘곡사조촉(曲賜照燭)’ 이라는 네 글자의 은혜로운 말씀을 이미 연석에서 꺼내셨고, 이진승(李鎭崇)·이위달(李渭達)같이 기회를 틈타 요동시킨 무리가 모두 변방으로 추방된 벌을 받았

으니, 신의 집안을 살려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분노의 독기를 품어 또 잔각(殘刻)한 여론(餘論)을 답습할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또 그 이른바 ‘지하에서 눈을 감겠다.’ 고 한 것은 바로 자전계서 시원히 밝혀졌다고 하고 하신 은혜로 인하여 한 말이었으며, 이른바 ‘천지가 망망(茫茫)하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차마 듣게 된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소본(疏本)이 모두 남아 있어 명백할 뿐만이 아닌데, 날조해 모아 이처럼 극도로 무함하고 모욕하였으며, 횡설 수설 지껄었던 입이 아주 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端緒)를 따져 보면 실로 신이 일으킨 바에서 비롯되었으니, 이게 더욱 가슴 아파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신이 삼가 조득영의 상소를 보니, 일편(一片)의 정신이 모두 두건덕(竇建德)을 위해 원수를 갚는다는 구절에 있어 은연중 수립하는 주인으로 자처하면서 사람들이 감히 나를 어찌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 기염(氣燄)이 미치는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공정한 안목으로 보는 자라도 귀를 잡으려다가 그릇을 깰까 싶은 혐의가 없지 않으나, 이는 또한 천만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대저 원재(元載)가 어조은(魚朝恩)을 죽이고, 사미원(史彌遠)이 한탁주(韓侂胄)를 죽였는데, 그 하나의 일만 가지고 논한다면 비록 사직(社稷)에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반드시 그릇을 깨뜨릴까 혐의한다면, 안진경(顏真卿)이 원재를 미워하고 진덕수(眞德秀)가 사미원을 공격한 것 또한 어조은과 한탁주를 위해 원수를 갚으려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나라의 고사로 말하더라도 김안로(金安老)가 처벌되었으나 심정(沈貞)의 단서(丹書)는 그대로 있었고, 홍국영(洪國榮)이 역적이 되었으나 명의(明義)의 대안(大案)은 밝게 제시되었으니, 설사 조득영이 큰 죄를 받아 죽더라도 김달순(金達淳)을 성토(聲討)하는 큰 의리에 손상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이 한번 경솔하게 발론함으로 인해서 위로 조정이 그처럼 수치를 받았고, 아래로는 사문(私門)이 이처럼 화를 당하였으니, 첫째도 신의 죄이고 둘째도 신의 죄입니다. 신이 비록 죽더라도 어떻게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꽤만(悖慢)하게 나온 말은 또한 꽤만하게 들어간다는 말을 그대는 듣지 못하였는가? 중신(重臣)이 과연 원재이고 사미원이며, 그대는 과연 안진경이고, 진덕수인가? 어찌 그리 천만 부당한 비유를 들었는가? 일의 단서는 본디 그대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마땅히 엄히 처분할 것이나, 특별히 대신(大臣)의 이때의 심사(心事)를 생각하여 우선은 말감(抹勘)을 따라 너에게 영원히 사적(仕籍)에서 삭제하는 법을 시행하겠다.” 하였다.

○修撰徐能輔疏. 略曰: 丙寅春達淳逆節始綻之時, 臣之從兄奉使而歸, 反面之對, 卽有嚴討之奏. 伊後又與故領相臣李秉模, 同被召接於華城行宮, 前席娓娓之敷陳, 不越乎闡明義理, 懲懼亂逆之意, 伏想宸聽, 尙當記有. 而其時則乃臣從兄未膺重卜之前也. 夫以屏野之蹤, 猶效沫飲之誠, 及叨當軸之列, 乃爲前却之計者, 揆以常情, 寧有是理? 顧其自來情勢, 實難叨於揆地, 而非時泄痢之症, 又復奄奄, 當時目見者, 莫不危之. 此其勢安得聞命卽膺? 而今乃以此, 直歸緩討之科, 則世豈復有完人耶? 至若李書九事, 筵席酬酢, 固有始末, 同辭仰對, 亦非一人, 記注昭載, 一按可知. 夫書九之有罪·無罪, 何關於臣之從兄? 而今以挾摘云云, 構爲大案者, 誠不滿一笑. 昔宋吳處厚, 以蔡確『車蓋亭詩』, 爲誣謗宣仁, 范純仁·呂大防等, 皆以挾摘文字, 爲非聖世所宜有, 而朱夫子亦以口語擠人, 爲元祐諸人之失. 若如得永之言, 則純仁·大防之論, 皆與明誼一串, 而朱子亦爲營救蔡確之論耶? 噫! 辛酉一疏, 固臣從兄之所嘗隱痛悔恨, 而甘自廢於沒身者也. 顧其事機, 有至難言者. 泉壤之禍, 朝夕將迫, 爲人子者, 坐視其父之將被身後極罪, 而恬然不爲之動心, 亦非情理所宜有. 則寧以其身自居於難洗之累, 而爲其既骨之親, 少



緩一朝之危禍，執跡而論，安能免怵畏禍福之誚？而千載以後，亦必有悲其遇，而憐其志者矣。以聖上日月之明，曲賜照燭四字恩言，既發於筵席之上，而如李鎮嵩·李渭達，乘機敲撼之徒，皆正屏裔之罪，臣之闔門生死肉骨隕結之忱，不知所報。豈料忿毒之所逞，又襲殘刻之餘論？而又其所謂‘瞑目地下’云者，乃因慈教昭晰之恩，而爲之言者也。所謂‘穹壤茫茫’云者，乃指忍聞不忍聞之言而爲說也。疏本具在，不啻明白，而捏合誣辱，至於此極，胡叫亂嚷，口業絕悖。苟求其端，實由臣作，此尤所以慟不欲生者也。臣竊觀得永之疏，一片精神，都在於爲建德報仇一句，隱然自處以樹立主人，而謂人莫敢我何，其氣燄所及，不可嚮邇。雖以公眼看覷者，不能無投鼠忌器之嫌，此又有萬萬不然者。夫元載之誅魚朝恩，史彌遠之誅韓侂胄，卽其一節而論之，則雖謂之有功於社稷可也。若必以忌器爲嫌，則彥眞卿之忤元載，眞德秀之攻史彌遠，亦可謂爲朝恩·侂胄報仇耶？雖以我朝故事言之，安老伏法，而沈貞之丹書自在，國榮爲逆，而明義之大案昭揭，則縱使得永伏大憝之誅，顧何傷於討達之大義理耶？緣臣一着之輕發，上焉而朝廷之羞恥如彼，下焉而私門之遭罹若此，一則臣罪，二則臣罪。臣雖滅死，何以可贖？批曰：“言悖而出者，亦悖而入，爾不聞之乎？重臣果元載·史彌遠乎，爾果顏眞卿·眞德秀乎？何其爲萬萬不當之喻也？事端本由於爾，所當嚴處，特念大臣之此時心事，姑從末勘，爾則施以永刊仕版之典。”

<순조실록 13권, 순조 10년(1810) 6월 24일(정미) 3번째기사>

## 정치/사법

### 형조에서 다룬 서부의 이복일이 진술한 청원문

형조에서, 징을 친 서부(西部)의 이복일(李復一)이 아버지를 위하여 사리를 밝혀 진술한 일에 대하여 시행하지 말 것을 아뢰었다. 원정(原情)한 데에 이르기를,

“저는 죄인 이상로(李商略)의 아들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형장에서 억울하게 죽었으나 숨겨진 억울함을 드러낼 수 없었고, 저의 형제들은 연좌되어 먼 곳에 귀양갔다가 차례로 방환(放還)되었습니다. 저의 종숙 이의명(李義明)을 소통(疏通)할 때에 경연에서 하교하기를, ‘이상로의 풍색(風色) 등의 말이 스스로 기휘(忌諱)에 저촉되기는 하였지만 역적은 아니다.’ 하였으며, 을묘년 봄에 화성에 행차하였을 때에, 저의 처에게 특별히 명하여 봉수당(奉壽堂)에서 자궁(慈宮)에게 입대(入對)하도록 하였는데, 상교(上教)로 자세하게 결백을 밝히고 우선 치욕(恥辱)을 시원스럽게 씻어 버릴 때를 기다리라는 명을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대왕께서 갑자기 승하하시자 호소할 길이 없어지고 나라의 경사가 거듭해서 임금의 은택이 널리 퍼졌지만 저의 아버지의 답답한 원통함만은 유독 드러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늘을 부르고 부모를 부르는 일을 이 때에 하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대개 병신년의 여러 죄인이 불행하게도 인아(姻婭)의 사이에서 많이 나왔지만 저의 아버지만은 성명이 역적의 공초(供招)에서 나오지 않았고 사실이 옥사와는 관계가 없었으나, 단지 편지의 구절이 역안(逆案)으로 귀착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여러번 혼인을 사양한 일로 적신(賊臣) 홍국영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오랫동안 분풀이를 하려고 버르던 차에 마침 국옥(鞠獄)이 한창 벌어지자 이때를 틈타 섬멸하려는 계획으로 편지의 구절을 따서 근거도 없는 죄안을 만들어 온갖 방법으로 죄를 꾸며 만들어 마침내 극전(極典)으로 처치하고 말았습니다. 선대왕의 유교(遺教) 중에 ‘역적은 아니다[逆則非矣].’는 네 글자가 해와 별처럼 뚜렷하며, 또 화성(華城)의 면교(面敎)를 등서(謄書)한 봉서(封書)가 집안에 모여져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만약 조금이라도 범한 것이 있다면 일월 같이 밝으신 선대왕께서 어떻게 분석(分析)한 연교(筵敎)가 있었겠으며, 또한 정령(丁寧)한 면유(面諭)가

있었겠습니까? 삼가 청원하건대, 특별히 처분을 내리시어 지극한 억울함을 씻어 주소서.” 하였는데, 하교하기를, “이상로의 일에 대해서는 선조께서 죄가 없음을 통촉하시고 장차 신설(伸雪)하겠다는 성의(聖意)를 전에 여러번 보였으니, 이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은 옳다. 이상로를 특별히 신설하고 죄명을 탕척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의계(議啓)하여 다투어 논란하니, 여러 승지의 파직을 명하고 남소 위장(南所衛將)을 가승지(假承旨)로 차하(差下)하여 즉시 반포하게 하였다.

○己卯/刑曹以擊錚人西部李復一爲父伸理事. 啓請勿施, 原情云: 渠罪人商輅之子也. 渠父冤死桁楊, 幽枉莫暴, 渠兄弟坐配遠地, 次第放還. 渠從叔義明疏通之時, 筵教有曰, ‘商輅之風色等語, 自底觸諱, 逆則非矣’, 乙卯春華城幸行時, 特命渠妻入對慈宮於奉壽堂, 而上教縷縷昭晰, 至有姑俟快雪之命矣. 弓劍遽遺, 無所控訴, 邦慶荐疊, 霈澤旁流, 而渠父幽鬱之冤, 獨無由得暴. 則渠之呼天呼父母, 不於此時, 更待何時? 蓋丙申諸罪人, 不幸多出姻婭之間, 而渠父則姓名不出於賊招, 事實無涉於獄情, 而只以書札句語, 同歸逆案. 渠父以屢次辭婚之事, 積忤於賊臣國榮, 必欲甘心者, 已有年所, 適值鞫獄方張, 乃有乘時殲滅之計, 扶摘書札句語, 粧撰暗地罪案, 羅織百端, 竟置極典. 先大王遺教中, 逆則非矣四字, 揭若目星, 且有華城面教之贍下封書, 奉在家中. 渠父苟或真有一分所犯, 則以我先大王日月之明, 豈有分析之筵教, 亦有丁寧之面諭乎? 伏乞特降處分, 俾雪至冤. 教曰: “李商輅事, 先朝洞燭無罪, 將欲伸雪之聖意, 屢示於昔日, 此人鳴冤是矣. 李商輅特爲伸雪, 罪名蕩滌.” 政院議啓爭難, 命諸承旨罷職, 南所衛將假承旨差下. 使卽頒布.

<순조실록 17권, 순조 14년(1814) 8월 21일(기묘) 1번째기사>

#### 정치/사법

**과천현의 군기를 도둑질한 죄인 배천손을 수원부에 회부하여 효수케 하다**

과천현(果川縣)의 군기(軍器)를 도둑질한 죄인 배천손(裵千孫)을 수원부(水原府)에 회부하여 효수(梟首)케 하라고 명하였다.

○命果川縣軍器偷出罪人裵千孫, 付之水原府梟首.

<순조실록 18권, 순조 15년 1월 28일(갑인)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영의정 서영보 등이 화성의 패서 사건에 대하여 아뢰다**

영의정 서용보(徐龍輔), 좌의정 김사목(金思穆),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이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달포 전 화성(華城)의 성문에 패서(掛書)의 변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유수(留守)로 하여금 엄탐하게 하여 죄인 김재묵(金在默)을 체포하여 포도청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두 포도 대장이 합동으로 신문하니, 정상이 매우 흉악스러웠습니다. 지금 일의 체통으로 보아 포도청에서 조사하는 데에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핵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壬辰/領議政徐龍輔, 左議政金思穆, 右議政南公轍, 請對言: “月前華城城門, 有掛書之變, 使該留守訶之, 捉得罪人金在默, 上送于捕廳, 兩捕將合坐推問, 則情節俱極凶悖, 到今事體, 有不可自, 捕廳究問而止, 請設鞫覈之.” 允之.

<순조실록 22권, 순조 19년(1819) 6월 2일(임진)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화성의 궤서 죄인을 국문하다

추국(推鞠)을 행하여 【영부사 이시수(李時秀), 영의정 서용보(徐龍輔), 판부사 김재찬(金載瓚)·한용귀(韓用龜), 좌의정 김사목(金思穆), 우의정 남공철(南公轍), 판의금 임한호(林漢浩), 동의금 이석규(李錫奎)·조정철(趙貞喆)이다】 화성의 궤서 죄인을 국문(鞫問)하였다.

○推鞠【領府事李時秀, 領議政徐龍輔, 判府事金載瓚·韓用龜, 左議政金思穆, 右議政南公轍, 判義禁林漢浩, 同義禁李錫奎·趙貞喆】鞫華城掛書罪人.

<순조실록 22권, 순조 19년(1819) 6월 2일(임진) 5번째기사>

### 정치/사법

#### 추국을 행하고 죄인들을 죄의 경중에 따라 처단하다

추국을 설행하고 여러 죄인들의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단하였다. 죄인 김재묵(金在默)은 본래 남평(南平)의 관노로서 간교하고 부랑(浮浪)하였으므로 문안(文案)에서 제명되어 축출되었으며, 과부를 간음한 죄로 위원(渭原)에 징배되었는데, 뒤에 초산(楚山)으로 이배(移配)되었다. 위원에 있을 때에는 더불어 귀양살이하던 김노형(金魯亨)과 닳이 익었으며, 유배지에서 도망쳐 사망을 떠들다가 화성(華城)에서는 흉서(凶書)를 붙였으므로 추적받아 붙들려 화성에서 포도청으로 보내졌고, 의금부에서 국문하기에 이르렀는데, 앞뒤 공초(供招)에서 모두 이르기를,

“길에서 김노형의 8촌 친척 김노신(金魯信)을 만나 서로 친숙해졌고, 이어 짝을 지어 김노형의 아우 김노정(金魯鼎)의 유배지인 기장(機張)으로 찾아가서 그 서찰을 받아 광양(光陽)의 고 첨사(僉使) 강창일(姜昌一)의 아들 강주철(姜周喆)에게 전하였습니다. 강창일은 광양의 부민(富民)이므로 장차 그 전화(錢貨)를 빌어 배 4,5척을 마련하고, 또 화약·화전(火箭) 등의 병기를 만들어 바다에 띄워 군병(軍兵)을 일으킬 계획을 하였는데, 김노신을 도원수(都元帥)로 삼고 제장(諸將)이 80명이며 대병(大兵)이 10만이라고 하여 이런 뜻으로 화성에 방을 붙였습니다. 방문은 김노신이 스스로 짓고 직접 쓴 것으로서 그가 품팔이꾼 이철(李哲)을 시켜서 붙이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

○戊寅/推鞠酌處諸罪人. 罪人金在默, 本以南平官奴, 奸黠浮浪, 除案被黜, 以寡女犯奸之罪, 定配渭原後, 移楚山. 在渭原時, 與謫客金魯亨面熟矣, 自謫逃竊, 漂遊四方, 掛凶書于華城, 譏詞被捉, 自華城捉送捕廳, 至於王府鞫問, 而前後供招皆以爲 “路逢金魯亨之八寸親魯信, 相與親熟, 仍作伴訪魯亨之弟魯鼎機張謫所, 受其書札, 傳于光陽故僉使姜昌一之子周喆. 昌一, 光陽之富民也, 將借其錢貨, 辦四五隻船, 又造火藥火箭等兵器, 以爲泛海稱兵之計, 金魯信爲都元帥, 諸將八十, 大兵十萬, 以此意掛榜于華城. 榜文則金魯信之自製手書者, 而渠使雇工李哲揭之云.” (…)

<순조실록 22권, 순조 19년(1819) 7월 18일(무인) 1번째기사>

### 정치/사법

#### 수원 유수 이경하가 이양선과 내통한 사고 죄인 이영중을 효수하여 경계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경하(李景夏)의 보고를 보니, ‘간혀 있는 죄인 이영중(李永中)은 원래 사도(邪徒)들의 괴수로서 얼마 전에 양선(洋船)이 구만포(九萬浦)에 와서 정박하고 있을 때에 놈들을 찾아가 만나고 수작질한 사실을 낱낱이 자복하였는데 이렇듯 흉측하고 간교한 놈을 감히 경솔하게 처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술(邪術)에 물들고 오락케 무리들과 내통하였으니 이것만 해도 벌써 만 번을 쳐 죽여도 부족한데 게다가 양선이 소동을 일으킬 때에 저놈들과 문답(問答)하였으니 그 정상이 흉악하고 고약합니다. 이영중을 공충도 수영(公忠道水營)에 압송해다가 효수(梟首)하여 군중들을 경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議政府啓: “即見水原留守李景夏所報, 則‘在囚罪人李永中, 自是邪徒之渠魁, 而向於九萬浦洋船來泊時, 往觀酬酌之狀, 一一輸款, 如此凶譎之漢, 不敢遽爾擅斷’云矣. 染邪而交通醜類, 此已爲萬戮而有餘誅矣. 況洋舶之滋擾也, 此問彼答, 情節凶悖. 李永中押送公忠水營, 請梟首警衆.” 允之.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6월 18일(갑자) 6번째기사>

## 정치/사법

### 부호군 이승택이 영부사 이유원을 무함한 것과 관련하여 원악도에 안치하라고 하다

부호군(副護軍) 이승택(李承澤)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작년 겨울에 전 장령(掌令) 손영로(孫永老)가 상소를 올려 영부사(領府事) 이유원(李裕元)을 규탄하였는데 천고의 극악한 죄명을 끌어모아 그의 한 몸에 덧씌워 놓았습니다. 계속하여 또 전 정언(正言) 정면수(鄭勉洙)가 화성(華城)의 비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규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원이 스스로 변명한 상소를 보면, 처음에는 조심태(趙心泰)의 집에서 은사(恩賜) 받은 물건을 사들였다고 하였다가 또 을축년(1865)에 문적(文蹟)을 상고하니 기부(記簿)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조씨 집안에서 은사 받은 물건이라면 어떻게 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1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공물(公物)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 돌로 묘비(墓碑)를 만든 것을 고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이 비석을 운반할 때 본 고장의 선비가 시를 지어 조소하고 공격하자, 많은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없고 술한 사람의 입은 막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몰래 다른 돌을 다듬어서 본래의 비석이라고 사칭하며 언덕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꾸며대어,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본영(本營)에 맡겼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도 부족하여 하늘까지 속이는 것입니다. 무엄하고 거리낌 없기가 어떻게 이런 극도에까지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으니 지위와 명망이 어떠합니까? 그런데도 전하의 유시를 빙자하여 의기양양하게 다시 벼슬 자리에 들어와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있는 단 말입니까? 만일 그에게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명(聖明)께서 좋고 나쁜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엄치를 장려하여 모든 관리들을 경책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방금 이승택의 상소를 보니 말이 흉악하고 속마음이 음흉하기가 어찌 이런 극도에까지 이른단 말인가? 대신이 그 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온 나라가 모두 알고 있다. 지난번 정면수의 상소가 극히 두서가 없었는데 이 자가 감히 또다시 황당한 말을 답습하여 꾸며대서 대신을 헐박하기를 이와 같이 무엄하게 하니 조정의 체면이 이지러지고 법과 규율이 무너진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우선 엄히 세 차례 형신(刑訊)한 뒤에 원악도(遠惡島)에 안치(安置)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전 직함을 가지고 상소를 올린 것을 봉입(捧入)하지 말도록 여러 번 신칙하였는데도 이렇게 봉입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봉납(捧納)한 승지를 금추(禁推)하라.” 하였다.

副護軍李承澤疏略: “昨冬, 前掌令孫永老疏斥領府事李裕元, 其所論列, 集千古宵小極罪, 叢萃一身. 繼又前正言鄭勉洙以華城碑石事, 有論彈. 而見其自明之疏, 則始言買趙心泰家恩賜物,

又言乙丑考見文蹟，懸在記簿。果是趙家恩賜，何爲懸在記簿，十年後始知爲公物乎？此石之作爲墓碑，邑人目見焉。此碑之移運也，本土士作詩譏斥，知其萬目莫掩，衆口難防。暗斷他石，冒稱本碑，埋置隴下，急於粧撰，敢曰不用而仍置，屬之本營。欺人之不足，至於欺天，無嚴無憚，胡至此極？彼居具瞻之地，位望何如？而憑託恩諭，揚揚復入，晏若無故。苟有一分彝性，寧容若是。伏乞聖明，明示好惡，礪廉恥而警具僚焉。” 教曰：“卽見李承澤疏，則遣辭之凶悖，用意之陰險，胡至此極？此大臣之不用此石，卽朝野所共知也。向來鄭勉洙之疏，已極無倫，而渠敢復襲謊說，構逼大臣，若是無嚴。朝體之乖敗，法網之頽墮，莫此爲甚。爲先嚴刑三次後，遠惡島安置。” 教曰：“前銜陳疏，勿爲捧入事，屢度申飭，而又如是捧入，是豈道理？捧納承旨禁推。”

<고종실록 12권, 고종 12년(1875) 1월 12일(을해)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유수 민영상이 도적의 무리를 도운 전 격포 첨사 신정균의 처벌을 아뢰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민영상(閔泳商)의 장계(狀啓)에,** ‘전 격포 첨사(前格浦僉使) 신정균(申定均)은 조관(朝官)의 신분으로서 도적 무리를 머물게 하고 먹을 것을 대 주었습니다. 비록 도적질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도적의 와주(窩主)에 대한 죄는 면하기 어려우니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해 주소서.’ 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이 자는 조관으로서 논할 수 없다. 영원히 사적(仕籍)에서 삭제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고 본부(本府)로 하여금 엄격히 조사하여 처단하게 하라.” 하였다.

**水原留守閔泳商狀啓:** “前格浦僉使申定均，身爲朝官，留接賊黨，饋給食物。雖無同參行賊之舉，難免竊盜窩主之律。其罪狀，令攸司稟處” 事。教曰：“此不可以朝官論，永刊仕籍，免爲庶人，令本府嚴覈處斷。”

<고종실록 29권, 고종 29년(1875) 12월 24일(무인) 3번째기사>

### 정치/사법

**양호 도순무영에서 수원 비적의 괴수 김내현 등을 효수하였다고 보고하다**

양호 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에서, ‘수원(水原) 비적(匪賊)의 괴수 김내현(金鼎鉉)과 안승관(安承寬)을 효경(梟警)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兩湖都巡撫營以“**水原匪魁金鼎鉉·安承寬梟警**” 啓.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0월 4일(정미) 4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대와 원주대처럼 각 도에 지방 군사를 증설하는 건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22호, <각 도에 지방 군사를 증설하는 건 [各道地方兵增置件] > 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각 도에 있는 역토(驛土)와 폐지된 각 영(營), 읍(邑), 진(鎭), 보(堡)에 소속된 둔(屯)과 포(砲) 등 공토(公土) 각 향의 식리전(殖利錢)을 일체 조사하고, 각 도의 요해지에 지방 군사를 두되 위치는 여덟 곳에 나누어 두며 부대의 이름은 지방의 명칭에 따라서 아무 아무 지방 대(隊)라고 부르니, **수원대(水原隊), 원주대(原州隊)와 같다.** 편제는 친위대(親衛隊)와 진위대(鎭衛隊)의 규례를 대략 모방하며 장교와 군사수, 군량 및 급료는 획일적으로 규정한다.】

勅令第二十二號， 各道地方兵增置件。 裁可頒布。【各道所在驛土及廢止之各營邑鎭堡所屬屯砲

等，公土各項殖利錢，一體調查，各道要害處設置。地方兵而位置，則分以八處，隊號則從地方，稱以某某地方隊如水原·原州隊之類，編制則略倣親衛鎮衛隊規例，而將校及兵額餉料，劃一規正事】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6월 14일(양력) 2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에 당도하여 곽중석이 한일 협상 조약을 맺은 대신들을 처벌하라고 상소하다

죽지 못한 신하 곽중석(郭鍾錫)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부르튼 발을 끌고 병을 앓으면서 가다가 수원(水原)에 당도하여 삼가 폐하의 비답을 받들었습니다. (…)” 하였다.

未死臣郭鍾錫疏略：臣曳跣吟病，行至水原地，伏承聖批下者。(…)

<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12월 14일(양력) 5번째기사>

#### 정치/사법

피고 이종학이 서태운 등과 함께 수원으로 달아나 체포되었다고 하다

(…) 피고 이종학은 같은 달 초에 서태운의 모집에 응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같은 달 12일에 서문 바깥 길에서 서태운과 성명을 모르는 8인과 함께 각각 총과 몽둥이를 들고 대신을 죽일 생각으로 함께 지키다가 손대지 못했고, 서태운 등과 함께 통진(通津) 지방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50냥을 뺏어 가지고 나올 때 그 동리 사람들이 붙잡기 위하여 포위하고 총을 쏘기 때문에 서태운도 총을 쏘고 함께 도주하여 수원(水原) 지방으로 달아나 체포되었습니다.(…)

(…) 被告李鍾學은 同月初에 徐泰云에게 應募上京하야 同月十二日에 西門外路上에서 與徐泰云及姓名不知八人은로 各持銃棒하고 大臣을 邀擊할 意로 同爲佇待하다가 未及着手하고 與徐泰云等으로 通津地姓名不知人家에 討取五十兩錢하야 出去之際에 該洞人이 欲爲捕縛하야 圍住放砲故로 徐泰云이 亦爲放砲하고 同爲趕走하야 行到水原地被捉하얏스며 (…)

<고종실록 48권, 고종 44년 7월 6일(양력) 3번째기사>

#### 정치/사법

수원의 유생 송병두 등이 송덕상에 대하여 상소를 올리다

수원의 유생 송병두(宋秉斗)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의 가문은 지극한 원통함을 품은 지가 120여 년이나 되는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우울하게 지내왔습니다. 지금 새로운 교화가 널리 퍼져 원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풀어주니 이는 신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때입니다. 신의 5대조인 송덕상(宋德相)은 영조(英祖), 정조(正祖) 두 임금 때에 발탁되는 은혜를 두터이 입어 벼슬이 이조 판서(吏曹判書)까지 이르렀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감격스러워 말을 숨김없이 다하곤 하였는데, 일편단심이 도리어 아침꾼의 모함에 빠져서 일흔의 늙은 나이에 옥중에서 말라 죽을지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 정조 기해년(1779) 원빈 홍씨(元嬪洪氏)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신의 선조는 왕세자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상소문을 썼는데, 상소를 올리기 전에 홍국영(洪國榮)이 신의 선조의 조카인 송환억(宋煥億)을 통하여 소본(疏本)을 보여 달라고 하기에 그 글을 보내서 보여 주었습니다. 홍국영은 그것을 제멋대로 고쳐가지고 송환억을 시켜 곧장 올리게 하였고 비답까지 받았습니다. 그 즉시로 상소문을 개찬(改撰)한 잘못을 규탄하려 하였으나 사체가 중대한지라 우선 함구하였던 것입니다.

경자년(1780)에 홍국영이 패망하여 죽은 후 정승 서명선(徐命善)은 홍국영을 공격하기에 급급해서 신의 선조까지 아울러 함정에 밀어 넣었으며, 처음 북쪽 변방에 귀양갔을 때는 또 붙잡아오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의 선조는 친국(親鞫)을 받는 기회에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바랐으나 마침내 옥중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신의 선조인 송덕상의 고충과 정성은 천지에 귀신에게 질정해 보아도 될 것이었지만, 당인(黨人)에게 무함을 당하여 원통함을 품은 채 죽었고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지도 못하였으므로 지금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원통해 합니다. 더구나 그의 자손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정조 임인년(1782) 8월 연석(筵席)에서 하교하시기를, ‘홍국영의 사건 전말은 미세한 문제까지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송덕상의 소초(疏草)는 홍국영의 손에서 나온 것이니, 거간자(居間者)를 시켜 그것을 정서하여 곧바로 올리게 하라.’ 고 하였으니, 임금의 말씀이 거룩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책에 명백히 있는데도 신의 선조가 원한을 풀지 못한 것은 화를 입은 끝에 자손들이 유리(流離)하느라 대궐문 앞에 가서 원통함을 호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어찌 통분하고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신의 선조가 죄 아닌 죄에 죽은 것을 살피시어 크게 용서하시고 원통함을 시원하게 풀어주소서. 그렇게 된다면 비단 죽은 이의 원한을 완전히 풀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국가의 정사로서도 후세의 역사에 빛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하였다.

**水原儒生宋秉斗**等疏略: “臣家抱至冤極痛者, 百二十有餘年矣, 沫血飲泣, 鬱而又艦. 今當新化霈行, 有冤必伸, 此臣等再生之秋也. 臣五世祖臣德相, 厚被英祖·正祖兩聖朝拔擢之恩, 官至吏曹判書. 受恩感激, 盡言不諱, 詎料一片丹衷, 反爲佞人所陷七十大耄之年, 瘐死獄中? 嗚呼! 正廟己亥, 元嬪洪氏卒逝, 臣先祖疏陳廣儲嗣之道, 疏未上, 國榮因臣先祖從子煥億, 要見疏本, 故使之送示矣. 國榮擅自變幻, 使煥億直爲呈上, 既承聖批矣. 直欲駁其改撰之非, 事體重大, 姑且含默矣. 及庚子, 國榮敗黜身死, 則相臣徐命善, 急於攻國榮, 竝與臣先祖而擠之坑塹. 初竄北塞, 又有拿命. 臣先祖冀其親鞫, 暴白心事, 竟乃病死獄中. 臣先祖德相苦衷血誠, 可質天地鬼神, 而爲黨人構誣, 含冤而死, 心事無以暴白於天下, 至今人士, 莫不冤之. 況爲其子孫者哉? 正廟壬寅八月筵教, 若曰‘國榮顛末, 至於微事細節, 予或豈不聞知? 德相疏草, 出於國榮, 使居間者正書直呈’. 大哉王言! 昭在史冊, 而臣先祖之未蒙伸雪者, 禍斃之餘, 子孫流離, 不得叫閭號冤也, 豈不痛惜哉? 伏願皇上察臣先祖之死非其罪, 降大霈而快雪其冤, 則非第九泉之恨, 可以昭洩, 抑亦國家明核之政, 有光於後史矣云”云. 批曰: “省疏具悉.”

<순종실록 1권, 순종 즉위년 12월 29일(양력) 2번째기사>

#### (4) 군사

##### 정치/군사

##### 경기 수군 도절제사의 건의로 강화·교동의 토지를 군자전에 이속시키다

경기 수군 도절제사(京畿水軍都節制使) 최용화(崔龍和)가 강화(江華)·교동(喬桐)의 전지를 모두 군자전(軍資田)에 붙이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언(上言)은 이러하였다. “강화(江華)·교동(喬桐)은 나라의 문호(門戶)가 되므로, 해구(海寇)가 기전(畿甸)을 엿보면 반드시 이곳을 경유합니다. 그러므로 전함(戰艦)을 머물러 두어서 불의의 변을 방지하는 것은 진실로 적절한 계책입니다. 그러나 풍해도(豐海道)·충청도의 연해 지방에 왜적이 불의에 나와서 갑자기 침입(入侵)하면, 즉시 배가 나가서 뒤쫓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래 군사의 양식이 없어서 반드시 군인들로 하여금 아주(牙州)·연안(延安)·수원(水原)·광주(廣州)에서 급료(給料)를 받게 합니다. 이리하여 비록 급한 일을 당할지라도 지연하여 기회를 잃는 것은 진실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 전조(前朝)에서는 불의의 사변을 만나면 온 나라가 강화(江華)에 입보(入保)하였었으니, 어찌 식량의 저축이 없이 그리하였겠습니까? 청컨대, 두 고을의 전지 가운데 문선왕(文宣王)의 위전(位田)과 아록전(衙祿田)·공수전(公須田)을 제외하고, 각품의 과전(科田) 2천 3백 70결과 여러 창고(倉庫)의 속전(屬田) 7백 20결을 육지로 옮겨서 지급하고, 이들 전지를 모조리 군자전(軍資田)에 붙여서 해마다 그 세입을 거두어 산성(山城)에 저장하여 불의의 변에 대비하소서.” 임금이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모두 옳다고 하였다.

○壬申/京畿水軍都節制使崔龍和，請將江華·喬桐田地，悉屬軍資，從之。上言：江華·喬桐爲國門戶，海寇窺伺畿甸，則必由乎此。故留泊戰艦，以備不虞，誠得其策。然豐海·忠清濱海之地，倭賊出其不意，突入侵逼，則宜即發船追逐，第因素無兵食，必使軍人受料於牙州·延安·水原·廣州。是以雖當急遽，淹延失期，職此由也。且前朝逢不虞之變，舉國入保於江華，豈無所畜而然歟？請以二邑田地，除文宣王位田·衙祿公須外，各品科田二千三百七十結·諸倉庫屬田七百二十結，移給陸地，悉屬軍資，歲收其入，貯於山城，以備不虞。

下政府議之，皆以爲然。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1월 29일(임신)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세종이 수원과 광주 등으로 군사훈련 가려하자 조말생이 만류하다

병조 판서 조말생(趙末生)과 지신사 곽존중(郭存中)이 계하기를, “황해도의 금년 벼농사가 풍년이니, 명년 봄의 강무(講武)는 해주(海州)로 거동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 들으니, 작년에 해주 등지의 기근이 더욱 심하여, 유아를 버리고 사망으로 흩어진 사람이 자못 많다 하니, 나는 지극히 불쌍히 여겨 차마 <그 곳으로> 사냥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수원(水原)·광주(廣州) 등지에 거동하여 잠간 군사를 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말생 등이 아뢰기를, “해주 등지가 작년에는 비록 흉년이 들었으나, 금년에는 풍년이므로 해주로 거동하자고 한 것입니다. 수원과 같은 곳은 강무할 지대가 아니고, 해주로 거동하시지 아니하면 횡천(橫川) 등지도 또한 강무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장차 횡천으로 거동할 터이니 경들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兵曹判書趙末生·知申事郭存中啓曰：“黃海道今年禾穀登稔，明年春等講武，請幸海州。”上曰：“予聞前年海州等處飢饉尤甚，至棄乳兒，散而之四方者頗多，予甚惻然，不忍往畋，故



欲幸於水原·廣州等處，暫講武事。” 末生等曰：“海州等處，去年雖歉，今年乃登，故望幸於海州。若水原等處，非講武之地，不幸於海州，則橫川等處，亦可以講武。” 上曰：“吾將幸於橫川，卿等更議以聞。”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1월 15일(병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경기의 안산·수원 등지에 해일이 일어나 땅이 물에 잠기다

경기의 안산(安山)·수원(水原)·인천(仁川)·부평(富平)·강화(江華) 등지에 해일이 일어나 혹은 2백여 보(步), 혹은 1백여 보, 혹은 50여 보가 물에 잠기었다.

○京畿安山·水原·仁川·富平·江華等官海水加潮，漲沒或二百餘步，或百餘步，或五十餘步。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1월 20일(신묘)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의정부에서 봄·가을에 1도의 1도회에서 염초를 구워내도록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군기감(軍器監)에서 염초(焰硝)를 구워 내는 방법은 이보다 먼저 각도(各道)에서 도회(都會)를 두고 일정한 장소[常所]로 정하였으니, 다만 도회(都會)의 읍(邑)만 해마다 폐해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속된 군현(郡縣)이 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무릇 염초(焰硝)에 소용되는 흙과 준비해 두었다가 쓰는 잡물(雜物)을 수송 운반하는 즘음에는 온 경내(境內)가 소요(騷擾)하여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다단(多端)하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각기 그 부근 지방에 도회(都會)를 나누어 두고는, 해마다 봄·가을에 1도(道)의 1도회(都會)에서 염초(焰硝)를 구워 내게 하고, 한 차례 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번갈아 가면서 휴식(休息)하도록 하소서. 경기(京畿)는 양천(陽川)·김포(金浦)·통진(通津)·강화(江華)·교동(喬桐)은 배로 실어 나르기가 편이(便易)하고, 과천(果川)·금천(衿川)·인천(仁川)·고양(高陽)·부평(富平)·안산(安山)은 길이 멀지 않으니 모두 사포국(司豹局)에 흙을 운반하게 하고, 수원부(水原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남양(南陽)·진위(振威)·양성(陽城)·죽산(竹山)·용인(龍仁)·양지(陽智)·음죽(陰竹)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광주(廣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여흥(驪興)·양근(楊根)·가평(加平)·천녕(川寧)·지평(砥平)·이천(利川)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양주부(楊州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포천(抱川)·영평(永平)·연천(漣川)·삭녕(朔寧)·임강(臨江)과 강원도(江原道)의 철원(鐵原)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원평부(原平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교하(交河)·임진(臨津)·장단(長湍)·적성(積城)·마전(麻田)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개성부(開城府)는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 의거하여 해마다 염초(焰硝)를 구워 내게 하고, 부근에 있는 풍덕군(豐德郡)으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 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據兵曹呈啓：“軍器監焰硝煮取之法，前此於各道，置都會，定爲常所，非唯都會之邑，每年受弊，所屬郡縣，道途遙隔，凡焰硝土，及供用雜物，輸轉之際，合境騷擾，民弊多端。請自今各以附近，分置都會，每年春秋一道一都會煮取，周以復始，更迭休息。京畿則陽川·金浦·通津·江華·喬桐，漕輸便易，果川·衿川·仁川·高陽·富平·安山，道路不遠，皆輸土于司豹局，水原府爲一都會，以南陽·振威·陽城·竹山·龍仁·陽智·陰竹屬之，廣州爲一都會，以驪興·楊根·加平·川寧·砥平·利川屬之，楊州府爲一都會，以抱川·永平·漣川·朔寧·臨江及江原道鐵原屬之，原平府爲一都會，以交河·臨津·長湍·積城·麻田屬之，開城府，

則依舊例，每年煮取，以附近豐德郡屬之。(…)” 從之.

<문종실록 3권, 문종 즉위년 9월 19일(경신) 8번째기사>

### 정치/군사

#### 병조에서 각도의 내지에도 거진을 설치하고 인근 고을을 익에 분속시킬 것을 청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각도(各道) 연해(沿海)의 요해지(要害地)에는 진(鎭)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두어 그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주현(州縣)에는 아직 진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구적(寇賊)이 발생하여 변진(邊鎭)이 감히 이를 막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마구 들어와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밟는 것처럼 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내지(內地)에도 적당히 요량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근방(近方)의 여러 고을을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에 분속시키도록 하소서. 그 익(翼)을 나눌 여러 고을과 절목(節目)은 뒤에 갖추어 기록하였습니다.

1. 경기(京畿)의 광주도(廣州道)는 그 중익(中翼)을 광주(廣州)·이천(利川)·양근(楊根)·양지(陽智)로 하고, 좌익(左翼)은 여흥(驪興)·천녕(川寧)·지평(砥平)·음죽(陰竹)으로 하며, 우익(右翼)은 안성(安城)·진위(振威)·양성(陽城)·용인(龍仁)·죽산(竹山)으로 합니다. 다음 양주도(楊州道)는 그 중익을 양주(楊州)·원평(原平)·포천(抱川)·적성(積城)·가평(加平)으로 하고, 좌익은 삭녕(朔寧)·마전(麻田)·영평(永平)·연천(漣川)으로 하고, 우익은 풍덕(豐德)·장단(長湍)·임진(臨津)·임강(臨江)으로 합니다. 다음 부평도(富平道)는 그 중익을 부평(富平)·인천(仁川)·양천(陽川)·금천(衿川)·고양(高陽)으로 하고, **좌익은 수원(水原)·남양(南陽)·안산(安山)·과천(果川)으로 하며**, 우익은 김포(金浦)·교하(交河)·통진독진(通津獨鎭)·교동(喬桐)·강화(江華)·개성부(開城府)로 합니다. (…)

○兵曹啓: “諸道沿海要害之處，皆設鎭置將以固戍禦，腹裏州縣未嘗設鎭，若寇賊竊發，邊鎭莫敢(枝) [抵] [梧] [扈]，則必將闌入如蹈無人之境，不可不慮。請於內地量置巨鎭，以旁近諸邑，分屬爲中左右翼。其分翼諸邑及節目具錄于後。一. 京畿廣州道，中翼廣州·利川·楊根·陽智，左翼驪興·川寧·砥平·陰竹，右翼安城·振威·陽城·龍仁·竹山。楊州道，中翼楊州·原平·抱川·積城·加平，左翼朔寧·麻田·永平·漣川，右翼豐德·長湍·臨津·臨江。富平道，中翼富平·仁川·陽川·衿川·高陽，左翼水原·南陽·安山·果川，右翼金浦·交河·通津獨鎭·喬桐·江華·開城府。(…)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1일(계미)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상소하여 수원과 양주 등의 판관과 진의 설치에 관해 상소하다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상소(上疏)하기를, (…)

**1. 제주(諸州)의 판관(判官)입니다. 대개 관(官)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큰 주(州)는 부서(簿書)가 구름처럼 쌓이고 사객(使客)이 때를 지어 모이니 수령 한 몸으로는 어느 겨를에 농사를 권장하며, 어느 틈에 송사를 청리(聽理)하겠습니까? 의창(義倉)이 염산(斂散)을 호활(豪猾)한 이에게 위임하여 백성의 해(害)된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빌건대 경기(京畿)는 수원(水原)·양주(楊州)에, 경상도는 선산(善山)·성주(星州)·김해(金海)·밀양(密陽)에, 전라도는 광주(光州)·남원(南原) 등의 고을에 특별히 판관(判官)을 두게 하소서.**

(…) 또 부평부(富平府)는 비록 옛 안남(安南) 땅이라 하더라도 오늘에 있어서는 실제 관계

되는 것이 없는데, 원평부(原平府)는 임진(臨津)의 험한 곳에 웅거하고, 또 교하(交河)를 제후하고 풍덕(豐德)을 끝음으로써 왜구(倭寇)를 해구(海口)에서 액수(扼守)할 만합니다. 수원부(水原府)는 본시 관찰사(觀察使)의 관사를 둔 땅이며, 전조(前朝)에 홍적(紅賊)이 남하(南下)할 때에는 여기를 경유하여 사통 오달(四通五達)할 땅이니, 빌건대 전조의 좌보(左輔)·우보(右輔)의 예(例)에 따라 양주(楊州)를 후보(後輔)로 삼고, 수원(水原)을 전보(前輔)로 삼고, 광주(廣州)를 좌보(左輔)로 삼고, 원평(原平)을 우보(右輔)로 삼으면, 전후 좌우에 모두 거진(巨鎭)이 있으되 동남의 2진(二鎭)은 강외(江外)에 있고, 서북의 2진은 강내(江內)에 있어, 남북의 형세가 고르고 경사(京師)가 더욱 장대(壯大)할 것입니다.

(…) 1. 제도(諸道)에 진(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개 신이 그옥이 생각하건대, 방금 진(鎭)을 설치하였으나, 또 마땅히 설치할 곳이 여덟이고, 마땅히 감할 곳이 하나이며, 합병하여 1진(鎭)으로 할 곳이 둘이고, 스스로 1진이 될 곳이 하나입니다. 평안도 자성(慈城) 같은 곳은 여연(閔延)·무창(茂昌)·우예(虞芮)의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이 되니, 마땅히 스스로 1진이 될 만한 곳입니다. 대저 제도(諸道)의 주군(州郡)에 모두 익·진(翼鎭)을 설치하였는데, 이미 요긴한 군(郡)이 아니면 각각 자체가 하나의 진으로 될 필요가 없으며, 황해도 장연(長淵)·풍천(豐川)·강령(康翎)과 웅진(甕津)은 마땅히 각각 합병하여 1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경기(京畿) 부평부(富平府)는 반드시 진(鎭)을 설치할 곳이 아니며, 평안도 희천(熙川)에 이르러서는 적유령(狄踰嶺)이 웅거(雄據)하고, 박천(博川)은 대강(大江)이 있으며, 삼등(三登)은 평양(平壤)의 동북로(東北路)의 요해(要害)이며, 함길도(咸吉道) 회령(會寧), 동창(童倉)의 구거(舊居)와 황해도 서흥(瑞興)은 절령(岳嶺)에 웅거하고, 경기 수원(水原)은 남로(南路)의 요충(要衝)이며, 원평(原平)은 임진(臨津)에 의지하고, 경상도 울산(蔚山)은 왜선(倭船)이 이르러 정박하는 곳이며, 또 왜인(倭人)이 거류(居留)하고 있으니, 모두 마땅히 진(鎭)을 설치할 곳입니다.(…)

一，諸州判官。蓋張官置吏，本以爲民也。今大州簿書雲委，使客全集，守令以一身何暇勸農事，何暇聽詞訟？義倉斂散，委之豪猾，斯民之害不可勝言。乞於京圻水原·楊州·慶尙道善山·星州·金海·密陽·全羅道光州·南原等州，特設判官。(…) 且富平府，雖古安南之地，在今日實無所係，原平府據臨津之險，又可以提交河挈豐德，而扼倭寇於海口也。水原府本觀察置司之地，前朝紅賊之南下，必由乎此，而四通五達之地也。乞依前朝左右輔例，以楊州爲後輔，水原爲前輔，廣州爲左輔，原平爲右輔，則前後左右皆有巨鎭，而東南二鎭在江外，西北二鎭在江內，南北之勢均，而京師益壯矣。(…) 一，諸道置鎭。蓋臣竊料，方今置鎭，又當置者八·當減者一·可併爲一鎭者二·可自爲一鎭者。一如平安道慈城，爲閔延·茂昌·虞芮賊路之衝，當自爲一鎭者也。大抵諸道州郡，皆設翼鎭，旣非要郡，則不必各自爲一鎭，黃海道長淵與豐川·康翎與瓮津，當各併爲一鎭者也。且京畿富平府，不必置鎭處也，至於平安道熙川據狄踰嶺，博川有大江，三登則平壤東北路要害，咸吉道會寧童倉舊居，黃海道瑞興據岳嶺，京畿水原南路要衝，原平據臨津，慶尙道蔚山，倭船到泊之處，且有留居倭人，皆當置鎭者也。(…)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28일(정유) 3번째기사>

## 정치/군사

**병조의 건의로 수원진에 부평, 인천 등을 속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지(傳旨)를 받들어 제도(諸道)의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을 혁파하고, 양탁(量度)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소속된 바의 모든 고을을 마 감하여 계문(啓聞)합니다. (…)

경기(京畿)의 수원진(水原鎭)에는 부평(富平)·인천(仁

川)·금천(衿川)·안산(安山)·남양(南陽)·진위(振威)·안성(安城)·양성(陽城)을 속하게 하고, 광주진(廣州鎭)에는 양근(陽根)·지평(砥平)·천녕(川寧)·여흥(驪興)·음죽(陰竹)·죽산(竹山)·이천(利川)·양지(陽智)·용인(龍仁)을 속하게 하며, 양주진(楊州鎭)에는 연천(漣川)·마전(麻田)·적성(積城)·원평(原平)·교하(交河)·고양(高陽)·수평(水平)·포천(抱川)·가평(加平)을 속하게 하며, 강화진(江華鎭)에는 김포(金浦)·양천(陽川)·통진(通津)·교동(喬桐)을 속하게 하며, 개성진(開城鎭)에는 삭녕(朔寧)·임진(臨津)·풍덕(豐德)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兵曹啓: “今奉傳旨, 革諸道中·左·右翼, 量置巨鎭, 所屬諸邑磨勘具聞. (…)  
京畿水原鎭富平·仁川·衿川·安山·南陽·振威·安城·陽城, 廣州鎭楊根·砥平·川寧·驪興·陰竹·竹山·利川·陽智·龍仁, 楊州鎭漣川·麻田·積城·原平·交河·高陽·(水平) [永平]·抱川·加平, 江華鎭金浦·陽川·通津·喬桐, 開城鎭朔寧·臨津·豐德.(…) 從之.  
<세조실록 9권, 세조 3년 10월 20일(경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부장 황석생 등을 개성·수원·양주·광주에 보내 각진의 습진을 살피게 하다**

부장(部長) 황석생(黃石生)을 개성부(開城府)에, 허향손(許享孫)을 수원에, 이숙기(李叔琦)를 양주(楊州)에, 정산휘(鄭山彙)를 광주(廣州)에 보내어 제진(諸鎭)의 습진(習陣)하는 것을 보게 하였다.

○遣部將黃石生于開城府, 許享孫于水原, 李叔琦于楊州, 鄭山彙于廣州, 觀諸鎭習陣  
<세조실록 11권, 세조 4년 1월 20일(기묘) 3번째기사>

### 정치/군사

**병조에서 여러 진에 인을 주조하여 줄 것을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경상도 절제사(慶尙道節制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안동부(安東府)가 비록 거진(巨鎭)이 되지마는 다른 동래(東萊)·연일(延日) 등 군사가 있는 여러 진(鎭)의 예(例)는 아니니 군관(軍官)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군정(軍情)의 공사(公事)를 맡아 볼 때는 모름지기 진인(鎭印)을 사용해야 되니, 청컨대 안동진(安東鎭)이란 세 글자를 새긴 인(印)을 주조(鑄造)하여 보내게 하고, 그 밖에 전라도(全羅道)의 나주(羅州)·장흥(長興)·광주(光州)·남원(南原)·전주(全州)와, 경상도(慶尙道)의 울산(蔚山)·창원(昌原)·대구(大丘)·진주(晉州)·성주(星州)·상주(尙州)와, 충청도(忠淸道)이 공주(公州)·충주(忠州)·홍주(洪州)·천안(天安)·청주(淸州)와, 경기(京畿)의 수원(水原)·광주(廣州)·양주(楊州)·강화(江華)·개성부(開城府)와, 황해도(黃海道)의 해주(海州)·황주(黃州)·수안(遂安)과, 강원도(江原道)의 강릉(江陵)·원주(原州)·회양(淮陽)·춘천(春川)과, 평안도(平安道)의 평양(平壤)·성천(成川)·안주(安州)·정주(定州)·귀성(龜城)·의주(義州)·삭주(朔州)와, 함길도(咸吉道)의 안변(安邊)·영흥(永興)·함흥(咸興) 등과 같은 여러 진(鎭)에도 또한 안동진(安東鎭)의 예(例)에 의거하여 인(印)을 주조(鑄造)하여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兵曹據慶尙道節制使啓本啓: “安東府雖爲巨鎭, 非他東萊·延日有軍士諸鎭例, 不必置軍官. 若尙當軍情公事時, 須用鎭印, 請鑄送安東鎭三字印, 他如全羅道羅州·長興·光州·南原·全州·慶尙道蔚山·昌原·大丘·晉州·星州·尙州·忠淸道公州·忠州·洪州·天安·淸州·京畿水原·廣州·楊州·江華·開城府·黃海道海州·黃州·遂安·江原道江陵·原州·淮陽·春

川·平安道平壤·成川·安州·定州·龜城·義州·朔州·咸吉道安邊·永興·咸興等諸鎮，亦依安東鎮例鑄給。”從之。

<세조실록 17권, 세조 5년 7월 11일(경인)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부사 등에게 군사들에게 주는 조정을 논의하게 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윤자운(尹子雲)·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수원 부사(水原府使) 강로(姜老)에게 명하여 군사(軍士)들에게 주는 조정(助丁)을 의논하였다.

○命兵曹判書尹子雲·都承旨盧思愼·水原府使姜老議給軍士助丁。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2일(임자)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병조에서 군기를 상정하여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군기(軍器)를 상정(詳定)하여 아뢰기를, (…)수원(水原)·강화(江華)·남양(南陽)·공주(公州)·청주(淸州)·태안(泰安)·울산(蔚山)·함양(咸陽)·풍기(豐基)·함천(陝川)·영천(永川)·흥해(興海)·청도(淸道)·영해(寧海)·영일(迎日)·웅천(熊川)·선산(善山)·창원(昌原)·부안(扶安)·무장(茂長)·영암(靈巖)·영광(靈光)·낙안(樂安)·금산(錦山)·흥양(興陽)·황주(黃州)·연안(延安)·장연(長淵)·평산(平山)·원주(原州)·삼척(三陟)·영흥(永興)·정평(定平)·경성(鏡城)·안변(安邊)·정주(定州)·성천(成川)·숙천(肅川)·영변(寧邊)에는 각기 향각궁(鄉角弓) 46장(張), 마전(磨箭)·통전(筒箭) 각 23부(部), 장창(長槍) 18자루, 중창(中槍) 26자루, 환도(環刀) 46과(把), 궁현(弓弦) 92개, 철갑(鐵甲) 3령(領), 대쟁(大錘) 1개, 중쟁(中錘)·소쟁(小錘) 각 2개, 고(鼓) 2개, 대각(大角)·소각(小角) 각 2개이고, (…)

○兵曹詳定軍器以啓：(…) 水原·江華·南陽·公州·淸州·泰安·蔚山·咸陽·豐基·陝川·永川·興海·淸道·寧海·迎日·熊川·善山·昌原·扶安·茂長·靈巖·靈光·樂安·錦山·興陽·黃州·延安·長淵·平山·原州·三陟·永興·定平·鏡城·安邊·定州·成川·肅川·寧邊，各鄉角弓四十六張·磨箭·筒箭各二十三部·長槍十八柄·中槍二十六柄·環刀四十六把·弓弦九十二箇·鐵甲三領·大錘一·中·小錘各二·鼓二·大·小角各二。(…)

<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7월 12일(신사) 5번째기사>

### 정치/군사

#### 조신손에게 수원의 북재·치악 등지의 도적을 수색하게 하다

행 부호군(行副護軍) 조신손(趙信孫)을 보내어, 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 아울러 20인, 장용대(壯勇隊)·파적위(破敵衛) 아울러 20인을 거느리고, 적인(賊人)을 수원(水原)의 북재(北材)·치악(鷓岳) 등지에서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遣行副護軍趙信孫，領別侍衛甲士并二十人·壯勇隊·破敵衛并二十人，搜捕賊人于水原北材·鷓岳等處。

<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 4월 5일(갑오)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병조에서 지금의 군액 및 분번할 수와 3도 군정의 감액할 수 등을 기록하여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 경기(京畿)에 있어서, 지평(砥平)은 제색 군사가 25이고, 양천(陽川)은 21이고, 영평(永平)은 21이고, 김포(金浦)는 21이고, 부평(富平)은 2백 7이고, 가평(加平)은 51이고, 진위(振威)는 1백 36이고, 파주(坡州)는 1백 7이고, 죽산(竹山)은 1백 84이고, 교동(喬桐)은 36이고, 과천(果川)은 55이고, 마전(麻田)은 10이고, 용인(龍仁)은 1백 72이고, 양주(楊州)는 2백 62이고, 삭녕(朔寧)은 93이고, 양성(陽城)은 2백 18이고, 포천(抱川)은 89이고, 인천(仁川)은 89이고, 안성(安城)은 1백 91이고, 양근(楊根)은 59이고, 안산(安山)은 55이고, **수원(水原)은 1천 2백 49이고**, 양지(陽智)는 92이고, 적성(積城)은 25이고, 강화(江華)는 2백 50이고, 음죽(陰竹)은 1백 47이고, 연천(漣川)은 55이고, 광주(廣州)는 2백 45이고, 풍덕(豐德)은 1백 17이고, **남양(南陽)은 1백 98이고**, 여주(驪州)는 2백 31이고, 이천(利川)은 2백 57이고, 통진(通津)은 1백 1이고, 교하(交河)는 1백 27이고, 개성(開城)은 7백 28이고, 고양(高陽)은 1백 67이고, 금천(衿川)은 55이고, 장단(長湍)은 1백 38인데, **아울러 예전대로 하여 총계가 6천 3백 73입니다.**(….)

○兵曹啓: (….) 京畿砥平諸色軍士二十五, 陽川二十一, 永平二十一, 金浦二十一, 富平二百七, 加平五十一, 振威一百三十六, 坡州一百七, 竹山一百八十四, 喬桐三十六, 果川五十五, 麻田十, 龍仁一百七十二, 楊州二百六十二, 朔寧九十三, 陽城二百十八, 抱川八十九, 仁川八十九, 安城一百九十一, 楊根五十九, 安山五十五, 水原一千二百四十九, 陽智九十二, 積城二十五, 江華二百五十, 陰竹一百四十七, 漣川五十五, 廣州二百四十五, 豐德一百十七, 南陽一百九十八, 驪州二百三十一, 利川二百五十七, 通津一百一, 交河一百二十七, 開城七百二十八, 高陽一百六十七, 衿川五十五, 長湍一百三十八, 竝仍舊摠計六千三百七十三. (….)

<성종실록 3권, 성종 1년 2월 30일(기묘)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개성부 유수 유순·경기 관찰사 김제신 등에게 하서하여 북정 일정을 통지하다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유순(柳洵)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김제신(金悌臣)과 강원도 관찰사 김여석(金礪石)과 충청도 관찰사 홍흥(洪興)과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 조숙기(曹淑沂)와 전라도 관찰사 김극검(金克儉)과 병마 절도사 신주(辛鑄)와 경상도 관찰사 정승조(鄭崇祖)와 좌도 병마 절도사(左道兵馬節度使) 하숙부(河叔溥)와 우도 병마 절도사(右道兵馬節度使) 조극치(曹克治)와 영안남도 절도사(永安南道節度使) 변종인(卞宗仁)과 북도 절도사(北道節度使) 성준(成俊)에게 하서(下書)하기를,

“(….) 내가 기업(基業)을 계승함으로부터 문교(文教)를 크게 밝혔으니, 어찌 군사를 일으키고 군대를 동원(動員)하여 오로지 무위(武威)만을 과시(誇示)하려고 하겠는가? 교린(交隣)하고 사대(事大)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오랑캐가 우리 국경(國境)에 인접(隣接)해 있는 것에 있어서도 피차(彼此)의 차별이 없이 은혜와 신의(信義)로써 무마(撫摩)했는데도 도리어 이 북쪽 오랑캐는 악한 일을 쌓아서 은혜를 저버리고서 지난해에 우리의 무이보(撫夷堡)를 침범하였다. 그러나 좀도둑은 대적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여 내버려 두고 문죄(問罪)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또 조산보(造山堡)를 침범하여 우리의 진장(鎭將)을 살해하고, 우리의 백성을 죽이고 우리의 가축(家畜)을 빼앗아갔다. 그러므로 변성(邊城)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이를 갈면서 모두가 한 번 군사를 일으켜 나라의 위광(威光)을 잠시 보이기를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생각하건대, 이같이 하는데도 토벌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당당(堂堂)한 군대의 위세(威勢)로써 어찌 보잘것 없는 오랑캐에게 굴욕(屈辱)받는 것을 견딜 수가 있겠는가? 마땅히 죄를 묻는 군대를 일으

켜 범을 범한 자에게 대한 형벌을 빨리 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허중(許琮)을 도원수(都元帥)로 삼고, 성준(成俊)과 이계동(李季全)을 부원수(副元帥)로 삼아, 금년 10월에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바로 그 굴혈(窟穴)을 공격하여 무찔러 없애버리고야 말겠다.

지금 병부(兵符)를 보내니, 합해 조사하여 경기(京畿)의 남양(南陽)·수원(水原)·양성(陽城)·진위(振威)·용인(龍仁)·안산(安山)·음죽(陰竹)·여주(驪州)·이천(利川)·지평(砥平)·양근(楊根)·가평(加平)·영평(永平)·포천(抱川)·양주(楊州)·광주(廣州)·과천(果川)·금천(衿川)·죽산(竹山)·양지(陽智)·마전(麻田)·연천(漣川)·인천(仁川) 등의 고을의 군사는 9월 초 2일에 길을 떠나서 같은 달 24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개성부(開城府)의 군사는 9월 초 3일에 길을 떠나서 같은 달 24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 하였다.

○敎開城府留守柳洵·京畿觀察使金悌臣·江原道觀察使金礪石·忠清道觀察使洪興·兵馬節度使曹淑沂·全羅道觀察使金克儉·兵馬節度使辛鑄·慶尙道觀察使鄭崇祖·左道兵馬節度使河叔溥·右道兵馬節度使曹克治·永安南道節度使卞宗仁·北道節度使成俊曰：“(…) 予自繼承基構，誕脩文教，豈欲興兵動衆，專耀武威？交隣事大，罔不盡心，至於夷虜之接於我境者，無間彼此，撫以恩信．顧茲北虜稔惡，背恩負施，去年犯我撫夷堡，以爲鼠竊狗偷，不足與較，置而不問；今年又犯造山堡，殺害我鎮將，虔劉我人民，搶奪我頭畜，邊城之人，日夜切齒，咸思一舉，薄示威靈．予念此而不討，國非其國，以我堂堂之兵威，寧堪受屈於小醜？宜興問罪之舉，亟行干紀之誅．以許琮爲都元帥，成俊·李季全副之，今年十月率兵二萬，眞擣窟突，勦殲乃已，今送兵符合驗．京畿南陽·水原·陽城·振威·龍仁·安山·陰竹·驪州·利川·砥平·楊根·加平·永平·抱川·楊州·廣州·果川·衿川·竹山·陽智·麻田·漣川·仁川等官軍士，九月初二日發程，同月二十四日到吉城；開城府軍士，九月初三日發程，同月二十四日到吉城；”(…)

<성종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4일(무인) 2번째기사>

## 정치/군사

**대간이 합사하여 면포를 많이 거둔 수원 부사 이균을 용서한 것은 잘못이라고 아뢰다**

대간(臺諫)이 합사(合司)하여 차자(筭子)를 올리기를, (…) 이어서 아뢰기를, “동청례(童淸禮)는 위장(衛將)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대간(臺諫)과 정조(政曹)의 상피(相避)하는 법을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균(李鈞)을 제용감 정(濟用監正)으로 삼는 일은 의견을 말하는 자 모두 청백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균이 수원 부사가 되었을 때 면포(綿布)를 민간에서 많이 거두었으므로 감사(監司)가 이를 듣고 그를 국문(鞫問)하였으며, 사헌부에서는 또 행대(行臺)를 보내어 국문 힐책하였으며, 또 행대(行臺)가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다 해서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하여 추국(推鞫)하였는데, 마치기 전에 마침 사유(赦宥)가 있어 면하게 되었으니, 이 일로 미루어 본다면 이균은 청백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臺諫合司上筭曰：“(…) 仍啓：“童淸禮不可授衛將．臺諫·政曹相避之法，亦不可毀也．李鈞爲濟用正，議者皆以淸白爲言，然鈞爲水原府使，多收縣布於民間．監司聞而鞫之，憲府又發行臺鞫詰，又以行臺未能得實，遣敬差官推鞫未畢，會赦而免．以是觀之，鈞不可謂淸白．” 不聽．

<연산군일기 38권, 연산군 6년 7월 11일(계해)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청흥도와 수원에서 경보가 잇달아 발생한 것에 대해 논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지금 들건대 청흥도(淸洪道)와 수원(水原) 등지에 변방 경보(警報)가 잇달아 이른다고 하니, 이 말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서울에 바깥 다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변사(備邊司)가 계획과 조치를 진실로 지극하게 하지 않은 바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신들의 생각에 호령은 반드시 한 곳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야 전담하여 지휘하며 방략을 세워 순식간에 쓰게 될 수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옥당(玉堂)의 의논대로 빨리 원수(元帥) 한 사람을 정해서 도성(都城) 안의 일 및 경기(京畿)의 일을 도맡아 하게 하소서. 또 각 고을의 모든 절의 중들을 시급히 뽑아내어 정리하고, 강원도 영서(嶺西)의 정군(正軍) 및 중들도 모두 뽑아내어 대기하고 있다가 변을 들으면 달려 오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원수를 차출(差出)하는 일은 일찍이 대신·병조·비변사와 함께 의논해 보니, 원수가 없어도 된다고 했다. 윤택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諫院啓曰: “今聞淸洪·水原等處, 邊報繼至. 此言誠然, 則可謂逼近京邑也. 備邊司規畫處置, 固無所不至, 臣等之意以爲, 號令必出於一, 然後可以專制, 布置方略, 呼吸可用. 請依玉堂之議, 速出元帥一人, 使之統攝都下及畿甸之事. 且列邑諸刹僧人, 急速抄出整齊, 江原道嶺西正軍及僧人等, 并皆抄發待令, 使之聞變馳赴.” 答曰: “元帥差出事, 曾與大臣·兵曹·備邊司同議, 雖無元帥, 可也. 不允. 餘皆如啓.”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26일(기미)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경기순무어사 허봉이 수원의 군기가 허술하다고 수원부사 한옹의 파출을 청하다

경기순무어사(京畿巡撫御史) 허봉(許篈)의 서장(書狀)에 ‘수원(水原)의 군기(軍器)가 유독 더 정돈되어 있지 못하니 부사(府使) 한옹(韓顛)을 파출(罷黜)해야 한다.’ 고 하였는데, 입계하니, 나추(拿推)하라고 전교하였다.

○癸丑/京畿巡撫御史許篈書狀; “水原軍器尤甚不精, 府使韓顛罷黜事入啓, 傳曰: “拿推.”

<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2일(계축)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사간원이 정여립과 우정이 깊은 수원부사 홍가신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홍가신(洪可臣)은 역적 정여립과 평소 우정이 깊어 이발 형제들과 상호 추앙하였으니, 파직하고, 승문원 권지(承文院權知) 윤경립(尹敬立)은 본시 이름도 없이 사관(史官)의 천망에 올랐으니 삭제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丁丑/司諫院啓: “水原府使洪可臣, 與逆賊鄭汝立交情素密, 與李潑兄弟, 互相推獎, 請命罷職, 承文權知尹敬立, 素無名稱, 而參史官薦, 請命削去.” 答曰: “依啓.”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4일(정축)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삼남의 감사가 수원에 진을 치고 조정의 지휘를 청하다

경상도 관찰사 김수(金睟), 전라도 관찰사 이광(李洸), 충청도 관찰사 윤선각(尹先覺) 등이 치계하였다. “신들이 기병·보병과 6만여 인을 거느리고 이달 3일에 수원(水原)에 진을 쳤



는데 양천(陽川) 북포(北浦)를 경유하여 군사를 건너려고 합니다. 앞뒤 양쪽에서 들이치는 계책을 조정에서 급속히 지휘해 주소서.” 【수 등이 올 적에 행군(行軍)함에 규율이 없어 앞뒤가 서로 호응하지 못하였다. 선봉(先鋒) 백광언(白光彦)·이지시(李之詩) 등은 뿔나뭇하고 물기는 왜적 10여 급(級)을 참하고서 더욱 왜적을 경시(輕視)하여 교만한 기색이 있었다. 수는 이미 누차 패전하여 수하에 군사도 없어 형세가 고단하고 기운이 꺾이었으며, 광은 본시 용렬하고 겁이 많아 계책을 세워 대응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조정에 명령을 청하여 진퇴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慶尙道觀察使金晬，全羅道觀察使李洸，忠清道觀察使尹先覺等馳啓曰：“臣等率騎步及六萬餘人，以本月初三日，陣于水原，欲由陽川北浦濟師矣。腹背挾攻之策，請自朝廷急速指揮。【晬等之來也，行軍無律，首尾不相應。先鋒白光彦·李之詩斬賊之樵汲者十餘級，益輕賊有驕色。晬既累敗，手下無軍，勢孤氣挫，洸本庸怯，不知所以策應，請命於朝廷，以爲進退之計。】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1일(기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충청감사 윤선각이 수원이 적에 의해 막혀 있어 이광 등과 협공한 뒤 진격하겠다고 하다**

충청도 관찰사 겸 순찰사 윤선각(尹先覺)이 치계하였다. “신과 병사(兵使) 신익(申翌), 방어사(防禦使) 이옥(李沃) 등이 근왕병(勤王兵)들을 나누어 거느리고서 이달 22일에 온양군에서 점열(點閱)하였습니다. 전일의 하유(下諭)에 따라 전라도 도순찰사 이광, 경상도 도순찰사 김수 등이 24일에 도착하여 26일에 행군하였는데 연일 큰비가 내려 시냇물이 불어 수만 병마(兵馬)가 험사리 건널 수 없었으므로 28일에야 비로소 진위(振威)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본도의 군사가 2만 5천 명이었으나 세 차례의 패전으로 흩어진 뒤에 거두어 조발하니 겨우 1만 5천 명을 얻었습니다. 청주(淸州) 이동의 고을들은 적로(賊路)가 막히어 나올 수가 없기에 그 본 고을의 수령들로 하여금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방비하도록 하고, 신은 이광·김수와 함께 직산(稷山)에 도착하여 13고을의 군사는 조방장(助防將) 이세호(李世灝), 수사(水使) 변양준(邊良俊) 등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고서 매복(埋伏)하였다가 합동 공격하여 마구 쳐들어오는 적을 방어하도록 하고, 다만 우도의 군사만으로 근왕병(勤王兵)을 삼았는데 그 수가 8천여 명입니다. 신이 이미 경기(京畿)에 도착하였으니 시일을 정해서 강을 건너 경성에 웅거하고 있는 적을 섬멸하여야 되겠지만, 수원(水原)의 도로가 현재 적에 의하여 막혀 있으니 이곳의 왜적들을 먼저 제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광·김수 등과 함께 의논하여 좌우에서 협공한 뒤에 달려가 경성을 구원하겠습니다.”

○忠清道觀察使兼巡察使尹先覺馳啓曰：“臣及兵使申翌，防禦使李沃分領勤王兵，今月二十二日，點閱于溫陽郡。依前上諭全羅道都巡察使李洸·慶尙道都巡察使金晬，二十四日來到，二十六日行軍，連遭大雨，川渠漲溢，數萬兵馬，未易渡涉，二十八日始到振威地。本道軍兵二萬五千，而三度敗散之餘，收拾調發，僅得一萬五千。淸州以東郡邑，則賊路梗塞，不得出來，令其本官守令，自率防備，同至稷山，十三官軍，則令助防將李世灝·水使邊良俊，抄率埋伏，或合擊，以防賊兵爛入，只以右道兵爲勤王，其數八千餘名。臣已到畿甸，所當刻日渡江，以殲據城之賊，而水原之路，方被賊梗，不可不先除此賊，故與李洸·金晬，同議挾擊後，赴援京城。”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8일(병진) 11번째기사>

### 정치/군사

**충청 감사 윤선각이 수원부에서의 전투를 보고하다**

윤선각이 또 치계하였다. “신이 5월 4일에 수원에서 전라도 군사와 길을 나누어 신은 안산(安山)을 경유하고 이광(李洸)은 금천(衿川)을 경유하여 양천(陽川)의 북포(北浦)에서 회합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전라도 선봉장 백광언(白光彦)은 이미 용인에서 적과 서로 대치하였습니다. 신은 행군하여 수원부 앞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유숙하였습니다. 5일 아침에 병사(兵使) 신익(申翌), 방어사 이옥(李沃) 등으로 하여금 각각 병마를 거느리고 나아가 전투하도록 하고, 신 및 이광·김수 등은 모두 전쟁터에서 10리쯤의 거리로 진을 옮겨 계속 응원할 계획이었는데, 신익·이옥 등이 비보(飛報)를 보내 위급함을 알리기에 신이 정예병 2백명을 뽑아 계속 달려가 응원하게 하여 3위(衛)가 협력해 싸워 10여 급(級)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곽영(郭嶸)의 진영이 적의 침박(侵迫)을 받아 황망히 달아나자, 또 한 부대의 적이 동쪽에서 쫓아와서 갑자기 신익을 뺨박하니 모든 군졸도 흩어져 버렸습니다. 신의 진중(陣中)에 상하(上下)가 아직 아침 밥도 먹지 않고 군사들도 미처 정돈하지 못했는데 양진(兩陣)의 패전하여 흩어진 병졸들이 토붕 와해되어 진영 앞으로 달아나 지나가기에 신이 경악을 금치 못하여 즉시 군관 10여 명으로 하여금 칼을 휘둘러 6~7명을 참하게 하였지만 그래도 중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신은 다만 군졸 두어 사람들과 진중에 외로이 남아 있을 뿐이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적의 예봉(銳鋒)을 피해 행군하여 갈원(葛院)에 이르렀습니다. 김수(金睟)가 뒤이어 도착하기에 신이 김수와 평택현(平澤縣)에 이르니 이옥(李沃)이 어둠을 틈타 뒤따라 왔습니다.

신들이 처사를 잘못하여 이렇게 무너져 패전하게 되었으니 만 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으므로 행재소(行在所)에서 거적을 깔고 앉아 주책(誅責)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승세를 탄 적들이 만약 직산(稷山)의 길로 곧장 내려가면 우도가 패망될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이에 신은 병사 신익, 방어사 이옥, 조방장 이세호 등과 서울에 가까운 고을에 나누어 주둔하면서 흩어져 도망한 병졸들을 소집하여 뒷일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尹先覺又馳啓曰：“臣五月初四日，自水原與全羅之兵分路，臣則由安山，李洸則由衿川，約會于陽川北浦，全羅道先鋒將白光彦，已於龍仁，與賊相對。臣行到水原府前，結陣留宿。初五日朝，使兵使申翌·防禦使李沃，各領兵馬進戰，臣及李洸·金睟，皆移陣於戰場十里許，以爲繼援之計，申翌·李沃飛報告急，臣抄出精銳二百，連續馳援，三衛合力搏戰，斬馘十餘級。而郭嶸之陣，爲賊所迫，奔遑出來，又一隊賊，自東邊逐來，奄迫申翌，連軍卒亦敢。臣方在陣中，上下尚未朝食，軍兵未及整齊，兩陣潰散之卒，土崩瓦解，奔過陣前，臣不勝驚愕，卽令軍官十餘人，揮劍擊斬六七人，而猶不能止。臣只與軍數人，獨立陣中，無可奈何，不得已退避賊鋒，行到葛院。金睟追到，臣與金睟到平澤縣，李沃乘昏隨至。臣等料理失當，致此潰敗，萬死無惜，所當席蒿行在以俟誅責，而乘勝之賊，若直下稷山之路，右道蕩覆可慮。臣與兵使申翌·防禦使李沃·助防將李世灝等，分屯近京之邑，欲招集散亡，以圖後舉矣。”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8일(병진) 12번째기사>

## 정치/군사

비변사가 남군이 수원 등지에 주둔했다가 경성을 도모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다

(…) 비변사가 아뢰기를, “형세로 말한다면 남군(南軍)이 수원 등지에 주둔하였다가 곧바로 경성을 도모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만 전일 통솔하던 장수가 훌륭하지 못하여 행군(行軍)하는 법을 몰라서 통솔하는 데 질서가 없었으므로 갑자기 몇 안 되는 적과 맞닥뜨렸는데도 일시에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도 전날 그 지역이고 군사도 전날의 그 군사입니다. 만일 그 군사로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군사들의 마음이 지레 꺾여 계책을 시행해 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강화도로 건너가려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어제 성교(聖敎)를 받드니 기어코 개성 등지의 적을 우선 공격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도 이것이 묘책으로 여겨집니다. (…)" 하니, 상이 따랐다.

○(…) 備邊司啓曰: “以勢言之, 南軍留駐水原等地, 直圖京城, 策之上也. 但前日主帥不良, 不識行軍之法, 領率無統, 忽遇零賊, 一時潰散, 人心至今痛切. 今者, 地既前日之地, 兵是前日之兵. 若過其地, 軍情先撓, 計無所施. 此欲迤渡江華之言, 所由發也. 昨奉聖敎, 必欲使之先擊開城等處之賊. 臣等之意, 此是妙策. (…)" 上從之.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0월 23일(기유)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평양 수복에 대한 논의에서 우성전이 수원에서 올 수 있을지 선조가 의문하다

(…) 상이 이르기를, “권율(權慄)의 장계를 보니 ‘의병은 이미 활용할 수 없고 양호(兩湖)도 계속해서 원조하지 못한다.’ 고 하였다. 양호는 한갓 그 지경만 지킬 것이 아니라 더러는 군사를 조발하여 권율의 성세를 돕는 것이 가하다. 비록 곧바로 경성(京城)을 공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서(海西)에 와서 주둔한다면 평양성의 적은 뒤를 돌아다보아야 하는 근심이 있을 것이다. 관가의 곡식을 먹으면서 쭈그리고 앉아 스스로 의병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하지 못하겠는가. 듣건대, 우성전(禹性傳)이 군사 4백 명을 거느리고 수원(水原)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가 올 것인지는 기필할 수 없다.” 하였다. (…)

○(…) 上曰: “見權慄狀啓, 則: ‘義兵既不可用, 而兩湖亦不繼援.’ 云. 兩湖不徒守其境, 或調兵爲慄聲勢可也. 雖不能直擣京城, 而來屯海西, 則箕城之賊, 有反顧之憂矣. 食官廩, 縮坐而自謂義兵, 則孰不可爲也? 聞禹性傳率兵四百, 往水原云, 其來否, 未可期也.” (…)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5일(경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각도에 있는 병마의 숫자 중에 수원부에 순찰사 권율의 군사가 4천명이라는 내용

답보(答報)하면서 헤아려 개진한 것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강화부(江華府)에 주차(駐箭)한 전라도 절도사 최원(崔遠)의 군사 4천 명, 경기도 순찰사 권징(權徵)의 군사 4백 명,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의 군사 3천 명, 의병장(義兵將) 우성전(禹性傳)의 군사 2천 명, 수원부(水原府)에 주차한 전라도 순찰사 권율(權慄)의 군사 4천 명, 【이상은 왕경(王京)의 서쪽에 있으며 경성(京城)과의 거리는 1일 정(程)이다.】 양주(楊州)에 주차한 방어사(防禦使) 고언백(高彦伯)의 군사 2천 명, 양근군(楊根郡)에 주차한 의병장 이일(李軼)의 군사 6백 명, 【이상은 왕경 동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1일 정이다.】 여주(驪州)에 주차한 경기 순찰사 성영(成泳)의 군사 3천 명, 안성군(安城郡)에 주차한 조방장(助防將) 홍계남(洪季男)의 군사 3백 명 【이상은 왕경에 있으며 1일 반 정이다.】 충청도 직산현(稷山縣)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이옥(李沃)의 군사 2천 8백 명, 평택현(平澤縣) 등처의 장관(將官)들이 각각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합해서 약 3천여 명, 각처의 의병이 각각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합해서 약 5천여 명이다. 【이상은 왕경 남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2~3일 정이나 4~5일 정이다.】 (…) 위의 각처 군마(軍馬)는 합계가 17만 2천 4백 명인데, 적의 향방에 따라 기회에 따라 진격하므로 주둔하거나 가는 곳을 확실하게 지적할 수 없으며 또한 군사의 수효도 첨가되거나 나뉘어져서 많고 적음이 일정하지 않다.

○答報計開京畿道·江華府駐筭全羅道節度使崔遠兵四千，京畿道巡察使權徽兵四百，倡義使金千鎰兵三千，義兵將禹性傳兵二千，**水原府**駐筭全羅道巡察使權慄兵四千，【已上在王京西邊，距京城一日程。】楊州駐筭防禦使高彥伯兵二千，楊根郡駐筭義兵將李軼兵六百，【已上在王京東邊距京城一日程。】驪州駐筭京畿巡察使成泳兵三千，安城郡駐筭助防將洪季男兵三百，【已上在王京一日半程。】忠清道稷山縣駐筭本道節度使李沃兵二千八百，平澤縣等處將官各將數百名，約共三千餘名。各處義兵各數百，約共五千餘兵。【已上在王京南邊，距京城二三日程，或四五日程。】(…)右各處軍馬，合十七萬二千四百，隨賊所向，臨機進勦，不可的指當駐去處，兼又軍數或添或分，多寡無定。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1일(병인) 15번째기사>

## 정치/군사

### 좌상 윤두수 등을 인견하고 양호의 군량 수송 일을 논의하다

상이 좌의정 윤두수(尹斗壽), 예조 판서 윤근수(尹根壽), 이조 판서 이산보(李山甫), 병조 판서 이항복(李恒福), 이조 참판 구사맹(具思孟), 도승지 유근(柳根), 병조 참의 신점(申點), 동부승지 심희수(沈喜壽)를 인견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북도(北道)의 적은 수효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산보가 곧 아뢰기를, “2만여의 군사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의 형세가 매우 성하다.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명나라 군사가 경기로 향한다면 이 적들이 그 뒤를 습격하지 않겠는가?”

하니, 심희수가 아뢰기를, “경성을 격파할 것 같으면 다시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원·광주 등처의 관곡은 이미 다 떨어졌는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의병이 일어나면서부터 무뢰한 자들이 의병이라 지칭하면서 일없이 먹어대니 민력이 고갈되는 것이 여기에서 연유되기도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얼음이 풀린 뒤에 요동의 곡식을 배로 경기에 운반할 수 없는가? 그리고 어느 길을 경유하여 도달할 수 있는가?”

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용천(龍川)에서부터 강화(江華)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나라 군사가 경성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즉시 배를 수리하여 요동의 곡식을 싣고 황해(黃海)에 띄워 강화에 도달하게 한다면 좋을 듯하다. 선척(船隻)은 활용하기에 충분한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미 김응남(金應南)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고, 이항복은 아뢰기를, “반드시 의주(義州)에서부터 용천에 옮긴 연후에야 배에 실을 수 있습니다.” 하였다. (….)

○上引見左議政尹斗壽，禮曹判書尹根壽，吏曹判書李山甫，兵曹判書李恒福，吏曹參判具思孟，都承旨柳根，兵曹參議申點，同副承旨沈喜壽。(…)上曰：“北道亦有糧餉乎?”斗壽曰：“雖令儲峙，恐難給饋大軍矣。”上曰：“天兵，若逾烏嶺，江邊之兵，亦當逾嶺，運糧，何以爲之?江原道，亦有穀乎?”斗壽曰：“全無矣。”上曰：“賊若敗歸，將屯聚於嶺南乎?抑直還本國乎?”恒福曰：“破京城，如破箕城，則必不敢留屯而拒我也。”上曰：“天兵力竭，則可虞，須細思之。”山甫曰：“箕城已破，自當破膽。凡戰以氣爲主，一奪其氣，如破竹耳。復京城，則救死不贍，何敢拒戰乎?”上曰：“北道之賊，其數有幾?”山甫則曰：“二萬餘兵云。”上曰：“賊勢甚盛，安得不憂?”天兵向京畿，北賊無乃掩襲其後乎?喜壽曰：“若破京城，則無復憂矣。”上曰：“水原·廣州等處官穀，已盡耶?”斗壽曰：“自義兵之起，無賴之人，指義兵，無事而食，民力之竭，或由於此。”上曰：“解冰之後，遼東之穀，未可船運於京畿耶?”

當由何道得達耶?” 恒福曰: “自龍川, 當達於江華矣.” 上曰: “天兵未入京之時, 隨即理船, 載得遼東之穀, 浮于黃海, 達于江華則似便. 船隻, 足用乎?” 斗壽曰: “已令金應南措置矣. 恒福曰: “必自義州, 移于龍川, 然後可以載船.” (…)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2일(정묘)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평양 수복 후에 권율이 수원의 독성에서 행주산성으로 옮긴 뒤 대첩에 대한 기록

처음에 평양이 회복되자 여러 장수들이 많이 경성으로 모여들었다. 중국군이 개성부에 진주하자 우리나라 장수들은 차례로 전진시켜 함께 기각(犄角)의 형세를 이루고 있었다. 전라도 순찰사 권율은 그의 군사 4천 명을 반으로 갈라 절도사 선거이(宣居怡)로 하여금 거느리고 양천강(陽川江) 언덕에 진을 치게 하고, 자신은 정병 2천 3백 명을 거느리고 수원(水原)의 독성(禿城)으로부터 고양군(高陽郡) 행주(幸州)의 성산(城山)으로 옮겨 진을 쳤다. 12일 새벽에 척후(斥候)가 계속해서 보고하기를 ‘적이 좌우익으로 나뉘어 각각 홍기(紅旗)와 백기를 들고 홍제원(弘濟院)으로부터 행주를 향해 오고 있다.’ 하였다. 권율이 즉시 군중에 동요하지 말라는 영을 내리고 대(臺)에 올라 바라보니 5리쯤 떨어진 들판에 적의 무리가 가득했다. 선봉 1백여 기가 점점 접근해 오더니 조금 있자 1만여 기병이 들을 뒤덮고 와서 일시에 포위하고 바로 돌격해 왔다. 우리 군사들은 활을 쏘고 돌을 던지며, 크고 작은 승자총통(勝字銃筒) 및 진천뢰(震天雷)·지신포(紙神砲)·대중발화(大中發火) 등 각종 화기를 연달아 쏘았는데도 물러가지 않고, 부대를 나누어 번갈아 진격했다. 묘시(卯時)로부터 유시(酉時)에 이르도록 세 번 진격하고 세 번 물러갔는데 적의 죽은 자는 수십 명이었고 부상한 자도 백여 명이 되었다. 적이 마른 풀에 불을 붙여 바람을 이용, 성을 불태우면 성중에서는 물을 부어 이것을 꺾다. 처음에 승군(僧軍)으로 하여금 서북쪽에 있는 자성(子城)의 한 쪽을 지키게 했는데 이때에 승군이 조금 물러나자 적들이 고향을 치면서 물러 들어오니 군중이 흥흥하였다. 권율이 칼을 빼어 들고 독전하자 여러 장수들이 죽기로써 힘껏 싸우니 적은 포위를 풀었다. 적의 시체를 네 곳에 모으고 마른 풀을 쌓아 놓고 불을 질렀는데 시체 타는 냄새가 10리까지 났다. 아군이 남은 시체를 거두었는데 참획한 것이 1백 30여 급이었다. 당시 중국군이 왕래하며 순찰하다가 이 전쟁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튿날 사대수(查大受)는 자기의 편장(編將)을 보내어 접전 때의 상황을 물었고 예물을 보내어 치하하였다. 그 뒤 3월에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은 우리나라에 자문(咨文)을 보냈는데 ‘왜놈들이 조선 왕국을 함몰시키니 삼도(三都)와 모든 군현들이 소문만 듣고도 무너졌으며, 의병을 불러모아 대란을 평정하고 국토를 지키어 회복을 꾀한 한 사람의 영웅 걸사도 없었다. 들리는 소문에는 술이나 마시며 시나 짓고 기생이나 끼고 산에 노닐어 치란(治亂)을 모르는 체하며 나라의 존망은 관심 밖에 붙이는 자가 있다고 하였다. 이런 말까지 있으니 왕국에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 오직 전라도 관찰사 권율만은 외로운 성을 굳게 지키면서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여러 차례 기계(奇計)를 써서 가끔 대적을 물리쳤고 근일에는 또 모래자루를 곡식인 것처럼 만들어 왜적을 유인, 이들을 죽였으니 이는 실로 왕국의 위기시의 충신이며 나라를 중흥시킨 명장이다. 본부에서는 심히 가상하게 여겨 장차 별도로 구체(具題)를 행하려 한다. 지금 홍단견(紅段絹) 4단(端), 백은(白銀) 50냥을 본관에서 상으로 주어 충성과 용기를 권장한다. 왕은 벼슬을 더하여 본국의 막료와 재신을 고무하라.’ 는 말이 있었다.

○初, 平壤既復, 諸將多聚京城. 天兵進住開城府, 我國諸將, 以次進陣, 共爲犄角之勢. 全羅

道巡察使權慄，中分其兵四千，令節度使宣居怡領之，陣於陽川江岸，自領精兵二千三百，自水原禿城，移陣於高陽之幸州城山。十二日黎明，候更報：‘賊分左右翼，各持紅白旂，自弘濟院，向幸州而來。’慄即令軍中無動，登臺而望，則相距五里原上，賊徒彌滿。先鋒百餘騎，看看漸逼，俄而有萬餘騎，蔽野而來，一時圍抱，直進衝突。我軍射矢投石，連放大小勝字銃筒，及震天雷·紙神砲·大中發火等，各藥火器，猶不却，賊分運迭進。自卯至酉，凡三進三退，賊死者數十，傷者百餘。賊束芻縱火，因風焚城中，以水灌滅。初，令僧軍專守西北子城一面，至是僧軍小退，賊大呼闖入，軍中洶洶。慄挺劍督戰，諸將殊死力戰，賊乃解圍。因聚賊尸於四處，積芻焚之，臭聞十里。我軍，收拾餘尸，斬獲一百三十餘級。時，天兵往來巡哨，知有是戰。翌日，查大受遣其編將，來問接戰時事，送禮為賀。其後三月，經略宋應昌移咨本國，有云：‘自倭奴摧陷朝鮮王國，三都諸郡縣，悉皆望風奔潰，曾無一英雄傑士·倡義士排大亂，守封疆以圖恢復者。且聞有縱酒賦詩，挾妓遊山，置理亂於不知，付存亡於不較。興言及此，王國可謂無人。獨全羅道觀察使權慄振守孤城，招集衆庶，屢出奇謀，時抗大敵，近復囊沙為糧，誘倭來槍而怯殺之，此正王國板蕩忠臣，中興名將。本府深為嘉尚，將另行具題。今將紅段絹四端，白銀五十兩，獎賞本官，以為忠勇之勸。王其加其爵祿，以風動本國僚宰。’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4일(기유) 6번째기사>

## 정치/군사

### 유성룡의 치계 내용에 허옥과 선거이가 수원 독성을 지키고 있다는 내용

도체찰사 풍원 부원군(豐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이 치계하였다. “경성에 있는 적의 무리가 12일의 행주 전투로 인하여 사망자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도망해 돌아온 사람들의 말이 모두 같습니다. 15일에 충청 수사 정결(丁傑)이 수군을 이끌고 곧바로 용산창(龍山倉) 아래에 다달아 왜적을 향하여 포를 쏘았는데, 강변에 진을 친 왜병의 거의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한강 이남은 사평원(沙平院)에서부터 왜적의 분당질의 전보다 더욱 치열하여 죽산(竹山)까지 미쳤으며, 충주(忠州)·음성(陰城)·죽산 지경의 적세가 아주 큼니다. 원주(原州)의 적은 충주에 와서 모였는데 군량과 마초를 다량 운반해다 탄금대(彈琴臺) 건너편에 쌓아 두었다고 합니다. 16일에 전라도 관찰사 권율이 적병이 재차 침범하려고 계획한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진을 옮겨 파주로 와서 도원수와 연이어 진을 쳤습니다. **양천(陽川) 이남의 군사는 충청 감사 허옥(許瑬)과 전라 병사 선거이(宣居怡)인데, 물러나 수원의 독성(禿城)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개 중국군이 물러나 주둔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면하지 못하여 분분히 모두 물러나니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닌 듯합니다. 신은 재차 권율을 독려하여 돌아가 행주 산성을 지키게 하고 싶었으나 목책과 영루(營壘)가 이미 모두 타 버려 군사들이 웅거할 곳이 없으므로 부득이 임시로 파주 뒷산에 머물러 이빈(李贛)·고언백(高彦伯) 등과 고기 비늘처럼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임진(臨津) 이남 지역을 굳게 지키는 한편 기회를 보아 경성의 동서를 습격하여 공취할 계획입니다. (...)”

○都體察使豐原府院君柳成龍馳啓曰：“京城賊衆，自十二日幸州之戰，死亡甚多，此則逃還人所言，如出一口。十五日忠清水使丁傑，以舟師直抵龍山倉下，與倭相對放砲，倭賊之結陣江邊者，其數殆將二萬。而漢江以南，自沙平院，焚蕩之賊，比前益熾，以及竹山·忠州·陰竹之境，賊勢浩大。原州之賊，來會忠州，多運糧草，積置於彈琴臺越邊云矣。十六日，全羅道巡察使權慄，聞賊兵謀欲再犯，遽為移陣，來駐坡州，與都元帥連營結陣。陽川以南之軍，忠清監司許瑬，全羅兵使宣居怡，又且退守水原禿城。蓋以天兵退駐之後，衆心不免動搖，紛然俱退，似非得計。臣欲更督權慄，還守幸城，而木柵營壘已焚，軍無所據，不得已姑駐坡州後山，與李贛·高彦伯

等, 鱗次連營. 既已固守臨津以南, 又乘機勦擊京城東西, 以爲進取之計. (…)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25일(경술) 5번째기사>

### 정치/군사

#### 유성룡이 수원, 금천 등 서울 주변의 적세에 대해 보고하다

도체찰사 풍원 부원군 유성룡이 치계하였다. “성 안의 적세(賊勢)에 대해 각처에서 정탐하여 올리는 보고가 날마다 들어오고 있으나 그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언백(高彦伯)의 군병은 모두 서울과 양주(楊州)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정탐하여 보고한 내용은 실정을 파악한 내용이 가끔 있으며 또 도망쳐 돌아온 사람들의 공사에 의하면 서울의 적세는 요사이 많은 수가 모였다고 합니다. 당초 명병이 처음 도착하던 날에는 적세가 매우 작아서 숙청문(肅淸門)·장의문(莊義門)·동소문(東小門)까지는 모두 성을 지키는 적이 없어 북쪽은 텅 비었고 남쪽 일대에만 산위에까지 적이 있었는데 그 수가 매우 적었으며, 또한 행주(幸州)의 패전으로 죽은 자가 태반이었으나 지금은 북쪽의 적이 모두 서울로 돌아왔고 원주(原州)의 적도 또한 서울의 흥덕동(興德洞) 백자정(栢子亭) 근처에 와 모이는 등 적병이 모두 모였으며, 남대문 안에서 모화관(慕華館) 근처까지 진을 쳐서 용산창(龍山倉)을 잇는다면, 평양에서 도망온 적이 또 성을 쌓고 둔을 쳤으며, 한강에도 적진이 있어 부교(浮橋)를 걸쳐놓고 서로 통행하며 사평원(沙平院)·천현(穿峴) 일로에 적병이 또 많이 출몰하여 수원(水原)·금천(衿川)·청회(菁回) 일대에서 날이면 날마다 분탕질한다고 합니다.”

○都體察使豐原府院君柳成龍馳啓曰: “城中賊勢, 各處體探所報, 逐日來告, 而所言不一. 唯高彦伯之軍, 皆是京城楊州之民, 故其所哨探之辭, 往往頗得其實, 又據逃回人供稱, 京城賊勢, 近日多數聚會. 當初天兵始到之日, 賊勢甚少, 自肅淸門·莊義門·東小門, 皆無守城之賊, 北邊蕩然空虛, 只有南邊一帶, 以及山頭有賊, 而甚爲稀疎. 又於幸州之敗, 死者太半, 今則北賊盡入京城, 原州之賊, 亦爲來聚于京城興德洞·栢子亭近處, 賊兵皆屯聚, 自南大門內, 以及慕華館近處設陣, 連絡龍山倉. 平壤逃遁之賊, 設城屯據, 漢江亦有賊陣, 橫結浮橋, 以相通行, 而沙平院穿峴一路賊兵, 亦多出沒, 焚蕩於水原·衿川·菁回之境, 無日無之云.”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9일(갑자) 8번째기사>

### 정치/군사

#### 경기좌도 감사 성영이 진위, 수원 등지의 적세에 대해 보고하다

경기좌도 관찰사 겸 순찰사 성영(成泳)이 아뢰었다. “신이 이달 16일 남양(南陽)에 있다가 명장이 배를 타고 경강(京江) 근처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응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즉시 단기(單騎)로 달려가 양천(陽川)에 도착하여 이른 아침에 작은 배를 타고 물건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심 유격(沈遊擊)이 판옥선(板屋船)을 타고 돛을 펼친 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신이 배안에서 통사를 시켜 말을 전하기를 ‘대장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배알을 하고자 하였으나 뱃길이 너무 바빠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 명장이 곧바로 뱃머리에 나와 섰습니다.

신이 즉시 배사하기를, ‘우리나라 인민이 황제의 위덕을 의지해 다시 살아났다.’ 하니, 명장이 답하기를 ‘지금 왜장과 강화를 직접 약속하였는데, 4월 8일까지 군사를 거두어 가기로 하였으니 부디 수군들로써 강구(江口)를 차단하지 말라.’ 하므로, 신이 답하기를 ‘명을 듣겠다. 다만 사방을 지켜야 하니 달려가 뱃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명장이 답하기를 ‘뒷날 다시 만나자.’ 하며, 읊하고 파하였는데, 대개 명장의 말씨도 간곡

하고 희색이 만면하였는데 강화를 결정한 것을 만족히 여기는 듯하였습니다. 신이 당초 주찬(酒饌)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명장이 길을 너무 서둘러서 각기 배 안에서 겨우 말을 전하였을 뿐 동행을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달을 서로 버티기만 하고 군사를 출동시킬 시기에 대해서는 들리는 바가 없습니다. 서울 이북은 명병의 위세가 미치어 적이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있으나 한강 이남은 적의 형세가 매우 극성하여 과천(果川)·용인(龍仁)·양지(陽智)·죽산(竹山) 일로는 본시 적의 소굴로서 논할 것도 없거니와, 진위(振威)·수원(水原)·남양(南陽)·안산(安山)·금천(衿川)·인천(仁川) 일대는 왜적들의 온 부대가 나와 날마다 분탕질을 하고 더러는 밤을 타고 습격하여 살아 남은 백성들이 홍적의 창칼밑에 다 죽어갈 형편입니다. 신이 용렬한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한 지방을 지키며 적이 우글거리는 속에서 방황하자니 눈물만 나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京畿左道觀察使兼巡察使成泳啓曰：“臣本月十六日，在南陽地，傳聞天將乘船，到京江近處云，臣不可不接應，故卽以單騎馳到陽川境，十六日早朝，得小船泝流而上，則沈遊擊乘板屋舡，張帆而下。臣於舟中，令通事傳語曰：‘聞大將來臨，思欲拜謁，舟行忙遽，未遂下情。’云云，則天將卽出立於船頭。臣卽拜謝曰：‘我國人民，仗皇威而再生。’天將答曰：‘今與倭將，面約講和，而以四月初八日爲限，令收兵而去，須勿以舟師，把截江口。’云云。臣答曰：‘謹聞命矣。但謹守四方，未得追謁。’天將答以‘待後更見。’作揖而罷，大概，天將辭意歉懇，喜色滿顏，若以定和爲自得者然。臣當初欲設酒饌，而天將行色甚遽，各在舟中，謹得傳語，故未得請行矣。第持重累月，師期無聞。京城以北，則天兵聲威所及，賊不敢近，而漢水以南，賊勢尤甚熾盛，如果川·龍仁·陽智·竹山一路，則素是賊窟，已矣不論，至於振威·水原·南陽·安山·衿川·仁川之間，倭賊舉陣出來，逐日焚蕩，或乘夜掩襲，孑遺之民，勢將盡陷於兇鋒之下。臣猥以庸劣，叨守一方，彷徨賊藪，痛泣莫措。”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4일(기묘)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왜적이 남양과 수원 등지에서 침탈하고 있으니 관군과 의병이 함께 서울로 진격하게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현재 여러 도의 적이 모두 물러가고 서울과 경상도 일로에만 모여 있을 뿐입니다. 사방의 관군의 의병이 모든 군이 일제히 에워싸고 함께 진격해야 하는데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고 처치를 허술하게 하여 적들로 하여금 남양과 수원 등지에서 침탈하게 함으로써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죽임을 당하게끔 하였으니 극히 마음이 아픕니다. 황해 병사 조인득(趙仁得), 강원 감사 강신(姜紳), 충청 감사 허옥(許瑬) 등에게 각기 본도의 관군과 의병 제군(諸軍)을 거느리고 진(鎭)을 옮겨 서울로 향하게 하여 한편으로는 본도로 충돌해오는 적의 기세를 차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을 토벌하는 우리 군사의 힘을 북돋아 주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나의 생각에는 함경남도의 군병도 선발하여 와서 도원수의 지시를 듣게 해야 한다고 여긴다.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備邊司啓曰：“目今諸道之賊，皆已退去，只聚於京城與慶尙一路而已。四方官義諸軍，所當環繞并進，而謀不預定，處置踈虞，至使彼賊，搶略於南陽·水原等處，使僅存之民，再罹鋒刃，極爲痛心。黃海兵使趙仁得，江原監司姜紳，忠清監司許瑬等，各率本道官義諸軍，移鎭向京，一以遮截本道衝突之勢，一以夾助我軍討賊之力，允爲便當。”上曰：“依啓。予意，咸鏡南道之兵，亦不可不抄發，來聽元帥之令，更議爲之。”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7일(임오) 6번째기사>

### 정치/군사

#### 경기좌도 감사 성영이 평안도와 황해도의 군사를 수원과 광주에 진치게 하자고 보고하다

경기좌도 관찰사 성영(成泳)이 치계하였다. “지난 겨울에 홍적이 태릉(泰陵)과 강릉(康陵)을 범하는 변고가 있었는데 이제 선릉(宣陵)·정릉(靖陵)의 변고가 또 이와 같으니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이 왜적과는 한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군대가 물러난 이후로 싸움을 지연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풀이 이미 자랐으므로 반드시 오래지 않아 진격하여 섬멸할 것입니다. 다만 경기 지방은 오랫동안 적의 소굴이 되었으므로 조종(祖宗)의 능침(陵寢)이 더러운 적에게 빠져 있으니 서울을 회복하는 것이 하루가 급합니다. 설령 중국 장수가 속히 진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도리에 있어서는 어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경기와 영남 이외의 다른 곳엔 머물러 주둔하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군사는 수원(水原)·광주(廣州) 사이에 나아가 진치게 하고 충청도의 군사는 양성(陽城)·안성(安城) 사이에 나아가 진치게 한 다음 모든 경기 지역의 민정(民丁)들을 징발하여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형세를 돕게 할 것은 물론, 이미 송경(松京)에 도착해 있는 중국군을 빌어 서로 섞어서 진을 친다면 넋이 빠져 돌아가려 하는 적들은 반드시 도망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군사들이 있는 곳에 따라 서로 각각의 형세를 이룬다면 완전히 섬멸시키는 것은 기필할 수 없더라도 이른바 계교로써 격파한다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京畿左道觀察使成泳馳啓曰：“去冬，兇賊有犯泰陵·康陵之變，而今者宣·靖之變又如是一國臣民，不可與此賊，共戴一天。而天兵退屯之後，遲延至此。今日草長已迫，必不久進前殲滅。但畿甸久爲賊藪，祖宗陵寢，淪沒於腥膻，恢復京城，一日爲急。設或天將不爲速進，在我之道，豈可坐待而不爲之所乎？目今京畿嶺南之外，他無留屯之賊。臣之愚意，平安·黃海之軍，進陣於水原·廣州之間，忠清之軍，進陣於陽城·安城之間，悉畿內民丁，勿論壯弱，助其形勢，而借天兵已到松京者，相雜結陣，則彼褫魄欲歸之賊，必將遁逃之不暇。隨兵所在，迭相掎角，則片甲不還，縱未可必，而亦可謂以計破之者也。”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3일(정유) 8번째기사>

### 정치/군사

#### 서성이 유 총병과 함께 경기 남부의 지세와 왜적의 상황을 상의하고 아뢰다

유 총병의 접반관(接伴官)인 서성(徐滄)이 아뢰었다. “신이 오늘 아침 예조 정랑(禮曹正郎) 황낙(黃洛)과 함께 중군(中軍)을 맞이하여 다례(茶禮)를 베풀고 이어 어제 하사한 예물(禮物)을 주니, 중군이 글로 써서 보여주기를 ‘비록 받을 명목은 없으나 물리치면 불공(不恭)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삼가 하사하신 것을 받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사사로이 중군에게 지도를 주면서 ‘노야가 진병(進兵)할 도로를 알아서 왜적을 섬멸하려 하거든 대인이 함께 계획을 세울 때에 이것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감히 이것을 바친다.’ 하니, 중군이 받아보고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 며칠이나 걸리고 또 몇 개의 소로(小路)가 있는가? 수로(水路)로 가면 며칠 만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가? 서울에서 동래까지는 몇 개의 길이 있는가? 적들이 웅거하고 있는 읍은 몇 군데이며 방책(防柵)을 친 곳은 몇 군데인가? 그들은 어느 길로 왕래하는가? 지금 만약 진병한다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어느 길에 양초(糧草)가 가장 넉넉한가? 또 특별히 기병(奇兵)으로 승리를 취할 만한 방법

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 일일이 글로 써서 보여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글로 써서 ‘나는 응당 노야를 뒤따라 서울에 도착할 것이니 연로(沿路)를 세세히 그리고 일일이 써서 드리겠다. 여기에서 서울까지는 개성의 대로(大路)가 있는데 보군(步軍)은 열흘이면 도착할 것이다. 여기에는 대군(大軍)이 올 것을 대비해서 양초를 비축해 두었으므로 그래도 지공(支供)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외의 소로(小路)는 모두 왜적에게 노략질을 당해서 양초가 전혀 없다. 다만 수로가 있는데 연안(延安)과 배천(白川)에서 배를 띄워 조수(潮水)와 순풍을 타면 한나절 만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다. 왜적이 양식을 쌓아놓고 주둔해 있는 곳은 용산창(龍山倉)이라고 하는데 용산에서 서울까지는 5리 정도이다. **별도로 한 가지 계획이 있는데 김포에서부터 배를 버리고 육로를 통하여 부평(富平)·수원(水原)을 경유하면 용인(龍仁)·죽산(竹山) 두 고을에 도착할 수 있는데,** 금량(金亮)·종배(鍾杯)·좌잔(佐殘) 등의 왜적이 방책을 치고 있는 곳도 모두 2~3일의 노정에 불과하고 주둔하고 있는 왜적도 겨우 1천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만약 수일 간의 식량을 준비해 가지고 비밀리에 보행으로 달려가서 적의 방책을 격파하여 점거한다면 이것은 병법에 이른바 「빠른 우레에는 미처 귀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니, 반드시 적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동도(東道)에 주둔한 적의 군영이다. 피차간의 소식이 통하지 않아서 귀로(歸路)가 끊기게 되면 적은 반드시 뒤돌아보고 도망하여 돌아갈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때에 주력군은 뒤를 쫓고 기병(奇兵)은 앞을 가로막는다면 저들에게 제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들은 죽지 않으면 항복할 터인데 어찌하여 강화를 하려하는가.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의 계획이다. 서울에서 동래로 가는 길은 좌로(左路)·우로(右路)·수로(水路)·중로(中路) 이 네 개의 대로(大路)가 있는데, 이 뒤에 자세히 그려 올리겠다. 양초(糧草)는 우로(右路)에 다소 비축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을 다 쓰자 중군(中軍)은 이것을 보고 가져다가 총병에게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와서 총병의 말을 전하기를 ‘경략이 패(牌)를 전하여 이곳에 머무르면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당신네 나라에서 만약 왜적이 강화하고 물러갔는지의 여부와 현재 부산에 왜선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왜적이 군사를 증파했는지의 여부를 일일이 써서 가져오면 내가 경략에서 보고하고 서둘러 전진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劉摠兵接伴官徐潛啓曰：“臣今朝，與禮曹正郎黃洛，邀中軍，共設茶禮，仍給昨日所賜禮物，則中軍書示曰：‘受之雖無名，却之爲不恭，今謹領賜矣。’ 臣私以地圖，與中軍曰：‘老爺欲知進兵道路，以勦倭賊，大人贊畫之際，亦要看否，敢此呈似’ 云，則中軍受而覽之，曰：‘自此幾日到京城？亦有幾條小路？由水路，則可幾日到京城？自京城到東萊，有幾條路乎？賊所據幾邑，下寨幾處？由何路往來？今若進兵，由何路？何路糧草最優？抑別有奇兵取勝之道乎？可一一書示。’ 臣書對曰：‘小的當跟行老爺，到京城，沿路當細細圖畫，一一書呈。大概自此至京城，有開城大路，步軍則十日方可到。爲大軍之行，儲峙糧草，稍可支供矣。其餘小路，皆經倭賊焚掠，都無糧草。只有水路，自延安·白川，放船乘早潮，便風以去，則一日可至畿甸金浦·通津地方，乘潮半日，可至京城。倭賊峙糧留屯，名喚龍山倉矣，龍山之距京城，五里地也。別有一計，自金浦，捨船由旱路，經富平·水原之境，到龍仁·竹山兩縣地，金亮·鍾杯·佐殘等倭賊下寨處，皆不過二三日程，而留屯之倭，僅滿千名云。若齎數日糧，暗暗步走，擊破一寨而據之，則此所謂疾雷不及掩耳，破之必矣。此乃賊之東道留營之處也。彼此消息不通，歸路斷絕，則賊必反顧，而思欲遁還矣。大兵躡後，奇兵遮前，雖有智者，莫之爲謀也。賊奴不死則降，何必求和耶？此今日第一機關，而奇之奇者也。自京城，往東萊之路，則有左路·右路·水路·中路四大路，當隨後畫呈矣。糧草，則右路稍足矣。書訖，中軍覽之，欲持以示摠兵矣。未幾來傳

摠兵之言曰：‘經略傳牌住此，以待後令云。爾國，若具倭賊講和退去與否，釜山船隻有無，倭賊添生兵與否，一一書來，則吾當稟帖于經略，急欲前進.’ 云云矣.”

<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0일(갑진)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왜노에게 침탈당한 도와 침범당하지 않는 도에 대한 상세한 기록

경략이 이자(移咨)하였는데 대략에, “본국의 팔도 중에 어느 도 어느 읍은 모두 왜노가 점거하였고, 어느 도는 침범당하였으며, 어느 도는 아직 침범받지 않았고, 어느 곳 어느 도는 전혀 지경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을 세세히 갖추어 기록하여 자복(咨復)하도록 하십시오.”

하였는데, 회자(回咨)하기를, (….) 경기도 광주(廣州)·여주(驪州)·파주(坡州)·양주(楊州)·수원(水原)·부평(富平)·이천(利川)·인천(仁川)·장단(長湍)·남양(南陽) 등 부진과 양근(楊根)·풍덕(豐德)·가평(加平)·안산(安山)·삭녕(朔寧)·안성(安城)·마전(麻田)·고양(高陽) 등의 군, 그리고 용인(龍仁)·진위(振威)·영평(永平)·양천(陽川)·김포(金浦)·지평(砥平)·포천(抱川)·적성(積城)·과천(果川)·금천(衿川)·통진(通津)·교하(交河)·연천(漣川)·음죽(陰竹)·양성(陽城)·양지(陽智)·죽산(竹山) 등 현은 모두 분탕을 겪었고 또한 점거된 일도 있었으며, 강화(江華)·교동(喬桐) 등의 부현은 아직 적이 지경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

○經略移咨：大概，本國八道之中，某道·某邑，倭奴盡數占據；某道上犯；某道未犯；某處某道，全未入境，逐一備細，開寫明白，咨復施行．回咨曰：(…) 京畿廣州·驪州·坡州·楊州·水原·富平·利川·仁川·長湍·南陽等府鎮·楊根·豐德·加平·安山·朔寧·安城·麻田·高陽等郡·龍仁·振威·永平·陽川·金浦·砥平·抱川·積城·果川·衿川·通津·交河·漣川·陰竹·陽城·陽智·竹山等縣，俱經焚蕩，亦有占據．江華·喬桐等府縣，俱賊未入境．(….)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5일(무자) 10번째기사>

## 정치/군사

### 유성룡이 수원 등지에 요새가 있어 호남을 방어하기 용이하다고 아뢰다

상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왜적들이 이처럼 주둔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원주(原州)·지평(砥平)·양근(楊根)에는 수어(守禦)할 만한 곳이 매우 많고, 광주(廣州)의 남한 산성(南漢山城), 수원(水原)의 독성(禿城), 금천(衿川)의 금지산(衿之山)은 모두가 특이한 요새로 된 데이어서 여기를 지키면 호남(湖南)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경기 방어사(京畿防禦使)를 차출하여 광주·이천(利川) 등지의 군사를 취합하여 서울을 방어하게 해야 합니다. 변응성(邊應星)이 무사(武士)들 중에서는 좀 우수하니 방어사에 차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

○壬寅/上御便殿，謂大臣等曰：(…) 成龍曰：“臣見原州·砥平·楊根，可守處甚多．如廣州南漢山城·水原禿城·衿川衿之山，皆係奇險，守此則湖南可防．當差出京畿防禦使，聚合廣州·利川等地之軍，捍禦京城可也．邊應星稍優於武士中，以爲防禦使爲當．”(….)

<선조실록 43권, 선조 26년 10월 22일(임인)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비변사에서 단독으로 병사를 초발하여 왜군을 공격할 것을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흉적이 변경에 둔취하여 더욱 장궤하고 있는데도 중국군은 이를 소탕할 뜻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새로 군대를 출동시킨다고 하더라도 4~5개월 뒤에라야 나아오게 되니 앞서서 망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제도(諸道)의 정예병을 조발하여 지금 유방(留防)하고 있는 군사와 함께 성세(聲勢)를 떨쳐 적의 일진(一陣)을 공격 소탕함으로써 수군의 통로를 열어 수륙(水陸)으로 번갈아 공격한다면 적의 돌진을 막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윤두수(尹斗壽)의 의견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신들의 의견도 모두 이러합니다. 단지 전번에 윤두수가 올라왔을 적에 함께 유 총병(劉總兵)을 만나보았더니 경략(經略)과의 약속(約束)을 굳게 지킨 채 공격 소탕할 뜻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민하면서 감히 거사(舉事)를 결의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번에 무군사의 장계를 보니 용병(用兵)할 계책에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장계에서도 총병이 윤 각로(尹閣老)를 재촉하여 부른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마도 총병이 내려간 뒤로 그 뜻이 점차 변하여져서 기대할 수 있는 형세가 있는 것인가 합니다.

대저 봄이 점차 박두해 오게 되면 왜적이 틀림없이 사납게 공격하여 올 것이니 군사를 조발하여 지켜야 하는 것은 사세상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일의 장계에 의하면 경기에서 초발(抄發)한 군사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예병이라면 숫자가 차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니 여주 목사(驪州牧使) 김억추(金億秋)로 하여금 데리고 가게 하소서. 기전(畿甸)이 바야흐로 굶주리고 있어 양식을 싸가지고 가기가 곤란할 것이니 아산(牙山)의 양곡이 도착하면 수원(水原) 관아에서 제급하여 주게 하소서. 아산 이하의 일은 차차로 전수(傳授)하겠다는 것으로 경기 감사에게 밀유(密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나의 의견은 전일 이미 말하였다. 유 총병과 함께 거사한다면 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게 나의 의견이다. 앞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망하기를 재촉하는 것과 견주어 어느 것이 나은가? 전부터 비변사에서는 적정을 헤아린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적정을 헤아려보지도 않고 용병하여 성사(成事)한 경우가 있었더라 말인가. 그러나 예로부터 요행히 성공한 때도 있기는 하였으니 기대할 수 있는 이치가 없지는 않다. 이와 같이 중대한 일에 대해 조정 신하들에게 각기 계책을 진달하여 보게 하지도 않고 갑자기 거행해도 되겠는가. 그리고 이미 거사하지 않을 수 없다면 군사의 조발, 군량의 운반, 중장비 등 힘을 써야 될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닐 터인데 여기에 대해 특별히 조처하는 형세가 없으니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적의 형세를 상세히 탐지하여 강약과 허실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것 또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는 방도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아뢴 내용에 대해서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備邊司啓曰: “兇賊屯據邊境, 益肆猖獗, 天兵無勦却之意. 雖發新兵, 其出來之期, 當在四五朔之後, 不可坐而待亡. 欲調聚諸道精銳, 以留兵爲聲勢, 勦擊一陣, 以通舟師之路, 水陸侵軼, 則庶可遏截衝突, 故非但尹斗壽之意如此, 臣等之意, 莫不皆然. 但前者尹斗壽上來之時, 同見劉總兵, 則牢守經略約束, 無意攻勦, 以此爲悶, 不敢決意舉事. 今見撫軍司狀啓, 有銳意用兵之計. 前者狀啓中, 有總兵促召尹閣老之語. 無乃總兵下去之後, 稍變其意, 而有可望之勢乎? 大抵春和漸迫, 賊必轉肆鴟張. 調兵控守, 勢所不已. 前日狀啓, 畿甸抄軍, 其數不多. 但精銳之卒, 雖未滿數無妨, 令驪州牧使金億秋, 使之領去. 且畿甸方飢餓, 必難裹糧, 到牙山糧, 則令水原覓給. 牙山以下, 次次傳授事, 密諭于京畿監司何如?” 答曰: “予意則前日已言之.

與劉總兵同事則可，不然則，吾見其必有後悔。坐而待亡，孰與促亡？自前備邊司，無一事料敵。寧有不能料敵，而用兵成事者乎？雖然自古，或有僥倖成功之時，不無可望之理。大概如此大事，不使廷臣，各陳其策，卒遽爲之可乎？且既不得不舉，則調兵也，運糧也，器械也，其所以添力之方不一，而在此別無可措之形，得無大爲歎後乎？且不爲詳探賊勢，得其強弱虛實之眞，亦非知己知彼之道也。啓辭則依啓。”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8일(정묘)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에서 전주에 이르기까지 무군사가 일정에 대해 보고하다

무군사(撫軍司)가 치계(馳啓)하였다. “윤11월에 수원(水原)에 도착하여 시위군(侍衛軍)을 돌려보내어 일행(一行)을 줄일 것을 품달(稟達)하였고, 배행한 재신(宰臣)들이 상의하여 학문을 강론하고 이치를 밝힐 것과 덕을 쌓고 업을 닦는 것에 대한 차자(筭子)를 올렸습니다. 12월 1일 공주(公州)에 도착하였고, 7일 대신 윤두수(尹斗壽)가 내려온 뒤에 비로소 무군사를 설치하고 재신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제반 일을 상의하였으며 이날 동궁(東宮)께서 친히 기민(飢民)을 진구(賑救)하였습니다. 8일 부모(父老)를 모아놓고 민간의 절고(疾苦)를 친히 하문하였고, 11일에 알성(謁聖)하였고, 충청·진라·경기·강원 등도의 군대 2만을 조발하여 내년 정월 보름에 전주(全州)에 모여 점열(點閱)을 받고 1인당 20일분의 군량을 각자 준비하여 영남(嶺南)으로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13일 유 총병이 대신을 속히 오라고 하고 또 동궁을 속히 전주로 나아가라고 하였으므로 대신은 당일로 출발하였고 동궁께서는 28일에 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撫軍司馳啓曰：“閏十一月，到水原，侍衛軍稟達還送，以省一行，陪行宰臣相議，以講學明理，進德修業，上筭。十二月初一日，到公州。初七日，大臣尹斗壽下來後，始設撫軍司，宰臣齊會一處，商議諸事。同日東宮，親賑飢民。初八日，聚父老，親問民間疾苦。十一日謁聖，發忠清·全羅·京畿·江原等道軍二萬，以明年正月望時，會全州點閱，人持二十日私糧，當入嶺南。十三日，劉總兵，令大臣速來，且令東宮速進全州。大臣當日發行，東宮二十八日發行云。”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기사) 7번째기사>

## 정치/군사

### 병조가 부장·수문장·내금위·겸사복 등의 원수에 대한 일을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본조(本曹)가 전일에, 부장(部將)·수문장(守門將)·내금위(內禁衛)·겸사복(兼司僕) 등의 원수(員數)가 복잡하여 계통없이 어지러우므로 한결같이 법전에 따라 내금위는 실·예차(實預差) 도합 4백 40원(員)으로 정하고, 겸사복은 실·예차 도합 1백 원, 부장은 30원, 수문장은 50원으로 정하여 그들에게 오로지 숙위(宿衛)를 맡게 하고 그 나머지는 그전에 계하(啓下)한 대로 훈련 도감(訓練都監)에 보내 포(砲)와 활을 쏘는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명칭은 내금위와 겸사복이라 하면서 본장(本將)에 소속시키지 않고 중군(中軍)과 파총(把摠) 등의 관원에게 소속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내금위와 겸사복의 장(將)은 각기 3원씩 있는데 1원은 입직(入直)하고 2원은 출직(出直)하고 있습니다. 출직장은 항상 사졸을 거느리고 연습하다가 습진(習陣)할 때마다 거느리고 가서 함께 참여한다면 사졸이 기예를 조련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장관(將官) 또한 진법(陣法)을 전수하여 깨우칠 것입니다.

평상시 연습하는 규정은 열흘마다 한 차례씩 출직장 2원이 항상 교습장(敎習場)에 나가 편

전(片箭)·철전(鐵箭)을 시험보여 쏘게 하고, 그 밖에 육량 기사(六兩騎射)·조총(鳥銃)과 같은 과목을 자원에 따라 시험보여 그 결과를 병조에 보고하여 입계(入啓)하게 하고, 우등을 차지한 5인에게는 청포(靑布)나 면포(綿布) 또는 궁전(弓箭)을 돌아가며 시상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이소서.

그리고 사변 이후 공사(公私)간의 두축(頭畜)이 일체 부족하여 금군(禁軍) 중에 말이 있는 자는 백 명 중에 한 명도 없으므로 호가(扈駕)할 때 대부분 도보로 갈 뿐만 아니라 기창(騎槍)과 기사(騎射)하는 경우에도 말이 없어 걱정이니 매우 한심합니다. 계속하여 수위를 차지한 자에게는 마필(馬匹)을 상급(賞給)하는 것이 좋겠는데 마필이 전혀 나올 곳이 없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경기에 목장이 있는 곳의 수령이 만약 목자(牧子)에게 형편에 따라 착출(捉出)하도록 한다면 군사를 풀지 않더라도 10여 필의 말은 착출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경기 감사로 하여금 강화(江華)·남양(南陽)·수원(水原)·인천(仁川)·장단(長湍) 등 고을에서 민력(民力)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형편에 따라 착출하게 하여 금군의 전사(戰士)에게 상급할 마필을 준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부장과 수문장으로서 연습을 마친 자는 내금위장에 예속시키고 우림위장(羽林衛將)은 시사(時仕)의 수요가 겨우 5~6인이니 겸사복장에 소속시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내금위장과 겸사복장은 평상시에는 늙고 병든 사람으로 구차하게 인원수를 채우기도 하는데 이제 특별히 연습의 규범을 시행하려면 계속 전례를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양청(兩廳)의 장관은 나이 젊은 무신 중에 충분히 장관이 될 만한 자로써 택차(擇差)하되, 그 중에 만약 합당치 않은 자가 있을 때는 위장(衛將) 가운데 재용(才勇)이 있는 자와 서로 교환하여 장관과 사졸이 서로 친숙해지게 함으로써 긴급할 때 쓸 수 있게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辛巳/兵曹啓曰: “本曹以部將·守門將·內禁衛·兼司僕等, 元數繁冗, 雜亂無統, 一依《法典》, 內禁衛, 則定以實預差并四百四十員, 兼司僕則實預差并百員, 部將則定以三十員, 守門將則定以五十員, 使之專委宿衛, 其餘則依前啓下, 送于訓練都監, 鍊習砲射等技矣. 但此人等, 既名爲內禁衛·兼司僕, 而不屬本將, 屬之於中軍·把摠等官, 似爲未穩. 內禁衛·兼司僕將, 各有三員, 一員入直, 二員則出直, 出直之將, 常常領卒鍊習, 每於習陣之日, 領去同參, 則非但士卒有操鍊之效, 其將亦可傳曉陣法矣. 常時鍊習之規, 每一旬一次, 出直將二員, 常往教場, 試射片箭·鐵箭, 此外如六兩騎射·鳥銃, 從自願試之, 報兵曹入啓, 優等五人, 或以靑布, 或以綿布, 或以弓箭, 循環賞給, 以示勸賞之意. 且事變以後, 公私頭畜, 一切竭乏, 禁軍之中, 有馬者, 百無一人, 非但扈駕之時, 率皆徒步, 至於騎槍·騎射, 亦患無馬, 極爲寒心. 連次居首者, 賞給馬匹爲便當, 而馬匹專無出處. 側聞京畿有牧場處守令, 若令牧子, 隨便捉出, 則雖不發軍, 而十餘匹之馬, 不難捉出云. 令京畿監司, 於江華·南陽·水原·仁川·長湍等官, 不煩民力, 隨便捉出, 以備賞給禁軍戰士宜當. 部將·守門將鍊習者, 隸於內禁衛將; 羽林衛將, 時仕之數, 纔五六人, 屬於兼司僕將宜當. 且內禁衛·兼司僕將, 在平時, 或以老病之人, 苟且充數, 今欲另加鍊習之規, 則不可仍踵前習. 兩廳之將, 以年少武臣, 可堪爲將者擇差, 其間如有不合者, (興) [與] 衛將之有才(男) [勇] 者相換, 使之將卒相熟, 以備緩急之用, 如何?” 傳曰: “依啓.”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5일(신사) 1번째기사>

## 정치/군사

유성룡이 수원 등 산성으로 지킬 것을 건의하다

상이 영의정 유성룡을 인견하였다. (...) 성룡이 아뢰기를, “산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수원(水原)·인천(仁川)·행주(幸州) 등의 경우로 보면 산성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만합니다.” 하니, (...)

○上引見領議政柳成龍.(...) 成龍曰: “山城甚好. 如水原·仁川·幸州等處觀之, 則可以知山城之不可不守也.” (...)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7일(계사)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경기 관찰사 유근이 수원의 독성 산성 수축에 관해 아뢰다

경기 관찰사 유근(柳根)이 치계하였다. “수원(水原)의 독성 산성(禿城山城)을 수축(修築)하는 일은, 이달 11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14일에 역사를 끝냈습니다. 사세(事勢)를 참작하고 민정(民情)을 묻기도 하여 독성 성안에 백성들을 모집해 들여다 가운데에 창고를 설치하고 곡식을 쌓으려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수원에는 토호(土豪)가 많아서 축성하는 역사를 놓고 뜯소문을 만들어 서로 부추기면서 어떤 사람은 ‘완성하기가 어렵겠다.’ 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성의 힘을 퍼주는 것이 오늘날의 제일 급선무이나 백성을 살리고자 사람을 부리는 것도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서 부득이 독촉하여 역사를 끝내게 하였습니다.”

○京畿觀察使柳根馳啓曰: “水原禿城山城修築事, 今月十一日始役, 十四日畢役. 參商事勢, 訪得民情, 禿城城內, 募入人民, 中設倉廩, 以爲積粟之計, 而第慮水原多土豪, 以築城之役, 胥動浮言, 或以難成云. 寬民之力, 固是今日第一急務, 而生道使人, 亦不可已, 不得已督令畢役矣.”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9일(갑오)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비변사가 경기의 금천, 과천, 수원에 둔전을 설치하여 군사 훈련 등을 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기전(畿甸)의 사경 안에는 쭉대밭만이 눈에 띄고 도적이 횡행하여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었는데, 동서(東西) 양역(兩驛) 및 각처에 둔전(屯田)을 설립한 뒤부터는 전야(田野)가 점차 개간되고 막혔던 도로도 비로소 통해졌으니, 그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금천(衿川)·과천(果川)의 읍리(邑里)와 수원(水原)의 사근(沙斤)도 역시 왕래하는 중요한 도로로 행려(行旅)가 지숙(止宿)하는 곳이니 둔전을 개간하고 유민(遺民)을 불러 모으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런 때문에 사근 및 금천의 읍리에는 이미 스스로 모여든 자 약간명을 확보하였는데, 금천 사람은 금천의 산성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 성을 수축하고 험지에 의거하여 군사 훈련시키는 일등을 독성(禿城)의 예와 같이 한다면 응모자도 많을 것입니다. 또 그 산성은 읍거(邑居)와 거리가 몇 리밖에 안 되니, 만일 그 성에 인호(人戶)를 모집해 들여서 곡식을 저장하고 군사를 훈련하며 보수(保守)할 계획을 한 다음, 나아가 읍리에서 농사를 짓게 하여 점차 황무지를 개간케 하고 그 성에 들어가 사는 사람에게에는 특별히 잡역을 덜어주면 사람들은 필시 즐겨 모여들 것이니, 백성을 모으고 곡식을 저장하여 군사를 훈련시킬 전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사(武士)가 그들을 창솔하지 않는다면 토적을 방어하기가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인(武人)으로 소모장(召募將)을 삼고, 농우(農牛)와 곡종(穀種)은 호조 및 본도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갖추어 지급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천 읍리도 이상의 예에 의하여 무사 2,3명을 모집하여 그 일을 맡겨서 성과를 거두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備邊司啓曰：“畿甸四境之內，蓬蒿滿目，盜賊縱橫，人不得通行，自東·西兩驛及各處，設立屯田之後，田野漸墾，道梗始通，不無其效。如衿·果之邑里，水原之沙斤，亦是往來要路，行旅止宿之處，合開屯田，招募遺民，故沙斤及衿川邑里，已得自募者若干，而衿川之人，則願入處於衿之山城，修築舊城，據險鍊兵等事，一如禿城之例，應募者亦多。且其山城，與邑居相距數里許。若於此城，募入人戶，積粟鍊兵，以爲保守之計，出而耕墾於邑里，使之漸次開荒，而其所入接之人，特令蠲除雜役，則人必樂赴，而庶有生聚訓練之望矣。然非有武士爲之倡率，則防禦土賊亦難，故以武人定爲招募將，農牛·穀種，令戶曹及本道，隨便備給，而果川邑里，亦令依右例，募得武士數三人掌之，俾有成效。” 上從之。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9일(계사)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접대 분도감이 심 유격의 품첩에 대해 즉시 내일 새벽에 수원으로 보내라고 아뢰다

접대 분도감(接待分都監)이 아뢰었다. “오늘 오후에 심 유격의 차인(差人)이 품첩(稟帖)을 가지고 이번달 5일에 웅천(熊川)에서 왔는데, 행장은 10일이나 11일 간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니, 즉시 정사 대응관(正使答應官) 정요(程瑤)를 차임하여 내일 새벽에 수원 땅으로 보내어 행장의 차관(差官)으로 중국 사신을 영접할 자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먼저 달려 와서 아뢰입니다.”

○接待分都監啓曰：“今日午後，沈遊擊差人持稟帖，今月初五日，發自熊川來。行長則十日十一日間，當回到云。卽差正使答應官程瑤，明早發送水原地，使之等待行長差官之接迎天使者。先馳來報云。”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13일(갑인)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에서 돌아온 우부승지 윤담무가 왜정을 보고하다

우부승지 윤담무(尹潭茂)가 **【중국 사신에게 문안한 뒤에 수원으로부터 돌아왔다.】** 아뢰기를, “4일 저녁에 중국 사신이 수원에 이르니, 중국 사람 유수(劉壽)란 자가 남쪽으로부터 김가유(金嘉猷)의 서보(書報)를 가지고 왔는데, 중국 사신이 불러들여 그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하였습니다. 중국 사신이 남호정(南好正)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과거 평양에서처럼 남병(南兵) 10여 만이 와서 습격한다는 말을 듣고 바야흐로 의심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부사(副使)에게 문안한 왜인이 우연히 그대 나라의 조련하는 많은 둔병(屯兵)들이 모두 호의(號衣)·호건(號巾)을 착용한 것을 보고는 남병이 이미 도착한 것으로 알고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미 개유(開諭)하여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다. 초순(初旬)을 넘기지 않고 2진(陣)을 철수시킬 것이며, 3진(陣)도 수일 간격으로 곧 철수시킬 것이다. 큰 일이 완료되려 하는 데 긴요치 않은 군사 조련의 일로 의혹을 일으켜 대사의 완성을 지연시키는 것은 무모하다. 왜인이 철수한 뒤에 조련하여 복수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호유격(胡遊擊)이 온 것을 왜인이 듣고서 의심하고 있으니 이 또한 매우 무익한 일이다.’ 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右副承旨尹潭茂【天使前問安後，還自水原.】啓曰：“初四日夕，天使到水原，有唐人劉壽者，自南邊，持金嘉猷書報來，天使招入，與語良久。天使語南好正曰：‘倭子聞有南兵十餘萬來襲，如平壤之舉，方懷疑慮之際，副使前問安倭，遇見爾國練兵多屯，皆着號衣·號巾，認謂南兵已到，不勝驚惶。今已開諭，知其不然。二班之撤，不出初旬，而其三班則間數日卽撤矣。’



大事將完，而以不緊鍊兵之事，惹起疑惑，致其遲延，可謂無謀。倭退之後，操練復讎，有何不可？胡遊擊之來，倭已聞而疑之。此亦甚爲無益’ 云云。” 傳曰：“知道。”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6일(을해)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비변사에서 경기도의 수성과 군사 훈련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날 중외(中外)의 형세가 진실로 위박(危迫)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촌각(寸刻)의 여력도 남기지 않고 급급히 조치한다면 앞으로 위급함이 있더라도 오히려 만분의 일이라도 지탱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체하여 시일만 보내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계책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적을 막는 일은 군사를 훈련하고 곡식을 저축하며 험한 곳에 웅거하여 요해지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하삼도(下三道)는 도체찰사(都體察使)가 이미 내려갔으니 반드시 경리(經理)하여 조정의 근심을 풀어줄 것이지만 경기(京畿)로 말하면 곧 사방의 근본이 되는 곳인데, 사방을 돌아보아도 탕진되어 요리할 계책이 없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수원(水原)의 독성(禿城)은 비록 성으로서의 형태는 이루어졌으나 수어(守禦)에 필요한 여러 기구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을 대적할 때에는 한 가지 물건이라도 갖추어 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리한 병기가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죽산 산성(竹山山城)은 바로 호서(湖西)의 양로(兩路)가 모이는 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근일 현감 강응문(姜應文)으로 하여금 그 안에 창고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이 또한 제때에 성을 수축한 뒤에야 방수(防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장국주(張國柱)를 보내어 수성(守城)의 임무를 맡기자고 계청(啓請)하였던 것인데, 다시 살펴보니 사람됨이 나약하고 재주가 부족하여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같으므로 아직 내려보내지 않았습니

다. 대개 금년은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백성들이 지대(支待)하는 일에 지치기는 하였으나, 먹고 살기가 지난해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경기 각 진포(鎭浦)와 산읍(山邑)의 수군들에게 입번(入番)을 면제해주고 기일도 줄여 역사에 나아가도록 하면 점차 형편이 나아질 것입니다. 더구나 경기의 제읍(諸邑) 중 수원과 같은 곳은 난리를 겪었다고는 하나 진수(鎭守)를 담당할 만한 정병(精兵)의 수효가 실로 많은데, 다만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단속하여 응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방어사(防禦使) 1인에게 별도로 이 일을 전담시켜 효과를 얻도록 책임지운 뒤에야 군사를 훈련하고 험요(險要)를 설치하는 일에 효과를 볼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備邊司啓曰：“今日中外之勢，固爲危迫，然若乘此機會，急急措置，不遺寸刻餘力，則前頭雖有緩急，猶可支撐於萬一，不然而遷延度日，以至於無可奈何之地，則雖有智者，不能爲之計矣。今之禦敵之事，不過鍊兵·儲穀·據險·守要而已。下三道，則都體察使，既已下去，必爲經理，以舒朝廷之憂，至如京畿，則乃是四方根本之地，而四顧蕩然，無一料理之策，寧不寒心？水原禿城，雖城子成形，而守禦諸具，尙未措備。臨敵之際，一物不具，則雖有利器，將無用矣。且竹山山城，正當湖西兩路之會，近日令縣監姜應文，新設倉庫於其中，(比) [此] 亦登時修築城子，然後可擬防守。乃(前)者啓請，遣張國柱，爲守城之任，更察之，則人微才短，難可辦此，故至今不爲下送矣。大概今年，稍爲登稔，民間雖困於支待之役，亦不如前年之艱食。若以京畿各鎭浦·山邑水軍，除其入番，減日赴役，則自可漸次成形。況畿甸諸邑，如水原等處，雖云經亂，精兵之可堪鎭習者，其數實多，特以無主管之人，故未得團束應用耳。臣等之意，必須別出防禦使一人專掌，責以成效，然後鍊兵設險事，方可見效。敢啓。” 上從之。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1일(경오) 3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과 강화에 요새를 설치하고 청주와 충주 사이를 경략토록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의 독성 산성(禿城山城)에 마땅히 보내주어야 할 군병과 군기를 미리 조치하는 등의 일은 진실로 수령만을 믿을 수 없으니, 별도로 관인(官人)을 보내어 수원·남양(南陽)·양성(陽城)·안성(安城) 등 부근의 군정(軍丁)을 모집하여 교련시키게 하는 일이 오늘날의 가장 절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관인을 보내면 호령이 엄중해지지 못할 것이니 곧 방어사(防禦使)를 차견(差遣)하여 오로지 관장해서 성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강화(江華)는 곧 해로(海路)의 보장(保障)이며, 수원은 또 남로(南路)의 요충(要衝)이니, 요새를 설치하고 곡식을 저장하여 서로 견제하는 곳으로 삼는 것이 실로 기의(機宜)에 합당합니다. 한강은 형세가 좋은 곳이니 강 연안을 따라 둔보(屯堡)를 촘촘히 세워 한편으로는 경작하고 한편으로는 지키는 계책을 조금이라도 느슨히 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경성에 도체찰사가 옛날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별도로 차출하기 어렵습니다. 호남과 영남의 사이는 곧 적이 왕래하는 요충이므로 충청 병사(忠淸兵使)가 연해 지역에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청주와 충주 사이를 경리(經理)하는 일은 진실로 원수[元戎]에게 책임지워야 합니다만, 병사 원균(元均)이 이미 유주(留住)하고 있으니, 청주의 속현(屬縣)을 충주로 이주(移住)시켜 상류의 형세를 중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주는 잔파(殘破)됨이 이미 극심하므로 병영(兵營)을 이설(移設)하는 것이 사세에 편리한지의 여부는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도체찰사로 하여금 상량하여 처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備邊司啓曰: “水原禿城山城, 應入軍兵·軍器, 預爲措置等事, 固不可但恃於守令, 別遣官人, 募集水原·南陽·陽城·安城等處附近居住軍丁, 教訓之事, 最是今日切急之務. 若遣官人, 則號令不重, 防禦使今當差遣, 使之專掌責效爲當. 江華, 乃是海路保障, 水原又係南路要衝, 設險·積穀, 以爲交相控制之地, 實合機宜. 漢江形勢所在, 沿江上下, 屯堡相望, 且耕·且守之計, 尤不可緩, 而京城都體察使, 古雖有之, 今難別爲差出. 湖·嶺之間, 乃是賊路之衝, 忠淸兵使, 不當退處沿海之地. 淸州·忠州之間, 經理之事, 固當責之元戎, 兵使元均, 已爲留住淸州之屬縣, 移住忠州, 以重上流形勢, 未爲不可. 但忠州殘破已極, 移設兵營, 事勢便否, 未可遙度. 令都體察使商量處置, 何如?” 上從之.

<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3일(임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비변사에서 수원 독성이 완성되었다고 보고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 이로써 논하면 곳곳마다 모두 험고함을 설치할 만하고 곳곳마다 모두 보수(保守)할 만하니, 마땅히 적절하게 지시하고 간편하게 조치하여 가까운 백성에게 약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 보수(保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와 화포를 많이 구비하여 때때로 백성을 모아 성 지키는 규식을 조련하여 백성으로서 보는 자로 하여금 모두 이곳에 들어가면 참으로 삶을 찾고 죽음을 면할 수 있음을 환히 다 알게 하면 백성의 뜻이 저절로 안정되어 창졸에 이산하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公私)의 곡식을 거두어 모아 그 안에 다 저장해 두면 이른바 청야(淸野)의 계책도 또한 함께 시행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먼저 들어가 보호할 곳을 만들지 아니하고 청야를 권하면 사세상 행하지 못할 바가 있고, 임시에 도적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려 한들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수원(水原) 독성(禿城)은 성첩(城堞)이 대충 성취되었고 또 포루(砲樓)를 설치하였으므로 와서 보는 백성들은 자못 성을 지킬 의사가 있다 합니다. 여기에서 또한 민심이 믿을 바를 보게 되면 조금은 안정된다는 하나의 징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

○備邊司啓曰：(…) 以此論之，則處處皆可設險，處處皆可保守．要當指授得宜，措置簡便，約束傍近之民，使之入保，而多備器械·火砲，時時聚民，操練·守城之規，使民之見者，曉然皆知入此，眞可以求生而免死，則民志自定，而倉卒無離散之憂．因爲收聚公·私之穀，盡置其中，則所謂清野之謀，亦在其中矣．今不先爲入保之地，而勸之清野，則事勢有所不行，臨時，雖不欲齎盜，不可得也．近日水原禿城，城堞粗就，而又設砲樓，民之來見者，頗有守城之意云．(…)

<선조실록 68권, 선조 28년 10월 27일(병인)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정원에서 왕 중군이 명사의 행방을 모른다는 장천뢰와 김효순의 전언을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어제 보낸 선전관(宣傳官) 장천뢰(張天賚)와 역관(譯官) 김효순(金孝舜)이 와서 말하기를, ‘수원(水原)에 도착하여 왕 중군(王中軍)을 보고 물으니, 그의 대답이 「3일 2경에 정사가 이미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바로 뒤쫓아 문에 이르렀으나 문지기가 내보내지 않아서 도로 적의 영으로 들어갔다. 새벽에 다시 차관(差官)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문에 도착하였으나 또다시 금하기에 부하를 시켜 문쇄(門鎖)를 부수고 빠져나왔다. 동래현(東萊縣)에 이르러 남호정(南好正)과 박응욱(朴應昱)을 만나 속히 오라고 하고 먼저 말을 달려 왔을 뿐, 명사는 끝내 서로 만날 수 없었다.」 하고, 일로(一路)의 과발에게 물어도 모두 알지 못하니, 아마도 정사가 왜적에게 추격당할까 염려하여 사잇길을 따라 간 것으로 보인다.’ 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지나쳤다면 평안도(平安道)에 사람을 보내 방문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서계(書啓)를 보니 극히 놀랍다. 만약에 그렇다면 남호정이 어전에서 아뢴 말은 바른 소리가 아닌 것 같다. 이미 명사(明使)를 잃었으니 속히 비변사에 내려 조처하라.” 하였다. (…)

○政院啓曰：“昨日， 所送宣傳官張天賚譯官金孝舜， 來言曰： ‘到水原， 見中軍問之則曰： 「初三日二更， 聞正使已出， 卽追及門， 則閤者不許出， 還入賊營． 曉頭， 作差官狀到門， 則又禁之， 使其家人， 打破門鎖而出， 到東萊縣， 見南好正及朴應昱， 但使速來， 而先鞭以來， 天使終不得相遇．」 問諸一路撥兒， 則亦皆不知． 意或正使， 慮倭追逐， 從間路以行也．’ 若已過去， 則平安一路， 差人訪問爲當．” 傳曰：“觀此書啓， 極爲駭愕． 若然則南好正， 御前所啓之言， 不直可疑． 旣失天使， 速下于備邊司處置．” (…)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2일(무신) 3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 독성이 수축되고 영장 조발과 수원부사에게 지키게 하면 실효가 있을 것이다**

사도 도체찰사(四道都體察使) 유성룡(柳成龍)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독성(禿城)은 성첩(城堞)이 이미 수축되었고 기계도 대략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온 부민(府民)이 모두 안정된 뜻을 가지고 지금 사력(私力)으로 가옥을 수리하여 들어가 살고자 하는 자가 몹시 많습니

다. 이것으로 민심이 믿는 데가 있으면 스스로 케산(潰散)할 염려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장(營將) 조발(趙撥)은 하는 일에 근실하여 주야로 게을리 아니함으로써 약간의 실효를 거두었으니 자못 가상합니다. **만약 사변이 있으면 의당 수원 부사(水原府使)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발은 전직 우후(虞候)로서 지금은 직명이 없어 군졸을 통솔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에게 실직(實職)을 부여하여 격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용인(龍仁)과 양지(陽智) 사이의 요충지에 고성(古城)이 있는데 그 이름은 석성(石城)입니다. 그 지형의 험난함이 **독성**보다 나으며 또 직로(直路)의 요충지에 있으니, 만약 이곳을 수축하여 군량을 저장하고 군사를 훈련시켜 우측으로 독성을 안고 좌측으로 남한 산성(南漢山城)을 연하여 정치(鼎峙)의 형세를 이루면 경도(京都)의 문호가 견고할 것입니다. 이에 신이 용인 현령(龍仁縣令) 윤수연(尹粹然)으로 하여금 중들을 모집하여 방옥(房屋)을 수리하게 하였고 또 양재 찰방(良才察訪) 최홀(崔屹)로 하여금 전영장(前營將)을 겸하게 하여 아울러 경영하여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크고 인력은 미약하여 쉽게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니, 그 근처의 안집 도감(安集都監)으로 하여금 둔전(屯田)의 농우(農牛)와 양곡(糧穀)을 옮겨 보태고 힘을 합하여 성취시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초 둔전을 설치한 것은 요새를 점거하여 백성을 취합하려는 계획에서였는데, 경기의 직로는 경영하여 다스리기를 더욱 시급히 해야 합니다. 안집 도감으로 하여금 물력을 융통하여 성취를 기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四道都體察使柳成龍啓曰：“**水原禿城，則城堞已修，器械粗完，故一府之民，皆有定志，**時方以私力，蓋造廬舍，欲爲入處者甚多。以此知其民心有所恃，則自無潰散之慮也。營將趙撥，勤於所事，晝夜不怠，稍得成效，頗爲可嘉。如有事變，則當使**水原府使**及此人守之。但趙撥，以前虞候，時無職名，似難統攝軍卒。請付實職，使有激勸之心。龍仁·陽智之間，有古城當路，名曰石城。地形險要，勝於禿城，且在直路之衝。若於此地，又爲修葺，儲粟·鍊兵，右控禿城，左連南漢山城，爲鼎峙之勢，則京都之門戶固矣。臣已令龍仁縣令尹粹然，募入僧人，蓋造房屋；又令良才察訪崔屹，兼前營將，竝爲經紀。但役巨力微，難可易就，其近處安集都監屯田農牛·糧穀，可以推移添補，合力成就。當初屯田之設，正欲爲據險聚民之計，而京畿直路，經理尤急。請令安集都監，通融物力，期於有成，何如？” 上從之。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7일(계축) 5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 독성 등의 경우 백성들이 들어가 지켜서 성을 지킬 수 있었다

정원이 비변사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각도의 감사에게 ‘근일 중외(中外)의 인심이 동요하여 안정되지 못하니 효유하여 진정시키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황신(黃愼)의 장계(狀啓)에 의하면, 적추(賊酋)가 중국 사신을 오만하게 대우하였고 청정(淸正)이 또 나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말을 듣고서 중외가 놀라 못 사람의 마음이 의혹되고 있다. (…)

그러니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그 정상이 또한 매우 가엾다. 믿을 데가 없으므로 미처 달아나 피하지 못하고 움츠린 채 살길을 찾을 여지가 없으니, 형세는 급박하기만 하다. 그러나 피하여도 살 만한 곳이 없어서 굶주림과 추위가 함께 닥쳐 적이 오기 전에 먼저 죽게 된다면, 차라리 마음을 합하고 힘을 같이하여 죽음 속에서 삶을 찾을 계책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비유해 말하건대, 흙과 돌이 모여 서로 합하면 산이 되어 견고해지지만 채와 모래는 힘이 없으므로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서로 마음과 힘을 같이하느냐 같이하지 않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길이 달라지는 것이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절때**

전라도의 사군(射軍) 수백 명이 행주(幸州)에 웅거하여 큰 적을 막아 물리쳤고, 인천 산성(仁川山城)과 수원 독성(水原禿城)에서는 그곳에 사는 백성이 들어가 지켜서 적이 감히 침공하여 함락하지 못하였으니, 서산(西山)의 홍복사(洪福寺) 같은 곳으로 달아나 숨었다가 적에게 어육(魚肉)이 된 것에 비하면, 지우(智愚)나 이해(利害)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차이가 날 것이다. 죽음을 피하여 살길을 찾는 것이 사람의 상정(常情)인데, 너희들 백성만이 이미 그렇게 분명한 증험을 보지 못한단 말인가. 이 적은 흉악한 짓을 다하였으므로 죄가 차서 스스로 죽을 때를 당하였는데 이제 또 중국을 어기고 다시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다. 무릇 군사는 명분이 바르면 썩썩하고 바르지 못하면 약해지는 법이다. 저들이 이적(夷狄)이기는 하나 그래도 인정(人情)이 있을 것인데, 그 부하의 무리 중에 어찌 여러 해 동안의 고생을 원망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가 없겠는가. (…)"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政院以備邊司言啓曰: “近日中外人心動搖, 不能底定, 不可不曉諭鎮定. 近據黃慎狀啓, 賊酋慢待天使, 清正將又出來. 聽此中外驚駭, 衆心疑惑. (…)

爾其情亦甚可哀. 隄防無恃, 未及奔避, 蹙蹙然求生之無地, 勢則迫矣, 但避而無可生之地, 飢凍交迫, 賊未至而先死, 則無寧協心同力, 務爲死中求生之計. 譬猶土石相湊, 合則爲山而堅固, 灰沙無力, 故遇風散轉. 各人之同心力與不同心力, 而死生判者, 何以異於此哉? 頃者, 全羅數百射軍, 據幸州而摧却大敵, 仁川山城·水原禿城, 居民入保, 而賊不敢侵陷. 其視奔匿西山·洪福等處, 而爲賊魚肉者, 智愚利害, 相去遠矣. 避死求生, 人之常情, 爾百姓獨不見已然之明驗乎? 此賊窮兇極惡, 適丁罪盈自斃之辰, 今又悖逆天朝, 而爲再動之計. 凡兵, 直爲壯, 曲爲老. 彼雖夷狄, 亦有人情, 其部下徒衆, 豈無積年怨苦思歸者乎? (…)" 答曰: “依啓.”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3일(을사)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 등지에 하도의 양곡을 다 받아들이게 하였다는 호조 판서 김수의 보고

사시(巳時)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영돈녕(領敦寧) 이산해(李山海), 영의정(領議政) 유성룡(柳成龍), 판부사(判府事) 윤두수(尹斗壽), 좌의정(左議政) 김응남(金應南), 지사(知事) 정탁(鄭琢), 경림군(慶林君) 김명원(金命元),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수(金睟),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덕형(李德馨), 우참찬(右參贊) 신잡(申礪), 첨지(僉知) 유영경(柳永慶)을 인견(引見)하였는데, 우승지(右承旨) 기자헌(奇自獻), 주서(注書) 조즙(趙澂), 사변(事變) 거주서(假注書) 최동식(崔東式), 검열(檢閱) 강주(姜籀)·심액(沈詒)이 입시하였다. (…)

상이 김수에게 이르기를, “양식이 없다는 말이 맞는가?”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전에 6백 석이 있었고 수원(水原)·안산(安山)·광주(廣州)에는 하도(下道)의 양곡을 다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군사가 많고 적은 것은 알 수 없으나, 어찌 양식이 아주 없다 하겠습니까.” (…)

○戊午(巳時), (…)

上謂金睟曰: “無糧之言, 是乎?” 睟曰: “前有六百石, 水原·安山·廣州下道糧, 皆令入捧. 軍之多少不可知, 而豈曰全無糧哉?” (…)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26일(무오)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선조가 수원과 공주 사이를 왕래하며 독전하겠다고 하다

(…)

좌의정 김응남(金應南)은 아뢰기를, “소신은 아직 황신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체로 적의 형세는 또한 당초와는 달라서 당장 쳐들어오지는 않을지라도 훗날에

다시 덤벼들 것은 조금도 의심이 없으니, 방비하는 계책을 잠시도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상께서 전교를 내리셨으므로 【앞서 상이 하교하기를 ‘내가 세자로 하여금 전주(全州)와 공주(公州) 사이에 있으면서 전투를 독려하도록 하려 했는데 지금 세자에게 병이 있으니, 내가 수원(水原)과 공주(公州) 사이를 왕래하면서 독전하러 한다.’ 하였다.】 신들은 감격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성상께서 한 치의 땅이라도 진보(進步)하시면 적은 반드시 백 리의 땅을 퇴보(退步)할 것이니, 적이 비록 날뛰다 해도 자멸할 것입니다. 거가(車駕)가 잠시라도 한강(漢江)을 건너신다면 위세가 떨쳐져 백성들이 서로 기뻐할 것입니다.” (…)

○丁亥/上御別殿, (…) 左議政金應南曰: “小臣尙未逢黃愼而語矣. 大抵賊勢, 亦與當初有異, 朝夕立至, 雖或未必, 他日更肆, 少無疑矣. 備禦之策, 不可頃刻敢忽. 自上有傳教, 【先是上下教曰: “予欲令世子往全州·公州之間督戰, 而世子有疾, 予欲於水原·公州之間, 往來督責云云.”】 臣等不勝感激. 必須自上進步一寸之地, 則賊必退步百里之地. 賊雖鴟張, 亦當自滅. 設或車駕, 暫越漢江, 則聲威自倍, 萬姓相慶矣.” (…)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25일(정해)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유성룡이 수원의 독성과 남한산성에 가서 포루를 살펴보겠다고 하다

(…) 상이 이르기를, “황해 감사의 말에, 우리나라 해자(垓子)는 매우 좋지 못하고 중국의 성호(城壕)제도가 좋을 듯하다고 하였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중국의 해자는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포루(砲樓)의 제도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수원(水原)의 독성(禿城)은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고자 합니다. 남한 산성 역시 좋다고 하는데 신이 가서 본 후에 정하겠습니다.” (…)

○甲寅/巳時, (…) 上曰: “黃海監司言: ‘我國垓子, 甚爲不好. 中原城壕之制, 似好矣.’” 成龍曰: “中原垓子, 深不可測矣.” 上曰: “此乃砲樓之制乎?” 成龍曰: “是矣. 水原禿城, 人皆欲入. 南漢山城, 亦好云, 臣當往見以定矣.” (…)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3일(갑인)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 인구가 많아 독성에 다 들어갈 수 없다는 등 경기 산성의 상황에 대한 논의

묘시(卯時)정각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갔다. (…) 상이 《주역(周易)》을 강했는데, 관괘(觀卦)의 서괘(序卦)로부터 시작하여 ‘위관야(爲觀也)’ 까지 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파사성(婆娑城)은 기계(機械)와 군량이 다 준비되었는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대포와 소통(小筒)은 황해도로부터 왔으나 그 나머지 활이나 화살 등도 역시 자못 갖추어졌고 군량은 거의 3천 석에 이릅니다. 단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독성(禿城)에는 수원(水原)사람들이 모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순행할 때 성을 지키는 절차 등을 모두 연습시켰는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용진·파사성·독성에서 모두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틀리지 않던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비록 경성 도감(都監)의 군사 훈련만은 못해도 자못 법도가 있었

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독성의 견고하기는 어떠하던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들으니 하삼도(下三道)에는 이렇게 험하고 견고한 성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수원(水原)은 인구가 많아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성(安城)에도 서운 산성(瑞雲山城)이 있는데 크고 견고합니다. 고을 사람들이 무한 산성(無限山城)에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을 쌓아 지키려고 합니다. 다만 대로(大路)를 방어하기에 너무 멀고 물자와 인력이 부족하므로 하지 못합니다. 무한 산성은 독성만은 못합니다. 또 앞에 굽어 볼 수 있는 산이 있는데 방어사 변양걸(邊良傑)이 독성 위에 흙을 쌓아 위를 평평하게 한 뒤에 집을 세우고 창을 뚫어 내려다 보게 하였습니다. 석거(石車)와 포군(砲軍)은 모두 그 속에 들어가고 성 밖에는 목책(木柵)을 세워 틈 사이로 적을 쏘도록 하였는데 다만 물이 부족하여 날씨가 가물 때에는 군사들이 머물 수 없습니다. 죽산(竹山)에 산성이 있는데 산에 사각(四角)이 있는 것이 마치 천연적인 성의 포루(抱樓)와 같아 간망(看望)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역시 수축하여 충주(忠州)로 통하는 직로(直路)를 제압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기의 군사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거의 1만여 명에 이르는데 1백 인 중 활을 쏠 수 있는 자가 거의 50~60명 꼴이 되므로 이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들은 한 사람이 오만가지 일을 담당하니 그 고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수군(水軍)은 더욱 고생이 많으니 1년에 4교대로 번을 서는데 당사자와 봉족(奉足) 3인이 번갈아 가면서 역을 맡으므로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70~80세가 되어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군역을 면제시키지 않고 죽으면 자손으로 배정하는데 병조에서도 분간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정(閑丁)으로 충원한다면 늙은이들을 면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이 수군 대장의 직임에 제수되었으나 선척과 군정(軍丁)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군사는 강변 사람들을 권유하여 잠정적으로 부대를 편성하고, 선척은 개인의 배를 모아 그 숫자를 장부에 적어 놓았으나 이것으로 위급한 사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은 강화(江華) 군졸로 격군(格軍)을 삼으려 하는데 바다로 나가면 수군이 되고 육지에 오르면 방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중원(中原) 통주(通州)의 강 어구에 있는 각 관아에서는 각각 배를 갖추고 있다가 위급한 경우에는 각기 자기 물건들을 신고 갑니다. 우리나라의 물자와 인력으로는 두루 제작하기는 어렵겠으나 육조 아문(六曹衙門)의 경우에는 각각 1척씩 준비하여 위급한 경우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파사성(婆娑城)과 용진(龍津) 사이에 부용성(芙蓉城)이 있는데 흙으로 쌓아서 망대(望臺)로 삼으려 합니다. 사궁성(舍弓城)이 또 양근군(楊根郡)에 있는데, 서쪽 성이 매우 험준하므로 사람들이 들어가 지키면서 피란의 계책을 세우려 합니다. 군 남쪽에 남산이 있고, 산에는 모래가 깔린 여울이 있는데 이곳을 높이 막으면 여주(驪州)와 충주(忠州)에서 오는 적이 반드시 마음대로 파사·용진 밖으로 침투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물력(物力)이 궁핍하기 때문에 미처 수축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어느 고을을 순찰하고 돌아왔는가?” 하니, 노직이 아뢰기를, “신이 도체찰사와 광주(廣州)·용진·양주(楊州)·여주·파사성을 지나 신은 먼저 이천(利川)·죽산·안성·양성(陽城)으로 향했다가 수원의 습진처(習陣處)로 모였고 체찰사는 여주로부터 양지(陽智)·용인·진위(振威)를 경유했는데 신은 수군의 일 때문에 먼저 경성으로 돌아오고, 체찰사는 그대로 남양(南陽)·안산(安山)으로 향했다가 입성(入城)했습니다.” 하였다. (…)

○丙戌/卯正, 上御別殿. (…) 上講《周易》, 自《觀》序卦止爲觀也, (…) 上曰: “娑娑城, 器械·軍糧皆備乎?” 盧稷曰: “大砲·小筒, 自黃海道來, 其餘弓矢等物, 亦頗不備, 軍糧幾至三千石矣. 人情但以水乏, 不欲入矣. 禿城則水原皆願入矣.” 上曰: “巡行時守城節次, 皆爲習之乎?” 盧稷曰: “龍津娑娑城·禿城皆爲之.” 上曰: “不齟齬乎?” 盧稷曰: “雖不如京城都監之習陣, 亦頗有法矣.” 上曰: “禿城之堅若何?” 盧稷曰: “聞下三道, 無如此堅險云矣. 但水原人衆, 不可盡入矣. 安城亦有瑞雲山城, 大且堅固, 郡人不欲入無限山城, 故欲築而守之. 但以拒大路甚遠, 物力不足, 故不爲矣. 無限山城, 不如禿城, 且有(附)〔俯〕臨之山. 防禦使邊良傑, 築土禿城上, 平填作家, 穿窓俯制, 石車砲軍, 皆入其中, 而城外立木柵, 以隙射賊, 但水乏天旱, 則軍不可留矣. 竹山有山城, 山有四角, 若天城砲樓, 看之甚好, 亦欲修築, 以制忠州直路矣.” (…)

上曰: “卿巡到何邑而回耶?” 盧稷曰: “臣與都體察使, 歷廣州·龍津·楊州·驪州·娑娑城, 臣先向利川·竹山·安城·陽城, 會于水原習陣處, 體察自驪州, 經陽智·龍仁·振威, 而臣先以舟師事回京, 體察仍向南陽·安山而入城.” (…)

<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5일(병술)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양포정의 차관인 영국윤을 인견하면서 수원에 대해 언급하다

미시(未時)에 상이 시어소(時御所) 별전(別殿)에 거둥하여 양 포정의 차관인 지휘(指揮) 영국윤을 인견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그렇지 않을 듯하다. 중국 조정에서 구제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구원하려 한다면 어찌 할 수 없겠는가. 그리고 외국(外國)의 일을 또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알 수 있다던가? 평조신에 대한 말도 분명히 이해할 수 없다. 전일 양 부사가 사은(謝恩)하는 왜인을 거느리고 왔다는 말이 사실인가?” 하였다. 이항복이 아뢰기를, “이는 헛소문입니다. 수원(水原)에서 되돌려 보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

○未時, 上御時御所別殿, 引見楊布政差官, 審指揮國胤. (…)

上曰: “此言似不然矣. 天朝不欲救則已矣, 欲救則豈不能乎? 異國之事, 又何細知? 平調信之語, 亦未可曉. 前日楊副使, 謝恩倭子率去之言是乎?” 恒福曰: “此則虛語. 在水原地還送, 故有此言矣.” (…)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14일(갑진)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유성룡이 해주나 독성 지역에서 공략할만하다고 아뢰다

오시(午時)에 대신과 비변사의 유사 당상(有司堂上)을 편전에서 인견하였다. (…)

성룡이 아뢰기를, “자문에는 기회를 보아 결전하도록 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싸울 것인가 수비할 것인가의 기회는 멀리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의 소굴이야 가볍게 침범할 수 없을지라도 만일 지형이 좋은 곳으로서 해주(幸州)나 **【고양(高陽) 땅으로 권율이 지난날 전라 감사가 되어 병사를 주둔시키고 이곳에 웅거하여 많은 왜적을 대패시켰다.】** 독성(禿城)【수원(水原)의 산성(山城)이다.】 같은 지역을 얻어 지키다가 저들의 대군이 집결하지 못하고 군량이 넉넉하지 못한 틈을 타서 군사를 풀어 공략한다면 좋을 듯도 합니다.” (…)

○乙巳/午時, 引見大臣及備邊司有司堂上于便殿. (…)

成龍曰: “咨中亦有相機決戰之語. 蓋戰守之機, 不可遙度. 賊之窟穴, 雖不可輕犯, 若得形便之地, 如幸州**【高陽地, 權慄嘗爲全羅監司, 屯兵據此, 大敗倭衆.】** 禿城【水原山城.】者而守之, 乘彼大軍未集, 兵餉不敷, 縱兵侵



軼，則似或可矣。” (…)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15일(을사)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조선 각 지역의 근황과 왜적의 정세에 대해 마 도독에게 보낸 자문

흠차 비왜 총병관 후군 도독부 도독 동지(欽差備倭總兵官後軍都督府都督同知) 마(麻)에게 회자(回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초를 운반 집적(集積)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각도에 원래 저장되어 있는 미두(米豆)와 매입하고 차용하는 등 별도로 조치한 곡식을 모두 연로(沿路)의 각참(各站)에 운반하여 저장했는데, 평안도는 의주(義州)·정주(定州)·안주(安州)·평양(平壤) 등 4곳의 대참(大站), 황해도는 황주(黃州)·서흥(瑞興)·평산(平山) 등 3곳의 대참, **경기는 개성부(開城府)·경성(京城)·수원(水原) 등 3곳의 대참**, 충청도는 직산(稷山)·공주(公州)·은진(恩津) 등 3곳의 대참, 전라도는 전주(全州)·남원(南原) 등 2곳의 대참에 있습니다. 그곳에 저장된 쌀과 콩의 수목(數目)은 이미 군문(軍門) 및 경리(經理)의 아문에 사보(查報)를 마쳤는데, 부총병 양(楊)과 오(吳)의 두 영(營)의 병마가 지나갈 때 먹은 숫자는 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각도의 쌀과 콩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겨우 그곳 관사(官司)의 수용(需用)에나 달 정도입니다. 만일 군량이 결핍될 경우, 모두 운반을 독려하여 보충한다 하더라도 그 수가 넉넉하지 못하니 한두 달의 지용(支用)밖에 되지 못합니다. 해운(海運)해 올 군량이 때맞춰 오지 않으면 접제할 계책을 아무리 생각해도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

○回咨于欽差備倭總兵官後軍都督府都督同知麻。其辭曰:(…) 糧草運積，小邦將各道原貯米豆，并勸借賣鬻等別措之穀，俱運貯沿路各站。平安道則有義州·定州·安州·平壤等四大站，黃海道則黃州·瑞興·平山等三大站，京畿則有開城府·京城·水原等三大站，忠淸道則稷山·公州·恩津等三大站，全羅道則有全州·南原二大站。該貯米·豆數目，已經查報軍門及經理衙門，而副總兵楊·吳二營兵馬經過時，食用之數，未及叩除。此外各道米豆，不無些小餘數，纔供本處官司需用。如遇軍餉缺乏，竝加督運添補，亦緣該數不敷，不過一二箇月支用。非有海運糧餉，及時來到，則接濟之策，百計罔措。(…)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0일(기사)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제독 접반사 장운익이 제독이 수원에서 왜적을 맞아 공격한다고 보고하다

제독 접반사(提督接伴使) 장운익(張雲翼)이 아뢰기를, “방금 직산(稷山)의 전쟁터로부터 돌아온 중국 병사가 말하기를 ‘천안(天安)과 직산 사이에서 뜻밖에도 왜적의 선봉이 모두 들 흰 옷을 입고 들판을 뒤덮어 오기에, 중국 병사들이 처음에는 조선 사람으로 생각하여 진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왜적의 선봉이 먼저 포를 쏘므로 중국 병사들이 일시에 말을 달려나가 시살(廝殺)하며 한참 동안 교전(交戰)하였는데, 화살에 맞거나 곤봉에 맞아 죽은 왜적이 거의 5백~6백 명에 이르렀고 수급(道級)은 30여 개를 베었으며 해 부총(解副總)과 양 참정(楊參政)도 각각 손수 수급 2개를 베었다. 그런데 왜적이 산에 올라가 백기(白旗)를 드니, 천안의 대군(大軍)이 즉각 구름처럼 모여들었으므로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각자 퇴각하여 지켰는데 해 부총 등 네 장수는 지난밤에 직산을 떠나 올라오고 있으며 중국 병사들도 죽은 사람이 많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독이 즉각 각 군영에 명을 내려 모조리 강변(江邊)으로 나가 진을 치고 그대로 야

영(野營)하게 하였다고 하며, 또 영기(令旗)를 보내 과 유격(擺遊擊)으로 하여금 정예병 2천 5백 명을 뽑아 거느리고서 수원(水原) 길에서 왜적을 맞아 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감히 아쉽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丙申/提督接伴使張雲翼啓曰：“卽刻自稷山戰所回來唐兵說稱：‘天安·稷山之間，不意倭賊先鋒，皆着白衣，遍野而來，唐兵等初謂稱朝鮮人，不爲進逼。俄而倭先放砲，唐兵一時跑馬廝殺，交戰良久，倭人中箭被棍死者，幾至五六百，斬級三十餘顆，解副摠·楊叅政，各手斬二級。而倭賊登山舉白旗，天安大軍，卽刻雲集，衆寡不敵，各自退守。解摠兵等四將，去夜發稷山前來，唐兵亦多死者云。’且提督卽刻發放各營，使之盡數出陣江邊，仍爲野營云，且發令旗，使擺遊擊，抄領精兵二千五百，迎擊於水原之路云。敢啓。” 傳曰：“知道。”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9일(병신)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접반관 신충일이 서계하여 직산 전투의 상황을 보고하다

접반관(接伴官) 신충일(申忠一)이 서계(書啓)하기를, “이 달 7일에 흉적(兇賊)의 선봉이 천안(天安)에서 올라오자 해 부총(解副摠)·양 참장(楊參將)·과 유격(頗遊擊)·우 유격(牛遊擊) 등 네 장수가 정예병 2천 명과 장관(將官) 15명을 뽑아 거느리고서, 직산(稷山)으로부터 15리쯤 되는 곳에서 왜적을 맞아 싸워 31급(級)을 베었는데 사상자는 이루 셀 수 없었다. 장수들도 직접 왜적을 베었는데 해 부총은 2급, 양 참장은 1급, 과 유격은 3급을 베었으며, 노획한 마필(馬匹)과 기계(器械)는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날 회군(回軍)할 적에 진위(振威)를 통과하여 초저녁에 수원(水原)에 도착해서 저녁밥을 먹은 뒤에 바로 말을 타고 출발했는데 그때가 겨우 밤 2경(更)이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接伴官申忠一書啓 本月初七日，兇賊先鋒，自天安上來，解副摠·楊參將·頗遊擊·牛遊擊四將，抄領精銳者二千名·將官十五員，逆戰于稷山十五里許，斬首三十一級，死傷者不可勝數。親自斬賊，解副摠二級，楊參將一級，頗遊擊三級，馬匹·器械之所被獲者，未及計數而來云。是日回軍，過振威，初昏到水原，飯後便卽起馬，夜纔二更矣。傳曰：“知道。”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9일(병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경리 양호가 수원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속히 거동할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경리(經理)가 방금 남쪽으로 수원(水原)에 내려간다고 합니다.” 하니, 비망기(備忘記)로 이르기, “모든 일들을 속히 정제(整齊)하라. 경리가 출행하면 즉시 거동하여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는 명을 내린 지 지금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병조(兵曹)에서는 지금까지도 제장(諸將)에 대해 계하(啓下)받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하고서 국사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 속히 살펴서 계하 받으라.” 하였다.

○戊戌/政院啓曰：“經理卽刻南下水原云矣。” 備忘記曰：諸事，斯速整齊。經理出行，卽時舉動爲之，南下之命，今累月矣，而兵曹至今，諸將亦不啓下。如此而能爲國事乎？急速察爲，啓下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1일(무술)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경리 양호가 강화로 가는지 수원으로 가는지 의견이 불명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양 경리(楊經理)가 오늘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으니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도독의 사후 통사(伺候通事)가 와서 말하기를 ‘아문(衙門) 사람들이 모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은밀히 말하는데, 경리가 가는 곳을 몰라 어떤 사람은 강화(江華)로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수원(水原)으로 간다고 하여 분분하게 의견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우연히 휘장 뒤에서 연방(掾房)이 쓴 당보(塘報)를 비밀히 보았더니, 「임해군(臨海君)의 가족(家屬) 및 배신(陪臣)의 처자가 모두 성 밖으로 몰래 빠져나갔고, 또 이 달 9일 2경(更)에는 국왕의 궁권(宮眷)과 세자(世子)도 모두 몰래 성을 빠져나가 성 안이 온통 비었으며 국왕도 장차 떠나갈 것이다. 이곳에는 양향(糧餉)이 다 떨어져 심유경(沈惟敬)이 오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정지하도록 하였는데 이곳에 머무르기가 불편하다…….」 고 하였다. 대의(大意)는 이와 같은데 나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는 필시 성을 비운 죄를 우리나라에 전가시키고서 스스로 병사를 철수하려는 계책일 것이니, 사세가 위급하여 지극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오늘 양 경리가 만약 이동(移動)하게 되면 성 안의 민심이 더욱 믿을 곳이 없게 될 것이니, 조금만 더 머물러 달라고 청원하는 뜻으로 백관(百官)들이 경리(經理)에게 글을 올려 간곡하게 말함으로써 정지하게 하고, 또 심유경에 대한 일은 비록 무익(無益)한 줄은 알지만, 일시적으로 병란(兵亂)을 완화시키는 계책에는 해로울 것이 없다. 그가 지금 개성(開城)에 이르러 행차를 정지하고 있다고 하니, 다시 분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특별히 재신(宰臣)을 소 안찰(蕭按察)에게 보내 속히 와서 선처(善處)할 방도를 강구하도록 간청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거의 주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備邊司啓曰: “楊經理今日行處, 未知所向, 極爲可疑. 都督伺候通事來言: ‘衙門之人, 皆相交頭密語, 不知經理所向, 或云將向江華, 或云往水原, 紛紛不定. 通事偶從帳後, 密見掾房所書塘報, 則大概臨海君家屬及陪臣妻子, 皆潛出城外, 又於本月初九日二更, 國王宮眷·世子, 皆潛隱出城, 城中一空, 國王亦將出去. 此處糧餉乏絕, 惟敬雖來, 無可爲, 故已令停止. 此間不便留住云云. 大意如此, 餘未能盡詳. 此必以空城之罪, 歸於我國, 自爲撤兵之計, 事勢危急, 極爲痛悶. 今日楊經理若動, 則城內民心, 益無所恃. 願乞小留之意, 百官呈文經理, 懇告請停. 又以沈惟敬之事, 雖知無益, 而不妨一時緩兵之計. 今到開城停行云, 乞更爲分付云云.’ 別遣宰臣于蕭按察, 懇請速來, 有所處置. 若是則庶可周旋.” (…)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1일(무술) 8번째기사>

## 정치/군사

### 대신들이 수원으로 가는 경리 양호를 직접 만류해 볼 것을 건의하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대신을 인견하였다. (…) 성룡이 아뢰기를, “제독(提督)의 차인(差人) 전체건(錢體乾)이 비변사에 와 말하기를 ‘경리(經理)가 수원(水原)으로 가는 것은 몹시 민망스럽다. 제독은 무장(武將)의 신분이어서 그 행차를 멈출 수 없으니 부디 속히 국왕(國王)에게 아뢰어 만류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대개 제독의 생각에는 왜적이 이미 수원(水原)에 다가왔으니, 만약 안성(安城)을 경유하여 죽산(竹山)으로 돌아 나오게 되면 말이 아니므로, 이곳을 굳게 지켜 만전(萬全)의 계책을 삼는 것만 못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사색(辭色)이 창황(蒼黃)하여 몹시 바쁘고 급박하였습니다.”

하고, 두수가 아뢰기를, “군사의 행진은 전진만 있고 후퇴는 없는 법이나, 왜적이 만약 갑자기 닥쳐 오면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도 불가합니다. 상께서 굳이 청하시면 정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원에 가 있으면 왜적이 어디로 돌아 나오는

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안성·죽산으로부터 수원 뒤로 돌아 나올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에게 지도가 있는데 죽산은 수원 앞에 있으니 그 말은 옳지 않다. 대개 경리(經理)가 수원으로 가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리가 강화(江華)로 간다는 것과 서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모두 그렇지 않다. 군사를 철수하여 돌아가려 한다면 무엇을 꺼려 수십 명만 거느리고 가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비변사가 하인들의 말을 듣고 지나치게 의심한 것이다.”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이 부총(李副摠)이 전일에 궁권(宮眷)을 먼저 내보내라고 한 말과, 경리가 국왕(國王)의 내권(內眷)이 떠나간 일을 당연하다고 한 것은 필시 우리를 시험해 본 말로서 스스로 물러가려는 계책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옳지 않다. 어찌 사람을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 있는가.”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오늘 경리가 수원으로 가는 것은 물러나 움츠러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제장(諸將)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인 듯싶습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왜적의 형세가 점점 꺾박해 오는데, 경리가 만약 수원에 갔다가 창황하게 물러오면 인심만 더욱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己亥/上御別殿, 引見大臣. (…)  
成龍曰: “提督差人錢體乾來言于備邊司曰: ‘經理水原之行, 甚可悶也. 提督以武將, 不能止其行, 須速啓知國王, 止之云.’ 大概提督之意, 則賊已迫水原, 若由安城, 逸出竹山, 則不可說, 不如堅守此處, 以爲萬全之計也. 辭色蒼黃, 甚爲忙迫矣.”  
斗壽曰: “師行, 有進無退, 賊若遽逼, 則進不可得, 退亦不可. 若自上固請, 則庶或停止.”  
上曰: “往在水原, 則賊從何逸出乎?”  
成龍曰: “自安城·竹山, 逸出水原之後耳.”  
上曰: “予有地圖, 竹山在水原之前, 其說不可. 大概經理水原之行, 其意何也?”  
成龍曰: “未解其意.”  
上曰: “經理江華之行及西還之說, 皆不然. 若欲撤還則何憚, 而以數十人潛行之乎? 此必備邊司聽下人之言, 而過惑之也.”  
斗壽曰: “李副摠前日先送宮眷之言, 經理以國王內眷出去之事爲當者, 必是試我之說, 而爲自退之計耳.”  
上曰: “是不可. 豈可以疑人, 至於此也?”  
應南曰: “今日經理水原之行, 似是示不可退縮之意於諸將矣.”  
成龍曰: “賊勢漸迫, 經理若往水原, 蒼黃退來, 則人心益駭耳.” (…)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2일(기해)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경리 양호가 수원으로 가려하자 제독이 만류하다

경리(經理)가 문을 닫고 행장을 꾸리면서 가는 곳을 말하지 아니하니, 어떤 사람은 강화(江華)로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수원(水原)으로 간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군사를 철수하여 서쪽으로 돌아간다고 하여, 인심이 흥흥하고 두려워하여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대신들이 청대(請對)하여 정지시키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끝날 무렵에 경리가 이미 말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자 상이 바로 거동하였다. 경리가 수원으로 가려고 하자 제독이 남대문 밖으로 뒤쫓아 와 행차를 정지시키기를 강청하면서 말하기를, “적병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노야(老爺)께서 뜻을 결정하여 앞으로 나아가시니, 왜적이 만약 다른 지름길을 경유하여 뒤로 돌아 나오게 되면, 나아가도 갈 데가 없고 물러날 수도 없어 다만 성위(聲威)만 손상시켜 해만 있고 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노야께서 만약 가신다면 늙은 이 마귀(麻貴)가 감히 여기에 편안히 앉아 있겠습니까. 외로운 군대가 앞으로 나아가면 변고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 노야께

서는 상량(商量)하십시오.” (…)

○經理閉門治行，不言所向，或云向江華，或云往水原，或以爲撤兵西還，人心洶懼，莫知所措。大臣請對，講論停留之事，將罷，聞經理已爲上馬，上卽動駕。經理將向水原，提督追及南大門外，勒馬強請曰：“賊兵迫近，而老爺決意前進，賊若由他徑路，遶出於後，則進無所歸，退不可得，徒損聲威，有害無益。而老爺若往，則老此麻貴，其敢安坐於此乎？孤軍前進，變不可測。請老爺商量焉。” (…)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2일(기해)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사헌부가 수원에 이경준 등을 보냈으나 왜적의 방어에 대해 비변사에게 조치하게 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 왜적의 기세가 호서(湖西)에 꼭 차 장차 경기(京畿)에 들이닥칠 형편입니다. 수원(水原) 일로(一路)에는 이경준(李慶濬)과 조경(趙倣)을 보냈지만, 죽산(竹山)과 이천(利川) 길에는 아직까지 한 장수도 보내어 파수하도록 한 일이 없습니다. 왜적이 어디로 향할지 전혀 알 수 없고 상류(上流)를 방어하는 것도 믿을 데가 없으므로 앞으로의 일을 말할 수 없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급히 조치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司憲府啓曰：“(…)賊勢充斥湖西，將迫畿輔。水原一路，雖遣李慶濬·趙倣，而竹山·利川之路，尙無遣一將把截之事。賊之所向，了不得知，上流防守，亦無所恃，前頭之事，有不忍言。請令備邊司，急急措置。(…)”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3일(경자) 3번째기사>

### 정치/군사

**도원수 권율이 서북 군사 중에 마병을 뽑아 수원 근처로 보내자고 하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영의정 유성룡(柳成龍),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윤두수(尹斗壽), 좌의정 김응남(金應南), 도원수 권율(權慄)을 인견하였는데, 우승지 김신원(金信元), 가주서(假注書) 권진(權縉)·심집(沈諶), 검열(檢閱) 정홍익(鄭弘翼)·이필영(李必榮) 등이 입시(入侍)하였고,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산해(李山海)는 뒤늦게 와 입시하였다.

(…) 권율이 아뢰기를, “서북(西北)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병(馬兵)을 초출(抄出)하여 수원(水原) 근처로 보내 번갈아 서로 출입시킴으로써 왜적을 무찌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매우 좋다.” 하였다.(…)

○上御別殿，引見領議政柳成龍·行判中樞府事尹斗壽·左議政金應南·都元帥權慄·右承旨金信元·假注書權縉·沈諶·檢閱鄭弘翼·李必榮入侍，領敦寧府事李山海追來入侍。(…) 慄曰：“西北之軍，未知其幾何，抄出馬兵，送于水原近處，更出迭入，勦殺賊鋒可也。” 上曰：“此言甚善。” (…)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3일(경자) 6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의 독성 등 인근 지역의 군량의 운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행 판중추부사 윤두수, 좌의정 김응남, 우찬성 이덕형, 호조 판서 김수, 병조 판서 이항복, 형조 판서 장운익이 아뢰기를, “군사를 출동시키는 일은 간단한 것이 아닌데 체독이 갑자기 오후(午後)에 출병하겠다고 합니다. 그 행군의 당부(當否)에 대해서는 우선 의논할 겨를이 없겠으나 일로의 양식을 아무리 다방면으로 조치해도 주선해 낼 방법이 없으니 지금

사세는 매우 안타깝고 염려됩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다가 후일의 죄책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수원(水原) 본부와 독성(禿城)에 저축한 미두(米豆) 및 이웃 고을인 양성(陽城)과 안성(安城) 등에 저축한 미두를 경기 감사로 하여 본읍과 독성을 지키는 군사 중 노약자(老弱者)와 우마(牛馬)를 모두 징발하여 지고 이고 운반하게 해서 군사가 이르는 곳마다 결핍되는 걱정이 없게 해야 합니다. 또한 아산창(牙山倉)에 저축해 놓은 것도 본읍을 시켜 힘을 다해 공주로 운반하게 해야 합니다. 급히 선전관을 보내 표신(標信)을 가지고 직접 본현에 가서 현감으로 하여금 직접 거느리고 가게 하고, 한편으로는 급히 선전관을 보내 충청도와 전라도 감사에게도 알려져 다방면으로 조치하여 대령하게 하며, 경기 감사에게는 오늘밤에 발송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때에 미치기 어려우나 부득이한 실정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行判中樞府事尹斗壽·左議政金應南·右贊成李德馨·戶曹判書金晬·兵曹判書李恒福·刑曹判書張雲翼啓曰：“行師出兵，事非偶然，而提督行期，猝出於午後。其行當否，姑不暇論，而一路糧餉，雖匍匐胼胝，萬無接濟之理。今之事勢，極爲悶慮，而永不可束手坐觀，以貽後日之責。水原本府所儲及禿城糧豆與傍邑陽·安城等地所儲米豆，令京畿監司，盡發本邑及禿城守軍·老弱·牛馬，負戴輸運，隨軍所到，俾無缺乏之患。牙山倉所儲，亦令本邑，竭力輸到于公州事，急遣宣傳官，持標信，直往本縣，令縣監，親自領往；一邊急遣宣傳官，往諭于忠淸·全羅監司等處，多般措置待令；京畿監司，卽夜發送措辦爲當。此等措置，皆必不及，而事出於不得已，敢啓。” 答曰：“知道。依啓。”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9일(병인) 8번째기사>

### 정치/군사

#### 제독 마귀이 수원을 지난 뒤의 양식 조달을 위해 날짜를 조금 미루겠다고 하다

(…) 제독이 말하기를, “제가 이번에 내려가는 것이 국왕의 뜻에는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왜적을 섬멸하여 수치를 씻는 일은 참으로 소방의 지극한 소원이며, 군사를 출병하는 것은 대인의 신산(神算)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충청·전라 두 도가 혹독하게 병화를 입어 공사(公私)가 탕진되고 흩어진 백성이 모이지 않아, 말먹이를 나르고 양식을 운반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원에는 양식이 조금 있으나 수원을 지나면 접제할 방법이 없으니, 만약 날짜를 조금 뒤로 미룬다면 주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양식이 없어 돌아오게 되면 도적의 기세만 북돋우게 되어 유익함이 없게 될 것이니, 이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

○丁卯/上幸崇禮門外, (…) 提督曰：“俺之此去，於國王意何如?” 上曰：“滅賊灑恥，固小邦之至願，行師用兵，在大人之神算，而第忠淸·全羅兩道，酷被兵火，公私蕩然，散亡未集，飛芻輓粟，計無所出。水原雖有些小之糧，若過水原，則萬無接濟之策。若遲日字，則猶可周旋矣。今遽南下，糧乏旋還，則只增賊氣而已，反無所益，茲用悶迫焉。” (…)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10일(정묘)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호조 참판 정광적이 중국군에 대한 군량 조달의 어려움을 보고하다

(…) 제독에게 올린 품첩은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건대 노야가 군사를 이끌고 먼 정벌에 나와서 궁색한 도적의 뒤를 쫓으니 이는 참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조성되는 기회입니다. 따

라서 온 나라 군신들은 감격하고 노력하며 모두 조금만 더 고통을 참고 이겨 기이한 승첩을 흔쾌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망하고 급박한 실정이 있어서 부득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아뢰입니다. 삼군(三軍)이 행군하자면 양초를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혹독하게 병화를 입어서 양식을 지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인이 겨우 수원에 이르자 벌써 결핍됨을 걱정했는데, 충청도 지역에 들어오면서부터 공사(公私)의 집들이 모두 초토되고 도륙당한 참상이 답이나 개에게도 미쳤으며, 전라도는 더욱 심하였습니다. 공주에 이르기 전에는 서울에서 받아 온 식량과 조금씩 남은 양곡으로 겨우 지탱해나갔습니다만, 그후로는 비록 하루에 먹을 것조차도 계속해서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

○(…) 其稟帖曰：伏以，老爺提師遠征，以躡窮寇，此誠小邦再造之機。一國君臣感激策勵，咸願忍死須臾，快觀奇捷，第有悶迫之情，不得不冒死更稟。三軍之行，糧草當先，而酷被兵禍，繼餉無策。小的纔到水原，已憂缺乏，及入忠清境上，公私廬舍，莽爲焦土，屠戮之慘，及於鷄犬，而全羅則又甚焉。公州以前，則受來京糧及些少餘穀，猶可支過，此後則雖一日之餉，決無措繼之路。(…)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3일(경진)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비변사가 호남의 전주에서 수원까지의 파발마의 불통 등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 그리고 변보(邊報)의 지체가 근래 더욱 심하여 군전(軍前)의 크고 작은 소식을 언제나 중국군의 파발을 기다려야 얻어 들 수 있으니, 너무 절박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일로(一路)에 이미 파발을 설립하였으나 각참(各站)에 잔졸(殘卒) 약간 명으로 겨우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허다히 오가는 공차(公差)와 군관·잡류, 진상물의 배지인(陪持人)까지도 파발군을 구박하여 호송하여 구종을 요구하므로 파발과 역참이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작 시급한 변보가 왔을 때에는 전달할 사람이 없게 되니 우서(羽書)의 지체가 모두 이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폐단이니 지금 사목(事目)을 별도로 설치하여 각도에 신칙해야 합니다. 남쪽에서 오는 변보를 제외하고는 대소 공차들이 마음대로 거느리거나 부리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장시간 입번(立番)하도록 전력하여 경각(頃刻)이라도 참을 뜨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임의로 이들을 대동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군령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남은 광주(廣州)와 안동(安東)에서 죽령(竹嶺)을 거쳐 원주(原州)에 이르는 일로와 호남은 전주(全州)와 여산(礪山)에서 수원(水原)을 거치는 일로에 각 참마다 5명씩을 더 배정하여 밤낮으로 대령함으로써 신속히 전송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행여라도 종전처럼 지연시키는 일이 없게 할 것을 아울러 각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壬申/備邊司啓曰：“(…) 且邊報遲滯，近來尤甚，軍前大小消息，必待天兵擺撥，而始得聞知，極爲悶慮。一路擺撥，已爲設立，而各站殘卒若干名，僅能成樣，許多往來公差及軍官·雜類，至於進上陪持人，亦無不驅迫撥軍，責令護送跟隨，以致撥站空虛，正當時急邊報之來，無人傳通，羽書遲滯，皆由於此。此最巨弊，今宜別設事目，申飭各道，除南來邊報外，大小公差，勿許擅率擅使，專力長立，不使頃刻離站，如有任意帶行之人，斷以軍令。嶺南則自廣州·安東，由竹嶺以及原州之路，湖南則自全州·礪山，由水原之路，每站加定五名，晝夜待令，火急遞送，毋或踵前弛緩事，竝下書于各道監司，何如？” 答曰：“依啓。”

<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12월 16일(임신) 1번째기사>

## 정치/군사

군문이 병마를 나누어 맡은 지역으로 가는데 유격 진우문은 수원에 주둔하다

군문(軍門)이 병마(兵馬)를 나누어 신속히 맡은 지역으로 가게 하였다. 부총병(副總兵) 이방춘(李芳春)과 유격(遊擊) 우백영(牛伯英)·노덕공(盧德功)은 각각 원부(原部)의 병마를 거느리고 안동(安東)에 나누어 주둔했고, 유격 섭방영(葉邦榮)은 원부의 관병(官兵)을 거느리고 용궁(龍宮)에 나누어 주둔했고, 부총병 오유충(吳惟忠)은 원부의 관병을 거느리고 충주(忠州)에 주둔했고, 유격 진우문(陳愚聞)은 원부의 관병을 거느리고 수원(水原)에 나누어 주둔했고, 유격 남방위(藍芳威)는 원부의 관병을 거느리고 직산(稷山)에 주둔했고, 참장(參將) 이영(李寧)은 원부의 병마를 거느리고 공주(公州)에 주둔했고, 유격 동정의(董正誼)·시등과(柴登科)·진득귀(秦得貴)는 원부의 병마를 거느리고 전주(全州)에 나누어 주둔했고, 유격 과새(擺賽)는 원부의 병마를 거느리고 안성(安城)에 주둔했다. (…)

○軍門派分兵馬，使之速赴信地。副總兵李芳春·遊擊牛伯英·盧德功，各原部兵馬，分住安東；遊擊葉邦榮，原部官兵，分住龍宮；副總兵吳惟忠，原部官兵，分住忠州；遊擊陳愚聞，原部官兵，分住水原；遊擊藍芳威，原部官兵，分住稷山；參將李寧，原部兵馬，分住公州；遊擊董正誼·柴登科·秦得貴，原部兵馬，分住全州；遊擊擺賽，原部兵馬，分住安城。(…)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3일(무오) 5번째기사>

## 정치/군사

형 군문이 가동청정이 표첩을 위조해서 정탐하다가 수원의 중국인에게 잡혔다고 말하다

상이 홍제원(弘濟院)에 거둥하여 형 군문을 전별하였다. 맞아들여 자리를 정하자, 군문이 말하기를, “저번에 적추(賊酋) 가동청정(加藤清正)이 포로가 된 중국 사람을 피어 거짓으로 나의 표첩(票帖)을 만들고는 그들을 시켜 조선에서 정탐하다가 수원(水原)에 머물러 있던 중국 사람들에게 잡혔는데, 국왕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하였다. (…)

○上幸弘濟院，餞別邢軍門。迎入坐定，軍門曰：“前者賊酋清正，厚誘被擄唐人，僞作俺之票帖，使之偵探於本國，而見擒於水原。留住唐人，國王知否？”上曰：“專不聞知。極爲驚愕驚愕。”(…)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17일(임인) 2번째기사>

## 정치/군사

비변사에서 수원이 요충지이고 독성이 대군이 주둔하기 어렵지만 버릴 수는 없다고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적들의 계획은 아침저녁으로 바뀌어 헤아리기 어려우니 방비책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양호(兩湖)에 도둑의 무리들이 차츰 불어난다고 하니 역시 우려됩니다. 지금 중국군이 다 철수한다면 도발할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소소한 일이라고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수원(水原)은 곧 양호의 요충지입니다. 독성(禿城) 안에는 샘물이 모자랄 것을 염려하여, 흑자는 대군(大軍)이 주둔하기에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쌓여진 성이니 그냥 헛되이 버릴 수는 없습니다. 방어사(防禦使) 권준(權俊) 또한 자주 왕래할 수 없어 김희계(金希契)를 시켜 지킬 뿐 황폐하여 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전교를 내려 권준으로 하여금 피폐된 것을 일으키고 기울어진 것을 떨치게 하여, 한편으로는 급한 변에 대비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도둑들에게 겁을 주어 두렵게 한다면, 서울을 보호하는 데에 진실로 편



리하고 유익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備邊司啓曰：“賊謀朝夕不測，備禦之策，宜無所(思) [忽] . 兩湖嘯聚之徒，漸至滋蔓，亦爲可慮. 今若天兵盡撤，則竊發之患，難保其必無，不可謂(徵) [微] 細而忽之也. 水原乃兩湖要衝之地. 禿城之內，人或慮其泉水之不足，不宜留駐大軍. 然而既已設築，未可虛棄，防禦使權俊，亦不能頻數往來，但令金希契守之，廢爲棄地. 權俊，別教下送，使之起廢振頹，一以綱繆緩急，一以畏戢狗鼠，則其於衛京城，允爲便益. (…)" 傳曰：“允.”

<선조실록 124권, 선조 33년 4월 4일(정축)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함경 관찰사 신잡이 순화군이 수원으로 가는 것을 염려하다

전시(辰時)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함경도 관찰사 신잡(申礪)을 인견하였다. (…)  
신잡이 아뢰기를, “(…) 도성에는 살아갈 길이 있는 뒤에야 백성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중국군에게 시달려 들어오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데 사대부들까지 모두 하향(下鄉)할 생각을 하니, 민원을 없애는 일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순화군(順和君)이 수원(水原)으로 내려갈 때, 신이 비변사에 말하기를 ‘상심(喪心)한 사람을 혹시 외방에 내놓으면 외방의 인심이 극히 사나우므로 뜻밖의 변고가 생길까 염려된다.’ 하니, 그때 영상이 ‘임금이 애정을 희생하고 법을 보이는데 신자가 어찌 감히 다른 말을 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요즘 순화군의 일을 볼 때 예측하지 못할 변고가 있을까 염려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수원의 백성은 전부 살해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울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가?”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만약 도성에다 담장을 높이 쌓아 엄중히 방비하게 하고 수시로 중사(中使)를 보내 부드럽게 타이르고 가르치면 마음을 위로해 줄 길이 있을 것이니, 그 자신의 안전을 보전할 뿐 아니라 수원의 백성도 살해를 모면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울로 돌아오면 조용히 살 수 있겠는가?”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소신이 이른바 인심이 두렵다는 말을 깊이 유의하소서.” 하였다. (…)  
○辰時，上御別殿，咸鏡道觀察使申礪引見。(…) 礪曰：“咫尺天威，敢有隱乎？前者鄭賊之時，多有蔓及之漸，故自上勿爲蔓及之教。緣此得生者多矣。以今日之事言之，以柳成龍爲非，則只責成龍可也，以金蠹國·南以恭爲非，則只責金·南可也，以洪汝諄·李山海爲非，則只責洪·李可也。以分數計之，則年少可惜之人才，皆爲廢棄，臣嘗嗟惜。李洸，若其時死則已矣，有可用之才，而獨不見用，甚可惜也。黃廷彥事，則臣意以爲不然。其間雜言，胡可信也？聖明之下，大臣勳舊，久在罪戾之中，甚爲未安。小臣所見，有何關乎？徒爲行世之災，而生還不可期，故畢達所懷。都城有生理，然後百姓可集。頃困於唐兵，不得入來，而今則至如士大夫，皆有一鄉之意。除民怨一事，最爲急務也。順和君下去水原之時，臣言於備邊司曰：‘喪心之人，或暴於外方，則外方人心極頑，慮有意外之變。’其時領相曰：‘人君割愛示法。臣子何敢更有說乎？’近見順和之事，恐有不測之變。若然，則水原之民，盡劉矣。”上曰：“欲使還京乎？”礪曰：“若於都城，高築牆屋，使之嚴防，時遣中使，諄諄教誨，則庶有慰心之路。非但保其身，水原之民，亦免盡劉矣。”上曰：“還京，則其可穩居乎？”礪曰：“小臣所謂，人心可畏之言，更加留意。”(…)

<선조실록 134권, 선조 34년 2월 24일(계사) 7번째기사>

## 정치/군사

윤두수가 경기 방어책에 대하여 상차하며 수원에 병영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해원 부원군(海原府院君) 윤두수(尹斗壽)가 상차하기를, “(…) 수원(水原)은 기보(畿輔) 중에 가장 큰 고을로서 무인(武人)이 거의 1천 명에 이르니, 실로 우리나라의 정병(精兵)이 있는 곳입니다. 전에도 누차 군사를 조련하였고 독성(禿城)과 같은 요새지도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병영을 설치하고 문무인 중 명망이 있는 사람을 차출해 보내서 비변사 둔전(屯田)의 몇 천 석 곡식을 제공하여 번(番)을 나누어 양성한다면, 백성들을 별도로 모을 것이 없고 병사들이 모두 토착화하여 모두 수하의 일꾼이 되어 힘들이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를 진압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니 급한 변고가 생기면 어딘들 못 달려가겠습니까. 용진(龍津)이나 과사(婆娑)·좌찬(佐贊)이 모두 멀지 않은 전방에 위치하여 있으니, 적들의 향방에 따라 북병을 하거나 또는 직접 접전을 하더라도 자연 여력(餘力)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형세가 이리하니 수영(水營)은 우선 법전(法典)대로 다시 첨사(僉使)로 삼아 병사(兵使)에게 타도(他道)의 예처럼 절제(節制)하게 하면 사무(事務)가 귀일(歸一)되고 군정(軍政)이 통솔될 것입니다.(…)” 하였다.

○海原府院君尹斗壽進筭曰：(…) 水原在畿輔爲最雄，武人幾至千數，實吾東精兵處也。前有累次操鍊而設險，亦得禿城之地。臣之妄意，若設兵營，以文武中重望之人差送，以備邊司屯田幾千石穀，分番教養，民不改聚，兵皆土着，皆成手下之使，坐收澤潞之效，聞變而趨，何往不可？龍津·婆娑·佐贊，皆在當前不遠之地，隨賊鋒所向，或伏或前，自有餘力矣。若是則水營，姑依法典，還爲僉使，令此兵使，依他道節制，事務歸一，軍政有統矣。(…)

<선조실록 135권, 선조 34년 3월 17일(을묘)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부사에게 방어사를 겸하게 하고 수원 정군을 병사에 소속시키는 문제에 대한 논의

묘시 정각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 상이 김명원에게 이르기를, “어제 비변사의 계사를 보니, 경기 병사(京畿兵使)를 차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은 반드시 나중을 생각해야 하니, 혹 편리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후에 반드시 난처하게 될 것이다. 우선 방어사로 수원 부사를 겸하게 하여 병사의 모양으로 시험해 본 다음 이를 보아 병사를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어제 신 역시 그 의논에 참여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병사를 차출하더라도 줄 군사가 없다.’ 고 하였습니다.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말하면 상고가 운당하십니다.” 하고, 한응인은 아뢰기를, “비변사에서 경기 병사를 차출하여 소속 군사를 처리하고자 하는 일을 의논하려고 신에게 회의하자고 하였는데, 신이 대신에게 말하기를 ‘모든 일은 처음에 잘 처리한 다음에야 오래도록 폐단이 없게 된다. 이제 한 사람이 말하였다고 해서 어찌 갑자기 설립할 수 있겠는가. 연혁(沿革)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그리고 화량(花梁)·월곶(月串)의 수군(水軍) 중 육지에 있는 자와 본부의 상변 군사를 전적으로 병사에게 소속시키고자 하는데, 이는 매우 난처한 일이다. 각도의 상변 군사는 많이 이르는 달에도 겨우 9백여 명인데, 서울에 군사 쓸 곳이 많아서 쉼내 및 좌우의 북병(伏兵)을 각처에 나누어 보내는 즈음에 매양 부족한 것이 걱정이다. 수원의 정군을 모조리 병사에게 소속시킬 경우에는 상변 군사를 별도로 조처한 다음에야 서로 구애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卯正，上御別殿，講《周易》。(…) 上謂命元曰：“昨見備邊司啓辭，以京畿兵使差出，爲當云。然事必慮終，或有非便，則後必難處。姑以防禦使，兼水原府使，試行兵使模樣，以爲差出之權輿如何？” 命元曰：“昨日臣亦參此議，群意以爲：‘雖出兵使，無軍可給云。’ 權宜之道言之，則上教允當。” 應寅曰：“備邊司將議出京畿兵使，欲處置所屬軍兵之事，要臣會議，臣

謂大臣曰：‘凡事慮始，然後能久遠無弊。今以一人之言，遽爲設立，沿革極爲關大。且欲以花梁·月申水軍之在陸者，及本府上番之軍，專屬兵使，此事極難處。各道上番之軍，多至之月，僅九百餘名，而京中用軍之處極多，如闕內及左右伏兵，各處分送之際，每患不足。水原正軍，盡屬兵使，則其代上番之軍，別樣處置後，可無相礙之事矣。’ (…)

<선조실록 140권, 선조 34년 8월 28일(계사)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사헌부가 수원은 중진으로 보장의 지역이니 수원부사 김거병의 체차를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 수원(水原)에 중진(重鎭)을 신설하여 서울의 보장(保障)으로 삼으려는 조정의 조치는 의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들이 최원(崔遠)을 체직시키고 후임자를 신중히 가려 임명하자고 한 것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조(該曹)에서는 범연히 주의(注擬)하여 김거병(金去病)으로 제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병의 위인은 애당초 이렇다 할 재주나 지혜가 없을 뿐더러 지난 임진란 때에는 여주 판관(驪州判官)으로 있으면서 분발하여 적을 토벌하지 않았으므로 여론이 지금까지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대로 중임을 맡길 수 없으니 체차(遞差)를 명하소서.

대체로 무슨 일이든지 시초가 중요합니다. 영문(營門)을 새로 세워 무사들을 많이 집결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조처하는 사이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반드시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이 있게 되어 먼저 인심을 잃을 것이니, 어찌 거듭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사로 하여금 상규(常規)에 구애받지 말고 문무 관원 중에서 다시 적임자를 가려 파견함으로써 곧 수(闕帥)가 처음 시작하는 일을 중하게 여기도록 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수원의 문제는 윤허한다. (…)” 하였다.

○丙辰/憲府啓曰：“(…) 新設重鎭於水原，以爲保障京師之計，朝廷舉措，意有所在。臣等請遞崔遠，十分慎簡，亦非偶然，而該曹尋常注擬，以金去病除授。去病爲人，初無才智可稱，而曾於壬辰之亂，爲驪州判官，不爲奮勇討賊，物論至今短之。不可仍授重任，請命遞差。大抵凡事，貴在謀始，而創立營門，武士多集，施措之間，小有乖當，則必有病民之舉。先失人心，豈不重可慮哉？請令有司，文武中勿拘常規，更加擇遣，以重闕帥創始之舉。(…)” 答曰：“(…) 水原事允。(…)”

<선조실록 141권, 선조 34년 9월 22일(병진)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병조가 수원의 조련군 징발을 건의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평소 중국 사신이 나올 때에는 제도(諸道)의 잡색 군병(雜色軍兵)을 징발하여 행행시 길 양쪽에 진을 쳤습니다. 수원(水原)의 조련군(操鍊軍) 4백 명과 경기 각 고을의 하변한 제색군(諸色軍) 4백 명을 한 달치 양식을 싸가지고 이달 그믐 안으로 조발하여 일제히 도착하도록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수원의 조련군은 방비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니 조발하지 말라.” 하였다.

○己酉/兵曹啓曰：“平時則天使出來時，諸道雜色軍兵徵發，行幸時，挾路結陣矣。水原操鍊軍四百名及京畿各官下番諸色軍四百名，一朔裹糧，今月晦日內，調(廢) [發] 齊到，俾無生事之患。敢稟。” 傳曰：“允。水原操鍊軍，爲防備而設也。勿爲。”

<선조실록 147권, 선조 35년 윤2월 16일(기유)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남한산성과 수원 독성을 비교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남한산성의 형세에 대해서 본사(本司)에도 익히 살펴본 사람이 있습니다. 둘러싸인 가운데에 완연히 한 도읍(都邑)이 이루어졌는데, 서북쪽에는 높은 봉우리가 있고 동서쪽은 확 트여 시냇물과 논이 있으며 꼬불꼬불한 산굽이가 몹시 깊어 바깥에서 굽어보거나 엿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백제(百濟)가 이곳을 국도로 삼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다 성을 쌓은 다음 한결같이 독성(禿城)에서처럼 군사를 조련하여 안으로는 경도(京都)의 보장(保障)이 되고 바깥으로는 제진(諸鎭)을 공제(控制)하게 한다면 참으로 장구한 계책이 될 것으로, 성려(聖慮)가 미치신 바가 실로 뛰어나신 것입니다.

신들이 심가 헤아려 보건대, 이 성은 형세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부근의 각읍이 모두 잔파된 곳이어서 인력(人力)이 부족한 탓으로 기획(規劃)하려 해도 형세상 매우 어렵습니다. 독성의 경우는, 수원부(水原府)가 사람과 물산(物産)이 많아 광주(廣州)에 비할 바가 아니고 또 성자(城子)가 광활하지 않으므로 많은 인력으로 수선하고 설진(設鎭)하여 모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남한산성의 경우는 독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주의 목사를 엄밀히 선택하여 차송(差送)한다 하더라도 무슨 힘에 의지하여 쉽사리 성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조정에 정해진 계책이 있어 사람을 가려 뽑아 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먼저 승도(僧徒)를 모집하거나 혹은 창고를 지어 곡식을 저장해 두거나 인호(人戶)를 모집해 들어 부역을 면제해 안집(安集)시켜 점차 터전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기를 헤아리고 힘을 요량하여 모처(某處)의 군사를 주어 성지(城池)를 수선하고 누노(樓櫓)를 지어 서울 가까운 곳의 한 거진(巨鎭)으로 삼는다면 참으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의논이 없어 장구한 성과가 있기를 책임지우지 못하는 것이 염려됩니다. 본사의 당상(堂上) 이기빈(李箕賓)으로 하여금 화수(畫手)를 대동하고 가서 간심(看審)하고 나서 도형을 그려오게 한 다음 다시 의논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備邊司啓曰: “南漢山城形勢, 本司亦有熟看之人. 其中襟抱, 宛作一都邑. 西北有高峰, 東西寬敞, 有川流水田, 曲曲深邃, 自外無窺覘臨壓之處. 昔爲百濟國都者, 有由然矣. 若於此處, 築城鍊卒, 一依禿城, 內爲京都保障, 外爲諸鎭控制, 則允爲長算. 聖慮所及, 實出尋常萬萬. 臣等竊伏商度, 此城形勢甚好, 而近處各邑, 俱是殘破之地, 人單力薄, 雖欲猝爲規畫, 其勢極難. 禿城·水原爲府, 物衆人多, 非廣州之比, 且城子不爲廣闊, 故以多人之力, 修繕設鎭, 猶得以成形, 今此南漢山城, 則與禿城有異, 本州牧使, 雖極擇差送, 而憑藉何力, 容易成事乎? 但朝廷如有定計, 擇人而委之, 則或先爲募聚僧徒, 或先設倉廩, 措峙糧穀, 或募入人戶, 免役定集, 漸成根基, 然後相時量力, 給與某處軍士, 繕設城池樓櫓, 以爲近京一巨鎭, 諒無不可. 但慮我國無定議, 而不能責久遠之效耳. 本司堂上李箕賓, 使之帶同畫手, 看審圖畫以來, 然後更爲議處何如?” 上從之.

<선조실록 159권, 선조 36년 2월 18일(을사) 6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 최천후의 집에 화적이 돌입한 일에 대해 수원도호부사 변응성이 장계하다

경기 방어사 겸 수원 도호부사 변응성(邊應星)이 치계하였다. “지난달 29일에 수원부(水原

府)에 있는 전 참봉(參奉) 최천후(崔天後)의 집에 화적(火賊)이 돌입하여 잡물을 훔쳐가고 여인을 때려 다치게 하였으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곧 초관(哨官) 등을 시켜 종적을 찾게 하였더니, 직산(稷山) 쪽 길로 향하였는데 이 도둑들은 혹 온양(溫陽)의 온정(溫井)에 서로 모여 작당하고 대흥(大興) 등처에 출몰하기도 한다 합니다. 호서(湖西)와 경기는 상호 인접한 곳이므로 만일 도둑들이 서로 통하면 보통 걱정거리가 아닐 듯합니다. 조치하여 체포할 방책을 지금 출령(出令)하였으나 조정에서 따로 사목(事目)을 만들어 내려보내 힘써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己亥/京畿防禦使兼水原都護府使邊應星馳啓曰：“前月二十九日，水原府前參奉崔天後家，火賊突入，雜物偷去，打傷女人，不至死亡。卽令哨官等尋蹤，則指向稷山之路，而此賊等，或於溫陽溫井，相聚連結，大興等處出沒云。湖西·京畿，犬牙相接之地。萬一賊徒，彼此相通，則恐非尋常之慮。措捕之策，今方出令，自朝廷別爲事目下送，使之刻意舉行何如？”

<선조실록 165권, 선조 36년 8월 16일(기해) 1번째기사>

### 정치/군사

간원이 수원에 방어사 대신 부사를 둘 것을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사람이 많고 땅이 넓어서 경기의 근본이 되는 곳이므로 전부터 부사(府使)·판관(判官)을 둔 데에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난 후로 독성(禿城) 때문에 방어사(防禦使)를 두어 부사의 직임을 겸하게 하였는데, 일에 방해가 있을 뿐더러 민폐도 많습니다. 이제 방어사 변응성(邊應星)이 임기가 차서 체직될 것인데 그 대임을 뽑지 말고 신중을 기하여 재능과 명망이 있고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특별히 가려 부사에 제수하여 독성을 아울러 살피게 하소서. 또 거기에 소속된 하번(下番) 군사는 도로 서울에 올라와 전례대로 숙위(宿衛)하게 하면 일이 매우 편리하겠으니, 묘당(廟堂)을 시켜 빨리 조치하게 하소서.”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

○諫院啓曰：“水原，物衆地大，乃畿甸根本之地。自前有府使·判官者，其意有在。亂後以禿城之故，設立防禦使，兼爲府使之任，非但事有防礙，民弊亦多。今者防禦使邊應星，瓜滿當遞。勿出其代，別擇有才望勤幹之人，爲府使，兼察禿城，且所屬除番軍士，還爲上京，依前宿衛，事甚便益。請令廟堂，斯速處置。” 答曰：“允。”

<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8월 28일(병오) 6번째기사>

### 정치/군사

경기 감사 김수가 수원의 조련군을 상변하기 때문에 숙위군이 부족하다고 하다

경기 감사 김수(金睟)가 아뢰었다. (...) “수원(水原)의 조련군(操鍊軍)을 지금 반을 나누어 상변(上番)하게 했는데 이는 실로 숙위군(宿衛軍)의 부족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궁성 밖에 별도로 군영을 설치하고 평시에 군영을 주둔시킨 것과 같은 법규를 적용하여 초관(哨官)을 같이 있게 하면서 입번(入番)한 경우에는 통솔하고 출번(出番)할 경우는 훈련을 시키게 하소서. 그리고 간혹 재주를 시험하여 논상하기도 한다면 반드시 흥기하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왕도(王都)의 숙위에 대해서는 원대한 장래를 생각하여 특별히 조치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수원(水原)·죽산(竹山)·과주(坡州) 등지의 산성을 점차 수축하자는 의견도 실은 여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죽주(竹州)는 동남간에 있고, 독성(禿城)은 서남간에 있고, 과주는 서

북간에 있고, 강화(江華)는 서쪽의 큰 진관(鎭管)으로서 수로(水路)를 가로 막고 있으니, 통제(控制)하는 형세가 제대로 되었다고 할 만합니다. 다만 본도(本道)의 경계 중 북로(北路)에는 막을 만한 보장(保障)이 없는데, 듣건대 철원(鐵原)에 산성을 수축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곳이 있어 이를 보장의 지역으로 만든다면 위급할 적에 믿을 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조처하는 제반 일은 전부 본도에 책임지워도 충분히 마련해 낼 수 있습니다.” (…)

○京畿監司金暉(…)啓: “水原操鍊軍, 今則分半上番, 實出於宿衛軍不足之故, 宮城之外, 別設軍營, 有若平時留營之規, 而使其哨官同在, 入番則領之, 出番則鍊習, 或別爲試才論賞, 則必多興起之效. 王都宿衛, 不可不思其遠慮. 別樣區處. 水原·竹山·坡州等處山城, 漸次修築之意, 實在於此. 竹州在東南之間, 禿城在西南之間, 坡州在西北之間. 江華以西邊大鎭管, 爲水路之蔽, 控扼之勢, 可謂得矣, 但本道之境, 無北路遮障之地. 聞鐵原有可設山城. 若果有之, 作爲保障之地, 庶有緩急之恃. 措置之事, 專責本道, 足以辦出.” (…)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 10월 12일(무오)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삼도의 군사가 용인에서 패하다

삼도(三道)의 군사가 용인(龍仁)에서 패하여 이광(李洸) 등이 본도로 돌아갔다. 삼도의 여러 장수들이 이광을 맹주(盟主)로 삼고 진군하여 용인에 주둔한 적을 먼저 공격할 것을 의논하였다. 이에 권율(權慄)이 이광에게 말하기를,

“전로(前路)의 적진(賊陣)은 험한 곳에 웅거하여 있으니 쳐다보며 공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주공(主公)이 경내의 모든 병사를 징발해 들어와 구원하려고 하니, 국가의 존망이 이 한 번의 거사에 달려 있는데 되도록이면 신중히 하여 만전을 도모해야 한다. 곧장 조강(祖江)을 건너 임진을 막는 것이 마땅하니, 그렇게 되면 서로(西路)가 자연히 견고해지고 식량을 운반하는 길도 트이게 될 것이니 사기를 축적하여 틈을 엿보면서 조정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하였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먼저 수원(水原)의 독산성(禿山城)에 웅거하여 적을 유인하여 싸운 뒤 승리할 때를 틈타 진격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였다. 그런데 이광은 당시 지체한다는 비방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마침내 진군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곧바로 양천(陽川)의 북포(北浦)에 도착한 뒤 진퇴를 의논하겠다.” 하였다. 그러나 세 장수는 실제로 권율의 계책을 따르려 하였으므로 연명(聯名)하여 장계하기를, **“신들이 함께 군사 6만여 명을 거느리고 지금 수원 지역에 이르러 양천의 북포를 경유해서 군사를 도우려 하나 적이 경성에 있으니 앞뒤로 적의 공격을 받을 듯싶습니다.** 조정에서 속히 지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

○朔己丑/三道兵潰于龍仁, 李洸等奔還本道. 三道諸將以洸爲盟主, 議進軍, 先擊龍仁屯賊. 權慄言于洸曰: “前路賊陣據險, 難以仰攻. 主公掃境內入援, 國家存亡, 在此一舉, 務在持重, 以圖萬全. 唯當直渡祖江, 以塞臨津, 則西路自固, 糧道亦通, 畜(銃) [銳] 伺隙, 以待朝廷之令可也.” 或曰: “宜先據水原禿山城, 致寇而戰, 乘利而進.” 洸方以逗遛, 被人謗議, 遂促進兵曰: “直到陽川北浦, 方議進退.” 三帥實欲用權慄策, 聯名狀啓曰: “臣等共率兵六萬餘人, 今到水原地, 欲由陽川北浦濟師, 而賊在京城, 恐腹背受敵. 願朝廷急速指揮.” (…)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6월 1일(기축)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호남 의병장 김천일이 군사를 거느리고 북상하여 수원 독산에 웅거하다

호남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이 군사를 거느리고 북상하였다. 삼도(三道)의 군사가 무너진 뒤로부터 기내(畿內)가 완전히 살륙과 노략질을 당했는데, 적에게 붙좃아 도성에 들어간 자도 많았다. 천일이 의병 수천 명을 규합하니, 상이 장례원 판결사(掌隸院判決事)에 임명하는 동시에 창의사(倡義使)라는 칭호를 내렸다. 천일의 군사가 수원(水原)에 이르러 독산(禿山) 고성(古城)에 웅거하여 적에게 붙좃은 간민(奸民)을 찾아내어 목을 베니, 돌아와 따르는 기내의 사민(士民)이 많았다.

○湖南義兵將金千鎰領兵北上。自三道軍潰，畿內全被殺掠，多附賊入都。千鎰糾義旅數千，上命授掌隸院判決事，兼號倡義使。千鎰兵至水原，據禿山古城，搜斬附賊姦民，畿內士民歸赴者衆。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6월 1일(기축) 4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서인 홍계남이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니 수원판관에 제수하다

서인(庶人) 홍계남(洪季男)이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였다. 계남은 양성현(陽城縣) 사람으로 충의위(忠義衛) 홍언수(洪彦秀)의 첩의 아들이다. 담력과 용맹이 있고 말타고 활쏘는 데에 능하여 금군(禁軍)에 소속되어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들어갔었는데, 왜인들이 그가 말타고 활쏘는 것을 구경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기억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언수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무찌르다가 패하여 전사하였다. 그러자 계남이 왜진(倭陣)으로 달려 들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거두어 돌아왔는데, 왜인들이 계남인 줄 알고 감히 서로 대항하지 못하였다. 계남이 아버지의 군사를 거두고 높은 산 꼭대기에 보루를 쌓고 양천(陽川)·안산(安山) 두어 고을의 지역을 굽어보며 군사를 주둔시키고 적의 헛점을 틈타 동서로 습격하여 많이 참살(斬殺)하였다. 그래서 적이 감히 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경기 지역과 호서의 여러 고을이 그를 의지하게 되었다. 특히 수원 판관 겸 조방장에 제수하였다.

○庶人洪季男起兵討賊。季男陽城縣人，忠義衛彦秀妾子也。有膽勇，善騎射，屬禁軍，從通信使，入日本，倭人觀其騎射，記其名。至是，彦秀起義兵，擊倭敗死。季男馳入倭陣，收其屍歸，倭人知爲季男，不敢相格。季男收父兵，築壘於高山頂，俯臨陽·安數邑之地，屯兵伺賊，東西鈔擊多斬殺，賊不敢入其境，京畿界·湖西諸邑賴之。超授水原判官兼助防將。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7월 1일(무오) 18번째기사>

### 정치/군사

#### 김천일·최원이 수원에서 인천으로 진을 옮기다

김천일(金千鎰)·최원(崔遠)이 수원(水原)에서 인천(仁川)으로 진(陣)을 옮기고 감사 이광(李光)에게 군대 지원을 요청하니, 이유의(李由義)·선거이(宣居怡) 등을 보내어 달려가 지원하게 하였다. 양쪽의 군사가 오래 머물자 도망하는 사졸이 많으므로 마침내 강화(江華)로 들어가 바다를 의거하여 견고하게 지키면서 바닷길로 행조(行朝)에 통하여 아뢰었다. 그러나 감히 육지에 나오지 못하고 오직 반민(叛民)을 불러 모아 도로 나오게 하여 기전(畿甸)의 인심을 조금 유지시켰을 뿐이었다.

○金千鎰·崔遠自水原移陣仁川，請益兵于監司李洸，送李由義·宣居怡等赴援。兩軍久留，士卒多逃亡，遂入江華，據海爲固，以海路通奏行朝。自是不敢出陸，惟招募叛民還出，略維持畿甸人心而已。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7월 1일(무오) 22번째기사>

### 정치/군사

**이광이 용인에서 패한 뒤에 호남에서 고경명과 김천일이 수원에 진주하다**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등이 유생 곽현(郭玄)·양산숙(梁山燾)을 보내어 바닷길을 따라 관서(關西)에 들어가 행조(行朝)에 일을 아뢰었다. 양산숙이 또 상소하여 계책을 올리니, 상이 자주 인견(引見)하여 위유하며 공조 좌랑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호민(李好閔)으로 하여금 교서(敎書) 2통(通)을 짓게 하여 양산숙에게 부쳐 보냈다. 하나는 호남에 유시하는 것으로 그 대략에, “이광(李洸)의 군사가 용인(龍仁)에서 패하였다는 말을 듣고부터 다시 남쪽을 바라보며 구원을 기대하는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 고경명과 김천일 등이 의병 수천 명을 규합하여 절도사 최원(崔遠)과 함께 수원(水原)으로 진주(進駐)했다 한다. 부덕(不德)한 내가 어떻게 이토록까지 사람들이 사력을 다하게 할 수 있었는가. 이제 양산숙 등을 보내어 돌아가서 알리게 하니 그대들은 내가 알리는 뜻을 헤아리도록 하라.” (…)

○倡義使金千鎰等遣儒生郭玄·梁山燾，從海路入關西，奏事行朝．山燾又上疏獻策，上數引見慰諭，拜工曹佐郎．令李好閔製敎書二通，付山燾以送．一諭湖南，略云：

自聞李洸之師潰於龍仁，無復有南望待救之念，茲聞高敬命·金千鎰等，糾義旅數千，與節度使崔遠，進住水原云，予之不德，何以得人死力至此哉？今遣山燾等還報，惟爾多士，諒予告意． (…)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8월 1일(무자) 7번째기사>

### 정치/군사

**전라 순찰사 권율이 수원의 독성으로 군사를 진출시키다**

전라 순찰사 권율(權慄)이 수원의 독성(禿城)으로 군사를 진출시켰다. 권율이 직산(稷山)에 이르자 체찰사 정철이 경솔하게 진격하지 말도록 경계하므로 권율이 그대로 군사를 머물게 하면서 보고하였다. 조정이 전지를 내려 정철을 책망하고 권율을 재촉하여 경성으로 진출하여 도모하도록 청하였다. 권율이 지난날 평야의 전투에서 군사가 패한 것을 징계하여 독성으로 진출하여 머물렀다. 상이 차고 있던 칼을 풀어 달려가 내려주게 하면서 ‘여러 장수들 중에 명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이 칼로 처단하라.’ 고 하였다. 경성의 적이 진을 나누어 군사를 출동시켜 왕래하면서 도전(挑戰)하였으나 권율은 성곽을 튼튼히 지키고 응하지 않으니 적이 군영을 태우고 퇴각하였다. 권율이 가끔 날랜 군사를 출동시켜 낙후한 적을 습격하자 기내(畿內)에 주둔했던 적이 모두 경성으로 들어갔다. 이로부터 서로(西路)에 행인이 다닐 수 있게 되어 여러 의병들이 차례로 경기 지역에 진출하여 주둔하면서 중국 군사를 기다렸다.

○全羅巡察使權慄進兵水原禿城．慄至稷山，體察使鄭澈戒勿輕進，仍住軍以聞．朝廷請下旨，責澈促慄，進圖京城．慄懲前日野戰潰師，進住禿城．上解佩劍馳賜曰：“諸將不用命者，以此從事．”京城賊分陣出兵，往來挑戰，慄堅壁不應，賊燒營而退．慄時出銳卒，鈔擊零賊，畿內賊屯，皆斂入京城．自此，西路得通行李，諸義兵鱗次進屯畿界，以待天兵．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12월 1일(정해)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경기 지방의 산성 수리에 대해 비변사에서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기 지방의 산성이 무려 열 일곱 곳이나 되는데 적이 물러간 뒤로 점점 폐지되고 오직 수원(水原)의 독성(禿城)만이 꾸준히 수리되어 왔습니다. 지난날 본사에서 중수할 일을 의논할 때에 먼저 수원과 파주(坡州) 등 세 곳의 산성을 거론하였고, 그 나머지 인천(仁川)·용진(龍津)·광주(廣州)·고양(高陽) 등 네 산성은 앞으로 점차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주(驪州)의 파사성(婆娑城) 같은 곳은, 논의하는 이들이 모두들 형세가 상자를 기울여 둔 것처럼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아서 멀리 외부에서 보면 밑바닥이 훤히 보이고 안쪽에서 외부를 방어하려면 지세가 기울어지고 험하여 결코 수비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니라고 하여 수선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8개 읍의 산성은 앞으로 본도 감사로 하여금 방어사와 회동하여 형세를 살펴보고 만일 어쩔수없이 수비하여야 할 것이라면 하나하나 계문할 <것을 이미 이문(移文)하였는데,> 본도 감사 등이 수선할 것을 계청한 것이 없습니다. 즉시 수리하라는 전교를 지금 받았으나 도신의 평가를 받지 못하여 아직 형세의 험난 여부나 위급할 때 산성의 경중 여하를 알지 못하니, 감사에게 문의하여 편부(便否) 여하를 헤아려 계문하게 한 후에 처치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 본사가 뜻을 두고 요리하여 차례대로 수축하고 보완함으로써 폐기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라.” 하였다.

○備邊司啓曰: “京畿山城, 無慮十七處而一自賊退之後, 漸就廢弛, 唯水原之禿城, 綿綿修葺矣. 頃日本司議將重修, ‘先舉水原·坡州等三處山城, 其餘仁川·龍津·廣州·高陽等四城, 則將爲漸次措置矣.’ 至於驪州之婆娑城則, 議者皆以爲: ‘形如倚筍, 北高南低, 自外遠看, 洞見腹內, 自內禦外, 地勢欹險, 決非可守之地, 不在修繕之中. 如此等八邑山城, 則行令本道監司會同防禦使, 看審形勢, 如有不得已應守者, 使之枚舉啓聞(事, 已爲行移,) 本道監司等, 亦無啓請加修之事矣. 今承傳教, 所當劃即修改, 而未經道主品題, 姑未知形勢險易·緩急輕重之如何, 問于監司, 商度便否, 啓聞後處置何如?’ 傳曰: “依啓. 本司留意料理, 次第修築繕完, 俾不至廢棄.”

<광해군일기 24권, 광해군 2년 1월 17일(갑오) 8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수원 독성에 주둔한 군사가 한달에 1백명이 넘으니 곧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명원이 답하기를, “당초 음성(陰城)과 죽산 여섯 고을에 군사 수천 명과 군량미 1천 석, 잡곡 3천 석을 첨입(添入)하여 성 쌓는 일을 대강 완료하였었는데 중간에 방치하여 장차 수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방어 도구도 더욱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면 겨우 기와를 덮고 수식과 단장을 하지 못해 풍우(風雨)와 한서(寒暑)를 방비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현재 조정에 보고하여 안성(安城)과 죽산의 번군(番軍) 1백여 명이 4 개월의 역사를 면제받아 포대[砲樓]를 짓고 있으나 이로써 일을 완성하기란 바랄 수 없습니다. 수원(水原)의 독성(禿城)은 주둔한 군사가 한 달에 1백 명이 넘으니 만약 이 준례대로 많은 숫자가 머물러 방어한다면 이 군사로서 날마다 수리하는 것을 일삼으면 수년이 넘지 않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였다.>

○庚戌三月二十六日壬寅上御經筵, 講《尚書》《無逸》.(...) 命元曰: “當初陰竹等六邑, 添入軍兵數千人·軍糧米一千石·雜穀三千石矣, 築城粗完, 而中間廢置, 將至不能收拾, 守禦之具, 尤甚齟齬. 比之構屋, 纔爲蓋瓦, 未及修粧, 不得備風雨·寒暑, 誠爲可惜. 今方論報朝廷, 得安城·竹山除番軍百餘名, 爲四朔之役, 營造砲樓, 而以此完事, 不可望矣. 水原 禿城

則留屯之(冬) [兵] , 月不下百名, 若依此例多數留防, 則以此軍丁, 日事修繕, 不出數年, 可作必守之地矣.” ) (…)

<광해군일기 26권, 광해군 2년 3월 26일(임인)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 승정원이 수원의 일은 비변사에서 수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다

<정원이 14일의 경연에 대한 처분이 없다고 여쭙었는데, 전교하기를, “호패에 관한 일은 본청에 일러주고, 좌도(左道)를 물리쳐 근절하는 일은 법부를 시켜 철저히 금하게 하고, 포수·살수와 잡기(雜技)를 명관(命官)하여 시취하는 일은 선조(先朝)에서 친시(親試)한 규례를 상고하여 아뢰어서 결정토록 하고, 수원(水原)의 일은 묘당에서 수의하여 처치토록 하고, 무사를 가려 뽑아서 유군(遊軍)을 따로 만드는 일은 본도감에서 수의하여 처치하게 하고, 남도의 일은 비변사가 회계토록 하고, 시학(詩學)을 권장하는 일은 해조에 일러서 수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양 어사(楊御史)가 보낸 시문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지금 군직을 띠고 있는 자는 원임 실직을 써서 보내는 것이 무방하다. 처음 입사(入仕)한 자에 대해 30이 되기 전에 제수하지 말 일과 문관 정시(庭試)에 관한 일과 독서당을 다시 설치하는 일과 시강원의 관원을 가려서 의망하는 일은 모두 각 해사에서 회계토록 하라. 그 외의 일은 위에서 살펴서 처치하겠다.” 하였다.>

○辛亥十月十七日癸未(政院以十四日經筵, 無發落取稟. 傳曰: “號牌事, 言于本廳; 左道斥絕事, 令法府痛禁; 砲·殺手·雜技命官試取事, 考先朝親試之規, 以啓定奪事; 水原事, 令廟堂議處; 擇武士別作遊軍事, 令本都監議處; 南道事, 令備邊司回啓; 詩學勸獎事, 言于該曹議啓. 楊御史所贈詩文製述人, 方帶軍職者, 以原任實職, 書送不妨. 初入仕三十之前勿授事·文官庭試事·讀書堂復設事·春坊官擇擬事, 竝令各該司回啓. 他餘事自上當察處.” )

<광해군일기 46권, 광해군 3년 10월 17일(계미)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 병조가 친히 기우제를 올릴 때 호위를 위해 수원에 선전관을 보내 징집하게 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오는 5월 4일에 사직단에 친히 기우제 올리는 일을 관하하셨습니다. 새로 번드는 군사는 각 차비(差備)와 호위 등 일에 부족한 수가 무려 1천 5백여 명이나 됩니다. 비록 전처럼 기내(畿內) 군사를 불러 모으고자 하나 날짜가 너무 촉박하여 전령(傳令)하여 징발하는 즈음에 기일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우니 몹시 우려됩니다. 그러니 4월의 하번(下番) 군사를 그대로 머물러 시위(侍衛)하게 하였다가 환궁하신 뒤에 곧바로 떠나보내면 그간 머무는 날짜가 3일뿐인데, 훗날 번드는 차례가 되었을 때에 도방(到防)의 부역을 모두 감하여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할 듯 싶습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수원(水原)·강화(江華)의 군사 각 2백 명씩을 급히 선전관을 보내어 속히 징집하여 엄히 호위하게 하라.” 하였다.

○甲寅四月二十八日庚戌兵曹啓曰: “來五月初四日, 社稷祈雨祭親行事, 判下矣. 新上番軍士, 各差備·扈衛等事, 不足之數, 多至一千五百餘名. 雖欲依前徵聚畿甸軍士, 而日字已迫, 傳令調發之際, 恐未及期, 極爲可慮. 四月朔下番軍士, 仍留侍衛, 還宮後卽爲發送, 則其間所留, 只三箇日字, 後當番全減到防役, 似爲便當. 惶恐敢稟.” 傳曰: “允. 水原·江華軍士各二百名, 急遣宣傳官, 速爲徵集, 嚴加扈衛.”

<광해군일기 77권, 광해군 6년 4월 28일(경술)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 승정원이 호위할 군사를 수원의 군사 4백 명을 징발하여 쓰기를 건의하다

〈승정원이, 경기 방어사(京畿防禦使)에게 보낼 유지(有旨)를 입계하고 아뢰기를, “이 유지를 지금 당장 유문(留門)하고 발송합니까? 또 이번 거동은 날짜가 너무 촉박한데 강화(江華)는 수원(水原)보다 머니 군대를 징발하여 올라오는 즈음에 반드시 크게 군색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수원의 군사 4백 명을 징발하여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따랐다.〉

○(承政院以京畿防禦使處有旨入啓曰: “此有旨卽今留門發送乎? 且今此舉動, 日期已迫, 而江華則遠於水原, 徵兵上來之際, 必致窘迫之患. 今番則水原軍四百名, 調用何如?” 從之.)

<광해군일기 77권, 광해군 6년 4월 28일(경술) 4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 비변사가 수원부사 이충 등이 군사를 조발하는 일에 대해 건의하다

비변사가, 공홍 감사(公洪監司) 윤효전, 수원 부사 이충 등을 인견했을 때 올린 계사에 대해 회계하기를, “신들이 삼가 병조의 계하한 공사를 보고 일의 형편을 참작하여 군병을 조발(調發)하여 1만 명의 숫자를 채우고자 노력하였는데, 9천 5백 명은 평안·황해 양도에 배정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숫자는 개성·경기·강원 등의 도에 나누어 배정하였는데 그 숫자가 5백 명입니다.

지금 윤효전과 이충이 아뢰는 일을 보니, 그 뜻이 1만 명의 군사를 오로지 관서(關西) 한 도에 책임지우고 다른 도는 1명의 군사도 조발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이를 참작해 보니, 군사를 조발하는 일은 국가의 중대한 일로서 한 도에 일이 생길 경우 팔도가 동요할 것이므로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본사의 당상관 중 전에 서로(西路)의 책임을 맡았던 자들도 대다수가 ‘관서·해서의 군사는 해당 도에서 직접 더 조발할 일이고 다른 도의 군사까지 함께 번거롭게 조발하여 쓸 필요는 없다.’ 하였습니다. 농사에 관해서는 남중에게 물어봐야 되고 길쌈에 대해서는 여중에게 물어봐야 되는 법이니, 군사를 조발하는 일은 병조로 하여금 속히 처치하게 하고, 군량미를 조달하는 일은 호조로 하여금 함께 조치하게 하여 군비에 궁핍한 일이 생기는 탈이 없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備邊司回啓曰以公洪監司尹孝全·水原府使李冲等引見時啓辭, 回啓曰: “令備邊司議處事, 傳教矣. 臣等伏見兵曹啓下公事, 參商事勢, 調發軍兵, 務足滿萬之數, 而九千五百名分定於平安·黃海兩道, 不足之數, 散派於開城·京畿·江原等道, 其數五百. 今見尹孝全·李冲等所啓之事, 則其意欲以一萬兵, 專責於關西一道, 他道則免調一兵. 臣等就此商量, 調兵之事, 係國家大事, 而一方有事, 八方繹騷, 非國之利也. 本司堂上中, 曾經西路之任者亦多, 以爲: ‘關海以西之兵, 自可添調, 他道軍兵, 不必竝煩調用.’ 云. 耕當問奴; 織當問婢, 調兵之事, 令兵曹速爲處置; 調糧之事, 令戶曹竝爲措置, 俾無乏軍興之患.” 從之.

<광해군일기 80권, 광해군 6년 7월 20일(경오)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 경연청에 나가 수원 부사 이충을 인견하다

왕이 〈경연청에 나아가〉 수원 부사 이충(李冲)을 인견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본부는 남로(南路)의 요충지이니 군사와 백성들을 보살피고 병기를 정리하는 등의 일을 잘 살펴서

행하라. 그리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더욱 동태를 살피는 일에 힘쓰라.”

하니, 이충이 아뢰기를, “본부는 인구가 많고 지역이 커서 본래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일컬어졌을 뿐만 아니라, 방영(防營)을 설치하고부터 임무가 매우 중대하게 되었습니다. 소신은 재능이 용렬할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있으므로 변고가 생길 경우 일을 그르치고 말까 두렵습니다.” 하자, 왕이 이르기를, “본부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정밀하게 가려서 보낸 것이니 내외를 가리지 말고 더욱 마음을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

○甲寅七月二十日庚午王(御經筵廳), 引見水原府使李冲. 王曰: “本府, 南路要衝, 撫恤軍民, 整理器械等事察爲. 如或有荒唐人, 更加機察.” 李冲對曰: “本府非但物衆地大, 素稱難治, 自設防營, 爲任極重. 小臣非但才劣, 加以疾病, 若有事則恐未免債事之患.” 王曰: “本府任重, 故極擇差送. 勿分內外, 更加盡心.” (…)

<광해군일기 80권, 광해군 6년 7월 20일(경오)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병조에서 친경하는 대례에서 수원의 군사에게 호위를 맡기는 일에 대해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친경(親耕)하는 대례(大禮)를 행할 때 호위(扈衛)하는 일들을 엄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복병장(伏兵將)·척후장(斥候將)·고원장(考喧將) 역시 많은 수를 조발(調發)해 써야 하는데, 시임(時任) 무신만으로는 태반이 부족합니다. 경중(京中)·경기·개성부(開城府)·황해·강원·공홍도 등의 당상·당하 가운데 한산(閑散)한 무신들을 모두 기일에 맞춰 올라오게 하고, 수원(水原)·강화(江華) 두 부(府)에 소속된 군병들에게 각자 포장(布帳)을 지니게 한 다음, 겸방어사(兼防禦使)와 부사로 하여금 직접 인솔해 와 호위를 엄하게 할 일을 미리 파발마로 알려야 하겠기에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수원 부사는 경기 수령으로서 친경할 때 조복(朝服)을 갖추 입고 논두렁 사이에 서 있게 될 텐데, 그때 군사를 거느리고 호위하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 대행케 할 것인지 다시 의논해 처리하라.” 하였다.

○戊午三月初七日丙寅, 兵曹啓曰: “今此親耕大禮時, 扈衛諸事, 不可不嚴密矣. 各處伏兵將·斥候將·考喧將, 亦當多數調用, 而時仕武臣, 太半不足. 京中·京畿·開城府·黃海·江原·公洪等道堂上·堂下閑散武臣, 並令及期上來, 且水原·江華兩府所屬軍兵, 各持布帳, 令兼防禦使·府使, 新親自領來, 以嚴扈衛事, 預先發馬知委之意, 敢啓.” 傳曰: “允. 水原府使, 以京畿守令親耕時, 具朝服, 立於田畝間, 則領兵扈衛, 使何人代行乎? 更議以處.”

<광해군일기 125권, 광해군 10년 3월 7일(병인)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한효순이 훈련도감과 수원·강화의 군병이 표리가 되게 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하다**

좌의정 한효순(韓孝純)이 의논드리기를, “(…) 그리고 수어(守禦)하는 방략에 대해서는 체찰사(體察使)와 원수가 차출되기를 기다렸다가 비국의 신하들과 여러모로 충분히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고 근심스러운 날을 당하여 근본(根本)을 호위하는 데 더더욱 심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호위 대장(扈衛大將)을 두고 근도(近道)의 병력을 뽑아 그에게 예속시킨 뒤 서쪽과 북쪽 변방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교대로 입번(入番)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훈련도감의 군병과 좌·우를 나누어 맡고 밖으로는 수원(水原)·강화(江華)의 군병과 서로 표리(表裏)가 되게 한

뒤, 뜻밖에 일어나는 비상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으로 노적(奴賊)이 무너져 쫓기면서 우리나라로 충돌해 올 환란을 방지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듯합니다. (…)" 하였다.

○左議政韓孝純議: “(…) 至於守禦方略, 則待體察元帥差出, 與備局諸臣, 反覆熟議講定爲當. 目今艱虞之日, 根本扈衛, 尤宜十分慎重. 別設扈衛大將, 抄隸近道兵, 限西北事定, 輪廻入番, 內與訓練都監軍兵, 分左右, 外與水原·江華軍兵, 相爲表裏, 一以備非常於意外, 一以防奴寇奔潰衝突之患, 恐合事宜. (…)”

<광해군일기 127권, 광해군 10년 윤4월 23일(신사) 8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 좌의정 한효순이 무원의 징병을 요청하는 자문에 대한 일로 의논드리다

좌의정 한효순(韓孝純)이 의논드리기를, “무원(撫院)이 징병을 요청하는 자문을 보낸 뒤로 신이 비국의 신하들과 다방면으로 계책을 강구해 보았습니다만 재주가 얕고 식견이 짧아 좋은 방책을 얻지 못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갑사(甲士)와 정병(正兵) 등 각종 군사가 모두 농사짓는 백성들이라서 한 사람도 쓸 만한 자가 없습니다. 단지 이른바 포수(砲手)나 살수(殺手)라고 하는 자들의 경우는 대오(隊伍)를 서로 맞추게 하는 제식(制式)이 있고 봄과 가을에 교련시키는 법이 있어 농사짓는 백성과 비교할 때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장령(將領)은 군사를 모르고 사졸은 싸울 줄을 모르니 오늘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군졸을 가지고 노추(奴酋) 오랑캐의 철기(鐵騎)와 접전하게 할 경우 무너져 흩어져서 패망하리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병력을 조발하여 다그쳐 보낼 즈음에 혹 뜻밖의 근심이 있게 될까 우려된다고 하신 성상의 생각이야말로 정말 보통 사람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만, 우리나라는 중국 조정에 대해서 부자(父子)의 의리가 있고 또 나라를 되찾게 해 준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징병하는 일에 관하여 어떻게 감히 병력이 단약(單弱)하다는 이유로 난처한 기색을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양서(兩西)의 군대를 뽑되 많은 병력보다는 정예 위주로 해서 서둘러 조련시키고 미리 정리하여 칙유가 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이 밖의 일은 모두 원수(元帥)가 얼마나 잘 처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어(守禦)하는 방략에 대해서는 체찰사(體察使)와 원수가 차출되기를 기다렸다가 비국의 신하들과 여러모로 충분히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고 근심스러운 날을 당하여 근본(根本)을 호위하는 데 더더욱 심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호위 대장(扈衛大將)을 두고 근도(近道)의 병력을 뽑아 그에게 예속시킨 뒤 서쪽과 북쪽 변방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교대로 입번(入番)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훈련 도감의 군병과 좌·우를 나누어 맡고 밖으로는 수원(水原)·강화(江華)의 군병과 서로 표리(表裏)가 되게 한 뒤, 뜻밖에 일어나는 비상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으로 노적(奴賊)이 무너져 쫓기면서 우리나라로 충돌해 올 환란을 방지하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급히 해야 할 일로 민력(民力)을 아껴 기르고 인심을 수습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 양궐(兩闕)을 동시에 건립하는 탓으로 요역(徭役)이 매우 번다하여 민력이 이미 고갈되고 말았으니, 이렇듯 병력을 조발하는 날을 당하여 변통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우선 하나의 궁궐에만 힘을 쏟아서 그 비용을 줄이고 나머지 역량으로 군수(軍需)를 보충하게 한다면, 군수도 마련되고 인심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급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하나의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신의 어리석은 견해는 이러하니 삼가 상께서 재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였다.

○左議政韓孝純議：“撫院移咨徵兵之後，臣與備局諸臣，多般規畫，而才識淺短，未得善策。竊念我國甲士正兵各樣之兵，皆是農畝之氓，無一人可用。只有所謂砲殺手者，隊伍有相維之制，春秋有教鍊之法，比之於農畝之氓，則稍有間焉，而將領不知兵，士卒不知戰，無益於今日之用則一也。以如此之卒，交鋒於奴虜鐵騎之間，其潰散覆沒，不待智者而知。調發驅送之際，或慮意外之患，聖算所及，迥出尋常萬萬。第我國於天朝，有父子之義，有再造之恩，今此徵兵之舉，何敢以兵單力弱，而少有持難之色？惟當抄發兩西之軍，務精不務多，汲汲操鍊，預爲整理，以俟敕諭之至。此外，都在元帥之處置得失如何耳。至於守禦方略，則待體察元帥差出，與備局諸臣，反覆熟議講定爲當。日今艱虞之日，根本扈衛，尤宜十分慎重。別設扈衛大將，抄隸近道兵，限西北事定，輪廻入番，內與訓練都監軍兵，分左右；外與水原·江華軍兵相爲表裏，一以備非常於意外，一以防奴寇奔潰衝突之患，恐合事宜。且今日之急務，莫切於愛養民力·收合人心，而近以兩關竝建，繇役甚煩，民力已竭。當此調兵之日，不可不變而通之。臣之妄意，當先合力一闕，以省其費，推其餘力，以補軍需，則軍需庶有可措，人心庶可慰悅，此亦救急之一助也。臣愚昧之見如此，伏惟上裁。”

<광해군일기 127권, 광해군 10년 윤4월 23일(신사) 7번째기사>(정초본)

#### 정치/군사

**병조에서 수원의 예에 따라 파주의 상번 군사의 번서의 일을 면제하는 것 등에 대해 아뢰다**  
<병조가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하는 형식으로 아뢰기를, “비변사가 운운했는데, 파주 산성(坡州山城)을 새로 만들어 방비하는 일과 관련, 본주의 상번(上番) 군사는 우선 계본안의 사연대로 본진(本鎭)이 조치되는 기간에 한하여 상번을 면제해 주고, 근처 고을의 군사는 수원(水原)의 예에 따라 번(番)서는 일을 면제해 주도록 본도 감사와 수사에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兵曹啓目粘連：“備邊司云云，坡州山城新設關防，本州上番軍士，姑依啓本內辭緣，限本鎭措置間，除上番近邑軍士，依水原例除番事，本道監司水使處行移何如？” 啓依允.)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14일(신미) 14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비변사에서 수원 등의 요해처에 각도의 병사를 나누어 들여보내 지키게 하는 일로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비망기로> 각도의 병사를 나누어 들여보내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강도(江都)야말로 보장(保障)으로 삼을 지역이고 남한 산성(南漢山城)과 파주 산성(坡州山城) 등도 꼭 지켜야 할 곳이니 군사를 나누어 들여보내 지키도록 하신 성상의 분부가 참으로 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삼각 산성(三角山城)의 경우는 그 형세가 어떠한지 공역(功役)은 얼마나 들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반드시 일을 아는 사람을 파견하여 성터를 살펴보고 그 지형을 그려오게 해서 과연 지킬 만한 곳인지를 안 다음에야 어느 지역 어느 고을의 병사를 어느 곳에 나누어 지키게 할 것인지를 상의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水原)의 독성(禿城)과 파주(坡州)의 임진(臨津)도 꼭 지켜야 할 곳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해처로서 파수해야 할 곳이 무려 5, 6곳이나 되는 셈인데, 군병과 기계를 나누어 보내는 것도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량을 조달하는 문제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

이 없으니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곡식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인데 따로 규정을 만들어 다방면으로 곡식을 모집한다면 약간의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상 무신에게 임무를 나누어 부여하는 일 역시 성상의 분부대로 따라야 할 것이니, 광주 목사(廣州牧使)를 우선 가려 보내도록 하소서. <그런데 양주(楊州)의 경우는 간심(看審)하기를 기다리고 나서 처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備邊司啓曰: “備忘記, 各道兵, 分爲入守事, 傳有教矣. 江都乃保障之處, 南漢·坡州等山城, 亦必守之地, 分兵入守之事, 聖教, 誠爲允當. 但三角山城則未知其形勢之如何, 功役之多少, 必發遣解事之人, 看審其基址, 圖畫其地形以來, 知其可守然後, 某處某邑之兵, 分守某地之事, 可以商議以處. 水原之禿城·坡州之臨津, 亦當在必守之地. 要害把守之所, 多至五六處, 非但軍兵·機械分派之極難, 至於糧餉一事, 百計無策, 誠爲可慮. 得粟之策, 爲今日之急務, 別立科條, 多般募粟, 不無一分之助. 堂上武臣分界之事, 亦依聖教, 請廣州牧使爲先擇送. (楊州待看審後處置, 何如?)” 傳曰: “允.”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19일(병자) 1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 검찰사 심돈을 인견하고 변방의 일과 강도의 보장책 등에 대해 의논하다

<오시에> 왕이 선정전에 나아가 검찰사 심돈(沈惇)을 인견하였다. 우부승지 정규(鄭逵), 가주서 정양필(鄭良弼), 기사관 안응로(安應魯)·신계(申埴)가 입시하였다. (...) 왕이 이르기를, “강도(江都)를 보장(保障)으로 삼고자 하여 이미 요량해두었는데 강도 외에 보장으로서 합당한 곳이 어디인가?” 하니, 심돈이 아뢰기를, “강도는 땅이 넓고 수륙으로 길이 통하였고 종사(宗社) 관적(版籍)과 예악(禮樂) 문물(文物)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충청 수영이 지세가 가장 좋고, 호남은 부안이 강화와 맥로가 서로 통하여 있으니 또한 예비할 만한 곳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강도는 수륙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 강도로부터 수영(水營)으로 가려면 어느 길을 경유하는가?” 하니, 심돈이 아뢰기를, “강도로 가는 육행은 양천(陽川)에서 출발하여 통진(通津)을 거쳐 갑곶(甲串)에 이르며, 배를 타면 한강을 따라 김포·양천·통진을 지나서 연미정(燕尾亭)에 이릅니다. 강도에서 호서로 향하는 육행은 진위(振威)·수원(水原)·평택(平澤)·덕산(德山)을 경유하여 수영에 이르며, 뱃길로는 안흥량(安興梁)을 지나서 면천에 이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강도는 이미 헤아려 처리하였고 강도로부터 바다로 내려가는 것은 어떨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심돈이 아뢰기를, “일이 만약 이같은 데 이르면 항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사의 어려움과 위태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강도는 호종하는 군사들과 피난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니, 심돈이 아뢰기를, “만약 뱃사공의 지휘가 없다면 진흙땅과 밀물 썰물에 절대로 뛰어넘어 건널 수가 없습니다. 또 오랑캐의 장기는 다만 말 달리기인데 그 장기를 버리고 바다를 건너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더구나 강도는 여러 섬들이 총총히 포열돼 있어서 서로 도와서 성원할 수 있습니다. 진강 목장(鎭江牧場)을 백성들에게 경작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한다면 다만 도성 사민(土民)을 다 안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내(畿內) 백성을 다 들어와 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경이 지금 내려가서 형세를 살펴보고서 좋은 쪽으로 처치하는 것이 좋겠다. 또 강도가 비록 보장이라 하지만 군기·군량을 미리 조처하여 갖춘 연후에야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축성하는 공력이 반드시 어려울

것이니 목책을 먼저 만들어 세워서 난리에 임하여 의귀(依歸)할 곳으로 삼아야 한다.” 하였다.

심돈이 아뢰기를, “전에 하교를 보니, 목장을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하는 일을 어렵게 여겼습니다. 두장(豆場)은 말을 기를 수 있고 진강장은 경작할 만하니 지금 비록 백성들이 경작하도록 허락하였다가 때를 기다려 다시 말을 기르도록 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강도가 비록 보장이라 하지만 서북 관방도 불가불 갖춰 놓아야 하며 경성을 수어하는 일도 또한 헤아려 처리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일은 자못 착실히 거행하는 일이 없어서 극히 염려된다.” 하니, 심돈이 아뢰기를, “상의 전교가 지당합니다. 나아가서 지키는 것이 상책이고, 물러나 보존하는 것은 말단의 계책입니다. 비국의 신하들이 지금 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병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변방 방비가 어려운 이 시기에 정승 자리가 오래도록 비어 있고 우상이 비록 있으나 출사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

○午時, 王出御宣政殿, 引見檢察使沈惇. 右副承旨鄭達·假注書鄭良弼·記事官安應魯·申垵入侍. (…)

王曰: “江都欲爲保障, 已爲預度, 而江都之外, 可合保障, 何處耶?” 惇曰: “江都地廣, 水陸路通, 宗社·版籍·禮樂·文物, 亦可具矣. 其次忠清水營, 形勝最好, 湖南則扶安與江華, 脈路相通, 亦可預備.” 王曰: “江都水陸程途, 向何方? 自江都往水營, 由何路耶?” 惇曰: “江都, 陸行, 則自陽川·通津, 抵甲串乘舟, 則自江頭, 過金浦·陽川·通津, 抵燕尾亭, 自江都向湖西, 陸行, 則由振威·水原·平澤·德山, 到水營, 舟行, 則過安興渡, 抵沔川矣.” 王曰: “江都, 已爲料理, 自江都下海之舉, 則未知如何?” 惇曰: “事若至此, 無異航海. 國事艱危, 有不可言矣.” 王曰: “江都則扈從之士, 避亂之人, 皆可容接乎?” 惇曰: “若無舟子之指揮, 則泥濘之地, 潮汐之水, 萬無飛渡之理. 且奴之長技, 只在馳騁, 棄其長技, 渡海何爲? 況江都諸島, 星羅碁布, 可助聲援. 鎮江牧場, 許民耕食, 則非特都城土民, 亦皆安集, 畿內百姓, 盡可入居矣.” 王曰: “卿今下去, 察見形止, 從長處置, 可也. 且江都, 雖曰保障, 軍器·軍糧, 預爲措備, 然後可以謂保障矣. 築城之功力必難, 木柵爲先設造, 以爲臨亂依歸之所.” 惇曰: “前見下教, 牧場許民之事, 以爲持難. 豆場可以牧馬, 鎮江場則可以耕種, 今雖許民耕食, 待時還收/牧, 未爲不可.” 王曰: “江都雖爲保障, 西北關防, 不可不備, 京城守禦, 亦可料理, 而我國之事, 殊着無實舉行之事, 極爲可慮.” 惇曰: “上教至當. 進守爲上策, 退保爲末計. 備局諸臣, 今方料理, 而非但兵力脆弱, 當此邊虞孔棘, 台席久曠, 右相雖在, 而不爲出仕, 群下之情, 深用憂悶.” (…)

<광해군일기 130권, 광해군 10년 7월 2일(무자) 11번째기사>

## 정치/군사

### 비변사에서 용진의 방책책으로 수원부사가 하도록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

과주(坡州)는 이미 방어사를 보내서 지금 바야흐로 산성을 수축하여 보전하고 지키려는 계책을 시행하고 있고, 임진(臨津)은 과주 경내에 있어 떨어진 거리가 멀지 않아서 영(營)을 설치하고 방책을 세우려 합니다. 용진(龍津) 같은 데는 온 고을이 텅 빈 나머지 민력(民力)을 나누기가 어려운 까닭에 의외의 사변이 생기면 수원 부사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임진에 진주하여 방수하게 할 일을 일찍이 이미 강구하여 아뢰었습니다. 사기가 만약 급하면 하도에서 들어와 방위하는 군사들도 마땅히 도하에 와서 모여야 하니 이 군사로 상하의 강탄(江灘)을 나눠 지켜서 구슬을 켜 것과 같은 형세를 만들고, 만약



추운 겨울 얼음이 어는 때에 이르게 되면 성에서 지키지 않으면 안되니, 마땅히 좌주에서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

○備邊司啓曰：(…)坡州既出防禦使，時方修築山城，欲爲保守之計，臨津則在坡州境內，相距不遠，欲爲設營立寨，如龍津則一州蕩然之餘，民力難分，故脫有事變，則欲令**水原府使**，領兵進駐于臨津，以爲防守事，曾已講究具啓。而事機若急，則下道入衛之軍，亦當來會都下，以此分守上下江灘，作爲連珠之勢，而若至於隆冬合冰，則非城守不可，似當合力於坡州。(…)

<광해군일기 130권, 광해군 10년 7월 9일(을미) 13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 왕이 인경궁과 경복궁에 친림할 때 수원의 군사를 올려보내 호위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인경궁에 친림할 때, 이른 아침에 먼저 경복궁으로 가서 옛터를 살펴본 뒤에 인경궁으로 가야겠다. 오는 25일에 올라올 도방군(到防軍)은 차지 내관(次知內官)의 말에 따라 경복궁 각처의 임금이 보행할 길의 잡초를 베고 청소를 하고서 대기하게 해야 되겠으나, 도방군이 며칠 내로는 절대로 도착하지 못할테니 오는 23일부터 인근 지역의 방리군(坊里軍)을 적당수 먼저 징발하여 미리 길을 닦게 하라. 다만 잡초를 제거하고 길을 내어 통행만 하면 되도록 하고,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하라.

또 두 궁궐을 하룻동안에 거동하게 되니 수원의 군사 4백 명을 올려보내 호위하게 하는 <일을 도감으로 하여금 논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傳曰：“仁慶宮親臨時，早朝先臨景福宮，看審舊基後，當移幸仁慶宮。來二十五日上來到防軍，次知內官言(聽) [聽]，景福宮各處御路，伐草修掃以待。而只以到防軍，數日內，必不及役事，則來二十三日爲始，其近處坊里軍，量先調發，預爲修治。只令伐草通路(以行)，勿令有弊。且兩宮一日內舉動，**水原**軍士四百名，上送扈衛(事，令該曹議處.)”

<광해군일기 143권, 광해군 11년 8월 21일(신미) 3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 병조가 왕의 궁궐 친림 때 수원 군사 징발을 재고할 것을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군사를 징발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만약 교외로 나가 밤을 지새우는 행차가 아니면 전부터 호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두 궁궐에 거동할 때 수원의 군사 4백 명을 올려보내 호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4백 명의 군사는 모두 일반 백성들인데 경기 지방이 큰 흉년을 만난 때에 또 다시 그들을 징발하여 여러 날 왕래하게 할 경우 수확의 시기를 놓쳐 추수의 희망을 거둬 잃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백성들이 제자리에서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아다니는 우환이 생길 것은 따져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수원의 군사를 올려보내도록 한 것을 우선 정지시키고 <지난번 칙서를 맞을 때의 사례에 의거하여> 훈련 도감의 군사를 차출하여 호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兵曹啓曰：“徵兵之舉，係是重大。若非郊外行幸經夜舉動，則自前不爲扈衛，今此兩宮親幸時，**水原**軍士四百名，使之上送扈衛矣。臣等竊念四百之軍，皆是民也，當此畿甸凶荒，又爲徵發，累日往還，收穫失時，重缺秋成之望，則前頭流散之患，不占可知。**水原**軍姑停上送，(依頃日迎勅時例,) 訓練都監軍士除出，扈衛爲當。” 從之。

<광해군일기 143권, 광해군 11년 8월 22일(임신) 5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 주사청이 수군 훈련에 수원 군사에다 강화의 속오군도 동원하기를 청하다

주사청이 아뢰기를, “수군 훈련을 할 때 수군과 격군은 삼강(三江)가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서 찾아모아 인원수를 채운다 하더라도 각 배에 태울 포수와 사수에 있어서는 마땅히 도감의 군사를 동원해야 하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거동할 때의 호위는 수원의 군사 5백 명으로는 부족할 듯합니다. 듣건대 강화의 속오군(束伍軍)이 수군 훈련의 절차를 잘 알고 있다고 하니, 본부의 중군을 모두 거느리고 와서 이달 29일에 점호하고 수군 훈련이 지난 뒤에 내려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己未九月二十四日癸卯舟師廳啓曰: “水操時舟師·格軍, 則雖以三江居民, 搜括充數, 而至如各舡所騎砲射手, 則當用都監軍士矣. 第念行幸時, 扈衛軍, 雖有水原軍五百名, 而似爲不足. 竊聞江華束伍軍兵, 頗解水操節次, 請令本府中軍沒數率領, 今月二十九日來點, 過水操後下送事, 令各曹急急舉行, 宜當. 敢啓.” 傳曰: “依啓.”

<광해군일기 144권, 광해군 11년 9월 24일(계묘)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 병조가 무과 시행을 개성과 수원의 정시에 준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무과(武科)를 광범위하게 시행할 일에 대하여 <그 폐단이 끝이 없으며 군사의 정원이 감소하여 인재를 얻기가 어려운 것은 모두 광범위하게 인재를 뽑는 폐단입니다. 지금 서북의 변경에서 우려할 만한 기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병사를 늘려서 방비해야 하는 일은 두서가 전혀 없습니다. 이 달에 급히 서두른다고 해도 양서(兩西)에 과거를 시행하여 병사를 뽑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각도에서 과장을 설치토록 하더라도 시험을 거행하는 시기가 얼음이 얼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니 해조로 하여금 규정을 알맞게 정하고 특별히 사목을 세워 간략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뽑게 하소서. 또 들어가는 기한을 미리 결정하여 각도에 공문으로 지시하기를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양서의 공사 노비와 백도(白徒)들이 과연 하늘을 능가할 듯한 이 적들의 기세를 막을 수 있겠는가. 비록 무사를 시험보아 뽑더라도 즉시 군대의 정원으로 충당한다면 어찌 감소하는 일이 있겠는가. 10만 명은 뽑지 못한다 하더라도 2, 3만 명은 뽑지 않을 수 없으니, 속히 규정을 품신하여 정하고 각도에서 널리 뽑으라.” > 서둘러 규정을 품정하여 각도에서 많은 인재를 뽑도록 하는 일로 관하하였습니다. 각도의 무사들에게 과거를 보여 널리 뽑으면서 규정을 세밀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합격자가 분명 많을 것이니, 작년에 있었던 정시(庭試)의 별시에서 적용한 규정을 준용하여 육냥전(六兩箭) 두 개를 가지고 80보의 거리에서 쏘는 것과 말을 타고 쏘아 일차에 두 번 적중한 자 이상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육냥전 두 개를 모두 합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며, 두 개의 화살 중 한 개를 적중한 자만 합격시키더라도 널리 인재를 취하려 한 본래의 뜻에 부합될 듯하니, 이런 정도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시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인재를 뽑는 것이어서 일의 체모가 수원과 개성에서 보이는 정시와 다름이 없으니, 당상관 중에서 시종관을 지낸 경력에 명망이 있는 인물을 각도에서 한 명씩 차출하여 가승지의 직함을 부여하여 내려보내 시험의 체면을 중하게 하소서. 그리고 시험을 보여 뽑은 뒤에 서울로 오게 하여 다시 전시(殿試)를 보여 석차를 정하도록 하소서. 몇만 명에 달할 무과출신의 홍패(紅牌)를 만들 중이를 해조에서 마련할 길이 없으니 각도에서 인원수에 맞추어 관아에서 준비하여 염색해 두었다가 일시에 상납하게 한 뒤 내용을 써

넣어 나누어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외방의 각도에서 과거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서울에서도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길일(吉日)을 택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같은 날 함께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己未十月十五日甲子兵曹啓曰：“自前廣取武士設武科(其弊無窮，軍額減耗，人才難得，皆其廣取之弊也。卽今西北邊上，可虞之機，日甚一日，而添兵防戍之事，茫無頭緒，今月急務，莫如兩西。簽兵設科之舉，雖不得不知委各道，設場舉行之際，必未及水合之節也。令該曹量定規矩，別立事目，從略試取，入防期限，預爲定奪，移會各道，亦當敢啓。” 傳曰：“依啓。兩西公私賤白徒，其果能遏滔天之賊乎？雖或取人，卽爲充定軍額，則有何減耗之事乎？十萬雖不得取之二三萬不可不取，急急稟定規矩，廣取於各道事，判下，而各道武士設科廣取，規矩不狹，參榜者必多，遵倣上年庭試別試規矩，六兩二矢八十步，騎射一次二中以上磨鍊，而六兩二矢俱入格，似或不易，二矢中一矢入格者竝取，似合於廣取本意，依此磨鍊何如？此科係是別樣取人，事體與水原·開城府庭試無異，堂上官中曾經侍從有名望人，各道各一員擇差，各道京試官假承旨結銜下送，以重體面。試取後各其舉人來赴京師，更爲殿試，以定坐次。累萬出身紅牌紙，自該曹辦出無路，令各其道准其入格名數紅牌紙，官備入染，一時來納書填安室，頒給宜當。外方各道，旣爲設科，則京中似當一體施行。請吉日推擇啓下京外一日竝設之意，行移何如？” 從之。  
<광해군일기 145권, 광해군 11년 10월 15일(갑자)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병조에서 칙은을 교역하기 위해 수원 속오군을 동원해야 한다고 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홍명원(洪命元)이 가지고 오는 칙은(敕銀)을 교역(郊迎)하기 위해 거동하실 때 호위 군병들은 종전처럼 수원(水原) 속오군(東伍軍) 2백명을 동원해야 하니, 각기 포장(布帳)과 군물(軍物)을 가지고 본부의 중군이 통솔할 수 있게 오는 10월 20일까지 서울에 도착하도록 경기 감사와 〈우도(右道)〉 방어사에게 병부(兵符)와 신표(信標)를 동시에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兵曹啓曰：“今此洪命元奉來勅銀，郊迎舉動時扈衛，依前例，水原東伍軍兵二百名，各持布帳軍物，本府中軍領率，今十月二十日，京中逢點事，請京畿監司·(右道)防禦使處，兵符標信，一時下送，(何如?)” 從之. (…)

<광해군일기 157권, 광해군 12년 10월 17일(경신) 6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병조가 서쪽 변경 방비를 위한 군사 징발을 청하자 이를 윤허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서쪽 변경의 일의 기미가 날로 다급하니 신방 군졸(新防軍卒)을 징발하여 보내는 일은 매우 긴급합니다. 하물며 만과(萬科) 출신자들을 교체시켜야 할 기일이 이미 촉박하였는데 만약 때맞춰 교체시키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수자리하며 고향에 돌아가기만을 생각하던 사졸들의 사정이 참으로 딱하게 됩니다.

강원도와 삼남 지방의 출신자는 이미 가려서 선발하였으며 기한을 정하여 보낼 것을 계하여 행회(行回)하였습니다. 그중 경기와 서울, 개성부는 방금 선발하였는데, 차례대로 들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화살을 쬐어지고 먼 곳에 나가 수자리하는 것이 어찌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겠습니까. 군법이 엄하여 스스로 피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들 제도의 출신자들을

서쪽 변경에 일이 있게 된 이후부터 해마다 징발하여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4,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과 경기 지역의 출신자들은 한 번도 부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실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군역이 고르지 못하다는 원망이 매우 많습니다. 이번에는 한결같이 모두 징발하여 보냄으로써 군정(軍情)을 고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리고 만과(萬科) 출신자로 교체되어 오는 숫자가 역시 또한 적지 않으므로 족히 서로 교체될 수 있을 것이니 중앙과 지방에 일을 맡길 만한 출신자가 없을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수원과 강화(江華)는 모두 잘 단속해야 하는 지역으로 매번 뜻밖에 징발하여 써야 하는 거조가 있으니 잘 단련된 천총(天總), 파총(把總), 초관(哨官) 등의 임무를 맡은 장관과 군관들은 잠시라도 옮겨 이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각 60명씩을 부방을 면제시켜 이곳에서 그대로 조련된 군사들을 영솔하게 하여 조용에 대비케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 **수원과 강화의 군사를 어찌 관서 지방으로 조발하여 쓰겠는가. 비변사에 문의하여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兵曹啓曰: “西邊事機, 日急一日, 新防軍卒之調送, 萬分緊急, 況萬科出身, 交替之期已迫, 若不趁時替還, 則久戍思歸之卒, 情理委屬可悶. 江原道及三南出身, 已爲抄出, 定限發送事, 啓下行會矣. 其中京畿·京中·開城府, 今方抄出, 鱗次入送矣. 竊念負羽從征, 豈人之所願欲? 軍法有截, 自不得窺避耳. 彼諸道出身, 自有西事以來, 年年調送, 四五年于茲, 獨京中·京畿出身, 則一不赴防, 細察軍情, 不均之怨甚多. 今番則似當一體調送, 以均軍情, 而萬科替來之數, 亦且不少, 足以相替, 不患京外任事之無出身矣. 但水原·江華, 俱係團東之地, 每有不時調用之舉, 其諳鍊千·把總·哨官等受任將官·軍官不可暫時遷動. 兩處各六十員則免防仍領所操軍兵, 以聽調用爲當, 敢啓.” 傳曰: “依啓. 水原·江都軍兵, 豈調用關西乎? 問于備邊司議處.” )

<광해군일기 166권, 광해군 13년 6월 24일(갑오) 8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거동시 각 궁의 군사 차출없이 수원, 강화도의 병사를 징발하여 호위할 것을 명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상번(上番) 군사의 원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잠시 거동하실 경우가 있으면 매번 기내(畿內)의 하번(下番) 군사를 불러 써야 합니다. 인경궁(仁慶宮)에 거동하실 때에도 7백 명이나 불렀으니, 금번 사직단의 친제에도 7백 명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종묘의 친제가 있으니, 그 때에도 반드시 군사를 징발해야 할 것입니다. 전후로 징발하는 군사를 합하여 계산하면 거의 2천 명쯤 될 것입니다. 시어(時御)하시는 두 대궐과 인경궁(仁慶宮)·경덕궁(慶德宮)·경복궁(景福宮)·경운궁(慶運宮)·함춘원(含春苑) 등 여러 후궁과 의금부·전옥서·내수사 등에 수요를 정해 보내는 것 외에도 모든 상사(上司)에 정해진 군사에서도 약간씩을 덜어내어 보충해 쓰도록 해야겠습니까. 이번 거동에 징발할 군사는 2운(運)으로 나누어, 하나는 사직단의 거동 때에 쓰고 또 하나는 종묘 친제 때에 써서, 기내의 군사를 한꺼번에 징발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요즈음 각궁에 입직하고 있는 군사를 매번 빼내어 쓰기 때문에 도적은 맞는 일이 많다. **종묘와 알성(謁聖)의 거동 때에는 수원(水原)과 강화도(江華島)에서 병사를 징발하여 호위하도록 상세히 살펴서 하고 빼내어 쓰지 말 것을 살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兵曹啓曰: “因上番軍士元數不足之故, 暫有舉動, 則畿內下番, 每爲徵用. 仁慶宮舉動, 徵

七百名，今以社稷親祭，又徵七百名。前頭且有宗廟親祭，其時亦必有徵發之軍，前後通計，則所徵幾二千名矣。時御兩闕及仁慶·慶德·景福·慶運宮·含春苑諸後宮與義禁府·典獄·內需司等處定送外，諸上司所定軍士，除出若干，以爲補用。今此舉動，徵兵軍士則分二運，一則用社稷舉動時，一則用宗廟親祭時，除畿內一番徵兵之弊何如?” 傳曰：“近日各宮入直軍士，每爲抽用，故多有偷竊虛疎之事矣。宗廟·謁聖舉動，則以水原·江華徵兵扈衛之意，詳察以爲，勿爲抽用事察爲。”)

<광해군일기 169권, 광해군 13년 9월 3일(신축) 3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종묘 추송 거동 때의 호위를 위해 수원의 속오군을 편리하게 점검하게 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9월 29일, 종묘 추송 거동 때의 호위를 위해 수원의 속오군(東伍軍) 3백 명이 각기 군물과 포장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번 달 27일까지 본부 중군이 그들을 이끌고 올라와 서울에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 감사와 좌방어사(左防禦使)의 처소에 병부(兵符)와 표신(標信)을 한꺼번에 내려보내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兵曹啓曰: “九月二十九日宗廟追崇舉動時扈衛次, 水原東伍軍三百名, 各持軍物布帳, 本月二十七日日本府中軍率領京中逢點事, 京畿監司及左防禦使處, 兵符·標信, 一時下送下諭何如?” 傳曰: “允.”)

<광해군일기 169권, 광해군 13년 9월 23일(신유)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하삼도의 방어를 위해 수원의 독성, 공주의 금강에 요새를 만들게 하다**

비변사에 전교하였다. “세 곳의 보장(保障)을 비록 정하더라도 하삼도는 의당 우리나라의 근본으로 삼아야 할 곳이다. 적의 예봉이 가득차 삼도까지 짓밟히게 된다면 다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수원(水原)의 독성(禿城)·공주(公州)의 금강(錦江) 등지에 미리 요새를 만들어 굳게 지키어 적의 흉악한 공격을 막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壬戌七月二十日甲寅傳于備邊司曰: “保障雖定三處, 下三道, 當爲我國根本也. 賊鋒彌滿, 遍踏於三道, 則更無可爲矣. 必於水原禿城·公州錦江等處, 預爲設險固守, 以遏凶鋒, 所不可已.”

<광해군일기 179권, 광해군 14년 7월 20일(갑인)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군사

**경기 지방의 독성 등의 산성 수리에 대해 비변사에서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기 지방의 산성이 무려 열 일곱 곳이나 되는데 적이 물러간 뒤로 점점 폐지되고 오직 수원(水原)의 독성(禿城)만이 꾸준히 수리되어 왔습니다. 지난날 본사에서 중수할 일을 의논할 때에 먼저 수원과 파주(坡州) 등 세 곳의 산성을 거론하였고, 그 나머지 인천(仁川)·용진(龍津)·광주(廣州)·고양(高陽) 등 네 산성은 앞으로 점차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주(驪州)의 파사성(婆娑城) 같은 곳은, 논의하는 이들이 모두들 형세가 상자를 기울여 둔 것처럼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아서 멀리 외부에서 보면 밑바닥이 훤히 보이고 안쪽에서 외부를 방어하려면 지세가 기울어지고 험하여 결코 수비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니라고 하여 수선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니다. 이와 같은 8개 읍의 산성은 앞으로 본도 감사로 하여금 방어사와 회동하여 형세를 살펴보아 만일 어쩔수없이 수비하여야 할 것이어서 하나하나 계문하게 해야 한다면 본도 감사 등이 수선할 것을 계정한 것이 없습니다. 즉시 수리하라는 전교를 지금 받았으나 도신의 평가를 받지 못하여 아직 형세의 험난 여부나 위급할 때 산성의 경중 여하를 알지 못하니, 감사에게 문의하여 편부(便否) 여하를 헤아려 계문하게 한 후에 처치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본사가 뜻을 두고 요리하여 차례대로 수축하고 보완함으로써 폐기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라.” 하였다.

○備邊司啓曰: “京畿山城無慮十七處, 而一自賊退之後, 漸就廢弛, 唯水原之禿城, 綿綿修葺矣. 頃日本司議, 將重修先學水原·坡州等三處山城, 其餘仁川·龍津·廣州·高陽等四城, 則將爲漸次措置矣. 至於驪州之娑娑城, 則議者皆以形如倚筍, 北高南低, 自外遠看, 洞見腹內, 自內禦外, 地勢欹險, 決非可守之地, 不在修繕之中. 如此等八邑山城, 則行令本道監司, 會同防禦使, 看審形勢, 如有不得已應守者, 使之枚舉啓聞, 本道監司等, 亦無啓請加修之事矣. 今承傳教, 所當劃即修改, 而未經道主品題, 姑未知形勢險夷緩急輕重之如何, 問于監司, 商度便否, 啓聞後處置何如?” 傳曰: “依啓. 本司留意料理, 次第修築繕完, 俾不至廢棄”

<광해군일기 24권, 광해군 2년 1월 17일(갑오) 8번째기사>(정초본)

## 정치/군사

**비변사에서 수원에 방어사를 두지 말 것을 청하니 우선 그대로 두라고 전교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에 적합한 사람을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천거토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자년간에 선왕께서 경기 병사(京畿兵使)를 설치하고자 하시어 의논이 비변사에 내려졌는데, 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대부분 ‘경기는 물력(物力)이 잔박(殘薄)하며 사환(使喚)과 공돈(供頓)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니, 만일 부득이하다면 우선은 방어사를 두어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살펴계 한 뒤, 불편할 경우 즉시 없애고, 만약 편리하다면 수사(水使)를 줄이고 화도 첨사(花島僉使)를 다시 설치하되 수사의 아랫사람을 수원(水原)으로 옮기고 이어 병사(兵使)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하였습니다. 이를 계품하여 방어사를 두었는데, 그 의도는 대체로 방어사가 불편하다면 없애고 만약 편리하여 없애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병사를 다시 설치하는 문제를 의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본부는 서울과 가까이 위치하여 여러모로 침탈을 받고, 관고(官庫)가 점차 바닥이 나고 체역(遞易)이 빈번하니 방어사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이 혹은 ‘부사는 치적이 훌륭한 문관을 골라 보내고, 독성 중군(禿城中軍)은 당상 무관을 한껏 엄밀히 가려서 보내어 산성(山城)의 군사 조련의 일을 구관(句管)하게 하면 진실로 적절하다. 만약 느닷없이 방어사를 없애는 것이 꺼림칙하다면, 구사직(具思稷)이 나이가 지긋한 무재(武宰)로 청렴하고 신중하여 적합할 듯하다. 그러나 문관을 가려 보내는 것만은 못하고, 방어사는 서울에 있는 무관을 칭호(稱號)하며 대령하게 하더라도 안 될 것이 뭐 있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방어사는 우선 근래의 규정에 따라 그대로 두고, 구사직을 차송하라. 그의 적합한 무장도 아울러 의논하여 천거하라.” 하였다.

○辛酉/備邊司啓曰: “有旨, 水原府使可合人, 令備邊司議薦矣. 往在庚子年間, 先王欲置京畿兵使, 議下備邊司, 群議多以爲: ‘京畿物力殘薄, 使喚供頓, 出處無由, 如不得已則姑置防禦使, 觀其建置便否, 不便則即罷之, 若便則減水使, 復花渡僉使, 移水使下人於水原, 仍置兵使

爲當.’ 以此啓稟，而置防禦使，其意蓋防禦使不便則罷之，不罷則當議 設兵使者也。本府密邇京輦，被侵多端，官庫漸耗，遞易頻繁，防禦使之置，果何益哉？議者或以爲：‘府使則以善治文官差遣，禿城中軍，以堂上武官，極擇差送，句管山城鍊兵之事，則允爲便當。若以狷革防禦使爲重也，則具思稷年久武宰，清慎似可合。而然不若差遣文官之爲勝，防禦使則以在京武官稱號待令，亦何不可？’ 云。” 傳曰：“防禦使，姑仍近規差送，具思稷外，他可合武將，竝議薦。”

<광해군일기 41권, 광해군 3년 5월 22일(신유)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군사

**광해군이 수원 부사로 강홍립을 차출하여 방어사의 임무를 겸임하게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본사의 시임 대신(時任大臣)이 모두 유고(有故)하여 시급히 의논하여 처리해야 할 모든 일들을 미처 회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원 부사와 인동 부사를 의천하는 일은 대신에게서 마감할 수가 없어서 이조로 하여금 잘 뽑아서 차출하게 하고, 방어사(防禦使)를 겸임하게 하는 한 조항은 대신이 출사한 다음에 본사가 의계(議啓)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감히 아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수원 부사는 강홍립(姜弘立)을 차출하여 보내서 방어사의 임무를 겸임하게 하라.” 하였다.

○備邊司啓曰：“本司時任大臣，竝皆有故，凡時急議處之事，未及回啓矣。今此水原府使·仁同府使議薦之事，不得磨勘於大臣。請令吏曹，極擇差出，而兼防禦使一款，則待大臣出仕後，自本司議啓爲便。敢啓。” 傳曰：“允。水原府使，以姜弘立差遣，使兼防禦使之任。”

<광해군일기 47권, 광해군 3년 11월 16일(신해) 2번째기사>(정초본)

#### 정치/군사

**병조가 친히 기우제를 올릴 때 수원과 강화의 군사에게 호위하게 하는 일을 건의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오는 5월 4일에 사직단에 친히 기우제 올리는 일을 판하하셨습니다. 새로 번드는 군사는 각 차비(差備)와 호위 등 일에 부족한 수가 무려 1천 5백여 명이나 됩니다. 비록 전처럼 기내(畿內) 군사를 불러 모으고자 하나 날짜가 너무 촉박하여 전령(傳令)하여 징발하는 즈음에 기일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우니 몹시 우려됩니다. 그러니 4월의 하번(下番) 군사를 그대로 머물러 시위(侍衛)하게 하였다가 환궁하신 뒤에 곧바로 떠나보내면 그간 머무는 날짜가 3일뿐인데, 훗날 번드는 차례가 되었을 때에 도방(到防)의 부역을 모두 감하여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할 듯 싶습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아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수원(水原)·강화(江華)의 군사 각 2백 명씩을 급히 선전관을 보내어 속히 징집하여 엄히 호위하게 하라.” 하였다.

○庚戌/兵曹啓曰：“來五月初四日，社稷祈雨祭親行事，判下矣。新上番軍士，各差備·扈衛等事，不足之數，多至一千五百餘名。雖欲依前徵聚畿甸軍士，而日字已迫，傳令調發之際，恐未及期，極爲可慮。四月朔下番軍士，仍留侍衛，還宮後卽爲發送，則其間所留，只三箇日字，後當番，全減到防役，似爲便當。惶恐敢稟。” 傳曰：“允。水原·江華軍士，各二百名，急遣宣傳官，速爲徵集，嚴加扈衛。”

<광해군일기 77권, 광해군 6년 4월 28일(경술)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군사

**비변사가 수원부사 이충 등의 계사에 의거하여 군량미를 조달하는 일에 대해 건의하다**

비변사가, 공홍 감사(公洪監司) 윤효전, 수원 부사 이충 등을 인견했을 때 올린 계사에 대해 회계하기를,

“신들이 삼가 병조의 계하한 공사를 보고 일의 형편을 참작하여 군병을 조발(調發)하여 1만 명의 숫자를 채우고자 노력하였는데, 9천 5백 명은 평안·황해 양도에 배정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숫자는 개성·경기·강원 등의 도에 나누어 배정하였는데 그 숫자가 5백 명입니다.

지금 윤효전과 이충이 아뢴 일을 보니, 그 뜻이 1만 명의 군사를 오로지 관서(關西) 한 도에 책임지우고 다른 도는 1명의 군사도 조발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이를 참작해 보니, 군사를 조발하는 일은 국가의 중대한 일로서 한 도에 일이 생길 경우 팔도가 동요할 것이므로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본사의 당상관 중 전에 서로(西路)의 책임을 맡았던 자들도 대다수가 ‘관서·해서의 군사는 해당 도에서 직접 더 조발할 일이고 다른 도의 군사까지 함께 번거롭게 조발하여 쓸 필요는 없다.’ 하였습니다. 농사에 관해서는 남중에게 물어보아야 되고 길쌈에 대해서는 여중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법이니, 군사를 조발하는 일은 병조로 하여금 속히 처치하게 하고, 군량미를 조달하는 일은 호조로 하여금 함께 조치하게 하여 군비에 궁핍한 일이 생기는 탈이 없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備邊司以公洪監司尹孝全·水原府使李冲等引見時啓辭， 回啓曰：“臣等伏見兵曹啓下公事， 參商事勢， 調發軍兵， 務足萬數， 而九千五百名， 分定於黃海·平安兩道， 不足之數， 散派於開城·畿甸·江原等道， 其數五百。 今見尹孝全·李冲等所啓之事， 則其意欲以一萬兵， 專責於關西一道， 他道則免調一兵。 臣等就此商量， 調兵之事， 係國家大事， 而一方有事， 八方繹騷， 非國之利也。 本司堂上中， 曾經西路之任者亦多， 以爲：‘關海以西之兵， 自可添調， 他道軍兵， 不必竝煩調用。’ 云。 耕當問奴； 織當問婢， 調兵之事， 令兵曹速爲處置； 調糧之事， 令戶曹並爲措置， 俾無乏軍興之患。” 從之。

<광해군일기 80권, 광해군 6년 7월 20일(경오) 2번째기사>(정초본)

## 정치/군사

### 경연청에 나가 수원 부사 이충을 인견하다

왕이 수원 부사 이충(李冲)을 인견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본부는 남로(南路)의 요충지이니 군사와 백성들을 보살피고 병기를 정리하는 등의 일을 잘 살피서 행하라. 그리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더욱 동태를 살피는 일에 힘쓰라.” 하니, 이충이 아뢰기를,

“본부는 인구가 많고 지역이 커서 본래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일컬어졌을 뿐만 아니라, 방영(防營)을 설치하고부터 임무가 매우 중대하게 되었습니다. 소신은 재능이 용렬할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있으므로 변고가 생길 경우 일을 그르치고 말까 두렵습니다.” 하자, 왕이 이르기를, “본부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정밀하게 가려서 보낸 것이니 내외를 가리지 말고 더욱 마음을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

○庚午/王引見水原府使李冲。 王曰：“本府， 南路要衝， 撫恤軍民， 整理器械等事察爲。 如或有荒唐人， 更加譏察。” 李冲對曰：“本府非但物衆地大， 素稱難治， 自設防營， 爲任極重。 小臣非但才劣， 加以疾病， 若有事則恐未免債事之患。” 王曰：“本府任重， 故極擇差送。 勿分內外， 更加盡心。” (…)

<광해군일기 80권, 광해군 6년 7월 20일(경오)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군사



병조에서 친경하는 대례를 행할 때 수원 등지의 군병이 호위할 것을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친경(親耕)하는 대례(大禮)를 행할 때 호위(扈衛)하는 일들을 엄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복병장(伏兵將)·척후장(斥候將)·고환장(考喧將) 역시 많은 수를 조발(調發)해 써야 하는데, 시임(時任) 무신만으로는 태반이 부족합니다. 경중(京中)·경기·개성부(開城府)·황해·강원·공홍도 등의 당상·당하 가운데 한산(閑散)한 무신들을 모두 기일에 맞춰 올라오게 하고, 수원(水原)·강화(江華) 두 부(府)에 소속된 군병들에게 각자 포장(布帳)을 지니게 한 다음, 겸방어사(兼防禦使)와 부사로 하여금 직접 인솔해 와 호위를 엄하게 할 일을 미리 파발마로 알려야 하겠기에 감히 아뢰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수원 부사는 경기 수령으로서 친경할 때 조복(朝服)을 갖추 입고 논두렁 사이에 서 있게 될 텐데, 그때 군사를 거느리고 호위하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 대행케 할 것인지 다시 의논해 처리하라.” 하였다.

○丙寅/兵曹啓曰: “今此親耕大禮時, 扈衛諸事, 不可不嚴密矣. 各處伏兵將·斥候將·考喧將, 亦當多數調用, 而時仕武臣, 太半不足. 京中·京圻·開城府·黃海·江原·公洪等道, 堂上·堂下閑散武臣, 竝令及期上來, 且水原·江華兩府所屬軍兵, 各持布帳, 令兼防禦使·府使, 親自領來, 以嚴扈衛事, 預先發馬知委之意, 敢啓.” 傳曰: “允, 水原府使, 以京圻守令, 具朝服, 立於田畝間, 則領兵扈衛, 以何人代行乎, 更議以處.”

<광해군일기 125권, 광해군 10년 3월 7일(병인)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군사

비변사에서 요해처로서 수원 독성과 파주 임진의 수호를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각도의 병사를 나누어 들여보내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강도(江都)야말로 보장(保障)으로 삼을 지역이고 남한 산성(南漢山城)과 파주 산성(坡州山城) 등도 꼭 지켜야 할 곳이니 군사를 나누어 들여보내 지키도록 하신 성상의 분부가 참으로 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삼각 산성(三角山城)의 경우는 그 형세가 어떠한지 공역(功役)은 얼마나 들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반드시 일을 아는 사람을 파견하여 성터를 살펴보고 그 지형을 그려오게 해서 과연 지킬 만한 곳인지를 안 다음에야 어느 지역 어느 고을의 병사를 어느 곳에 나누어 지키게 할 것인지를 상의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水原)의 독성(禿城)과 파주(坡州)의 임진(臨津)도 꼭 지켜야 할 곳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해처로서 파수해야 할 곳이 무려 5, 6곳이나 되는 셈인데, 군병과 기계를 나누어 보내는 것도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량을 조달하는 문제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으니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곡식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인데 따로 규정을 만들어 다방면으로 곡식을 모집한다면 약간의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상 무신에게 임무를 나누어 부여하는 일 역시 성상의 분부대로 따라야 할 것이니, 광주 목사(廣州牧使)를 우선 가려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備邊司啓曰: “各道兵, 分爲入守事, 有教矣. 江都, 乃保障之處, 南漢·坡州等山城, 亦必守之地, 分兵入守之事, 聖教, 誠爲允當. 但三角山城, 則未知其形勢之如何, 功役之多少, 必發遣解事之人, 看審其基址, 圖畫其地形以來, 知其可守然後, 某處某邑之兵, 分守某地之事, 可以商議以處. 水原之禿城·坡州之臨津, 亦當在必守之地. 要害把守之所, 多至五六處, 非但軍兵·機械分派之極難, 至於糧餉一事, 百計無策, 誠爲可慮. 得粟之策, 爲今日之急務, 別立科條, 多般募粟, 不無一分之助. 堂上武臣分界之事, 亦依聖教, 請廣州牧使爲先擇送.” 傳曰: “允.”

<광해군일기 129권, 광해군 10년 6월 19일(병자) 1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군사

##### 검찰사 심돈을 강도의 보장책에 대해 의논하면서 육로와 수로를 설명하다

왕이 선정전에 나아가 검찰사 심돈(沈惇)을 인견하였다. 우부승지 정규(鄭逵), 가주서 정양필(鄭良弼), 기사관 안응로(安應魯)·신개(申垓)가 입시하였다. (...) 심돈이 아뢰기를, “강도로 가는 육행은 양천(陽川)에서 출발하여 통진(通津)을 거쳐 갑곶(甲串)에 이르며, 배를 타면 한강을 따라 김포·양천·통진을 지나서 연미정(燕尾亭)에 이릅니다. 강도에서 호서로 향하는 육행은 진위(振威)·수원(水原)·평택(平澤)·덕산(德山)을 경유하여 수영에 이르며, 뱃길로는 안흥량(安興梁)을 지나서 면천에 이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강도는 이미 헤아려 처리하였고 강도로부터 바다로 내려가는 것은 어떨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

○王出御宣政殿，引見檢察使沈惇。右副承旨鄭逵·假注書鄭良弼·記事官安應魯·申垓入侍。 (...) 惇曰：“江都，陸行，則自陽川·通津，抵甲串，乘舟，則自江頭，過金浦·陽川·通津，抵燕尾亭自江都向湖西，陸行，則由振威·水原·平澤·德山，到水營，舟行，則過安興渡，抵沔川矣。”王曰：“江都，已爲料理，自江都下海之舉，則未知如何？”(...)

<광해군일기 130권, 광해군 10년 7월 2일(무자) 9번째기사>(정초본)

#### 정치/군사

##### 비변사에서 용진의 방어를 위해 수원 군사의 동원을 강구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 파주(坡州)는 이미 방어사를 보내서 지금 바야흐로 산성을 수축하여 보전하고 지키려는 계책을 시행하고 있고, 임진(臨津)은 파주 경내에 있어 떨어진 거리가 멀지 않아서 영(營)을 설치하고 방책을 세우려 합니다. 용진(龍津) 같은 데는 온 고을이 텅 빈 나머지 민력(民力)을 나누기가 어려운 까닭에 의외의 사변이 생기면 수원 부사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임진에 진주하여 방수하게 할 일을 일찍이 이미 강구하여 아뢰었습니다. 사기가 만약 급하면 하도에서 들어와 방위하는 군사들도 마땅히 도하에 와서 모여야 하니 이 군사로 상하의 강탄(江灘)을 나눠 지켜서 구슬을 켜는 것과 같은 형세를 만들고, 만약 추운 겨울 얼음이 어는 때에 이르게 되면 성에서 지키지 않으면 안되니, 마땅히 파주에서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

○備邊司啓曰：(...) 坡州既出防禦使，時方修築山城，欲爲保守之計，臨津，則在坡州境內，相距不遠，欲爲設營立寨，如龍津，則一州蕩然之餘，民力難分，故脫有事變，則欲令水原府使，領兵進駐于臨津，以爲防守事，曾已講究具啓。而事機若急，則下道入衛之軍，亦當來會都下，以此分守上下江灘，爲連珠之勢，而若至於隆冬合冰，則非城守不可，似當合力於坡州。(...)

<광해군일기 130권, 광해군 10년 7월 9일(을미) 9번째기사>(정초본)

#### 정치/군사

##### 병조가 왕의 궁궐 친림 때 수원 군사 징발이 어려움을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군사를 징발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만약 교외로 나가 밤을 지새우는 행차가 아니면 전부터 호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두 궁궐에 거동할 때 수원의 군사 4백 명을 올려보내 호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4백 명의 군사는 모두 일반 백성들인데 경기 지방이 큰 흉년을 만난 때

에 또 다시 그들을 징발하여 여러 날 왕래하게 할 경우 수확의 시기를 놓쳐 추수의 희망을 거둬 잃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백성들이 제자리에서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아다니는 우환이 생길 것은 따져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수원의 군사를 올려보내도록 한 것을 우선 정지시키고 훈련 도감의 군사를 차출하여 호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兵曹啓曰：“徵兵之舉，係是重大。若非郊外行幸經夜舉動，則自前不爲扈衛，今此兩宮親幸時，水原軍士四百名，使之上送扈衛矣。臣等竊念四百之軍，皆是民也，當此畿甸凶荒，又爲徵發，累日往還，收穫失時，重缺秋成之望，則前頭流散之患，不占可知。水原軍姑停上送，訓練都監軍士除出，扈衛爲當。”從之。

<광해군일기 143권, 광해군 11년 8월 22일(임신) 5번째기사>(정초본)

### 정치/군사

주사청이 수군 훈련에 수원 군사에다 강화의 속오군도 동원하기를 청하다

주사청이 아뢰기를, “수군 훈련을 할 때 수군과 격군은 삼강(三江)가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서 찾아모아 인원수를 채운다 하더라도 각 배에 태울 포수와 사수에 있어서는 마땅히 도감의 군사를 동원해야 하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거동할 때의 호위는 수원의 군사 5백 명으로는 부족할 듯합니다. 듣건대 강화의 속오군(東伍軍)이 수군 훈련의 절차를 잘 알고 있다고 하니, 본부의 중군을 모두 거느리고 와서 이달 29일에 점호하고 수군 훈련이 지난 뒤에 내려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癸卯/舟師廳啓曰：“水操時舟師格軍，則雖以三江居民，搜括充數，而至如各舡所騎砲射手，則當用都監軍士矣。第念行幸時，扈衛水原軍五百名，似爲不足。竊聞江華東伍軍兵，頗解水操節次，請令本府中軍，沒數率領，今月二十九日來點，過水操後下送。”傳曰：“依啓。”

<광해군일기 144권, 광해군 11년 9월 24일(계묘)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군사

병조에서 칙은을 교영하기 위해 수원의 속오군을 동원해야 한다고 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이번에 홍명원(洪命元)이 가지고 오는 칙은(敕銀)을 교영(郊迎)하기 위해 거동하실 때 호위 군병들은 종전처럼 수원(水原) 속오군(東伍軍) 2백명을 동원해야 하니, 각기 포장(布帳)과 군물(軍物)을 가지고 본부의 중군이 통솔할 수 있게 오는 10월 20일까지 서울에 도착하도록 경기 감사와 방어사에게 병부(兵符)와 신표(信標)를 동시에 내려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兵曹啓曰：“今此洪命元奉來敕銀，郊迎舉動時扈衛，依前例，水原東伍軍兵二百名，各持布帳軍物，本府中軍領率，今十月二十日，京中逢點事，請京畿監司·防禦使處，兵符標信，一時下送。”從之.(...)

<광해군일기 157권, 광해군 12년 10월 17일(경신) 6번째기사>(정초본)

### 정치/군사

하삼도의 방어를 위해 수원의 독성, 공주의 금강에 요새를 만들게 하다

비변사에 전교하였다. “세 곳의 보장(保障)을 비록 정하더라도 하삼도는 의당 우리나라의 근본으로 삼아야 할 곳이다. 적의 예봉이 가득차 삼도까지 짓밟히게 된다면 다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수원(水原)의 · 독성(禿城) · 공주(公州)의 금강(錦江) 등지에 미리 요새를 만들어 굳게 지키어 적의 흉악한 공격을 막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甲寅/傳于備邊司曰：“保障雖定三處，下三道，當爲我國根本也。賊鋒彌滿，遍踏於三道，則更無可爲矣。必於水原禿城·公州錦江等處，預爲設險固守，以遏凶鋒，所不可已。”

<광해군일기 179권, 광해군 14년 7월 20일(갑인)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군사

### 의주, 안주 등지의 수비를 위해강도와 수원의 군량을 보내야 한다는 이시발의 의견

(…) 주장이 과하자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방추(防秋)할 때가 벌써 가까워졌는데 수비하고 군량 비축하는 일을 경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이시발(李時發)이 대답하기를, “수비를 위해서는 의주(義州)·안주(安州) 및 곡산(郭山) 등의 산성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군병은 각처의 토병 및 객병(客兵)을 합해 1만 5천 명인데 일이 급하게 될 경우 본도의 군병을 모두 징발하면 2만~3만 명을 얻을 수 있으니 전일에 비해 자못 넉넉합니다. 양식은 강도(江都)의 양식을 옮겨 운반하는 계획이 매우 합당하니 경기 도사를 시켜 강도의 곡식을 감독하여 징발시키고 부족하면 수원에 쌓아 둔 것을 보태어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지는 어느 곳이 지킬 만한가?” 하니, 시발이 아뢰기를, “백성을 보전하는 데는 산성보다 나은 곳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이 ‘동이(東夷)는 산을 의지하여 성을 만들어 함락시키기 쉽지 않다.’ 하였는데, 신의 뜻도 반드시 산성을 설치한 다음에야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

○(…) 講罷, 引見備局堂上. 上曰: “防秋已近, 守備儲峙, 諸卿何以料理?” 李時發對曰: “防守, 則義州·安州及郭山等山城, 爲必守之地. 軍兵, 則各處土兵及客兵, 通計一萬五千, 而事急, 則悉發本道軍兵, 可得二三萬, 比諸曩時, 頗優矣. 糧餉, 則江都糧餉轉運之策, 此甚得計. 令京畿都事, 督發江都之穀, 不足則以水原所儲添送可也.” 上曰: “內地, 則何處可守耶?” 時發曰: “保全生靈, 莫如山城. 中國人有云: ‘東夷依山爲城, 未易拔. 臣意必設山城, 然後可也.’” 上曰: “平山·黃州城, 亦似當守.” 時發對曰: “黃州守將, 預爲擇定, 規畫守備, 則一城民心, 庶有係屬.” 上曰: “此等事, 速爲舉行, 無或緩忽可也.”

<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7월 5일(계사)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비변사가 수원의 중요성을 들어 수원부사로 이홍립을 추천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강물이 이미 얼어붙었으니, 서쪽 변방의 일이 날로 더 우려됩니다. 우리로서는 대응의 조치를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도성의 수어(守禦)는 가장 큰 대응책이므로 구관하고 기획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호위 대장(扈衛大將) 가운데 이서(李曙)와 신경진(申景禎) 두 사람에게 이 일을 위임하여 책임을 지고 공을 거두도록 한 다음, 다시 사태의 완급(緩急)을 보아가며 외방의 출신과 군병을 모집하여 임시해서 예속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성도 수어해야 되지만 강화(江華)의 보장(保障) 역시 수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윤(府尹) 이중로(李重老)는 백성을 다스리는 재간이 모자랍니다. 반드시 문관으로서 재간과 지략이 있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얻은 뒤에야 제반 조치에 있어 공을 거둘 수 있는

데, 사람들의 의논이 이성구(李聖求)가 그 직임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수원(水原)은 서울 지방의 중진(重鎭)인데, 이성부(李聖符) 역시 백성을 다스리는 재간이 모자랍니다. 사람들의 의논이 이흥립(李興立)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원수로 황해 병사를 겸임케 한 것은 아마 장만(張晩)이 병을 조리하기에 편리토록 하기 위함인 듯한데, 장만이 누차에 걸쳐 사직소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정력도 겸직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병사를 특별히 내야 하는데 이익(李楹)이 그 직임을 맡을 만합니다. 차출하여 보내소서. 도체찰사를 차출하는 일은 도성을 진정시키고 외방을 절제함에 있어 매우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남한 산성을 수축하는 일은 뒷날을 기다려 직접 가서 살펴본 다음에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종로는 심력을 다하여 국사를 돌본 사람이므로 가벼이 체직시켜서는 안 된다. 이흥립은 위급할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이니 도성에 두는 것이 좋겠다. 체찰사는 아직 차출하지 말라.” 하였다. 비국이 또 아뢰기를,

“수원은 경기의 중요한 곳이므로 중병(重兵)을 총괄하여 경성을 상호 수어하는 형세를 이루어야 하는데, 흥립을 도성에 두어도 일개 군졸 없는 장수에 불과합니다. 그에게 수원 부사의 직임을 제수한다면 위급할 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십시오.”

하니, 이에 흥립을 수원 부사로 삼았다.

○備邊司啓曰: “江水已合, 西邊之事, 日益可虞. 在我措置策應, 不容少忽. 都城守禦策之大者, 不可無旬管窺畫之人. 扈衛大將中李曙·申景禎兩人, 委任責成, 而更觀事機之緩急, 招聚外方出身及軍兵等, 臨時隸屬爲當. 都城雖當守禦, 而江華保障, 亦不可已. 府尹李重老短於治民, 必得文官之有才略善治民者, 然後凡百措置, 可以責效. 群議以李聖求可合此任, 水原爲畿輔重鎭, 而李聖符亦才短於牧民, 群議以李興立可以代之. 且以都元帥兼黃海兵使者, 蓋爲張晚調病之便, 而非但晚累次控辭, 精力亦難兼察. 今宜別出兵使, 而李楹可堪差送. 至於差出都體察使, 以鎮定都城節制外方, 甚爲便益. 修築南漢山城之舉, 待他日往審議處, 何如?” 答曰: “依啓. 李重老盡心國事之人, 不可輕遞. 李興立緩急可恃之人, 宜置之都中. 體察使, 姑勿差出.” 備局又言: “水原以畿輔重地, 摠重兵爲京城輔車之勢, 興立在京城, 不過一無軍之將. 若除此任, 則緩急可恃. 請依前請行之.” 乃以興立爲水原府使.

<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윤10월 20일(병오)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이괄의 난으로 공주 산성으로 피난 가는 일을 논의하다

(...) 이에 여러 신하들이 모두가 ‘남으로 공주 산성(公州山城)에 거둥하여 형세를 보아 진퇴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니 남으로 옮길 계획을 정하였다. 예조 판서 이정구(李廷龜)가 우상 신흠(申欽)에게 ‘대비전(大妃殿)을 행재소(行在所)로 모셔가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드디어 신흠과 함께 궐정(闕庭)에 나아가 아뢰니, 따랐다.

애초에 조정에서 경기 감사 이서(李曙)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송도(松都) 청석동(靑石洞)에서 차단하게 하고, 또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흥립(李興立), 파주 목사(坡州牧使) 박효립(朴孝立)으로 하여금 강탄(江灘)의 위아래를 파수하게 하였는데 적이 청석동에 군사가 있는 것을 알고 항왜(降倭) 수십 명을 시켜 밤을 틈타 놀래 달아나게 하고 산예(狻猊)의 평탄한 길을 거쳐 곧바로 송도를 지나 임진에 이르러 몰래 박효립 등과 통모(通謀)하니 강을 지키던 군사들이 위풍을 바라보고 먼저 달아났다. 관군이 뒤쫓아 이르렀으나 적은 이미 강

을 건넜다.

○(…) 於是臣皆以爲：“莫如南幸公州山城，觀勢進退” 南遷之計乃定. 禮曹判書李廷龜言於右相申欽曰：“大妃殿，不可不奉行於行在所.” 遂與欽同詣闕庭以啓. 從之. 初朝廷遣京畿監司李曙，領兵遮截于松都青石洞，且使水原府使李興立·坡州牧使朴孝立把守江灘上下. 賊知青石有兵，使降倭數十，乘夜驚走之，由狻猊坦路，直過松都至臨津，密與孝立等通謀. 守江將士，望風先遁，官軍追至，則賊已渡矣.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8일(임진) 11번째기사>

## 정치/군사

### 강도의 곡식 수송에 대하여 도원수 장만이 아뢰다

도원수 장만(張晩)이 종사관 이민구(李敏求)를 보내어 계문(啓聞)하였다. “신이 금교(金郊)에 온 뒤로 적병의 형세를 잇달아 치보(馳報)하였으나 간혹 길이 막혀 돌아온 자도 있습니다. 임진(臨津)을 건너 정탐시켰더니 돌아와 말하기를 ‘대가(大駕)가 이미 도성을 나갔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명을 받고 적을 치는데 있어 흥봉(兇鋒)을 막지 못했으므로 지존(至尊)이 황급히 출수(出狩)하시어 적을 임금에게 맡기까지 한 죄는 진실로 면할 수 없는 것이니, 땅에 엎드려 대죄합니다. 적병이 어제 저녁에 여현(礪峴)에서 묵는다고 하므로, 지금 장수들을 감독하여 거느리고 초기(哨騎)를 멀리 보내어 그 동정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적이 성안에 들어오면 신이 선봉장 정충신(鄭忠信)·남이흥(南以興)·변흡(邊滄)·신경원(申景瑗)·김완(金完)·유효걸(柳孝傑) 등으로 하여금 정예한 보병·기병 4천여 명을 거느리고 안현(鞍峴)에 나아가 접거하여 한편으로 도성의 백성을 통속하도록 하고 한편으로 적의 형세를 견제토록 하겠으며, 한편으로는 부원수 이서(李曙), 황해 감사 임서(林愔), **수원부사 이경립(李景立)** 등에게 전령(傳令)하여 각각 부병(部兵)을 거느리고 일제히 동로(東路)로 향하여 성밖에 나아가 진치고 동서에서 서로 호응하여 기일을 정하여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이어대기 어려운 것이 가장 절실한 걱정거리이니, 강도(江都)에 저축한 곡식 수백 석을 수송하여 이어나갈 방책으로 삼도록 하소서.”

○都元帥張晩遣從事官李敏求，啓聞曰：“臣自到金郊之後，賊兵形勢連續馳報，而或有道阻而還者. 渡臨津，偵探則回言大駕已出都城. 臣等受命討賊，不能捍遏凶鋒，至使至尊倉皇出狩，以賊遺君父之罪，固所難免，伏地待罪. 賊兵昨夕，屯宿礪峴云，今方督率諸將，遠送哨騎，探其進止. 賊若入城，則臣令先鋒將鄭忠信·南以興·邊滄·申景瑗·金完·柳孝傑等，統精銳步騎四千餘兵，進據鞍峴，一繫屬都民，一以牽掣賊勢，而一邊傳令于副元帥李曙及黃海監司林愔·水原府使李景立等，各領所部兵，齊向東路進，陣城外，東西相應，指期克復，而糧餉難繼，最是切憂. 請輸送江都儲穀數百石，以爲接濟之策云.”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14일(무술)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 산성 인민들의 전결을 복호하여 그들이 살 터전을 마련하라고 명하다

**수원 산성(水原山城)의 인민들의 전결(田結)을 예전대로 복호함으로써 산성에 주민들이 안집하여 살 터전을 마련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비국이 방어사 이시백(李時白)의 말에 따라 계청했기 때문이다.

○命水原山城人民田結，依前復戶，以爲安集實城之地. 備局因防禦使李時白之言，啓請之也.

<인조실록 7권, 인조 2년 9월 14일(을축)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총융사 이서가 경기 군사를 점열한 뒤에 복명하다

총융사(摠戎使) 이서(李曙)가 경기 군사를 점열(點閱)한 뒤에 복명하였다. “장단(長湍)에 소속된 6개 고을은 정군(正軍)이 5백 65명, 속오(束伍)가 1천 5백 41명, 별대 마군(別隊馬軍)이 3백 15명이고, 양주(楊州)에 소속된 7개 고을은 정군이 3백 8명, 속오가 1천 2백 92명, 별대 마군이 1백 84명인데, 나누어 4부(部)로 만든 뒤 각부의 천총(千摠)·파총(把摠) 이하에게 대기수(大旗手)와 취고수(吹鼓手)를 일일이 차출하여 보충시켰습니다. 수원(水原)에 소속된 각 고을은 아직 점열하지 못했는데 상변(上變)했다는 보고를 듣고서 종사관 이경용(李景容)으로 하여금 점열하게 하고 감히 이렇게 복명합니다. 가까운 날에 다시 내려가 온 도(道)를 대오(隊伍)로 나눠 편성한 뒤 그림으로 그려 아뢰겠습니다.”

○己未/摠戎使李曙, 點閱畿兵後, 復命曰: “長湍所屬六邑正軍五百六十五名·束伍一千五百四十一名·別隊馬軍三百十五名, 楊州所屬七邑正軍三百八名·束伍一千二百九十二名·別隊馬軍一百八十四名, 分作四部, 各其部千把摠以下, 大旗手·吹鼓手一一填差. 水原所屬各邑, 尙未點閱, 而聞上變之報, 令從事官李景容點閱, 而敢此復命. 近當更爲下去, 通一道部分隊伍, 圖畫以啓云.”

<인조실록 7권, 인조 2년 11월 9일(기미)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병조 판서 서성이 서방에 부방할 군사의 보충책을 건의하다.

(…) 병조 판서 서성이 아뢰기를, “올 가을에 서방에 부방(赴防)할 군사의 수효가 1천 5백 명인데 태반이나 부족하니 어영군(御營軍) 및 경기의 장관(將官), 수원(水原)의 군병을 아울러 모두 뽑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기의 장관 및 수원의 군병은 전에 부방을 면제시키는 명령이 있었으니 신의를 잃을 수 없으며, 어영군도 설치하자마자 도로 파할 수는 없다.” 하였다. 이서(李曙)가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형세를 진달하고 이어 포도 대장의 직을 사면하고 남한산성에 가서 검칙(檢飭)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일 무뢰배들이 공공연히 여염집을 겁탈하는데도 군사들이 순행하며 경계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군병이 부족하여 횡포를 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였다.

○(…) 兵曹判書徐滄曰: “今秋赴西軍之數, 一千五百, 而太半不足. 御營軍及京畿將官·水原軍兵, 竝皆抄送, 何如?” 上曰: “京畿將官及水原軍兵, 曾有除防之令, 不可失信. 御營軍亦不可纔設而還罷也.” 李曙陳達南漢形止, 仍乞免捕盜大將, 往山城檢飭, 上曰: “近日無賴之徒, 公然劫奪閭閻, 而軍士不爲巡警, 何也?” 曙曰: “軍兵不足, 禁暴甚難矣.”

<인조실록 9권, 인조 3년 8월 16일(임진)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예장 거동시 수원부의 군병을 징발하는 폐단

수원부(水原府)의 군병을 징발하여 들어와 호위하게 하였는데, 이는 예장 때의 거동을 위한 것으로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 광해(光海) 시대에는 무릇 거동이 있을 때마다 으레 경기의 군병을 징발하여 호위하게 하였으므로 백성이 농사 시기를 잃게 되고 또 오고 가는데 시달렸으므로 식자들이 한탄해 온 지 오래였다. 그런데 성명의 시대에도 그 폐습을 답습

하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徵水原府軍兵入衛。以禮葬時將有舉動也，此舉，非古也。光海時，凡有舉動，例徵畿兵以衛，民失農時，疲於道路，識者之歎久矣。聖明之世，未免循蹈弊習，可勝歎哉！

<인조실록 12권, 인조 4년 4월 24일(병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 방어사 이시백이 군마를 이끌고 와서 도성 방위를 청하다

수원 방어사(水原防禦使) 이시백(李時白)이 휘하의 군마를 이끌고 들어와서 도성을 방위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水原防禦使李時白，請帶領軍馬，入衛都城，從之。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1월 17일(을유) 6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부사 이시백이 경성을 지키게 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임진강을 차단하는 일이 오늘에 있어서 급선무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신경진을 파견하여 군대를 이끌고 진주하도록 하고, 수원군으로는 경성을 숙위(宿衛)토록 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고, 혹자는 ‘장만이 지금 비록 서쪽으로 내려가더라도 수하(手下)에 병력이 없으니, 개성부 임진강에 먼저 기내(畿內)의 군대를 보내어 각 여울을 나누어 수비하도록 하는 것만 못하다.’ 하기에, 감히 이것을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경진은 임진강을 수비토록 하고, 이시백은 들어와 경성을 보위토록 하라.” 하였다.

○備局啓曰：“臨津遮截之計，爲今日急務。議者以爲：‘當遣申景禎領兵進駐，而以水原之軍，宿衛京城爲便。’ 或云：‘張晚今雖西下，手下無兵，不如開府·臨津江上，先給畿內軍兵，分守各灘。’ 敢此陳稟。” 上曰：“令申景禎把守臨津，令李時白入衛京城。”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1월 17일(을유) 10번째기사>

#### 정치/군사

대신 등을 인견하고 내전의 강도 대피와 임진강·남한 산성 수비에 대해 논하다

대신·비국·당상·양사 장관을 인견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적이 이미 안주(安州)에 이르렀으니, 상께서는 비록 경솔하게 거동하지 못하시더라도 내전은 불가불 미리 대피토록 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전은 내일 먼저 강도로 거동토록 하겠다.” 하였다. 오윤겸이 아뢰기를,

“이서가 이미 남한 산성에 들어갔으니 임진강을 지킬 군대가 없습니다. 외부의 의논이 모두 ‘신경진은 마땅히 임진강을 수비해야 한다.’ 하고, 또 ‘도감의 군대는 불가불 호위를 해야 한다.’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정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이원익은 ‘연하(輦下)의 친병을 임진강을 방어하는 일에 나누어 보낼 수는 없으니, 수원의 군병을 임진강으로 보내는 것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 역시 그렇다.” 하였다. 오윤겸이 아뢰기를, “상께서는 남한 산성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이서가 기전(畿甸)의 총용사로 있으니 물러나 남한 산성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아가서 임진강을 수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서가 남한 산성을 수축한 것은 나름대로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이다. 지금 피차가 미치지 못하는 논의를 할 것이 없다.”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신은 본시 피함을 하지 않습니다. 이시백은 바로 신의 자식인데 3천 명의 군대를 훈련시킨 지가 이미 오래이니 만일 진(陣)에 임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발길을 돌려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군량도 궁핍한 임진강으로 보낸다면 단지 죽음이 있을 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만일 상을 모시도록 한다면 호위를 반드시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적병이 이미 깊이 쳐들어 왔는데 장강(長江)의 요새지를 버리고 수비하지 않는다 하니, 나라를 도모하는 도리가 어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세(兵勢)가 고단하기 때문에 보류하고 망설이는 것이다라는 도감이나 수원의 군병 중에서 조발하여 보내도록 하겠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성상의 계책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감히 다시 의논할 수는 없는 일이나 대가가 한번 강도로 들어가지고 나면 남한 산성의 형세는 독현(禿峴)만 못해집니다. 어찌 편리하고 가까운 독현을 버리고 남한 산성을 중요시하십니까.”

하고, 최명길(崔鳴吉)이 아뢰기를, “이시백으로 하여금 임진강에 가서 지키도록 하였다가, 사태가 급박하면 파주 산성으로 들어가 지키도록 하고, 충청도의 군병으로 독현을 수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감군을 호위에 전속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윤방(尹昉)이 아뢰기를, “충용청의 군병도 임진강으로 선발해 보냈으면 합니다.” 하고, 이귀가 아뢰기를, “수원의 군병을 연하(輦下)에 배치하여 호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시백의 군사가 훈련을 꽤 받았으니 강도로 인솔하여 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의 사세는 다만 강도와 남한 산성에 전력을 해야 할 뿐이다. 그리고 도감에 분부하여 군사들의 처자를 모두 강도에 들여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丙戌/引見大臣·備局堂上·兩司長官. 尹昉曰: “賊已迫安州. 自上雖未輕動, 而內殿則不可不早自出避.” 上曰: “慈殿則明日, 當先幸江都.” 吳允謙曰: “李曙既入南漢則臨津無軍可守. 外議皆以爲: ‘申景禎當把守臨津’, 而亦以爲: ‘都監之軍, 不可不扈衛’, 何以定計?” 金瑬曰: “李元翼則以爲: ‘輦下親兵, 不可分送防灘, 莫如以水原軍, 送于臨津’, 云.” 上曰: “予意亦然.” 允謙曰: “自上以南漢爲重, 而李曙摠戎畿甸, 與其退入南漢, 莫如進守臨津也.” 上曰: “李曙修築南漢, 其意有在. 今不可爲彼此不及之論.” 李貴曰: “臣本不避嫌. 李時白, 卽臣之子也. 三千之軍, 鍊習已久, 若令臨陣, 必不旋踵, 而今送於臨津乏餉之地, 徒死何益? 若令勤王, 扈衛必固.” 瑬曰: “寇已深矣. 長江之險, 棄而不守, 謀國之道, 豈宜如此?” 上曰: “兵勢孤單, 以此留難, 而都監水原軍兵中, 當調送.” 瑬曰: “聖算已定, 不敢更議, 而大駕一入江都之後, 則南漢形勢, 不如禿峴. 何可捨便近之禿峴, 而以南漢爲重乎?” 鳴吉曰: “宜令李時白, 往守臨津, 事急則入守坡州山城, 以忠淸道軍, 俾守禿峴.” 上曰: “都監軍則可專屬扈衛.” 昉曰: “摠戎軍兵, 亦可抽送臨津.” 貴曰: “水原之軍, 請置之輦下扈衛.” 上曰: “李時白之軍, 頗爲鍊習, 亦可領入江都. 今之事勢, 但當專力江都·南漢而已. 且宜分付都監, 令諸軍妻子, 竝入江都.” (…)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1월 18일(병술) 1번째기사>

정치/군사

능한 산성이 함락되자 분조할 준비를 하다

(…) 김류가 아뢰기를, “도체찰사가 분조로 가고 나면 신이 혼자서 중임을 책임져야 합니다. 찬획사가 없을 수 없으니 대신으로 하여금 차출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판은 군병의 숫자를 아는가? 도감군과 수원(水原)의 군병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정구가 아뢰기를, “도감군을 각처로 나누어 보낸 이후에 남아 있는 군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원군의 숫자도 신에게 보고하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무를 총괄하는 판서가 군병의 숫자를 몰라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일찍이 선묘조에도 국가에 변란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광탕지전(曠蕩之典)을 베풀었습니다. 죄가 있거나 없거나를 물론하고 다 탕적을 베풀다면 인심을 위로하여 기쁘게 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석방시킨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했던 자들이어서 일시에 석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

○(…) 堯曰: “都體察使既往分朝, 臣獨當重任, 不可無贊畫使, 須令大臣差出.” 上曰: “兵判知軍兵數乎? 都監軍·水原兵, 幾許耶?” 廷龜曰: “都監軍分送各處之後, 未知留在者幾許. 水原軍數, 亦不報知于臣矣.” 上曰: “主兵之長, 不知軍兵之數可乎?” 元翼曰: “曾自宣廟朝, 若有變亂, 必施曠蕩之典矣. 勿論有罪·無罪, 皆施蕩滌, 人心可以慰悅. 今番放釋之數, 太小矣.” 上曰: “被罪之人, 多爲廢母之論者, 不可一時放釋, 故如此耳.” (…)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1월 21일(기축) 1번째기사>

정치/군사

도감의 포수·어영군·수원병을 우출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도감의 포수(砲手)와 어영군과 수원병(水原兵)은 바로 나와 생사를 같이한 군졸들이니 이치상 마땅히 우출하여야 할 것이다. 해사로 하여금 장관에게는 각각 비단이나 명주 중 한 필(匹)을 하사하고, 군병에게는 각각 목면 한 필씩을 지급하게 하라.” 하였다.

○上下教曰: “都監砲手·御營軍·水原兵, 乃是與予同死生之卒, 理當優恤. 其令該曹, 各賜將官段·絹中一匹, 軍兵各給木綿一匹.”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1월 21일(기축) 5번째기사>

정치/군사

수원·광주에서는 성을 수비하기만 하고 모든 잡역을 면제하게 하다

상이 하교하였다. “수원(水原)과 광주(廣州)에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모든 잡역에 관한 일들을 일체 면제하여 성을 수비하는 데만 전력하도록 하라.”

○上下教曰: “水原·廣州, 限事定間, 凡干雜役, 一切蠲除, 使之專意於守城.”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1월 23일(신묘) 3번째기사>

정치/군사

수원 군병에게 쌀을 지급했는가 묻고 경성의 강에 있는 배들을 불태우게 하다

상이 이시백(李時白)을 인견하고 묻기를, “수원(水原) 군병에게 요미(料米)를 지급하였는가?”

하니, 이시백이 아뢰기를, “호조의 쌀 2백 석을 꾸어서 지급하였습니다.” 하였다. 김자점

이 들어와 배알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경성의 강에 있는 선박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속히 불태우도록 하고 수상(水上)에 있는 선박들은 유림으로 하여금 관찰하도록 하라.” 하였다.

○上引見李時白, 問曰: “水原軍兵給料乎?” 時白曰: “貸戶曹米二百石, 給之.” 金自點入謁. 自點曰: “京江之船, 何以處之?” 上曰: “宜速焚之. 水上船, 亦令柳琳察之.”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1월 28일(병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김류가 수원의 기마를 돌려보낼 것을 청하다

김류가 아뢰기를, “수원의 마병(馬兵)은 풀과 콩이 모두 떨어지고 또 눈이 내려 장차 엎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결코 위급할 때에 힘을 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기마를 사용할 곳도 없으니, 몹시 수척한 것은 돌려보내고 병사만 머물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된 대로 하라. 그러나 또한 기마를 사용할 경우가 없지 않을 터이니 전마를 팔시하지 말라.” 하였다.

○金瑬啓曰: “水原馬兵, 芻豆俱乏, 又經雨雪, 將至顛損, 決難騁力於緩急. 且無用騎之地, 許令放還其甚瘦瘠者, 只留其兵似當.” 答曰: “依啓. 然亦不無用騎之地, 戰馬勿爲愬視.”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2월 3일(경자) 8번째기사>

## 정치/군사

### 김류가 수원의 군마가 군량이 없어 마을을 다니며 구걸한다고 하다

김류·이정구·신경진 등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서를 보니 화친하는 일은 끝났습니다.”

하니, 이정구가 아뢰기를, “적이 반드시 개성으로 진군하여 맹약을 하자고 위협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각도의 군사들을 성화같이 독촉하여야 한다.”

하자, 김류가 아뢰기를, “장만이 필시 풍덕(豐德) 사이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만이 이미 군사가 없는데 어찌 앉아서 죽을 수 있겠는가. 국가가 존속하느냐 멸망하느냐가 이 한 섬에 달려 있는데 주위가 넓고 커서 수비가 매우 소홀하니, 이 뒤의 군사는 다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라.”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군마가 현재 군량이 없어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구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두들 분원을 품고 있으니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군(中軍)을 독촉하여 불려 요미를 지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引見金瑬·李廷龜·申景禎等. 上曰: “見其賊書, 和事已矣.” 李廷龜曰: “賊必進兵開城而劫盟.” 上曰: “各道軍兵, 宜星火催督.” 金瑬曰: “張晚必入於豐德之間.” 上曰: “晚既無軍, 何可坐死? 國之存亡, 係此一島, 而周回闊大, 守備甚疎. 此後軍兵, 宜令皆入於此.” 瑬曰: “水原軍馬, 時無見糧, 行乞於村, 皆懷憤怨, 誠可慮也.” 上曰: “促召中軍, 放料.”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2월 7일(갑진) 12번째기사>

## 정치/군사

### 강홍립·박난영과 청 사신 유해가 왔기때문에 직접 만나볼 것인지를 논의하다

강홍립과 박난영이 호차인 부장(副將) 유해(劉海)와 함께 적중에서 나오자, (...) 장유가 아뢰기를, “거스르는 말이 있으면 바로 참수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원(水原) 병사들이 현재 그곳에 있으니 호인으로 하여금 그 군용(軍容)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병관이 장유와 이경직을 거느리고 나아가 접대하라.” 하니, 정백창(鄭百昌)이 병조의 판서와 참판이 다 나갈 수 없다는 것으로 말하자, 이정구가 아뢰기를, “김신국이 가야 하겠습니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

○姜弘立·朴蘭英，偕胡差副將劉海，來自賊中。(…) 維曰：“如有悖言，即可斬也。” 上曰：“水原軍兵，時在其處。毋使胡人，見其軍容。” 上又曰：“兵判率張維·李景稷，出往接待。” 鄭百昌，以本兵判書·參判，不可盡出，爲言，李廷龜曰：“金蓋國宜往。” 上曰：“然矣。” (...)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2월 9일(병오) 5번째기사>

#### 정치/군사

비국이 도감 군병만으로 어가를 호위하도록 청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전일에 행행할 때에는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의 군사들에게 모두 호위하게 하였으니, 이번에 서울로 돌아갈 때에도 역시 그전처럼 징병(徵兵)을 해야 하겠지 만, 농사철이 바야흐로 가까워 왔으니 백성들의 일이 염려됩니다. 도감 군병만으로 수가(隨駕)하여 도성으로 돌아가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備局啓曰：“前日行幸時，水原·南陽之軍，竝令扈行。今此回鑾時，亦當依前徵兵，而農時方急，民事可念，請只令都監軍兵，隨駕還京。” 從之。

<인조실록 15권, 인조 5년 3월 29일(병신) 3번째기사>

#### 정치/군사

병조가 흥경원을 이장할 때 수원의 군사로 호위케 할 것을 청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흥경원(興慶園)을 이장할 때 상께서 지영(祇迎)하고 지송(祇送)하시는 곳의 호위는 수원(水原)의 군사를 징발하여 쓰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兵曹啓曰：“興慶園移葬時，祇迎·祇送處扈衛，請以水原軍徵用。” 上從之。

<인조실록 16권, 인조 5년 7월 11일(을해) 3번째기사>

#### 정치/군사

원주 목사 홍보도 이인거의 역모에 대한 대책으로 수원의 군병을 올라오게 해야 한다고 하다

(...) 빈청(賓廳)이 계청하기를, “급히 선진관을 보내 그 종적(蹤跡)을 탐지하고, 관찰사 최현을 나문(拿問)하고 새 감사를 차송(差送)하며, 또 대장(大將) 한 사람을 보내어 포수(砲手)와 서울의 군사, 그리고 기내(畿內)의 병사를 이끌고 전진하여 격멸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원(水原)의 군병도 체신(體臣)으로 하여금 전령(傳令)하여 올라오게 해야 합니다. 저 적이 충청도로 향할 뜻이 있다고 하니, 감사와 병사에게 비밀히 하유하여 힘을 합쳐서 체포하게 해야 합니다.” (...) 하니, 상이 모두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오숙(吳翮)을 강원 감사(江原監司)로 삼았다.

○(...) 賓廳啓請：“急遣宣傳官，探其蹤跡，拿問觀察使崔峴，差送新監司。且遣一大將，率砲

手及輦下兵·畿內之兵，前進勦擊。水原軍兵，亦令體臣，傳令上來。伊賊有向忠清道之語云，密諭于監·兵使，使之竝力勦捕。”(…)” 上皆從之。遂以吳翻爲江原監司。

<인조실록 17권, 인조 5년 10월 1일(갑오) 2번째기사>

### 정치/군사

**김류가 역모를 진압할 군대를 조발할 방법으로 수원방어사가 서울을 호위해야 한다고 하다**  
김류(金瑬)가 아뢰기를, “이일원은 여주(驪州)·이천(利川)·양근(楊根)·지평(砥平) 네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유림은 양주(楊州)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진하게 하며, 이경용(李景容)은 광주(廣州)와 죽산(竹山)에 소속된 네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한 산성(南漢山城)에 들어가 지키게 하고, 수원 방어사 이시백(李時白)은 본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에 들어와 호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영(右營)과 중영(中營)은 각기 소속된 군사를 거느리고 제 위치에서 영을 기다리게 하고, 후영(後營)에 소속된 좌부(左部) 각 관병(官兵) 4백여 명도 들어와 호위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총융사(摠戎使)와 경기 감사에게 전령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金瑬啓曰：“李一元領驪州·利川·楊根·砥平四邑兵，柳琳領楊州兵前進，李景容領廣州及竹山所屬四邑兵，入守南漢山城，水原防禦使李時白領本府兵入衛京城。右營及中營，則各率所屬兵，待令於信地，後營所屬左部各官兵四百餘人，則亦令入衛。請以此，傳令於摠戎使及京畿監司。” 上從之。

<인조실록 17권, 인조 5년 10월 1일(갑오)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고변에 따라 도성 수비를 강화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입직한 금군(禁軍)과 포수, 군사는 각각 소속 장관이 거느리고 변에 대비하게 하고 출번(出番)한 금군도 소집하여 소속 장관으로 하여금 그들을 거느리고 대궐문 밖에다 진을 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김류가 아뢰기를, “수원 부사가 군대의 일로 먼 대해서 의논할 일이 있어 올라왔었는데 오늘 변란의 소식을 들은 뒤 신이 재촉하여 내려보내어 급급히 군병을 모아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선전관을 보내 표신을 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주야로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兵曹啓曰：“入直禁軍及砲手·軍士，則各其將官率領待變，而出番禁軍，亦宜召集，令其將官率領，結陣于闕門外。” 從之。金瑬啓曰：“水原府使，以軍務面議事上來，今日聞變後，臣催令下去，急聚軍兵，待候于近地矣。請發遣宣傳官，持標信，使之領兵，星夜馳進。” 從之。(…)

<인조실록 18권, 인조 6년 1월 3일(을축) 5번째기사>

### 정치/군사

#### 김류가 수원의 독성·죽산 산성 및 파주 산성의 병력에 대해 아뢰다

김류가 아뢰기를, “신이 각도 병력의 다과(多寡)와 거리의 원근, 방어의 긴급성 여부를 헤아려 신지(信地)를 나누어 정해서 별단(別單)으로 서게드립니다. 그리고 생각건대 만약 급한 정보가 있을 경우, 기보(畿輔)의 병력 및 연하(輦下)의 친위군사들은 모두 강도(江都)에 들어가 지키고, 전라도·경상도 및 강릉(江陵) 진관(鎭管)의 병력을 차례로 들어가 지키게 해야 하겠습니다. 변고 발생을 듣게 되는 날 출정하는 장수들은 즉각 병력을 이끌고 급히

전진해야 되는데, 기보의 병력이 일단 강도에 소속된 이상 부득이 먼저 혼련 도감·어영청 등의 군사와 몇 명의 초관(哨官)을 인솔하여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남(三南) 중에서는 공청도가 가장 가까우니 이 도의 병력을 다음 차례로 이동시키고 경상도의 병력을 계속 보충하여 평산(平山)으로 진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본 성은 퇴락하여 허물어진데다가 현재 군량도 없는만큼 이곳에 들어가 지킬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도의 병력을 일단 이곳에 집결하게 한 다음 적이 향하는 곳에 따라 전진하여 황주(黃州)에 응원부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산성에 들어가 지키거나 요새지를 웅거하여 도로를 차단해야 할 것이며, 적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 안주(安州)에 달려가 응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원(水原)의 독성(禿城)과 죽산 산성(竹山山城)은 모두 본도의 병력 몇 명을 머물게 하여 타도의 군대와 접응하게 함으로써 그때를 당해 조발해 쓰는 데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흥 산성(瑞興山城)같은 경우는 그 지형이 험고하여 들어가 지킬 수 있는데, 본도가 온 힘을 황주에 기울이고 있는 만큼 힘이 미칠 겨를이 없으니, 우선 강원도 병력을 이곳에 진주시킨 다음 다른 곳으로 조발해 쓰거나 그대로 본성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주 산성(坡州山城)은 임진(臨津)으로 통하는 길을 통제하고 있고 강도(江都)의 울타리가 되는 셈이니, 깊이 들어온 적을 차단하여 막는 곳으로는 이 성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본주와 장단(長湍) 등 6읍의 병력 및 경상도 1영(營)의 병력으로 나눠 지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주 이하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의 감사와 상의하여 각자 본도의 병력을 나눠 파견해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전투를 벌이다 보면 상황이 일정하게 전개되지 않아 임기 응변하여 진퇴하게 될 것이니 오늘날 나눠 지키는 계획처럼 모두 꼭 들어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제로(諸路)의 군병이 어디로 향해 갈지를 모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이 병조 판서 이귀(李貴), 총융사(摠戎使) 이서(李曙), 찬획사(贊畫使) 이경직(李景稷), 부원수 정충신(鄭忠信) 등과 회의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과주 산성에 분정한 병력이 많은 듯하니, 적당량을 줄이라. 그리고 그곳에 경상도의 병력을 덜어내고 공청도의 병력을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金瑬啓曰：“臣以各道兵多寡·道里遠近·守禦緊歇·分定信地，別單書啓矣。且念如有警急之報，則畿輔兵及輦下親兵，皆入衛江都，全羅·慶尙道及江陵鎮管兵，可以次第入衛。聞變之日，出征之將，卽領兵馳向前路，而畿輔之兵，既屬於江都，不得已先率都監·御營等軍，若干哨官發行。三南中公清道最近，故以此道兵次之，又以慶尙道兵繼之，進駐平山，而本城頽圯，又無見糧，非欲爲入守之計，使諸道兵，約會于此，隨賊所向，或進前赴援黃州，或入守山城，或遮截要害，而賊勢若緩，則或可以馳援安州矣。水原禿城·竹山山城，則俱留本道兵若干人，接應他道之兵，以便臨時調用。如瑞興山城則形勢險固，可以入守，而本道專力於黃州，力不暇及，姑令江原道之兵，進駐于此，或調用某處，或因守本城。坡州山城則控扼臨津之路，且爲江都藩蔽，遮遏深入之賊，莫如此城，故以本州與長湍等六邑兵及慶尙一營兵，爲分守之計。至於黃州以下，則已與兩道監司相議，各自本道分派保守，而兵無常勢，臨急進退，未必盡如今日之所分，而若不先事預定，則諸路軍兵，莫適所向，故臣與兵曹判書李貴·摠戎使李曙·贊畫使李景稷·副元帥鄭忠信，會議以啓。” 答曰：“坡州山城分軍之數似多，量減其數，而除慶尙道兵，以公清道兵分給。”

<인조실록 19권, 인조 6년 9월 29일(병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경기의 군사를 사열하기 위해 수원의 병력 2천 명을 먼저 올라오게 하다

(…) 상이 이서에게 이르기를, “기내(畿內)의 군사를 경이 이미 오래도록 조련해 왔는데 내가 직접 사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국가에 일이 많아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 지금 농한기에 사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신이 조련해 온 지 이제 5년이 됩니다. 상께서 직접 사열하시고 싶으면 10월 보름쯤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군대 병력이 거의 1만 8천 명에 이르니, 모화관(慕華館)에서 실시하면 공간이 좁을까 신은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꺼번에 집결시키면 해가 짧은 때에 형세상 모두 사열하기 어려울 것이니, 병력을 3등분한 뒤 그 중 하나만 사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수원(水原)의 병력 2천 명을 먼저 올라오도록 하라.” 하니, 이서가 아뢰기를, “사열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오행진법(五行陣法)을 폐지하고 척계광법(戚繼光法)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척계광법을 쓸 경우 반드시 군영을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상께서 그 우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

○(…) 上謂曙曰: “畿內之軍, 卿操鍊已久. 予欲親閱, 而以國家多事, 尙未爲之. 今於農隙, 閱視何如?” 曙曰: “臣之操鍊, 今已五年矣. 上欲親閱, 初冬望間, 爲之可也. 但軍數幾至萬八千, 臣恐慕華館前地狹矣.” 上曰: “一時聚會, 勢難畢閱於短晷, 可三分其軍, 而閱其一. 水原軍二千, 先令上來.” 曙曰: “習閱之法有二, 今則廢五行陣法, 只行戚繼光法. 若用戚法, 必連營, 自上未能詳閱其優劣矣.” (…)

<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7월 23일(병오)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 부사 장신이 군보(軍保)에 대한 문제로 상소하다

수원 부사 장신(張紳)이 상소하기를, “본부의 군보(軍保) 중에 도망하거나 물고가 서로 잇따라 축난 인원이 자못 많기 때문에 신이 여러 방면으로 찾아 내어 겨우 한정(閑丁) 30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연장(年壯)한 자 5, 6명 외에는 겨우 10세가 넘는 자도 있고 8, 9세에 불과한 자도 있어 그 부모들이 안거나 업기도 하고 손을 잡고 데리고 와서 다투어 억울함을 하소연하니 눈앞에 보기에 몹시 애처롭습니다.

신이 삼가 들으니 도감(都監)의 근례(近例)에 ‘포수(砲手)로 자망(自望)하는 자는 연령이 차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정해 주되 가포(價布)는 연령이 차기를 기다려 거두어들인다고 합니다. 이미 이런 규례가 있다면 각 고을에 있어서는 어찌 유독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이 찾아낸 양정(良丁) 중에서 장정(壯丁)은 우선 충정시켜 가포를 거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이 규례에 의거하여 그대로 정해 주고 연령이 차기를 기다려 가포를 거두도록 허락 하소서. 그렇게 하면 여러해 동안 축난 군보(軍保)를 거의 충정할 수 있고 호수(戶首)에게 있어서도 원래 보인을 정해 주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초 군적 사목(軍籍事目) 중에서 어떤 종류의 군보든지 막론하고 취재(取才)된 뒤에 다른 부서로 승진되도록 허락했던 자들이 많게는 10여 인입니다. 이들은 출신(出身) 및 전공(戰功)으로 군역에서 면제된 자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감에서는 궤액(闕額)이라 혼칭하면서 아울러 본부로 하여금 그 대신(代身)을 충청시키라고 하는데, 이는 사리로 따지면 더욱 근거없는 일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편리한 방법으로 변통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 일을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아뢰기를,

“군보에 정역시키는 일은 으레 연한이 있기 마련인데 만약 열살도 안 된 자를 정급한다면 비록 군포(軍布)를 거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정(軍政)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급하고 난 뒤에는 호수(戶首)들이 보가(保價)를 받지 않을 리도 없으니 8, 9세의 아이를 충정하는 일은 허락치 마소서.

보인(保人) 중에서 취재로 정로위(定虜衛)에 승진된 자들은 출신이나 전공으로 면역된 자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만약 권액으로 논하여 모두 그 대신을 충정하게 한다면 타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로위에 승진된 자들은 대신을 충정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연령 미만인 자는 비록 10세가 넘었더라도 충정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丙辰/水原府使張紳上疏曰：本府軍保之數，逃故相仍，闕額頗多．臣多般搜括，僅得閑丁三十人，而年壯者五六人外，或有纔過十歲者，或有僅八九歲者，其父母抱負·携持，爭來訴冤，目前所見，情理可矜．臣伏聞都監近例：“砲手之自望者，年雖未滿，因令定給，而價布則待年收捧”云．既有此例，則至於各官，何獨不然？臣所得良丁中丁壯者，先宜充定收布，其餘竝依此例，許令因爲定給，待其年滿，始捧價布，則累年闕保，可以幾盡充定，而其在戶首，不亦愈於元不定給乎？且當初軍籍事目中，毋論某色軍保，許令取才後陞屬者，多至十餘人．此則與出身及戰功免役者，實無差別，而都監渾稱闕額，竝令本府，充定其代，揆之事理，尤爲無據，令廟堂從便變通．

下其事于備局．備局啓曰：“軍保定役，自有年限．若以年未滿十歲者定給，雖不收布，有乖於軍政．既已定給之後，則爲其戶首，似無不捧保價之理，八九歲兒，勿許充定．保人中取才，陞遷定虜衛之類，則與出身·戰功免役者，少無異同．若論以闕額，竝令充定其代，似未妥當．定虜衛陞屬，勿令代定爲當．”上曰：“年未滿者，雖過十歲，勿令充定．”(…)

<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10월 5일(병진)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병조가 폐지되었던 5진관의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복구해야 함을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5진관(五鎭管)의 수령이 각각 영장(營將)을 겸임하였는데 난리 후에 폐지된 채 행하지 못하였으니, 의당 옛제도를 신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래 별영장(別營將)을 너무 많이 내보내 매사에 방해만 되고 있어 그에 대한 폐단을 일일히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을 위한 계책으로는 비록 영장(營將)을 모두 다 혁파할 수는 없더라도 진관(鎭管) 중에서 무신이 수령으로 되어 있는 곳은 영흥(永興)·길주(吉州)·원주(原州)·이천(伊川) 등의 준례에 의거하고, 경상도의 김해(金海)·진주(晋州) 등지의 영장은 모두 혁파하여 그 진관의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고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여 군병을 조련시키도록 하는 것이 실로 사기(事機)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광주(廣州)와 수원(水原) 같은 곳의 수령은 비록 무변(武弁)은 아니지만 방어사(防禦使)를 겸임하고 있으니, 이는 조정에서 벌써 장령(將領)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영장을 겸임토록 하여 각 고을의 공역(供億)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천천히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

○兵曹啓曰：“祖宗朝五鎭管守令，各兼營將，而亂後廢而不行，則所當申明舊制，而近日剩出別營將，每事掣肘，其中弊端，難以毛舉．爲今之計，雖不能盡罷營將，而鎭管中武臣爲守令處，則依永興·吉州·原州·伊川例，慶尙道·金海·晋州等官營將，則竝皆革罷，令其鎭管守令，



依舊例，自兼營將，許帶中軍，操鍊軍兵，實合事宜，而如廣州·水原守令，則雖非武弁，既兼防禦使，是朝廷既以將領待之，亦令自兼營將，以除各官供億之弊.” 上曰：“徐議以處.”

<인조실록 21권, 인조 7년 11월 22일(계묘)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부사 장신의 상소에 의거하여 비변사가 강도의 방어에 대해 아뢰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장신(張紳)이 상소하여 강도(江都)의 편의(便宜)에 대하여 진달하였는데, 비국이 아뢰기를, “강도에 성을 쌓는 일은 체신이 출사하기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화량(花梁)·영종(永宗)·초지(草芝)·제물(濟物)의 4보(堡)를 옮겨 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연해(沿海)에 진(鎭)을 설치한 목적이 오로지 왜구(倭寇)와 해적(海賊)을 방비하기 위해서인 만큼 그 뜻이 범연한 것이 아니고, 강도에서 적을 방어하려면 전적으로 수군에 의지해야 하는데 임금이 그 곳으로 옮길 경우 제진의 전선과 병선을 강도에 모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약간의 토병(土兵)을 철수하여 옮기는 것이야 본디 큰 일이 못 되겠지만 설립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육군의 담당 구역을 나누어 정하는 일은 3, 4처의 요해지를 골라 각지에 수천 명의 군사를 주둔시켜야 하겠습니까만, 지금 나눈 군대도 한 곳만을 불박이로 지켜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뜻에서가 아니라 실로 위급할 적에 군사를 더하려는 목적에서이니, 자꾸만 계속해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10만의 쌀을 양호(兩湖)와 경기도 내의 바닷가 여러 고을에 반씩 나누어 저장하자는 일은 구관 당상(句管堂上)이 지금 한창 조치하고 있으니 우선 준비한 숫자를 보아 그 때 가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丁丑/水原府使張紳上疏，陳江都便宜，備局啓曰：“江都築城事，當待體臣出仕．至於花梁·永宗·草芝·濟物四堡移定事，則自祖宗朝，沿海設鎮，專爲倭寇海賊，意非偶然，而江都禦敵，專在於舟楫．若有移蹕之舉，則諸鎮戰船·兵船，當聚於江都．若干土兵之撤移，本非大段事，而設立已久，不可輕議．陸軍信地派定事，則宜擇三四處要害之地，各屯數千之兵，而今所分之軍，亦非膠守不易之意，實欲臨急添兵，不可續續更改．十萬餉米，分半儲峙於兩湖及畿內沿海列邑事，則句管堂上，今方料理，姑觀所備之數，臨時處置爲當．” 上從之．

<인조실록 25권, 인조 9년 9월 6일(정축)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전라 병사 김준룡이 치계하여 광교산에서의 승전 소식을 전하다

전라 병사 김준룡(金俊龍)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들어와 광교산(光敎山)에 【경기의 수원(水原)과 용인(龍仁) 사이에 있다.】 주둔하며 전투에 이기고 전진하는 상황을 치계(馳啓)하였다. 당시 남한 산성이 오래도록 포위되어 안팎이 막히고 단절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구원병의 소식이 잇따라 이르렀으므로 성 안에서 이를 믿고 안정을 되찾았다.

○全羅兵使金俊龍，領兵入援軍光敎山，【京圻水原·龍仁之間.】馳啓戰勝前進之狀．時，南漢被圍已久，內外隔絕．至是，援兵聲息繼至，城中恃以爲固．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5일(을사)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의 장관들이 화친 배척한 신하를 내보내도록 청하다

수원(水原)의 장관(將官)들이 정원(政院) 문 밖에 모여 화친을 배척한 신하를 내보내도록

청하였다.

○水原將官等，會于政院門外，請出送斥和之臣。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23일(계해)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구인후는 수원부사로서 남문을 지키다

훈련 도감의 장졸 및 어영청의 군병이 성 위에서 서로 인솔하여 와서 대궐문 밖에 모여 화친을 배척한 신하를 오랑캐 진영에 보낼 것을 청하였다. 당시 신경진(申景禛)이 훈련 도감의 군병을 거느리고 동성(東城)을 지켰으며, 구굉(具宏)은 남성(南城)을 지켰고, 구인후(具仁厚)는 수원 부사(水原府使)로서 남문(南門)을 지켰는데, 홍진도(洪振道)와 은밀히 모의하고 군졸들을 교유(教誘)하여 이렇게 협박하는 변고를 일으켰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위태롭게 여기면서 두려워하였다. (…)

○丙寅/訓練都監將卒及御營軍兵，自城上相率而來，會于闕門外，請送斥和臣於虜營。時，申景禛領訓練軍兵守東城，具宏守南城，具仁厚以水原府使守南門，與洪振道密謀，教誘軍卒，有此迫脅之變，人皆危懼。 (…)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26일(병인)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병조 참판 이시백이 수원 군병의 포로 문제를 아뢰다

병조 참판 이시백(李時白)이 뵈기를 청하므로 상이 소견하였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과병(罷兵) 때 수원의 군병 대반이 포로가 되었으니, 매우 참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첩을 수비하는 사졸은 노고도 많았는데, 또 이러한 환란을 만나다니 당시의 과병을 너무 서둘렀던 것은 아닌가?”

하고, 이어 한숨쉬며 탄식하기를, “이서(李曙)의 공로를 어찌 잊겠는가. 국가가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산성 때문이었는데, 이서만은 미처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나는 그것을 매우 슬퍼한다. 산성에서 내려올 때 한번 찾아가 통곡을 하려고 하였는데 경황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심히 한스럽다.” 하였다.

○兵曹參判李時白請對，上召見之。時白曰：“罷兵時，水原之軍，太半被擄，誠極驚慘。”上曰：“守堞之卒，勞苦極矣，而又遭此患，其時罷兵，無乃太早耶？”仍喟然歎曰：“李曙之功，何可忘也？國之所以保存者，全賴山城，而曙獨不及見之，予甚悲之。下城時，欲一臨痛哭，而倉卒未果，甚可恨也。” (…)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3월 2일(신축)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주강 후 대사성 이일상 등과 수원의 군병 등에 대해 논의하다

(…) 강을 마치고 나서 특진관 대사성 이일상(李一相)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군병은 훈국(訓局)에 견주어 더욱 성대하고 그 사람들은 무사(武事)에 익숙한데 쓰여지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재(守宰) 또한 훈척(勳戚)의 신하로서 무유(撫綏)하는 방법을 극진히 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정에서 인심을 굳게 단결시키는 방법은 특별히 경관(京官)을 보내 호궐(犒饋)하고 시상(施賞)하여 은전(恩典)을 보이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대신들과 의논하여 조처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원은 본디 무향(武鄉)으로 과연 경의 말과 같다. 연전에 능침(陵寢)을 배알할 적에 수원의 군병이 서울에 머물러 지키기 위해 왔었는데, 내가 시재(試才)하여 상을 주려고 했으나 거리끼는 점이 있어서 또한 억지로 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의 말이 이러하니 대신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

○(…) 特進官大司成李一相曰: “水原軍兵, 比諸訓局, 爲尤盛, 其人習於武事, 樂爲之用. 卽今守宰, 亦勳威之臣, 撫綏之方, 似無不盡, 而朝廷之所以固結人心者, 莫如別遣京官, 犒賞示恩. 乞議于大臣而處之.” 上曰: “水原本武鄉, 果如卿言, 而年前拜陵時, 水原軍兵爲留都而來, 予欲試才施賞, 而有所畏忌, 亦不得強行. 卿言如此, 當與大臣議之.” (…)

<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2월 23일(경신) 1번째기사>

#### 정치/군사

쌀과 면포를 수원부에 수송하여 시재한 군병을 시상케 하다

면포(綿布) 7백 필과 쌀 1백 석을 수원부(水原府)로 수송하여 시재(試才)한 군병들에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戊辰/命以綿布七百匹及米一百石, 輸送於水原府, 以賞其軍兵之試才者.

<효종실록 10권, 효종 4년 3월 2일(무진) 1번째기사>

#### 정치/군사

전 수원 부사 한진기를 장배하다

전 수원 부사 한진기(韓震琦)를 장배(杖配)하였다. 진기가 수원에 있으면서 치적이 좋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군무(軍務)에 관하여 곧바로 아뢰었던 일로 하여 총융사 구인기에게 미움을 샀다. 그리하여 인기가 아뢰기를, “진기가 새로 한정(閑丁)을 모집했다는 것이 모두 실속없이 수만 불러놓은 것으로, 조총을 지급할 만한 자가 없는데도 속여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여, 비국(罷)하라고 회계하자, 상은 그가 속여 조정에 보고하였다고 성을 내고 진기를 잡아들여 국문할 것을 명하는 한편 총융청과 함께 일제 점열(點閱)을 실시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감사 조형(趙珩)이 부평 부사 유창(兪瑒)을 차사원(差使員)으로 지정하여 총융청의 중군(中軍)과 합동으로 점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유창은 그 중에서 약한 자 13명만 거론하여 보고하였고, 중군은 본청에 보고하기를, ‘차사원이 자기 소견만 고집하고 용잔(庸殘)과 아약(兒弱)을 상세히 구별하지 않았습시다.’ 하여 인기가 그대로 아뢰니, 상이 대노하여 조형을 추고하고, 유창은 의금부 신문에 내렸으며, 진기는 곤장을 쳐 도배(徒配)하였는데 유창 역시 도배를 받았다.

○杖配前水原府使韓震琦. 震琦在水原, 有能治聲, 而以軍務直啓事, 見忤於摠戎使具仁瑩. 仁瑩啓: “以震琦新得閑丁, 皆是虛張其數, 無鳥銃可給者, 而欺罔啓聞.” 備局以罷推回啓, 上怒其瞞報朝廷, 命拿問震琦, 而更命與摠戎廳, 一體點閱. 監司趙珩, 以富平府使兪瑒定差使員, 與摠戎中軍眼同查點. 瑒只舉形體殘弱者十三以報, 而中軍亦報本廳以爲: ‘差使員, 偏執己見, 庸殘兒弱, 不詳辨別’, 仁瑩以聞, 上大怒, 推考趙珩, 下瑒于理, 震琦決杖徒配, 瑒亦坐徒配.  
<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7월 5일(무오) 5번째기사>

#### 정치/군사

거동 호위에 수원군사는 총융사가 통솔하여 호위하라고 허적이 건의하다

상이 침을 맞은 뒤에 병조 판서 홍중보를 인견하였는데, 도제조 허적 등도 입시하였다. 상

이 홍중보와 이일상에게 의주(儀註)의 절목들을 읽도록 명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수원 군사는 총융사로 하여금 거느리고 와서 호위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그때 다다라 병부(兵符)를 총융사에게 내려 보내고, 충청도의 군병도 병사에게 병부를 보내어 병부를 서로 대조해 본 후에 징발하도록 하라.”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어영군은 대장이 맡아 거느리겠지만, 금군 및 도감 포수(砲手)와 마병은 대장이 없습니다. 병조 판서가 원래 본 군사들의 우두머리이니 그를 대장으로 삼아 모두 거느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영군이 행군할 때는 중군(中軍)에게 어영군 한 부대를 대신 거느리게 하고, 어영 대장은 충청도 군병을 아울러 거느려 전후 부대를 총괄해 지휘하도록 하고, 협련군(夾輦軍)은 병조 판서를 대장으로 삼되, 내게 품하여 행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거동하신 후에 궁궐 내에 흑시 유문(留門)을 실시해야 할 경우 내전에 여쭙어 그 명령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호(軍號)를 미리 날에 따라 써서 들이면 내전에서 계(啓)자를 찍어 봉한 다음 내전에 둘 것이니, 병조로 하여금 매일 여쭙어 하달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순장(巡將)과 감군(監軍)은 거동 시에 으레 계속하여 숙직을 썼으나 요번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므로 계속하여 숙직을 서기가 어려울 듯한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도 군호의 예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이름을 나열해 써서 들이면 날에 따라 낙점(落點)을 해두어 그때 맞추어 돌아가며 숙직을 설 수 있도록 하겠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승지는 모두 가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지 두 명은 승정원에 남아 돌아가면서 숙직을 서야 할 것이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옥당의 관원도 한 사람을 시켜 숙직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관(摠管)의 수 또한 줄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6인이 수행하면 오위장(五衛將)들은 통솔할 것이 없게 되니 모두 수행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경영고(京營庫)에서 진상하는 물품을 행재소까지 가서 바친다면 그 폐가 반드시 배가 될 터이니 직접 궁궐 내에 바치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이르기를, “총융사(摠戎使)가 임시로 수원의 군사를 거느리게 되면 장수와 병졸이 친숙치 못할 터이니 어찌 보조가 서로 맞겠는가. 병조가 총융사를 미리 내려 보내 사열하고 훈련하게 했다가 그때 맞추어 마중나오고, 이어서 계속 수원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다가 환궁할 때에 직산(稷山)으로 마중 나오게 해야 할 것이다. 징발한 군사가 갔다 돌아온 후에 요역을 줄여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다. 그래서 한 군영의 군사만 쓴 것이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온천에 도착한 후 외방의 군사들은 모두 돌려보낼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영군이 충분히 호위할 수 있으면 외방의 군사들은 돌려보내겠다.” 하였다.

○上受鐵後，引見兵曹判書洪重普，都提調許積等亦入侍。上令洪重普·李一相，讀儀註節目。積曰：“水原軍兵，請使摠戎使領來扈衛。”上曰：“然。臨時下送兵符于摠戎使，忠清道軍兵，亦送符于兵使，使之相驗，然後徵發。”積曰：“御營軍，則大將自當統領，而禁軍及都監砲手馬兵，則無大將。兵判既是本兵之長，使之摠領爲大將。”上曰：“御營軍行軍時，則以中軍代將一隊，大將則兼領忠清道兵，而摠轄前後隊，夾輦軍，則兵判爲大將，稟於予而行之可也。”積曰：“行幸之後，闕內或有留門之舉，則啓用內旨何如？”上曰：“軍號預爲排日書入，則自內踏啓字封署，藏置于內，使兵曹逐日啓稟以下可也。”積曰：“巡將監軍，陵幸時，則例爲仍

番, 而今則將過時月, 似難仍番, 何以爲之?” 上曰: “此亦依軍號例, 使之列書以入, 排日落點以置, 以爲臨時輪直之地.” 積曰: “承旨當盡往乎?” 上曰: “承旨二人留院, 輪回入直可也.” 積曰: “玉堂官亦令一人入直爲當. 且摠管亦爲減數何如?” 上曰: “六人陪從, 五衛將, 則既無所統, 竝勿陪從可也.” 積曰: “京營庫供上, 若往納于行在, 則其弊必倍, 使之直納于闕內何如.” 從之: “且摠戎使若臨時往領水原軍, 則將卒不習, 豈肯相統乎?” 兵曹分付, 預使之下, 點閱教鍊, 臨時來迎, 仍留鎮水原, 還宮時, 來迎於稷山可也. 所徵軍兵往返後, 欲蠲減其役, 以慰其心. 故偏用一營之軍者, 以此也.” 積曰: “到溫泉之後, 則外方軍兵, 皆放送乎?” 上曰: “御營軍足以扈衛, 則外方軍當放送矣.”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4월 9일(을축)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유혁연이 수원 군병은 훈국 군병과 같은데 흉년으로 훈련시키지 못한지가 10년이라고 하다 병조 판서 홍중보를 불러 표신(標信)을 가지고 가 어영 대장 유혁연과 총융사 구인기를 부르라 명하여 행궁에서 인견하였다. (...) 혁연이 아뢰기를, “수원 군병은 본래 훈국 군병과 차이가 없었는데 최근에 계속 흉년을 만나서 훈련을 못 시킨 지가 벌써 10여 년이나 됩니다. 어제 하교를 받잡고 가서 그 군대를 살펴보니 예전에 일을 할 줄 알았던 장수들은 거의 다 죽었고 새로 부임한 이들은 모두 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장수와 병졸이 서로 익숙치 않아 두려운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하였다. (...)

○命召兵判洪重普, 以標信召御營大將柳赫然·摠戎使具仁壑, 引見于行宮. (...) 赫然曰: “水原軍兵, 本與訓局無異, 近值年凶, 不得操鍊, 已至十餘年. 昨承下教, 往看其軍, 則曾前解事將官, 幾至死亡, 新差之人, 皆未經事, 故將卒不相慣習, 徒懷惶怯之心矣.” (...)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4월 19일(을해)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 부사 한진기가 군무에 대해 직계한 일로 총융사 구인기에게 미움을 받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한진기(韓震琦)가 군무(軍務)에 대해 직계(直啓)한 일 때문에 총융사(摠戎使) 구인기(具仁壑)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리하여 인기가 ‘진기가 새로 한정(閑丁)을 얻었다고 한 것은 모두 그 숫자를 헛되이 과장하여 속여 계문(啓聞)한 것입니다.’ 고 아뢰니, 비국이 파추(罷推)하라고 회계(回啓)하였다. 상이 그가 속여서 조정에 보고한 것을 노엽게 여겨, 잡아다가 신문하여 장(杖)을 친 다음 도배(徒配)하라고 명하였다.

○水原府使韓震琦, 以軍務直啓事, 見忤於摠戎使具仁壑. 仁壑啓以震琦新得閑丁, 皆是虛張其數, 欺罔啓聞, 備局以罷推回啓. 上怒其瞞報朝廷, 命拿問, 決杖徒配.

<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 7월 5일(무오) 4번째기사>

### 정치/군사

비변사가 수원의 솔오 가운데 면포를 견감시켜주는 일로 청하다

비변사가 청하기를, “수원(水原)의 솔오(率伍) 가운데 양역(良役)이 있어 응당 납입해야 하는 면포를 모두 견감시켜 주소서. 조금 실한 곳이어서 응당 납입해야 되는 사람은 본 고을에서 수봉(收捧)하여 강도(江都)로 보내어 유치시켰다가 내년 가을 쌀을 사들일 때를 기다리게 하고 강도의 쌀 1천 석을 내어다가 군민(軍民)을 진구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는 부사(府使) 임의백(任義伯)의 청을 따른 것이다.

○備邊司請, 水原率伍中, 良役應納之布, 竝爲蠲減. 稍實面應納者, 自本官收捧, 送置江都, 待明秋質米, 出江都米一千石, 以賑軍民, 從府使任義伯之請也.

<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 9월 21일(계유)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비변사가 경기·호서의 대동미 견감과 수원의 속오군의 일로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기(京畿)·호서(湖西)의 대동(大同)은 2두(斗)를 견감하고 연해 고을들은 3두를 견감하여 주기로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호남의 산협 고을 및 영남도 일체로 견감해야 하는데 이곳은 대동을 시행하고 있는 곳과는 달라서 반드시 온 도의 공통된 중역(重役)을 전부 견감해 주어야만 실제의 혜택을 골고루 입을 수 있습니다. 기인(其人)의 【멜나무와 숲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역(役)은 곧 도내의 공부(貢賦) 중 가장 무거운 역입니다. 경상도 및 호남의 산협 고을에 부과한 신축년조의 기인 가포(價布)를 모두 견감하고 각 아문의 은이나 베로 그 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비변사가 또 수원(水原)은 재해가 가장 극심한데, 양역(良役)과 공천(公賤) 출신의 속오군에게는 다같이 역포(役布)를 견감해 주었으나, 유독 사천(私賤) 출신의 속오군은 신역(身役)을 견감할 수 없어서 그들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뢰어 그들의 수미(收米)를 감면하여 주게 하였다.

○辛丑/備邊司啓曰: “京畿·湖西大同減二斗, 沿海則減三斗事, 既已定奪矣. 湖南山郡及嶺南, 不可不一體蠲役, 而此與行大同處不同, 必須全減一道通共之重役, 可以均蒙實惠. 其人【供柴炭人也.】之役, 乃是道內貢賦中最重者. 請慶尙道及湖南山郡辛丑條, 其人價布全數蠲減, 以各衙門銀布代給其價.” 從之. 備邊司又以水原尤甚被災, 良役公賤爲束伍者, 皆減役布, 而唯私賤束伍, 無可減身役, 獨不蒙惠, 啓免其收米.

<현종개수실록 4권, 현종 1년 10월 19일(신축)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김익렴이 수원에 어사를 파견하여 군정을 점열할 것을 건의하다

양사가 청대하니, 상이 회정당에서 인견하였다. (….) 익렴이 또 아뢰기를, “요즘 대신들은 전혀 나랏일을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일로만 말하더라도 수원 부사(水原府使)를 선왕조 시절에는 특별히 골라서 보냈었는데 근래에는 대부분 인재를 고르지도 않아 군정(軍政)이 태만해지고 군대도 쓸모가 없다고 하니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지난번 남한산성 군대는 어사(御史)를 보내 점열(點閱)한 바 있었으니 수원도 어사로 하여금 한 차례 점열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객사(客使)가 지나간 뒤에 내보내서 점열하도록 해야겠다.” 하였다. (….)

○兩司請對, 上引見於熙政堂.(…) 益廉又曰: “近來大臣, 全不擔當國事. 姑以一事言之, 水原府使, 自先朝別爲擇送, 而近來多不擇人, 軍政怠慢, 軍兵不可用云, 甚可惜也. 向者南漢軍兵, 遣御史點閱, 水原亦可使御史, 一番點閱也.” 上曰: “過客使後, 發遣點閱可也.” (….)

<현종개수실록 9권, 현종 4년 10월 28일(임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총융청의 본천 소속은 수원, 남양, 통진, 파주, 장단 등 5명이다

총융청 2번(二番) 장초군(壯抄軍) 3백 38명이 와서 점호를 받고 전례에 따라 광지영(廣智

營)에 입직하였으며, 전번군(前番軍)은 해산하여 돌려보냈다. (...) 총융청(摠戎廳) 인조 갑자년에 처음으로 설치했다. 경기 병사를 대신해 기병(畿兵)을 거느렸고, 그뒤 광주(廣州)·죽산(竹山)·양주(楊州)의 3영(營)이 수어청에 이속되어 본청 소속은 수원(水原)·남양(南陽)·통진(通津)·파주(坡州)·장단(長湍) 등 5영이었으며, 군병의 합계는 1만 4천 8백 91인이었다. 장초군(壯抄軍)이 또 10초인데, 겨울 석 달 동안 돌아가면서 담장 밖에서 번을 서고, 송도의 속오(東伍) 1천 인이 각자 1석씩 쌀을 바쳐 번졸에게 지급했다. 아병(牙兵) 15초는 나중에 6초만 남았고 그 나머지는 강등시켜 보인을 만들어 쌀을 거두었다. (...)

○摠戎廳二番壯抄軍三百三十八名來點，依舊例入直於廣智營，前番軍罷送。(...) 摠戎廳，仁祖甲子始置。以代京畿兵使將畿兵，其後廣州·竹山·楊州三營，移屬於守禦廳，本廳所屬水原·南陽·通津·坡州·長湍等五營，而軍兵合爲一萬四千八百九十一人。壯抄軍又十哨，冬三朔輪回立番於宮牆外，松都東伍一千人，各納米一石，以給番卒。牙兵十五哨，後存六哨，其餘降爲保收米。(...)

<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4년 11월 14일(무인)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경상 감사 이상진이 《연기신편》을 올리다

경상 감사 이상진이, 양산 군수 안명로(安命老)가 지은 《연기신편(演奇新編)》을 올렸다. 명로는 자신만이 홀로 악기(握奇)의 법을 얻었다고 여기고서 척계광(戚繼光)의 병제(兵制)를 변조하여 스스로 《연기신편》이라는 글을 찬술하였다. 이때에 이상진이 간행하여 한 질을 진어하면서 아뢰기를, “오늘날 군진에서 실행하는 것은 단지 척계광의 법인데, 도리어 오위(五衛)의 옛날 제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병사를 담당하고 있는 신하에게 물어보고 안명로의 법을 쓰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해조가 경솔하게 변통할 수 없다고 하자, 드디어 그 일을 그만두었다. 안명로는 망령되고 용렬한 사람이다. 효종조 이후에 군사일에 유의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장수다운 책략이 있는 자로 자처하더니, 등급을 뛰어넘어 발탁되어 광주(廣州)·수원(水原)·의주(義州)·평안(平安) 등지의 감사직을 맡게 되자, 내심 기뻐하여 사모한 나머지 망령스레 병서를 지어서 국가의 제도를 바꾸려 하였다. 척계광의 법이 비록 옛 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전부터 실행해 오면서 누차 시험하여 남방에서 여러번 공이 있었다. 이것이 어찌 안명로 같은 무리가 그 득실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명로가 그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적당을 축출하려다가 형을 받아 먼 곳으로 귀양을 갔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은 논할 것도 없거니와 그 사람을 대단히 믿고서 그 글을 드러내고 심지어 간행해서 조정에 올려 이것으로 당시에 시행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이 사람도 역시 알 만하다.

○慶尙監司李尙眞，進梁山郡守安命老所撰《演奇新編》。命老自以爲，獨得握奇之法，變戚繼光兵制，自撰《演奇新編》。至是，尙眞刊行，以一秩進御曰：“今日軍陣之所行用者，只是戚繼光之法，反不及五衛舊制。請下詢掌兵之臣，而用命老之法。”上·下其議。該曹以爲不可率易變通，事遂寢。命老，妄庸人也。見孝宗朝以後，留意兵事，自稱有將略者，輒蒙超擢，爲廣州·水原·義州·平安監司等職，心忻然慕之，妄撰兵書，欲變國制。戚繼光之法，雖非舊制，亦自久在行間，經歷試用，累有功於南方者。此豈命老等輩，所可論其得失者哉？命老，其後所望不遂，乃追逐賊黨，受刑遠配。其人之無狀如此，固不足道，而崇信其人，表章其書，至以刊進於朝，欲以此施用於一世者，此其人，亦可知矣。

<현종개수실록 10권, 현종 5년 1월 10일(계유)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총용사가 수원군을 이끌고 대기하다

상이 선소(船所)에 나아가 호위하는 여러 장수들과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들을 앞으로 불러 음식을 하사한 다음, 수행 관원과 군병들은 모두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금군과 연을 호위하는 포수는 배에 타고 좌우로 나누어 어선(御船)을 호위하며 건너라고 명하였는데, 승지 장선징이 재가받았다. 축포를 쏜 다음 상이 배에서 내려 가마를 타고 먼저 출발하자, 총용사 구인기가 수원군을 이끌고 모래 사장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길 한편에서 무릎을 꿇고 알현하고는 뒤를 보호하면서 따라갔다.

○上御船所，命召侍衛諸將及近侍於前，頒賜御饌，陪從官·軍士盡令先渡，命禁軍及挾輦砲手，乘船分左右，挾御船而渡，承旨張善澂啓下船砲，上下船乘駕輦前發，摠戎使具仁慝，率水原軍，陣于沙邊，跪謁于路左，仍殿後以行。

<현종개수실록 13권, 현종 6년 4월 17일(계유) 7번째기사>

#### 정치/군사

##### 정원에서 수원 군병의 징발에 대해 건의하다

정원이 청하기를, “선전관(宣傳官)에게 표신(標信) 및 밀부(密符)를 주어 보내, 총용사 및 경기 감사로 하여금 수원(水原)의 군병을 징발하여 한강가에서 대기하도록 말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政院請遣宣傳官齎標信·密符，諭摠戎使及京畿監司，令發水原兵，待于漢江邊，上從之。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3월 21일(신축)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총용사 구인기에게 후대가 되라고 명하다

총용사 구인기가 수원(水原) 군병(軍兵)을 거느리고 모래밭에 진을 치고 있었다. 상이 배에서 내려 진중(陣中)에 들어가서 군용(軍容)을 살핀 다음 후대(後隊)가 되라고 명하였다.

○摠戎使具仁慝領水原兵，結陣沙渚。上，下船入陣中，觀軍容，仍令爲後隊。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 3월 26일(병오)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영상 정태화가 수원의 군대에 관한 일로 건의하다

상이 회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원의 군대를 4천 명으로 감하여 정하도록 하셨는데, 민유중의 말을 들어보니, 그의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4천 명 중에 또 도망갔거나 죽은 자가 있으면 감한 데다가 또 감할 수 없다.’ 라고 하니, 유창을 불러들여 상세히 물어본 뒤에 품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고, 총용사 구인기에게도 물어보라고 하였다. 판윤 오정일이 아뢰기를, “근래 경외(京外)의 백성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호적에서 누락된 자들이 매우 많은데, 대개 군역(軍役)을 피하기 위한 계책입니다. 그런데 발각된 뒤에 단지 군역만 부과하고만 다면 그 율(律)이 너무 가벼워서 징계하여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



를, “양반인 경우엔 강등하여 군역에 배정하고 상놈인 경우엔 전가 사변토록 하라.” 하였다.

○乙酉/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相鄭太和曰: “水原軍額減定四千, 而聞閔維重之言, 則其言誠是矣. 四千之中, 又將不免有逃故, 則不可減之又減.’ 云, 請招致兪瑒, 詳問後稟定.” 上從之. 且命竝問於摠戎使具仁瑩. 判尹吳挺一曰: “近來京外, 不畏國法, 落漏戶籍者甚多, 蓋爲謀避軍役也. 現露之後, 只定軍役, 則其律太輕, 無以懲戢矣.” 上曰: “士族降定軍役, 常漢全家徙邊.

<현종개수실록 16권, 현종 7년 11월 9일(을유)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지사 민유중이 충주의 진 설치·수어사 혁파·양서 둔진의 감축에 관해 논의하다

(…) 민유중이 또 말하기를, “충주(忠州)는 바로 조령(鳥嶺) 아래의 한 도회(都會)입니다. 이제 만약 수원(水原)의 체제처럼 독진(獨鎭)을 설치하여 은연(隱然)하게 관방(關防)의 중요지로 삼는다면, 남쪽 지방에서 변고(變故)가 일어나더라도 응거하여 조령의 길목을 절단할 수 있을 것이며, 서북(西北) 지방에 경보(警報)가 있더라도 군사를 징발하여 국가의 어려움에 힘써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니,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수락하였다.

민유중이 또 말하기를, “수어사(守禦使)가 경성(京城)에 있으면서 군사 업무를 오로지하여 총괄하고 광주 부윤(廣州府尹)은 남한(南漢)에 있으면서 군사의 일을 통솔하거나 관리하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변난(變難)이 있게 되면 수어사는 마땅히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해야 하며, 부윤은 갑작스럽게 주장(主將)의 임무를 대신해야 하는데, 장수와 병졸이 서로 익숙하게 강마(講磨)하지 않아 변난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수어사를 혁파하고 부윤을 승진시켜 유수(留守)로 삼아 중신(重臣)을 차출해서 임명하고, 겸해서 비국 당상(備局堂上)의 직임을 띠게 하여 수어(守禦)하는 임무를 오로지 위임 하도록 하는 것도 묘당에 묻고 의논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곧 대단한 변통(變通)이니, 모름지기 묘당의 여러 신하들과 상의하여 확정짓고 품지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민유중이 또 말하기를, “요즈음 양서(兩西)의 둔전(屯田)에 진(鎭)을 설치하여 방어하는 것이 많아 한 고을에 4, 5진을 설치하기까지 하니, 그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 두어진을 합하여 한 진을 만들어 그 수를 줄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둔전하는 백성은 그 반을 뽑아 군사로 삼고 그 반은 머물게 하면서 모자라는 데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묘당에 묻도록 명하였다.

○(…) 維重又言: “忠州乃嶺下一都會, 今若如水原之制, 設爲獨鎭, 隱然爲關防之重, 則變起南方, 可以據截嶺路; 西北有警, 亦可以徵發勤王. 請令廟堂稟處.” 上許之. 維重又言: “守禦使在京, 專摠軍務, 廣州府尹在南漢, 無所統攝於軍事. 脫有變難, 守禦使當爲扈駕之人, 府尹猝代主將之任, 將卒不相諳熟, 無以應變. 宜罷守禦使, 而陞府尹爲留守, 以重臣差授, 兼帶備局堂上, 而專委守禦之任, 亦望詢議廟堂.” 上曰: “此乃大段變通, 須與廟堂諸臣, 商確稟處.” 維重又言: “近日兩西屯田, 多設鎭防, 一邑至有設四五鎭者, 其弊益滋. 宜合數鎭爲一鎭, 以省其數. 且於屯民, 抄其半爲兵, 而留其半以待其闕.” 上命詢于廟堂.

<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 7월 26일(정축)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총융사 김익훈이 독성산성의 별장 선발을 청하다

총융사(摠戎使) 김익훈(金益勳)이 수원부(水原府)의 독성 산성(禿城山城)은 본래 지세(地勢)가 뛰어나 편리하다고 하면서도 단지 중군(中軍)으로 하여금 머물러 있게 하고 달리 담당하는 사람이 없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별장(別將)을 선발해 보내게 하고, 본청(本廳)의 군향(軍餉)을 또한 본성(本城)에 옮겨서 저장하도록 청하였다.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摠戎使金益勳以水原府禿城山城素稱形便，而只令中軍留住，無他句管之人。請令該曹擇送別將，本廳軍餉亦令移儲本城。備局覆奏，許之。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5월 9일(병진)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 부사 원만춘이 군정을 변통할 계책을 진달하니, 품처하게 하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원만춘(元萬春)이 소(疏)를 올려 본부(本府)의 군정(軍政)을 변통(變通)할 계책을 진달(陳達)하였으므로,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비국(備局)에서 회계(回啓)하기를, “금후로는 독성 별장(禿城別將)은 수원부(水原府)로 하여금 자벽(自辟)하여 절제(節制)하게 하고, 【전에는 독성 별장을 총융청(摠戎廳)에서 차출(差出)하였기 때문에 원만춘이 소(疏)에서 형세(形勢)가 격(格)하고 힘이 나뉘어져 폐단이 많다고 하였다.】 유방미(留防米)·별파미(別破未)는 전과 같이 모두 수원(水原)에 소속시키며, 70세 이상의 군정(軍丁)으로서 입안(立案)이 없는 자는 그 역(役)을 없애고 장정(壯丁)을 찾아내 대정(代定)하는 것이 진실로 좋겠으니, 해조(該曹)에 분부(分付)하소서. 그리고 청한 바 60명은 모두 이름을 지우고 대정(代定)하되, 이어 다른 도(道)에 알려져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군적(軍籍)을 상세히 조사하고 도신(道臣)에게 갖추 보고하게 해서 품정(稟定)하는 근거로 삼게 하소서. 수군(水軍)과 육군(陸軍)을 가까운 데서부터 서로 바꾸는 일은 비록 편리하고 좋을 듯하나, 수원의 2백 59명을 다른 고을에 나누어 보내고 일시에 대정(代定)하는 것은 그 형세가 쉽지 않을 듯하니, 잠시 뒷날을 기다려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水原府使元萬春疏陳本府軍政變通之策，令該曹稟處。備局回啓以爲：“今後禿城別將令水原自辟，得以節制，【前則禿城別將，自摠戎廳差出，故萬春疏以爲勢格力分，爲弊多端。】留防布·別破米依前盡屬於水原，而軍丁年七十以上無立案者，盡除其役，而括丁代定，誠爲可尙，分付該曹。所請六十名，盡爲除名代定，仍以知委他道，使守令詳查軍籍，具報道臣，以爲稟定之地。水陸軍從近相換事，雖似便好，而水原二百五十九名，派分他邑，一時代定，其勢未易，姑待他日處之。”從之。

<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 7월 8일(정축)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군사를 수원·장단에 분속시키자는 총융사 김석익의 장계를 처리하다

총융사(摠戎使) 김석익(金錫翼)이 장계(狀啓)하기를, “본청(本廳)에 소속된 통진(通津) 등 12고을의 군병(軍兵)은 이미 강화(江華)에 갈라 준 것 이외에 아직 남은 군사가 2천 4백여 명이 있는데, 만약 그대로 본청에 소속시키면 두 곳을 구관(句管)하는 데 폐단이 없지 아니

할 것이니, 칭컨대 그 남은 군사를 수원(水原)·장단(長湍) 두 방영(防營)에 분속(分屬)시키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備邊司)에서 복주(覆奏)하기를, “당초 강도(江都)에 군병(軍兵)을 갈라 소속시키도록 마련하여 계하(啓下)할 때에 단지 그 원군(元軍)의 실수(實數)만 상고하여 분배해 이속(移屬)하고, 표하군(標下軍)·잡색군(雜色軍)은 거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남은 군사가 여러 고을에 흩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고을의 군병을 두 곳에 분속(分屬)하면 진실로 불편하니, 칭컨대 다시 군안(軍案)을 상고하여 12고을의 원군(元軍)과 잡색군(雜色軍)의 총수[都數]를 참작하여 마련해서 계하(啓下)하여 반포(頒布)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

금이 이를 옹계 여겼다.  
○摠戎使金錫翼狀啓言: “本廳所屬通津等十二邑軍兵, 既已割給江華之外, 尙有餘軍二千四百餘名, 若仍屬本廳, 則兩處句管, 不無其弊, 請以其餘兵, 分屬水原·長湍兩防營.” 備邊司覆奏言: “當初江都割屬軍兵磨鍊啓下時, 只考其元軍實數, 分排移屬, 而標下·雜色軍, 不爲學論, 致有餘軍之散在列邑者. 一邑之軍, 分屬兩處, 誠爲不便, 請更考軍案, 以十二邑元軍及雜色軍都數, 參量磨鍊, 啓下頒布.” 上可之.

<속중실록 15권, 숙종 10년 12월 3일(갑오)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청나라가 질책하자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신하들과 의논하다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좌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이번에 청의 질책하는 말이 나온 이래 연신(筵臣)의 아뢰거나 옥당(玉堂)의 상소(上疏)가 다 같이 이 일로 인해 분발하면서 자강(自強)의 계책을 강구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다스리는 방도는 한가할 적에 정형(政刑)을 밝혀서 큰 나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 곧 예전의 훈계입니다. 다만 이른바 자강(自強)이라는 하라는 것은 인재를 얻고 민심을 결속시키고 무비(武備)를 갖추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 이들의 명령 시행으로 얻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무비로 말한다면 조종조에서 기병(騎兵)과 정병(正兵)을 두던 규정을 지금은 바꾸어 신포(身布)만 내는 군병을 만들었고, 외방의 전졸(戰卒)은 오직 속오군(束伍軍) 뿐인데, 이른바 속오군이란 벌써 급보(給保)하지도 않고 또 급복(給復)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군장(軍裝)을 마련하고 무예를 연습케 하였다가 평시에는 훈련장에 모아서 대기하게 하고, 사변이 있으면 죽엄의 땅으로 몰아 넣고 있으니, 군제의 잘못이 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잘 거행해 보려고 하여도 실상 그 대책이 없습니다. 만약 이를 다 개혁해 보려고 하여도 지금의 인정과 사세로서는 결코 가볍게 고칠 수 없을 것이니, 신이 밤낮으로 생각하고 헤아려 보아도 계획이 서지 않습니다. 효종 때 영장(營將)을 설립한 뒤로 삼남(三南)의 속오군은 다른도에 비하여 조금은 정련(精鍊)되었으나 근래 잇달은 흉년으로 해서 습조(習操)를 정폐하고 거행하지 않은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이 뒤로는 영장(營將)이 순찰을 돌고 병사(兵使)가 습조하는 것을 풍흉(豐凶)을 막론하고 상례대로 거행케 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좌의정의 말은 내가 깊이 유념하리라. 그리고 제신(諸臣)들도 각기 소견을 개진하라.”

하였다. 좌참찬 조사석(趙師錫)이 아뢰기를,

“근래 군정(軍政)의 허술함이 너무 심하여, 중외(中外)가 서로 다르고 본말(本末)이 전도되어 있으니, 꼭 변통의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양국(兩局) 및 총융청(摠戎廳)·수

어청(守禦廳) 등의 군대는 진실로 연하(輦下)를 수호하는 데 쓰는 군대이므로, 꼭 별도로 조련할 필요가 없으나, 외방에 있어서는 위급한 상황의 대처하려면 속오군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군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망치거나 죽은 자의 결원을 보충할 때마다 언제나 양정(良丁)의 부족함을 걱정하게 되니, 비록 착실히 힘써 하려 하여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오군은 병잔(病殘)한 자가 허다하고 또 군장과 복색도 스스로 마련케 하고, 원래 급보나 급복을 주는 규정도 없으니, 속오군의 잔폐함은 본디 괴이쩍을 것이 없습니다. 행여 불행한 일이 있어서 적(賊)의 경보가 갑자기 닥쳤을 경우 남쪽의 적이 장차 곧장 한강에 이른다 해도 막을 길이 없고, 북쪽의 적이 바로 사현(沙峴)에 이르러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니, 어찌 크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오직 서울의 군문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긴급하지 않은 군문을 혁파하여 외방의 군병을 보충하고는 사이(四夷)나 지킨다는 뜻을 약간 살피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이 방금 금위영 제조(禁衛營提調)로 있으면서, 창설한 뒤로 큰 보탬이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혁파하여 속오군을 보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얼굴을 붉히며 말하기를,

“서울의 군문이 너무 많다는 논의는 진작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전후의 능(陵)에 거동할 때 서울에 머무는 군병이 부족하여 수원(水原)의 군병을 징발하기까지 하였으니, 서울 군병의 허술함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제조가 되었으니 당초 설립한 뜻을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도 진작(振作)해 다스리는 방도에 있어서는 한 마디의 말도 개진함이 없이 다만 본영을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만 하니, 군무를 수임하고 있는 자를 모두 혁파하여야 된다고만 한다면, 앞으로 훈련 도감(訓練都監)의 제조도 반드시 혁파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고, 어영청(御營廳)의 제조도 꼭 혁파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말은 너무도 호란(胡亂)하다.”

하였다. 조사석이 황공하여 움츠리고 엎드렸는데, 땀이 나서 등이 젖으니, 여러 신하들이 잇따라 변명하였으나 임금이 오히려 화해되지 않자, 남구만이 아뢰기를,

“진달한 말이 성상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을 받아들이는 도리에 있어서는 이처럼 꺾어서는 아니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신이 그 직임을 띠고 있으면서 직무를 잘 거행할 방도는 생각하지 않고 극력 주장하는 말이 고작 혁파에 있기 때문에, 다만 일의 체모의 부당함을 말하였을 따름이지, 꺾은 것은 아니다.”

하였다. 조사석이 종종걸음으로 나가자 훈련 대장 신여철(申汝哲)이 나아가 아뢰고, 병조로 하여금 삼남(三南)에서 받아들이는 여정(餘丁)의 신포(身布)와 기병·보병의 신포를 각도의 영장(營將)에게 결제해 주어 순시할 때 시재(試才)의 상격(賞格)으로 쓰도록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라고 하였다. 조사석이 군문을 혁파하자고 한 말이 잘못이 아닌데도 임금이 역정을 내며 꾸짖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허견(許堅)·이남(李楠)이 역모를 피할 때 김석주(金錫胄)가 병조 판서로 있었으나, 실상 제어할 만한 병권이 없어서, 금위영을 창설하여 병조 판서로 겸임케 한 것은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임금의 생각은 단지 창설한 본뜻만을 가지고 혁파하지 않으려고 하니, 이는 앞뒤의 시기적인 형세가 같지 않음을 헤아려 보지 않은 소치이다. 여러 신하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러한 말로 임금의 뜻을 깨우쳐 주는 자가 없으니 안타깝다.

○丙戌/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南九萬曰: “今此噴言之來, 筵臣之啓, 玉堂之疏, 皆以因此

奮發, 講究自強之策爲言, 而爲國之道, 當其閑暇之時, 明其政刑, 使大國畏之, 乃是古訓也. 但所謂自強者, 不過得人才結民心修武備而已, 然非一日二日發號施令所可辦得之事也. 至如武備, 則祖宗朝騎正兵之規, 今變爲收布之軍, 外方戰卒則惟束伍, 而所謂束伍, 既不給保, 又不給復, 而使之自備軍裝, 鍊習技藝, 平時則聚待於習操, 有變則歐入於死地, 軍制之失宜至此, 雖欲修明而實無其策, 若欲盡爲變革, 則卽今人情事勢, 決不可輕改, 臣晝思夜度, 不知所以爲計也. 自孝宗朝設立營將之後, 三南束伍, 比他道稍爲精鍊, 而近來連因凶歉, 習操之停廢不行者, 亦已久矣. 今後營將巡歷, 兵使習操, 勿論豐凶, 依例舉行宜矣.” 上曰: “左相之言, 予當體念, 而諸臣亦各陳所見.” 左參贊趙師錫曰: “近來軍政之疎虞莫甚, 中外異制, 本末顛倒, 合有變通之道矣. 今此兩局及摠戎守禦等軍, 固爲輦下爪牙之用, 不必別爲操鍊, 而至於外方, 則緩急所須, 無大於束伍, 第以京軍門太多之故, 逃故充定之時, 每患良丁之不足, 雖欲着力爲之, 末由措手, 故束伍之軍, 病殘者居多, 且軍裝服色, 使之自備而元無給保給復之規, 則束伍之殘弊, 固無怪也. 脫有不幸, 寇警猝至, 則南賊將直抵漢江而無障遏矣, 北賊亦將直到沙峴而無障遏矣. 豈不大可寒心哉? 此亶由京軍門太多之致, 臣意則莫如革罷不緊之軍門, 以補外方軍兵, 略存守在四夷之義爲可也. 臣方待罪禁衛提調, 而自創設之後, 未見其大有所益, 姑爲革罷, 以補束伍之軍似宜矣.” 上厲色曰: “京軍門太多之議, 固已有之, 而前後陵幸時, 留都軍兵, 亦且不足, 至徵水原軍, 則京中軍兵之疎虞, 亦可知矣. 身爲提調, 非不知當初設立之意, 而其於振修之道, 一無所陳, 但言當罷本營, 受軍務者, 皆言當罷, 則其將訓局提調, 必言當罷, 御營提調, 亦必曰當罷, 此言殊極胡亂矣.” 師錫惶悚縮伏, 汗出沾背, 諸臣相繼救解, 而上猶不解. 九萬曰: “所言雖不合聖心, 其在聽納之道, 不當摧折若是也.” 上曰: “身帶其任, 不思舉職之道, 其所力言, 唯在革罷, 故只言事體之不當而已, 非摧折之也.” 師錫趨出. 訓練大將申汝哲進白, 請令兵曹, 除三南所納餘丁布, 騎步布題給各道營將, 以爲巡歷時試才賞格之用. 上曰: “令廟堂稟處.” 師錫《錫》革罷軍門之言, 未爲過也, 而上之深怒呵責, 何也? 當堅柵謀逆之初, 金錫胄雖居本兵, 實無可制之兵權, 創設禁衛, 以本兵兼之, 以爲不虞之備. 上意只以創設之本意, 不欲罷之, 此不量前後時勢之不同也. 諸臣無一言及此, 以悟上意, 惜哉!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5월 3일(병술) 1번째기사>

## 정치/군사

**훈련대장 신여철이 전후 수원부사들이 도망하거나 죽은 군병을 보충하지 않았다고 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宰相)을 인견(引見)했다. (...) 남구만이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사명(李師命)과 수어청(守禦廳) 소속의 양주(楊州) 군병(軍兵)을 총융청(總戎廳)에 옮겨 주기를 청하게 되자, 수어사(守禦使) 이세백(李世白)이 치계(馳啓)하여 잘못된 계책임을 말하였다. 또한 입대(入對)하여 극력 말하였는데도 의도를 이룰 수 없는 것이 많으므로, 말하기를, “남한 산성(南漢山城)은 곧 국가를 보장(保障)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만일 이번에 군사를 갈라내어 보냈다가 혹시라도 사변이 있게 된다면 성첩(城堞)을 수비할 적에 반드시 허술하게 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남구만 등이 이해(利害)에 눈이 어두워 다시 고치기를 꺼려서 들어주지 않았다.

훈련 대장(訓練大將) 신여철(申汝哲)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곧 기보(畿輔)의 중요한 진(鎭)이므로 항상 병마(兵馬) 8천을 두고서 위급할 때에 대비하게 한 것인데, 지금 듣건대 도망하거나 죽은 군병(軍兵)이 매우 많은데도 보충하지 않았다고 하니, 지극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화를 내어 전후(前後)의 부사(府事)들을 모두 잡아다가 추고(推考)하라고 명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사람의 궤액(闕額)도 없었고, 신여철이 문관(文官)

으로서 부사가 된 사람을 비방하여 헐뜯으려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것이므로, 실상을 조사하여 모두 용서받고 석방되었다. (…)

○戊午/引見大臣·備局諸宰, (…)  
九萬與兵曹判書李師命, 請以守禦廳所屬楊州軍兵, 移給于摠戎廳. 守禦使李世白馳啓, 言其非計, 且入對力言, 而不能得譏者多, 以爲南漢是保障重地, 今若移割軍兵, 則脫有事變, 守堞之際, 必有疎虞之患云. 而九萬等眩於利害, 憚於更改而不聽. 訓練大將申汝哲曰: “**水原**乃畿輔重鎮, 常備八千兵馬, 以待緩急, 而今聞軍兵, 逃故甚多, 不爲充補, 事極寒心.” 上怒, 命竝拿推前後府使, 而其實無一闕額. 汝哲欲詆毀文官之爲府使者, 猝發此言, 查究實狀, 竝得原釋. (…)

<속중실록 18권, 숙종 13년 10월 13일(무오) 1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의 예와 같이 광주부에 방어영의 독진을 설치하게 하다

광주부(廣州府)에 수원(水原)의 예(例)와 같이 방어영(防禦營)의 독진(獨鎭)을 설치하고, 그대로 수어 부사(守禦副使)의 칭호를 겸하여 본주(本州)에 사는 수어청(守禦廳)의 군교(軍校)들을 총찰(摠察)하게 하였으며, 방어영 중군(防禦營中軍)으로 하여금 영장(營將)의 직임을 겸찰(兼察)하게 하고, 본부(本府)의 전세(田稅)·대동미(大同米) 1천 석을 5년에 한하여 받은 머물러 두어 군향(軍餉)으로 하고 받은 관수(官需)로 획급(劃給)하며, 또 경내(境內)에 있는 각사(各司)의 노비(奴婢) 30구(口)를 본부에 붙이도록 허가하였는데, 모두 수어사(守禦使) 이우정(李宇鼎)과 부윤(府尹) 김몽양(金夢陽)이 상의하여 조정에 청하고 대신(大臣) 권대운(權大運)이 아뢰어 시행한 것이다. 이에 앞서 병자년·정축년에 호종(扈從)한 무사(武士)로 국(局)을 설치하고 봉료(俸料)를 주며 이름하여 국출신(局出身)이라 하였는데, 그 뒤에 또 훈국(訓局)의 군졸 출신이 입속(入屬)하는 것을 허락하여 액수가 점점 많아졌다. 처음에는 모두 7국(局)이고 국마다 1백 인이었는데, 이따금 꺾원(闕員)이 있기 때문에 채우지 않고 줄여서 3국을 만들고 국마다 각각 40여 인에 그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대신 권대운·훈장(訓將) 이의징(李義徵) 등이 그 일을 아뢰니, 임금이 장차 절로 폐지될 형세이므로 아까운 일이라 하여 3국에 각각 50인을 한하여 시재(試才)해서 입속시키도록 하였다.

[○] 以廣州府設爲防禦營獨鎭, 如**水原**例, 仍兼守禦副使之號. 摠察守禦廳軍校之居本州者, 使防營中軍, 兼察營將之任. 本府田稅大同米千石, 限五年, 一半則留作軍餉, 一半則劃給官需. 且以各司奴婢在境內者三十口, 許屬本府. 皆因守禦使李宇鼎與府尹金夢陽, 相議請于朝, 而大臣權大運啓施之. 先是, 以丙丁扈從武士, 設局付料, 名以局出身. 其後又許訓局軍卒出身之入屬, 額數漸繁. 初凡七局, 每局百人, 間因有闕勿補, 減爲三局, 而每局各止四十餘人. 至是, 大臣權大運·訓將李義徵等, 白其事. 上謂勢將自罷, 事有可惜, 令三局各限五十人, 試才許屬.  
<속중실록 23권, 숙종 17년 10월 16일(정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의 무재 시험의 상격을 호조와 병조가 마련하도록 하다

대신들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했다. 흥년이어서 민폐가 있다 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의 조련(操鍊)을 정지하도록 명하고, 수원(水原)에서의 무재(武才) 시험의 상격(賞格)을 호조(戶曹)와 병조(兵曹)로 하여금 마련하여 나누어 주게 하되, 진휼청(賑恤廳)의 전화(錢貨)는 쓰지 말도록 하였는데, 대신들이 아뢴 말에 따른 것이다. 전(前) 참

관(參判) 최관(崔寬)의 나이가 80이었는데, 우의정 민암(閔黯)이 아뢴 말에 따라 정경(正卿)의 품계(品階)로 올려 우대하도록 명하였다.

○引見大臣備局諸臣，以凶歲有民弊，命寢南漢城操。水原試才賞格令戶。兵曹磨鍊劃給，勿用賑廳錢貨，從大臣言也。前參判崔寬年八十，因右議政閔黯言，命超正卿秩以優之。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 9월 5일(신해)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 부사 이언기가 군역 혁파와 군항미의 이록 등을 상소하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언기(李彦紀)가 상소하여 논하기를, “본진(本鎭)의 속오(東伍)는 대개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이 많은데, 베를 바치는 일을 가장 곤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남한(南漢)과 강도(江都)는 본부(本府)가 구관(句管)하는 이외에는 절대로 경야문(京衙門)에 소속되는 수가 없으니, 이 예대로 하여 군역(軍額) 중에 병조(兵曹)와 모든 군문(軍門) 및 각 관사(官司)에 예속된 사람들을 일체 모두 혁파하여 본진에 전속(戰屬)시키기 바랍니다. 또 속오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갖추도록 하여 전진(戰陣)에서 쓸 수 있게 하고, 군항미(軍餉米)도 상평청(常平廳)에 이록(移錄)하여 조적(糶糶)에 충당한 것을 이번엔 마땅히 돌려주도록 하고, 장사(將士) 중에 구근(久勤)한 사람과 시재(試才)에 입격(入格)하여 의당 옮겨야 할 사람을 또한 남한(南漢)의 준례대로 조용(調用)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上)이 이 상소를 비국(備國)에 내렸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군역을 혁파하여 본진에 전속시키는 일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단지 기병과 보병이 베를 바치는 것만 특별히 절반으로 감하도록 윤허하고, 군항미를 도로 이록하는 것과 장사(將士)들을 조용하는 것도 아울러 시행하도록 했다.

○水原府使李彦紀上疏論：“本鎭東伍，率多騎步兵，納布爲最困，且南漢江都，自本府句管之外，絕無見屬於京衙門者，請用此例，軍額中隸於兵曹諸軍門與各司者，一併革罷，使之專屬本鎭，又就其不入東伍者，使之備馬爲戰陣之用，軍餉米之移錄于當平廳，充諸糶糶者，今宜還之。將士之久勤及試才入格當遷者，亦依南漢例調用。” 上以其疏下于備局。備局言：“罷軍額專屬本鎭，不可輕議，只許騎步兵納布者，特減其半。軍餉還錄及將士調用，竝賜施行。”

<숙종실록 27권, 숙종 20년 7월 26일(임진)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금군에게 시사하고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다

임금이 몸소 후원(後苑)에 나아가 금군(禁軍)에게 시사(試射)하고, 이어 등급을 나누어 시상(施賞)하였는데, 3명에게는 가자(加資)하고, 16인에게는 직부(直赴)하게 하고, 4인에게는 변장(邊將)을 제수하였다. 승정원에서 상격(賞格)이 너무 지나치다 하여 참작하여 조처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말하기를, “금군은 곧 친위병(親衛兵)인데, 잇따른 흉년으로 인하여 군사 정책을 전적으로 폐지했었다. 이번 일은 특별한 시재(試才)로서 위로하여 즐겁게 해주기 위한 처사이며, 비록 강도(江都)·남한(南漢)·수원(水原)의 상격으로 말하더라도 직부(直赴)하게 한 자가 20여 인에까지 이르렀는데, 오랫동안 폐지시켰던 것을 친림(親臨)하여 한 사체가 어찌 여사(御史)가 시재(試才)한 것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朔壬寅/上親臨後苑，試禁軍射藝，仍分等施賞，命三人加資，十六人直赴，四人授邊將。政院以賞格太濫，啓請酌處，上不許曰：“禁軍乃親兵，而連因凶荒，專拋戎政。此所以有別試才慰

悅之擧也. 雖以江都·南漢·水原賞格言之, 直赴或至二十餘人. 久廢之餘, 親臨事體, 豈下於御史試才乎?”

<숙종실록 32권, 숙종 24년 10월 1일(임인)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행 사직 이인엽이 북한 산성의 역사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상소하다

행 사직(行司直) 이인엽(李寅燁)이 상소하기를, “지금 성(城)을 만들기에 적합한 땅을 의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탕춘 대성(蕩春臺城)과 홍복 산성(洪福山城)이라고 말하는데, 형세의 험준함이 어느 곳이 낮고 어느 곳이 못한지를 피차 비교해 헤아리지 않고서, 곧 한 마디 말하는 사이에 갑자기 막대한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자량(資糧)과 기계(器械) 같은 것은 원근을 물론하고 오히려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지만, 성자(城子)에 이르러서는 한 번 쌓은 뒤에 뜻에 따라 옮길 수 있겠습니까? 성을 지키는데 쓰는 것은 샘물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탕춘 대성(蕩春臺城) 앞의 한 굽이의 물은 여름에는 가물고 겨울에는 마르며, 땅이 모두 모래와 돌이므로 비록 흙을 쌓아서 물을 가둔다 하더라도 험사리 이루어지지 못할 듯합니다. 이같은 형세를 마땅히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니, 가볍게 큰 역사를 일으키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약조(約條)의 말은 여러 신하들이 이미 여러 번 진달하였는데, 지금 큰 성을 서울 가까운 땅에 새로 쌓으면 성벽이 가로세로 뻗쳐서 길에 다니는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인데, 저들이 만약 물으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그렇다고 감히 말할 수 없으나, 또한 그럴 염려가 전연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를 피하는 방법은 만전(萬全)을 기하기에 힘써야 하는데, 어찌 혹시라도 무사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북성(北城)의 동쪽 기슭은 바로 서울 내룡(來龍)의 산맥인데 술가(術家)의 말은 비록 깊이 믿을 것이 못되지만, 성조(聖祖)께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설치하여 3백년 동안 아끼고 보호하던 땅을 마땅히 험사리 과사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성터를 닦고 쌓을 즈음에 산을 파고 돌을 깨뜨려서 지맥(地脈)을 파손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만약 뒷날에 작은 불길함이 있으면 근거없는 의론이 떴지어 일어나서 반드시 허물을 이에 돌릴 것인데, 장차 무슨 말로 그 의혹을 풀겠습니까? 아! 해마다 거듭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이 고갈되었는데, 가령 성을 쌓아서 백 가지 이익이 있고 한 가지 해(害)도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시의(時宜)에 아주 어긋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라에 삼공(三空)이 있어 공사(公私)가 텅 비었으니, 그 형세가 또 고을의 흠부(欠賦)를 독촉해 받고 시호(市戶)의 포채(逋債)를 가혹하게 징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신은 이 일은 장차 환난(患難)을 대비하려는 것이지만 난(亂)만 불러 일으킬까 싶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굶주린 백성이 길에 가득하여 구제하는 일이 날로 급한데도, 너무 오래 지연시켜 비난하는 의논이 마구 일어납니다. 대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하여야만 나라가 편안하므로, 옛부터 성철(聖哲)의 교훈은 반드시 백성을 구호하는 일로써 근본을 삼았고, 성지(城池)를 먼저하고 인민을 뒤에 하는 일로써 국가의 깊고 먼 장래의 생각으로 삼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선왕(先王)의 적자(赤子)가 불행히 흉년의 재앙을 만나서 오직 부모가 가까이 있다는 마음으로써 의지하여 먹여 주기를 바라는데, 구휼을 맡은 신하가 이에 ‘둘째 일’ 이라고 말하니, 저 소민(小民)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실망하여 마음이 떠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비록 높은 성벽이 솟아 있더라도 백성이 진심으로 불쫓지 않는다면, 누구와 더불어 지키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진정(賑政)에 전심하여 때에 맞추어 구호하면, 바야흐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까 합니다. 대저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산과 계곡이 험준한 데 있다고 하더라도, 오기(吳起)가 이른



바, ‘군주의 덕에 있고, 지세의 험준함에 있지 않다.’ 라는 것이 진실로 격언(格言)입니다. 오직 성명께서 실덕(實德)으로써 실정(實政)을 행하여, 서민으로 하여금 모두 윗사람을 친하고 장관(長官)을 위해서 죽는 의(義)를 알게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성(城)을 이루어 반석처럼 안전할 것인데, 어찌 ‘어디로 가서 의탁하겠느냐?’ 하는 한탄이 있겠습니까? 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감히 저지(沮止)시키기 위한 의론만이 아닙니다. 일찍이 생각하던대, 천하의 일은 스스로 근본과 말단(末端)이 있는데, 지금 관방(關防)과 군정(軍政)이 허술하여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먼저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신칙하여 수륙(水陸)의 형편을 살펴보고, 각각 믿을 만한 곳을 정하여 많은 병력을 나누어 두고 지방 방비의 형세를 증가시킨다면, 비록 외구(外寇)가 있을지라도 국도(國都)에 접근하는 근심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신이 이른바, 마땅히 먼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를 생각하지 않고서 한 성(城)으로 거두어 들어가는 계획만 힘쓰는데, 진실로 변경 밖에서 적을 방어하지 못하여 안팎 산하(山河)를 모두 적에게 주고 한갓 고단한 군사를 데리고 홀로 외로운 성을 지키면, 비록 반수(般僮)로 하여금 성을 쌓게 하고, 목적(墨翟)으로 하여금 성을 지키게 할지라도 나라가 위망(危亡)하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듣건대, 홍복 산성(洪福山城)은 형세가 북성에 견줄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육로(陸路)에 연하였고 또 남한(南漢)과 기각(掎角)의 형세가 있으니, 마땅히 양주(楊州)로 하여금 부치(府治)를 홍복 산성 안으로 옮기게 하여 세월을 끌면서 차차로 쌓게 할 것입니다. 만일 해방(海防)을 근심한다면 강화(江華)·고동(喬桐)과 영종도(永宗島)·대부도(大阜島) 등 섬에 전함(戰艦)을 더 두고 서로 연락하여 각각 제어하게 하고, 수원(水原) 등의 고을을 좌보(左輔)로 삼고 장단(長湍) 등의 고을을 우보(右輔)로 삼으며, 안흥(安興) 등의 진(鎭)은 남해(南海)를 방비하고 소강(所江) 등의 진은 서해(西海)를 방비하게 하여, 섞여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 성원(聲援)하면 적이 감히 바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다른 도(道)의 육로에도 모두 그렇게 하지 아니함이 없으면, 울타리가 중복되고 산하(山河)의 지세(地勢)가 견고(堅固)하여, 비록 급변을 당하더라도 거의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故) 상신(相臣) 유성룡(柳成龍)이 임진년 초기에 진관(鎭管)의 제도를 회복하기를 청하였는데, 진관은 조종조(祖宗朝)에서 설치한 바로 군정(軍政)의 대강령[大綱]입니다. 한가할 때에 옛 제도를 수복(修復)하여 군사를 훈련하고 군량을 저축하며 험한 요새를 골라 지키면, 이와 같은 일들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허비하는 데 비할 바가 아니며, 한 번 규제(規制)를 정하면 저절로 점차 성취될 수 있습니다. 삼가 원하던대, 묘당(廟堂)에 내려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대신(大臣)의 차자(笥子)에 대한 비답(批答)에 이미 내 뜻을 밝혔다. 이른바, 내룡(來龍)을 파괴한다는 말은 해감(該監)으로 하여금 널리 물어서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

○庚辰/行司直李寅燁上疏曰：今夫宜城之地，議者必曰蕩春·洪福，形便險阻，孰勝孰否，今不較量彼此，乃於片言之頃，遽決莫大之舉。如資糧·器械，無論遠近，猶可以人力搬運，至於城子一築之後，其可隨意推移乎？城守之用，莫過於水泉，而蕩春臺前一曲之水，夏旱冬涸，地皆沙石，雖欲築土儲水，恐未易辦。此等形勢，宜先審視，而徑舉大役，必有後悔。約條之說，諸臣已屢陳，而今創大城於京都密邇之地，雉堞縱橫，行路之所共見。彼如問之，可得無事而已乎？此不敢謂必然，亦不可謂全無此慮。謀國之道，務出萬全，何可冀無事於或然乎？北城東麓，卽京都來龍之脈也，術家之說，雖不足深信，而聖祖肇創，建邦設都，三百年慳護之地。不宜容易鑿破，而城基開築之際，不得不鑿山破石，侵傷地脈。倘於異日，有些休咎，則浮議朋興，必歸咎於此，將何辭而解此惑乎？噫！連歲荐飢，民窮財竭，就令築城，有百利無一害，決知其大咈

於時宜也. 且國有三空, 公私赤立, 其勢又不得不誅求縣邑之欠賦, 刻徵市戶之逋債. 臣恐此舉, 將以備患, 而適所以召亂也. 見方飢民滿路, 賑事日急, 而遷延太久, 訾議橫生. 夫民惟邦本, 本固邦寧. 自古聖哲之訓, 必以恤民爲本, 未聞以先城池後民人, 爲國家深長慮者. 先王赤子, 不幸而罹災凶, 惟以父母之孔邇, 依歸仰哺, 而主賑之臣, 乃以爲第二件事, 彼小民間之, 得無絕望離心乎? 縱令崇墉屹屹, 民不歸心, 誰與守之? 臣謂宜專心於賑政, 及時而救之, 庶收方散之民情也. 大抵固國之道, 雖在山谿之險, 而吳起所謂在德不在險者, 實格言也. 惟在聖明, 以實德行實政, 使民庶皆知有親上死長之義, 則衆心成城, 安如磐石, 夫焉有何歸之歎乎? 臣之爲此說者, 亦非敢徒爲沮止之論也. 嘗以爲天下事, 自有本末, 今關防·軍政之疎虞, 無一可恃, 先飭道臣·帥臣, 審視水陸形便, 各定信地, 分置重兵, 以增藩垣之勢, 則雖有外寇, 亦不至有傳國都之患, 此臣所謂當先者也. 不先慮此, 而規規於斂入一城之計, 誠不能禦之於邊外, 表裏山河, 盡以與敵, 而徒擁單師, 獨守孤城, 則雖使般倭築之, 墨翟守之, 顧何補於危亡乎? 蓋聞洪福形便, 不可與北城比, 既連陸路, 又與南漢爲犄角之勢, 宜令楊州, 移府治於洪福之內, 持以歲月, 旋旋營築. 如以海防爲憂, 則江華·喬桐·永宗·大阜等島, 增置戰艦, 羅絡相連, 使各控制, 水原等邑爲左輔, 長湍等邑爲右輔, 安興等鎮備禦南海, 所江等鎮備禦西海, 參錯相望, 互爲聲援, 則敵不敢徑突. 推之他道陸路, 莫不皆然, 藩籬重複, 襟抱固密, 雖當緩急, 庶有所恃矣. 故相臣柳成龍, 壬辰初請復鎮管之制. 鎮管者, 祖宗朝所設置, 而軍政之大綱也. 及時閑暇, 修復舊制, 鍊兵峙糧, 擇守險要, 此等事件, 非如勞民費財之比, 一定規制, 自可漸就. 伏願下廟堂稟處焉. 答曰: “大臣筭批, 已諭予意, 而所謂來龍之說, 令該監, 廣詢稟處.” (…)  
<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4월 5일(경진)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이정청에서 오군문의 군제를 고치고 수군을 변통하는 절목을 올리다

이정청(整廳)에서 오군문(五軍門)의 군제(軍制)를 고치고 수군(水軍)을 변통하는 절목(節目)을 올렸다. 처음에 임금이 양민의 신역(身役)으로 가장 괴로운 백골징포(白骨徵布)가 지금의 고폐(痼弊)가 된다고 하여 이를 변통하려고 생각하였다. 이에 이정청(整廳)을 설치하여 이유(李濡)에게 그 일을 주관하게 하고 민진후(閔鎭厚)·이인엽(李寅燁)·유득일(兪得一)·유집일(兪集一) 등을 당상(堂上)으로 삼았으며, 낭속(郎屬)들을 차출하여 함께 힘을 합쳐 장구(講究)토록 하였는데, 두 해를 넘겨 비로소 오군문(五軍門)의 군제(軍制)를 고치고 또 양남(兩南)의 수군(水軍)을 변통하는 절목을 올리게 되었다.

총융청(摠戎廳)은 옛 군제(軍制)에 좌영(左營)은 수원(水原), 중영(中營)은 남양(南陽), 우영(右營)은 장단(長湍)으로 이에 속한 군병(軍兵)과 장초(壯抄) 등 제색군(諸色軍)이 통틀어 2만 1천 3백 39인이었는데, 고친 군제는 중영이 3부(部)이고, 좌우영(左右營)이 각 2부(部)로, 매부는 각 2사(司)요, 매사는 각 5초(哨)이고, 매초는 각 1백 25인인데, 제색군(諸色軍)을 그냥 두거나 이동시키며 혹은 가감하여 다시 대오(隊伍)를 만들어 1만 5천 1백 81인을 정리해서 일군(一軍)의 제도를 편성(編成)하였고, 또 그 나머지 제군(諸軍)과 옮겨서 새로 보탠 자를 아울러 군수보(軍需保)라 칭하며, 양인(良人)은 쌀 12두(斗)를 거두고 노군(奴軍)은 6두(斗)를 거두어 군수(軍需)를 보충(補充)했는데 통틀어 2만 3천 1백 57인으로서 구제에 비하여 그 수가 증가되었다. (…)

○整廳進五軍門改軍制及水軍變通節目. 初, 上以良民身役最苦, 白骨徵布, 爲當今痼弊, 思有以變通之命, 設廳整, 而命李濡, 主其事, 以閔鎭厚·李寅燁·兪得一·兪集一等, 爲其堂上, 差出郎屬, 同加講究, 再閱歲, 始上五軍門改軍制及兩南水軍變通節目. 摠戎廳則舊軍制,

左營水原，中營南陽，右營長湍軍及壯抄等諸色軍，通共二萬一千三百三十九人，而改軍制，定以中營三部，左右營各二部，每部各二司，每司各五哨，每哨各一百二十五人，而以諸色軍，存移加減，改其作隊，釐爲一萬五千一百八十一人，以成一軍之制，又以其所餘諸軍及移來新添者，並稱軍需保，良人則收米十二斗，奴軍則六斗，以補軍需，通共二萬三千一百五十七人，比舊制其數有加焉。(…)

<숙종실록 40권, 숙종 30년 12월 28일(갑오)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의 군사를 충용청에 전속시키고, 남북의 성을 다시 쌓게 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수원(水原)은 충용청(摠戎廳)에 소속되었는데 다른 곳에 소속된 자가 많이 있으므로 호령이 한결같지 않아서 쓰기 어렵습니다. 이 뒤로는 수원의 군사를 충용청에 전속(全屬)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성을 쌓는 것은 국가의 대계(大計)인데, 삼군문(三軍門)에서 일을 시작하여 동서는 이미 쌓았으나 남북을 미처 쌓지 못하였으니, 다시 쌓게 하소서.” 하니, 또한 따랐다.

○壬午/御晝講. 特進官閔鎭厚言: “水原屬於摠戎, 而多有屬他岐者, 號令不一, 難以爲用. 此後水原軍, 全屬於摠戎廳爲好.” 上曰: “依爲之.” 又言: “築城爲國家大計. 三軍門始役, 東西則已築, 而南北未及築, 請令更築.” 亦從之.

<숙종실록 44권, 숙종 32년 9월 27일(임오)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사직 이광적이 경기도 안팎의 방비책을 진계하는 상소문

사직(司直) 이광적(李光迪)이 상소(上疏)하여 수만 마디의 말로 도성(都城)을 굳게 지키는 계책(計策)을 극론(極論)하고, 이어 내수(內守)하는 일곱 가지 방책과 외어(外禦)하는 여섯 가지 방책을 진계하였다. (…)

“1. 기내(畿內)의 관애(關隘)를 지켜 도성(都城)을 방위(防衛)하는 일입니다. 국도(國都)의 모화관(慕華館)과 녹반현(綠攀峴)·혜임현(惠任峴)·울치현(蔚峙峴)·비운현(飛雲峴) 등지는 모두 이른바 험저(險阻)한 요해처이니, 마땅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장략(將略)이 있는 무변(武弁)을 가려서 차출하여, 충용청(摠戎廳)에 예속시켜서 관애(關隘)를 나누어 지키게 하고, 각각 단속하는 군사를 주고 파수(把守)하며 제어하여 누르게 하면, 시돌(豕突)해 오는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내(畿內)의 신지(信地)를 정하여 외적(外賊)을 방어하는 일입니다. 송도(松都)의 청석동(靑石洞)과 같은 곳은 바로 이른바 한 사람이 관문(關門)을 지키면 만 사람이 열지 못하는 곳인데, 지금 비록 대흥 산성(大興山城)이 있다 하더라도 청석동과는 거리가 조금 머니, 반드시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하여금 애구(隘口)에 방어(防禦)를 설치하여 적로(賊路)를 지켜 끊게 하고, 대흥 산성과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룬 후에야 적병(賊兵)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장단(長湍)의 임진(臨津)은 마땅히 오른쪽을 방어하는 신지(信地)가 되고, 수원(水原)의 독성(禿城)은 마땅히 왼쪽을 방어하는 신지가 되니, 충용사(摠戎使)가 기보(畿輔)의 중병(重兵)을 통제(統制)하되, 북한산(北漢山) 아래에 병영(兵營)을 머물면서 좌우의 방어사(防禦使)를 절제(節制)하면, 이것이 도성을 방위하는 방책입니다.(…)

○甲子/司直李光迪上疏累萬言，極論固守都城之計，仍陳內守七策，外禦六策。(…)其外禦之策，六條：一曰，守畿內關隘，以捍衛都城也。國都之如慕華館·綠磬·惠任·蔚峙·飛雲峴等處，儘所謂險阻咽喉之地。宜令該曹，擇差有將略武弁，隸於摠戎廳，使之分守關隘，各給團束之軍，以爲把守控扼，則可防豕突之賊也。二曰，定畿內信地，以防禦外寇也。如松都之青石洞，正所謂一夫當關，萬夫莫開。今雖有大興山城，距青石稍遠，必使開城留守，設防隘口，把絕賊路，與大興城(猗)[倚]角而後，可禦賊兵也。且長湍之臨津，當爲右防禦信地，水原之禿城，當爲左防禦信地，而摠戎使統畿輔重兵，留營北漢之下，節制左右防禦使，此其捍衛都城之策也。(…)

<숙종실록 49권, 숙종 36년 10월 3일(갑자)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호조 판서 김우항이 수원처럼 회양에 독진을 설치할 것을 논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김우항(金宇杭)이 상소(上疏)하기를, (…) 또 말하기를, “회양(淮陽)은 철령(鐵嶺)과 추령(楸嶺)의 아래에 끼여 있어서, 진실로 국가(國家)의 관방(關防)입니다. 마땅히 방영(防營)을 설치하고, 특별히 직질(職秩)이 높은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을 가려서 부사(府使)를 엇갈려 차임(差任)하여, 춘천(春川)과 더불어 좌우(左右)의 방어사(防禦使)로 삼고, 영동(嶺東)과 영서(嶺西) 각 고을의 군무(軍務)를 나누어 주어 관할(管轄)하게 하되, 경내(境內)의 군병을 본읍(本邑)에 전속(專屬)시켜서 독진(獨鎭)을 삼아 수원(水原)의 제도와 같게 하면, 거의 차단(遮斷)하여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 임금이 답하기를, “누누이 조목(條目)으로 진계(陳啓)한 바가 진실로 시국(時局)을 근심하는 정성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상확(商確)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으나, 마침내 정지하고 거행하지 아니하였다.

○戶曹判書金宇杭上疏曰：(…) 又曰：淮陽，介在鐵·楸兩嶺之下，誠國家之關防也。宜設置防營，另擇秩高文武，交差府使，與春川，爲左右防禦使，嶺東·西各邑軍務，分授管轄，境內軍兵，專屬本邑，(非)[作]爲獨鎭，如水原之制，則庶可以遮遏捍蔽矣。(…) 上答曰：“縷縷條陳，亶出憂時之忱，宜令廟堂，商確稟處。” 後，竟寢不行。

<숙종실록 49권, 숙종 36년 11월 29일(기미)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에 안부한 각 아문의 양역자 3천여 명의 군포 수봉을 변통하다

처음에 이인엽(李寅燁)이 연중(筵中)에서 아뢰어, 수원(水原)에 안부(案付)한 각 아문(衙門)의 양역자(良役者) 3천여 명을 특별히 허락하여 본부(本府)에 획정(劃定) 예속시켜서 총융청(摠戎廳)의 수미졸(收米卒)로 삼도록 하였는데, 윤취상(尹就商)이 부사(府使)가 되어 치계(馳啓)하기를,

“허다한 양정(良丁)이 단지 역미(役米)만을 봉상(捧上)하는 것은 군정(軍丁)에 이로운 것이 없으니, 그 가운데서 장실(壯實)한 자를 가려서 숙오군(束伍軍)에 충정(充定)하고, 겸역(兼役)하는 예(例)에 의하여 단지 6두미(斗米)만을 수봉(收捧)하게 하고, 늙고 허약한 사람은 12두(斗)를 수봉토록 하소서.”

하였는데, 미처 시행(施行)하지 못한 채 체차(遞差)되었다. 그 뒤에 본부(本府)에서 그대로 12두(斗)를 3천 명에게서 다 수봉(收捧)한 까닭에 윤취상이 상소하여 전일의 소견(所見)을 거듭 자세히 아뢰기를,

“당초에 장문(狀聞)한 가운데에, 장실(壯實)한 자는 속오군(束伍軍)을 겸정(兼定)하고, 겸역(兼役)하는 예에 의하여 단지 6두만을 수봉(收捧)케 한 것은, 진실로 속오군을 겸하게 되면 이는 전졸(戰卒)인 셈이나, 평온하고 한가한 때에는 반드시 그들의 신역(身役)을 덜어서 그 환심(歡心)을 얻어야만 비로소 발길을 돌려 돌아서지 않는 의리를 책문(責問)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늙고 허약하여 이미 신역(身役)을 겸하지 않는 자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쌀[米]을 봉납(捧納)하는 것만을 책임지었는데, 이것은 신이 구별(區別)을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전속(專屬)시킨 초기에 즉시 구별하여 잘 처리하지 못하고, 이제 바로 경중(輕重)을 구별하려고 하면 새로운 원망이 또 장차 일어날 것입니다. 차라리 신역(身役)을 겸하고 겸하지 않음을 논하지 말고 모두 6두를 덜어주고는 이내 본부(本府)로 하여금 속오군 가운데서 사천(私賤)과 노약(老弱)한 무리를 전부 도태(淘汰)해 버리고, 양정(良丁)으로서 장실(壯實)한 자를 가려서 보충하면 군정(軍政)에도 허술함이 없고 민역(民役)도 또한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庚申/初, 李寅燁筵白, 以水原案付各衙門良役者三千餘名, 特許劃屬本府, 以爲摠戎廳收米卒, 尹就商爲府使馳啓以爲: “許多良丁, 只捧役米, 無益軍丁. 擇其中壯實者, 充定束伍, 依兼役例, 只收六斗米, 老羸則收十二斗.” 未及行而遞. 其後本府, 乃盡收十二斗於三千名, 故就商疏申前見曰: 當初狀聞中壯實者, 兼定束伍, 以兼役例, 只收六斗者, 誠以兼束伍, 自是戰卒, 在平閑之時, 必減身役, 得其歡心, 方可責不旋踵之義也. 至於老羸, 既不兼役者, 則專責納米, 此臣所以欲爲區別也. 專屬之初, 既不卽區別善處, 今乃欲區別輕重, 則新怨又將起矣. 毋寧勿論兼役與否, 而竝減六斗, 仍令本府, 悉汰束伍中私賤老弱之類, 擇此良丁壯實者而填補, 則軍政無疎虞, 而民役亦緩歇矣. 上令廟堂稟處.

<숙종실록 50권, 숙종 37년 6월 2일(경신) 1번째기사>

### 정치/군사

**무신 최진한이 수원처럼 장단에 진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무신(武臣) 최진한(崔鎭漢)이 말하기를, “수원(水原)과 장단(長湍)은 기보(畿輔)의 좌우 방영(防營)이 되는데, 장단은 더욱 요해처(要害處)가 되니, 마땅히 수원을 본떠 독진(獨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御晝講. 武臣崔鎭漢言: “水原·長湍, 爲畿輔左右防營, 而長湍尤爲要害. 宜倣水原, 設爲獨鎭.” 上命廟堂稟處.

<숙종실록 51권, 숙종 38년 4월 17일(기사) 3번째기사>

### 정치/군사

**사간 권수가 양주, 광주, 수원, 장단을 거진으로 하면 도성이 웅장해질 것이라고 하다**

사간(司諫) 권수(權水)가 시골에서 진소(陳疏)하였다. (...) 또 북한 산성(北漢山城)이 위급한 때 믿기 어려움과 중성(中城)을 다시 쌓지 말아야 할 것을 논하고, 또 도성(都城)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음을 논하되, 양주(楊州)·광주(廣州)·수원(水原)·장단(長湍)이 네 거진(巨鎭)이 되어 병갑(兵甲)을 수선(修繕)하고 양식을 저축하여 홀연(屹然)히 보거(輔車)의 형세(形勢)가 있다면 도성이 웅장(雄壯)해질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절로 웅장해질 것임을 말하고, 이어 광주성의 수어(守禦)의 일을 대략 끝냈으니 세 고을은 우선 흠으로 쌓고 적당한 사람을 얻어 전적으로 그 책임을 맡길 것을 말하였으며, 말미에 목차(穆差)의 경계를 정

하는 일에 대하여 응변(應變)하는 방략(方略)을 미리 강정(講定)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하였다. (…)

○司諫權守在鄉陳疏，(…) 又論北漢之緩急難恃，而中城之不可更築，且論都城不可不守，而楊·廣·水原·長湍，爲四巨鎮，繕甲峙糧，屹有輔車之勢，則都城不期壯，而自壯，仍言廣州城守粗完，三邑姑先土築，得其人而專畀其責，末言穆差定界事，應變方略，不可不預爲講定，(…)

<숙종실록 51권, 숙종 38년 5월 25일(정미)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판결사 이정신의 금정 산성의 이해 득실에 관한 상소문

판결사(判決事) 이정신(李正臣)이 금정 산성(金井山城)의 이해(利害)를 상소하여 논하며 첫머리에 그 병폐를 말하고, 또 말하기를, “(…) 규봉(窺峰)이 우뚝 솟은 곳에 이르러서는 둔대(墩臺)를 설치하면 거의 적을 막는 거점(據占)이 될 것이며, 파수하는 군병(軍兵)에 이르러서는 동래(東萊)·양산(梁山)·기장(機張) 세 고을에 있는 경외(京外) 각 아문의 소속 군사를 한결같이 모두 수원(水原)·광주(廣州)의 독진(獨鎭)의 예와 같이 산성에 획급하고, 또 성 안 두 사찰의 승려(僧侶)가 1백여 명이 되고, 범황사(梵皇寺) 승려 또한 3백 명에 밀돌지 않는 숫자이니, 매우 짧은 시간에 성첩(城堞)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세 고을 각 사찰의 승도(僧徒)를 합계하면 반드시 수천 여 명에 밀돌지 않을 것이니, 평시에는 다만 대오(隊伍)를 만들어 성안(成案)하고 사변이 있을 때는 모아서 사용하면 족히 첨병(添兵)하는데 일조(一助)가 될 것입니다. 또 성의 서문(西門) 밖은 바로 양산 땅인데 감동창(甘同倉)이 그 곳에 있고, 창 밑에 사는 사람이 3백여 호(戶)나 되게 많으니, 만약 이곳에다 한 진(鎭)을 설치하고 그 창곡(倉穀) 및 민호(民戶)를 새 진에다 할당하여 소속시키며, 또 가까운 진의 둔전(屯田)을 주어 백성을 모집하여 들어가 경작하게 하되, 사변이 없을 때에는 농토를 따라 농사를 짓고 사변이 있으면 강(江)을 끊어 대항해 지키도록 하면, 뜻밖의 일에 대한 방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소를 내리니,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여 승도로 대오(隊伍)를 만드는 일 및 창의(倡義)한 사람의 후손을 조용하는 두 가지 일을 윤택하였다.

○判決事李正臣，疏論金井山城利害，首言其疵病，又曰：(…) 至於窺峰所峙，設置墩臺，庶防賊之據占矣。至於把守軍兵，東萊·梁山·機張三邑所在，京外各衙門所屬之軍，一併劃給山城，有如水原·廣州獨鎭之例，且城內兩寺僧，爲百餘名，梵皇寺緇徒，亦不減三百之數，呼吸之間，可以守堞。且三邑各寺僧徒，合而計之，則必不下數千餘名，平時但令作隊成案，有事之時，收合使用，則足爲添兵之一助也。(…) 又請壬辰倡義後裔中，有才藝者，各別錄用，其他武士，亦依西北例，設科調用，以鼓士氣。疏下備局，覆奏，許僧徒作隊及倡義後裔調用兩事。

<숙종실록 54권, 숙종 39년 8월 11일(병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임금이 사은사 일행을 인견하고 청국 사정을 묻다

사은사(謝恩使) 겸동지사(兼冬至使) 여산군(礪山君) 방(枋)·이대성(李大成)과 서장관(書狀官) 권엽(權焜) 등이 돌아와 수원(水原)에서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여 청국(淸國)의 사정을 물었다. (…)

○謝恩兼冬至使礪山君枋·李大成·書狀官權焜等歸，復命於水原，上引見，問淸國事情。(…)

<숙종실록 59권, 숙종 43년 4월 1일(을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이건명이 수원은 훈련도감처럼 구임시켜 승천시키는 정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다

세자(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 “수원(水原)은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으로서, 군병(軍兵)이 매우 많아서 도감(都監)과 다름이 없으므로, 구임(久任)시켜 승천(陞遷)시키는 것이 이미 정식(定式)이 있는데도, 병조(兵曹)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까닭에 장관(將官)의 직임(職任)을 양반(兩班)들이 모두 싫어하여 군정(軍政)이 점차로 소우(疏虞)해지게 되었습니다. 광주(廣州)는 장관(將官)과 교련관(教鍊官)이 각각 한 사람씩인데 차례로 승진시켜 보임(輔任)하고, 수어청(守禦廳)에서는 달수에 준거(準據)하여 조용(調用)하므로, 광주의 장교(將校)들은 흥기(興起)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수원(水原)은 바로 총융청(摠戎廳)의 소속(所屬)이니, 광주의 예에 의거하여 장관(將官)과 교련관(教鍊官)을 각각 1인씩 계사(計仕)하여 총융청에 승진시켜 보임(輔任)해서 천전(遷轉)할 수 있게 한다면, 반드시 격려(激勵)하여 권장(勸獎)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세자가 이를 허락하였다. (...)

○丙午/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 右議政李健命曰: “水原, 畿輔重鎭, 軍兵甚多, 無異都監, 故久勤陞遷, 既有定式, 而兵曹不用, 故將官之任, 兩班皆厭避, 軍政漸至疎虞矣. 廣州則將官·教鍊官各一人, 以次陞補, 守禦廳準朔調用, 故廣州將校, 多興起者云. 水原, 乃摠戎廳屬也. 依廣州例, 將官·教鍊官各一人, 計仕陞補於摠戎廳, 俾得遷轉, 則必有激勵之效矣.” 世子許之. (...)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6월 5일(병오) 1번째기사>

### 정치/군사

정언 유복명이 수원 군병의 무예 강습과 먹이는 일 등에 대해 논하다

정언(正言) 유복명(柳復明)이 기막(畿幕)으로부터 조정에 돌아와서 상서(上書)하여 기읍(畿邑)의 폐막(弊瘼)을 논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 총융사(摠戎使)가 기보(畿輔)에 나가 순행하는 것은 조금도 보탬이 없으며, 서울에서부터 데리고 가는 80명의 추졸(騶卒)이 열읍(列邑)을 두루 돌아다닌다면 그들을 접대하는 폐단은 잔읍(殘邑)에서 더욱 지탱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수원(水原)에서 시상(試賞)하고 호궤(犒饋)하는 즈음에 만명에 가까운 군병(軍兵)들이 짧은 시간 동안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충대충 스쳐 지나가니, 무슨 연습하는 이익이 있겠습니까? 수원과 장단(長湍)은 본래 좌우(左右) 방영(防營)이니, 해마다 양진(兩鎭)으로 하여금 봄과 가을에 시상하도록 하여 조용히 무예를 강습한다면 재주를 시험하고 군사를 먹이는 일이 반드시 이와 같이 구간(苟間)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수(摠帥)의 순행을 만일 완전히 폐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3년에 한 번 순행하게 하되, 그 추졸을 감해야 한다는 뜻으로 신칙(申飭)을 더함이 마땅합니다. 경기(京畿)의 수재(守宰)가 도하(都下)에 들어올 때 영문(營門)에서 말미를 받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왕이 매우 잦아서 민폐(民弊)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경기의 원에게 휴가를 주어서 다니도록 하고 임의로 왕래하지 못하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라의 기강이 아주 크게 느슨해지고 형법(刑法)이 더욱 무너져 요사이 중인(中人)·하인(下人)의 무리로서 죄를 지어 유배(流配)된 자가 사사로이 본 고을의 원에게 부탁하여 곧바로 그 집으로 돌아와 해가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간혹 다시 배소(配所)에 가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적발하여 중죄(重罪)로 추궁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세자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壬申/正言柳復明, 自畿幕還朝, 上書論畿邑弊瘼. 略曰:

(…) 摠戎使出巡畿輔, 毫無所補. 自京所帶八十驍卒, 遍歷列邑, 廚供之弊, 殘邑尤所難支. 其在水原, 試賞犒饋之際, 近萬軍兵, 短晷分餉, 草草行過, 有何鍊習之益乎? 水原·長湍, 自是左右防營, 每年使兩鎮, 春秋試賞. 從容講武, 則試才餉士, 必不如是之苟簡, 而摠帥巡行, 如難全廢, 則使之三年一出, 而減其驍卒之意, 宜加申飭矣. 京畿守宰, 入來都下, 無營門受由之規, 故來往甚數, 民弊可慮. 從今畿倅, 宜令給暇而行, 毋得任意往來也. 國綱大弛, 刑法益壞, 近者中下之輩, 以罪被配者, 私囑本倅, 直還其家, 至於經歲不還, 甚或不赴者有之. 宜令道臣, 摘發重究焉.

世子令廟堂稟處.

<숙종실록 65권, 숙종 46년 1월 5일(임신)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전감사 권업이 평안도 용천과 만부에 수원과 광주의 예처럼 독진을 만들자고 청하다

평안도(平安道)의 군제(軍制)를 구식(舊式)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전(前) 감사(監司) 권업(權業)이 조가(朝家)에 장품(狀稟)하여 본도(本道)의 군제를 변통(變通)하려 했는데 미처 시조(施措)하기 전에 갈렸으므로, 이진검(李眞儉)이 교대해 부임하여 다시 옛날대로 할 것을 청했던 것이다. 대개 이르기를, (…) 또 말하기를, “용천(龍川)과 만부(灣府)는 순치(唇齒)의 관계로서 관방(關防)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곳입니다. 처음에 별영(別營)을 설치한 것은 그 뜻이 있었던 것이니, 지금 지킬 만한 변경(邊境)의 땅을 버리고 물러나 내지(內地)에 이속(移屬)시킨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옛 그대로 두고 과하지 말며 난(亂)에 임하면 그대로 지켜 병영(兵營)으로 달려가지 말게 하는 것으로 정식(定式)하게 하소서. 그리고 덕천(德川)은 역로(歷路)의 요해처(要害處)에 자리잡고 있으니, 계속하여 영장(營將)을 두고 영변(寧邊)과 은산(殷山)과 맹산(孟山)으로 하여금 전과 같이 부속(附屬)시켜 방수(防守)하게 하소서. 또 간로(間路)인 선천(宣川)은 수륙(水陸)의 인후(咽喉)로서 좌현(左峴)의 검성(劍城)이 뒤에 있고 가도(槎島)와 신미도(身彌島)가 앞에 벌려져 있어서, 의주(義州)와 용천이 혹 수비에 실패할 경우 선천이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입니다. 그 형승(形勝)이 차단하기에 족할 것이므로 작년부터 이미 육군 방어사(陸軍防禦使)로 바꾸어 정하였으니, 광주(廣州)와 수원(水原)의 예에 의하여 독진(獨鎭)으로 만들고, 온 고을의 군졸(軍卒)을 모두 다 여기에 예속시키며, 빨리 영장(營將)을 파하여 그 지휘(指揮)와 관할(管轄)을 전담하게 한다면, 후일에 힘을 얻는 곳이 여기보다 나를 데가 없을 것입니다. 수로(水路)의 경우 선사(宣沙)에 첨사(僉使)를 설치한 것은 오로지 수로를 위한 것이었는데, 선사의 수방(水防)을 파한 뒤로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삼화(三和)의 방병선(防兵船)을 선사에 환속(還屬)시키고 수군(水軍)의 경우 분속(分屬)시킨 것을 군관(軍官)에게 획급(劃給)하여 모두 그대로 예속시켜, 영종(永宗)·소강(所江)의 예에 의하여 품질(品秩)이 높은 무신(武臣)을 각각 따로 가려서 보내게 하소서.” 하였다.

○命平安道軍制, 仍舊式施行. 前監司權業狀稟, 朝家變通本道軍制, 未及施措而遞, 李眞儉代之, 復請仍舊. 蓋以爲: (…) 又言: 龍川與灣府爲唇齒, 關防最緊. 初設別營, 意有所在, 今不當捨邊境可守之地, 退而移屬於內地. 仍舊勿罷, 臨亂仍守, 勿赴兵營事定式, 而德川, 處於歷



路要害，仍置營將，使寧邊·殷山·孟山，依前附屬，防守間路。宣川，則水陸咽喉，左峴·劍城在後，椴島·身彌列前，義州·龍川，或值失守，則宣川爲次，而其形勝，足以遮遏。自昨年既已換定陸軍防禦使，依廣州·水原例，作爲獨鎮，一州軍卒，皆屬於此，亟罷營將，俾專節制，則他日得力，毋過於此。水路則設置宣沙僉使，專爲水路，而宣沙水防罷後，無所憑依。三和之防兵船，還屬宣沙，水軍則分屬者，劃給軍官，竝爲仍屬，依永宗·所江例，秩高武臣，各別擇差。”(…)

<경종실록 11권, 경종 3년 2월 8일(무오) 4번째기사>

## 정치/군사

**대사헌 이명현이 수원의 군무가 취약하니 총융사에게 수원부사를 겸임하게 하자고 하다**

대사헌 이명현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 그리고 수어사(守禦使)를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주장(主將)으로 삼고 있으므로 남한산성의 무비(武備)는 모두 주장의 군영에서 주관하고 있으니, 광주 부윤(廣州府尹)은 실제로 빈 성(城)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군영과 부윤은 서로 상관(相關)할 수 없으므로 비록 파손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체 버려두고 있습니다. 지금 수어사에게 부윤을 겸임(兼任)시켜 남한 산성을 지키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게 하면 전과 같은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水原)의 7천 병마(兵馬)는 본래 날래고 사납다고 하니 급할 때에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본부(本府)의 문과(文窠)가 자주 바뀌어서 군무(軍務)에 매우 유의(留意)하지 않으므로 군사 제도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총융사(摠戎使)에게 수원 부사(水原府使)를 겸임(兼任)시켜서 남한 산성의 제도와 같게 하고 무신(武臣)을 차정(差定)해서 위임하여 성효(成效)를 요구하면 용정(戎政)이 반드시 전보다 배나 잘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군문(軍門)을 만약 혁파(革罷)한다면 군액(軍額)이 점점 줄어들어서 양정(良丁)이 저절로 넉넉해질 것이니, 어찌 경비가 부족한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원컨대, 널리 순문(詢問)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大司憲李明彦上疏略曰：(…) 至於守禦，爲南漢主將，故南漢武備，皆自主管，而廣州府尹，實守空城，營府不能相關，雖有破缺，一切拋置。今以守禦使兼府尹，任南漢治民事，則可無如前之弊。水原七千兵馬，素號精悍，緩急可以得力，而本府文窠數遞，不甚留意軍務，故軍制未免疎虞云。以摠戎使兼水原府使，又如南漢之制，差以武臣，委任責成，則戎政克詰，必倍於前。三軍門若罷，則兵額漸少，良丁自裕，何患乎經費之不足也？願博詢施行焉。(…)

<영조실록 1권, 영조 즉위년 9월 24일(갑자) 7번째기사>

## 정치/군사

**승지 김동필이 총융청을 혁파하고 수원에 소속시켜 경기병사로 승격시키자고 하다**

임금이 야대(夜對)를 행하였다. 승지(承旨) 김동필(金東弼)이 말하기를, “양역을 변통해서 한다는 논의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대행 대왕(大行大王) 때에 양역청(良役廳)을 설치해 놓고 강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인심(人心)과 세도(世道)가 더욱 낮아지는 때를 당하여, 이른바 크게 변통시키는 일은 가볍게 의논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데,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 두 영(營)의 소속이 모두 향군(鄉軍)이므로, 더할 수 없이 허술합니다. 서울에 있는 색목(色目)은 다만 늪료(廩料)만 허비할 뿐이고, 본래 숙위(宿衛)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 수어청(守禦廳)을 혁파(革罷)하여 남한 산성(南漢山城)으로 돌려서 유수(留守)로 승격시키고, 총융청(摠戎廳)을 혁파하여 수원(水原)에 소속시켜 경기 병사(京畿兵使)로 승격시키되 문관(文官)·무관(武官)을 교차(交

差)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그리고 그 제도를 증가하여 군병(軍兵)을 관속(管束)하게 하  
 되 허비하는 능료를 연출(捐出)하고 긴요하지 않은 색목(色目)을 혁파하여 필수(疋數)를 감  
 소시킨 양역(良役)의 수용(需用)에 보충하게 한다면, 일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묘당(廟堂)에서 널리 상의하여 장점을 따라 변통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진달(陳達)한 것은 매우 좋은 말이다. 양역청(良役廳)에 본부해서 상화  
 하여 변통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上行夜對. 承旨金東弼曰: “良役變通之論, 其來已久. 大行朝設廳講究, 而迄今未得定算.  
 當此人心世道益下之日, 所謂大變通之事, 有難輕議, 而守禦·摠戎兩營所屬, 皆是鄉軍, 踈虞  
 莫甚. 在京色目, 徒費廩料, 元無宿衛之實. 今若罷守禦廳, 歸之南漢, 陞爲留守, 罷摠戎廳,  
 屬之水原, 陞爲京畿兵使, 作爲文武交差之窠, 增其制置, 管束軍兵, 而捐出虛費之廩料, 革罷  
 不緊之色目, 以補良役減疋之需用, 事甚便宜. 惟在廟堂, 博採商議, 從長變通也.” 上曰:  
 “所達儘好. 分付良役廳, 商確變通可也.”

<영조실록 1권, 영조 즉위년 10월 9일(기묘)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이삼과 김중기가 수원의 군병이 정예롭다고 한 것은 무신난과 관련있다

좌의정(左議政) 조태억(趙泰億)이 아뢰기를, “평안 감사(平安監司) 홍석보(洪錫輔)가 장계  
 (狀啓)를 올려 본영(本營) 군병들의 번상(番上)을 정지시켜 줄 것을 청하였는데, 연사(年  
 事)가 흉년이 들었으니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하고, 훈련 대장(訓練大將) 이삼(李森)은  
 아뢰기를, “병영(兵營)은 적로(賊路)의 처음 들어오는 길이므로 군대를 정비하는 정무(政  
 務)를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번상(番上)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영에는 번상을 정지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이삼이 또 아뢰기를, “순회 점검(點檢)할 적에 각 고을에서 돌러가면서 기계(器械)를 빌어  
 다 쓰고 군병을 대신 점고(點考)받았다가 순회 점검한 후에는 전적으로 방임한 채 포기하여  
 버립니다. 서관(西關)은 다른 도(道)와 다르니, 병사(兵使)가 추졸(驕卒)을 간편하게 하여  
 수시로 적간(摘奸)한다면, 각 고을에서 어느날 당도할지 모르게 되어 반드시 모두 각별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에 두루 순회 점열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신이  
 일찍이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변(武弁)이  
 모두 훈장(訓將)의 말과 같이 한다면 좋겠다. 제도(諸道)에 신칙하라.”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이날 이삼(李森)과 김중기(金重器)가 수원(水原)의 군병들이 정예롭다는  
 것을 대단히 말하였으나, 사람들이 모두 데면데면하게 듣고 있었다. 그 뒤 이사성(李思晟)  
 이 과연 평안도(平安道)의 병제(兵制)를 고쳐 은밀히 불궤(不軌)를 도모하였으나, 일이 발  
 각되어 복주(伏誅)되었다. 김중기가 무신년 변란이 발생한 처음에 남태징(南泰徵)을 극력  
 추천하여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으려 했으나, 조문명(趙文命)의 무리가 그것이 이상하다  
 는 것을 깨닫고 이에 송진명(宋眞明)을 부사로 삼았는데, 김중기가 소장(疏章)을 올려가면  
 서까지 극력 쟁론(爭論)하였지만 끝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오래지 않아 김중기의 이  
 름이 역적의 공초(供招)에서 나왔는데, 그제서야 그날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이 뜻이 있어  
 서 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左議政趙泰億奏曰: “平安監司洪錫輔, 狀請本營軍兵之停番矣. 年事失稔, 宜許之也.” 訓  
 鍊大將李森曰: “兵營則賊路初程. 詰戎之政, 不可少忽, 不可除番也.” 上曰: “兵營則勿爲  
 停番.” 森又曰: “巡點之時, 各邑轉借器械, 代點軍兵, 巡點之後, 則一任拋棄. 西關異於他

道，兵使宜簡其驍卒，無時摘奸，則各邑不知某日當到，必皆動念，有勝於一時遍巡，故臣曾有狀請矣。” 上曰：“武弁皆如訓將之言則好矣。申飭諸道。” 【史臣曰：是日，森與重器，盛言水原軍兵之精銳，而人皆泛聽。厥後思晟，果變平安兵制，陰圖不軌，而事覺伏誅。重器於戊申變初，力薦泰徵爲水原府使，而趙文命輩，覺其異，乃以宋寅明守之，則重器至於上疏力爭，而終不得矣。未久重器之名，出於賊招，始知伊日筵奏，有意而發也。”】

<영조실록 13권, 영조 3년 9월 12일(을축) 8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의 관무재를 명년 봄에 거행할 것을 명하다

수원(水原)의 관무재(觀武才)를 내년 봄으로 물려서 거행하도록 명했으나, 이는 좌의정 조태역의 말을 따른 것이다.

○命水原觀武才，退行於明春。從左議政趙泰億之言也。

<영조실록 13권, 영조 3년 10월 20일(임인) 7번째기사>

#### 정치/군사

무신난에 대해 송인명이 박찬신을 수원에 보내 적을 토벌하게 하다

(…)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말하기를, “이럴 때 성상께서 만약 경동하면 중심(衆心)을 진정시켜 안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진정시키고자 하는데, 경이 진달한 유비 무환(有備無患)의 설을 내가 이제야 탄복하겠으니, 경은 주밀(周密)하도다.” 하였다. 드디어 여러 장신(將臣)을 불러 의논하라 명하고는 총융사(摠戎使) 김중기(金重器)로 순토사(巡討使)를 겸임케 하고 박찬신(朴贊新)을 중군(中軍)으로 차출하여 출정(出征)하게 하였다. 김중기가 청하기를, “5도(道)에서 징병(徵兵)하여 그들이 이르기를 기다려 스스로 거느리고 동성(東城) 밖에 진을 친 뒤 먼저 박찬신을 보내 금위군(禁衛軍)을 거느리고 수원(水原)으로 가 본진(本鎭)의 군사를 거두어 돌아와 강상(江上)에 진을 쳐 적을 방어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대사간 송인명이 그것이 계책이 못됨을 말하여 드디어 제도(諸道)의 징병을 중지하고, 단지 기읍(畿邑)의 군사만 징발하였다. 또 청하기를, “급히 박찬신을 보내 수원에 진을 치고 적을 토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박찬신을 불러 위로하고 타일러 보냈다. 또 수어 종사관(守禦從事官) 이수익(李壽益)을 보내 광주 부윤(廣州府尹) 김상규(金尙奎)와 함께 군사를 징발해 남한 산성(南漢山城)을 지키게 하고, 조엄(趙儼)을 관성장(管城將)으로 삼아 북한 산성(北漢山城)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도성문(都城門)은 닫고 단지 흥인문(興仁門)·승례문(崇禮門) 및 서소문(西小門)만 열게 하라고 명하였다.

○(…) 領議政李光佐言：“此時，上若驚動，衆心無以鎮安。” 上曰：“予欲鎮定，而卿陳有備無患之說，予今始服，卿周密也。” 遂命招諸將臣議之，以摠戎使金重器兼巡討使，朴贊新差中軍，命出征。重器請徵兵五道，待其至，自將陣東城外，先遣贊新，率禁衛軍，往水原，收本鎭兵，還陣江上，以禦賊。大司諫宋寅明言其非計，遂寢諸道徵兵，只發畿邑兵。且請急遣贊新，留鎭水原討賊。上召贊新，慰諭遣之。又遣守禦從事官李壽益，同廣州府尹金尙奎發兵守南漢，以趙儼爲管城將，守北漢。命閉都城門，只開興仁·崇禮門及西小門。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16일(병인)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오명항이 조현명을 종사관으로 삼아 수원부터 데려가겠다고 하다

병조 판서 오명항(吳命恒)을 사로 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토멸하게 하였다. 오명항이 사패(辭陞)하니, 임금이 오명항에게 유시하는 글을 입으로 부르기를, “이번 적도가 소추(小醜)에 불과한데도 승평(昇平)한 지 오래여서 와전(訛傳)하는 말에 잘 유혹되어 인심이 안정되지 않고 있으니, 진무해 안정시키는 도리를 몸소 분발해 면려토록 하라. 그러나 이런 요악한 무리는 빨리 토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수원(水原)은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이니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총융사(摠戎使) 김중기(金重器)는 단지 본장(本將)의 칭호만을 띠고 세 진(鎭)의 군병을 통솔할 것이며, 수원 부사 송진명(宋眞明)을 부장(副將)으로 삼아 본부(本府)에 남아 진압토록 하며, 병조 판서 오명항은 이내 금영(禁營)을 겸임케 하여 사로 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로 삼고 순토 중군(巡討中軍) 박찬신(朴贊新)을 그대로 도순무 중군(都巡撫中軍)으로 차임하며, 영남 어사(嶺南御史) 부교리(副校理) 박문수(朴文秀)로 종사관을 겸임케 하니, 이내 즉시 내려가 이 소추들을 물리쳐 평정하고 백성을 안무(安撫)토록 하라.”

하였다. 인하여 갑주(甲冑)와 상방검(尙方劍)을 하사하고 유시하기를,

“중군(中軍)·감병사(監兵使) 이하 여러 장령(將領)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로써 종사(從事)하라.” 하고, 박문수에게 태복마(太僕馬)를 주고 선운(宣醞)하여 보내니, 밤이 이미 4경이 되었다. 그 뒤 오명항이 또 계청하기를, “조현명(趙顯命)을 종사(從事)로 삼아 수원(水原)에서부터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였다. (…)

○以兵曹判書吳命恒爲四路都巡撫使，將兵討賊．命恒辭陞，上口號諭命恒書曰：“今茲賊徒，不過小醜，而昇平日久，善惑訛言，人心靡安，鎭安之道，躬自勵焉．然此等妖惡之徒，不可不亟討勦滅．而水原，畿輔重鎭，亦豈忽哉？以摠戎使金重器，只帶本將號，統領三鎭軍，水原府使宋眞明，爲副將留鎭本府，以兵曹判書吳命恒，仍兼禁營，爲四路都巡撫使，巡討中軍朴贊新，仍差都巡撫中軍，嶺南御史副校理朴文秀，兼從事官，仍卽下往，討平小醜，安撫黎民．”仍賜甲冑·尙方劍，諭以中軍·監兵使以下諸將領不用命者，以此從事．”給文秀太僕馬，宣醞以遣，夜已四更．其後命恒又啓請以趙顯命爲從事，自水原帶去．(…)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17일(정묘) 12번째기사>

## 정치/군사

박사수 등이 이번 출병이 수원대로를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다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친국하였다. 비변사의 제재(諸宰)는 모두 비국에 모이라고 명하니, 대사간 송인명이 청하기를, “대사성(大司成) 박사수(朴師洙)·형조 참판(刑曹參判) 윤용(尹容)을 불러와 궐중에 있게 하여 일을 의논하게 하소서.” 하였다. 박사수와 윤용이 청대(請對)하였는데, 박사수가 말하기를, “이번 출병(出兵)이 모두 수원의 대로(大路)를 따라가 광주(廣州)·용인(龍仁) 방면의 방수(防水)가 매우 소홀한데, 적이 어찌 반드시 대로만을 따라서 오겠습니까? 마땅히 친신(親臣) 중의 숙장(宿將)을 보내어 남한(南漢)을 진수하게 하고, 군사를 나누어서 모든 요로를 끊게 하소서. 그리고 북한(北漢)은 도성의 인후(咽喉)에 자리하고 있어 뜻밖의 근심에 방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수장(守將)을 가려 엄히 대비해야 합니다. 양주 목사(楊州牧使) 이징휴(李徵休)는 목민(牧民)과 방어를 함께 할 수 있는 인재가 아니니, 청컨대 체직케 하고, 문신(文臣) 가운데서 차임해 보내 동로(東路)의 방비를 맡기도록 하소서.” 하였다. (…)

○戊辰/上御仁政門，親鞫．命備邊司諸宰，皆會備局，大司諫宋寅明請令大司成朴師洙·刑曹參

判尹容，來處闕中議事。師洙·容請對，師洙言：“今出兵，皆從水原大路，廣州·龍仁一路防守，甚疎，賊豈必從大路來耶？宜遣親臣宿將，鎮守南漢，分兵遮截諸要路。北漢處於都城咽喉，意外之患，不可不防，宜擇守將，嚴備。楊州牧使李徵休，非牧禦才，請遞之，擇文武臣中差遣，任以東路防備。”(…)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18일(무진)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좌윤 장봉익을 수원으로 출진하게 하다

명하기를, “좌윤(左尹) 장봉익(張鵬翼)을 진어 대장(鎮禦大將)으로 삼아 장단(長湍)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한 산성 아래에 주둔해 서쪽 근심을 막게 하라.” 하였는데, 바로 이사성을 붙잡아 서쪽 변방에 급함이 없다 하여 다시 명하기를, “수원(水原)으로 출진(出鎭)하라.” 하였다. 양주 목사(楊州牧使) 유척기(兪拓基)에게 진어사(鎮禦使)를 겸하게 해 본 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누원(樓院)에 진을 치게 했다.

○命以左尹張鵬翼爲鎮禦大將，領長湍軍，鎮北漢城下，以防西憂。”旋以思晟就拿，西邊無急，改命出鎭水原。楊州牧使兪拓基，兼鎮禦使，領本州兵，陣樓院。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20일(경오) 5번째기사>

## 정치/군사

### 윤화정을 충용 중군으로 삼아 수원에 내려 보내다

### 윤화정(尹和鼎)을 충용 중군(摠戎中軍)으로 삼아 수원으로 내려 보냈다.

○以尹和鼎爲摠戎中軍，出送水原。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20일(경오) 9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부사 송진명이 적병에 대해 장계하니 신하들과 의논하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송진명(宋眞明)이 장계하여 말하기를, “정탐하는 사람이 고하기를, ‘적병이 이달 22일에 진천(鎭川)에서 호군(犒軍)하고, 23일에는 죽산을 향해 출발하였는데, 적중의 도목(都目)은 30초(哨) 불과하다’ 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송진명의 계본(啓本)을 여러 신하들에게 보였다. 도승지 윤순(尹淳)이 청하기를, “남한 순무사(南漢巡撫使)로 하여금 군사를 발동하여 좌간령(左棧嶺)을 방수하게 하소서.”

하고, 어영 대장(御營大將) 조문명(趙文命)은 청하기를, “급히 계원장(繼援將) 박동추(朴東樞)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남하(南下)하게 하소서.” 하고, 훈련 대장(訓練大將) 이삼(李森)은 청하기를, “양주 목사 유척기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경성(京城) 밖으로 오게 하소서.” 하고, 영의정 이광좌는 청하기를, “급히 춘천 방어사 정도원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오게 하고, 황해 병사(黃海兵使) 원백규(元百揆)는 청석령(靑石嶺)으로 진군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허락하였다.

윤순이 청하기를, “유만증(綸萬增)을 거느리고 남한으로 가서 정예병을 가려 영애(嶺隘)를 지키고, 장사(將士)를 독려해 싸움터로 가겠습니다.” 하였는데, 이광좌가 윤순이 평소 지세(地勢)에 밝다는 이유로 허락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유만증을 불러 보고 묻기를, “어떻게 적을 막겠느냐?” 하니, 유만증이 청하기를, “강궁(強弓)·경전(勁箭)을 얻어서 잘 쏘는 무사 수백 명을 스스로 모집해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니, 검(劍)을

하사하고 유지하기를, “이것은 선조(先朝)에서 별군직(別軍職)에게 내리시던 칼이다. 청주 우후(淸州虞候)가 적에게 항복하여 범순(犯順)했으니, 너는 이 칼로 참수(斬首)해 가지고 와서 바치라.” 하였다.

○**水原府使**宋眞明狀啓言：偵探人告，賊兵今二十二日犒軍鎮川，二十三日發向竹山，賊中都目，不過三十哨云。

上以眞明啓本，示諸臣。都承旨尹淳請令南漢巡撫使，發兵防守左棧嶺，御營大將趙文命請急送，繼援將朴東樞，領兵南下。訓練大將李森，請令楊州牧使俞拓基，領兵前來京城外。領議政李光佐請急令春川防禦使鄭道元，領軍上來，黃海兵使元百揆，進軍靑石嶺。上竝許之。淳請率柳萬增，往南漢，擇精銳，守嶺隘督將士赴戰。光佐以淳素諳地勢，請許之，上從之。上召見柳萬增，問何以禦賊？萬增請得強弓勁箭，自募善射武士數百人帶去，上賜劍，諭以此乃先朝賜別軍職之劍也。淸州虞候降賊犯順，爾以此劍，斬首來獻。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23일(계유)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오명항이 안성에서 적군과 싸워 크게 이기다

이보다 앞서 도순무사 오명항이 진위 땅에 있으면서 종사관 등과 더불어 진병(進兵)할 것을 의논하여 각기 그 이해를 개진하였다. 오명항은 단지 말하기를, “시험삼아 직산(稷山)으로 진군하고, 다시 의논해도 늦지 않다.” 하고, 드디어 진군해서 소사에 이르러 점심밥을 먹고 나니 진군(前軍)은 이미 직산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오명항이 갑자기 말에 기대어 두 종사관을 불러 귀에다 대고 명령하기를, “안성 군수(安城郡守) 민제장(閔濟章)으로 하여금 본군(本郡)으로 돌아가 양초(糧草)를 정돈해 기다리게 하라.” 하고, 큰소리로 말하기를, “직산으로 운반하라.” 하였다.

당보 초관(塘報哨官)을 불러들여 귀를 잡고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서 몰래 깃발을 흔들도록 명하여 지레 안성으로 가게 하였다. 이는 대개 오명항이 처음 행군하여 과천(果川)에 이르러 기졸(旗卒) 방득규(方得規)가 정한(精悍)하여 부릴만한 것을 보고는 별무사(別武士)로 올리어 그의 환심을 사고 수원에 이르러 밀령(密令)으로 간첩을 만들어 청주의 적진에 투입시켜 적이 가는 방향을 탐지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방득규가 과연 적의 정세를 탐지하고, 또 소금 장수 차림을 한 적의 간첩을 잡아 바쳐 비로소 적이 진천(鎭川)에서부터 군사를 나누어 한 부대는 죽산(竹山)으로 향하고, 한 부대는 안성으로 향하여 민제장을 습격하여 죽이고자 함을 알게 되었다. 오명항이 이미 안성으로 향하기를 결심하고 남보다 앞서 빼앗는 계책을 쓰고서 그 모책의 비밀이 누설될까 염려해 발표하지 아니한 채 직산의 대로(大路)로 향한다고 소리쳐 말했던 것이었다. 소사(素沙)에 이르니, 정탐하는 자 4, 5명의 말 역시 서로 부합하는지라 중도에서 길을 바꾸었고, 이로 인해 승리를 얻었으니, 이는 하늘이 실로 도운 것이다. 안성에 이르니 날이 이미 어두웠는데, 적의 간첩 최섭(崔涉)이란 자를 붙잡아 힐문해 적의 정세 및 적장(賊將)의 성명을 알아내고 주머니 안을 조사해 이봉상(李鳳祥)의 패영을 찾아냈다. (…)

○先是，都巡撫使吳命恒在振威，與從事等，議進兵各陳利害。命恒但言：“試進稷山，更議未晚。”遂進軍到素沙，午飯訖，前軍已就稷山路。命恒忽倚馬，呼兩從事，附耳語令安城郡守閔濟章，還本郡，整待糧草，而揚言運致稷山。招入塘報哨官，執耳近前發暗令麾旗，徑趨安城。蓋命恒，始行軍到果川，見旗卒方得規精悍，可使陞別武士，結其歡心，至**水原**，密令作間諜，投淸州賊陣，探賊路所向。得規果探賊情，又捉納賊諜作鹽商樣者，始知賊自鎭川，分兵，一枝

向竹山，一枝向安城，欲襲殺閔濟章。命恒已決意向安城，爲先人奪人之計，而慮謀洩秘，不發聲言向稷山大路。及到素沙，偵者四五輩，言亦相符，中道改路，因此得雋，天實相之也。抵安城，日已昏，獲賊諜崔涉者，詰問賊情及賊將姓名，探囊中得李鳳祥貝纓。(…)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23일(계유) 7번째기사>

## 정치/군사

### 각진의 귀농시킬 군사를 뽑아 권농케 하면서 수원 총융사에 대해 언급하다

각진(各鎭)의 귀농(歸農)시킬 군사를 뽑으라고 명하고, 임금이 교문(敎文)을 입으로 부르기를, “호남의 소추(小醜)들이 차례로 죽었으니, 지금 농사를 권면하는 정사(政事)를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 더군다나 백성들이 병화(兵火)를 모른 지 오래이고, 또 해마다 기근이 든 나머지 징소(徵召)한 지 여러 날이 되어 노천(露天) 아래에서 병으로 상하는 것 역시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황해 감사(黃海監司)가 영솔한 군사 및 장단 방어사(長湍防禦使)가 영솔한 마병(馬兵)·보병(步兵)과 송도(松都)의 마병으로 출정(出征)한 이외의 1초(哨)는 아울러 먼저 파하여 보내도록 하라. 기백(畿伯)이 영솔한 금천(衿川)·과천(果川)·양성(陽城)·안성(安城) 네 고을의 군사 및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거느린 군사와 춘천 방어사(春川防禦使)가 거느린 마군(馬軍)·보군(步軍)은 아울러 절반을 파하여 보내도록 하라. 남한 순무사(南漢巡撫使)가 영솔한 각 고을의 군관(軍官)·군병(軍兵) 및 수원 총융사(水原摠戎使)가 영솔한 마병·보병은 우선 10초로 윤번(輪番)하게 하고 긴요하지 않은 잡색(雜色)은 파하여 보내도록 하라. 허정(許鼎)이 영솔한 남양(南陽)의 군사는 그 가운데서 정병(精兵) 5초를 한정해서 뽑아 남겨 거느리고, 그 나머지는 파해 보내되 남겨 둔 5초는 도순무의 절제를 받도록 하라. 계원장(繼援將) 박동추(朴東樞)가 영솔한 어영(御營)의 향군(鄉軍)과 송도의 마병과 잡색(雜色) 표하(標下)의 무리들 역시 도순무의 절제를 받도록 하라. 도순무가 영솔한 향군은 우선 그대로 두고, 파해 보내는 무리는 부자(父子)·형제(兄弟)가 함께 군중에 있는 자, 술정(率丁)이 없고 단신(單身)인 자, 병들고 약한 자를 구별하여 먼저 파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命抄各鎭兵歸農，上口呼敎文曰：“湖南小醜，次第就戮，今則勸農之政，不可小緩。而況生民之不知兵久矣，且當連歲荐飢之，餘徵召多日，暴露病傷，亦不可不念。黃海監司所領軍兵及長湍防禦使所領馬·步兵，與松都馬兵，出征外一哨，竝先罷遣。畿伯所領衿·果·陽·安四邑兵及楊牧所領軍兵與春川防禦使所領馬·步軍，竝折半罷遣。南漢巡撫使所領各邑軍官·軍兵及水原摠戎使所領馬·步兵，姑以十哨輪番，不緊雜色罷遣。許鼎所領南陽軍，擇其精兵，限五哨留率，其餘罷遣，而所留五哨，聽都巡撫節制。繼援將朴東樞所領御營鄉軍·松都馬兵與雜色標下之類，亦聽都巡撫節制。都巡撫所領鄉軍，竝姑仍存，罷遣之類，以父子兄弟俱在軍中者，無率丁單身疲癯老弱區別，先爲罷遣。”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26일(병자) 12번째기사>

## 정치/군사

### 경기감사 이정제가 제도에 별장 1인씩을 보내어 여러 점을 관찰케 할 것을 청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이정제(李廷濟)가 장계하여 말하기를, “성상께서 민폐(民弊)를 진념(軫念)하사 진도(津渡)의 행려(行旅)를 모두 폐단 없이 통행케 하셨으니, 삼강(三江)의 상선(商船)·곡선(穀船)·어선(漁船)의 생리(生理)에 관계되는 것은 허락하여 왕래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수(把守)를 이미 정철(停徹)케 하였으며, 강 위에는 늙은 장교(將校) 중

에서 전함(前銜)이 혹은 금려(禁旅)를 지내고 혹은 첨사(僉使)·만호(萬戶)를 지내서 나라에 충성을 다한 자가 많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송파(松坡) 밑에서부터 공암(孔巖) 위에 이르기까지는 병조(兵曹) 혹은 각 군문(軍門)에서 따로 수삼 십 인을 가려뽑아 배를 전관(專管)하여 일일이 선척을 기탐(譏探)하여 북쪽 물가에 옮겨 두어서 사사로이 건너는 일이 없게 하였다가 사변이 평정된 뒤에 정과(停罷)하는 것이 적당한 듯합니다. 지금의 이른바 주막(酒幕)은 곧 옛날의 관정(關亭)으로서, 적도(賊徒)가 밤에는 주막에서 자고 낮에는 장터에서 모이니, 착실하게 형찰(巡察)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西路)의 검암점(黔巖店)과 동로(東路)의 누원점(樓院店)은 모두 별장(別將)이 있으니, 이제 마땅히 기포(譏捕)가 보통이 아닐 것이오며, 과천(果川)에서 소사(素沙)에 이르는 길, 판교(板橋)에서 죽산(竹山)에 이르는 길, 경안(慶安)에서 충주(忠州)에 이르는 길, 평구(平丘)에서 수원(水原)에 이르는 길은 신의 병영(兵營)에서 합당한 사람 각 한 사람씩을 가려 보내어 별장(別將)으로 이름하여 환모(還耗)로 요(料)를 주고 각로(各路)의 여러 점(店)을 관할케 하여, 수상하게 오가는 자를 수탐(搜探) 금지케 하여 혹은 본관(本官)에 고하도록 하고 혹은 영문에 고하도록 하면, 마땅함을 얻게 될 듯합니다. 각 영문, 각 고을의 파수 중에 혹 연줄을 타고 작폐(作弊)하는 자가 매우 많다고 하니, 모두 조사해 내어 군율(軍律)로 논죄하겠으며, 각 군문 각 진도(津渡)·관량(關梁)의 파수(把守)하는 곳에도 약속을 더욱 엄하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京畿監司李廷濟狀啓言：聖上珍念民弊，津渡行旅，竝令無弊通行，則三江商船·穀船·漁船之關係生理者，不可不許令往來。把守既令停撤，江上多老校前銜，或經禁旅，或經僉·萬戶，效忠國家者，臣意自松坡以下，至孔巖以上，自兵曹，或各軍門另擇數三十人，專管船隻，一一譏探船隻，移置北岸，使無私涉，而事定後停罷得宜。今之所謂酒幕，卽古之關亭也，賊徒夜宿酒幕，晝聚場市，不可不著實巡察。西路之黔巖店·東路之樓院店，皆有別將，今宜譏捕非常，果川至素沙路，板橋至竹山路，慶安至忠州路，平丘至水原路，自臣營，擇送可合人各一人，名以別將，以還耗給料，使管各路諸店，殊常去來者，搜探禁止，或告本官，或告營門，似爲得宜。凡各營·各邑把守之中，或有因緣作弊者，甚多云，竝查出，論以軍律，各軍門各津渡·關梁把守處，申嚴約束。

<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2일(임오) 5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에 유둔하는 군사를 귀농케 하다

수원(水原)에 유둔(留屯)하는 6초(哨)의 군사를 파진(罷陣)해 보내어 귀농(歸農)케 하라고 명하였다.

○命罷遣水原留屯六哨兵，歸農。

<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6일(병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비변사에서 수원의 마군은 1명의 보인을 지급하도록 청하니 따르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마군(馬軍)은 본부로 하여금 1명의 보인을 지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홍상한(洪象漢)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6천 마군(馬軍) 가운데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위급한 때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준례에 의거하여 각기 2명의 보인을 지급하게 하소서.”



했는데, 비국(備局)에서 2명의 보인은 곤란하다 하여 단지 1명의 보인만 지급하게 하였다.  
○丙寅/備邊司啓言：“水原馬軍保，令本府許給一保.” 從之. 先是洪象漢言：“水原六千馬軍，無一有馬者，緩急無所得力. 當依禁御兩營例，各給二保.” 備局以兩保爲難，只令許給其一保.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 12월 30일(병인) 1번째기사>

#### 정치/군사

**경기감사 홍봉한이 독진인 수원에 여결 3백을 군수에 보충하여 쓰게 하자고 하다**

임금이 경기 감사와 수령을 소견(所見)하였다. (...) 홍봉한이 또 말하기를, “수원(水原)은 8천의 병마(兵馬)로 독진(獨鎭)하고 있는 부(府)이기 때문에 책응(策應)하기가 대단히 번잡하니, 청컨대 여결(餘結) 3백을 군수(軍需)에 보충하여 쓰도록 하소서. 양주(楊州)는 동북(東北)의 수참(首站)에 위치하여 능(陵)이 13개소이고 묘(墓)가 14개소인데, 월봉(月俸)으로는 공급(供給)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니, 청컨대 여결 5백으로 회름(餼廩)의 숫자에 따라 분배(分排)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비국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

○上召見京畿監司·守令. (...) 鳳漢又言：“水原爲八千兵馬獨鎭之府，策應浩繁，請以餘結三百，補用軍需. 楊州處於東北首站，陵有十三，墓有十四，而月俸不足以當供給，請以餘結五百，分排餼廩之數.” 命備局稟處.(...)

<영조실록 68권, 영조 24년 8월 11일(계사) 3번째기사>

#### 정치/군사

**영조가 수원 독성 산성에 올라 임진왜란 때의 일을 상고하다**

임금이 수원을 지나면서 독성 산성(禿城山城)에 올라 해문(海門)을 바라보면서 송지 황경원(黃景源)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해문에서 등주(登州)까지의 거리는 몇 리나 되는가?” 하니, 황경원이 대답하기를, “동강(東江)에서 등주까지는 3천 9백 58리입니다.” 하니, 임금이 탄식하기를, “수길(秀吉)의 난리에 도독(都督) 진인(陳璘)이 광서(廣西)·광동(廣東)의 수군(水軍)을 거느리고 행장(行長)과 노량(露梁)에서 싸워 크게 격파해 행장이 도망하였다. 남한 산성(南漢山城)이 포위당하자 총병관(摠兵官) 김일관(金日觀)이 산둥(山東) 제진(諸鎭)의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려 했는데, 군사가 이르기 전에 성이 이미 함락되어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내가 어찌 차마 황제(皇帝)의 은혜를 잊겠는가?”

하니, 황경원이 말하기를, “신은 듣건대, 김일관이 여러 장수인 초계공(楚繼功) 등과 장산(長山)에 이르러 오랑캐와 서로 7일간 밤낮으로 버티다가 힘이 지탱할 수가 없어 마침내 죽었는데, 의종(毅宗)이 조서(詔書)를 내려 특진 광록 대부 태자 태사(特進光祿大夫太子太師)를 추증하고 바닷가에 사당(祠堂)을 세웠으며, 초계공 등에게는 차등있게 홀전(恤典)을 내렸다고 하니, 매우 불쌍합니다.” 하였다.

이때 산 위에 상수리가 떨어지자 좌의정 김약로가 손으로 그것을 어루만지니,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대신은 어찌하여 상수리를 좋아하는가? 나는 시물(時物)을 보고 명나라가 한참 강성할 때를 생각하니, 그때는 사신(使臣)들이 조천(朝天)하였지만 지금은 할 수 없게 되어 천자에게의 조회(朝會)도 영원히 바랄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서글프고 슬프지 않겠는가?” 하고, 인하여 울먹이며 눈물을 흘렸다. 황경원에게 명하여 독성(禿城)의 군기(軍器)를 살펴보게 하였는데, 돌아와 말하기를, “궁시(弓矢)와 검극(劍戟)·기고(旗鼓)가 모두 남아서 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엄하게 하교하여 개수(改修)하도록 하였

다.

○乙丑/上過水原，登禿城山城，以望海門，顧謂承旨黃景源曰：“自海門距登州凡幾何里耶？”景源對曰：“自東江至登州三千九百五十八里也。”上歎曰：“秀吉之亂，都督陳璘率廣西·廣東舟師，與行長戰于露梁大破之，行長遁去。南漢被圍，總兵官金日觀率山東諸鎮舟師往救之，師未至而城已下，雖不成功，予何忍忘皇恩也？”景源曰：“臣聞日觀與諸將楚繼功等，至長山，與虜相持七晝夜，力不能支，竟死之，毅宗詔贈特進光祿大夫太子太師，立祠海上，繼功等贈恤有差，甚可愍也。”會栩實陞於山上，左議政金若魯以手撫之，上笑曰：“大臣何其愛栩實也？予覽時物，懷皇朝方盛之時，使者朝天，今已矣，江漢朝宗，永無望矣。焉得不悽然而傷懷乎？”因嗚咽流涕。命景源往視禿城軍器，還言：“弓矢·劍戟·旗鼓皆弊破，不可城守。”上嚴教，並令改修。

<영조실록 72권, 영조 26년 9월 26일(을축)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호남어사 홍자의 서계 별단에 완영과 수원 독성산성에 봉수 설치를 건의하다

호남 어사 홍자(洪粹)가 복명(復命)하고 서계 별단(書啓別單)을 바쳤는데, 이르기를, “첫째, 격포 행궁(格浦行宮)을 설치한 것은 장차 뜻밖의 변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행궁의 담 밖은 텅 빈 채 백성의 마을이나 창고의 저축이 하나도 없으니, 청컨대, 크고 작은 격포의 폐기된 독을 보수하고, 이어서 행궁의 둔전(屯田)을 만들어 백성을 모아 경작하게 하고, 전례대로 세(稅)를 받고 창고를 설치하여 모아들이고 흠어 주어 변란에 대비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둘째, 장성(長城) 일대는 지리(地利)가 가장 좋으니, 청컨대 병영(兵營)을 이 고을에 옮겨 사방을 제어하고 한 방면을 호령하는 방편으로 삼으소서. 셋째, 완영(完營)과 수원(水原) 독성 산성(禿城山城)에 봉수(烽燧)를 설치하여 경보(警報)의 도구를 엄하게 하소서. 넷째, 좌수영과 우수영의 바다 어귀에 쇠사슬을 설치하는 제도를 수거(修擧)하여 바다의 험조(險阻)를 더욱 견고하게 하소서. 다섯째, 조적(糶糶)을 균일하게 해서 민폐를 제거하소서. 여섯째, 저치미(儲置米)를 한 해 걸러 개색(改色)하여 오래 쌓아 두어서 썩는 걱정을 없애소서. 일곱째, 역로(驛路)의 조폐(凋弊)가 근일처럼 심한 때가 없으니, 청컨대 병사·수사로서 다른 도에서 이직(移職)하는 자는 경성(京城)까지만 인마(人馬)를 정하여 보내고, 부임하는 자는 본도의 경계까지만 정하여 보내어 역로의 조폐를 소생시키게 하소서. 아홉째, 금오도(金鰲島)는 황장목(黃腸木)을 봉(封)한 곳으로, 영읍(營邑)·진읍(鎭邑)의 전선(戰船)·병선(兵船)과 통신사의 도해선(渡海船) 및 각 군문의 기계 등의 물건을 오로지 이곳에 의지하고 있는데, 요즈음 영빈궁(寧嬪宮)에서 절수(折受)하였으니, 특별히 성명(成命)을 거두어 본도에 도로 붙이소서. 열째, 각 군문의 호궐(犒饋)에 쓰는 소는 장교·군졸을 보내어 김제(金堤)·태인(泰仁) 등의 저자에서 사는데, 그 폐단을 끼치는 것이 한없으니, 이제부터 일체 금단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모두 비국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임금이 홍자를 소견하여 해민(海民)의 편부(便否)를 묻자, 홍자가 말하기를,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배와 어살[漁箭]은 영읍에서 그 자재(資財)를 도와서 제때에 고쳤으나, 한 번 균청(均廳)에 속한 뒤로는 모두 그전대로 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민은 고할 데가 없으니 참으로 민망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신·수령·변장인자가 자기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하여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면 곧 나라를 저버리는 것이다. 균청으로 하여금 엄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

○湖南御史洪粹復命，進其書啓別單。一曰，格浦行宮之設，將以備不虞，而宮垣以外，廓然無

一民之聚一倉之積，請修大小格浦廢堰，仍作行宮屯田，募民耕作，而納稅如例，設倉斂散，以爲陰雨之備。二曰，長城一區，最得地利，請移兵營于此邑，以爲控制四隅，號令一方之便。三曰，請設完營及水原禿城山城烽燧，以嚴報警之具。四曰，修舉左·右水營海口鐵鎖之制，申固海陬。五曰，均糶糴，以祛民弊。六曰，儲置米間年改色，以除積久腐敗之患。七曰，驛路凋弊，莫如近日，請兵·水使之自他道移職者，限京城定送人馬，除朝辭赴任者，限本道境定送，以蘇驛殘。九曰，金鰲島乃黃腸木所封處，而營鎮邑戰兵船·通信使渡海船及各軍門器械等物專靠於此，而近爲寧嬪宮折受，請特寢成命，還屬本道。十曰，各軍門犒饋所用牛隻，發遣校卒，買取於金堤·泰仁等場市，其所作弊罔有紀極，請自今一切禁斷。并令備局稟處。上召見梓，問海民便否，梓曰：“均役以前則船隻·漁箭，自營邑助其資財，及時修改，一自屬均廳以後，舉皆因循拋置。海民無告，良可憫然。”上曰：“爲道臣·守令·邊將者，若以無益於我，而不恤乎民，是負國也。令均廳嚴飭。”(…)

<영조실록 82권, 영조 30년 7월 23일(경자)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김상로의 건의로 수원부에 별효위를 설치하고 마병을 감하다

수원부(水原府)에 별효위(別驍衛)를 설치하도록 명하고, 또 삼도(三都)의 예에 의해 결전(結錢)을 영원히 감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수원 부사 김상복(金相福)이, 본부의 마병(馬兵)에 대한 일과 결전의 일을 진달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수원부의 마병을 변통해야 한다는 의논은 고 판서 송진명(宋眞明)에게서 나왔습니다. 본부는 기보(畿輔)의 중진(重鎭)인데, 이른바 6초(哨)의 마병은 유명 무실하여 말을 소유한 자가 아주 드물어 급할 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약 도시(都試)를 창설하여 장교(將校)의 아들과 한가로이 노는 자 및 기타 전마(戰馬)와 군장(軍裝)을 갖추 수 있는 자로서 소속되게 허락하여 별효위(別驍衛)라 이름하고 1년에 한번씩 도시(都試)를 베풀어 뽑아 수석(首)을 한 자는 직부(直赴)하게 하고, 그 다음은 총융청(摠戎廳)의 둔감(屯監) 두세 자리에 차출해 보내며, 가장 우수한 자로서 이미 출신(出身)한 자는 금군(禁軍)의 예에 의해 부방(赴防)을 면제해서 본부의 장교(將校) 직임을 또한 이 가운데에 차출해 오래 근속시켜 거두어 쓰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만약 7백명이나 얻을 수 있다면 이른바 마병을 전부 감해도 무방합니다. 혁파해 감한 마병은 1필씩 신역(身役)을 거두어 봄·가을의 상을 주는 규칙으로 쓰면 격려하고 권하는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상로(金尙魯)가 또 말하기를, “수원은 선조(先祖)에서 외도감(外都監)이라 일컬어 본래 납부하던 1필(匹)을 전에 이미 감하기를 허락하였고, 서울에 납부하는 것을 또한 모두 그만 두게 하였습니다. 균역(均役)한 이후에 제도(諸道)에 고루 은혜를 베풀었는데, 수원 백성들은 별반 은혜를 입지 못해 실로 한쪽 구석에서 탄식함이 있습니다. 양도(兩都) 및 남한(南漢)에는 모두 결전(結錢)이 없는데, 본부의 관방(關防)도 다름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수원은 기보(畿輔)의 중진으로 옛날에 외도감으로 하라는 전교가 있었고, 또 베를 감하라고 명하였다. 백성은 바로 군인이요, 군인이 바로 백성이어서 만약 옛날의 은혜 베풀던 일을 본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성(隋城) 백성들을 위로하겠는가? 한결같이 삼도(三都)의 예에 의해 특별히 결전을 감하라.” 하였다. 김 상로가 또 아뢰기를, “양주 토포영(楊州討捕營) 소속의 과천(果川)과 금천(衿川) 두 고을을 수원에 소속시키고, 수원에 소속된 용인(龍仁) 한 고을을 죽산(竹山)에 소속시키라는 일을 도신(道臣) 이종백(李宗白)

이 전에 이미 아뢰 바 있습니다. 길이 가까우니 이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乙卯/命設水原府別驍衛，又依三都例，永減結錢。先是，水原府使金相福，以本府馬兵事及結錢事，有所陳達，至是左議政金尙魯白上曰：“水原府馬兵變通之議，出自故判書宋眞明。而本府以畿輔重鎮，所謂六哨馬兵，有名無實，有馬者絕稀，緩急將無所恃。今若創設都試，以將校子閑遊者及其他可備戰馬軍裝者，許令入屬，名之曰別驍衛，一年一次設取都試，居首者直赴，其次差送摠廳屯監數三窠，最優者而已出身者，依禁軍例，除赴防，本府將校之任，亦自此中差出，以爲久勤收用之法。而此類若得七百，所謂馬兵，雖全減無妨。馬兵罷減者，則收一疋身役，爲春秋賞格之用，則似有激勸之效矣。”上從之。尙魯又曰：“水原自先朝稱爲外都監，而本納一疋，前既許減，京上納亦盡罷矣。均役以後，恩均諸道，而水原之民則未蒙別般恩澤，實有向隅之歎。兩都及南漢，俱無結錢，本府關防似無異同矣。”教曰：“水原以畿輔重鎮，昔年有外都監之教，又命減布。民乃軍，軍乃民也，若無體昔年施惠之事，則何以慰隋城之民乎？一依三都例，特減結錢。”尙魯又奏曰：“楊州討捕營所屬果川·衿川兩邑，屬之水原，水原所屬龍仁一邑，屬之竹山事，道臣李宗白前既有所奏。道路便近，依此施行似好矣。”上從之。

<영조실록 85권, 영조 31년 8월 14일(을묘)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좌의정 김상로의 건의로 수원의 초하루 조련을 농한기 6개월에 실시토록 하다

임금이 승문당(崇文堂)에 나아가서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수원부사 김효대(金孝大)의 아뢰 바로 인하여, 본부(本府)의 초하루 조련[朔操]을 평안도 각읍(各邑)의 예(例)에 의하여 매년 농사를 쉬는 여섯 달에 돌려가며 관문(官門)에서 조련을 행하라고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上御崇文堂，引見大臣·備堂。左議政金尙魯因水原府使金孝大所奏，仰請本府朔操，依關西各邑例，每年農歇六朔，輪回行操於官門，上從之。

<영조실록 91권, 영조 34년 2월 2일(무오)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영의정 홍봉한이 경기도의 방어에 대한 차자를 올리다

영의정 홍봉한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임진(臨津)과 장산(長山)에 성을 설치하게 된 것은 성상의 결정에서 나온 것이고 신이 실로 명을 받아 그 일을 주관하였습니다. 문루(門樓)와 여러 돈대(墩臺)의 공사가 이미 차례로 끝나고 백성들도 점차로 모여 살고 있으니, 다급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수비의 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계책을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장단(長湍)에 있어서는 그곳으로 방어의 영(營)을 옮길 당시에 묘당(廟堂)의 의논이 어떠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석(靑石)의 험함과 여현(礪峴)의 협로를 관리하여 군사를 거느려 가로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들판 저 멀리 있는 장단에 힘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적에 대응하는 형세를 잃었고 또 지리(地利)의 험함을 잃었으니 긴 강을 끼고 있는 천연의 요새지를 마치 병자년·정축년 처럼 사람이 전혀 없는 곳과 같이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송도(松都)에 영(營)을 설치하였으니, 장단은 경중을 논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파주(坡州)에 있어서는 강 연안 일대에 산이 두루 쌓여 있으므로 비록 성을 쌓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세가 믿을 만합니다. 그 고을 주산(主山)은 고려 때 봉명 산성(鳳鳴山城)이었습니다. 지세가 깎아

지른듯이 험준하고 사방으로 엿볼 수 있는 산봉우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 정승 유성룡(柳成龍)이 성을 고친 다음 서울 후면을 막을 수 있는 영을 만들자고 청하였고, 도원수 권율(權慄)과 순변사 이빈(李贛)이 패잔병을 수습하여 홀로 외로운 성을 보존하여 저돌적인 왜적으로 하여금 감히 날뛰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또 과거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구나 이 두 진을 이미 설치하였으니 대비가 시급한데 그 임무를 맡길 곳이 본주를 놔두고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지금 별도로 조치할 것 없이 장단의 옛 영을 파주로 옮겨 설치한 다음 수성장(守城將)을 겸하게 하고 임진과 장산 두 진의 별장을 수성 양 별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평상시에는 두 진관(鎭管)을 본주에 예속시키고 유사시에는 본 고을의 수령이 두 진으로 나가 지키면서 강의 동쪽 여러 고을들의 군사를 소집하여 병 돌려 지키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헛점의 대비가 적절히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견고하게 막을 수 있는 계획이 영구히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의 오른쪽 여덟 고을을 둘로 나누어서 고양(高陽)·교하(交河)·적성(積城)의 군사는 파주에 예속시키고, 삭녕(朔寧)·마전(麻田)·연천(漣川)의 군사는 장단에 예속시키며, 장단은 남양(南陽)의 예처럼 영장(營將)을 겸하게 하고, **파주는 수원의 규례처럼 이력을 높여주면 군사의 제도가 더욱 갖추어지고 방어가 더욱 공고히 될 것이니, 그 나머지 설치할 것들은 편리에 따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대장 구선행(具善行)과 총융사 구선복(具善復)은 모두 일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계획이 신과 강론을 거치지 않고도 같았으니, 신의 이 말은 신 혼자만의 견해일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원하건대 하순(下詢)하시고 재량하여 처리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신하들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비답하기를, “지금 경의 차자를 보니, 조목조목 열거한 사안들이 적절하였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논도 모두 일치하였으니 차자에 칭찬 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방어를 옮기는 것에 대한 절목을 자세히 계하(啓下)하였다. 이미 막을 수 있는 영을 설치하고 난 뒤에는 책임자를 얻는 데에 달려 있으니, 문관과 무관이 교차(交差)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되 대신에게 문의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領議政洪鳳漢上筭, 略曰: “臨津 長山之設置城墩, 允出於聖意之獨斷, 臣實承命主其事. 門樓列墩, 既次第訖役, 民居亦漸聚, 脫有緩急, 庶或得力. 而所可慮者, 防守一款, 尙未有定計也. 至於長湍, 則移設防營, 未知當時廟議之何居, 而靑石之險, 礪峴之隘, 既不使管理. 使擁兵遮截, 反欲藉力於野地稍遠之長湍, 既失應賊之機, 又失地利之險, 則將使長江天塹, 如入無人之境者, 必如丙丁之爲也. 且既設松都營, 則長湍不足以輕重也. 若坡州則沿江一帶, 崗巒周遭, 雖不築城, 形便可恃也. 邑治之鎮山, 卽高麗時鳳鳴山城也. 地勢陟絕, 四無窺峰. 此故相臣柳成龍所以請其修繕, 仍作京後防營者, 而都元帥權慄·巡邊使李贛, 收拾殘墟, 獨保孤城, 能使豕突之倭賊, 不敢憑陵, 此又已然之明驗也. 矧此兩鎮, 既設綢繆政急, 其所托重, 捨本州何求哉? 今不必別爲措置, 使長湍舊營, 移設坡州, 仍兼守城將, 以臨津·長山兩鎮別將, 爲守城兩別將. 平時則兩鎮營屬於本州, 有事則本倅進守於兩鎮, 仍爲招集江以東列邑之軍, 以爲羅絡環守之圖, 則衣袵 之備可謂得宜, 而苞桑之謨, 可以永賴也. 且以畿右八邑, 分而爲二, 高陽·交河·積城之軍, 屬於坡州, 朔寧·麻田·漣川之軍, 屬於長湍, 長湍則仍兼營將如南陽之例, 坡州則尊其履歷如**水原**之規, 軍制益備, 關防益鞏. 其餘制置, 可以從便拮据也. 訓練大將具善行, 摠戎使具善復, 俱以主管之人, 其所商度, 與臣不講而同, 臣之此言, 非臣之獨見也. 惟願下詢而裁處焉.” 上詢問諸臣, 諸臣亦無異辭者. 批曰: “今覽卿筭, 條陳得宜, 僉議詢同, 依筭請施行, 移防節目, 消詳啓下. 既設防營, 則惟在得人, 其作文武交差之窠, 問議大臣可

也.”

<영조실록 104권, 영조 40년 10월 13일(신묘)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에 가서 적간한 선전관이 마병의 허술한 상황을 아뢰다

임금이 중일청(中日廳)에 나아가 서북 부료 군관(西北付料軍官)을 시사(試射)하였다. 수원(水原)에 가서 적간(摘奸)한 선전관(宣傳官)이 회주(回奏)하기를, “마군(馬軍)으로서 인마(人馬)가 모두 없는 자가 8명이요, 등자(鎧子)가 없는 자가 4명이요, 새끼줄로 등자를 맨 자가 11명이요, 활이 없는 자가 1명이요, 편곤(鞭棍)이 없는 자가 4명이요, 통개(筒介)가 없는 자가 1명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놀랍구나.” 하고, 전교하기를, “수원(水原)의 마병(馬兵)은 서울의 훈련 도감(訓練都監)과 같은데, 근래에 허술함이 막심하다고 하기 때문에 선전관으로 하여금 적간하게 하였더니, 비단 점고에 빠진 자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새끼로 등자를 맨 자가 그 얼마인지 알지 못하며 또 말이 없는 자와 편곤이 없는 자까지 있으니, 놀라운 일치고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전 부사 이미(李瀾)·홍지해(洪趾海)와 시임 부사(時任府使) 이명식(李命植)을 먼저 파직한 후, 잡아오도록 하라. 별장(別將)이 된 몸으로 검척하지 못하였으니, 나무 인형과 무엇이 다른가? 훈장(訓將)으로 하여금 사장(沙場)에서 조리돌린 후에 곤장 열 대를 치라.” 하고, 수원 부사의 비국(備局) 천망(薦望)을 지체시켰다 하여 비변사 낭청을 병조로 하여금 곤장을 치게 하였다. 삼상(三相)이 차자를 올려 건책을 청하니, 신칙한 데 불과하니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고 비답하였다. ○丁丑/上御中日廳，西北付料軍官試射。水原摘奸宣傳官回奏：“以馬軍之人馬俱闕者八名，無鎧子者四，藁索懸鎧者十有一，無弓一，無鞭棍四，無筒介一。” 上曰：“駭然矣。” 教曰：“水原馬兵，與京都監同，而近者踈虞莫甚云，故令宣傳官摘奸，則非徒闕點者多，藁索鎧子者，不知其幾何，而亦有無馬者無鞭棍者，事之可駭，莫此爲甚。前府使李瀾·洪趾海，時府使李命植先罷後拿。身爲別將，不能檢飭，何異木偶人？令訓將，沙場回示後，決棍十度。” 以水原府使備局薦望遲滯，備郎令兵曹決棍。三相上筭請謹，以不申由飭，安心勿辭爲批。

<영조실록 108권, 영조 43년 5월 14일(정축) 1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부사 송진명이 죄인을 압송하고, 장봉익을 총용사로 삼아 수원에 출진하다

(...) 이때에 이르러 봉조하(奉朝賀) 최규서(崔奎瑞)가 용인(龍仁)에 물러가 사는 중에 이웃 사람 안박(安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적정(賊情)을 알고 급히 달려 들어와 고하고 수원 부사(水原府使) 송진명(宋眞明)이 이어서 또 상변(上變)한 사람을 형들을 채워 압송하였다. 왕께서 곧 명하여 병조 판서(兵曹判書) 오명항(吳命恒)을 사도 도순무사(四道都巡撫使)로 삼고 박문수(朴文秀)·조현명(趙顯命)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아 보좌하여 경영(京營)의 군사를 거느리고 안성(安城)·죽산(竹山)을 따라 남으로 내려가 문죄(問罪)하게 하고, 이어 적(李汝迪)·박동추(朴東樞)를 계원장(繼援將)으로 삼아 경영의 군사와 개성(開城)의 마군(馬軍)을 거느리고 도순무의 후원이 되게 하고, 장봉익(張鵬翼)을 진어 대장(鎮禦大將)으로 삼아 북한성(北漢城) 아래에 진쳐서 서우(西憂)를 막게 하였다가 곧 김중기를 갈음하여 총용사를 삼아 수원에 출진(出鎭)하게 하였다. 정찬술(鄭纘述)을 포도 대장(捕盜大將)으로 삼고 이정제(李廷濟)를 경기 감사(京畿監司)로 삼아 한강 동작진(銅雀津)을 방수(防守)하게 하고, 김동필(金東弼)을 경략사(經略使)로 삼아 개성부(開城府)와 남한(南漢)의 군사를 나

누어 용인 등 여러 요로(要路)를 차단하게 하였다. 유척기(兪拓基)를 양주 목사 겸 동로 진어사(楊州牧使兼東路鎮禦使)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고암(鼓巖)에 나아가 지키게 하고, 김재로(金在魯)를 충추 목사 겸 호서 안무사(忠州牧使兼湖西安撫使)로 삼아 조령(鳥嶺) 등 요처를 제압하게 하였다. (…)

○行狀曰：(…) 至是奉朝賀崔奎瑞，方退居龍仁，因隣人安鑄，始知賊情，疾馳入告，**水原府使**宋眞明，續又械送上變人。王乃命兵曹判書吳命恒，爲四道都巡撫使，朴文秀·趙顯命爲從事官佐之，使率京營兵，徇安·竹南下問罪，以李汝迪·朴東樞爲繼援將，率京營兵及開城馬軍，爲都巡撫後援，張鵬翼爲鎮禦大將，陣北漢城下，以防西憂，尋代金重器爲摠戎使，出鎮**水原**。鄭續述爲捕盜大將，李廷濟爲京畿監司，防守漢江銅雀津，金東弼爲經略使，開府·南漢分兵遮截龍仁等諸要路。兪拓基爲楊州牧使兼東路鎮禦使，領兵進守鼓巖，金在魯爲忠州牧使兼湖西安撫使，控扼鳥嶺等處。(…) 영조 대왕 행장(行狀)

### 정치/군사

수원의 방어, 남한산성의 수어 등의 영을 합치고 혁파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다

“(…) 영(營)을 합치는 의논이나 경영(京營)에 대한 의논은 그전부터 명인석사(名人碩士)들이 일찍이 분명하게 말해 온 바였다. 고 판서 이식(李植)이 논한 말에 ‘방기(邦畿) 1백리 이내에 이미 총융청(總戎廳)이 있고 또한 수원(水原)의 방어(防禦)·남한산성의 수어(守禦)·강도(江都)의 유영 수군(留營水軍)이 있어 통어(統禦)를 각기 잡고 있으므로 병권(兵權)이 서로 통속(統屬)되지 않으니, 우매한 나의 소견에 경기(京畿) 안의 모든 진(鎭)을 총융청에 합병하면, 호령(號令)이 전일(專一)하게 되고 체통(體統)이 문란하지 않게 될 것이라 여긴다.’ 고 하였다. 처사(處士) 유형원(柳馨遠)의 논에도 ‘지금 경기(京畿)에 병사(兵使)를 따로 두지 않는 것은 또한 옛날의 제도이니, 대개 그 사리가 이러해서이다.’ 라고 하였다. 대저 이 두 가지의 말들이 어찌 오늘의 주모(籌謨)에 좌계(左契)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생각에는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總戎廳) 두 영문(營門)을 합치어 하나의 영으로 만들어 경기 좌우도 병마(京畿左右道兵馬)를 전관(專管)하도록 하여, 그 대부분 쓸모없는 군사와 쓸모없는 군량을 감하게 된다면 곧 계획에 맞아들듯 싶으니, 그 병조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시임 대신(時任大臣) 및 원임 대신(原任大臣)과 묘당(廟堂)·육조(六曹)·삼사(三司)의 신하들에게 수의하여 계문(啓聞)하게 하라.” 하였다.

○(…) “合營之議，京營之論，古來名碩所嘗明言者也。故判書李植之議曰：‘邦畿百里之內，既有摠戎，又有**水原**方禦，南漢守禦，江都留營水軍，統禦各操，兵柄不相統屬，愚意，畿內諸鎭，併於摠戎，則號令專一，體統不紊矣。’ 處士柳馨遠之論曰：‘今京畿不別置兵使，亦是古制，蓋其事理如此矣。’ 大抵兩說，豈非今日筠謨之左契乎？予意則守摠兩營門，合爲一營，專管京畿左右道兵馬，而省其許多冗兵冗食，則似乃計之得者也。其令兵曹，以此收議於時·原任大臣·廟堂·六曹·三司之臣以聞。”

<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윤6월 13일(신미)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어청과 총융청 양영을 합치는 것에 대한 대신들의 헌의

시임 대신(時任大臣)·원임 대신·비국 당상·육조·삼사의 신하들이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 양영(兩營)을 합치는 것에 대하여 헌의(獻議)하였다. (…) 겸 예조 판서 이경호(李景祐)가 의논하기를,

“옛날에도 국가를 위한 계책은 쓸모없는 군사를 도태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었고, 군제(軍制)를 논할 적에는 반드시 전일(專一)하게 총할(總轄)함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번에 수어영(守禦營)과 총융영(摠戎營) 두 군영을 합치는 일로 성상께서 내리시는 분부가 근간하고 진지하신데, 지획(指劃)을 합당하게 하고 원대하게 계책을 해 감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것 이외에는 나설 것 없으니, 매우 훌륭하고 너무도 훌륭한 일입니다. 단지 이 양영의 설시(設施)에 관하여는 전후에 누차 바뀌어 그 말이 한 가지 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쓸모없는 군사는 도태해야 한다고 한다면 수어영이나 총융영 양영을 다같이 쓸모없는 군사라 하여 모두 도태해야 할 것이고, 만일에 총할(總轄)이 전일(專一)해져야 한다고 한다면, 총융영은 수원(水原)·파주(坡州) 등 제진(諸鎭)의 군무(軍務)를 절제(節制)해 오고, 수어영은 산성(山城)을 맡아 보장(保障)이 되어지는 일을 총령(總領)해 와서 관장하는 바가 각각 다르고 직무(職務)가 현저하게 다르니, 이는 소임을 분담하여 성과를 책임지우기 위한 것입니다. (…)” 하고,

지중추부사 구선복(具善復)이 의논하기를,

“(…) 양영을 합친 다음에는 어느 군영이든 막론하고 그대로 이 영에 있으면서 도성의 등을 호위(護衛)하게 하다가, 만일에 위급할 때를 당하게 되면 기우(畿右)의 군사를 절제(節制)해 가며 임진강(臨津江) 이남을 공액(控扼)하게 한다면, 전투하게 될 때나 수비하게 될 때나 모두 여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남한 산성에 있어서는 광주 부윤(廣州府尹)이 병마(兵馬)에 관한 소임을 겸임하고 있으면서 평소에는 경영(京營)의 절제(節制)를 받다가 위급할 때에 임하여는 각자 방어해 가게 되고, 남쪽에는 수원 방영(水原防營)이 있고 동쪽에는 광주 산성(廣州山城)이 있고, 서쪽에는 파주 방영(坡州防營)이 있고, 북쪽에는 양주 후영(楊州後營)이 있으니, 신경(神京)에 관한 방어의 견고함과 남북쪽 호위(護衛)의 웅장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신은 곧 무신(武臣)이기에 군제(軍制)의 형편을 이처럼 망령되이 부진(附陳)합니다.” 하고, (…)

행 병조 판서 이휘지(李徽之)가 의논하기를,

“(…) 신의 생각에는 경리청(經理廳)을 북한 산성에 이속(移屬)하고, 관성장(管城將)을 조금 명칭과 위계(位階)를 높이어 세검정(洗劍亭)에 있으면서 성첩(城堞)을 수치(修治)하고 기계(器械)를 수리하고 창고(倉庫)를 수비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총융사를 혁파하게 되면 기보(畿輔)에 병사(兵使)가 없을 수 없으니, 총융청의 원군(元軍)을 절반으로 나누어 수원부(水原府)에 소속하여 병사로 승격(昇格)하고, 감영(監營)의 군제(軍制)도 모양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그 절반은 감사(監司)에게 맡겨 기각(掎角)의 형세가 되게 해야 하고, 여타의 수어청과 총융청의 갖가지 잡색(雜色)들과 경군(京軍)의 유식(遊食)하는 자들을 일체 모두 제과(除罷)한다면 또한 족히 경기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납미(納米)하는 곤궁이 풀리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남쪽과 북쪽에서도 각각 신지(信地)를 얻게 되고 안과 밖에 자연히 통령(統領)이 있게 될 것입니다마는, 노망(鹵莽)한 신의 몸이라 군국(軍國)의 대계(大計)를 감히 질언(質言)할 수 없습니다.” 하고, (…)

지평 김익휴(金翊休)가 의논하기를, “(…) 대저 지금의 수어사는 좌도(左道)의 군사를 오로지 관할하여 광주(廣州)에서 습조(習操)하게 되고, 총융사는 우도(右道)를 오로지 관할하여 수원(水原)에서 습조하게 되니, 만일에 수령(守令)이 방어사(防禦使)를 겸임하는 예대로 수어사의 군사를 광주에 소속시켜 부윤(府尹)이 거느리게 하고, 총융사의 군사를 수원에 소속시켜 부사(府使)가 거느리게 하여 좌우의 별장(別將)을 삼아야 합니다. 경기 방백에 있어서는 이미 병마 절도사를 겸임하고 있고 더구나 그 영문(營門)이 경성(京城)에 밀접하게 가



까우니, 수어청과 총융청 양영이 관할하고 있는 좌우도(左右道)의 군사를 통할(統轄)하여 거느리게 한다면, 단속해 가기가 전일하게 되어 마치 팔이 손가락을 부리듯 하게 되며 엄연(儼然)하게 기보(畿輔)의 하나의 큰 군문(軍門)이 되어져 둘을 합쳐 하나의 군문을 만드는 일을 할 것도 없이 쓸모없는 군사와 쓸모없는 군량의 폐해를 제거하게 될 것이니, 오직 조가(朝家)에서 좋을대로 변통하기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니, (...)

하교하기를, “내가 듣건대, 천하의 일은 경장(更張)과 고식(姑息)이 다같이 폐단이 있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경장이 고식보다 폐단이 더욱 심한 것이다. 고식의 폐해는 속으로 쇠약해지고 보이지 않게 녹아나게 되다가 필경에는 시들해지므로, 이는 알기도 어렵고 손해도 더디게 되지마는, 경장의 폐해는 준답(噂沓)하느라 어지럽게 되다가 마침내는 소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는 발견하기가 쉽고 손해가 다급하게 되어진다. 이리므로 옛날의 명철(明哲)한 임금들이 손익(損益)할 즈음에 잘 살펴서 합당하게 인습(因襲)해 가고 개혁해 가기를 바랐던 것이니, 이는 어찌 일을 하기에 있어 뜻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느냐? 지난번 수어청과 총융청을 합치는 것이 합당한지 않은지를 헌의(獻議)하도록 명했었거니와, 아! 이 분부 때에 경장(更張)에 따르는 폐해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또한 지나치게 고식(姑息)에 따른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지난날 조참(朝參)이 있던 날에 네 가지 조목의 분부를 내렸었는데, 용정(戎政)을 닦는 것과 재정(財政)을 넉넉해지게 하는 조목이 그 중에 둘을 차지했었거니와, 말을 해도 실천하지 않았으니 어찌 말을 하지 않은 것과 다르겠느냐? 더구나 이 일초(一初)의 기회에 마땅히 방락(訪落)하는 도리를 힘써야 하겠기에, 마음 속에 무릇 우리 신린(臣隣)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찬양(贊襄)하여 나의 다스리기 바라는 뜻에 부응(副應)하려 생각할 것으로 여겼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것의 폐해를 바로잡으려면 개혁해 가기 쉽고 시행해 가기 어렵지 않은 이 일을 제쳐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또한 생각해 보건대 인순(因循)이 풍속이 되어버린 지 그 유래가 오래이다. 돌아보건대 당면한 지금 신복(新服)한 초두(初頭)에 조정의 다스리는 효과가 바람처럼 움직여 주는 체세(體勢)에 이르지 못했고 보면, 경장(更張)해 가는 일을 경이(輕易)하게 논의하는 것은 혹시 너무 졸속(拙速)하게 될 혐의가 있게 되겠기에, 이미 경장해 갈 수 없을 것이라 헤아렸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을 보게 되어서는, 혹자는 마땅히 하나의 군영(軍營)만 두어야 한다고 하며, 혹자는 양영을 아울러 혁파해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군영을 합치고 나가서 진수(鎭守)해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양영은 그대로 두고 나가서 진수해야 한다고 하며 하고, 혹자는 마땅히 경국(京局)에 소속시켜야 한다고 하며, 혹자는 마땅히 기백(畿伯)에게 소속시켜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둘 다 그대로 두고 쓸모없는 것만 도태해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하나만 혁파하여 증치(增置)해야 한다고 하여, 의견이 각각 한결같지 않고 말이 분명한 목적이 없었으니, 참으로 이른바 ‘길가의 집[道傍之舍]이라 이루기 어렵다.’ 고 한 말과 같다.

대저 의논은 비록 널리 하는 것이 귀중하지만 결단은 위에 달린 것이란 말도 또한 그렇지 않는 데가 있는 법이다. 만일에 백련강(百鍊剛)과 같은 방책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만전(萬全)한 계책을 구득하지도 못하고서 단지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억견(臆見)에 맡기어 결단하면서, 이 일은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게 된다면 일을 능란하게 결단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되어야 하는 절목(節目)과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어찌 모두 십분(十分) 흠이 없게 되겠는가? 그렇게 하기 보다는 어찌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이 나옴만 하겠는가? 또한 생각해 보건대, 일을 도모해 가는 도리는 또한 마땅히 익히 헤아려보고 난만하게 상량(商量)해서 해야하는 법이니, 수어청과 총융청에 관한 수의(收議)는

다시 전두(前頭)를 기다려 보아 처분하겠다.” 하였다.

壬午/時·原任大臣·備局堂上·六曹·三司之臣，獻守摠兩營合設議。(…)兼禮曹判書李景祐議曰：“古之爲國計者，莫善於汰冗兵，論軍制者，必貴於專摠轄。而今以守摠兩營合設事，聖諭勤摯，指劃之宜，宏遠之謨，不出此二者之外，甚盛甚盛。第茲兩營設施，前後屢變其說不一，而若曰，冗兵可汰也，則摠兩營，均之爲冗兵，皆可汰也，若曰摠轄可專也，則摠戎節制，水原·坡州等諸鎮軍務，守禦摠領，山城之保障，所掌各殊，職務迥異，此所以分任責成者。(…)知中樞府事具善復議曰：“(…)兩營合設之後，無論某營，使之仍居此營，護衛都城之背，而若當緩急之時，則節制右畿之兵，控扼臨津以南，戰守俱當有裕矣。南漢則廣州府尹兼管兵馬之任，平時受節制於京營，臨急各自防禦，則南有水原防營，東有廣州山城，西有坡州防營，北有楊州後營，神京控禦之固，南北屏衛之壯，莫過於是矣。臣是武臣，軍制形便，妄此附陳。”(…)行兵曹判書李徽之議曰：“(…)臣謂經理廳，移屬北漢，管城將稍尊名位，處於洗劍亭，俾之治城堞·修器械·守倉庫，以備不虞。而摠使革罷，則畿輔不可無兵，使摠廳元軍分半，屬之於水原府，陞爲兵使監營，戎制不能成樣，其一半付之監司，而爲犄角之勢，其餘守摠諸般雜色及京軍遊食者，一併除罷，則亦足使幾民，小紓納米之困，於南北各得信地，於內外自有統領，而以臣鹵莽，軍國大計，不敢質言。”(…)持平金翊休議曰：“(…)今夫守禦使，專管左道兵，習操於廣州；摠戎使，專管右道兵，習操於水原，若以守令兼防禦之例，守禦之兵，屬之廣州，而府尹將之；摠戎之兵，屬之水原，而府使將之，分爲左右別將。至若京畿方伯，既兼兵馬節度，矧其營門密邇京城，使之統領守摠兩營，所管左右道之軍，則約束如一，如臂使指，儼然作畿輔之一大軍門，不煩合二爲一之舉，可除冗兵·冗食之弊，惟在朝家從長通變而已。”(…)教曰：“予聞天下事，更張·姑息，均有弊焉，更張視姑息，爲弊愈甚。姑息之弊，歸於潛銷暗鑠，必底委靡，此則難知而害遲也。更張之弊，歸於噂沓紛紜，竟致騷擾，此則易見，而周急也。是以古先哲王，審於損益之際，求其因革之宜，是豈無意於有爲而然也？向也，以守摠合營當否，有獻議之命，吁！是教也，非是不念更張之弊，亦非過矯姑息之弊也。月前朝參日，爰降四日之教，而詰戎裕財之目，居其二焉。言而不踐，奚異不言？況茲一初之會，當懋訪落之道，意謂凡我臣隣，思欲勵精贊襄，以副予求治之志。故欲矯二者之弊，無出茲事之爲易改，而不難行也。然又思之，因循之成俗，厥惟久矣。顧今新服之初，朝廷之治效，未臻風動之體，則更張之事，輕易論說，或涉太速之嫌，已料其不可更張矣。及見諸議，或曰當存一營，或曰並革兩營，或曰合營而出鎮，或曰兩營而出鎮，或曰當屬京局，或曰當屬畿伯，或曰并存而汰冗，或曰一革而增置，意各不一。言無明的，眞所謂道傍之舍，難乎其成也。大抵，謀雖貴廣，斷則在上，而亦有不然者。若其不思百鍊之策，未獲萬全之計，而但以一人之意，任臆而斷曰，茲事可行云爾，則事似能斷，而諸凡節目之詳，措置之具，豈皆十分無此乎？與其然矣，曷若且置之爲愈歟？且念謀事之道，亦宜熟量而爛商也，守摠營收議，更待前頭處分。”

<정조실록 5권, 정조 2년 윤6월 24일(임오)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사직 윤면동이 도성과 경기의 방어책에 대해 상소하다

사직 윤면동이 상소하길, (…) 지금 우리 도성은 또한 평야(平野)에 세운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이처럼 지키기가 어려우니, 바로 이 방법을 써야 마땅합니다. 기영(畿營)을 홍제원(弘濟院)의 평탄한 곳으로 옮겨 설치하게 하고, 녹번현(綠番峴)과 홍제천(弘濟川) 수구(水口)의 바위가 험준한 곳에 작은 성을 견고하게 쌓는다면, 모화현(慕華峴) 한쪽에는 성을 쌓지 않아도 또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있게 됩니다. 총영(摠營)을 혁파하고 그 군사

들은 기영에 예속시켜 한북문(漢北門)의 길과 안현(鞍峴) 및登高현(登高峴), 우수현(禹壽峴), 동문(東門) 밖을 방어하게 하고, 왜유현(倭踰峴)·안암동(安巖洞), 봉래산(蓬萊山) 등지에 각각 하나의 작은 성을 축조하면, 모두 합쳐서 5, 6개에 지나지 않아 3리도 못되는 작은 성이지만, 높은 지형을 이용하여 요새를 만들고 백성을 모집하여 들어가서 거처하게 한 다음 각각 창고를 설치하여 칠강(七江)과 부내(部內)의 인민들이 난리를 당하였을 적에 입보(入保)할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성은 인왕산(仁王山)·북악산(北岳山)·타락산(駝駱山)·목멩산(木覓山) 등 이 네 산의 위에 각각 일대(一隊)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정기(旌旗)를 벌여 세워 놓게 하고, 성 안의 각방(各坊)에는 시가전(市街戰)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미리 준비해 놓게 한다면, 사방의 성문을 밤새도록 활짝 열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적군도 또한 매우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 산성과 탕춘영(蕩春營)을 증축해서 강창(江倉)의 미곡(米穀)을 모두 그 안에다 실어다 놓고 온 도성의 사람들이 입보(入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성 밖의 여러 작은 성이 격파되지 않는다면 도성은 범접할 수 없고, 도성이 격파되지 않는다면 탕춘·북한을 또한 감히 갑자기 범접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정전법(井田法) 식으로 성을 지킨다는 말과 서로 똑같은 것입니다. 파주 목사는 고을을 혜음령(惠陰嶺) 위로 옮기고 양주 목사는 고을을 홍복 산성(洪福山城)으로 옮기게 함으로써 북한 산성을 밖에서 가로막도록 하되, 기영(畿營)에서 총괄하여 통제하게 함으로써 서북쪽을 막아야 합니다. 수원(水原)의 병마(兵馬)는 수영(守營)에 예속시켜 동남쪽의 길을 막게 하고, 또 침도(沁都)의 해방(海防)과 더불어 사면을 둘러서 막게 하면서 각성(各城)이 공동으로 지키게 한다면, 인심에 동요하지 않게 되어 서울을 반드시 지켜야 할 곳으로 여기게 되고, 굳게 지키면서 버티어내어 근왕(勤王)의 군사나 의사(義士)의 군대를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司直尹堯東上疏曰：(…) 都城，則仁王·北岳·駝駱·木覓四山之上，各屯一枝軍，列樹旌旗，城中各坊，預備巷戰之具，則四城之門，雖通夜大開，賊亦知虎口之法，必無敢犯者矣。兼又增繕北漢及蕩春營，江倉米穀皆輸其中，以爲通一都入保之所也。城外諸小城不破，則都城未可以犯，都城不破，則蕩春·北漢亦未敢猝犯。此乃與井田守城之說，相爲表裏矣。坡州牧使，則移邑於惠陰嶺上；楊州牧使，則移邑於洪福山城，以爲北漢外蔽，而摠統於畿營，以捍西北。水原兵馬，則屬於守營，以捍東南之路。又與沁都之海防，四面環控，各城共守，則人心不撓，視京師爲必守之地，足可以堅持揆度，以待勤王之師·義士之旅矣。(…)

<정조실록 6권, 정조 2년 7월 20일(정미)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정언 이석하가 역로의 피폐와 수원의 중군에 대해 상소하다

정언 이석하(李錫夏)가 상소하기를, “(…) 역로(驛路)의 피폐는 요사이와 같은 적이 없었는데, 진실로 그 피폐하게 된 원인을 추구(推究)해 보면 마위전(馬位田)을 도지(賭地)로 사매(私賣)한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뒤로는 해도(該道)와 해역(該驛)으로 하여금 평민(平民)들 가운데 사매(私買)한 자를 사핵(查覈)해 내어 준엄하게 형벌해서 먼 데로 귀양 보내고, 살피서 검칙(檢飭)하지 못한 해당 역관(驛官)에 있어서도 적발되는 대로 논죄(論罪)하여 감단(勘斷)한다면, 거의 조금이라도 소생(蘇生)시켜 개혁하는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水原)의 중군(中軍)은 곧 양남(兩南)의 인후(咽喉)와 같은 것이니 관계됨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마는, 차임(差任)하여 보내기를 전조(錢曹)에서 하지 않고, 다만 해부(該府)에서

계청(啓請)하여 하기 때문에 자급(資級)이 낮고 물망(物望)이 가볍게 되므로, 대개 겨우 도임(到任)했다가 앞당겨 돌아가버리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만일에 다른 데의 중군의 예대로 삼망(三望)을 갖추어 낙점(落點)을 받게 한다면, 처지와 물망이 목직해지게 되고 군무(軍務)도 비게 되는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 제 3·제 4건의 일은 그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正言李錫夏上疏曰：(…) 驛路凋殘，莫近日若，苟究爲弊之源，莫非馬位田私賣賭地之致。此後令該道·該驛，查櫛平民之私買者，嚴刑遠配，不能察飭之該驛官，隨現論勘，則庶可爲一分蘇革之道矣。水原中軍，卽兩南咽喉，關係何如，而差遣不由銓曹，該府只以啓請，故資淺望輕，率多纒到經還。若依他中軍例，備望受點，則地望可重，戎務無曠。批曰：“(…) 第三件·第四件事，依施。”

<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 10월 15일(계유)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방어책·병제·무기 등에 대한 유학 조익의 상소

유학(幼學) 조익(趙翼)이 상소하기를, (…) 병제(兵制)의 경우 우리나라의 군졸은 팔도(八道)를 통합하여 명색은 거의 1백 수십만에 가까우나 하나도 쓸 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제도를 정하여 교생(校生)과 원생(院生)을 취재(取才)하되 서강(書講)에서 우등한 자를 교생·원생으로 차출하고, 군교(軍校)를 취재하되 무예(武藝)와 병서(兵書)에서 우등한 자를 역시 군교로 차출하며, 선파(璿派) 및 충의위(忠義衛)로서 감축(減縮)에 대신할 자를 부적(符籍)을 상고하고 상세히 조사하여 부정(不正)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대부가(士大夫家)의 묘노(墓奴)와 각궁(各宮)의 산지기[山直]에 일정한 수효가 있게 하여 거둬 법제(法制)를 밝히면 군총(軍摠)의 충보(充補)에 거의 구간(苟艱)한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수군(水軍)에 있어서는 요즈음 조련(調鍊)이 없었고, 또 산군(山郡) 사람이 많아 물에서의 조사 훈련을 하는 경우 태반이 현기증을 일으키니 어찌 손발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수군은 연해(沿海)와 연강(沿江)을 막론하고 모두 포촌(浦村) 사람으로 충정(充定)한다면 실효(實効)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 군문(軍門)에 있어서는 오영(五營)을 설치한 것은 오위(五衛)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 두 영(營)에 있어서는 한갓 실상이 없는 장부(帳簿)만 가지고 있으므로 나라의 큰 해가 되고 있으니, 이 두 영을 폐지하여 남한 산성(南漢山城)은 광주 부윤(廣州府尹)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북한 산성(北漢山城)은 관성장(管城將)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것입니다. 수원(水原)·광주(廣州)·양주(楊州)·파주(坡州)를 서울의 사보(四輔)로 삼아 장초(壯哨)와 아병(牙兵)을 양주·광주·파주의 세 고을에 분속(分屬)하여 친병(親兵)으로 삼고, 또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두 영에 향군(鄉軍)으로서 번(番)에 올라오는 자를 2개월마다 교대(交代)하니 한갓 왕래하는 노력(勞力)만 소비할 뿐 농사짓는 일에 방해가 되며, 비록 조련을 하는 일은 있으나 숙련(熟練)이 되지 못합니다. 두 영을 폐지한다면 그 표하(標下) 및 원역(員役) 가운데에서 소장자(少壯者)를 선발하여 이정(移定)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서울의 한가로이 노는 자를 가려서 그 수를 채우고, 향군(鄉軍)의 신역(身役)을 거두어 대신 지급토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련하는 법은 1년에 한 차례씩 하도록 되어 있으나 만약 기근(饑饉)이 있을 경우에는 번번이 정지시키니 일이 중간에서 단절(斷絶)이 되는 탄식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이 농사가 한가할 때마다 두 차례의 조련을 행하고, 1월과 7월에도 역시 사사로이 조련을 하며 병영(兵

營)과 수영(水營)에서 3년마다 합동으로 조련을 행한다면 거의 조련을 정지하는 탄식이 없을 것이고 늘 조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幼學趙익上疏曰：(…)兵制則我國軍卒，統合八道，名色殆近一百數十萬，而無一可用，寧不寒心乎？自今定制校院生取才，而書講優等，差校院生，軍校取才，而武藝·兵書優等者，亦差軍校，而濬派及忠義之減省代數者，考籍詳覈，無使僥濫。士夫家墓奴·各宮山直，使有定數，申明法制，則軍摠充補，庶無苟艱之患矣。至於水軍，近不調習，而又多山郡人，若當水操，則大半眩暈，顧安有措手足乎？水軍則毋論沿海·沿江，皆以浦村人充定，則可有實效矣。至於京軍門，則五營之設，欲矯五衙之弊也。至若守·摠兩營，徒擁虛簿，爲國大蠹。革罷兩營，南漢，專委於府尹，北漢，專委於管城將。而以水原·廣州·楊州·坡州，爲京師之四輔，而壯哨·牙兵，分屬於楊·廣·坡三邑，以爲親兵，且禁御兩營鄉軍之番上者，每以兩朔遞代，徒費來往之勞，而妨於作農，雖有閱習之舉，而不能慣。兩營若罷，則以其標下及員役，揀選其少壯者移定，而如有不足，則擇京中間遊者，以充其數，收來鄉軍之身役，以爲給代，則我國操鍊之法，一歲一次，而若有饑饉，輒爲停廢，安得免十寒一曝之歎乎？守令·邊將，每於農隙，兩次操習，正月·七月，亦爲私習，而兵·水營三年合操，則庶無停操之歎，而常有鍊習之效矣。(…)

<정조실록 20권, 정조 9년 7월 26일(계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부의 군사에게 주는 급료를 본부에서 주게 하다

다음과 같이 진교하였다. “수원부(水原府)의 삼색군(三色軍)에게 급료를 주는 것은 곧 현릉원(顯隆園)에 행차할 때 호위를 시키기 위한 것이다. 비록 행차할 때가 아니더라도 관청 문 앞에 줄곧 서있는 군사에게 주는 급료를 대동미(大同米)에서 지출하는 것은 오랜 전례와 가까운 전례가 많다. 더구나 어부미(漁夫米)를 바치게 하는 것은 수원 백성들에게는 몹시 고통스러운 폐단인데 한 포대의 용량이 수십 두를 넘으니 지금에 와서 그 어깨의 짐을 벗겨 주게 된다면 어찌 수원 백성들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매년 바치는 어부미를 전부 급료로 주는 몹에 넘기고 부족한 숫자는 대동미에서 떼어놓음으로써 3백 섬의 수량을 채울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뒤에 만약 사옹원(司饗院)에서 침해하는 폐단을 모조리 없애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각별히 신칙하라. 본부의 사체가 어찌 통제사(統制使) 군영의 요새지에도 할 수 있겠는가. 저기에는 시행하라고 허락한 전례가 있는데 더구나 본부이겠는가. 본부에서 바치는 어염세(魚鹽稅)를 특별히 본부에 이관시켜서 군사들에게 주는 급료에 보탬이 되게 하라.”

○敎曰：“水原府三色軍支放，卽園幸時駕前所用。雖非動駕之時，長立官門，爲支放區劃大同，既多久例與近例。況漁夫米爲水原切苦之瘼，一包之容，優過數十斗，及此得以息肩，豈非水民之幸乎？以每年所納漁夫米，全屬支放條，不足之數，以大同中除留，以準三百之數。如是之後，若不盡革廚院侵虐之弊，則其可曰一舉兩得乎？各別申飭。本府事體，豈比統關關防？彼有許施之例，況本府乎？本府納魚鹽稅條，特爲劃屬本府，以補支放。”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4월 17일(정묘)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부사직 강유가 수원에 성을 쌓고 참호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기를 건의하다

부사직(副司直) 강유(姜游)가 상소하기를, “수원(水原)은 곧 충융청(攄戎廳)의 바깥 군영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진(鎭)이고 더구나 또 막중한 능침을 받드는 곳이니, 의당 특별한 조

**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새읍을 옮겨 설치하였으나 성지(城池)의 방어설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번에 옮겨 설치한 것을 계기로 성지도 아울러 경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옛사람의 말에 ‘금성탕지(金城湯池)’라고 한 것은 곧 참호를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적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산을 의지하여 쌓게 되어 참호를 설치할 수 없으니, 이는 옛 제도가 아닙니다. 새읍은 이미 들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므로 과연 성을 쌓고 참호를 설치한다면 실로 성을 설치하는 조건에 맞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여기에 성을 쌓아 **독산성(禿山城)**과 서로 견제하는 세력을 만들고, 유사시에 협공의 형세를 이루게 한다면 설사 난폭하고 교활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병법(兵法)에서 꺼리는 것임을 알고 감히 두 성 사이를 엿보지 못할 것입니다. 논의하는 사람들이 만약 석성(石城)을 쌓자면 비용이 많이 든다 하여 어렵게 여긴다면, 토성(土城)을 견고히 쌓는 것이 주먹같은 돌을 포개어 쌓는 것보다 도리어 낫습니다. 만약 토성에다가 성가퀴를 설치하고 군데군데 치성(稚城)을 설치하면 방어하는 방도로는 석성이나 토성이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 듣건대 새읍에 집을 짓는 자는 절반이 유생(儒生)이라 합니다.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그들과 더불어 성을 지키기 어려우니 역시 군사들을 불러들여 집을 짓게 하고 복호(復戶) 5백 결 내에서 그 절반을 군병에게 떼주어 살아갈 길을 삼게 하며, 또 각 군문으로 하여금 새읍 부근에 둔전을 설치하게 하여 군병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군문에서 그 세를 징수하게 한다면 토지 없는 군사들이 반드시 앞을 다투어 모집에 응할 것입니다.” 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였다.

○副司直姜游上疏曰: **水原**乃摠戎廳之外營, 而爲國家之重鎮, 況又奉莫重之地, 宜有別般制置之道, 今此新邑移設, 而無城池之設險. 臣謂因此移設, 竝與城池而經紀宜矣. 古人曰金城湯池者, 卽設塹之謂, 而我國山多野少, 每依山爲城, 而不得設塹, 非古制也. 新邑既是野中, 果令築城設塹, 則實合置城之制. 今若築城於此, 與禿山之城爲角犄之勢, 當不虞之時, 而成夾攻之形, 則雖有桀黠之賊, 亦知兵法之所忌, 不敢窺兩城之際矣. 議者若以石城之多費難之, 則土城之完實, 反勝於拳石之相累. 若於土城, 又設女堞, 而間置雉城, 則防守之道, 石與土無間矣. 又聞築室於新邑者, 半是儒生云. 緩急難與守城, 亦爲募入軍兵, 使之築室, 復戶五百結內, 折半除給軍兵, 以爲聊賴之地. 又使各軍門, 設置屯田於新邑近地, 使軍兵作農, 而自軍門收稅, 則軍兵之無田土者, 必爭應募矣. 命廟堂稟處.

<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6월 10일(기미)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사직 신기경이 상소하여 수원의 새 고을에 성을 쌓는 등 12조항을 올리다

사직(司直) 신기경(愼基慶)이 상소하여 당면한 문제 12조항을 올렸다. 첫째는 영남의 조선(漕船)을 경강(京江)에 이속시켜 세곡을 운반하게 하자는 일이고, **둘째는 수원(水原)의 장교와 이졸(吏卒)들에게는 송도(松都)에서 시행하는 법에 따라 매달 급료를 지급하자는 일이고, 셋째는 수원의 군병들은 기병이나 보병을 막론하고 부유한 집의 장정들로 인원을 충당하자는 것이고, 넷째는 임진년과 병자년의 난리 때 창의사(倡義使) 우성전(禹性傳)이 의리를 제창하여 공훈을 세웠고 고 병사(兵使) 김준룡(金俊龍)은 오랑캐를 섬멸하여 공을 세웠으니 마땅히 상주어 장려하자는 일이고, 다섯째는 수원의 새 고을에 마땅히 성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고, 여섯째는 과천(果川)에서 조세 이외의 전결을 면제하여 예전처럼 부(府)의 아전에게 떼어 주자는 것이고, 일곱째는 어물 장사꾼과 그들을 상대로 살아가는 동촌(東村) 객주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물 장사꾼이 방세를 계산하여 주는 대신 그들이 제값을 받고**

팔도록 하자는 것이고, 여덟째는 경비가 필요한 관청이 아닌 경우에 토지를 고발할 때 4분의 1을 상으로 주는 것을 더욱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아홉째는 경주인 집에 반아둔 명천(明川) 백성들의 전세(田稅)와 신포(身布)는 애초에 탕감하라는 명에 따라 본읍에 내어 주자는 것이고, 열째는 거창(居昌)의 토지 측량이 공정하지 않았으니 징계하는 조치를 보여주자는 것이고, 열한째는 곽산(郭山)과 선천(宣川)의 오래 묵은 환곡은 당분간 천천히 바치도록 하자는 것이고, 열두째는 의주(義州)의 양하진(楊下鎭)은 진이란 명칭을 없애고 별장(別將)을 두자는 것이었다.

그 상소를 비변사에 내리니, 비변사에서 살펴 아뢰기를, “수원의 기병과 보병을 부유한 사림을 골라 충당시키는 것과 우성전 등을 포상하는 것과 토지의 고발을 금지하라는 세 조목은 마땅히 그에 따라 시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두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司直愼基慶，上疏陳時務十二條．一曰，嶺南漕船移屬京江，使之運稅；二曰，水原校吏，用松都法，月給料；三曰，水原軍兵，無論馬步，以富實丁壯者充額；四曰，壬丙之難，倡義使禹性傳，倡義樹勳，故兵使金俊龍，殲胡立功，宜加褒獎；五曰，水原新邑，宜築城；六曰，果川稅外權復，依前給府吏；七曰，東村魚商旅客主人，使魚商計給烟稅，任渠和賣；八曰，非經費衙門，則田土陳告之法，四一之賞，益加禁飭；九曰，明川民田稅身布之捧置邸家者，依當初蕩滅之令，出給本邑；十曰，居昌量田不公，當示懲勸；十一曰，郭山·宣川舊還，姑令徐捧；十二曰，義州楊下鎭，罷鎭號，置別將．命下其疏於備邊司．備邊司覆奏：“水原馬步軍以富實擇充·禹性傳等褒贈·禁田土陳告三條，當依施，餘竝置之。”允之．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22일(정유) 4번째기사>

## 정치/군사

사간 이운빈이 상소하여 수원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다

사간 이운빈(李運彬)이 상소하기를, “(…) 수원(水原)의 새 고을은 원침(園寢)을 옮겨 모신 뒤에는 그 형편이 특별한 데다가 삼남(三南)의 요충지이고 산성의 지리적인 이점을 끼고 있으니, 거처할 백성을 모으고 읍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늦출 수 없는 사안입니다.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경대부(卿大夫)와 사서인(士庶人) 가운데 재력이 넉넉한 자들을 모집하여 집을 짓게 한다면, 부유한 가구가 많아져 그 은택을 입는 자가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임금이 효성에서 우리나라와 추진하시려는 일이니, 그 누가 기꺼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한나라 때 장안(長安)의 오릉(五陵) 근처에 호걸이 많았던 것도 아마 이 법에 의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 수원의 새 고을에 부유한 집을 모아 자리잡게 하는 일은, 이전에도 애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 두서가 잡히지 않았다. 지금 생각으로는 짧은 기간에 민가가 즐비하게 들어서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이 때문에 밤낮으로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 다시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에 더 한층 유의하려고 한다.” 하였다.

○司諫李運彬上疏曰：(…) 水原新邑，園寢移奉之後，事面自別．在三南之要衝，挾山城之地利，聚民居而壯邑基，不可緩之務也．毋論京外卿大夫士庶人，募其財力饒厚者，使之築室，則饒戶居多，而沾漑者倍之．況吾君出自孝理，而所欲爲者，其孰不樂爲之從乎？漢時五陵豪傑，恐是此法．批曰：“(…) 水原新邑富實戶募接，前此非不辛勤，姑未就緒．以今所料，時日內難責櫛比之効．此所以夙夜憧憧，更欲十分留意於招徠之方．”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2월 13일(무오) 2번째기사>

정치/군사

전 수원 부사 조심태가 장용영 향군이 추천에 구애됨이 없이 할 것을 아뢰다

전 수원 부사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장용영(壯勇營)의 향군(鄉軍)을 건장한 사람으로 뽑을 때 장교(將校)들의 자제는 갖가지 방법을 써서 빠지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 장용영으로 급제한 자는 대오 출신이라 하여 말천(末薦)이나 부천(副薦)되는 피해를 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장용영은 왕궁을 호위하는 군사로서 그 처지가 각별하니, 앞으로는 서울의 각 군영에서 대오를 선발하여 추천하는 예와 똑같이 하여, 추천에 구애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부(本府)의 사체는 그 비중이 각별하니, 서울 군영의 대오들과 함께 추천에 구애됨이 없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아가 본부의 대오는 그냥 대오가 아니라, 서울의 선전관 추천으로 채워 넣는 내금위의 군사와 마찬가지로이다. 선전관 추천도 그러한데 더구나 말천과 부천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더더구나 본부는 본디 외도감(外都監)이라 불리우며, 근래에 특별히 더 뽑아 서울로 올려와 대궐과 아주 가까운 곳에 번을 세우도록 한 것은 군사 위엄을 장중하게 하고 군정을 닦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데도 만약 추천할 때 구애를 받는 일이 있다면 해당 책임자인 부장(部將)과 수문장(守門將)을 병판으로 하여금 엄히 곤장을 치고 아울러 수원부에 충군시키도록 하라. 이상의 내용을 병판에게 부(部)·수(守) 두 청에 엄히 신칙하게 하는 동시에 본 수원부로 하여금 장교들의 각청에 게시하게 하라.” 하였다.

○丙辰/前水原府使趙心泰啓言：“壯勇營鄉軍抄壯之際，將校子枝，百計圖免。探其因由，則渠輩以爲：‘壯勇軍登科者，謂以行伍出身，見積於末副薦而然’云。第念壯勇軍，係是宿衛之卒，所重自別。此後一依京各營行伍拔薦例，無礙越薦爲宜。”教曰：“本府事體，所重自別，與京軍門行伍之無礙越薦，竝無論，至於本府軍伍，則非軍伍也，如京一內禁軍之以宣薦充定也。宣薦猶然，況末副薦乎？又況本府，素稱外都監。近來別加抄擇，上京立番於大內至近之地，出於壯軍威儀戎政之意，此而若或拘礙於越薦時，則當該行首部將守門將，令兵判嚴棍，仍又充軍於本府，令兵判，嚴飭兩廳。”仍令本府，揭板於將校各廳。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4월 12일(병진) 1번째기사>

정치/군사

장용영과 수원의 군사에게 활과 포의 시험을 실시하게 하다

장용영(壯勇營)과 수원(水原)의 향무사(鄉武士)에게 활과 포 쏘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모두 회시(會試)에 부치라고 명하였다.

○命壯勇營·水原鄉武士試射放，竝付會試。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2월 28일(정묘) 6번째기사>

정치/군사

수원 독성 산성에서 고유때 쓰는 제사 용기, 제문의 규식을 정하다

수원 독성 산성(禿城山城)에서 고유(告由) 때 쓰는 제품(祭品)·제문(祭文)의 규식을 정하였다. 독성 산성을 수축하여 토신(土神)에게 고유하는 것인데 사체가 전에 비교하여 존엄하였다. 부사를 헌관(獻官)으로, 중군(中軍) 및 읍 안의 당상(堂上), 선천(宣薦) 조관(朝官)을 차헌(次獻)으로 삼고, 향축은 향관(香官)이 기영(畿營)에 전하면 기영에서는 문관 찰방(察訪)을 정하고 대축(大祝)을 겸하게 한 다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定水原禿城山城告由祭品·祭文之式·修築禿城山城，告由土神，而以事體之較前尊嚴，府使爲獻官，中軍及邑內堂上·宣薦朝官爲次獻，香祝則香官傳于畿營，畿營定文察訪，兼大祝行祀。  
<정조실록 35권, 정조 16년 7월 18일(을묘)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총융청의 오영(五營) 제도를 개정하고 관성장의 호칭을 별아병 천총이라 하다

총융청(摠戎廳)의 오영(五營) 제도를 개정하고 관성장(管城將)의 호칭을 별아병 천총(別牙兵千摠)이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전교하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의 관직 제도를 바로잡는 것은 그 일의 중대성으로 보거나 수도 방위의 요새지인 점으로 보거나 꼭 바로잡아야 할 일이기에 일전에 우선 별중영(別中營)으로 당분간 부르기로 하교했었다.” 총융청 영제(營制)에 있어서도 일정한 명칭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수어청(守禦廳) 예에 따라 삼영(三營) 제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성소는 그대로 별도의 한 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 묘당이 병판(兵判) 또는 총융사(摠戎使)를 지냈던 사람들과 상의하여 의견을 모아 초기하게 하라.” 하였는데, 이때 와서 비국이 아뢰기를,

“신이 병조 판서와 일찍이 총융사를 지낸 여러 장수들과 상의하였더니 모두들, 수원은 지금 총융사에 통속되어 있지 않으니 총융청의 영은 의당 수어청의 전영·중영·후영 제도를 모방하여 남양(南陽)의 전영과 장단(長湍)의 후영은 예전대로 호칭하고 파주(坡州)의 우영을 중영으로 호칭을 바꾸어 삼영 제도를 갖추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어청의 군제(軍制)를 보면 좌별장·우별장이 각기 아병(牙兵)을 거느리고 임시로 오영 군제로 호칭되고 있는데 총융청에도 이미 좌아병 천총·우아병 천총이 있으니 그 역시 수어청의 좌·우별장 예에 따라 임시로 오영으로 호칭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성장을 중부 천총(中部千摠)으로 호칭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단지 오영 호칭을 갖추자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수어청 예를 따라 좌·우아병 천총을 두고 오영으로 부른다면, 관성소를 별도의 1영으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딸린 군대래야 아병 5초(哨)와 승군(僧軍) 3백여 명에 불과하여 군인 총 숫자가 천 명도 차지 못하므로 그 자체 1개 영이 될 수도 없으니 앞서 말한 중부 천총을 별아병 천총으로 고치고 옛날대로 관성소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들 하였습니다. 대체로 이 변통은 군사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을 바꾼 것에 불과한데 수어청 제도가 이미 근거가 되고 있고 장수들의 의견도 서로 다르지 않으니 이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改定摠戎廳五營之制，號管城將爲別牙兵千摠．先是，教曰：“水原府使官制釐正，爲所重，爲保障，在所不已，而日前先以別中營，姑爲權稱下教矣．至於摠廳營制，不可無一定之稱號，依守禦廳例，當爲三營之制，而管城所亦當別作一營乎？令廟堂與兵判·摠帥曾經人相議，指一草記．”至是，備局啓言：“臣與兵判及曾經摠使諸將臣商議，則皆以爲：‘水原今不統屬於摠帥，則摠營宜倣守廳前中後之制，南陽之前營·長湍之後營，仍前稱號，坡州之右營，改稱中營，以備三營之制．且考守廳軍制，則左右別將各率牙兵，權稱五營之制，而摠廳既有左·右牙兵千摠，此亦依守廳左右別將例，權稱五營．至於管城將之以中部千摠稱號者，概由於只備五營之稱矣．今以左右牙兵千摠，依守廳例，稱以五營，則管城所不必別設一營．且其所領，不過牙兵五哨·僧軍三百餘名．軍摠不滿千數，則無以成一營之制，前所稱中部千摠，改以別牙兵千摠，依前管城似好．’云．蓋此變通，既非軍制沿革，不過營號改稱．守廳之制，既有可據，將臣之議，亦無參差，請依此施行．”允之．

<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 12월 15일(기묘) 4번째기사>

정치/군사

황해·평안도의 군량미 1천 5백석을 총융청에 떼 주어 수원부가 대신 납부하게 하다  
황해도와 평안도에 더 지급했던 군량미인 좁쌀 1천 5백 석을 총융청에 떼 주어 수원부가 납부할 쌀을 대신하게 하였다.

○乙酉/劃兩西添餉小米一千五百石于摠戎廳，以爲水原府所納收米之代.

<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 12월 21일(을유) 1번째기사>

정치/군사

수원부를 화성으로 바꾸고 부사를 유수로 승격시키다.

수원부(水原府)의 호칭을 화성(華城)으로 바꾸고 어필(御筆)로 현판을 써서 장남헌(壯南軒)에 걸었다. 부사(府使)를 유수(留守)로 승격시켜 장용 외사(壯勇外使)와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하게 하고, 판관(判官) 한 사람을 두어 보좌하게 하였다. 장용영 병방(壯勇營兵房)을 고쳐 장용사(壯勇使)라 하고, 도제거(都提舉)를 두어 호위 대장(扈衛大將)의 관청을 합해서 그를 소속시켰다. 전교하였다.

“왕위에 오른 이후로 재용을 많이 저축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 왔다. 그런데 다행히 황천에 계신 조종(祖宗)의 말없는 도움을 입어 용이 서리고 범이 웅크린 듯한 좋은 자리를 잡아 영원토록 천억만년 끝없는 큰 운세를 정하였으니, 이 땅의 소중함은 실로 주(周)나라의 풍(豊)이나 한(漢)나라의 패(沛)와 같이 융성할 것이다. 오직 이 곳을 잘 수호할 방도를 더욱 애써 치밀하게 하여 체모가 존엄하고 제도가 엄숙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 소자(小子)의 정리로나 예법으로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비유하자면 마치 종묘의 예절을 두고 먼저 백관(百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소중함에 관계되는 것이 이와 같다.

이곳 수원부는 <현릉원> 자리를 마련한 뒤로부터 관방(關防)이 더욱 중하여졌다. 아름다운 이 자연의 요해처에 달마다 꺼내 불 <사도 세자의> 의관(衣冠)들을 길이 봉안하리라. 미리 행궁을 세워 먼저 우러르고 의지하는 생각을 붙였고, 영정을 그려 걸어서 혼정 신성의 정성을 대신하니, 어린애처럼 어머니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에 북받쳐 올라 절제할 줄을 모르겠다. 매년 3백 일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손꼽아 기다리고 바라던 것이 오로지 예를 행하는 하룻동안에 있었기에, 이미 배알을 마치고 환궁하는 길에 수원부의 경계가 다하는 고갯마루에 거가를 멈추고 우러러 바라보며 머뭇거리노라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더디어지곤 하였다. 그래서 번번이 수신(守臣)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여 정성을 다해 수호하라는 뜻으로 거듭거듭 당부했었다. 그러나 그의 직책은 한 고을의 원이요 그의 품계를 물어보면 3품직의 자리이다. 책임자를 얻어 그 일을 맡기는 것이야 벼슬의 높낮이에 관계될 것이 아니겠지만, 조정의 거조란 지위가 높지 아니하면 위엄이 서지 못하는 것이다. 관방에 대해서는 우선 제쳐두고라도 나의 행궁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임무를 어찌 3품의 고을 원에게 맡겨둘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모든 일은 옛날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남한 산성은 단지 방위하는 성의 역할만이 있을 뿐인데도 대신이 사(使)가 되고 유수는 문반의 경재(卿宰)로만 오로지 차임하면서도 방위의 일을 위해서는 무장(武將)이 남한 산성에 통의(通擬)되었다. 그런데 더구나 이 곳 이 수원부의 소중함이겠는가.

지금부터는 수원 부사를 유수로 승격시키어 장용 외사(壯勇外使)와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하게 하고 오직 대신이나 무장으로 특지를 받아 <유수에 임명하고> 또 판관(判

**官)을 두어 보좌하게 하라.** 장용영을 설치한 지는 여러 해가 되었으나 장용영 장수의 칭호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은 외사(外使)가 나오기를 기다린 때문이다. 장용영 병방(壯勇營兵房)을 장용사(壯勇使)라 하고 장용영의 문서들에는 대장이라고 호칭하기를 마치 어영사(御營使)를 어영 대장이라 호칭하는 것처럼 하며, 도제거(都提舉)를 두어 그 법식을 갖추되 역시 경리영(經理營)의 도제거를 삼공이 예겸하는 것처럼 하고 호위 대장의 관칭을 합해서 그를 소속시키라. 그리고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의 군수 물자와 군사들의 식량을 마련하고 조처하는 것에는 모두 경비에 의존하지 않게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재용을 저축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 까닭이다.

나는 자나깨나 한 마음이 선대를 사모하는 데에 있다. 백성을 보호하는 것도 비록 길은 다른 것 같으나 거기에 쓰여지는 마음은 마찬가지로다. 이 백성은 곧 선왕의 백성이다. 그러니 지금 이 백성들을 감싸 보호하려면 의당 먼저 폐단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큰 폐단은 군영(軍營)이 많은 것을 덮을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설날 조참(朝參) 때에 네 가지 항목을 들어 하유하였는데, 네 가지 항목 중에서 군(軍)과 민(民)이 그 두 자리를 차지하였고 그 말을 한 것은 앞으로 행하고자 함에서였다. 선왕이 드나드셨던 문에 임하고 선왕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능히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비록 부덕하지만 욕스럽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으로 하여금 이 전교를 길이 새겨 보고 은미한 뜻을 자세히 헤아려서, 내가 이 일을 경영하여 우리 후인들을 계도해서 우리 국운이 억만년토록 영원하기를 비는 본의를 알게 하라.”

○改號**水原府**爲華城，御筆揭額于壯南軒。陞府使爲留守，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置判官一員佐之。改壯勇營兵房爲壯勇使，置都提舉，以扈衛大將合廳屬之。教曰：“御極以後，峙藏儲用，爲所重也。幸荷皇天祖宗之默佑，而龍盤虎踞之宅兆，永奠千億萬年無疆大曆數，是地之所重，實與周之豐·漢之沛，竝盛而齊隆。惟其拱護之方，愈勤而愈密，使體貌尊嚴，制度肅虔，卽予小子情文之所當然，譬若宗廟之禮，先言百官之美，其有關於所重者，如是矣。是地**水原府**，自卜園寢，關防增重。美哉！天作之襟帶，長奉月出之衣冠。預建行宮，先寓瞻依之思，摸揭圖像，用替定省之誠，而孺慕結轡，迷不知節。每歲三百日，無日不屈指而企企者，實在於禮行一日，而既展省將還駕，駕住府界峴上，瞻望躊躇，不自覺其吾行之遲遲，輒召(至) [致] 守臣於前，申之以恪謹拱護之義。顧其職則一邑倅也，問其品則三品窠也。得其人任其職，固不係於爵位，而朝廷舉措，不重則不威。關防，姑置之，爲予整理行宮諸務之任，豈可委諸三品邑倅也？然凡事莫若述古。南城，只管保障，而大臣爲使，居留專差文宰，而爲保障，則武臣通擬於南城，況是地是府之所重乎！自今**水原府使**，陞爲留守，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惟大臣·武將須特旨，又置判官以佐之。壯勇之設營有年，將臣之稱號未定者，以待外使之出也。壯勇營兵房，爲壯勇使，而營中文牒，以大將稱之，如御營使之稱御營大將，置都提舉，備其式，亦如經理營都提舉之三公例兼，而扈衛大將合廳屬之。若內外營軍需·兵食辦備措處，皆不藉於經費。此所以爲所重峙藏儲用者也。予之寤寐一心，在於慕先，而保民雖似殊岐，其用一致。斯民也，先王之民也。今欲懷保小民，宜先蘇弊，弊之大者，莫過於軍營之多。是以，予於初元朝參也，舉諭四日，四日之中，惟軍與民居其二。言之將欲行之，臨先王所御之門，踐先王所御之位，而徒言而不能副其言，予雖否德，汗不爲此。使中外熟看此教，諦究微旨，知予經之營之，啓佑我後人祈永萬億年之本意。”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2일(병오)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장용청 설치 연혁

앞서 임인년에 명하여 무예 출신(武藝出身)과 무예 별감으로 장교를 지낸 사람 30명을 가려서 【숙묘(肅廟) 을축년에 무예 별감 30명을 훈련 도감의 국출신(局出身)의 3개 번(番)에 번갈아 임명한 제도를 따른 것이다.】 번을 나누어 명정전(明政殿) 남쪽 회랑에 입직하게 하였다. 그리고 을사년에 장용위라 호칭하고 20명을 늘리니 이것이 장용영이 설치된 시초이다. 이때부터 해마다 인원을 늘려 왔는데, 적씨(戚氏)의 남군(南軍)제도를 본받아 5사(司)에 각기 5초(哨)를 두는 것으로 규례를 삼고 3초는 초마다 1백 15명으로 하였다. 【정규 군인 90명, 기총(旗摠) 3명, 대장(隊長) 9명, 서자적(書字的) 1명, 패두(牌頭) 1명, 고수(鼓手) 1명, 인기수(認旗手) 1명, 화병(火兵) 9명이다.】 정미년에 처음으로 27명을 두기 시작해서 무신년에 88명을 증원하여 좌초(左哨)를 만들었고, 신해년에 우초(右哨)를 늘렸으며, 계축년에 중초(中哨)를 늘렸다.

5초는 서울에 있었으니 초마다 1백 23명이었다. 【정규 군인·기총·대장은 위와 같고, 북마군(卜馬軍) 9명이 많았다.】 정미년에 전초(前哨)를 처음으로 두고 무신년에 중초와 후초를 늘렸으며 계축년에 좌초와 우초를 늘렸다. 5초는 수원에 있었는데, 기유년에 5초를 처음으로 창설하였는바 전초는 진위(振威)에 있고, 좌초는 양성(陽城)에 있고, 중초는 용인(龍仁)에 있고, 우초와 후초는 광주(廣州)에 있다.

2초는 무신년에 창설했는데, 우초는 고양(高陽)에 있고 후초는 파주(坡州)에 있으며, 3초는 을묘년에 증설했는데, 전초는 안산(安山)에 있고 좌초는 과천(果川)에 있고 중초는 시흥(始興)에 있다. 3초는 무신년에 창설했는데, 전초는 지평(砥平)에 있고 좌초는 양근(楊根)과 가평(加平)에 나뉘어 있고 중초는 양주(楊州)에 있다. 우초와 후초는 을묘년에 증설했는데, 우초는 양주에 후초는 장단(長湍)에 있다. 【초마다 정규 군인 90명, 기총 5명, 대장 9명, 서기(書記) 1명, 능마야(能鷹兒) 1명, 고수 1명, 인기수 1명, 사후(伺候) 2명, 부엌일하는 사람 1명, 화병 9명, 북마군 9명이다.】 96명은 임인년에 훈국 기예군(訓局技藝軍) 15명이 이속된 것을 비롯하여 을사년에 15명을 증원하고, 무신년에 17명을 증원하고, 기유년에 5명을 증원하고, 경술년에 9명을 증원하고, 신해년에 5명을 증원하고, 임자년에 9명을 증원하고, 계축년에 21명을 증원한 것이다. 【원군(元軍)이 85명, 서자적 1명, 패두 1명, 북마군 5명, 회자수(劄子手) 4명이다.】

92명은 임인년에 훈국 기예군 15명이 이속된 것을 비롯하여 을사년에 15명을 증원하고, 무신년에 13명을 증원하고, 기유년에 5명을 증원하고, 경술년에 9명을 증원하고, 신해년에 5명을 증원하고, 임자년에 9명을 증원하고, 계축년에 21명을 증원한 것이다. 【원군 이하는 위와 같고 회자수가 없다.】

95명은 정미년에 25명으로 창설하여 경술년에 25명을 증원하고, 계축년에 49명을 증원한 것이다. 【원군은 88명이었고 서자적 이하는 위와 같다.】

1백 명은 정미년에 28명으로 창설하여 경술년에 23명을 증원하고, 계축년에 49명을 증원한 것이다. 【원군은 93명이었고 서자적 이하는 위와 같다.】

65명은 무신년에 16명으로 창설하여 신해년에 7명을 증원하고, 계축년에 42명을 증원한 것이다. 【원군 51명, 서자적 1명, 패두 1명, 북마군 2명, 원역(員役) 10명이다.】

45명·50명·57명이 있다. 【등룡군(燈籠軍) 이하의 세 종류 군대로서 모두 정미·무신년부터 차례로 늘린 것이다.】

별장은 표하군이 40명, 사(司)는 표하군이 30명, 선기장(善騎將)은 표하군이 18명이었고, 초관(哨官)·지구관(知穀官)·교련관(教鍊官)·통장(統長)·장용위의 패두는 모두 사후군(伺

候軍)을 두었다. 공장(工匠)의 아병(牙兵)이 29명, 수송을 맡은 북마군이 40명이다. 5초는 6백 5명이고 표하군은 1백 64명이다. 배봉진(拜峰鎭)【기유년에 설치하였다.】은 아병 2초, 표하군 23명, 향취수(鄕吹手) 30명이고, 고성진(古城鎭)은【임자년에 이속되었다.】아병 2초, 표하군 58명이고, 노량진(鷺梁鎭)【계축년에 이속되었다.】은 좌우 아병 1백 21명, 표하군 23명, 향취수 30명이다.

그리하여 기병과 보병이 총 5천 1백 52명인데, 여기에 도제조【1원.】는 계축년에 처음 두어 대신 중에서 당시 호위 대장을 겸임한 사람을 예겸시키고, 호위청을 장용영에 통합하였다. 향색 제조(餉色提調)【1원.】는 호조나 선혜청의 시임 당상관이나 일찍이 역임한 사람을 갖추어 의망한다. 사(使)【1원.】는 일찍이 장수를 지낸 사람에게 제수한다. 계묘년에 처음으로 둔 병방(兵房)은 장수의 직임이나 포도 대장을 지낸 사람을 일찍이 임명하여 병방이라 이른 것이니, 그것은 정원의 병방 승지가 오위(五衛)의 습조(習操)와 점고를 관장하는 예를 본뜬 것이다. 계축년에 사(使)【문서에서는 대장(大將)이라 칭했다.】로 호칭을 바꾸고 일찍이 장신(將臣)을 지낸 사람을 제수하였다.【오래 군색 제조(軍色提調)를 겸했다.】종사관(從事官)【1원.】은 정미년에 처음으로 두어 음관(蔭官)으로 임명하였다. 선기 별장(善騎別將)【2원.】은 신해년에 처음으로 두어 아장(亞將)으로 임명하였다. 습진(習陣) 때나 중일 시사회(中日試射會) 때의 행 중군(行中軍)·행 파총(行把總)【5원.】은 무신년에 처음으로 두어 기유년과 계축년에 증설하였는데, 2품 절도사에서부터 방어사까지의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선기장(善騎將)【3원.】은 정미년에 처음으로 두어 신해년과 계축년에 증설하였는데, 당상 3품관으로 임명하였다.

초관(哨官)【25원.】은 정미년에 처음으로 두어 무신년·기유년·계축년에 증설하였는데, 당하 3품관 이하로 임명하였다. 액외 장용위(額外壯勇衛)【15원.】는 신해년에 처음으로 두어 장수 집안의 자손이나 지벌이 두드러지거나 여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가려서 임명하였다. 그리고 지구관(知穀官) 21원, 무예 통장(武藝統將) 2원,【무예 별감을 거느려 숙위에 대비한다.】별부료(別付料) 2원,【글을 알고 계산에 밝은 자로 삼아서 본 장용영의 회계를 맡게 한다.】교련관(教鍊官) 20원은 본 장용영에 출사하는 것을 면제한다. 패장(牌將) 8원【전각의 계단 아래서 일을 맡는다.】, 약방(藥房) 1원, 침의(鍼醫) 1원, 화원(畵院) 1원, 사자관(寫字官) 1원, 별무사(別武士) 36인, 부료 무사(府料武士) 16인, 서리(書吏) 16인, 서사(書寫) 3인, 대령 서리(待令書吏) 3인, 조보 서리(朝報書吏) 1인, 서원(書員) 7인, 고직(庫直) 13명, 대청직(大廳直) 1명, 도방자(都房子) 4명, 궁시인(弓矢人) 2명, 도변수(都邊首) 2명, 사령(使令) 41명, 구종(驅從) 14명, 우장직(雨裝直) 2명, 다모(茶母) 2명, 의막군사(依幕軍士) 2명, 제약군(劑藥軍) 1명, 문서직(文書直) 12명, 방자(房子) 15명, 소방자(小房子) 22명, 군사(軍士) 5명, 사환군(使喚軍) 30명, 역인(役人) 15명, 복직(卜直) 5명, 사고직(私庫直) 4명, 기영 겸감색(畿營兼監色) 4명, 향군 구관 감색(鄕軍句管監色) 26명이었다.【각 고을의 향무사(鄕武士) 13명, 읍리(邑吏) 13명이다.】

상이 또 군대가 있으면 군량이 있어야 하므로 매년 하나의 영(營)을 둘 때마다 백성들이 그 해를 받아, 훈국을 설치하면서는 3년 동안의 세금으로 2필의 포(布)가 생기었고, 금위영·어영청·수어청·충융청을 설치하면서는 보미(保米)와 보포(保布)가 6도에 편만해졌는데, 지금 다시 각영이 하던 대로 한다면 원대한 도모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었다. 그리하여 이에 내탕전을 내놓아 여러 도에 곡식을 사들여 두게 하고, 내사(內司)의 전장 토지로 조세를 비싸게 받던 것을 폐지시켜서 그들의 요역을 가볍게 해주어 양서(兩西)에 둔전을 설치하였으며, 심지어는 진상품이 첨가된 것과 상격(賞格)이 남용되는 것과 액정서 하례의 남아도

는 인원과 군제(軍制)의 법에 어긋난 것들과 선혜청에 저장된 갑주가미(甲冑價米)와 호조에서 가져다가 내사에서 급대(給代)하던 것 등까지를 혹은 바로잡아 떼주기도 하고 혹은 모두를 붙여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유사에게 명하여 이런 종류들을 미루어 찾아보게 하였다. 그리하여 환곡을 많이 나누어 주어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 있으면 돈으로 만들어 바치게 해서 그들의 힘을 펴이게 해주고, 유치된 환곡이 많아서 농민들을 손상시킨 것이 있으면 더 나누어 주어 그들의 양식을 넉넉하게 해주며, 혹은 상정(詳定)하여 무역을 하기도 하고 혹은 값을 주고 옮겨오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각 창고의 곡식이 총 43만 1천 6백 91석이었는데, 이를 관서·해서·호서·호남·영남·관동에 나누어 두었고, 3진(鎭)의 곡식은 총 9천 9백 48석이었는데, 매년 한 해에 들어오는 것으로 쌀은 2만 5천 8백 90석이고, 대두는 4천 6백 90석이고, 돈은 7만 8천 8백 95냥이고, 무명은 3백 67동 19필이고, 삼베는 26동 25필이었다.

수원부를 이미 외영(外營)으로 삼고서는 국초에 영안도(永安道)의 마군(馬軍)을 친군위(親軍衛)라고 호칭한 전례에 따라 친군위 3백 6인을 두고 탐라에서 기르던 말을 가져다 한 사람에게 한 필씩을 준 다음 훈국의 말 지급 규정에 비추어 해마다 모자라는 수를 채웠는데, 그 수가 매년 30, 40필을 내리지 않았다. 【화성의 군제는 끝내 오위의 제도를 본떠 따로 절목을 만들어서 윤후(允下)되었다.】 이것이 내영과 외영의 시말이다.

기유년에 현릉원을 옮기고서 옛 원(園)터는 바로 28년 동안 궁검(弓劍)을 모셨던 자리이므로 차마 황폐해지게 버려둘 수 없다 하여 파주(坡州)의 옛 장릉(長陵) 예에 따라 위전(位田)을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해주고, 진둔 별장(鎭屯別將)을 두어 배봉진이라 칭하여 장용영에 소속시켜서 별후사 파총(別後司把總)으로 삼고 아병(牙兵) 2초를 두었다.

노량(鷲梁)은 현릉원 행행의 초입로에 주필하는 곳이므로, 옛날 금위영에 소속되었던 별장을 장용영에 이속시키고 군제를 배봉진과 같이 하여 별아병장(別牙兵將)으로 삼았다. 관서의 고성진(古城鎭)은 관방의 중요 지역임에도 피폐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므로, 총융청의 덕지둔(德池屯)의 예에 따라 장영이 스스로 임명하는 자리로 삼아서 네 개 고을의 둔전을 관장하게 하고, 5초의 군교(軍校)를 정하여 별중사 파총(別中司把總)이라 호칭하였다. 또 지방관으로 박천 군수(博川郡守)를 겸파총(兼把總)으로 삼아 장용영이 스스로 임명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이것이 삼진(三鎭)의 시말이다. 그리고 12년인 무신년에 상이 경기도의 산간 백성들이 처음에는 꿩 사냥에 시달렸다 다시 선달 멧돼지 사냥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먼저 꿩 사냥을 중지시키고 다음으로 선달 멧돼지 사냥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양근(楊根) 등 네 고을의 수어청 둔전 아병 15초에서 매 초마다 25명씩을 떼내서 초를 만들어 몰잇군을 대신하게 하고, 양주와 고양(高陽)에 2초를 설치하고 아울러 둔전을 병사가 있는 고을에 설치하였다. 축령산(祝靈山)과 용문산(龍門山) 두 산을 사냥하는 장소로 삼아 그 산을 봉산(封山)으로 정하고 팻말을 세웠는데, 그것은 군사를 농사에 붙여 두는 뜻에서이다. 장단(長湍)·마전(麻田)·적성(積城)도 사냥을 하던 곳이었으나 세 고을의 경내는 둔전을 설치하기에 합당하지 않아 거기서 가까운 파주에 둔전을 설치하고 군사를 두었다. 을묘년에 수어청이 진영을 두면서 마병(馬兵)은 짐의 양에 비추어서 2천 4백여 명을 줄였으나 속오군은 따지지 않았고 마병 2백 명은 그 대신의 아병으로 대신하고 표하군 8백 명은 일이 혈후한 곳으로 정해서 각 군문에 급대(給代)하였다. 그리고 6초의 군사를 광주(廣州)·안산·용인·시흥·과천 다섯 고을에 그대로 두고 돈 2만 민(緡)을 내주어 그들 군사가 있는 곳에 따라 둔전을 벌여 두도록 했는데, 이것은 향군(鄉軍)의 시말이다.

장용위(壯勇衛)라는 호칭을 내린 것은 오위의 한 위를 본뜬 것이고, 삼부(三部)를 설치하지

않고 오사(五司)를 설치하여 서울과 시골에 나누어 둔 것은 <중국> 남방의 군제를 본뜬 것이며, 장용위를 혹은 군사들 속에서 뽑고 혹은 취재(取才)하기도 하고 혹은 출신자로 하기도 한 것은 내금위의 국출신(局出身)을 뽑는 데서 본뜬 것이고, 정원 밖에 무반 집안의 자제를 뽑은 것은 장수 재목을 기르기 위해서이며, 선기대(善騎隊)를 혹은 말타는 재간을 가진 자를 뽑고 혹은 특별한 기예를 가진 자를 뽑은 것은 마대(馬隊)에서 본뜬 것이고, 승호군(陞戶軍)을 뽑아 올리게 한 것은 훈국에서 본뜬 것이나 7도(道)에 두루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왕도의 근기(近畿)를 중히 여겨서이며, 장수를 두고서 관직은 사(使)로 일컫고 문서에는 대장으로 일컫게 한 것은 어영을 본뜬 것이고, 내사(內使)를 두고 또 외사(外使)를 둔 것은 용대장(龍大將)과 호대장(虎大將)을 본뜬 것이며, 중군을 두지 않고 별장을 두어 조련할 때의 호령을 승접(承接)한 것은 광묘(光廟) 때의 좌상(左廂)·우상(右廂)과 숙묘(肅廟) 때의 정초청(精抄廳) 제도를 이어받은 것이로되 천총을 두지 않은 것은 중국 남방 군대의 옛 제도를 본뜬 것이고, 강서(講書) 시험에 《병학통(兵學通)》을 사용하고 기예 시험에 《무예보(武藝譜)》를 사용한 것은 영묘(英廟)와 경모궁(景慕宮)의 유지를 천명하자는 것이며, 내사와 외사가 차는 부신(符信)과 밀부(密符)는 통용하면서 병부(兵符)만은 특별히 호부(虎符)를 쓰는 것은 잔뜩 성을 내어 오르려거리는 범에서 뜻을 취함과 동시에 국초(國初)의 일을 이어받자는 데서 온 것이다. 【병방을 설치한 초기에 하교하기를, “명소(命召)하는 제도는 특히 삼경 이후에 대신을 부르는 부신(符信)만이 있었다. 그래서 장신(將臣)은 명소패(命召牌)를 차고도 부신(符信)이 없는 데에 대하여 예전부터 경륜 있는 인사들의 의심스럽게 여기는 논의가 있었으니, 지금은 이를 참작해서 호부(虎符) 1개와 전령패(傳令牌) 1개를 만들어 지급해야겠다.” 하였다.】

대장은 군색 제조(軍色提調)를 겸해서 병사에 관한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고, 채용에 대해서는 향색 제조(餉色提調)가 주관한다. 이재간(李在簡)·서유린(徐有隣)·김이소(金履素)·정민시(鄭民始)·이명식(李命植)·이시수(李時秀)·서용보(徐龍輔)가 서로 이어 향색 제조가 되었으나, 서유린과 정민시가 가장 오랫동안 맡았으므로 모든 채용에 대한 조치와 계획들이 모두 이들 두 사람에게서 나왔고 이명식이 또 그 다음이었다.

○先是壬寅，命抄擇武藝出身及武藝別監之間經將校者三十人，【遵肅廟乙丑，以武藝別監三十人，交差於訓練都監局出身三番之制。】分番入直於明政殿南廊，乙巳，號壯勇衛，仍增二十人，此壯勇營設施之權輿也。自是逐年增置，倣威氏南軍之制，以五司各五哨爲例，三哨每哨一百十五名。【正軍九十，旗摠三，隊長九，書字的一，牌頭一，鼓手一，認旗手一，火兵九。】丁未，創二十七名，戊申增八十八名爲左哨。辛亥增右哨。癸丑增中哨。五哨在京，每哨一百二十三。【正軍·旗·隊同上，惟多卜馬軍九。】丁未，創前哨，戊申增中後哨，癸丑增左右哨，五哨在水原。己酉，創五哨，前哨在振威，左哨在陽城，中哨在龍仁，右後二哨在廣州。二哨，戊申創，右哨在高陽，後哨在坡州。三哨，乙卯增，前哨在安山，左哨在果川，中哨在始興。三哨，戊申創，前哨在砥平，左哨分在楊根·加平，中哨在楊州。右後二哨，乙卯增，右在楊州，後在長湍。【每哨正軍九十，旗摠五，隊長九，書記一，能磨兒一，鼓手一，認旗手一，伺候二，廚役一，火兵九，卜馬軍九。】九十六，壬寅，以訓局技藝軍十五名移屬，乙巳增十五，戊申增十七，己酉增五，庚戌增九，辛亥增五，壬子增九，癸丑增二十一。【元軍八十五，書字的一，牌頭一，卜馬軍五，劍子手四。】九十二，壬寅，以訓局技藝軍十五名移屬，乙巳增十五，戊申增十三，己酉增五，庚戌增九，辛亥增五，壬子增九，癸丑增二十一。【元軍以下同上，無劍子手。】九十五，丁未創二十五，庚戌增二十五，癸丑增四十九。【元軍八十八，書字的以下同上。】一百，丁未創二十八，庚戌增二十三，癸丑增四十九。【元軍九十三，書字的以下同上。】六十五，戊申創

十六，辛亥增七，癸丑增四十二。【元軍五十一，書字的一，牌頭一，卜馬軍二，員役十。】四十五，五十，五十七。【燈籠軍以下三色，并自丁未·戊申次第增置。】別將標下四十，司標下三十，善騎將標下十八，哨官·知穀官·教鍊官·統長·壯勇衛牌頭，皆有伺候軍。工匠牙兵二十九，輜重卜馬軍四十。五哨六百五，標下一百六十四。拜峰鎮，【己酉設。】牙兵二哨，標下二十三，鄉吹手三十。古城鎮，【壬子移屬。】牙兵二哨，標下五十八。鷺梁鎮，【癸丑移屬。】左·右牙兵一百二十一，標下二十三，鄉吹手三十，馬步軍總五千一百五十二。都提調，【一員。】癸丑，創以大臣中時帶扈衛大將人例兼，合扈衛廳於壯勇營。餉色提調，【一員。】以戶·惠堂時任及曾經人備擬，使，【一員。】以曾經將臣人除授。癸卯創置兵房，以將任及捕將履歷人會除，謂之兵房，蓋做政院之兵房承旨，掌五衛習閱之例也。癸丑，改號使，【文牒稱大將。】以曾經將臣除授。【例兼軍色提調。】從事官，【一員。】丁未創，以蔭官差除。善騎別將，【二員。】辛亥創，以亞將差除。習陣中日射會時，行中軍·行把總，【五員。】戊申創，己酉癸丑增置，自二品節度使，至防禦使人差除。善騎將，【三員。】丁未創，辛亥癸丑增置，以堂上三品差除。哨官，【二十五員。】丁未創，戊申·己酉·癸丑增置，以堂下三品以下差除。額外壯勇衛，【十五員。】辛亥創，以將家子枝及地閩表著身手膂力出類人抄擇差下。知穀官二十一員，武藝統長二員，【統領武藝別監，以備宿衛。】別付料二員，【有文籌者爲之，自本營會計。】教鍊官二十員，除本仕。牌將八員，【給事於殿陛下。】藥房一員，鍼醫一員，畫員一員，寫字官一員，別武士三十六人，付料武士十六人，書吏十六人，書寫三人，待令書吏三人，朝報書吏一人，書員七人，庫直十三名，大廳直一名，都房子四名，弓矢人二人，都邊首二名，使令四十一名，驅從十四名，雨裝直二名，茶母二名，依募軍士二名，劑藥軍一名，文書直十二名，房子十五名，小房子二十二名，軍士五名，使喚軍三十名，役人十五名，卜直五名，私庫直四名，畿營兼監色四人，鄉軍句管監色二十六人。【各邑鄉武士十三，邑吏十三。】上又以有軍則有餉，而每置一營，民受其害，訓局設而三年之稅，二疋之布，作禁·御·守·摠設，而保米·保布，遍六道，今若復如各營之爲，則非所以遐圖也。於是，出內帑錢，質置穀物於諸道，罷內司庄土之厚斂者，輕其徭而設爲屯田於兩西，以至進上之添補者，賞格之侵用者，掖隸之卹額者，軍制之違式者，甲冑價米之藏于惠廳者，內司給代之出於度支者，或釐割之，或全屬之，仍命有司，推類而求之。還穀有分多而病民，則作錢以紓其力，留多而傷農，則加俵以贍其糧，或詳定而換質，或給價而移來。於是，各庫穀摠四十三萬一千六百九十一石，分置關西·海西·湖西·湖南·嶺南·關東。三鎮穀摠九千九百四十八石，每一歲所入米二萬五千八百九十石零，大豆四千六百九十石零，錢七萬八千八百九十五兩零，綿布三百六十七疋零，麻布二十六疋零。水原府既爲外營，依國初永安道馬軍稱親軍衛之例，置親軍衛三百六人，取耽羅牧馬，人授一疋，照訓局給馬之法，歲補其闕，每不下三四十疋。【華城軍制，竟倣五衛之制，別有節目允下。】此內外營始末也。己酉，遷奉顯隆園，以舊園，卽二十八年弓劍之所奉也，不忍荒棄，依坡州舊長陵例，以位田許民耕農。置鎮屯別將，號曰拜峰鎮，屬壯勇營，爲別後司把摠，立牙兵二哨。鷺梁，園幸初程駐蹕之所也。以別將之舊屬禁衛營者，移屬壯營，而軍制如拜峰，而爲別牙兵將。關西古城鎮，關防重地，而力凋弊轉甚，依摠廳德池屯例，爲壯營自辟之窠，管四邑之屯田，定五哨軍校，號曰別中司把摠。又以地方官博川郡守，爲兼把摠，作壯勇營自辟窠，此三鎮始末也。十二年戊申，上聞畿峽之民，始困於獵雉，再困於臘豬，乃先罷獵雉，次停臘豬。就楊根等四邑守禦屯牙兵十五哨，每哨減二十五作哨，以代驅軍，設二哨於楊州·高陽，竝置屯田於兵在邑。就祝靈·龍門二山爲獵場，封其山而植之，蓋兵寓於農之意也。長湍·麻田·積城，亦行獵處，而三邑境內，不合置屯，就其傍近坡州，設屯置軍。乙卯守禦廳出鎮也，馬兵照卜減額二千四百餘丁，東伍則勿問，馬兵二百代其代，牙兵標下八百，定歇役，給代于各軍門，仍置六哨于廣州·安山·龍仁·



始興·果川五邑，出錢二萬緡，隨其軍所在，列置屯田，此鄉軍始末也。其錫號壯勇，取倣于五衛之一也。不設三部而設五司，分置京鄉，取倣于南方之軍制也。壯勇衛，或以行伍，或以取才，或以出身者，取倣于內禁衛局出身，而額外之取武家子，儲將材也。善騎隊之或取馬才，或取別技，取倣于馬隊也。陞戶軍之抄上，取倣于訓局，而不遍于七道者，重王畿也。置將帥官職稱使，文牒稱大將，倣御營也。置內使，又置外使，倣龍大將·虎大將也。不置中軍而置別將，承接操鍊時號令者，述光廟時左·右廂，肅廟時精抄廳，而不設千摠，亦南軍之故制也。試講，用《兵學通》，試技，用《武藝譜》，闡明英廟暨景慕宮遺志也。內外使所佩，符信·密符通用，而兵符之特用虎符，取義於闕虓，而繼述于國初也。【兵房設置之初，下教曰：“命召之制，特三更以後，召大臣之符契也。將臣之佩命召而無符信，自昔經綸之士起疑之論。今宜參用造給虎符一·傳令牌一。”】大將，帶軍色提調，專管兵事，而財用則餉色提調主之。李在簡·徐有隣·金履素·鄭民始·李時秀·徐龍輔，相繼爲餉色提調，而徐有隣·鄭民始最久任，凡財用措劃，皆出於此二人，而李命植又其次矣。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2일(병오)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경기 좌방영을 남양의 독성으로 옮기고 도포사와 방어사를 겸하게 하다

명하여 경기 좌방영(京畿左防營)을 남양(南陽)의 독성(禿城)으로 옮겨 설치하고, 중군이 겸하던 토포사(討捕使)도 새로 설치한 곳의 방어사가 예겸하도록 하였다. 수원을 승격시켜 유수부로 삼은 뒤에 상이 방어사와 토포사를 어느 고을로 옮겨야겠는가를 묘당에 물은 결과 묘당이 남양에 옮겨 설치하라고 청하자, 그대로 따른 것이다.

○命京畿左防營，移設於南陽禿城，中軍所兼討捕使，亦令新設防禦使例兼。水原陸爲留府後，上以防禦使討捕使之當移何邑，詢于廟堂，廟堂請移設於南陽，從之。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6일(경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장용영이 내영과 외영의 새로 정한 절목을 올린다

장용영이 내영과 외영의 새로 정한 절목을 올렸다. 【내영의 절목은 다음과 같다. “ 1. 본영의 설치는 이미 여러 해가 지났건만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호칭들도 정해지지 못하였다. 지금 내·외영을 함께 두고 규모를 크게 마련하는 때를 당해서는 당연히 호칭을 바로잡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병방(兵房)에 대한 일은 당연히 다른 영문의 규례에 따라 대장이라 호칭해야 할 것이나 본영의 사체가 지극히 엄중하니, 의당 어영사(御營使)의 옛 제도를 본떠 병방을 장용 내사(壯勇內使)라 하고 크고 작은 문서들에서의 호칭도 역시 어영사를 어영 대장이라 호칭하는 규례를 본떠 대장이라 호칭한다. 이미 내·외영을 두었으니 내사(內使)는 그대로 군색 제조(軍色提調)를 겸임하되 비국 당상이 역시 예겸하도록 한다. 1. 향색 제조(餉色提調) 1원은 시임 호조나 선혜청의 당상을 이조가 의망해서 낙점을 받는 것으로 하되, 만일 세 사람을 의망에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이전에 지낸 사람을 계청하여 통의(通擬)하도록 한다. 1. 본영의 대장은 일찍이 장신(將臣) 이상을 지낸 사람으로 제수한다. 1. 각 영의 장신들이 혹은 명소패(命召牌)를 차고 혹은 밀부(密符)를 차기도 하나, 군중에서의 호부(虎符)는 곧 국초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본영의 일은 전보다 더욱 자별한 만큼 부신(符信) 등의 절차도 의당 옛날 제도를 써야 할 것이니, 본영사(本營使)가 차는 것은 호부를 쓰도록 한다. 1. 군향색(軍餉色)의 낭청(郎廳)은 다른 군문(軍門)의 예에 따라 종사관

(從事官)이라 호칭하고, 음관으로 일찍이 군수를 역임한 문벌과 이력이 있는 사람을 본영에서 품지하여 삼망을 갖추어 제수한다. 그리고 직인(職印) 하나를 장용영종사관인(壯勇營從事官印)이라고 새겨서 사용한다. 1. 각영에 중군(中軍)을 둔 것은 조련할 때에 호령을 승접하는 직무를 행하는 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것을 두고 안 두는 것이 그리 긴중할 것이 없다. 또 광묘조(光廟朝) 때에 후원(後苑)에서 습진과 조련을 할 적에도 윤사로(尹師路)와 양성지(梁誠之)가 좌상(左廂)·우상(右廂)의 대장이 되어 이를 거행하면서 중군을 설치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용대장(龍大將)·호대장(虎大將)을 창설할 때에도 그들이 열무정(閱武亭) 조련에 참여한 때문에 역시 중군은 두지 않고 대장이 직접 호령을 받아 거행하였다. 그리고 정초청(精抄廳)을 설치하였을 때에도 대장 아래 별장만을 두어 금위영에 합속시키고 금군의 좌·우 별장으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깃발을 흔들고 북소리를 울리며 호령을 주고 받게 하였다. 본영의 군제(軍制)가 대부분 국초의 제도에서 본뜬 것이고 보면 중군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으니 본영에는 중군을 두지 않는다. 1. 별장(別將) 1원은 일찍이 포도 대장이나 훈련 도감의 중군이나 금군의 별장을 지낸 사람 중에서 차출한다. 1. 군제는 각기 근거한 바가 있으니, 3부(部) 6사(司)의 제도가 있고 5영(營) 3사(司)의 제도가 있다. 3부는 바로 북방의 군제이고 5사는 곧 남방의 군제이다. 부(部)에는 천총(千總)이 있고 영(營)에는 영장(營將)이 있는데, 본영은 5사를 두어 척씨(戚氏)의 남방 군제를 본뵈었으니 천총은 두지 않는다. 1. 기왕 천총을 두지 않은 바에는 본영의 파총(把總)이 바로 다른 군문의 천총이니 이력(履歷)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에 준해야 할 것이다. 파총은 가선 대부인 병사(兵使) 이하로 일찍이 방어사를 지낸 사람에 이르기까지 융통해서 차출하되, 일찍이 변경을 다스린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별 전교에 의해 제수된 자는 이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방어사의 이력을 가지고 바로 곤임(關任)에 의망하는 규례를 적용한다. 1. 선기장(善騎將)은 일찍이 변경이나 중앙과 지방의 장수를 지낸 사람으로 차출한다. 1. 초관(哨官)은 당하 정3품 이하 관원의 천거가 있는 출신인(出身人)으로 차출한다. 1. 본영에 방위하는 친위병으로 이미 마군(馬軍)·보군(步軍)을 두었으나 보군은 단지 3초 뿐이라서 1사(司)의 제도에 차지 않으니, 2초를 더 두어 1사 5초의 제도에 맞게 한다. 그리고 어가가 지나게 되는 지방 고을에서나 선달 공물 마련을 위해 사냥을 하는 곳에서는 향군(鄉軍) 20초를 나누어 배치해서 4사를 만들어 5사의 제도를 갖춘다. 1. 난후 창검군(攔後槍劍軍)은 이미 본영에서 대령하게 되어 있되, 혹 60명이나 혹 30명을 임시해서 품지를 받아 거행토록 한다. 그리고 임시해서 금위영의 아병(牙兵) 중에서 70명 정도와 어영청의 겸내취(兼內吹) 30명까지 도합 1백 명을 본영에 이속시키고, 요포(料布)와 수요 물자들도 인원수에 따라 때내어 이속시킨다. 1. 가초 군병(加抄軍兵)의 수용에 드는 비용은 불가불 구분지어 조처해야 할 것이니, 부족한 수효로 돈 8천 냥, 무명 80동(同), 쌀 4천 석을 종을 대로 힘써 마련하여 그들 비용의 뒷받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처의 향군을 각기 그 지방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처음 정한 규정에 따라 거행한다. 1. 배봉진(拜峰鎭)을 설치한 데에는 그 의의가 가볍지 않다. 일찍이 선왕의 능을 모셨던 곳이니, 각영의 참군(參軍)에게 맡겨 소홀하게 하는 폐단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진둔(鎭屯)을 설치하여 그곳을 금지하고 보호하는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한 것이니, 해당 진의 별장은 본영이 스스로 임명하되, 전직의 직함이나 또는 이미 출신한 자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부천(副薦)과 말천(末薦)으로 추천된 사람으로 각별히 가려 임명한다. 1. 노량진은 매년 현릉원에 행행할 때에 거가가 들러서 주필하는 곳이고 보면 사체가 다른 곳과는 자별하다. 그러니 해당 진의 별장은 본영이 스스로 임명하는 자리로 바꾸고, 별아병(別牙兵) 1초는 부근의 백성들 중에서 뽑아 통솔하되,

배봉진의 아병 2초와 합해서 3초의 제도로 만든다. 그리고 배봉 별장의 깃발은 별후사 파총(別後司把摠)이라 호칭하고, 노량 별장의 깃발은 별아병장(別牙兵將)이라 호칭한다.” 외영의 절목은 다음과 같다. “**1. 수원부에 현룡원을 모신 뒤로 보호하는 절차를 한껏 다하고 있으나, 3품 고을 원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체모를 높이는 뜻이 아니다.** 또 군사 일로 본다면 본영의 내영·외영이 함께 설치되었고, 직무로 본다면 행궁의 정리 책임이 주어졌으니, 이점이 전하의 마음속에서 영단을 내려 특별히 우수로 승격시킨 연유라 할 것이다. 관을 임명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미 결정한 데에 따라 양도(兩都)에 비겨 한 등급을 높여서 문신인 경우는 정2품 이상으로 한정하여 묘당이 의망해 추천하고, 대신 무장(大臣武將)의 경우는 특지에 의한다. 그리하여 **수원부** 우수로서 장용 외사(壯勇外使)와 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의 호칭을 겸한다. 1. 외영의 군제를 금방 바로잡았는 바, 조련에 참가하는 군사는 별효사(別驍士) 2초, 마병(馬兵) 4초, 속오군(束伍軍) 26초, 각종의 표하군 5백 47명, 치중군(輜重軍) 2백 명인데, 이것은 이미 훈련 도감의 군제를 본뜬 것이니,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둔다. 그리고 근래에 조련이 오랫동안 중지되어 군정(軍政)이 허술해졌다. 그러니 지금 크게 경장(更張)하는 때를 당하여 병든 마필(馬匹)과 지쳐 있는 군사들을 특별히 찾아내어 기어코 진작시켜서 일신되도록 해야 한다. 조련은 본부가 전적으로 관장하여 거행하되, 가을이 된 뒤에 다른 군문의 예에 따라서 품지하여 조련을 행한다. 그리고 비용의 쌀로 양인(良人)의 봉족(奉足)이 낸 2천 석은 그대로 외영에 소속시켜 받아 유치한다. 1. 본부는 삼남의 요충으로 현룡원을 이미 이곳에 모셨고 또 행궁을 두었으니, 그 체모를 높이고 요새지를 중히 하는 도리가 전보다 자별하여야 할 것이다. 성을 축조해야 한다는 의논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더구나 우수부로 승격된 뒤이고 보면 더욱 당연히 바로 시설해야 할 것이다. 성을 축조할 물력(物力)을 먼저 구획하여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니, 본부와 안산창(安山倉)에 소재한 환곡과 군량 등 각종 곡물들을 모두 축성곡(築城穀)으로 명목을 지어서 매년 그 모조(耗條)를 거두어 들여 차차로 경영해나갈 뒷받침으로 삼을 것이다. 1. 본부에 아직은 성을 축조하지는 못하나 앞으로 경영하는 것이 이미 순서가 정해진 일이고 보면 성정군(城丁軍)을 불가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에 충융청의 소관으로 집에 머무는 군관 1백 50인, 본부의 소관인 방어사영의 번을 면제받은 군관 2백 90인, 토포사의 소속으로 번을 면제받은 군관 4백 59인을 수첩 군관(守堞軍官)으로 호칭을 바꾸고, 본부의 군수 별무사(軍需別武士) 2천 2명에서 마사(馬士) 2백 4명을 감하고 유방군(留防軍) 7백 2명을 성정군이라 명칭하여 성을 수비하는 제도를 이루도록 한다. 1. 독성 산성(禿城山城)은 이미 요새로서의 중요한 지역이자 또 군량을 쌓아둔 곳이니, 방어하는 도리를 소홀하게 할 수 없다. 전에 충융청의 소관이었던 장초(壯抄) 2초, 아병 1초, 둔장초(屯壯抄) 68명, 군수보(軍需保) 1백 25명을, 본성의 소관 아래 모집해 들인 군관 30인, 수첩군관 1백 30인, 아병 2초, 봉족군(奉足軍) 4백 명, 별무사 1천 5백 23명과 합해서 성을 수비한다는 명목으로 본성에 전속시키고, 그 중 장초 2초, 아병 1초, 둔장초 68명, 군수보 1백 25명은 본래 쌀을 납부하는 군인들이었으니, 그 납부한 쌀은 외영에서 받아 유치한다.” .】

○壯勇營進內外營新定節目. 【內營節目: 一, 本營設置, 已有年所, 而制度未立, 名號未定. 今當內外竝設, 規模大備之時, 合有正名之舉. 兵房事當依他營門例, 稱以大將, 而本營事體至爲嚴重, 宜倣御營使舊制, 兵房爲壯勇內使, 大小文牒稱號, 亦倣御營使之稱御營大將例, 以大將稱之. 既設內外營, 內使仍兼軍色提調, 備堂亦爲例兼. 一, 餉色提調一員, 以時任戶惠堂, 自吏曹備擬受點, 而如未備三員, 則以曾經人啓請通擬. 一, 本營大將, 以曾經將臣以上人差除. 一, 各營將臣, 或佩命召, 或佩密符, 而軍中之虎符, 乃國初創始之事也. 本營事面比前尤別,

則符信等節，宜用古制，本營使所佩，以虎符舉行。一，軍餉色郎廳，依他軍門例，稱以從事官，而以蔭官曾經郡守以上有地處·履歷人，自本營稟旨，備望差除，印信一顆，以壯勇營從事官印，入刻使用。一，各營中軍之設置，不過操鍊時承接號令而已，其所有無，不甚緊關。且光廟朝後苑習操時，尹師路·梁誠之爲左右廂大將舉行，而無中軍設置之事。龍大將·虎大將創設時，以其入參於闕武亭操鍊，故亦不置中軍，而大將直爲承接舉行。精抄廳設置之時，大將之下，只有別將，合屬於禁衛營，而以禁軍左右別將，輪行旗鼓，號令承接。本營軍制，多做國初之制，則不必別設中軍，本營中軍勿爲設置。一，別將一員，以曾經捕將及都監中軍·禁軍別將人差出。一，軍制各有所據，有三部六司之制，有五營三司之制。三部卽北方之軍制，五司卽南方之軍制。部有千摠，營有營將，而本營則設五司，而倣威氏南軍之制，千摠則勿爲設置。一，既不設置千摠，則本營把摠，卽他軍門之千摠，履歷亦當準此。把摠則嘉善兵使以下，至曾經防禦使通灑差出，而曾經邊地人中，有特教除拜者，不拘此式，仍用防禦使履歷，直擬闕任。一，善騎將，以曾經邊地內外將人差出。一，哨官以堂下正三品以下，有薦出身人差出。一，本營以捍衛親兵，既設馬·步軍。元步軍只是三哨，不滿一司，加設二哨，合爲一司五哨之制，而駕過地方邑及臘貢行獵處，分置鄉軍二十哨，作爲四司，以備五司之制。一，攔後槍劍軍，既自本營待令，而名數則或六十名或三十名，臨時稟旨舉行。而禁營牙兵中限七十名，御廳兼內吹三十名，合一百名，移屬本營，而料布與接濟物力，亦爲依例移劃。一，加抄軍兵接濟之需，不可不區劃。不足之數錢八千兩·木八十同·米四千石，從長拮据，以爲需用地，而各處鄉軍之自其地方接濟，依初定式舉行。一，拜峯鎮設置，意義不輕。係是曾奉弓劔之所，則不可付之各營參官，以致疎忽之弊，而特設鎮屯，專管其禁護，而該鎮別將，本營自辟，毋論前銜與已出身未出身，以當爲副末薦人，各別擇差。一，露梁鎮，每年園幸時駕過駐蹕之所，則事體與他自別。該別將，移作本營自辟窠，別牙兵一哨，以附近民人，抄定領率，與拜峯鎮牙兵二哨，合爲三哨之制，而拜峯別將旗號，以別後司把摠稱之，露梁別將旗號，以別牙兵將稱之。○外營節目：一，**水原府**，自奉園寢之後，拱護之節，靡不用極，而委之於三品邑倅，有非尊體貌之意。且戎政則本營之內外竝設，職務則行宮之整理有責，此所以斷自宸衷，特陞留守者也。差除則依定奪，比兩都加一等文臣，則限正二品以上，廟堂擬薦，大臣武將，須特旨以**水原府留守**，兼壯勇外使·行宮整理使稱號。一，外營軍制，今方釐正。參操軍兵，則別驍士二哨，馬兵四哨，束伍二十六哨，各色標下五百四十七名，輜重軍二百名。此則既倣訓局軍制，不必加減，依前仍置，而近來操鍊久停，戎政疎虞。趁此大更張之時，馬匹之玄黃，隊伍之疲殘，另加爬櫛，期於振刷，俾得一新。習操則自本府專管舉行，秋成後依他例，稟旨行操。需米良保二千石，則仍屬外營捧留。一，本府以三南要衝之地，既奉園寢，又置行宮，其尊體貌·重關防之道，比前自別。築城之議，自古有之，而況陞爲留守之後，尤當趁卽設施，築城物力，先爲區劃然後，可以始役。以本府及安山倉所在還餉各穀，竝作築城穀，以爲每年收耗，次次經紀之地。一，本府姑未及設城，而來頭經紀，既是次第事，則城丁軍不可不磨鍊。在前摠廳所管在家軍官，一百五十人，本府所營防營除番軍官二百九十人，討捕除番軍官四百五十九人，以守堞軍官改號，本府軍需別武士二十二名，馬士二百四名，留防軍七百二名，名以城丁軍，俾成守城之制。一，禿城山城，既係關防重地，且是軍餉所峙，則拱禦之方，不可疎虞。在前摠廳所管壯抄二哨，牙兵一哨，屯壯抄六十八名，軍需保一百二十五名，竝本城所管募入軍官三十人，守堞軍官一百三十人，牙兵二哨，保軍四百名，別武士一千五百二十三名，以守城名色，專屬本城，而其中壯抄二哨，牙兵一哨，屯壯抄六十八名，軍需保一百二十五名，自是納米之軍，納米則自外營捧留。】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25일(기미) 3번째기사>

정치/군사

어영 대장 조심태의 보고를 듣고 남양부에 방어사 진영을 두기로 한 의논을 중지시키다  
비변사 당상들을 불러 보고 남양부(南陽府)에 방어사 진영을 두기로 한 의논을 중지시켰다.  
이에 앞서 상이 수원에 있던 방어사 진영을 남양으로 옮기고 나서 어영 대장 조심태를 보내  
형편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심태가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남양에 달려가서 두루 형편을 살펴보니 대부(大阜)와 영흥(靈興) 두 섬이 바닷길의  
요충에 걸터앉아 있어 해상 방어의 일로 논한다면 실로 요해지라 할 수 있으나, 남양은 본  
시 육군(陸軍)의 영장(營將)을 두는 고을이었으므로 해상 방어의 일은 의논할 바가 아니었  
습니다. 육로(陸路)에 대해서는 호서의 여러 길에서 양성(陽城)·평택(平澤)으로 나갈 적에  
궁포(宮浦) 아래쪽 및 당진(唐津)·면천(沔川)·대진(大津)의 윗쪽을 경유하는 길은 수원을  
경유하지 않고 곧장 남양의 사잇길로 질러가며 안산(安山)·금천(衿川)을 모두 지나가게 되  
는데, 지역이 매우 평탄하고 모두 막힌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부터 고을 소재지를 동  
쪽으로 10리쯤 되는 저팔리(楮八里)의 구포(鳩浦) 근처로 옮겨 방어의 요새로 삼자는 논의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방어영을 새로 두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방어사  
의 직책이란 본시 한쪽 지방을 방어하는 것인데, 본 남양부는 이미 충용청 전영(前營)의 보  
병과 기병에 의지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급한 때를 만나면 당연히 충용사의 질제를 받아야  
하므로 이 점이 걸리는 단서입니다.”

하니, 상이 여러 신료들에게 물었는데, 모두가 수원이 지금 장용영의 외영(外營)이 되어 있  
어 요새지로서의 소중함이 전에 비해 더욱 강화되어 있으므로 다시 방어영을 남양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다.

○乙卯/召見備邊司堂上，寢南陽府設防之議。先是，上既移水原防營于南陽，遣御營大將趙心泰，看審形便。至是，心泰還奏：“臣馳往南陽，周審形便，大阜·靈興兩島，跨據海路要衝，論以海防，實係要害，而南陽，自是陸軍營將邑，防海一款，非所擬議。至於陸路，則湖西諸路之出陽城·平澤，由宮浦以下及唐津·沔川·大津以上者，不由水原，徑趨南陽間途，安山·衿川，俱是陸路，而地甚坦夷，并無遮隔，故自前有移設邑治於東面十里地楮八里鳩浦近處，以備關防之論，則創此防禦之營，恐合便宜，第防禦之職，本自控制方面，而本府既仗摠廳前營兵馬，或值緩急，當受摠使節制，此爲掣礙之端。”上詢于諸臣，皆言水原，今爲壯勇外營，其爲保障，比前增重，不必更設防營于南陽，從之。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3월 22일(을묘) 1번째기사>

정치/군사

수원부의 마병을 장별대로 개칭하다

수원부의 마병(馬兵)을 장별대(壯別隊)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이는 장용영(壯勇營)의 아뢰  
에 따른 것이다.

○甲辰/命水原府馬兵改稱壯別隊。從壯勇營啓也。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7월 13일(갑진) 1번째기사>

정치/군사

수원 군제를 바로 잡도록 정민시에게 하교하다

비변사의 당상과 여러 장신(將臣)들을 소견하였다. 상이 정민시(鄭民始)에게 이르기를,  
“수원 군제(軍制)를 아직껏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경이 전 부사 조심태(趙心泰)와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되 반드시 백성들을 위하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체득하여 하라. 군정(軍政)은 정예롭고 숙련되게 하는 것이 제일이지 군사의 숫자를 많이 하는 데만 힘을 쓸 것이 아니니, 모조록 인원수를 줄이고 정예한 군사를 뽑는 것으로 주를 삼으라.” 하였다.

○召見備邊司堂上諸將臣. 上謂鄭民始曰: “水原軍制, 尙不釐正. 卿與前府使趙心泰, 爛商議定, 而必體朝家軫念小民之至意. 大抵軍政貴在精鍊, 不宜務多, 須以減額精抄爲主.”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7월 16일(정미)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 유수 이명식이 이아를 지을 때에 재물을 회사한 내용을 올리다

수원 유수 이명식(李命植)이, 이아(貳衙)를 지을 때 절충 장군 안처윤(安處潤) 등 여덟 사람이 재물을 회사하여 공사를 도운 내용을 치계하였다. 이에 그들에게 오위 장(五衛將)과 변장(邊將) 등을 차등있게 제수하라고 명하고, 승지 서매수(徐邁修)에게 이르기를, “수원은 새로 창건하는 곳이라 자진해서 재물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차등을 두어 시상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 일이 만약 조금 지나치면 벼슬을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 무리들은 모두가 벼슬 얻기를 바라는 자들인 것이다. 근래 들으니 관서(關西)와 해서(海西) 지방에 이런 일이 더욱 심하여 가끔은 공천(公賤)으로서 오위 장에 오른 사람도 있다고 하니, 관직 제도의 문란함이 극에 이르렀다. 주자(朱子)가 비록, 진정(賑政)을 도운 사람들에게 적공랑(迪功郎) 정도를 아낄 것이 뭘겠느냐고 하였지만 그것은 기민 먹이는 일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하였다.

○水原留守李命植, 以貳衙營建時, 折衝安處潤等八人, 捐財助役馳啓, 命除五衛將·邊將有差. 謂承旨徐邁修曰: “水原係是新創, 願納人等, 雖不得不分等施賞, 而大抵此若差過, 則何異於賣官? 此輩皆妄希官資之徒, 近聞關西·海西尤甚, 往往有以公賤, 躡爲五衛將者云. 官方之淆雜極矣. 朱子雖稱迪功等郎, 何惜於補賑諸人? 此則係是賑賑, 與此有異矣.”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8월 18일(무인) 2번째기사>

## 정치/군사

비변사에서 수원부의 군사 규정을 개정하도록 청하자 이를 윤허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부(水原府)를 이미 장용 외영(壯勇外營)으로 승격시키고 나서는 군사 규정을 일반 고을의 규정을 따라 쓸 수 없기에 내영(內營)의 제도를 대략 모방하여 마병(馬兵)은 벌써 장별대(壯別隊)로 편제를 변경하였으니 보병(步兵)도 똑같이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제(軍制)는 정예함을 위주로 하지 병력의 수가 많은 것이 위주가 아닌데, 속오군(束伍軍) 26개 초(哨)에 태반이 장정이 아닙니다. 13개 초에서 건장한 장정을 뽑아 정군(正軍)으로 승격시켜 따로 부대를 만들고, 그 나머지 13개 초는 낮추어 자보(資保)를 만들고 번포(番布)를 거두어 정병(正兵)을 돕게 함으로써 정호(正戶)와 자보가 서로 돕는 뜻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별효사(別驍士)의 경우는 이미 부(部)와 사(司)의 편제에 넣지 않고 무사들을 격려하고 권장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2백 명으로 정한 정원은 너무 많습니다. 이 역시 그 절반을 줄이고 별군관(別軍官)이라는 칭호를 붙여 좌·우 대열로 만들어 유수에게 직속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효사를 별군관으로 만들 경우 별장(別將)도 자연 줄여야 할 것이니 장별대의 별장으로 별군관의 병방(兵房)을 겸하게 하여 관할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군제를 변경하였고 보면 장관(將官)도 내영(內營)을 모방하여 천총(千總) 두 자리는 역시

줄여야 되겠습니다. 별장·과총(把總)·초관(哨官)을 차출하는 규정과, 별군관·장별대를 구별하여 가려뽑는 방법, 도시(都試)를 보이고 상을 주는 방도, 보병을 정군으로 올리거나 보인(保人)으로 내리는 규정, 방어 임무에 들어갔을 때의 공급과 구제 등의 대책에 대하여 해부(該府)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초안하여 본사(本司)와 오가면서 수정을 거친 후 재가를 받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己丑/備邊司啓言：“**水原府**既陞壯勇外營之後，軍兵不可循用邑規，略倣內營之制，馬兵已以壯別隊變制，則步軍不可不一體釐正，而軍制務精，不務多。束伍軍二十六哨，太半非丁壯。十三哨擇其健實良丁，陞爲正軍，團束作隊，其餘十三哨，降爲資保，收番養兵，以寓戶保相須之義。至於別驍士，既不入於部司之制，而出於激勸武士之意，則二百元額，未免夥多。此亦減其半數，以別軍官稱號，作爲左右列，直隸於留守，而別驍士既爲別軍官，則別將自在減下之中，以壯別隊別將，兼行別軍官兵房，以爲管束之地。軍制既已變通，則將官宜倣內營，千總二窠，亦爲減下。別將·把總·哨官差出規制·別軍官·壯別隊區別抄擇之方·都試施賞之道·及步軍陞元降保之規·入防接濟之策，請令該府，草成節目，往復本司，釐正啓下。” 從之。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 8월 29일(기축)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장용영·훈련 도감·금위영의 많은 군사들이 반과의 금령을 어겨 문죄하다

장용영·훈련 도감·금위영의 세 군영에 속한 부대에서 반과(盤果)에 대한 금령을 범한 군사가 많았는데, 문관 출신의 비변사 낭청으로서 부정을 사찰하는 사람에게 적발되어 보고되었다. 세 군영의 장신(將臣)들을 잡아들여 매우 심하게 꾸짖고 내보냈다.

○壯勇、訓練、禁衛三營，部曲多犯盤果之禁，爲文備郎摘奸者所執奏。拿入三營將臣，切責退出。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12일(경자)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차대를 하다. 우의정 이병모가 수원부의 조련과 습진에 관해 건의하다

차대를 하였다.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수원 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장계를 올려 아뢰기를 ‘본부의 기병과 보병에 대하여 계하한 절목 가운데에 봄가을에는 조련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기병은 2월과 10월에, 보병은 동짓달에서 정월달까지 석 달 동안 방어하러 들어갈 때를 타서 무예를 익히고 훈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 조련을 폐하는 것은 아마도 법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10월에 타작을 끝낸 뒤부터 2월에 발갈이를 하기 전까지는 정한 식대로 군사를 훈련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2월과 10월로 법식을 정하여 시행하되 시기에 앞서 장계를 올려 품의하는 것은 한결같이 모든 도에서 하고 있는 예대로 하게 하소서. 올해에는 모든 도에서 이미 모두 조련을 정지하였으니, 본 수원부의 습진(習陣)과 조련도 일체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분부하소서.” 하니, 따랐다.

○己亥/次對。右議政李秉模啓言：“**水原留守**趙心泰狀啓以爲：‘本府馬步軍啓下節目中，春秋操不爲磨鍊，蓋緣馬軍之二月·十月，步軍之至臘正三朔入防時，隸藝司鍊而然。然而廢閣大操，恐非法意。十月滌場之後，二月耕作之前，依式詰戎，恐是不可已者，請令廟堂稟處矣。’ 依狀請，以二月十月定式施行，而前期狀稟，一如諸道之例。今年則諸道既皆停操，本府習操，一體停止之意，請分付。” 從之。

<정조실록 41권, 정조 18년 9월 15일(기해) 1번째기사>

## 정치/군사

병조와 장용영에서 성조 및 야조에 관한 규정을 아뢰다

병조와 장용영(壯勇營)에서 화성(華城)의 성조(城操) 및 야조(夜操)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아뢰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의 행차가 화성의 행궁(行宮)에 가면 승지가 어느날에 성조(城操)의 의식을 행할 것인지 품(稟)합니다. 하루 전에 장용영의 외사(外使)가 군령(軍令)을 원문(轅門)에 게시하기를 품합니다.

기약한 날이 되어 【깃발과 북 등을 행궁의 문 밖에 진열해 놓습니다】 선전관(宣傳官)이 무릎꿇고 계품(啓稟)한 뒤 첫번째 신호를 하게 하면 각 장령은 이 신호를 듣고 행궁의 문 밖에서 기다리며 성정군(城丁軍)은 병기를 잡고 성에 올라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두번째 신호를 하게 합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호적(號笛) 신호로 관초(官哨)를 집합시키고 지시를 듣게 하는 일을 계품합니다. 【선전관이 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관초를 집합시키도록 호령합니다. 이에 각 장령이 모두 섬돌 아래에 도착하여 좌우로 나뉘어 서서 서로 마주봅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징을 치게 하였다가 호적으로 그치게 합니다. 각 장령이 순서대로 배례(拜禮)를 올리고 물러나와 섬돌 아래로 돌아갑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꿇고 지시 듣게 하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병조 판서가 관초들에게 건너오라고 지시를 전하면 각각 일제히 한소리로 응답하고 몸을 돌려 위를 향합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무릎꿇게 하는 북을 울리게 하면 관초가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병조 판서가 지시를 내리기를 ‘관초들은 들으라. 【응답합니다】 성(城)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니 【응답합니다】 각자 맡은 곳을 지키면서 【응답합니다】 떠들지도 말고 【응답합니다】 제멋대로 움직이지도 말라. 【응답합니다】 도망하거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응답합니다】 군법(軍法)을 적용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응답합니다】 하면, 각자 차례대로 와서 보고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관초들이 서로 마주 향하여 섭니다.

병조 판서가 응원장(應援將)들에게 건너오라는 지시를 전하면 각각 일제히 한소리로 응답하면서 몸을 돌려 위를 향합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무릎꿇게 하는 북을 울리게 하면 응원장들이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병조 판서가 지시를 내리기를 ‘응원장들은 들으라. 【응답합니다】 적들이 틈을 엿보다 【응답합니다】 한꺼번에 충돌해 올 경우 【응답합니다】 임기응변하여 구원하는 것은 【응답합니다】 오로지 그대들의 힘에 달려 있다. 【응답합니다】 지연시켜 일이 잘못되게 하면 【응답합니다】 군법을 적용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응답합니다】 하면, 그전처럼 머리를 조아립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꿇고 계품한 뒤 관초들을 땅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징을 두번 쳐서 대취타(大吹打)를 연주하게 합니다. 때를 헤아려 징 소리를 세 번 울려서 취타의 연주를 그치게 합니다.

좌통례(左通禮)가 무릎꿇고 계청(啓請)하기를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합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세번째 신호를 올리게 합니다. 좌통례가 무릎꿇고 계청하기를 ‘밖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합니다.

행차가 행궁(行宮) 문 밖으로 나오면 색승지(色承旨)가 품하여 기고(旗鼓)를 앞에 서게 하고 행차를 멈추도록 청합니다. 선전관이 남색(藍色)과 백색(白色)의 신전(信箭)을 받은 상태에서 무릎꿇고 계품한 뒤 신평(信砲)을 세 번 쏘게 합니다. 이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징을 두 번 쳐서 대취타를 연주하게 합니다.

행차가 장대(將臺)의 작문(作門) 밖에 도착하면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징을 세 번 울려 취타를 멈추게 합니다. 외사(外使)가 장대 아래에서 포를 쏘고 천아성(天鷲聲)을 내게 하면 각 군사들이 모두 함성을 세 번씩 지릅니다. 【징을 쳐서 멈추게 합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징을 두 번 쳐서 대취타를 연주하게 합니다. 이 때 사면의 성에 있는 장수들이 똑같이 취타를 연주합니다. 외사가 무릎꿇고 행차를 맞이하다가 지나가는 즉시 그 뒤를 따라가 원문(轅門) 밖에서 지시를 기다립니다.

행차가 장대(將臺)에 이르러 할 즈음에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징을 세 번 쳐서 취타의 연주를 멈추게 합니다. 이에 사면의 성에 있는 장수들도 취타 연주를 그칩니다. 이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자바라를 치게 하면 가에 있던 기치(旗幟)들이 좌우로 갈라 서고, 징 소리가 그치면 행차가 단에 올라갑니다. 【황문(黃門)의 기수(旗手)가 깃발을 교차시켜 작문(作門)의 출입을 막습니다】

문을 조금 열어놓는 것에 대한 절목입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문을 조금 열어놓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문을 조금 열어놓도록 하고 취타를 연주하게 합니다. 이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징을 세 번 울려서 취타 연주를 멈추게 합니다. 병조 판서가 먼저 가서 배례(拜禮)를 행하고, 다음에는 선전관·군뢰(軍牢)·순시수(巡視手)·취고수(吹鼓手) 등이 반열을 나누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단(壇)을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절목입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승단포(升壇砲)를 쏘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단에 올라가는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教鍊官)을 불러 신평(信砲)을 세 번 쏘게 하고, 징수(鉦手)를 불러 징을 두 번 치게 해서 대취타를 연주하게 하고, 너자(牢子)에게 세 번 크게 외치게 합니다. 너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서 문을 열라고 크게 소리치면 기수(旗手)가 그 소리에 응하여 깃발을 휘두르며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징을 세 번 울려 취타의 연주를 그치게 합니다.

깃발을 올리는 일에 대한 절목입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깃발을 올리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깃발을 올리라고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평(信砲)을 한 번 쏘게 하고, 나수(羅手)와 고수(鼓手)를 불러 모두 세 차례씩 북을 울리고 자바라를 치게 합니다】 수레에 흰 색의 큰 깃발을 세웁니다. 【성 각면(各面)의 장수들이 똑같이 포소리에 응하여 북을 치고 자바라를 울리며 방향을 표시하는 색깔의 큰 깃발을 올립니다】 징과 자바라와 북소리가 그칩니다. 【성의 각면에서도 똑같이 징과 자바라와 북소리를 그칩니다】 외사(外使)가 원문(轅門)을 통해 종종걸음으로 들어와 배례(拜禮)를 올리고 나서 이어 장대(將臺)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색승지가 품하여 채추(宰樞)에게 북을 잡게 합니다. 【선전관이 훈련원 정(訓練院正)을 불러 채추에게 북을 잡게 하라는 지시를 전하면 훈련원 정이 소리에 응하여 북을 올립니다】

길에 매복시키는 군사들을 떠나보내는 일에 대한 절목입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길에 매복시키는 군사들을 떠나보내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길에 매복시킬 군사들을 떠나 보내라고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쏘게 하고, 징수(鉦手)를 불러 징을 치게 합니다. 이에 주변의 각면(各面)에서 똑같이 포소리에 응하여 징을 울리면서 길에 매복할 군사들을 출발시키는데, 각면에서 10명씩 내보냅니다. 이들은 각자 삼안총(三眼鏡)과 기화(起火) 등의 기구를 휴대하고 성을 나가 나뉘어 매복하는데, 매복 거리는 군사 1명당 1리(里)씩 떨어져 있습니다】

성문을 닫는 일에 대한 절목입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성문을 닫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을 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성문을 닫으라는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信砲)를 세 번 쏘게 합니다】 징을 두 번 울려 대취타(大吹打)를 연주하게 합니다. 징소리가 그치는 동시에 무릎을 꿇고 계품한 뒤 함성을 지르도록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합니다】 천아성(天鵲聲)을 불게 하고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함성을 지르게 하며 징을 울려 그치게 합니다.

병조 판서가 꿰어앉아서 숙정포(肅靜砲)를 쏘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숙정하라고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쏘게 합니다】 숙정패(肅靜牌)를 세우고 표미기(豹尾旗)를 세웁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휴식하라고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합니다】 자바라를 치게 하였다가 【각 방면에서 똑같이 포소리에 응해 자바라를 칩니다】 징을 울려 그치게 합니다.

한 방면에서 조련을 하고 해면(該面)에서 길에 복병을 설치하는 일에 대한 절목입니다. 포를 쏘고 기화(起火)를 들어 경보(警報)를 하면 본면(本面)의 성장(城將)도 그 숫자대로 포를 쏘고 기화를 듭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모면(某面)에서 조련하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모면에서 조련하라고 호령합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숫자대로 쏘게 합니다】 이어 무릎꿇고 계품한 뒤 기립(起立)하라는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합니다】 자바라를 불어 각개 군사들을 기립시키고 징을 울려 그치게 합니다. 해당 방위(方位)의 색깔을 표시하는 큰 깃발이 세워집니다. 북을 치고 천아성(天鵲聲)을 불어 점기(點旗)합니다. 【해당 방면의 유병(遊兵)이 고함을 지르며 나는듯이 달려나와 응원합니다】 해당 방면에 적이 1백 보(步) 안에 당도하였다고 보고되면 자체적으로 호령하면서 낭기(狼機)와 조총(鳥銃)을 교대로 쏘게 합니다. 또 적이 50보 안에 당도하였다고 보고되면 사수(射手)들에게 일제히 발사하게 합니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서 북을 치고 자바라를 울리는 일을 계품한 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합니다】 즉시 북을 치고 자바라를 울리게 합니다. 해당 방면에 적이 성 아래까지 당도하였다고 보고되면 성 위에서 돌을 던집니다. 적이 일단 패해 퇴각한다고 보고되면 징을 쳐서 자바라와 북을 멈추게 합니다. 또 적이 이미 멀리 달아나 소굴로 돌아갔다고 보고되면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 계품한 뒤 징을 쳐서 자바라와 북을 멈추게 합니다. 【징수(鉦手)를 불러 거행하게 합니다】

이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유병(遊兵)에게 신지(信地)로 돌아오라고 호령합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합니다】 해당 방면의 깃발을 세우고 안 쪽을 향해 점기(點旗)하게 하는 한편 징을 두 번 울려 대취타를 연주하게 합니다. 【해당 방면에서도 똑같이 포소리에

응하여 취타를 연주합니다】 유병이 각각 신지로 돌아오면 징을 울려 취타의 연주를 멈추게 합니다. 【해당 방면에서도 똑같이 취타의 연주를 그칩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휴식하라는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합니다】 자바라를 울리게 하였다가 【해당 방면에서도 똑같이 포소리에 응하여 자바라를 울립니다】 징을 쳐서 그치게 합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모면(某面)의 조련이 끝난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일개 방면의 조련이 끝나면 또 다른 일개 방면의 조련을 시작합니다.

4개 방면에서 일제히 조련하는 일에 대한 절목입니다. 4개 방면의 길에 매복한 군사들이 한꺼번에 포를 쏘고 기화(起火)를 들어 경보를 울리면 각 방면의 성장(城將)들도 숫자대로 포를 쏘고 기화를 듭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4개 방면에서 일제히 조련하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4개 방면에서 훈련하라고 호령합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信砲)를 한 번 쏘게 하는 한편 빠른 속도로 종(鍾)을 치게 하는데 종은 징으로 대신하게 합니다】

이어 무릎꿇고 계품한 다음 기립(起立)하라는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합니다】 바라를 치면 각개 군사가 기립하는데 징을 울려서 동작을 멈추게 합니다. 4개 방면에서 깃발을 세우고 북을 치며 천아성(天鵲聲)을 울리면서 점기(點旗)를 합니다.

【4개 방면에서 유병(遊兵)들이 고향을 지르며 나는 듯 달려 나와 응원합니다】

각 방면에 적이 1백 보 이내의 거리에 도달했다고 보고되면 자체적으로 호령하여 낭기(狼機)와 조총(鳥銃)을 교대로 발사합니다. 또 적이 50보 이내의 거리에 도달했다고 보고되면 사수(射手)들이 일제히 발사합니다. 선전관이 무릎을 꿇고서 북을 치고 자바라를 울리는 일을 계품한 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합니다】 즉시 북을 치고 자바라를 울리게 합니다.

각 방면에 적이 성 아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고되면 성 위에서 돌을 던집니다. 적이 이미 패하여 물러갔다고 보고되면 자바라와 북소리를 멈추게 합니다. 또 적이 이미 멀리 도망쳐서 소굴로 돌아갔다고 보고되면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징을 쳐서 자바라와 북소리를 멈추게 합니다. 【징수(鉦手)를 불러 거행케 합니다】

이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유병(遊兵)을 신지(信地)로 돌아가게 하라고 호령합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합니다. 4개 방면의 깃발을 세우고 안 쪽을 향해 점기(點旗)하게 합니다. 징을 두 번 울려 대취타(大吹打)를 연주하게 합니다. 각 방면에서도 똑같이 포소리에 응하여 취타를 연주합니다】 유병이 각각 신지로 돌아오면 취타 연주를 중지시킵니다. 【각 방면에서도 똑같이 취타 연주를 그칩니다】

길에 매복한 군사들을 철수시키는 일에 대한 절목입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성문을 여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성문을 열라고 호령합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쏘게 합니다】 징을 두 번 쳐서 대취타를 연주하게 했다가 징을 쳐서 멈추게 합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길에 매복한 군사들을 철수시키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길에 매복한 군사를 철수시키라고 호령합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쏘게 하고 나팔을 불게 합니다. 이에 각 방면에서도 똑같이 포소리에 응하여 나팔을 불니다】 길에 매복한 군사가 철수하면 그칩니다.

성에서 내려오는 일에 대한 절목입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 성에서 내려오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성에

서 내려오라고 호령합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쏘게 합니다】 징을 두 번 쳐서 대취타를 연주하게 했다가 【각 방면에서도 똑같이 포소리에 응하여 취타를 연주합니다】 징을 쳐서 그치게 합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휴식하라는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합니다】 자바라를 울리게 했다가 【각 방면에서도 똑같이 포소리에 응하여 자바라를 울립니다】 징을 쳐서 멈추게 합니다.

깃발을 내리는 일에 대한 절차입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깃발을 내리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깃발을 내리라고 호령합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합니다】 자바라와 북을 모두 세 번씩 울리게 하여 깃발을 내리게 했다가 징을 쳐서 그치게 합니다. 【각 방면에서도 똑같이 포소리에 응하여 자바라와 북을 모두 세 번씩 울려서 깃발을 내립니다. 만약 야간 훈련을 계속해서 거행할 경우에는 깃발을 내리는 일을 계품하지 않습니다】

야간 훈련에 대한 절목입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훈련 개시에 대한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첫번째 신호를 하게 하면 각개 군사들이 성으로 올라갑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길에 매복시킬 군사들을 출발시키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길에 매복시킬 군사들을 떠나보내라고 호령합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쏘게 합니다】 징의 가장자리를 울려 길에 매복할 군사들을 출발시키게 했다가 【각 방면에서도 똑같이 징의 가장자리를 울립니다】 징을 울려 그치게 합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두번째 신호를 하게 합니다. 각 관원이 도착하여 정렬합니다. 지시를 내리는 절차는 한결같이 주간 훈련 때의 예를 따릅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세번째 신호를 하게 합니다.

성문을 닫는 일에 대한 절목입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성문을 닫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성문을 닫으라고 호령합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쏘게 합니다】 징을 울려 대취타를 연주하게 하였다가 【성문을 닫습니다】 징을 울려 그치게 합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함성을 지르도록 호령하고 【교련관을 불러 포를 쏘게 하고 천아성(天鵲聲)을 울리게 하며 모두 3차에 걸쳐 함성을 지르게 합니다】 징을 울려 그치게 합니다. 주간 훈련 때 만약 깃발을 내리는 일을 계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호령을 주간 훈련 때의 예와 동일하게 합니다. 헛불 연습에 대한 절목입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헛불 연습에 대한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헛불 연습에 대한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쏘게 하고 기화(起火) 3매(枚)를 들게 합니다】 헛불 4병(柄)을 태우게 합니다. 【각 방면에서도 똑같이 포소리에 응하여 기화를 들고 헛불을 태웁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점거(點炬)하라는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하고 천아성을 울리게 합니다】 점거하게 합니다. 【각 방면에서도 똑같이 포소리에 응하여 점거하고 함성지르는 일을 모두 세 차례 행합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헛불을 눕히라는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쏘게 합니다】 헛불을 눕힙니다. 【각 방면에서도 똑같이 포소리에 응하여 헛불을 눕힙니다】

등불을 매다는 일에 대한 절차입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깃발을 내리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깃발을 내리라고 호령합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하고 자바라와 북을 세 번씩 치게

합니다】 깃발을 내려놓습니다. 【각 방면에서도 똑같이 포소리에 응하여 자바라와 북을 치며 깃발을 내려놓습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등불을 매다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등불을 매달 일로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쏘게 하고 기화(起火) 3지(枝)를 들게 하며 자바라와 북을 세 번씩 치게 합니다】 5색(色)의 쌍등(雙燈)을 매달게 합니다. 【각 방면에서도 똑같이 포소리에 응하여 기화를 들고 자바라와 북을 세 번씩 치며 등불을 매달입니다. 각타(各塔)에서도 한꺼번에 등불을 매달입니다. 성 안의 인가에서는 문 위에 각각 등불 1잔(盞)씩 매달아 놓고 본가(本家)의 한 사람이 앉아 지키게 합니다】 징을 울려 자바라와 북소리를 그치게 합니다. 【각 방면에서도 똑같이 징소리에 그칩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휴식하는 일로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합니다】 자바라를 울리게 하였다가 【각 방면에서도 똑같이 포소리에 응하여 자바라를 울립니다】 징을 울려 그치게 합니다.

시간을 알리는 일에 대한 절목입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개시할 시간이 되었음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개시할 시간이 되었다고 호령합니다. 북을 치고 종을 칩니다. 【종은 징으로 대신합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시간을 정하라는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하고 천아성(天鵲聲)을 울리게 합니다】 시간을 알리는 북을 한 차례 치고 딱따기를 치게 하며 【각 방면에서 똑같이 딱따기를 쳐서 서로 호응하는데 한 번 일주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2경(更)의 시간을 약속합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2경을 알리라는 호령을 내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하고 천아성을 울리게 합니다】 시간을 알리게 합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주화(走火)에 대한 일을 호령합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하고 기화(起火) 1지(枝)를 들게 합니다】 주화에 대한 일이 끝나면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합성을 지르라는 호령을 내리고 【교련관을 불러 포를 쏘게 하고 천아성을 울리게 하며 모두 세 차례 합성을 지르게 합니다】 징을 쳐서 그치게 한 뒤 예전처럼 시간을 지키게 합니다. 4개 방면에서 돌아가며 훈련을 하고 일제히 훈련하는 것을 일체 주간 훈련 때의 예에 따릅니다.

5경(更)의 시각이 되면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북과 종을 치게 합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등불을 내리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등불을 내리라는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하고 자바라와 북을 세 차례 울리게 합니다】 등불을 내리면 【각 방면에서 똑같이 등불을 내립니다】 징을 쳐서 그치게 합니다.

성문을 여는 일에 대한 절목입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성문을 여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성문을 열라는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쏘게 하고 징을 울려 대취타를 연주하게 합니다】 성문을 열면 징을 쳐서 그치게 합니다.

길에 매복시킨 군사들을 철수시키는 일에 대한 절목입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길에 매복시킨 군사들을 철수시키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길에 매복시킨 군사들을 철수시키라고 호령을 내립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한 번 쏘게 하고 나팔을 불게 합니다】 매복한 군사들이 철수하면 징을 쳐서 그치게 합니다.

성에서 내려오는 일에 대한 절목입니다. 병조 판서가 무릎을 꿇고서 성에서 내려오는 일을 계품합니다. 【명에 따라 일어나서 응답하고 물러갑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한 뒤 성을 내려오라고 호령합니다. 【교련관을 불러 신호를 세 번 쏘게 하고 징을 울려 대취타(大吹打)를 연주하게 합니다. 각 방면에서도 똑같이 취타를 연주합니다】 각 군사들이 성을 내려오면 징을 울려 그치게 합니다. 선전관이 무릎꿇고 계품하여 첫번째 신호를 하게 합니다. 징소리에 맞춰 가에 늘어선 깃발들이 세 줄로 나뉘어 섭니다. 이어 무릎꿇고 계품하여 두번째 신호를 하게 합니다. 행차가 행궁으로 돌아갑니다.”

○兵曹·壯勇營以華城城操·夜操程式啓. 【駕詣華城行宮, 承旨稟何日行城操禮. 前一日, 壯勇外使稟請軍令懸之轅門. 期日, 旗鼓擺列于行宮門外. 宣傳官跪, 啓稟掌一號. 各將領聽候于行宮門外, 城丁軍執器登城. 宣傳官跪, 啓稟掌二號. 兵曹判書跪, 啓稟掌號笛, 聚官哨, 聽發放. 宣傳官命起應退. 宣傳官跪, 啓稟聚官哨號令. 各將領俱到階下, 分左右相向立定. 宣傳官跪, 啓稟鳴金, 號笛止. 各將領以次參現, 退還階下. 兵曹判書跪, 啓稟聽發放, 命起應退. 兵曹判書傳云: “官哨過來.” 各齊應一聲, 轉身向上. 宣傳官跪, 啓稟跪鼓, 官哨俱跪. 兵曹判書發放曰: “官哨聽, 着應, 同城共命, 應, 人各守禦, 應, 毋得喧譁, 應. 毋得擅動, 應, 躲奸違令, 應, 軍法不饒, 應.” 各班挨次, 報叩頭, 命起應退, 官哨相向立定. 兵曹判書傳云: “應援將過來.” 各齊應一聲, 轉身向上. 宣傳官跪, 啓稟跪鼓, 應援將俱跪. 兵曹判書發放曰: “應援將聽, 着應, 賊衆伺隙, 應, 一擁衝突, 應, 臨機應援, 應, 專賴爾力, 應, 遲延誤事, 應, 軍法不饒, 應.” 如前叩頭, 命起應退. 兵曹判書跪, 啓稟官哨下地方. 宣傳官跪, 啓稟鳴金二下大吹打, 量其時鳴金, 三下吹打止. 左通禮跪, 啓請中嚴, 宣傳官跪, 啓稟掌三號. 左通禮跪, 啓請外辦, 駕出行宮門外, 色承旨稟旗鼓在前, 請駐蹕. 宣傳官奉藍·白信箭跪, 啓稟放信砲, 三聲, 仍跪啓稟鳴金, 二下大吹打. 駕到將臺作門外, 宣傳官跪, 啓稟鳴金, 三下吹打止. 外使於臺下放砲, 吹天鷲聲, 各兵吶喊, 共三次, 鳴止金. 宣傳官跪, 啓稟鳴金, 二下大吹打, 四面城將一體吹打. 外使跪迎候, 過卽隨行, 聽候于轅門外. 駕將至將臺, 宣傳官跪啓稟鳴金, 三下吹打止, 四面城將亦吹打止. 仍跪, 啓稟鳴鑼, 邊旗幟分立左右, 鳴金止. 駕登壇, 黃門旗手叉桿作門. 小開門. 兵曹判書跪, 啓稟小開門, 命起應退. 宣傳官跪, 啓稟小開門, 吹打, 仍跪啓稟鳴金, 三下吹打止. 兵曹判書先行參現, 次宣傳官, 次軍牢·巡視手·吹鼓手等, 分班叩頭, 命起應退. 升壇. 兵曹判書跪, 啓稟放升壇砲, 命起應退. 宣傳官跪, 啓稟升壇號令, 呼教鍊官放信砲, 三聲, 呼鉦手鳴金, 二下大吹打, 牢子大喝三聲, 牢子一人進跪, 大呼開門, 旗手應聲揮旗而退. 宣傳官跪啓稟鳴金, 三下吹打止. 升旗. 兵曹判書跪, 啓稟升旗, 命起應退. 宣傳官跪, 啓稟升旗號令, 呼教鍊官放信砲, 一聲呼鑼鼓手, 播鼓鳴鑼, 共三聲. 車起大白旗, 各面城將一體應砲, 播鼓鳴鑼. 升方色大旗, 鳴金鑼, 鼓止, 各面一體鳴金鑼, 鼓止. 外使由轅門, 趨入參現, 仍留臺上. 承旨稟宰樞執鼓, 宣傳官呼訓練正, 傳云宰樞執鼓, 訓練正應聲播鼓. 發伏路. 兵曹判書跪, 啓稟發伏路, 命起應退. 宣傳官跪, 啓稟發伏路號令, 呼教鍊官放信砲, 三聲, 呼鉦手鳴金, 邊各面一體應砲鳴金. 邊發伏路, 每面十名, 各領三眼鏡·起火等器, 出城分伏, 每伏一名, 相去一里. 閉城. 兵曹判書跪, 啓稟閉城門, 命起應退. 宣傳官跪, 啓稟閉城門號令, 呼教鍊官放信砲, 三聲鳴金, 二下大吹打, 鳴金止. 仍跪啓稟吶喊號令, 呼教鍊官放信砲. 一聲吹天鷲聲, 吶喊共三次, 鳴金止. 兵曹判書跪, 啓稟放肅靜砲, 命起應退. 宣傳官跪, 啓稟肅靜號令, 呼教鍊官放信砲, 三聲立肅靜牌, 豎豹尾旗. 宣傳官跪, 啓稟休息號令, 呼教鍊官放信砲, 一聲鳴鑼, 各面一體應砲鳴鑼, 鳴金止. 一面操, 該面伏路. 放砲, 舉起火報警, 本面城將亦放砲, 舉起火如數. 兵曹判書跪, 啓稟某面操, 命起應退. 宣傳官跪啓稟某面操號令, 呼教鍊官放信砲如數. 仍跪, 啓稟起立號令, 呼教鍊官放信砲, 一聲吹鑼, 各兵起立, 鳴金止. 立

該方色大旗，插鼓吹天鷲聲，點旗。該面遊兵吶喊，飛趨應援。該面報賊到百步內，自主號令，狼機·鳥銃輪放。又報賊到五十步內，射手齊發，宣傳官跪，啓稟插鼓鳴鑼，呼教鍊官放信砲，一聲卽插鼓鳴鑼。該面報賊到城下，城上打石，報賊已敗退，鳴金鑼，鼓止。又報賊已遠遁回巢，宣傳官跪，啓稟鳴金鑼，鼓止，呼鉦手舉行。仍跪，啓稟遊兵回信地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立該面旗，向內點鳴金，二下大吹打，該面一體應砲吹打。遊兵各回信地，鳴金，吹打止，該面一體吹打止。宣傳官跪，啓稟休息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鳴鑼，該面一體應砲鳴鑼，鳴金止。兵曹判書跪，啓稟某面操畢，命起應退。一面操畢，又操一面，四面齊操。四面伏路，一時放砲，舉起火報警，各面城將亦放砲，舉起火如數。兵曹判書跪，啓稟四面齊操，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四面操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流水撞鍾，鍾以金代。仍跪，啓稟起立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吹鑼，各兵起立，鳴金止。立四面旗，插鼓，吹天鷲聲，點旗，四面遊兵吶喊，齊趨應援。各面報賊到百步內，自主號令，狼機·鳥銃輪放，又報賊到五十步內，射手齊發。宣傳官跪，啓稟插鼓鳴鑼，呼教鍊官放信砲，一聲卽插鼓鳴鑼。各面報賊到城下，城上打石，報賊已敗退，鳴金鑼，鼓止。又報賊已遠遁回巢，宣傳官跪，啓稟鳴金鑼鼓止，呼鉦手舉行。仍跪，啓稟遊兵回信他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立四面旗，向內鳴金，二下大吹打。各面一體應砲，吹打。遊兵各回信地，鳴金，吹打止，各面一體吹打止。收伏路。兵曹判書跪，啓稟開城門，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開城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鳴金，二下大吹打，鳴金止。兵曹判書跪，啓稟收伏路，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收伏路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掌喇叭，各面一體應砲，掌喇叭，收伏路，鳴金止。下城。兵曹判書跪，啓稟下城，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下城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鳴金，二下大吹打，各面一體應砲吹打，鳴金止。宣傳官跪，啓稟休息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鳴鑼，各面一體應砲鳴鑼，鳴金止。落旗。兵曹判書跪，啓稟落旗，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落旗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鳴鑼插鼓共三通，落旗，鳴金止。各面一體應砲，鑼鼓三通，落旗。若仍行夜操，則不稟落旗。夜操。候夜，兵曹判書跪，啓稟起操，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掌一號，各兵登城。兵曹判書跪，啓稟發伏路，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發伏路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鳴金邊，發伏路。各面一體鳴金邊，鳴金止。宣傳官跪，啓稟掌二號，各官到齊。發放節次，一依晝操例。宣傳官跪，啓稟掌三號。閉城門。兵曹判書跪，啓稟閉城門，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閉城門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鳴金，大吹打，閉城門，鳴金止。宣傳官跪，啓稟吶喊號令，呼教鍊官放砲，吹天鷲聲，吶喊共三次，鳴金止。晝操時，若不稟落旗，則號令同晝操例。演炬。兵曹判書跪，啓稟演炬，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演炬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舉起火三枝·燃炬四柄。各面一體應砲，舉起火燃炬。宣傳官跪，啓稟點炬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吹天鷲聲·點炬。各面一體應砲點炬，吶喊共三次。宣傳官跪，啓稟仆炬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仆炬，各面一體應砲仆炬。懸燈。兵曹判書跪，啓稟落旗，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落旗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鑼鼓，三通落旗，各面一體應砲鑼鼓·落旗。兵曹判書跪，啓稟懸燈，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懸燈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舉起火三枝，鑼鼓三通，懸五色雙燈。各面一體應砲起火，鑼鼓三通懸燈，各塚一時懸燈，城內人家門燈，各懸燈一盞，以本家一人坐守。鳴金，鑼鼓止，各面一體鳴金止。宣傳官跪啓稟休息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鳴鑼，各面一體應砲鳴鑼，鳴金止。傳更。兵曹判書跪，啓稟起更，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起更號令，發撞鍾，鍾以金代。宣傳官跪，啓稟定更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吹天鷲聲，打更鼓一次，梆鳴。各面一體梆鳴，相映一遍周而復始。約二更之時，宣傳官跪，啓稟二更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吹天鷲聲。傳更。宣傳官跪，啓稟走火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舉起火一枝。走火畢，宣傳官跪，啓稟吶喊號令。呼教鍊官放信砲，吹天鷲聲，吶喊共三次，鳴金止，如前守更。

四面輪操齊操，一依晝操例行。至五更時，宣傳官跪，啓稟發撞鐘，兵曹判書跪，啓稟落燈，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落燈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鑼鼓三通，落燈，各面一體落燈，鳴金止，各面一體鳴金止。開城門。兵曹判書跪，啓稟開城門，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開城門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鳴金，大吹打，開城門，鳴金止。收伏路。兵曹判書跪，收伏路。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收伏路號令，呼教鍊官放信砲，一聲掌喇叭，收伏路，鳴金止。下城。兵曹判書跪，啓稟下城，命起應退。宣傳官跪，啓稟下城號令，呼教鍊官放信砲，三聲鳴金，大吹打，各面一體吹打。各兵一號鳴金，邊旗幟分立三行，仍跪啓稟掌二號，，下城，鳴金止。宣傳官跪，啓稟掌三號，駕還行宮】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2월 9일(신유)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화성 협수군의 제도와 장용영의 향군 추가 선발에 관한 절목

비변사가 화성(華城) 협수군(協守軍)의 제도(制度)에 관한 절목을 올렸다. 【절목은 다음과 같다. “성지(城池)에는 반드시 협수군을 두어야 하니, 이는 대체로 기각지세(掎角之勢)를 이루어 성원(聲援)해야 하고 힘을 합쳐서 방어해야 하기 때문인데, 남한 산성(南漢山城)과 북한 산성 그리고 송도(松都)와 강화(江華)에서의 예를 상고할 만합니다. 이번에 화성의 행궁(行宮)이 낙성되고 성곽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상께서 삼군(三軍)의 조련 상황을 직접 살펴보시고 완전한 요새지로서의 형세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주위의 가까운 지역에서 협수(協守)하는 제도가 아직까지 구비되지 못했으니, 이는 보장(保障)을 중히 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뜻이 전혀 못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부(本府)와 접경하고 있는 용인(龍仁)·안산(安山)·진위(振威) 등 3개 고을은 소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고 개 이빨처럼 맞물린 형세를 이루고 있으며 관장(官長)과 병민(兵民)이 서로 왕래하며 친숙한 처지인 만큼 절제(節制)하기 편리하고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기보다 나은 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 세 고을의 수령들을 협수장(協守將)으로 정하고 또 각각 그 경내에 있는 수어청(守禦廳)과 총용청(摠戎廳)의 속오군(東伍軍)을 타졸(垛卒)로 정하여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힘을 합쳐 방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절목으로 만들어 다음과 같이 조목별로 전달드립니다. 1. 용인 현령을 동성 협수 초관(東城協守哨官)으로 정하고, 진위 현령을 남성 협수 초관으로 정하고, 안산 군수를 서성 협수 초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1. 세 고을을 일단 협수하는 속읍(屬邑)으로 정한 이상에는 초관이 전령(傳令)을 차출한 뒤 즉시 갖추어 보내 와서 보고토록 할 것이며, 세 고을 수령이 새로 도임(到任)한 경우에는 도임장(到任狀)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전령을 보내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1. 협수 군졸을 용인에 있는 수어청의 속오군 5초(哨)와 진위에 있는 수어청의 속오군 3초(哨)와 안산에 있는 총용청의 속오군 4초를 화성으로 옮겨 소속시켜서 타부(垛夫)로 정하고, 출동시켜야 할 때가 오면 신지(信地)에 따라 성에 오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협수 초관은 경보(警報)를 듣는 즉시 성으로 와야 할 장수인 만큼 호령이 전일해야만 효력을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 현령처럼 금영(禁營)의 향군(鄉軍)까지 겸해서 맡고 있는 경우에는 파총(把摠)을 다른 고을로 옮겨 떼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좌계(左契)의 표신(標信)이 없더라도 반드시 전령의 영기(令旗)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세 고을의 속오군으로서 전적으로 타부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은 보통의 성정군(城丁軍)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으니, 군안(軍案)을 작성하여 1건(件)은 군영(軍營)에 놔두고 1건은 되돌려 준 뒤 궐원(闕員)이 생기는데로 채워



녕도록 함으로써 빈 장부만 안고 있는 폐단이 없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1. 군문(軍門)은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정신을 확립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고을 수령이 일단 협수 초관(協守哨官)의 직책을 띠고 있는 각 방면에 모두 신지(信地)를 갖고 있는 이상 조련할 때에 명령을 받고 전달하는 등의 절차를 일체 해당 방면 성장(城將)의 호령대로 준수함으로써 잘못되는 폐단이 없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1. 대소(大小) 사부(士夫)·군(軍)·민인(民人) 등을 막론하고 성가퀴를 계산하여 나누어 지키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병가(兵家)의 불문율입니다. 따라서 군사 대장에 등재된 세 고을의 속오군 이외에 성 가까이에 있는 사대부와 백성들도 경보를 듣는 즉시 입보(入保)케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조련을 행할 때에도 부근의 남정(男丁)들을 대상으로 이수(里數)를 한정하여 떼어붙이고 그들의 신지(信地)를 알게 함으로써 급할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용영(壯勇營)이 향군(鄉軍)을 추가로 뽑아 정하는 절목을 올리니, 10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장용영이 아뢰기를, “본영에서 향군을 추가로 뽑아 정하는 절목을 작성하여 방금 계하(啓下)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위영(禁衛營)에 상번(上番)하는 향군 중에서 매번(每番)에 1초(哨)씩 10년 기한으로 화성(華城)의 성쌓는 곳에 투입시켜 공사를 돕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정군(正軍)과 보군(保軍)을 덜어내고 떼어주어 대오를 작성하고 군포(軍布)를 거두는 데에 구애되는 요소가 자연히 많게 되었으니, 그 연한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행토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절목은 다음과 같다. “장용영에서 기진(畿甸)의 제읍(諸邑)에 향군(鄉軍)을 설치하게 된 것은 경군(京軍)이 징번(徵番)과 수가(隨駕)하는 데에 치우치게 고생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노고를 균등하게 해 주려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신년부터 계축년에 이르는 동안 먼저 지평(砥平)에서 수원(水原)에 이르기까지 15초(哨) 3군(軍)의 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초를 여태 단속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은 양정(良丁)을 수괄(搜括)하는 과정에서 소요를 일으키기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병은 물론 정예를 위주로 해야지 수요만 많아지게 힘써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는 인원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위영(禁衛營)의 향군(鄉軍) 1백 25초(哨)에서 각초마다 정군(正軍) 및 관보(官保)와 자보(資保)를 각각 약간 명씩 덜어내어 본영에 떼어 보내도록 하는 동시에 또 정군 1천 2백 70명을 엄선하여 10초를 만들었습니다. 대개 이 향군의 경우는 사체(事體)가 자별한 만큼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기강과 군율도 또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강 남쪽과 한강 북쪽을 막론하고 옛 대오와 새 대오를 골고루 배치해서 전후 좌우로 고기 비늘 형태로 초(哨)를 만들고 경군(京軍) 중사(中司)와 합쳐 5사(司)의 편제에 맞춤으로써 규율을 엄히 하고 지휘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을 뽑아 정하고 사용하는 규례를 사목(事目)으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위영의 향군으로 6도(道)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1백 25초인데, 각 초마다 정군(正軍) 10명과 함께 관보(官保) 1명, 자보(資保) 1명씩 덜어내어 떼주도록 합니다. 1. 떼어받은 정군은 1천 2백 50명이고 관보는 1천 2백 50명이고 자보는 1천 2백 5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떼어받은 것을 소중히 관리해야 할텐데 6도에 산재해 있는 만큼 어떻게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군의 경우에는 한강 남쪽으로 과천(果川)에 1초, 시흥(始興)에 1초, 광주(廣州)에 2초, 용인(龍仁)에 1초, 양성(陽城)에 1초, 진위(振威)에 1초, 안산(安山)에 1초를, 한강 북쪽으로 양주(楊州)와 장단(長湍)에 각각 1초를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마련해서 각각 그 고을의 소재지에다 군포(軍布)를 납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

군(良軍) 가운데 내력과 주소가 확실하고 힘이 센 자를 가려 융통해서 서로 바꾼 다음 고기 비늘 형태로 초(哨)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 사(司)·초(哨)의 단속이 일단 완료되면 군사를 기르는 일을 우선 행해야 합니다. 보군(保軍)에게서 예전대로 군포를 거두어 정군에게 지급하는 자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 신군(新軍)과 구군(舊軍)으로 이미 1영(營) 5사(司)의 군제를 편성하였으니, 소재지의 5초는 전사(前司)에 소속시키고, 광주·용인·진위·양성의 5초는 좌사(左司)에 소속시키고, 경군(京軍)의 5초는 중사(中司)에 소속시키고, 시흥·과천·안산·고양(高陽)·파주(坡州)의 5초는 우사(右司)에 소속시키고, 양근(楊根)·가평(加平)·지평(砥平)·양주(楊州)·장단(長湍)의 5초는 후사(後司)에 소속시켜서 고리처럼 연결해 에워싸게 함으로써 서로 의지하고 돕는 형세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 정군(正軍) 10초를 합하면 모두 1천 2백 70명이 되는데 이들을 고기 비늘 형태로 편성한 다 하더라도 편할 대로 초를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군(保軍) 2천 4백 80명에게서 신포(身布)를 거두어들이는 일을 각 해당 고을 수령들은 반드시 10월 안에 상납을 마치고 감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각각 해당 고을 소재지에 포목을 바치게 하고 양군(良軍)과 서로 융통하여 바꾸게 하는 일을 앞서 개략적으로 논의하기를 했습니다만, 사(司)에서 초(哨)를 선발하고 초에서 기(旗)를 선발하고 기에서 대(隊)를 선발하고 대에서 병(兵)을 선발하는 법이야말로 병가(兵家)의 요결(要訣)이니, 만약 단속할 즈음에 혹시라도 구차하게 충원시키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고을의 수령을 법대로 치죄(治罪)해야 할 것입니다. 1. 전사(前司)·후사(後司)의 과총 2인과 전사·후사의 초관(哨官) 각 5인에 대해서도 본영 절목의 내용대로 준수하여 화성(華城)의 관직을 가지고 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1. 과총과 초관을 일단 차출했으면 각사(各司)마다 별무사(別武士) 4인과 표하군(標下軍) 30명씩 채워넣어야 할 것인데 그 규정은 한결같이 다른 사(司)나 초(哨)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패(書牌) 각 1명은 표하군 중에서 정해 쓰도록 할 것이며, 전사(前司)의 표하군 역시 본영의 절목에 따라 수원에 있는 군사 중에서 뽑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備邊司進華城協守軍制節目. 【節日：有城池必有協守，蓋以聲援之掎角，控禦之合力也。南北二漢·松沁兩都，已例可攷，而今茲華城行宮已就，崇墉載完，親勞三軍之操鍊，儼成萬全之關防，而傍近協守之制尙闕，爲非所以重保障，撤桑土之義。本府接龍仁·安山·振威三邑，近則牛鳴，勢則犬牙，官長兵民，來往慣熟，節制之便宜·事面之圓滿，無過於此。以三邑守令，定爲協守將，又以各其境所在守摠兩營東伍軍，定爲操卒，俾作緩急防禦之地，合行事例，撰成節目。一，龍仁縣令定爲東城接守哨官，振威縣令定爲南城協守哨官，安山郡守定爲西城協守哨官。一，三邑既定協守，則哨官差出傳令，卽爲成送，使之來現。三邑守令新到之後，待其到任狀來到，成送傳令著爲式。一，協守軍卒，龍仁所在守禦廳東伍五哨，振威所在守禦廳東伍三哨，安山所在摠戎廳東伍四哨，移付華城，定爲塚夫。若當出用之時，從信地登城。一，協守哨官既是聞警赴城之將，則號令專一，然後可責効力。如龍仁縣令兼帶禁營鄉軍，把摠移定他邑。若於緩急之時，雖無左契之徵信，必以傳令令旗徵召。一，三邑東伍，專屬塚夫，此與尋常城丁軍有異。成出軍案，一件留營，一件反還，而隨闕填代，俾無擁虛簿之弊。一，軍門節次，挨次爲重，三邑守令，既帶協守，俱有名面信地。操鍊時承接等節，一遵該面城將號令，俾無僨誤之弊。一，不拘大小士夫軍民等，計塚分守，自是兵家約束，三邑成籍東伍外，近城土民，聞警入保，在所不已。雖平時行操，附近男丁，限里領付，俾解信地，以爲緩急得力之地。】壯勇營進鄉軍追抄定節目，命待十年後舉行。壯勇營啓言：“本營鄉軍追抄定節目，才已啓下，而禁衛營上番鄉軍中，每番一哨，限十年移送華城築城所，以助工役，則今此正軍保軍之除出劃付，編伍收布，自多掣

礙之端. 請待其準限後舉行.” 允之. 【節目: 壯勇營設置鄉軍於畿甸諸邑, 出於軫念京軍偏苦徵番與隨駕均其勞之聖意. 自戊申暨癸丑, 先從砥平 至**水原**, 成十五哨三軍之制, 其餘十哨, 尙欠團束, 迄今遷就者, 由於良丁之搜括, 易致繹騷也. 軍兵雖貴精不務多, 有不容一任其闕額. 故就禁衛鄉軍一百二十五哨, 每哨除出正軍及官資保各若干名, 劃送本營, 仍又遴選正軍一千二百七十名, 作爲十哨. 蓋此鄉軍事體自別, 管領綱紀師律則然. 無論漢南漢北, 舊隊新伍均排, 前後左右, 魚鱗作哨, 竝京軍中司, 以準五司之制, 以嚴規度, 以便節度. 若其抄定使用之例, 作爲事目. 一, 禁營鄉軍散在六道者, 爲一百二十五哨, 每哨正軍十名, 竝與官保一名·資保一名除出劃付. 一, 劃付正軍爲一千二百五十名, 官保爲一千二百五十名, 資保爲一千二百五十名, 而今此劃付, 旣爲所重, 而散在六道, 將無以團束. 正軍則漢南果川一哨, 始興一哨, 廣州二哨, 龍仁一哨, 陽城一哨, 振威一哨, 安山一哨; 漢北 楊州一哨, 長湍一哨, 分排磨鍊, 以各其邑所在納布. 良軍擇有根着膂力者, 通濼相換, 魚鱗作哨. 一, 司·哨團束旣完, 養兵爲先務, 保軍依前收布, 以爲正軍支放之資. 一, 新軍舊軍已成減一營五司之制, 所在五哨屬前司, 廣州·龍仁·振威·陽城五哨屬左司, 京軍五哨屬中司, 始興·果川·安山·高陽·坡州五哨屬右司, 楊根·加平·砥平·楊州·長湍五哨屬後司, 環連控抱, 俾爲輔車相須之地. 一, 正軍十哨合爲一千二百七十名, 雖因魚鱗之法, 不得不從便作哨, 保軍二千四百八十名, 收捧身布, 而各該邑守令, 必於十月內畢上納, 無敢違越. 一, 各其邑所在納布良軍, 通濼相換, 雖已概論, 而司選哨·哨選旗·旗選隊·隊選兵, 是兵家要訣, 若於團束之際, 或有苟充, 該邑守令以法勘治. 一, 前後司把摠二員, 前後司哨官各五員, 亦遵本營節目辭意, 以華城窠定制. 一, 把摠·哨官旣差出, 則每司別武士四人·標下軍三十名填充之規, 一如他司哨施行, 書牌各一名, 標下軍中定出使用. 前司標下軍亦依本營節目, 以**水原**所在軍抄定.】

<정조실록 42권, 정치 19년 5월 25일(을해)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총융청의 부의 사에 각각 4초씩 두도록 편제를 정하다

총융청의 부(部)의 사(司)에 각각 4초(哨)씩 두도록 편제를 정하였다. 총융사(摠戎使) 서용보(徐龍輔)가 아뢰기를, “본청의 전영(前營)인 남양(南陽)의 속오군(束伍軍) 20초(哨)는 본래 좌·우 부(部)의 좌·우 사(司)에 각각 5초씩 배정하는 것으로 규례를 삼았는데, 그 속에는 안산(安山)의 4초도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산군의 속오군을 화성(華城)으로 옮겨 소속시키게 됨에 따라** 1사(司)의 경우도 5초로 편성되어 있다가 4초가 감축되고나니 단지 1초만 남게 되어 군제(軍制)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16초를 융통해서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인데, 남양의 속오군 10초 가운데 8초는 좌부(左部)의 좌사(左司)와 우사(右司)에 소속시키고, 남은 2초와 과천(果川)의 2초는 우부(右部)의 좌사에 소속시키고, 시흥(始興)의 3초와 양천(陽川)의 1초는 우사에 소속시키므로써 2부 4사에 각각 4초씩 배정하는 군제로 만드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定摠戎廳部·司各四哨之制. 摠戎使徐龍輔啓言: “本廳前營南陽束伍二十哨, 本以左右部·左右司各五哨爲例, 而安山四哨, 亦入其中. 今於本郡束伍, 移屬**華城**之後, 一司五哨之內, 減此四哨, 只存一哨者, 不成軍制. 就其餘存十六哨之中, 通濼磨鍊, 南陽束伍十哨內, 八哨屬之左部, 左右司餘二哨及果川二哨, 屬之右部, 左司始興三哨及陽川一哨, 屬之右司, 以爲二部四司, 各四哨之制, 恐合事宜.” 允之.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6월 7일(병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부총관 권희가 화성에 관한 일곱 가지 대책을 상소하다

**부총관(副總管) 권희(權恢)가 상소하여 화성(華城)에 대한 일곱 가지 대책을 올렸는데,** 첫째 수성(守城)하는 기계(器械)를 미리 강구해서 완비해 둘 것, 둘째 각처의 공한지에 둔전(屯田)을 설치해서 비축을 많이 해 둘 것, 셋째 금(金)의 채굴을 다시 허락하여 성의 공사에 보탬이 되게 할 것, 넷째 조졸(漕卒)에게서 포목을 거두어 군수에 보태게 할 것, 다섯째 목장을 혁파하고 둔전을 새로 설치할 것, 여섯째 인근 고을의 가까운 지역을 편리한 방향으로 옮겨 떼어줄 것, 일곱째 본부의 군병을 편의대로 만들어 둘 것 등이었다. 이에 비답하기를,

“일곱 가지 방략 가운데 어찌 채용할 만한 조목이 없다 하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허락한다.” 하였다.

○副總管權恢上疏，進華城七策．一，守城器械，預講備完也；二，各處閒地，設屯廣儲也；三，更許採金，以補城役也；四，收布漕卒，以補軍需也；五，革罷收場，創置屯田也；六，隣邑近面，從便移劃也；七，本府軍兵，便宜制置也．批曰：“七段方略，豈無可以採用之條件？許令廟堂稟處．”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1795) 8월 4일(임오)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광주부 유수로 남한산성 수어사를 겸임시켜 진에 내보내는 절목

비변사가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로 남한산성 수어사(南漢山城守禦使)를 겸임시켜 진(鎭)에 내보내는 절목(節目)을 아뢰었다. 【그 절목은 다음과 같다. “조가(朝家)에서 남한산성을 설치한 것은 대체로 그곳을 보장(保障)으로 삼아 위급할 때 대비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성을 지키는 신하로서는 원래 산성의 공관에 머무르면서 산성의 병무(兵務)를 다스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궁(行宮)이 있는 곳마다 수리하고, 때때로 성곽을 보수하며, 병사를 훈련 시키고, 군량을 비축하며, 기계를 수선해야 할 것이니, 어느 것 하나 그 신하의 직분이 아닌 일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수어사가 진(鎭)에 나간 것을 통틀어 계산해 보면 모두 두 차례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혹 8년이나 10년 정도만 있다가 곧바로 돌아와 멀리 서울에서 지휘를 하곤 하였으며 순찰하며 살피는 일도 드물기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책응(策應)해야 할 일체의 일들을 거의 모두 포기하고 말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정말 소홀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경영(京營)의 경우는 본래 군제(軍制)에도 없는 것인데 그저 8백 명의 표하군(標下軍)만 가지고서 5영(營)의 전열(前列)에 처해 있는 상태로서 이에 책응하자니 재력(財力)을 모두 밑빠진 독에 붓는 격이 되고, 이에 따른 침해로 말하면 경기 백성들이 치우치게 고통받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이름은 수어사라고 하면서도 서울에 있게 했다가 지방에 있게 했다가 하는 등 실속없이 쓸데없는 하나의 아문이 되고 말았으므로 변통해야 한다고 생각해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상께서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고 양식을 풍족히 할 계책을 깊이 생각하시어 20년 동안 궁리해 오신 내용을 유지하시며 윤음(綸音)을 내려 경청(京廳)을 없애버리고 산성에 내보내도록 하셨으니, 이는 특별히 즉위하신 초기에 내놓으신 훌륭한 말씀을 실천에 옮기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하신 뒤에는 또 앞으로 서울로 들어왔다가 금방 외방으로 나갔다가 할 것을 염려하신 나머지 정대한 왕법(王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시면서 이를 공포하여 모든 사람이

주지하도록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한 번 거조를 취하시어 백 가지의 폐단을 모두 고치게 하셨으니, 이 어찌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실행함에 폐단이 없게끔 하신 훌륭하고도 아름다운 법제(法制)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경영(京營)을 혁파하고 산성으로 내보내는 데 따른 시행 조건과 관련하여 전례(前例)를 상고하고 새로운 규정을 참작해서 절목을 작성한 뒤 아래에 조목별로 나열함으로써 영구히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수신(守臣)은 광주부 유수라는 칭호를 부여하되, 정2품 이상의 관원을 대상으로 묘당에서 추천하여 낙점을 받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1. 경기 감사가 으레 유수를 겸하게 하되, 3도(都)의 예에 따라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1. 사(使)의 호칭은 겸 남한 수어사(兼南漢守禦使)로 하되, 수원 정리사(水原整理使)나 송도 관리사(松都管理使)나 심도 진무사(沁都鎮撫使)의 예에 의거하여 병조에서 비준받아 내려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

○備邊司, 以廣州府留守兼南漢守禦使出鎮節目, 啓. 【節目: 朝家之設置南漢山城, 蓋出於爲保障備緩急之意, 則爲山城守臣者, 自當居山城之公廡, 治山城之戎務. 行宮隨處葺理, 城郭以時修補, 鍊卒伍, 峙糧餉, 繕器械, 何莫非職分內事, 而通計前後守禦使之出鎮, 凡爲二次, 或八年, 或十年, 旋爲移還, 在京遙領, 巡審且罕, 一應事爲, 舉皆拋置, 已萬萬踈虞, 而京營本無軍制, 只以八百標下, 處在五營前列, 策應則財力都歸尾閭, 侵徵則畿民偏受困深. 名曰守禦, 而便作於內於外, 無實無用之一牙門, 合有變通, 厥惟久矣. 自上深軫汰冗足食之策, 諭之以廿載心籌, 垂之以十行絲綸, 罷去京廳, 出居山城, 特踐初元大哉之言. 既又以來頭之乍出乍入爲慮, 則指彼王府勻石, 示此象魏懸法, 一舉措而百廢俱興, 此豈非安不忘危, 行之無弊之良法美制乎? 罷京營·出山城之合行事件, 考之已例, 參以新規, 成出節目, 條列于左, 以爲永久遵用之地. 一, 守臣以廣州府留守稱號, 以正二品以上, 自廟堂擬薦受點, 瓜限定以二周年. 一, 京畿監司例兼留守, 依三都例施行. 一, 使號則以兼南漢守禦使稱號, 依水原整理使·松都管理使·沁都鎮撫使例, 自兵曹下批.(…)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 8월 19일(정유)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유수 조심태를 소견하다

춘당대(春塘臺)에 거동하여 관서(關西) 지방의 멀리 활쏘는 무사들을 시험하였다. 봉조하(奉朝賀) 홍수보(洪秀輔)와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를 소견(召見)하였다.

○庚寅/御春塘臺, 試關西遠射武士, 召見奉朝賀洪秀輔·水原留守趙心泰.

<정조실록 43권, 정조 19년 10월 13일(경인)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동장대에서 무예를 시험하고 군사를 사열하고 매화포를 구경하다

상이 행궁에 있었다. 동장대(東將臺)에 나아가 무예를 시험하고 군사를 사열하고 매화포(埋火砲)를 구경하였다. 상이 군용(軍容)이 엄히 정돈된 것을 가상히 여겨 유수 조심태에게 구마(廐馬)를 하사하고, 장용사(壯勇使) 김지묵이 73세 나이로 과녁을 명중했다 하여 호피(虎皮)를 내렸다.

○己巳/上在行宮. 御東將臺, 試藝閱武, 觀埋火砲. 上嘉軍容之整嚴, 賜留守趙心泰廐馬. 壯勇使金持默, 年七十三, 射中的, 賜臯比.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1월 22일(기사) 1번째기사>

정치/군사

화성에 봉대를 설치하고, 소나무가 잘 자라는 30리 위치에 표지를 세우다

화성에 봉대(烽臺)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또 명하여 화성 해변의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을 30리로 한정하여 의송산(宜松山)으로 정해서 표지를 세우고 금하여 기르도록 했는데, 모두 유수 조심태의 말을 따른 것이다.

○創置華城烽臺，又命華城海邊宜松處，限以三十里，定爲宜松山，立標禁養．竝從留守趙心泰之言也．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1월 22일(기사) 2번째기사>

정치/군사

『자초신방』을 인출하여 중외에 반포하다

무고(武庫)에서 『자초신방(煮硝新方)』을 인출하여 중외에 반포하였다.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숙묘(肅廟) 무인년 사이에 고 정승 남구만(南九萬)이 건의하여 역관 김지남(金指南)이 북경(北京)을 왕래할 때에 입수한 『자초신방(煮硝新方)』을 무고로 하여금 간행하여 중외에 반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 『자초신방』은 전날의 방법보다 공력이 매우 적게 들면서도 화약의 생산은 몇 배나 많고 화약의 품질도 폭발력의 강도가 높았으며, 지하에 두고서 10년 동안 장마를 겪더라도 절대 습기가 끼어 못쓰게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흙을 취하고 초목을 태운 재를 그대로 이용하면 3분의 1의 흙을 줄일 수 있으니 이는 바로 간편한 방법으로서 훌륭한 단서입니다. 화성(華城)에 군기를 비치할 때 이 방법으로 화약을 제조하도록 하고, 또 반포하도록 신칙하소서.” 하니, 따랐다. 또 곧이어 무고로 하여금 간행하여 반포하게 하였다.

○令武庫，印頒『煮硝方』於中外．右議政尹蕃東啓言：“肅廟戊寅年間，故相南九萬建白，以譯官金指南北京往來時所得『煮硝新方』，令武庫刊布中外．比前法功役甚省，而得硝幾倍，硝品燥猛，雖置之地窖，而十年經霖，絕無潤濕之患．土取路上，柴糶薪草，而仍用其灰，省土之三分之一，此其爲簡便，可尙之一端．請於華城軍器備置時，以此方煮取，仍又申飭頒布．” 從之．仍令武庫印頒．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5월 12일(병진) 2번째기사>

정치/군사

내년부터 화성의 성조를 남한산성의 규례대로 설행하게 하다

화성(華城) 성조(城操)를 내년부터 설행하되, 대조(大操)와 윤조(輪操)를 대략 남한산성의 규례에 따라 하도록 명하였다. 비변사가 수원 유수 조심태(趙心泰)의 장계를 인하여 복주(覆奏)하니, 따른 것이다.

○命華城城操，自明年設行，大操輪操，略倣南漢之規．備邊司因水原留守趙心泰狀啓，覆奏也．從之．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 7월 20일(계해) 3번째기사>

정치/군사

화성 성역의 장수들에게 호궤하고 위문케 하다

화성(華城) 성역(城役)의 장수(匠手)들에게 호궤(犒饋)하고, 승지를 보내어 위문하였다.

○庚寅/犒饋華城役匠手, 遣承旨勞問.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1796) 8월 18일(경인) 1번째기사>

## 정치/군사

화성에서 올린 군제와 협수군에 관한 추가 절목 및 수성 절목

화성에서 군제(軍制)와 협수군(協守軍)에 관한 추가 절목 및 수성 절목(守城節目)을 올렸다.

○군제(軍制)에 관한 추가 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영 군제(外營軍制)에 대한 조건은 이미 계축년에 계하(啓下)한 절목(節目) 안에 갖추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사(外使) 서유린(徐有隣)이 연품(筵稟)하여 전에 부쳐준 속읍(屬邑)인 용인(龍仁)·진위(振威)·안산(安山) 이외에 시흥(始興)·과천(果川) 두 고을도 떼어서 소속시키도록 결정하였으니, 이는 대개 지형이 둘러싸고 있어 군제(軍制)상으로 원만하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전에 단속(團束)하던 본부의 경내의 마군(馬軍)·보군(步軍) 및 속읍의 협수 군졸(協守軍卒)에다가 새로 이속된 아병(牙兵)·속오군(東五軍)까지 계산하면 합하여 42초(肖)가 되어 전일에 비하면 의젓하게 한 대영(大營)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군제를 개정하는 날에 미처서 입방(入防)·사초(司哨)의 규식과 협수(協守)·겸파(兼把)의 제도를 다시 더 나누어 배정하되 치밀하게 되도록 하여 한 가지 일도 엉성하고 빠뜨림이 없게 한 뒤에야 에워싸고 보호하여 막아 지키는 방도가 기각지세(掎角之勢)을 이루어 위급할 때에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속읍의 군사 수효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장정을 뽑아내어 어린형(魚鱗形)으로 초(哨)를 만들어 입방군(入防軍)에 소속시키고 혹은 사면의 거리의 가깝고 먼 것을 취하여 남은 인원을 단속하여 견아형(犬牙形)으로 파정(派定)하여 협수군(協守軍)에 부쳐주어야 하겠습니까. 사초(司哨)의 분배(分排)와 거행할 사항들을 아래에 조열(條列)합니다.

1. 계축년에 영(營)으로 승격된 뒤로 보군의 초를 감축하고 단속해서 입방군(入防軍)을 설치한 것은 정예로움을 귀중히 여기는 병가(兵家)의 의의에서 나온 동시에 행영(行營)의 호위가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소속된 초의 액수(額數)가 중다(衆多)한 데 거기에 또 노약자를 다시 계산하지 않고 모두 수록(收錄)한다면 허실(虛實)이 혼동되기 쉬워서 도리어 액수의 많음만을 힘쓰는 데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속읍에서 7초의 장정을 뽑아내어 경내에 있는 입방군(入防軍) 13초와 함께 어린형(魚鱗形)으로 사(司)를 만들어 1영(營) 4사(司)가 되게 하고 사(司)마다 각 5초(哨)의 제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1. 장정을 뽑아낼 적에는 형세상 장차 그 각읍에 있는 군사 수효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분배(分排)하여야 합니다. 용인(龍仁)은 10초(哨) 안에 2초 1기(旗)를 뽑아내고 진위(振威)는 5초 안에 1초 2기를 뽑아내고 안산(安山)은 5초 안에 1초 1기를 뽑아내고 시흥(始興)은 4초 안에 1초를 뽑아내고, 과천(果川)은 3초 안에 2기를 뽑아냅니다. 도합 7초를 입방군(入防軍)에 소속시켜 부근으로부터 사(司)를 합병하여 단속(團束)하는 소지로 삼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방군에 대한 법제의 뜻은 다른 군사와는 자별하니 반드시 양정(良丁)으로 뽑아 정하고 감히 사천(私賤)을 뒤섞어 구차하게 충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본부의 경내 남쪽에 있는 5초는 전사(前司)에 소속시키며, 용인의 2초 1기, 진위의 1초 2기와 본부 경내로서 진위·용인의 접계(接界)에 있는 2초 등 합계 5초는 좌사(左司)에 소속시키며, 우사(右司)에 소속시키며, 본부 경내로서 북쪽에 있는 5초는 후사(後司)에 소속시킵니다.

1. 전에 좌(左)·중(中)·우(右) 3사(三司)는 전(前)·좌·우·후로 그 사호(司號)를 고쳐 정하고 과총(把摠) 1원(員)을 더 배정하되, 경내의 이력이 있는 당상(堂上) 무관으로 원절목(原節目)에 의하여 차출해야 할 것입니다. 초관(哨官)은 이미 13원을 차출했으니, 그 사람들은 초명(哨名)만 바꾸어 전대로 그냥 두고 나머지 7원은 속읍(屬邑)의 전임 조관(朝官) 및 선부수삼천(宣部守三薦)을 출신을 융통성있게 차출하여 4사(司) 20원의 수효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아병(牙兵)으로서 난후군(攔後軍)에 소속된 것이 5초(哨)임은 이미 사(司)의 제도가 그러하니 과총(把摠)이 없을 수 없으나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 찰방(迎華察訪)은 북성(北城) 밖에 위치해 있어 행궁(行宮)과 아주 가까운데 소속된 데가 없으니, 아병과총(牙兵把摠)으로 호칭을 정하여 차출해야 할 것입니다. 난후아병(攔後牙兵)의 경우는 초수(哨數)의 많고 적음을 본래 정한 제도가 없으니, 비록 10초(哨)의 많은 수효를 1인의 과총이 영솔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본역(本驛)에 소속된 본참(本站)과 각참(各站)의 이졸(吏卒)과 보군(保軍)을 이노(吏奴)의 예에 의하여 일체 모두 단속하여 대오(隊伍)를 만들어 난후군에 예속시키고 임기응변(臨機應變)하는 등의 절차는 일체 외사(外使)의 약속을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초관(哨官)은 아병(牙兵)으로 입방 정군(入防正軍)과는 다름이 있으니, 각읍에 있는 출신(出身)을 가려 차출하되, 만일 혹시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한량(閑良) 중에서 지별이 있는 자를 융통성 있게 차출해야 할 것입니다. 역속(驛屬)은 명수(名數)에 구애하지 말고 좌·우 초로 대오를 만들고 초관은 외영(外營)의 출신으로 차출해야 할 것입니다.

1. 외영(外營)에 이미 4사(司)의 과총(把摠)을 둔 만큼 속읍의 겸사 과총(兼司把摠)은 곧 중첩된 듯하니, 자연히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읍에 있는 군병으로서 성정군(城丁軍)은 비록 이미 협수(協守)에 오로지 소속되었다 하더라도 그밖에 입방군(入防軍)·아병(牙兵)·유병(遊兵) 등의 명액(名額)이 또한 많으니, 만일 과총의 호칭을 부여하여 절제(節制)의 권한을 맡겨주지 아니하면 실로 소루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두 영의 향군(鄉軍)에 있는 고을의 수령이 과총을 겸임하는 예에 의하여 5개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그대로 과총을 겸임하여 평상시 단속하는 정무를 전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상시에 단속하고 조련에 임에 영솔하는 대에 지나지 않을 뿐, 외영의 원과총(原把摠)과는 다른점이 있으니 사호(司號)는 마련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이 1영(營)·4사(司)·20초(哨)로써 실제로 입방군을 삼을 경우 1년 안에 전군이 모두 입방(入防)한다면 너무 과다하게 될 듯합니다. 매년 10초(哨)를 5번(番)으로 나누어 만들고 번(番)마다 2초씩 한 해 걸러 입방(入防)하게 하면서 돌려가며 휴식하게 함으로써 단속을 엄히하고 민력(民力)이 퍼지게 하는 소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 지금 이렇게 단속하는 것은 처음으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20초를 정군(正軍)으로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해를 걸러 입방(入防)하게 하고, 그 나머지 20초 안에서 5초는 나누어 외사(外使)의 난후아병(攔後牙兵)에 소속시키고 2초는 주대책응병(駐隊策應兵)에 소속시키고, 3초는 통구 유병(通衢遊兵)에 소속시키고, 10초는 4성(城)에 나누어 소속시켜 혹 배정하여 번을 세우기도 하고 혹은 더 파견하기도 하여 협수(協守)를 책임지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사초군(司哨軍)을 가려 선발하고 입방군(入防軍)의 무예를 훈련시키는 등의 일은 계축년의 원절목에 의하여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협수군(協守軍)에 관한 추가 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수(協守)의 제도는 이미 원절목 안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지금 지세(地勢)가 겹겹으로 둘러싸이고 도리(道里)가 균적(均適)해졌을 뿐 아니라 또 과천과 시흥을 소속시켜 한편으로는 북성(北城)을 방비하고 한편으로는 유병(遊兵)을 책임지웠으니, 이로부터 안팎이 공고해지고 국면이 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따르고 변경시키는 조목을 아래에 기록합니다.

1. 속오군(束伍軍)과 아병(牙兵)으로서 전의 소속이건 새 소속이건 따질 것 없이 장정을 뽑아내어 사(司)를 병합해서 입방군(入防軍)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단속하여 협수군(協守軍)에 소속시키면, 영제(營制)와 성제(城制)가 저대로 구별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별사과총(別司把摠)의 제도를 없애고 다만 협수장(協守將)으로 호칭해야 할 것입니다.

1. 동성 협수장(東城協守將)은 용인 현령(龍仁縣令)으로, 남성 협수장은 진위 현령(振威縣令)으로, 서성 협수장은 안산 군수(安山郡守)로, 북성 협수장은 시흥 현령으로, 유병장(遊兵將)은 과천 현감으로 호칭을 정하여 4성(城) 및 통구(通衢)에 나누어 소속시켜 협수(協守)를 오로지 책임지우는 소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협수 초관(協守哨官)은 그 군의 수효에 따라 해당 고을의 전적 관원 및 출신(出身)으로 융통성있게 의망(擬望)하여 외영(外營)에 보고하고 전령(傳令)을 작성하여 차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춘등(春等)과 추등(秋等)의 포폄(褒貶)은 협수장이 일체 마감(磨勘)하여 계(啓)를 작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용인현은 속오군(束伍軍) 5초 아병(牙兵) 4초 친아병(親牙兵) 1초 가운데 2초 1기는 장정을 뽑아내어 입방군에 소속시키니 나머지가 7초 2기이며, 진위현은 속오군 3초 아병 2초 가운데 1초 2기는 장정을 뽑아내어 입방군에 소속시키니 나머지가 3초 1기이며, 안산군은 속오군 4초 장초군(壯抄軍) 1초 가운데 1초 1기는 장정을 뽑아내어 입방군에 소속시키니 나머지가 3초 2기이며, 시흥현은 속오군 3초 장초군 1초 가운데 장정 1초를 뽑아내어 입방군에 소속시키니 나머지가 3초이며, 과천현은 속오군 2초 장초군 1초 가운데 2기는 장정을 뽑아내어 입방군에 소속시키니 나머지가 2초 1기입니다.

입방군 7초와 외사(外使)의 난후아병(攔後牙兵) 5초를 제하면 실지로 남은 군사는 15초인데, 10초는 4성의 협수군(協守軍)으로 만들고 5초는 주대(駐隊)와 유병(遊兵)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용인현의 남은 군사 7초 2기 안에서 3초는 협수군으로 삼고 2초는 주대병(駐隊兵)으로 삼고 2초 2기는 아병으로 삼으며, 진위현의 남은 군사 3초 1기 안에서 2초는 협수군으로 삼고 1초 1기는 아병으로 삼고 1기는 용인현의 2기와 초(哨)를 합병하며, 안산군의 남은 군사 3초 2기 안에서 3초는 협수군으로 삼고 2기는 아병으로 삼으며, 시흥현의 남은 군사 3초 안에서 2초는 협수군으로 삼고 1초는 유병(遊兵)으로 삼으며, 과천현의 남은 군사 2초 1기 안에서 2초는 유병으로 삼고 1기는 아병으로 삼아 안산군의 2기와 초(哨)를 합병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성 절목(守城節目)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을 쌓았으면 반드시 성을 지키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3리(里)의 내성과 7리의 외성이라 할지라도 살반이[攔]와 성가퀴[雉]를 계산하여 장정을 선발해서 나누어 소속시키고 장령(將領)을 두어 이를 관할하게 하는 법인데, 하물며 이 본부(本府)로 말하면 바로 원침(園寢)을 호위하고 행궁(行宮)을 옹위하는 큰 성지(城池)인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누대(樓臺)와 망루(望樓)가 완성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방어하고 절제(節制)하는 것을 아직까지 강정(講定)하지 못하였으니, 실로 병가(兵家)의 파수(把守)하는 본의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된 대로 절목을 만들어 아래에 조목별로 나열합니다.

1. 성지(城池)가 있으면 관성장(管城將)이 없을 수 없으니, 본부의 관관으로 차정(差定)합니다.

1. 성의 제도는 4문(門) 8각(角)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치첩(雉堞)을 설치했습니다. 성장(城將)의 문을 막고 치총(雉摠)은 모퉁이[角]을 지키며 16초관(哨官)은 목적지로부터 나누어 소속되어 절제(節制)를 받으니, 이는 대개 병가(兵家)의 사두팔미(四頭八尾)의 의의를 취한 것입니다. 성장(城將)은 4원(員)이니 경내의 무신 당상(武臣堂上)으로 일찍이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을 차출하고, 치총(雉摠)은 8원이니 당하관(堂下官)으로 이력이 있는 전직 관원을 차출하고, 초관(哨官)은 16원이니 출신(出身)으로 선전관(宣傳官)·부장(部將) 수무장(守門將)의 후보자로 추천된 자면 누구든 융통성있게 차출합니다.

1. 수첩 군관(守堞軍官)은 47인인, 본부에 있는 내영(內營)의 향무사(鄉武士)를 소속시켜 절제(節制) 받게 하고 액수(額數)는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말고 그 실수(實數)를 차등있게 녹안(錄案)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영(外營)에 전일 부사(府使)가 있을때 초관청(哨官廳)의 오래 근무하는 자리로 되었던 곳은 본청에 부쳐주어 친군위(親軍衛)의 정령(正領)과 돌려가며 천전(遷轉)하는 자리로 삼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파수편(派守篇)에서 5타(堞)마다 타장(堞長) 1인을 두도록 한 제도에 따를 경우 타장이 1백 80인이 되니, 이는 부사가 군관중에서 융통성있게 타(堞)를 계산하여 차출해야 할 것입니다.

1. 성정군(城丁軍) 8천 6백 20명을 각종 납미군(納米軍)으로 단속하고, 군정(軍丁)의 총수는 한결같이 도안(都案)에 있는대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제번 군관(除番軍官)이 9백 97명, 별무사(別武士)가 2천 2명, 보군보(步軍保)가 1천 5백 60명, 수미군(需米軍)이 2천 명, 유방군(留防軍)이 7백 2명, 감마보(減馬保)가 4백 44명, 서고 별무사(西庫別武士)가 3백 명, 둔장초(屯壯初)가 1백 86명, 치중보(輜重保)가 1백 명, 둔아병(屯牙兵)이 1백 25명입니다. 그리고 성타(城堞) 9백 13회(回)에 타장(堞長)이 5타마다 1인이니 함께 1백 80인이고 첩(堞)마다 성정군(城丁軍)이 5명씩으로 함께 4천 5백 65명인데, 이를 배치하고 더 파견할 경우 남·북문에 각 1백 50명, 동·수문에 각 1백 명, 상·하수문(上下水門)에 각 1백 명, 남 아문(南暗門)에 1백 명, 3암문(三暗門)에 각 50명, 4각루(四角樓)에 각 90명, 봉대(烽臺)에 50명, 남북 현구(南北縣溝)에 각 40명, 용도(甬道)에 1백 55명, 포루(鋪樓)·포루(砲樓)·치노대(雉帑臺)·적대(敵臺)·공심돈(空心墩) 등 함께 22개 처에 6백 60명으로 나누어 배치하게 됩니다.

1. 첩(堞)에 배치한 것과 더 파견한 것을 합쳐 계산하면 도합 7천 명인데 남은 군정이 아직도 1천 6백 20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타부(堞夫)를 겸설(兼設)하는 것은 정군(正軍)을 단속하는 것과는 다름이 있으니, 우선은 없는 셈으로 쳐 두었다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적당하게 임기응변으로 동원해서 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華城, 進軍制協守追節目及守城節目. 【軍制追節目: “外營軍制條件, 已爲備載於癸丑啓下節目中. 而今因外使徐有隣筵稟定奪前付屬邑龍仁·振威·安山外, 始興·果川兩邑亦爲劃屬, 蓋取地形之環匝, 軍制之團圓. 今以前團束本境馬步軍, 及屬邑協守軍卒, 并新屬牙兵·東伍而計之, 合爲四十二哨, 則比之前日, 儼成一大營矣. 趁此改定軍制之日, 入防·司哨之規, 協守·兼把之制, 更加分數排比, 務歸縝密, 無一罅漏然後, 拱護之節, 捍衛之道, 可成掎角, 而緩急有恃. 故或從屬邑軍數多寡, 而抄出丁壯, 魚鱗作哨, 屬之入防, 或取四面道里遠近而團束贏餘, 犬牙派定, 付之協守. 而司哨分排, 舉行事宜, 條列于左. 一, 癸丑陞營之後, 步軍之減哨團束, 設置入防, 旣出兵家貴精之義, 兼寓行營衛護之重. 而今以新屬哨額之衆多, 又復不計老弱而俱收, 則虛實易混, 反歸務多. 就此屬邑抄得七哨丁壯, 并境內所在入防軍十三哨, 而魚鱗作司, 俾成一營四司, 每司各五哨之制. 一, 抄壯之際, 勢將從其各邑所在軍數多寡而分排. 龍仁十哨

內，抄二哨一旗，振威五哨內抄一哨二旗，安山五哨內，抄一哨一旗，始興四哨內抄一哨，果川三哨內，抄二旗。哨合七哨，屬之入防軍，以爲附近并司，團束之地。而入防軍法意，比他自別，必以良丁抄定，毋敢以私賤淆雜苟充。一，本境南邊所在五哨，屬之前司，龍仁二哨一旗，振威一哨二旗，本境振威·龍仁接界所在二哨，合五哨，屬之左司，安山一哨一旗，始興一哨，果川二旗，本境西邊安山接界所在二哨合五哨，屬之右司，本境北邊所在五哨，屬之後司。一，前團束左·中·右三司，改以前·左·右·後定其司號，而加定把總一員，以境內有履歷堂上武弁，依原節目差出。哨官則既有十三員已差者，換其哨名，依前仍置，而其餘七員，以屬邑朝官前銜及宣部守三薦出身，通融差出，以準四司二十員之數。牙兵之屬於攔後者爲五哨，已成司制，則不可無把總，而不必別設。迎華察訪，處在北城之外，密邇行官，歸屬無處，以牙兵把總，定號差出。而至於攔後牙兵，哨數多寡本無定制，雖十哨之衆，一把總領率，無所不可。本驛所屬本站各站吏卒保軍，依吏奴例，一并團束作隊，隸之攔後，臨機應變等節，一遵外使約束。哨官則牙兵，與入防正軍有異，各邑所在出身擇差，而出身如或苟艱，閑良中有地閥者通融差出。驛屬則不拘名數，以左右哨作隊，哨官以外營出身差出。一，外營既置四司把總，則屬邑之兼司把總，便若架疊，自當革去。而各邑所在軍兵城丁軍，雖已專屬協守，其外入防軍·牙兵·遊兵等名額亦多，若不假之以把總之號，委之以節制之權，則實有疎漏之慮。依禁御兩營鄉軍所在邑守令，兼帶把總之例，使五邑守令，仍兼把總，以專常時團束之政。而此不過常時團束臨操領付而已，則此與外營原把總有異，司號勿爲磨鍊。一，以此一營·四司·二十哨，實爲入防軍，則一年內盡數入防，太涉過多。每年十哨，分作五番，每番二哨式，使之間年入防，輪回休息，以爲嚴團束，紓民力之地。一，今此團束，係是創制。二十哨，作爲正軍，使之間年入防，其餘二十哨內五哨，分屬之外使攔後牙兵，二哨則屬之駐隊策應兵，三哨則屬之通衢遊兵，十哨則分屬四城，或排立或加派，以責協守。一，司哨揀選，入防肄藝等事，依癸丑原節目施行。”○協守追節目：“協守之制，已詳於原節目中，而今以地勢之環匝，道里之均適，又屬果川·始興，一以備北城，一以責遊兵，從此表裏鞏固局。而團圓沿革條件，錄之于右。一，毋論東伍與牙兵之前屬新屬，抄其壯併司，而作入防軍，團束零餘，屬之協守，則營制城制自別。從今以後，祛其別司把總之制，只以協守將稱號。一，東城協守將，龍仁縣令，南城協守將，振威縣令，西城協守將，安山郡守，北城協守將，始興縣令，遊兵將果川縣監定號，分屬四城及通衢，以爲專責協守之地。而協守哨官，則隨其軍數，以該邑前銜及出身通融，望報外營，成傳令差出。兩等褒貶，協守將一體磨勘，修啓。一，龍仁東伍五哨·牙兵四哨·親牙兵一哨內，二哨一旗，抄其丁壯，屬之入防軍，餘爲七哨二旗，振威東伍三哨·牙兵二哨內，一哨二旗，抄其丁壯，屬之入防軍，餘爲三哨一旗，安山東伍四哨·壯抄一哨內，一哨一旗，抄其丁壯，屬之入防軍，餘爲三哨二旗，始興東伍三哨·壯抄一哨內，抄其丁壯一抄，屬之入防軍，餘爲三哨，果川東伍二哨·壯抄一哨內，二旗抄其丁壯，屬之入防軍，餘爲二哨一旗。除却入防軍七哨外使攔後牙兵五哨，則實餘軍十五哨，十哨作四城協守軍，五哨作駐隊與遊兵。而龍仁餘軍七哨二旗內，三哨爲協守軍，二哨爲駐隊兵，二哨二旗爲牙兵，振威餘軍三哨一旗內，二哨爲協守軍，一哨一旗爲牙兵，而一旗與龍仁二旗并哨，安山餘軍三哨二旗內，三哨爲協守軍，二旗爲牙兵，始興餘軍哨三哨內，二哨爲協守軍，一哨爲遊兵，果川餘軍二哨一旗內，二哨爲遊兵，一旗爲牙兵，與安山二旗并哨。”○守城節目：“築斯城也，必有守斯城之制。雖在三里之城，七里之郭，數其堞計其雉，選丁壯而分隸之，置將領而管轄之，況此本府，卽拱護園寢，環衛行宮之大城池乎？樓櫓告完，垂及二載，而防禦節制，尚未講定，實有違兵家派守之本意。故依定奪撰成節目條列于左。一，有城池不可無管城將，以本府判官差定。一，城之制，有四門八角，間設雉堞焉。城將抗其門，雉總守其角，而十六哨官，從信地分隸承接節制，蓋取兵家四頭八尾之義。城將四員，以境內武臣堂上，曾經實職人差

出，雉摠八員，以堂下有履歷前銜差出，哨官十六員，以出身毋論宣·部·守薦，通融差出。一，守堞軍官四十七人，以本府所在內營鄉武士，付屬節制，額數則勿拘多少，以具實數次等錄案。外營之前日府使時，哨官廳久勤窠，付之本廳，以爲與親軍衛正領，輪回遷轉之地。一，依派守篇，每五堞堞長一人之制，堞長一百八十人，以武士軍官中通融計堞差出。一，城丁軍八千六百二十名，以各樣納米軍團束，而軍丁摠數，一依都案所在分排。除番軍官九百九十七名，別武士二千二名，步軍保一千五百六十名，需米軍二千名，留防軍七百二名，減馬保四百四十四名，西庫別武士三百名，屯壯抄一百八十六名，輜重保一百名，屯牙兵一百二十五名。城堞九百十三回，堞長每五堞一人，合一百八十人，每堞城丁軍五名式，合四千五百六十五名，排定加派，則南北門各一百五十名，東西門各一百名，上下水門各一百名，南暗門一百名，三暗門各五十名，四角樓各九十名，烽臺五十名，南北縣溝各四十名，甬道一百五十五名，舖樓·砲樓·雉弩臺·敵臺·室空塾，合二十二處，以六百六十名分排。一，計堞排定并加派合爲七千名，而餘丁尚有一千六百二十名。兼設堞夫，與團束正軍有異，姑付零數，以備臨時停當隨機調用。”】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實錄卷之四十七終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1797) 12월 30일(을축)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의 중군을 차출하다

수원(水原)의 중군(中軍)을, 곤수(閔帥)나 방어사(防禦使)를 이미 지낸 사람으로 차출하도록 명하였다.

○命水原中軍，以已經閔帥防禦使人差出。

<정조실록 48권, 정조 22년 2월 3일(정유)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화성에서 군교에게 군대의 식량을 미곡으로 대신 내도록 하다

하교하였다. “화성(華城)은 바로 탕목읍(湯沐邑)이자 고굉(股肱)처럼 믿고 중하게 여기는 고을이니 군대와 식량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인화(人和)를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올해 논의 수확량이 밭 곡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 곳곳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구나 바닷가에 위치해 갯필이 많은 본부(本府)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민간에 비축된 곡식이 많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외영(外營)의 속읍(屬邑)에서 바치는 미곡의 명색(名色)에 대해서는 군교(軍校)에게 돈으로 대신 바치도록 아울러 허락하라.”

○教曰：“華城，卽湯沐之邑，股肱之郡也，兵食雖重，人和當先。今年水田所收之不及旱田，在在同然，況本府濱海？廣斥民間，蓋藏不贍可知，外營屬納米名色，軍校併許代錢。”

<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1798) 9월 24일(갑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장용위의 외사에게 그 운영에 대해 유지하다

장용위 외사에게 유지하였다. “내가 듣건대, 병가(兵家)에 5경(經)이 있으니, 그것은 즉 첫째 도(道), 둘째 천(天), 셋째 지(地), 넷째 장(將), 다섯째 법(法)으로서, 도는 덕으로 교화하는 것, 천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지는 자애스럽게 대하는 것, 장은 기강을 잡는 것, 법은 제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周)나라는 정전법(井田法)을 통해 병부(兵賦)를 정하였고, 한(漢)나라는 남군(南軍)과

북군(北軍)을 두어 중외(中外)를 통어하였으며, 당(唐)나라는 부위(府衛)를 두어 병농(兵農)을 겸관(兼管)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아조(我朝)에 이르러서는 삼대(三代)의 모범적인 제도를 참작하여 오위(五衛)에서 총괄하는 군제(軍制)를 창설, 바다 동쪽 수천 리 땅에서 창 들고 활 쏘는 무리들은 모두 여기에 소속되게 하였는데, 일단 찌르고 치는 기술을 익힌 다음에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덕(德)이 자혜(慈惠)롭게 흘러 넘치고 교화가 행해져 기강이 바로잡히면서 제어될 수 있게끔 하였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군영(軍營)의 제도가 나와 오위(五衛)의 편제가 폐지되자 고금(古今)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이 하늘과 땅처럼 판이해지면서 농사를 지어도 먹지 못하고 길쌈을 해도 입지 못해 온 지가 어언 2백 년이나 되었다.

지금 장영(壯營)을 경사(京師)에 설치하여 내영(內營)으로 하고 화성(華城)에 설치한 것을 외영(外營)으로 삼아 한편으로는 왕도(王都)를 감싸게 하고 한편으로는 선침(仙寢)을 지키게 하였는데, 장영이나 친군(親軍)의 호칭은 오위(五衛) 중의 속위(屬衛)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바로 관북(關北) 지방의 자제들을 소속시켰었으니, 유미관(有美關) 이북의 땅이야말로 우리 조가(朝家)에 있어 풍패(豐沛)라 할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화성에 성곽을 두르고 우리 원묘(園廟)를 봉안한 뒤로 그곳이 마치 풍산(豊山) 패수(沛水)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내영과 외영이 표리(表裏) 관계를 이루며 서로 호응하도록 한 것인데, 먼저 장용위를 설치하고나서 그 다음에 친군위를 세운 것 역시 대체로 선조(先朝)의 뜻을 계승하고 옛 제도를 모범으로 삼으려는 미의(微意)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군지(軍志)에 말하지 않았던가. ‘위(魏)나라와 진(秦)나라의 무예(武銳)는 환(桓)·문(文)의 절제(節制)를 당해낼 수가 없고 환·문의 절제는 탕(湯)·무(武)의 인의(仁義)를 대적할 수가 없다.’ 고. 따라서 일단 영(營)을 설치했으면 군제(軍制)를 정해야 할 것이요, 일단 군제를 정했으면 인화(人和)를 얻어야만 할 것이다. 이에 시의(時宜)를 헤아리고 민정(民情)을 참작하여 궁궐에서 자문을 구하고 낭묘(廊廟)에서 의논한 뒤 먼저 외영부터 착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초(司哨)의 이름을 없애고 위부(衛府)의 제도를 존속시켰으며, 5읍(邑)의 무리를 관장하고 4문(門)의 호위를 확립케 하였다. 그리고 화성의 수미(需米)를 <1두(斗)씩> 감해주어 3두와 5두씩만 각각 내게 하고, 속읍(屬邑)의 첨액(簽額)도 덜어주어 1천 명이나 면제해 주었다. 위(衛)는 부(部)를 호령하고 부는 대(隊)를 호령하는 등 마치 고리가 끊이지 돌아가고 못 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처럼 되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억만년토록 지속될 기초를 마련하고, 미곡을 감해주고 액수를 덜어준 효과가 기전(畿甸) 남쪽 지방의 못 백성들과 빈잔(貧殘)하고 노약한 자들에게까지 두루 미치게 된 결과 벼들도 쉬는 일이 없게 되면서 대체로 넉넉하게 저장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 이는 아조(我朝)에서 왕년에 지극히 훌륭한 덕과 선을 베풀어 백성들을 보살펴 준 효과 아닌 것이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몸소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례(殿拜禮)를 행하면서 일이 있으면 보고드리는 뜻을 부친 다음 이어 재전(齋殿)에 가서 빈대(賓對)한 결과 의논들이 합치되기에 대략 그 제도를 정하였다.

첫째, 용인(龍仁)·진위(振威)·안산(安山)·시흥(始興)·과천(果川) 등 5읍의 군총(軍摠)은 모두 외영에 소속시킨다. 보군(步軍) 12초(哨)를 뽑아내어 옛날 주(周)나라 군대가 미봉(彌縫)하던 방식이나 제(齊)나라 군대의 편오(編伍) 제도와 대략 비슷하게 하고 이를 외영의 13초와 합쳐 25초로 만들며 여정(餘丁)은 수성(守城)하는 군제(軍制)에 부친다.

둘째, 상기(上記) 속읍(屬邑)이 군정(軍丁)에게서 받아내어 경사(京師)의 각영(各營)과 제

사(諸司)에 납부하던 것들 또한 모두 외영에 부쳐주어 군수(軍需)로 쓰게 하고, 정채(情債)를 감해 주어 백성의 힘을 덜어주며, 경사에 납부하던 것들은 대신 지급하게 하되 병조와 균역청(均役廳)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한다.

셋째, 화성에 아별무사(兒別武士) 1천여 인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규정을 지금까지 행해 온 것이다. 아약(兒弱)을 군정으로 뽑지 못하도록 법으로 원래 금지하고 있는데, 더구나 사방의 표준이 되어야 할 본부(本府)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특별히 조치를 취해 이 잘못된 규정은 영원히 혁파하도록 한다.

넷째, 납미군(納米軍)의 경우, 노비와 양인(良人)으로 분류하여 으레 6두(斗)와 3두씩 받고 있는데, 화성은 6두와 3두 외에 또 4두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6두와 4두를 내는 자 모두에게 1두씩 감해 주기로 한다. 그리하여 화성 지역에 살면서 화성의 역(役)을 담당해야 할 자들로 하여금 단지 3두와 5두씩만 차등 있게 내게 함으로써 적곡을 거둘 때 모곡을 견감해 주는 정식(定式)에 맞게끔 한다.

다섯째, 5읍의 군민(軍民)들이 새로 소속되는 때를 당하여, 그 초기에는 더 보살피 주면서 인족(隣族)을 침징(侵徵)하는 폐단 등을 면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니, 속오군(束伍軍) 5백 10명과 납포군(納布軍) 4백 90명을 특별히 감액(減額)한다.

이상이 대 강령인데 상세한 절목은 유사(有司)가 알아서 하기에 달려 있다. 이번에 이 일을 한 번 거행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으니, 삼보(三輔)의 능읍(陵邑)에서 근본을 강하게 하고 지말(支末)을 약하게 하는 바람직한 방책이 여기에 있고, 만년 탕목읍(湯沐邑)에 대해 요역(徭役)을 가볍게 해 주고 부세(賦稅)를 적게 해 줄 좋은 규정이 여기에 있고, 한 지방에서부터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함으로써 무비(武備)를 닦고 식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성전(盛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諭壯勇外使曰：“予聞兵家有五經，一曰道，二曰天，三曰地，四曰將，五曰法。道，所以德化也，天，所以惠覆也，地，所以慈愛也，將，所以經紀也，法，所以制作也。周因井田，以定兵賦，漢軍南北，以統中外，唐置府衛，以兼兵農。及至我朝，參酌三代之懿範，創置五衛之總轄，舉海左方數千里，荷戈負羽之徒，莫不隸焉。既嫻擊刺，又樂耕耘，以至德流於慈惠，而化行於經制。問者軍營出，而五衛罷，則古今之不相侔，不翅若星淵，而夫耕不食，婦織不裳，且二百年于茲矣。今壯營之設於京師而爲內營，於華城而爲外營，一以拱王都，一以衛仙寢，而壯營與親軍之號，昉於五衛中屬衛，卽關北子弟之所隸也，有美關以北土，爲我家豐沛之鄉。而因華爲城，奉我園廟，視之如豐山沛水，故內營外營表裏相攝，而先置壯勇，次立親軍，蓋亦述先師古之微意也。軍志不云乎？‘魏·秦之武銳，不可以當桓·文之節制，桓·文之節制，不可以敵湯·武之仁義’。既設營矣，當有以定軍制矣，既定制矣，當有以得人和矣。量之時宜，參之民情，詢之廈氈，議之廊廟，於是乎先從外營。而祛司哨之名，存衛部之制，管五邑之衆，立四門之衛。華城之需米減而爲三五之差，屬邑之簽額除，而得一千之數。衛以令其部，部而令其隊，如環之循，如星之拱，以措我億萬之鴻基，而減米除額之效，得以周遍畿南烝庶貧殘老弱之類，杼柚無空，蓋藏有餘，莫非我昔年盛德至善字卹元元之攸暨攸霑也。躬詣景慕宮，行展拜禮，庸寓有事則告之義，仍御賓對於齋殿，僉謀詢同，制置略定。一曰，龍仁·振威·安山·始興·果川五邑軍摠，竝屬之外營。抄出步軍十二哨，略倣周師之彌縫，齊旅之編伍，而合外營十三哨，以爲二十五哨，餘丁付之守城軍制。二曰，右項屬邑，凡出於軍而納於京師各營諸司者，亦皆付之外營，用爲軍需，減其情債，以紓民力，京納則給代，而令兵曹均廳舉行。三曰，華城有兒別武士千有餘人，卽流來之謬規也。兒弱簽丁，自是法禁，況本府標準於四方者乎？謬規特爲永罷。四曰，納米軍之分奴良，例捧六斗三斗，而華城則六三之外，又有四斗者，六斗四斗者，竝減一

斗. 使居華土而應華役者, 只有三五之差, 以準糶民蠲耗之式. 五曰, 五邑軍民, 當新屬之初, 宜加軫恤, 俾免隣族之侵徵, 束伍軍五百一十, 納布軍四百九十, 特爲減額. 此是大綱領也, 節目之詳, 卽有司存. 惟茲之舉一舉, 而衆美具焉, 三輔陵邑強幹弱枝之長策在此, 萬年湯沐輕徭薄賦之良規在此, 一區邱井, 足兵裕食之盛典在此.”

<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1798) 10월 19일(기유)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어영청에서 경기 금위군의 정책에 대해 아뢰다

어영청(御營廳)이 아뢰었다. “경기의 안산(安山)·시흥(始興)·진위(振威)·용인(龍仁)·과천(果川) 등 5 읍에 있는 본청의 정군(正軍) 2백 18명·자보(資保) 2백 34명·관보(官保) 1백 42명·별파진(別破陣) 12명 등 도합 6백 6명을 화성(華城)에 소속시키는 대신畿內(畿內)에 다른 읍에 있는 금영군(禁營軍)을 어영군으로 옮겨 주는 일과 관련, 계하(啓下)된 절목(節目)에 따라 금위영(禁衛營)에서 초기(草記)를 올려 윤허를 받았습니다.畿內(畿內)의 금위군 가운데에서 이 숫자에 맞추어 삭녕(朔寧)의 정군 1백 27명·자보 1백 27명·복마보(卜馬保) 9명과 풍덕(豐德)의 정군 82명·자보 82명·복마보 7명과 지평(砥平)의 정군 9명·자보 9명과 장단(長湍)의 관보 1백 42명·별파진보 12명 등을 지금을 기점으로 하여 모두 본청에 옮겨 소속시키라고 본도 관찰사에게 관문(關文)을 띄워 알려주어야 하겠습니까.”

○御營廳啓言: “京畿安山·始興·振威·龍仁·果川五邑所在本廳正軍二百十八名, 資保二百三十四名·官保一百四十二名·別破陣十二名, 合六百六名, 竝屬華城, 而其代以畿內他邑所在禁營軍, 移作御營軍事, 因啓下節目, 自禁衛營草記蒙允矣. 畿內禁衛軍中, 準此數, 朔寧正軍一百二十七名·資保一百二十七名·卜馬保九名, 豐德正軍八十二名·資保八十二名·卜馬保七名·砥平正軍九名·資保九名·長湍官保一百四十二名·別破陣保十二名, 自今爲始, 并移屬本廳事, 本道觀察使處, 發關知委.”

<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1798) 10월 19일(기유) 13번째기사>

## 정치/군사

### 화성의 군대 편제를 교열 방식과 부합시키기 위해 실록을 상고하도록 하다

비변사의 여러 당상들을 소견(召見)하였다. 무장(武將)들에게 이르기를, “화성(華城)의 군대 편제를 먼저 위(衛)와 부(部)로 편제되었던 옛 제도로 복구하였는데, 이것 역시 의리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경들에게 두루 알리지 않을 수 없다. 대개 오위(五衛)를 설치한 것은 우리 조종조의 아름다운 법제로서 군대와 농사를 하나로 일치시키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보완하여 마치 강(綱)에 목(目)이 딸리고 팔이 손가락을 놀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평상시의 절제(節制)는 도총관과 부총관이 주관하여 하고, 유사시에는 진지를 받아 명을 내어 장수를 보내고 군대를 출동시킨다. 그러므로 친히 사열할 때에도 별도로 좌상 대장(左廂大將)과 우상 대장(右廂大將)을 세워 오위의 군병을 나누어 거느리게 하였으며, 총관(摠管)은 사열대 위에 올라가 시위(侍衛)하였다. 그런데 위와 부의 제도를 혁파하고 군영(軍營)을 설치하면서부터는 옛 제도가 씻은 듯이 없어져 상고할 수가 없게 되었다. 『병장도설(兵將圖說)』을 편찬한 것은 오로지 예전의 법제를 이어가려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명령을 받고 편찬할 때 병조 판서로 있던 자가 이에 감히 사사로운 의도를 뒤섞어 넣어 예전의 제도를 변경시켜, 병조 판서가 친열(親閱)할 때 대중군(大中軍)이 되고 오영 대장(五

營大將)이 전·좌·중·우·후 영장이 되게 하여 병조 판서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무릇 훈련 대장은 원수(元帥)이고 사영 장신(四營將臣) 역시 평상시에 군대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각영의 영장으로 만들어서 대열(大閱)할 때에는 대중군이 거느리는 부대로 만들어 행영(行營)에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죄가 있는가를 따지는 범위 안에 들어가게 하여 병부(兵符)를 차고 있는 원수 이하가 장차 병조 판서에게 곤장을 맞게 되었다. 이 때문에 행영할 때에 장신(將臣)은 단상 위에 머물러 있고 단지 각영의 아장(亞將)으로 하여금 군사를 인솔하고 행영하게 하는바, 이것은 오영을 설치한 본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구나 동가(動駕)할 때에 경계를 해제하는 등의 일에 있어서는 대중군의 영전(令箭)으로 각영에 분부하기까지 하는데, 이것은 실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화성(華城)의 군대 편제에 대한 절목을 비록 이미 제하하였으나**, 교열(敎閱)하는 법식에 이르러서는 척계광의 법식을 그대로 따라 써서 명실이 서로 부합되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널리 상고하고 상세히 규명하여 규정집을 한 부 만든 다음 척계광의 법식과 함께 그때그때 참작하여 써야 할 것이다. 다만 휘하의 군사를 절제하는 것과 기치와 형명(形名)에 있어서는 『병장도설』에 상세하게 보이지 않아서 상고할 수가 없다.”

하였다. 훈련 대장 이경무(李敬懋)가 아뢰기를, “『병장도설』에 근거할 만한 것이 없고 병조의 등록에도 상고할 만한 것이 없으니 실록을 상고하더라도 반드시 최초로 오위의 제도를 두었을 때의 법식을 상고한 다음에야 전례를 끌어다가 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춘추관 당상 이서구(李書九) 등에게 명하여 정족산(鼎足山)에 가서 실록을 상고하게 하였다.

○壬戌/召見諸備堂上. 謂諸武將曰: “**華城**軍制, 先復衛部之舊制, 是亦義理所關, 不可不敷示於卿等矣. 蓋五衛設置, 卽我祖宗朝美法, 兵農合一, 中外相須, 如綱有目, 如臂使指. 而平時節制則都·副總管主之, 有事則稟旨發命遣將出師. 故雖在親行簡閱之時, 別立左右廂大將, 分領五衛軍兵, 而總管則陞壇侍衛. 自衛部罷而軍營設, 舊制蕩然莫可攷尋. 『兵將圖說』之纂定, 宣出於追述之盛意. 而承命編輯之時, 爲本兵者, 乃敢雜錯私意, 變改舊章, 以兵曹判書爲親閱時大中軍, 五營大將, 爲前左中右後營將, 以聽其指揮. 夫訓將, 元戎也, 四營將臣, 亦是常時總兵之人. 而今乃爲各營營將大閱時, 則將爲大中軍領率之部曲, 而行營有做錯, 則當入於查功罪之中, 佩符之元戎以下, 其將受棍於兵判矣. 以是行營時, 則將臣留之壇上, 只令各營亞將, 領兵行營者, 有非設五營之本意. 且沉動駕時解嚴等事之至以大中軍令箭, 分付各營者, 實是行不得之舉. **華城**軍制節目, 雖已啓下, 至於敎閱之式, 不可循襲戚法, 以致名實之不副. 亦宜博考詳究, 撰成一部定規, 與戚法, 隨時參用. 而第其標下節制及旗麾形名之詳, 不見於『兵將圖說』者, 無以憑據矣.” 訓練大將李敬懋曰: “『兵將圖說』, 旣無所徵, 兵曹謄錄, 亦無可考, 則雖考之實錄, 必據最初五衛制置之式, 然後可以援例講定矣.” 上, 仍命春秋館堂上李書九等, 詣鼎足山, 考實錄.

<정조실록 50권, 정조 22년(1798) 11월 3일(임술) 1번째기사>

## 정치/군사

**올해와 내년 가을까지 번드는 것을 중지한 군사들 외에는 모두 신포를 거두다**

금위 대장 신대현(申大顯)이 아뢰기를, “**이번에 시흥(始興) 등 다섯 고을에 있는 군보(軍保)를 화성(華城)에 합쳐 소속시킨 뒤에 경기의 정군(正軍) 14초(哨) 가운데에서 줄어든 수가 합하여 3백 19명이나 됩니다.** 만약 각도의 정군을 매 초(哨)마다 각각 3명씩 줄여 이들을 모아 대신 채운다면, 경기 안의 정군을 감원하는 것이 실로 중난함은 물론 초(哨)를 만



들어 번(番)을 배정할 즈음에 장애되는 점이 많이 있을 것이며, 매년 상변할 때마다 여섯도에서 한꺼번에 군사를 내는 폐단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 고을에 있는 관보(官保)를 정군으로 바꾸어서 14초의 편제를 채워넣을 경우에는, 이들에게서 거두어들이던 포목이 자연 줄어들 것인데, 이것은 다른 도의 정군 가운데에서 줄어든 것과 아울러 자보(資保)를 옮겨다가 보충해 넣는다면 일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에 번을 들어야 할 군사들과 내년 가을까지 번 드는 것을 중지한 군사들 외에는 올해의 신포(身布)를 일체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마도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禁衛大將申大顯啓言：“今番始興等五邑所在軍保，并屬華城後，京畿正軍十四哨內，所減之數，合爲三百十九名。若以各道正軍每哨各減三名者，鳩聚充代，則畿內正軍之減數，實所重難，且作哨排番之際，多有掣礙，每於上番之時，不無六道并發之弊。以畿邑所在官保，換作正軍，以充其十四哨之制，則其所收布，自在減縮，此則以他道正軍所減者，竝資保推移充補，事甚便好。而今年各當立番軍，與限明秋停番軍外，當年身布，一竝收捧，恐合事宜。” 從之。

<정조실록 50권, 정조 22년(1798) 12월 2일(신묘)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수원 주위의 4, 5개 군·현을 외영에 이관한 후 생긴 폐단에 대해 서유린에게 유시하다

장용영 외사(外使) 서유린(徐有隣)에게 특별히 유시하였다.

“군사 제도와 토지 제도는 주(周)나라보다 더 자세히 갖추어진 나라가 없다. 그래서 정전(井田)과 목전(牧田), 오병(伍兵)과 양병(兩兵)이 있었고, 붓도랑에는 나무를 심어 견고히 하였으며, 교외에서는 사열하는 기한이 있었고, 순라가 경계하였으며, 곤탁씨(壺涿氏)의 지킴이 있었다. 그리고 부득이 백성의 일손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향(鄉)과 수(遂)의 3개 고을로부터 3등의 채지(采地)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불러다 썼다.

수원을 둘러싼 4, 5개 군과 현을 외영(外營)에 이관하여 마치 물고기 비늘 같고 머리빗 같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주나라의 훌륭한 제도이다. 그것을 설치하던 초기에 연석에 임하여 유시하고 운음을 반포함에 있어서 토의한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옛날에 군사를 쓸 적에 모집하는 초기에는 정밀하게 선발하였으니 마룡(馬隆)이 꽃말을 세우고 선발 시험을 치른 것이 바로 이 경우이고, 이미 모집한 뒤에는 규율이 있었으니 마수(馬燧)가 수자리 사는 병사들을 잘 훈련시킨 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

지금 들으니, 선발이 정밀하지 못하여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뇌물에 따라 그냥 두기도 하고 뽑아가기도 하는 악습이 생기고, 규율이 분명하지 않아 백성들 가운데 고통을 받아 뿔뿔이 흩어져 떠돌아다니는 탄식이 많다고 한다. 기장(旗長)과 대장(隊長)은 전에 탈이 있었는데 나중에도 계속 일하고 있으며, 면임(面任)과 이임(里任)이 옛날에는 편안했으나 지금은 고생을 한다고 한다. 장정 한 명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의 온 마을을 두루 쫓아다니며 부르고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온 경내를 침범하기까지 하여 소요를 일으킨다고 한다.

이른바 사위(四衛)의 군사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마을의 평범한 소년으로 있다가 분양후(汾陽侯)의 교만한 병사같이 되었다.’ 고 하여 들에서 물을 대며 일을 할 자는 물을 대려 하지 않고, 품팔이를 할 자는 품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허다한 폐단은 조목조목 들어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운 지경이다. 고을원에게 물어보면 데면데면하게 주위 들은 뜬소문을 앞을 다투어 말하고, 시골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눈쌀을 찌푸리며 서로 고한다.

돌이켜 보면, 내가 수원을 위하여 일마다 모두 편리하고 알맞게 하려던 본뜻이 어찌 진실로 그러한 것이겠는가. 조정의 탕목읍(湯沐邑)이며 고향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오래도록 이런

시끄러운 폐단이 있게 하였으니, 참으로 이른바 남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은 각 고을에 널리 유사하여 고을원으로 하여금 경계하고 두려워할 바를 알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안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라.”

○別諭壯勇外使徐有隣曰：“兵制田制之詳，莫備於有周．曰井牧之田也，曰伍兩之兵也，曰溝樹之固也，曰郊闕之限也，曰巡鑿之警也，曰壺涿之守也．於是乎不得已有用民之事，則自鄉遂三邑，至三等采地，以次召發焉．環華城四五郡縣之移管於外營，如鱗比而毛櫛，卽有周之盛典也．當其設施之初，臨筵而提諭，頒綸而講確，果何如也？古之用武也，方募之始，則有差擇焉，馬隆之立標揀試是也，旣募之後，則有紀律焉，馬燧之練戍精卒是也．今聞差擇不精，而吏售隨賂，存拔之習，紀律不明，而民多受瘼，流散之歎．旗隊長之前頃而後役，面里任之昔逸而今勞．簽一丁則迫呼殆遍於一村，闕一額則侵撓至及於一境．所謂四衛諸軍，自稱‘沛里之少年，便做汾陽之驕兵．’灌田者不欲灌田，賃力者不欲賃力．許多弊條，難一二計．問諸邑倅，泛稱聞風而爭先，扣之村民，不免蹙眉而相告．顧予爲華城事，事俱便物，物皆得之本意，豈亶然乎哉？朝家湯沐之地，桑梓之民，有此繹騷之弊，眞所謂不可使聞．卿其布諭諸邑，俾長吏知所警畏，俾小民得其安頓．”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1799) 4월 10일(무술)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장용영을 폐지할 것을 명하다

장용영(壯勇營)을 폐지할 것을 명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환지(沈煥之)가 아뢰기를, “생각건대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지(聖智)의 자질로써 정령(政令)과 시조(施措)가 반드시 전성(前聖)을 본받았고 제작(制作)과 운위(云爲)가 스스로 천칙(天則)에 부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용영의 창설에 있어서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서 대농(大農)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재용이 스스로 넉넉하였고 평민(平民)을 소란시키지 않고도 영제(營制)가 엄연히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침(園寢)을 천봉(遷奉)한 뒤에 이르러서는 새로 큰 읍(邑)을 일으켜 위부(衛府)를 만들어 배치하여 내외(內外)를 공어(拱禦)하는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대저 강간(強幹)의 도모는 오영(五營)이 있고, 굳게 방위하는 방술은 열곤(列闕)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선대왕은 행동함에 조금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 성인(聖人)으로써 즉위하신 처음의 윤음이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고 식량을 풍족히 하는 방책에 권권(惓惓)하셨으니 어찌 시급하지 않은 군대를 양성하고 셀 수 없이 송은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 하였겠습니까? 진실로 정밀한 뜻과 괴로운 마음이 따로 있는 바 있어 규모와 조획(措劃)을 미리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화성 행궁(華城行宮)의 미로한정(未老閑亭)의 편액(扁額)을 보면 성상의 뜻의 담겨 있는 바를 누가 우러러 인식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내외영(內外營)이라 하지 않고 외내영(外內營)이라 하고 영사(營司)라 하지 않고 위부(衛部)라 한 것은 모두 언외(言外)의 의의(意義)를 열어 보인 것입니다. 거의 나라 사람들이 영회(領會)할 수가 있었는데 불행히도 하늘이 수명을 빌려 주지 않아서 끝내 천재 일유(千載一有)의 커다란 주략(籌略)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없게 하였으니 매양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심간(心肝)이 찢어지는 듯하게 됩니다.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가로이 계실 적에 순순(諄諄)하게 하교하기를, ‘나의 이 조처는 부득이한 것이다. 지금 좌우(左右)에서 나를 가까이 호위하게 하는 것은 모두가 일시적인 방편에서 나온 것이니 후세에는 이것으로써 법을 삼을 수 없다.’ 하였습니니다. 연신

(筵臣)들이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말씀을 받들어 지금까지도 옥음(玉音)이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저 충질(忠質)을 손익(損益)하는 것은 각각 시의(時義)가 있고 모열(謨烈)을 현양하고 계승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대개 선조(先祖) 때에는 부득이한 정밀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부득이한 제도의 설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의리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제도는 변통을 하는 것이 합당하니 ‘일시적인 방편으로 한 것이니 법으로 삼을 수 없다.’는 하교를 바로 오늘에 있어 마땅히 우러러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3년동안 고치지 않는다는 의리으로써 우선 내년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통달하지 못한 논의입니다.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변혁하고 경장(更張)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정운(精蘊)을 발휘하고 이훈(彝訓)을 현양하여 제작(制作)하신 깊은 뜻과 후손에게 전하신 성덕(盛德)으로 하여금 해와 별처럼 나란히 계양되게 한다면 이것을 ‘잘 계승하고, 잘 전술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비록 당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좋을 것입니다. 신은 삼가 본영(本營)의 절목(節目)을 가지고 전곡(錢穀)과 포목(布木)을 구처(區處)하는 계획과 군교(軍校)와 이례(吏隸)를 귀속시키는 방도에 대해 반복해서 헤아린 나머지 대략 두서(頭緒)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다른 대신(大臣)과 등연(登筵)한 여러 재신(宰臣)들에게 하순한 뒤에 장용영(壯勇營)을 특별히 철폐(撤罷)할 것을 명하시고 이어서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주사(籌司)에서 회의하여 본영의 절목에 나아가 곧바로 개정을 단행하게 한다면 실로 선왕(先王)의 뜻을 밝히고 선왕의 아름다움을 천양하는 도리에 부합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에 우러러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대신과 여러 재신들은 각각 소견을 진달하라.” 하였다. 영부사 이병모(李秉模)가 말하기를, “이제 동료 재상이 주달한 바를 듣고 옛날을 추억하니 슬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리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제도는 변통을 하는 것이 합당하니 ‘일시적인 방편으로 한 것이니 법으로 삼을 수 없다.’는 하교는 바로 오늘날에 있어 마땅히 우러러 본받아야 할 바입니다. 신은 다른 의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좌의정 이시수(李時秀)는 말하기를, “수상(首相)의 부연하여 주달한 것은 비록 오늘에 있었으나 신 등이 깊이 생각하고 익히 의논한 것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날날이 하순을 하심에 있어 어찌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서용보(徐龍輔)는 말하기를, “대개 이 외내영(外內營)을 체치(制置)한 것은 미로한정(未老閑亭)의 편액(扁額)을 쓴 성의(聖意)를 살펴본다면 정밀한 뜻의 담겨 있는 바를 누가 우러러 본받지 않겠습니까? 수상이 주달한 바는 진실로 천명(闡明)하는 의리에서 나온 것이니 신은 여기에 다시 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개성 유수 김문순(金文淳), 상호군 이만수(李晩秀), 대호군 서유대(徐有大), 형조 판서 황승원(黃昇源), 광주 유수 이경일(李敬一), 호조 판서 이서구(李書九), 행 호군 남공철(南公轍)·이한풍(李漢豐)·신대겸(申大謙)이 모두 다른 말이 없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의 주달한 바가 이와 같고 또 자교(慈教)를 받았으니 아뢴 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장용영(壯勇營)의 일은 이제 연주(筵奏)를 듣고 옛날의 실시(設施)한 뜻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스스로 서러운 눈물이 얼굴을 가림을 금할 수 없다. 내가 비록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이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이제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고 식량을 풍족히 하는 것으로써 말을 하니, 현재 주상(主上)이 아직 나이 어리고 나라의 형세(形勢)가 외롭고 위태로운데 그것이 백성을 위해 폐단을 바로잡는 조처에 있어 내가 어찌 일이 예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여 한갓 난처해하고 신중히 함에만

있고 변통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또 주달하는 바를 들으니 선조(先朝)께서 ‘이것으로 법을 삼을 수 없다.’ 라는 것으로써 하교를 하여 연신(筵臣)이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많이 있다고 하니 더욱 어찌 그 사이에 이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전후(前後)를 통해서 볼 때 굳이 아껴서 지속시킬 필요가 없으며 대신의 주달한 바에 따라 거행하라.”

하였다.

○命罷壯勇營. 領議政沈煥之啓言: “惟我先大王, 以天縱聖智之姿, 政令施措, 動法前聖, 制作云爲, 自合天則. 至若壯營之創設, 厥有深意之攸寓, 不煩大農, 而財用自裕, 不擾平民, 而營制儼成. 及夫園寢遷奉之後, 作新大邑, 制置衛府, 以爲內外拱禦之資. 夫強榦之圖, 五營在矣, 固圉之術, 列闕備矣. 以我先大王, 動不踰矩之聖, 初元綸音, 惓惓於汰冗足食之策, 豈欲養不急之兵, 增不貲之費哉? 誠以精義苦心, 別有所在, 而規模措劃, 不可以不豫也. 觀於華城行宮, 未老閒亭之扁, 聖意所寓, 孰不仰認? 而不曰內外營, 而曰外內營, 不曰營司, 而曰衛部者, 皆所以開視言外之意義. 庶幾國人之領會, 而不幸天不假壽, 竟使千載一有之宏籌大略, 不得施焉, 每念及此, 不覺心肝摧裂. 記昔清燕之暇, 諄諄下教, 若曰: ‘予之此舉, 非得已也. 今左右摯御, 皆出一時權宜, 後世不可以此爲法.’ 筵臣拜稽承聆, 至于今玉音在耳. 夫忠質損益, 各有時義, 顯承謨烈, 圖非正道. 蓋先朝時, 則有不得已之精義, 故肆有不得已之制置. 然到今義隨時異, 制合通變, 則 ‘一時權宜不可爲法’ 之教, 正是今日之所當仰體. 或曰, ‘以三年無改之義, 姑待來年爲可,’ 此則未達之論也. 改之云者, 變革更張之謂也. 若夫發揮精蘊, 對揚彝訓, 使制作之徽旨, 垂裕之盛德, 竝揭日星, 是之謂善繼善述, 雖卽日行之可也. 臣謹將本營節目錢穀布木區處之策·軍校吏隸歸屬之方, 反覆高度, 略有頭緒. 更爲下詢他大臣及登筵諸宰後, 壯勇營持命撤罷, 仍令諸臣, 會議籌司, 就本營節目, 卽行釐正, 實有合於明先志·闡先美之道. 故敢此仰達矣.” 大王大妃教曰: “大臣諸宰, 各陳所見.” 領府事李秉模曰: “今聞僚相所奏, 追惟昔年, 愴感如新. 而義隨時異, 制合道變, ‘一時權宜, 不可爲法’ 之教, 政是今日之所當仰體者. 臣無容他議矣.” 左議政李時秀曰: “首相敷奏, 雖在今日, 與臣等審思熟講, 積有時月. 今於歷詢之下, 豈有他議乎.” 右議政徐龍輔曰: “蓋此外內營制置, 觀於未老閒亭題扁之聖意, 精義所在, 孰不仰認? 首相所奏, 宣出闡明之義, 臣於此無容更陳矣.” 開城留守金文淳·上護軍李晚秀·大護軍徐有大·刑曹判書黃昇源·廣州留守李敬一·戶曹判書李書九·行護軍南公轍·李漢豐·申大謙, 皆無異辭. 上曰: “卿等所奏如此, 又承慈教, 依爲之.” 大王大妃教曰: “壯勇營事, 今聞筵奏, 追念昔日設施之意, 自不禁愴涕之被面. 予雖不言, 今日廷臣, 孰不知之? 然今以汰冗足食爲言, 則目今主上幼沖, 國勢孤危, 其在爲民矯弊之舉, 予豈可以事在昔年, 徒有難慎, 不思所以變通之方乎? 況又聞所奏, 先朝以 ‘不可以此爲法’ 爲教, 筵臣多有承聆者云, 則尤豈有異議於其間哉? 由前由後, 不必靳持, 依大臣所奏舉行.”

<순조실록 4권, 순조 2년(1802) 1월 20일(임진)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장용영 철폐 별단과 외영의 군제 개정 별단

장용영 철폐 별단 【관원질(官員秩). 도제조 1원(員), 제조 1원, 사(使) 1원을 줄이고, 종사관 1원을 줄여 이조로 하여금 빈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하게 하고, 별장 2원, 파총(把總) 3원 선기장(善騎將) 2원은 줄이고, 초관(哨官) 14원은 이비(吏批) 병비(兵批)로 하여 차례 차례 수용(收用)하게 하고, 액외(額外)의 장용위(壯勇衛) 22원은 모두 액외(額

外)의 금군(禁軍) 별후사(別後司)에 소속시키고, 파총 1원, 배봉 별장(拜峯別將)은 겸하여 별장(別將)의 칭호까지 아울러 줄이고 별치 감독관(別置監牧官) 1원, 목장 범사 구검 거행 겸 파총(牧場凡事句檢舉行兼把摠) 1원, 박천 군수(博川郡守)는 겸하여 줄이고, 별아 병장(別牙兵將) 2원, 고성 첨사(固城僉使)·노량 별장(鷺梁別將)은 겸하여 줄인 뒤에 고성 첨사는 도로 병비(兵批)의 자리를 삼고 노량 별장을 도로 금위영(禁衛營)에 소속시키며, 자벽(自辟)한 임진 별장(臨津別將)은 도로 총융청(摠戎廳)에 소속시키고, 한강 별장(漢江別將) 1원은 도로 훈련 도감(訓練都監)에 소속시킨다. 장교질(將校秩). 감관(監官) 4원, 지곡관(知穀官) 11원 이상 지처(地處)가 있고 자력(資歷)이 있는 자는 수령(守令)으로 차송(差送)하며, 그 다음은 찰방(察訪)·감독관(監牧官), 그 다음은 변장(邊將), 혹은 각영(各營)의 교련관(教鍊官)은 원하는데 따라 구처(區處)하되 교련관 가운데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앞서 벼슬한 것을 통계(統計)하여 차례차례 천전(遷轉)시키며, 별부료(別付料) 2원은 변장(邊將)의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하며, 교련관 16원, 제본 사패장(除本仕牌將) 8원(員) 이상은 모두 훈국(訓局)에 이속(移屬)시켜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되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앞서 벼슬한 것을 총계(總計)하며, 변장(邊將)이 천전(遷轉)하여 다른 영(營)에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원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약방(藥房) 1원, 침의(鍼醫) 1원 이상은 삼영문(三營門)의 약방 중에서 희망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맡겼다가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며, 장용위(壯勇衛) 92인은 임시로 금려(禁旅)에 소속시켜 앞서 벼슬한 것을 통계하여 매번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마다 세 사람씩 천전시키며, 별무사(別武士) 33인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각영(各營)의 별무사로 이차(移差)하였다가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되 훈국(訓局)에 13인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양영(兩營)에 각각 9인씩하며, 마의 구료 패장(馬醫救療牌將)은 그대로 훈국에 소속시켜 의패장(醫牌將)으로 삼고, 궁시인(弓矢人)은 원하는 바에 따라 내궁방(內弓房)에 이속(移屬)시키고, 부료 무사(付料武士) 16인은 모두 훈련 도감에 이속(移屬)시킨다. 군병질(軍兵秩). 선기대(善騎隊) 2초(哨)는 마병(馬兵)에 환속(還屬)시켰다가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고 경군(京軍) 3초(哨)는 훈국에 이속(移屬)시켜 원군(原軍)이 결원이 있기를 기다려 차례차례 대신 메꾸어 서자적 패두(書字的牌頭)가 결원이 있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되, 그중에 금위영의 아병(牙兵) 70명은 도로 해당 영(營)에 소속시키고 좌사(左司)의 향군(鄉軍) 5초(哨)는 도로 수원부(水原府)에 소속시키고 **별좌사(別左司)의 향군 3초와 별우사(別右司)의 향군(鄉軍) 3초 이상 6초 중에 광주(廣州) 2초는 도로 수어영(守禦營)에 소속시키고, 용인(龍仁)·안산(安山)·시흥(始興)·과천(果川)에 있는 4초는 모두 마땅히 수어영에 도로 소속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네 고을의 군병들이 모두 수원(水原) 외영(外營)에 소속되어 있으니, 군제(軍制)를 개정할 동안만 임시로 수원부에 소속시키고**, 우사(右司) 향군 5초와 지평(砥平)·양근(楊根)·과주(坡州)·가평(加平) 3초는 도로 수어영에 소속시키고, 양주(楊州)·고양(高陽) 2초는 도로 본읍(本邑)에 소속시키고, 너자(牢子) 1백 18명, 순령수(巡令手) 1백 15명, 대기수(大旗手) 64명, 이상은 모두 훈련 도감에 소속시켜 결원이 있기를 기다려 대신 메꾸고, 기예를 잘하고 병서에 능통한 자를 뽑아 골라 무예 별감(武藝別監)의 장교(將校)의 승차(陞差)의 터전으로 삼아 서패(書牌)가 결원이 생기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며, 복마군(卜馬軍)은 그 명색에 따라 그대로 이속시키며 유뢰(溜牢) 중에 호위청(扈衛廳)의 군은 도로 본청(本廳)에 소속시키고, 취고수(吹鼓手) 85명은 도로 삼영(三營)에 도로 소속시키고, 겸하여 내취 당보수(內吹塘報手) 61명, 등룡군(燈籠軍) 59명, 장막군(帳幕軍) 52명, 이상은 훈련 도감에 이속시켜 서자적 패두가 결원이 생기기를 기

다려 승진시켜 채우며, 그중에 호위청의 군은 도로 본청에 소속시키고, 아병(牙兵) 57명은 도로 훈련 도감에 소속시키고, 원액(原額) 40명 이외에는 차례차례 결원이 있어도 보충하지 말고, 별장 취수(別將吹手) 40명, 삼사 취수(三司吹手) 60명, 선기장(善騎將) 표하군(標下軍), 18명, 사후군(伺候軍) 23명, 이상은 훈련 도감 표하군 및 초군(哨軍)에 이속시켜 서자적 패두가 결원이 있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며, 공장 아병(工匠牙兵) 23명은 각사(各司) 각영(各營)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치중(輜重) 복마군(卜馬軍) 40명은 각영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배봉 아병(拜峯牙兵) 2초(哨) 표하군 24명, 향취수(鄉吹手) 47명 이상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수어청에 도로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목자(牧子)로 삼고, 장별대(壯別隊) 1초는 도로 사복시(司僕寺)에 소속시켰다가 여러 인원들이 승진된 뒤에 별무사(別武士) 30인, 원역(員役) 29명, 이상은 목장(牧場)을 설치한 뒤에 해당 목장으로부터 편리한 방도에 따라 구처(區處)하고, 고성 아병(古城牙兵) 2초, 표하군 58명, 노량 아병(鷺梁牙兵) 1초 표하군 23명, 향취수(鄉吹手) 52명 이상은 모두 그대로 경기(京畿) 승호군(陞戶軍)에 배치하여 매 식년(式年)마다 20명씩 훈련 도감에 도로 소속시키되 각 군병을 구처할 동안 승호군은 우선 뽑아 올리지 않도록 한다.】

외영(外營)의 군제(軍制) 개정(改正) 별단(別單) 【장용 외사(壯勇外使)·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 1원은 유수 겸 내영(留守兼內營)과 정리소(整理所)가 이미 철폐되었으니 외사(外使)와 정리사(整理使)의 명칭은 모두 줄이고 수어 진무 관리사(守禦鎭撫管理使)의 준례에 따라 총리사(總理使)의 칭호로써 해조(該曹)로 하여금 계하(啓下)하게 하고, 친군위 별장 겸 외군 총제(親軍衛別將兼外軍總制) 1원은 위부(衛部)가 이미 사초(司哨)로 칭호되어 총제(總制)는 중군(中軍)으로써 개정하여 수사(水使)나 변장(邊將) 이상으로써 차의(差擬)하되 토포사(討捕使)는 종전대로 겸대(兼帶)하도록 하고, 종사관이 겸직한 관성장(管城將)은 줄이고 또한 중군(中軍)으로써 겸대하게 하여 병조로 하여금 계하(啓下)하도록 하고, 총제가 겸직한 친군위 별장은 줄이고 종사관 1원은 삼도(三都) 경력(經歷) 판관(判官)의 예에 따라 총리영 총사관(總理營從事官)으로 개칭하고, 위장(衛將) 5원은 전(前)·좌(左)·중(中)·우(右)·후(後) 오사(五司)의 파총(把摠)으로 개정하되 시임(時任)의 위장이 비록 당상관(堂上官)이라 하더라도 우선 그대로 두고 후일을 기다려 빈자리에 따라 선천(宣薦)·당하(堂下)의 이력(履歷)이 있는 무변(武弁)으로써 차출(差出)하되, 본부(本府)로부터 단망(單望)으로 계하(啓下)하고 변장(番將) 3원은 친군위 별장을 이미 줄였으니 변장이 마땅히 3열(三列)로 나누어 인솔해야 하되 군이 따로 중렬(中列)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중렬로써 좌(左)·우(右)의 대열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친군위는 별효사(別驍士)라 칭하고 변장 2원은 좌·우열장(左右列將)이라 개칭하여 본부(本府)나 오읍(五邑)에 사는 당상관 중에 이력이 있는 무변(武弁)으로써 본부(本府)에서 단망(單望)으로 계하(啓下)하되 1원은 줄이고 겸 위장(衛將) 5원은 5읍(五邑)의 수령(守令)이 겸임하고 사성 겸위장(四城兼衛將)은 별전(別前)·별좌(別左)·별우(別右)·별후(別後) 사사(四司)로 개칭하고, 겸 파총 협수 위장(把摠協守衛將)은 협수 겸파총(協守兼把摠)으로 개칭하고, 신평 위장(新豐衛將) 1원은 별중사 파총(別中司把摠)으로 개칭하고, 독성 위장(禿城衛將) 1원(員) 별장 겸(別將兼)은 겸총(兼摠)으로 개칭하고, 부장(部將) 67원은 모두 초관(哨官)으로써 개칭하고, 이밖에 장관(將官)과 군교(軍校)의 명호(名號)는 모두 예전대로 한다.】

○壯勇營撤罷別單. 【官員秩: 都提一員·提調一員·使一員減下, 從事官一員減下, 令吏曹待窠調用, 別將二員·把摠三員·善騎將二員減下, 哨官十四員, 令吏·兵批, 次次收用, 額外壯勇衛二十二員, 并屬額外禁軍別後司, 把摠一員·拜峯別將, 兼與別將之號竝爲減下, 日別置監牧

官一員·牧場凡事句檢舉行兼把摠一員·博川郡守兼減下，別牙兵將二員·古城僉使·鷺梁別將兼減下後，古城僉使還作兵批窠，鷺梁別將還屬禁衛營。自辟臨津別將還屬摠戎廳，漢江別將一員還屬訓練都監。將校秩：監官四員，知穀官十一員以上有地處，有資歷者，守令或兩南中軍差送。其次察訪·監牧官，其次邊將，或各營教鍊官，從願區處，而教鍊官久勤，統計前仕，次次遷轉。別付料二員，邊將待窠調用，教鍊官十六員·除本仕牌將八員以上，并移屬訓局，待窠陞實，而久勤則總計前仕。邊將遷轉，願屬他管者，依願施行。藥房一員·鍼醫一員以上，三營門樂房中，從所願權付，待窠陞實。壯勇衛九十二人，權屬禁旅，統計前仕，每都日三人遷轉。別武士三十三人，從自願移差各營別武士，待窠陞實，而訓局十三人·禁·御兩營各九人。馬醫救療牌將，仍屬訓局馬醫牌將。弓矢人從願，移屬內弓房，付料武士十六人，並移屬訓練都監。軍兵秩：善騎隊二哨，還屬馬兵，待窠陞實。京軍三哨，移屬訓局，待原軍有闕，次次填代。書字的牌頭，待闕陞實，而其中禁衛營牙兵七十名，還屬該營，左司鄉軍五哨，還屬水原府，別左司鄉軍三哨·別右司鄉軍三哨以上六哨中，廣州二哨，還屬守禦營，龍仁·安山·始與·果川所在四哨，並當還屬守禦營，而今則四邑軍兵，皆屬水原外營，軍制釐正間，權屬水原府。右司鄉軍五哨，砥平·楊根·坡州·加平三哨，還屬守禦營，楊州·高陽二哨，還屬本邑。牢子一百十八名，巡令手一百十五名，大旗手六十四名，以上并屬訓練都監，待闕填代，抄擇其善技藝·通兵書者，以爲武藝別監將校陞差之地，書牌待闕陞實。卜馬軍，隨其名色，仍爲移屬，巡牢中扈衛廳軍，還屬本廳，吹鼓手八十五名，還屬三營。兼內吹塘報手六十一名，燈籠軍五十九名，帳幕軍五十二名，以上移屬訓練都監，書字的牌頭待闕陞實。其中扈衛廳軍，還屬本廳，牙兵五十七名，還屬訓練都監，原額四十名外，次次有闕勿補。別將吹手四十名，三司吹手六十名，善騎將標下軍十八名，伺候軍二十三名，以上移屬訓練都監標下軍及哨軍，書字的牌頭待闕陞實。工匠牙兵二十三名，分屬各司各營，輻重卜馬軍四十名，分屬各營，拜峯牙兵二哨標下軍二十四名，鄉吹手四十七名，以上從自願還屬守禦廳，餘作牧子。壯別隊一哨，還屬司僕寺，諸員攔後，別武士三十人，員役二十九名，以上設牧後，自該牧從便區處。古城牙兵二哨標下軍五十八名，鷺梁牙兵一哨標下軍二十三名，鄉吹手五十二名，以上並仍置京畿陞戶，每式年，二十名還屬訓練都監，而各軍兵區處間，陞戶姑勿抄上。】外營軍制釐正別單。【壯勇外使·行宮整理使一員，留守兼內營與整理所，既已撤罷，則外使與整理使之名，並減下，依守禦鎮撫管理使例，以摠理使稱號，令該曹啓下，親軍衛別將兼外軍摠制一員，衛部既稱司哨，摠制改以中軍，以水使·邊禦以上差擬，而討捕使依前兼帶，從事官所帶管城將減下，亦以中軍兼帶，令兵曹啓下，而摠制兼帶親軍衛別將減下。從事官一員，依三都經歷判官例，改稱摠理營從事官，衛將五員，改以前·左·中·右·後五司把摠，而時任衛將，雖是堂上，姑爲仍存，待後隨窠，以宣薦·堂下有履歷武弁差出，而自本府單望啓下，番將三員，親軍衛別將既已減下，則番將當分領三列，而不必別設中列，以中列分屬於左·右列，親軍衛改稱別驍士，番將二員改稱左·右列將，以本府及五邑所居堂上有履歷武弁，自本府單望啓下，而一員減下。兼衛將五員，五邑守令兼，四城兼衛將改以別前·別左·別右·別後四司，兼把摠協守衛將改以協守兼把摠，新豐衛將一員改以別中司把摠，禿城衛將一員別將兼改以兼摠，部將六十七員，並改以哨官，此外將官·軍校名號，皆仍舊。】

<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2월 7일(무신) 4번째기사>

## 정치/군사

해서·삼남·경기·수원의 육군과 호남 수군의 조련을 정지하다

해서(海西)·삼남(三南)·경기(京畿)·수원(水原)의 육군(陸軍)의 조련(操鍊)과 호남(湖南)

의 수군(水軍)의 조련을 정지하였으니 수원의 군제가 변통되고 호남 연안이 재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停海西·三南·京畿·水原陸操·湖南水操，以水原軍制變通，而湖沿被災也。

<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7월 12일(경진)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비국에서 장용영의 첩과·호조 등의 노비공 급대에 관해 아뢰다

비국에서 말하기를, “장용영(壯勇營)을 첩과한 뒤에 돈·곡식·무명·베, 둔토(屯土)·군기(軍器)·공해(公廩)를 구처하여 이속(移屬)하고 군병(軍兵)을 접제(接濟)하는 것과 호조·내수사 각 아문(衙門)의 노비공(奴婢貢) 급대(給代)를 조처하는 방도를 각각 별단(別單)을 갖추어서 올립니다.”

하였다. 【돈·곡식·무명·베의 구처 별단 각항 쌀의 합계 2만 3백 62석은 선혜청에 소속시키고, 각항 쌀의 합계 6천 8백 23석은 호조에 소속시킨다. ○각항 콩의 합계 2천 1백 66석은 선혜청에 소속시키고, 각항 콩의 합계 2천 6백 92석은 호조에 소속시킨다. ○각항 무명의 합계 2백 15동은 선혜청에 소속시키고, 각항 무명의 합계 2백 40동은 호조에 소속시키며, 각항 무명의 합계 4동은 병조에 소속시키고, 각항 목 합계 24동은 훈국(訓局)에 소속시키며, 각항 무명의 합계 22동은 금위영에 소속시키고, 무명 8동은 어영청에 소속시키며, 무명 20동은 영남에 소속시킨다. ○각항 베의 합계 24동은 호조에 소속시키고, 각항 베의 합계 15동은 병조에 소속시킨다. ○각항 돈의 합계 4천 6백 냥은 선혜청에 소속시키고, 각항 돈 합계 2천 1백 55냥은 호조에 소속시키며, 각항 돈의 합계 4백 53냥은 금위영에 소속시키고, 각항 전 합계 3백 13냥은 어영청에 소속시킨다. 돈 44냥은 군기시에 소속시키고, 각항 돈의 합계 2천 8백 88냥은 병조에 소속시킨다. 각항 돈의 합계 1천 8백냥은 경기에 소속시키고, 각항 돈의 합계 1만 4천 6백 7냥은 호서에 소속시키고, 각항 돈의 합계 6만 5천 9백 38냥은 관서에 소속시키고, 각항 돈의 합계 1만 6천 2백 13냥은 호남에 소속시키고, 각항 돈의 합계 7천 6백 70냥은 영남에 소속시키고, 각항 돈 합계 9천 6백 79냥은 호서에 소속시키고, 돈 3천 냥은 관동에 소속시키고, 돈 1천 냥은 관북에 소속시키고, 돈 9천 냥은 광주(廣州)에 소속시킨다. ○별고에서 관할하는 것 및 향색(餉色) 환곡(還穀)의 그대로 나누어 주었다가 모곡(耗穀)을 취하는 질(秩). 각항 벼의 합계 6만 3천 6백 75석, 좁쌀 1백 11석은 경기에 소속시킨다. ○각항 좁쌀의 합계 1만 4천 석은 관서에 소속시키고, 좁쌀 9백 석은 해서에 소속시키고, 쌀과 좁쌀 합계 1천 1백 94석은 호서에 소속시키고, 각항 쌀의 합계 2백 86석은 호남에 소속시키고, 쌀 4천 석은 영남에 소속시키고, 각항 쌀의 합계 3천 5백 석은 관동에 소속시킨다. ○배봉(拜峯)의 쌀 2천 7백 석, 벼 7천 석, 노량(鰲梁) 환곡미 1천 20석, 고성(古城)의 환곡미 1천 석, 벼 3천 2백 28석은 각각 해당 진(鎭)에 소속시킨다. ○둔토(屯土)를 구처하는 질(秩), 부안·고부·고성·김해·창원·횡성·홍주(洪州)의 둔토는 광주(廣州)에 소속시키고, 어지(於支)의 둔토는 어영청에 소속시키고, 진위·음죽·연천·시흥의 둔토는 군역청에 소속시키고, 봉산·황주·용진·안주·박천·장흥·정주(定州)·진위(振威)·고양·김포·지평(砥平)·양근(陽根)·가평의 둔토와 전곶(箭串)의 내전세(萊田稅), 흥덕동(興德洞)의 포전세(圃田稅), 도저동(桃渚洞)의 포전세, 연곡사(鰲谷寺) 백지(白紙)는 내수사에 소속시키고, 수원·안산·시흥·용인의 둔토는 수원부에 소속시키고, 장연(長淵)·광주(廣州)·가산(嘉山)·고성·영유(永柔)·공주·이천(伊川)·용강(龍岡)·음죽·과주의 둔토는 군역청에 소속시키고, 과천의 둔토는 노량진(鰲梁鎭)에 소속시키고, 배



봉의 둔토는 해당 목관(牧官)에 소속시킨다. ○외별고(外別庫)에서 관할하는 유천(柳川)·평산(平山)·신천(信川)의 둔세(屯稅), 장수사(長水寺) 세와 수성고(修城庫)에서 관할하는 대유(大有)의 둔토, 도지(賭地)의 조(租)와 울천고(蔚千庫)에서 관할하는 화소 내세(火巢內稅)·연산 둔세(連山屯稅)·평신 둔세곡(平薪屯稅穀)과 아병(牙兵)의 수포(收布) 7백 동 **이상은 본래 오영(五營)에서 관할하던 것이나 그대로 수원부에 소속시킨다.**】

○備局言：“壯勇營撤罷後，錢·穀·木·布·屯土·軍器·公廩，區處移屬，軍兵接濟·戶曹·內司各衙門奴貢給代措處之方，各具別單以入。”【錢·穀·木·布區處別單，各項米合二萬三百六十三石，屬之惠廳，各項米合六千八百二十三石，屬之戶曹。各項太合二千一百六十六石，屬之惠廳，各項太合二千六百九十二石，屬之戶曹。各項木合二百十五同，屬之惠廳，各項木合二百四十同，屬之戶曹，各項木合四同，屬之兵曹，各項木合二十四同，屬之訓局。各項木合二十二同，屬之禁營，木八同，屬之御營，木二十同，屬之嶺南。各項布合二十四同，屬之戶曹，各項布合十五同，屬之兵曹。各項錢合四千六百兩，屬之惠廳，各項錢合二千一百五十五兩，屬之戶曹，各項錢合四百五十三兩，屬之禁營，各項錢合三百十三兩，屬之御營，錢四十四兩，屬之軍器寺，各項錢合二千八百八十八兩，屬之兵曹，各項錢合一千八百兩，屬之京畿，各項錢合一萬四千六百七兩，屬之海西，各項錢合六萬五千九百三十八兩，屬之關西，各項錢合一萬六千二百十三兩，屬之湖南，各項錢合七千六百七十兩，屬之嶺南，各項錢合九千六百七十九兩，屬之湖西，錢三千兩，屬之關東，錢一千兩，屬之關北，錢九千兩，屬之廣州。別庫所管及餉色還穀仍分，取耗秩，各項租合六萬三千六百十五石，小米一百一十一石，屬之京畿。各項小米合一萬四千石，屬之關西，小米九百石，屬之海西，大·小米合一千一百九十四石，屬之湖西，各項米合二百八十六石，屬之湖南，米四千石，屬之嶺南，各項米合三千五百石，屬之關東。拜峯米二千七百石·租二千石，鷺梁還米一千二十石，古城還米一千石·租三千二百二十八石，屬之各該鎮。屯土區處秩，扶安屯·古阜屯·固城屯·金海屯·昌原屯·橫城屯·洪州屯屬之廣州，於支屯屬之御營，振威屯·陰竹屯·漣川屯·始興屯屬之均廳。鳳山屯·黃州屯·甕津屯·安州屯·傳川屯·長興屯·定州屯·振威屯·高陽屯·金浦屯·砥平屯·楊根屯·加平屯·箭串菜田稅·興德洞圃田稅·桃渚洞圃田稅·鷺谷寺白紙，屬之內司。水原屯·安山屯·始興屯·龍仁屯，屬之水原府。長淵屯·廣州屯·嘉山屯·古城屯·永柔屯·公州屯·伊川屯·龍岡屯·陰竹屯·坡州屯屬之均廳。果川屯屬之鷺梁鎮，拜峯屯屬之該牧官。外別庫所管柳川·平山·信川屯稅，長水寺稅修城庫所管大有屯，賭地租，莞千庫所管火巢內稅，連山屯稅，平薪屯稅穀，牙兵收布七百同，以上本是五營所管，仍屬之水原府。】

<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9월 12일(경진) 3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 유수 김시근이 수원부의 사의를 상소하다

수원 유수 김시근(金耆根)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본부의 사의(事宜)에 대해 성상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병자년 무렵에 본영(本營)의 공화(公貨) 1만 8천 냥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꾸어주고 해마다 10분의 1의 이자를 받아 책응(策應)·군기(軍器) 두 창고에 수용하는 것이 1천 8백여 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차 30년이 되어가므로 당초 돈을 받은 자가 모두 망하였거나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각 창고가 빈 장부만 가지고 있어서 배정해 쓸 계책이 없으므로 각각 그들의 일가붙이에게 나누어 징수하고 있는데, 화성 백성의 뼈를 깎는 폐막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신은 이 본전(本錢)을 모두 탕감하고 각 창고의 수용은 영남·호남에 있

는 비국에서 관리하는 곡물 이자 가운데 6백 석을 매년 떼어내어 돈으로 바꾸어 대신 채운다면, 실로 양쪽이 다 편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1. 본부에서 관리하는 곡물에 대한 해마다 받아들이는 이자의 수량이 6천 1백 48석 영으로서 양남(兩南)·양서(兩西)에 분산되어 있는데, 능(陵)·원(園)·전(殿)의 제수(祭需)와 장사(將士)들에게 지급하는 허다한 용도가 오로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매년 본부에서 사람을 보내어 받아 오는데, 당초에 운임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어다 바치는 기한이 너무 늦어서 원래의 수량이 줄어든 때도 있습니다. 신은 그 도에서 상정가(詳定價)로 매년 4월 안에 보고서를 갖추어 곧바로 본부에 수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1. 본부의 각종 군총(軍摠)은 본부의 중군(中軍)이 전적으로 관장하여 거행하는데, 폐단이 한두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신은 이제부터는 타도(他道) 타읍(他邑)의 사례에 의하여 관관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면, 백성이 양쪽에서 받는 곤란의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1. 광주(廣州)·송도(松都)·강화(江華) 삼도(三都)에는 모두 봄·가을로 보이는 도시(都試)가 있어서 무사와 열교(列校)가 모두 응시하는데, 본부에는 별효사(別驍士) 2백 명이 보는 춘추의 도시만 있고, 그 밖의 무사·열교는 응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은, 매년 별효사 도시 때에 한결같이 삼도의 사례에 의하여 무사·열교가 똑같이 응시하도록 하고 역시 수석을 차지한 한 명을 뽑아서 권장하는 방법을 보이는 것이 매우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무릇 이 네 가지는 모두 급하고 긴급하여 변통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신이 감히 마음대로 할 바가 아닙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여쭙어서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묘당으로 하여금 여쭙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水原留守金著根疏略曰：臣於本府事宜，不得不仰塵聽聽焉。其一，丙子年間，本營公貨一萬八千兩，散貸府民，歲取什一之利，需用於策應·軍器兩庫者，爲一千八百餘兩。而今將三十年，當初受錢者，無不蕩敗物故。於是乎各庫徒擁虛簿，排用無計，分徵於各其族戚，華民切骨之瘼，無過於此。臣謂此本錢，一并蕩滅，各庫需用，以嶺湖所在備局旬管穀耗條中，六百石每年劃下，作錢充代，則實爲兩便矣。其一，本府旬管穀，年例取耗之數，爲六千一百四十八石零，而分在兩南兩西陵園殿享需及將士支放許多公用，專係於此。而每年自本府，送人推來，馱價初不磨鍊，故輸納之限太寬，以至元數或減。臣謂自該道，以詳定價，每年四月內，具陳省直爲輸納於本府爲宜矣。其一，本府各樣軍摠，本府中軍，專管舉行，而爲(弊) [弊] 之端，不止一二。臣謂自今依他道他邑例，令判官主管，則民無兩下受困之患矣。其一，廣州·松都·江華三都，皆有春秋都試武，士與列校并赴，而本府則只有別驍士二百人，春秋都試，其他武士·列校，不得與赴。臣謂每年別驍士都試時，一依三都之例，許令武士·列校，一體赴試，亦取居首一人，以示勸獎之方甚便矣。凡此四條，俱係急切，不得不變通之事，而有非臣所敢擅便。伏乞令廟堂稟處。批曰：“疏辭令廟堂稟處。”

<순조실록 23권, 순조 21년 2월 24일(을사)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어영 대장 이요헌이 군제의 정비에 대해 아뢰다

어영 대장 이요헌(李堯憲)이 아뢰기를, “일찍이 선조(先朝) 갑인년에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에 대한 물력(物力)을 각처에 대하(貸下)하고 도로 보고하게 하였을 때 본청에서는 상번(上番)하는 5초(哨)의 향군(鄉軍) 가운데 초마다 각각 27명을 제외한 도합 1백 35명은 상번을 줄이고 그 신포(身布) 및 자장(資裝)·보전(保錢)을 거둬으로써 한 해에 얼마씩 나

누어 헤아려 견감하는 것으로 삼았는데, 이제 이미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11월부터 시작 해서 번을 회복하여 징립(徵立)해야 마땅하겠지만, 향군의 번상(番上)이 가장 백성과 고을의 고질적인 폐막(弊瘼)이 되고 있으니, 비록 약간 명은 번을 줄인다 하더라도 폐단을 더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옛날에 징상(徵上)하던 것을 회복시킨다면 15년 동안이나 제번(除番)에 편안하게 여겼던 나머지 그 폐단이 되는 바가 새로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또 군액(軍額)으로 말하건대, 제번한 후 그 사이에 올라왔던 자들은 명색이 비록 5초이지만 4초의 군사에 지나지 않았고, 그 가운데 만약 병고(病故) 등의 잡탈(雜頓)이 있었으면, 각처의 입직(入直)과 행진(行陣)은 매번 대오(隊伍)가 갖추어지지 못한 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의 뜻은, 지금 제번한 자들은 전에 했던 그대로 제번하고, 지금의 향군 5초의 액수(額數)를 합쳐서 4초를 만들고, 서울에서 용감하고 건장한 사람을 모집하여 따로 1초를 만들어 5초의 제도를 갖추게 한다면, 백성과 고을에 있어서는 번을 회복하여 폐단이 늘어나는 탄식이 없을 것이고, 군제(軍制)에 있어서는 대오가 갖추어지지 못하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며, 혹 전체의 액수가 정번(停番)할 때를 당할 경우 1초의 군사를 항상 도성에 있게 한다면, 여러 가지 배번(排番)하는 도리가 거의 소홀하지 않아서 절제하고 단속하는 방도가 향군보다 나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 서울의 표하(標下)의 제색군(諸色軍)은 옛날부터 액수가 적어서 매번 부족함을 근심하였는데, 50명을 한정해서 더 뽑고, 그 제번하고 거둔 포(布)로 새로 모집한 1초와 표하 50명의 요포(料布)를 건주어 헤아린다면, 접제(接濟)할 수용(需用)을 넉넉하게 분배(分排)할 수 있고, 또한 잉여도 있을 것이며, 5초의 제도에 손상됨이 없고 표하는 액수를 늘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니, 양쪽을 다 편하게 하는 방도에 적합할 듯합니다. 청컨대 대신과 장신들에게 순문하여 조처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두루 순문하자 모두 매우 편리하다고 말하니, 그대로 따랐다.

○御營大將李堯憲啓言：“曾於先朝甲寅，以華城城役物力之各處貸下還報次，本廳五哨鄉軍上番中，每哨各除二十七名，合一百三十五名減番，收其身布及資裝保錢，以爲排年計減者，今已畢報。自今十一月爲始，當爲復番徵立，而鄉軍番上，最是民邑之痼瘼，雖若干名之減番，除弊不些。今若復舊徵上，則十五年安於除番之餘，其所爲弊，無異新創。又以軍額言之，除番後，其間上來者，名雖五哨，以實數論之，不過四哨之軍，其中如有病故等雜頓，則各處入直及行陣，每有隊伍不備之弊。臣意，則今此除番者，仍令依前除番，以今鄉軍五哨之額，合作四哨，自京新募勇健，別作中一哨，以備五哨之制，則在民邑，無復番增弊之歎，在軍制，可免隊伍之不備，而或值全數停番之時，一哨之軍，恒在都下，諸般排番之道，庶不踈虞，節制團束之方，有勝鄉軍。且京標下諸色軍，自來數少，每患不足，限五十名加出，而以其除番收布，較量其新募一哨及標下五十名料布，則接濟之需，優可分排，亦有剩餘矣，於五哨之制無損，而標下有增額之效，恐合兩便之道。請詢大臣及諸將臣處之。” 上歷詢之，皆言甚便，從之。

<순조실록 11권, 순조 8년(1808) 8월 6일(기해)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의정부에서 수원 군영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수원 유수(水原留守) 남병길(南秉吉)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 군영(軍營) 지출의 수용(需用)은 본전을 두고 이자를 뜯어쓰기 위하여 돈 1만 냥(兩)으로 경상도(慶尙道)에서 곡식을 사서는 갑자 외탕곡(甲子外宕穀)이라는 명목으로 전량을 나눠주고 이자를 받아쓰므로 납부 기한을 미루어 주거나 탕감시켜 주는 대상 속에 넣지 않는다면 매년 이자분이 1,000냥이나 되기 때문에 경비 보충의 영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

다.’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변동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는 하나 삼남(三南)은 몇해 전 이정(釐整)할 때 곡식 총량을 더 늘리거나 더 줄일 수 없다는 규정을 이미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 황해도(黃海道)에서 곡식을 사되 곡식의 명칭, 섬수 [石數], 전량을 나눠주고 이자를 받아쓰는 것, 정봉(停捧) 및 탕감(蕩減)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등의 절차를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하였다.

議政府啓: “即見水原留守南秉吉狀啓, 則以爲: ‘本營支放所需立本取殖次錢一萬兩, 作穀於嶺南, 名以甲子外帑穀, 盡分取耗, 勿入停蕩, 則每歲耗條一千兩, 可爲永久充補之方’ 云矣. 此不可不變通者, 而三南則年前釐整時穀摠無得加減事, 已爲著式, 請作穀於海西, 穀名石數, 盡分取耗, 勿入停蕩等節, 竝依施何如?” 允之.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2월 21일(임진) 3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의 정초군과 광주의 별파진 군사, 양주의 속오군 가운데 일부를 금위영에 넘겨주다

또 아뢰기를, “도순무사(都巡撫使) 일행이 장차 군사를 출정시킬 것인데, 경성(京城)의 계엄을 더욱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원(水原)의 정초군(精抄軍) 500명(名), 광주(廣州)의 별파진(別破陣) 군사 200명, 양주(楊州)의 속오군(束伍軍) 100명을 아울러 징발하여 금위영(禁衛營)에 넘겨주고 해영(該營) 장신(將臣)에게 통솔하여 질제하도록 하고, 군량은 각자 그 영읍(營邑)에서 전적으로 맡아 거행하고, 공곡(公穀)은 회감(會減)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하였다.

又啓: “都巡撫使行將出師, 京城戒嚴, 尤不可疎虞. 水原精抄軍五百名·廣州別破陣二百名·楊州束伍軍一百名, 竝徵付禁衛營, 令該營將臣統領節制. 軍糧, 自各其營邑, 專當舉行, 公穀會減, 何如?” 允之.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9월 9일(을축) 9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 정초군 500명을 양화진으로 가게 하다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 정초군(精抄軍) 500명(名)을 징발하여 금위영(禁衛營)에 주도록 이미 계품(啓稟)하여 통지하였습니다. 듣건대 총융진(總戎陣)의 군사가 많지 않다고 하니, 바라건대 속히 양화진(楊花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又啓: “水原精抄軍五百名, 徵付禁衛營事, 已有啓稟知委. 而聞總戎陣, 軍數無多云. 請使之即速往赴於楊花津.” 允之.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9월 15일(신미) 5번째기사>

### 정치/군사

야조를 할 때 모든 일은 수원 유수가 거행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야조(夜操)를 할 때 일체 모든 일은 수원 유수(水原留守)가 정식(定式)대로 거행하고, 정초군(精抄軍)을 조용(調用)하여 모두 야조에 투입하고 야조가 끝난 다음에 전처럼 환위(環衛)하게 하라. 참관할 때의 복장은 갑옷과 투구 차림을 하도록 하며, 참관하고 난 뒤에는 다시 군복을 입도록 하라. 동장대(東將臺)에서 행궁(行宮)으로 돌아올 때에는 훈

런 도감(訓練都監)과 금위영(禁衛營)의 두 장수가 각각 보군 1초(哨)씩을 거느리고 선상(先廂)과 후상(後廂)이 되도록 하라.” 하였다.

教曰：“夜操時一應諸事，水原留守，依定式舉行。精抄軍調用，並付夜操，事畢後，如前環衛參現，服色甲冑爲之，參現後，還著軍服。自東將臺，還詣行宮時，訓·禁兩將，各率步軍一哨，爲先後廂。”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3월 14일(임술) 7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부에 새로 정군의 유지비용을 외탕고의 것을 분배하여 쓰도록 하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재원(李載元)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부(本府)의 마병(馬兵)과 보병(步兵)이 각각 소속되어 있는 고을에 있기 때문에 동원할 때 기회를 놓치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본부의 백성들로 200명(名)을 뽑고 독성(禿城)에서 또 50명을 뽑아 새로 정군(正軍)을 만들어 중요한 지대를 호위하게 하고, 그들에게 공급하는 방도는 대원위(大院位)께서 특별히 내린 돈 4만 냥(兩)과 본영(本營)의 외탕고(外帑庫)에 봉부동(封不動)한 돈 1만 2,000냥을 분배하여 쓰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특별히 나누어 준 것을 받았으니, 외탕고에 봉부동한 돈도 분배하여 쓰도록 허락하여 기필코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初八日。三軍府啓：“卽見水原留守李載元狀啓，則‘本府馬步軍各在屬邑，徵調未失時機。以府下居民抄二百名，禿城亦抄五十名，新作正軍，拱護重地。而接濟之方，以大院位特下錢四萬兩，本營外帑庫封不動錢一萬二千兩，排用’爲辭矣。旣蒙有特劃外帑封椿，許令排用，期有實效何如?” 允之。

<고종실록 6권, 고종 6년 12월 8일(을사) 1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 유수 신석희가 풍도와 배리도에 이양선이 나타났음을 보고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신석희(申錫禧)가, ‘이달 3일 유시(酉時) 쯤에 이양선(異樣船) 5척이 풍도(楓島)의 뒷바다 북쪽 남양(南陽) 경계에 정박하였습니다. 특별히 감시하고 계속 치보(馳報)하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또, ‘5일 신시(申時) 쯤에 이양선 4척이 남쪽 바다 배리도(排李島) 안에 와서 섰습니다. 이 섬은 풍도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시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따로 영리한 장교를 선정하여 두 곳에 나누어 보내 자세히 감시하고 계속 상세히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水原留守申錫禧以“今初三日酉時量，異樣船五隻，碇留於楓島後洋北南陽界矣。各別瞭望陸續馳報”啓。又以“初五日申時量，異樣船四隻，來立於南洋排李島內。本島與楓島相距絕遠，瞭望各異。故別定伶俐將校，分送兩處，詳細探察，鱗次詳報”啓。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4월 6일(을축) 5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유수의 장계에 따라 화량진을 영흥도에 옮겨 강화 어구를 지키게 하다

화량진(花梁鎭)을 영흥도(靈興島)에 옮겨 강화(江華)의 어구를 지키라고 명하였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신석희(申錫禧)가 장계(狀啓)로 청하였기 때문이다.

命花梁鎭移住靈興島，以捍沁都隘口。從水原留守申錫禧狀請也。

<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5월 14일(정유) 4번째기사>

#### 정치/군사

수원유수 김병지가 일본 선박이 수원의 고온포에 정박한 일에 대해 보고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병지(金炳地)가 아뢰기를, “이달 11일에 이양선(異樣船) 한 척이 고온포(古溫浦) 앞바다에 와서 본부(本府)의 판관(判官)을 시켜 달려가서 사유를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온포(古溫浦)의 척후장교 이두현(李斗鉉)과 서리(胥吏) 홍재남(洪在 南)의 급보에 보니, ‘이달 11일 해질녘에 그들의 종선(從船) 1척이 고온포에 와서 정박하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 배인가를 물었더니 일본국 사람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동래 통사(東萊通事) 한 명이 해당 부(府)에서 발생한 뱃길을 알려주는 공문을 내보이면서 그들 13명과 함께 일제히 물에 올라 이 곳 지명을 어느 고을 소속, 인구나 호수는 얼마인가, 경성(京城) 및 수원(水原)과의 이수(里數)는 몇 리인가를 묻고, 또 서울과 남양(南陽) 경계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 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귀국과 맺은 조약(條約)이 있으므로 개항지의 수심을 재러 왔다고 말하면서 내일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배를 인솔하여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다시 그들 배로 돌아가 타고서 범선 두 척이 정박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래 통사(東萊通事)의 성명은 박기중(朴琪淙)이며 공사(公事)의 수원(隨員) 5명 가운데서 2명의 성명은 외무(外務) 9등 소속의 스미나가 다쓰야스 [住永辰妥] 와 통변(通辯) 다케다 쿠니타로 [武田邦太郎] 라고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水原留守金炳地以“今月十一日，異樣船一隻，來碇于古溫浦前洋，使本府判官，馳進問情。而即接古溫浦瞭望將校李斗鉉書吏洪在南馳告內，‘今月十一日黃昏，彼從船一隻，來泊于本浦，故問何處船隻，則答云‘日本’國人。而其中東萊通事一人，出示該府指路公文，與彼人十三名，一齊下陸，問此處地名及何邑所屬，人口戶數，與去京城及水原里數爲幾許里。又問京城及南陽地界，向何去了云。而又稱前有貴國約條，故開港測水次來到，而懇請明日指路。故方欲將船指路計料，彼人還乘其船，旋入于二帆船留碇處。而東萊府通事姓名朴琪淙，彼公事隨員五人中二人姓名，外務九等屬住永辰妥，通辯武田邦太郎。’云。” 啓。

<고종실록 14권, 고종 14년 10월 13일(갑오)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일본 선박이 고온포에 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원 유수가 보고하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김병지(金炳地)가, ‘이달 14일 유시(酉時) 쯤에 일본 배의 종선(從船) 2척이 삼동 포구(三洞浦口)로부터 고온포(古溫浦)에 와서 정박하였는데 「우리는 풍랑 때문에 큰 배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 오늘밤 이곳에서 하루 묵으려 한다. [我等爲風波 不得歸船 故今夜此所願一宿]」 라는 열일곱 글자를 써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정하여 거기서 쉬게 하고 저녁을 공급해 주었는데 사람 수는 21명이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水原留守金炳地以“今月十四日酉時量，日艦從船二隻，自三洞浦口，來泊于古溫浦，書示以‘我等爲風波，不得歸船，故今夜此所願一宿。’十七字。故定給一處所，仍許止歇，供給夕飯，而人數爲二十一名” 啓。

<고종실록 14권, 고종 14년 10월 16일(정유)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일본 선함이 직산과 수원 연해의 수심을 측량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조인희(趙寅熙)가 일본 선함(船艦) 2척이 17일 미시(未時)에 영종진(永宗鎭) 앞바다에 정박하였다고 아뢰었다. 【“대리공사(代理公使)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가 타고 온 화륜선 다카오 마루[高雄丸]는 윤 3월 9일 부산(釜山)을 떠나 봉상함(鳳翔艦)의 호위 하에 서는 곳마다 조사하면서 전라도(全羅道), 충청도(忠淸道) 연해의 바다 수심을 측량하였으며, 23일 오시(午時) 경에 홍주(洪州)의 내도(內島) 앞바다에 정박하고 **직산(稷山), 수원(水原) 등 연해의 수심을 측량하였습니다. 15일 해진삼웅(海津三雄) 등 6명의 통사(通事)와 1명의 장수가 육로를 따라 수원(水原)을 지나 서울에 도착하자 관찰관(辦察官)이 조약에 없다는 이유로 저지하면서 쉬어 목도록 하였다.** 일본인 해진(海津) 등이 예조(禮曹)에 바치는 하나부사 요시타다의 편지 1봉(封)을 먼저 전달하여 바치고자 청하였는데 그 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회할 것은 개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관이 이미 강수관(講修官)을 만나서 인천(仁川)과 원산(元山) 두 곳을 정하였는데, 해당 관리의 말에 의하면 인천 개항에 대해서는 온 나라가 곤란하게 여기므로 다시 다른 곳을 선택하기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해마다 측량선을 보내어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기(京畿) 세 도의 해안을 탐색하였으나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천의 제물포(濟物浦)를 지정하였으나 문득 서울과 가까운 지대라고 해서 거절하였습니다. 무릇 서울 가까이에 개항하면 뒷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왕래하게 될 것을 꺼려서입니까? 그러나 두 나라가 이미 조약(條約)을 맺고 친목하여 그 정이 한집안과 같기 때문에 서울 가까이에 개항하면 정의가 잘 관철되고 사무가 쉽게 처리될 것이니 이것은 두 나라가 더욱 희망하는 바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모여들면 시내가 피폐해지는 것을 꺼려서입니까? 그러나 서로 교역하는 본뜻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사람이 모여들고 물건이 많으므로 근처에서 개항하면 모든 재화가 유통되고 이익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백성들이 부유해질 것이니 어찌 피폐해질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뒷날 불행히 흉년이라도 만나면 배로 쌀을 실어다 구휼하여 살 수 있도록 할 것인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혹시 무릇 지대가 요충지여서 변방의 방어책으로 보아 안 된다는 것입니까? 개항한 지대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반드시 무력을 갖추두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고 내부의 변란을 막을 수 있으니 통상은 안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배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할 염려도 없게 될 것이니 변경 방어는 강화되고 백성들과 물건은 날로 번성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으므로 인천을 개항하는 것은 귀국에게 유리하고 손실이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귀 정부는 허락하지 않고 다만 강수관과 만나서 의논하게 하니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대체로 강수관을 둔 것은 작은 절목(節目)을 토의하기 위한 것인데 대강(大綱)이 서지 않았으니 장차 무엇을 토의할 수 있겠습니까? 본 관은 장차 조규(條規)에 근거하여 내일 함하(閣下)와 함께 직접 의논하여 두 곳을 개항하는 문제를 강정(講定)하려 합니다. 청컨대 날짜를 정하고 그 장소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회합니다.】

京畿監司趙寅熙以“日本船艦二隻，十七日未時，留碇于永宗鎭前洋。”啓。【代理公使花房義質所騎火輪船高雄丸，閏三月九日發釜山，鳳翔艦護衛之，站站調查，測水全羅·忠淸沿岸。二十三日午時，留碇洪州內島前洋，**測水稷山·水原等海岸**。十五日，海津三雄等六名·通事一名，**將從陸過水原抵京城**。辦察官，以約條所無沮之，歇留彼人。海津等，以禮曹所納花房義質書一封，請先爲傳納。其書如下：“○照會者，開港事件。本官既會同講修官，指定仁川·元山二處。據該官所稱，‘仁川開港，舉朝野難之，望更撰他所。’本官曰：‘我政府，連年派測量船，探

全羅·忠清·京畿三道海岸，而無有適宜地。於是始以仁川·濟物浦指定，而輒以地近京城拒之。’夫近京開港，嫌他日致我國人來往乎？然兩國既已結約親睦，情同一家。故近京開港，情誼易慣徹，事務使妥辦。是爲兩國所尤企望。或以民庶趨之城市凋弊爲嫌乎？互市本意，在通濟有無。京城人聚物阜，近之開港，百貨流通，利源疏達，民累殷富。豈有凋弊之端？況他日不幸遇歲凶歉，可粒米回漕，賑恤立辦。若夫以地當要吭，起見邊備，以爲不可乎？開港之地，無論何國，必有武備，可以防外寇·遏內訌，則通商得安全。加之我船舶往來無間，可以絕他國虎視眈眈之憂，則邊防有加，民物日滋。其如是則仁川開港，在貴國，有益·無損也，明矣。而貴政府不容之，徒與講修官接議，其大局未知所歸結。蓋講修官之設，爲議細節目。大綱未立，其將何講修乎？本官將援據條規，明日與閣下面議，以講定二處開港大局。請有刻期示。其所爲是照會，敬具。”】

<고종실록 16권, 고종 16년 4월 19일(임술) 4번째기사>

### 정치/군사

#### 주진 대원 남정철이 정사에 대하여 상소하다

주진 대원(駐津大員) 남정철(南廷哲)이 현(縣)과 도(道)를 통해 올린 진면(陳勉) 상소의 대략에, “대체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에 두 가지가 있는데 내치(內治)와 외교하는 것입니다. 내치는 외교의 근본이고, 외교는 내치 이후의 일이니 전하는 어진 정치를 더 하고 재정을 더 절약하소서. 신이 천진(天津)에 있을 때 중국의 사대부(士大夫)들과 서로 만나게 되어 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다 말하였습니다. 신이 수원(水原)의 여사(旅舍)에 이르러 초소(草疏)를 써서 올렸으니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면한 내용이 절실하니 나랏일을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을 볼 수 있다. 명심하겠다.” 하였다.

駐津大員南廷哲，從縣道上，陳勉疏略：“夫爲國之首有二：曰內治也·曰外交也。內治者，外交之本；外交者，內治之餘也。殿下增修德政，加節財用。抑臣在津之日，得有以與中州士大夫相慶，則臣之志願畢矣。臣到水原旅舍，草疏上進。伏惟垂察焉。” 批曰：“陳勉切實，可見憂愛之誠。當體念矣。”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 3월 27일(임인) 2번째기사>

### 정치/군사

#### 영의정 심순택이 창원 부사와 수원 중군 등의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었다. (….)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교동(喬桐)의 방어사(防禦使)와 회령(會寧)의 겸감리(兼監理)가 있지만 무신들의 품계가 올라가는 길이 막혀 소통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여론이 더욱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 창원 부사(昌原府使)와 수원 중군(水原中軍) 두 자리를 교동(喬桐)과 회령(會寧)의 예(例)에 따라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배의(排擬)하고 만약에 당상(堂上)인 병사(兵使)로 제수하여 승자(陞資)하도록 한다면 거의 답답한 것을 소통시켜 주는 정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전신(銓臣)과 장신(將臣)에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막힌 것을 소통시키는 것이니 물어볼 필요가 없다.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十五日。次對。領議政沈舜澤曰：(…) 舜澤曰：“喬桐之作防營，會寧之兼監理，武臣晉階之



路，塞而不通，衆論愈鬱。臣意則‘昌原府使·水原中軍二窠，依喬桐·會寧例，以嘉善排擬，若以堂上兵使除拜，使之陞資，則庶或爲疏鬱之政.’ 下詢時原任大臣·銓臣·將臣處之何如?” 教曰：“此是疏鬱，不必詢問。依所奏爲之。”

<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 2월 15일(계유)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총리대신을 인견하여 영제를 변통하는 것 등에 대해 의논하다

총리대신(總理大臣)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 판부사(判府事) 김홍집(金弘集)이다.】 을 인견(引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늘 대신(大臣)들을 소견(召見)한 것은 오로지 영제(營制)를 변통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의 급선무로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듣건대 각국(各國)의 군제(軍制)도 시기에 따라 개혁하여 훈련에 많이 종사한다고 한다.

근래 중국(中國)의 신기영(神機營), 녹영(綠營)의 군제 역시 변통이 있었으니 이것은 바로 시기에 따르는 마땅한 조치로써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나간 몇 해 동안 각 영을 나누어 두었더니 불필요한 비용이 실로 많았다. 그리고 매 영마다 500병(兵)은 훈련하는 규모에도 적합치 않다. 그래서 이제 다만 3개 영만을 남겨두고, 우영(右營), 후영(後營)과 해방영(海防營)을 합쳐 통위영(統衛營)으로, 전영(前營)과 좌영(左營)을 합쳐 장위영(壯衛營)으로, 별영(別營)은 총어영(總禦營)이라 부르도록 하라.”

하니,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옛부터 영제를 나누거나 합치는 것은 대체로 편리한 조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성교(聖敎)를 듣고서, 신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성지(聖旨)의 훌륭한 계책에 대하여 우러러 흠송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였다.

김홍집(金弘集)이 아뢰기를, “역대로 군제는 원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시기에 따라 알맞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모두 변동시킬 수 없는 일정한 규제(規制)가 있는 뒤에야 몇 백 년 준수하여도 폐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6, 7년 이래로 영제를 몇 번 변통했으나 변통할 때마다 규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변통하는 조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상(聖上)께서 계책을 묵묵히 궁리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반드시 일정한 규제를 세워 몇 백 년 동안 준수할 법도로 삼는 것이 신의 소망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몇 해 전에 오제독(吳提督)의 영제에 근거하여 500병을 한 영(營)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훈련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니 일군(一軍)의 제도가 될 수가 없다고 한다.”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한 영을 500으로 하는 것은 바로 편장(偏將)의 부곡(部曲)으로서 실로 대국(大國)의 3군, 다음가는 나라에서 2군으로 하는 군제가 아닙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번에 영을 합친다면 그 불필요한 비용으로 아주 넉넉히 군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어찌 그저 군사를 양성하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없애버리고 방만한 비용을 제거하는 것이니 실로 치국(治國)의 중요한 방도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춘천(春川)은 바로 동북쪽의 관문이다. 옛날 정묘호란(丁卯胡亂)때 단지 200명의 정병(精兵)만으로 석과령(石坡嶺)에서 승리를 거두기로 하였다. 그 후에 방략사(防略使)를 두었고 또 방어영(防禦營)을 둘 것을 논의했는데 실현하지 못하였다. 간혹 감영(監營)을 이설(移設)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그 지형이 보장(保障)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남한산성(南漢山城)이나 강화도(江華島)와 차이가 없다. 이제 이미 진어영(鎭禦營)으로 되었으니 기전(畿甸)에 이속시키고 유수(留守)를 둔 다음에야 견고하게 방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영제를 변동하는 것은 나라의 큰 정사입니다. 진어영을 기전에 이속시키고 유수를 설치하는 것도 관제(官制)와 관계되니 사체(事體)상 널리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김홍집이 아뢰기를, “춘천은 바로 옛날에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그 지형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을 설치하였으니 유수를 두어 그 체제를 중시하는 것도 시기에 알맞은 조치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수원(水原), 광주(廣州)에 유수를 설치할 때의 전례를 상고해 보니, 모두 약방(藥房)이 입시(入侍)할 때 그저 대신과 문의하여 논의했을 뿐이고 장신(將臣)이나 전신(銓臣)은 등대(登對)한 적이 없었다.”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몇 해 전에 영제를 변동할 때는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 영의 장신들이 연석(筵席)에 나와 모두 의견을 아뢴 적이 있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차대(次對)를 통해서였습니다.” 하였다.

김홍집이 아뢰기를, “금일의 하교에 대하여 연석에 나오지 못한 대신들에게는 영상(領相)이 직접 구체적으로 편지 왕래를 해야 하고 전관(銓官)들과도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제 6개 영을 합쳐서 3개 영으로 만들었는데 통위영은 중영(中營)으로 하고 깃발 색깔은 황색으로 하고, 장위영은 좌영으로 하고 색깔은 청색으로 하고, 총어영은 우영으로 하고 색깔은 백색으로 하라. 수기(手旗)와 초요기(招搖旗)는 각각 그 영의 색깔에 따라 만들고, 군제에 속하는 모든 것은 중영, 좌영, 우영이 거행하라는 내용으로 각 영에 통지하라.” 하였다.

十九日。引見總理大臣。【領議政沈舜澤·判府事金弘集】 教曰：“今日召見大臣，專爲營制變通，而目下急務，莫先於此矣。聞各國軍制，隨時改革，而多從布操。近日中國之神機營綠營軍制，亦有變通，則此乃時措之宜，不得不然者也。年來各營分置，冗費實多。且每營五百兵，不合於演操之規。故今欲只存三營。合右後及海防，而稱統衛營；合前左，而稱壯衛營；別營則稱總禦營矣。” 舜澤曰：“自古營制之或分·或合，蓋出於隨宜措宜。而今聆聖教，臣無容他見。聖旨神算，祇不勝欽頌矣。” 弘集曰：“歷代軍制，固多沿革。雖不得不因時制宜，而皆有一定不易之規然後，可以幾百年遵守無弊也。竊以六七年來，營制凡幾變，而變通之際，規制未定。故又有此變通之舉矣。今也聖筭之默運已久，則必立一定之規，以爲幾百年遵守之圖。是臣之望也。” 教曰：“年前因吳提督營制，五百兵爲一營，而今欲試布操，則不能成一軍之制云矣。” 弘集曰：“一營五百，乃編將之部曲，實非大國三軍·次國二軍之制矣。” 教曰：“今若合營，則以其冗費優，可以厚養其兵也。” 弘集曰：“豈但養兵爲然也？汰冗祛濫，實爲治國之要道也。” 教曰：“春川卽東北關隘也。昔在丁卯虜亂，只以二百精兵，得捷於石坡嶺。其後置防略使，又議設防禦營而不果。或有監營移設之論，其形勝之堪爲保障，與南漢·江都無異。而今既爲鎮禦營，則不可不移屬畿甸，設置留守然後，庶爲捍衛綢繆之圖矣。” 舜澤曰：“營制變通，卽有國大政也。鎮禦營之移屬畿甸，設置留守，亦係官制，其在事體，博行詢議，似宜矣。” 弘集曰：“春川卽古之國都也。其形勝，實爲上游之最。且今既設營，則置留守而重其體制，亦可爲時措之宜矣。” 教曰：“考見水原·廣州設置留守時例，則皆於藥房入侍，只與大臣詢議，而將臣·銓臣，未嘗登對矣。” 弘集曰：“年前營制變通時，則時原任大臣·各營將臣登筵，皆有所奏矣。” 教曰：“此則因次對故也。” 弘集曰：“今日下教，未登筵大臣處，領相自當詳爲往復，而銓官亦可以相議矣。” 教曰：“如是爲之，好矣。” 又教曰：“今合六營爲三營，而統衛爲中營，色當尙黃；壯衛爲左營，色當尙青；總禦爲右營，色當尙白矣。手旗·招搖旗，各隨其

營方色爲之。而凡屬軍制，亦以中·左·右營舉行事，知委各營也。”

<고종실록 25권, 고종 25년 4월 19일(경자)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강화영의 군사 300명을 수원에 주둔시키도록 하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요충지를 방어하는 것은 방금 품지(稟旨)하여 윤허를 받았고 청주(淸州)의 군사도 그대로 소속시키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계엄(戒嚴)하는 일은 미룰 수 없으니 심영(沁榮)의 군사 300명을 수원(水原)에 주둔시키고 본영(本營)의 군사와 협력하여 방어하게 하며 군량은 본 영의 공곡(公穀) 중에서 적당히 가져다 쓰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內務府啓: “要衝防守, 纔有稟旨蒙允. 淸州兵丁, 亦有仍屬之命矣. 戎嚴之節, 不容虛徐. 沁營兵丁三百名, 出駐水原, 與本營兵, 協力防守. 餉穀, 以本營公穀中, 量宜取用事, 分付何如?” 允之.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3월 28일(경술) 2번째기사>

#### 정치/군사

친군 진무영, 친군 장위영의 군사로서 수원과 청주에 주둔한 장수와 군사들을 시상하다  
친군 진무영(親軍鎮撫營)의 군사들로서 수원(水原)에 나가 주둔한 장수와 군사 이하, 친군 장위영(親軍壯衛營)의 군사들로서 청주(淸州)에 나가 주둔하였다가 돌아온 장수와 군사들에게 차등 있게 시상(施賞)하고 수원에 나가 주둔한 병방(兵房) 서병훈(徐丙勳)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三十日. 命親軍鎮撫營水原出駐將卒以下·親軍壯衛營淸州出駐回還將卒以下, 並施賞有差, 水原出駐兵房徐丙勳, 加資.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12월 30일(무인)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지방대의 영위관 월봉과 병졸의 급료 및 경비에 대한 안건 등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41호, <지방대의 영위관 월봉과 병졸의 급료 및 경비를 경대에 준하여 마련하는데 대한 안건 [地方隊領尉官月俸兵卒給料及經費準京隊磨鍊件]> 과 칙령 제42호, <우체사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 [郵遞司官制改正件]> 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우체사(郵遞司)는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의 관할 하에 속하여 우체(郵遞)에 관한 일체 사무를 맡는다. 1등과 2등으로 나누는데 1등 우체사는 한성(漢城)·인천(仁川)·원산(元山)·부산(釜山)·평양(平壤)·전주(全州)·개성(開城)·공주(公州)·의주(義州)·대구(大邱)·경성(鏡城)이며, 2등 우체사는 수원(水原)·충주(忠州)·홍주(洪州)·남원(南原)·나주(羅州)·제주(濟州)·진주(晉州)·안동(安東)·강릉(江陵)·춘천(春川)·해주(海州)·강계(江界)·함흥(咸興)·갑산(甲山)이다. 직원은 사장(司長)과 주사(主事)를 두는데 사장은 주임관(奏任官)으로서 우체사마다 1인(人)을 두되 우체 법규와 사무에 숙련된 사람으로 채운다. 주사는 판임관(判任官)으로 한성사(漢城司)에는 15인 이하, 그 외 1등 우체사에는 3인 이하, 2등 우체사에는 2인으로 정하되 우체 학습원(郵遞學習員)으로 채운다.】

五日. 勅令第四十一號, 地方隊領尉官月俸·兵卒給料及經費準京隊磨鍊件, 第四十二號, 郵遞司官制改正件, 裁可頒布. 【郵遞司屬之農商工部大臣管理, 掌郵遞所關一切事務. 分一二等: 一

等司, 漢城·仁川·元山·釜山·平壤·全州·開城·公州·義州·大邱·鏡城. 二等司, 水原·忠州·洪州·南原·羅州·濟州·晉州·安東·江陵·春川·海州·江界·咸興·甲山. 職員置司長·主事. 司長·奏任, 每司置一人, 而克以郵遞法規及事務鍊熟之員. 主事, 判任, 漢城司十五人以下, 其外一等司三人以下, 二等司二人爲定, 而充以郵遞學習員.】

<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8월 5일(양력)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진위대와 지방대의 편제를 개정하는 일에 대한 안건을 반포하다

칙령 제2호, <진위대와 지방대의 편제를 개정하는 일에 대한 안건 [鎮衛隊地方隊編制改正件]> 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진위 대대(鎮衛大隊)는 전주(全州), 평양(平壤)에 두고 지방 대대(地方大隊)는 수원(水原), 강화(江華), 청주(淸州), 공주(公州), 광주(光州), 대구(大邱), 안동(安東), 고성(固城), 해주(海州), 황주(黃州), 안주(安州), 원주(原州), 북청(北靑), 중성(鍾城)에 둔다.】

勅令第二號, 鎮衛隊地方隊編制改正件. 裁可頒布. 【鎮衛大隊全州·平壤에 置호고 地方大隊水原·江華·淸州·公州·光州·大邱·安東·固城·海州·黃州·安州·原州·北靑·鍾城에 置호는 事.】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월 15일(양력) 3번째기사>

## 정치/군사

### 진위 연대 편제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26호, <진위 연대 편제에 관한 안건 [鎮衛聯隊編制件]> 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전국 각도(各道)의 부(府) 또는 군(郡)의 중요 지방에 진위 연대를 설치하고 지방의 진무(鎭撫) 및 변경의 수비를 전적으로 맡는다. 연대의 위치는 강화(江華), 수원(水原), 대구(大邱), 평양(平壤), 북청(北靑)에 정하고 3개 대대(大隊)로 편성한다. 연대 본부(聯隊本部)에 연대장(聯隊長) 1인(人), 부관(副官) 1인, 무기 주관(武器主管) 1인, 기관(旗官) 1인이며, 대대(大隊)에는 대대장(大隊長) 3인, 향관(餉官) 6인, 부관(副官) 3인, 중대장(中隊長) 15인, 소대장(小隊長) 60인을 붙인다.】

二十五日. 勅令第二十六號, 鎮衛聯隊編制件. 裁可頒布. 【全國各道府或郡重要地方設置鎮衛聯隊, 專任地方鎭撫及邊境守備. 聯隊位置定於江華·水原·大邱·平壤·北靑而以三大隊編成. 聯隊本部, 聯隊長一人·副官一人·武器主管一人·旗官一人; 大隊附, 大隊長三人·餉官六人·副官三人·中隊長十五人·小隊長六十人.】

<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7월 25일(양력) 1번째기사>

## 정치/군사

### 청주대에 소속된 안동 주둔대를 대구대에 이속시키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원수부군무국총장임시서리(元帥府軍務局總長臨時署理) 백성기(白性基)가 아뢰기를,

“청주대(淸州隊)에 소속되어 있는 안동(安東) 주둔대를 대구대(大邱隊)에 이속시키되 대구대의 군사 중에서 100명을 줄이는 동시에 그 경비(經費)를 청주대에 넘겨주며 새로 1,000명을 뽑아 안동대(安東隊)의 빠진 인원을 주도록 아뢰어 재가를 받았습니다.

방금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이현영(李洵永)의 보고를 보니, ‘삼가 대구대(大邱隊)의 군사 100명을 줄인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대(隊)의 군사를 늘이고 줄이는 것은 관

찰사가 관할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정에 의거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해에 걸쳐 흉년이 든 뒤끝이어서 인심이 흉흉해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돈을 강탈하였다는 보고가 종종 급하게 올라오곤 하므로 탄압(彈壓)하고 위무(慰撫)하며 순찰하며 소탕하는 일은 이 진위대(鎭衛隊)에 키워 둔 군사들의 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 북도는 사람이 많고 지역이 넓어 400명의 군사도 부족하여 오히려 군사를 더 두어 진압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군사를 줄이기까지 하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온 성 안의 관리와 상인, 백성들이 군사를 줄이는 데 대해 걱정하면서 물의(物議)가 시끄러지기 때문에 이처럼 송구함을 무릅쓰고 보고합니다. 대구대의 군사를 이전대로 두고 해산하지 말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관찰사가 아뢴 것이 간절하고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해대(該隊)의 형편을 보더라도 많은 인원을 갑자기 해산하기도 어렵습니다. 해대의 병사 수는 전대로 그냥 두고 안동 주둔대와 합쳐도 도합 500명이 되게 하고, 청주대(淸州隊)는 수원대(水原隊)의 소속인 공주(公州) 주둔대를 배속시켜 400명이 되게 해서 아울러 다시 편성하며, 수원대는 새로운 예산안을 세운 다음에 100명을 더 뽑아서 공주대에서 빠진 인원을 채워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하였다.

元帥府軍務局總長臨時署理白性基奏：“淸州隊所屬安東駐隊，移屬于大邱隊，大邱隊兵中一百名減額，其經費劃送于淸州隊，新抄一百名，以充安東隊闕額之意，奏蒙裁下。而即接慶尙北道觀察使李晷永所報，則以爲：‘伏聞有大邱隊兵一百名減額之報云。隊兵之增減，非觀察使之句檢，然竊有所不得不舉實仰陳者。現今連年荐歉之餘，人心不淑，剪逕剽金，種種報急之際，彈壓鎭撫，發巡勦除，賴此鎭隊兵士之設養。而顧今慶北，物衆地大，四百名卒，猶望增置而鎭壓，況又減其額數乎？一城紳商人民，惟患減額，物議喧騰，故茲敢冒悚報告。大邱隊兵，依前勿解之地，伏望’云矣。該觀察使所陳，不啻切當，以該隊形便言之，夥然額數，遽難解放。該隊兵額，照前仍置，與安東駐隊，合爲五百名，淸州隊，則以水原隊所屬公州駐隊，附屬爲四百名，竝改編制，水原隊，則待新豫筭立款，加抄一百名，以充公州隊闕額何如？” 允之。

<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 6월 25일(양력) 2번째기사>

## (5) 인물

### 정치/인물

#### 검교 판중추원사 변옥란의 졸기로 임자년에 수원부사가 되다

검교 판중추원사(檢校判中樞院事) 변옥란(卞玉蘭)이 졸(卒)하였다. (...) 임자년에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 을묘년에 선공 판사(繕工判事)로 임명되었고, 병진년에 내부 판사(內府判事)로 옮겼는데, 양광도 안렴사(楊廣道按廉使) 신원좌(辛元佐)가 수원 사람으로서 〈옥란의〉 포장(褒狀)을 올리게 되어 전농 판사(典農判事)로 통헌(通憲)의 계급을 받아, 얼마 안 되어 봉익(奉翊)으로 승급하여 청주 목사(淸州牧使)로 나갔다가, 경신년에 또 충주 목사(忠州牧使)가 되었다. (...)

○檢校判中樞院事卞玉蘭卒. (...) 壬子, 爲水原府使, 乙卯, 拜繕工判事, 丙辰, 移判內府, 楊廣道按廉使. 辛元佐以水原人, 褒狀轉聞, 授典農判事, 階通憲. 尋加奉翊, 出牧淸州, 庚申, 又牧忠州. (...)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1월 23일(무오) 2번째기사>

### 정치/인물

#### 효자·절부 등을 정려하는데 수원사람으로 생원 이조와 별장 김계동이 있었다

임금이 좌·우정승에게 분부하였다. “지금 각도에서 보고한 효자(孝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 등은 모두 실적이 있으니 마땅히 포상을 더하고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하되, 구실[役]이 있는 자는 복호(復戶)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구휼하여 주어 풍속을 가다듬게 하라.” (...) 수원(水原)의 생원 이조(李造)는 모친상을 당하여 무덤에 여막을 짓고 3년을 아침저녁으로 죽만 먹고 소금과 장이며 나물과 과실을 먹지 않고 슬퍼하며 공경했으며, 전 별장(別將) 김계동(金桂同)도 역시 수원 사람인데, 천성이 원래 효성스럽고 공순하여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리기를 공근히 하다가 모친이 죽으매 사당을 두고 사철의 초하루 보름에 제사를 올리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

○丁未/上命左右政丞曰: “今各道所報孝子順孫義夫節婦, 各有實跡, 宜加褒賞, 旌表門閭. 其有役者則復之, 貧乏者則周之, 以勵風俗.” (...) 水原生員李造, 喪母廬墓三年, 朝夕食粥, 不進鹽醬菜菓, 以致哀敬. 前別將金桂同, 亦水原人也. 性本孝敬, 定省惟勤. 母歿置祠堂, 四時朔望, 奉祀不怠. (...)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16일(정미) 1번째기사>

### 정치/인물

#### 청성백 심덕부의 졸기로 공민왕 13년에 수원부사가 되다

청성백(靑城伯) 심덕부(沈德符)가 죽었다. 덕부의 자(字)는 득지(得之)이니, 청부현(靑臯縣) 사람이며, 전리 정랑(典理正郎) 심용(沈龍)의 아들이다. 문음(門蔭)으로 처음에 좌우위 녹사(左右衛錄事) 참군(參軍)이 되고, 여러 번 옮기어 소부윤(少府尹)이 되었다. 공민왕(恭愍王) 13년 갑진에 나가서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을 때, 안렴사(按廉使)가 부(府)에 이르매, 덕부가 알현(謁見)하러 갔다가, 안렴사가 옷을 갖추지 않은 것을 보고 그대로 물러왔다. 안렴사가 아전을 시켜 꾸짖으니, “옷이 법도와 같지 않다.” 고 대답하였다.

○甲戌/靑城伯沈德符卒. 德符字得之, 靑臯縣人, 典理正郎龍之子也. 以門蔭, 始受左右衛錄事參軍, 累遷少府尹. 恭愍王十三年甲辰, 出守水原府, 廉使至府, 德符納謁, 見使不襯便退, 使

命吏讓之，對以服不如儀，使謝不敏.(…)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14일(갑술) 1번째기사>

## 정치/인물

### 영의정부사 평양 부원군 조준의 졸기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평양 부원군(平壤府院君) 조준(趙浚)이 죽었다. 준(浚)의 자(字)는 명중(明仲)이고, 호(號)는 우재(吁齋)인데, 평양부(平壤府) 사람이다. (…) 임신년 3월에 정몽주가, 태상왕이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할 때를 타서 대간(臺諫)을 시켜 준(浚)과 남은(南問)·정도전(鄭道傳)·윤소종(尹紹宗)·남재(南在)·오사충(吳思忠)·조박(趙璞) 등을 탄핵하여, 봉당(朋黨)을 만들어서 정치를 어지럽게 한다고 지적하여 모두 외방으로 귀양보냈다가, 이내 수원부(水原府)로 잡아 올려 극형에 처하려고 하였다. 4월에 우리 주상(主上)께서 조영규(趙英珪)로 하여금 정몽주를 쳐 죽이게 하여, 준(浚)이 죽음을 면하고 찬성사(贊成事)에 복직되었다. (…)

○辛卯/領議政府事平壤府院君趙浚卒. 浚字明仲, 號吁齋, 平壤府人. (…) 壬申三月, 夢周乘太上墜馬病篤, 乃使臺諫, 劾浚及南問·鄭道傳·尹紹宗·南在·吳思忠·趙璞等, 指爲朋黨亂政, 悉竄于外. 尋逮水原府, 欲置之極刑. 四月, 我主上使趙英珪, 擊死夢周, 浚得免, 復贊成事.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6월 27일(신묘) 1번째기사>

## 정치/인물

### 조선출신 화자의 친속이 있는 곳에 행이(行移)하였는데, 수원은 전자후였다

노한(盧閑)·함부림(咸傅霖)이 명나라 서울[京師]에서 돌아왔다. 함부림이 아뢰었다. “황제가 신 등에게 반복하여 안남(安南)의 불순(不順)함과 왕사(王師)의 장의(仗義)한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노한이 예부(禮部)의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자문은 이러하였다. “영락(永樂) 5년 7월 22일에 내사(內史) 조도(趙都)·공원봉(孔原奉)·김지(金至)·김양(金良) 등이 흠봉(欽奉)한 성지(聖旨)에, ‘각처에서 오는 사신(使臣)은 가신(家信)을 가지고 오라.’ 고 하였습시다.”

이에 정부(政府)에 명하여 명나라 서울[京師]에 간 화자(火者)의 친속(親屬)들이 있는 곳에 행이(行移)하였는데, 나주(羅州)는 조도(趙都), 익주(益州)는 공원봉(孔原奉), 낙안(樂安)은 박인(朴麟), 태산(泰山)은 황중(黃中), 함열(咸悅)은 이안경(李安景), 보령(報令)은 김부(金浮), 울주(蔚州)는 김희(金禧), 대구(大丘)는 김지(金至), 양주(襄州)는 김양(金良), 한산(韓山)은 김화(金禾), 연기(燕岐)는 이행(李行), 이천(利川)은 박득(朴得)·김음(金音), 수원(水原)은 전자후(田子厚), 삭녕(朔寧)은 조양(趙良), 가화(嘉禾)는 오정(吳正), 영녕(永寧)은 김복(金復), 정주(定州)는 최인계(崔仁桂)였다.

○辛酉/盧閑·咸傅霖回自京師. 傅霖啓: “皇帝對臣等反覆諭以安南之不順·王師之仗義.” 閑齋禮部咨來, 咨曰: 永樂五年七月二十二日, 內史趙都·孔原奉·金至·金良等欽奉聖旨: “各處來的使臣, 帶家信來.” 於是, 命政府行移赴京火者親屬在處. 羅州趙都, 益州孔原奉, 樂安朴麟, 泰山黃中, 咸悅李安景, 報令金浮, 蔚州金禧, 大丘金至, 襄州金良, 韓山金禾, 燕岐李行, 利川朴得·金音, 水原田子厚, 朔寧趙良, 嘉禾吳正, 永寧金復, 定州崔仁桂.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1일(신유) 1번째기사>

## 정치/인물

### 태종이 황엄 등과 함께 처녀 5명을 선발했는데 그중 수원 기관 최득비의 딸이 있었다

임금이 경복궁에 가서 황엄·전가화(田嘉禾) 등과 더불어 다시 처녀를 선발하였다. 뽑힌 자가 모두 5인인데, 고 전서(典書) 권집중(權執中)의 딸이 첫째이고, 전 전서(典書) 임첨년(任添年)·전 지영주사(知永州事) 이문명(李文命)·사직(司直) 여귀진(呂貴眞)·수원 기관(水原記官) 최득비(崔得霏)의 딸이 다음이었다. 술과 과실을 주고, 각각 중국 체제(體制)의 여복(女服)을 주었는데 모두 채단(綵段)으로 만들었다. 임금이 환궁하여 대언(代言)들에게 이르기를, “황엄이 선정(選定)한 고하(高下) 등제(等第)가 틀렸다. 임씨(任氏)는 곧 관음보살(觀音菩薩)의 상(像) 같아서 애교와 태도가 없고, 여씨(呂氏)는 입술이 넓고 이마는 좁으니, 그게 무슨 인물이나?” 하였다.

○上如景福宮，與黃儼·田嘉禾等，更選處女，被選者凡五人．故典書權執中之女爲首，前典書任添年·前知永州事李文命·司直呂貴眞·水原記官崔得霏之女次之．賜酒菓，各賜中朝體制女服，皆用綵段．上還宮，謂代言等曰：“儼之選定高下等第誤矣．任氏直如觀音像而無情態，呂氏唇闊額狹，是何物耶？”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0월 11일(을유) 2번째기사>

## 정치/인물

### 진헌 처녀 5명 중 수원출신 여인의 정보

황엄(黃儼) 등이 처녀(處女)를 데리고 경사(京師)로 돌아가니, 임금이 모화루(慕華樓)에서 전송하였다.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이문화(李文和)로 진헌사(進獻使)를 삼아 순백후지(純白厚紙) 6천 장을 싸 가지고 경사(京師)에 가게 하였다. 부주(附奏)에 이르기를, “영락(永樂) 6년 4월 16일에 흠차(欽差)하신 태감(太監) 황엄(黃儼) 등 관원이 본국에 도착하여 선유(宣諭)를 전(傳)해 받들었사운데, ‘네가 조선국(朝鮮國)에 가서 국왕(國王) 【이휘(李諱).】에게 말하여 잘 생긴 여자가 있거든 몇 명을 선택하여 데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臣) 【휘(諱).】이 흠의(欽依)하여 본국의 서울과 각도(各道) 부(府)·주(州)·군(郡)·현(縣)에서 문무(文武)·군민(軍民)의 집 여자를 간택(揀擇)하여, 흠차관(欽差官) 등과 함께 여자 5명을 선택해서, 배신(陪臣) 이문화(李文和)를 보내어 흠차 태감 황엄 등을 따라 경사에 가게 하고, 각 여자의 생년월일과 아버지의 직명(職名) 및 적관(籍貫)을 낱낱이 기록하여 삼가 갖추어 주문(奏聞)합니다. 한 명은 가선 대부(嘉善大夫) 공조 전서(工曹典書) 권집중(權執中)의 딸인데 나이 18세로서 신미(辛未) 10월 26일 사시(巳時)에 낳았고, 적관은 경상도 안동부(安東府)이며, 현재 한성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명은 통훈 대부(通訓大夫) 인녕부 좌사윤(仁寧府左司尹) 임첨년(任添年)의 딸인데, 나이 17세로서 임신 10월 26일 술시(戌時)에 낳았고, 적관은 충청도 회덕현(懷德縣)이며, 현재 한성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명은 통덕랑(通德郎) 공안부 판관(恭安府判官) 이문명(李文命)의 딸인데, 나이 17세로서 임신 10월 18일 술시(戌時)에 낳았고, 적관은 기내 좌도(畿內左道) 인주(仁州)입니다. 한 명은 선략 장군(宣略將軍) 충좌 시위사 중령 호군(忠佐侍衛司中領護軍) 여귀진(呂貴眞)의 딸인데, 나이 16세로서 계유 11월 초2일 사시(巳時)에 낳았고, 적관은 풍해도(豐海道) 곡성군(谷城郡)이며, 현재 한성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명은 중군 부사정(中軍副司正) 최득비(崔得霏)의 딸인데, 나이 14세로서 을해 10월 초8일 오시(午時)에 낳았고, 적관은 기내 좌도 수원부(水原府)입니다. 따라가는 자[從者]는 여사(女使) 16명, 화자(火者)



12명입니다.” 하였다. (…)

○丙辰/黃儼等以處女還京師，上餞于慕華樓。以藝文館大提學李文和爲進獻使，齋純白厚紙陸千張赴京。附奏曰：永樂六年四月十六日，欽差太監黃儼等官到國，傳奉宣諭：“恁去朝鮮國，和國王【李諱.】說，有生得好的女子，選揀幾名將來。”欽此。臣諱欽依，於本國在城及各道府州郡縣，選揀到文武并軍民家女子，與同欽差官等選揀女子五名，差陪臣李文和，根同欽差太監黃儼等官赴京外，今將各女子生年月日并父職名籍貫，一一開坐，謹具奏聞。一名，嘉善大夫工曹典書權執中女，年一十八歲，辛未十月二十六日巳時生，籍貫慶尙道安東府，見住漢城府。一名，通訓大夫仁寧府左司尹任添年女，年一十七歲，壬申十月二十六日戌時生，籍貫忠清道懷德縣，見住漢城府。一名，通德郎恭安府判官李文命女，年一十七歲，壬申十月十八日戌時生，籍貫畿內左道仁州。一名，宣略將軍忠佐侍衛司中領護軍呂貴眞女，年十六歲，癸酉十一月初二日巳時生，籍貫豐海道谷城郡，見住漢城府。一名，中軍副司正崔得罪女，年一十肆歲，乙亥十月初八日午時生，籍貫畿內左道**水原府**。從者女使一十六名，火者一十二名。(…)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12일(병진) 1번째기사>

## 정치/인물

### 호조 판서 조박의 줄기

호조 판서(戶曹判書) 평원군(平原君) 조박(趙璞)이 죽었다. 조박은 평양부(平壤府) 사람으로, 자(字)는 안석(安石), 호(號)는 우정(雨亭)이며, 전의 영(典儀令) 조사겸(趙思謙)의 아들이다. 조박은 재주가 탁이(卓異)하여 여러 사람에게 뛰어났다. 홍무(洪武) 병진년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삼사 좌윤(三司左尹)에 이르렀다. 주상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 조박이 동서(同壻)간이므로 가장 친하고 오랜 사이였다. 그러므로 이 때문에 태조(太祖)에게 따르고 복종하였다. **정몽주(鄭夢周)가 조박을 청주 목사(淸州牧使)로 내보냈다가 조금 뒤에 수원부(水原府)로 잡아 올려 장차 죽이려고 하였는데, 조박이 망명(亡命)하여 면하였다.** (…)

○戶曹判書平原君趙璞卒。璞，平壤府人，字安石，號雨亭，典儀令思謙之子。倜儻不群，登洪武丙辰第，累官至三司左尹。上在潛邸，以璞友壻，最親且舊，由是歸心太祖。鄭夢周出璞牧淸州，尋逮**水原府**，將殺之，璞亡命得免。(…)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2월 6일(기묘) 3번째기사>

## 정치/인물

### 수원인 생원 이수에게 옷 1벌을 하사하다

생원(生員) 이수(李隨)에게 옷 1벌[襲]을 내려 주었다. 처음에 승정원에 명하기를, “내가 마음이 순후하고 학문에 민첩한 자를 얻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겠다.” 하고, 곧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유백순(柳伯淳)을 불러 묻기를, “관생(館生) 중 경사(經史)에 통한 사람으로 누가 있는가?” 하니, 유백순(柳伯淳)이 “이수(李隨)가 있습니다.” 하므로, 즉시 명하여 부르게 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수가 수원(水原)으로부터 왔다.** 임금이 말하였다. “듣건대, 그대에게 학행(學行)이 있다 하니, 마땅히 두 대군(大君)을 가르치되 게을리 하지 말 것이다. 경서(經書)에서 의심나는 곳은 나도 질문하겠다.” 이수는 학문이 정상(精詳)하고 치밀하며 뜻과 행실이 있었다. 병자년의 생원시(生員試)에 제1인으로 합격하였지만, 여러 번 과거에 응하여 합격하지 못하였다.

○甲子/賜生員李隨衣一襲。初命承政院曰：“予欲得心純學敏者，俾訓兒子。”乃召成均大司成

柳伯淳問曰：“館生中通經史者有誰？” 伯淳以隨對， 卽命召之。 至是， 隨至自水原， 上曰：“聞汝有學行， 宜誨兩大君不倦。 經書疑處， 予亦質問焉。” 隨精詳縝密， 有志行， 丙子生員第一名， 屢舉不中。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8월 12일(갑자) 1번째기사>

#### 정치/인물

##### 청천 부원군 심은의 졸기

이양(李揚)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심은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니, 선지(宣旨)하기를, “심은은 비록 예(禮)를 갖추어 장사지내지 못할지라도, 또한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에 이양달(李陽達)을 보내어 장사지낼 땅을 가려 정하게 하고, 수원부(水原府)에 명하여 장사(葬事)를 치르게 하며, 또 관곽(棺槨)·종이·석회(石灰)를 내려 주고, 내관(內官)을 보내어 장사를 돌보게 하고, 있는 곳의 관원으로 하여금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

○李揚還啓：“溫已自盡。” 宣旨：“溫雖不可禮葬， 亦不可不厚。” 乃遣李陽達卜葬地， 命水原府辦葬事， 又賜棺槨紙石灰， 遣內官護葬， 令所在官致祭。 (…)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2월 25일(경자) 2번째기사>

#### 정치/인물

##### 전 공안부 윤 이고의 졸기

전 공안부 윤(恭安府尹) 이고(李臯)가 돌아갔다. 고(臯)는 여흥(驪興)이 본관이니, 고려 말에 과거하여 대간(臺諫)을 역임하였다. 마음이 강정(剛正)하고, 또 조행(操行)이 있어 여러 관직을 거쳐 공안부 윤(恭安府尹)·집현전 학사(集賢殿學士)에 이르렀고, 수원(水原)에 노퇴하였다가 이 때에 돌아왔다. 나이는 80이요, 아들은 둘이니, 이름은 이추(李追)와 이심(李審)이었다.

○前恭安府尹李臯卒。 臯驪興人。 高麗末登第， 歷任臺諫， 執心剛正， 且有操行。 累官至恭安府尹·集賢殿學士。 乞歸水原， 至是卒， 年八十。 子二追·審。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 8월 9일(을사) 2번째기사>

#### 정치/인물

##### 수원에 있는 사신 백언의 본집을 수리하다

명을 내려 수원(水原)에 있는 사신 백언(白彦)의 본집을 수리하고, 윤중부(尹重富)와 백언의 친형 백용(白龍)에게 의복과 갖과 신을 내리고, 의주(義州)에 가서 사신을 마중하게 하였다.

○命修理使臣白彦水原本家， 尹重富及白彦親兄白龍， 給衣服笠靴， 迎使臣于義州。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2월 15일(기묘) 4번째기사>

#### 정치/인물

##### 백언이 수원부로 아버이를 뵈러 가니, 권진 등에게 전송하게 하다

백언(白彦)이 수원부(水原府)로 아버이를 뵈오러 가니, 윤봉(尹鳳)이 한강(漢江)에서 전송하였다. 임금이 접반사 찬성 권진(權軫)·참찬 최윤덕(崔潤德)·좌대언 조종생(趙從生) 등에게 명하여 가서 전송하게 하니, 백언이 말하기를, “대궐에 들어가서 하직하는 예(禮)를

행했어야 옳을 것을, 다만 전하께서 수고하실까 염려스럽고, 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멀지 않은 까닭으로 궐례(闕禮)하고 가니, 이 뜻을 전하께 전달해 주셨으면 하오.” 하였다.

○丁卯/白彦觀親于水原府，鳳餞于漢江．上命接伴使贊成權軫·參贊崔潤德·左代言趙從生等往餞之．彦曰：“詣闕辭行，禮則然矣，第恐殿下動勞．且往返不遠，故闕禮而行，幸達此意於殿下．”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4월 4일(정묘) 1번째기사>

#### 정치/인물

**백언이 수원에서 돌아오니 윤봉이 한강에서 영접하다**

백언(白彦)이 수원(水原)에서 돌아오니, 윤봉(尹鳳)이 한강(漢江)에서 영접하였다. 임금이 참찬 허조(許稠)·판서 정진(鄭津)·좌대언 조종생(趙從生) 등을 보내어 연회를 베풀어 그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白彦來自水原，尹鳳迎于漢江．上遣參贊許稠·判書鄭津·左代言趙從生等，設宴慰之．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4월 17일(경진) 2번째기사>

#### 정치/인물

**백언이 수원의 아버지를 뵈고자 하니 총제와 지신사를 보내어 머물게 하다**

백언(白彦)이 또 수원(水原)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뵈옵고자 하니, 임금이 총제 원민생(元閔生)과 지신사 곽존중(郭存中)을 보내어 머물게 하였다. 백언이 대답하기를, “자식으로서 평상시에 비록 2, 3일 동안 아버지를 떠나 있어도 오히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나는 젊을 때에 <중국에> 입조하여 이제는 벌써 25년이나 되었소. 그 간 전하를 사모하는 마음과 부모님을 생각하는 정리(情理)는 일찍이 잠시라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다행히 이제 전하의 성덕을 힘입고 왔으니 그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나 어찌 능히 오래 가겠소. 또 후일에 다시 올는지 못 올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부모를 조석으로 받들어 모시고자 하는 것이오.” 라고 하니, 곽존중이 말하기를, “대인(大人)의 말씀이 옳습니다. 중국에 입조한 지 25년 만에 돌아오셨으니, 대인의 행차가 진실로 쉽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전하께서도 대인을 머물게 하여 환정(歡情)을 나누게 하신 것이니, 전하의 성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백언이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천천히 가겠소.” 하였다.

○白彦又欲歸觀于水原，上遣摠制元閔生·知申事郭存中，留之，彦答云：“人子於常時，雖隔二三日離親，尚念親之不已，而況吾於少時入朝，今已二十五歲矣．其間向仰殿下之心·思戀父母之情，未嘗頃刻而忘于懷．幸今賴殿下聖德而來，其喜可量，然焉能久哉？且後日更來與否，未可知也．其未還之前，吾欲奉侍朝夕．” 郭存中曰：“大人之言是矣．入朝二十五年而還，大人之行，誠不易矣．是以殿下亦欲留大人講歡，殿下之誠心，其可遏乎？” 彦曰：“是吾當徐之．”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4월 26일(기축) 3번째기사>

#### 정치/인물

**백언이 수원부로 아버지를 뵈러 가니 최윤덕 등에게 한강에서 전송하게 하다**

백언(白彦)이 수원부(水原府)로 아버지를 뵈러 가니, 윤봉(尹鳳)이 이태원(利太院)에서 위로하여 보내었다. 참찬 최윤덕(崔潤德)·병조 판서 이발(李潑)·좌대언 조종생(趙從生) 등

을 명하여 한강(漢江)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戊申/白彦觀親于水原府，尹鳳慰送于利太院．命參贊崔潤德·兵曹判書李潑·左代言趙從生，餞于漢江．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5월 15일(무신) 1번째기사>

#### 정치/인물

수원에서 돌아오는 백언을 한강에서 맞이하여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게 하다

사신 백언(白彦)이 수원(水原)에서 돌아오므로，찬성 권진(權軫)·판서 정진(鄭津)·대언 김자(金赭)를 보내어 한강(漢江)에서 맞이하여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使臣白彦回自水原，遣贊成權軫·判書鄭津·代言金赭，迎于漢江，設慰宴．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6월 19일(신사) 3번째기사>

#### 정치/인물

찬성 권진 등이 백언이 수원을 내왕하며 수원이 폐해를 받음을 아뢰다

찬성(贊成) 권진(權軫)과 판서(判書) 허조(許稠)가 계하기를，“백언(白彦)이 수원(水原)을 내왕하므로，다만 수원만 농사를 폐지할 뿐 아니라 가까운 각 고을에도 모두 그 해를 받게 되니，청컨대 그 어머니를 서울로 불러 집을 주신다면 한 도(道)의 폐해를 덜 수 있을 것이며，백언도 또한 서울 집을 얻은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니，임금이 말하기를，“연전(年前)에 굳이 청하였어도 되지 않았는데，지금 만약 이같이 한다면 옳지 못하지 않겠는가．백언이 나에게 와서 다시 청하기를 기다려서，후에 서울로 오게 함이 옳겠다．” 하였다．이에 고 목사(牧使) 허반석(許盤石)의 집을 수리하게 하여 백언의 어머니를 거처하게 하고，또한 미두(米豆)·소금·장·어육·즙기(什器)·이불·요·포진(鋪陳)과 공급노비(供給奴婢)를 내려 주었다．

○贊成權軫·判書許稠啓曰：“白彦水原來往，非獨水原廢農，傍近各官，皆受其害．請招置其母，賜第於京，則可除一道之弊，彦亦喜其得京第矣．” 上曰：“年前固請不得，今若如此，無乃不可乎？待彦來，予更請，然後使之來京可也．” 於是命修故牧使許盤石家，使居白彦母，且賜米豆鹽醬魚肉什器衿褥寢席鋪陳及供給奴婢．

<세종실록 35권, 세종 9년 3월 28일(병진) 3번째기사>

#### 정치/인물

백언이 성묘하러 수원으로 가니，권진 등을 보내 한강루에서 위로하다

백언(白彦)이 부친의 뒤편에 성묘하러 수원으로 가매，창성(昌盛)이 한강까지 배웅하고，찬성 권진(權軫)·호조 판서 안순(安純)·좌대언 김맹성(金孟誠)을 명하여 한강루(漢江樓)에서 위로하여 보내었다．

○白彦以父墳拜掃，往水原，昌盛送于漢江．命贊成權軫·戶曹判書安純·左代言金孟誠，慰送於漢江樓．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5월 6일(계사) 3번째기사>

#### 정치/인물

동지총제 송희미를 보내 수원에 있는 백언에게 선운을 내리다

동지총제 송희미(宋希美)를 보내어 선운(宣醞)을 가지고 수원(水原)에 가서 백언(白彦)을

위로하게 하였다.

○丁酉/遣同知摠制宋希美，齎宣醢，慰白彦于水原.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5월 10일(정유) 1번째기사>

정치/인물

백언이 수원에서 오니 권진 등을 보내 한강루에서 맞이하여 위로 잔치를 하다

백언(白彦)이 수원(水原)에서 오는데, 찬성 권진(權軫)·공조 참판 이천(李戡)·좌대언 김맹성(金孟誠)을 명하여 한강루(漢江樓)에서 맞이하여 잔치로 위로하게 하였다.

○庚子/白彦來自水原，命贊成權軫·工曹參判李戡·左代言金孟誠，往迎於漢江樓，宴慰之.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5월 13일(경자) 1번째기사>

정치/인물

수원부에 관노비 10호를 주라고 명하다

수원부(水原府)에 관노비(官奴婢) 10호(戶)를 주게 하였으니, 백언(白彦)이 수원(水原)을 자기의 본향이라 하여 관호(官號)를 높여 달라 하였으나, 관호가 원래 높으므로 노비로써 청을 막은 것이었다.

○命給水原府官奴婢十戶. 白彦以水原本鄉，請加官號，官號本高，故以奴婢塞請.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5월 21일(무신) 5번째기사>

정치/인물

백언의 모친이 수원으로 돌아가는데, 쌀과 콩을 내리다

백언(白彦)의 모친이 수원(水原)으로 돌아가는데, 쌀과 콩 각 20석을 내리었다. 당초에 백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그가 수원을 내왕하면 역로가 분주할 것과 각 고을에서 접대하는 폐단을 염려하여, 그의 모친을 서울에 올라오게 하여 집과 하인들과 세간들을 주어서 흡족하게 대접하였는데, 백언이 전번에 입국했을 때는 지난해에 사랑하던 수원의 기생을 생각하여, 전날에는 선영에 제사드린다는 핑계로 갔다 왔고, 이제는 가고 싶으나 이유가 없으니 모친을 고향 집에 돌아가 있게 하려고 했는데, 모친이 괴롭다고 사피하는 것을 언이 억지로 돌아가게 한 것이었다.

○白彦之母歸水原，賜米豆各二十石. 初白彦之未入國也，慮其來往水原，驛路奔走，各官支持之弊，致其母於京，給家舍與奴婢調度，優以待之. 白彦既至，不忘往歲所愛水原娼妓，前日托以掃墳而歸，至是欲去無由，則使母還家，母辭以勞苦，彦強之歸.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7일(갑술) 5번째기사>

정치/인물

백언이 수원으로 돌아가다

백언이 수원으로 돌아갔다.

○乙亥/白彦歸水原.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18일(을해) 1번째기사>

정치/인물

수원에 있는 백언에게 선운을 내려 위로케 하다

총제 송희미(宋希美)를 보내어 선은(宣醞)을 가지고 수원(水原)에 가서 백언(白彦)을 위로 하게 하였다.

○遣摠制宋希美齎宣醞，慰白彦于水原。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24일(신사) 2번째기사>

#### 정치/인물

**백언이 수원에서 돌아오니, 한강에서 위로연을 열도록 하다**

백언(白彦)이 수원(水原)에서 돌아오니, 찬성 권진(權軫)·참판 김맹성(金孟誠)·우부대언 이사후(李師厚)에게 명하여 한강에서 위로연을 열도록 하였다.

○白彦還自水原，命贊成權軫·參判金孟誠·右副代言李師厚，慰宴于漢江。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7월 14일(경자) 4번째기사>

#### 정치/인물

**전 도총제 이지강의 졸기**

전 도총제 이지강(李之剛)이 돌아갔다. 지강(之剛)의 자는 중잠(仲潛)이요, 본관(本貫)은 광주(廣州)이니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이집(李集)의 아들이다. 임술년에 과거에 올라 여러 번 천직되어 의정부 사인과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 정해년에 태종이 문신을 중시(重試)하는데 을과(乙科) 7인에 합격하여 예문관 직제학·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에 임명되고, 나가서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고, 들어와서 예조 우참의가 되어 이조 좌참의에 천직되고, 예문관 제학으로 승진되고, 한성부 윤·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형조 참판·호조 참판·평안도 감사·예조 판서·의정부 참찬 겸 대사헌을 역임하고, 중군 도총제로서 관직을 그만두고 병을 수양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돌아가니 나이 65세이었다. (…)

○前都摠制李之剛卒。之剛字仲潛，廣州人，判典校寺事集之子也。壬戌登第，累遷議政府舍人·司憲掌令。丁亥，太宗重試文臣，中乙科七人，拜藝文館直提學·判繕工監事，出守水原府，入爲禮曹右參議，遷吏曹左參議，陞藝文館提學，歷漢城府尹·慶尙道都觀察使·刑戶曹參判·平安道監司·禮曹判書·議政府參贊兼大司憲。以中軍都摠制，辭職養病，至是卒，年六十五。(…)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12일(정묘) 2번째기사>

#### 정치/인물

**명에서 요구하는 환관 마련을 위해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판부사(判府事) 허조(許稠)에게 이르기를, “성지(聖旨)를 듣건대, 불알을 깬 환자(宦者)를 구한다 하는데, 우리나라 궁중에는 본래 불알을 깬 내수(內豎)가 없으니, 이 뜻을 일러 보내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아조(我朝)의 궁중에서는 거동을 바르게 해야 하므로 남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 없으니, 어찌 명나라[上國]에서 알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마땅히 근시(近侍)하는 내수(內豎)를 보낼 것입니다.” 하였다. 찬성(贊成) 권진(權軫)도 아뢰기를, “아조(我朝)에 불알을 깬 환관(宦官)이 비록 없지만, 그러나 없다고 거절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내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조가 또 아뢰기를, “지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기어 위 아래의 분별[上下之分]이 분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심언(閔審言)이 일찍이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 민도경(閔道經)이 본부(本部)의

부리(府吏)를 업신여기고 육보인 것이 몹시 심하였으며, 동파 역자(東坡驛子) 박용(朴龍)과 황해도(黃海道) 화척(禾尺)의 일은, 모두 옛날에는 듣기 드물던 일들로서, 한결같이 풍속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 만일 윗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다면, 청컨대 등수를 더하여 죄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癸巳) [癸亥] / 視事. 上謂判府事許稠曰: “聞聖旨求割肉宦者, 我國宮中, 本無割肉之豎, 教而遣之何如?” 稠曰: “我朝宮壺之內, 動必以正, 無不可對人言者, 何慮上國之知也? 宜教近侍之豎以遣.” 贊成權軫亦曰: “我朝雖無割肉之宦, 然以無爲辭, 則恐未信也, 莫若遣之.” 上曰: “然.” 稠又啓: “今以下陵上, 上下之分, 至爲不明. 閱審言嘗爲水原府使, 其子道經本府, 府吏陵辱太甚. 東坡驛子朴龍·黃海道禾尺之事, 皆古所罕聞, 風俗一至於此. 自今如有陵上者, 請加等罪之.” 上曰: “然.”

<세종실록 41권, 세종 10년 7월 13일(계해) 1번째기사>

### 정치/인물

#### 명나라 사신 김만이 수원부 이속인 최득비에게 내리는 제문 및 제물을 받들고 오다

명나라 사신 김만(金滿)이 소경(少卿) 최득비(崔得罪)에게 내리는 제문 및 제물을 받들고 왔다. 임금이 세자 및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루(慕華樓)로 거둥하여 영접하고, 태평관에 이르러 하마연(下馬宴)을 베풀고 궁으로 돌아왔다. 지신사 정흠지(鄭欽之)를 보내어 사신에게 안장 갖춘 말과 갓·신 및 옷 한 벌을 기증하였는데, 말은 총마(驄馬)가 아니라 하여 받지 않고, 또 말하기를, “두목(頭目)에게 주는 의복과 안마(鞍馬)를 내가 직접 받아서 나누어 주겠다.”

하더니, 바로 또 말하기를, “내가 지금 취하여 나누어 주지 못하겠으니 내일 다시 가져 오라.” 하였다. 득비는 본래 수원부(水原府)의 이속(吏屬)이었는데 그 딸이 명나라로 들어간 까닭으로 소경(少卿)에 임명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천함을 잊고 오만 무례하였다.

○癸卯/使臣金滿, 齎賜少卿崔得罪祭文及祭物以來, 上率世子及百官, 迎于慕華樓, 至太平館, 設下馬宴還宮. 遣知申事鄭欽之, 贈使臣鞍馬·笠靴及衣一襲. 馬則以非驄馬不受, 且曰: “贈頭目衣服鞍馬, 吾親授之.” 既而曰: 「吾今醉矣, 未能分授, 明日更齎來.» 得罪, 本水原府吏也. 以女入朝之故, 得拜少卿, 然忘其微賤, 倨傲無禮.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2월 26일(계묘) 1번째기사>

### 정치/인물

#### 한 번에 세 아이를 낳은 수원사람 박춘경의 첩에게 쌀·콩을 내리다

수원 사람 박춘경(朴春卿)의 첩이 한 번에 세 사내아이를 낳으니, 명하여 쌀·콩을 합하여 3석을 내려 주었다.

○壬辰/水原人朴春卿妾一產三男, 命賜米豆共三石.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2일(임진) 1번째기사>

### 정치/인물

#### 살인한 수원 죄수 조칙금을 교형에 처하게 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수원 죄수 조칙금(趙則金)이 살인을 하였으니, 율이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刑曹啓：“水原囚趙則金殺人，按律當絞。”從之。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9월 1일(무자) 5번째기사>

## 정치/인물

### 좌참찬 조계생 졸기

좌참찬 조계생(趙啓生)이 졸하였다. 계생의 자는 경부(敬夫)이니, 본관은 양주(楊州)이었다. 무진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檢閱), 춘추관 수찬(修撰)을 거쳐, 삼사(三司)의 도사(都事)에 승진하였고, 이천현(利川縣) 수령으로 천녕(川寧)을 겸임한 바 있으며, 사헌부 감찰에 임명되었다가 평택현(平澤縣) 수령으로 나갔고, 다시 계림 판관(鷄林判官)이 되었었다. 이어 좌정언·지평·의정부 사인(舍人)·예문관 직제학·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수원 부사(水原府使)를 역임하였고, 사간(司諫)·참의를 거쳐 판원주사(判原州事)로 나갔다가, 인수부 윤(仁壽府尹)에 임명되었다. (...)

○乙未/左參贊趙啓生卒. 啓生字敬夫, 楊州人. 戊辰, 中第, 歷藝文春秋檢[關] [閱]脩撰, 陞三司都事, 守利川縣, 兼任川寧, 拜司憲監察, 守平澤縣. 又爲雞林判官, 歷左正言·持平·掌令·議政府舍人·藝文直提學·判軍資監事. 守水原府, 歷司諫·參議, 出判原州, 拜仁壽府尹. (...)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9월 14일(을미) 1번째기사>

## 정치/인물

### 좌의정 맹사성 졸기

좌의정 그대로 치사(致仕)한 맹사성(孟思誠)이 죽었다. 사성의 자(字)는 자명(自明)이며 신창(新昌) 사람이었다. 병인년에 을과(乙科) 첫째로 발탁되어 춘추관 검열(春秋館檢閱)에 보직되었고, 여러 번 승진하여 전의 승(典儀丞)·기거 사인(起居舍人)·우헌납(右獻納)이 되고, 나아가서는 수원 판관(水原判官)이 되고 옮겨서는 면천 군수(沔川郡守)가 되었다 (...)

○左議政仍令致仕孟思誠卒. 思誠字自明, 新昌人. 丙寅, 擢乙科第一人, 選補春秋檢閱, 累遷典儀丞·起居舍人·右獻納, 出爲水原判官, 移知沔川. (...)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0월 4일(을묘) 3번째기사>

## 정치/인물

수원사람 황물금이 흰 평을 바치니 하례하지도 예조에 알리지도 말라 이르다

경기도 수원(水原) 사람 황물금(黃勿金)이 흰 평을 바치니,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근년에는 이 물건이 자주 있게 되니 실로 상서가 아니다. 그것을 하례하지 말고, 또 예조에게 이를 알리지도 말라.” 하였다.

○丙申/京畿水原人黃勿金獻白雉. 上謂承政院曰：“近年此物比比有之, 實非瑞也. 其勿賀, 且毋令禮曹知之.”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4월 6일(병신) 1번째기사>

## 정치/인물

### 수성군 최유림의 졸기

수성군(隴城君) 최유림(崔有臨)이 졸(卒)하니, 조제(弔祭)와 예장(禮葬)을 예(例)와 같이 하였다. 최유림은 수원(水原)사람으로, 경태(景泰) 경오년에 무과(武科)에 합격하여 고성



현령(固城縣令)·의금부 진무(義禁府鎭撫)를 역임하였다. (…)

○隨城君崔有臨卒，弔祭·禮葬如例。有臨，水原人。景泰庚午，中武科，歷固城縣令·義禁府鎭撫。(…)

<성종실록 11권, 성종 2년 8월 28일(무진) 5번째기사>

## 정치/인물

### 하원군 장정의 졸기

정국 공신인 하원군(河源君) 장정(張珽)이 졸(卒)하였다. 장정은 사람됨이 엄정(嚴正) 결백하고 군사상의 책략과 관리로서의 재간이 있었으므로 당시에 특별히 발탁되어 여러 번 수령이 되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업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아전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사모하여, ‘네 눈을 가진 원’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명확한 판별(判別)을 이룬 것이다. 폐조 말년에 정치가 번거롭고 조세가 과중했는데, 경기 수원(水原)이 피폐됨이 더욱 심하니, 감사 박원종(朴元宗)이 장정으로 부사(府使) 삼기를 청하였다. 장정이 부임하는 날로 곧 예전부터 내려온 폐해를 고쳐 없애고, 전씨(田氏)·장씨(張氏)【전씨·장씨는 모두 폐주(연산군)의 숙원(淑媛)임.】의 종들이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을 배격하니, 경내의 백성들이 다 흡족히 여겨 칭송하였다.

제임한 지 수일 만에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여 체직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지금도 사모하고 기뻐하고 있다. (…)

○靖國功臣河源君張珽卒。珽爲人嚴潔，有武略吏幹，特拔一時，屢爲守宰，所至皆有聲績。吏民畏愛之，以爲，‘四目太守。’謂其明辨也。廢朝末年，政煩賦重，京畿水原，疲弊尤甚，監司朴元宗請以珽爲府使。珽至之日，卽革祛舊弊，排擊田·張【田·張皆廢主淑媛也。】奴子爲民害者，境內洽然稱之。居數日，以母喪見遞，民至今慕悅。(…)

<중종실록 5권, 중종 3년 3월 22일(기미) 4번째기사>

## 정치/인물

### 이행의 일에 관한 수원 부사 이성언의 상소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성언(李誠彦)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다.

“신이 외읍(外邑)에서 듣건대, 조정에서 이행(李荇)이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나라를 그르칠 것이라 하여 폄척(貶斥)해서, 이행이 곧 공순히 물러가서 시골로 아주 돌아갔다 합니다. 아, 이행 같은 사람이 성명(聖明)의 세상에서 용납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악명(惡名)을 얻었으니, 신은 마음 아파 견딜 수 없습니다. (…)”

사신은 논한다. 성언(誠彦)은 등제(登第)할 때에 홍문관(弘文館)의 상소를 표절하여 겨우 합격하였다. 지금 이 소(疏)의 말은 광패(狂悖)한 데가 많으나 문세(文勢)는 순하니, 반드시 이성언에게 부회(傳會)하는 자가 지었을 것이다. 혹 이사균(李思鈞)이 지은 것이라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壬子/水原府使李誠彦上疏。略曰：臣在外邑，聞朝廷以李荇在樞要之地，則必誤國，貶斥之，荇卽奉身而退，永歸田里。噫！以荇而不得容於明世，得如是之惡名也，臣不勝痛心焉。(…)

【史臣曰：“誠彦登第之時，剽竊弘文館上疏，而僅得中之。今此疏語，多狂悖，文勢則順，必傳會誠彦者作之耳。或以爲，李思鈞所製，未可詳也。”】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0일(임자) 1번째기사>

정치/인물

헌부에서 예빈봉사 이능과 수원 부사 신연을 파직하도록 청하니 윤택하지 않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예빈 봉사(禮賓奉事) 이능(李菱)은 몸가짐을 삼가지 않아, 심지어 남의 처를 빼앗아 첩을 삼기까지 하였으니 속히 사판에서 삭출(削黜)하소서. 또 수원 부사(水原府使) 신연(申淵)은 성질이 본래 탐비하여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음악을 잡히고 술마시기를 즐겨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니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택하지 않았다.

○臺諫啓前事. 憲府啓: “禮賓奉事李菱, 持身不謹, 至奪人妻爲妾. 請速削黜仕版. 水原府使申淵, 性本貪鄙, 不恤民隱, 張樂崇飲, 民甚怨苦. 請罷.” 皆不允.

<중종실록 35권, 중종 13년 12월 3일(무진) 2번째기사>

정치/인물

대간이 판윤 한형윤과 수원 부사 김계우를 체직하도록 청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판윤(判尹) 한형윤(韓亨允)은 일을 다스릴 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수상(守喪)을 삼가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륜(人倫)에 아주 관계가 깊어 절대로 사소한 과실이 아니오니, 육경(六卿)의 반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수원 부사 김계우(金季愚)는 인물이 용렬하여 결코 직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체직하소서.”

하니, 한형윤·김계우·이난의 일은 윤택하고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았다.

○甲戌/臺諫啓前事, 又啓曰: “判尹韓亨允, 非不能治事, 然守喪不謹. 此最關於人倫, 固非細過, 不宜居六卿之秩. 水原府使金季愚, 人物庸劣, 決不堪任. 請遞之.” 韓亨允·金季愚·李蘭事, 依允. 餘不允.

<중종실록 35권, 중종 13년 12월 9일(갑술) 1번째기사>

정치/인물

수원 부사 신연의 죄를 감하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신연(申淵)의 죄를 감하도록 명하였다. 연이 수원 부사 때에 부(府)의 종이 교생(校生)의 아내를 강간했었는데, 연이 화간(和姦)으로 논하여 짐짓 그 죄를 벗어나게 하였으니, 유사(有司)가 마땅히 장 1백(杖一百) 유 삼천리(流三千里)로 해야 하는데, 다만 고신(告身) 삼등(三等)을 빼앗았었다.

○命減水原府使申淵罪. 淵, 爲水原府使, 府奴强奸校生妻, 淵論以和奸, 故出其罪. 有司當以杖一百·流三千里, 只奪告身三等.

<중종실록 36권, 중종 14년 5월 19일(신해) 5번째기사>

정치/인물

수원부사 강욱의 죄상과 전 수원부사 신여종의 죄를 언급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동지(同知) 강섬(姜暹) 【성품이 경박하고 비루하며 행신이 조심스럽지 못했다. 전에 수묘관(守墓官)이었을 때, 비루하고 사소한 일들을 많이 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했고,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갔을 때는, 비단을 많이 사왔었다. 그의 형 강욱(姜昱)이 수원 부사였을 때, 부(府)에 원악(元惡)이 있어 관리가 이를 잡아 가두고 사형에 처하기로 되었었는데, 강섬이 뇌물을 받고 강욱에게 부탁해 놓아 주었다. 그 무상함이 이와 같다.】 은 순회 세자(順懷世子)의 수묘관으로서 소상(小祥) 때에 가의 대부(嘉義大夫)를 제수받았고,

또 대상 때에 자헌 대부(資憲大夫)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비록 성상께서 순회 세자를 위해 특별한 은전(恩典)을 베푸는 지극한 정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예문(禮文)에는 등급의 차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은수(恩數)도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자의 수묘관은 본디 대왕의 수릉관(守陵官)과 더불어 그 은상(恩賞)을 같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의 등급을 무시하고 혼란하게 은수를 베푼다면 작상(爵賞)이 헛되어 남용되어 사람을 권장할 방법이 없게 될 뿐 아니라 또한 후세에서도 논의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당초 수묘관을 차출하여 정할 때, 2품(品)의 사람으로 계하(啓下)하기까지 하였으나 여론이 모두 온당치 못하다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헌 대부의 증가(重加)를 제수하니 여론이 더욱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강섬에게 자헌을 가자(加資)한 것을 개정하소서.

(…) **강원 감사(江原監司) 신여중(申汝悤)** 【사람됨이 옳고 그른 것에 어두웠다. 윤춘년(尹春年)과 교분을 맺어 청현직(淸顯職)을 같이 역임했고 재상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미 식자들에게는 기룡을 받아 왔다. 전에 감사였을 때는, 심통원(沈通源)의 간찰(簡札)을 대필해 주어 듣는 사람들이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 **이 전에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있을 때, 본부에 사는 사노(私奴) 표륜(表倫)이 자기의 주인인 윤원형의 위세를 믿고,** 남의 토지·노비·우마 등을 빼앗기도 하고 양인 여자 가운데 미색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겁탈 강간하는 등 그 흉악함이 극에 달하여 못하는 것이 없어서 본읍 및 인근 고을 백성들이 그 침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읍주(邑主)가 된 이는 마땅히 이를 살피 다스려야 할 터인데, 신여중은 그 세력이 두려워 모르는 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효원(兪孝元)이라 칭하는 자가 표륜의 무고로 본부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에는, 한 차례 형을 받은 뒤였는데, 많은 반노(班奴)들을 데리고 옥중에 멋대로 들어가 유효원을 난타해 전신에 상처를 입히고 이어 죽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시말은 유효원의 시친(屍親) 정삼재(鄭三才)의 소장에 전부 드러나 있습니다. **신들이 수원의 형옥 이줄을 잡아들여 추힐(推詰)하였더니, 표륜의 타살임이 명백하여 의심이 없었습니다.** 신여중은 한 읍의 주인이 되어 권세가의 종으로 하여금 관옥에 함부로 들어가 인명을 타살하게 하여 놓고도 권세에 겁을 내 이를 감추고 불문에 부쳤으니, 그 죄가 큼니다. 그런데 지금도 편안히 날을 보내며 태연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이를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방백(方伯)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직을 파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강섬에게 특별히 가자한 것은 내가 이미 생각해서 제수한 것이니, 개정할 필요가 없다. 윤택하지 않는다. 도승지가 한 달 사이에 연이어 가자(加資)된 것이 갖기는 갖다. 그러나 전에 제조를 으레 모두 가자하였는데 홀로 가자를 제수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 아울러 가자를 제수한 것이다. 윤택하지 않는다. 신여중은 파직은 파한 것 같으니 체차만 하라. 이숙남을 영구히 서용하지 말라 함은 지나치게 무겁다. 사람을 다스림에 어찌 이와 같이 심하게 하겠는가. 파직하고 서용하지 않음이 좋겠다. 영구히 서용하지 말라 함은 윤택하지 않는다. 나머지 일들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憲府啓曰：“同知姜暹【性輕佻麤鄙，行身不謹。頃爲守墓官時，多行鄙陋。細瑣之事，以利於己。奉使朝京，多貿綾段。其兄昱爲水原府使，府有元惡吏，被囚當死，暹受其賂，囑諸昱，放之。其無狀類此。】以順懷世子守墓官，於小祥得授嘉義，又於大祥陞資憲。此雖出於聖上爲順懷，別施恩典之至情，而禮文不能無等級之殊，恩數又從而異焉，則世子守墓之官，固不得與大王守陵官，同其恩賞也。若不顧禮之等級，而混施恩數，則非徒爵賞虛濫，無以勸人，而亦不得無議於後世矣。當初守墓官差定時，至以二品之人啓下，物情皆以爲未便，而今授資憲重加，物情尤爲未便。請姜暹資憲加改正。(…)江原監司申汝悤，【爲人眩於是非。與尹春年交結，同

踐清顯，馴致宰列，已取譏於有識。頃爲監司時，捧沈通源簡而爲之，聞者鄙之。】前爲水原府使時，本府居私奴表倫，恃其主尹元衡威勢，或奪人土田，或奪人奴婢，或奪人牛馬。聞良民女子有色，則必規奪強奸，窮兇極惡，無所不至。本邑及隣近官百姓，不勝其侵害。爲邑主者，所當按治，而汝惊畏其勢焰，若不聞知。至於俞孝元稱名人，以表倫之誣訴，被囚於本府，受刑一次之後，多率班奴，擅入獄中，亂打孝元，滿身有傷，仍致物故。事狀首末，備露於孝元屍親鄭三才之訴狀，**臣等捉致水原刑獄吏卒，而推詰，則表倫之打殺，明白無疑。**汝惊身爲一邑之主，使勢家奴子擅入官獄，打殺人命，而怯於權勢，掩匿不發，其罪大矣。而至今安心度日，恬不爲恥，物情痛憤。不可任其方伯，請罷其職。(…)" 答曰：“姜暹特加事，予已量授，不必改正，不允。都承旨一朔內連受加資，數則數矣，而前者提調，例皆加資，獨不授加，亦似異焉，故竝授加矣，不允。申汝惊罷職似過，只遞差。李叔男永不敍用太重。治人何至如此之甚乎？罷職不敍可也。永不敍用，則不允。餘事如啓。”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10월 12일(을해) 3번째기사>

### 정치/인물

#### 지평 송응순이 어미의 병환으로 군량미 운송 감독에 소홀한 최천건의 파직을 청하다

지평 송응순(宋應洵)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남쪽 지방에는 군량미를 관리 감독하는 일이 일각이 시급합니다. 그러니 그 책임을 맡은 신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호조 참의(分戶曹參議) 최천건(崔天健)은 수원에 살고 있는 어미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뻘뻘스럽게 장계만 올린 채 하명은 기다리지도 않고 제멋대로 즉시 돌아갔으니, 공사(公事)를 먼저 하고 사사(私事)를 뒤로 미루는 의의를 크게 잃었습니다.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고하소서.

오늘날 수령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병환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監司)로서는 당연히 상세히 살펴서 정말로 병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 감사 황신(黃愼)의 장계를 보건대, 진원(珍原)의 공형(公兄)이 올린 서장 1통에 의거하였을 뿐, 자세히 살펴지 않고 느닷없이 병세가 이와 같다고 칭하면서 현감(縣監)을 파직시키도록 아뢰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조치입니다. 감사 황신을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최천건의 일은 사실이 그렇다면 기피하는 습성이 없지 않으니 파직하지 말고 추고만 하라.” 하였다.

○持平宋應洵來啓曰：“今者南方，管督糧餉，一刻爲急，受任之臣，雖有切迫之情，不可徑自馳還。分戶曹參議崔天健，聞其母在水原病重，偃然狀啓，而不待命下，任意徑還，殊失先公後私之意。請命先罷後推。此時守令，多有厭避之人。雖曰疾病，爲監司者，所當十分詳察，的知其實病，然後處之，而今見全羅監司黃愼狀啓，則只據珍原公兄文狀一道，不加審問，遽稱病勢如此，啓罷縣監，極爲未便。監司黃愼，請命推考。” 答曰：“依啓。崔天健事，若如是，則不無成其厭憚之習。勿爲罷職，只推考。”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6일(경인) 2번째기사>

### 정치/인물

#### 약방 제조 최천건이 문안하다

약방 제조(藥房提調)가 **【최천건(崔天健)은 수원인(水原人)이다.** 소년에 등과하였으나 지체가 낮음으로 인해 오랫동안 성균관에 묻혀 있었다. 난(亂) 후 인제가 걸핍되었을 때에 명류(名流)를 마치 노예처럼 아첨해 섬기면서 없으면 떠나고 권세가 있으면 붙좃아 항상 좋은

벼슬을 잃지 않았다. 또 재지가 있어 남의 비위를 잘 맞춤으로써 상이 그를 총애하여 나이 겨우 30세에 재신(宰臣)의 반열에 발탁되었다. 그러므로 물의가 시끄럽게 일어나 침벨고 욕하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사임하지 않고 당연한 일처럼 여겼으니, 이 어찌 심히 우매한 자가 아니겠는가.】 아뢰기를, “근래 더위가 극심한데 옥체가 어떠하십니까?” 하니, 평안하다고 전교하였다.

○藥房提調【崔天健，水原人也．年少登第，以門地之卑，久潛國子承．亂後乏人之際，諂事名流，有同奴隸，去冷就炎，常不失美官．且有才慧，善逢迎，上頗幸之．年纔三十，擢置宰列，物議譁然，莫不唾罵，而不能辭解，若固有之，豈非小黠大癡之甚者也?】 啓曰：“近來暑熱大甚，未審玉候何如?” 傳曰：“平安.”

<선조실록 115권, 선조 32년 7월 2일(기유) 2번째기사>

### 정치/인물

#### 유경종이 수원의 농막에 있을 때 유몽인이 모함하는 정상이 있다고 호소하다

유몽인이 임진년에 어가(御駕)를 따라 평양(平壤)에 갔었는데 왜적이 이른다라는 말을 듣고 도망쳤으니, 이는 곧 임금을 망각한 사람이다. 일찍이 별성(別星)으로 관서(關西)에 가서 도사(都事) 성안의(成安義)의 첩인 영유(永柔) 고을 여인이 미색임을 듣고 그 고을로 달려가 별성의 위력으로 접간하여 탈취해 왔다가 그후 다시 조정견(趙庭堅)에게 빼앗겼다. 황해감사가 되었을 때에는 송화 현감(松禾縣監) 유제(柳梯)의 비(婢)가 미색임을 듣고 불러내어 접간하려는 것을 유제가 누차 막았는데 몽인은 끝내 나오게 하여 접간하고 말았으니 그의 음란함이 이와 같았다. 이는 미색을 좋아해서일 뿐만 아니라 유제가 곧 유영경(柳永慶)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경의 비부(婢夫)가 되어서 아침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당하관 때에 영유의 일로 인해 물의에 버림받은 바 되었었는데 진관(銓官)에게 애걸하여 응교가 되고 이어 당상관으로 승격되었다. 배은망덕이 곧 그의 평생 장기였다. 형의 사위 유경종(柳慶宗)이 일찍이 대간(臺諫)으로 권간의 일을 논박하다가 쫓겨나자 몽인은 그 누가 미쳐 노여움을 받을까 염려한 끝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경종의 비행을 극언하였으므로 경종이 통분함을 참지 못하다가 수원(水原) 농막에 가 있을 때 가까이 접촉하던 사람을 만나 몽인이 기회를 타 모함하는 정상에 대해 호소하였다고 한다.

○夢寅，壬辰年隨駕到平壤，聞賊至遁去，乃是忘君之人也．嘗以別星，往關西，聞都事成安義永柔妾白玉色美，馳入其縣，以別星之威，怯奸而奪來．厥後還爲趙庭堅所奪．爲黃海監司時，聞松禾縣監柳梯婢色美，喚出而欲奸，梯累拒之，夢寅必使出之，奸而後已，其淫縱如此．此則非但爲色，梯乃永慶之子，欲爲永慶婢夫，諂媚之計也．堂下時以永柔事，爲物議所棄，懇乞於銓官，得爲應教，因陞堂上，背恩忘德，乃其平生長技也．其兄壻柳慶宗，嘗以臺諫，論權奸事見斥，夢寅恐其累及而見忤，力言慶宗之非於諸處，慶宗不勝痛憤，去水原農舍時，爲見相切人，訴夢寅乘時構陷之狀云矣．

<선조실록 193권, 선조 38년 11월 30일(경자) 5번째기사>

### 정치/인물

#### 사간원이 전 수원 부사 김거병을 정죄하고 남윤함 등의 가자를 개정하기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전 수원 부사 김거병(金去病)은 본래 교활하고 간악한 사람입니다. 선혜청의 수미(收米)를 거두어들이는 때에 수송 마가(輸送馬價)라고 핑계대어 규정 외에 몇 대로 더 거둔 것이 7백여 섬에 이르렀으며, 수송하는 때에 이르러서는 부역에 조금이라도

빠진 자는 다 추려내어 억지로 수납하게 하였으므로, 읍민들이 모두 그를 잡아먹고 싶어하였습니다. 당초 대론(臺論)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기는 데에서 나왔었는데, 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풀어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탐하는 죄를 지은 자는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국문하여 자백을 받아내어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어찌 2품 재상의 반열이라고 하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고찰할 만한 문서 중에 마가(馬價)를 더 받은 문서는 분명히 구비되어 있고 나누어준 문서는 한 장도 없으며, 그 원정(元情) 중의 7백 섬 쌀도 빈틈없이 변통하지 못하였으니, 그 둔 곳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거병을 다시 잡아들여 국문하고, 본부(本府)의 감독관과 색리(色吏)도 아울러 잡아들여 마가로 받은 7백여 섬의 거처를 일일이 다 물어 사실을 조사하여 정죄함으로써 재물을 탐한 데에 관계되는 법을 밝히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거병은 이미 추핵하였으나 끝내 분명히 죄가 될 만한 실상을 찾지 못하였다. 남윤함이 그 물건을 사다가 바친 데에는 반드시 상을 내릴 만한 공이 있으므로 내가 이미 참작하고 살펴 처리한 것이니 번거로이 논하지 말라. 김직재 등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庚戌十二月十三日甲申司諫院啓曰：“前水原府使金去病，本以驕猾奸濫之人，宣惠廳收米收捧時，託以輸送馬價，規外擅捧，多至七百餘石，及其輸運之際，抄其微細闕役者，勒令輸納，一邑之民，欲食其肉。當初臺論實出於國人之所共憤，而入獄未久，旋蒙解放之命。凡罪干贓污則毋論品秩高下，所當嚴鞫得情，按律科罪，豈可諉以二品宰列而有所容貸乎？況可考文書中，馬價加捧文書則昭然俱在，而分給文書則曾無一張，其元情中七百石米，亦不能詳盡區處，其無置處可知。請金去病更爲拿鞫，本府監官·色吏，竝爲拿來，馬價米七百餘石去處，一一窮問，覈實定罪，以明贓污之法。(…)” 答曰：“金去病已爲推覈，終無的確可罪之實狀。南胤咸其所質納，明有必賞之功，予已參酌審處，勿爲煩論。金直哉等事，依啓。”

<광해군일기 36권, 광해군 2년 12월 13일(갑신)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인물

### 윤중삼의 즐기로 수원부사로 있으며 탐욕을 부렸다는 내용

윤중삼(尹重三)이 죽었다. 중삼은 이익만 좋아하고 염치를 모르는 자로서 유희분(柳希奮)과 혼인을 맺고 그를 통해 궁궐에 연줄을 대어 오로지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는 것만을 일삼았다. 임자년 옥사 때에 문사 낭청으로서 형난 공신(亨難功臣)에 들어 영평군(鈴平君)에 봉해졌다.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있으면서 탐욕을 부리고 제멋대로 행동했었는데 이 때에 와서 죽었다. 관곽을 지급하고 별도로 부의를 진하라고 명하였으며,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했던 자인데, 불행히 죽고 말았으니 진실로 애통한 일이다.’ 고 탄식하기까지 하였다.

○尹重三卒。重三頑鈍嗜利無恥(者也)，結婚柳希奮，因緣宮禁，專以阿意順旨爲事。以壬子獄事時問事郎，參亨難勳籍，封鈴平君。爲水原府使，貪污縱恣，至是死。命給棺槨，別致賻，至有“事不辭難，爲國盡心，不幸卒逝，良可痛悼”之歎。

<광해군일기 138권, 광해군 11년 3월 9일(임진) 2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인물

### 수원 부사 박자홍을 1년 더 유임할 것을 청하는 박수준 등의 상소

수원(水原)에 사는 진사 박수준(朴壽俊)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개는,> 부사 박자홍

(朴自興)은 <마음이 온화하여> 군사와 백성을 아끼고 보살폈는데 임기가 다 되었으니 1년만 더 유임시켜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정원에 올랐다.>

○庚申十二月初八日辛亥水原居進士朴壽俊等上疏, (大概:) “府使朴自興(心存愷悌), 愛恤軍民, 瓜期將迫, 願留一年(事, 呈政院).”

<광해군일기 159권, 광해군 12년 12월 8일(신해) 1번째기사>(중초본)

## 정치/인물

### 사간원이 전 수원 부사 김거병을 정죄하기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전 수원 부사 김거병(金去病)은 본래 교활하고 간악한 사람입니다. 선혜청의 수미(收米)를 거두어들이는 때에 수송 마가(輸送馬價)라고 핑계대어 규정 외에 몇 대로 더 거둔 것이 7백여 섬에 이르렀으며, 수송하는 때에 이르러서는 부역에 조금이라도 빠진 자는 다 추려내어 억지로 수납하게 하였으므로, 읍민들이 모두 그를 잡아먹고 싶어하였습니다. 당초 대론(臺論)은 실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기는 데에서 나왔었는데, 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풀어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탐하는 죄를 지은 자는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국문하여 자백을 받아내어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어찌 2품 재상의 반열이라고 하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고찰할 만한 문서 중에 마가(馬價)를 더 받은 문서는 분명히 구비되어 있고 나누어준 문서는 한 장도 없으며, 그 원정(元情) 중의 7백 섬 쌀도 빈틈없이 변통하지 못하였으니, 그 둔 곳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거병을 다시 잡아들여 국문하고, 본부(本府)의 감독관과 색리(色吏)도 아울러 잡아들여 마가로 받은 7백여 섬의 거처를 일일이 다 물어 사실을 조사하여 정죄함으로써 재물을 탐한 데에 관계되는 법을 밝히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거병은 이미 추핵하였으나 끝내 분명히 죄가 될 만한 실상을 찾지 못하였다. (…)” 하였다.

○甲申/司諫院啓曰: “前水原府使金去病, 本以驕猾奸濫之人, 宣惠廳收米收捧時, 託以輸送馬價, 規外擅捧, 多至七百餘石, 及其輸送之際, 抄其微細闕役者, 勒令輸納, 一邑之民, 欲食其肉. 當初臺論, 實出於國人之所共憤, 而入獄未久, 旋蒙解放之命. 凡罪干贓污, 則毋論品秩高下, 所當嚴鞫得情, 按律科罪, 豈可諉以二品宰列, 而有所容貸乎? 況可考文書中, 馬價加捧文書則昭然俱在, 而分給文書, 則曾無一張, 其元情中七百石米, 亦不得詳盡區處, 其無置處可知. 請金去病, 更爲拿鞫, 本府監官·色吏, 竝爲拿來, 馬價米七百餘石去處, 一一窮問, 覈實定罪, 以明贓污之法. (…)” 答曰: “金去病, 已爲推覈, 終無的確可罪之實狀. (…)”

<광해군일기 36권, 광해군 2년 12월 13일(갑신) 1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인물

### 윤중삼의 졸기로 수원부사로 있을 때 탐욕을 부렸다는 내용

윤중삼(尹重三)이 죽었다. 중삼은 이익만 좋아하고 엄치를 모르는 자로서 유희분(柳希奮)과 혼인을 맺고 그를 통해 궁궐에 연줄을 대어 오로지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는 것만을 일삼았다. 임자년 옥사 때에 문사 낭청으로서 형난 공신(亨難功臣)에 들어 영평군(鈴平君)에 봉해졌다.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있으면서 탐욕을 부리고 제멋대로 행동했었는데 이 때에 와서 죽었다. 관곽을 지급하고 별도로 부의를 전하라고 명하였으며,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했던 자인데, 불행히 죽고 말았으니 진실로 애통한 일이다.’ 고 탄식하기까지 하였다.

○尹重三卒. 重三嗜利無恥, 結婚柳希奮, 因緣宮禁, 專以阿意順旨爲事. 以壬子獄事時問事郎

廳，參亨難勳籍，封鈴平君。爲水原府使，貪污縱恣，至是死。命給棺槨別致賻，至有事不辭難，爲國盡心，不幸卒逝，良可痛悼之歎。

<광해군일기 138권, 광해군 11년 3월 9일(임진) 2번째기사>(정초본)

#### 정치/인물

##### 능성 부원군 구굉의 졸기

능성 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이 죽었는데 관재(棺材)를 하사할 것을 명하였다. 굉은 무인(武人)이다. 상의 외삼촌으로 정사 공신(靖社功臣) 1등에 녹훈되고 지위가 부원군에 이르렀으며 두 번에 걸쳐 병조의 장관을 지냈다. 일찍이 남한 산성이 포위되었을 때 은밀히 신경진과 그의 조카인 수원 방어사(水原防禦使) 구인후(具仁垆) 및 홍진도(洪振道) 무리와 도감 및 수원 군졸을 협박 유도하여 척화신(斥和臣)을 몰아냈으므로 사람들이 다 그를 미워하였으나 상당히 청렴하다는 이름이 있었다. 굉은 오랜 동안 훈련 대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죽자 인후(仁垆)로 대신하였다.

○己巳/綾城府院君具宏卒，命賜棺材。宏，武人也。以上之外舅，錄靖社一等，位至府院君，再長本兵。曾於南漢被圍之日，陰與申景禎及其姪水原防禦使具仁垆及洪振道輩，脅誘都監及水原軍卒，逼出斥和臣，人皆惡之，然稍有清名。宏久爲訓練大將，及卒以仁垆代之。

<인조실록 43권, 인조 20년 11월 3일(기사) 1번째기사>

#### 정치/인물

##### 좌윤 이정기의 졸기

좌윤 이정기(李廷夔)가 죽었다. 이정기는 당시에 명망이 있기는 하였으나 다른 재능이 없고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청렴하다는 명성이 없었다. 일찍이 수원부를 맡았을 때에 어사에게 탄핵받았는데, 사람들이 이를 단점으로 여겼다.

○左尹李廷夔卒。廷夔雖有時望，而無他材能，居官又無廉聲。曾任水原府，爲御史所舉劾，人以是短之。

<현종실록 19권, 현종 12년 4월 10일(신묘) 2번째기사>

#### 정치/인물

##### 한성부 좌윤 이정기의 졸기

한성부 좌윤 이정기(李廷夔)가 죽었다.

이정기는 자(字)가 일경(一卿)이고, 괴과(魁科)에 올라 명망이 있었으며 청현직을 두루 거쳤다. 사람됨이 선량하고 넉넉하게 도량이 넓어서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일찍이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있을 때에, 이정기를 좋아하지 않던 어떤 암행 어사가 ‘벼슬살이가 청렴치 못하고 산소 아래에다 집을 지었다.’ 라고 무함을 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정기에게는 실로 이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억울한 일이라고들 하였다.

○漢城府左尹李廷夔卒。廷夔字一卿，登魁科，有時望，歷敷華顯。爲人善良，休休有容，爲士友輩所許。曾任水原府使時，暗行御史有不悅者，至以居官不廉，營構家舍於墓下構誣，而廷夔實無是事，人皆稱冤。

<현종개수실록 24권, 현종 12년 4월 10일(신묘) 2번째기사>

#### 정치/인물



### 평안 감사 원만리의 졸기

평안 감사 원만리(元萬里)가 졸하였다. 만리는 고상(故相) 원두표(元斗杓)의 아들이자 부마(駙馬) 원몽린(元夢麟)의 아버지이다. 그는 늦게야 과거에 급제하여 좋은 벼슬을 두루 지낸 다음 자급이 승진되어 수원 부사로 나갔다가 그만두고 돌아와서 또 승지로 있다가 이 직책에 발탁 제수되었는데, 미처 부임을 하기 전에 급작스런 병으로 죽은 것이다. 그의 사람됨은 기개(氣概)가 있어 장점도 되었으나, 사람들이 더러는 그의 마음씨가 거친 점을 흠잡기도 하였다.

○平安監司元萬里卒. 萬里, 故相斗杓之子, 而駙馬夢麟之父也. 晚登第, 踐歷華顯, 陞資出爲水原府使, 及解歸, 又以承旨, 擢授是職. 未及赴任, 暴疾以卒. 爲人有氣概, 亦有長處. 然人或病其心麤.

<현종개수실록 26권, 현종 13년 6월 4일(무인) 4번째기사>

### 정치/인물

집의 한태동이 수원 부사 이사영에 대하여 논하다

집의(執義) 한태동(韓泰東)이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사영(李思永)에 대하여 논하기를,

“타고난 성품이 아침을 잘하고 간교하며, 몸가짐도 남에게 잘 보이려 하고, 사문(師門)을 배반함이 형서(刑怨)와 같습니다. 사특하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일삼으며, 외모를 사교(師臯)처럼 꾸미고 권세에 붙어 의지하여, 분수에 넘치게 이름과 지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수원부(水原府)를 맡아서 한 가지도 좋은 일은 없고, 엄중하고 가혹한 형벌로 백성들에게 해독만 끼쳤으며, 탐오(貪汚)하게 재물을 요구하여, 선비들 사이에 비방하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제거하소서.”

하고, 재차 아뢰자, 임금이 윤택하였다. 이사영은 곧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의 문인인데, 송준길이 관작을 추탈(追奪)당할 때 남쪽 고을의 수령(守令)으로 있다가, 아버지가 늙었다는 핑계를 대고,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신변(伸辨)의 소(疏)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이리하여 험뜯는 말들이 제법 나돌았으나, ‘스승을 배반하였다.’ 고까지 지목한 것은 너무 심히 미워한말이다. 이사영은 본시 김익훈(金益勳)과 친숙한 사이였는데, 김익훈이 탄핵을 당한 뒤에, 당시의 무리들의 마음을 의심하여, ‘무엇인가 있다.……’ 고 하였으므로, 당시의 무리들이 이 말을 노엽게 생각했으므로, 이처럼 갖은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執義韓泰東論: “水原府使李思永賦性儉巧, 行己側媚, 反覆師門, 情同邢怨. 苟營邪逕, 貌假師臯, 依附攀援, 濫致顯揚, 逮守此府, 無一善狀, 嚴刑酷罰, 毒流民人. 徵求貪汚, 言播搢紳, 請削去仕版.” 再啓, 允之. 思永卽文正公宋浚吉之門人, 而浚吉追奪官爵時, 方宰南邑, 以親老懼禍及, 不參伸辨之疏. 仍以赴試登第, 故頗有訾議, 而至以背師目之, 則嫉而甚之之辭也. 思永素與金益勳親熟, 及益勳被劾之後, 疑時輩心迹有所云云, 時輩怒之, 故其極口醜詆如此.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 12월 26일(기해) 2번째기사>

### 정치/인물

수원의 군기관감 등이 홍역에 참여하다

(…) 이영창이 말하기를, ‘이른바 진인은 세 번 변화하는데, 지금은 고성(高城)의 진재(鎭

材)인 용장(勇將) 정학(鄭涸)의 집에 있으며, 더러는 운부(雲浮)가 머물고 있는 옥정암(玉晶菴)에 있기도 한다. 그런데 운부가 정학 및 그의 아우 정신(鄭愼), 그리고 최헌경(崔憲卿)·유찬(柳鑽)·설유징(薛有澄) 등을 시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호위(護衛)하게 한다. 그리고 중 묘정(卯定)·일여(一如)·옥여(玉如)·무변(無邊)·현성(玄聖)·일안(一鴈)·해안(海鴈)·도강(渡江)·월강(越江)·혜일(惠一)·도운(道運)·도영(道英)·계탄(戒坦)·성주(聖珠)·명근(命根)·금벽(金碧)·인징(寅澄)·능흡(能洽)·세운(世雲)·원정(元井)·헌일(憲日)·죽무(竹茂)·지평(地平)·천성(天成)·은상(銀象)·초룡(草龍)·직수(直守)·흑수(黑守)·희담(希淡)·황헌(黃憲)·장계(藏季)·운극(雲極)·한무(漢茂)·법징(法澄)·풍열(楓悅)·설제(雪霽)·신원(新元)·개혜(開惠)·자징(字澄)을 기내(圻內)와 여러 도의 각 사찰에 나누어 보내어 3월 21일에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침범하는 입장에 있는데, 강계 부사(江界府使) 신건(申鍵)·상토 첨사(上土僉使) 신일(申鎰) 및 이영창의 아우 이동백(李東伯), 이영창의 외숙인 김문하(金文夏), 김화(金化)에 살고 있는 부자(富者) 지대호(池大豪)·엄준길(嚴俊吉)·진용종(秦戎宗)과 함경도에 살고 있는 술사(術士) 주비(朱裴), 춘천에 살고 있는 용장(勇將) 최흥복(崔興福), 수원에 살고 있는 역사(力士) 한이태(韓以泰), 용인에 살고 있는 거사(居士) 조종석(趙宗碩), 부사(府使) 홍하신(洪夏臣)·양한석(楊漢奭), 금성(金城)에 살고 있는 충의(忠義) 안석명(安碩明) 등 3형제와 강거사(康居士)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전 군수(郡守) 임동정(林東靖), 수원 군기 감관(水原軍器監官) 임필흥(林弼興) 등도 흉역(凶逆)에 참여하였다' 고 하였습니다. (…)

○(…) 榮昌言：‘所謂眞人三變，時在高城 鎮材勇將鄭涸家，或在於雲浮所住玉晶菴，而雲浮使鄭涸及其弟愼·崔憲卿·柳鑽·薛有澄等，相替護衛，而分送僧卯定·一如·玉如·無邊·玄聖·一鴈·海鴈·渡江·越江·惠一·道雲·道英·戒坦·聖珠·命根·金碧·寅澄·能洽·世雲·元井·憲日·竹茂·地平·天成·銀象·草龍·直守·黑守·希淡·黃憲·臧季·雲極·漢茂·法澄·風說·雪霽·新元·開惠·宇澄，於圻內及諸道各寺，以爲趁三月二十一日，起兵犯闕之地，江界府使申鍵·上土僉使申鎰及榮昌弟東伯·榮昌外叔金文夏·金化居富者池大豪·嚴俊吉·秦戎宗·咸鏡道居術士朱裴·春川居勇將崔興福·水原居力士韓以泰·龍仁居士人趙宗碩·府使洪夏臣·楊漢奭·金城居忠義安碩明等三兄弟·康居士稱號人·前郡守林東靖·水原軍器監官林弼興等，亦參凶逆.’ (…)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1월 10일(임술) 3번째기사>

## 정치/인물

### 사헌부에서 수원 부사 서명균을 논핵하다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이정소(李廷燾)이다.】에서 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고, 또 수원 부사(水原府使) 서명균(徐命均)을 논핵하기를, “조금 전에 관직(館職)을 제수하고 갑작스럽게 중진(重鎭)으로 승진시키니 재구(才具)는 비록 적합하다 하더라도, 초천(超遷)하는 것은 아주 갑작스러운 것을 면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己酉/憲府【持平李廷燾.】申前啓，又論水原府使徐命均，纔除館職，遽陞重鎭，才具雖曰可合，超遷未免太驟，請改差．上竝不從．

<경종실록 4권, 경종 1년 6월 19일(기유) 1번째기사>

## 정치/인물

### 의금부의 죄인 김중기가 죽다

의금부의 죄인 김중기(金重器)가 죽었다. 김중기는 무신년의 역란이 일어났을 때 총융사(摠戎使)를 삼아 수원(水原)에 나가서 진무하게 하였는데, 말[馬]이 없다고 핑계대어 나아가지 않고 두류(逗遛)하였었다. 역적의 괴수 이유익(李有翼)은 곧 그 아들의 처남(妻男)이었는데, 그가 김중기의 묘사(墓舍)에 망명하여 숨어 있다가 잡혀서 몇 년 동안 갇혀 있었으나, 끝내 법대로 치죄(治罪)하지 못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분통하게 여겼다.

○義禁府罪人金重器死。重器於戊申之亂，爲摠戎使，出鎮水原，托無馬逗留。賊魁有翼卽其子之妻弟，亡命匿重器墓舍，就囚經年，終未正法，輿情憤之。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 11월 6일(신축) 2번째기사>

### 정치/인물

수원 부사 이정보가 부성을 쌓고 군비를 갖추어 줄 것과 세금이 과다함에 대해 상소하다  
수원 부사 이정보(李鼎報)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본부는 평원(平原)의 넓은 들 판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면(四面)으로 적을 받는 지역이니, 마땅히 부성(府城)을 쌓아 적을 막는 관방(關防)으로 삼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본부의 마군(馬軍)은 각자 말을 갖추게 하고 있는데, 말이 있는 사람은 열에 한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경군문(京軍門)의 예에 의거하여 홍원(洪原)·대부(大阜) 두 목장의 말을 획급하여 준다면 일이 편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정군(正軍) 1인마다 보인(保人) 2인씩 획급하여 말을 준비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계묘년에 다시 양전(量田)한 뒤에 세금을 징수한 허결(虛結)의 수효가 거의 3백여 결(結)에 이르고 있으므로, 온 경내의 원망이 백골(白骨)에게 포목(布木)을 징수하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충(宸衷)으로 결단하시어 특별히 탈감(頤減)하고 유사(有司)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여 묘당(廟堂)의 휴지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水原府使李鼎輔上疏，略曰：本府居於平原曠野，四面受敵之地，宜築府城，以爲關防禦賊之道也。又曰：本府馬軍，使各自備馬，而有馬者十無一二。若依京軍門例，劃給洪原·大阜兩牧馬，則事合便宜。不然則每一軍各給二保，以爲備馬之資也。又曰：癸卯改量後，虛結徵稅之數，將至三百餘結，一境怨咨，殆甚於白骨徵布。伏乞斷自宸衷，特爲頤減，勿令攸司稟處，徒爲廟堂休紙也。

批曰：“令廟堂稟處。”

<영조실록 52권, 영조 16년 8월 5일(계묘) 2번째기사>

### 정치/인물

수원 유생 유교의 상소에 따라 윤선거·윤증의 삭탈관작 및 문집 훼손 사액을 철회하다  
고 집의 윤선거(尹宣舉)와 고 우의정 윤증(尹拯)의 관작을 추탈하고 그들의 문집을 훼손시키고 사액(祠額)을 철회하도록 명하였다. 경기(京畿)의 수원(水原) 유생(儒生) 유교(柳澗) 등이 상소하기를, “천하의 일은 본(本)이 있고 말(末)이 있는 법이어서 그 본을 놓아 두고서 그 말만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 이명휘(李明徽)의 말은 진실로 윤선거 부자에게서 근본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상소 내용에 말뜻의 맥락이 모두 윤선거 부자의 글 속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가 조술하고 전수받은 흔적이 자못 인판(印板)으로 찍어낸 것과 같습니다. 대개 윤선거가 강도(江都)에서 실신(失身)을 해 놓고도 그가 죽지 않은 것을 충

분히 도리에 맞는 것으로 하려고 하여, 기필코 감히 말할 수 없는 경우의 것을 끌어들여다가 스스로 비유하는 짓을 하며, 그만 감히 말하기를, ‘나는 두거(杜舉)를 하였다.’ 라고 하였고, 혹 말하기를, ‘오늘날에 있어서는 말할 수 있지만 뒷날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또한 말하기를, ‘구踐(句踐)은 속였고 경연광(景延廣)은 미친 짓을 한 것이다.’ 라고 하여, 친구들과의 글에 낭자하게 전파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아! 이어찌 신하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하였다. (…)

○追奪故執義尹宣學·故右議政尹拯官爵, 毀其文集, 撤其祠額. 京畿·水原儒生柳澗等, 上疏曰:

天下之事, 有本有末, 未有捨其本而治其末也. 今此明微之言, 實本於宣學父子, 故其疏中語意脈絡, 都自宣學父子書中出來, 而其祖述傳授之跡, 殆若印板. 蓋宣學失身於江都, 以渠之不死, 欲爲十分道理, 必援引不敢言之地而自況, 乃敢曰: “吾爲杜舉.” 或曰: “今日則可言, 而他日則不可言.” 又曰: “句踐詐延廣狂矣.” 狼藉傳說於知舊之書. 噫嘻! 此豈人臣之所爲說者耶? (…)

<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5월 22일(임진) 2번째기사>

## 정치/인물

### 이명식을 수원부 유수로 삼다

이명식(李命植)을 수원부 유수로 삼고, 이어서 명하여 죽은 중신 조관빈(趙觀彬)이 보국 대부(輔國大夫)에 지중추로 강화 유수에 제배된 뒤에도 지중추의 직함을 그대로 지냈던 전례에 따라 지중추의 직함을 겸대하게 하였는데, 이는 병조의 계청을 따른 것이다. 명식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이 김복인(金復仁)의 상소로부터 탄핵을 받았는데, 그 말이 지극히 패러긋고 참혹하였으니 신하된 자로서 이런 말을 한 마디라도 듣고서야 어떻게 하루인들 세상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가 한 말들이 자못 도리가 없어 실상 족히 변명할 것도 없었던 까닭에 이같은 원통함을 간직한 채 7, 8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이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은 오로지 징계하고 토죄하는 일을 유독 엄격하게 했던 까닭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연전에 하유가 반포된 뒤로 신이 처음부터 고집하였던 그 의리가 문득 사람을 무함하는 것으로 낙착되어버렸습니다. 대저 징계하고 토죄하는 일이 그 얼마나 관계가 중대한 것입니까마는 일이 이미 실상이 없게 되었으니, 비록 말을 생판 조작한 것이 아닌 때문에 반좌(反坐)되는 것은 면할 수 있었으나, 신이 스스로 처신하는 데 있어서야 어떻게 버젓이 반열의 사이에 당돌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또 더구나 신에게 내려진 벼슬과 품계가 높고 현달한 경우이겠습니까. 그때부터 신은 마침내 버려져 죽은 사람으로 자처하고 비록 가까운 친척 사이일지라도 왕래하는 일이 없어 사람 사는 도리가 거의 모두 끊어졌고 관직의 거취에 이르러서도 일찍이 한번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새로 내린 벼슬은 주구(珠丘)를 가까이서 모시고 행궁을 보호해야 하니 사체와 도리에 있어 어찌 혹시라도 머뭇거리며 사피하려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구구한 신의 의리로서는 옛날에 가졌던 생각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체직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 부(府)의 이 직임을 나는 마치 고굉(股肱)이나 주액(肘腋)처럼 여기고 있다. 경은 다섯 도(道)의 관찰사를 지냈고 세 번 관방(關防)을 맡아서 공적이 함께 벼슬하는 사람들 중에 성대히 드러났었다. 내가 경에게 이 부의 직임을 임명한 데에는 또한

깊이 생각한 것이 있었다. 설사 경에게 머뭇거릴 의리는 있다 할 지라도 가서 일하는 것만은 사양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곳 화성에 유수를 둔 데에서는 모름지기 그 제정하여 둔 뜻을 보아야 할 것이니, 그것은 바로 선침을 수호하기 위해서이고 행궁을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경도 초봄의 행행 때에 내린 윤음(綸音)을 보았을 것이다. 이 부의 이 직임이 어찌 혹시라도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헤아릴 수 있는 자리이겠는가. 경은 바로 일어나 사은숙배하라.” 하였다.

○以李命植爲水原府留守，仍命用故重臣趙觀彬，以輔國知中樞，除拜江華留守，仍帶樞銜之例兼。帶樞銜，從兵曹啓請也。命植上疏曰：臣之所被金復仁之疏，其言至悖至僭，爲人臣子，聞此一字，何可一日自立於世，而特其爲說，殆無倫脊，實無足以卞暴者，故抱此冤憤，以至七八年之久矣。臣之得此言，專由於懲討獨嚴之故，而年前布諭之後，臣從初所執，便屬誣人之科。夫懲討何等關係，而事既無實，雖以言非白做，得免反坐。在臣自處，何可晏然唐突於班聯之間，而又況臣位秩崇顯者乎？自是以來，臣遂處以廢謬，雖在至親之間，未有還往之事，殆乎人理之都絕，而至於官職去就，一未嘗出脚。今此新除，依近珠丘，拱護行宮，事體道理，豈或復爲逡巡辭避之圖，而區區私義，株守難改。伏望亟賜遞罷。批曰：“是府是任，予之視之，如視股肱，如視肘腋。卿是五道建節，三掌關防，而績庸茂著於同朝之人也。予所取卿於是府是任，蓋亦深量者存。藉令卿有逡巡之義，往役不可辭異。矧茲華城居留，須看制置之意，爲守護仙寢也，爲整釐行宮也。卿亦必見春初幸行時綸音。是府是任，寧或有商量計度於可出不可出耶？卿其卽起肅謝。”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1793) 5월 25일(병진) 4번째기사>

## 정치/인물

### 우하영이 올린 13조목의 상소에 대해 비답을 내리다

화성(華城) 유학(幼學) 우하영(禹夏永)이 상소하여 시급히 힘써야 될 일 13조목을 진술하고 그것을 책으로 묶어 바치니, 비답하기를, “그대가 진술한 13조목은 모두 백성과 나라의 실질적인 쓰임에 관련이 있으니, 그대는 분명 재능을 품고 있으면서 쓸 길이 없는 인물임이 틀림없다. 무본(務本) 조목에서 ‘각도 각읍에 농관(農官)을 두고 경민편(警民編)을 반포하여 가르치는 옛날의 제도를 새로이 밝혀야 된다.’ 고 한 것은 묘당으로 하여금 그 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수차(水車)에 대한 제도는 근래에 장용영(壯勇營)에서 다수 건조하여 배치한 것이 있으나, 다만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고을에 널리 보급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토지의 경계에 관한 정사는 그대의 말이 타당하다. 올해의 농사가 어느 정도 결실이 되는 때를 기다렸다가 점차 권장하고 신칙한다면 분명히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뽕나무를 심는 데 대한 사항은 안주상(安州相)의 공상고사(公桑故事)를 본받아서 먼저 화성(華城)에서부터 시작하려 한다. 근년에 지방관의 보고에 의하면 1년에 1만 그루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다만 앞으로 누에고치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를 보려고 한다.

풍속을 교화하는 조목 가운데서 『소학(小學)』을 강하는 일은 내가 고심하는 바이다.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데에 어찌 이보다 나은 것이 있겠는가. 즉시 예조로 하여금 그대의 상소문의 내용을 가지고 아울러 평상적인 법식에 나아가서 온당하고 시행하기 쉬운 조항을 가지고 논하여 계품하게 하고, 즉시 서울과 지방으로 반포하게 하라.

사치를 금지하는 일이 목전의 급선무인 것에 대하여 어찌 그대의 말을 듣고서야 알겠는가.

음식에서 허비하는 것이 의복보다 심하며 더구나 유밀과(油蜜果)에 대한 금령(禁令)은 본래 금석같은 법조문이 있으나 기강이 서지 않아 전혀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의복제도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법만 세워놓고 스스로 실행하지 못하면 금령을 내리고 관원을 차송하는 일이 백성들을 소란스럽게 할 뿐이다. 점차적으로 크게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여 매번 대신, 담당자들과 더불어 경연석에서 강구한 것을 가지고 특별히 생각해 보겠다.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 금령 형법(禁令刑法)에 속한 조문을 뽑아내어 중외에 반포해야 된다고 한 것은 그대의 말이 일리가 있다. 형조의 관원에게 초록하여 계품한 뒤에 처리하게 하겠다.

공명첩(空名帖)을 발매하는 일은 근자에 새로이 금지하였고, 한 도 전체에 기근을 구제하는 일을 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날의 규례대로 하락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그대는 혹시 듣지 못하였는가. 그러나 그대의 경륜으로 보아 나름대로 견해가 있는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계품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용인(用人) 조목에서 두 전조(銓曹)가 채용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조목조목 열거하여 회계하도록 하였다.

과거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은 즉위한 초기부터 열심히 자문하여 온 것으로서 첫 번째 의의를 두고 있으나 지금까지 굳게 보수하고 있는 것은 대개 요량한 것이 있어서였다.

군제(軍制)와 관방(關防)에 대한 여러 조목은 묘당에 송부하여 무장(武將)에게 자문을 구한 뒤에 계품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조적(糶糶)과 조세에 관한 조목은 책문(策文)을 보여 대신들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여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그때에 가서 거행하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본부(本府)에 대한 조목은 수신(守臣)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갖추어 계문하도록 하겠다. 탐라(耽羅)에 대한 조목과 도적을 금하는 데 대한 조목은 묘당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토록 하겠다.

간세(奸細)한 행위를 예방하는 일에 대한 조목은 허다한 법령은 차치하고서 가장 급선무가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제도를 다시 정비하여 거주민이 도적을 맞는 걱정이 없게 하고 사리에 당치 않는 것으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습속이 저절로 금지되게 하는 것이다.

나머지 세 조목 중에서 두 조목의 내용은 꼭 그렇다고 여기지 않기에 논외로 두고, 화포(火砲)의 장약(藏藥)에 대한 일은 해고(該庫)의 제거(提舉)로 하여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복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華城幼學禹夏永，上疏陳時務十三條，具冊子以聞，批曰：“爾所陳十有三條，皆關民國之實用，爾必是抱才莫達之人也。務本條中，各道各邑置農官，申明警民編頒諭之舊制云云，許令廟堂，指陳便否。水車之制，近有壯營多數造置者，但費用甚鉅，遍頒列邑，恐似難便。經界之政，爾言得宜。待年事之稍熟，次次勸飭，必有其效。種桑一款，欲效安州相公桑故事，先從華城而始之。近年守臣之所報，聞歲以萬株爲課。第欲觀來頭蠶功。化俗中『小學』講事，卽予苦心。其爲化民成俗之一助，豈有大於此者？卽令宗伯之臣，將爾疏語，兼就恒式以便，而易行之條件，論列稟啓，俾卽頒示京外。禁奢之爲目下急務，何待爾言而知之？飲食之費，甚於衣服，況油蜜果禁令，自有金石之典，而紀綱不立，其所蕩然，無異於衣章。然徒法不能自行，則出禁發差，撓民而已。漸磨丕變之方，每與大臣有司之臣，筵席講究者，另當留神。『通編』法條之屬於禁令刑法者，抄頒中外，爾言有理。令法曹之官，草記稟處。空名帖發賣，近有新禁，除非通一道設賑，依舊例勿許，爾或未聞乎？爾之經綸，亦有意見，令廟堂稟處。用人條中兩銓可以採用者，卽令條列回啓。科弊之釐正，卽初元勤諮之第一義，而牽補至今，蓋有商量者存。軍制及關防諸條，付之廟堂，問于武將稟處。糶稅條發策，廣詢大臣，亦有建白者，欲待舉行之如何。本府條，

付之守臣，具意見狀聞。耽羅條·禁盜條，令廟堂草記。防奸條，除却許多條令，莫先於修明五家統之制，使居者無被盜之患，而非理好訟之習，自當不期禁而自禁。餘三條中二條，未必然，置之，火砲藏藥事，令該庫提舉，看詳覆奏。”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4월 25일(경자) 3번째기사>

#### 정치/인물

수원부 암행 어사 신현이 서계와 별단을 올리다

수원부 암행 어사(水原府暗行御史) 신현(申絢)이 서계(書啓)와 별단(別單)을 올렸다.

○水原府暗行御史申絢，進書啓·別單。

<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 11월 12일(경인) 2번째기사>

#### 정치/인물

수원 유수 서유린이 자신을 변명하는 상소를 올리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이 상소하여 스스로 변백(辨白)하였는데, 대략 이르기

를,  
“신이 장령 이안묵(李安默)의 소본(疏本)을 보온즉, 또 신이 임자년에 상소한 일을 가지고 잡고 늘어져 억지로 몰아붙이기를 이루 말할 수 없이 했습니다. 사람을 탄핵하는데도 또한 분수(分數)가 있으니, 한 번도 심한데 어찌 재차 논한단 말입니까? 죽지 않은 신의 입장에 서야 진실로 달갑게 받아들여겠습니까만, 이미 죽어 뼈가 된 신의 아우까지 다시 무엇 때문에 거론하는 것입니까? 그 또한 불인(不仁)한 사람입니다. (…)” 하니, 비답하기를, “경의 일에 대해서는 선대왕께서 이미 굵어 통촉한 바 있으니, 경은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水原留守徐有隣，陳疏自辨。略曰：臣得見掌令李安默疏本，則又以臣壬子疏事，把持驅勒，罔有紀極。彈人劾人，亦有分數，一之甚矣，其可再乎？未死之臣身，固所甘心，既骨之臣弟，復何攙及？其亦不仁者矣。(…)批曰：“卿事，先大王已有俯燭，卿其勿辭。”

<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 11월 18일(병신) 3번째기사>

#### 정치/인물

수원 유수 서유린이 자신을 변명하는 상소를 올리다

수원 유수(水原留守) 서유린(徐有隣)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기괴(奇怪)한 일을 당하여 정적(情跡)이 위태로우므로 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뜻에 양음(亮陰) 중이심을 무릅쓰고 공소(控訴)하니, 황공하고 두려워서 견책을 기다릴 뿐입니다. 삼가 비지(批旨)를 받들건대, 은혜로운 말씀이 정중하여 선대왕(先大王)께서 이미 굵어 통촉하셨다는 것으로 하교하시면서 소식(昭皙)하여 주시는 은혜로움이 철철 넘쳐흐르기에 이르렀으므로, 신은 땅에다 머리를 조아리며 황연(恍然)히 을묘년 겨울의 비답을 받든 고사(故事)와 같음을 느껴 감격함과 슬픔이 교차하면서 스스로 피눈물이 얼굴을 적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즈음에 또 이안묵(李安默)의 소본(疏本)을 얻어 보니, 종이에 가득한 것이 모두 부르짖고 떠들어대는 말로 계속 추욕(醜辱)을 가하여 마치 미친 아이가 잠꼬대를 하고 거리의 아동이 취해서 떠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뜻밖에 닦친 추욕에 대해 많은 변론을 할 것도 없습니다만, 더없이 중한 의리와 더없이 엄한 기주(記注)에 관계됨이 있는 것을 어찌 분명히 말하고 환히 진달하지 않은 채 한결같이 그가 흐릿하게 변환(變幻)시키는 대로 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 비궁(闕宮)에서의 연설(筵說)은 당시의 제신(諸臣)들이 거개 받들어 들은 것입

니다. 윗조항에 ‘《명의록(明義錄)》은 별로 수립(樹立)한 것이 없다.’ 하시고, 아랫 조항에 ‘임자년 상소는 의리에 관계가 된다.’ 고 하셨는데, 그 아랫 조항의 일에 대해 내리신 사교(辭敎)가 부월(鈇鉞)보다 엄하였으니, 윗조항과 아랫 조항을 승접(承接)시켜 보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 단청(丹青)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구나 수립(樹立)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한 하교에 대해서는 또 그의 이른바 의리에 배치(背馳)된다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술(心術)을 조촉(照燭)하시고 성도(聖度)로 포용했다는 등등의 말로써 멋대로 속이려는 계책을 삼으니, 이런 것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는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진실로 신의 은미한 심술이 일호(一毫)라도 배치되는데 근사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 선대왕(先大王)의 대의(大義)를 굳게 잡으시는 큰 용단 아래 어찌 신을 아끼시겠으며 형제를 근밀(近密)한 반열에 십수년 동안이나 두기에 이르겠습니까? 의리에 대한 일을 당하면 함께 강명(講明)하였고 공격받는 일을 당하면 선왕을 위하여 증발(拯拔)하였으므로 가슴에 가득한 적충(赤忠)을 내가 통촉하였다고 허여하셨으며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유하시는가하면, 남성(南城)에 있을 때는 신장(宸章)을 크게 내리셨고 북궐(北闕)에 있을 때는 배연(陪筵)을 자주 열었으며 원침(園寢)을 지키는 임무를 특별히 다년간(多年間) 맡겨 한집 사람처럼 여기시기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말은 마치 선대왕께서 천신(賤臣)의 형제에 대해 그 마음은 의심하시면서 그 사람은 기용하신 것처럼 하여 지난번 장차 취하겠지만 아직 기다린다는 등의 흉인(凶言)을 가지고 얼굴을 바꾸어 가면서 독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신이 불충(不忠)하고 무상(無狀)한 탓으로 우러러 명철하신 우리 선대왕(先大王)께 누를 끼쳤으니, 신은 은밀히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 그 즉시 자결(自決)하여 검호(鉞虎)를 본 받아 하종(下從)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명의록(明義錄)》이 별로 수립한 것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상소하여 대궐에 절규한 한 고(故) 상신(相臣)에게는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목욕(沐浴)하고 징토(懲討)를 청하는 뒤를 따른 것은 신이 조정에 있는 신하들과 대등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전혀 사실과 같지 않은 ‘별로 수립한 것이 없다 [別無樹立]’ 는 네 개의 글자를 가지고 그의 이른바 배치(背馳)된다는 죄과로 다 몰아넣으려 한다면, 어찌 대성인(大聖人)의 하교(下敎)의 본의(本意)와 크게 어긋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일세(一世)를 크게 속이는 데로 귀결됨을 달갑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주(記注)의 한 가지 일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이미 체주(替奏)하는 사알(司謁)을 핑계하고 지금은 또 귀양가 있는 승지(承旨)에게 핑계하니, 선조(先朝) 앞에서 정녕코 거듭 아뢰었는데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한 것을 한 번 두 번 험사리 변개(變改)시켜, 혹은 ‘일기(日記)가 사실과 어긋난 것을 대소(對疏)로 인하여 비로소 알았다.’ 고도 하고, 혹은 ‘애석한 것은 기재(記載)된 것을 징험할 수 없는 그것이다.’ 고도 하고, 혹은 ‘장차 이것을 신적(信跡)이라 하여 영구히 전하러 하는가?’ 하기도 했습니다. 신은 그의 소장을 반도 보기 전에 모골(毛骨)이 함께 송연함을 느꼈습니다. 아! 자신이 한 말을 인사(人事)가 변천된 뒤에 식언(食言)하는 것은 붕우(朋友) 사이에도 차마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가 이에 군신(君臣) 사이에 차마 하고 있으니, 이는 세상의 공의(公議)가 있다면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나라의 법강(法綱)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공의도 두려워하지 않고 국가의 기강도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유독 혁연히 임어하고 있는 천신(天神)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물러가게 할 때의 하교에 대해서는 그도 또한 감히 단서를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령 그가 대답한 것이 저와 같은데도 하교가 여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그에게 크게 관계되는 일인데, 어찌하여 즉시 우러러 폭백(暴白)하지 않고 묵묵히 물러



갔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에 그 마음의 소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말을 하자니 마음이 아파서 신이 굳이 입을 더럽힐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안묵(李安默)의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에 기주(記注)가 있었다고 한 하교가 일월(日月)처럼 밝아서 그 간사함을 남김없이 밝혔습니다. 둔사(遁辭)에는 군색한 것을 알고 사사(邪辭)에는 정도에 어긋난 것을 안다고 한 것은 말을 아는 성인 맹 부자(孟夫子)의 말인데, 실로 오늘날 다시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소에는 이밖에도 허다한 모순과 허다한 겁욕(劫辱)이 있는데, 신이 비록 용렬하기는 합시다만 어떻게 하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일개 이안묵과 차마 상하(上下)를 쟁변(爭辨)하겠습니까? 초원(初元)의 정치에는 사유(四維)가 중한 것인데 신의 몸은 다시 그 큰 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전의 상소에 다 다하였으니, 이제 감히 다시 누누이 진달하지 않겠습니다. 겁박을 당한 뒤에 혈떡거리던 중에 다시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한 지라, 조금 남아 있던 정신마저 갑자기 쇠진하여 궁액스러움과 위축됨이 날마다 더욱 극심하여지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중임(重任)을 풀어주시고 신을 조정에서 삭적(削籍)시켜 주시어 고향으로 물러가 살면서 여생(餘生)을 마치게 하여주신다면, 지금부터 죽는 해까지는 모두 성상(聖上)께서 내리신 은전(恩典)이 되겠습니다. 신이 상소를 지어 올리려 할 즈음에 삼가 내려온 전교(傳敎)를 받드니, ‘**건릉(健陸)**을 봉심(奉審)하고 수개(修改)할 때에는 유수(留守)가 없어서는 안 되니 즉각 내려가라.’ 고 하였습니다. 일이 능역(陵役)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감히 사사로운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대방(大防)이 앞에 당하여 있고 철한(鐵限)을 넘을 수 없어 특교(特敎)한 뒤에도 나갈 수가 없어 강가에 거적을 깔고 엎드려 삼가 엄한 주벌(誅罰)을 기다립니다. 이와 같은 신은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다 소식(昭晳)하였는데, 경이 무엇 때문에 지나치게 인혐하는가? 수개(修改)할 길일(吉日) 안에 즉시 숙명(肅命)하고 나서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甲辰/水原留守徐有隣疏. 略曰: 臣遭罹奇怪, 情跡危艱, 竊附籲冤之義, 冒控亮陰之中, 惶懼震越, 惟謹何是俟. 伏承批旨, 恩言鄭重, 至以先大王已有俯燭爲敎, 昭晰之渥, 洋溢汪濊, 臣以首頓地, 忼然若乙卯冬承批故事, 感激哀實, 自不覺血淚之被面. 此際又得見李安默疏本, 滿紙叫嚷, 醜辱層加, 殆若狂豎之夢譫, 街童之醉詈. 橫逆之來, 不足多辨, 而若其有關於莫重之義理, 莫嚴之記注者, 烏可不明言洞陳, 一任渠漫漶變幻乎? 噫! 閤宮筵說, 伊時諸臣, 舉皆承聞. 上款若曰: ‘《明義錄》, 別無樹立;’ 下款若曰: ‘壬子疏, 關係義理.’ 仍以下款事, 辭敎渙發, 嚴於斧鉞, 上·下款承接, 皎若丹青. 伏況別無樹立之敎, 又與渠所謂背馳義理, 迥然不同. 而今乃以心術照燭, 聖度包容等說, 肆然爲矯誣之計, 是亦可忍者乎? 君臣之間, 貴相知心. 苟使臣心術之微, 一毫近似於背馳, 則以我先大王大義之所秉執, 何惜乎臣, 置兄弟於近密之列者, 至於數十年之久? 而當義理, 則與之講明, 遭鋒鏑, 則爲之拯拔, 許之以赤腔予燭, 喻之以俯仰無忤, 宸章誕降於南城, 陪筵頻開於北闕, 以至國寢拱護之任, 特畀多年, 視同家人乎? 今渠爲說, 有若先大王之於賤臣兄弟, 疑其心而用其人者然, 與向來將取姑與之凶言, 換面逞毒. 緣臣之不忠無狀, 仰累我先大王則哲之明, 臣竊爲之痛哭流涕, 恨不卽地自刎, 以效鍼虎之下從也. 《明義錄》之別無樹立, 臣誠有愧於尺疏叫閤之一故相, 而沐浴懲討之隨其後, 則臣與在廷諸臣等耳. 今若以迥然不同之‘別無樹立’四箇字, 盡驅之於渠所謂‘背馳之科’, 則豈不失大聖人下敎之本意, 而甘自歸於厚誣一世乎? 至若記注一事, 初既諉之於替奏之司謁, 今又諉之於在謫之承宣, 丁寧申奏於先朝之前, 而口所言目所覩者, 一番再番, 容易變改. 或曰, ‘日記之失實, 始因對疏而知之.’ 或曰, ‘所惜者, 記載之無徵.’ 或曰, ‘其將以此爲信跡, 而傳之永久耶?’ 云云. 臣見之未半, 毛骨俱竦. 噫! 吐言食言於人事變嬗之後, 朋儕間之所不

忍爲者，而渠乃忍爲於君父臣子之際，世有公議，在所不容，國有法綱，在所當被。而渠雖不畏公議，不畏國綱，獨不畏天神之赫臨乎？使之退去時下教，渠亦不敢隱端矣。假令渠之所對如彼，而下教及此，則此是渠大關節，何不卽地仰暴，默然退出，拖至于今，始曰乃爾其心所在？言之痛心，臣何必汚口也？安默疏批中，記注在矣之教，日月之明，燭奸無餘。遁辭知其所窮，邪辭知其所離，孟夫子知言之聖，實仰復見於今日矣。渠疏之外此，許多矛盾，許多刼辱，臣雖疲劣，豈堪與欺天誣人之一安默，上下爭辨哉？一初之政，四維爲重，臣身之不可復廁於周行，已悉前疏，今不敢更事觀縷。而刼後餘喘，積受拳踢，些少精爽，漸頓將盡，窮阨危蹙，日甚一日。伏乞解臣重務，削臣朝籍，退伏松楸，以畢餘生，自今至死之年，皆聖上賜也。臣於治疏將上之際，伏奉傳教下者，以‘健陵奉審修改時，不可無留守，使之卽刻下去。’事關陵役，不敢言私，而大防當前，鐵限莫越，特教之下，末由趨進，席藁江干，恭俟嚴誅。有臣如此，生不如死。

批曰：“昭晰已盡，卿何過引？修改涓吉，卽爲肅命後，進去。”

<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 11월 26일(갑진) 1번째기사>

### 정치/인물

#### 화성의 유생 우하영이 상소하고 『천일록』을 올리다

화성(華城)의 유생(儒生) 우하영(禹夏永)이 상소하고 책자를 올렸는데, 『천일록(千一錄)』이라 하였다. 조목별로 백성과 나랏일에 대해 진달한 것인데, 비답하기를,

“네가 초야의 소원(疏遠)한 처지로서 이런 양잠(良箴)을 말하니, 그 마음이 가상하다. 껴보고 나서 마땅히 묘당으로 하여금 채택토록 하겠다.” 하였다.

○華城儒生禹夏永疏進冊子，曰『千一錄』。條陳民國之事，批曰：“爾以草野踈遠之蹤，言此良箴，其心可尙。披覽之餘，當令廟堂採之也。”

<순조실록 6권, 순조 4년(1804) 2월 9일(기사) 2번째기사>

### 정치/인물

#### 수원 유수 김이도가 졸하다

#### 수원 유수 김이도(金履度)가 졸(卒)하였다.

○己卯/水原留守金履度，卒。

<순조실록 17권, 순조 13년 3월 12일(기묘) 1번째기사>

### 정치/인물

#### 수원 유수 이만수의 졸기

수원 유수 이만수(李晩秀)가 졸(卒)하였다. 하교하기를, “충후(忠厚)하고 노성(老成)한 기풍과 아름답고 나라를 빛내는 문장은 바로 여러 사람들이 다같이 아는 바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더구나 옛날 스승의 구정(舊情)이 있고 우리 세자에 있어서는 간절한 정성이 늙도록 그치지 않았으므로 항상 마음에 감탄하였는데, 방금 그가 죽었다는 단자를 보고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성복(成服)하는 날에 각속(閣屬)의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고 별도로 부의를 하되, 예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이만수는 고 정승 이복원(李福源)의 아들이자, 영종추 이시수(李時秀)의 아우이다. 정조(正祖)에게 인정을 받아 아홉 번이나 대제학이 되었고 장기간 규장각 직함을 겸하였다. 풍채가 좋고 음토(音吐)에 능숙하였으며 문장이 풍부하고 아름다웠으므로 당시에 관각의 훌륭한 재목이라고 일컬었는데, 고문 대책(高文大冊)이 대부분 그의 손에서 나왔다. 성품이

부드럽고 후하며 후배를 권장하여 진출시키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걸만 화려하고 내실(內實)이 적었으므로 사람들이 깊이 존중하지는 않았다. 언론과 경제에 있어서는 또한 그의 소장(所長)이 아니었다.

○**水原留守**李晚秀卒. 教曰: “忠厚老成之風, 黼黻華國之文, 卽輿人之所共知. 而於予況有甘盤之舊, 以逮我元良, 而款款懇懇之誠, 至老未已, 常庸感歎于心, 卽見逝單, 不覺愕然. 成服日, 遣閣屬官致祭, 別致賻, 令該曹, 考例舉行.” 晚秀, 故相福源之子, 領樞時秀之弟也. 受知於正廟, 至九列文衡, 長帶閣銜. 而好風儀善音吐, 文辭瞻麗, 時稱館閣良材, 高文大冊, 多出其手, 性和厚, 好獎進後輩. 然華而寡實, 人不甚推重之. 至於言議經濟, 亦非所長也.

<순조실록 23권, 순조 20년 7월 28일(임오) 2번째기사>

## 정치/인물

### 변이중과 변경윤에게 높은 벼슬을 추증하고 시호를 주도록 하다

종2품 이경하(李敬夏)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

임진병난(壬辰兵亂) 때에 삼도(三都)를 지켜내지 못하고 여러 고을이 와해되자 변이중은 급히 적을 막고 나라를 보존하기 위한 계책을 아뢰었으며 한 번은 소모사(召募使)로, 세 번은 조도 어사(調度御史)로, 두 번은 독운사(督運使)가 되었습니다. 수원(水原)에서의 전투와 양천(陽川)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적의 목을 벤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화차(火車)를 만들어 군수 물자를 운반하였고 적의 보루를 쳤으며, 공은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과 함께 군대의 형세를 도왔는데 권율의 행주대첩(幸州大捷)은 실제로 화차의 위력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호성공(扈聖功) 1등, 선무(宣武) 2등에 녹용(錄用)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충의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예식원(禮式院)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十一日. 從二品李敬夏等疏略: (…) 及壬辰之變, 三都失守, 列郡瓦解, 以中, 亟陳禦寇圖存之策, 一爲召募使, 三爲調度御史, 再爲督運使. **水原**之戰·**陽川**之捷, 斬獲甚多. 創火車以之轉運軍需, 以之衝突賊壘, 公與都元帥權慄, 以助軍勢, 權慄幸州之捷, 實賴火車之力也. 錄扈聖功一等, 宣武二等, 此其忠義之大略也. (…) 批曰: “疏辭, 令禮式院稟處.”

<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11월 11일(양력) 1번째기사>

---

## 연구진

- 연구책임 ● 최성환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
- 연구원 ● 이동인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
- 연구보조원 ● 양지선 / 단국대학교 강사
- 연구보조원 ● 나영훈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 연구보조원 ● 최문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 연구보조원 ● 최덕환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 연구보조원 ● 이진걸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전근대 수원 자료집

---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5년 3월 6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

비매품 ISBN 979-11-85686-32-5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